발 간 등 록 번 호
11-1262000-000017-10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1973

외 교 부

| 일러두기 |

1. 이 해제집은 공개된 외교문서를 대상으로 하며, 최초(1949년) 생산된 문서부터 순차적으로 발간하여 금번에는 1973년도 문서를 수록하였다.

2. 해제는 각 문서철별로 문서 내용을 충실하게 요약·기술하고자 하였으며, 전반적인 흐름과 그 주요 내용을 집약함으로써 해당 문서철에 대한 최대한의 기본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다.

3. 해제문의 수록 순서는 각 문서철의 연도순/주제순(분류번호순)이며 각 해제 첫머리에 문서철 제목·생산연도·생산부서·마이크로필름(MF) 번호 및 면수 등의 정보를 표기하였다.

4. 문서철 제목은 생산 당시 사용했던 국가명, 용어 등을 그대로 표기하였고, 해제문은 현재 시점의 국가명으로 표기하였다.

5. 해제집은 목차, 본문, 부록(외교일지 1973년)으로 구성하였다.

1973년도

1 Cameron, Margaret K. 주Brisbane(호주) 명예영사 방한 및 활동사항 25
2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 Athens (그리스) 26
3 Strand, Jorgen B. 주Copenhagen(덴마크) 명예총영사 해임, 1973.12.31. 27
4 Diaz Corona, Pedro 주Tijuana(멕시코) 명예영사 임명, 1973.12.12. 28
5 주Freetown(시에라리온) 명예총영사 임명 및 해임 29
6 주Portland(미국) 명예영사 임명, 1973.3.20. 30
7 [redacted] 주Baltimore(미국)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31
8 Kirkpatrick, John E. 주Oklahoma City(미국) 명예영사 임명, 1973.12.12. 32
9 McElyea, William R. 주Dallas(미국) 명예부영사 임명, 1973.8.8. 33
10 김대중 납치 사건. 전12권 V.1 동 사건을 위요한 한 · 일본간의 외교교섭 및 수사협력, 8–9월 34
11 김대중 납치 사건. 전12권 V.2 동 사건을 위요한 한 · 일본간의 외교교섭 및 수사협력, 10–11월 35
12 김대중 납치 사건. 전12권 V.3 대통령 및 국무총리앞 보고, 8–11월 36
13 김대중 납치 사건. 전12권 V.4 국회 질의 답변, 9–11월 38
14 김대중 납치 사건. 전12권 V.5 일본 언론 반응, 8월 40
15 김대중 납치 사건. 전12권 V.6 일본 언론 반응, 9월 42
16 김대중 납치 사건. 전12권 V.7 일본 언론 반응, 10월 44
17 김대중 납치 사건. 전12권 V.8 일본 언론 반응, 11–12월 46
18 김대중 납치 사건. 전12권 V.9 미국 언론 반응, 8.8.–8.20. 48
19 김대중 납치 사건. 전12권 V.10 미국 언론 반응, 8.21.–11.20. 50
20 김대중 납치 사건. 전12권 V.11 기타국 언론 반응, 8–11월 52
21 김대중 납치 사건. 전12권 V.12 재일 본한국인 · 단체동향, 8–12월 54
22 김대중 전 국회의원 동정 56
23 대사파견 – 오스트리아 57
24 대사파견 – 벨기에 58
25 대사파견 – 차드 59
26 대사파견 – 콜롬비아 60
27 대사파견 – 덴마크 61
28 대사파견 – 에티오피아 62
29 대사파견 – EC 63
30 대사파견 – 핀란드 64
31 대사파견 – 프랑스 65
32 대사파견 – 그리스 67
33 대사파견 – 제네바 68
34 대사파견 – 인도네시아 69
35 대사파견 – 필리핀 70
36 대사파견 – 페루 71
37 대사파견 – 스웨덴 72
38 대사파견 – 시에라리온 73
39 대사파견 – 스위스 74

40 대사파견 –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75
41 대사파견 – 사모아(구 서사모아) 76
42 대사부임 – 벨기에 77
43 대사부임 – 브라질 78
44 대사부임 – 볼리비아 79
45 대사부임 – 콜롬비아 80
46 대사부임 – 카나다 81
47 대사부임 – 중앙아프리카 82
48 대사부임 – 에콰도르 83
49 대사부임 – 엘살바도르 84
50 대사부임 – 핀란드 85
51 대사부임 – 과테말라 86
52 대사부임 – 바티칸 87
53 대사부임 – 이스라엘 88
54 대사부임 – 네덜란드 89
55 대사부임 – 스페인 90
56 대사부임 – 스위스 91
57 영사파견 및 접수절차 간소화 92
58 영사부임 – 벨기에 93
59 영사부임 – 브라질 94
60 영사부임 – 카나다 95
61 명예영사 접수 – 중앙아프리카 96
62 부산주재 그리스 명예영사관 설치 97
63 김영태 주서울 온두라스 명예영사 접수 98
64 주재관(국방무관) 부임 – 캄보디아(구 크메르) 99
65 외교특권 및 면제 100
66 주한 외교기관 도입 면세차량 양수 101
67 서울 알리앙스 · 프랑세즈(불어학원) 직원 수입차량 면세문제 102
68 주한 독일문화원(괴테학원) 직원 수입차량 면세문제 103
69 주한 서울일본인학교 중등부 설치, 1973.4.1. 104
70 주한 외국기관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허가 및 면세 105
71 1973–74년도 주카나다대사관 업무계획 106
72 1974년도 주미국대사관 업무계획 107
73 한국의 대공산권 외교 장기대책 108
74 국제기구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 및 한국의 입장 109
75 한국의 대일본 외교정책 110
76 일본 고무협회주최 연구발표회 한국대표 참석문제 111
77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정책 112
78 중동전에 대한 한국의 입장 114
79 한국의 대구주 외교정책 115
80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116
81 미국의 대한정책 117
82 소련 · 중국(구 중공)의 남북한 관계 현황 119

83 소련의 대한반도 태도 : 언론보도 분석 120
84 일본의 대외정책 121
85 미국의 대외정책 122
86 Nixon, Richard 미국 대통령의 1973년도 외교 교서 123
87 Rogers, William P. 미국 국무장관의 1972년도 외교정책보고서 124
88 Phnompenh(캄보디아)시 비행금지구역 통보 125
89 한 · 중앙아프리카 정무일반 126
90 한 · 이스라엘 정무일반 127
91 한 · 일본 정무일반 128
92 한 · 케냐 정무일반 129
93 한 · 라이베리아 정무일반 130
94 이창희 주멕시코대사 · Rabasa 멕시코 외무장관간의 면담록 131
95 한 · 스리랑카 정무일반 133
96 한 · 토고 정무일반 134
97 트리니다드토바고의 대한국 농산품 기증 135
98 한 · 미국 정무일반 136
99 함영훈 주싱가포르총영사 관할국 브루나이 출장, 1973.6.16.–19. 138
100 안진생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대사에 대한 주재국 출국요청 사건 139
101 Angome–Minso, Philippe 대만(구 중국)상주 주한 가봉대사 방한, 1973.5.9.–12. 140
102 김동성 주아르헨티나대사 겸임국 파라과이 출장, 1973.6.25.–28. 141
103 최운상 주Cairo 총영사 수단 방문, 1973.8.4.–10. 142
104 대동구권 외교관 직접 접촉 143
105 이창희 주멕시코대사 겸임국 출장 144
106 노석찬 주브라질대사 겸임국 출장 145
107 호주 · 중국(구 중공) 관계 146
108 대만(구 중국) · 중국(구 중공) 관계 148
109 일본 · 대만(구 중국) 관계 149
110 대만(구 중국) · 소련 관계 150
111 카나다 · 중국(구 중공) 관계 151
112 프랑스 · 중국(구 중공) 관계 152
113 Chi Peng–fei 중국(구 중공) 외교부장 이란 방문, 1973.6.14.–16. 153
114 일본 · 중국(구 중공) 관계 154
115 파키스탄 · 중국(구 중공) 관계 156
116 스페인 · 중국(구 중공) 관계 157
117 중국(구 중공) · 소련 관계 158
118 미국 · 중국(구 중공) 관계 159
119 미국 · 쿠바 관계 161
120 이집트 · 리비아 관계 162
121 이집트 · 소련 관계 163
122 동 · 서독 기본조약 체결 164
123 독일의 헝가리 및 불가리아와의 외교관계 수립, 1973.12.20. 165
124 Yumjagiin Tsedenbal 몽고 수상 인도 방문, 1973.2.23.–3.1. 166
125 일본 · 소련 관계 167

126 다나카(田中) 일본 수상 구주 및 소련 순방, 1973.9.26.–10.10. 169
127 다나카(田中) 일본 수상 미국 방문, 1973.7.31.–8.1. 171
128 일본 · 미국 관계 173
129 일본 · 월맹 관계 175
130 파키스탄 · 미국 관계 176
131 Brezhnev, Leonid I. 소련 공산당 서기장 독일 방문, 1973.5.18.–22. 177
132 Brezhnev, Leonid I. 소련 공산당 서기장 미국 방문, 1973.6.16.–25. 178
133 미국의 캄보디아(구 크메르) 사태 개입 179
134 Kissinger, Henry 미국 국무장관 중국(구 중공) 방문 181
135 한 · 알제리 관계개선 182
136 국교수립 – 방글라데시 183
137 한 · 중국(구 중공) 관계개선 185
138 국교수립 – 핀란드 186
139 국교수립 – 인도 188
140 국교수립 – 인도네시아 189
141 한 · 소련 관계개선을 위한 외교관 접촉 191
142 Statskevich, Nikolai 주스웨덴 소련 참사관을 통한 한 · 소련 관계개선계획 192
143 주 캄보디아(구 크메르)대사관 비상철수 계획 193
144 주차드대사관 설치계획 194
145 재외공관 설치 – 가봉 195
146 재외공관 설치 – Berlin(독일) 총영사관 196
147 재외공관 설치 – 그리스 197
148 주가이아나대사관 설치계획 198
149 재외공관 설치 – 인도네시아 199
150 재외공관 설치 – 나하(오키나와, 일본) 영사관 200
151 재외공관 설치 – 라이베리아 201
152 재외공관 설치 – 파나마 202
153 재외공관 설치 – 사우디아라비아 203
154 재외공관 설치 – 세네갈 204
155 재외공관 설치 – Las Palmas(스페인) 영사관 205
156 재외공관 설치 – 토고 206
157 재외공관 설치 – 베네수엘라 207
158 중남미지역 재외공관 관할구역 변경 208
159 주한공관 설치 – 카나다 209
160 주한공관 설치 – 인도네시아 210
161 주한공관 설치 – 스페인 211
162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장래에 관한 보고서 212
163 ASPAC 장래에 관한 회원국의 태도 213
164 ASEAN(동남아국가연합) 외무장관회의 214
165 ASPAC 상설위원회(1973년도) 1–2차. Bangkok 215
166 ASPAC 과학기술 등록처 장래문제 216
167 ASPAC 과학기술 등록처 회의. Canberra(호주) 217
168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경제협력센터 집행이사회 회의, 제3차. Bangkok, 1973.2.28. 218

169 ASPAC 사회문화센터 실무회의, 제30-32차. 서울 219
170 ASPAC 사회문화센터 장래문제 220
171 ASPAC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임시회의, 제15차. 서울, 1973.2.9. 221
172 ASPAC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임시회의, 제16-17차. 서울 222
173 ASPAC 식량가공센터 설립 전문가회의. Manila, 1973.1.16.-18. 223
174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Copenhagen(덴마크) 1973.12.14.-15. 224
175 EC 아주지역담당국장 및 실무자회의 225
176 아랍정상회담, 제6차. Algier(알제리) 1973.11.26.-28. 226
177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회의. Addis Ababa(이디오피아) 227
178 OCAM(아프리카 · 말라가시 공동기구) 정상회담. Port-Louis(모리셔스) 1973.5.3.-6. 228
179 프랑스 · 아프리카 정상회담, 제1차. Paris, 1973.11.13.-14. 229
180 신생독립국 승인 - 바하마 230
181 신정부 승인 - 칠레 231
182 동백림 사건. 전14권. V.1 훈령 및 보고 - 독일 관련자, 1967 232
183 동백림 사건. 전14권. V.2 훈령 및 보고 - 독일 관련자, 1968 235
184 동백림 사건. 전14권. V.3 경위보고서, 1967-68 237
185 동백림 사건. 전14권. V.4 프랑스 · 스위스 관련자, 1967-71 238
186 동백림 사건. 전14권. V.5 대법원 판결문, 1968-69 240
187 동백림 사건. 전14권. V.6 재항소심 판결문, 1968 241
188 동백림 사건. 전14권. V.7 관련자 귀환문제 및 재판관련 사항, 1967-70 242
189 동백림 사건. 전14권. V.8 국내 조치, 1967-69 243
190 동백림 사건. 전14권. V.9 언론보도, 1967-69 245
191 동백림 사건. 전14권. V.10 진정서, 1967-70 246
192 동백림 사건. 전14권. V.11 친서, 1967-69 248
193 동백림 사건. 전14권. V.12 독일특사 방한, 1969.1.13.-18. 249
194 동백림 사건. 전14권. V.13 기타, 1967-68 251
195 동백림 사건. 전14권. V.14 박[redacted], 김[redacted] 구명운동, 1969-73 252
196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253
197 마나슬루 등반대 사고처리 및 네팔인 셀파보상금 지급 255
198 영국인([redacted]) 금괴 밀수사건 256
199 VOA(미국의 소리) 방송시설 한국 이전문제 257
200 주월한국군의 대월남 민간인 관계 258
201 김동조 주미국대사 연설문 259
202 주한프랑스대사 및 대사관원 면담록 260
203 바티칸주재 외교단의 신년 하례식 자료 261
204 주한미국대사 및 공사와의 면담록 262
205 Habib, Philip C. 주한 미국대사 연설문 263
206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7차. 동경, 1973.12.26.-27. 전5권. V.1 사전교섭 264
207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7차. 동경, 1973.12.26.-27. 전5권. V.2 본회의 266
208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7차. 동경, 1973.12.26.-27. 전5권. V.3 결과보고 및 언론반응 267
209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7차. 동경, 1973.12.26.-27. 전5권. V.5 자료 268
210 월남에서의 휴전보장 및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 회의. Paris. 1973.2.26.-3.2. 269
211 공관장회의, 1973년도 - 미주 및 구주지역. 서울, 1973.1.25.-30. 전3권. V.1 기본계획 270

212 공관장회의, 1973년도 – 미주 및 구주지역. 서울, 1973.1.25.–30. 전3권. V.2 활동사항 271
213 공관장회의, 1973년도 – 미주 및 구주지역. 서울, 1973.1.25.–30. 전3권. V.3 언론보도 및 자료 272
214 공관장회의, 1973년도 – 아주 및 아프리카 · 중동지역. 서울, 1973.2.7.–10. 전2권. V.1 기본계획 273
215 공관장회의, 1973년도 – 아주 및 아프리카 · 중동지역. 서울, 1973.2.7.–10. 전2권. V.2 결과보고 274
216 국제학술회의, 제6차. 서울, 1973.7.10.–13. 275
217 한 · 일본 협력위원회 합동상임위원회 276
218 Thieu, Nguyen Van 월남 대통령 방한, 1973.4.11.–12. 277
219 김종필 국무총리 일본 방문 278
220 김종필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73.5.21.–6.9. 전3권. V.1 사전교섭 I 279
221 김종필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73.5.21.–6.9. 전3권. V.2 사전교섭 II 280
222 김종필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73.5.21.–6.9. 전3권. V.3 결과보고 281
223 Ramgoolam, Seewoosagur 모리셔스 수상 방한, 1973.8.18.–22. 283
224 김용식 외무장관 호주, 뉴질란드 방문, 1973.5.13.–18. 284
225 김용식 외무장관 멕시코 및 브라질 방문, 1973.8.1.–7. 전2권. V.1 멕시코 286
226 김용식 외무장관 멕시코 및 브라질 방문, 1973.8.1.–7. 전2권. V.2 브라질 287
227 김용식 외무장관 독일 · 영국 및 미국 순방, 1973.2.12.–3.2. 전5권. V.1 독일 기본문서집 288
228 김용식 외무장관 독일 · 영국 및 미국 순방, 1973.2.12.–3.2. 전5권. V.2 독일 자료집 289
229 김용식 외무장관 독일 · 영국 및 미국 순방, 1973.2.12.–3.2. 전5권. V.3 영국 기본문서집 290
230 김용식 외무장관 독일 · 영국 및 미국 순방, 1973.2.12.–3.2. 전5권. V.4 영국 자료집 291
231 김용식 외무장관 독일 · 영국 및 미국 순방, 1973.2.12.–3.2. 전5권. V.5 미국 및 종합보고서 292
232 김용식 외무장관 일본 방문, 1973.4.13.–18. 293
233 김용식 외무장관 구주 및 튀니지 순방, 1973.8.8.–15. 294
234 윤석헌 외무차관 중남미 순방, 1973.3.18.–4.3. 295
235 Potolot, Joseph 중앙아프리카 외무장관 방한, 1973.3.13.–22. 297
236 Malik, Adam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방한, 1973.6.5.–9. 299
237 Kissinger, Henry A.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73.11.16. 300
238 Rogers, William P.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73.7.18.–20. 301
239 Nguza Karl I Bond 자이르 외무장관 방한, 1973.11.13.–16. 302
240 특별사절단 아프가니스탄 · 스리랑카 방문, 1973.11.1.–12. 303
241 특별사절단 요르단 방문, 1973.11.11.–17. 304
242 특별사절단 사우디아라비아 · 쿠웨이트 방문, 1973.12.11.–24. 305
243 특별사절단 르완다 방문, 1973.3.27.–30. 306
244 특별사절단 아프리카지역 순방, 1973.4.15.–5.18. 307
245 특별사절단 아프리카지역 순방, 1973.7.24.–8.8. 308
246 특별사절단 아주 순방, 1973.8.18.–29. 309
247 친선사절단 동남아 순방, 1973.4.8.–29. 310
248 특별사절단 서남아 및 중동 순방, 1973.8.12.–29. 311
249 함병춘 특사(대통령 정치담당특별보좌관) 구주 순방, 1973.7.5.–22. 313
250 친선사절단 중미 순방, 1973.8.21.–10.19. 314
251 친선사절단 중남미지역 순방, 1973.8.12.–28. 315
252 특별사절단 동부아프리카지역 순방, 1973.7.21.–8.18. 316
253 특별사절단 동부아프리카지역 순방, 1973.10.28.–11.11. 317
254 특별사절단 서부아프리카지역 순방, 1973.3.22.–4.16. 318

255 특별사절단 서부아프리카지역 순방, 1973.4.20.–5.16. 319
256 특별사절단 서부아프리카지역 순방, 1973.7.19.–8.16. 320
257 특별사절단 서부아프리카지역 순방, 1973.10.29.–11.17. 321
258 장상문 특사(외무차관보) 북구 순방, 1973.2.8.–28. 322
259 함병춘 특사(대통령 정치담당 특별보좌관) 북구 순방 323
260 Sak Sutsakhan 캄보디아(구 크메르) 특사 방한 325
261 국회의원 대만(구 중국) 방문 326
262 정일권 국회의장 구주 및 이란, 이디오피아 순방, 1973.4.12.–29. 327
263 국회의원단 미국 방문, 1973.7.23.–24. 328
264 국회의원단 동남아 순방, 1973.7.25.–8.3. 329
265 국회의원단 미주지역 순방, 1973.7.6.–28. 330
266 Marcilio, Flavio 브라질 하원의장 및 의원단 방한, 1973.7.6.–10. 331
267 Cacua Prada, Antonio 콜롬비아 상원의원 방한, 1973.10.15.–21. 332
268 일본 민사당 의원단 방한 333
269 쿠웨이트 국회의원 방한 334
270 Sheikh Pierre Gemayel 레바논 사회민주당 당수 방한, 1973.6.7.–14. 335
271 Youssef K. Hammoud 레바논 국회의원 방한, 1973.8.1.–3. 336
272 Avci, Sabit O. 터키 하원의장 방한, 1973.5.28.–6.3. 337
273 미국 국회의원 방한 338
274 Sanguinetti, Julio Maria 우루과이 하원의원 방한, 1973.4.19.–23. 340
275 한 · 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 341
276 한 · 일본 의원간친회 총회, 제2차. 동경, 1973.6.12.–13. 342
277 한 · 영국 의원친선협회 343
278 김동휘 외무부 미주국장 아르헨티나 및 칠레 방문, 1973.8.8.–10. 344
279 이병희 제1무임소장관 이란 및 쿠웨이트 방문, 1973.11.24.–30. 345
280 특별교섭단 라오스 방문, 1973.4.25.–5.11. 346
281 지성구 외무부 아주국장 동남아 순방, 1973.3.18.–23. 347
282 특별사절단 중동 순방, 1973.4.21.–5.6. 348
283 특별사절단 중동 순방, 1973.7.21.–8.3. 350
284 특별사절단 중동 순방, 1973.10.24.–11.8. 351
285 김창훈 외무부 구아국장 서부아프리카 지역 순방, 1973.4.23.–5.10. 353
286 주Montreal(카나다) 명예영사 방한 354
287 Arana Espāna, Carlos V. 과테말라 대통령 군사담당비서관 및 Pellecer, Luis 전신전화공사 부사장 방한, 1973.5.5.–12. 355
288 Moertopo, Ali 인도네시아 대통령 정치담당 보좌관 방한, 1973.11.6.–9. 356
289 Aduko, Lous-Antoine 코트디부아르 외무부 정무국장 방한, 1973.7.22.–27. 357
290 Aduko, Lous-Antoine 코트디봐르 외무성 정무국장 방한, 1973.7.22.–27. 358
291 Castro Valle, Alfonso 주터키 멕시코대사 방한, 1973.9.7.–12. 359
292 Burn, Bue 노르웨이 외무성 경제국장 방한, 1973.9.15.–19. 360
293 Djafalo, Albert Alidou 토고 보건장관 방한, 1973.11.26.–30. 361
294 미국 국무부 인사 방한 362
295 미국 국무부 동부아시아 · 태평양담당 부차관보 방한 364
296 미국지역 명예영사 방한, 1973.9.30.–10.5. 365

297 유재흥 국방장관 터키 수립 50주년 기념식 참석, 1973.10.26.–11.8. 366
298 정일영 주프랑스대사 Gustaf VI, Adolf 스웨덴 국왕 장례식 참석, 1973.9.25. 367
299 김종필 국무총리 Truman, Harry S. 미국 대통령 추도식 참석, 1973.1.3.–6. 368
300 정일권 전 국무총리 Johnson, Lyndon B. 미국 대통령 장례식 참석, 1973.1.24.–26. 369
301 북한의 대외정책 370
302 북한 · 아르헨티나 관계 371
303 북한 · 호주 관계 373
304 북한 · 오스트리아 관계 375
305 북한 · 방글라데시 관계 376
306 북한 · 벨기에 관계 377
307 북한 · 바레인 관계 378
308 북한 · 불가리아 관계 379
309 북한 · 미얀마(구 버마) 관계 380
310 북한 · 보츠와나 관계 381
311 북한 · 베넹(구 다호메이) 관계 382
312 북한 · 콩고 관계 383
313 북한 · 칠레 관계 384
314 북한 · 콜롬비아 관계 385
315 북한 · 카메룬 관계 386
316 북한 · 카나다 관계 387
317 북한 · 중국(구 중공) 관계 388
318 북한 · 덴마크 관계 389
319 북한 · 에콰도르 관계 390
320 북한 · 이집트 관계 391
321 북한 · 적도기네 관계 392
322 북한 · 이디오피아 관계 393
323 북한 · 핀란드 관계 394
324 북한 · 프랑스 관계 395
325 북한 · 감비아 관계 396
326 북한 · 독일 관계 397
327 북한 · 가이아나 관계 398
328 북한 · 아이슬란드 관계 399
329 북한 · 인도 관계 400
330 북한 · 이란 관계 401
331 북한 · 이탈리아 관계 403
332 북한 · 일본 관계 404
333 일본 · 북한 기자교류 406
334 일본 · 북한 체육교류 407
335 북한 · 자메이카 관계 408
336 북한 · 케냐 관계 409
337 북한 · 쿠웨이트 관계 410
338 북한 · 룩셈부르크 관계 411
339 북한 · 리비아 관계 412

340 북한 · 말레이시아 관계 413
341 북한 · 마다가스카르(구 말라가쉬) 관계 414
342 북한 · 모로코 관계 415
343 북한 · 모리셔스 관계 417
344 북한 · 멕시코 관계 418
345 북한 · 네팔 관계 419
346 북한 · 노르웨이 관계 420
347 북한 · 니제르 관계 421
348 북한 · 뉴질란드 관계 422
349 북한 · 파키스탄 관계 423
350 북한 · 파나마 관계 424
351 북한 · 페루 관계 425
352 북한 · 르완다 관계 426
353 북한 · 스웨덴 관계 427
354 북한 · 스리랑카 관계 428
355 북한 · 세네갈 관계 429
356 북한 · 소말리아 관계 430
357 북한 · 스페인 관계 431
358 북한 · 스와질란드 관계 432
359 북한 · 스위스 관계 433
360 북한 · 토고 관계 434
361 북한 · 튀니지 관계 435
362 북한 · 터키 관계 436
363 북한 · 탄자니아 관계 437
364 북한 · 우간다 관계 438
365 북한 · 영국 관계 439
366 북한 · 소련 관계 440
367 미국의 북한지역 여행 제한조치 연장 441
368 북한 · 미국 관계 442
369 북한 ·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관계 443
370 북한 · 우루과이 관계 444
371 북한 · 구주 관계 445
372 북한 · 잠비아 관계 446
373 북한 · 자이르 관계 447
374 북한 대표단 일본 방문 448
375 북한 만수대예술단 일본 방문, 1973.7.30.–[9.30.] 450
376 북한사절단 아프리카지역 순방 451
377 북한 인사 구주지역 순방 452
378 북한사절단 중남미지역 순방 453
379 일본 주요 대표단 북한 방문 454
380 미국 언론인 북한 방문 455
381 북한 · 일본 경제 관계 456
382 일본 · 북한간 직통 전화 회선 설치 추진 458

383 일본의 대북한 플란트 수출 및 수은(수출입은행)자금 사용승인 문제 459
384 북한의 '유로' 달러(구주통화) 기채 활동 461
385 북한 일반 462
386 남북대화 463
387 남북 적십자회담 본회담, 제5-7차 464
388 외교단에서의 적성국 대사에 의한 차별대우 문제 465
389 한 · 동구권 인사교류 현황 466
390 외교관 등 직무수행 특수지침의 개정 467
391 대소련 및 동구권 관계개선 방안 469
392 동구권과의 Contact Point 개설 470
393 공산권여행 - 중국(구 중공) 472
394 조광제 주네덜란드대사관 참사관의 체코슬로바키아 방문 문제 473
395 공산권여행 허가 - 소련 474
396 공산권여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476
397 공산권여행 허가 - 동구 477
398 비동맹 정상회의, 제4차. Algiers(알제리) 1973.9.5.-9. 전3권. V.1 기본대책 478
399 비동맹 정상회의, 제4차. Algiers(알제리) 1973.9.5.-9. 전3권. V.2 우리입장 지지교섭 479
400 비동맹 정상회의, 제4차. Algiers(알제리) 1973.9.5.-9. 전3권. V.3 회의경과 481
401 국군현대화 촉진방안 (군원이관) 483
402 주월남 한국군 철수 484
403 일본 · 미국 안보협력 486
404 미국 대외방위공약 487
405 미국 대통령의 전쟁수행권 법안 의회 심의 488
406 청와대 안보정세 보고회의 자료 490
407 한국 안보관계 자료 491
408 미국의 대한 군사지원 및 잉여 방위물자 예치금 청구 492
409 미국 FMS 차관에 의한 대여함정 기간연장 및 구매 493
410 한 · 미국간의 주월남한국군 추가경비 청산문제 494
411 주한미군 철수(감축) 및 병력 문제 495
412 주한미군 병력 현황 497
413 주한미군 철수(감축) 498
414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각료이사회 500
415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501
416 소련의 아시아 집단안보 구상 502
417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일반 503
418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1차 504
419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2-83차 505
420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4-85차 506
421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6차 507
422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7차 508
423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8차 509
424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9-90차 510
425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511

426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 한 · 미국 친선협회 512
427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 주한미군 도난 및 암거래 방지 513
428 SOFA 주한미군의 군표 사용금지 515
429 SOFA 주한미군 군납계약 문제 516
430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임시분과위원회–주한미군내에서의 인종차별 및 분규 518
431 SOFA 주한미군 · 관계자의 사유차량 등록 및 공용차량의 번호판 발급문제 520
432 SOFA 주한미군의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사용 단속문제 521
433 주대만(구 중국) 미군 철수문제 522
434 주태국 미군 철수 523
435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시위원회 관계 524
436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334–340차 526
437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341–345차 528
438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346–347차 529
439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회의록, 제409–420차 530
440 중립국 감시위원단 동향 531
441 중립국 감시위원단 스위스대표의 DMZ(비무장지대) 비무장화 제의 533
442 귀화 일본인 사와모또([redacted]) 간첩사건 534
443 북한의 도발사건 535
444 북한의 서해안 5개 도서 접속 수역 침범 사건, 1973.11.19.–12.19. 전2권. V.1 기본문서 536
445 북한의 서해안 5개 도서 접속 수역 침범 사건, 1973.11.19.–12.19. 전2권. V.2 자료집 537
446 Stilwell, Richard G. 주한유엔군사령관 임명, 1973.8.1. 538
447 한신 합참의장 남미 순방, 1973.4.2.–17. 539
448 Currea Cubides, Hernando 콜롬비아 국방장관 방한, 1973.10.14.–17. 540
449 Almgren, Carl E. 스웨덴 육군참모총장 방한, 1973.2.28.–3.4. 541
450 Guweddeko, Smurts 우간다 공군 사령관 방한, 1973.9.28.–10.3. 542
451 미국 안보관계 인사 방한 543
452 주한미군 지진연구시설 부분 기밀해제 및 공개문제 544
453 MBFR(동서상호균형감군) 회의, Vienna 545
454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대책 546
455 한국의 유엔 가입문제 547
456 동 · 서독 유엔가입 548
457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1 기본대책 I : 1972.10–73.2 549
458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2 기본대책 II : 1973.3–6 550
459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3 기본대책 III : 1973.7 551
460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4 기본대책 IV : 1973.8 552
461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5 기본대책 V : 1973.9 553
462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6 대표단 구성 및 본교섭 훈령 554
463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7 한국문제 토의 I : 1973.9–10 555
464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8 한국문제 토의 II : 1973.10 556
465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9 한국문제 토의 III : 1973.11–12 557
466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10 북한, 공산측 동향 558
467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11 연설문 559
468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12 Memorandum 560

469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13 결과보고 · 막후교섭일지 및 각국 반응 · 언론보도 561
470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14 국가별교섭 I : 아주지역 562
471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15 국가별교섭 II : 미주지역1 563
472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16 국가별교섭 III : 미주지역2 564
473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17 국가별교섭 IV : 미주지역3 565
474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18 국가별교섭 V : 구주지역1 566
475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19 국가별교섭 VI : 구주지역2 567
476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20 국가별교섭 VII : 중동지역 568
477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21 국가별교섭 VIII : 아프리카지역1 569
478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22 국가별교섭 IX : 아프리카지역2 570
479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23 국가별교섭 X : 아프리카지역3 571
480 주유엔 북한대표부 설치 572
481 Waldron-Ramsey, Waldo E. 주유엔 바베이도스대사 방한, 1973.5.26.–30. 573
482 Molina, Jose Luis 주유엔 코스타리카 대사 방한, 1973.5.14.–18. 574
483 Galindo Pohl, Reynaldo 주유엔 엘살바도르대사 방한, 1973.5.22.–26. 575
484 Martinez Ordonez, Ingeniero R. 주유엔 온두라스대사 방한, 1973.4.23.–27. 576
485 요시다 나가오(吉田長雄) 주유엔 일본공사 방한, 1973.1.16.–19. 577
486 Molapo, Mooki V. 주유엔 레소토대사 방한, 1973.4.9.–13. 578
487 Shailendra Kumar Upadhyay 주유엔 네팔대사 방한, 1973.6.11.–16. 579
488 Diallo, Abdoulaye 주유엔 니제르대사 방한, 1973.6.29.–7.4. 580
489 Malinga, Norman M. 주유엔 스와질란드대사 방한, 1973.5.21.–25. 581
490 Yaguibou, Telesphore A. 주유엔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대사 방한, 1973.8.17.–21. 582
491 Ipoto 주유엔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대사 방한 초청계획 583
492 유엔 한국협회 584
493 제28차 유엔의 날 기념메세지 585
494 유엔공채 원리금 상환액 수령 586
495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아시아 미곡 무역기금 한국가입 검토 587
496 ECAFE 총회, 제29차. 동경, 1973.4.11.–23. 588
497 북한의 ECAFE 가입 문제 589
498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회의, 제13차. Geneva, 1973.8.21.–9.11. 590
499 UNCTAD/국가의 경제적 권리의무헌장 제정에 관한 작업단회의, 제1–2차. Geneva 591
500 UNCTAD/국제일관수송 정부간 준비그룹 회의, 제1차. Geneva, 1973.10.29.–11.2. 592
501 UNCTAD/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회의, 제6차. Geneva, 1973.7.3.–13. 593
502 UNCTAD/원산지 규정에 관한 작업단회의, 제4차. Geneva, 1973.11.5.–9. 594
503 UNCTAD/제품위원회 회의, 제6차. Geneva, 1973.8.7.–17. 595
504 UNCTAD/특혜특별위원회 회의, 제5차. Geneva, 1973.4.3.–13. 596
505 북한의 UNCTAD 가입, 1973.7.24. 597
506 UNCTAD/호주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598
507 UNCTAD/오스트리아의 GSP 599
508 UNCTAD/덴마크의 GSP 600
509 UNCTAD/핀란드의 GSP 601
510 UNCTAD/일본의 GSP 602
511 UNCTAD/노르웨이의 GSP 603

512 UNCTAD/스웨덴의 GSP 604
513 UNCTAD/영국의 GSP 605
514 UNCTAD/미국의 GSP 606
515 한표욱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상주대표 임명, 1973.6.20. 607
516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DB(공업개발이사회) 상설위원회 회의, 제3차. Vienna, 1973.12.3.–11. 608
517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 회의, 제15차. New York, 1973.1.22.–29. 609
518 UNEP(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회 회의, 제1차. Geneva, 1973.6.12.–22. 610
519 UNICEF(유엔아동기금) 611
520 UNFPA(유엔인구활동기금) 자금 지원에 의한 가족계획사업 612
521 한 · UNV(유엔봉사단) 관계 613
522 WFP/IGC(세계식량계획 정부간위원회) 회의, 제23–24차. Rome 614
523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총회, 제19차. New York, 1973.2.27.–3.2. 615
524 ICAO 특별총회, 제20차 및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 Rome, 1973.8.28.–9.21. 616
525 ICAO 법률위원회 특별회의, 제20차. Montreal, 1973.1.9.–30. 617
526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총회, 제8차. London, 1973.11.13.–23. 618
527 해양오염에 관한 국제회의. London, 1973.10.8.–11.2. 619
528 IMCO 법률위원회 파선제거에 관한 작업반회의, 제1차. London, 1973.12.3.–7. 620
529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17차. Vienna, 1973.9.18.–26. 621
530 방글라데시의 WMO(세계기상기구) 가입 지지요청 622
531 WMO/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아시아 및 남서부태평양지역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기상 업무의 역할에 관한 지역회의. Bangkok(태국) 1973.8.14.–21. 623
532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특별총회, 제3차. Paris, 1973.10.23.–26. 624
533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국 선출제도에 대한 각국의견 625
534 FAO 총회, 제17차. Rome, 1973.11.10.–29. 전2권. V.1 기본문서 626
535 FAO 총회, 제17차. Rome, 1973.11.10.–29. 전2권. V.2 이사국 입후보 지지요청 627
536 FAO 국제식물보호협정에 관한 특별협의회. Rome, 1973.7.9.–13. 628
537 FAO 수산 관리 및 발전에 관한 기술회의, 제2차. Vancouver(카나다) 1973.2.13.–23. 629
538 FAO/CCP(상품문제위원회) 담배에 관한 특별정부협의회 회의. Izmir(터키) 1973.11.5.–10. 630
539 FAO/CCP 정부간 곡물연구단 회의, 제16차. Rome, 1973.10.1.–5. 631
540 FAO/CCP 정부간 미곡연구단 회의, 제17차. New Delhi(인도) 1973.4.23.–27. 632
541 FAO/CCP 정부간 유실유지 연구단 회의, 제7차 및 통계분과위원회 회의, 제4차. Rome, 1973.2.6.–16. 633
542 FAO/CCP 회의 참가계획 634
543 FAO/COFI(수산위원회) 회의, 제8차 및 수산 교육 · 훈련에 관한 소위원회 회의, 제3차. Rome, 1973.4.10.–17. 635
544 FAO 비료에 관한 특별정부협의회. Rome, 1973.10.22.–24. 636
545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26차. Geneva(스위스) 1973.5.7.–26. 전6권. V.1 기본문서 637
546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26차. Geneva(스위스) 1973.5.7.–26. 전6권. V.2 북한 가입 저지교섭 I : A–I 638
547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26차. Geneva(스위스) 1973.5.7.–26. 전6권. V.3 북한 가입 저지교섭 II : J–S 639
548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26차. Geneva(스위스) 1973.5.7.–26. 전6권. V.4 북한 가입 저지교섭 III : T–Z 640
549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26차. Geneva(스위스) 1973.5.7.–26. 전6권. V.5 북한 가입 저지교섭 IV : 제네바 및 UN(유엔)대표부 641
550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26차. Geneva(스위스) 1973.5.7.–26. 전6권. V.6 북한 가입후 각국 반응 및 언론보도 642
551 WHO 서태평양지역회의, 제24차. Wellington(뉴질란드) 1973.8.28.–9.5. 643
552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제58차. Geneva, 1973.6.6.–27. 644

553 북한의 ILO(국제노동기구) 가입문제 645
554 각국의 ITU(국제전기통신연합) 가입 646
555 ITU 전권위원회. Malaga-Torremolinos(스페인) 1973.9.14.-10.26. 전2권. V.1 기본문서 647
556 ITU 전권위원회. Malaga-Torremolinos(스페인) 1973.9.14.-10.26. 전2권. V.2 각국의 입후보 지지 요청 648
557 UN(유엔) 인권관계 제 결의에 대한 한국 입장 및 조치사항 649
558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타) 총회, 제7차. Rome, 1973.4.9.-12. 650
559 IOE(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제41차. Paris, 1973.5.21.-26. 651
560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 제8차. Paris, 1973.11.15.-17. 652
561 ICO 해양과학훈련, 교육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실무단회의, 제1차. Paris, 1973.3.7.-13. 653
562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CCOP (아시아천해저광물자원공동탐사 조정위원회) 회의. Bangkok, 1973.9.10.-29. 654
563 SEAMEO(동남아문교장관기구) 가입검토 655
564 SEAMEO 회의 656
565 ASCA(아시아과학협력협회) 회의, 제2차. 동경, 1973.3.8.-15. 657
566 각국의 AOPU(아시아대양주우편연합) 가입 658
567 AOPU(아시아 · 대양주우편연합) 집행위원회 개최계획 659
568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운영협정 서명자회의, 제1차. Washington, D.C., 1973.11.12.-16. 660
569 각국의 WTO(세계관광기구) 규정 승인 661
570 IUOTO(국제관설관광기구연맹) 총회, 제23차. Caracas(베네수엘라) 1973.10.1.-10. 662
571 박동묘 AARRO(아프리카 · 아시아농촌재건기구) 극동지역 서울사무소 명예대표 임명, 1973.9.7. 663
572 APO(아시아생산성기구) 생산성 측정에 관한 Workshop. Singapore, 1973.6.25.-29. 664
573 APO 이사회, 제15차. Saigon, 1973.5.8.-10. 665
574 APO 한국 대표이사 교체 666
575 ICMMP(국제군진의학 및 약학위원회) 총회, 제21차. Bucarest(루마니아), 1973.5.21. 667
576 APU(아시아의원연맹) 제9차 총회 및 제14-15차 이사회 668
577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제112차, Abidjan(코트디봐르) 1973.4.23.-28. 전4권. V.1 사전준비 및 북한 가입 저지 대책 수립 669
578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제112차, Abidjan(코트디봐르) 1973.4.23.-28. 전4권. V.2 북한가입 저지교섭 대표단 파견 670
579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제112차, Abidjan(코트디봐르) 1973.4.23.-28. 전4권. V.3 북한가입 저지 국별교섭 671
580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제112차, Abidjan(코트디봐르) 1973.4.23.-28. 전4권. V.4 회의 결과보고 672
581 IPU 이사회, 제113차. Geneva(스위스) 1973.10.22.-26. 673
582 IPU 구주협력 및 안보회의. Helsinki(핀란드) 1973.1.26.-31. 674
583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 제42차. Vienna, 1973.10.2.-9. 675
584 아시아 승공대회, 제3회. 동경, 1973.12.26. 676
585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제7차 총회 및 제18-19차 이사회. 동경, 1973.10.23.-31. 677
586 국제에너지회의. 동경, 1973.10.29.-31. 678
587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제38차. München(독일) 1973.6.18.-30. 679
588 WEC/IEC(세계에너지회의 국제집행이사회) Buenos Aires(아르헨티나) 1973.10.1.-3. 680
589 ITTF(세계탁구연맹) 이사회 및 제32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Sarajevo(유고슬라비아) 1973.4.5.-15. 681
590 ABU(아시아방송연맹) 총회, 제10차. Jakarta(인도네시아) 1973.12.3.-6. 682
591 대한적십자사의 공산국가 관계 사람찾기문제 683
592 ICRC(국제적십자위원회)총회, 제22차. 테헤란(이란) 1973.11.8.-15. 684
593 PATA(태평양지역관광협회) 총회, 제22차. 동경, 1973.2.26.-3.1. 685
594 조약의 해석 및 공포문제 686

595 한국군 간호군속의 독일 파견을 위한 한 · 독일 국방부간의 행정합의서, 1973.10.4. 687
596 한 · 미국간의 기술자료 교환협정의 부록 서명 688
597 한국내에서 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한 · 유엔간의 협정 해석 689
598 한 · 대만(구 중국)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각서교환의 개정, 1973.7.13. 690
599 한 · 독일간의 재정원조협정 691
600 오키나와현(일본) 한국인 계절적 노무자의 소득세에 관한 조회 692
601 한 · ADB간의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협정 693
602 한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철도시설확장을 위한 차관협정 694
603 한 · IDA간의 농업육성사업을 위한 차관협정. 전2권. V.1 1968-72.5 695
604 한 · IDA간의 농업육성사업을 위한 차관협정. 전2권. V.2 1972.6월-1973 696
605 한 · ADB(아시아개발은행)간의 차관협정 697
606 한 · IFC(국제금융공사)간의 투자원본 회수에 관한 일반협정 698
607 공공직업 훈련시설을 위한 한 · ADB(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차관협정에 대한 해석 699
608 통신시설 확장을 위한 한 · 일본간의 차관협정 700
609 한 · 일본간의 농수산개발을 위한 2천만불 "엔" 차관협정의 개정 701
610 한 · 일본간의 216억엔 제2차 상품차관 및 수출산업 육성 차관협정 702
611 한 · 노르웨이간의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교환 703
612 한 · 네델란드의 국제운수 소득 상호면제협정 체결교섭 704
613 한 · 말레이시아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705
614 한 · 미국 항공협정 개정에 관한 실무자회의. Washington, D.C., 1973.12.10.-13. 706
615 한 · 미국간의 한 · 미국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제19조 제4항에 관한 해석문제 707
616 한 · 미국간의 국제우편환 교환협정 체결교섭 708
617 한 · 코트디브와르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교섭 709
618 한 · 파라과이간의 이민협정 체결교섭 710
619 한 · 영국간의 영사협정 체결검토 711
620 한 · 캄보디아(구 크메르)간의 문화협정 712
621 한 · 필리핀간의 문화협정 713
622 주한 미국평화봉사단 운영에 관한 한(과학기술처) · 미국(주한평화봉사단)간의 양해각서, 1973.6.30. 714
623 한 · 튀니지간의 의료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715
624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전2권. V.1 교섭철 716
625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전2권. V.2 체결철 717
626 1968.1.5자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 한 · 미국간의 협정에 대한 수정 협정 718
627 한 · 일본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719
628 AARRO(아프리카 · 아시아농촌재건기구) 극동사무소를 한국 서울에 설치하기 위한 한 · AARRO간의 협정. 전2권. V.1 1968-70 720
629 AARRO(아프리카 · 아시아농촌재건기구) 극동사무소를 한국 서울에 설치하기 위한 한 · AARRO간의 협정. 전2권. V.2 1971-73 721
630 [평화식량법에 의한] 한 · 미국간의 농산물 구매협정 722
631 PL480호 제1관에 의한 한 · 미국간의 농산물 도입협정 723
632 한 · 월남간의 농업기술협력약정 724
633 한 · 방글라데시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725
634 한 · 중앙아프리카간의 장기무역협정 726
635 한 · 가이아나간의 무역협정 727

636 한 · 요르단간의 무역협정 728
637 한 · 마다가스카르(구 말라가시)간의 무역협정 체결 교섭 729
638 한 · 미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의 해석 730
639 한 · 프랑스간의 한 · 프랑스 기술초급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 731
640 한 · 독일간의 부산 직업훈련소 설치에 관한 협정 수정 약정 체결 732
641 한 · 가이아나간의 경제기술협력협정 733
642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 이행에 대한 한국의 관행 734
643 주유엔 상임 옵서버대표부 및 동독 옵서버의 지위 735
644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1973.5.9. 736
645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한국가입, 1973.2.11. 전4권. V.1 양자간 교섭, 1966-70 737
646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한국가입, 1973.2.11. 전4권. V.2 양자간 교섭, 1971 738
647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한국가입, 1973.2.11. 전4권. V.3 원산지 규정, 1971-73 739
648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한국가입, 1973.2.11. 전4권. V.4 가입, 1971-73 740
649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Montreal 협약) 한국가입, 1973.9.1. 741
650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The Hague협약) 한국가입, 1973.2.17. 전2권. V.1 항공기 납치에 대한 협약 심의를 위한 전권대표자회의. Hague, 1970.12.1.-16. 742
651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The Hague협약) 한국가입, 1973.2.17. 전2권. V.2 국내조치, 1971-73 743
652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 개정의정서[50조 가항] 한국가입, 1973.1.16. 744
653 특수상용 여객선박협정 745
654 1960년도 해상에 있어서 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 1973.11.20. 746
655 여행 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가입 검토 747
656 IAEA(국제원자력기구) 규약 제6조의 개정 수락, 1973.6.1. 748
657 국제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INTELSAT 본협정) 및 동 운영협정(INSTELSAT 운영협정) 한국가입, 1973.2.12. 전4권. V.1 1차 전권회의. Washington, D.C., 1969.2.24.-3.2. 749
658 국제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INTELSAT 본협정) 및 동 운영협정(INSTELSAT 운영협정) 한국가입, 1973.2.12. 전4권. V.2 준비위원회 회의. Washington, D.C., 1969 750
659 국제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INTELSAT 본협정) 및 동 운영협정(INSTELSAT 운영협정) 한국가입, 1973.2.12. 전4권. V.3 2차 전권회의 및 실무자회의, Washington, D.C., 1970 751
660 국제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INTELSAT 본협정) 및 동 운영협정(INSTELSAT 운영협정) 한국가입, 1973.2.12. 전4권. V.4 3차 전권회의 및 협정 가입 752
661 아시아 채소연구 · 개발센터 헌장 및 동 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한국가입, 1973.1.29. 753
662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테두리내에서 국제포플러위원회를 설치하는 협약 한국가입, 1973.1.16. 754
663 각국의 영해범위 및 접속수역 등에 관한 자료 755
664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1회기. New York, 1973.12.3.-15. 전3권. V.1 사전준비, 1971-72 756
665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1회기. New York, 1973.12.3.-15. 전3권. V.2 사전준비, 1973 757
666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1회기. New York, 1973.12.3.-15. 전3권. V.3 대표임명 및 회의결과 758
667 유엔 해저위원회. New York, 1973.3.5.-4.6. 759
668 유엔 해저위원회. Geneva, 1973.7.2.-8.24. 760
669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에 관한 일본의 입장 761
670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 관련 미국의 입장 및 해양법 자료 762
671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 체결을 위한 전권대표회의. Washington, D.C., 1973.2.12-.3.2. 763
672 아이슬란드 · 영국 어업분쟁 764

673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14차. New Delhi(인도) 1973.1.10.–18. 765
674 중공 및 중국의 호칭문제 766
675 국가 또는 정부 승인(승계) 등에 관한 관행 767
676 대동구권 방송사 및 언론사 취재 · 교류 계획 768
677 주한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설치교섭 769
678 거제도 · Guam(미국)간의 자매결연 770
679 대동구권 문화교류 771
680 Moscow(모스크바) 영화제 참가 검토 772
681 Little Angels(리틀엔젤스) 대 동구권 공연 추진 773
682 Munir, Mustafa 이집트 문화성 차관보 방한, 1973.9.24.–10.5. 774
683 Westphal, Poul 덴마크 'Berlingske Tidende' 지 기자의 한국 기행문 775
684 튀니지 언론인 방한, 1973.10.5.–12. 776
685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 서울지국 설치허가 취소, 1973.8.24. 777
686 미국 Hawaii대학교 부설 한국학 연구센터 건립기금 모금 778
687 외국도서 및 교과서 등에 나타난 한국관련 왜곡사실 시정 779
688 프랑스의 프랑스어 교수 한국 파견 780
689 한 · 소련 학술교류 781
690 Ramsey, Michael 영국 Canterbury 대주교 방한, 1973.3.24.–27. 782
691 제8회 Moscow(소련) 하계 유니버시아드 한국 참가, 1973.8.15.–25. 783
692 한 · 오스트리아 협회 784
693 미얀마 · 한 협회 785
694 한 · 대만(구 중국) 문화친선협회 786
695 칠레 · 한 문화협회 창설계획 787
696 독일 · 한 협회 788
697 인도 · 한 협회 창설, 1973.3.31. 789
698 한 · 이탈리아 친선협회 창설, 1973.12.7. 790
699 한 · 일본, 일본 · 한 친선협회 791
700 한 · 룩셈부르크 친선협회 창설, 1973.10.24. 792
701 네팔 · 한 친선협회 793
702 한 · 노르웨이 협회 794
703 한 · 파키스탄 경제문화협회 창설, 1973.2.8. 795
704 한 · 폴란드 친선협회 796
705 한 · 영국 협회 797
706 한 · 아랍 친선협회 798
707 재향군인회 브라질지부 창립총회 개최, 1973.6.30. 799
708 한 · 중앙아프리카 경제협력 800
709 한 · 아이티 경제협력 801
710 한 · 네덜란드 경제협력 802
711 월남 전후 복구사업 참여 803
712 한 · 월남 경제각료회담, 제5차. 서울, 1973.10.1.–8. 804
713 한 · 독일 경제실무자회담 805
714 한 · 스페인 경제협력위원회 창립총회. 서울, 1973.10.30. 806
715 한 · 미국 협력위원회 설립 추진 807

716 아시아 노동장관회의, 제4차. 동경, 1973.10.1.–3. 808
717 동남아 경제개발 각료회의, 제8차. 동경, 1973.10.11.–13. 809
718 Granser, Günther IER(동서경제기구) 사무국장 방한, 1973.9.22.–28. 810
719 중화학공업계획 설명 대표단 일본 · 미국 및 필리핀 순방 811
720 경제사절단 미국 방문, 1973.5.21.–6.2. 812
721 경제협력조사단 중남미지역 순방, 1973.6.15.–7.10. 813
722 라오스 경제기술사절단 방한, 1973.4.24.–28. 814
723 독일 경제관계 주요인사 방한 815
724 일본 경제관계 주요인사 방한 816
725 스페인 경제관계 주요인사 방한 817
726 한국의 대차드 무상원조 818
727 한국의 대중앙아프리카 무상원조 819
728 한국의 대휘지 무상원조 820
729 한국의 대레바논 무상원조 821
730 한국의 대멕시코 콜레라 왁진 지원 822
731 한국의 대니제르 무상원조 823
732 한국의 대튀니지 무상원조 824
733 한 · 카나다 동제련소 합작건설 추진 825
734 카나다 마이크로웨이브 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 도입 826
735 영국의 공공차관 도입 827
736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 도입 교섭 828
737 구주지역 Bank Loan 도입 829
738 한 · 프랑스 기술초급대학(아주공업초급대학) 설립, 1973.4.12. 830
739 의료단 아프리카 파견 831
740 Mohammed Joukhdar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 석유담당대사 방한, 1973.9.10.–13. 832
741 한 · 카나다 원자력협력 833
742 한 · 미국 핵연료 수급협력 834
743 한 · 엘살바도르 어업협력 835
744 한 · 휘지 어업협력 836
745 특정해역에서의 일본선박의 조업 및 항해문제 838
746 한 · 페루 어업협력 839
747 한 · 세네갈 어업협력 840
748 한 · 미국 어업협력 841
749 한 · 서사모아 어업협력 842
750 한 · 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8차. 동경, 1973.7.25.–28. 전2권. V.1 기본문서 843
751 한 · 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8차. 동경, 1973.7.25.–28. 전2권. V.2 자료 844
752 한 · 호주 면양 시범목장 운영 845
753 한 · 뉴질란드 육우 시범목장 설치 846
754 IMF/IBRD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 847
755 IMF(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제도 개혁 848
756 IMF/IBRD(국제통화기금/국제부흥개발은행) 동남아그룹 Adviser 한국인 선출교섭 849
757 IMF/IBRD 총회, 제28차. Nairobi(케냐) 1973.9.24.–28. 850
758 IMF/IBRD 동남아그룹 국제통화 전문가회의, 제1–2차 851

759 한국의 IDA(국제개발협회) 자금 수혜국으로부터의 제외 852
760 ADB(아시아개발은행)에서의 중국 대표권 문제 853
761 ADB 총회, 제6차. Manila, 1973.4.26.-28. 854
762 ADB 이사회 보고서 855
76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관계자료 856
764 GATT/MTN : 수입제한조치 857
765 GATT/MTN 준비위원회 회의. Geneva 858
766 GATT/NTB(비관세장벽)문제 859
767 GATT 총회, 제29차. Geneva, 1973.11.13.-15. 860
768 GATT/MTN 각료회의. 동경, 1973.9.12.-14. 861
769 GATT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 의정서 참가국위원회 회의. Geneva 862
770 1974년 ICAC(국제면화자문위원회) 총회 한국 개최 가능성 타진 863
771 한 · 불가리아 교역 추진 864
772 한 · 쿠바 교역 추진 865
773 한 · 헝가리 교역 추진 866
774 한 · 미국간 무역균형문제 867
775 미국의 전시용 비축전략물자 판매계획 868
776 한 · 미국간 무역균형 문제 869
777 [1971.10.1자] 한 · 미국간의 인조섬유 및 모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의 시행 870
778 AID차관에 의한 미국 현미 구매 871
779 대 동구권 교역 추진 872
780 오스트리아를 통한 대동구권 교역 추진 873
781 핀란드를 통한 대동구권 교역 추진 874
782 네덜란드를 통한 대동구권 교역 추진 875
783 한 · 유고슬라비아 교역 876
784 한 · 호주 통상장관회담, 제5차. 서울, 1973.9.17.-18. 877
785 한 · 카나다 통상장관회담, [제2차]. Ottawa, 1973.11.5.-7. 878
786 한 · 뉴질란드 통상장관회담, 제5차. 서울, 1973.4.9.-10. 879
787 한 · 미국 상공장관회담, 제5차. 서울, 1973.7.19.-20. 880
788 한 · 일본 무역회담, 제10차. 동경, 1973.6.14.-15. 881
789 한 · 노르웨이 섬유쿼타회담. Oslo, 1973.3.28.-30. 882
790 한 · 필리핀 무역회담, 제5차. 서울, 1973.6.1.-8. 883
791 1973년도 경제외교위원회 회의, 제5차. 1973.7.27. 884
792 수출진흥 확대회의. 전2권. V.1 제1-5차 885
793 수출진흥 확대회의. 전2권. V.2 제6-10차 886
794 통상사절단 방글라데시 방문, 1973.4.23.-27. 887
795 통상사절단(비지니스맨단) 유고슬라비아 및 핀란드 방문, 1973.7.24.-8.10. 888
796 구매사절단 미국 방문, 1973.9.19.-10.16. 889
797 통상사절단 중동 순방, 1973.4.29.-5.20. 890
798 인도 통상사절단 방한, 1973.4.24.-28. 891
799 미국 Oregon주 민간 통상사절단 방한, 1973.10.7.-13. 892
800 Kempinaire, Andre 벨기에 대외통상장관 방한, 1973.9.17.-19. 893
801 미국 군수물자 수입 894

802 폴란드 선박도입 추진 895
803 유고슬라비아 선박도입 추진 896
804 일본 비정기여객선 유메지마루 부산 입항 문제 897
805 한 · 일본간 구해저전선 문제 898
806 한 · 일본 항공협력 899
807 한국 항구(인천항 등) 차별선임 철폐 노력 900
808 한 · 동구권 국제통신 중계선로 개설 901
809 한 · 일본 항공회담 902
810 Vienna(오스트리아) 국제박람회 참가, 1973.9.5.-9. 903
811 Plovdiv(불가리아) 국제박람회 참가, 1973.9.3-10. 904
812 Leipzig(동독)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905
813 Budapest(헝가리) 국제박람회 참가, 1973.5.18.-28. 906
814 Poznan(폴란드) 국제박람회 참가, 1973.9.23.-30. 907
815 Zagreb(유고슬라비아) 국제박람회 참가 908
816 KOTRA 해외사무소 신설 및 사무소장 파견 909
817 KOTRA 해외조직의 지위 향상 및 무역관장의 외교관여권 발급문제 910
818 Copenhagen(덴마크) KOTRA 사무소 911
819 Cairo(이집트) KOTRA 사무소 912
820 Helsinki(핀란드) KOTRA 사무소 913
821 Athens(그리스) KOTRA 사무소 914
822 Abidjan(코트디봐르) KOTRA 사무소 915
823 Kuwait(쿠웨이트) KOTRA 사무소 916
824 Oslo(노르웨이) KOTRA 사무소 917
825 Auckland(뉴질란드) KOTRA 사무소 918
826 Jeddah(사우디아라비아) KOTRA 사무소 919
827 Kinshasa(자이르) KOTRA 사무소 920
828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제23차. Wellington(뉴질란드) 1973.11.27.-12.6. 921
829 CEAO(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 회의. Abidjan(코트디봐르) 922
830 아르헨티나 정세 923
831 방글라데시 정세 925
832 미얀마(구 버마) 정세 926
833 브라질 정세 927
834 베넹(구 다호메이) 정세 928
835 캄보디아(구 크메르) 사태 929
836 칠레 정세 931
837 중국(구 중공) 국내 정세 932
838 중국(구 중공) 정세 933
839 중앙아프리카 정세 935
840 체코슬로바키아 정세 936
841 이집트 정세 937
842 기네비소 정세 938
843 이스라엘 정세 939
844 일본의 북방영토 문제 940

845 일본 정세 941
846 레바논 정세 943
847 라오스 정세 944
848 말레이시아 정세 945
849 모로코 정세 946
850 니제르 정세 947
851 오만 정세 948
852 폴란드 정세 949
853 파나마 정세 950
854 루안다 정세 951
855 스웨덴 정세 953
856 수단 정세 954
857 토고 정세 955
858 태국 정세 956
859 튀니지 정세 957
860 소련 정세 958
861 미국 정세 960
862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정세 961
863 우루과이 정세 963
864 월남전. 전3권. V.1 1-2월 964
865 월남전. 전3권. V.2 3-6월 966
866 월남전. 전3권. V.3 7-12월 968
867 월남전 종식에 관한 대책 969
868 월남전 한국군 포로 및 한국 민간인 실종자 송환문제 970
869 월남 정세. 전2권. V.1 1972.12-73.7 971
870 월남 정세. 전2권. V.2 1973.8-12 972
871 베네수엘라 정세 974
872 남로데시아 문제 975
873 잠비아 정세 976
874 FY73 미국의 대외원조법. 전2권. V.1 기본문서철 977
875 FY73 미국의 대외원조법. 전2권. V.2 자료철 979
876 공관 활동보고 - 핀란드 980
877 공관 활동보고 - Karachi(파키스탄) 출장소 981
878 공관 활동보고 - Agana(미국) 총영사관 983
879 공관 경제활동보고 - 스페인 985
880 재외국민 특별선도 대책 986
881 재일본유학생 선도관련 진정서 987
882 일본의 출입국 관리법 개정 추진자료 988
883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복지향상 문제 989
884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관련 일본 유력인사 방한초청 990
885 재일본 한국인 북한 송환 991
886 재일본 한국교육재단 설립 992
887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993

888 미국 하원의원의 재미국한국인에 대한 발언 995
889 재사할린동포 귀환관련 진정서 996
890 재사할린동포 귀환문제 997
891 재월남 민간인 철수 999
892 일본 · 조선 우호촉진 의원연맹 1001
893 재일본 한국인 [redacted] 형제 간첩사건 1002
894 재일본 반한단체 1003
895 미국내의 반한활동 1004
896 재일본 조총련계 한국인 북한 방문 1005
897 조총련 동향 1007
898 조총련계 인사 미국 방문계획 1008
899 조총련 간부명단 1009
900 브라질 잠업(양잠) 이민 추진 1010
901 칠레 꽃 재배 기술 이민. 전2권. V.1 1968-69 1012
902 칠레 꽃 재배 기술 이민. 전2권. V.2 1970-73 1014
903 대남미 이민 1016
904 한국 어선의 중국(구 중공) 어선 및 선원 구조 1017
905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1018
906 선원 기항 여행결과보고서 1019
907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 중앙회관 건립 추진 1020
908 주월남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계획 1021
909 주미국대사관 별관건물 매입 1022

부록 1023

1973년도

Cameron, Margaret K. 주Brisbane(호주) 명예영사 방한 및 활동사항

| 73-000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A-10 / 2 / 1~66(66p)

정부는 1972.12.8. 호주 주브리즈번 Mrs. M. Cameron 명예영사를 임명하고, 1973.1.3. 명예영사관을 개관함.

1. 동 신임 명예영사는 Royal Commonwealth Society 부녀위원장 및 호주-아시아협회 퀸즐랜드주 지부 창설위원을 역임하고, 영국 여왕으로부터 지역사회 활동 공헌에 따른 M.B.E.를 수훈한 바 있으며, 브리즈번 체류 한국인들의 활동을 적극 협조해 온 친한 인사임.

2. 동 명예영사관 개관에 따라 외무부는 1973.2.3. 명예영사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대통령령, 일반지침 등 관련 자료를 송부하였으며, 주호주대사는 명예영사의 1973.1~12월 월간 활동보고서를 외무부에 보고함.

3. 정부는 주호주대사의 1973.6.6. 동 명예영사 방한 및 주요 인사 예방, 산업시설 시찰 등 일정 주선 건의를 수락하여 동 명예영사는 1973.7.21.~31. 아래 일정으로 방한함.

- 외무부차관, 서울시장, 국제관광공사 총재, 상공회의소장 등 주요 인사 예방
- 울산, 포항 등 주요 산업시설 및 판문점 시찰
- KBS 방문 및 인터뷰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 Athens (그리스)

| 73-0002 |

생산연도	1964-1973
생 산 과	총무과/구주2과
MF번호	2007-1 / 16 / 1~171(171p)

1. 주그리스대사는 1964.8.18. 명예영사 임명 관련 절차 및 관할구역 등 사전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10.2. 명예영사 후보자로 양국 간 이해 증진을 위한 공헌 경력 및 제반 직무 감당 능력과 자격을 구비한 한 · 그리스 협회장인 A. Daskaroris 예비역 중장을 추천함.

2. 외무부는 1965.8.16. 동인의 동의 여부 확인을 지시한바, 주그리스대사의 본인 동의 확인에 따라 외무부는 1966.4.20. 아래와 같이 동 명예총영사를 임명함.

- 관할지역: 그리스 전역
- 소재지: 아테네
- 직무범위: 대통령령에 규정한 직무
- 경비: 대통령령에 의한 해당 경비

3. 주그리스대사는 1971.7.8. 아래 이유로 동 명예총영사의 사임을 건의함.

- 72세로 연로하여 대외활동 수행이 어렵고, 경제통상 관련 직무 수행 곤란
- 한 · 그리스협회의 내부 의견 대립
- 그리스 정부는 군정 반대자의 명예총영사 유지에 불만

4. 주그리스대사는 1971.10.14.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한 공헌에 따른 동 명예총영사의 서훈을 건의함에 따라 외무부는 12.30. 수교훈장 숭례장(3등급) 서훈 결정을 주그리스대사에게 통보하는 한편 1972.2.1. 동 명예총영사를 해임 발령함.

5. 주그리스대사는 1972.3.9. C. Georgacopoulos 그리스 적십자사 총재를 아래와 같이 후임 명예총영사로 추천함에 따라 외무부는 5.5. 동 명예총영사를 임명함.

- 그리스 군부의 존경, 정치인 및 교육자로서 각종 활동 수행
- 상주공관 개설 시까지 잠정적인 역할 담당

6. 주그리스대사는 1972.10.6. 동 명예총영사가 건강상 직무 수행이 곤란함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J. Theidirajopulos 한 · 그리스 친선협회장을 후임 명예총영사로 추천함.

- 저명한 해운회사 사장, 그리스 체육회장 등 고위직을 수행 중
- 그리스 군정과도 긴밀한 관계 유지, 한국과의 통상 진흥에도 공헌 기대

7. Georgacopoulos 명예총영사가 1973.7.26. 별세하고, 정부의 상주공관 설치지역 내 명예영사관 폐쇄 방침에 따라 주그리스 명예총영사관은 동일자로 폐쇄됨.

Strand, Jorgen B. 주Copenhagen(덴마크) 명예총영사 해임, 1973.12.31.

| 73-0003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A-10 / 3 / 1~23(23p)

1. 정부는 1973.11.1. 상주공관 설치 도시에 소재하는 명예영사관 폐쇄 방침에 따라 주덴마크대사에게 주코펜하겐 명예영사관 폐쇄 방침을 통보함.

2. 주덴마크대사는 1973.11.28. 명예영사관 존속 유지가 필요함을 건의하고, 현 Strand 명예총영사가 비사교적 성격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 희박함에 따라 부적격자로 해임하고, 후임으로 아래와 같이 Ronberg 명예영사를 임명할 것을 건의함.

- 북한과의 대치 공관임을 감안하여 친북한 단체의 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친한 세력 구축
- 주재국은 대사와 명예영사가 공존하는 것이 관례이며, 현재 21개국 대사관과 명예영사관이 공존
- 동인은 주재국 정계 및 경제계에 대한 영향력을 보유하여 통상 및 경제 협력 증대를 위한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

3. 정부는 1973.12.31. Strand 명예총영사를 해임하고 Ronberg 명예영사를 임명함.

Diaz Corona, Pedro 주Tijuana(멕시코) 명예영사 임명, 1973.12.12.

| 73-0004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A-10 / 4 / 1~42(42p)

1. 주멕시코대사는 1972.7.26. P. Diaz Corona 티후아나 한국교민회장을 주티후아나 명예영사로 임명할 것을 아래와 같이 건의함.

- 동인은 재계 저명인사로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 진흥 및 교민 보호 · 육성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티후아나 지역을 선정한 사유
  - 연간 수입 2억 달러에 달하는 주재국 유일의 자유무역지대
  - 대멕시코 한국 수출의 대부분이 통과되는 지역으로서 향후 통상 증진에 기여 예상
  - 교민 500명 이상 거주, 한국교민회관 건립 등 교포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교민 보호 필요성

2. 외무부는 1972.8.2. 주멕시코대사에게 상기 임명에 대한 주재국 정부 입장을 보고할 것을 지시함.

- 주멕시코대사는 11.3. 외무성의 영사인가장 발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헌법에 따라 주재국 하원으로부터 명예영사직 수임 허가가 필요함을 보고함.
- 주멕시코대사는 12.13. 멕시코 외무성이 동인의 한국 명예영사 임명에 이의 없음을 통보해 왔으며, 현재 주재국 의회에서 동의 절차를 진행 중임을 보고함.

3. 주멕시코대사는 1973.6.13. 상기인의 명예영사 인가장 발급을 건의하고, 11.26. 의회 동의를 거쳐 멕시코 대통령의 임명 허가를 득하였다고 보고함.

4. 외무부는 1973.12.12. 동인을 아래와 같이 주티후아나 명예영사로 임명함.

- 관할지역: 티후아나시
- 직무범위: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된 직무범위 중 관할 공관장이 위임하는 사항
- 보조경비: 대통령령에 의거 경비 지원(1973년 이후 보조금 지급)

5. 주멕시코대사는 1974.4.6. 영사 임명장 수여를 위한 티후아나 지역 출장을 통해 지방정부 요인 및 경제계 인사 등을 접촉 예정임을 보고함.

주Freetown(시에라리온) 명예총영사 임명 및 해임

| 73-0005 |

생산연도	1970-1973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A-10 / 6 / 1~80(80p)

1. 정부는 1970.4.30. 시에라리온 주프리타운 명예총영사로 [redacted]. W[redacted]를 임명하였으며, 주코트디부아르대사가 동 명예총영사관 개관식에 참석함.

2. 동 명예총영사는 무역협회의 유력 해외 수입선 초청 계획에 따라 1971.10.28.~11.3. 방한하여 외무부, 상공부, 무역협회,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수출공업단지를 방문한바, 외무부는 1971.11.5. 주코트디부아르대사에게 동 명예총영사 방한 시 아래 요청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검토를 지시함.
   - ❋ 치과 의사 1명 파견
   - ❋ 북한 선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 홍보 필름 송부
   - ❋ 민속예술단 파견
   - ❋ 근해 어업회사 합작투자 제의 등

3.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73.3.12. 동 명예총영사가 업무에 소극적이며, 주재국 내에서 신임이 없음을 보고하고, 명예총영사 교체 및 후임으로 재계 주요 인사로서 정계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D. Macaulay 임명을 건의함.

4. 외무부는 1973.4.27. 동인의 직무 수행 능력 및 경제적 부담 능력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한바,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5.5. 동인이 직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업무 수행 의지를 표시하고 있음을 보고함에 따라 외무부는 6.4. W[redacted] 명예총영사를 해임하고 Macaulay 신임 명예총영사를 임명함.

5.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73.9.4. 전임 명예총영사의 한국과의 우호 증진 및 경제통상 교류 증진에 대한 기여, 프리타운 주재 한국어선 및 원양어업 주재원의 권익 보호에 노력한 공로에 따른 동인에 대한 서훈을 건의한바, 외무부는 10.4. 서훈 대신 감사장을 수여키로 결정함.

주Portland(미국) 명예영사 임명, 1973.3.20.

| 73-0006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북미1과/총무과
MF번호	A-10 / 7 / 1~33(33p)

1. 정부는 1969.6.30. 미국 주포틀랜드 명예영사관을 개설하고, 1972.6.8. Kell 명예영사를 명예총영사로 승진 임명함.

2. 주미대사는 1973.1.17. 명예총영사의 관할업무 확장에 따른 주포틀랜드 명예영사의 추가 임명을 아래와 같이 건의함.

- ❋ 명예총영사가 한국과의 농수산 및 금융 분야 경제협력 관계의 효율적 확대 추진을 위해 명예영사 2인(농수산관계 및 경제금융관계 전담 각 1인)의 추가 임명을 요망함.
- ❋ 동 명예총영사는 한국의 새마을운동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의 금강, 영산강 유역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오리건주 통상사절단을 조직하여 1972.10.1.~8. 방한하는 등 한국과 미국 서부 지역과의 금융, 통상 진흥 및 경제 협력에 공헌함.

3. 외무부는 추가 임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바, 명예영사 추가 임명에 제한 내지 금지 규정이 없으며, 명예총영사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활동으로 향후 한국과의 투자 및 교역 증대가 기대되는 점 및 추가 임명 영사 후보자의 경력 및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하여 동 추가 임명의 타당성을 인정함.

- ❋ 외무부는 동 명예영사 추가 임명을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하고 1973.3.20. 동 2인의 명예영사를 추가로 임명함.
- ❋ 주미대사는 1974.2.16. 미 국무성이 동 명예영사 추가 임명 인가를 통보 해왔음을 보고함.

[redacted] 주Baltimore(미국)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 73-000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총무과
MF번호	A-10 / 10 / 1~34(34p)

1. 주미대사는 1973.1.30. 아래와 같이 주볼티모어 명예영사관 개설 및 명예영사 임명을 건의함.

- Agnew 부통령이 자신의 친우인 A[redacted]을 주볼티모어 명예영사로 추천함.
- 현직 부통령의 추천에 따른 명예영사 임명은 한 · 미 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2. 외무부는 1973.3.26. 아래와 같이 동인을 주볼티모어 명예영사로 임명함.

- 관할구역: 볼티모어시 및 동 지역 일원
- 직무범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사무, 대한민국 국적 선박 및 항공기의 보호, 상거래 및 외자 도입을 위한 연락 및 알선, 통상 · 경제 · 예술 · 과학 및 교육 등의 교류 촉진, 관광 및 통과 사증 발급, 기타 외무부장관과 관할공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 지휘감독: 주재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거쳐 외무부장관의 지휘 및 감독
- 주미대사는 5.22. 미 국무성에 명예영사 인가 통보

3. 동 명예영사는 1973.8.31. 주미대사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외무부는 아래와 같이 동 명예영사를 해임 발령함.

- 워싱턴포스트지는 8.15. 동인이 Agnew 부통령 의혹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보도함.
- 주미대사는 9.1. 미 국무장관에게 동 명예영사의 해임을 통보함.
- 주미대사는 10.6. 개인 신상 문제에 따른 동 명예영사의 사임 의사를 보고함.

Kirkpatrick, John E. 주Oklahoma City(미국) 명예영사 임명, 1973.12.12.

| 73-0008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북미1과/총무과
MF번호	A-10 / 11 / 1~28(28p)

1. 주미대사는 1973.12월 주오클라호마시 명예영사관 설치를 건의하고, 아래와 같이 J. E. Kirkpatrick을 명예영사 후보로 추천함.

- ❋ 동인은 오클라호마시 굴지의 재벌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에 크게 공헌하는 활동적인 인사임.
- ❋ 동인의 명예영사 임명 시 한·미 간 교육, 문화 교류 및 통상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2. 외무부는 1973.12.12. 동인을 주오클라호마시 명예영사로 임명함.

- ❋ 관할구역은 오클라호마시 및 동 일원으로 지정함.
- ❋ 주미대사는 1974.3.28. 미 국무성에 동인의 영사 인가를 통보

3. 주미대사는 주오클라호마시 명예영사관이 1974.5.30. 개관하였으며, 개관식 및 기념 리셉션에 참석하여 주지사 내외 등 주요 인사를 위한 만찬, 교포 유지와의 오찬 및 기자회견 등을 시행하였음을 보고함.

McElyea, William R. 주Dallas(미국) 명예부영사 임명, 1973.8.8.

| 73-000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A-10 / 12 / 1~15(15p)

1. 정부는 1972.7.4. 초대 주댈러스 명예영사로 J. W. Thomas를 임명하였으며, 8.29. 미 국무성의 영사 인가에 따라 12.5. 명예영사관을 개관함.

2. 주미대사는 1973.3.20. 동 명예영사가 외자유치 및 시장개척 활동을 위해 전담 부영사 임명을 추천해 왔음을 보고하고, 한 · 미 양국 간 관계 심화 및 대미 수출시장 개척 필요성에 비추어 외자유치 및 수출시장 개척 업무를 전담할 명예부영사 임명을 건의함.

3. 외무부는 1973.8.8. W. R. McElyea를 아래와 같이 명예부영사로 임명함.

- 직무범위는 재외국민의 보호, 한국 국적 선박 · 항공기의 보호, 상거래 외자도입 연락 및 알선, 예술 · 과학 · 문화 · 교육 등 교류 촉진, 미국 시민에 대한 통과 및 관광사증 발급 등으로 지정함.
- 주미대사에게 8.29. 동 명예영사 임명 사실을 주재국에 통보토록 지시함.

김대중 납치 사건. 전12권 V.1 동 사건을 위요한 한 · 일본간의 외교교섭 및 수사협력, 8-9월

| 73-001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북미1과
MF번호	Re-21 / 8 / 1~260(260p)

1. 일본 조간지 1973.8.9.자는 일본 체재 중인 김대중이 8.8. 오후 1시경 동경 그랜드팔래스 호텔에서 신원 미상의 5인조 남자에 의해 납치된 후 행방불명되었음을 보도한바, 동 사건 이후 한 · 일 외교당국간의 접촉 경과는 아래와 같음.

- 일본 외무차관은 8.8. 주일대사에게 한국 정부기관 관여 시 중대 외교문제 발생 가능성을 경고
- 외무부차관은 8.9. 주한 일본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동 사건과 무관함을 설명하고, 일본 정부에 진상 규명을 요청
- 외무부차관은 8.14. 주한 일본대사에게 김대중의 무사귀환을 다행으로 생각함을 전달하고, 동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표명
- 일본 외무차관은 8.14. 주일대사에게 동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관련 한국 측의 협조 요청
- 국무총리는 8.17. 일본 수상 및 외상 앞으로 양국 간 우호관계에 영향이 없도록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하는 서한을 전달
- 주일대사는 8.18. 일본 외무차관이 제7차 한 · 일 각료회의 연기 검토를 시사했다고 보고
- 주일대사는 8.21. 일본 외무성을 접촉하여 한 · 일 각료회의 개최 방안 협의 결과를 보고

2. 동 납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은 아래와 같음.

- 주한 일본대사는 8.28. 한국 측 수사 상황 결과 등 관련 10개 항의 질문서를 외무부에 송부
- 법무부장관은 8.28. 현재 수사 상황을 외무부에 송부
  - 귀가 시 차량, 압수물, 선박 등 상세 수사 상황
- 일본 정부는 8.27. 경시청 특별수사본부 수사상황서를 외무부로 송부
  - 현장 유류품, 차량, 숙박 인물, 선박, 정보 수사 등
- 법무부장관은 8.31. 김대중 및 양일동, 김경인의 진술 요지를 외무부에 송부
  - 외무부는 동 진술서를 일본 측에 전달
- 일본 외무차관은 9.5. 납치사건 관련 한국대사관 직원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일본 경찰당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
- 외무부장관은 9.6. 주한 일본대사에게 주일대사관 직원 출두 요구 수용 거부 입장을 표명
- 김종필 총리는 9.15. 주한 일본대사에게 양국 관계 손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
- 법무부장관은 9.17. 수사 상황을 외무부에 송부
  - 8.14. 특별수사본부 설치, 초동수사, 김대중 외 2인 수사, 증거물, 선박, 상륙 및 귀가 경로, 주일대사관 직원, 구국동맹 등 수사 결과
- 외무부는 9.19. 주일대사에게 일본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유감을 표명토록 지시하고, 일본 정부의 반응에 관해 내부 보고

김대중 납치 사건. 전12권 V.2 동 사건을 위요한 한 · 일본간의 외교교섭 및 수사협력, 10-11월

| 73-001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북미1과
MF번호	Re-21 / 9 / 1~202(202p)

1. 김대중 납치 사건 관련 한 · 일 간의 외교 교섭 경과임.

❁ 외무부차관은 1973.10.4. 주한 일본대사를 면담, 아래 정부 입장을 전달함.
- 국제 형사사건에 대한 일본 언론의 과장 보도 지적 및 보도 경향에 우려 표명

❁ 주일대사는 10.5. 일본 경찰당국의 수사경위서 요지를 아래 보고함.
- 김동운 1등서기관의 범행 가담 여부, 차량, 한국행 출항 선박, 김대중 진술에 의한 수사 등

❁ 일본 외무차관은 10.18. 국제 관례에 따른 문제 해결 및 각료회담 연기 가능성을 언급함.

❁ 외무부는 10.26. 아래 김대중 기자회견 내용을 주일대사에게 통보함.
- 자신에 대한 10.25.자 연금해제, 동 사건으로 한 · 일 양국 간 우호관계 손상 불원(不願) 희망, 북한 입장 지지 발언 행위 부인

❁ 한국 정부 조치에 대한 10.26.~27. 일본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
- 김대중 석방을 진전 및 사건 해결의 계기로 평가
- 납득할 수 있는 해결 추구 방침 견지

❁ 외무부장관은 11.1. 기자회견 시 아래 내용을 발표함.
- 김동운 서기관 파면 조치, 그러나 수사는 계속되며 결과에 따라 의법 처리
- 김대중의 일본 체재 중 활동에 대해 향후 반국가적 행위가 없는 한 책임 불문
- 김종필 국무총리가 11.2. 방일, 일본 정부와 국민에게 동 사건과 관련한 유감 표명 예정

❁ 일본 관방장관은 11.1. 아래 요지의 담화를 발표함.
- 한국 측 수사 결과를 평가, 김대중의 자유 회복 환영 및 한국 국무총리 방일 환영

❁ 일본 정부는 11.8. 수사상황서를 송부함.

2. 김종필 국무총리는 1973.11.2.~3. 아래와 같이 일본을 방문함.

❁ 11.2. 일본 다나카 수상을 면담하고 아래 내용에 합의함.
- 한 · 일 정기각료회의 연내 개최
- 김대중 사건의 외교적 종결 상호 확인
- 김대중의 신병(身柄) 자유 양해
- 양국 간 경제협력 재개

❁ 김 총리는 다나카 수상에게 박정희 대통령 명의의 아래 내용의 친서 전달
- 김대중 사건 발생에 유감 표명 및 양국 간 우호관계 손상을 회피할 필요
- 사건 재발방지 노력 및 양국 간 선린우호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강조

3. 외무부 아주국은 동 사건 발생 및 한 · 일 간 외교 절충 경과, 부록(국제적 납치 사건 예, 사건일지)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외교 교섭 종합자료를 1973.11.10.자로 작성함.

김대중 납치 사건. 전12권 V.3 대통령 및 국무총리 앞 보고, 8-11월

| 73-001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북미1과
MF번호	Re-21 / 10 / 1~241(241p)

김대중 납치 사건 관련 1973.8~11월 중 외무부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 내용임.

1. 사건 발생 경위, 일본 외무성의 우려 표명, 외무부 조치 사항, 각국 반응 등(8.10.)

2. 외무부차관의 8.14.자 주한 일본대사와의 아래 면담 내용

- ❁ 김대중 무사귀환 평가, 동 건 철저 조사 및 진상 규명 의지 표명

3. 김대중 사건 관련 8.16. 및 8.18. 각국 반응 종합

- ❁ 일본: 중대한 범법행위, 진상규명 및 철저수사 촉구, 단 한 · 일 관계 손상 불원, 사건의 원만한 수습 희망
- ❁ 미국: 김대중 생존 평가, 범인 색출에 최선 노력 기대, 언론은 한국 중앙정보부의 연관성을 제기

4. 일본 동향(8.20.)

- ❁ 한 · 일 정기각료회의 연기 검토 시사, 김종필 총리 친서 전달 공개 등

5. 한 · 일 정기각료회의 개최 방안에 관한 양국 간 협의 상황(8.21.)

6. 일본 각료회의 시 수상, 외상 등 주요 각료의 발언 관련 언론보도 내용(8.22.)

7. 일본, 미국 주요 언론 사설(8.22.)

8. 일본 각 정당 동향(8.23.)

9. 한 · 일 정기각료회의 연기 발표(8.24.)

10. 일본 요미우리 신문 서울지국 폐쇄 관련 일본 측 반응(8.25.)

11. 주일대사관 직원 관련 논의에 대한 유감 표명, 한 · 일 경제협력 관련 일본 측 입장 타진(8.27.)

12. 일본 측 수사 상황(8.27.)

13. 한국의 일본 의회 논의 비판 및 항의에 대한 일본 측 반응(8.29.)

14. 일본 언론 사설 내용(8.30.)

15. 미 국무성 차관의 주미대사와의 면담 시 언급 요지(8.31.)

- 김대중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되지 않기를 희망
- 주미대사는 정부 입장을 설명, 관련 수사 추이를 주시할 것을 요청

16. 주한 일본대사 기자회견 내용(9.3.)

- 김대중의 반공법 위반 또는 체포 위험이 없다는 한국 측 소식통 확인 등

17. 일본 언론의 악의적 보도 경향에 대한 외무부의 일본 측에 대한 항의(9.20. 및 10.5.)

18. 김대중 기자회견 후 일본, 미국 정계 및 언론계 반응(10.29.)

19. 한국 외무부장관의 11.4.자 항의에 대한 일본 측 반응

김대중 납치 사건. 전12권 V.4 국회 질의 답변, 9-11월

| 73-001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북미1과
MF번호	B-18 / 4 / 1~116(116p)

김대중 납치 사건 관련 1973.9~11월 국회 본회의 질의 및 답변 내용임.

1. 신형식, 박주현 의원의 대정부 질의(9.22.)

- 조속한 수사 촉구, 일본 언론 보도 관련 정부의 대일 강경자세 요구, 김대중의 정치적 책임 및 정부의 관련 입장 표명 요구
- 김대중 출국 경위, 일본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일본 측 조치 내용 문의,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항의 여부

2. 김용성 의원의 대정부 질의(9.22.)

- 일본의 김대중 인도 요구, 외교관 출두 요구, 일본 좌경 정치인 및 언론의 비우호적 발언에 대한 정부의 항의 여부
- 김종필 총리는 정부의 냉정한 대응 및 최대한 수사 노력 경주 입장 설명, 김대중 인도 관련 일본 측 요구 거부 입장을 답변

3. 민병기, 이도선 의원의 대정부 질의(9.24.)

- 일본 야당 및 북한이 김대중 사건을 이용하려는 경향 지적,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 한일 관계 전환점에 대한 정부의 대책 등

4. 김영삼, 신형식 및 박주현 의원의 대정부 질의(9.24.)

- 조속한 수사 촉구, 김대중의 반국가적 행위 내용,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대책 등
- 김 총리는 사건 최선 수사 중임을 설명, 김 서기관의 출두 거부, 동 사건으로 인한 한일 관계 훼손 불가 입장을 표명

5. 민병기, 김수한, 이도선, 신형식 및 박주현 의원의 대정부 질의(9.25.)

- 일본 좌경 정치인 및 언론의 악의적 이용 지적, 김대중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지적, 김대중의 대외활동에 대한 미국 및 일본의 반응 등
- 김 총리는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 설명, 김대중 사건은 국제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방침이며, 납치 사건 규명을 우선으로 김대중의 외국에서의 활동 관련 사전 해당국과 교섭이 없었음을 답변

6. 정일형 의원의 대정부 질의9.26.)

- 대통령의 입장 표명 촉구, 유엔 총회 거론 시 대응책, 일본 정치인과 언론에 대한 대응 조치

7. 김영삼, 오세응 의원의 대정부 질의(10.31.)

- 김대중 원상복구의 의미, 김 서기관의 행방 등
- 외무부장관은 김대중이 회복 상태이며 김 서기관 조사는 계속될 입장임을 언급

8. 유진산, 손주환 및 최세경 의원의 대정부 질의(11.6.)

- 김 총리 방일의 의의, 한일 경제협력 강화 촉구, 교포들의 조국 불신 풍조에 대한 대책
- 김 총리는 동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 일본과의 경제협력 강화 관련 양국 간 거래 부인, 책임 통감 표명 및 책임 질 의사임을 언급

김대중 납치 사건. 전12권 V.5 일본 언론 반응, 8월

| 73-001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북미1과
MF번호	Re-21 / 11 / 1~206(206p)

김대중 납치 사건 관련 1973.8월 중 일본 언론 보도 내용임.

1. 김대중 유괴, 일한 관계 충격 등(8.9.)

2. 재일 거류민단, 조총련 담화 발표(8.9.)

❁ 한국 정부의 행위 규탄, 김대중 구출에 전력 및 일본 정부 당국의 구출 노력 촉구

3. 주일대사의 한국 정부 무관 입장 표명(8.10.)

4. 김대중 유괴사건 규명 촉구 사설(8.10.)

5. 일본 정부의 초조함, 국제적 파문 확대 우려(8.11.)

6. 김대중 사건 조속 해결 촉구 사설(8.12.)

7. 김대중 8.13. 서울 귀가 사실 및 귀가 경위(8.14.)

8. 일본 각의 후 각 장관 발언 내용(8.14.)

9. 한국 내 언론 및 야당 반응(8.15.)

10. 동 사건 수사 부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곤혹스러운 입장(8.16.)

11. 김대중 조속 일본 귀환 및 수사 협조 촉구(8.16.)

12. 일본 정부, 전반적 정세 검토 후 기본 방침 수립(8.17.)

13. 일본 국회의 의원조사단 방한 계획(8.17.)

14. 한국, 김대중 연금(8.17.)

15. 주한 일본대사, 외무차관 및 총리 회견 내용(8.18.)

16. 김종필 총리 친서, 한일 각료회의, 민사당위원장 방한(8.20.)

17. 한일 각료회의 연기론: 김대중 사건 영향 고려(8.21.)

18. 한국 정부의 중앙정보부 기관원 관여 사실 인정(8.23.)

19. 김대중 사건, 일본 주권 침해(8.23.)

20. 한일 각료회의 연기 결정(8.24.)

21. 일본 외무성, 김대중의 인도 고집하지 않을 방침 표명(8.25.)

22. 김대중 유괴 직후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 총리에게 김대중 신변 안전 요망(8.26.)

23. 한국 정부의 일본 의회 내 논의 비판(8.27.)

24. 일본 정부, 한국 정부에 5개 항 질의 사항 전달(8.28.)
- ❁ 현 수사상황 종합, 김대중 등 공술 내용, 한국 입항 선박 조사결과, 금후 수사 전망 등

25. 한국 정부, 중간 수사 결과 주한 일본대사관에 제출(8.29.)

26. 일본, 조사단 파견 계획 없음과 수사 결과 한국에 협력 요청 입장 표명(8.30.)

27. 김대중 래일(來日) 실현 촉구(8.30.)

28. 일본 정부, 김대중 래일 실현 방향 시사(8.31.)

김대중 납치 사건. 전12권 V.6 일본 언론 반응, 9월

| 73-001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북미1과
MF번호	Re-21 / 12 / 1~294(294p)

김대중 납치 사건 관련 1973.9월 중 일본 언론 보도 내용임.

1. 김대중 사건 수습 단계 진입(9.1.)

2. 주한 일본대사 귀국, 외무성 대책회의(9.1.)

3. 주한 일본대사, 한국 총리와 회담(9.3.)

❁ 진상 규명이 선결, 경제원조 삭감 조치 또는 유엔 총회 시 한국 지지 입장 불변 기본자세 강조

4. 한국 대사관원 출두 요청 방침(9.5.)

5. 김동운 서기관 출두 거부로 국면 전환(9.6.)

6. 한국, 김 서기관 출두에 강경 입장 견지, 일본정부의 대응 조치 급박(9.7.)

7. 다나카 수상 의회 답변(9.7.)

❁ 진상 규명 후 주권 침해 여부 판단, 한 · 일 우호관계 불변, 고위사절단 파견 검토, 경제협력 원조 중단 고려치 않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중요

8. 주한 일본대사, 한국 외무장관 회담: 김 서기관 출두 거부(9.8.)

9. 일 · 한 우호를 강조하는 일본 정부 입장 견지(9.10.)

10. 김대중 사건 타개를 위한 특사 파견 방침(9.12.)

11. 일본 경시청 특별수사본부 조사 결과(9.13.)

12. 한국 대통령특사 방일, 정부 관계자 접촉(9.14.)

13. 김대중 사건 관련 일본 언론 보도 및 논평 내용 중 문제 기사 8~9월간 보도 내용 종합(9.15. 문화공보부 작성)

14. 김대중 사건 관련 일본 언론의 편향성, 한 · 일 우호관계 저해 및 비판 기사(9.15. 문화공보부 작성)

15. 주한 일본대사, 김종필 총리 면담 및 한국 입장 청취(9.16.)

❁ 한 · 일 관계 존중,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도모, 조기 해결 필요성은 인식하나 다소의 시간 필요

16. 김대중 사건 장기화 인식(9.17.)

17. 김대중 사건 관련 한국 측 제2차 수사보고서 전달(9.18.)

18. 김대중 사건 해결 없이 추가적인 경제원조 추진 불가 입장(9.19.)

19. 일본 나카소네 통산상, 대한 민간투자 제한 검토 시사(9.21.)

20. 한국 국회, 사건의 진상 규명보다 일본 언론의 태도 비판(9.22.)

21. 한국 법무부장관, 김대중 등 증인 3인의 일본 인도 불필요 언급(9.23.)

22. 일본 경시청, 김동운 서기관의 관련 사실 새로이 발견(9.25.)

23. 한국 국회 논의 동향 및 주한 일본대사 기자회견(9.26.)

24. 일본 경시청, 김대중 연행 5인에 대한 새로운 사실 발견(9.27.)

25. 미국 국무성차관보, 김대중 사건에 대한 입장 언급(9.30.)

❁ 김대중을 야당 지도자로 평가, 신변 우려, 한 · 일 정부 간 해결 필요 및 범인 의법 처벌 희망

김대중 납치 사건. 전12권 V.7 일본 언론 반응, 10월

| 73-001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북미1과
MF번호	Re-21 / 13 / 1~132(132p)

김대중 납치 사건 관련 1973.10월 중 일본 언론 보도 내용임.

1. 한국 국회 논의 동향(10.2.)

❁ 일본 정치인과 언론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 배려 차원 답변

2. 김대중 사건 발생 원인, 정치 망명에 대한 일본 정부의 모호한 태도 지적(10.4.)

3. 김대중 사건이 향후 한국 박정희 정권의 큰 정치 문제로 대두 전망(10.4.)

4. 양일동 통일당 당수, 한국 정부 비판(10.5.)

5. 재미 한국인, 김대중 구출운동(10.7.)

6. 박 대통령, 김대중 사건 조기 해결 노력 의사 표명(10.8.)

❁ 배경: 일본의 대한 원조 중지 타격, 중앙정보부 해체 요구 학생 데모 격화, 야당의 반정부 운동 표면화, 미국 정부의 한국 측에 강한 압력 작용 등

7. 일본 대장상, 당분간 일 · 한 각료회의 개최가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10.10.)

8. 민간 차원의 일 · 한 경제관계 긴밀화, 일본 정부의 대한 정책 불변(10.12.)

9. 다나카 수상 기자회견(10.13.)

❁ 외교 경로로 한 · 일 각료회의 개최 조속 결정 및 김대중 사건 조속 해결 희망, 양국 우호관계 불변, 사건 재발 방지 필요

10. 일본 관방장관, 김대중 사건 진상 규명 전 한일 각료회의 개최 반대 입장 표명(10.16.)

11. 김대중 사건 등 한국 이미지 손상은 정치권력 집중의 결과(10.17.)

12. 김대중 사건 해결책에 관한 일본 정부 입장(10.18.)

- 조속한 해결 희망
- 한국 측의 사죄, 관계자 처벌, 장래의 보장, 원상회복
- 사건 해결 시까지 일 · 한 정기각료회의 무기 연기
- 대한국 신규 원조도 해결 시까지 보류

13. 일본 측의 김 서기관 출두, 3인의 래일(來日) 요청에 한국 측 반응이 있을 것으로 관측(10.26.)

14. 김대중 기자회견에 대한 해설 및 논평(10.26.)

- 김대중의 정치활동 중단 의사 표명에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 의향 존재, 세뇌 여부 및 본인 의사 의심 등

15. 주한 일본대사의 한국 외무부장관 면담 시 외무장관의 언급 내용(10.27.)

- 김대중의 신변 자유는 국제법상 원상회복의 원칙에 합치
- 일본 측은 주권 침해 여부 사실 판명 후 원상회복 판단 대응

16. 주한 일본대사, 한국 외무부장관 면담(10.28.)

- 김대중 방일 문제, 김 서기관 청취를 통한 최종 일괄 해결 방향 모색 언급

17. 일본 관방장관 기자회견(10.29.)

- 김대중의 신변 자유는 일보 진전, 사건 해결을 위해 김대중의 일본 재입국 희망

김대중 납치 사건. 전12권 V.8 일본 언론 반응, 11-12월

| 73-001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북미1과
MF번호	Re-21 / 14 / 1~127(127p)

김대중 납치 사건 관련 1973.11~12월 중 일본 언론 보도 내용임.

1. 김대중 사건 관련 한 · 일 양국 간 정치적 결단 전망(11.1.)

2. 김동운 서기관, 비우호인물(persona non grata)로 10.26. 추방, 한국 정부에 통고(11.1.)

3. 김대중 사건 정치적 해결, 단 형사사건 전모는 불규명(11.2.)

4. 김종필 총리 방일(11.2.~4.)

- 일본 정부 및 국민에 대한 유감 표명을 위한 진사사절, 수상 면담 시 박 대통령 친서 전달 예정, 한 · 일 정기각료회의 조기 개최, 경제원조 요청 전망

5. 다나카 수상 기자회견(11.5.)

- 김대중 사건과 한 · 일 선린우호관계는 별개, 김 총리의 방일로 한국 측 성의 표명 충분, 한 · 일 각료회의 조속 개최 의사

6. 김 총리 한국 국회 발언(11.5.)

- 김 서기관 수사 후 국내법에 의거 처벌, 한 · 일 정기각료회의 연내 개최 합의

7. 오히라 외상 발언(11.7.)

- 국제적 형사사건 수사 계속, 현재 공권력 개입 및 주권 침해 사실 불명

8. 오히라 외상 발언(11.9.)

- 일 · 한 정기각료회의 12월 중순 개최 전망, 일 · 한 관계의 정상화 수순
- 더 이상의 주권 침해 문제 제기 불원

9. 반정부 학생운동, 주요 대학 파급 및 동맹 휴교(11.20.)

10. 김 총리-다나카 수상 회담으로 김대중 사건 정치적 해결 낙착, 사건 자체 해결은 별개(11.27.)

11. 한국 내 반정부 운동이 일본 정부에도 심각한 영향(12.1.)

- 일본 외상, 한 · 일 정기각료회의 연내 개최 의향 불변 입장

12. 김대중에 대한 인권 침해 비판(12.10.)

- 양국 관계라는 현실 앞에서 무시, 정부에 김대중의 인권 회복 요구

13. 김대중, 유진산 신민당 총재와 회담(12.12.)

- 유일한 현 난국 타개책은 정부에 의한 민주체제 정신 및 제도 원상회복

김대중 납치 사건. 전12권 V.9 미국 언론 반응, 8.8.-8.20.

| 73-001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북미1과
MF번호	Re-21 / 15 / 1~158(158p)

김대중 납치 사건 관련 1973.8월 중 미국 언론 보도 내용 및 정부의 외교적 대응 조치임.

1. 김대중 납치 사건 경과(8.8.~9.)

❋ 동경에서 5명의 한국인에 의해 피랍, 한국 CIA 주도, 현재 생사 의심

2. 한국 CIA 또는 한국 정부 내 반대자 소행 추정, 한국 정부의 관여 부인(8.10.)

3. 일본 다나카 수상, 사건 해결에 최대한 노력 다짐(8.11.)

❋ 박정희 정권 반대 한국인들, CIA에 의한 김대중 납치 의심

4. 김대중 귀환 및 기자회견(8.14.)

❋ 김대중, 한국 중앙정보부에 의한 납치 책임 공개 비난 회피

❋ 김대중의 납치 정황 및 배후의 정치적 의미 상금 의문시

5. 한 · 일 간 외교문제화 가능성, 일본은 사건 수사를 위해 김대중의 일본 재입국 요청 결정(8.15.~16.)

6. 외무부, 주미대사에게 박 대통령의 동 사건 연관을 보도한 뉴욕타임스지 접촉, 유감 표명 및 재발 방지 지시, 주미공사 기자회견(8.17.)

❋ 동 사건과 한국 정부 무관, 현재 특별수사본부 수사 중, 사건 진상 규명 전 억측 보도 자제 요청

7. 김대중 사건(8.18. 뉴욕타임스)

❋ 동 사건으로 한 · 일 관계 냉각, 일본 좌경 야당은 정부의 대한국 정책 비난에 이용, 다수 일본인은 한국 CIA를 주도자로 지목

8. 김대중 사건(8.19. 뉴욕타임스)

❋ 미국, 일본 내 광범위한 김대중 주장 지지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도

9. 재미교포 데모(8.20. 워싱턴포스트)

❋ 연금 중인 김대중 석방, CIA 요원 및 주미대사의 추방 요구

10. 김대중 사건(8.20. 뉴욕타임스)

- 미국, 일본 양국의 강력한 경고가 김대중의 생명 구제, 9월 개최 예정인 한 · 일 각료회의 연기 전망, 일본 정부는 김대중의 선상 감금 정보 보유에 따라 외교적 활용 가능
- 한국 CIA에 관한 관심 대두, 동 조직의 기능 및 활동 소개

11.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 LA타임스 보도 내용 보고(8.20.)

- 한국 정부, 김대중의 일본 송환 요청 거절

12. 주미대사, 워싱턴 교포 일부 결의문 채택 보고(8.21.)

- 김대중 납치는 명백한 일본 주권 침해, 김대중의 일본 송환 조치 필요, 미국 정부의 한국 CIA 및 주미대사 추방 조치 요구

김대중 납치 사건. 전12권 V.10 미국 언론 반응, 8.21.-11.20.

| 73-001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북미1과
MF번호	Re-21 / 16 / 1~196(196p)

김대중 납치 사건 관련 1973.8~11월 중 미국 언론 보도 내용 및 정부의 외교적 대응 조치임.

1. 미국 국무성 대변인,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김대중 사건이 유엔 한국문제 토의 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임을 언급(8.21.)

2. 주미대사, 뉴욕타임스 책임자 면담(8.21.)

- ❁ 관련 기사의 부당성 지적 및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하도록 요청
- ❁ 한국 정부의 8.18.자 중앙정보부의 관여 부인 확인

3. 한 · 일 정기각료회의 연기설, 최종적으로 8.24. 일본 각의에서 결정 전망(8.24.)

4. 주미대사,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위원 서한 보고(8.21.)

- ❁ 한국 정부 관여 증거는 없으나, 정부의 지원 없이 납치는 불가능, 김대중의 출국 허락 요망

5. 주미대사, 김대중 사건 관련 기자회견 요록 송부(8.21.)

- ❁ 한국 정부의 관련 사실 부인,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6. 주미대사, 미 국무성 차관 면담 시 동 차관 언급 내용 보고(8.30.)

- ❁ 동 사건 복잡화 불원, 하버드대학 총장의 서한이 의회 논란 촉발 우려
- ❁ 동 총장은 김대중이 하버드대학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7. 한국 정부, 동 사건 해결을 위해 일본에 정치적 흥정 제의(9.1.)

- ❁ 일본, 납치 사건과 관련한 한국의 제의 거절(9.3.)

8. 주일대사, 김 서기관의 일본 출두 요청을 외교 문제를 이유로 거절(9.6.)

9. 김대중 사건 관련 한 · 일 양국은 즉각적, 감정적인 대결 회피 추세(9.19.)

10. 일본은 김대중 사건 해결 시까지 신규 경제협력 중단(9.20.)

11. 한국 문공부장관, 일본 신문의 불공정 보도 계속 시 일본 특파원 전원 추방 고려 언급(9.25.)

12. 정일형 의원, 김대중 납치는 중앙정보부 요원에 의한 교사가 상식임을 언급(10.1.)

13. 김대중 사건으로 한 · 일 간 정치 및 경제 관계가 위협받을 정도로 경화(10.10.)

14. 한국, 동 사건의 정치적 타협을 일본 측에 제의(10.27.)

15. 김대중, 당분간 정치활동 중지 선언 기자회견(10.27.)

16. 김대중, 하버드대학 연구 수학을 위해 미국 방문 계획(10.30.)

17. 외무부장관의 11.1.자 아래 요지의 기자 브리핑에 대한 일본 측의 미온적 반응(11.2.)
- ❁ 김대중의 행위에 대해 책임 불문, 김종필 총리 방일 시 일본 정부와 국민에 유감 표명 예정

18. 한 · 일 간 외교 현안 결론에 대한 합의 도출(11.2.)

19. 김대중 사건 관련, 김종필 총리 사과(11.3.~4.)

20. 라이샤워 교수, 사건의 정치적 해결과 진상 규명은 별개, 김대중의 조속한 출국 허용 및 기본적 인권 회복 촉구 언급(11.12.)

21. 보스턴 지역 교민 70명, 한국의 민주정치 회복과 김대중의 하버드대학 수학 허용 촉구(11.20.)

김대중 납치 사건. 전12권
V.11 기타국 언론 반응, 8-11월

| 73-002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북미1과
MF번호	Re-21 / 17 / 1~245(245p)

김대중 납치 사건 관련 1973.8~11월 각국의 언론 보도 내용임.

1. 아주지역

- 중국, 홍콩 등 김대중 동경 실종사건 보도(8.8.)
- 동 사건은 한국 중앙정보부 및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도(8.11. 중국)
- 김대중은 기자회견 시 납치자는 밝히기 곤란함을 언급(8.20. 홍콩)
- 동 사건으로 한 · 일 각료회의 연기(8.27. 홍콩)
- 일본 관방장관은 동 사건에 한국 정부 관리의 연루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언급(9.6. 태국)
- 주홍콩총영사, 8.9.~9.7. 중 관련 언론 보도 내용 보고(9.7.)
- 김대중, 경찰의 보호로부터 석방(10.6. 호주)
- 김대중 사건 관련 한 · 일 양국 합의 도달(11.2. 필리핀)
- 김종필 총리 일본 방문(11.3. 말레이시아)

2. 미주지역

- 김대중 납치(8.9. 캐나다)
- 김대중 서울 자택 귀환(8.15. 캐나다)
- 일본 정부는 김대중 납치에 대한 항의로 한 · 일 각료회담 연기 결정(8.25. 캐나다)
- 김대중 사건에 따라 한 · 일 관계 10년 중 최저점 도달(9.11. 캐나다)

3. 구주지역

- 김대중 납치, 심각한 외교문제 발생 가능성(8.9. 영국)
- 일본 수상 진상 규명 촉구, 일본의 국제적 위신 및 명예 손상(8.11. 독일)
- 피랍 김대중 서울 출현(8.14. 독일, 프랑스)
- 김대중 납치 배후는 불분명, 한국 정부는 김대중의 도일(渡日) 불허(8.15. 독일, 8.20. 벨기에, 8.20. 프랑스)
- 한 · 일 각료회담 연기, 김대중 사건의 한 · 일 관계에 대한 영향(8.25. 독일)
- 김대중 사건에 따른 한 · 일 관계의 부담 점증(8.29. 독일)
- 한국대사관 직원, 김대중 납치사건 혐의(9.6. 독일)
- 일본 외상, 김대중 사건에 대해 한국의 책임 촉구 예정(9.7. 독일)
- 일본 야당은 대한국 관계 단절, 경제 원조 중단, 정상화 조약 폐기 등 주장, 외상은 성급한 조치를 유보한다는 방침(9.24. 독일)
- 납치 사건에 한국 정보부의 관여 확실, 일본 정부는 대응책 주저(9.24. 독일)

- 김대중 납치 사건 경위에 의문, 현재 석방 대기 중(10.2. 독일)
- 김대중에 대한 자택연금 해제(10.27. 독일)
- 김대중 기자회견(10.30. 독일)
- 서울, 김대중 사건 종결 규정(11.2. 독일)
- 서울, 김대중 납치에 사과 표명(11.2. 영국)
- 김대중 사건, 야합으로 타결(11.3. 독일)
- 김대중 연금 해제, 외무부장관과 주한 일본대 사간 면담 시 타협안 제시(11.3. 프랑스)

4. 중동, 아프리카 지역

- 김대중 사건은 한국 정부기관의 관여 사건, 독재 정권의 산물(11.8. 쿠웨이트)
- 일간지 한국 비난 광고(11.8. 쿠웨이트)
  - 김대중의 정보부 해체, 부패 일소, 주한미군 철수, 남북 교류 및 평화적 통일 주장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
  - 현 정권은 김대중을 억압

김대중 납치 사건. 전12권
V.12 재일 본한국인 · 단체동향, 8-12월

| 73-002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북미1과
MF번호	B-18 / 12 / 1~158(158p)

김대중 납치 사건 관련 1973.8~12월 중 재일본 한국인 및 단체 동향에 관한 공관 보고 내용임.

1. 민단에서 제명된 베트콩그룹 6개 단체, 김대중 납치 규탄대회 개최(8.15. 및 8.20. 주일대사)

2. 반민단 세력의 '김대중 구출 대책 위원회' 결성 보고(8.25. 주오사카총영사)

3. 재일 한국학생동맹의 '김대중 납치 한 · 일 유착 규탄 전국 집회' 개최(9.23. 주일대사)

4. 오사카 재일 조선인 인권수호회는 김대중 사건에 관한 항의문 전달(9.10. 주오사카총영사)

5. 민단계 교포 민중대회 개최(9.26. 주오사카총영사)

- ❋ 오사카에서 약 1만 명 참가, 일본 언론계 및 혁신계의 편파적 보도 및 한국 정부 비난 입장을 규탄하는 항의문 채택

6. 김대중 사건 관련 각종 항의서 접수 보고(9.26. 주일대사)

- ❋ 총평, 전일본자유노동조합, 교토 시민단체협의회, 미야자키현 학자 및 문화인간담회 등

7. 민단 관동지방협의회, 김대중 일파 규탄 민중대회 개최(9.28. 주일대사)

8. 재일 학생동맹 중앙본부의 항의 데모(10.5. 주일대사)

- ❋ 김대중 석방과 중앙정보부 해체 구호

9. 베트콩파 '김대중 구출 대책 위원회' 및 '한국 민주회복 통일촉진 국민회의' 주최로 '김대중 구출, 본국 학생의 반독재 투쟁 지원 재일한국인 민중대회' 개최(10.15. 주일대사)

10. 홋카이도 의회는 '김대중 사건 조기 해결'에 관한 요망의견서 채택(10.20. 주삿포로총영사)

11. 반정부 재일 청년회 주최 '김대중 무조건 재래일(再來日) 요구' 집회 개최(10.25. 주일대사)

12. 김대중 사건 관련 각종 서신물 접수 보고(10.30. 주일대사)

- 일본 중의원 '가네코 미쯔'의 대통령 앞 서한 전달 의뢰

13. '김대중 구출 오사카 부민 모임' 및 '학생 구속 항의 집회' 관련 언론 보도(11.6. 주오사카총영사)

14. 조총련 중앙본부는 '박정희 독재 반대, 민주주의와 자유 및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학생과 인민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재일 조선인 중앙대회, 개최'(11.13. 주일대사)

15. 한국 민주회복통일촉진 국민회의 성명서 발표(12.1. 주일대사)

- 유신체제 철폐, 정보부 해체, 김대중 사건 진상 규명, 한 · 일 각료회의 및 대한국 경제원조 중단 주장

16. 조총련계 재일지식인 성명서 채택(12.6. 주일대사)

- 현 정부에 대한 반대에 공감 표명 내용

17. 일부 일본 평론가, 학자 등 '김대중 재래일 요망서' 송부(12.11. 주일대사)

18. 베트콩파 '재일 한국학생동맹 총본부' 명의의 항의서 송부(12.13. 주일대사)

김대중 전 국회의원 동정

| 73-002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B-19 / 1 / 1~86(86p)

김대중 전 신민당 의원의 1973년 일본 및 미국 체재 중 활동 동향에 관한 공관 보고 내용임.

1. 박 정권 비판 기사 게재(4.3. 이브닝스타지)

❋ 주미대사는 4.5. 주미대사관 공보관장을 통해 동 기사가 극소수 반정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으로 동 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했다고 보고함.

2. 한국 정부 비판 연설(4.25. 시애틀 소재 워싱턴대학)

❋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는 4.26. 동 연설이 한국의 정치 현실과 미국의 대한국 정책에 관한 내용임을 보고함.

3. 시국 강연회 참석(4.28. 시카고)

❋ 주시카고총영사는 4.29. 동 강연회에서 김대중이 정부를 비판하고, 반정부 운동에 교포의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고함.

4. 4·19 기념 강연회 참석(4.29. 뉴욕)

❋ 동 강연회는 아래 내용의 대정부 규탄 모임으로 연설 후 반정부 데모 행진을 행함.
- 10월 유신 및 남북대화는 박정희 영구집권을 위한 기도
- 통일주최 국민회의의 대통령 선거 99% 찬성 언급
- 국내 경제적 파탄 상황 설명 등

❋ 뉴욕총영사관의 평가
- 참석자가 소수(50명 중 골수 반정부 교포는 20명)로 금번 집회는 실패로 판단
- 뉴욕총영사관의 설득과 교포들의 총영사관에 대한 신망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

5. 시국 강연회 참석(5.18. 샌프란시스코)

❋ 정부를 비방하는 반정부 강연회로 언론 및 부녀자 약 130명이 참석함.
- 김대중은 현 정부의 부정 부패상, 중앙정보부의 정보 정치, 1인 독재정권 체제 및 언론자유 탄압을 비판하고, 10월 유신 조치는 독재체제 강화를 통한 정권 연장의 수단임을 지적
- 남북연방제 실시와 대중경제 실시를 통한 이익의 대중화 제안

❋ 동일 스칼라피노 교수 면담
-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기상조가 아니라는 데 견해 일치

대사파견 - 오스트리아

| 73-002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2007-2 / 27 / 1~36(36p)

1. 정부는 1973.3.26. 한표욱 대사를 주오스트리아대사로 내정하고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아그레망 요청을 지시한바, 오스트리아 정부가 5.5. 아그레망에 동의함에 따라 정부는 5.26. 한표욱 대사를 신임 주오스트리아대사로 발령함.

- 주오스트리아대사대리는 5.28. IAEA(국제원자력기구) 및 UNIDO(유엔공업기구) 대표 임명을 위해 신임장이 필요하다고 보고함.
- 외무부는 5월 동 신임 대사의 신임장 및 전임자에 대한 소환장 발급 절차를 추진함.

2. 한표욱 대사는 1973.6.28. 오스트리아 Jonas 대통령에게 신임장 및 전임 대사 소환장을 제정하고, 아래와 같이 환담함.

- 한표욱 대사는 박 대통령의 안부를 전달하고, 남북 적십자회담과 관련해 북한 측 태도가 부정적이나, 정부는 인내로써 회담에 임하고 궁극적인 목표인 남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함.
- Jonas 대통령은 남북 적십자회담과 관련하여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시발점으로 한 한반도 통일 가능성에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의 발전과 신임 대사의 성공적 임무 수행을 희망함.

3. 외무부는 1973.7월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IAEA 상주대표 임명 통지서를 발급함.

대사파견 - 벨기에

| 73-002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의전과/구주과
MF번호	2007-3 / 2 / 1~80(80p)

1. 정부는 1974.2.6. 송인상 대사를 주벨기에 신임 대사로 내정하고 주벨기에대사관에 아그레망 요청을 지시한바, 주한 벨기에대사관이 3.7. 아그레망 발급 통보 공한을 송부해 옴에 따라 정부는 3.15. 송인상 대사를 신임 주벨기에대사로 발령함.

2. 송인상 대사는 1974.4.23. 벨기에 국왕에게 신임장 및 전임 대사 소환장을 제정하고, 아래와 같이 동 국왕을 면담함.

❋ 국왕 언급 요지
- 양국은 최상의 관계를 유지 중
- 한국의 경제 발전에 관심 표명
- EC(구주공동체)를 통한 경제통상 관계 증진에 기여하기를 희망
- 통일 전망 및 남북 이산가족 결합문제 관련 진전 문의

❋ 송인상 대사 언급 요지
- 박 대통령의 안부 전달
- 양국 경제통상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
- 한국의 경제 부흥의 원동력은 교육, 훈련을 통한 우수한 노동력 확보에 기인
- 한반도 통일은 가까운 장래 실현은 어려우나, 계속적인 대화 필요
- 남북 이산가족 결합문제는 인도적 측면에서 진지하게 노력 중이나, 북한 측의 부정적인 입장에 따라 진전이 없으며, 주요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지지와 지원 필요

3. 외무부는 1974.3.16. 주벨기에대사관에 신임 주벨기에대사의 룩셈부르크 및 EC대표부 겸임대사 발령을 위한 아그레망 요청을 지시한바, 룩셈부르크 측 아그레망을 4.9. 접수함에 따라 4.25. 송인상 대사를 신임 주룩셈부르크 겸임대사로 발령함.

4. 송인상 대사는 1974.5.21. 룩셈부르크 대공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아래와 같이 환담함.

❋ 대공은 한국의 경이적 경제 성장 달성에 관심을 표명
❋ 동 대사는 대통령의 영도력, 국민의 근면성 및 질 높은 노동력이 경제 성장의 동력임을 설명
❋ 동 대사는 동 환담 시 내무부장관과 양국 간 철강 분야 협력 추진 방안을 협의

5. 송인상 대사에 대한 1974.5.14.자 EC대표부대사 아그레망 동의에 따라 정부는 5.22. 동 대사를 주EC 대표부 겸임대사로 임명한바, 동 대사는 6.4. 주EC 각료이사회 의장 및 집행위원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아래와 같이 환담함.

❋ EC 집행위원장은 한국의 경제발전상 언급
❋ 송인상 대사는 양측 간 관계 강화 및 확대 의지 표명

대사파견 - 차드

| 73-0025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B-19 / 7 / 1~62(62p)

1. 정부는 1972.11.10. 정일영 주프랑스대사를 주차드공화국 겸임대사로 발령함.

- 주프랑스대사관 직원은 차드 출장 결과를 1973.3.15.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최단 시일 내 신임장 제정 합의
  - 북한의 차드와의 기존 우호관계는 유지될 것으로 관측
- 주프랑스대사관 공사의 1973.7.4.~7.7. 차드 출장 결과 보고 요지임.
  - 차드 대통령 및 외무차관 면담, 한발 구호금품 전달
  - 주프랑스대사의 조속한 겸임대사 신임장 제정을 위한 협의
  - 차드 측은 대북한 승인 문제를 계속 검토 중임을 시사
  - 차드 측은 한국의 대북한 정책과 관련하여 6·23 선언이 현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으로 평가

2. 외무부는 1973.7.21. 주프랑스대사의 차드 겸임대사 신임장 제정을 위한 출장 시 아래와 같이 훈령함.

- 정부의 6·23 특별선언의 배경, 내용 및 의의 설명, 차드 정부의 지지 성명 발표 교섭
- 주한 유엔군 철수 반대 입장 지지 교섭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지지 교섭
- 공산 측에 대한 정부의 문화 개방 촉구 입장 설명
- 차드의 북한 불승인 관련 협의

3. 정일영 대사는 1973.7.27. 차드 롬발비에 대통령에게 겸임대사 신임장을 제정하고, 아래와 같이 답함.

- 롬발비에 대통령 언급 요지
  - 한국에 대한 우호적 입장 및 6·23 선언에 전적인 이해와 지지 표명
  - 1973년 유엔 총회에서도 한국 입장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언급, 북한 불승인 요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회피
- 차드 측은 한국과의 통상, 문화,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수시 접촉을 희망, 특히 의사 파견, 통상 진흥, 문화 교류 등 구체적인 문제를 협의하기를 요망
- 정일영 대사는 7.31. 외상 및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 등 동 신임장 제정 결과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함.

대사파견 - 콜롬비아

| 73-002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총무과
MF번호	2007-3 / 16 / 1~24(24p)

1. 정부는 안진생 대사를 신임 주콜롬비아대사로 내정하고, 1973.3.21. 주콜롬비아대사관에 동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 요청을 지시한바, 콜롬비아 정부가 4.16. 아그레망에 동의함에 따라 정부는 5.26. 안진생 주콜롬비아대사를 발령함.

2. 안진생 대사는 1973.7.30. 콜롬비아 외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수교하고, 아래와 같이 환담함.

- ❋ 외상은 문화협정의 조속한 비준 및 1974년도 기술훈련생 파견을 요청
- ❋ 안진생 대사는 문화협정은 국회 동의를 위해 노력 중이며, 기술훈련생 접수도 검토 후 조속히 처리할 것임을 설명
- ❋ 안진생 대사는 양국 간 교역 증진을 위한 주한 콜롬비아 상주공관 설치를 요청한바, 외상은 조속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

3. 안진생 대사는 1973.8.21. 콜롬비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덴마크

| 73-002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의전과
MF번호	2007-3 / 25 / 1~39(39p)

1. 정부는 1973.3.24. 이규성 대사를 신임 덴마크대사로 내정하고 주덴마크대사관에 아그레망 요청을 지시함.

- ❁ 주덴마크대사대리는 4.27. 아그레망 동의 접수 보고
- ❁ 덴마크 외무성은 5.29. 신임 대사 부임 예정일 및 신임장 제정 시기 등 문의

2. 주덴마크대사대리는 1973.8.10. 주재국 외무성과의 신임장 제정 절차 교섭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국왕 일정상 9월 하순경으로 예상, 상세 일정은 추후 합의 예정
- ❁ 북한 대사의 아그레망 신청 및 부여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규성 대사의 신임장 제정이 선행되도록 요청한 바 의전과장은 동의 언질

3. 정부는 1973.8.10. 이규성 대사를 신임 주덴마크대사로 발령한바, 이규성 대사는 10.12. 덴마크 여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아래와 같이 환담함.

- ❁ 여왕은 상주대사 부임을 환영하면서 양국 관계 증진에 대한 기대감 표명
- ❁ 대사는 여왕의 외조부인 구스타브 국왕의 서거에 대한 한국 대통령과 한국 국민의 조의를 전달한바, 여왕은 사의 표명
- ❁ 대사는 덴마크 농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 전달, 한국과의 농업 분야 협조 기대 표명
- ❁ 여왕은 한국의 덴마크 농업에 대한 관심에 사의를 표명, 양국 간 농업 협력은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답변

4. 주덴마크대사는 현지 언론의 상기 신임장 제정 보도 기사를 1973.10.17. 외무부에 송부함.

대사파견 - 에티오피아

| 73-002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의전과/총무과
MF번호	2007-4 / 1 / 1~28(28p)

1. 정부는 1973.3.26. 장재용 대사를 주에티오피아 신임 대사로 내정하고 주에티오피아대사관에 아그레망 요청을 지시한바, 에티오피아 정부는 5.2. 장재용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발급함.

2. 정부는 1973.5.26. 장재용 대사를 주에티오피아대사로 임명한바, 장재용 대사는 8.27. 주재국 외무차관에게 신임장 및 전임자 소환장 사본을 수교하는 한편 8.29. 셀라시에 에티오피아 황제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아래와 같이 면담함.

❋ 장재용 대사 언급 요지

- 박 대통령의 안부를 전달하는 한편 양국 간 전통적 유대관계 강화와 경제, 기술 협력, 문화 교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다짐하고, 에티오피아 정부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요망
- 전임 대사가 추진해 온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 표명

❋ 셀라시에 황제 언급 요지

- 장재용 대사의 계획에 동감 및 사의를 표명, 제반 협조를 약속
- 한국의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상에 감명을 받았다고 언급
- 세계 정세가 변화해도 한국과의 전통적인 특별한 관계는 계속 유지할 것임을 언급

대사파견 - EC

| 73-0029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B-19 / 10 / 1~7(7p)

1.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는 1972.11.15. 주벨기에대사의 주EC 겸임대사 아그레망을 발급함.

2. 주벨기에대사관은 EC 측 사정으로 신임장은 12월 중순 또는 1973년 초 제정이 가능하다고 보고함.

3. 주벨기에대사는 1973.3.5. EC 집행위원장 및 각료이사회 의장에게 각각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핀란드

| 73-003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의전과
MF번호	2007-4 / 3 / 1~37(37p)

1. 정부는 1973.9.20. 주헬싱키통상대표부 윤호근 공사를 신임 주핀란드대사로 내정하고 아그레망을 요청하도록 지시한바, 주핀란드공사는 신임 대사 아그레망이 10.5. 발급될 예정임을 보고함.

❋ 윤호근 공사는 신임장 수령 및 정무협의차 일시 귀국을 건의

2. 핀란드 외교차관은 1973.10.8. 주일본 핀란드대사의 주한대사 겸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3. 정부는 1973.10.23. 윤호근 주헬싱키통상대표부공사를 신임 주핀란드대사로 발령한바, 윤호근 대사는 11.14 핀란드 외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수교함.

❋ 동 대사는 외상에게 양국 간 협력관계 증진 희망을 표명하고, 인사 교류의 일환으로 주재국 IPU(국제의원연맹) 의원단에 대한 방한 초청 계획을 설명

❋ 동 대사는 또한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 토의 시 보편성 원칙을 견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대한 지지를 요청

❋ 외상은 보편성 원칙에 입각하여 핀란드의 한국에 대한 지지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언급

4. 윤호근 대사는 1973.11.16. 코넨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아래와 같이 환담함.

❋ 동 대사 언급 요지

- 한국은 장기 경제개발을 추진 중으로 핀란드의 한국 개발계획 참여를 기대
- 정치, 경제, 문화 및 사회 등 제 분야에서 양국 관계 증진 노력 설명
- 인사 교류의 일환으로 한국 국회가 핀란드 IPU그룹 의원 일행의 방한 초청을 추진 중임을 설명
- 한국의 당면한 급선무는 한반도 통일 문제로 한국 정부는 세계적인 데탕트 추세에 부응하여 남북한 간 직접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상의 방법으로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이 중요함을 설명
- 핀란드와 같은 중립국이 북한의 무력통일정책을 포기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

❋ 코넨 대통령 언급 요지

- 동 대사가 통상대표부 초대 공관장에 이어 초대 대사로 부임함을 축하, 향후 양국 간 관계 증진을 기대
- 중립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의 차원에서 핀란드는 전통적으로 국제 분쟁 시 일방적 지지는 회피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음을 설명
- 핀란드 IPU 대표단의 방한은 양국 간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 남북한 간 직접대화 노력에 동감 표명

대사파견 - 프랑스

| 73-0031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구주과/아프리카과/의전과
MF번호	2007-4 / 5 / 1~195(195p)

1. 정부는 1972.5.31. 정일영 신임 주프랑스대사를 내정하고 아그레망을 요청한바, 프랑스 정부가 6.30. 아그레망을 부여함에 따라 7.25. 신임 주프랑스대사로 임명함.

2. 정일영 대사는 1972.9.8.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아래와 같이 환담함.

- ❁ 프랑스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치하하고, 긴밀한 협력 및 활발한 문화 교류 추진 등 양국 관계 발전에 만족을 표시하는 한편 한국의 성의 있는 프랑스어 보급 노력에 사의를 표명함.
- ❁ 동 대통령은 긴장 완화의 국제 조류에 따라 남북한 간에 협상이 개시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프랑스의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적절한 시기에 방한할 의사를 표명함.
- ❁ 동 대사는 한국이 새로운 국제 조류에 부응하여 극동지역의 긴장 완화와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을 위해 노력 중으로 이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긴요함을 설명하고, 프랑스의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동 대통령의 방한을 희망함.

3. 주프랑스대사에 대한 1972.8.31.자 주포르투갈 겸임대사 아그레망 동의에 따라 정부는 11.10. 정일영 대사를 주포르투갈 겸임대사로 임명하고, 1973.6.27. 주포르투갈 겸임 신임장을 제정함.

- ❁ 동 대사는 포르투갈 외상 면담 시 한국 입장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함.
- ❁ 포르투갈 외상은 한국의 상주공관 설치 가능성을 문의함.

4. 주프랑스대사에 대한 1972.9.25.자 주세네갈 겸임대사 아그레망 동의에 따라 정부는 정일영 대사를 11.10. 주세네갈 겸임대사로 임명하고, 1973.4.11. 세네갈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아래와 같이 환담함.

- ❁ 세네갈 대통령은 남북한회담의 진전 현황 및 한-세네갈 양국 간 경제, 어업, 조선 분야의 협력 가능성에 관심을 표하고, 국제회의에서 한국 입장 지지를 약속함.
- ❁ 동 대사는 한반도 분단 현실과 남북회담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이 주세네갈 상주공관을 설치할 예정임을 언급함.

5. 주프랑스대사의 1972.10.12.자 주가봉 겸임대사 아그레망 동의에 따라 정부는 11.10. 정일영 대사를 주가봉 겸임대사로 임명함.

- ❁ 주프랑스대사관 직원은 1973.3월 가봉 출장을 통해 외무성과 신임장 제정 문제를 협의함.
- ❁ 양국 간 상주대사 파견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겸임 부임을 유보함.

6. 주프랑스대사에 대한 1972.10.12.자 주차드 겸임대사 아그레망 동의에 따라 정부는 11.10. 정일영 대사를 주차드 겸임대사로 임명하고, 1973.7.27. 차드 대통령에 대한 신임장을 제정한바, 동 신임장 제정 시 차드 대통령은 아래와 같이 언급함.

- 한국 정부의 6·23 선언에 대한 이해와 지지 및 유엔 총회에서 한국 입장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양국 간 통상, 문화,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수시 접촉을 희망함.
- 동 대사의 북한 불승인 요청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함.

대사파견 - 그리스

| 73-003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총무과
MF번호	2007-4 / 10 / 1~37(37p)

1. 정부는 1973.5.3. 채명신 신임 주그리스대사를 내정하고 주그리스대사관에 아그레망 요청을 지시한바, 그리스 정부의 5.28.자 아그레망 동의에 따라 주그리스대사관은 그리스 외교부와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 시기를 교섭함.

2. 그리스 외교부는 1973.7.29. 예정된 국민투표 이후에는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정부는 7.5. 채명신 대사를 신임 주그리스대사로 임명함.

3. 채명신 대사는 1973.8.17. 신임장 및 전임자 소환장 사본을 외상에게 제출하고, 8.21. Papadopoulos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바, 동 신임장 제정 후 아래와 같이 환담함.

❋ Papadopoulos 대통령 언급 요지

- 초대 주그리스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며, 한국이 박 대통령의 영도하에 경제 발전과 번영을 이룩한 데 대해 경의를 표함.
- 그리스는 역사와 전통에 따라 자유 수호를 위한 한국전쟁 파병 의무를 수행했으며, 이후 양국은 영원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대사 임무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다짐하는 한편 박 대통령에 대한 안부와 한국 국민의 복지와 번영을 기원함.

❋ 채명신 대사 언급 요지

- 위대한 역사와 문명의 발상지인 주그리스 초대 대사로 부임한 것을 영광으로 인식하며, 박 대통령의 안부를 전달함.
-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 저지를 위한 그리스 군의 고귀한 희생에 사의를 표명하고, 양국간 기존 우호관계 유지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함.

대사파견 - 제네바

| 73-0033 |

생산연도	1970-1973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B-19 / 14 / 1~8(8p)

1. 외무부는 1973.6.9. 주제네바대사에게 황호을 대사의 주제네바 국제연합구주사무소 및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 임명 통지서를 송부하고, 주제네바대사는 동 임명통지서를 7.25. G. Palthey 국제연합 구주사무소장대리에게 전달함.

2. 국제연합구주사무소장대리는 1973.7.25. 김용식 외무부장관 앞으로 아래 내용의 답서를 발송함.

- ❁ 한국 정부가 황호을 대사를 제네바 국제연합구주사무소 및 국제기구대표부 대사로 임명한 공한 접수를 확인함.
- ❁ 황 대사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함.

대사파견 - 인도네시아

| 73-003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의전과
MF번호	2007-4 / 16 / 1-47(47p)

1. 정부는 1973.9.20. 김좌겸 신임 주인도네시아대사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한바, 인도네시아 정부가 10.3. 동 아그레망을 부여함에 따라 정부는10.23. 김좌겸 대사를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임명함.

2. 김좌겸 대사는 1973.11.17. 수하르토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아래 요지로 제정사를 행함.

- ❁ 수하르토 대통령의 안녕과 인도네시아 국민의 번영 및 행복을 위한 한국 대통령의 정중한 인사를 전달함.
- ❁ 양국이 평화, 자유 및 번영을 위한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정식 외교관계(full diplomatic relations)로 격상하여 초대 대사로 부임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함.
- ❁ 지난 4년간 인도네시아는 진보와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수하르토 대통령의 영도하에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커다란 진전을 성취한바, 특히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달성함.
- ❁ 수하르토 대통령의 영도력과 인도네시아 국민의 단결, 통합에 경의를 표하며, 인도네시아가 최근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보 증진에 기여했음을 평가함.
- ❁ 인도네시아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달성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이해와 지지를 보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이는 한반도를 위요한 긴장 완화와 평화통일 추구 노력에 도움이 되는 한편 양국간 기존 경제협력 관계가 향후 양국의 공동 번영과 진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함.
- ❁ 대사로서의 최선의 임무 수행을 다짐함.

3. 수하르토 대통령의 답사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초대 대사로 부임한 것을 환영함.
- ❁ 아시아 국가들의 당면 과제는 발전과 번영이며, 각국이 독립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이 긴요함.
- ❁ 각국의 상호 의존을 통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한 · 인도네시아 양국의 기존 우호관계 증진이 필요하며,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이해가 상존함.
- ❁ 대사로서의 임무 성공을 위해 협조 지원을 다짐하며, 한국 대통령께 안부를 전달 바람.

대사파견 - 필리핀

| 73-003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의전과/총무과
MF번호	2007-5 / 14 / 1~31(31p)

1. 정부는 1973.3.26. 장지량 주필리핀 신임 대사를 내정하고 아그레망을 요청한바, 필리핀 정부가 4.12. 아그레망에 동의하는 서한을 전달해 옴에 따라 정부는 5.26. 장지량 대사를 신임 주필리핀대사로 임명함.

2. 신임 장지량 대사는 1973.6.20.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후 아래와 같이 환담함.

❋ 장지량 대사 언급 요지

- 한국 대통령의 안부를 전달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면서 남북한이 문제 해결을 통해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 중임을 설명함.
- 한 · 필리핀 간 기존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언급함.

❋ 마르코스 대통령 언급 요지

- 남북대화를 통한 통일 전망을 문의한바, 배석한 필리핀 외상은 북한은 남북한 통일 달성 목적보다는 대화 기회를 이용해 국제적인 지위 향상과 지지 세력 규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함.
- 양국 간 통상 진흥을 통한 상호 유대 강화를 희망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한국 대통령의 영도력을 평가하면서 안부를 전달해 주기를 희망함.

대사파견 - 페루

| 73-0036 |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2007-5 / 20 / 1~145(145p)

1. 정부는 1971.9.14. 전상진 신임 주페루대사를 내정하고 아그레망을 요청한바, 페루 정부는 10.16. 아그레망 승인을 통보해 옴.

2. 전상진 대사는 1972.3.8. 알바라도 페루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전상진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 요지

- 초대 상주대사로 부임케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국 대통령의 안부를 전달함.
- 한 · 페루 양국은 민주와 인권 가치를 공유하며, 국가의 독립과 사회 발전을 열망함.
- 알바라도 대통령 영도하에 페루가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 중임을 평가하며, 대사로서의 충실한 임무 수행을 다짐함.
-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정과 존경을 전달하며, 페루의 복리와 번영을 기원함.

❁ 페루 대통령의 언급 요지

- 한국의 초대 상주대사로의 부임을 축하함.
- 페루 정부는 한국과의 우호관계가 가일층 강화되기를 희망함.

3. 정부는 1973.4.3. 전상진 주페루대사를 주볼리비아 겸임대사로 내정하고, 주아르헨티나 김동성 대사(전 주볼리비아 겸임대사)가 4.22.~4.30. 볼리비아에 출장하여 이임 인사와 함께 전상진 대사에 대한 겸임 아그레망을 요청한바, 볼리비아 정부가 4.30. 아그레망 승인을 통보함에 따라 정부는 6.15. 전상진 대사를 주볼리비아 겸임대사로 임명함.

4. 전상진 대사는 1973. 7.31.~ 8.7. 볼리비아 출장을 통해 8.3. 수아레스 대통령에게 겸임 신임장을 제정하고 외상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함.

❁ 외상은 한국 정부의 긴장 완화 노력에 이해를 표명하고, 북한의 신뢰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함.

❁ 전상진 대사는 볼리비아 출장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수아레스 대통령은 민족주의 인민전선 후보자로 재선 입후보를 발표한 바, 1974년 대통령 선거에서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관측됨.
- 현 정부의 대외정책은 우경중도노선을 지향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우호관계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당분간 북한과의 관계 수립 가능성은 희박함.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및 주한 유엔군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에 이해를 표시한바, 지지 확보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교섭이 필요함.

대사파견 - 스웨덴

| 73-003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의전과
MF번호	2007-5 / 26 / 1~41(41p)

1. 스웨덴 외무성은 1973.8월 동국을 방문한 함병춘 특사에게 신임 주스웨덴대사 임명 진행 현황을 문의한바, 함병춘 특사는 8.17. 스웨덴 외무성 사무차관과의 오찬 시 한국 정부는 군 출신이 아닌 직업 외교관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2. 스웨덴 외무성 의전장은 신임 한국대사의 부임 시 신임장 제정은 1973.11월 중순경 가능할 것임을 밝힘.

3. 스웨덴 정부가 1973.10.8. 신임 장상문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에 따라 정부는 10.23. 장상문 대사를 주스웨덴대사로 임명함.

4. 장상문 대사는 1973.11.22. 스웨덴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한국 대통령의 문안 인사를 전달한바, 국왕은 답례 인사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함.

대사파견 - 시에라리온

| 73-0038 |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의전과/서아프리카과
MF번호	B-19 / 25 / 1~15(15p)

1. 시에라리온 정부가 1971.5.3. 공화국이 4.19.자로 새롭게 수립되고, 국가원수가 변경됨을 이유로 관례상 신임장을 재제정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정부는 남철 대사에게 7.29. 스티븐스 시에라리온 대통령에 대한 신임장을 제정토록 지시함.

2. 남철 대사는 스티븐스 대통령에 대한 신임장 제정 시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과 북한의 무력통일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대시에라리온 원조 계획을 밝힌바, 스티븐스 대통령은 한국의 친선사절단 파견 계획을 환영한다고 언급함.

3. 남철 대사의 시에라리온 주요 인사 면담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외무성 정무국장 언급 요지

- 시에라리온은 분단국가에 대한 비동맹 정책을 지향하며,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정책 변동은 없음.
- 북한의 만국우편연맹 가입 신청에 대해서는 상기 정책에 따라 기권할 예정임.
- 중국(구 중공)에 대해서는 큰 국가임에 따라 특별한 고려를 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접근 시에도 대만(구 자유중국)과의 우호관계는 유지함.

❋ 보건성 차관 및 외무성 정무국장 언급 요지

- 한국 정부가 기증 앰뷸랜스가 8.20. 도착 예정임을 통보한바, 시에라리온 측은 사의를 표명함.

❋ 관찰

- 북경, 평양 방문사절단에 외상이 포함되어 북한과의 수교가 우려되나, 외무성과 미국 대사관 측의 입장을 종합하면 동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됨.

4. 강영규 주코트디부아르대사가 1973.8.23. 주시에라리온 겸임대사로 임명됨에 따라 강영규 대사는 12.4. 주시에라리온 겸임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스위스

| 73-003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의전과/구주과
MF번호	2007-6 / 2 / 1~31(31p)

1. 정부는 이동원 신임 주스위스대사를 내정하고 1973.4.6. 아그레망을 요청한바, 스위스 정부가 4.25. 아그레망에 동의함에 따라 정부는 5.26. 이동원 대사를 신임 주스위스연방대사로 임명함.

2. 이동원 대사는 1973.8.2. 스위스연방 대통령을 대리한 H. P. Tschudi 내무장관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아래 요지의 신임장 제정사를 행함.

- 한국 대통령의 안부 인사 전달 및 스위스의 번영 기원
- 대사로서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짐
- 1953년 한국전쟁 종전 이후 스위스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해 온 데 대해 사의 표명
-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세계적인 데탕트를 위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6·23 특별 선언을 발표한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동 선언에 대한 이해와 협조 요청

대사파견 -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 73-004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의전과/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B-19 / 29 / 1~17(17p)

1. 정부는 1973.9.15. 강영규 주코트디부아르대사를 주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겸임대사로 임명함.

2. 강영규 대사는 1973.11.27. Lamizana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아래와 같이 환담함.

❁ 강영규 대사는 부르키나파소의 한재 피해에 위로를 전달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함.

❁ Lamizana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관계 증진을 희망하고 한국의 평화적 통일 노력에 대한 성공을 기원하는 한편,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으나, 한국에 대한 우의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히면서 북한과의 관계로 인해 한국과의 관계가 저해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3. 강영규 대사는 1973.11.27. 외상대리 Rome 내무장관을 아래와 같이 면담함.

❁ 외상대리 언급 요지

- 개인적으로 공산주의자를 불신하며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반대한바, 농림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함.
- 북한이 외교관계 수립 전 행한 원조 약속을 이행치 않고 있는바, 북한 대사의 부임을 반대하며 한국과의 우호협력 관계가 계속 증진되기를 희망함.

❁ 강영규 대사 언급 요지

- 한국은 남북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 중이나 북한의 이중적인 태도로 진전이 없음.
-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부르키나파소의 이해와 협조로 한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희망함.

대사파견 - 사모아(구 서사모아)

| 73-0041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총무과/동남아과
MF번호	B-19 / 30 / 1~67(67p)

1. 정부는 1972.9.15. 사모아(구 서사모아)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함.

- 정부는 한국 원양어선단의 보호와 장래 사모아의 유엔 가입 등 국제적인 진출에 대비한 외교관계 수립 필요성에 따라 1972.3.10. 주호주대사를 통해 정부의 수교 의사를 사모아 측에 통보한 바 있음.
- 주호주대사의 8.16.~8.30. 겸임국 순방 중 사모아 방문 시 8.21.자로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함.
- 사모아와의 수교에 따라 남태평양 해역 내 한국 원양어선단 보호가 용이하게 되었으며, 향후 사모아가 유엔에 가입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남태평양 지역에 대한 외교 기반 확충의 계기를 마련함.

2. 사모아 정부가 1972.11.14. 주호주대사의 사모아 겸임대사 임명에 동의함에 따라 민충식 주호주대사는 1973.3.28. 사모아 M. Tanumafili 국가원수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동 기회에 남북대화 및 10월 유신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정부 입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함.

3. 민충식 대사는 1973.3.26.~4.2. 사모아 방문 기간 중 아래와 같이 주요 인사를 면담함.

- Saili 재무상
  - 한국 방문 제의를 수락함.
- Seiuli 보건상
  -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근무 중인 한국 의사 활동에 대한 협조 요청에 대해 동 장관은 지원을 약속함.
- Laumea 노동상
  - 동 장관의 건설 및 기술 분야 지원 요청에 대해 사모아의 유익한 분야를 선정하여 훈련생 추천 시 반영하여 기술 지원할 것을 약속함.
- Muagututia 농림상
  - 동 장관의 한국 어선의 아피아 항구 사용 제의에 대해 양국 간 수산 협력 가능성에 대해 조속히 회신할 것을 약속함.

4. 민충식 대사는 1973.3.24.~4.7. 뉴질랜드, 사모아, 통가, 피지 등 겸임국을 출장하고, 주요 인사 면담 결과 및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된 겸임국 출장 보고서를 4.13. 외무부에 보고함.

대사부임 - 벨기에

| 73-004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B-19 / 32 / 1~44(44p)

1. 외무부 구아국은 1973.7.12. 귀임하는 J. F. Trine 주한 벨기에대사의 1970.2~73.8월 3년간 근무 시 국무총리 벨기에 방문 실현 등 한 · 벨기에 양국 간 기존 우호관계 공고화를 위한 공헌 및 한국의 대EC(구주공동체) 외교의 중요성 등 정책적인 면을 고려하여 동 대사에 대한 서훈을 건의하였으며, 주한 벨기에대사관은 8.6. 동 대사의 이임을 통보해 옴.

2. 주한 벨기에대사관는 1973.6.28. 후임 G. Jeanbelly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7.13. 동 아그레망 승인을 통보함.

3. 신임 대사는 1973.9.14.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신임장을 제정함.

❁ 신임장 제정사 요지

- 벨기에 국왕의 안부 전달
- 1967년 박 대통령 취임식 당시 벨기에 특사로 참석했음을 언급
- 대사로서의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 노력 예정으로 한국 정부의 우호적 협조 기대

❁ 박정희 대통령 답사 요지

- 신임 대사 부임 환영
- 한국전쟁 당시 벨기에의 지원에 대한 사의 표명
- 양국 간 전통적 우호관계 확대 희망
-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의 벨기에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이해와 협조 증대 기대
- 대사의 소임을 위한 한국 정부의 협조 보장
- 벨기에 국왕에 대한 안부 전달 요청 및 벨기에의 번영을 기원

대사부임 - 브라질

| 73-004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의전과/중남미과
MF번호	B-19 / 33 / 1~51(51p)

1. 브라질의 주한 M. T. Ribeiro 대사는 1973.7.21. 이임한바, 동 대사의 7.16. 대통령 이임 예방 시 외무부가 작성한 참고 자료 및 동 대사의 주요 공적 요지임.

- 브라질 정부가 예산 사정을 이유로 1970년 대사관 폐쇄 검토 시 한국의 브라질 커피 시장으로서의 유망성 등을 이유로 본국 정부에 대사관 존속을 강력히 건의하여 대사관을 존치
-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한국 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에 기여
- 대브라질 한국 이민 송출에 적극적으로 협조
- 양국 간 주요 인사 교류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양국 간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

2. 주한 브라질대사관은 1973.4.20. 후임 J. de A. Serra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신청한바, 외무부는 4.28. 아그레망을 부여하였으며, 동 신임 대사는 7.6. 주한 대사로 임명됨.

3. 동 신임 대사는 1973.11.8.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신임장 제정사 요지
  - 주한 대사로 임명되어 영광임.
  - 한국과 브라질 양국 간의 전통적 우호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기를 기대함.
- 박정희 대통령 답사
  - 주한 대사 부임을 환영하며, 양국 간 유대관계가 증진, 확대되기를 기대함.
  - 한국 정부와 국민은 대사의 임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할 것임.
  -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안부를 전해 주기 바라며, 브라질 국민의 번영을 기원함.

4. 외무부 의전실은 동 대사의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서울시장 등 주요 인사 예방을 주선함.

대사부임 - 볼리비아

| 73-0044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의전과/남미과
MF번호	B-19 / 34 / 1~65(65p)

1. 주한 겸임 볼리비아대사관은 1972.3.15. 주한 겸임 A. Yoshida Vaca 대사 임명을 위한 아그레망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4.17. 동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동 주한 겸임대사는 1973.5.8.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신임장 제정사 요지

- 초대 주한 겸임대사 부임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을 기대함.
- 볼리비아는 남미 내륙국으로서 불리한 여건하의 개발도상국이나 천연자원 등 경제적 잠재력이 풍부하고, 1971년 내전 후 군부 통치하에 자유와 법치를 회복 중임.
-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한국의 이해와 협력을 요망함.
- 볼리비아 대통령의 안부를 전해 드리며, 한국의 번영을 기원함.

❁ 박정희 대통령 답사 요지

- 주한 대사 부임을 환영함.
- 양국 간 전통적 유대관계가 평화와 민주주의 원칙 수호라는 공동 목표하에 증진되고 있음.
- 대사 재임 기간 중 양국 간 현존 유대관계의 공고화와 상호 협조를 기대함.
- 대사의 소임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국민의 협조를 보장함.
- 볼리비아 대통령 및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함.

3. 외무부 의전실은 동 대사의 방한 계기에 대법원장, 국무총리, 서울시장, 국회의장, 경제기획원장관 등 주요 인사 예방 일정을 주선함.

대사부임 - 콜롬비아

| 73-0045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의전과/중남미과
MF번호	B-19 / 35 / 1~94(94p)

1. 콜롬비아의 주한 겸임 C. H. Trujillo 대사는 1972.7.19. 이임하였으며, 콜롬비아 정부는 L. G. Barros 신임 주한 콜롬비아 겸임대사를 내정하고 8.31. 아그레망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9.19. 동 겸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외무부 구미국장은 1972.12.26. 동 대사 면담 시 조속한 신임장 제정 및 주한 상주공관 신설을 요청한바, 동 대사는 1973년 2월경 신임장을 제정할 계획이며, 본국 정부에 주한 상주공관 설치도 적극 건의할 예정임을 언급함.

3. 외무부는 1973.2.12. 주일대사에게 동 겸임대사의 신임장 제정 동향을 파악할 것을 지시한바, 주일대사는 동 대사가 5월 중순 신임장 제정을 희망함을 보고함.

4. 동 대사는 1973.5.8.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신임장 제정사 요지

- 주한 대사 부임을 영광으로 생각함.
- 양국 간 상호 이해 증진, 결속 및 협조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짐함.
- 콜롬비아는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6·25 한국전쟁 시 파병한바, 형제국인 양국에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명이 부여됨.
- 대사로서의 임무 수행 완수를 위해 노력할 것임.

❋ 박정희 대통령 답사 요지

- 대사 부임을 환영함.
- 양국은 상호 협력 정신과 전우애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한국은 자유, 평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싸운 콜롬비아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있음.
- 양국 간 협력 및 상호 교류 증진, 특히 경제, 무역, 문화 등 분야의 협력 증진 여지는 다대함.
- 대사 재임 기간 중 양국 간 유대 공고화와 제 분야에서의 상호 협조를 기대함.

5. 외무부 의전실은 동 대사의 방한 기회에 국무총리, 대법원장, 상공부장관, 서울시장,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예방 일정을 주선함.

대사부임 - 카나다

| 73-0046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B-19 / 36 / 1~134(134p)

1. 캐나다의 동경 상주 주한 겸임 H. O. Moran 대사가 1972.10.23.~10.27. 이임 예방차 방한하여 10.26.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함.

2. 캐나다 정부는 1972.5.3. 후임 R. Campbell 주한 겸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승인을 요청한바, 정부는 5.25. 동인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하였으며, 캐나다 외무성은 7.7. 동 대사의 일본 상주 주한 겸임대사 임명을 발표함.

3. Campbell 대사는 1973.2.23. 박정희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신임장을 제정함.

❁ 신임장 제정사 요지

- 신임장 제정을 영광으로 생각함.
- 한국의 발전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대통령의 영도하에 한국 국민의 노력이 훌륭한 결과를 달성함.
-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 국민의 노력은 지역적 균형 모색과 평화 시대를 추구하는 세계적 노력과 일치함.
- 캐나다는 한국전쟁 당시 무력 침략 방지를 위해 파병함.
- 한 · 캐나다 양국은 관계 증진 및 강화, 국제 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 중임.
- 대사로서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함.

❁ 박정희 대통령 답사 요지

- 대사의 부임을 환영함.
- 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공동 이념하에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한국전쟁 당시 자유와 독립 수호를 위한 캐나다의 희생을 기억함.
- 양국 간 상호 협력 관계 증진을 평가하며, 향후 제 분야의 관계 증진을 기대함.
- 대사의 소임 완수를 위해 한국 정부와 국민의 협조를 약속함.
- 엘리자베스 여왕의 안녕과 캐나다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함.

4. 동 대사는 서울 상주 S. T. Stiles 신임 캐나다대사 부임 예정에 따라 이임 인사차 1973.12.5.~12.9. 방한하여 12.7.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하고, 국무총리 및 부총리도 예방함.

대사부임 - 중앙아프리카

| 73-0047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의전1과/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B-19 / 37 / 1~108(108p)

1.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1972.8.7. N. Kombot-Naguemon 주일대사를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아그레망을 요청한바, 정부는 9.19. 동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에 동의하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11.24. 동인을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함.

2. 동 대사는 1973.3.6. 박정희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신임장을 제정함.

❁ 신임장 제정사 요지

- 대사로 부임함을 영광으로 생각함.
- 최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도 Bangi에 한국 상주대사관 설치로 양국 관계가 더욱 증진되고 있음.
- 대화와 협상을 통한 이산가족 재결합 및 통일 성취를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주목하며, 특히 평화적 통일 모색을 위한 7·4 남북공동성명은 아시아 지역의 긴장 완화에도 기여할 것임.
-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 추진으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의 성과도 다대함.
- 양국이 기존 우호협력관계를 토대로 경제, 기술, 문화 분야의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함.
- 양국 간 이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함.

❁ 박정희 대통령 답사 요지

- 대사 부임을 환영함.
- 양국 간 1963년 수교 이래 우호관계 긴밀화에 만족하며, 향후 양국 관계 강화를 확신함.
-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적 어려움 탈피를 위한 보카사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함.
- 대사의 임무 수행을 위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협조를 약속함.

3. 외무부 의전실은 동 대사 방한 중 국무총리, 대법원장, 서울시장 등 주요 인사 예방 일정을 주선함.

대사부임 - 에콰도르

| 73-0048 |

생산연도	1970-1973
생 산 과	의전과/남미과
MF번호	B-19 / 38 / 1~88(88p)

1. 에콰도르 정부는 1963.12월 이래 공석 중인 일본 상주 주한 에콰도르 겸임대사로 F. U. Ortiz 대사를 내정하고 1972.1.13. 아그레망을 요청한바, 정부는 1972.5.15. 아그레망에 동의함.

2. Ortiz 대사는 1973.2.23. 박정희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신임장을 제정함.

❁ 신임장 제정사 요지

- 한국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졌으며, 한국 국민의 가치관, 이념, 국민성은 밝은 장래를 약속함.
- 양국이 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 중임을 평가함.
- 에콰도르 혁명정부는 중대한 개혁을 수행 중으로, 특히 자연자원의 개발과 보호는 중요한 정책임.
- 한국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기원함.
- 대사로서의 임무 수행을 위한 지원과 배려를 요망함.

❁ 박정희 대통령 답사 요지

- 대사의 부임을 환영함.
- 양국 간 돈독한 우호관계는 상호 이해와 협력 정신으로 계속 증진될 것임.
- 한국은 대내적으로는 건전한 민주 국가 건설, 대외적으로는 평화 애호 제국과의 돈독한 관계 유지에 진력하고 있음.
- 최근 상호 경제사절단 교환 방문은 양국 관계 증진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제 분야에서 협력 관계 확대를 희망함.
- 대사의 중임 수행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국민의 협조를 다짐함.

3. 외무부 의전실은 동 대사의 국무총리, 서울시장, 대법원장 등 주요 인사 신임 예방 일정을 주선함.

대사부임 - 엘살바도르

| 73-0049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의전과/중미과
MF번호	B-19 / 39 / 1~64(64p)

1. 엘살바도르 외무성은 1972.7.10. M. Walter Beneke 전 외상을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아그레망을 요청한바, 정부는 8.9. 아그레망을 부여함.

2. Beneke 대사는 1973.5.8. 박정희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신임장을 제정함.

❁ 신임장 제정사 요지

- 천 년의 문화를 간직하고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한국에 대사로 부임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함.
- 양국은 그간 돈독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공고히 해 옴.
- 산체스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수년 전 한국 방문 시 한국 정부와 국민의 후의는 엘살바도르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된 바 있음.
-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짐함.

❁ 박정희 대통령 답사 요지

-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며, 대사의 부임으로 기존 우호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확신함.
- 산체스 대통령의 방한은 양국 간 진정한 우의와 협력의 기초를 마련함.
- 대사 재임 중 한국 정부와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보장함.
-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건승과 엘살바도르의 번영을 기원함.

3. 외무부 의전실은 동 대사의 신임 인사차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 서울시장 등 주요 인사 예방 일정을 주선함.

대사부임 - 핀란드

| 73-005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서구2과/의전과
MF번호	B-19 / 40 / 1~64(64p), Re-22 / 16 / 1~5(5p)

1. 핀란드 정부는 1973.10.8. O. Lares 주일대사의 주한 겸임대사 아그레망을 요청해 온바, 정부가 10.19. 동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에 따라 핀란드 정부는 10.31. 동 대사를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함.

2. Lares 대사는 1973.12.11. 박정희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신임장을 제정함.

❁ 신임장 제정사 요지

- 핀란드 대통령의 안부 전달과 함께 한국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함.
- 한국은 유구한 역사를 통해 정체성 및 수준 높고 창의적인 문화를 보존해 옴.
- 양국 간 협력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짐함.

❁ 박정희 대통령 답사 요지

- 대사의 부임을 환영함.
- 1973.8월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우호관계 및 상호 협력이 강화되어 왔음을 평가하며, 대사의 부임을 계기로 양국 간 유대관계가 더욱 공고화되기를 기대함.
- 대사의 중임 수행을 위한 신임과 협조를 보장함.
- 핀란드 대통령의 건안과 핀란드의 번영을 기원함.

3. 외무부 의전실은 동 대사의 신임 인사차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서울시장 등 주요 인사의 예방 일정을 주선함.

대사부임 - 과테말라

| 73-0051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의전과/중남미과
MF번호	B-19 / 41 / 1~58(58p)

1. 과테말라 외무성은 1972.6.28. F. A. Gandara 주일대사를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아그레망을 요청한바, 정부는 8.9. 아그레망에 동의함.

2. 동 대사는 1973.6.14. 박정희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신임장을 제정함.

❋ 신임장 제정사 요지

- 과테말라 대통령의 안부를 전달함.
- 양국 간 우호관계 공고화를 위한 노력을 다짐함.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조속한 통일을 기원함.

❋ 박정희 대통령 답사 요지

- 대사의 부임을 환영함.
- 양국은 1962년 수교 이래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대사의 부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공고하게 발전할 것으로 확신함.
- 대화를 통한 평화적 조국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한 과테말라의 우의와 유대에 사의를 표함.
- 대사의 중임 수행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국민의 신임과 협조를 보장함.

3. Gandara 대사는 1973.6.15. 외무부 미주국장을 면담하고, 양국 간 통상협정 체결 및 교역 증진 문제 등을 협의함.

❋ 동 대사는 한국산 전자제품의 수입에 관심을 보임.

❋ 외무부 미주국장은 과테말라가 주한 상주공관을 개설할 경우 한국도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주과테말라공관 개설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함.

4. 외무부 의전실은 동 대사의 신임 인사차 국회의장, 대법원장,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일정을 주선함.

대사부임 - 바티칸

| 73-0052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의전과/서구2과
MF번호	B-19 / 42 / 1~43(43p)

1. 주한 교황청대사관은 1973.2.15. 교황청이 L. Dossena 대주교를 주한대사로 내정하고 아그레망을 요청한바, 정부는 2.26. 아그레망에 동의함.

2. Dossena 대사는 1973.6.14. 박정희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신임장을 제정함.

❋ 신임장 제정사 요지

- 대사 부임을 영광으로 생각함.
- 최근 한국이 이룩한 업적을 경하하며, 이러한 업적은 한국의 사회경제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임.
- 평화를 위한 공동 노력과 희생을 위해 매진할 것임.
- 대사로서의 임무 수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망함.

❋ 박정희 대통령 답사 요지

- 대사의 부임을 환영함.
- 한국과 교황청이 돈독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온 데 만족을 표명함.
- 대사의 부임을 계기로 한국과 교황청 간 현존하는 우호관계가 더욱 증진, 강화되기를 희망함.
-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 교황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함.
- 대사의 중임 수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신임과 협조를 보장함.

3. 외무부 의전실은 동 대사의 신임 인사차 대법원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서울시장 등 주요 인사 예방 일정을 주선함.

대사부임 - 이스라엘

| 73-005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의전과/아중동과
MF번호	B-19 / 43 / 1~20(20p)

1. 이스라엘 정부는 1973.6월 A. B. Yohanan 신임 주한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한바, 정부는 6.22. 아그레망을 부여함.

2. Yohanan 대사는 1973.9.14. 박정희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신임장을 제정함.

❁ 신임장 제정사 요지

- 대사 부임을 영광으로 생각함.
- 양국 간 기존 우호관계 공고화 및 통상, 문화, 과학, 기술 등 제 분야의 협력 증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짐함.
- 양국은 오랜 전통과 고유의 문화를 보유한바, 자립과 균형경제 달성을 위한 결의도 유사함.
- 이스라엘 대통령의 안부 전달과 함께 한국의 번영과 행복을 기원함.

❁ 박정희 대통령 답사 요지

- 대사의 부임을 환영함.
- 지난 10년간 양국 간의 우호관계 증진에 만족을 표함.
- 양국이 공통적으로 국가 발전과 경제 번영이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공감함.
- 대사의 부임을 계기로 양국 간 기존 우호관계가 더욱 증진되고, 상호 협력 분야가 확대되기를 기대함.
- 대사의 중책 수행을 위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협력을 보장함.

대사부임 - 네덜란드

| 73-0054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B-17 / 10 / 1~10(10p)

1. 김용식 외무부장관은 1972.4.3. 이임하는 Verkade 주한 네덜란드대사대리를 위한 환송 오찬을 주최하고, 동 대사대리의 재임 중 공적을 치하함.

2. 신임 M. J. Meijer 주한 네덜란드대사대리가 1972.5.27. 부임함.

- 동 대사대리는 1955년 외무성에 입부한 정통 외교관임.
- 동 대사대리는 건강상 이유로 1973.9.1. 주한 대사대리 임무를 종료함.

대사부임 - 스페인

| 73-005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의전과/구주과
MF번호	B-19 / 45 / 1~82(82p)

1. 정부는 주한 상주 스페인대사관 설치 및 국무총리의 스페인 방문 실현을 통한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1973.6.1. 이임한 A. Mery del Val 주한겸임 스페인대사에 대한 수교훈장 광화장 서훈을 결정한바, 주스페인대사는 10.16. 동 대사에게 훈장을 전수하였음을 보고함.

2. 주한겸임 스페인대사관은 1973.5.14. 김용식 외무부장관 앞으로 J. M. Aguado Saralegui 초대 주한 상주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요청 서한을 송부해 온바, 정부는 5.25. 아그레망을 부여함.

❋ 한 · 스페인 양국 정부는 1973.6.1.자 동 대사 임명 발표에 합의함.

❋ 동 대사는 10.11. 부임함.

3. 동 대사는 1973.10.22. 박정희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신임장을 제정함.

❋ 신임장 제정사 요지

- 초대 주한 상주대사로서 신임장 제정은 양국 간 긴밀한 외교관계와 전통적인 유대관계가 강화 의지를 반영하는 것임.
- 유구한 전통을 지닌 한국에 부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국이 높은 수준의 번영과 발전을 달성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함.
- 대사로서 상호 이해와 유대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짐함.
- 소임 완수를 위한 한국 정부의 특별한 배려를 희망하며, 한국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기원함.

❋ 박정희 대통령 답사 요지

- 초대 주한 상주대사 부임을 환영함.
- 양국 간 국교 수립 이후 우호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증진되고 있는 데 만족을 표하며, 금년 한국 국무총리 스페인 방문이 양 국민 간 이해와 협조 심화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함.
- 대사의 부임으로 양국 간 협력 관계 확대 및 상호 번영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함.
- 대사의 중임 수행을 위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협조를 보장함.
- 프랑코 총통의 건강과 스페인의 번영을 기원함.

대사부임 - 스위스

| 73-005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의전과/서구1과
MF번호	B-19 / 46 / 1~11(11p)

1. J-P Lustenberger 스위스 신임 주한 대사대리가 1973.6.9. 서울 부임함.

2. 주한 스위스대사관은 1973.6.12. 김용식 외무부장관 앞 공한을 통해 이임하는 C. Truninger 전 임대사대리 및 신임 대사대리의 외무장관 면담을 요청함.

❁ 신임 Lustenberger 대사대리 약력

- 1920년 스위스 로잔 생
- 1945년 외무성 입부
- 맨체스터, 아테네, 리옹, 베이루트, 필라델피아, 뉴욕 등에서 근무
- 1970.9월 이후 주스리랑카대사관 차석으로 근무

3. 주한 스위스대사관은 1973.6.27. 신임 대사대리의 김종필 국무총리, 민복기 대법원장, 정일권 국회의장, 양택식 서울시장에 대한 신임 예방 협조를 요청한바, 외무부 의전실은 동 예방을 주선함.

영사파견 및 접수절차 간소화

| 73-0057 |

생산연도	1968-1973
생 산 과	의전2과
MF번호	B-19 / 47 / 1~21(21p)

1. 외무부는 1970.2.21. 아래 내용의 영사 파견 및 접수 절차 간소화를 위한 대통령 결재를 득함.

❋ 간소화 필요성

- 영사 파견 및 접수 절차에 관한 각국 관례를 검토한바, 외국 파견 모든 영사에 대한 대통령 서명과 국무총리, 외무장관의 영사위임장 발급, 외국 영사의 모든 위임장에 대한 영사인가장 발급은 불합리하고 불필요

❋ 간소화 근거

- 영사 숫자 급증, 상호주의 원칙, 영사위임장 발급 간소화 또는 생략이 국제적 경향

❋ 간소화 내용

- 한국의 영사 파견: 공관장은 접수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사위임장 발급, 여타 영사는 현지 공관장 명의로 영사 임명 통고, 명예영사도 동일한 절차 적용
- 외국 영사 접수: 공관장인 영사로서 파견국 원수가 발급한 영사위임장 제출자에 한해 대통령 명의의 영사인가장 발급, 기타 영사위임장 제출자는 외무장관 명의의 영사인가장 발급, 외상 · 주한 공관장의 영사 임명 통고 시 외무장관 명의의 영사 인가 통고

2. 외무부는 1970.2월 전 재외공관에 상기 영사파견 및 정부절차 간소화 시행내용을 통보하고, 주재국의 입장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3. 외무부는 1973.10.5. 독일, 멕시코, 스페인 및 뉴델리 주재 공관장에게 주재국 영사관장 및 기타 영사에 대한 인가장 발급 관례를 보고하도록 지시한바, 동 보고 내용임.

❋ 스페인: 영사인가장 발급 시 외무성 의전실 관계관이 위임서명

❋ 멕시코: 총영사 및 영사는 국가원수 명의의 영사인가장 발급, 명예영사는 외무장관 명의의 인가장 발급

❋ 독일: 영사관 관장에게만 대통령 서명 영사인가장 발급, 참사관 이하는 외무장관이 위임서명, 명예영사는 연방대통령이 발급

❋ 뉴델리: 국가원수 명의 영사위임장 소지 영사공관장에게 발급, 단 파견국의 국가원수 명의의 영사위임장이 아닌 경우 외무성의 통보로서 영사인가장 대신

4. 주한 호주대사관은 1973.12.12. 외무부에 영사위임장 필요 여부를 문의한바, 외무부는 12.24. 영사관장에 한해 영사위임장이 필요하며, 기타 영사의 경우 대사관의 영사 임명 통고로 충분함을 회신함.

영사부임 - 벨기에

| 73-005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특전과
MF번호	B-19 / 49 / 1-7(7p)

1. 벨기에 정부는 1973.11.6. G. Jenebelly 주한 벨기에대사를 주한 벨기에총영사로 임명하고, 영사위임장을 제출함.

- 서울시 및 경기도 관할 박투평 총영사의 1973.9.7. 사망에 따른 영사관할권 재편을 위한 요청
- 벨기에 국왕은 1973.9.17. 영사위임장 발급

2. 외무부는 1973.11월 동 요청에 따른 대통령 명의의 영사인가장 발급을 위한 내부 절차를 거쳐 12.1. 주한 벨기에대사관에 대한 공한을 통해 Jenebelly 대사에 대한 대통령 명의 총영사 영사인가장 발급을 통보함.

영사부임 - 브라질

| 73-0059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의전2과
MF번호	B-19 / 50 / 1~11(11p)

1. 주한 브라질대사관은 1972.3.4. 외교 공한으로 동 대사관 A. R. Da Silva Neves 영사가 영사위임장 제출 전까지 잠정적으로 영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가해 줄 것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3.13. 동 영사의 잠정적 영사 임무 수행을 인가함.

2. 주한 브라질대사는 1973.1.26. 외교 공한으로 상기 da Silva Neves 영사의 영사위임장을 외무부에 제출하고, 영사인가장 발급을 요청함.

3. 외무부는 1973.1.29. 동 영사에 대한 아래 내용의 장관 명의 영사인가장을 발급하고, 2.2. 외교 공한을 통해 상기 영사인가장 발급 사실을 주한 브라질대사관에 통보함.

- 대통령이 위임한 권한에 의거, 영사 임명장을 제출한 동인의 대한민국 서울 주재 브라질 연방 공화국 영사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법과 대한민국 법에 따라 영사로서의 직무 수행 및 권한과 특권을 향유할 것을 인가
- 그 증거로 외무부의 관인을 날인
- 인가장은 1971.1.29. 서울에서 발급

영사부임 - 카나다

| 73-006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의전2과
MF번호	B-19 / 51 / 1~9(9p)

1.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973.10.15. 외교 공한으로 동 대사관 D. G. Longmuir 영사에 대한 영사위임장을 제출하고, 동 영사에 대한 영사인가장 발급을 요청해 옴.

2. 외무부는 동인에 대해 아래 내용의 장관 명의 영사인가장 발급을 위한 내부 절차를 거쳐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1973.10.18. 외교 공한으로 대통령 명의의 영사인가장 발급 사실을 통보함.

- 대통령이 위임한 권한에 의거, 영사임명장을 제출한 동인의 대한민국 서울 주재 캐나다 영사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법과 대한민국 법에 따라 영사로서의 직무 수행 및 권한과 특권을 향유할 것을 인가
- 그 증거로 외무부의 관인을 날인
- 인가장은 1973. 10.18. 서울에서 발급

명예영사 접수 - 중앙아프리카

| 73-006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B-6-27 / 8 / 1~13(13p)

1. 주일대사는 1973.1월 일본 상주 Kombot-Naguemon 주한겸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사가 서울 주재 명예영사로 적절한 한국 인사 물색과 함께 동 대사 방한 명예영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보고함.

2. 외무부는 명예영사 임명은 양국 간 우호관계 강화 및 한국 경제계 인사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 환기를 통한 교류 증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견지에서 주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이택근 대사의 추천으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1973.3.8. 한미기공 서창선 대표이사를 서울 주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명예영사로 내정함.

- ❋ 건설업과 수출업을 통해 베트남, 태국, 미국 등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 중
- ❋ 대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출 등 추진을 통한 양국 간 교량 역할 수행 의지 표명

3. 외무부는 1973.3월 상기 서창선 대표이사에 대한 주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명예영사 영사인가장을 발급함.

4. 주일대사는 1973.8.9. 주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겸임대사가 아래와 같이 방한 예정임을 보고함.

- ❋ 1973.8.12. 서울 도착, 외무부와 12.1.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독립기념일 초청 인사 관련 협의 희망
- ❋ 8.13. 개최 예정인 주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명예영사 임명 축하 리셉션, 8.14. 명예영사관 개관 행사 및 8.15. 광복절 경축식 참석 예정

부산주재 그리스 명예영사관 설치

| 73-0062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B-23 / 12 / 1~15(15p)

1. 주일대사는 동경 상주 주한겸임 그리스대사관이 1972.11.30. 외교 공한을 통해 현대조선의 그리스인 소유 선박의 건조 등에 따른 그리스 선박의 부산항 입출항 증대에 따른 경남, 전남 및 전북을 관할하는 부산 주재 그리스 명예영사관 설치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음을 보고함.

2. 외무부는 아래 양국관계를 고려하여 1972.12.26. 상기 그리스 측 명예영사관 설치 제의를 수락함.
   - 1967.9.1. 주서울 그리스 명예총영사관 설치
   - 1966.4.20. 이후 주아테네 한국 명예총영사관 유지
   - 1972.12.19. 주아테네 상주공관 설치 의사 통보 지시

3. 외무부는 1973.1.13.자 주한 그리스대사관에 대한 공한으로 경남, 전북 및 전남을 관할하는 주부산 그리스 명예영사관 설치 동의를 통보하였으며, 주일대사는 1.23.자 주일 그리스대사관에 대한 공한으로 동 내용을 통보함.

김영태 주서울 온두라스 명예영사 접수

| 73-006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B-19 / 52 / 1~18(18p)

1. 주멕시코대사는 1973.2.26. 멕시코 주재 온두라스대사가 주서울 온두라스 명예총영사로 추천된 김영태의 임명에 필요한 동인의 이력서 등 참고 사항 통보를 요청해 왔음을 보고한바, 외무부는 1973.5.22. 김영태의 영문 이력서를 주멕시코대사에게 송부함.

2. 주일 온두라스대사는 주일대사에 대한 외교 공한을 통해 온두라스 정부가 1973.8.6. 김영태를 주한 온두라스 명예총영사로 임명하였음을 통보하고, 한국 정부가 동인의 주한 온두라스 명예총영사 임명을 인가해 줄 것을 요청함.

3. 주일 온두라스대사대리는 1973.8.6. 외무부 중남미과장 면담 시 김영태를 온두라스 명예총영사로 임명하였으며, 동인은 사증 발급, 상무 확인 등 영사 업무를 관장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4. 외무부는 1973.9월 상기 김영태 명예총영사에 대한 주한 온두라스 명예총영사 영사인가장을 발급함.

주재관(국방무관) 부임 - 캄보디아(구 크메르)

| 73-006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B-19 / 54 / 1~7(7p)

1. 주캄보디아(구 크메르)대사는 1973.12.4. 캄보디아 정부가 1973.11월 중순 PAL SAM OR 공군대령을 주한 캄보디아대사관 무관으로 내정했으며, 주한 캄보디아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할 것이라고 보고함.

2. 주캄보디아대사는 캄보디아 외무성이 1973.12.13. 외교 공한으로 상기인을 주한 캄보디아대사관 무관으로 임명하는 데 필요한 아그레망을 요청해 왔음을 보고함.

외교특권 및 면제

| 73-006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의전2과
MF번호	B-19 / 55 / 1~22(22p)

1. 주칠레대사는 1973.3.12. 주재국 외무성이 외교공한으로 악화 일로에 있는 생활필수품 구입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대사관 직원 가족 수와 생활필수품 월간 소요량을 외무성에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보고함.

2. 관세청은 1973.4.4. 외무부에 관세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관세가 면세된 물품의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 내 면세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관세 징수 시 사용으로 인한 관세 경감이 1973.2.1.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적용됨을 통보하는 한편 5.8.자로 동 가치 감소 산정 기준을 통보함.

3. 외무부는 1973.7.24. 재무부에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관의 임기 만료 후 이임 시 개인 재산 처분에 따라 수령한 원화의 외화 교환 여부 및 교환 한도액 제한 내용을 문의함.

- ❋ 재무부는 7.28.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비거주자 원화계정에 예치가 가능하며, 동 원화의 외국환 매입은 재무부장관의 허가 사항임을 회신함.
- ❋ 외무부는 주페루대사의 관련 문의에 대해 8.2. 상기 내용을 회신함.

4. 관세청은 1973.10.25. 관세법 이외의 법령,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한 관세 면제 물품 사후관리에 관한 아래 지침을 외무부에 통보함.

- ❋ 관세면제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 내 용도 외 사용 또는 용도 외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경우 면제관세 추징
- ❋ 관세 감면 물품에 대한 감면 조건의 이행 확인은 당해 법령, 조약 또는 협정을 주관하는 부처에서 이행, 면제관세의 추징 사유 발생 시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
- ❋ 관세 감면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면제관세의 추징 사유 발생 시 통보 요망

주한 외교기관 도입 면세차량 양수

| 73-006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B-19 / 56 / 1~36(36p)

1. UNDP(유엔개발계획)은 1973.2.22. 공한으로 낙동강 유역 조사 사업용 차량 7대를 한국 건설부에 양도한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 외무부는 1973.4.24.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주한 외교기관 면세도입 차량의 양수자인 건설부장관에게 면세차량의 양도 및 양수 절차 종결을 위해 통관 세관장이 발행하는 양수예정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1973.5.10. 관세법 관련 규정상 정부에 기증된 물품은 면세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외교기관이 사용 후 정부기관에 기증한 면세차량에 대한 양수양도보고서 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외교기관의 기증 행위 통고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조치를 요망한바, 관세청은 7.1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용 및 공용의 목적으로 수증하는 경우 관세법 제27조 제2의 가항 규정은 생략 가능함을 외무부에 통보함.

2. 외무부는 1973.7.23. WHO(세계보건기구)가 말라리아 박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 2대를 보건사회부에 기증했음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함.

서울 알리앙스 · 프랑세즈(불어학원) 직원 수입 차량 면세문제

| 73-0067 |

생산연도	1969-1973
생 산 과	의전과/공보문화과
MF번호	B-19 / 57 / 1~16(16p)

1. 외무부는 1969.12.1. 재무부장관 앞 공문을 통해 아래 근거로 알리앙스 · 프랑세즈 원장의 차량 관세 면제 수입 허가 조치를 요청함.

- 1968.5.8. 발효된 한국과 프랑스 정부 간의 '문화 및 기술협력 협정'에 따라 문화 · 과학기관을 위해 들여오는 자재 면세수입 허용
- 동 협정 부속서인 1965.12.28.자 교환각서는 한국으로 파견된 프랑스인 전문가의 개인 차량에 대한 관세 면세수입 합의
-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969.11.4. 외무부 앞 공한에서 상기 학원장의 차량 면세수입 요청

2. 외무부 의전실은 1973.5.8. 방교국에 문화협정에 의해 파견된 직원의 소유 차량에 대한 관세 추징권이 소멸될 경우 자유처분 후 신차량 구입 시 관세 면제 허용 여부 및 동 체한 근무 연한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해 관세 면제 허용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문의한바, 방교국은 5.11. 아래와 같이 회신함.

- 한 · 프랑스 문화협정에 따라 파견되는 전문가의 면세수입 차량은 5년 경과 시 자유처분 가능
- 또한 협정의 기본 취지상 면세규정의 면세 혜택이 1회에 한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

3. 외무부 의전실은 1973.11.17. 방교국에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외교 공한으로 한 · 프랑스 문화 및 기술협정에 의거하여 알리앙스 · 프랑세스 원장 소유 차량의 서울시 등록에 필요한 취득세 등 각종 부과금 면제를 요청했음을 설명하고, 동 면제 가능 여부 및 한 · 독일 문화협정과 관련하여 양 협정상 차등 여부를 문의한바, 방교국은 12.5. 한 · 프랑스, 한 · 독일 문화협정 체결 시 상호 차등을 두고자 하는 명시적 의사 표시는 없었음을 회신함.

4. 외무부 정보문화국은 1973.11.29. 의전실에 아래 이유로 한 · 프랑스 문화협정상 관세 면제 수입이 한 · 독일 문화협정상 면제와 동일한 효과를 부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음.

- 한 · 독일 협정은 한 · 프랑스 협정 이후 체결된 것으로 면제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대우상 차등을 부여한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
- 협정의 취지가 국가 간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능한 한 협정 규정을 긍정적으로 적용함이 필요
- 1969.6.18. 제1차 한 · 프랑스 혼성위원회에서 양측 간 상기 부속약정을 관대히 시행하도록 양해

주한 독일문화원(괴테학원) 직원 수입차량 면세문제

| 73-006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공보문화과/조약과/의전2과
MF번호	B-19 / 58 / 1~13(13p)

1. 외무부 정보문화국은 1973.5.18. 문화협정에 의거 한국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면세에 관해 아래 의견을 의전실에 회신함.

- ❁ 한 · 독일 문화협정상 독일 전문가의 한국 도착 9개월 이내 수입하는 1대의 자동차는 면세
- ❁ 동 물품의 한국 내 처분은 한국 정부의 사전허가 필요, 관세 및 조세 지불
- ❁ 한 · 프랑스 문화협정상 면세 수입된 차량은 5년 경과 후 관세 지불 없이 처분 가능, 처분 후 신규 차량 수입 시 면세 허용

2. 외무부 의전실은 1973.10.19. 정보문화국에 주한 독일대사관이 한국에 주재하는 괴테학원 직원 차량의 취득세 등 국내세 면제를 요청해 왔음을 통보하고, 한 · 독일 문화협정에 따른 필요 조치를 요청함.

3. 외무부 의전실은 1973.10.26. 방교국에 국세청이 괴테학원이 유류세 면세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해 왔음을 통보하고, 한국과의 양자협정에 의해 동 유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문의한바, 방교국은 10.30. 아래 회신함.

- ❁ 한 · 독일 정부 간 괴테학원 설립에 관한 협정 제1~2조에 의거하여 동 학원은 외국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기관으로 인정
- ❁ 석유류 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동 유류세 면제 가능

4. 외무부는 1973.11.1. 서울시장에게 주한 독일대사관이 주한 괴테학원 직원 차량의 지방세 면세 조치를 요청해 왔음을 통보하고, 한 · 독일 정부 간 독일문화원 설립협정에 의거하여 지방세 면세 조치를 요청함.

주한 서울일본인학교 중등부 설치, 1973.4.1.

| 73-0069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B-19 / 59 / 1~51(51p)

1.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은 1973.1.11. 외무부 동북아1과장을 면담하고, 재한 일본인학교 중등부 설치를 위한 한국 정부의 허가를 요청함.

2. 외무부는 1973.1.20. 문교부장관에게 주한 일본대사관이 재한 일본인학교 중등부 설치에 관한 아래 계획안을 제시했음을 통보하고, 상호주의에 따라 인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송부한바, 문교부는 2.3.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동 설립 허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회신함.

- ❋ 소재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 ❋ 신설 예정일: 1973.4.1.
- ❋ 활동 범위: 일본의 중학교 1~3년까지의 교육
- ❋ 학생 수: 약 10명
- ❋ 재정: 일부 일본 정부 부담, 기타는 수익자 부담

3. 외무부 동북아과 담당관은 1973.2.20.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을 면담하여 일본대사관 외교공한에서 재한 일본인학교가 서울 주재 일본대사관에 "부속" 되어 있다는 표현에 따른 아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의 시정을 요청함.

- ❋ 당초 재한 일본인학교 설립 요망 시 '서울 일본인회' 소속인바, 이에 기초하여 학교 설립 인가
- ❋ 일본대사관 소속으로 변경 시 새로운 문제 야기
- ❋ 재일 한국인학교는 한국대사관 부속이 아닌 민단이 운영

4. 외무부는 1973.3.2. 주한 일본대사관에 대한 공한을 통해 한국 정부의 인가 취지를 상기하면서 동 학교 입학 대상자는 일본인에 한정하며, 학교는 학사 행정에 관한 한국 정부의 요청 시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한바, 주한 일본대사관은 3.10. 상기 한국 정부의 인가 취지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한을 회신함.

5.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은 1974.2.1. 외무부 동북아1과장을 면담하고 상기 재한 일본인학교에 재일교포 자녀의 입학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한바, 동북아1과장은 해석상 입학이 불가하며, 다만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추후 회답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함.

주한 외국기관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허가 및 면세

| 73-007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특전과/국제법규과
MF번호	B-19 / 61 / 1~10(10p)

1. 내무부는 1973.11.7.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주한 독일대사가 독일문화원 부지 확장을 목적으로 서울시 용산구 소재 토지 약 83평에 대한 소유권 취득 허가를 신청했음을 알려 오면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서울특별시 의견

- 신청지는 도시계획상 남산공원 용지로서 독일문화원 정원 확장을 위한 취득 목적으로 도시계획상 필요시 한국 정부의 수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조건을 부과한다면 도시계획상 공원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

❁ 외무부는 11.21. 주한 독일대사의 독일문화원 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소유권 취득 허가 신청에 이견 없음을 회신

2. 외무부는 1973.11.12. 주독일대사에게 독일법상 한국 정부가 주재국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서 일정한 허가 절차를 요하는지 여부 및 허가 금지나 조건 또는 제한 등 일정한 제약 부과 규정 여부를 파악하도록 지시한바, 주독일대사는 11.24. 외국 정부 또는 국가기관이 주재국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일반 독일인의 경우와 비교하여 하등의 제한 조치가 없음을 보고함.

1973-74년도 주카나다대사관 업무계획

| 73-0071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C-70 / 2 / 1~38(38p)

1. 외무부는 1973.1.11. 주캐나다대사에게 아래 내용의 1973년도 대캐나다 사업활동계획서를 송부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함.

- ❋ 대주재국 외교 접촉 강화: 외무성, 상무성, 기타 정부기관 접촉 강화, 대의회 활동 강화
- ❋ 유력 인사 초청: 총독 또는 수상, 외상, 학계 인사, 친한 언론인 대상
- ❋ 언론계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 한국 영화 상영, 한국 방문 취재 편의 제공, 한국 신문 캐나다 진출, 상업 매거진 한국 특집 및 광고기사 게재, 동경 및 홍콩 주재 캐나다 특파원 활용 등
- ❋ 친한 단체 조직 및 운영: 실업인협회 구성 추진, 교민 단체 육성, 문화재 지원, 한 · 캐나다 문화재단 및 태권도연합회 구성, 교민사회 유대 강화
- ❋ 사증면제협정 체결
- ❋ 주한 캐나다 상주공관 설치
- ❋ 주캐나다 공관 증설: 토론토 총영사관 설치 검토
- ❋ 기타 우호 증진 방안: 고 스코필드 박사 추모 관련 사업을 통한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

2. 주캐나다대사는 1973.11.29. 아래 내용의 1974년도 연차활동계획서를 외무부에 제출함.

- ❋ 정무
  - 정부 요인 교환방문: 캐나다 수상, 외상 방한, 한국 총리 및 외무부장관 캐나다 방문
  - 캐나다 의원단 방한 실현
  - 북한의 국제기구 진출에 대처하여 우위 확보를 위한 외교활동 지속
  - 캐나다 외교 경로를 통한 공산권 국가와의 외교 교섭 확대
  - 사증면제협정 체결 추진 등
- ❋ 경제 통상
  - 1980년대 초 국민소득 1천 달러,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경제외교 적극 추진
  - 새마을사업 관련 국제 협력 증진, 한국 상품의 대캐나다 수출 여건 정비,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 유치
  - 캐나다 신규 시장 개척 확대, 경제 홍보 활동 및 경제인과의 접촉 강화, 한 · 캐나다 실업인협회 육성 및 확대, 시장 조사 활동, 전시회 등 참가, 캐나다 고위 인사 방한 촉진, 교포 사업체의 모국과의 교역 증진 강화
- ❋ 공보 문화
  - 홍보활동 강화, 교민사회 조직 강화, 교민 언론 창달, Korea in the Canadian Press 2집 발간, 유료 기사 게재, 언론인 및 학자 방한 초청, 한국학과 설치 추진, 한국전 참전용사회 지원
- ❋ 교민 관계
  - 교민 실태 파악, 교민 조직 강화, 교민 단체 활동 지원, 토론토 문화회관 건립 등 특별사업
  - 이민 관계 자료 작성, 이민성 주요 인사와의 교류 강화

1974년도 주미국대사관 업무계획

| 73-007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Re-22 / 20 / 1~7(7p)

주미대사관이 1973년 작성한 미국 학계를 통한 한국 연구 및 홍보 방안은 다음과 같음.

1. 목표

-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에 있어 미국 학계가 미치는 영향과 장기적인 정책 문제 연구 관련 정부와 학계 간의 유기적 연관 관계를 고려하여 미국 학계를 통한 한국 연구 및 홍보 촉진
- 미국 정부의 대한국 정책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추진되도록 노력

2. 계획

- 미국 외교협회 발행 Foreign Affairs지에 특별 기고
  - 동지 편집인인 Bundy 전 국무성 차관보의 협조하에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기고 및 저명학자 기고 게재
  - 유력한 외교지를 통해 한국의 기본 정책 방향 및 미국의 대한국 정책에 대한 권위 있는 평론을 미국 학계, 지식층에 전파
- 미국 외교협회의 한국 연구를 위한 특별 사업
  - 협회 이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한국에 대한 모범 연구 프로젝트를 동 협회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요청
  - 미국의 장기적인 대한국 정책 방향 검토 시 한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한편 동 효과가 파급되도록 추진
- 미국의 우호 재단 및 연구기관의 한국 관계 연구를 위한 연구보조금 증액 추진
  - 록펠러재단, 포드재단 및 기타 유력한 대학연구소 등에서 미국 및 한국 학자들의 한국 문제 연구를 위한 연구보조금을 더욱 증액하도록 교섭
  - 미국 내 각 연구기관의 한국 문제 연구 촉진 및 대한국 정책 수립에 기여토록 추진

한국의 대공산권 외교 장기대책

| 73-007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특수지역과
MF번호	C-60 / 1 / 1~15(15p)

외무부 정보문화국이 특히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에 대한 장기 외교 대책에 관해 1973년 작성한 자료 요지임.

1. 대책 수립의 목적

- 대공산권 관계 개선을 통한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및 기타 모든 분야에서의 한국의 실리 확보
- 궁극적으로 외교관계 수립 추진

2. 주변 정세 평가

- 소련: 중국(구 중공)의 세력 팽창 저지, 아시아 집단안보체제 추진을 통한 극동 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 도모
- 미국: 중국 및 소련과의 세력 조정 도모, 교류 확대를 통한 등거리외교 추구
- 동남아 제국: 중국과의 외교관계 확대 움직임
- 일본: 중국 및 소련과의 관계 개선 추구
- 북한: 동남아 제국과의 관계 개선 시도

3. 북한은 중국-소련 간의 분쟁 악화에 따른 입장 축소 가능성을 감안, 보다 적극적인 대서방 접근 외교 전개

- 한국은 북한의 대서방 진출을 저지하고 대공산권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북한의 공산권 내에서의 지위 약화 및 국제 무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우위 확보 도모 필요

4. 정부는 1973.6.23. 평화외교 특별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 함을 천명

- 이의 구현을 위해 소련 등 동구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직간접으로 외교, 통상, 문화, 체육 등 제반 분야의 관계 증진이 필요

5. 구체적인 대책

- 러시아가 구상 중인 아시아 집단안보체제가 한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 검토
- 중 · 소 간의 적대 관계를 활용, 공산권 내에서 북한의 지위 약화 및 유연성 있는 대공산권 정책 추진
- 중 · 소 분쟁에 융통성 있게 대처, 양국의 한국에 대한 호의적 입장 유도
- 대동구권 관계 개선을 위한 특수공관 선정, 이를 통해 대동구권 접촉 강화, 모든 분야의 공산권 인사 방한 추진, 공산권 및 친공산권 국가 주최 국제회의, 박람회 및 전시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국제기구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 및 한국의 입장

| 73-007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동북아2과
MF번호	C-60 / 2 / 1~15(15p)

1. 주이탈리아대사는 1973.3.9. FAO(유엔식량농업기구) Wakt-Me 사무총장이 중국(구 중공) 방문 귀임 후 FAO 상주대표단 회의를 소집해 밝힌 내용을 아래 보고함.

- 중국은 4.1.자로 FAO 창립 멤버로서의 회원국 지위 회복을 통해 FAO에 복귀 결정을 표명한바, 11월 총회에서 소정 절차에 따라 정식 회원국이 될 것임.
- 중국의 이사국 선임은 가입의 전제 조건은 아니나, 의문의 여지는 없을 것임.
- 중국은 가입에 따른 협력 분야와 관련하여 양자 협정을 기조로 할 것임을 밝힘.

2. 주이탈리아대사는 중국이 1973.4.1.자로 FAO에 복귀하는 형식으로 정식 회원국이 되었으며, FAO 사무총장은 중국이 원한다면 이사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3.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1973.8.24. 대만(구 자유중국)의 유엔 사탕회의에서의 지위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아주국의 의견을 문의한바, 아주국은 8.27. 금년도 유엔사탕회의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경제국이 수립한 입장대로 추진하는 데 이의가 없음을 회신함.

- 제네바에서 9.10.~10.10. 개최 예정인 유엔 사탕회의는 1968년 체결 ISA(국제사탕협정)의 만료에 따라 새로운 협정을 확정하기 위한 최종 회의임.
- 한국은 1972.8.31. 국제사탕협정 수입회원국으로 가입 이래 대만으로부터 소요 원당의 대부분을 수입 중임.
- 중국의 유엔 가입에 따라 대만은 1973년도 협정에의 가입이 불가능하며, 국제사탕협정은 비회원국과의 거래를 최대한 제한함으로 인해 한국의 ISA 보장 가격에 의한 소요 원당 구입에 어려움이 초래됨.
- 이에 따라 양자 간 ISA 내용에 준하는 쌍무 협정 체결 후 1973년도 협정 규정상 보장받는 방안을 구상 중임.
- 대만은 비회원국이 될 경우에도 ISA 규정 준수를 천명하고, 한국에 대해 ISA 협정 내용에 의거한 쌍무 계약에 의해 수출회원국의 의무를 준수할 것임을 시사함.

한국의 대일본 외교정책

| 73-007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과
MF번호	C-60 / 4 / 1~28(28p)

외무부 동북아과가 작성한 1973년도 대일본 외교정책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1973년도 대일본 외교의 기본 방향

❋ 목표
- 한 · 일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의 강화를 통한 한국의 압도적 대북한 우위 견지

❋ 기본 방향
- 양국 관계의 발전 강화: 대륙붕 등 현안 문제의 해결 촉진, 경제협력 강화와 통상관계 확대 및 균형화 추진, 양국 간 정기협의체제 활용, 양국 정부지도자 교환 방문
- 일본 내 한국 지원 기반의 확대: 일본 정재계 인사와의 접촉 강화, 평화적으로 번영하는 한국의 이미지 고양, 재일교포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 강화
- 국제 정세 동향에 대한 공동협력체제 구축: 아시아 신질서 형성에 협력,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관계 견지, 한국의 대공산권 접촉 등 분야에서 일본을 활용

2. 최근의 일 · 북한 관계

❋ 오히라 외상은 1973.1.12. 북한과의 정치적 교류는 시기상조로 우선 문화, 학술, 체육, 경제 등 교류를 확대하고, 남북한 대화를 방해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로 임할 것임을 언급

❋ 오히라 외상은 1.13. 대북한 경제 교류가 수출입은행 융자 문제로 발전 시에는 사안별로 임할 것임을 언급

❋ 일본 언론이 1.19. 통산성은 1973.7월을 목표로 통산성 직원을 북한에 상주시킬 전망임을 보도한 데 대해 외무성은 추측 기사라고 언급

3. 외무부는 1973.7.20. 대통령에게 한국과 관련한 일본 정계의 최근 동향에 대해 아래 보고함.

❋ 자민당 소장의원 31명은 반공적 색채가 강한 행동적 의원단체인 청람회를 조직

❋ 청람회 대표인 후지오 의원은 7.18. 자민당 하시모토 간사장을 방문하고, 8월 중 자민당 의원단의 북한 방문에 강경한 반대 의사 표명

❋ 주일대사는 일본 자민당 의원단의 북한 방문을 저지하기 위해 7.5.~16. 외상, 총무회장 등을 접촉했으나, 일본 측은 동 방문을 만류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 설명

4. 대일본 외교 장기 대책(1973.8.31. 작성)

❋ 한국의 안전 보장과 한반도 평화 유지에 있어서의 일본의 역할 강화

❋ 한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의 일본의 협력 확보

❋ 일본의 대북한 접촉 관련 대처

❋ 한국의 대외정책 수행에 있어 일본의 지지 확보

❋ 한 · 일 간 우호협력 관계의 증진

일본 고무협회주최 연구발표회 한국대표 참석 문제

| 73-007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과
MF번호	C-60 / 3 / 1~12(12p)

과학기술처는 1973.1.15. 외무부에 일본고무협회로부터 동 협회 창립 45주년 기념총회 및 연구발표회에 한국고무공학회 대표를 초청해 왔으며, 동 회의에 북한 대표도 초청했음을 통보하고, 동 초청 수락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문의함.

1. 외무부는 1973.1.19. 정부는 북한 대표가 참석하는 모든 국제적 성격의 모임에 한국 대표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용인하고 있지 않으며, 상기 일본고무협회가 주최하는 연구발표회는 한국 대표가 반드시 참석할 만한 성격의 모임이 아님에 따라 북한 대표가 참석하는 경우 한국 대표를 파견치 않아야 할 것이라고 회신함.

2. 과학기술처는 1973.2.14. 아래 중앙정보부 의견이 외무부 의견과 전면 상치됨을 설명하고, 외무부의 의견을 재차 문의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 회의에 한국고무공학회 대표 참석은 가함.
- 동 회의는 순수한 고무공학 및 기술 교류를 목적으로 한 연구발표회
- 일본 개최 1972.9월 기계학회 국제 심포지엄과 1972.10월 다카마쓰쓰가 고분벽화조사회 등에 남북한 학자가 동석
- 한국 대표의 각종 국제회의 참가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정책에 부합

❁ 유의 사항
- 일본 측은 북한 학자의 정치활동을 강력히 규제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
- 동 회의에 참가하는 한국 학자는 북한 학자를 능가할 수 있는 유능한 학자를 인선함이 필요

3. 외무부는 1973.3.9. 과학기술처에 외무부의 의견은 변함이 없음을 회신함.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정책

| 73-007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C-60 / 5 / 1~47(47p), Re-22 / 24 / 1~7(7p)

외무부 아프리카과에서 1973.8.29. 작성한 대아프리카 외교정책 검토 자료 요지임.

1. 대아프리카 외교 기본 목표

- ❋ 6·23 특별선언 이전: 북한 진출 저지,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관련 지지 확보
- ❋ 6·23 특별선언 이후: 실리 추구, 대북한 우위 확보, 좌경중립국(북한 단독수교국)과의 관계 개선

2. 대아프리카 외교 현황

- ❋ 정치관계
  - 한국 단독수교국 12개국, 북한 단독수교국 9개국, 남북한 동시수교국 12개국, 남북한 미수교국 3개국
  - 유력 인사 방한 초청: 에티오피아 황제(1968년), 니제르 대통령(1969년), 라이베리아 부통령(1970년) 등
  - 사절단 파견: 총 77개국(1969~73.6월), 총 20개국(1973.6.23. 선언 이후)
- ❋ 경제기술협력관계
  - 총 43개국 약 155만 달러 원조(1969~73.7월), 무역협정 및 경제기술협력협정 4개국
  - 정부 파견 의사 11개국 25명(1968~72년), 고용 의사 11개국 51명(1964~72년)
  - 의료기술협력협정 14개국(1968~70.8월), 태권도사범 파견 2개국 3명(1969~72년)

3.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 방안

- ❋ 6·23 특별선언에 따른 사절단 파견(1973.7~8월): 4개 사절단
- ❋ 좌경중립국 및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1973.6.23. 선언 이후)
  - 1차 책임 공관 7개 공관 지정, 14개국 교섭 대상
  - 교섭 측면지원 공관 4개 공관 지정, 13개국 교섭 대상
- ❋ 경제협력 및 통상진흥 강화
  - 통상: 아프리카 지역상공인 방한 초청, 통상사절단 파견, 민간업체 진출 장려, 무역협정 체결
  - 경제 및 기술 협력: 협력조사단 파견, 합작 및 개발 투자 추진, 어업 협력,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
- ❋ 의료 협력 강화: 11개국에 의료단 파견
- ❋ 기존 유대관계 강화: 유력 인사 방한 초청, 사절단 파견, 겸임대사 겸임국 순방
- ❋ 상주공관 증설: 4개 공관(1973년), 향후 계획 4개 공관(1973~74년)
- ❋ 민간 외교 강화: 친선협회 구성 추진, 민속예술사절단 파견, 스포츠 팀 파견
- ❋ 홍보활동 강화: 각종 간행물 배포, 각종 순회 전시회 개최, 영화 순회 상영

4.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정책(1973.12월 작성)

- 상주공관 증설 건의(1974년): 대사관 2(니제르, 마다가스카르), 총영사관 1(가나)
- 상주대사 파견 3개국(세네갈, 자이르, 가봉), 직원 증원 2개국(라이베리아, 토고)
- 기존 공관 존속: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르완다 1년간 존속

중동전에 대한 한국의 입장

| 73-007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C-60 / 6 / 1~191(191p)

1. 외무부는 중동전 재발과 관련해 1973.10.8. 아래 성명을 발표함.

- ❋ 한국 정부는 중동지역에서 전투가 재발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 ❋ 전투행위가 조속히 종식되어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가 회복되기를 기대함.

2. 외무부는 1973.10.18. 중동지역 주재공관에 대해 아래 정부 입장을 주재국에 통보토록 지시함.

- ❋ 한국 정부는 중동지역 전쟁 재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함.
- ❋ 모든 국제 분쟁이 유엔 헌장의 정신과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함.
- ❋ 유엔 헌장과 유엔 결의의 원칙, 특히 1967.11.22.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공정하고 정당하게 해결되어야 함.
- ❋ 한국 정부는 중동전쟁이 조속한 시일 내 종료되고, 동 지역에 항구적인 평화가 회복되기를 기원함.

3. 외무부는 1973.10.23. 중동전 휴전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함.

- ❋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중동전쟁 휴전을 충심으로 환영함.
- ❋ 모든 국제 분쟁은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적 대화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동 지역에서 하루속히 항구적이고 진정한 평화가 이룩되기를 희망함.

4. 정부는 1973.11.22. 중동지역 각 공관장에게 중동사태에 관한 아래 4개 항의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 없이 주재국 정부에 통고토록 지시함.

- ❋ 모든 국제 분쟁은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적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무력에 의한 영토 획득은 용납될 수 없음.
- ❋ 이스라엘은 1967년 전쟁 시 무력으로 점령한 아랍 영토와 금번 중동전쟁 중 점령한 영토로부터 철수하여야 함.
- ❋ 팔레스타인인들의 정당한 주장은 관계 유엔 결의에 의해 누차 요구된 바와 같이 인정되어야 함.
- ❋ 모든 국가에 대한 독립, 영토 보전 및 생존권이 인정되고 보장되어야 함.

5. 외무부는 상기 대아랍 기본 입장 4개 항을 1973.12.12. 전 재외공관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12.15. 한국의 대아랍 기본 입장을 공식 발표함.

한국의 대구주 외교정책

| 73-007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Re-22 / 26 / 1~28(28p)

1. 외무부 구주과에서 1973년 작성한 6·23 특별선언에 따른 대구주 외교활동 강화 방안은 아래와 같음.

❁ 목적: 6·23 특별선언으로 조성된 유리한 대외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 북한에 대한 외교적 우위 확보

❁ 지침

- 대우방국: 자유진영 우방국으로서의 유대 강화, 북한 승인 및 관계 확대 저지, 대공산권 관계 개선에 있어 협조 확보
- 대중립국: 한국의 외교적 우위 유지, 실질적 이해관계 심화, 북한과의 실질적 관계 확대 저지

❁ 활동 방안

- 고위 정기협의채널 개설
- 정상외교: 주요 우방국을 대상으로 1974년 이후 검토
- 북구 제국과의 관계 정상화: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 대동구 관계 개선에 있어 우방국 협조 확보
- 특사 파견: 금년 유엔 총회 이후 2회(우방 및 북구 제국)
- 유력 인사 초청: 연 6명
- EC(구주공동체)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EC 위원장 방한 초청, EC 조사단 파견
- 의원친선협회 활동 강화: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 민간 친한단체 활동 강화
- 국교 수립 및 겸임신임장 제정: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몰타
- 주한 상주공관 유치: 오스트리아, 그리스
- 명예영사 활용: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 주한 외교사절과의 접촉 강화: 상주 9개국 연 2회, 겸임 5개국 연 1회

2. 외무부 구주과에서 1973.7월 작성한 구주, 특히 EC의 재평가 및 대구주 외교 강화책은 아래와 같음.

❁ 국제 사회에 있어서의 EC의 지위

- 1973.1.1.자로 9개 회원국으로 확대, 경제통합체로부터 강력한 정치, 경제 세력권으로 발전

❁ 대구주 외교 강화 방안

- 구주지역에 대한 외교 강화: 정상외교, 정기 외상회담, 구주 주재 공관장 간 정책협의회 개최, 의원외교 추진, EC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 구주 영향권 내에 있는 국가에 대한 외교에 구주 제국의 영향력 활용
- 대동구 관계 개선에 있어서의 구주의 협력 확보

❁ 구주 외교 강화를 위한 행정 지원: 인원, 예산 지원 강화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 73-008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C-60 / 8 / 1~102(102p)

1. 일본 정부는 중의원 사회당 소속 야당 의원의 일본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관한 질의에 대해 1973.7.17. 및 7.27. 아래 답변서를 각의에서 승인함.

- 대한반도 정책 기조를 급속히 전환함은 미묘한 남북한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
- 한반도에서의 남북대화가 균형 위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동 대화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이러한 균형을 배려할 필요가 있는바, 일본이 균형을 변화시키는 행동을 삼가는 것이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한 적절한 국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며, 여사한 입장에서 금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할 방침으로 북한과의 접촉은 금후 남북대화의 진척을 충분히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함.
- 한반도 분열을 고정화할 의도는 없으며, 여사한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있음.
- 북한 승인은 시기상조이며, 연락사무소 또는 통상대표부 설치도 시기상조로 일본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한국 태도를 주시해야 하며, 현재 사회주의 국가들은 한국 승인을 위해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바, 이 점도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임.
- 유엔 토의에 남북한이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며, 유엔이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의 활동을 재검토한다면 일본도 협조할 용의가 있음.
- 유엔의 평화 유지 활동은 중요하며, 주한 유엔군사령부 문제는 신중을 요하는 사안임.
- 한국과 북한은 한반도 통일과 대유엔 정책에 있어서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바, 이후 사태 발전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WHO(세계보건기구) 가입,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통해 실질적으로 2개의 한국을 조성해 가고 있는 측면이 있는바, 이 점도 주시해야 할 것임.
- 일본은 장기적인 균형 발전과 민생 안정이 중요하다는 고려하에서 대한국 원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한국 경제협력은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북한을 적대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2.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973.7.17. 상기 일본 정부의 답변은 최근 국제 정세와 한반도 동향을 고려하여 일본이 한국 문제에 관한 태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남북한의 유동적인 동향에 주목하면서도 종래대로 신중한 태도로 임하려는 것이라고 논평함.

3. 외무부는 상기 일본 정부의 답변서 요지를 1973.7.28. 대통령에게 보고함.

미국의 대한정책

| 73-008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C-60 / 9 / 1~15(15p)

1. 주미대사관이 1973.1.18. 작성한 미국의 대한국 정책 전망은 아래와 같음.

❁ 미국의 최근 동향

- 대외관계에서 중요한 과도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
- 세계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 미국 내 국론이 분열, 대외정책 수립 시 국제적, 국내적 제약에 직면
- 향후 미국은 외교정책에 있어 대외 공약과 부담을 현실에 맞게 축소 내지 조정 모색, 대외관계 결정 요소로 국가 이익에 부합하고 미국의 능력에 상응하는 선에서 고려하려는 경향

❁ 미국의 대한국 기본 정책 목표에 대한 판단

-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포함한 한국의 장래 문제가 한국 국민 스스로에 의해 결정되기를 희망
-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통한 남북한 평화공존체제 발전 및 한국에 대한 공약과 부담을 점진적으로 경감하기를 희망

❁ 미국의 대한국 정책 방향에 대한 전망

-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 지양 및 대화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지지
- 남북대화가 상당 수준 구체화될 때까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준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 유지

❁ 현안 문제에 대한 전망

- 대한국 군사 지원 및 현대화 계획: 한국군 현대화 5개년계획을 이행, 동 계획 종료 시 무상군사원조는 대폭 경감, 필요한 군사원조는 차관으로 충당
- 주한미군 문제: 전면 철수는 제기치 않고 지상군 추가 감축 문제는 제기 예상
- 미국의 대북한 관계: 한국의 주도권과 노력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종래의 대북한 정책 유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접촉과 교류는 가능하다는 입장

❁ 대미 안보외교활동 목표 및 1973년도 중점계획

- 기본적 유대 및 협조체제 강화: 정상회담 및 정기 정책협의회 개최, 남북대화에 대한 미국의 이해 증진
- 안보 면에서 계속적인 지원 확보: 군사지원 지속 확보, 연례 안보협의회 개최
- 대공산권 외교 관련 협조 확보
- 대유엔 대책 관련 지원 확보
- 대미 공보활동의 적극적인 전개
- 미국 학계를 통한 홍보 및 연구 촉진
- 미국 유력 인사 방한 초청

2. 주호주 미국대사로 임명된 마셜 그린 전 동아태담당 국무차관보는 1973.5.21.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아래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함.

❋ 동북아 정세

- 동북아시아는 세계와 미국에 대해 극히 중요한 지역으로 동 지역 내 4대국의 이익이 상충
- 동북아시아 관련 미국의 대일본 관계에 중요한 변화 발생, 특히 일본은 오키나와 반환 후 대미 관계에서 미국과 동등한 입장으로 지위 변경
- 한반도에서 장애는 있지만 항구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 간 대화가 진행 중
- 중소 분쟁이 심화되었으나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희박

❋ 미국의 대한국 정책

- 북한의 WHO(세계보건기구) 가입 결정으로 한반도 문제 전반에 변화 발생
-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민주주의 관련 과오에 대한 비판을 자제할 필요, 박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의 영구 집권 문제는 한국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

❋ 분석

- 그린 전 차관보의 정세 평가는 1973.3.28. 하원 외교위원회 증언 및 4.10. 외교정책 집필가 오찬 시 연설 내용과 대동소이, 국무성의 대동북아시아 중시 정책을 반영
- 동북아지역 내 4대강국 이해상충 강조는 미국의 대한반도관이 점차 4대국의 균형 유지라는 전략적 차원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
- 북한의 WHO 가입으로 한반도 문제 전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언급은 금년 가을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에 대한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국무성의 검토 방향을 시사
-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비판 자제 필요성 언급은 한국의 전략적 위치상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미국에 대한 반발로 세력 균형 유지의 거점이 되는 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우려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

소련 · 중국(구 중공)의 남북한 관계 현황

| 73-008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60 / 10 / 1~10(10p)

외무부 구주과에서 1973년 작성한 소련 · 중국(구 중공)의 대남북한 관계 현황 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소련 · 중국의 대한국 관계

❁ 기본 입장

- 소련은 점차 한반도의 현실, 즉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 중, 동 변화가 현 국제 정세 하에서 소련의 안보 이익에 합당하다고 판단
- 여사한 정책에 따라 1971년 말부터 점진적으로 한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 완화 조짐
- 중국도 최근 점차 한반도의 현실을 중국 안보에 유리한 형태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나 상금 한국에 접근하려는 움직임은 유보 중

❁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접촉

- 소련
  - · 한국 정부는 1971.12월 캐나다, 이탈리아, 스웨덴 주재 대사에게 대소련 접촉을 지시
  - · 1974.4월 스웨덴 주재 양국 참사관 간 비공식 접촉 이래 대화 계속
- 중국과는 구체적 접촉 전무

❁ 인사 왕래

- 소련인 이란축구단 코치의 1971년 방한, 외국 선박 승선 한국인 선원의 수차 소련 항구 상륙
- 중국과의 인사왕래는 전무

❁ 통상 관계

- 소련과 간접무역을 시도했으나 미실현, 중국과는 시도 전무

2. 소련 · 중국의 대북한 관계

❁ 기본 입장

- 소련의 대북한 관계는 최근 냉각 추세, 중 · 소분쟁 격화 이래 북한은 지리적, 역사적 배경 및 정치적, 이념적 관계에 따라 중국에 경도
-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최근 더욱 긴밀화 추세

❁ 원조 및 무역 관계

- 북한의 소련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하며, 구체적 통계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북한은 국방과 경제 건설에 필요한 외자를 주로 소련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 중국도 최근 북한에 상당액의 군사, 경제 원조를 제공 중인 것으로 관측
- 북한의 소련과의 무역은 전체의 약 50% 점유
- 북한의 중국과의 무역은 전체의 약 15% 점유

소련의 대한반도 태도 : 언론보도 분석

| 73-008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특수지역과/북미1과
MF번호	C-60 / 11 / 1~37(37p)

1. 외무부가 1973.3.21. 소련의 최근 한국에 대한 입장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임.

- ❋ 전반적 동향
  - 소련은 최근 한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점차 완화 중으로 현 국제 정세의 추이에 비추어 적기라고 판단되는 시기에 한국과의 관계 개선 추진 방침하에 태도를 변화 중인 것으로 분석
- ❋ 소련 언론의 한국에 대한 논조
  - 1972년 초부터 한국에 대한 비난 논평의 빈도가 현저히 감소
  - 소련의 친북한 논설은 1971년부터 주로 북한의 통일 방안 지지에 집중
- ❋ 외교관 간의 비공식 접촉
  - 외교적 모임에서 소련 외교관의 한국 외교관에 대한 태도는 온건, 자발적 접근 또는 비공식 접촉 제의 사례도 존재
- ❋ 소련·북한 관계
  - 중·소 분쟁 격화 이래 북한은 중국(구 중공) 측에 경도
  - 소련·북한 관계는 냉각 추세

2. 소련 당 기관지 프라우다는 1973.9.12. 동경발 타스통신을 인용하여 김대중 사건에 대해 아래 요지로 보도함.

- ❋ 일본 경찰이 김대중 납치 사건에 한국 외교관이 관련되었다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14명의 주일 한국외교관들이 귀국함.
- ❋ 한국은 동 외교관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송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함.

3. 소련 프라우다는 1973.11.23. 한국에 대한 비난 논평을 아래 요지로 게재함.

- ❋ 한국 국민들은 학생들의 반정부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함.
- ❋ 세계 여론은 소련 등 사회주의 제국이 주장해 온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해체안이 제28차 유엔 총회에서 가결된 것을 환영함.
- ❋ 소련은 동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및 주한 외국군의 철수를 주장함.
- ❋ 분석
  - 동 비난 논평은 1972년 이후 소련 언론의 대한국 비난 자제 경향에 비추어 특이한 것으로 평가
  - 최근 북한이 한국의 대공산권 관계 개선 노력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중인 것과 관련하여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소련의 영향권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분석

4. 소련 이스베스차는 1973.12.19. 한국에 대한 아래 비난 논평을 게재함.

- ❋ 한국의 반정부 시위, 남한 정부의 구속 학생 석방 및 내각 개편
- ❋ 한국 정부의 최근 북한 영내 함정 투입, 한반도의 긴장 악화 초래 및 국민의 관심 전환 시도

일본의 대외정책

| 73-0084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C-60 / 12 / 1~37(37p)

1. 주일대사는 1972.11.6. 마이니치 신문 보도를 인용하여 일본 정부가 베트남(구 월남) 정전 실현 이후 아시아 지역 내 신질서 수립을 위해 아시아평화회의(가칭) 개최를 검토하고 있으며, 동 구상은 일본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유지 및 협력관계 강화를 취지로 하고 있음을 보고함.

2. 주일대사는 오히라 외상이 1973.1.16. 아시아조사회 주최 특별강연에서 '일본 외교의 당면과제'라는 제목으로 일 · 중(구 중공) 국교 정상화 이후의 전반적인 외교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했음을 보고함.

-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전역의 새로운 정치적 협력기구가 필요함.
- 일본이 아시아 각국 간의 의견 조정 역할을 할 의사를 명백히 함.

3. 주일대사는 오히라 외상이 1973.1.27. 특별의회에서 외교의 기본 방침에 관해 아래 요지로 연설했음을 보고함.

- 일본은 일 · 미 우호관계를 기축으로 일 · 중, 일 · 소 관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아시아의 긴장 완화 촉진을 통한 평화 공고화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할 것이며, 국제 경제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한 기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확충 및 문화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할 것임.
-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한 간의 자주적인 대화에 의한 긴장 완화가 일층 촉진되어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관계가 개선될 것을 희망함.

4. 주일대사는 1973.1.31. 산케이 신문이 미 · 중 · 소를 포함하는 평화부흥회의에 17개국의 참가를 기대한다는 제목으로 아래 요지로 보도했음을 보고함.

- 일본은 인도차이나 평화 후 아시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전 도모, 인도차이나의 부흥 추진을 목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제국으로 구성되는 평화부흥회의의 실현을 위해 각국의 의견을 타진 중임.
- 2.15. 동남아 10개국 외상회의 개최에 이어 일본, 미국, 중국, 소련 등을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 17개국 회의 개최를 고려 중임.

5. 주일대사는 1973.8.17. 일본경제신문이 금년도 아시아태평양지역 대사회의를 9.17.~20. 동경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 예정임을 보도했다고 보고함.

-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최근의 국제 정세에 관해 의견 교환, 일본의 아시아 정책을 검토 예정임.
- 다나카 수상의 아시아태평양 국제회의 구상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 예정임.

미국의 대외정책

| 73-008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C-60 / 13 / 1~147(147p)

1. 주미대사는 로저스 미 국무장관이 1973.2.21.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음을 보고함.

- ❋ 라오스 휴전협정은 환영, 캄보디아 휴전은 비관적
- ❋ 미국은 아시아의 안보 상태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병력 감축 가능
- ❋ 베트남전 후 복구문제와 관련, 미국의 대베트남 원조액 결정 전 의회와 충분히 협의 예정
- ❋ 베트남전 후 복구 비용의 유용 가능성 강력 부인

2. 주미대사는 미국 닉슨 대통령이 1973.8.22. 기자회견을 통해 로저스 국무장관이 9.3. 사임하고, 후임에 키신저 박사를 임명 예정으로 동인은 취임 후에도 대통령 안보담당보좌관을 겸임할 것이라고 발표했음을 보고한바, 외무부는 8.23. 아래 보도문을 발표함.

- ❋ 아시아 지역의 정세에 정통한 키신저 박사는 닉슨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온바, 국무장관 취임에 따라 미국의 외교정책이 향후로도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함.
- ❋ 한 · 미 양국 간의 긴밀하고도 원만한 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확신함.

3. 주미대사는 키신저 국무장관 인준을 위한 상원외교위원회 청문회가 1973.9.7.부터 개최되었으며, 9.10. 동 청문회에서 키신저 박사의 증언 요지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주요 대외정책의 최종 결정에 앞서 외교위원회 소속 지도급 의원들과 사전 협의 예정
- ❋ 대베트남 경제원조는 인도차이나에 있어서의 미국의 이익을 전제로 집행
- ❋ 미국을 전쟁 상태로 돌입하게 하는 조약 및 협정은 사전 의회지도자들과 충분히 협의 예정

4. 주미대사는 1973.9.21. 미 상원이 키신저 국무장관 임명을 78:7로 인준했으며, 동 장관은 9.22. 취임선서를 하고 9.24.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것이라고 보고함.

5. 주미대사는 1973.12.26.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국내 문제에 전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키신저 국무장관 취임 이래 미국의 외교정책 수립에 대한 신임 국무장관과 백악관 보좌관의 영향력에 대한 미국 언론의 논평을 아래 보고함.

- ❋ 키신저는 백악관 내에서 아무도 도전해 올 수 없는 전략가이며, 전술가(12.24. 타임지)
- ❋ 닉슨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 기능 약화로 외교정책은 키신저 담당, 백악관은 국가안보문제 정책결정권의 분산을 인정(12.24. 뉴욕타임스)
- ❋ 키신저는 국무장관 및 안보담당보좌관으로 막대한 권한 행사(12.23. 워싱턴포스트)

Nixon, Richard 미국 대통령의 1973년도 외교 교서

| 73-008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C-60 / 14 / 1~59(59p)

1. 주미대사는 1973.5.2. Nixon 미국 대통령의 1973년도 외교 교서 중 한국 관련 부분을 아래 보고함.

- 경제적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에 대하여 한국전쟁 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수십 년간 생존하더라도 국제적인 구호 대상이 될 뿐이라고 예언했으나, 한국은 연간 10% 경제성장을 성취했으며, 제조 물품의 주요 수출국이 됨.
- 남북한은 대화를 통해 주요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통일이 평화적 방법에 의해 성취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함.
- 미국은 1971년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원조에 합의했으며, 동시에 주한미군을 1/3 감축하여 2만 명 이상을 철수한바, 과거 2년간 의회의 군원 예산 지출 삭감으로 현대화계획이 지연되고 있음.
-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무상 군사지원이 필요하며, 경제 팽창에 따라 차관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원조계획 성공은 2만 명의 추가 미군 감축을 가능케 함.

2. 외무부는 1973.5.10. 대통령에게 상기 외교 교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한국 관계를 중심으로 한 주요 내용
  - 아시아, 태평양지역 제국의 현저한 경제 발전, 특히 한국은 경제적 기적 달성
  - 남북한은 반목과 대립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이 이룩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 그러나 분규를 거듭해 온 한반도 사태에 비추어 가까운 시일 내 양자 간의 화해 실현은 기대하기 어려움
  - 한국군의 능력이 현대화계획에 의해 향상 중, 한국 경제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군사비 부담 증액이 가능
- 한국 문제에 대한 분석
  - 한국의 경제 발전과 자체방위부담 능력의 증대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향후 미국의 군사원조액 부담 부분이 점차 축소될 것을 시사, 단 한국군 현대화계획은 예정대로 계속 추진 전망
  - 최근 미 고위층의 대한국 정책성명에 비추어 주한미군은 향후 5년간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남북회담에서 조속한 화해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 이는 북한의 종래 비타협적 정책에 하등의 변화가 없다고 인정한 결과로 평가
  - 금번 교서에서 북한에 관해 전혀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는 하등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

Rogers, William P. 미국 국무장관의 1972년도 외교정책보고서

| 73-008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C-60 / 15 / 1~34(34p)

외무부는 W. P. Rogers 미 국무장관이 1973.4.20. 미 의회에 제출한 1972년도 외교정책보고서요지를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보고서 개요

❋ 금세기 잔여 기간 동안 세계의 정치,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과 제반 관계 개선을 미국이 주도

- 1973년을 미국 외교 '구축의 해(Year of Building)'로 규정

❋ 1973년도 미국의 외교 목표

- 동구와 서구 국가 간 장벽 제거에 적극 협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지역협력관계 발전 및 팽창 노력 계속 지원, 중동지역 내 진지한 협상이 진척되도록 적극 권장, 중남미 국가 간 공동체 관계 심화, 아프리카와 경제적 유대 강화 및 문화 · 정치적 관계 확대, 국제 무역 및 금융제도 원칙 수립을 위해 노력,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촉진 정책 시행, 선진 산업국과의 경제 및 정치 관계 강화, 해양법 · 마약문제 · 항공기 납치 및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간 협력 강화 노력

2. 한국 관계

❋ 미국의 대한국 정책 목표

- 1953년 휴전 후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주요 목표는 전쟁 재발 방지
- 미국은 북한의 오판 위험을 억지하기 위해 주한미군 주둔, 한국의 방위력 구축에 협력

❋ 남북관계와 미국의 지원

- 미국의 지원으로 한국은 1971년 남북 적십자회담 제의, 1972년 초 북한과 비밀협상 개시 및 대화통로 개설을 통해 7·4 공동성명 채택
- 남북한 간 접촉 수립과 관계 개선 과정 진행은 한반도 안정 및 평화를 위해 환영
-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및 북한 측 조건에 의한 한반도 통일이라는 기본 목표 불변
- 미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화 증진을 추구하는 한국의 노력 지지

❋ 분석

- 대한국 군사원조 지원 및 남북한 대화에 임하는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는 불변
- 1972년 남북대화 진행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중요한 발전으로 인정, 그러나 북한의 적화통일이라는 근본 정책에 변화가 없음에 따라 대북한 정책 변화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
- 한국 경제 관련, 무역적자 격감 및 무역조건 개선으로 한국의 대외 부채 상환상 난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은 대한국 투자 유치에 고무적인 효과 초래 예상
- 한국의 10월 유신을 위한 개헌, 계엄령 선포가 한국의 국내 문제이며 한국 국민의 책임 소관 사항이라고 인식하나, 안보 측면과 결부하여 관심 표명

Phnompenh(캄보디아)시 비행금지구역 통보

| 73-008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C-60 / 16 / 1~5(5p)

외무부는 1973.4.18. 국방부와 교통부장관에 대해 주한 캄보디아(구 크메르공화국)대사관이 수도 프놈펜 시의 비행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 왔음을 통보함.

1. 시행 일자: 1973.3.17. 이후

2. 해당 지역

- Chhar Ampeou bridge, Stung Mean Chey, 'Hopital des bonzes'를 연결하는 프놈펜 시 6km 이내 지역
- Chruoy changvar 교외지역

3. 해당 항공기

- 모든 민간 및 군용 항공기

4. 예외 적용

- 후송 임무에 종사하는 헬리콥터기
- 고위 인사 수송기
- 안전대피상 시내 기지에 불시착하는 경우

한 · 중앙아프리카 정무일반

| 73-008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C-60 / 18 / 1~21(21p)

1. 주중앙아프리카공화국대사는 1973.8.22. 현지 8.15. 경축행사에서 주재국 파타세 대통령대리 및 포트로 외상과 양국 간 주요 현안에 관해 협의한 내용을 아래 보고함.

- ❋ 김용식 외무부장관의 중앙아프리카 답방 문제는 양국 외무장관이 유엔 총회에서 만나 결론을 맺기로 합의
- ❋ 보카사 대통령의 방한 문제도 유엔 총회에서 양국 외무장관 간 논의
- ❋ 비동맹회의에서 한국 입장에 대한 주재국의 지지 확인
- ❋ 제24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주재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확인
- ❋ 경제기술협정에 관한 각서 교환 및 비준서 교환을 조속히 조치
- ❋ 주한 중앙아프리카 명예영사관을 8월 중 개설, 상주대사관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
- ❋ 중앙아프리카에 대한 황두 종자 지원을 위한 최선 노력

2. 일본 상주 주한겸임 중앙아프리카공화국대사는 8.15. 경축행사 참석차 1973.8.13.~14. 방한 시 외무부 의전실장을 예방하여 12.1.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독립 15주년 기념식에 주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명예영사 및 한국 실업인의 참석을 희망하였으며, 10.8. 외교 공한으로 동 참석자 명단을 알려 줄 것 요청함.

- ❋ 외무부는 11.8. 주일대사에게 서창선 주한 중앙아프리카 명예영사가 신병으로 상기 행사 참석이 어려우며, 여타 적절한 참석 희망자도 없음을 중앙아프리카대사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함.
- ❋ 주일대사는 11.19. 중앙아프리카대사에게 상기 내용을 설명한바, 동 대사는 한국 측 방문인사 명단이 통보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 바 서 명예영사의 신병으로 동 방문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함.
- ❋ 동 대사는 8월 방한 시 외무부 관계자와 중앙아프리카 경제조사단 파견 문제에 관해 협의한 사실을 환기하고, 금번 방문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다음 기회에 방문이 실현되어 양국 관계가 더욱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한 · 이스라엘 정무일반

| 73-009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C-60 / 19 / 1~27(27p)

1. 주미대사는 1973.1.26. 미 상원 공화당 H. Scott 원내총무 및 E. Muskie 의원이 한국의 대이스라엘 및 아랍 관계에 관해 각각 아래 내용의 서한을 전달해 왔음을 보고함.

❋ Scott 의원은 미국 내 이스라엘계 잡지 Near East Report는 1973.1.17.자 사설에서 한국이 이스라엘을 희생시키면서 아랍 국가들의 환심을 사고 있으며, 사례로 주이스라엘 겸임 문덕주 대사가 최근 카이로를 방문하여 한국이 아랍 측 입장을 지지한다고 이집트 외무성에 확약했다고 보도하였음을 알려 옴.

❋ Muskie 의원은 한국이 외교적으로 아랍국들의 환심을 사려 한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부인하고 침략 정책을 추구하는 일부 국가들을 고무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에 따라 관련 정책을 재고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2. 주한 필리핀대사(외교단장)는 1973.2.10. 외무부 구미국장과의 통화를 통해 코리아타임스의 Black September 요원의 한국 입국 가능성에 대한 2.4.자 보도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2.12. 관계부처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동 요원의 입국을 사전 저지해 줄 것을 요청함.

3. 주한 이스라엘대사는 1973.4.25. 외무부 구아국장과의 통화 시 코리아타임스가 4.19. 정일형 의원의 카이로 방문 시 한국이 아랍의 명분(Arab cause)을 지지한다고 한 발언이 한국 정부의 입장인지 문의한바, 구아국장은 정일형 의원은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발언한 것이 아니며, 1967.11.22.자 유엔 결의 제242호를 지지하는 한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함.

4. 주한 이스라엘대사관은 1973.5.16.~28.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월드컵 예선전에 참가하는 이스라엘 축구팀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해 온바, 외무부는 내무부 및 중앙정보부에 팔레스타인 · 이스라엘 관계를 고려하여 충분한 보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5. 주한 이스라엘대사는 1973.6.21. 외무부 정보문화국장을 방문하여 과학자 교류, 과학기술세미나 공동개최, 공동연구 등 양국 간 과학 분야 협력 방안을 협의함.

6. 주한 이스라엘대사는 1973.12.24. 외무부장관을 예방하고 한국이 발표한 아랍 관련 성명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한바, 동 장관은 석유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미 국무성과 상의한 결과임을 설명하는 한편 한국과 이스라엘과의 우호관계에는 영향이 없음을 강조함.

한 · 일본 정무일반

| 73-009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C-60 / 20 / 1~51(51p)

1. 주일대사는 1973.1.9. 일본 혁신계 정당의 의회 진출 강화 등 일본 국내 정치 동향의 변화에 대응하여 일본 각계 내 한국 지지 세력 저변 확대를 통한 외교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1973년도 한국 지지 세력 저변 확대 계획을 아래 보고함.

- ❋ 주요 인사 방한 초청 확대
- ❋ 자민당 소장그룹, 사회당, 공명당, 민사당 인사와의 접촉 추진
- ❋ 1974.7월 참의원 선거 대비 입후보자와의 접촉 활동 강화
- ❋ 한국에 대한 관심도 고양을 위한 행사, 언론기관 접촉, 서훈 등 적절한 방안 시행

2. 일본 외무성은 1973.6.15. 자민당 의원단의 중국(구 중공) 방문을 위한 왕복 항공편이 한국의 대구 FIR(비행정보구역) 남쪽 지점 통과 예정임에 따른 협조를 요청해 온바, 외무부는 6.16. 교통부에 관련 협조를 요청함.

3. 법무부는 1973.6.7. 외무부에 한국의 검찰제도 발전 도모 및 양국 검찰 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양국 검사 상호 교환 시찰계획을 아래 통보하고 일본과의 관련 교섭 시행을 요청함.

- ❋ 연 2회, 시찰 인원은 1회 5명 내외, 기간은 약 2주, 여비는 파견국, 체재비는 초청국 부담

4. 주일대사는 1973.6.20. 일본 법무성과 상기 검사 상호 교환 시찰계획에 대한 교섭 결과를 아래 보고함.

- ❋ 일본은 동 시찰계획에 원칙 동의, 한국 측 상세 시찰계획 통보 요망
- ❋ 법무부는 6.30. 상세 시찰계획 회신
  - 시찰 지역: 동경 1부, 기타 지역 1주
  - 시찰 내용: 사법제도 일반, 법무성 조직 및 운영, 각 경찰청 조직 및 운영, 경찰공무원 인사제도 및 연수, 검사의 사건 처리 방식, 일본 내 범죄 현황 및 대책 등
- ❋ 주일대사는 7.11. 최종 일본 측 제안을 보고
  - 여비 및 체재비는 방문자 부담, 1차로 금년 가을 3명 4~5일 시찰, 양국 법무장관 명의 초청장 발송

5. 주일대사는 1973.11.9. 및 11.10. 요미우리 신문을 인용, 일본 노동상이 11.8. 총평중립 노연 대표와의 회담에서 오키나와 국제해양박람회 사업에 한국 근로자 접수에 반대할 태도를 보였음을 아래 보고함.

- ❋ 오키나와 개발청장관이 11.6. 관계성과 협의해 이를 받아들이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한국 근로자를 접수할 경우에 차별대우를 받게 될 우려가 있음을 보도
- ❋ 일본 노동상과 총무장관이 11.9. 각의 후 협의한바, 국내 노동력만으로 추진토록 결정함에 따라 한국 근로자 접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한 · 케냐 정무일반

| 73-009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C-60 / 21 / 1~11(11p)

1. 주케냐대사는 1973.4.13. 외무성 아주국장과의 면담 내용을 아래 보고함.

- 대사는 특별사절단의 케냐 방문에 대한 협조 요청과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의 북한 가입 저지 입장을 설명함.
- 아주국장은 주우간다 북한대사관 설치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문의한바, 대사는 한국 정부가 주우간다대사관 존속, 철수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반대 입장을 표현할지 고려 중임을 설명함.
- 아주국장은 케냐가 중국(구 중공)의 문화혁명 이후 북경 주재 대사관을 철수하였으며, 케냐에는 중국 대사대리가 주재 중이나 최근 중국이 대사를 파견하겠다고 요청해 고려 중임을 언급함.
- 아주국장은 케냐가 자이르에 주잠비아 케냐대사를 겸임 발령코자 했으나, 자이르 정부의 거부로 상주대사를 파견하였음을 언급함.
- 아주국장은 케냐가 방글라데시 승인 문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장차 승인한다 해도 파키스탄과의 사전 양해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2. 외무부는 중앙정보부가 1973.6.14. 제공한 정보에 따라 6.18. 주케냐대사에게 아래 내용을 통보하고 결과 보고를 지시함.

- 케냐 Daily Nations지 1973.5.21.자의 South Korean offer to aid Uganda 제하 아래 기사가 동기가 되어 5.21. 케냐 외무성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한국에 불리한 토의가 있었음.
  - 한국 정부는 친한 일변도인 케냐보다도 북한과 수교한 우간다에 대한 경제 협력에 치중
  - 우간다에는 다수 한국 의사가 활동하고 있으나, 케냐에 대한 의사 2명의 파견이 지연되는 이유는 한국의 비우호적인 태도에 기인
- 지시 내용
  - 북한의 케냐에 대한 침투 기도가 계속되고 있음에 비추어 외무성 당국에 아래 사실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는 케냐와의 우호관계를 고려해 우간다보다 케냐와의 협력 증진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임을 충분히 설득하여 케냐 측의 오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 우간다에서 근무 중인 한국 의사는 우간다 정부 고용에 의한 것임.
  - 현재 케냐와 교섭 중인 양국 간 의료협정이 체결되는 즉시 파견할 의사의 인선을 완료하여 파견 준비 중임.
  -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교역 증대를 모색하기 위해 주재국 경제인단 방한 초청을 추진 중임.

한 · 라이베리아 정무일반

| 73-009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C-60 / 22 / 1~8(8p)

1. 주라이베리아대사대리는 1973.11.2. 라이베리아 정부가 11.2.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단절한다고 발표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보고한바, 외무부는 11.8. 교통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함.

- ❋ 라이베리아 국기를 게양하는 모든 선박은 중동에 대한 무기, 탄약 및 전략물자 수송을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이를 위반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5만 달러의 벌과금 부과 및 선박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함.
- ❋ 라이베리아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한국 선박에 대해 상기 사실을 주지시켜 줄 것을 요청함.

2. 주라이베리아대사대리는 1973.12.1. 주재국의 한국어 명칭 관련 아래와 같이 시정해 줄 것을 건의함.

- ❋ 현재 외무부 발간 모든 법률, 예규, 책자 등에서 리베리아로 표기되고 있는바, 리베리아는 프랑스식 발음으로서 주재국에서 공적으로 사용되는 발음은 영어식에 따라 '라이베리아'로 되어 있음.
- ❋ 따라서 외무부 관련 모든 예규, 책자 등은 물론 문교부 안 각급 교육기관에서도 주재국의 명칭을 '라이베리아'로 정정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함.

이창희 주멕시코대사 · Rabasa 멕시코 외무장관 간의 면담록

| 73-009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60 / 23 / 1~29(29p)

1. 주멕시코대사는 1973.6.11. Rabasa 멕시코 외상 면담 시 동 외상의 언급 내용을 아래 보고함.

❁ Eheverria 대통령은 세계 순방을 통해 멕시코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제3세력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함.

❁ 멕시코의 대분단국 정책, 대북한 정책

- 분단국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는 독일과 상이함.
- 멕시코 정부는 한국과의 기존 우호관계를 존중, 북한과는 한국 정부가 특별히 요청해 오는 경우 외에는 수교 의사가 없음.

❁ 북한의 대멕시코 접근

- 대통령의 소련, 중국(구 중공) 방문 시 북한 측이 접촉을 시도했으나, 한국과의 기존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면접을 거절함.
- Campora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 시 북한 사절단의 인사를 받은 바 있으나, 한국과 국교를 맺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방적으로 회견을 중단한 바 있음.

❁ 한국의 대중국, 소련 관계

- 한국이 중국, 소련에 대해 유연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채택함은 바람직함.
-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소,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주선은 역효과 가능성이 있음.
- 미국보다는 멕시코가 한-소, 한-중과의 평화통일 노력을 지원함이 효과적임.

❁ 한-미 관계

- 대미 일변도 외교를 지양하고, 자주적 노선을 취함이 현명함.

❁ 북한의 WHO(세계보건기구) 가입

- 국제 무대에서 한국과 동등한 자격을 주장할 계기가 된 것이며, 중남미 제국에 대해서도 서서히 영향을 미칠 것임.

❁ 한국과 제3세계와의 관계

- 미국의 대내외 정책 한계점 도달에 따라 한국은 제3세계와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양국 외무장관 상호 방문

- 주멕시코대사는 호주에서 동남아지역 공관장회의 주재 계기에 멕시코 외상이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함.
- 멕시코 외상은 계속된 해외여행으로 금년 중 해외여행이 어려운바 한국 외무장관이 유엔 총회에 앞서 멕시코를 공식 방문토록 초청하며, 이는 양국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함.

2. 주멕시코대사는 1973.8.7. Rabasa 멕시코 외상 면담 시 동 외상의 언급 내용을 아래 보고함.

❁ 외무부장관의 멕시코 방문

- 김 장관의 성공적인 멕시코 방문을 축하하며, 멕시코 대통령의 신망으로 양국 간 유대 강화, 우호 증진의 획기적 계기가 되었음을 환영함.

❋ 한국-중국, 한국-소련과의 관계 개선

- 자신의 협조 역할에 보람을 느끼며, 김 장관이 직접 중국 및 소련 지도자와 의견 교환을 시행함이 가장 바람직함을 언급함.
- 대사는 김 장관이 6.23. 외교정책에 입각하여 동 지도자들과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의견 교환을 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함.
- 외무부장관의 유엔 총회 참석 시 중국, 소련 외상과의 회담이 가장 적절하며, 동시에 자신과도 계속 회합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멕시코와 중국 간의 수교

- 멕시코와 중국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과거의 노력은 이중흥정(double dealing)이 아니었으며, 중국과의 수교 협상은 대만(구 자유중국)대사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시작하였음을 밝힘.

❋ 금년 가을 유엔 총회에서의 중국 및 소련 태도 전망

- 소련은 유엔 외교에 있어서 자국이나 공산권 내의 약점을 내포하고 있을 시 강경한 태도를 취해 온 바 있음.
- 중국은 유엔 외교의 경험이 미숙하며, 심사숙고하는 편이나 의외의 결정도 있을 것임.

❋ 6·23 선언

- 동 선언은 한국의 제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위대한 결정임.
- 한국과 중국, 소련 간의 관계 개선 노력은 한국 외교사상 가장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며, 아시아 평화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임.

한 · 스리랑카 정무일반

| 73-009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C-60 / 24 / 1~11(11p)

1. 주콜롬보통상대표부 공사는 1973.6.23. 스리랑카 정부의 축전, 조전 관례와 관련하여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원수로부터의 축전, 조전에 대해서는 회신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나, 한 · 스리랑카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축전, 조전 발송을 건의할 것임을 보고함.

❋ 외무부 아주국장은 7.5. 의전실장에게 스리랑카 국경일 또는 조일에 외무장관 명의의 축전, 조전 발송이 양국 간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을 통보하고, 발송 가능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2. 주콜롬보통상대표부는 1973.5.5. 중국(구 중공)의 무상원조로 건립된 '반다라나이케 기념회관' 개관식이 5.17. 개최될 예정으로 동 행사에 중국 수상 및 각국 외교사절이 초청될 것으로 예상됨을 보고하고, 동 개관식 참석 여부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5.14. 지방출장 또는 기타 자연스러운 이유를 들어 동 행사에 참석치 않도록 회신함.

3. 외무부는 1973.11.28. 주콜롬보통상대표부에 대해 몰디브공화국이 관할국은 아니나 동국에 관한 제반 정보는 주콜롬보통상대표부만이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 따라 몰디브의 국가원수 취임 등 대통령의 축전 발송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함.

4. 주콜롬보통상대표부는 1973.12.1. 한국어선단에 대한 유류 보급 문제에 관해 아래 내용을 보고함.

❋ 주재국은 1970.3월 이스라엘과의 단교, 친아랍 정책 채택 및 소규모의 국내 유류 소비량 등으로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큰 경제적 영향은 받지 않고 있으며, 수입 감량은 시행되지 않고 에너지 소비는 종전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주재국 정부는 향후 확실한 원유 확보를 보장받기 위해 중동 산유국에 대한 각료급 사절단 파견을 검토 중임.

❋ 당관은 한국어선단에 대한 유류 보급 문제와 관련하여 주재국 관계당국과 교섭한바, 한국어선단에 대한 공급을 가능한 한 고려할 것이나, 향후 원유 및 정유공장 사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임.

❋ 주재국 각 항구에는 각국 상선 및 어선이 대규모로 입항하여 기존 생산분은 이미 재고가 소진되고, 소규모의 정유시설도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실정임.

❋ 따라서 한국 원양어선단에 대한 원활한 유류 보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7척의 어선에 대해 이미 한국어선단 대리점에 유류가 소진되었음을 통고한 바 있음.

한 · 토고 정무일반

| 73-009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C-60 / 25 / 1~21(21p)

1. 주토고대사대리는 1974년도 연차 활동계획을 1973.11.24.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토고의 외교정책

- 토고는 1960년 독립 이후 1970년까지 친서방 외교 노선을 채택해 왔음.
- 1970년 이래 동서 긴장 완화의 국제 조류 및 토고 국민회의 지도자들의 친공산주의적 경향으로 1971.11월 전당대회에서 "세계 평화 유지에 기초한 현실주의적 외교정책"을 정강으로 채택하고, 비동맹 좌경노선을 유지하고 있음.

❁ 토고의 대한국 태도

- 토고는 독립 이래 1973년도 유엔 총회 시까지 계속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왔음.
- 이후 비동맹 좌경노선 채택에 따라 1973.5월 북한의 WHO(세계보건기구) 가입을 지지하였으며, 제26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 측 입장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함.
- 2차에 걸친 면담 시 토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엄정중립을 약속함.

❁ 1974년도 연차 활동계획

- 훈데데 외상 방한 실현: 의료 협력의 강화 및 봉제공장 직접투자 문제 검토
- 친한 각료와의 유대 강화: 보건장관 및 법무장관
- 친북한 요인에 대한 유화 노력: 외무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공보장관, 외무성 비서실장 등
- 외과의사 2명 증파
- 한국 소개 자료 홍보
- 대사관 화보 게시판 제작 운영
- 상품전시회 개최

2. 주토고대사관은 1973.12.8. 한국 관계 기사를 아래 보고함.

❁ 보건장관의 서울 방문(11.28. 로고투데스지)

- 장관은 대통령을 예방하고, 외무부차관과는 경제 및 어업에 관한 양자협력 가능성에 관해 회담
- 국무총리 및 보사부장관 예방 예정

❁ 한국 의료단의 회충 적출(11.27. 로고투데스지)

❁ 한국 외과의사 신규 파견 예정(12.6. 로고투데스지)

- 보건장관의 한국 방문 성과의 하나로 한국은 2명의 외과의사를 신규 파견하기로 약속

트리니다드토바고의 대한국 농산품 기증

| 73-009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60 / 26 / 1~56(56p)

1. 주브라질대사는 1973.2.17. 브라질 주재 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이 2.13. 외교공한으로 동국 농산품이 1973.2월 말경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음을 아래 보고함.

- 한국이 1972.2월 친선유대의 표시로 트리니다드토바고에 앰뷸런스 1대를 기증한 데 대한 보답 차원에서 12월 농산품 9톤을 한국에 기증함.
- 외무부는 1973.3.23. 주브라질대사에게 한국 정부의 사의를 공한으로 표명토록 지시함.

2. 외무부는 1973.2.28. 동 농산품을 새마을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비서실에 선하증권 등 관련 서류를 송부함.

3. 외무부 관계관은 1973.3월 상기 기증품 인수차 출장 시 일부 분실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대통령비서실에 통보함.

- 잔여 농산품 647상자는 3.19. 대통령비서실에 인계함.
- 운송 및 해운회사는 분실 배상금(4만여 원)을 송부해 옴에 따라 3.29.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함.

4. 외무부는 1973.5.29. 해운회사를 상대로 분실된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약 244파운드)을 청구함.

- 손실보상에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는 7.25. 보험료 명목으로 275여 파운드를 송부함.
- 외무부는 8.21. 동 금액을 대통령비서실에 송부하고, 상기 분실배상금은 환불 조치함.

한 · 미국 정무일반

| 73-009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C-60 / 27 / 1~17(17p)

1. 주미대사는 1973.4.20. 및 4.21. 아세아문제연구소 및 경남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1970년대의 한국과 열강' 주제하의 학술회의가 개최되어 아래 한국의 대미정책, 대일정책, 대소정책 및 대중국(구 중공) 정책에 관한 연구발표가 시행되었음을 보고함.

❋ 김일평 교수는 대소련, 대중국 접근 시도가 생존을 위한 전략이며, 동 국가들과의 교류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아래 제시함.

- 대중국 관계 개선은 우선 민간외교에서 시작, 탁구팀 방한, 언론인 방한 초청 등 문화 교류 우선 추진, 추후 통상사절 교환 등 제안
- 장기적 안목에서 대만(구 자유중국)과의 관계 단절, 일본에 대한 한국 문제에 대한 불간섭 보장과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에서 비핵지대 설정에 대한 중국의 동의 확보를 검토
- 미국 및 일본과의 화해를 모색하는 북한의 움직임을 전면 봉쇄하는 태도를 포기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고립에서 벗어나 미국 및 일본과의 대화채널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어 한국의 대중국, 대소 접근을 실현케 하는 가능성 고려
- 소련에 대해서는 소련과 서독 간의 불가침조약 체결의 유형에 따라 불가침조약 협상 제안

❋ 이재진 교수는 "일본, 중국 및 한국" 제하의 아래 주제 발표를 통해 한반도를 위요한 일본과 중국의 이해관계 및 정책에 있어 대립적 요인과 공통성을 분석한 후 한국의 대중국 관계 개선을 위해 고려 가능한 방안을 아래 제시함.

- 한국의 군사력 유지는 근본적으로 방위적 성격임을 중국에 주지시킴과 동시에 남북한 불가침조약 체결을 검토
- 한국이 일본과 군사적 유대를 형성할 의도가 없음을 중국 측에 명백히 전달
- 대만과의 경제적 관계는 유지하되 정치적 관계는 점차 단절
- 한국 내 화교들의 중국 본토 송금과 본토 방문 허용 및 광동 무역박람회 한국 실업인 참가 추진

2. 주미대사는 1973.5.15. 대사관 담당관이 미 국무성과 일본 외무성 실무진 간 협의에 관해 국무성 한국 과장으로부터 탐문한 내용을 아래 보고함.

❋ 협의 시기 및 장소: 5.8.~9. 미 국무성

❋ 협의 결과

-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등에 관한 협의 목적이었으나, 한반도 문제 전반에 관해 의견 교환
-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평가와 남북한과의 관계 등 제반 사안에 전반적으로 의견 일치

❋ 협의 내용

- 유엔의 한반도 문제 관련 대책: 북한의 WHO(세계보건기구) 가입, 동서독의 유엔 동시가입, 베트남 휴전 성립, 북구 제국의 북한 승인국 증가 등을 감안할 때 금년 유엔 총회에서는 종래 한국 문제 처리방식 유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견해 일치

- 남북한회담 및 기타 한반도 정세 평가: 중 · 소 간 분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치 않으나, 북한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 분쟁을 이용하고 있다는 데 견해 일치, 현 시점에서 북한이 무력에 의해 통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정책은 유보한 것으로 관측
- 한반도 문제 및 남북한과의 관계: 한반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 국민 스스로 해결할 문제로 미국과 일본은 동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며, 사회주의 국가들의 한국 승인 의사 표명이 긴요하다는 일본 측 의견에 동의
- 대한국 정책: 미국의 대한국 정책은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대한국 방위공약, 주한미군 주둔, 군사원조 제공 등 유지
- 대북한 정책: 기본적인 대북한 정책의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임을 천명
- 남북한 군사력 비교: 주한미군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조약의 상징으로서 정치적 자산, 일본은 한국 방위를 위한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중요성 인식

함영훈 주싱가포르총영사 관할국 브루나이 출장, 1973.6.16.-19.

| 73-009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C-60 / 28 / 1~18(18p)

함영훈 주싱가포르총영사는 1973.6.16.~19. 관할국 브루나이 출장 결과 보고서를 6.28. 아래 보고함.

1. 출장 목적

❋ 브루나이 일반 정세 및 교민 실태 파악, 브루나이 천연가스 액화공장 공사 현장 시찰

2. 주요 일정

❋ 영국 고등판무관 예방, 교민 방문 및 오 · 만찬, 대림산업 공사 현장 시찰, 한국 홍보영화 상영

3. 브루나이 개황

❋ 영국의 보호령으로 영국 고등판무관이 사실상 통치, 특히 외교, 국방, 안보는 영국 정부 관할
- 형식적으로는 술탄이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독점
- 이슬람교 및 말레이 관습 문제 이외의 모든 문제는 영국 고등판무관이 술탄에게 자문

❋ 경제는 아직 저개발 상태로 국민총생산의 80% 이상을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이 점유
- 대외교역 규모(1970년): 수출 2.9억 달러, 수입 2.3억 달러

4. 교민 관련 사항

❋ 교민 실태
- 총 78세대 282명, 자동차수리업, 양계 · 양돈업, 천연가스공장 취업 등에 종사
- 브루나이 정부 당국의 외국인 추방 정책으로 인해 사업 확장이 어려움에 따라 영주 귀국 또는 타국으로의 이주 준비 동향
- 교민 대부분이 1년 기한 단수여권 소지자로서 단기체류자격자, 해외 장기체류로 귀국 보증을 위한 국내 연고자 부재로 여권 기한 연장 허가를 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

❋ 건의 사항
- 정책적으로 이민여권이나 교포여권 발급
- 잠정적 조치로 여권 기한 연장을 1회 2년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

5. 대림산업 공사 현황

❋ 내용: 브루나이 천연가스액화공장 기계설치 공사
❋ 규모: 약 2천만 달러
❋ 기간: 1970.7월 착공, 1974.2월 완공 예정
❋ 공사 인원: 기술자 약 300명

안진생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대사에 대한 주재국 출국요청 사건

| 73-0100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51 / 39 / 1~39(39p)

1. 외무부는 1972.12.3. 대통령에게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정부의 12.1.자 동국 주재 안진생 대사에 대한 출국 요청 경과를 아래 보고함.

- 모부투 대통령은 11.29. 당 정치국회의에서 대분단국 문제를 심의한 후 두 개의 한국을 승인하는 데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결정함.
- 안진생 대사는 주재국 외무성에 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11.30. 주재국 중앙통신사와 기자회견을 개최함.
- 주재국 외무장관은 12.1. 상기 기자회견 내용이 내정간섭임을 이유로 안 대사에 대해 48시간 내 출국토록 요청하였으며, 안 대사는 12.3. 주재국을 출국하여 귀국함.
- 모부투 대통령은 1971.7월 이래 주재 외교관 21명을 추방한 바 있음.
- 안 대사 귀국이 양국 간 외교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직원이 대사대리 업무를 수행 중임.
- 외무부는 재외공관감사반을 12.19. 콩고민주공화국에 파견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안 대사의 귀국 보고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할 예정임.

2. 외무부는 1972.12.4.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대리에게 안진생 대사의 기자회견 내용 중 주재국 측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을 보고하도록 지시한바, 대사대리는 기자회견 관련 중앙통신 기사 내용을 아래 보고함.

- 한국대사는 당 정치국에 의한 대분단국 승인원칙 공식 입장 결정에 관해 기자회견을 개최함.
- 한국대사는 회견을 통해 "당 정치국의 이러한 결정은 한반도 통일의 기회를 무효화"할 수 있음에 따라 당 정치국은 동 결정을 재고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함으로써 동 결정에 항의함.

3. 외무부는 1972.12.5. 전 재외공관장 앞으로 상기 안 대사의 귀국 경과를 통보함.

4. 외무부 총무과장은 1973.1.31. 구미국장에게 안진생 대사의 귀국 경위, 구미국에서 취한 조치 및 동 대사의 지위에 관한 의견을 문의한바, 구미국장은 2.2. 안 대사의 지위에 관해 아래 회신함.

- 안 대사의 경우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의 북한 승인 방침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 옹호를 이유로 기피인물로 선언되었음에 따라 정부로서는 동 사건이 발생한 동기를 정당하게 평가해야 함.
- 따라서 동 대사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별도의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정부 훈령에 의해 일시 귀국한 경우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할 것임.

Angome-Minso, Philippe 대만(구 중국)상주 주한 가봉대사 방한, 1973.5.9.-12.

| 73-010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C-60 / 29 / 1~18(18p)

1. 주대만(구 중국)대사는 1973.5.4. 주재국 주재 Angome-Minso 주한겸임 가봉대사가 5.9.~12. 아래와 같이 방한 예정임을 보고함.

❋ 동 대사는 방한 기간 중 외과의사 파견 문제 협의를 위해 보건사회부장관을 방문토록 협조해 줄 것을 희망함.

❋ 동 대사는 방한을 통해 6월 말 공관장회의차 일시 귀국 이전에 주한대사관 설치 문제를 협의하고, 한국의 제반 사정 시찰 후 본국에 보고할 것으로 관측됨.

2. 외무부는 1973.5.8. 동 대사의 보건사회부장관 예방, 새마을운동 관련 시찰 및 울산 공업단지 시찰을 위한 협조를 제공함.

3. 외무부장관은 1973.5.10. 동 대사를 아래와 같이 면담함.

❋ 대사 언급 요지

- 한국의 가봉 주재 상주대사관 설치, 의사 파견 및 양국 간 협력 확대 협의를 위해 방한함.
- 가봉에 한국 상주대사관 개설 시 상호 호혜원칙에 따라 상주대사관 서울 설치를 위해 최선 노력할 것임.
- WHO(세계보건기구)에서 한국 입장을 전폭 지지토록 건의 예정임.

❋ 외무부장관 언급 요지

- 가봉주재 한국 상주대사관 설치 계획을 설명함.
- 외과의사의 8월 파견 및 증파 문제는 현지대사관의 보고 접수후 처리 예정임.
- 양국 간 현존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서울주재 가봉 상주대사관 개설을 희망함.

4. 외무부 구아국장은 1973.5.10. 동 대사를 아래와 같이 면담함.

❋ 구아국장 언급 요지

- 최근 한반도 정세, 적십자회담 및 남북대화 추이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함.
- 가봉 주재 한국 상주대사관 설치 및 외과의사 1명 파견 계획을 통보함.
- 양국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서울 주재 가봉대사관 설치 희망을 표명함.
- WHO에서 한국 지지 결의안에 가봉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토록 건의할 것을 요청함.

❋ 대사 언급 요지

- 한국의 남북대화 관련 기본 입장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함.
- 가봉 주재 상주대사관 설치를 환영하고, 외과의사 파견 조치에 대해 사의를 표명함.
- WHO에서 한국 지지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위한 건의를 약속함.

김동성 주아르헨티나대사 겸임국 파라과이 출장, 1973.6.25.-28.

| 73-010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60 / 30 / 1~27(27p)

김동성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73.6.25.~28. 겸임국 파라과이 출장 결과를 6.29.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주요 일정

- 파라과이 대통령 및 외상 예방, 문화협정 조인
- 교민회 간부 만찬, 주요 일간지 방문

2. 주요 결과

- 8년간 계류 중인 문화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하여 영문 및 국문 조약문 미비로 우선 스페인어 문으로 조인함.
- 파라과이 외상은 한국대사관이 파라과이에 설치될 것임을 발표하고, 이를 환영함.
- Strossner 대통령 예방 시 동 대통령은 자신이 철저한 반공주의자임을 상기시키는 한편 향후 파라과이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을 무조건 지지할 것임을 약속함.
- 외상은 방한 초청에 대한 답신을 곧 발송할 것임을 언급하고, 방한 시기는 10월 중을 예정하고 있다고 언급함.

3. 건의 사항

- 8.15. 대통령 취임식 참석 시 문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도록 동 행사 이전 영문 및 국문본 완결을 요망함.
- 대통령 및 외상이 한국대사관 설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바, 가급적 조속히 개설이 실현되도록 건의함.

최운상 주Cairo 총영사 수단 방문, 1973.8.4.-10.

| 73-010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C-60 / 31 / 1~138(138p)

1. 최운상 주카이로총영사는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및 6·23 특별선언에 대한 지지 교섭차 1973.8.4.~10. 관할국 수단 방문 결과를 8.16.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주요 결과

- 외무차관 외 15명의 정부 요인 등 각계 인사 면담
-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포함한 관계 개선 제의에 대해 확실한 언질은 없었으나, 외교차관은 정치적 관계 개선에 앞서 경제 관계 강화가 필요함을 답변
- 공업 및 광업성 차관은 한국의 방직, 제당, 시멘트 분야 투자 및 합판공장, 제지공장, 도자기공장의 건립 지원을 희망
- 재무 및 국민경제성 차관은 수단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자유경제체제로 전환 중임을 설명하고,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한국과의 교역 증진을 희망함을 언급
- 카르툼 주재 우방국 대사들은 수단이 과거 수차의 좌경 쿠데타를 경험한 바 있으며, 현재 이념을 초월한 경제 발전에 주력하고 있음에 따라 한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

❋ 건의 사항

- 문서에 의한 외교관계 수립 제의
- 무역협정 체결
- 2명의 방직 부문 훈련생 초빙
- 연불수출 지원
- 원면 도입 계획 수립

2. 주카이로총영사는 1973.9.15. 수단 정세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현 정권의 안정도

- 1973.5월 발효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강력한 행정권한을 보장
- 1972.1월 발족한 수단사회주의연맹이 수단 내 유일한 정치 및 사회단체 역할 수행
- 외환 난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과 남부지역 구호 문제가 정부의 난제로 대두
- 현 뉴메리 대통령에 대한 대항 세력 부재로 동 대통령의 장기 집권 지속 전망

❋ 대외정책

- 1971.7월 쿠데타 이후 좌경 노선을 탈피, 국내외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리 정책을 추구
- 아랍권과의 단결을 주요 대외정책으로 표방
- 1972.7월 미국과 외교관계 재개

대동구권 외교관 직접 접촉

| 73-010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특수지역과/구주과
MF번호	C-60 / 32 / 1~15(15p)

1. 주이탈리아대사는 1973.4.5. 체코 무관부 교체 관련 리셉션 시 소련 무관의 언급 내용을 4.17. 아래 보고함.

- 로마에서의 북한 무용단 공연은 참관하지 않았으며, 초청장도 접수한 바 없음.
- 한국과 소련의 양국 관계는 과거보다 장래를 지향함이 중요함.

2. 주우루과이대사는 광복절 경축 리셉션 개최 및 공산국 사절 초청 문제에 관해 1973.7.24. 아래 보고함.

- 공산국 외교사절에 대해 참석 여하를 불문하고 광복절 경축 리셉션 초청장 발송 건의
- 6·23 성명 후 주재국 외무장관 등은 동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세계 평화에의 기여에 대한 기대와 환영의 뜻 표명
- 당지 소련대사는 한국의 승인 문제와 관계 개선에 대해 과거 부정적인 태도에서 변화하여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 표시

3. 외무부는 1973.8.2. 주우루과이대사에게 8.15. 경축 리셉션에 모든 공산권 외교사절에 초청장을 발송해도 무방하나, 현지 사정을 감안하여 불참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리셉션에서 공산권 인사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의사를 타진하고, 반응을 수시 보고토록 지시함.

4. 주우루과이대사는 1973.8.17. 광복절 경축 리셉션에서 폴란드대사가 최근 동구 공산권 국가들 간에 한국 승인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윤곽은 금년도 유엔 총회 시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5. 주핀란드공사는 1973.8.16. 주재국 쿠바대사대리를 오찬에 초청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교환함.

- 주핀란드공사는 한국의 원당 수입 및 통상사절단 파견 문제에 관한 정부의 의사를 전달한바, 동 대사대리는 한국 측 의사를 토대로 추진하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 주핀란드공사는 6.23. 외교정책 특별성명, 특히 공산 국가에 대한 문호개방 정책을 소상히 언급하고, 한·쿠바 양국이 호혜평등 원칙 및 주권의 상호 존중을 토대로 상호 적대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설명함.

이창희 주멕시코대사 겸임국 출장

| 73-010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60 / 33 / 1~95(95p)

1. 이창희 주멕시코대사는 겸임국 자메이카 총독 은퇴식 참석을 위한 1973.2.25.~3.2. 동국 출장 결과를 3.5.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후임 총독으로 F. Glasspole 현 문교부장관이 거론됨.
- 최근 좌경화 현상이 농후하나 미국, 영국 등과의 전통적 우호관계 및 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으로 인해 급진적인 좌경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됨.
- 총독 면담 시 대사는 양국 간 우호관계 강화 희망을 전달하고, 한국 방문을 요청함.
- 외무차관서리 면담 시 동 차관은 현안 문제 관련 협조를 약속함.

2. 주멕시코대사는 자메이카 신임 총독 취임식 참석차 1973.6.26.~7.1. 동국에 출장한바, 주요 인사 면담 결과를 7.3.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수상실 외무담당장관: 6·23 특별성명 환영, 남북회담 성과 기대
- M. Manley 수상: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 환영
- Glasspole 신임 총독: 한 · 자메이카 간 돈독한 우호관계 다짐,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성과 기대
- 외무성 사무차관: 공관 설치는 자메이카 측 사정으로 당분간 보류 희망, 문화협정 초안 송부 재차 요망

3. 주멕시코대사는 1973.8.19.~9.1. 겸임국인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및 엘살바도르 출장 결과를 9.10.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니카라과(8.19.~23.)
  - 대통령, 군 총사령관 겸 비상위원장, 외상 예방
  - 동 인사들은 한국의 6·23 선언을 적극 지지, 한국의 모든 평화통일 노력을 지원할 것을 다짐
  - 금년도 유엔 총회에서 한국 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 표명
- 코스타리카(8.24.~27.)
  - 대통령 및 외상 예방
  - 6·23 선언 적극 지지,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지원 다짐
  - 외상은 주재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입후보 사실을 언급, 한반도 문제 세부 전략 협의를 위해 유엔에서 외무장관과의 회담 희망
- 엘살바도르(8.28.~31.)
  - 대통령 및 외상 예방
  - 6·23 선언 적극 지지,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지원 다짐
  - 대통령의 1973년 말 또는 1974년 초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 시 한국 방문 희망
  - 외상은 유엔에서 외무장관과의 회담 희망

노석찬 주브라질대사 겸임국 출장

| 73-010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60 / 34 / 1~62(62p)

1. 노석찬 주브라질대사는 1973.1.16. 겸임국 가이아나 출장 결과를 1.22. 아래 보고함.

❁ 주요 훈령사항 협의 결과

- 양국 간 무역협정 및 경제, 기술협력협정 체결: 주재국은 언제라도 서명 희망
- 대가이아나 한국 사절단 파견: King 장관은 1973.3월 파견 희망
- 수상 또는 외상의 방한: 주재국 선거 등 국내 정치 일정상 금년 내 가능성 희박
- 북한의 가이아나 상주대표부 설치 문제: 빠른 시일 내 실현될 전망은 없는 것으로 전망

❁ 주요 면담 내용 및 관찰

- Burhham 수상은 남북회담을 높이 평가
- 소련은 과거 야당 당수를 지원, 현재는 현 수상의 정책을 평가하는 등 전략 변경
- 주재국은 1973.6월부터 외국 이민 규제를 완화할 것임에 따라 한국 이민 진출 전망 양호
- 상주공관 설치 건의

2. 주브라질대사는 1973.4.26.~5.5.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및 기타 현안 문제 교섭을 위한 겸임국 및 관할국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및 베네수엘라 출장 결과를 5.8. 아래 보고함.

❁ WHO 총회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교섭

- 트리니다드토바고와 베네수엘라는 한국 입장 지지, 가이아나는 동 회의에 대표단 미파견

❁ 가이아나 방문(4.26.~30.)

- 경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6월 이후 기술협력조사단 파견 계획 통보
- 외무성 차관은 북한의 가이아나 접근에 대처하는 방도는 조속한 한국의 상주공관 설치임을 권고

❁ 트리니다드토바고 방문(5.1.~2.)

- 보건장관은 WHO 총회에서 한국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음을 언급
- 한국의 기술전문가 파견에 대한 편의 제공 약속
- WHO 총회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약속

❁ 베네수엘라 방문(5.3.~5.)

- 문화협정 조속 체결 추진 약속
- WHO 총회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약속
- 외무차관의 방한 결정 및 희망 일정 접수
- 외무장관은 남북한 문제와 한국의 대중국(구 중공) 기본 정책에 관심 표명

호주 · 중국(구 중공) 관계

| 73-010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1과/동남아2과
MF번호	2010-87 / 1 / 1~4(4p), C-60 / 35 / 1~78(78p)

주호주대사의 호주-북한, 호주-중국(구 중공)과의 관계와 관련한 1973년 중 보고 내용임.

1. 캔버라대학 측을 통해 1973.11.18.~12.2. 주재국을 방문 예정인 북한 사절단을 호주 정부가 접촉하지 않기를 요청한 데 대한 11.13.자 동 대학 관계자의 언급 내용 보고

- ❋ 호주 정부는 1973년부터 북한과의 접촉 증대를 결정
- ❋ 북한과의 접촉은 호주뿐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정부 측 입장

2. 호주 무역상의 중국(구 중공) 방문 시 1973.6.6.자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6.8.자 보고

- ❋ 호주 및 뉴질랜드에 대한 중국 지도자들의 우호적 태도 감지
- ❋ 호주 · 중국 간 무역협정 체결 약속, 1973년 하반기 중 서명 예정
- ❋ 북한대사와의 면담 시 장관은 북한 승인 및 북한 방문 용의 표명

3. 호주와 중국 간의 1973.7.24. 캔버라에서의 통상협정 체결에 대한 7.27.자 보고

- ❋ 중국 통상장관은 콴타스 항공의 중국 취항을 제의하였으며, 호주 측은 호주 · 중국 간의 화물을 호주 선박에 의해 수송하는 문제를 제의한 것으로 현지 언론이 보도
- ❋ 동 협정은 양국 간 교역 원활화, 부속서 규정 교역품목 제한금지, 최혜국대우 조항, 무역사절단 상호 방문 촉진, 공동무역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

4. 휘트람 수상의 1973.10.31.~11.4. 중국 방문 결과에 대한 11.9.자 보고

- ❋ 지역협력 문제
  - 호주 수상이 구상하는 중국을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기구 안에 중국 측이 상당한 관심 표명
- ❋ 호주 측은 재호주 중국인과 중국 친척 간의 상호 방문 제의
- ❋ 1975~77년간 30만 톤의 설탕 장기 공급계약 체결 합의
- ❋ 호주 외무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상 측근의 자문 및 북경 주재 호주대사의 권고에 의해 시아누크와 면담
- ❋ 핵실험, 한반도 문제, 방글라데시의 유엔 가입, 중동전 및 캄보디아 문제에는 상호 이견

5. 호주 수상의 1973.11.14. 주은래 총리와의 면담 시 한반도 문제 토의 내용 보고

- ❋ 호주 수상 언급
  - 북한의 WHO(세계보건기구) 가입 이후 독일과 같이 유엔 가입을 기대했으나 이에 반대해 실망,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남북한 간의 대화가 발전되기를 바란다는 희망 표명

❁ 주은래 총리 언급

- 한반도 분단은 인위적 결과
- 중국은 한반도에서 철수했으나, 타국은 계속 군대를 주둔 중
- 한반도의 조속한 화해는 기대 난망
-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은 분단을 영구화
- 한민족의 통일에 대한 조력 필요성
- 연방제 실현은 장구한 시일 소요
- 김대중 사건을 비판적으로 언급

대만(구 중국) · 중국(구 중공) 관계

| 73-010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C-60 / 36 / 1~65(65p)

1. 주미대사는 1973.3.2. 주재국 언론이 중국(주 중공)이 대만(구 자유중국)에 대해 중국 통일을 위한 공개 또는 비밀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 아래와 같이 보도했음을 보고함.

- 중국 정치협상회의 부회장인 FU Tso-Yi가 2.28. 대만 봉기 26주년 기념식 연설을 통해 제의함.
- 북경 주재 외교관들은 동 부회장이 모택동과 주은래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키신저 박사의 중국 방문에 따른 외교적 공세의 개시로 분석함.

2. 주미대사는 상기 보도에 대한 미 국무성 대변인의 1973.3.2.자 논평을 아래 보고함.

- 대만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나, 동 문제는 중국인들 자신이 해결할 문제임.
- 미국이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함.

3. 주대만대사는 1973.3.6. 대만 측 반응을 아래 보고함.

- 과거 수차에 걸쳐 유사한 중국 측 제의가 있었으나,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 옴.
- 장경국 행정원장은 공산주의자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천명함.

4. 주홍콩총영사는 1973.5.26.자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아래 보고함.

- 중국 전인대 상임위원 장사쇠가 국민당 대표와 협상을 위해 5.25. 홍콩에 도착함.
- 장사쇠는 모택동의 은사로서 1954년 전인대 호남성 대표로 당선된 후 2차 연임된 최고령 지도급 인사임.

5. 외무부는 '중국의 대대만 평화협상 제의'에 관한 아래 내용의 자료를 작성함.

- 서론
- 제의 내용 및 경위
- 제의 배경
  - 중국의 국제적 지위 강화
  -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
  - 대만 내부의 취약성
- 제의 분석
- 전망
- 문제점

일본 · 대만(구 중국) 관계

| 73-0109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동북아2과
MF번호	C-60 / 37 / 1~33(33p)

1. 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는 1973.3.15. 일본 정부가 독단적으로 일본 주재 전대만대사관 건물을 중국(구 중공)에 양도한 데 대한 대만 측 반응을 3.17. 아래 보고함.

❁ 외교부 성명

- 대만 정부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중국의 압력에 의해 중국 측에 양도함은 국제적인 배신 행위로 엄중 항의함.
-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일본 측이 책임져야 함.

❁ 언론계 반응

- 자립민보 사설(3.16.): 일 · 중국 간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고 하여 대만대사관 건물을 중국에 양도했다면 일본 정부는 대만 정부 또는 대만 국민과 일본 정부 또는 일본 국민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로 환치할 수 있는가?
- 민족석간 사설(3.16.): 대만대사관 건물의 처리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해결했어야 할 문제로 일본 정부의 배신적 처사 및 동 결과에 대해 냉정하고 주도면밀하게 검토할 문제임.

2. 주대만대사는 1973.10.1. 및 10.2. 대만아동협회장 초청에 따른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단의 대만 방문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 전 문교대신 나다오 도오기찌 단장 외 70여 명(중의원 44명, 참의원 27명 등) 규모임.

❁ 동 방문단은 양측 간 관계 개선책 협의 및 경제 유대 강화를 위해 대만 고위층과 면담 예정임.

❁ 나다오 단장은 오히라 외상의 요청에 따라 현안인 일본과 중국과의 조속한 항공협정 체결에 대한 대만 측의 양해를 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부인함.

❁ 일본의 1972년 중국과의 국교 수립이라는 배신에 크게 상처를 입은 대만 정부로서는 대규모 일본의원단의 방문으로 중국과 일본과의 접근 관계에 견제 세력을 구축한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함.

❁ 동 일본 의원친선사절단은 10.1. 장경국 행정원장을 예방함.

- 장 행정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만 · 일본 양 국민은 상호 협력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여 공산 침략으로부터 아시아를 보호하고, 세계 평화에 공헌해야 한다는 요지로 언급함.

대만(구 중국) · 소련 관계

| 73-011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C-60 / 39 / 1~9(9p)

1. 주뉴델리총영사는 1973.2.19. 현지 Windustan Times지가 홍콩 특파원발 대만(구 자유중국)과 소련과의 관계에 관한 아래 기사를 게재했음을 보고함.

❋ 고위 대만관리는 3.16. 만약 대만-소련 간의 불가침조약이 체결된다면 대만은 그 대가로 대만해협 내에 있는 Pescadores도를 소련 해군기지로 제공할 것임을 밝힘.

❋ 이는 미-중국(구 중공) 화해 이후 대만 측이 생존 전략에 관해 최초로 언급한 것으로 만약 미-중국 간에 정식 외교관계가 수립된다면 미-대만 방위조약은 자동적으로 폐기될 것이며, 그 단계에서 상기 대만 측 계획이 실현될 것임.

❋ 상기 대만관리는 키신저의 북경 방문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비공개적으로 홍콩을 방문함.

2. 외무부는 1973.5.16. 주대만대사에게 5.15. 대북발 아래 AFP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동 발표 전문 입수 및 관련 상세 내용과 배경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 주재국 창하오 소장은 소련의 소규모 해군함대가 1949년 이후 처음으로 사전 통고 후 5.12.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공식 발표함.

3. 주대만대사는 소련 함대의 대만해협 통과 문제와 관련하여 1973.5.19. 아래 내용을 보고함.

❋ 경위

- 국방부 대변인은 5.15. 소련 군함 3척이 5.12. 대만해협(공해상)을 통과했으며, 군 당국은 미국 측이 제공한 사전 정보에 따라 경계를 강화했다고 발표함.

❋ 미 대만 방위사령부 대변인은 5.17. 아래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

- 소련 함대의 5.12. 상기 대만해협 통과 사실을 확인함.
- 미 7함대는 매월 10~25척의 전함으로 대만해협을 순찰해 왔으며, 향후로도 계속 순찰할 것임.

❋ 대만 각계 반응

- 중국이 대륙을 석권한 후 초유의 사실로 소련의 무력 및 해양주도권 과시, 대중국 시위로 간주됨.
- 소련은 대인도양 해상권 및 대서태평양 세력 확장 기도를 과시함.
- 소련은 미 · 일 · 중국 3각 세력관계의 급속한 조성에 대응하여 개입 의사를 시위한 것임.

카나다 · 중국(구 중공) 관계

| 73-011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C-60 / 40 / 1~130(130p)

1. 주캐나다대사는 1973.6.14. 캐나다와 중국(구 중공) 간에 6.11. 서명된 항공협정문 및 관련 기사를 외무부에 송부함.

2. 주밴쿠버총영사는 1973.6.18. 중국이 밴쿠버에 총영사관을 설치할 계획임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주밴쿠버 미국총영사에 의하면 중국 당국은 가까운 시일 내 밴쿠버에 총영사관을 설치할 계획임.
- ❁ 캐나다–중국 항공협정 체결에 따라 CPA는 곧 중국 노선에 취항하게 될 것임.

3. 주캐나다대사는 1973.10월 트뤼도 수상의 중국 방문에 관해 아래 보고함.

- ❁ 방문 기간: 1973.10.10.~16.
- ❁ 주요 일정
  - 10.10. 북경 도착, 주은래 등 고위 관리 출영
  - 제1차 회담(10.10.): 캐나다 측 입장 설명, 캐나다 측의 방문 초청에 주은래는 유보 입장
  - 제2차 회담(10.11.): 중국 측은 강대국의 약소국 착취를 비난, 평화5원칙에 의한 양국 관계 발전 필요성을 역설, 캐나다 측은 중국과의 통상, 문화 관계 증진을 약속
  - 제3차 회담(10.12.): 양측은 중동전쟁, 국제 문제에 관해 의견 교환, 통상 · 문화 · 의료 · 과학 등 분야 협력에 전반적으로 합의, 중국 가족이민의 간소화 및 주밴쿠버 중국영사관 설치 문제 협의
  - 제4차 회담(10.13.): 캐나다-중국 무역협정 서명, 모택동 방문 초청
- ❁ 양국 간 합의 내용
  - 무역협정 체결, 밴쿠버와 광동에 각각 영사관 개설, 중국인의 캐나다 이민 간소화, 양국 의료원 단기 교환 방문, 과학기술 요원 교환, 문화 · 교육 · 체육 관계 교류

4. 주캐나다대사는 트뤼도 수상 방중 시 수행한 외무성 아시아태평양담당 총국장으로부터 양국 수상 회담 시 협의된 한반도 문제에 관해 청취한 내용을 1973.10.18. 아래 보고함.

- ❁ 한반도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은 양측이 각각 견해를 피력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짐.
- ❁ 중국 측은 소극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음.
- ❁ 외무성 중국담당국장 귀국 시 상세한 대화 내용에 관해 논의 예정임.

5. 주캐나다대사는 양국 수상 간 4차회담 시 논의된 한반도 문제 관련 요록을 1973.11.8. 외무부에 송부함.

프랑스 · 중국(구 중공) 관계

| 73-011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60 / 42 / 1~93(93p)

1. 주프랑스대사는 치펭베이 중국(구 중공) 외상의 1973.6.10.~14. 프랑스 공식 방문 주요 결과를 6.14. 아래 보고함.

❋ 프랑스 수상과 6.12. 회담을 통해 중동 문제를 제외한 세계 주요 문제에 관해 의견 교환
- 중국은 구주공동체, 신북대서양동맹 구상, 구주 감군, 헬싱키 회의 등에 관한 프랑스 측 견해 타진
- 프랑스는 중소 관계에 관한 중국 측 입장 타진
- 중국 외상은 중소 관계를 교착 상태로 규정, 신북대서양동맹에는 우려를 표시하지 않은 반면 미소 화해 움직임에는 경계하는 입장을 표명

❋ 6.13. 외상, 퐁피두 대통령 및 재무상을 예방

❋ 6.14. 프랑스 출발, 이란 및 파키스탄 방문 예정

2. 외무부는 1973.9.21. 대통령에게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의 9.11.~17. 중국(구 중공) 방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주요 일정
- 모택동과 비밀회담(9.12.), 주은래와 3차 회담(9.12.~14.), 기자회견(9.14.)

❋ 공동성명 요지
- 양국 관계, 국제 관계에 관한 일반원칙, 인도차이나 문제, 한반도 문제, 유럽 문제 등 포함
- 한반도 문제 관련 1972.7.4. 남 · 북한 공동성명을 지지

❋ 분석
- 국제 관계 일반 및 핵정책에 대해 의견 일치
- 일부 주요 국제 문제에 관해 견해 차이
- 양국 간 경제, 문화 교류 확대에 합의
- 7·4 남 · 북한 공동성명 지지

❋ 결론
- 미국 및 소련 양대 강대국에 의한 국제 정치 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에서는 양국 입장 일치
- 프랑스는 대소 화해정책을 분명히 하고, 중국은 유럽 안보를 대소 관계에 있어서의 안보와 연계
- 프랑스는 중국과의 통상 확대 기대, 구체적인 성과는 미흡
- 중국은 프랑스의 유럽정책이 중국과 동일한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기대했으나 이견 노정
- 양국이 의도했던 주요 문제에 관한 성과 달성에는 미진, 양국이 상호 견해를 교환하고 양국 관계 발전 희망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

Chi Peng-fei 중국(구 중공) 외교부장 이란 방문, 1973.6.14.-16.

| 73-011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C-60 / 43 / 1~26(26p)

1. 외무부는 1973.6.18. 주이란대사에게 중국(구 중공) 지펑페이 외상의 6.14.~16. 이란 방문 계획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 방문단 명단, 주요 일정, 양국 간 협의 또는 합의 사항, 특히 한국 또는 북한과 관련된 협의 또는 합의 사항의 유무 및 동 내용, 중국 외상 방문에 대한 이란 측 입장

2. 주이란대사는 주재국 외상 초청에 따른 중국(구 중공) 외상의 상기 이란 공식 방문 결과를 1973.6.18. 및 6.19. 아래 보고함.

❁ 방문 경위
- 이란은 1971년 중국과의 수교 및 이란 왕국 건국 2,500주년 기념행사에 중국 주은래 수상의 이란 방문을 초청한바, 성사되지 못하고 대신 금년도 외상의 공식 방문을 실현

❁ 주요 일정
- 외상회담, 이란국왕의 오찬 및 접견, 쉬라즈 지방 방문 및 지사 오찬, 기자회견 등

❁ 주요 결과
- 중국 측은 이란의 페르시아만 방위력 강화 등 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표명
- 중국 측은 이란의 인도양 평화지역 안에 대한 지지 표명, 강대국의 간섭 배제 강조
- 중국 측은 페르시아만 안보를 위협하는 전복 집단에 대한 중국의 지지 부인

❁ 이란 언론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탐문한 내용
- 사전 조정된 의제가 없었으며, 양국 간 현안 문제보다는 국제 정세 전반을 논의
- 중국 외상은 의례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란의 군비 증강 및 페르시아만 및 인도양에서의 강대국의 패권 장악 경쟁을 반대한다는 이란 정부의 정책을 지지
- 중국 외상 일행을 위한 중국대사 주최 만찬에 제3국 외교관 초청 배제
- 소련 국방상이 CENTO(중앙조약기구) 각료회의 폐막 후 중국 외상 도착 전 극비리에 이란을 방문하고, 이란 국방상이 소련을 후속 방문한 사실에 비추어 소련이 이란의 과도한 군비 증강에 우려를 표시했을 가능성 있는 것으로 관측

3. 주이란대사는 1973.6.23. 외무성 아시아아프리카담당 정무총국장으로부터 중국 외상의 이란 방문 관련 타진한 내용을 아래 보고함.

❁ 양측은 중동지역 특히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을 중심으로 일반적 의견 교환을 시행, 이란의 안전 보장과 관계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논의치 않음.

❁ 아시아 지역 내 미군 주둔 문제도 제기되지 않음.

일본 · 중국(구 중공) 관계

| 73-011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동북아2과
MF번호	C-60 / 44 / 1~125(125p)

1. 주일대사는 나카소네 통산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의 1973.1.17.~21. 중국(구 중공) 방문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 ❋ 나카소네 통산상, 이나야마 일 · 중 경제협회장 등 관민 합동대표단 구성
- ❋ 중국 유전 개발에 관한 양국 간 협력, 중국 원유 수입, 플랜트 수출, 일본에서의 중국박람회 개최, 북경 등 주재 JETRO(일본경제무역대표부) 사무소 개설 문제 등 협의 예정
- ❋ 주은래 수상과의 1.18. 회담 시 합의 내용
  - 조속한 무역협정 체결, 중국산 원유의 대일본 수출 지속, 중국 대륙붕 석유자원 개발을 위한 기자재는 수입하나, 공동개발은 유보
- ❋ 나카소네 통산상의 1.21. 귀국 기자회견 요지
  - 중국 측은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정책은 일본의 문제이므로 관여치 않으나, 일본의 안보, 핵정책을 승인하거나 지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 표명

2. 주일대사는 1973.3.20. 자민, 사회, 공명당 등 4당 의원으로 구성된 '일 · 중 우호의원연맹'이 4월 중 정식 결성될 것이라고 보고함.

3. 주일대사는 1973.4.3. 및 4.9. 일 · 중 관계에 관해 아래 보고함.

- ❋ 초대 주중 일본대사는 오히라 외상 명의 중국 희붕비 외상에 대한 정식 초청 친서 전달
- ❋ 일-중국 간 해저케이블 건설 관련 3년 내 건설키로 합의
- ❋ 주중 일본대사는 다나카 수상의 주은래 수상에 대한 방일 초청 친서를 4.8. 주 수상에게 전달하는 한편 일 · 중 정기각료협의 개시를 제의

4. 주일대사는 1973.5.7. 일 · 중 관계에 관해 아래 보고함.

- ❋ 해저케이블협정 정식 서명(5.6.): 3년 내 완성, 비용은 양국이 반분
- ❋ 항공협정은 일-대만 간 노선에 관한 양측 입장 상이로 조기 타결 난망시

5. 주일대사는 1973.5.15. 라오충조 중 · 일우호협회 대표단장의 5.14. 다나카 수상과의 회담 결과를 아래 보고함.

- ❋ 다나카 수상은 항공협정 체결 교섭의 적극적인 추진 및 일 · 중 우호평화조약의 조속한 체결을 희망
- ❋ 라오 회장은 해저케이블협정 체결 등 양국 간 실무교섭 진전을 높이 평가

6. 주시모노세키총영사는 1973.8.16. 일 · 중 우호시모노세키의회 의원연맹이 8.11. 발족되었음을 보고함.

7. 주일대사는 1973.9.14.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9.11. 방일한 중국경제무역 대표단이 주은래 수상의 다나카 수상에 대한 아래 내용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보고함.

- ❁ 중국 희붕비 외상의 방일 희망
- ❁ 오히라 외상에 대한 방중 초청

8. 주일대사는 1973.9.17.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진초 주일중국대사가 희붕비 외상의 오히라 외상에 대한 아래 내용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보고함.

- ❁ 일 · 중 양국 외상의 상호 방문 희망
  - 10월 하순경 희붕비 외상의 방일, 오히라 외상은 11월 중 방중
- ❁ 양국 간 통상, 무역, 항공, 어업 및 해운 실무협정 교섭 체결의 필요성 및 조속한 진전 희망
- ❁ 오히라 외상의 방중을 환영하며, 금년 중 실현 희망 표명

9. 주일대사는 1973.9.12. 북경발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일 · 중 양국 정부가 12.12. 북경에서 아래 내용의 무역협정 체결 및 동 협정의 잠정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에 가조인했다고 보고함.

- ❁ 관세 등 최혜국대우 상호 향유
- ❁ 양국 간 지불통화는 엔화, 인민화 또는 양국이 인정하는 교환 가능한 통화 사용
- ❁ 기술 교류 및 무역에 관한 전람회 개최 추진
- ❁ 상사중재기관 이용 장려
- ❁ 양국 정부관계자 간 혼성위원회 설치 등

파키스탄 · 중국(구 중공) 관계

| 73-0115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C-60 / 46 / 1~23(23p)

1. 중국(구 중공)-파키스탄 관계에 관한 1972~73년 중 보도 내용임.

- 중국, 파키스탄에 대규모 군사원조 제공('라왈핀디' 외교소식통)
  - 1972.6.5. 중국은 최근 파키스탄에 중국제 미그19형 제트 전투폭격기 60대, 전차 100대, 자동소총 및 기관총 등 대규모 군사원조를 제공
- 파키스탄 군사사절단 중국 방문(1973.1.12. 신화사 통신)
  -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 리카칸 대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사절단이 북경에 도착
  - 동 사절단의 중국 방문은 친선사절의 임무를 수행 예정이나, 중국에 대한 군사원조 요청에 주 목적이 있는 것으로 관측
- 중국, 파키스탄 항공의 북경 직접 착륙 허가(1973.1.20. 신화사 통신)
  - 파키스탄 국제항공의 북경 직접 착륙을 허가함으로써 북경 공항은 장차 국제공항으로 변모 가능
- 중국의 대파키스탄 군사지원 강화(1973.3.18. 선데이 텔레그래프지)
  - 중국은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지원을 강화, T-59형 전차 약 100대 및 MIG-21형 전투기 약 30대 제공 예정

2.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는 1973.6.15. 중국 Chi Peng-bei 외상의 6.17.~19. 파키스탄 공식 방문에 관해 아래 보고함.

- 이슬라마바드에서 6.17. 외무국방담당 국무상과 협의 후 6.18. 카라치에서 부토 대통령과 회담 예정
- 부토 대통령과는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 문제, 인도 대륙 및 페르시아만에 대한 소련의 진출 문제, 부토 대통령의 7.17.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과의 논의 사항 등에 대한 사전 양해 등 협의 전망

스페인 · 중국(구 중공) 관계

| 73-011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60 / 47 / 1~19(19p)

1. 주스페인대사는 주재국이 1973.3.10. 중국(구 중공)과 아래와 같이 정식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했다고 보고함.

- 3개월 내 상주대사관 상호 교환
- 대만(구 자유중국)에 대해서는 공식 관계 단절을 통고, 다만 통상 관계는 계속 유지 희망
- 주재국은 1972.9.15. 소련과 통상대표부 설치 합의, 1973.1.11. 동독과의 외교관계 수립 등 급속도로 대공산권 접근을 추진

2. 주스페인대사는 스페인-중국 수교에 관해 1973.3.15. 아래와 같이 추가 보고함.

- 스페인은 중국과의 수교 시 '중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임과 '대만은 중국의 1개 성'임을 인정
- 주재국의 보수 언론들도 현실에 기초한 외교정책 추구 및 통상 실리에 따른 중국과의 수교를 지지
- 주재국 정부는 수교 발표 직후 외무차관을 비밀리에 대만에 급파하였으며, 3.12. 대만 외무성은 스페인과 통상, 문화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
- 중국의 상주 활동에 따른 측면 지원을 기대하는 북한이 '통상을 위한 문호개방'을 명분으로 주재국에 접근할 가능성 상존

3. 주스페인대사는 1973.6.21. Chu Min 임시 대사대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외교사절단이 주재국을 방문하여 공항 기자회견을 통해 동 사절단의 임무는 공관 개설이며, 스페인 국민들에 대한 우의를 전달한다고 발표하였음을 보고함.

4. 주스페인대사는 1973.8.16. 주재국 유력 일간지 Nuevo Diario의 Bonn발 보도에 의하면 주은래 중국 수상이 1974년 초 서구 제국 방문 시 주재국을 방문할 것임을 밝혔으며, 외무성 대변인도 동 보도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함.

중국(구 중공) · 소련 관계

| 73-011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특수지역과/북미2과
MF번호	C-60 / 49 / 1~37(37p)

1. 중국(구 중공)과 소련과의 관계에 관한 1973년 중 보도 내용임.

- ❋ 중 · 소 국경회담 소련 측 수석대표 일시 귀국(7.18. 타스 통신)
- ❋ 소련의 중국에 대한 회담 제의(8.7. 프라우다지)
- ❋ 소련의 기습 공격에 대비한 중국의 서북 방어 태세 강화(9.27. 북경 방송)

2. 외무부는 1973.9월 중 · 소 분쟁에 관련 아래 분석 자료를 작성함.

- ❋ 원인(遠因)
  - 슬라브민족의 남진정책과 한민족의 대항정책의 충돌, 청 · 러시아 불평등조약(1858~81년)
  - 국경 분쟁: 중국은 불평등조약으로 소련이 탈취한 영토에 대한 전반적 재조정 요구, 소련은 장기간 유효하게 시행된 이상 적법임을 주장
  - 이념 분쟁: 1970.6월 세계공산당대회에서 소련은 중국을 모험주의적 좌파 수정주의자라고 비난, 중국은 소련을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자라고 비난
  - 헤게모니 분쟁: 1960년대 각국은 이념보다 국가 이익 추구 방향으로 세력 재편
- ❋ 근인(近因)
  - 1969년 국경에서 3차례 대규모 충돌
  - 소련의 대중국 경제원조 감축
  - 안보상 대립: 소련은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정책 추진, 중국은 소련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
- ❋ 전망
  - 양국 간 역사적 배경, 민족감정, 대국의식, 양당 간의 이념적 차이, 국경 분쟁 등으로 조만간 근본적인 해결 기대 난망
  - 핵전쟁은 양국의 공멸을 초래할 것임에 따라 전면전으로의 비화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
  - 양국에 현 지도층이 존재하는 한 우호관계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

3. 주미대사는 뉴욕타임스가 1973.9.24.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타슈켄트에서 밝힐 대중국 불가침조약 체결 제의와 관련하여 동 서기장의 언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도했음을 보고함.

- ❋ 소련은 1973.6월 중순 중국에 불가침조약 체결을 제의하였으나, 중국은 응답치 않음.
- ❋ 서방측이 중 · 소 불화를 더욱 조장함으로써 이득을 보려 하나, 이는 중 · 소 양국뿐 아니라 여타 국가의 이익에도 해가 될 것임을 경고함.
- ❋ 중국이 소련의 관계 정상화 노력을 묵살한 사실은 세계 공산주의자 운동 내에서 중국을 공식적으로 추방하려는 구실이 될 수도 있음.

미국 · 중국(구 중공) 관계

| 73-011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C-60 / 50 / 1~77(77p)

1. 주미대사는 1973.2.28.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하여 1.22. 미-중국(구 중공) 간 공동성명에 따라 북경에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준비를 위해 선발대가 약 6주 이내 북경을 방문 예정이며, 연락사무소 외에 미국계 통신사 및 뉴욕타임스 지사도 설치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함.

2. 주미대사는 1973.3.2. 로저스 국무장관이 파리에서 중국 외상과 미-중국 간 재산청구권 해결 문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음을 보고한바, 외무부는 3.5. 주미대사에게 그린 차관보가 미 · 중 간 재산 문제는 원칙적으로 양국이 동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선에서 타결할 것이라고 언급했음을 통보함.

3. 주미대사는 닉슨 대통령이 1973.3.15. 초대 주중 연락사무소장에 아래와 같이 D. Bruce 파리 대베트남 협상 대표를 임명할 것이라고 발표했음을 보고함.
   - ❋ 주북경 연락사무소는 5월 초순경 개설이며, Bruce 소장은 5.13. 북경 도착 예정임.
   - ❋ 닉슨 대통령이 원로급 인사를 임명한 것은 주북경 연락사무소의 정치적 위상 제고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됨.

4. 주미대사는 1973.3.27.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하여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증진을 위해 미국 유력 실업인들로 구성된 미 · 중국 무역협의회가 5월 중 발족 예정이며, 동 협의회는 양국 간 비공식적인 교역 채널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보고함.

5. 주미대사는 중국이 1973.3.30. 초대 주미 연락사무소장에 아래 Hung Chen 전 주프랑스대사를 임명했다고 보고함.
   - ❋ 동인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 위원으로 주헝가리, 인도네시아, 프랑스대사를 역임하고,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후 파리에서 미국대사와 실무 교섭을 진행함.
   - ❋ 동 소장은 5.29. 워싱턴 도착성명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1972.2월 상해 성명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 양국 간 관계 정상화는 틀림없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함.

6. 주미대사는 1973.7.2. 백악관 대변인이 동 주미 연락사무소장이 7.6. 닉슨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으며, 동 회담 시 주은래 수상의 방미 및 닉슨 대통령의 방중, 미 · 소 정상회담 문제, 키신저-시아누크 비밀협상 등이 협의될 것으로 관측됨을 보고함.

7. 주미대사는 1973.10.26. 뉴욕타임스의 주은래 중국 수상과의 아래 인터뷰 내용을 보고함.

❋ 워터게이트 사건

- 미국의 국내 문제로 미 · 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닉슨 대통령은 현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임.

❋ 미 · 중 외교관계 수립 문제

- 대만 문제가 근본적인 장애로 미국이 일본과 같이 장개석 정부에 대한 승인을 철회하면 해결될 것임.

❋ 미 · 소 관계

- 미국의 대소련 관계는 찬성은 할 수 없으나, 이해는 가능함.
- 미국이 소련과의 관계를 완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나, 성취하지 못할 것임.

❋ 중 · 소 관계

- 중국의 입장은 19세기 소련과의 불평등조약으로 잃었던 모든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상호 이해를 토대로 합리적인 새로운 국경조약을 체결하자는 것임.

❋ 기타 문제

- 중국은 경제 개발만으로도 수십 년이 소요될 것임.
- 중동 문제의 항구적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8. 외무부는 1973.12월 '닉슨 행정부의 대중국정책 변화 과정'에 관한 자료를 작성함.

미국 · 쿠바 관계

| 73-0119 |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60 / 51 / 1~29(29p)

1. 주미대사는 1972.7.10. 국무성 대변인이 쿠바 아바나에서 6.20.~25. 개최된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정부 간 해양학위원회에 미 상공성 과학자들이 참석했음을 확인하고, 동 회의 참석이 미국의 쿠바에 대한 기본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거나 미국의 카스트로 정부에 대한 관계 개선 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음을 보고함.

2. 주미대사는 1972.11.16. 국무성 대변인이 항공기 납치 문제에 관해 쿠바와 직접 교섭할 용의가 있으나, 이는 항공기 납치라는 특정 사안에 국한된 것이며, 쿠바와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려는 용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3. 미 국무성은 1972.12.5. 현재 교섭 중인 미국-쿠바 간 항공기 납치사건 방지에 관한 협정에 선박 납치 문제도 포함시키기로 쿠바 측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고함.

4. 주미대사는 1973.2.14. 미국 주요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로저스 국무장관이 수일 내 미-쿠바 간 항공기 및 선박 납치사건 방지협정에 서명할 예정으로 협정 서명의 시기 및 장소 등 절차 문제만이 남아 있으며, 동 협정은 선의의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고 납치범의 소추, 처벌 및 인도에 관해서는 체약국이 상당한 융통성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보고함.

5. 주미대사는 미국과 쿠바 간 항공기 및 선박 납치사건 방지에 관한 협정이 1973.2.15. 아래와 같이 서명되었음을 보고함.
   - ❋ 미 국무성 당국자는 미국의 정치범 망명 허용 방침에 별다른 영향 없이 납치범을 처벌할 수 있는 협정 체결에 만족한다고 언급함.
   - ❋ 또한 동 협정 체결이 미국의 대쿠바 관계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밝힘.

6. 주미대사는 1973.3.27. 대사관 관계관이 국무성을 방문하여 미국의 대쿠바 관계 개선 문제 등에 관해 타진한 내용을 아래 보고함.
   - ❋ 항공기 납치방지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본적인 대쿠바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
   - ❋ 미국의 대쿠바 정책은 1960년대 초부터 미주기구(OAS)의 대쿠바 외교경제제재 결의에 근거함.
   - ❋ 현 단계에서 쿠바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고립정책 시행을 변경할 이유는 없음.
   - ❋ 쿠바–북한 간 관계와 관련한 특별한 정보는 없으나, 일반적인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대쿠바 여행 제한 재연장 여부는 1973.9월 재차 결정할 것임.

이집트 · 리비아 관계

| 73-012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C-60 / 52 / 1~30(30p)

1. 주튀니지대사는 1973.1.9.~10. 트리폴리에서 개최된 이집트-리비아 정상회담 결과를 아래 보고함.

- 이스라엘-시리아 분쟁, 이집트-리비아 통합에 대해 협의함.
- 이집트-리비아 통합과 관련하여 통합 촉진, 대외무역정책 통합 문제를 협의하고, 통합분과위원회 보고서를 1973.4월말까지 제출키로 합의함.

2. 주카이로총영사는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과 리비아 카다피 혁명위원회의장 간에 1973.9.1. 양국 통합을 선언하는 아래 내용의 정치성명 및 13개 조의 통합절차칙령이 서명되었음을 보고함.

- 양국 국가원수로 구성되는 통합정치위원회가 합병 완료 시까지 정부 기능 수행
- 100명의 제헌의회가 9.1. 이후 합병국의 헌법 기초, 대통령 지명, 국민투표에 회부
- 양국 국경 지역에 9.1. 이후 자유경제지역 설립, 공통화폐 발행
- 통합정치위원회 절차를 거친 헌법 초안의 통합정치사령부에로의 이양 등

3. 주카이로총영사는 이집트-리비아 간 외교관계가 악화되고 있음을 1973.12.4.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리비아는 카이로 주재 대사(연락사무소 수석대표)를 최근 소환했으나, 대사관을 완전히 폐쇄하지는 않고 있음.
- 사다트 대통령은 리비아에 대한 특사 파견을 통해 사태 수습 방안을 교섭 중이며, 인근 아랍 국가들도 양국 단교 사태 방지를 위해 거중 조정을 시도 중임.
- 카다피 리비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이집트 단교를 검토 중인 것으로 관측됨.
  - 리비아-이집트 즉시 통합에 대한 이집트의 소극적 태도
  - 사다트 대통령이 카다피와 사전 협의 없이 중동전 개시
  - 사다트 대통령이 리비아를 경시하고, 사우디 파이살 국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대한 불만
  - 이집트의 중동 휴전 및 평화회담 수락 입장에 대한 불만

이집트 · 소련 관계

| 73-0121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C-71 / 28 / 1~12(12p)

1. 주카이로총영사는 1973.6.19. 포드고르니 소련 최고간부회의장의 이집트 방문설에 관해 아래 보고함.

- 상기 방문설은 주카이로 BBC 특파원발 보도에 따른 것으로 최근 사다트 대통령이 당지 소련대사를 수차 직접 면담한 바 있으나, 공식 발표는 없음.
- 소련 지도자의 이집트 방문은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의 방미 관련 소련의 이집트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하고, 미 · 소 정상회담에서 이집트 입장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의 의미가 있을 것임.
- 브레즈네프가 이미 방미하였음에 따라 소련 지도자의 이집트 방문은 미 · 소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해 주는 형식의 사후 방문이 될 것이라는 관측임.
- 당관 견해로는 브레즈네프 방미 종료 이후 고위급 소련 인사의 이집트 방문이 예상되나, 동 방문이 중동 문제 해결에 있어 직접적인 효과는 없을 것임.

2. 주카이로총영사는 1973.9.2.자 알카바지 보도를 아래 보고함.

- 소련은 최근 소원해진 대이집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비밀리에 고위층 접촉을 시도 중임.
- 사다트 대통령은 최근 소련이 이집트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미그기 및 미사일 등 무기 공급분이 이집트에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함.

3. 주카이로총영사는 파미 이집트 외상의 소련 방문 동향을 1974.10.15. 아래 보고함.

- 이집트 대표단은 10.14.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외상 등 소련 지도자들과 회담할 예정임.
- 당지 '알 고무리아'지는 외상의 소련 지도자들과의 토의 의제로 양국 정상회담 준비, 중국(구 중공) 사태 동향 및 제네바회담 개최에 필요한 준비 사항과 소련의 역할 등임을 보도함.

4. 주카이로총영사는 이집트 파미 외상 방소 후 1974.10.18. 발표된 공동성명과 관련하여 이집트-소련 간 합의된 주요 사항을 10.21. 아래 보고하고, 동 이집트 외상의 방소는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타인 대표 간 3자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소련으로부터 재확인 받는 한편 이집트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함.

- 중동분쟁의 완전하고 항구적인 정치적 해결은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권리 회복 및 동 팔레스타인 Entity 창설 권리를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제네바회담 테두리 내에서 해결되어야 함.
- 제29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대표 초청 결의안에 양측은 만족하며, 동 결의안 채택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정치적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임.
- 브레즈네프 소련 수상은 사다트 대통령과 회담을 갖기 위해 1975.1.15. 이집트를 방문할 예정임.

동 · 서독 기본조약 체결

| 73-012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61 / 1 / 1~30(30p)

1. 주독일대사관은 1973.2.23. 서독 외무성이 동서독 기본조약 서명일인 1972.12.21. 각 재외공관에 대해 아래 내용의 동독 외교관 접촉 지침을 시달했음을 보고함.

- 서독과 동독은 2개의 독립국가이며, 따라서 동독 외교관에 대해서는 독립국의 대표로 대우함.
- 동서독 외교관은 가능한 한 원만하게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이를 위해 서독 외교관은 동독 외교관과 물의를 야기하거나 대립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며, 통상적인 예의를 준수함.

2. 주독일대사는 1973.5~6월 중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준비 경과를 아래 보고함.

- 동 기본조약에 대한 비준법안과 서독의 유엔 가입에 관한 법안이 1973.5.11. 하원, 5.25. 상원에서 각각 통과되었으며, 6.6. 하이네만 독일 대통령이 동서독 기본조약 비준법안과 서독의 유엔 가입 법안에 서명함.
- 동독 인민위원회는 6.13. 동서독 기본조약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 동서독 기본조약 발효에 관한 각서를 6.20. 본에서 교환하기로 합의한바, 동 각서 교환 시 6.21. 자로 발효하게 될 것임.
- 동서독 양측 대표는 동서독 기본조약이 발효되는 대로 동서독 간의 분계선상 4개 신규 통로를 개통시키기로 합의하는 한편 세부 사항 협의를 위해 6월 중순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임.

3. 주독일대사는 서독 헌법재판소가 1973.7.31. 바이에른 주정부의 위헌 소송에 대해 판사 전원일치로 동서독 기본조약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했음을 보고함.

- 판결 이유
  - 동서독 기본조약은 국제법상 일종의 연방으로 향하는 장기적인 과정의 첫걸음으로서 국민의 자유로운 자결권의 기초 위에서 독일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조치임.
  - 동독은 서독과의 관계에서 외국이 아님에 따라 동서독 기본조약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는바, 일면 국제법상 조약이며 또 한편 '내부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특별한 내용을 포함함.
- 동 판결에 대해 서독정부, 여당, 야당은 각각 환영 입장을 표명함.

독일의 헝가리 및 불가리아와의 외교관계 수립, 1973.12.20.

| 73-012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특수지역과
MF번호	C-61 / 2 / 1~9(9p)

독일(구 서독)의 1973년 헝가리 및 불가리아와의 외교관계 수립과 관련한 외무부 작성 자료임.

1. 로이터통신은 독일 외무성 정처국장의 방문 후 독일이 불가리아(12.12.) 및 헝가리(12.13.)와 각각 수교 예비협정에 조인했음을 아래와 같이 보도함.

- 불가리아와 헝가리의 적극적인 대독일 접근은 그간 소련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뮌헨협정 문제로 지연되어 온 독일-체코 간 관계가 급진전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양국도 독일과의 수교 예비협정에 조인함.
- 동 수교협정 조인은 독일의 성공적인 대동방정책의 결실로 독일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의 대서방 경제 교류, 합작 등 경제 관계는 더욱 원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2. 독일은 1973.12.20. 헝가리 및 불가리아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독일 셸 외상은 1974년 초 불가리아를 방문할 예정임.

- 독일의 헝가리 및 불가리아와의 관계 정상화 문제는 1973년 초부터 교섭이 시작되었으며, 동 교섭은 독일-체코 간 뮌헨협정 교섭, 독일-폴란드 간 오데르, 나이세선 교섭 등에서와 같은 난제가 없음에 따라 조기 타결이 예상되어 옴.
- 그러나 독일의 헝가리 및 불가리아와의 수교 문제에 대해 바르샤바동맹 측이 독일-체코 간 관계 정상화를 이들 국가들과의 정상화에 선행시킨다는 방침하에 양국에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타결이 지연되어 왔으나, 1973.12.11. 독일과 체코 간 관계 정상화 조약 타결로 무리 없이 성사됨.
- 독일은 헝가리 및 불가리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바르샤바동맹 7개 전 가맹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실현함으로써 1969.10월 브란트 수상 집권 이래 적극 추진해 온 동방정책 사업을 완수함.
- 독일은 동 수교를 기반으로 향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동구권과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교류를 증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정치 면에서도 독일의 독자적인 행동반경이 확대될 것으로 예견됨.

Yumjagiin Tsedenbal 몽고 수상 인도 방문, 1973.2.23.-3.1.

| 73-012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C-61 / 3 / 1~13(13p)

주뉴델리총영사는 Yumjagiin Tsedenbal 몽골 수상의 1973.2.23.~3.1. 인도 방문 결과를 아래 보고함.

1. 몽골 수상은 1973.2.24. 간디 수상, 싱 외상 등과의 고위회담, 2.25. 상무장관과의 회담, 2.26. Kashmir Chandigarh 등 지방시찰 일정을 가진바,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통상 증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함.

- 몽골은 구리, 인도는 일상 소비용품 및 전기제품 등 공업제품을 각각 교역 가능 품목으로 제시함.
- 인도는 몽골의 MICA 산업 개발에 대한 원조 제공 의향을 표명함.
- 간디 수상은 특히 인도-파키스탄 전쟁 시 몽골 정부의 대인도 지지 및 이해에 사의를 표시함.

2. Tsedenbal 몽골 수상과 인도 간디 수상은 아래 내용의 공동선언서에 합의함.

- 양국관계 및 국제관계 관련 원칙 합의
  -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 제 분야에서의 발전 및 협력 증진
  - 상호 상이한 체제하에 평화 공존, 독립 · 주권 · 영토 보전 및 상호 존중, 평등 및 불간섭 천명
  - 분쟁의 평화적 해결, 유엔에서의 협력, 아시아 제국과의 협력 추구
- 아시아 지역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 경주
- 몽골은 인도 대륙 주변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인도의 노력 평가
- 방글라데시의 유엔 가입 환영
- 1973.1.27. 베트남 종전협정 조인 환영
- 중동 정세에 대한 우려 표명, 유럽 지역의 데탕트 추세 환영
-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 표명, 핵 및 재래무기를 포함한 군비 축소를 위한 공동 노력 경주
- 식민주의 및 인종주의 배격
- 몽골은 인도의 평화, 비동맹, 우호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조 약속
- 인도는 몽골의 평화, 우호, 협력정책에 사의 표명

일본 · 소련 관계

| 73-012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특수지역과
MF번호	C-61 / 4 / 1~104(104p)

1. 주일대사는 1973.1.17. 오히라 외상이 주일 소련대사와의 회담 시 양국 간 현안인 북방영토 문제와 대소 경협 문제를 분리해서 추진한다는 전향적 자세를 표명했다고 보고함.

- 일본 측은 평화조약은 북방영토 문제 해결이 전제라는 기본 입장 강조
- 소련 측은 시베리아 개발 문제 관련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희망

2. 주일대사는 1973.3.7. 일본-소련 관계에 관하여 아래 보고함.

- 니세키 주소 일본대사가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면담하고, 아래 다나카 수상의 친서 전달
  - 금년 중 일 · 소 평화조약 교섭 재개 희망
  - 일본 정부의 시베리아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표명
-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다나카 수상의 소련 방문 계획은 다나카 친서에 대한 소련 측 반응에 따라 대응책 강구
- 일 · 중 국교 수립, 미 · 중 관계 개선 등 일련의 국제 정세의 변천이 소련의 불안감을 야기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대일 관계를 개선시키는 정책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관측

3. 주일대사는 1973.3.22. 다나카 수상이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소련으로부터 공식 방문 초청이 있었으며, 우호 친선을 위해 소련을 방문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언제든지 실현할 것임을 언급함으로써 동 수상의 소련 방문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고함.

4. 주일대사는 1973.5.12. 아래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다나카 수상의 1973.8월 소련 방문을 전후하여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일 · 소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을 보고함.

- Jynmen 지역 유전 개발을 위해 6.10. 대규모 관민합동경제사절단이 소련을 방문하여 다나카 수상 방소 전 기본계약 체결 추진
- 미국, 일본 양국은 시베리아 개발에 관해 경쟁적인 입장

5. 주일대사는 1973.9.16.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자민당 후쿠다 외교조사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소 친선사절단이 9.15. 모스크바로 향발했으며, 동 사절단은 다나카 수상의 방소를 앞둔 사실상 정부 특사로서 일 · 소 관계 사전 교섭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보고함.

6. 주일대사는 1973.9.16.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다나카 수상의 프랑스 르몽드지와의 회견 기사 중 일-소 관계 관련 아래 내용을 보고함.

- 시베리아 개발 등 일-소 경제협력이 일-중(구 중공)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함.
- 일-소 화해 조건 및 브레즈네프의 아시아 안보구상에 관해서는 북방영토 문제 해결이 전제 조건으로 소련이 영토의 현상 고정화를 아시아 안보구상의 기초로 하고 있다면 이는 문제의 여지가 있음.

다나카(田中) 일본 수상 구주 및 소련 순방, 1973.9.26.-10.10.

| 73-012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C-61 / 5 / 1~104(104p)

1. 주일대사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다나카 수상이 1973.9.26.~29. 프랑스를 방문하여 9.29. 퐁피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아래 내용에 합의했음을 보고함.

- ‘모나리자’ 전시회 1974.4월 일본 개최, 일본 정부는 프랑스의 일본 연구 촉진 기금 3억 엔 기증
- 퐁피두 대통령에 대한 1974.4.22.~26. 일본 방문 초청, 콩코드기 수입 고려

2. 주일대사는 1973.10.1. 상기 일 · 프랑스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측 평가를 아래 보고함.

- 정치 면에서는 별다른 성과는 없었으나, 문화, 경제 면에서 다소 진전
- EC(구주공동체)를 확대하여 여타국이 참여하는 구상(키신저 구상)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일본의 참여를 고려치 않고 있음을 언급
- 일본의 유엔 안보리 선임 문제에 대해 프랑스는 명확한 입장 표명 유보

3. 주일대사는 다나카 수상이 1973.9.29.~10.3. 영국을 방문하여 10.1. 히스 수상과 정상회담을 갖고 아래 사항을 협의했음을 보고함.

- EC 확대 및 미국, 일본 등의 참여로 국제 협력을 심화해 나가자는 키신저 구상과 관련하여 영국은 일본-구주-미국 3자 또는 일본-구주 또는 미국-구주 등 양자 선언 형태를 검토할 필요성 언급
- 일본 측의 북해 유전에 대한 일본, 영국 공동개발 제의에 영국이 원칙적 동의
-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1976.5월경 방일 실현에 합의

4. 주일대사는 다나카 수상이 1973.10.3.~6. 독일 방문 중 10.5. 기자회견을 통해 아래 내용을 언급했음을 보고함.

- 일본과 EC 간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일본 외교 및 대외경제 정책의 주요 목표임을 확인
- 대서양헌장 구상 관련 EC와 일본의 관계를 이론상 관계에서 실제적 경제협력 관계로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
- 브란트 수상이 제의한 원료 및 에너지에 관한 일본 · 독일 정부 간 위원회 구상 수락

5. 주일대사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다나카 수상이 1973.10.7.~10. 소련을 방문하여 10.9. 아래와 같이 정상회담을 가졌음을 보고함.

- 북방영토 문제로 양국이 대립, 영토 문제를 중심으로 한 회담 성패 여부는 예측 불허
- 브레즈네프 서기장 및 코시긴 수상은 일본 방문 초청을 수락
- 다나카 수상은 북방영토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기본 입장을 설명, 소련 측도 최초로 관련 견해를 표시하고 아시아 안보구상, 경제 협력, 안전조업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

6. 주일대사는 1973.10.10.자 일 · 소 공동성명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 주요 내용

- 1974년 중 적절한 시기에 평화조약 체결 교섭 계속 합의
- 시베리아 천연자원 공동개발, 무역 · 농업 · 어업 분야 협력 촉진, 시베리아 개발에 제3국의 참가를 배제하지 않음을 확인
- 한반도에서의 남북대화 환영
- 브레즈네프 서기장, 포드고르니 최고간부회의의장 및 코시긴 수상의 일본 방문 초청 수락

❋ 일본 국내 반응

- 영토 문제에 일보 진전도 없었으며, 구체적인 성과 미흡
- 평화조약 체결 교섭을 계속한다는 것은 교섭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로 긍정적으로 평가

7. 주일대사는 1973.10.11. 다나카 수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할린 교포 귀환 문제에 관해 평화조약 내에 안전조업, 성묘, 북한 및 한국인의 귀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동 문제를 소련과의 정상회담에서 제기했음을 시사했다고 보고함.

8. 외무부는 1973.10.12. 다나카 일본 수상의 구주 및 소련 방문 결과에 대한 평가를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보고함.

다나카(田中) 일본 수상 미국 방문, 1973.7.31.-8.1.

| 73-012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북미1과
MF번호	C-61 / 6 / 1~239(239p)

1. 주일대사는 1973.7.5. 주재국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일 외무성이 다나카 수상의 방미 일정을 7.29.~8.6.로 변경하였으며, 7.31.~8.1. 닉슨 대통령과 회담, 7.31. 미 의회 지도자들과의 회담, 8.2. 미 재계 및 우호단체 대표들과의 접촉 등의 일정을 계획 중임을 보고함.

2. 주일대사는 다나카 수상이 1973.7.18.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미 · 일 정상회담에 임하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했음을 보고함.

-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는 별도로 분리하여 토의함.
- 미국은 서유럽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 · 일 안보조약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조건이 상이함.
- 일본은 미국에 기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비용 부담은 고려치 않음.

3. 주일, 주미대사는 미국 측이 일본에 군비 분담을 요청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해 아래 보고함.

-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 언급(7.31.): 전혀 사실무근임.
- 미국 국무성 안보정책과장(8.1.): 분담을 요청할 의도 없음.
- 오히라 외상 귀국 기자회견(8.6.): 전적으로 부인함.

4. 주미대사는 1973.8.1. 다나카 수상이 닉슨 대통령과 제2차 정상회담 시 한반도 문제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새로운 사태 발전을 환영하는 한편 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기여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음을 보고함.

5. 외무부는 1973.8.3. 대통령에게 미 · 일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서 요지, 다나카 수상의 기자회견 요지, 미국 및 일본의 반응, 분석 및 평가를 보고함.

6. 주일대사는 1973.8.3.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오히라 외상이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조항에 관해 아래와 같이 언급했음을 보고함.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함.
- 군사적인 의미의 역할 수행이 아니며, 민생 안정을 위한 역할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될 것임.

7. 주미대사는 1973.8.6. 대사관 관계관이 미 국무성 일본과장을 방문하여 동 정상회담 내용 중 한국에 대한 일본의 군사지원 부담 요청설에 관해 파악한 내용을 아래 보고함.

- 일본 정부가 군사원조 형태로 한국 방위를 위해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일본의 국내 정치 사정상 기대하기 어려움.
- 일본의 한국에 대한 원조 문제와 관련하여 주로 경제협력 분야가 논의되었으며, 한국 방위를 위해 일반 트럭 제조 공장 건설 등 변형된 경제원조는 가능할 것임.

8. 외무부는 1973.8.7. 미 · 일 정상회담의 배경, 회담 내용, 한반도 문제에 관한 논의, 회담의 평가 및 향후 미 · 일 관계 전망 등에 관한 내부 참고자료를 작성함.

9. 주일대사는 1973.8.8. 대사관 관계관이 외무성을 접촉하여 동 정상회담 결과에 관해 파악한 바를 아래 보고함.

- 한반도 정세
  - 미 · 일 간의 공동 인식을 강력히 표현하였으며, 한국 정부의 일련의 외교적 조치 및 금년도 유엔 총회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와 관련한 한국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함.
- 군사원조 분담 문제
  - 동 건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 문제는 국내 여론을 자극하여 다나카 정권을 곤란케 할 것임.
- 동 정상회담 결과는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 시 한국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10. 주미대사는 1973.8.9. 신임 야스가와 주미 일본대사의 미 · 일 정상회담 관련 발언 내용을 아래 보고함.

- 미국의 일본에 대한 한국을 위한 군사원조 분담 요청설은 사실무근이며, 금번 회담에서 논의는 전무함.
-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을 위해 긴요하다는 입장은 불변임.
- 주한 UNC(유엔군사령부)의 존속이 일본의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며, UNC가 해체되더라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한 큰 문제는 없을 것임.

일본 · 미국 관계

| 73-0128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북미1과
MF번호	C-61 / 7 / 1~102(102p)

1. 주일대사는 키신저 미 대통령 특별보좌관의 1972.6.9.~12. 일본 방문과 관련하여 대사관 관계관이 일본 외무성 미주국장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아래 보고함.

❁ 방일 동기
- 형식상 일본 경제계 초청이나, 사실상 일본 정부와의 협의 목적
- 미국 내 닉슨 대통령의 대일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비하여 키신저 보좌관의 직접 방일 필요성이 대두

❁ 일본 정부와의 협의 내용
- 미국의 대중국(구 중공), 대소련 정책은 닉슨 대통령의 성명 내용대로이며, 어떤 밀약도 없고 미국의 대대만 정책에는 변화가 없음을 설명
- 미 · 일 안보조약 및 미 · 일 안보체제에 대한 개편 의사가 없음을 확인
- 한반도 정세에 관해 후쿠다-키신저 회담 중 일본 측의 주한미군 철수 여부에 관한 질문에 미국 측은 철수 계획이 없음을 확인

2. 주일대사는 1973.1.29. 오히라 외상의 외교연설 중 일 · 미 관계 언급 내용을 아래 보고함.

❁ 미국과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는 외교의 기축으로 폭넓은 다각외교 추진의 기반임.

❁ 일-미 간 최대 현안은 대폭적인 무역수지의 불균형 시정임.

❁ 미국과의 안보조약은 일본의 안정과 번영에 불가결하며, 아시아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건의 하나임.

3. 주일대사는 1973.7.16.~17. 동경 개최 일 · 미 무역경제합동위원회 결과를 아래 보고함.

❁ 양측 참석자
- 미국 측: 국무장관, 재무장관, 농무장관, 상무장관
- 일본 측: 외상, 대장상, 농업상, 통산상, 운수상, 노동상, 경제기획청장 등 각료급 인사

❁ 주요 의제
- 농산물 수출 규제, 무역역조 시정, 자원 공동개발 문제 및 다자간 섬유협정

❁ 한반도 정세 관련 협의 사항
- 오히라 외상과 로저스 국무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정세에 관해 언급
- 로저스 국무장관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건설적 제안을 적극 지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은 남북한 관계 정상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강조

❁ 미 국무장관과 일 외상의 7.17. 합동기자회견 시 로저스 장관은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없음을 확인

4. 주일대사는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1973.11.14.~16. 일본 방문 및 오히라 외상과의 회담 결과를 아래 보고함.

- 미국 측은 중동분쟁 동향, 향후 전망 등 설명
- 일본 측은 아랍 제국의 석유 공급 축소로 인한 고충 설명, 중동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

일본 · 월맹 관계

| 73-012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C-61 / 8 / 1~57(57p)

1. 주일대사는 오히라 외상이 1973.1.30. 각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월맹과 경제원조 문제를 포함한 외교 접촉을 개시할 계획이며, 외무성 동남아1과장을 월맹에 파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고 보고함.

2. 주일대사는 1973.2.10. 일본 정부의 월맹과의 국교 정상화와 추진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 ❁ 일본 정부는 월맹 측의 의향을 타진한바, 월맹 정부는 일본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 월맹이 두 개의 월남 방식에 동의함에 따라 월맹과의 국교 정상화 교섭이 급진전할 것으로 전망됨.
- ❁ 동남아시아 대사회의(2.18.) 시 월맹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결정함.

3. 주일대사는 월맹의 전후복구사업 관련 과학기술 분야 협력, 일-월맹 간의 교류 및 우호협력 촉진을 위한 일본-베트남 과학기술교류협회가 1973.5.9. 동경에서 발족하였음을 보고함.

4. 주일대사는 1973.6.3. 마이니치 신문을 인용하여 일본 외무성이 월맹과의 국교 수립을 위해 월맹 측이 제시한 아래 조건이 중대한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조기 교섭 방침을 수립하였음을 보고함.

- ❁ 일본으로부터의 무기 반입 금지
- ❁ 월남 임시혁명정부 승인
- ❁ 배상 문제 처리 3개 조건

5. 주일대사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일-월맹 간 국교 수립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 ❁ 일본 정부는 7.5. 주프랑스대사관에 월맹과의 국교 수립 교섭을 지시(7.6. 요미우리 신문)
- ❁ 파리에서 7.25. 일-월맹 간 국교 수립 교섭 개시(7.26. 동경 신문)
- ❁ 일-월맹 간 9.21. 국교 수립에 관한 교환공문에 조인(9.18. 산케이 신문)

6. 주일대사는 일본과 월맹이 1973.9.21. 파리에서 국교 수립 및 대사 교환에 합의하는 서한을 교환함으로써 동일부로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오히라 외상은 동 국교 수립과 관련하여 아래 담화를 발표하였음을 보고함.

- ❁ 일본은 인도차이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리협정 당사자가 이를 엄격히 준수함과 동시에 관계 제국이 동 협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 일본은 월남 민주공화국과의 관계 개선 및 발전이 인도차이나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믿음.

파키스탄 · 미국 관계

| 73-013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C-61 / 9 / 1~45(45p)

1. 주미대사는 Z. A. Bhutto 파키스탄 수상의 1973.9.18.~19. 미국 방문 결과를 아래 보고함.

❋ 닉슨 대통령은 9.18. 환영 행사에서 파키스탄의 영토보전은 미국 대외정책의 기조 중의 하나임을 강조하고, Bhutto 수상은 닉슨 행정부의 친파키스탄 정책은 친평화 정책임을 강조함.

❋ 파키스탄 수상은 미국의 군사원조 확보에 역점을 둠.

- 인도와의 관계에 따른 파키스탄의 안보 불안, 1954년 및 1959년에 체결된 양국 간 원조협정에 기초
- 미국은 1971년 인도-파키스탄 전쟁 직전부터 대파키스탄 무기금수조치를 유지해 온바, 1973.3월 이후 부분 해제하여 비치명적(non-lethal) 무기 및 부품 지원 중
- 파키스탄은 공대공 미사일, 미사일 적재 함정 등의 지원 희망

❋ 미국 언론은 파키스탄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실질적인 무기 원조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도함.

2.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는 1973.9.28. 파키스탄 수상의 방미 결과를 아래 보고함.

❋ 닉슨 대통령의 파키스탄 독립 및 영토보존에 대한 강력한 지지는 인도의 재침공에 대한 미국의 보장을 의미하며, 파키스탄 북서 국경지역 및 발루치스탄 주의 분리독립운동과 소련의 동 분리운동에 대한 선동 등에 비추어 닉슨 대통령의 지지는 큰 의미를 가짐.

❋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원조 확보를 위한 파키스탄의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바, 미국의 파키스탄에 대한 무기 공급 유보는 인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과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동 수상에 대한 신뢰 부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경제원조 교섭 관련 상당한 성과를 이룬바, 홍수 피해 복구 구호 및 경제개발원조 7,700만 달러의 차기 회계연도 중 지원을 보장받은 것으로 보임.

3.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는 키신저 국무장관이 1973.11.9.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Bhutto 수상과 아래와 같이 중동 문제 등을 협의하고, 11.10. 중국(구 중공)으로 향발 예정임을 보고함.

❋ 양측은 중동전쟁 수습 문제 및 인도 대륙 문제에 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됨.

❋ 파키스탄은 CENTO(중앙조약기구) 가맹국(이란, 터키, 파키스탄) 중 아랍 제국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임에 따라 미국으로서도 중동전 수습 관련 중간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4.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는 H. A. Byroade 신임 주파키스탄 미국대사가 1973.12.5. 파키스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음을 보고함.

Brezhnev, Leonid I. 소련 공산당 서기장 독일 방문, 1973.5.18.-22.

| 73-013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61 / 10 / 1~56(56p)

주독일대사는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1973.5.18.~22. 독일(구 서독) 방문 결과를 아래 보고함.

1. 방문 결과

❁ 의의
- 양차 세계대전 및 4반세기 냉전 후 소련 실권자 방독을 통해 양국 관계의 새로운 계기 마련
- 1970.8월 독-소 조약으로 표명된 긴장완화 및 공존체제 재확인
- 브란트 동방정책의 업적이며, 브란트 개인의 정치적 입지 상승

❁ 성과
- 독-소 간의 정치적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개선
- 경제협력 관계를 중점적으로 토의
- 소련 측: 구주안보협력회의 개최와 관련한 독일의 지지 확보
- 독일 측: 공동성명에 베를린의 지위 관련 사항 포함

❁ 평가
- 베를린 지위에 관한 독-소 간의 해석 차이는 계속 문제를 야기할 소지
- 경제협력협정은 독일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비판 야기

❁ 3개 협력협정 서명(5.19.)
- 경제, 산업,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문화협력협정
- 항공협정

2. 공동성명(5.21.) 주요 내용

❁ 베를린의 지위
- 베를린 지위에 관한 4대국협정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이 지속적인 긴장 완화와 독-소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전제가 된다는 데 합의

❁ 구주안보협력회의
- 양측은 구주의 평화, 안전 및 협력의 항구적 기초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구주안보협력회의의 성공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

❁ 동 · 서 상호 감군협상
- 참가국의 비핵화 원칙을 존중하는 제반 협정은 구주 평화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합의

❁ 독–소 관계
- 1970.8.12. 체결된 독-소 조약은 양국 간 새로운 관계 정립 및 개선의 기초
- 향후 양국 지도자 간의 회합을 계속하기로 합의

Brezhnev, Leonid I. 소련 공산당 서기장 미국 방문, 1973.6.16.-25.

| 73-0132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북미1과/특수지역과
MF번호	C-61 / 11 / 1~141(141p)

1. 주미대사는 뉴욕타임스지가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1973.6.16.~25. 미국을 방문하여 전략 무기 제한, 교역 증진, 중동 및 인도차이나, 상호 균형 감군 문제를 포함한 구주 문제 등을 협의하고, 5~6개 전문 분야에 관한 협정에 서명 예정임을 보도하였음을 보고함.

2. 외무부는 브레즈네프의 방미에 관해 1973.6.19. 아래 분석 자료를 작성함.

- 방문 개요: 6.16.~25. 그로미코 외상, 대외무역상, 항공상 등 수행
- 방문 경위: 1972.5.22.~30. 모스크바 미 · 소 정상회담 시 닉슨 대통령이 초청
- 방문 일정: 4회 정상회담, TV연설 등
- 방미 관련 소련의 논조
- 주요 현안 문제에 관한 소련의 입장
- 회담에 임하는 쌍방의 입장
- 분석

3. 외무부는 1972.5월 미-소 모스크바 정상회담 당시 아래 분석 자료를 작성한 바 있음.

- 관련 공식 입장 표명: 1972.3.20. 브레즈네프 서기장 연설
- 주요 현안 문제에 관한 소련의 입장
  - 미 · 소 양국 협력, 구주안보회의, 독일 문제, 인도차이나 문제, 중동 문제, 아시아극동지역 안전질서 확보 문제, 군축 문제 등
- 소련의 의도
- 한반도 문제 검토

4. 주미대사는 브레즈네프 서기장의 방미 결과를 1973.6.20. 아래 보고함.

- 협정 서명
  - 농업협력협정, 해양탐사협정, 운수협정, 문화 · 과학기술교류협정, 쌍무 조세협정, 원자력 평화이용협정, 통상협정, 항공협정, 공격용 핵제한협정 체결 합의(6.19.)
  - 핵무기금지협정(6.22.)
- 공동성명(6.25.) 요지
  - 미 · 소 관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
  - 핵전쟁 방지 및 전략무기 제한
  - 국제 긴장 완화 및 국제 안전 강화: 인도차이나, 구주, 중동 문제
  - 통상 및 경제 관계
  - 기타 분야 양국 협력관계 증진: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 농업, 해양연구, 교통, 접촉 및 교류 협력

미국의 캄보디아(구 크메르) 사태 개입

| 73-013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북미1과
MF번호	C-61 / 12 / 1~75(75p)

1. 주미대사는 1973.3.30. 미국의 캄보디아(구 크메르) 폭격 사태 관련 아래 내용을 보고함.

- ❁ 베트남(구 월남) 휴전협정에 따라 주베트남 미군이 완전 철수하고, 미군 포로 전원 송환이 완료됨에 따라 미국으로서는 베트남 문제가 일단 타결됨.
- ❁ 미국이 캄보디아 정부군 지원을 위한 폭격을 계속함으로써 인도차이나에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내에서 큰 논란이 야기됨.

2. 주미대사는 1973.4.30. 로저스 국무장관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미국의 캄보디아 폭격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증언한 내용을 송부함.

3. 주미대사는 1973.6.25. 미 하원 본회의에서 캄보디아 폭격 비용 지출을 금지하는 아래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동 법안은 10일 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법률로 확정됨을 보고함.

- ❁ 8.15. 이후 월맹, 월남, 라오스 또는 캄보디아의 영토 내 미군의 전투 행위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자금을 지출할 수 없음.
- ❁ 닉슨 대통령은 동남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며, 필요할 경우 추후 의회의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함.

4. 주미대사는 1973.6.30. 연방정부기관 예산 및 대외원조 지출에 관한 결의안이 양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닉슨 대통령이 7.1. 서명함으로써 1974 회계연도 예산으로 확정되었음을 보고함.

5. 주미대사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하여 로저스 국무장관이 1973.8.4. 대법원에 아래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보고함.

- ❁ 8.15.까지 폭격이 허용되지 않으면 미국의 대외관계 및 캄보디아 내 미국인 보호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야기될 것임.
- ❁ 캄보디아군의 확충, 무기 및 구호물자 수송 가속화, 캄보디아군 및 민간인의 적절한 지역으로의 이동 필요성이 있음.

6. 주미대사는 미국의 1973.8.15. 캄보디아 폭격 중단 조치에 대해 8.28. 캄보디아 정부가 미국 의회 및 국민에게 우방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우방을 포기한다면 미국도 언젠가는 고립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발표하였음을 보고함.

Kissinger, Henry 미국 국무장관 중국(구 중공) 방문

| 73-013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동북아2과
MF번호	C-61 / 13 / 1~204(204p)

1. 주일대사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키신저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1973.2.15.~19. 중국(구 중공) 방문을 통해 파리 베트남 평화국제회의, 인도차이나 및 한반도 긴장완화 문제, 베트남 종전 후 미-중 관계 정상화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며, 중국 방문 후 일본을 방문하여 2.19. 다나카 수상 및 오히라 외상과 회담할 것임을 보고함.

2. 주미대사는 1973.2.19. 미국 언론들이 키신저 방중 시 합의 사항으로 미국의 통상대표부 설치, 대만(구 자유중국)으로부터 미군 철수 및 중국 억류 미군 포로 석방 등을 보도하였음을 보고함.

3. 주미대사는 키신저 보좌관의 중국 방문 시 발표된 1973.2.22.자 미 · 중국 공동성명 전문 및 주요 합의 사항을 아래 보고함.

- ❋ 관계 정상화 촉진을 위한 적절한 시기 도래, 통상, 과학, 문화, 기타 각 분야 접촉 확대, 가까운 장래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 ❋ 미-중 관계 정상화가 아시아 및 세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공동 입장 확인

4. 주미대사는 키신저 보좌관의 중국 방문 관련 1973.2.22.자 기자회견 내용을 아래 보고함.

- ❋ 대만 주둔 미군의 시급한 철수계획 부인, 양국 간 몰수 재산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 내주 개최, 미-중 연락사무소는 공식적 외교 업무를 제외한 교역 확대 및 기타 제반 사항을 수행하며, 완전한 외교특권을 향유함.
- ❋ 모택동, 주은래 등 방미 계획은 토의치 않음.

5. 주미대사는 닉슨 대통령이 1973.10.3. 기자회견을 통해 키신저 국무장관이 10.26.~29. 중국을 방문하여 통상, 문화과학 교류 및 기타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임을 발표했다고 보고함.

- ❋ 국무성 대변인은 키신저 장관의 베트남, 캄보디아 및 한국 방문 계획은 없음을 언급
- ❋ 키신저 장관의 중국 방문 일자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11.10.~14.로 조정

6. 주미대사는 키신저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관련 1973.11.12.자 언론 보도 내용을 아래 보고함.

- ❋ 방문 중 양국 관계 정상화에 관한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으나, 수행보좌관은 극적인 발표 내용은 없을 것임을 언급
- ❋ 영사관, 무역관, 공보관 등 설치 및 교역 증진, 정부 간 간접 접촉 등은 가능할 것으로 관측

7. 주홍콩총영사는 키신저-주은래 회담 후 1973.11.14. 발표된 공동성명 내용을 아래 보고함.

- 전반적인 국제 정세 검토, 상해 공동성명의 평화공존5원칙 준수 재확인
- 중국은 미 · 중 양국 관계 정상화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하에 실현된다는 입장 재확인
- 양국은 관계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 경주에 합의

한 · 알제리 관계개선

| 73-0135 |

생산연도	1962-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C-61 / 15 / 1~86(86p)

1. 주프랑스대사는 1962.6.29. 알제리 승인 문제 관련 아래 사항을 건의함.

- ❋ 알제리 신생 정부 수립 시 미국 및 자유국가들의 승인 여부에 따라 조속히 정식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국교 수립을 희망한다면 조속히 교섭을 개시함.

2. 정부의 1962~63년 중 대알제리 관계 수립 추진 경과임.

- ❋ 외무부는 1962.7.5. 독립 축하 및 국가 승인 전문을 Fares 임시집행위 의장에게 발송함.
- ❋ 외무부장관 명의로 1962.10.8. 외교관계 수립 용의 표명 전문을 Khemisti 외상에게 발송함.
- ❋ 주카이로총영사는 1963.1.19. A. H. Kafy 대사에게 한국과의 정식 외교관계 수립을 제의함.

3. 외무부는 1972.11.13. 주튀니지대사에게 주재국 외무장관에게 한국의 알제리와의 관계 개선 입장을 전달하고, 주재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및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함.

- ❋ 주튀니지대사는 11.23. 알제리대사를 면담하고, 수교 희망 구술서를 전달함.
- ❋ 알제리대사는 한국과의 통상관계 수립 계획에 대한 환영 입장과 함께 본국에 한국의 통상사절단 접수를 건의할 것임을 언급함.

4. 외무부는 1973.1.11. 주튀니지대사에게 알제리 파견을 통한 수교 교섭 임무를 부여하는 한편 알제리를 방문하여 관계 개선 입장, 통상사절단 우선 파견 교섭 및 알제리 국제박람회에 한국 참여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도록 지시함.

5. 정규섭 주튀니지대사는 1973.1.18.~21. 알제리 출장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함.

- ❋ 보고서 요지
  - 방문 일정, 외무성 간부 등 주요 인사 및 미국대표 면담 내용, 북한대사관 활동, 관찰 및 건의
- ❋ 외무성 아시아-라틴아메리카부장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우선 통상관계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
- ❋ 사회주의 체제하에 반식민, 반제국주의를 주창하는 제3세계 지도국인 알제리의 여건상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관측

6. 주일대사는 정규섭 주튀니지대사의 1973.2.5. 주일 F. Ghafa 알제리대사 면담 결과를 아래 보고함.

- ❋ 정 대사는 한국의 통상사절단 파견을 제안하고, 10월 유신 및 남북 적십자회담 전망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 정 대사는 알제리대사를 방한 초청한바, 알제리대사는 초청 수락 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 알려주겠다고 함.

국교수립 - 방글라데시

| 73-0136 |

생산연도	1969-1973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C-61 / 16 / 1~370(370p)

1. 정부의 1969~71년 중 방글라데시 주Dacca 영사관 설치 추진 외교교섭 추진 경과임.

-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는 1969.4월 방글라데시를 방문하고 주Dacca 사무소 설치 및 정책적 경제원조 제공을 건의함.
- 외무부는 1969.11월 및 1970.10월 여타 지역 공관 신설 계획 및 예산 사정상 동 사무소 설치가 어려움을 회신함.
- 외무부는 1971.1월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에게 주Dacca 영사관 설치 의사를 주재국에 통보하도록 지시한바,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는 3.6. 동 영사관 신설 의사를 서면으로 주재국에 통보함.
  - 현 주카라치출장소를 Dacca로 이전, 카라치에는 코트라사무소 설치를 추진
- 방글라데시 외무성은 1971.9.30. 한국 및 북한의 공관 설치 승인 의사를 동시에 통고함.

2. 방글라데시의 1971.3.26. 독립과 관련하여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는 1972.2.18. 정부의 방글라데시 승인 시기는 미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승인 후 파키스탄 정부의 승인 시기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임을 건의함.

3. 최운상 주뉴델리총영사는 수교 교섭차 1972.3.9.~14. 방글라데시를 방문하고, 아래 사항을 건의함.

- 파키스탄의 입장을 확인하고, 미국의 양해를 구한 후 미국보다 먼저 조속히 정식 승인함.
- 승인 후 무역협정 체결 등 경제협력관계 및 각종 외교 접촉을 통해 외교관계 수립을 교섭함.

4. 외무부는 1972.4.11. 국무회의 의결 및 4.15. 대통령 재가에 따라 4.15.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에게 한국의 방글라데시 승인 의사를 파키스탄 정부에 전달하고 반응을 보고토록 지시함.

-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는 5월 초 인도-파키스탄 정상회담 이후 승인을 희망한다는 파키스탄 측 반응을 보고함.
- 정부는 1972.5.18. 주뉴델리총영사에게 방글라데시 정부에 승인 통보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방글라데시와의 수교에 대한 관심을 전달토록 지시함.

5. 주뉴델리총영사는 수교 교섭차 1973.1월 아래와 같이 Dacca를 방문함.

- 방글라데시 외상 등과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정식 외교관계 수립을 제의함.
- 방글라데시 측은 다각도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임을 언급하고, 수교 이전이라도 무역 및 경협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할 것을 제의함.
- 주뉴델리총영사는 1973.3월 주재국 총선거 이후 한국 사절단 파견을 재협의할 것을 건의함.

6. 외무부는 노신영 주뉴델리총영사를 단장으로 하는 통상사절단을 1973.7월 방글라데시에 파견하여 관계 수립 교섭을 시행토록 지시함.

- ❋ 주뉴델리총영사는 방글라데시 수상 면담 시 8월 중 외교관계 또는 영사관계 수립을 요청함.
- ❋ 방글라데시 수상은 8월 중 우선 총영사관계 수립에 합의토록 외무성에 지시하겠다고 약속함.

7. 주뉴델리총영사는 1973.9.13. 방글라데시 정부가 총영사관계 수립에 정식 합의한다는 공한을 송부해 왔음을 보고함.

- ❋ 정부는 공동발표문 협의를 위해 총영사관 관계관을 Dacca에 파견함.
- ❋ 양국은 9.18. 공동발표를 통해 총영사관계 수립에 합의함.

8. 주인도대사는 방글라데시대사관 관계관이 1973.12.15.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총영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하는 한편 쌍방이 합의하는 일자에 공동발표를 희망한다는 방글라데시 정부 입장을 전달해 왔음을 보고함.

9. 인도 언론은 방글라데시가 1973.12.15.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도함.

10. 한-방글라데시 양국은 1973.12.18.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동발표함.

한 · 중국(구 중공) 관계개선

| 73-013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Re-22 / 44 / 1~75(75p)

1. 주프랑스대사는 중국(구 중공) 외상의 4월 중 프랑스 방문 및 9월 중 퐁피두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중국 측이 주한미군 철수 및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해체 등 종래의 입장을 제기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통보해 줄 것을 건의한바, 외무부는 1973.4월 정부의 대중국 정책, 남북대화, 주한 유엔군 철수 및 UNCURK 해체 주장에 관한 정부 입장을 주프랑스대사에게 회신함.

2.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은 1973.9.11.~17. 중국 방문 중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 관계 발전을 통해 종국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7·4 성명을 지지함.

3. 제28차 유엔 총회 교관화 중국대표는 1973.10.2. 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아래와 같이 언급함.

- 7·4 공동성명으로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선언하였으므로 휴전협정의 역할은 대부분 정지됨.
- 휴전협정 일방 당사자의 소멸로 휴전협정 자체가 무효화된다고 하면 중국군은 1958년에 이미 전원 철수하였음에 따라 휴전협정은 벌써 무효가 되었다고 봐야 할 것임.

4. 외무부 동북아2과장은 1973.10.16. 네덜란드 외무성 동북아시아태평양과장을 면담하고, 한국의 대중국 기본 입장을 아래 설명함.

- 6·23 특별성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이념 또는 사회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상호평등 원칙에 입각해 모든 나라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며, 중국도 예외일 수 없음.
- 한국은 중국에 대해 우선 적대 입장을 해소하고 인접국으로서 문화, 체육, 경제 등 가능한 분야부터 점차적인 관계 개선 및 확대를 희망함.
- 중국 등 공산국가는 자유우방국이 북한에 대해 문호를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중국 스스로 한국에 대해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임.

5. 캐나다 트뤼도 수상의 1973.10.10.~18. 중국 방문 시 주은래 중국 수상과의 회담에서 논의된 한반도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주은래 수상은 한반도에는 휴전협정만 존재하고 평화협정은 없지만 적어도 전쟁은 발생치 않고 있으며, 평화협정 없이도 남북한은 대화를 통해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언급함.
- 트뤼도 수상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군대를 파견했다고 언급함.
- 주은래 수상은 소위 안보리 결의는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불참한 실수에 따라 채택된 것임을 주장하고,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휴전에 합의했으며 휴전의 이행에 책임이 있음을 언급함.

국교수립 - 핀란드

| 73-0138 |

생산연도	1964-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61 / 19 / 1~295(295p)

1. 주스웨덴대사는 1964.12월 핀란드가 북한을 배제하고 한국과 외교 또는 영사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대핀란드 관계는 현상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고함.

2. 주스웨덴대사는 외무부 지시에 따라 1969.7월 핀란드에 출장한바, 핀란드와 외교관계 수립 가능성은 없으나 통상대표부 설치는 가능하다는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함.

3. 주스웨덴대사는 1969.10.9. 북한 동향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북한은 스웨덴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헬싱키에 북한 무역대표부를 설치키로 핀란드와 합의함.
- 북한이 핀란드를 유럽의 외교적 교두보로 구축하려는 만큼 이에 대응하여 한국이 북한에 앞서 통상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윤석헌 외무부차관(대통령 특사)을 단장으로 하는 북유럽 친선사절단이 1971.8.30.~31. 핀란드를 방문한바, 주재국의 유엔에서의 기존 입장 유지, 통상대표부 설치 및 북한에 대한 일방적 승인 저지를 위한 외교교섭을 시행하고 가급적 1972년 중 통상대표부 설치 추진을 건의함.

5. 주스웨덴대사는 1971.9.28. 핀란드 정부가 분단국에 대한 동등대우원칙에 따라 한국의 통상대표부 설립 제의를 호혜주의 원칙을 조건으로 수락하기로 결정했음을 보고함.

- 외무부는 주핀란드통상대표부 설치(안)에 대해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득함.
  - 통상대표부 설치에 관한 한국 측 각서를 1971.11.1. 핀란드 측에 제시
  - 핀란드 측은 1971.12.9. 대표부의 명칭을 특별통상대표부(Special Trade Representation)로 하는 각서를 제안
  - 한국 측은 1971.12.14. 동 각서 수락
- 주헬싱키통상대표부대표 대리는 1972.5.26. 통상대표부 설치에 관한 한국과 핀란드 간 협정을 서명, 교환하였음을 보고함.

6. 주핀란드공사는 1973.4.6. 핀란드 정부가 한국과 북한을 동시에 승인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으며, 최단 시일 내 양측 정부에 공식 통보할 것임을 보고함.

- 핀란드 외무차관 대리는 4.13. 주핀란드공사에게 핀란드 정부의 한국 승인 공한을 수교함.
- 핀란드 정부는 5.22. 한국 및 북한에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협의를 제의함.
- 정부는 7.28. 핀란드 측의 외교관계 수립 교섭 제의를 수락함.

7. 외무부는 1973.8월 주헬싱키통상대표부의 대사관 승격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등 내부 절차 및 핀란드 측과의 각서 교환 절차를 거쳐 8.24. 최종적으로 한-핀란드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사급 외교사절을 교환에 합의한바, 동 외교관계 수립에 따라 주헬싱키통상대표부는 주핀란드대사관으로 승격됨.

국교수립 - 인도

| 73-0139 |

생산연도	1966-1973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C-61 / 20 / 1~169(169p)

1. 주뉴델리총영사는 1966.1.7. 한-인도 국교 수립 교섭에 대한 아래 종합계획서를 외무부에 제출함.

- ❋ 대미 관계, 대우방국 관계, 인도 내에서의 활동 등 제반 관련 활동 추진을 건의함.
- ❋ 외무부는 동 건의에 대해 인도의 대한국 입장 확인 방법으로 인도 총영사관이 서울에 설치되고, 인도 신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이 명확히 확인된 후 국교 수립 교섭을 고려한다는 방침을 수립함.

2. 정부는 1966.1.22. 임병직 주뉴델리총영사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샤리아티 인도 수상 장례식에 조문사절로 참석케 함.

3. 외무부는 1972.11.8. 주뉴델리총영사에게 파키스탄 정부가 11.9. 북한 승인을 통보해 왔음을 알리고, 정부의 대인도 외교관계 수립 희망을 전달할 것을 지시함.

4. 주뉴델리총영사는 1973.3.13. Singh 인도 외상을 방문하여 북한-파키스탄 간의 관계 긴밀화를 언급하고 한-인도 간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의향을 타진한바, 동 외상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

- ❋ 인도는 제반 사정상 한국과만 수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 남북한과 공히 현재의 총영사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인도 관계를 실질적인 면에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겠음.

5. 인도 정부는 1973.9.14. 주뉴델리총영사에게 한국 정부와 현재의 영사관계를 외교관계로 승격하는 데 동의함과 동시에 외교관계 수립 발표에 관한 세부 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해 옴.

- ❋ 외무부차관은 10.22. 주한 인도대사와 수교 협의를 시행함.
- ❋ 주뉴델리총영사는 10월 중 정부, 여당 내 유력 인사 및 외무성 차관보를 접촉하여 수교 절차 가속화를 촉구함.

6. 주뉴델리총영사는 1973.12.9. 인도 외무성 차관보가 북한이 인도와의 국교 수립에 합의하였으며, 12.10. 발표하는 데 동의했다고 통보해 왔음을 보고함.

7. 한-인도 양국 정부는 1973.12.10. 최종적으로 수교에 합의하고, 아래 사항을 공동발표하는 한편 정부는 12.10.자로 뉴델리총영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 조치함.

-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는 1973.12.10.자로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함.
- ❋ 양측은 편의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대사를 임명함.

국교수립 - 인도네시아

| 73-0140 |

생산연도	1961-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C-62 / 1 / 1~389(389p)

1. 주태국대사는 1961.11.22. 주재국 인도네시아대사가 인도네시아 외상이 한국과 국교 수립에 찬의를 표했다고 전했음을 보고하는 한편 주태국 무관도 1962.1.31. 인도네시아 무관이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2. 외무부는 1962.7월 인도네시아와의 수교 교섭 관련 아래 방침을 수립함.
   - ❁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와 외교관계 수립 추진, 만약 지연 시 우선 총영사관 설치를 교섭함.
   - ❁ 한국의 통상대표부 상주는 북한이 이미 총영사관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수락할 수 없음.

3. 주일대사는 1962.11.12.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스카르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 시 양국 간 수교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국 간 스포츠, 문화, 통상 교류를 더욱 증진시킨다면 적절한 시기에 국교가 수립되리라는 일반적인 희망을 상호 표명했음을 보고함.

4. 주일대사는 1963.11.13. 주일 인도네시아공사가 본국 정부로부터 한-인도네시아 영사관계 수립에 관한 한국 측 제의에 이의가 없음을 통보해 왔다고 보고함에 따라 외무부는 11.27. 각의에서 인도네시아와 영사관계 수립 및 총영사관 설치를 승인받음.

5. 주필리핀대사는 1964.4.16.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5.30. 한국과의 영사관계 수립을 타진해 왔다고 보고한바, 외무부는 대한무역진흥공사 출장소 또는 민간 통상대표부 설치를 교섭한다는 방침을 수립함.

6. 주태국 이창희 공사는 외무부장관 특사 자격으로 1966.4.20.~27.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수교 문제를 교섭하고, 아래와 같이 건의함.
   - ❁ 대인도네시아 외교관계 수립은 빠를수록 좋으며, 대사급 국교 수립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북한과의 단교가 전제이나, 동 가능성은 희박함.
   - ❁ 현재로서는 영사관계 수립이 무난하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7. 외무부는 1966.6월 인도네시아와의 영사관계 수립 및 주자카르타 총영사관 설치 방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고, 주자카르타 총영사관 설치와 동시에 서울 주재 인도네시아 총영사관 설치 교섭을 추진함.

8. 한-인도네시아 양국 정부는 1966.12.1. 영사관계 수립에 합의하고, 동일자로 주자카르타총영사관이 개설됨.

9. 이효상 국회의장은 1970.3월 인도네시아 방문 후 인도네시아 의회에 주한대사관 설치 결의안이 제출되어 있어 조만간 한국과 국교가 수립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바, 주자카르타총영사는 인도네시아가 주자카르타 북한대사관을 존속시키면서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수용하기 어려움을 보고함.

10. 주자카르타총영사는 인도네시아 Malik 외상이 1973.6.5.~9. 방한 후 6.10. 귀국 기자회견을 통해 한-인도네시아 양국이 대사관계 승격에 원칙적 합의를 보았으며, 시행은 시간문제임을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11. 양국은 1973.9.18. 서울과 자카르타에서 수교 합의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함.

- 외무부는 대사관 개설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신임 대사 취임 시까지 김과겸 주자카르타 총영사를 대사대리로 임명한다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통고함.
- 외무부는 동 조치는 6·23 선언에 따라 정부가 북한과의 단독 수교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현실적이고, 능동적으로 북한에 대처하는 한편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우위를 계속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평가함.

한 · 소련 관계개선을 위한 외교관 접촉

| 73-014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특수지역과
MF번호	C-62 / 2 / 1~116(116p)

1. 해외 주재 공관의 1972~73년 중 소련 외교관 접촉에 관한 각종 보고 내용임.

- 주중앙아프리카공화국 관계관, 소련대사관 참사관 접촉(1972.7.21. 및 12.19.)
  - 우호적 입장 표시
- 주호주대사관 무관의 소련대사관 정치담당관 접촉(1973.2.9.)
  - 적십자회담 및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 표시
- 주이탈리아대사관 참사관의 소련대사관 문정관 접촉(2.27.)
  - 한-소 관계 개선 기대 표명, 남북대화의 순조로운 진행과 통일 희망 언급
- 주프랑스대사관 관계관의 소련대사관 서기관 접촉(5.9.)
  - 소련 관광사증 발급 문제 협의
- 주에티오피아대사의 소련대사 접촉(6.1.)
  - 양국 간 우호 증진 기대 표명
- 주콜롬보통상대표의 소련대사관 정무참사관 접촉(7.4.)
  - 6·23 선언,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관심 표명, 한반도 통일 문제 언급
- 주이탈리아대사관 참사관의 소련대사관 문정관 만찬(9.5.)
  - 소련 측은 한국의 유니버시아드대회 참가 협조에 대한 사의 표명, 북한이 중국을 맹종함에 따라 국익을 저해함을 언급, 한-소 유엔주재 대표부 간 접촉 필요성 표명
  - 양국 간 관계 증진 방안 협의
- 주콜롬보통상대표부 공사의 소련대사관 참사관 접촉(12.5.)
  - 소련 측은 금년도 유엔 한반도 문제 토의 결과는 한국 측에도 바람직하며, 유엔 가입은 통일 이후 하나의 한국으로 가입함이 바람직함을 언급
  - 한국 측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세계적인 데탕트 추세에 기여하고, 한반도 안보 유지를 위한 현실적이고 잠정적인 조치임을 설명, 한국의 문호개방 정책에 따라 소련도 한국과 관계 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이 타당함을 전달

2. 외무부는 관련 공관에 소련 외교관 접촉 관련 아래 사항을 지시함.

- 우선 양국 간의 통상, 체육,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등을 논의토록 하며, 소련 측과의 접촉 채널 유지 및 한-소 관계 개선에 대한 소련 정부 당국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고함.
- 소련 측이 중국(구 중공)과의 대화 가능성에 관심을 표명함에 유의하여 동 주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유보함.

Statskevich, Nikolai 주스웨덴 소련 참사관을 통한 한 · 소련 관계개선계획

| 73-014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특수지역과
MF번호	C-62 / 3 / 1~85(85p)

주스웨덴대사관의 1973년 소련대사관 N. Statskevich 참사관을 통한 한-소 관계 개선 관련 협의 내용임.

1. 주스웨덴대사는 1973.2.21. 동 참사관이 소련 통상성 또는 상공회의소에 직접 서한을 발송할 것을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 소련 측은 한국이 양국 간 통상 관계에 관해 서면 제의할 경우, 한국 정부의 입장 및 의향을 파악한 후 국제 정세 추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단계적으로 반응을 보이려는 입장인 것으로 관측됨.
- 외무부는 3.14. 양국 간 통상 관계 증진을 희망한다는 안광호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의 서한을 소련 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발송토록 조치함.

2. 주스웨덴대사는 1973.3.16. 대사관 이창수 참사관의 동 참사관과의 오찬 시 협의 내용을 아래 보고함.

- 소련 측은 양국 간 언론인 상호 방문 및 통상 관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 참사관의 소련 관광을 권유함.
- 한국 측은 양국 간 상호 통상사무소 또는 대표부 설치 가능성을 타진함.

3. 주스웨덴대사는 1973.4.11. 이 참사관의 소련 여행이 한국의 소련에 대한 호전된 입장 표시 등의 의의가 있음에 따라 동 출장을 건의함.

- 외무부는 4.19. 이 참사관의 출장을 허가한바, 주스웨덴대사는 4.21. 소련대사관 영사로부터 이미 발급한 입국사증을 취소하라는 본국 정부의 훈령에 따라 출장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접하였음을 보고함.
- 주스웨덴대사는 소련 측이 당초 입국 허가 용의가 있었으나, 입장 변화에 따라 방침을 변경했거나 또는 당초부터 입국 허가 의사 없이 한국의 의도를 탐지하기 위해 제의한 것으로 관측함.

4. 주스웨덴대사대리는 1973.6.15. 동 참사관과의 협의 및 관찰 내용을 아래 보고함.

- 유니버시아드경기 참가 문제: 한국대표단의 사증 발급 등 협조 요청
- 언론인, 실업인 소련 방문 및 교역 문제: 선수단에 언론인, 실업인 포함 권고, 소련 당국과의 접촉을 통한 관계 개선 방안 협의 제의
- 한반도 문제 유엔 상정: 소련 측은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문제 심의에 반대하지 않는 것을 큰 진전으로 평가
- 소련 측은 한-소 관계 개선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시사, 소련 측이 북한의 입장을 의식하여 신중을 기하라는 훈령을 지시한 것으로 관측

주 캄보디아(구 크메르)대사관 비상철수 계획

| 73-0143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C-62 / 4 / 1~191(191p)

1. 주캄보디아(구 크메르)대사는 1972.10.26. 주재국의 제반 정세를 감안하여 군사 정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없음을 보고하고, 아래 비상대책 수립 및 특별조치를 건의함.

- 비상시 통신망 · 연락망 수립, 단계별 철수계획 작성
- 완전철수 시 공관 폐쇄 대책, 소요 경비 등

2. 주캄보디아대사는 1973.4.7. 주재국 정세 및 공관 직원 가족 철수계획을 아래 보고함.

- 프놈펜을 압박하는 반군의 군사행동 강화 및 정부군의 전투 능력을 감안할 때 군사 정세가 호전되기는 어려우며, 프놈펜 시내 전기, 수도, 교통 등 생활 필수 조건이 계속 악화되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출국 중임.
-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현재의 악화된 정세는 지속될 전망이며, 선진국 공관 직원 가족은 철수를 완료한바, 공관원 가족 및 교민 가족들도 철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국 철수를 건의함.

3. 외무부는 1973.4.12. 공관장 판단에 따라 공관 직원 가족은 본국 철수, 교민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철수 권고를 지시한바, 공관 직원 가족은 4~5월 수차에 걸쳐 철수하여 5.31. 철수를 완료함.

4. 주캄보디아대사는 1973.7.31. 주재국 정세 및 비상철수 계획을 아래 보고함.

- 정세
  - 심각하나 위급한 상황은 아닌바, 유일한 비상대책은 사전 철수 시행임.
- 비상철수계획
  - 미국대사관에 헬기 수송 협조를 요청 중이며, 선박편 철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바, 교민들에 대해 시급한 퇴거를 종용 중임.
  - 공관원 및 교민 사전 철수 관련 지침 하달을 요청함.

5. 외무부는 1973.8.6. 주캄보디아대사에게 전 공관원 철수를 지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철수 시기 및 철수 대상지는 대사의 판단에 일임한바, 대사관은 교민들에 대해 퇴거 필요성 및 불응 시 안전을 보증할 수 없음을 재차 통보함.

6. 외무부는 1973.8.9. 크메르 사태 현황과 전망, 한국 교민 및 공관원 철수문제 관련 내부 자료를 작성함.

7. 주캄보디아대사는 1973.9.11. 프놈펜이 공산군에 함락될 우려가 없다는 군사 정세 호전상태를 감안하여 공관원 가족의 복귀를 고려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9.20. 공관원 가족의 복귀를 건의함.

주차드대사관 설치계획

| 73-014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C-62 / 5 / 1~30(30p)

1. 외무부는 1973.3.31. 주프랑스대사에게 1973년 중 차드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주재국 차드대사에게 동 내용을 문서로 전달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함.

2. 박동진 특사를 단장으로 하는 서부아프리카 특별사절단은 1973.4.13.~16. 차드를 방문하고 Tombalbaye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아래 보고함.

- ❋ 특사는 동 대통령에게 정부가 차드에 상주대사관 개설을 검토 중임을 통보하고, 차드 외상의 금년 중 방한 초청 의사를 전달함.
- ❋ 동 대통령은 외상에 대한 방한 초청을 수락하고, 한국 정부의 차드 상주대사관 설치에 만족을 표명하는 한편 동 내용을 포함하는 한국 대통령 앞 친서를 수교함.

3. 외무부 구아국장은 1973.6.9. 기획관리실장에게 서부아프리카 특별사절단 차드 파견 시 차드 정부로부터 상주대사관 설치에 대한 동의를 득하였음을 통보하고, 동 대사관 개설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함.

4. 외무부는 1973.7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1973년도 하반기 공관 신설 계획을 통보하는 한편 주차드 상주대사관 설치를 통한 북한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및 유엔에서의 지지 확보를 설명함.

재외공관 설치 - 가봉

| 73-0145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C-62 / 6 / 1~76(76p)

1. 외무부는 1972.12.19. 주프랑스대사에게 정부가 1973년 초 가봉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할 계획임을 가봉 정부에 통보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함.

2. 주프랑스대사는 가봉 정부가 1973.2.9. 공한을 통해 한국의 상주공관 개설을 환영하며, 동 계획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음을 보고하는 한편, 대사 신임장 제정 문제 및 상주공관 설치에 관한 가봉 정부 입장 파악을 위한 대사관 관계관의 가봉 파견을 건의한바, 외무부는 2.21. 동 직원의 가봉 출장을 승인함.

3. 외무부는 1973.4.13. 주가봉대사관 설치에 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고 5.10. 주가봉대사관을 개설함.

- 유종현 주가봉대사대리가 5.21. 현지에 도착, 공식 업무를 개시함.
- 동 대사대리는 5.23. 주재국 외상을 면담하고 대사관 개설에 따른 협조를 요청한바, 외상은 한국의 상주대사관 설치를 환영하며, 동 개설은 정치이념을 공유하는 양국의 기존 우호관계 및 상호 이해를 더욱 증진시킬 것임을 언급함.

4. 주가봉대사대리는 1973.12.14. 대사관 개설 관저 리셉션 개최 결과를 아래 보고함.

- 외무성 차관 등 정부 인사, 외교 사절, 주요 경제계 대표 등 120명 참석
- 한국 영화 상영, 한국 소개 책자 배포, 한국 수출상품 전시 등

재외공관 설치 - Berlin(독일) 총영사관

| 73-0146 |

생산연도	1968-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62 / 7 / 1~78(78p)

1. 외무부는 1968년 독일 주베를린총영사관 설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검토함.

- 공산당이 합법화되어 있고 활동이 자유로운 베를린 체류 한국인에 대한 사상 계도 및 특별 보호
-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북한의 적화 대남 공작단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정보 수집, 북한측 공작에 대한 대처 및 체류 교민에 대한 계도
- 독일 의회의 정기 상임위원회 및 각의 개최 등 베를린의 독일 내 정치적 비중 고려

2. 외무부는 1972.10.27. 주뮌헨분관을 폐쇄하고, 서베를린에 총영사관을 설치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거쳐 11.7. 주베를린총영사관 설치에 대한 각의의 승인을 득함.

3. 외무부는 1972.11.8. 주독일대사에게 베를린 주재 총영사관 설치에 관한 각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동 총영사관을 설치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주재국 외무성 및 서베를린 당국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도록 지시한바, 주독일대사는 11.16.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서베를린의 특수성에 따라 주독일 미국, 영국 및 프랑스대사관에 초대 총영사 지명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득함으로써 총영사관 설치가 승인됨.
- 당지 관계 당국과 접촉한바, 동 총영사관 설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4. 외무부는 1972.11.27. 주독일대사에게 주베를린총영사 임명에 대한 미국, 영국 및 프랑스 3국의 동의를 구하는 서한 발송을 지시하는 한편 주베를린총영사관 설치 시기를 1973년 초, 주뮌헨분관의 폐쇄 시기를 1972년 말로 하는 방안을 승인한바, 주독일대사는 12.22. 미국, 영국 및 프랑스 3국 대사관으로부터 이경훈 총영사의 베를린 내 자국 군정 당국 관할지역에서의 영사 업무를 인가하는 공한을 접수했음을 보고함.

5. 주독일대사는 1973.1.3. 주뮌헨분관을 1972.12.31.자로 폐쇄하였으며, 1973.2.1.자로 주서베를린 총영사관을 개설할 계획임을 보고함.

- 이경훈 총영사는 1973.1.10.~12. 베를린 출장을 통해 미국, 영국 및 프랑스 3국 군정사령관과 베를린 시정부 의전장을 예방한바, 동 인사들은 한국의 주서베를린 총영사관 설치를 환영함.
- 이경훈 총영사는 1973.2.2. 공식 업무를 개시함.

재외공관 설치 - 그리스

| 73-0147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62 / 8 / 1~70(70p)

1. 주이탈리아대사는 1972.2.4. 아래 이유로 주그리스 상주공관 설치를 건의함.

- 그리스는 반공정책 견지 국가로 한국의 대외 문제 관련 입장을 적극 지지함.
- 그리스의 중국(구 중공), 대동구권 관계 개선 등 동향을 감안하여 그리스와의 관계 긴밀화가 필요함.
- 그리스는 인접국 터키와 한국 간의 공관 설치 관계에 유의하면서 한국의 상주공관 설치를 기대함.

2. 주이탈리아대사는 1972.3.9. 그리스 출장 시 1973년도 최우선 순위로 주그리스 상주공관 설치를 재차 건의하는 한편 그리스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한국이 1인 공관으로 시작하여 상주대사를 파견하는 조치를 고려한다면 그리스도 주한 상주공관을 설치를 취할 용의를 표명하고 있음을 보고함.

3. 외무부는 1972.12.19. 주이탈리아대사에게 1973년 초 주그리스 상주대사관을 설치할 계획임을 그리스 정부에 통보하는 한편 그리스 정부도 같은 시기에 서울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할 것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토록 지시함.

4. 외무부는 1973.3.26. 주이탈리아대사에게 그리스 정부에 아래 정부 입장을 전달하도록 지시함.

- 현재 주그리스 상주공관 설치에 관한 국내 절차를 진행 중으로 원칙적으로 그리스도 같은 시기에 서울에 상주공관 설치를 희망함.
- 이는 한국의 공관 설치에 대한 절대적인 선행 조건은 아니며, 다만 그리스 측이 서울 상주공관 설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5. 외무부는 1973.4.3. 주이탈리아대사에게 주그리스 상주공관 설치 안건에 대해 4.3.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득했음을 통보하고, 6.14. 주동운 대사대리가 7.2. 그리스 도착 예정임을 통보함.

- 주동운 대사대리는 7.5. 그리스 의전장을 예방하고, 신임 채명신 대사의 신임장 제정 시기에 관해 협의함.
- 의전장은 7.29. 국민투표 이후 언제든지 신임장 제정을 환영한다고 언급함.
- 그리스 측은 한국의 상주공관 설치를 환영하며, 그리스 정부가 주한 그리스대사관을 설치하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예산, 인원의 제약에 기인하는 것임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언급함.

주가이아나대사관 설치계획

| 73-014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62 / 9 / 1~58(58p)

1. 외무부는 1973.1.4. 주브라질대사에게 가이아나에 출장하여 주가이아나 상주공관 설치 문제에 대해 교섭하도록 지시한바, 주브라질대사는 가이아나 출장 후 1.22.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진출에 대한 대처라는 소극적 목표보다 카리브 4개국에 대한 경제 및 기술 협력, 통상 증대 측면에서 가이아나에 상주공관 설치가 바람직함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73.6.7.자로 1963.6.13. 가이아나공화국과의 국교 수립 이래 주브라질대사가 겸임 중인 동국 주재 상주대사관 설치 방침을 결정함.

- 설치 이유
  - 1973년 초 북한 상주 통상대표부 설치 합의에 대처
  - 한국 친선사절단(단장: 윤석헌 외무부차관)의 1973.3.25. 동국 방문 시 한국을 경제 발전의 모범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 경제협력 실무조사단 파견을 요청
  - 방대하고 비옥한 국토를 소유한 국가로 한국의 농업, 임업, 어업 등 제반 분야 진출 여지
- 설치 시기 및 교섭: 1973.9월 개설을 목표로 주브라질대사를 통해 교섭

3. 외무부는 1973.6.9. 주브라질대사에게 가이아나와의 협력 및 관계 증진을 위해 상주대사관을 설치키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한을 가이아나 외무성에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6월 중 파견 예정인 대중남미 실무 조사단에게도 동 교섭을 측면 지원하도록 훈령함.

4. 외무부는 1973.7.12.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아래 주가이아나대사관 설치 필요성을 포함한 1973년도 하반기 공관 신설 계획을 통보하면서 동의를 요청함.

-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및 바베이도스와의 관계 증진, 어업기지 확보, 정책이민 추진, 경제통상관계 증진, 유엔에서의 지지 확보
- 북한 침투 활동에 대처

5. 외무부는 1973.8.22.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주가이아나대사관 등 2개 공관의 설치에 조속히 동의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함.

6. 주브라질대사는 1973.11.12. 가이아나 출장 시 콜린스 외무차관을 면담한바, 동 차관은 한국의 상주공관이 설치되지 않는 한 주한 공관을 설치할 수 없으며, 한국과의 기존 우호 외교관계를 현상대로 유지할 것을 언급함.

재외공관 설치 - 인도네시아

| 73-0149 |

생산연도	1970-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C-62 / 10 / 1~16(16p)

1. 외무부는 1970.3.31. 대통령에게 주인도네시아총영사관의 대사관 승격 문제에 관해 아래 보고함.

- 이효상 국회의장의 인도네시아 방문 중 인도네시아 외상과의 회담 시 외상은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우의와 경제, 문화 면에서 유대가 증진되어 가는 현실 및 지역 내 협력 강화 원칙에 따라 관계 개선에 하등 이론이 없으나, 양국 공히 국제 정치 면에서의 사정을 감안해 적절한 시기를 택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함.
- 현재 인도네시아에 북한대사관이 상주하고 있어 한국이 대사관을 설치하게 되면 국제법상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북한 동시 외교관계를 갖게 되어 정부로서는 '2개의 한국'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됨.
- 인도네시아 정부가 북한대사관을 존속시키는 현실에서 한국이 대사관을 설치함은 수용 불가함.
-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소한 북한대사관을 영사관으로 격하할 경우 한국의 대사관 설치가 가능함.

2. 외무부는 1973.9.18. 인도네시아와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아래 공동성명을 발표함.

- 정부는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개설에 필요한 국내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임.
- 신임 대사 부임 시까지 정상적 외교 업무 수행을 위해 김좌겸 주자카르타총영사를 대사대리로 임명함.

3. 외무부는 1973.9.19. 전 재외공관장에 대해 인도네시아와의 외교관계 수립 관련 사항을 아래 통보함.

- 정부는 1973.9.18. 인도네시아와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고, 상호 총영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함.
- 동 조치는 6·23 선언에 따라 정부가 북한과의 단독 수교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현실적이고 능동적으로 북한에 대처하는 한편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우위를 계속 확보하기 위한 전향적인 외교의 구체적 사례임.
- 정부는 6·23 선언에 따라 향후 대중립국 외교에 있어서 명분보다는 실리에 치중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북한을 압도하고 한국의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적극적인 외교를 계속 추진할 예정임.

재외공관 설치 - 나하(오키나와, 일본) 영사관

| 73-0150 |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C-62 / 11 / 1~173(173p)

1. 외무부 재외국민과장은 1971.7.5.~12. 오키나와 출장 결과 보고를 통해 안보외교 및 영사업무상 이유로 주나하(오키나와)영사관 또는 출장소 설치를 건의함.

2. 주일대사는 1972.2.4. 오키나와가 5.15. 일본에 반환될 예정임을 보고하고, 동 반환 후 한국의 상주공관 설치에 관한 검토에 따라 아래 이유로 영사관 개설을 건의함.

❋ 여권 및 사증 업무의 신속한 처리, 조총련계 및 북한의 침투공작 대처, 민단 조직 및 활동 강화, 안보 문제에 관한 현지 사정의 신속한 관찰 보고, 수출시장 개척 등

3. 민단 오키나와 지방본부는 1972.4.23. 대통령비서실에 주나하영사관 설치 청원서를 제출한바, 외무부는 5.26. 주나하영사관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을 회신함.

4. 외무부는 1972.5.25. 주일대사에게 주나하영사관 설치와 관련하여 한 · 일 기본조약에 의거하여 일본 정부의 의견을 타진하도록 지시한바, 주일대사는 5.30. 일본 외무성 관계관이 거주 교민 수, 한국의 수출액이 미미한 점 등을 이유로 동 영사관 설치 타당성에 부정적인 비공식 반응을 보였음을 보고함.

5. 외무부 영사국장은 1972.5월 오키나와 출장 시 오키나와 지사가 한국의 공관 설치를 희망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주일대사는 9.19.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이 동 영사관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교민 수, 무역량 및 한국 선박의 왕래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음을 보고함.

6. 주일대사는 1972.11.20. 외무성에 주나하영사관 설치 요청 공한을 발송했으며, 12.5. 일본 정부가 이에 동의하는 구상서를 수교했음을 보고한바, 외무부는 1973.1.23. 아래와 같이 주나하영사관 설치에 관한 각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등 내부 절차를 완료함.

❋ 소재지: 오키나와 나하 시

❋ 설치 필요성

- 안보 문제와 관련한 현지 상황의 신속한 보고, 수출시장 개척, 여권 사증 등 영사업무의 신속한 처리, 민단조직 활동 강화 및 조총련계 침투공작에 대처

7. 외무부는 1973.3.15. '재외공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주나하영사관 개설을 공표하고, 동 영사관은 4.16. 공식 업무를 개시함.

재외공관 설치 - 라이베리아

| 73-0151 |

생산연도	1966-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C-62 / 12 / 1~50(50p)

1. 외무부는 1966.8.19.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자유 우방 국가와의 유대 강화, 우호관계 증진, 해외 교민 보호, 수출 증대 및 경제 협력 등 경제외교 추진을 위해 1967년도 상주공관 설치(주라이베리아대사관 등 5개 대사관 및 3개 총영사관 신설)를 위한 예산 반영을 요청함.

❁ 주라이베리아대사관 설치 필요성

- 전통적으로 친서방 노선을 택하고 있으며, 한국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함.
- 라이베리아는 편의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서부아프리카 근해 어로활동 중인 한국 원양어선단 보호가 필요함.

2. 외무부는 1972.12.19. 주코트디부아르대사에게 라이베리아 정부에 1973년 초 라이베리아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할 계획임을 전달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한바,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73.1.29. 라이베리아 대통령이 한국의 제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3. 외무부는 1973.4.13. 아래와 같이 주라이베리아대사관 설치에 관해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득함.

❁ 설치 이유

- 1964.3.18. 외교관계 수립 이후 겸임국 관계 유지, 유엔 총회 시 한국 입장 지지
- Tolbert 현 대통령이 부통령 재임 당시 1970.5월 방한, 한국에 호의적 입장 견지
- 라이베리아 인접 국가인 말리 및 기니에 북한은 상주공관 유지, 한국은 전무
- 공관 설치를 통해 북한의 침투에 대처
- 양국 간 무역관계 증진 기대

4. 주라이베리아대사대리는 1973.7.17. 공관 개설을 보고하였으며, 신임 강영규 대사는 10.31. 국경일 및 대사관 개관 축하 리셉션을 개최함.

재외공관 설치 - 파나마

| 73-0152 |

생산연도	1966-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62 / 13 / 1~127(127p)

1. 외무부는 1965년 이후 아래와 같이 주파나마 공관 설치 문제를 검토함.

- 1965.12월 미주지역 공관장회의 종합보고에 주파나마영사관 또는 무역대표부 설치 건의
- 1966.5.27. 외무부 통상국은 대중남미 수출시장 개척 차원에서 주파나마 총영사관 개설 건의
- 1967.8.3. 외무부 구미국은 아래 필요성에 의한 주파나마 상주공관 설치 건의
  - 북한 침투 저지, 한국의 수출 증대에 기여, 한국 통과선박 보호, 유학생 및 교민 보호 등
- 1967.8월 외무부 기획관리실은 1968년도 예산 확정 후 개설 여부 논의 희망

2. 수아레스 주한겸임 파나마대사는 1971.8.5. 외무부 구미국장을 면담하고 주파나마 한국 상주대사관 설치를 제의한바, 구미국장은 가까운 장래 설치 고려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호혜원칙에 따라 상호 설치를 제의함.

3. 수아레스 대사는 1972.11.10. 외무부장관을 예방하고 주파나마대사관 설치를 재차 제의한바, 외무부장관은 파나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관 개설 문제를 고려 중임을 언급하고 본국 정부에 주한 파나마 공관 개설을 건의하도록 요청함.

4. 외무부는 1972.12.21. 주일대사에게 주일 파나마대사를 통해 1973년 초 파나마에 한국 상주대사관 설치를 검토 중임을 설명하고 동 공관 설치 문제를 교섭하도록 지시한바, 주일대사는 12.29. 주일 파나마대사가 일시 귀국 시 주한 파나마대사관 설치 문제를 본국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5. 외무부는 1973.3.6. 주일대사에게 정부가 주파나마 상주대사관 설치를 원칙적으로 결정했음을 주일 파나마대사에게 공한으로 전달하도록 지시함.

6. 외무부는 1973.4.13. 주파나마대사관 설치에 관해 아래와 같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득함.

- 설치 이유
  - 양국은 1962.9.30. 수교 이래 긴밀한 우호관계 유지
  - 파나마 자유무역지대는 중남미 통상활동의 관문으로 한국 수출 진흥의 중심 지역
  - 윤석헌 외무차관과 파나마 외상 간 1973.3.19. 공동성명을 통해 파나마 정부는 한국의 대사관 설치에 동의하고, 주한 파나마대사관 설치에 합의

7. 이정남 주파나마대사대리는 1973.8.15. 상주대사관 개설을 정식 발표했음을 보고함.

재외공관 설치 - 사우디아라비아

| 73-0153 |

생산연도	1967-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C-62 / 14 / 1~43(43p)

1. 외무부 구미국장은 1967.4.21. 기획관리실장에게 아래 이유로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설처가 긴급함을 설명하고, 동 설치를 위한 1968년도 예산 반영을 요청함.

- 아랍 13개국 중 북한은 4개 대사관, 2개 총영사관이 아랍 제국에 주재함에 비해 한국은 1개 대사관, 1개 총영사관 주재에 불과함에 따라 효과적인 대아랍 정책 수행이 곤란
-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립적 외교정책을 표방하나, 실질적으로 친서방 정책 채택
- 공관 개설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및 인접 아랍 제국과의 관계 개선에 영향력 행사 기대
- 한국의 대아랍 제국과의 교역 증진 토대 구축

2. 외무부는 1972.12.19. 주터키대사에게 1973년 초 주사우디아라비아 상주공관 설치 계획을 통보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의 관련 교섭을 시행토록 지시한바, 주터키대사는 1973.1.25.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한국대사관 설치를 환영하며, 제반 협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한을 송부해 왔음을 보고함.

3. 외무부는 1973.3.6.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설치에 관해 아래와 같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득함.

- 설치 이유
  - 양국은 1962.10.16. 수교 이래 겸임 외교관계를 유지
  - 사우디아라비아는 온건 아랍진영 왕국으로 1971~72년 유엔 총회 시 한국 입장 지지, 회교 종주국으로서 아랍진영 및 회교국에 강력한 발언권 행사
  - 회교 교리에 따라 공산주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북한과의 공식 접촉 전무
  - 상주공관 설치로 대사우디아라비아 수출 증대 및 건설 분야 진출 가능 전망

4.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은 1973.7.9. 정식 개설됨.

재외공관 설치 - 세네갈

| 73-015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C-62 / 15 / 1~12(12p)

1. 주프랑스대사는 1973.2.16. 주프랑스 가봉대사관이 1972.12.22.자 정부의 주가봉 상주공관 설치 계획 통보에 대해 한국의 상주대사관 개설을 환영하며, 동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요지의 회신을 보내왔음을 보고하고, 정부의 상주공관 설치에 관한 세네갈, 가봉 및 차드 3개국 정부의 입장 파악을 위한 직원 파견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73.2.21. 주프랑스대사 건의에 따른 직원 출장을 승인하고, 아래 훈령함.

- 가봉 측에 1973년 2/4분기 중 상주대사관을 개설할 예정이며, 대사의 신임장 제정도 동 시기에 시행할 것임을 통보함.
- 7·4 공동성명 발표 후 남북대화에 임하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가봉 정부가 북한을 승인하지 않도록 교섭함.
- 니제르 파견 의사의 가봉 전출에 대한 가봉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

3. 외무부 기획관리실장은 1973.4.6. 구아국장에게 1973년도 신규 공관 증설 시 주세네갈대사관 설치 계획이 확정되어 포함되었음을 통보함.

4. 주프랑스대사는 1973.5.4. 주세네갈대사관이 개설되었음을 보고함.

재외공관 설치 - Las Palmas(스페인) 영사관

| 73-0155 |

생산연도	1970-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62 / 16 / 1~113(113p)

1. 주스페인대사는 1972.6.8. 주라스팔마스영사관 또는 분관 설치를 아래와 같이 건의한바, 외무부는 6.24. 한정된 예산 사정 및 명예영사관 설치 사실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동 설치가 어려움을 회신함.

❋ 설치 이유
- 한국 상품 수출시장 개척
- 한국 원양어선 보호 및 지도

❋ 설치 시기 및 방법
- 1972.6월 대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를 개설, 추후 영사관으로 승격

2. 외무부 구아국장은 1973.4.14. 기획관리실장에게 1973년도 신규 공관 증설 계획을 통보하고, 7.6. 주라스팔마스영사관 또는 출장소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함.

3. 외무부는 1973.7.12. 경제기획원장관에게 1973년도 하반기 공관 신설(5개 대사관 및 라스팔마스 영사관) 계획을 통보하고 동의를 요청한바, 경제기획원은 7.30. 주라스팔마스영사관 설치에 동의함을 회신함.

4. 외무부는 1973.7.31. 주라스팔마스영사관 설치에 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득하고, 8.9. 주스페인대사에게 라스팔마스영사관 설치에 관한 주재국의 동의를 위한 교섭을 지시함.

❋ 주스페인대사는 8.20. 주재국 외무성 영사총국장에게 상기 동의 요청 공한을 수교함.
❋ 주스페인대사는 8.24. 주재국 외무성의 영사관 설치 동의 서한 접수를 보고함.

5. 외무부는 주라스팔마스영사관 신설 등을 포함한 재외공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1973.10.19. 공포함.

6. 주스페인대사는 1973.12월 중순 부임 예정인 주라스팔마스 신임 영사에 대한 아래 내용의 업무 지침서를 11.29. 보고함.

❋ 교민 지도 · 보호, 기지 관계관 지도 감독, 선원 교대 및 어선 출입항 지도
❋ 어업기지 지원 및 확충사업 추진, 감독

7. 주라스팔마스영사는 1973.12.18. 최단 시일 내 정식 공관을 개설토록 노력 중임을 보고함.

재외공관 설치 - 토고

| 73-0156 |

생산연도	1970-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C-62 / 17 / 1~153(153p)

1.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70.5.5. 한석진 서기관의 토고공화국 독립 10주년 기념 경축행사 참석 시 토고 외무차관이 한국의 상주공관 설치를 요청했다고 보고함.

2.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72.10.14. 북한의 토고에 대한 침투 저지를 위해 한국의 상주공관 설치가 시급함을 건의함.

3. 외무부는 1973.1.25. 주코트디부아르대사에게 주토고 상주대사관 개설 결정을 토고 정부에 통고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한바,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31. 토고 외무성이 한국의 상주대사관 설치 결정에 감사하나, 동시에 북한 상주대사관 개설을 거절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송부해 왔음을 보고함.

4. 외무부는 주토고 상주대사관 설치에 관한 제반 검토를 거쳐 공관 설치를 결정하고 1973.2.15. 총무처장관에게 주토고대사관 설치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토록 요청한바, 3.2.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9. 대통령의 재가를 득함.

5.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73.5.29. 토고 측에 허승 참사관의 주토고 대사대리 임명 및 6월 초 현지 부임 예정임을 통보한바, 토고 외무성이 대통령 및 외상 부재를 이유로 부임 연기를 요청했음을 5.31. 보고함.

6. 허승 주토고대사대리는 1973.6.22. 토고에 부임하여 6.27. 주재국 외상을 면담하고 외무부장관의 친서와 안부를 전달한바, 외상은 대사의 부임 및 상주대사관 개설을 환영한다고 언급함.

7. 주토고대사대리는 1973.7.21. 대사관 개설에 따른 향후 외교 강화 방안 및 활동 계획을 아래 보고함.
   - ❋ 정치적 유대 강화, 주요 인사 방한 초청, 대언론 대책, 대토고 의료 협력, 친한 단체 육성 문제
   - ❋ 개관 기념 리셉션 및 통상 진흥을 위한 전시회 개최 등

재외공관 설치 - 베네수엘라

| 73-0157 |

생산연도	1965-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62 / 18 / 1~53(53p)

1. 외무부는 1965.9.24. 주브라질대사에게 주베네수엘라 겸임대사 파견을 위해 베네수엘라 측과 교섭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한바, 주브라질대사는 1965.11월 개최 미주기구회의에 참석 예정인 베네수엘라 외무장관과 협의 후 결과 보고 예정임을 10.7. 보고함.

2. 외무부 미주국은 1973년도 아래 베네수엘라 등 관할지역 내 대사관 설치 계획을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함.

- 겸임국인 주브라질대사를 통해 1973.2.3. 한국 상주공관 설치를 제의함.
- 1973.5.1. 설치를 목표로 1973.3월 중순까지 교섭 완료 계획임.

3. 외무부는 주베네수엘라대사관 창설을 위해 1973.7.7. 부임 예정인 김형수 참사관에게 외무부장관 명의 소개장을 지참토록 조치함.

4.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은 1973.7.10. 임시 대사관을 설치하고 7.26. 상주대사관 설치에 관한 공한을 외무성에 발송한바, 주베네수엘라대사대리는 1973.7.20. 주재국 외무장관이 김용식 외무부장관 앞으로 아래 요지의 서한을 송부해 왔다고 보고함.

- 한국의 상주공관 창설 요원인 김형수 참사관의 1973.6.29.자 서한을 접수함.
- 베네수엘라 정부는 동 참사관의 임명을 환영하며, 상주공관 설치는 양국 간의 기존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임.
- 베네수엘라 정부는 동 참사관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제공할 것임.

5. 주베네수엘라대사대리는 1973.11.29. 대사관 설치 기념 리셉션을 개최하여 외교계, 관계, 언론계 및 재계 등 주요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고 보고함.

중남미지역 재외공관 관할구역 변경

| 73-015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62 / 19 / 1~40(40p)

1. 주브라질대사는 1973.1.8. 정치적, 지리적 및 교통상의 이유로 겸임국인 가이아나 및 관할국인 바베이도스에 대한 겸임 및 관할 지정이 부적절함을 보고하고, 재조정을 건의함.

2. 외무부 미주국장은 1973.1.27. 기획관리실장에게 카리브 지역 국가의 정치적, 지리적 특성에 따라 주베네수엘라대사관 신설 시 가이아나, 바베이도스 등 6개국을 겸임 및 관할국으로 재조정할 계획임을 통보함.

3. 외무부 미주국장은 1973.5.29. 기획관리실장에게 주콜롬비아 상주대사 부임에 따라 에콰도르를 주콜롬비아대사관 관할로 재조정해 주도록 요청함.

4. 주브라질대사는 1973.7.20. 가이아나를 주미국, 주캐나다 또는 주유엔대표부 겸임으로 변경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한바, 외무부는 8.30. 주브라질대사에게 주베네수엘라대사 임명 시 가이아나를 겸임 관장토록 조치 예정임을 통보함.

5. 재외공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907호)에 대한 1973.10.19.자 개정에 따라 가이아나공화국에 대한 관할이 주브라질대사관에서 주베네수엘라대사관으로 변경됨.

6. 외무부는 1973.12.1. 주브라질대사에게 트리니다드토바고, 바베이도스,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및 가이아나 등 5개국에 대해 주베네수엘라 신임 대사 부임 시까지 대사대리가 통상적인 업무를 관장토록 지시했음을 통보함.

주한공관 설치 - 카나다

| 73-0159 |

생산연도	1966-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C-62 / 20 / 1~201(201p), Re-22 / 49 / 1~14(14p)

1. 정부의 1966~71년 중 주한 캐나다대사관 설치를 위한 외교적 교섭 추진 경과임.

- 주캐나다대사는 1966.2.1. 캐나다 외무성 차관이 당분간 동 설치가 어렵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 주캐나다대사는 1968.5.2. 캐나다 외무성이 재정적, 인력 부족 등 사정으로 주한공관 설치는 상당 기간 실현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고함.
- 주캐나다대사는 1970.1.16. 샤프 외무장관, 2.3. 트뤼도 수상과 각각 대사관 설치 문제를 협의함.
- 외무부장관대리는 1970.4.7. 방한한 캐나다 벤슨 재무장관과 주한공관 설치 문제를 협의한바, 벤슨 장관은 적절한 시기에 설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외무부는 1971.2.8. 주일대사에게 주재국 캐나다대사가 본국 정부에 동 설치를 강력히 건의토록 교섭할 것을 지시한바, 주일대사는 3.17. 캐나다대사는 설치 시기는 미정이나 한국이 최우선 설치 순위임을 확인했다고 보고함.
- 주캐나다대사는 1971.3.4.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주한 상주공관 설치 원칙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하였음을 보고함.
- 캐나다 외무성 아태국장은 1971.4.6.~8. 방한 중 외무부장관 및 차관을 예방하고 주한 상주공관 설치 문제를 협의함.
- 주캐나다대사는 1971.8.16. 동 아태국장이 1971년 중 관련 결정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보고함.

2. 주캐나다대사는 1972.4.11. 주재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6개국에 상주공관 설치 결정을 발표했음을 보고함.

- 캐나다 각의는 1972.3.30.자로 1974년 이전 주한 공관 설치를 결의함.
- 캐나다 외무성 아태국장은 1972년 중 준비 작업 완료 후 늦어도 1973년 중 주한 상주대사관을 개설할 계획임을 언급함.

3. 주한겸임 캐나다대사관 관계관은 1973.2.26. 외무부에 주한 상주대사관 설치를 위해 4월 중 준비작업반이 내한할 예정이며 상주대사는 1974.1월경 신임장을 제정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동 작업반은 대사관 설치 장소 물색 등 행정 지원을 목적으로 파견될 것임을 설명함.

4. 윤석헌 외무부장관 대리는 1973.10.4. 주한 캐나다대사관 개관 기념 리셉션에 참석하여 축사를 시행함.

주한공관 설치 - 인도네시아

| 73-0160 |

생산연도	1970-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C-62 / 21 / 1~9(9p), Re-22 / 50 / 1~6(6p)

1. 주한 인도네시아총영사관의 대사관 승격 문제와 관련한 외무부의 1970.3.26.자 대통령에 대한 보고 요지임.

- ❋ 이효상 국회의장의 1970년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의회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국교 수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주한 인도네시아총영사관의 대사관 승격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 정부는 '두 개의 한국'에 반대하는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해 온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외교관계 수립은 정부의 여사한 기본 방침에 배치됨.
- ❋ 정부가 상기 기본 원칙을 포기할 경우 유엔에서의 한국의 우월한 입장이 현저히 약화되고 한국과 북한의 국제 사회 및 유엔에서의 지위가 동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함.
- ❋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자카르타 북한대사관을 현상대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을 설치한다는 제의는 수용 불가함.
- ❋ 정부로서는 인도네시아로 하여금 북한대사관을 먼저 폐쇄하거나, 최소한 영사관으로 격하하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임.

2. 외무부는 1970.3.27. 주자카르타총영사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하는 한편 관련 정부 입장을 통보함.

- ❋ 이효상 국회의장이 주재국 방문 후 인도네시아 의회에 주한대사관 설치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불원 한국과 국교 관계가 수립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동 결의안 제출 사실 여부 및 공관 의견을 보고 바람.
- ❋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거나, 최소한 영사관계로 격하시키는 조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임.

3. 주한 인도네시아총영사관은 1973.9.22. 외무부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따라 9.18. 자로 총영사관이 대사관으로 승격되었으며, 동일자로 L. B. Moerdani 현 주한총영사가 대사대리로 임명되었다는 외교 공한을 송부함.

주한공관 설치 - 스페인

| 73-0161 |

생산연도	1970-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62 / 22 / 1~59(59p)

1. 외무부는 1970.12.30. 주스페인대사에게 주재국의 주한 상주공관이 설치되도록 교섭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한바, 주페인대사의 1971~73년 중 관련 보고 내용임.

- 스페인 외무장관을 1971.1.16. 면담하여 한국에 상주공관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요청한바, 동 장관은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현재 예산 사정상 어려우나 계속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 스페인이 한국에 상주공관을 설치할 경우 양국 관계가 더욱 증진될 것이라는 요지의 비망록을 1972.5.4. 외무성 정책총국장에게 전달함.
- 주재국 외무차관은 1972.10.19. 스페인 정부가 서울에 상주공관을 설치키로 결정했으며, 시기는 1972년 말 또는 1973년 초가 될 것으로 현재 대사 인선 중에 있음을 언급함.
- 주재국 외무장관과의 1973.1.16. 면담 시 동 장관은 주한 상주공관 설치 결정을 재확인하는 한편 동 장관의 방한에 대한 원칙적인 수락 입장을 표명하고, 방한 시기는 상주대사 파견 이후가 적절할 것임을 언급함.
- 주한 상주대사관 설치안이 1973.3.9. 스페인 정부 각의를 통과한바, 동 상주공관 설치 결정은 주재국 유력 인사에 대한 방한 초청,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 주재국 외상은 1973.3.29. 외교 공한으로 주한 상주대사관을 설치하는 스페인 정부의 결정을 통보해 옴.
- Aguado 초대 주한 스페인대사 내정자를 1973.8.16. 면담한바, 동 대사는 1973.9월 중순 서울 부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주한 스페인대사관은 1973.10.11. 외무부에 초대 Aguado 대사가 서울에 부임하여 업무를 개시했다는 외교 공한을 발송함.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장래에 관한 보고서

| 73-016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C-63 / 1 / 1~189(189p)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의 장래 및 정부의 대책에 관한 1973.1.13. 외무부 보고서임.

1. 회원국들의 입장 변화

- 회원국 중 중국(구 중공)을 승인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최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회원국들이 국내 정권 교체 등을 이유로 ASPAC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함.
- 이에 따라 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8차 각료회의의 연기 또는 ASPAC의 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대두됨.

2. 장애 요인

- 중국의 대표권 문제가 최대 장애 요인으로 다수 회원국들은 대만(구 자유중국)의 회원국 지위가 유지될 경우 계속적인 참여가 곤란하다는 입장임.
- 일부 회원국들은 대만 문제뿐 아니라 분단국 문제 일반 및 중국의 참여에 따른 지역협력의 강화 필요성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고 있음.

3. 새로운 지역협력기구 창설 구상

- 대만 문제로 난관에 봉착함에 따라 ASEAN(동남아국가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PASA(태평양 동남아기구),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을 포함하는 아시아평화회의 등의 구상이 비공식적으로 제기됨.
- 호주, 뉴질랜드 등도 ASPAC 개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협력기구 창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4. 정부 대책

- 회원국들의 입장 변화 및 월남전 종전을 상정하여 그간 ASPAC을 중심으로 유지해 온 지역협력 체제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대동남아 외교의 기반으로서의 동 기구의 유용한 역할을 감안하여 ASPAC의 계속적인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함.
- 중국의 대표권 문제는 동 기구 다수 회원국의 의사에 따라 결정함.
- 향후 주변 정세가 정부의 ASPAC 존속 노력을 어렵게 할 경우에 대비하여 기존의 지역협력기구 또는 새로운 기구의 창설에 참여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함.

ASPAC 장래에 관한 회원국의 태도

| 73-0163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C-63 / 2 / 1~279(279p)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의 장래에 관한 1973년 회원국들의 입장임.

1. 말레이시아

❁ 외무성은 3.12. 성명을 통해 3.13. 방콕 개최 동 기구 상설위원회에 불참 예정이며, 향후 동 기구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결정하였음을 발표함.

2. 싱가포르

❁ 언론들은 3월 말레이시아의 탈퇴 선언으로 동 기구의 존속이 어려울 것임을 보도함.

3. 베트남(구 월남)

❁ 외무성은 3.14. 말레이시아의 탈퇴에 유감을 표하고 회원국으로 존속 예정임을 발표함.

4. 인도네시아

❁ Malik 외상은 7.12 새로운 지역협력기구 추진 구상을 밝힘.

5. 일본

❁ 주한 일본공사는 3.22. 제8차 각료회의 연기 희망 및 새로운 기구 창설 가능성을 검토 중임을 밝힘.

6. 대만(구 자유중국)

❁ 주한 대만공사는 3.28. 동 기구 축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으로 계속 잔류 예정임을 밝힘.

7. 태국

❁ 외무차관은 3.2. 상설위원회 및 제8차 각료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할 것을 희망함.

8. 필리핀

❁ 외상은 4.10. 대만 문제로 동 기구의 장래가 비관적임을 지적하고 각료회의 연기를 희망함.

9. 호주

❁ 호주 외무성 차관보는 1.25. 동 기구가 역내 정세 및 실태를 반영하지 못함을 지적함.

10. 뉴질랜드

❁ 주태국 뉴질랜드대사는 4.5. 새로운 기구 설립 가능성을 검토 중임을 밝힘.

ASEAN(동남아국가연합) 외무장관회의

| 73-0164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C-63 / 3 / 1~167(167p)

ASEAN(동남아국가연합)의 1973년 중 외무장관회의 개최 결과임.

1. 특별외무장관회의(1973.2.15.~16. Kuala Lumpur)

❋ 개최 목적
- 월남전 종전 이후 동남아 정세 검토 및 인도차이나 전후복구사업 참여 문제 논의

❋ 참가국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및 태국

❋ 회의 결과
- 월남 종전협정 서명 환영
- 동 협정이 라오스, 캄보디아의 독립, 주권 및 영토보전을 확인함을 평가
- 월남 전후복구 및 재건사업 참여 필요성 재확인
- 역내 모든 국가의 지역 평화, 안정 및 복지 추구 필요성 확인
- 월남전 종전협정이 동남아 중립화안의 실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함을 확인
- 적절한 시기에 ASEAN이 모든 동남아 국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동 연합의 확대에 합의

2. 제6차 외무장관회의(1973.4.16.~18. Pattaya)

❋ 참가국
- 상기 5개국 및 라오스, 캄보디아 옵서버 자격 참석
- 한국의 옵서버 자격 참가를 검토한바, 동 연합 측은 역외 국가의 참석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

❋ 회의 결과
- 동 연합의 정치적 결속 강화 필요성 확인
- 인도차이나 전후복구 및 재건사업에 대한 각 회원국의 참여 용의 표명
- 다자무역협상에 대비한 공동보조 필요성 및 협조 방안 협의
- ASEAN 중앙은행 및 통화통제 특별위원회 구성을 환영
- EEC(구주경제공동체)와의 협력 증대 희망
- 일본의 인조고무 산업의 발전 및 수출 확대가 역내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음에 우려 표명, 일본의 재고 촉구 및 동 위협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 이행에 합의

ASPAC 상설위원회(1973년도) 1-2차. Bangkok

| 73-0165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C-63 / 4 / 1~160(160p)

정부는 1973년 방콕 개최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상설위원회에 임윤영 주태국대사를 수석대표로 파견함.

1. 제1차 회의(3.13.)

- 참가국
  - 태국, 대만(구 자유중국), 필리핀, 일본, 베트남, 뉴질랜드 및 한국
- 주요 의제
  - ASPAC의 장래 및 제8차 각료회의 개최 문제
  - ASPAC 사업 및 월남전 종전 이후 전후복구사업 참여 등 역내 현안 협의
- 정부 훈령
  - 동 이사회의 유용한 역할을 고려하여 ASPAC의 존속 및 발전을 촉구
  - 대만의 대표권 문제는 대다수 회원국의 의견에 따라 결정
- 회의 결과
  - ASPAC 존속 여부 및 각료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이견에 따라 제2차 회의에서 동 건을 재협의하기로 결정

2. 제2차 회의(6.1.)

- 주요 의제
  - ASPAC의 장래 및 제8차 각료회의 개최 문제
  - ASPAC 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동사업기구 활동 지속 여부
- 회의 결과
  - 필리핀, 대만(구 자유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의 제8차 각료회의 개최 연기 요청 및 정부대표의 동 제안 수락에 따라 향후 적절한 시기까지 개최를 연기하도록 합의
  - ASPAC 센터의 활동 지속에 합의
  - 정부대표는 ASPAC 센터의 공동사업기구 활동 지속을 위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제안하여 향후 태국 정부가 동 건을 각 회원국과 협의하기로 결정

ASPAC 과학기술 등록처 장래문제

| 73-016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C-63 / 6 / 1~20(20p)

호주는 1973.11.28. 호주 소재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산하 과학기술등록처 실무자회의에서 동 기관의 존속 문제를 제기함.

1. 호주 측의 입장 및 구상

- ASPAC의 불확실한 장래를 고려할 때 1974.7월 이후에는 동 위원회 산하 과학기술등록처에 대한 기여금을 분담할 수 없음.
- 동 기관의 장래와 관련하여 아래 방안들을 구상 중으로 회원국들과 협의를 희망함.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등 유관 국제기구에 통합하여 동 기관을 유지함.
  - 호주 정부 산하 기관으로 흡수함.
  - 현 상태로 유지하여 일정 시기 이후 소멸토록 함.
- 호주 측 구상에 대한 한국 대표의 입장 개진
  - 호주 측의 구상에 원칙적으로 동의함.
  - 시행 방안과 관련하여 동 기관뿐 아니라 동일한 여건하의 ASPAC 전체 기구의 장래 문제를 동시에 검토하여 일관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정부의 1차적인 검토 입장

- 제2차 ASPAC 상설위원회의 1973.6.1. 제8차 각료위원회 연기 결정 이후 동 위원회 산하 기관들의 장래 운영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방침 수립이 필요함.
- 과학기술등록처 외 식량비료기술센터, 경제협력센터 등 ASPAC 산하 기관들은 창설 이래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에 기여해 왔음을 감안할 때 역내 협력의 실리 면에서 계속 유지됨이 바람직함.
- 장래 ASPAC의 범주 외에서의 동 기관들의 존속 및 운영 방식 등의 문제는 존속 가능성 문제를 포함하여 정치적인 차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함.

ASPAC 과학기술 등록처 회의. Canberra(호주)

| 73-016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C-63 / 7 / 1~41(41p)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산하 과학기술등록처 제5차 집행위원회가 1973.4.18. 호주 Canberra에서 개최됨.

1. 참가국

-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뉴질랜드, 호주 및 한국

2. 주요 의제

- 동 기관의 역할 및 존속 문제
- 각 회원국 분담금 결정

3. 회의 결과

- 동 기관의 존속 및 장래 문제는 금차 회의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는 다수 의견에 따라 토의가 보류됨.
- 각국의 1974년 분담금이 결정됨.
- 아래 의제 토의를 위한 실무자회의를 6.20. 개최할 것에 합의함.
  - 제5차 집행위원회 토의 사항에 대한 후속 협의
  - 사무총장 보고서 검토
  - 1973~74년 사업계획 검토

4. 주호주대사의 관련 보고

- 각국은 동 기관의 존속 필요성을 인식하나, 향후 현재와 같은 독립된 기관으로 존속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표명함.
- 동 기관 소재국인 호주는 중국(구 중공)과의 국교 수립에 따라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을 이유로 1974년 이후 호주의 동 기관 회원국 지위 유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함.
- 일본은 공식적인 분담금 발표를 유보한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따른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됨.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경제협력센터 집행이사회 회의, 제3차. Bangkok, 1973.2.28.

| 73-016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C-63 / 8 / 1~70(70p)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산하 경제협력센터 제3차 집행이사회가 1973.2.28. 방콕에서 개최됨.

1. 참가국

- 필리핀, 베트남, 대만(구 자유중국), 일본,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태국 및 한국

2. 주요 의제

- 경제협력센터 의료사업 추진
- 회원국별 분담금 결정 및 사업계획

3. 사업계획 채택

- 개도국 회원국들의 수출 증진 및 개도국들 간의 무역협력 증진 방안
- 외국 투자유치 촉진 방안 및 투자 저해요소 검토
- ASPAC 역내 자동차 및 육우산업 육성 방안

4. 호주 정부는 각 회원국에 대한 아래 요지의 공한을 통해 동 집행위원회 불참 이유를 설명함.

- 모든 회원국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치적 문제(대만의 ASPAC 회원국 지위를 암시)에 따라 동 이사회에 불참을 결정하였으나, 지역협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
- 12.2. 총선 이후 신정부는 독자적인 외교를 지향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이 강대국의 각축 및 개입으로부터 탈피하여 이념을 초월한 포괄적인 지역협력기구를 창설하기를 기대함.
- 호주는 인접 제국의 여망을 충분히 고려하여 동 구상을 협의해 나갈 것이며, 인도네시아의 Suharto 대통령도 정상회의를 통해 호주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 바 있음.
- 호주는 최근 정세가 지역협력을 위한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인식하며, 여사한 변화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정치, 경제,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ASPAC 사회문화센터 실무회의, 제30-32차. 서울

| 73-016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공보문화과
MF번호	C-63 / 9 / 1~30(30p)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는 1973년 동 기구 사회문화센터 실무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함.

1. 제30차 회의(1.25.)

- 1973~74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검토
- 사회개발회의 등 동 센터 산하 각종 회의 및 세미나 개최지 협의
- 사무소 직원 복무규정 개정 문제 협의
- Fellowship 연구원 후보 선발 및 교환계획 협의
- 본국 정부 지시에 따라 호주 대표 불참

2. 제31차 회의(5.17.)

- 1972~73년 동 센터 활동보고서 검토
- 교육계획관의 회원국 순방 결과 보고
  - 말레이시아 정부가 ASPAC의 장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 따라 동 계획관의 입국을 불허하였음을 보고
- 호주 및 말레이시아 대표 불참
- 하반기 중 집행이사회 개최에 합의

3. 제32차 회의(10.19.)

- 1974~75 회계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 검토
- 집행이사회 제17차 특별회의 결과보고서 검토
- 특별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 배정 방안 협의
- Fellowship 사업계획 협의
- ASPAC 발간물 출판 문제 검토
- 호주 및 말레이시아 대표 불참

ASPAC 사회문화센터 장래문제

| 73-017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C-63 / 10 / 1~12(12p)

1. 주한 호주대사는 1973.11.12. 외무부에 호주 정부는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의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1974.6.30. 이후 동 기구 산하 사회문화센터에 대한 호주의 분담금 지급을 중지할 예정임을 통보함.

- 동 대사는 ASPAC 기술용역센터에 대해서는 호주 정부가 분담금을 당분간 계속 납부할 것임을 통보함.
- 동 분담금 지급 중지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본국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밝힘.

2. 상기 호주 정부의 결정에 대해 외무부는 아래 입장을 검토함.

- ASPAC 상설위원회의 1973.6.1. 제8차 각료회의 개최 연기 결정 이후 회원국 간에 산하 기구들의 운영 및 장래 문제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 수립이 필요함.
- 사회문화센터는 동 활동의 유용성과 함께 아시아지역 내 유일한 사회문화협력기구임에 비추어 존속 및 발전이 필요하며,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사무국은 동 센터의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함.
- 따라서 ASPAC의 장래 문제와는 별도로 동 센터를 발전시키는 원칙에 대해 여타 회원국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ASPAC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임시회의, 제15차. 서울, 1973.2.9.

| 73-017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공보문화과
MF번호	C-63 / 11 / 1~138(138p)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제15차 임시회의가 1973.2.9. 서울에서 개최됨.

1. 주요 의제

- 1973~74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센터 이전에 따른 특별 추경 예산안 심의
- 사무국 직원, 특정직 임명 및 근무 연한 등에 관한 복무규정 개정안 심의
- 센터 창립 기념일 개정 문제 협의
- Fellowship 교환계획 규정의 체계화

2. 회의 결과

- 총 13개 사업 274,143달러 규모의 사업예산 승인
- 센터 이전에 따른 31,078달러의 추경 예산안 승인 및 센터 건물을 제공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사의 표명
- 사무국 전문 직원 임명 시 윤번제 원칙 적용을 제안한 태국 측의 제안을 포함한 복무규정 개정 채택
- 센터 창립 기념일을 10.25.로 개정
- Fellowship 교환계획의 보완 채택
- 사무국장 및 직원들의 유관 회의 참석 결과 및 교육사업 담당관의 회원국 순방 결과 보고
- 차기 특별회의의 5월 개최 합의

3. 특기 사항

- 호주 대표 불참

ASPAC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임시회의, 제16-17차. 서울

| 73-017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공보문화과
MF번호	C-63 / 12 / 1~218(218p)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의 1973년 중 제16차 및 제17차 임시회의 서울 개최 결과임.

1. 제16차 회의(6.20.)

- Fellowship, 청소년 교환계획 예산 및 사무국 직원 급여 인상 필요성에 대한 사무국의 제안 협의
- 1973.8.1. 이후 동 센터의 장래 문제 협의
  - 회원국들의 조속한 분담금 납부 촉구
  - 장기간 공석 중인 사무국장 임명 필요성에 합의
  - 한국 측이 ASPAC 상설위원회가 동 센터의 계속적인 활동을 결정하였음에 따라 장래 문제는 동 결정을 기초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각 회원국의 입장 결정 시까지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를 연기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동 사안을 8.1. 이후 재협의할 것에 합의
- 특기 사항
  - 호주 및 말레이시아 대표 불참
  - 주한 호주대사관은 6.18. 외무부에 동 임시회의에 불참 예정이나 주요 정책 문제에 대한 호주 측 입장을 사무국을 통해 계속 반영시키고 있음을 사전 통보

2. 제17차 회의(8.21.)

- 한국 정부 추천 갈홍기 박사의 사무국장 임명 및 일본 출신 이치로 사무차장 임명 승인
- 차기 집행위원회의 10월 중 개최 결정
- 특기 사항
  - 호주 및 말레이시아 대표 불참
  - 양국은 한국 정부 추천 신임 사무국장 임명에 대해 문서로 사전 동의 표명

ASPAC 식량가공센터 설립 전문가회의. Manila, 1973.1.16.-18.

| 73-0173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C-63 / 13 / 1~117(117p)

정부는 1973.1.16.~18. 필리핀 Rizal 개최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식품가공센터 설립을 위한 전문가회의에 김세련 주필리핀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식품가공센터 설립 제안 심의
- 설립 협정 초안 협의

2. 정부 훈령

- 필리핀이 설립을 제안한 동 센터는 식품가공 분야에서 회원국 간의 협력을 통한 식량 부족 문제 해결 및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설립을 지지함.
- 최근 정세 변화에 따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일부 회원국이 ASPAC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정부 입장을 반영함.
- 대만(구 자유중국)의 회원국 지위와 관련한 문제점 및 정세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ASPAC의 지속적인 강화, 발전을 희망하는 정부의 기본 입장 관철을 위해 신축적으로 대처함.

3. 회의 결과

- 한국, 태국, 베트남, 대만 등 다수 회원국은 동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일본, 뉴질랜드 등은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함.
- 다수 회원국의 지지에 따라 동 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아래 요지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함.
  - 역내 식량 자급자족 확보를 위한 식품가공센터 설립의 중요성을 확인함.
  - 동 센터의 설립은 역내 국민들의 보건 및 식량 사정 개선에 기여할 것임.
  - 필리핀 정부는 동 센터의 설립 초기 3년간 센터 운영에 수반되는 일정 부분의 자발적 재정 부담을 약속함.

4. 특기 사항

- 호주 및 말레이시아는 불참함.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Copenhagen(덴마크) 1973.12.14.-15.

| 73-017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63 / 15 / 1~59(59p)

덴마크 Copenhagen에서 1973.12.14.~15. 개최된 EC(구주공동체) 9개국 정상회담 결과임.

1. 주요 의제

- 역내 공동 에너지 전략 수립
- 유럽의 일체성 및 대미 관계
- 중동 문제
- 정상회담의 정기적 개최

2. 개최 경위 및 배경

- 프랑스 Pompidou 대통령은 10.31. 동 정상회담의 정기적인 개최를 제의하고, 11.20. EC 외상회담 등을 통해 사전 협의를 시행함.
- Kissinger 미 국무장관의 비밀외교로 대표되는 미 · 소련 양 강대국 중심의 국제 문제 처리, 중동 평화협상에서의 유럽 제국의 배제 등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함.

3. 회의 결과 공동선언문 요지

- 유럽의 단합 및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해 공동 입장을 취한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유럽의 일체성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함.
- 중동평화를 위한 제네바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협상 결과의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를 표명함.
- 경제통화동맹의 결성 및 국제 통화 개혁에 대한 공동 입장 수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함.
- 구주공동체의 통합은 국제 사회의 경제, 사회적 발전, 개도국의 공업화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임을 천명함.
- 에너지 위기는 선진국, 개도국을 망라한 세계 경제 전체에 대한 위협임을 인식하여 EC 에너지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정책을 수립함.

4. 유럽의 일체성에 관한 선언문 요지

- EC 9개국은 과거의 적대 관계를 청산, 극복하고 구주통합이 공동의 생존에 필수적임을 확인함.
- EC는 능동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공정한 국제 관계 수립에 기여할 것이며, 점진적으로 공동 대외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

EC 아주지역담당국장 및 실무자회의

| 73-017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63 / 16 / 1~106(106p)

EC(구주공동체) 9개국의 1973년 아주지역담당국장회의 및 실무자회의에서의 한반도 문제 관련 협의 내용임.

1. 실무자회의(2.5. 브뤼셀)

- 덴마크는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필요성을 제기함.
- 여타 8개 회원국은 한국과의 기존 우호관계 및 남북대화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북한과의 수교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함.

2. 정치위원회(2.19.~20. 브뤼셀)

- 덴마크는 종전 입장에서 후퇴하여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주장이 아니라 수립에 관한 입장을 검토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 여타 회원국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함.

3. 아주지역담당국장회의(8.29. 코펜하겐)

-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의장국인 호주의 동 위원회 해체 결의안 유엔 제출 계획에 전 회원국이 찬성함.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안에 아일랜드를 제외한 전 회원국이 찬성한바, 아일랜드는 기권 의사를 표시함.
- 대다수 회원국은 UNC(주한유엔군사령부)의 존속을 지지함.
- 유엔 총회에서 북한 측 결의안보다 한국 측 결의안을 먼저 토의함이 바람직하다는 데 합의함.
- 북한 승인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함.
  -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는 최근 북한의 통상대표단 교환 방문 제의가 있었음을 밝힘.
  - 덴마크를 제외한 전 회원국은 공식 정치활동이 배제된 사적 자격으로의 북한 인사에 대한 입국 허가 방침을 확인함.
  -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는 공산권의 한국에 대한 관계 개선 추이에 상응하여 대북한 입장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공식관계 수립을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함.
  - 네덜란드는 대북한 관계 개선의 전제로 남북한 관계 진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및 공산권의 대한국 관계 개선 등 3개 원칙을 제시함.

아랍정상회담, 제6차. Algier(알제리) 1973.11.26.-28.

| 73-017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C-63 / 17 / 1~73(73p)

제6차 아랍정상회담이 1973.11.26.~28. 알제리에서 개최됨.

1. 참가국 및 대표

- 리비아, 이라크를 제외한 16개 아랍국가 원수 또는 대표
- 아프리카 대표로 모부투 자이르 대통령, PLO(팔레스타인인민해방전선) 아라파트 대표

2. 공동성명서 요지

- 공정한 중동평화 정착을 위해 구 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아랍 점령지로부터 이스라엘의 철수 및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 회복 촉구
- PLO를 팔레스타인 주민의 유일 합법적 대표기구로 승인
- 아랍산 석유를 대이스라엘 투쟁의 정치적 무기로 사용할 것임을 천명
- 짐바브웨(구 로디지아), 남아공, 포르투갈을 전면 단유 대상국으로 추가
- 아프리카 제국과의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한 아랍기금 창설에 합의

3. 주요 결과

- 석유 금수 결의안 채택
  - 이스라엘 지원국들에 대한 전면적인 석유 금수 지속
  - 1972년 국가 세수의 4/1 이상의 감축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 석유 생산 감축 지속
- 일본 및 필리핀의 친아랍 정책으로의 전환을 감안하여 양국을 EEC(구주경제공동체)와 동일하게 1973.12월 1개월간 5%의 석유 수출 감축 대상에서 제외
- 아랍정상회담의 연례 개최, 아랍통합군사령부 설치 및 아랍군사기금 설립 합의
- 12.18. 개최 예정인 제네바 중동평화협상에서의 공동전략 수립 및 협상 결렬 시 군사적, 경제적 공동 대응 방안에 합의
- 유럽 국가들의 중동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 촉구
- 모리타니의 아랍연맹 가입 승인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회의. Addis Ababa (이디오피아)

| 73-017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C-63 / 18 / 1~59(59p)

에티오피아에서 1973년 중 개최된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주요 회의 결과임.

1. 제10차 정상회의(5.26.~29.)

❁ 참가국: 41개 전 회원국 정상 및 대표, 유엔 사무총장은 옵서버 자격 참석

❁ 회의 결과

- 아프리카 식민지 해방운동 단체에 대한 무력투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을 결의함.
- 아프리카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결의를 채택함.
- OAU 전 회원국의 대이스라엘 단교 결의안 채택은 부결되었으나, 아랍권 입장에 대한 지지 및 아랍권에 대한 개별적 지원 권고안이 채택됨.

❁ 특기 사항

- 동 정상회담 직전 제21차 각료회의 및 5.25. OAU 창설 1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됨.
- 아프리카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단일경제권 결성 문제가 제기됨.
- 리비아는 OAU 전 회원국의 대이스라엘 단교를 주장하는 한편 에티오피아의 미국 및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기지 제공을 비난하고, OAU 본부의 이전을 요구함.

2. 제8차 특별각료회의(11.19.~21.)

❁ 회의 결과

- 이스라엘의 아랍 점령 지역으로부터의 철수 요구 및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함.
- 이스라엘, 포르투갈, 남아공 및 짐바브웨(구 로디지아)에 대한 경제제재 및 석유 금수 시행을 결의하고, 동 제재 이행을 위한 7개국 위원회를 결성함.
-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 중단을 요구함.
-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비동맹 제국, 제3세계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천명함.

❁ 특기 사항

- 남아공 및 짐바브웨에 대한 경제제재 시행 결의와 관련하여 레소토 및 스와질란드는 자국 경제에 대한 타격을 우려하여 동 결의에 유보를 표명함.
- 주최국인 에티오피아는 중동 분쟁에 대한 기존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친아랍적인 태도를 표명함.

OCAM(아프리카 · 말라가시 공동기구) 정상회담. Port-Louis(모리셔스) 1973.5.3.-6.

| 73-017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C-63 / 19 / 1~39(39p)

OCAM(아프리카 · 말라가시 공동기구)의 1973년 주요 회의 결과임.

1. 정상회담(1973.5.3. Port Louis(모리셔스))

- 참가국: 15개 회원국 중 가봉, 세네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국가원수만 참석
- 특기 사항
  - 대다수 회원국의 불참으로 실질적인 토의 없이 종료됨.
  - OCAM 창설 이후 동 기구 존속 문제와 관련한 위기를 반영한 회동으로 동 기구 의장인 세네갈 Senghor 대통령은 동 위기 극복을 위해 1973.12월 다카르에서 긴급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함.

2. 긴급 외상회담(1973.8.9.~10. Dakar(세네갈))

- 참가국: 부르키나파소(구오트볼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가봉, 토고, 니제르, 르완다, 베냉(구다호메이), 코트디부아르, 모리셔스
- 회의 결과
  - Senghor 대통령은 일부 회원국들이 동 기구가 제국주의, 식민주의 추종 단체임을 주장하면서 탈퇴한데 대해 비난하고, 동 기구의 존속 필요성을 강조함.
  - 10개국의 동 기구 계속 잔류 및 동 기구 존속 방안을 중점 협의함.
  - 공동성명서 채택을 통해 11월 긴급 정상회담 개최 및 동 기구 존속에 합의함.

3. OCAM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1965.2월 구 프랑스 식민지 국가 16개국에 의해 역내 정치적 안정 및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발족함.
  - 창설 직후 모리타니의 탈퇴 이후 최근 자이르, 콩고, 카메룬, 차드, 마다가스카르 등이 탈퇴함.
- 문제점
  - OAU(아프리카단결기구)의 아프리카 대표기구로서의 위상 강화에 따라 지역 협력기구로서의 지위가 약화됨.
  - 회원국들의 이해 상충에 따른 독자적인 이익 추구, 기구 내 주도권 다툼 등이 계속되어 옴.

프랑스 · 아프리카 정상회담, 제1차. Paris, 1973.11.13.-14.

| 73-017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C-63/ 20 / 1~11(11p)

프랑스 · 아프리카 불어권 11개국 정상회담이 1973.11.13. 파리에서 개최됨.

1. 참가국

- 세네갈, 니제르, 코트디부아르, 가봉,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국가원수
- 토고, 베냉(구 다호메이), 콩고, 말리 외상

2. 주요 의제

- 아프리카 불어권 국가들의 프랑스와의 경제 협력 강화
- 아프리카 영어권 국가들에 대한 EEC(구주경제공동체) 준회원 지위 부여 가능성에 따른 불어권 제국의 권익 보호 문제
- CFA(세파프랑화)의 프랑화 연동에 따른 문제점 조정
- 불어권 제국의 독립 당시 프랑스와 체결한 제반 협정 수정과 관련한 공동 관심사 협의

3. 회담 결과

- 프랑스–불어권 제국 간의 관계 재조정 및 새로운 협력 관계 정립을 위한 협의의 계속 시행에 합의
- CFA 통용 국가들의 개발을 위한 프랑스의 협력 확대 방안 협의
- 중동 분쟁과 관련한 프랑스 및 불어권 제국의 독자적 입장 수립 결의
- 동 정상회담의 연1회 정례화 개최 합의

4. 특기 사항

- 차드는 동 정상회담 개최 준비 절차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불참함.
- 동 정상회담 직후 세네갈,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및 베냉 4국은 서부아프리카 개발은행 창설 협정에 서명함.

신생독립국 승인 - 바하마

| 73-018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63 / 21 / 1~51(51p)

1. 주일대사는 1973.6.22. 영국 자치령인 바하마가 1973.7.10.자로 독립 예정임을 보고함.

2. 외무부는 1973.6.25. 주일대사에게 신생 바하마의 정식 국명, 국가원수, 영연방과의 관계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한바, 주일대사는 6.27. 아래 보고함.

- 정식 국명: The Commonwealth of the Bahamas(바하마연방국)
- 국가원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 영연방과의 관계
  - 영연방의 일원으로 독립 이후 유엔 등 국제기구에 가입, 친서방 정책을 택할 것으로 예상
  - 대내 정세는 안정 상태 지속 전망

3. 외무부는 1973.7.5. 총무처에 바하마연방국의 독립과 관련하여 아래 제안 이유에 따른 동국의 승인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요청함.

- 바하마는 1973.7.10. 영연방의 일원으로 신생 독립국가를 선포함.
- 독립 후 유엔, 미주기구 등 국제기구 가입이 예상되며, 친서방 정책을 표방할 것으로 전망됨.
- 승인을 통해 한국과 제반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동국 및 카리브 제국과의 협력관계 및 교역 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4. 정부는 1973.7.11. 외무부장관 명의로 아래 내용의 승인 통고문을 Pindling 수상에게 타전함.

-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바하마연방국에 대한 승인을 전달함.
- 국가의 성공과 번영을 기원하며, 향후 양국 외교관계가 조속히 수립되기를 희망함.

5. 바하마 수상은 1973.7.24. 외무부장관에게 독립 축하 및 우의를 표명한 메시지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전문을 회신함.

신정부 승인 - 칠레

| 73-018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63 / 22 / 1~88(88p)

1. 외무부는 1973.9.12. 및 9.14. 주칠레대사대리, 주미대사, 주페루대사 및 주아르헨티나대사에게 칠레 쿠데타 발발 및 Pinochet 장군의 정권 장악 관련 사태 동향 및 아래 관련 사항에 대해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 주재국 정부의 칠레 신정부 승인 동향 및 전망
- 칠레 군사위원회 및 군사정부의 성격, 대외정책
- 치안 상태
- 북한의 칠레 사태 관련 관여 동향
- IPU(국제의원연맹) 칠레 개최 여부

2. 외무부는 1973.9.17. 대통령에게 칠레 쿠데타 사태 관련 아래 사항을 보고하는 한편 칠레 신정부의 승인에 관한 국무회의 보고 자료를 총무처로 송부함.

- Allende 정권 집권 이전 및 이후 칠레 정세
- 쿠데타 발발 배경, 성격, 혁명위원회 및 신내각 구성, 각국의 반응 및 승인 동향, 향후 전망
- 한국과의 관계 및 향후 대책

3. 외무부는 아래 요지의 9.12.자 칠레 외무성 공한을 1973.9.21. 접수함.

- Pinochet 장군 등으로 구성된 혁명위원회가 공화국 정부 업무를 관장함.
- 동 혁명위원회는 전통적인 대외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국제 의무를 준수할 예정임.
- 칠레는 한국과의 우호관계 증진을 희망함.

4. 외무부는 1973.9.24. 주칠레대사대리에게 정부의 칠레 신정부 승인 결정을 공한을 통해 주재국에 통보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9.28. 동 사실을 전 재외공관장에게 통보함.

동백림 사건. 전14권.
V.1 훈령 및 보고 - 독일 관련자, 1967

| 73-0182 |

생산연도	1967-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Re-23 / 1 / 1~319(319p)

동백림 사건과 관련한 1967.6~12월 중 주독일대사의 보고 및 외무부의 지시 내용임.

1. 독일 언론의 재독 한국인 귀국 또는 실종에 관한 보도 및 대사관 조치 사항 보고(6월)

- ❁ 외무부는 대사관 관계관의 적극적인 협조 지시

2. 독일 외무성의 사실관계 확인 및 한국 정부의 개입 여부 등에 관한 질의 내용 보고(7.6.)

- ❁ 독일에 대한 주권 침해 및 독일 국법 저촉 여부 등 관심 표명
- ❁ 관련 공관 직원의 소환

3. 외무부의 전 재외공관장에 대한 동 사건 관련 정부 해명 내용 통보(7.10.)

4. 외무부의 동 사건 관련 주재국에 대한 아래 내용 해명 지시(7.12.)

- ❁ 귀국자(17명) 명단
- ❁ 현 조사 상황
- ❁ 전원 자의에 의한 귀국 실 등

5. 외무부의 주독일대사에 대한 동 사건과 무관한 석방자 현황 통보(7.12.)

6. 외무부의 대사관 참사관, 노무관 등 관계관 3명에 대한 귀국 지시(7.14.)

7. 주독일대사의 공관원 전원 소환 문제 관련 외무성과의 협의 내용 보고(7.24.)

8. 외무부의 주독일대사에 대한 독일 측 주권 침해 문의에 대한 정부 각서 전달 지시(7.24.)

9. 외무부의 주독일대사에 대한 대사관 피신 한국인에 대한 처리 지침 통보(8.4.)

- ❁ 적절한 장소로의 퇴거 조치

10. 주독일대사의 이임 인사 겸 동 사건 처리 관련 협의 내용 보고(8.16.)

11. 외무부의 주독일대사에 대한 구속자 추가 석방에 관한 독일 측 입장 보고 지시(8.22.)

12. 주독일대사의 독일 외무성의 윤[redacted] 등 추가 석방 희망 의사 표명 보고(8.30.)

- 외무부의 주독일대사에 대한 관련 정부 입장 전달 지시(9.7.)

13. 주독일대사대리의 Schuetz 차관 방한 문제 협의 결과 보고(9.5.)

14. 외무부의 주독일대사에 대한 브란트 외상의 동 사건과 한국에 대한 원조 중단 연계 발언 경위 보고 지시(9.9.)

- 주독일대사의 관련 사실 보고(9.10. 및 10.23.)

15. 외무부의 주독일대사에 대한 동 사건 피고인 및 잔여자 공판 개정 상황 통보(11.1.)

16. 주독일대사의 외무성의 관련자 추가 석방 요구 각서 수교 사실 보고(11.7.)

- 외무부의 주독일대사에 대한 2~3명 석방 조치에 관한 정부 각서 전달 지시(11.23.)

17. 주독일대사의 안호상 특사 독일 방문 활동 보고(12.12.)

18. 주독일대사의 구형 공판 이후 독일 내 여론 동향 및 독일 정부의 입장에 관한 관찰 등 보고(12.12.)

19. 외무부는 주독일대사에게 독일 정부에 대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일 언론의 논조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과 우려를 전달하고, 독일 언론을 자극시킬 우려가 있는 정부 측 논평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토록 지시(12.16.)

- 주독일대사의 관련 외무성 반응 보고(12.19.)

20. 주독일대사의 뤼브케 대통령 면담 시 동 대통령 언급 요지 보고(12.18.)

- 양국 간 현안 문제의 조속한 우호적 해결을 위한 한국 대통령의 노력 요청
- 관련 피고인 중 사형 선고자에 대한 특별 고려 요망

21. 독일 대통령의 요청과 관련한 외무부의 특별 고려 검토 건의 요지(12.26.)

- 양국은 공히 분단된 국가로 양국의 입장의 차이를 독일 측이 이해
- 한국은 동족상잔 비극을 경험함에 따라 공산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유지
- 정부는 원만한 현안 문제 수습을 위해 최선 노력 중
- 현재 동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으로 재판에 영향을 주는 관여 유보
- 양국 간의 전통적인 유대 및 우호관계를 감안, 동 대통령의 요청에 각별히 유념하여 재판 종료 후 필요한 고려 예정

22. 주독일대사의 독일 정부의 현안 및 경제협력 문제 연계 방침에 대한 대처 방향 보고(12.26.)

동백림 사건. 전14권.
V.2 훈령 및 보고-독일 관련자, 1968

| 73-0183 |

생산연도	1967-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Re-23 / 2 / 1~398(398p)

동백림 사건 관련 1968년 중 주독일대사의 보고 및 외무부의 지시 내용임.

1. 외무부, 국제적십자사 관계관의 방한 활동 결과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1.5.)
- ❁ 동백림 사건 관련 구속자 면접 결과 등

2. 주독일대사, Lubke 독일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회신 방침 문의(1.6.)
- ❁ 외무부, 박 대통령의 회신 내용 전달 지시(1.13.)

3. 주독일대사, Ferring 주한 독일대사의 귀국 동정 보고(2.1.)

4. 주독일대사, 집행유예 선고자의 독일 귀환 문제 협의 결과 보고(2.2.)
- ❁ 외무부, 집행유예 선고자 처리 상황 통보(2~3월)

5. 외무부, 구미국장과 주한 독일대사 간의 동백림 사건 재판 상황 및 영남 화력발전소 차관 공여 문제 협의 결과 통보(3.4.)

6. 주독일대사, 독일 대통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친서 전달 보고(4.2.)

7. 외무부, 주독일대사에게 중앙정보부에 의해 소환된 한국인 전원의 조속한 독일 귀환을 촉구하는 독일 측 각서 내용 통보(4.6.)

8. 외무부, 동백림 사건 처리 방안 협의를 위한 주독일대사의 일시 귀국 허가(4.30.)

9. 주독일대사, 정부의 영남 화력발전소 차관 거부 보도 내용 보고(5.17.)
- ❁ 외무부, 주독일대사에게 영남 화력발전소 차관의 제3국 전환 관련 정부 입장 회신(6.7.)

10. 주독일대사, 집행유예자 독일 귀환 및 양국 간 경협 차관 현안 문제 해결에 관한 건의(7.1.)

11. 주독일대사, 동백림 사건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대한 독일 정부 반응 보고(7.30.)

12. 외무부, 주독일대사에게 법원 재판 결과 및 상업차관 관련 구미국장과 주한 독일대사 간 면담 내용 통보(8.26.)

13. 외무부, 주한 독일대사의 대통령 면담 요청 관련 독일 측 입장 보고 지시(9.9.)

14. 주독일대사, 영남 화력발전소 차관 승인 촉구를 위한 독일 당국자 협의 결과 보고(10.21.)

15. 주독일대사, 독일 외무차관의 동백림 사건 관련 최근 진전 상황 문의 보고(11.23.)

16. 외무부, 독일 시위 군중의 대사관 침입 난동 사건에 대한 대처 방안 지시(12.6.)

- 주독일대사, 독일 외무성의 동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 구상서 접수 보고(12.6.)
- 외무차관의 관련 항의에 대해 주한 독일대사 유감 표명 및 재발 방지 약속(12.7.)
- 외무부, 대통령에게 동 사건 경위, 외무부 및 독일 정부의 조치, 건의 사항 등 보고(12.9.)

17. 주독일대사, 동백림 사건 등 한 · 독 관계 관련 독일 의회 동향 보고(12.13.)

동백림 사건. 전14권. V.3 경위보고서, 1967-68

| 73-0184 |

생산연도	1967-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Re-23 / 3 / 1~178(178p)

동백림 사건 관련 1967~68년 중 외무부의 조치 관련 사항임.

1. 외무부는 1967년 중 5차에 걸쳐 대통령에게 동백림 사건에 관한 독일, 프랑스 등 관계국의 반응 및 외무부 조치 사항 등에 관해 보고함. (7.10., 7.14., 7.28., 8.10. 및 10.26.)

2. 주독일대사는 1967.7.19. 담당 서기관에 대한 사후 처리에 관해 아래 보고함.

- ❁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의 처리 경위, 독일 정부의 입장
- ❁ 향후 외교적 수습 관련 문제점 및 건의 사항
  - 주권 침해, 전원 귀환, 기타 관련 직원, 외교적 분규 종결 후의 조치 등

3. 외무부는 국회 외무위원회 측 요청에 따라 1967.12.28. 동백림 사건에 관한 아래 자료를 송부함.

- ❁ 경위, 개요, 한 · 독 양국 간 교섭 경과, 독일 정부의 입장, 한 · 프랑스 양국 간 교섭 경위
- ❁ 독일 내 여론 동향 및 분석
- ❁ 문제점 및 전망

4. 외무부는 1968.2월 동백림 사건이 한 · 독일 간 아래 경협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동 해결을 위한 독일 정부와의 외교적 교섭을 시행함.

- ❁ 부산 직업학교 설립
-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건은행 도입 차관
- ❁ 영남 화력발전소 2호 차관
- ❁ 낙농 개발을 위한 농업센터 원조

5. 외무부는 1968년 중 동백림 사건에 관해 대통령에게 아래 보고함.

- ❁ 독일 정부의 최근 입장 및 독일 내 여론 동향, 당면 문제 및 외무부의 조치 사항(3.26.)
- ❁ 제2심 구형 공판 이후의 독일 정부 입장(4.3.)

6. 외무부는 1968.4.25. 법무부에 동백림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독일 양국 간 외교적 분규가 아직 미결 상태로 특히 동 사건 항소심 구형 및 선고 공판 이후 독일 측 입장이 상당히 강경해지고 있음을 통보하고, 관련 의견을 문의함.

동백림 사건. 전14권.
V.4 프랑스 · 스위스 관련자, 1967-71

| 73-0185 |

생산연도	1967-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Re-23 / 4 / 1~127(127p)

동백림 사건 관련 1967~71년 중 프랑스, 오스트리아, 제네바 및 스위스 주재공관 보고 및 외무부의 조치 내용임.

1. 외무부는 1967.7.5. 주프랑스대사에게 동백림 사건 관련 프랑스로부터의 귀국자 명단을 통보하고 동인들의 자의에 의한 귀국 사실 등을 주재국 외무성에 해명하도록 지시한바, 주프랑스대사는 7.6. 프랑스 수사 당국이 독자적으로 수사 중이며, 동 결과 및 사건 전모 파악 시까지 입장 표명을 유보한다는 외무성 입장을 보고함.

2. 외무부는 1967.7.19. 주프랑스대사에게 동 사건 관련 향후 예상되는 프랑스 정부의 조치, 외무성의 입장 및 대사관 직원의 본국 귀국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3. 주프랑스대사는 1967.7.24. 한국 학생의 귀국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항의 각서와 관련하여 향후 주재국 정부의 예상 조치를 보고하고 대책을 건의함.

4. 외무부는 1967.8.6. 주프랑스대사에게 한국 측 회신각서 전달에 대한 주재국의 공식 반응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함.

5. 외무부는 1967.8.23. 주프랑스대사에게 주재국 내 여론 순화 및 교포 선도 등을 위한 공보활동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6. 주프랑스대사는 1967.9.20. 네덜란드 거주 유학생 3명의 실종 사건에 대한 해명을 위한 대사관 관계관의 9.15.~18. 네덜란드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함.

7. 주프랑스대사는 1967.10.23. 국제적십자사의 동 사건 혐의자에 대한 면담 요청 관련 입장 회신을 건의한바, 외무부는 10.27. 한국 정부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회신함.

8. 외무부는 1967.12.26. 주프랑스대사에게 동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방면을 고려할 것이라는 정부 방침을 회신함.

9. 주프랑스대사는 1968.1.10. 국제적십자사 담당관의 서울 출장 및 동 사건 구속자 면담 결과 등에 관한 동 기구의 1967.12.21.자 서한에서 구속자들의 양호한 건강상태 등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고함.

10. 외무부는 1968년 동 사건 아래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에 따른 조치 상황 등을 주프랑스대사에게 통보함.
- ❁ 선고 유예자 정[redacted]의 출국 상황(1968.7.8.)
- ❁ 형 확정자 이[redacted]의 재수감 상황(1968.8.23.)

11. 주프랑스대사는 1969.3.4. 주재국 정부가 이[redacted]의 형 집행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한편 의회 등에서 한국 정부의 석방 조치를 요망하고 있음을 보고한바, 외무부는 3.7. 주프랑스대사에게 이[redacted]가 형 집행 정지 처분으로 석방되었다는 사실을 주재국 정부에 통보하도록 지시함.

12. 외무부는 1971.1.28. 주프랑스대사에게 동백림 사건 관련자 중 3인을 1970.12.25.자로 형 집행 면제 등 특별사면으로 석방하였음을 통보함.

13.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67.7.11. 주재국 경찰 당국이 한국 유학생 실종자에 관해 조사 중임을 보고함.

14. 외무부는 1967.7.20. 주제네바대사에게 ILO(국제노동기구) 직원 최[redacted]이 북한의 간첩 혐의자라는 사실을 동 기구에 통보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7.20. 주스위스대사에게 동인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연장을 불허하도록 지시함.

15. 주스위스대사는 1967.7.21. 주재국에 대한 통보 시 최[redacted]이 추방될 경우에 대한 지침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아래와 같이 지시함.
- ❁ 동인의 추방 시에도 지침대로 주재국 당국에 통보하도록 7.24. 지시함.
- ❁ 최[redacted] 본인에게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 불허되었음을 통보하도록 1968.5.31. 지시함.

동백림 사건. 전14권.
V.5 대법원 판결문, 1968-69

| 73-0186 |

생산연도	1967-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Re-23 / 5 / 1~229(229p)

1. 동백림 사건과 관련한 1968.7.30. 대법원(제3부)의 판결 내용임.

❁ 사건 내용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간첩 및 동 미수, 외국환관리법 위반

❁ 대상 피고인
- 정[redacted], 윤[redacted] 등 21명 (상고인: 본인 3명, 피고인 4명의 검사, 잔여 14명은 검사와 본인 동시 상고)

❁ 주문
- 박[redacted] 등 5명에 대한 상고 기각
- 검사의 피고인 18명에 대한 상고 기각
- 정[redacted] 등 12명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 판결 근거
- 간첩죄는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국가기밀 탐지, 수집행위 시 적용
- 국내 귀국 시 동지 포섭, 지하당 조직 등 구체적 지령을 받고 귀국, 단 입국 당시 지령사항 실천의 의사와 목적이 있을 경우
- 자수는 범인이 체포되기 전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 북한 공작원,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등으로부터 지령에 따른 행위
-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금전 수수, 회합, 통신의 범행을 자행한 경우
- 독일로부터 한국으로의 연행 시 독일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합헌 인정
- 범죄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범죄 사실을 인정한 사항에 대해 파기
- 평양 왕래 등 각종 정황증거 참고

2. 동백림 사건과 관련한 1969.3.31. 대법원(제2부)의 판결 내용임.

❁ 사건 내용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간첩 및 동 미수, 외국환관리법 위반

❁ 대상 피고인
- 정[redacted] 등 8명

❁ 주문
- 검사의 피고인 조[redacted] 등 6명에 대한 상고 기각
- 피고인 정[redacted] 등 4명에 대한 상고 기각
- 피고인 강[redacted] 등 2명에 대한 원심 및 제1심 판결 파기
- 피고인 천[redacted] 등 3명에 대한 자격 정지 7~10년

❁ 판결 근거는 상기 제3부 내용과 유사

3. 상기 판결 내용에 대한 비공식 영문 번역문이 첨부됨.

동백림 사건. 전14권. V.6 재항소심 판결문, 1968

| 73-0187 |

생산연도	1967-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Re-23 / 6 / 1~582(582p)

1. 동백림 사건과 관련한 1968.12.5. 서울고등법원의 재항소심 판결 내용임.

❁ 사건 내용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간첩, 외국환관리법 위반

❁ 피고인 및 항소인

- 피고인 정[redacted] 등 12명
- 항소인은 검사 3명 및 피고인

❁ 주문

- 피고인 천[redacted] 등 12명에 대한 유죄 부분 파기
- 피고인 정[redacted] 등 2명에 대한 사형, 피고인 조[redacted]에 대한 무기징역, 피고인 이[redacted] 등 9명에 대한 징역 3년6월~15년
- 원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은 징역형에 각각 산입
- 서울지검 압수 물품 중 일부 몰수
- 피고인 정[redacted] 등 일부인의 공소 사실에 대한 무죄 인정

❁ 주요 판결 근거

-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전반적으로 검토
- 북한과의 연락 거점 구축, 공작금 등 각종 금품 수수
- 북한 공작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이를 수행
-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학원에 침투
- 피고인의 자백 외에 평양 방문, 공작원 접촉 및 북한사상 교육 이수 등 각종 보강 증거
-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각종 간첩교육 이수
- 한국 유학생에 대한 포섭, 평화통일 방안 선전

2. 외무부는 1969.5월 주일독대사에게 상기 동백림 사건 재항소심 판결문 영문 비공식 번역문을 송부함.

동백림 사건. 전14권.
V.7 관련자 귀환문제 및 재판관련 사항, 1967-70

| 73-0188 |

생산연도	1967-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Re-23 / 7 / 1~192(192p)

동백림 사건 관련자들의 1967~70년 중 독일, 프랑스 귀환 문제 처리 및 재판 관련 외무부의 조치 내용임.

1. 사건 관련자 귀환 문제

- ❋ 주한 독일, 프랑스대사는 외무부에 재판에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 조속한 귀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수시로 요청함.
- ❋ 외무부는 중앙정보부 및 법무부에 양국과의 우호관계를 감안하여 동인들의 귀환에 호의적 고려가 필요함을 통보하고, 관련 의견을 문의함.
  - 중앙정보부는 1968.5.23. 동 사건 처리 방안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회신하는 한편 개별 대상자의 출국 여부에 대해 수시로 회신함.
  - 법무부는 대상자 중 자의에 따른 귀국 여부, 북한 공작원과의 재차 접선 가능성, 국가 위신 실추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해외여행 허가 여부를 회신함.
- ❋ 외무부는 법무부에 해외여행 허가자에 대한 여행 허가를 요청함.
- ❋ 외무부는 상기 관련 사실을 주독일, 주프랑스대사에게 수시 통보함.

2. 동백림 사건 재판 관련 사항

- ❋ 외무부는 1967.11.9. 동 재판이 개시된 이래 주독일, 주프랑스대사에게 재판 진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수시 통보함.
  - 사실심리, 피고자 진술 내용 등
  -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간첩죄 등 위반 선고(1967.12.13.)
  - 항소재판 진행 사항 및 선고(1968.4.17.)
  - 상고재판 진행 사항 및 선고(7.30.)
  - 재항소심 선고(12.5.)
- ❋ 주독일대사는 12.5. 상기 재판 결과에 대한 주재국의 반응을 보고함.
- ❋ 외무부는 1969.8.21. 주독일대사에게 8.15. 특사에 따른 동백림 사건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형 내용을 통보함.
- ❋ 외무부는 1970.8.27. 주독일, 주프랑스대사에게 8.15. 특사에 따른 사면 내용을 공식 통보함.

동백림 사건. 전14권.
V.8 국내 조치, 1967-69

| 73-0189 |

생산연도	1967-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Re-23 / 8 / 1~243(243p)

동백림 사건과 관련한 1967~69년 중 외무부의 관련국들과의 협의 등 조치 내용임.

1. 주한 독일대사, 외무부에 구금 조사 중인 독일인에 대한 경위 및 증거자료 요청(1967.7.7.)

2. 주한 독일대사, 외무부에 독일 귀환자 현황 요청(7.14.)

3. 외무부차관, 주한 프랑스대사 면담 시 프랑스 정부의 항의각서 처리 방안 협의(7.25.)

4. 외무부, 주독일대사에게 독일 외무성 관계자의 재판 참관을 위한 방한설 관련 파악 지시(11.13.)

5. 외무부, 주제네바대사의 국제적십자사의 구금자 면담 여부 문의에 관한 10.27.자 보고에 대해 회신(11.23.)

6. 외무부, 주독일 · 프랑스 · 제네바대사에게 국제적십자사 대표의 관련자 면담 기록 송부(12.5.)

7. 외무부 정보문화국, 동백림 사건에 관한 북한의 왜곡 보도 내용 영문 작성(12.20.)

8. 국제적십자 위원회 대표, 방한 중 면담 결과 관련 서한을 외무부장관 앞으로 발송(1968.1.4.)

9. 외무부, 주독일대사에게 외무부의 주한 각국 공관 및 국제기구 접촉 결과 송부(1.8.)

10. 주한 독일대사, 외무부 구미국장 면담 및 독일 정부의 한국에 대한 개발원조 관련 협의(2.29.)

11. 외무부차관, 주한 독일대사와 독일 정부의 영남 화력발전소 협정 추진 문제 협의(4.3.)

12. 중앙정보부, 동백림 사건 관련 외교적 분규 처리 방안에 관한 실무자회의 개최를 통해 아래 사항 협의(5.1.)

- 현황 설명, 집행유예자 처리 문제, 독일 정부의 전원 귀환 요구에 대한 대책
- 향후 사법처리 전망

13. 주독일대사, 브란트 독일 외상과의 동백림 사건 관련 협의 내용 보고(5.6.)

14. 주독일 김영주 대사 일시 귀국, 동백림 사건 관련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 아래 내용 구두 보고(5.11. 및 5.13.)

- 독일의 최근 국내 정치 동향, 동백림 사건 여파 수습을 위한 독일과의 교섭 경과
- 동 문제에 관한 독일 여론 동향 및 향후 전망

15. 주한 독일대사, 외무부장관 면담 시 동 사건에 대한 조속한 재판 종결 희망 표명(9.10.)

동백림 사건. 전14권. V.9 언론보도, 1967-69

| 73-0190 |

생산연도	1967-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Re-24 / 1 / 1~495(495p)

동백림 사건 관련 1967~69년 중 국내・외 언론 보도 동향임.

1. 국내 언론 보도

❁ 일부 언론은 동백림 사건 선고 결과 관련 주요 사설을 통해 판결에 비판적인 기사 게재(1967.12월 및 1968.7월)

2. 해외 언론 보도

❁ 주독일대사, 주재국 언론의 동백림 사건 관련 아래 각종 보도 내용 보고(1967.6월 이후)
- 독일 정부, 주독일 한국대사관 외교관 3명 소환 요구 및 동인들의 귀국(1967.7월)
- 독일 연방 대검찰청의 수사 결과 중간 발표(8월)
- 주독일대사 교체 및 김영주 차관의 신임 주독일대사 내정(8월)
- 한국 중앙정보부장과의 인터뷰 및 특집 기사(8월)
- 한국의 재판 과정 및 선고 결과, 주재국 외무성 반응 등(12월)
- 외무부, 주독일대사에게 독일 언론의 한국 사법부에 대한 비판에 적절히 대응토록 지시(12.15.)
- 주한 독일대사의 일시 귀국 보고(1968.1월)
- 작곡가 윤[redacted] 수감 생활 등(2월)
- 동백림 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3월)
- 독일 정부,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라 한국과의 관계 재검토(4월)
- 한국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 일부 인사의 사형선고 파기(7월)
- 독일 정부, 주한 독일대사 일시 소환(12월)
- 브란트 독일 외상, 김영주 대사 초치를 통한 협의(12월)
- 윤[redacted] 등 석방(1969.2~3월)
- 박충훈 부총리의 독일 공식 방문(4월)
- 윤[redacted] 독일 귀환(5월)
- 사형언도자, 8.15. 특사로 종신형으로 감형(8월)

❁ 주영국대사, 주재국 언론의 서독 한국 유학생 행방불명 등 보도 내용 보고(1967.7월)

❁ 주프랑스대사, 주재국 언론 보도 보고
- 한국 유학생 행방불명 및 한국과의 외교관계 단절 가능성 제기(1967.7월)
- 관련자 3명 사형 언도(1968.4월) 및 대법원 판결 내용(1969.4월)

❁ 주제네바대사, 재독 한국인 실종사건 보도 보고(1967.7월)

❁ 주미국대사, 동백림 사건 관련 판결 결과 보도 보고(1968.12월)

동백림 사건. 전14권. V.10 진정서, 1967-70

| 73-0191 |

생산연도	1967-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Re-24 / 2 / 1~249(249p)

동백림 사건 관련자와 관련한 1967~70년 중 진정서 및 외무부의 조치 내용임.

1. 강[redacted] 관련 주독일대사 보고 및 외무부 조치 내용

- 강[redacted]의 처에 의한 서신왕래 허가 진정서 접수(1967.10.17.)
- 독일 여성단체의 강[redacted] 처의 가족재회 호소 진정서 접수(1968.6.1.)
- 독일 하원의원의 선처 호소 서한 접수(1969.3.28.)
- 외무부, 주독일대사에게 강[redacted] 처의 재입국허가 통보(1970.9.11.)
- 법무부에 특사로 석방된 강[redacted]의 독일 출국 허가 관련 1970.10.15.자 외무부 의견 문의에 대해 법무부 허가 회신(11.5.)

2. 이[redacted] 관련 주프랑스대사 보고(1967.10.18.)

- 프랑스 인권옹호연맹의 이[redacted] 출국 경위 및 피의자 처우 문제 관련 항의서 접수

3. 윤[redacted] 관련 주독일대사 보고 및 외무부 조치 내용

- 윤[redacted] 석방 호소 진정서 접수(1967.10.20.)
- 외무부, 윤[redacted]에 대한 독일 함부르크 자유예술 아카데미 진정서 접수 관련 대통령 보고(11.2.)
- 대통령비서실, 판결 후 정상 참작 고려 예정임을 외무장관 명의로 회신토록 지시(11.18.)
- 국제사면위원회(AI) 및 Bonn 대학 총학생회의 청원서 접수(12.9.)
- 전세계 음악가 181명 서명 진정 광고 게재(1968.3.29.)
- 뉘른베르크시장의 대통령 앞 선처 호소 서한 접수(1969.1.17.)

4. 최[redacted] 관련 주독일대사 보고(1967.10.26.)

- 기센대학교 총장의 항의 서한 접수 및 대사관의 회신 내용

5. 정[redacted] 관련 공관 보고

- 주독일대사, 프랑크푸르트 시민 등의 탄원서 접수(1968.1.19.)
- 주프랑스대사, 국제사면위원회의 관대한 처분 호소 서한 접수(1968.8.7.)
- 주독일대사, 프랑크푸르트대학 교수부의 대통령 앞 선처 호소 서한 접수(1969.1.17.)

6. 정[redacted] 관련 주프랑스대사 보고(1969.5.12.)

- 프랑스 문교부장관의 정[redacted] 등 구제 탄원서 접수

7. 공[redacted] 관련 외무부 조치 내용(1969.12.8.)

❁ 주한 오스트리아대사관의 1969.11.22. 공[redacted]의 특사 요청 청원서에 대해 8.15. 특별감형 사실 등 회신

8. 동백림 사건 전반 관련 주독일대사 보고

❁ 각종 진정서 등 관련 서한 종합 보고(1968.11.29. 및 12.9.)

동백림 사건. 전14권. V.11 친서, 1967-69

| 73-0192 |

생산연도	1967-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Re-24 / 3 / 1~186(186p)

동백림 사건 관련 1967~69년 중 외교 문서, 친서 접수 및 외무부의 관련 조치 내용임.

1. 주독일대사는 자유 의사에 의한 한국인의 귀국 사실 설명에 불만을 표하는 독일 정부의 1967.7.6.자 항의 각서 내용을 보고한바, 외무부는 7.8. 주재국에 대해 적절한 유감을 표명하도록 지시함.

2. 주독일대사는 1967.7.13. 독일 외무성의 대사관 직원 3명 추방 요구 각서 접수를 보고한바, 외무부는 독일 측 각서에 대해 아래 내용을 회신토록 지시함.

- ❋ 유감 표명 및 3명의 대사관 직원 출국 조치
- ❋ 관련자의 독일 귀환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경주 및 피의자 조사 결과 계속 제공 의사 표명

3. 주프랑스대사는 1967.7.21. 주재국 외무성의 한국 학생 귀국 사건에 관한 항의 각서 접수를 보고한바, 외무부는 7.26. 동 사건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위험성 및 프랑스의 주권 침해 의도가 없음을 강조하는 내용의 회신을 전달토록 지시함.

4. 주독일대사는 1967.11.7. 독일 외무차관의 귀국 한국인에 대한 추가 석방 및 조속한 독일 귀환을 촉구하는 각서 접수를 보고한바, 외무부는 11.20. 재판 종료 후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임을 회신토록 지시함.

5. 주한 독일대사는 1968.2.14. 뤼브케 대통령의 사형선고자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박정희 대통령 앞 친서를 전달해 온바, 외무부는 3.21. 주독일대사에게 양국 간 관계를 고려하여 재판 종료 후 가능한 방법을 고려하겠다는 대통령의 회신을 전달토록 지시함.

6. 외무부는 1968.5.15. 주독일대사에게 주재국 하원의장에 대해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개입이 어려움을 설명하는 한편 동 사건과 여타 양국 간 경제협력 사업의 연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의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도록 지시한바, 하원의장은 8.16.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내용의 회신을 송부해 옴.

7. 뤼브케 독일 대통령은 1969.1.10. 프랑크 특사를 통해 박 대통령 앞 친서를 전달해 온바, 외무부는 1.31. 주독일대사에게 아래 요지의 박 대통령의 회신 친서 및 동일한 내용의 독일 하원의장 앞 친서 전달을 지시함.

- ❋ 특사와 양국 간 공동 관심사 및 상호 이익을 위한 제반 사항을 협의함.
- ❋ 양국 간 기존 우호 유대 관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할 용의를 표명함.

동백림 사건. 전14권.
V.12 독일특사 방한, 1969.1.13.-18.

| 73-0193 |

생산연도	1967-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Re-24 / 4 / 1~396(396p)

주독일대사는 1968.12.12. 브란트 외상이 양국 간 관심사에 관한 토의를 위해 전권을 가진 특사를 조속히 파견할 계획임을 언급했음을 보고하고, 특사 파견 수용을 건의한바, 외무부는 12.14. 동 특사 파견을 환영한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하도록 지시함.

1. 주독일대사는 1968.12.21. 독일 외무차관이 아래 특사 파견 계획을 통보했음을 보고함.

- 특사: Frank 외무성 정치 제1국장
- 일자: 1969.1.11. Bonn 출발 예정
- 뤼브케 독일 대통령의 친서 휴대 건의 중

2. 외무부는 1968.12.24. 아래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함.

- 정부는 최근 독일 정부가 제의한 바에 따라 독일 정부 특사를 접수 예정임.
- 동 특사는 1969년 초 방한하여 양국 간 공동 관심사에 관해 협의할 예정임.

3. 외무부는 독일 측 의견을 반영하여 동 특사의 1969.1.13.~18. 방한 일정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 대통령 접견(1.14.)
- 국무총리, 부총리, 외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중앙정보부장 예방
- 안보 정세 브리핑, 판문점 방문

4. 외무부는 1969.1.9. 대통령에게 독일 특사 방한 관련 아래와 같이 건의함.

- 한국의 안보 상황과 법체계 설명,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도 노력을 경주 중, 동 문제와 경제협력 문제의 분리 필요
- 재판의 조속한 완결을 사법부에 요청, 한 · 독일 간의 우의와 동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특별사면 조치 약속 (관련자 총 17명 중 독일 귀환자 또는 석방에서 제외된 6명 대상)

5. 동 특사의 외무부장관 면담(1969.1.14. 및 1.15.) 요지임.

- 특사 언급 요지
  - 재판 종결 후 한국 측의 관대한 조치 요청, 1969년 말 이전 동 문제 해결 요망
  - 윤[redacted]에 대한 특별 고려 요청
  - 브란트 외상의 1969.2월 방한 검토 중
- 외무부장관 언급 요지
  - 주독일대사관 난입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
  - 한국의 안보 상황 설명
  - 독일 측 희망을 사법부에 전달,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확인

6. 외무부는 1969.1.17. 대통령에게 독일 특사와의 교섭 결과 및 현안 타결에 관해 아래 보고함.

❁ 외무부장관 발언 요지

- 대법원 계류 중인 재판의 조속한 종결을 법원에 요청
- 현재 복역 중인 자에 대한 조속한 석방 및 독일 귀환 조치
- 재판 계류 중인 자에 대해서는 조속한 석방을 위한 노력 확인

❁ 독일 특사 발언 요지

- 독일 정부는 경제협력 사업을 포함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시행
- 독일 정부의 북한 불승인 및 대외차관 보증 불허 방침 확인
- 한국의 안보 정세 이해, 독일 내 한국인의 공산주의 활동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
- 독일 귀환자의 북한 입국 방지를 위한 노력 경주

❁ 양국 공동발표문(1.18.) 요지

- 진지하고 솔직한 회담 결과에 양측이 만족
- 양국 간 우호관계 강화 및 증진에 합의
- 독일 측은 독일 외상 방한 초청을 수락

7. 외무부는 1969.1.21. 대통령에게 독일 특사의 방한 결과를 아래 보고함.

❁ 특사 방한 중 협의를 통해 양국 간 현안 외교 분규를 일괄 타결

❁ 한 · 독 양국이 취해야 할 향후 조치 방안 건의

❁ 양국 간 합의 사항은 구두발언문(Oral Statement) 형식으로 1.17. 상호 교환

❁ 브란트 외상의 아시아 방문 계획이 신병으로 인해 취소, 방한 문제는 추후 논의 예정

동백림 사건. 전14권. V.13 기타, 1967-68

| 73-0194 |

생산연도	1967-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Re-24 / 5 / 1~329(329p)

동백림 사건 관련 1967~68년 중 외무부의 조치 사항임.

1. 동백림 사건에 관해 1967.7.8. 담화문을 발표함.

2. 법무부에 1967.7.14. 아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회함.

- 외국 영토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설득 방식을 통한 귀국 조치가 국제법 및 국제 관례에 상치되는지 여부
- 외국 거주 교포의 범죄 사실에 따른 소환 시 형사소송법상 국내적으로 취할 조치

3. 공보부 및 법무부에 1968.3.11. 동백림 사건 항소심 3.13. 개정 일정과 관련하여 비판적 논조의 언론에 대한 순화를 요청함.

4. 법무부에 1968.11.29.,12.2. 및 12.10. 동백림 사건 재항소심과 동 구형에 따른 독일 정부의 입장 및 동향에 관한 주독일대사 보고 내용을 참고로 송부함.

5. 법무부에 1968.12.11. 독일 측이 동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망하고 있음에 따라 한 · 독 외교 분규 완화 차원에서 피고 측 상고가 없는 한 검찰 측 상고도 없도록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함.

6. 아래 동백림 사건 관련자들의 출생, 교육, 경력 및 그간의 활동 사항 등이 기술된 영문 의견서를 작성함.

- [redacted]

동백림 사건. 전14권.
V.14 박[redacted], 김[redacted] 구명운동, 1969-73

| 73-0195 |

생산연도	1967-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Re-24 / 6 / 1~309(309p)

1. 서울지검 공안부는 1969.6.9. 김[redacted] 등 아래 공안 사건 피의자에 관한 범죄 개요를 작성함.

- 대상자: 유럽 거점 김[redacted] 외 6명, 일본 거점 임[redacted] 외 10명
- 내용: 피의자 인적 사항, 구속 자료, 학력, 경력, 범죄 개요(사상 성분, 범죄 요약) 등

2. 박[redacted] 및 김[redacted] 구명 운동 관련 외무부의 조치 내용임.

- 구속 일자: 1969.5.9. (구속 당시 박[redacted]는 취업 대기 중, 김[redacted]은 공화당 국회의원)
- 재판 경과: 1970.7.3.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피고 측 재심 청구 중)
- 범죄 사실
  - 북한 공작원에 포섭되어 수차 북한을 왕래, 북한 노동당에 입당
  - 국가 기밀 탐지, 동조 세력 포섭 및 북한 지령 수행
- 해외에서의 동인들에 대한 구명운동
  - 주한 영국대사, 구미국장(1970.8.1.) 및 외무부장관(1970.8.22.) 방문 협의
  - Caradon 영국 전 주유엔대사 1970.8.26.~29. 방한, 박[redacted] 구명 탄원서 전달
  - 국제사면위원회(1970.6.2. 및 9.8.), 동경대학 총장(1970.11.16.),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사무총장(1970.12.1.), 일본 국회의원 118명 등(1970.12.24.), 동경대학 교수 등(1971.1.4., 2.14., 4.24. 및 12.1.), 일본 국제법학회(1971.5.7.), Caradon 대사(1971.5.10.)는 각각 탄원서 제출
- 외무부 조치 사항
  - 상기 구명탄원서 접수, 법무부, 중앙정보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에 수시 통보
  - 상기 구명탄원서 접수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
  - 중앙정보부, 박[redacted] 감형 청원 수용 불가 입장 회신(1970.10.27. 및 12.8.)
  - Caradon 대사 등 해외 인사와의 면담 내용을 주영대사 및 관계부처에 수시 통보
  - 대통령의 상기 탄원서 열람 등 적절한 내용의 회신 발송
  - 주영대사, Caradon 대사의 재방한 계획 보고(1971.10.29.)
  - 주영대사, 박[redacted] 사형 집행에 관한 주재국의 보도 내용 보고(1972.8.11.)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 73-0196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C-64 / 2 / 1~259(259p)

1.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1967.7.10. 설립, 사단법인)가 1972.4월 작성한 원폭 피해자 현황은 아래와 같음.

- 피폭 당시 피해자: 총 7만 명(사망자 4만, 생존자 3만, 생존자 중 귀국자 2만3천, 교포 잔류 7천)
- 환자 중 중상자 30%, 경상자 70%

2.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는 1972.8.9. 박 대통령 앞으로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피해보상 요구, 보건사회부의 피해 실태 조사 및 국회의 원호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함.

- 보건사회부는 8.28. 피해자 원호지원 건은 대한적십자사가 검토 처리함을 회신
- 대한적십자사는 9.15.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동 건은 양국 정부 간 해결할 문제임을 회신

3. 주일대사는 1972.8.30. 나가사키 시장이 원폭 피폭 27주년을 맞아 '평화선언' 자료를 한국 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보고함.

4. 주일대사는 1972.10.5. 핵금 히로시마현민회의에서 결정한 1972년 제2차 피폭자 진료 의료단 파견 계획을 보고함.

5. 주일대사는 1972.11.7. 일본 정부가 한국 원폭 피해자에 대해 인도적 견지에서 구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주한 일본대사관이 일본 측 경비 부담으로 한국인 원폭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고함.

- 외무부는 1972.11.9. 일본 측 제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며 일본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구호조치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보건사회부가 관장, 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을 결정
- 외무부는 11.9. 상기 방침에 대한 보건사회부의 의견을 문의
- 보건사회부는 1973.1.4. 일본 정부의 원호 용의를 수용하며, 원폭 피해자 실태 조사, 2세 자녀의 검진 및 치료, 유가족 생계 구호, 전문 치료기관 건립 등을 요청하도록 회신

6. 외무부는 1973.1.16. 주일대사에게 원폭 피해자 구호문제에 관해 아래 교섭 지침을 하달함.

-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 지원 용의 원칙적 수용
- 한국 내 원폭 치료시설 건립을 위해 일본 정부가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
- 동 시설 건립은 기존 양국 간 경제협력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
- 주일대사는 1.26. 오히라 외상에게 원폭 치료시설 설립을 요청한바, 동 외상은 검토 예정임을 언급

7. 주일대사는 1973.2.21. 한국인 원폭피해자 치료센터 건립을 위한 일본 외무성과의 협의 결과를 아래 보고함.

- 일본 측은 10~20억 엔의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한·일 경제협력사업 중 무상원조 사업으로 시행을 희망
- 한국 측은 별도의 인도적 사업 추진 희망 표시, 치료센터 외에 재활센터 및 직업학교도 포함

8. 외무부는 1973.6월 원폭피해자 구호문제에 관한 1967.1~73.4월간 일자별 연혁 자료를 작성하는 한편 7.6. 보건사회부와 원폭피해자 치료센터 건립과 관련 아래와 같이 협의함.

- 보건사회부는 동 시설을 일본 외무성의 경제협력 무상원조 사업으로 추진토록 경제기획원에 요청
- 외무부는 동 현안이 정치적인 문제임에 따라 일반 경제협력 사안으로 취급하는 데 부정적 입장 표명, 우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일본 측과 집중적으로 교섭 후 진전 여하에 따라 1974년 각의에 요청하기를 희망
- 보건사회부가 작성 한국 원폭피해자 병원 건립 계획
  - 대지 1만2천 평, 건평 7천 평, 병상 수 200병상
  - 예산 소요액: 건축비 25억 원, 장비 및 부대시설 5억 원
  - 자금 조달 방식: 일본의 무상원조로 충당
  -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마나슬루 등반대 사고처리 및 네팔인 셸파 보상금 지급

| 73-0197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C-64 / 3 / 1~97(97p)

1. 주뉴델리총영사는 1972.4.13.~14. 한국 마나슬루 등반대가 돌풍으로 인한 눈사태로 조난사고를 당했다고 보고함.

- 조난 일시 및 장소: 4.10. 제3캠프
- 조난자 및 사망자: 총 16명 조난자 중 15명 사망(한국인 4명, 일본인 1명, 현지 셸파 10명)

2. 주뉴델리총영사는 1972.4.16. 네팔 외무성과 사고 처리 및 셸파 사망자 보상 문제 등 협의 내용을 보고하고, 4.21. 사고 원인 조사, 현지에서의 사고 수습 경과 및 네팔 정부와의 처리 대책 협의 등 사고 처리에 관해 종합 보고함.

3. 주카트만두총영사는 1972.7.20. 주재국 의전차장이 5월 말 이전 현지 셸파 유가족 조위금 지불 약속 불이행을 지적하고, 동 이행을 요청하였음을 보고하는 한편 7.25. 조속한 보상금 송금을 건의함.

- 외무부는 7.26.자로 2,000달러 1차 송금
- 외무부는 10.12. 등반대 기록영화 수입금으로 12월부터 보상금을 단계적 송금 방침 통보

4. 국무총리실은 1972.8.4. 외무부장관에게 문교부 및 한국 등반대장과 협의하여 동 보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네팔과 외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지시한바, 외무부는 8.28. 문공부장관에게 관련 협조를 요청함.

5. 주카트만두총영사는 1973.1.25. 셸파 유가족들이 동 보상금 해결을 위해 1월 말 대규모 농성 시위를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한바, 외무부는 1.29. 셸파 사망보상금 잔여금 2만8,000달러 지급을 위한 예비비를 신청하고 3.6. 주카트만두총영사에게 보상금 미지급액 지급을 지시함.

- 주카트만두총영사는 3.13. 보상금 잔금 지급 보고
- 외무부는 3.23. 대통령에게 상기 보상금 지급 조치 결과 보고

6. 외무부는 1973.4.10. 문교부장관에게 여사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해외 등반대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요청함.

영국인([redacted]) 금괴 밀수사건

| 73-0198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64 / 4 / 1~64(64p)

1. 외무부는 1972.2.28. 내무부에 주한 영국대사가 금괴 밀수 혐의로 체포된 영국인 [redacted]의 주한 영국대사관 영사 면회를 요청해 왔음을 통보하고 동 사건 수사 경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바, 내무부는 3.8. 아래 회신함.

- ❁ 주한 영국대사관 부영사가 2.28. 및 3.2. 동 피의자를 2회 면담
- ❁ 임시조치법 위반죄로 동 피의자를 3.6. 검찰청에 구속 송치

2. P. J. George 주한 영국대사대리는 1972.12.13. 외무부 구미국장을 면담하여 금괴 밀수 혐의로 복역 중인 [redacted] 등 영국인 2명에 대한 관대한 조치 고려 여부를 문의하는 한편 관련 후속 공한을 송부해 옴.

3. 외무부는 1973.1.17. 법무부장관에게 주한 영국대사관이 상기 2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대한 조치를 희망해 왔음을 통보하고, 과거 외국인 밀수범에 대한 형 집행정지 및 강제퇴거 조치 사례에 따라 관대한 조치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바, 법무부는 1.30. 외무부의 요청을 참고하겠다고 회신함.

4. 외무부는 1973.6.27. 법무부장관에게 주한 영국대사가 공한을 통해 상기 요청에 대한 진전사항을 문의하면서 한 · 영 간의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호의적 고려를 요청해 왔음을 설명하고, 영국 정부의 요청을 특별히 고려해 줄 것을 희망함.

- ❁ 외무부는 8.31. 주한 영국대사가 공한으로 동 건의 조속한 선처를 재차 요청해 왔음을 통보하고 양인의 기본 형기가 9.21. 만료되며, 한 · 영 간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과거 유사 사건에 연루된 독일인 2인에 대한 처분과 동일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망함.
- ❁ 법무부는 11.8. 외무부에 벌금 미납으로 석방이 지연되어 온 동 영국인 2인을 한 · 영 간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11.10.자로 형 집행정지 및 석방 조치함을 통보하고, 석방 후 즉시 본국 송환시키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5. 외무부차관은 1973.11.9. 주한 영국대사를 면담하여 양국 간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동 2인을 복역 만료 이전에 석방키로 결정했음을 통보하고, 대사관이 양인에 대한 신병 인수 및 본국 송환 조치를 책임질 것을 요청한바, 주한 영국대사는 11.16. 외무부장관대리 앞으로 상기 영국인의 석방에 대해 감사한다는 서한을 송부해 옴.

VOA(미국의 소리) 방송시설 한국 이전문제

| 73-019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조약과
MF번호	C-64 / 5 / 1~131(131p)

1. 외무부는 1973.1.11. VOA(미국의 소리) 방송시설의 한국 이전 문제와 관련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함.

❁ 검토 경위

- 미국 정부는 1972.7월 오키나와 소재 VOA를 한국에 이전 설치할 것을 제의
- 1972.8월 시설 이전에 동의하는 대통령 재가
- 외무부는 국제전기통신협약 등 국제 조약에의 배치 여부 등 문제점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
- 기술적인 문제점은 체신 당국의 검토 필요

❁ 회의 결과

- 한 · 미 간의 기술적 검토 및 협의 추진
- 관계협정 체결을 위한 대미 교섭을 추후 진행키로 합의

2. 외무부는 1973.2.3. 구미국장의 주한 미 공보원장과의 아래 면담 결과, 관련 검토 내용 및 대미 교섭 방안을 2.13. 대통령에게 보고함.

❁ 국내 통신, 군 시설 운영에 대한 지장 여부 등 필요한 추가 기술 자료를 미국 측에 요청

❁ 한국 측 후보지 검토 현황 설명

3. 외무부는 1973.2.28. 체신부에 미국 측이 제공한 추가 기술 자료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바, 체신부는 3.20. 검토 결과를 회신하였으며, 외무부 북미1과장은 4.11. 및 5.3. 미 공보원장 면담 시 체신부 측 요청에 따른 추가 자료를 요청함.

4. 미국 측은 1973.5.31. 전반적 문제 협의를 위해 기술전문가 등 실무진 파견 계획을 통보함.

5. 주한 미 공보원 측은 1973.6.12. 외무부에 상기 방송시설 이전을 위한 예산이 미 상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며, 하원에서의 토의 전망도 불투명함을 통보함에 따라 외무부는 6.14. 동 내용을 국방부 및 체신부에 통고함.

6. 주미대사는 1973.7.30. 미 하원 외무위원회에서 미 USIA(해외공보처) 예산 중 오키나와 VOA 방송국 이전 예산을 삭감했음을 보고한바, 외무부는 8.4. 동 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함.

주월한국군의 대월남 민간인 관계

| 73-0200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C-64 / 6 / 1~47(47p)

1. 주미대사는 1972.11.9. 뉴욕타임스지가 주월 한국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왜곡 보도하였음을 보고한바, 외무부는 11.13. 국방부장관에게 동 기사에 대한 반박 자료를 요청함.

- 주월 한국군의 작전 중지, 후방기지 이전 및 전투 회피
- 미국의 주월 한국군 급여 일부 지원
- 주월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등

2. 주미대사는 1973.2.7. Ford 미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가 하원 본회의에서 한국군의 월남에서의 용감한 임무 수행에 찬사를 보내는 발언을 행하였으며, 3.12. 현지 언론이 동 발언과 관련하여 주월 한국군을 찬양하는 논평을 게재하였다고 보고함.

3. 주호놀룰루총영사는 1973.2.14. 현지 언론이 주월 한국군의 양민 학살 등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들의 피해 사실을 왜곡 보도하였음을 보고함.

- 외무부는 2.26. 주호놀룰루총영사에게 상기 기사에 대한 반박 자료를 송부하고, 반박 조치를 시행토록 지시함.
- 주호놀룰루총영사는 3.14. 현지 언론이 동 반박 자료에 따른 기사를 게재하였음을 보고함.

4. 국방부는 1973.2.22.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아래 내용의 반박 자료를 외무부에 송부함.

- 양민 학살 관련 왜곡 내용
- 한국군을 가장한 베트콩의 만행 사례 등

5. 외무부는 1973.4.3. 주호놀룰루총영사에게 현지 언론의 주월 한국군 관련 왜곡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문을 투고한 현지 교포를 격려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문교부는 장관 명의의 격려 편지를 동 교포에게 별도로 발송함.

김동조 주미국대사 연설문

| 73-020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C-64 / 7 / 1~106(106p)

김동조 주미대사의 1973년 중 주요 행사 시 연설문 요지임.

1. 미 국방산업대학 초청 세미나(1.8. 워싱턴)

- ❁ 한반도 정세 및 동북아 안정
- ❁ 한국의 정치, 경제 소개 및 미국과의 관계
- ❁ 한 · 미 간 공동의 이해 문제, 향후 한 · 미 협력 전망 등

2. Comstock Club 연설(2.12. 새크라멘토)

- ❁ 한반도 정세 및 남북한 대치 상황
- ❁ 한국의 방위정책 및 한 · 미 관계

3. 미 공군대학 연설(3.8. 맥스웰 공군기지)

- ❁ 냉전 종식 등 세계 정세
- ❁ 한반도 정세와 남북한 관계
- ❁ 미군의 역할, 한 · 미 관계
- ❁ 한국의 국내 정치와 안보

4. World Affairs Council 주최 아시아 문제 심포지엄(3.19. 피츠버그, 황호을 공사 연설)

- ❁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한반도 정세 및 남북한관계
- ❁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 한국적 민주주의 제도
- ❁ 주한 미군의 역할

5. 조지타운대학 비교정치경제연구소 연설(7.3.)

- ❁ 닉슨 대통령의 방중과 냉전 종식 등 세계 정세
- ❁ 한반도 정세, 1972.7.4. 남북공동선언 등 남북한 대화, 6·23 선언 등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
- ❁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역할
- ❁ 주미대사관은 8.14. 동 연설문이 미 상원 버클리 의원의 제안으로 미 의회 의사록에 수록되었음을 보고함.

주한프랑스대사 및 대사관원 면담록

| 73-020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64 / 8 / 1~8(8p)

1. 외무부차관의 1973.8.31. Landy 주한 프랑스대사 면담 시 동 대사의 언급 요지 및 외무부의 관련 평가임.

❁ 프랑스대사는 Jobert 외상이 8.10. 외무부장관과 회담 시 약속한 바에 따라 주중국(구 중공) 및 주소련대사에게 프랑스 정부는 한반도에서 남 · 북한 간 균형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며, 동 균형의 필요성을 중국과 소련이 공히 인정하여 프랑스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언급함.

❁ 외무부는 동 대사의 언급 내용에 비추어 9.10.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의 방중 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평가함.

2. 외무부 구주과장은 1973.11.19. 주한 프랑스대사관 몰리용 참사관과 아래와 같이 면담함.

❁ 몰리용 참사관 언급 요지

- 한국 정부의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 진전 추진에 관심을 표명함.
-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표결 시 프랑스는 서방측과 공동 보조를 취할 것이며, 기권치 않을 것임.
- 중국은 소련과의 적대 관계에 따라 내심 외국 주둔 미군 철수에는 반대할 것임.

❁ 구주과장 언급 요지

- 금년도 유엔 총회에서의 프랑스 입장을 문의함.
- 외국 주둔 미군 철수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문의함.
- EC(구주공동체)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프랑스가 여타 회원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한반도 문제 토의가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귀결되기를 희망함.

3. 외무부장관은 1973.12.29. 주한 프랑스대사와 아래와 같이 면담함.

❁ 프랑스대사 언급 요지

-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음.
- 북한의 군비 증강에 대비하여 한국에 대한 프랑스제 무기 제공을 희망함.
- 한국의 유엔 전략에 관해 사전 협의를 희망하며, 한반도 문제에 관한 타협안에 찬성함.
- 양국 간 항공 노선 확대, 조력 발전소 건설 등 경제협력 증진 방안 협의를 희망함.

❁ 외무부장관 언급 요지

- 주한 프랑스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 및 주프랑스대사 교체 계획을 통보함.
-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논의에 관한 전략에 대해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함.
- 프랑스와의 경제협력 증진에 동의함.

바티칸주재 외교단의 신년 하례식 자료

| 73-020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64 / 9 / 1~13(13p)

1. 주스위스대사는 1973.1.22. 로마 교황청 주재 외교사절의 교황에 대한 1.11. 신년 하례식에서의 외교단의 교황 Paul VI세에 대한 축하문 및 교황의 답사를 송부함.

2. 당초 외교단장인 쿠바대사의 축하문이 준비되었으나, 일부 국가가 특정 국가에 대한 비난 등 구절에 대한 삭제를 요청한 데 대해 쿠바대사가 본부 훈령에 따라 수정을 반대함에 따라 교황청의 중재로 프랑스대사가 작성한 축하문이 채택됨.

주한미국대사 및 공사와의 면담록

| 73-020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C-64 / 10 / 1~38(38p)

1. 윤석헌 외무부차관은 1973.2.28. Habib 주한 미국대사를 면담하고 유엔에서의 한 · 미 양국 대사 간 협의 사항 및 한국군현대화계획을 포함한 군사원조 문제에 대해 협의함.

2. 외무부차관은 1973.4.19. Underhill 주한 미국대사대리 면담 시 이란의 북한과의 수교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문의한바, 동 대사대리는 미국 측도 주이란대사를 통해 이란 측의 재고를 요청했으나 번복 가능성이 없음을 언급함.

3. 외무부차관은 1973.8.7. 주한 미국대사와 면담 시 미 · 일 정상회담 결과 등 제반 현안 문제에 관한 아래 협의 내용을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보고함.

- ❋ 미국 측은 미 · 일 정상 및 외상회담 시 한반도 문제 논의 내용을 설명함. (6·23 특별성명 지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대북한 관계, 주한미군 철수 유보, 일본의 대북한 원조 계획 등)
- ❋ 미국 측은 당분간 주한 유엔군사령부 존속 및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할 방침임을 표명함.

4. 외무부차관은 1973.8.17. 주한 미국대사와 김대중 사건에 대한 Time지 기사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협의함.

- ❋ 외무부차관은 동 잡지의 8.20.자 김대중 관련 보도가 억측에 근거한 한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기사임을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함.
- ❋ 미국대사는 언론에 대한 통제 방법이 없으며, 한국 정부의 관심을 국무성에 보고할 것임을 언급하고 한국 정부가 Time지 책임자에게 항의하도록 권고함.

5. 외무부 미주국장은 1973.11.8. 주한 미대사관 공사와 아래와 같이 면담함.

- ❋ 미국공사는 중앙정보부 요원에 의한 미 평화봉사단 특히 한국인 단원의 활동사항에 대한 빈번한 문의와 내사로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함.
- ❋ 외무부는 11.9. 미국 측에 관계기관에 적절히 통보하고, 주의를 환기시켰음을 회신함.

6. 외무부차관은 1973.11.22. 주한 미국대사를 면담하고 중국(구 중공)이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타협한 이유를 문의한바, 미국대사는 대결을 지양한다는 고려 및 공산 측 제안을 가결시킬 자신이 없었음에 따른 것임을 언급함.

7. 외무부장관은 1973.12.18.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면담하고 정부의 파키스탄 및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개선 추진 관련 미국 측의 협조, 1974.1월 중 계획된 미국 국무부차관보 방한 일정, 최근 한국 함정의 서해순시 문제, 소련 및 중국의 대한국 관계 개선 동향 등에 관해 협의함.

Habib, Philip C. 주한 미국대사 연설문

| 73-020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C-64 / 11 / 1~16(16p)

Habib 주한 미국대사의 1973.5.15. 한국외신기자협회 연설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최근 국제 무역량이 크게 확대되고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등 통상 문제의 중요성이 대두

- 국제 무역량이 1960년 2,650억 달러에서 1971년 7,16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
- 최근 홍콩, 대만(구 자유중국), 한국, 중남미 등 개도국의 수출고가 비약적으로 증대

2. 새로운 통상협상의 필요성

- 관세 인하를 목표로 하는 케네디라운드는 이미 정착
- 그러나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상존함에 따라 동 문제가 향후 통상회담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

3. 닉슨 대통령이 1973.4.10. 미 의회에 제출한 통상개혁 법안의 제안 배경 및 내용

- 미국은 세계의 번영을 목표로 자유무역 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최근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를 상실, 통상적자 누적
- 외국의 농업 및 공업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한 관행 증대로 인해 미국은 막대한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의 보호무역 압력이 증대
- 타국의 대미 시장 진출에 상응하는 미국의 타국 시장 진출 필요
-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불공정한 제한 종식 필요
-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허용 방안에 관해 선진국들과 합의 모색 중
- 국제 통상의 새로운 규칙에 관한 합의 노력 중
- 미 행정부로서는 동 법안이 의도하는 통상 자유화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무역균형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내 압력 증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통상 상대국들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기를 희망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7차. 동경, 1973.12.26.-27. 전5권. V.1 사전교섭

| 73-0206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북아1과/경제협력과
MF번호	C1-28 / 1 / 1~311(311p)

1. 경제기획원은 1973.5.4. 외무부에 금년 중 동경에서 개최 예정인 제7차 한 · 일 정기 각료회의 준비를 위한 제6차 회의 결과 이행 현황 및 제7차 회의 의제, 교섭 지침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함.

2. 주일대사는 1973.5.30. 일본 측이 제7차 각료회의의 9.7.~8. 동경 개최를 제의했음을 보고함.

- 외무부는 6.23. 관계부처 의견을 취합하여 통해 동 일자 개최에 동의함을 일본 측에 통보함.
- 외무부와 일본 외무성은 8월 중 회의 일정, 의제, 여타 행정사항 등을 협의함.

3. 외무부 아주국장은 1973.8.22.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 면담 시 일본 정부 내에서 김대중 사건과 관련하여 각료회의 연기설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김대중 사건과 동 각료회의 개최를 연계시키지 않도록 요청함.

4. 외무부는 1973.8.24. 양국 정부 간 협의에 따라 동 각료회의를 일본 다나카 총리 및 오히라 외상의 유럽 방문 후 가장 빠른 일자에 개최키로 합의했음을 발표함.

5. 주일대사는 1973.11.21. 일본 외무성이 동 제7차 각료회의 개최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제의했음을 보고함.

- 개최 일자: 1973.12.20.
- 대표단
  - 한국 측: 경제기획원, 외무, 상공 3각료
  - 일본 측: 외무, 대장, 통산, 경제기획청 4각료
- 의제
  - 한 · 일 관계 및 국제 정세
  - 양국 경제 정세, 무역 · 경제협력 등 양국 경제 관계, 국제무역 관계
- 기타
  - 대국적 견지에서 공동 관심사 협의, 경제협력 문제는 사전 실무진에서 합의하고 각료회의에서 추인
  - 개별 각료회의는 개최하지 않으며, 전체회의만 진행

6. 주일대사는 1973.12.12. 일본 측이 석유 관련 법안 논의 등 의회 일정을 이유로 동 각료회의를 12.26.로 연기할 것을 제의했다고 보고한바, 정부는 12.12. 주일대사에게 회의 개최 일자 연기에 동의함을 일본 측에 통보토록 지시함.

7. 정부는 동 회의에 대비하여 황병태 경제기획원 운영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교섭단을 1973.12.20.~25. 일본에 파견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문제를 사전 협의토록 함.

8. 한 · 일 양국 정부는 1973.12.22. 제7차 정기 각료회의 개최에 관해 아래 공동 발표함.

- 일본 동경에서 12.26. 개최
- 대표단
  - 한국 측: 태완선 부총리, 김동조 외무부장관, 남덕우 재무부장관, 장예준 상공부장관
  - 일본 측: 오히라 외상, 후쿠다 대장상, 나카소네 통산상, 우치다 경제기획청장
- 의제
  - 양국 관계 일반 및 국제 정세
  - 양국의 경제 정세, 양국 경제관계 및 국제무역 경제문제

9. 주일대사는 1973.12.6. 회의 상세 일정을 아래 보고함.

- 12.25. 하네다 공항 도착, 도착성명 발표, 다나카 수상 예방, 오히라 외상 주최 리셉션
- 12.26. 오전 회의(의제 1~3), 외상 주최 오찬, 오후 회의(의제 3~4), 공동성명 채택 및 폐회

10. 정부는 1973.12.20. 태완선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7차 한 · 일 정기 각료회의 정부대표단을 아래 임명함.

- 김동조 외무부장관, 남덕우 재무부장관, 장예준 상공부장관, 윤하정 주일대사대리
- 각 부처 수행원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7차. 동경, 1973.12.26.-27. 전5권. V.2 본회의

| 73-0207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북아1부/경제협력과
MF번호	C1-28 / 2 / 1~208(208p)

1. 주일대사는 1973.12.15. 제7차 한 · 일본 정기 각료회의 일본 측 공동성명 초안을 보고한바, 외무부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본 측과 최종 문안을 확정함.

2. 한 · 일 양측은 1973.12.20. 아래 공동성명 문안에 합의함.

- ❋ 제7차 각료회의 12.26. 동경 개최
- ❋ 양측에서 각각 4각료와 주한 일본대사, 주일대사 참석
- ❋ 의제는 양국 관계 일반 및 국제 정세, 양국 경제 정세 및 경제관계, 국제무역 및 경제 문제
- ❋ 아시아 정세
  - 한국 측: 6 · 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설명
  - 일본 측: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표명 및 남북대화 진전 희망
- ❋ 양국의 선린우호관계 유지 발전 재확인 및 확대를 위한 노력 경주
- ❋ 재일한국인 문제 협의 합의
- ❋ 양국 간 무역의 확대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 경주
- ❋ 한국의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일본 측의 적절한 협력 의지 표명

3. 정부 수석대표인 태완선 부총리는 1973.12.25. 도착성명 발표를 통해 동 각료회의가 우호와 상호 이해에 바탕을 둔 격의 없는 토의 및 대화로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함.

4. 태완선 부총리는 1973.12.26. 각료회의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평화적 통일 노력 및 경제개발 현황 등을 소개하고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위한 의견 교환을 기대함을 밝힘.

5. 전체회의 시 각종 발언문 현황임.

- ❋ 양국 외무장관의 기조연설, 태완선 부총리의 한국 경제 정세 설명, 일본 경제기획청장관 발언문, 일본 통산장관의 경제협력 관계 발언문, 장예준 상공부장관 양국 간 무역 관계 발언문, 태완선 부총리의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 발언문, 각 의제별 관계 장관 발언문
- ❋ 양국 수석대표 폐회사

6. 외무부장관은 1973.12.26. 회담 종료 후 공동 기자회견 시 인사말을 통해 양국 각료들이 회의에서 국제 정세, 한 · 일 관계, 양국 간 경제 문제 등에 대해 광범위하고 솔직한 의견 교환을 가졌으며, 향후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고 언급함.

7. 양국은 1973.12.26. 회의 종료 후 상기 공동성명문을 발표함.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7차. 동경, 1973.12.26.-27. 전5권. V.3 결과보고 및 언론반응

| 73-0208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북아1과/경제협력과
MF번호	C1-28 / 3 / 1~229(229p)

1. 주일대사는 1973.12.27. 한 · 일 외무장관회담 결과를 아래 보고함.

- ❁ 양측은 정기 각료회의 개최로 일본 내 정치적 분위기가 진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동 회의를 정치적 차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 일치
- ❁ 김대중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 측은 김대중 출국 문제에 대한 일본 내 정치적 분위기를 고려해 줄 것을 당부
- ❁ 한 · 일 대륙붕협정을 1974.1월 조인키로 합의, 여타 현안 문제는 실무자회의에서 조기 타결할 것에 합의

2. 정부대표단의 1973.12.27. 다나카 수상 예방 시 일본 수상의 언급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한 · 일 관계의 일체성을 강조하고, 동 각료회의 개최를 평가
- ❁ 김대중 사건이 한국 측의 협조로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평가하고, 미 국무성의 평가도 언급
- ❁ 대륙붕협정의 조속한 체결 실현 희망 및 북한과의 접촉 관련 신중한 입장 표명

3. 외무부는 1973.12.29. 제7차 한 · 일 정기 각료회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일정, 의제, 대표단 및 의제별 토의 내용
- ❁ 개최 의의 및 성과
  - 경화되었던 양국 관계 정상화
  - 양국의 긴밀한 관계가 양국의 번영과 아시아의 안정에 불가결함을 재인식
  - 일본 언론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입장 완화
  - 6 · 23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일본의 지지 재확인, 한 · 일 양국 관계의 중요성 재확인, 일본의 성급한 대북한 접촉 견제, 그간 정체된 현안 문제 타결의 토대 마련
- ❁ 구체적인 경제협력 성과
  - 새마을사업 1972년분 전액 사용 및 신규 4,540만 달러, 포항종합제철 확장 4,500만 달러, 무상원조 1,000만 달러, 북평항 건설 2,000만 달러 지원
  - 기타 식량, 원료 및 자원 공급 상호 협조 등

4. 주일대사는 1973.8~12월 중 일본 언론의 동 각료회의 관련 아래 보도 내용을 수시 보고하는 한편 1974.1.5. 제7차 한 · 일 정기 각료회의 경제협력 합의 내용, 토의 기록 및 차관공여 내역 등의 문서를 송부함.

- ❁ 김대중 사건 관련 회의 연기
- ❁ 개최 의의, 협의 내용, 양국 간 경제협력 합의 내용 등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7차. 동경, 1973.12.26.-27. 전5권. V.5 자료

| 73-0209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북아1과/경제협력과
MF번호	C1-28 / 5 / 1~336(336p)

동경에서 1973.12.26. 개최된 제7차 한 · 일 정기 각료회의 관련 자료 현황임.

1. 각료회담 개최 준비 자료

- ❋ 관계부처 소관 의제 및 기 합의 사항 추진 현황(1973.6~7월)
- ❋ 제7차 회의 의제 관련 관계부처 의견(1973.8월)
- ❋ 국제 정세 참고 자료
  - 북한의 대외 동향,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소련의 대아시아 정책, 중국 정세, 지역협력 문제
- ❋ 제7차 각료회의 의제 초안(1973.8.11.)
- ❋ 제7차 각료회의 의제 초안 중 경제 분야(1973.11.12. 경제기획원)

2. 본회담 자료

- ❋ 한 · 일 간 주요 현안 문제 및 대책(1973.12월, 외무부)
  - 재사할린 교포, 유골 봉환, 재일한국인, 해저전선 분할 문제,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한 · 일 대륙붕, 긴급피난 및 해난구조협정 체결 문제
- ❋ 각료회의 참고 자료(1973.12월, 외무부 아주국)
  - 최근 일본 정세: 국내 정세, 대외정책 및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 대일본 정책 기본 방향: 기본 목표, 대책 및 방안
  - 제7차 각료회의 준비 상황
- ❋ 각료회의 참고 자료(1973.12월, 외무부 국제경제국)
  - 일본의 대외경제협력 현황
  - 일본의 최근 대외경제협력 방향
  - 한 · 일 경제협력 현황
  - 제7차 각료회의 대비 정부 입장
  - 참고 자료: 제1~6차 한 · 일 각료회의 경제관계 협의 내용

월남에서의 휴전보장 및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회의. Paris. 1973.2.26.-3.2.

| 73-021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C1-30 / 6 / 1~123(123p)

1. 주미대사는 1973.1.28. 미국이 월남 평화보장을 위한 12개국 국제회의를 2.26. 개최할 것을 공식 제의했음을 보고함.

2. 주월남대사대리는 1973.2.21. 파리 국제회의의 주요 의제는 외국군의 월남, 크메르 및 라오스의 침공처리 문제 및 차기 월남 선거 시 자결권 보장 문제가 될 것임을 보고함.

3. 외무부는 1973.3.3.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파리 국제회의 개최 결과를 아래 보고함.

- 파리에서 12개국 외상 및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 참석하에 1973.2.26.~3.2. 개최되어 3.2. 의정서 서명 후 폐회
- 1.27. 발효한 월남 종전협정을 추인함으로써 월남전 종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절차를 확인하는 한편 종전 이행 보장을 위해 강대국이 공동 참여함으로써 월남 평화회복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
- 의정서(전문 및 9개 조항) 주요 내용
  - 1.27.자 월남 종전협정의 승인 및 지지 표명, 남부월남 국민의 자결권 존중, 종전협정 이행 및 국제감시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종전협정 위반사항 처리 절차, 라오스·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 국가 문제 협의
- 참가국 간 의견 대립을 아래와 같이 원만히 해결
  - 의장은 캐나다와 폴란드 외상이 교대로 수임
  - 종전협정 이행 상황에 관해 협정 4개국 당사자가 개별적 또한 공동으로 보고, 위반 사항에 대한 협의 의무
  - 종전 실현 문제는 당사국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고
  -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보고 의무도 인정
  - 월남 전후 복구 문제는 언급 유보
- 반응
  - 미국은 회의 결과에 만족 표명
  - 월남은 수개국의 정당한 권익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분적인 유보 입장 표명
  - 월맹은 성공적으로 평가
  - 미국 언론은 소련, 중국(구 중공) 등을 종전협정에 연계시킨 점 및 미·월맹 간 타협의 결과로 평가
- 의정서 전문(국, 영문) 첨부

공관장회의, 1973년도 - 미주 및 구주지역. 서울, 1973.1.25.-30. 전3권. V.1 기본계획

| 73-0211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통상2과/구주과/북미1과
MF번호	C1-29 / 2 / 1~240(240p)

1. 외무부는 1972.12.11. 대통령에게 1973년도 공관장회의 서울 개최 계획을 아래 보고함.

❋ 개최 시기
- 미주 및 구주지역: 1.25.~27.
-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2.8.~10.

❋ 개최 목적
- 10월 유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외교정책 및 활동 방안 협의
- 1973년도 수출목표 및 1980년 1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한 수출 진흥 활동 방안 토의
- 국내 유신 사업 및 새마을사업 추진 현황 시찰

❋ 참석자: 미주 및 구주지역 23명,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29명

2. 외무부는 1972.12.29. 미주 및 구주지역 공관장에게 1973년도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방안 등 통상 진흥 및 경제협력 분야 자료를 1973.1.15. 이전 제출하도록 지시함.

3. 외무부 통상국은 1973.1.10. 미주 및 구주지역 공관장회의 개최 일정을 아래 수립함.

❋ 1.24. 대통령 예방 및 대통령 주최 만찬
❋ 1.25.~27. 개회식, 수출 진흥 및 정무 관계 회의
❋ 1.28.~29. 지방 산업 및 새마을사업 시찰
❋ 1.30. 수출진흥확대회의, 정무회의 및 폐회

4. 정무 관계 회의에서는 외무부 관계국장의 브리핑, 각 공관장의 정세 보고와 건의 및 당면 과제에 대한 토의와 함께 10월 유신의 배경과 당위성,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 및 10월 유신과 한국 민주주의 등 특별 강의도 병행 시행됨.

5. 미주 및 구주지역 공관장은 1973.1.30. 아래 결의문을 채택함.

❋ 10월 유신 이념에 따른 국위 선양 및 국력 배양을 위한 외교적 노력 경주
❋ 1980년 100억 달러 수출 기반 구축
❋ 1973년 수출목표 23억5천만 달러 달성 노력

6. 회의 관련 연설문 목록임.

❋ 박정희 대통령 치사(1.25.)
❋ 김종필 국무총리 치사(1.25.)
❋ 김용식 외무부장관 훈시(1.25.)
❋ 이낙선 상공부장관 격려사(1.25.)

공관장회의, 1973년도 - 미주 및 구주지역. 서울, 1973.1.25.-30. 전3권. V.2 활동사항

| 73-0212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통상2과/구주과/북미1과
MF번호	C1-29 / 3 / 1~287(287p), Re-26 / 6 / 1~13(13p)

1. 외무부 미주국은 1973.1.25. 중남미지역 공관 보고에 따른 아래 자료를 작성함.

- 주재국 일반 정세 및 북한 침투 대처 문제
-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및 홍보 활동상 문제
- 주요 현안 및 건의 사항

2. 외무부 구미국은 1973.1.25. 구미지역 공관별 건의 사항에 대한 종합자료를 작성함.

3. 외무부 중남미과는 1973.1.25. 중남미지역 공관장 보고 및 건의 사항을 종합 작성함.

4. 외무부 통상국은 1973.1월 공관장회의에 보고된 통상 분야 공관별 건의 사항 및 검토 의견에 대한 종합 자료를 작성함.

5. 외무부는 1973.1.27. 구미지역 공관장들의 대통령 특별보좌관과의 면담 내용을 작성함.

- 각 공관장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건의 사항을 해당 특별보좌관들에게 보고
- 안보, 교육 · 문화, 정치, 사회, 경제 담당 특별보좌관 참석

6. 외무부 구미국은 1973.1.29. 구미지역 공관장회의 시 정무관계 회의에서 제기된 공관별 건의 사항을 종합하여 부내 각 실국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필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7. 외무부 구미국은 1973.1월 구미지역 공관장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작성함.

- 각 공관장의 문화공보부장관에 대한 요청 사항 및 장관 답변
- 공관장 정세 보고 및 건의, 일반 토의, 중요 당면 문제에 관한 관계국장 브리핑

8. 외무부 구미국은 1973.1월 주요 당면 문제에 관한 브리핑 내용을 작성함.

- 구미국장은 외교관계 강화 활동, 미수교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활동, 공산국에 대한 활동 설명
- 구아지역 부장은 1973년도 역점 시행 사업 설명
- 아주국장은 아주지역 정세, 현안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 설명
- 정보문화국장, 방교국장, 영사국장은 각각 현안과 공관 협조 요망 사항 설명

공관장회의, 1973년도 - 미주 및 구주지역. 서울, 1973.1.25.-30. 전3권. V.3 언론보도 및 자료

| 73-0213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통상2과/구주과/북미1과
MF번호	Re-26 / 7 / 1~107(107p)

1. 1973년도 구미지역 공관장회의 관련 언론 보도 내용임.

- ❋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방안 협의
- ❋ 주캐나다대사 등의 한국 상품 수출 전망
- ❋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확대회의 개최

2. 외무부는 1972.12.28. 구미지역 공관장에게 할당된 1973년도 공관별 수출목표를 통보함.

3. 외무부는 1972.12.28.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에 1973년도 공관장회의 개최 계획을 통보하고, 동 회의에 반영할 사항에 대한 회신을 요청함.

4. 외무부는 1973.1.25. 구미지역 1973년도 공관장회의 정무관계 관련 각 공관장 보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작성함.

- ❋ 주재국 정세 및 전망
- ❋ 북한 침투 대처 방안
- ❋ 1973년도 외교활동 강화 계획
- ❋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대처 방안
- ❋ 홍보활동 강화
- ❋ 주요 현안 문제 및 건의 사항

5. 외무부 중남미과는 1973.1월 중남미지역 공관장회의 시 제기된 아래 중남미지역 주요 당면 문제에 대한 자료를 작성함.

- ❋ 현안 문제
  - 국교 수립, 북한 침투 대처
- ❋ 지시 사항
  - 유신외교 달성을 위한 공관 활동 강화, 북한 침투 대처, 공관 보고의 철저한 시행
- ❋ 1973년도 주요 사업계획
  - 사절단 파견, 유력 인사 초청, 주한 상주공관 유치, 주한 겸임대사 임명 추진, 겸임국 인사 초청
- ❋ 1973년도 대중남미 외교 기본정책 및 실천계획
- ❋ 각 공관별 본부에 대한 요청 사항
- ❋ 1972년도 대중남미 사업 실적 및 1972년도 북한 관련 자료

공관장회의, 1973년도 - 아주 및 아프리카 · 중동지역. 서울, 1973.2.7.-10. 전2권. V.1 기본계획

| 73-0214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동남아1과/중동과
MF번호	C1-28 / 7 / 1~243(243p)

1. 외무부는 1972.12.11. 대통령에게 1973년도 공관장회의 서울 개최 계획을 아래 보고함.

- 개최 시기
  - 미주 및 구주지역: 1.25.~27.
  -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2.8.~10.
- 개최 목적
  - 10월 유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외교정책 및 활동 방안 협의
  - 1973년도 수출목표 및 1980년 1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한 수출 진흥 활동 방안 토의
  - 국내 유신사업 및 새마을사업 추진 현황 시찰
- 참석자: 미주 및 구주지역 23명,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29명

2. 외무부 아주국은 1973.1.26. 아주 및 아중동지역 1973년도 제2차 공관장회의 개최 일정을 아래 수립함.

- 2.6. 대통령 예방 및 대통령 주최 만찬
- 2.7. 개회식, 수출진흥회의
- 2.8.~10. 정무관계 회의 및 폐회
- 2.11.~12. 지방 산업 및 새마을사업 시찰

3. 외무부 아주국은 1973.2.6. 구아국장 등 관계국장에게 정무관계 회의 시 아래 당면 문제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함.

- 북한 진출 대처 방안
- 공관 증설 및 관할국 재지정 문제
- 공산국과의 관계 구축, 유엔 문제, 홍보활동 효율성 문제
- 각 공관장 건의 사항 및 본부 방침

4. 외무부 아주국은 1973.2월 아주지역 공관 건의 사항에 대한 본부 검토 의견 자료를 작성함.

5. 외무부 아주국은 1973.2.7. 아주 및 아프리카, 중동지역 공관장회의 자료 중 공관별 건의 사항에 대한 분석 자료를 작성함.

6. 회의 관련 연설문 목록임.

- 김종필 국무총리 치사(2.7.)
- 김용식 외무부장관 훈시(2.7.)
- 이낙선 상공부장관 격려사(2.7.)

공관장회의, 1973년도 - 아주 및 아프리카 · 중동지역. 서울, 1973.2.7.-10. 전2권. V.2 결과보고

| 73-0215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동남아1과/중동과
MF번호	Re-26 / 4 / 1~208(208p)

1. 외무부 아주국은 1973. 2.8.~10. 개최 제2차 공관장회의 정무관계 회의 결과를 아래 작성함.

❋ 주요 일정
- 정부 시책 및 외교 지침 시달, 관계국장의 정세 브리핑, 공관장 보고 및 건의, 주요 당면 문제 토의, 결의문 채택, 유신 국정에 관한 특별 강연

❋ 주요 성과
- 유신에 대한 인식 제고, 유신외교 1차 연도 정부 목표 및 수행 결의, 지역 정세에 대한 종합 분석 및 검토, 북한 진출에 대처한 효과적 대책 강구, 본부 정책 입안에 유용한 건의 등

2. 외무부 통상국은 1973.2월 제2차 공관장회의 통상 분야 관련 2.7.자 회의 결과를 아래 정리함.

❋ 외무부 통상국장의 1973년도 경제외교 및 수출 진흥 방안 브리핑
❋ 상공부 상역국장의 1973년도 수출 진흥 종합 시책 브리핑
❋ 각 공관별 보고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상공부장관 답변
- 100억 달러 수출은 10월 유신의 중간 목표임을 설명, 각 공관장 건의에 답변

3. 참석 공관장은 1973.2.10. 아래 결의문을 채택함.

❋ 10월 유신 이념에 따른 국위 선양 및 국력 배양을 위한 외교적 노력 경주
❋ 1980년 100억 달러 수출 기반 구축 및 1973년 23억5천만 달러 수출목표 달성

4. 외무부 구아국은 1973.2.15. 아중동지역 공관장과 최규하 청와대 외교담당 특별보좌관과의 아래 간담회 내용을 작성함.

❋ 각 공관장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 내용 전달
❋ 외교담당 특별보좌관은 대통령에게 충실히 보고하겠다고 답변하는 한편 아래 사항을 설명
- 대통령의 국정 지침이 국력 배양, 1980년대 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1인당 국민소득 1천 달러 및 총력 안보태세 완비 등임을 설명
- 아중동지역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 지원책 강구 방침 설명

5. 외무부 아주국은 아래 요지의 1973년도 공관장회의 제1~7차 정무관계 회의록을 작성함.

❋ 문공부장관의 해외공보 방향 및 목표 설명, 문교부 기획관리실장의 교육학술 교류 현황 브리핑, 각 공관장의 홍보 및 학술 교류 관련 건의
❋ 각 지역국장의 소관지역 정세 브리핑, 각 공관장의 평가 및 건의
❋ 주요 당면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 및 토의

국제학술회의, 제6차. 서울, 1973.7.10.-13.

| 73-021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C1-29 / 5 / 1~166(166p)

한국국제관계연구소는 1973.7.10.~13. 서울에서 '세계 정치 속의 남·북한 관계: 유신체제하의 외교정책의 좌표'를 주제로 제6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함.

1. 국제관계연구소는 1973.2.6. 외무부에 동 학술회의에 참가하는 외국 학자 초청 경비 약 500만 원 지원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5~7월 중 주미국대사관, 주캐나다대사관 등을 통해 동 학술회의에 참석 예정인 외국 학자들의 참석 여부 확인, 항공료 전달 및 참석자 출입국 현황 파악 등 개최 준비에 협조함.

2. 회의 개최결과

❁ 개최 의의
- 외국의 유력 학자 초청을 통해 한국의 유신체제하의 통일정책 등에 관한 인식 제고
- 국제적인 한국 입장 지지 확대
- 유엔 총회에서의 유리한 국제적 여론 제고

❁ 참석자
- 미국 스칼라피노 교수 등 외국 18명, 최종기 교수 등 40명 등 국내 학자
- 주한 일본, 벨기에, 오스트리아, 필리핀 대사 등

❁ 주요 일정
- 개최 배경, 주요 강대국의 외교정책, 외교 조정 및 경제협력 전망 등 4기 회의 진행
-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등

❁ 주요 논의 내용
- 한국의 문호개방 외교정책을 천명한 6·23 선언에 대한 각국 학자들의 이해 증진 및 지지 제고
- 남북대화와 관련한 한반도 및 주변 국가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검토
-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 분석 및 미국의 확고한 지지 촉구
- 6·23 선언에 대한 소련, 중국(구 중공)의 반응 분석
- 남북통일에 대한 전망 및 방법론 연구
- 남북 경제 교류 가능성 분석 및 일본의 역할 등 연구

3. 외무부는 1973.7.30. 상기 학술회의의 주요 토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작성함.

❁ 남북한 관계의 역사적 배경, 국제협상 맥락 내에서의 한국전쟁
❁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 1970년대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역할
❁ 닉슨독트린과 남북한 관계, 강대국 등 아시아정책에 대한 종합 논평, 아시아 안보와 지역 안보 체제에 관한 소련의 계획
❁ 남북한 간 경제협력 전망

한 · 일본 협력위원회 합동상임위원회

| 73-021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C1-29 / 6 / 1~45(45p)

1. 제9차 한 · 일 협력위원회 합동상임위원회가 1973.4.17.~18. 일본 동경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됨.

❋ 주요 의제

- 정치: 일 · 중(구 중공) 국교 정상화와 아시아 평화 전망
- 경제: 원화절상에 따른 문제점, 원자재 확보에 관한 한 · 일 간 협력 방안, 한 · 일 간 합작투자 방향

❋ 한국 측 참석자: 이선근 영남대학교 총장(회장서리), 이동원 전 외무부장관(상임위원) 등 6명

2. 제10차 한 · 일 협력위원회 합동상임위원회가 1973.9.28.~29. 서울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 노부스케 일 · 한 협력위원장 등 일본 측 대표단은 9.28. 아래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함.

❋ 박 대통령 언급 내용

-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 관계 진전 평가
- 김대중 사건 발생에 대한 유감 표명, 범인 체포 시 응당 처벌 및 정부 기관원 개입 시 사과 용의
- 다나카 수상의 신중한 처리 노력에 대한 사의 표명
- 향후 문제 처리 과정에서 불순 세력의 개입 경계 필요
- 양국의 신중하고 냉정한 자세 요망
- 한 · 일 각료회의 개최 및 양국 간 경제협력 문제는 김대중 사건과 별개로 계속 추진 희망

❋ 일본 측 대표단 언급 내용

- 한 · 일 관계 균열 기도 세력에 대한 경계 필요
- 김대중 사건과 별개로 한 · 일 각료회의 개최 필요성에 동감 표명
- 최소한 동구 제국 및 중국(구 중공), 소련의 한국 승인 시 일본의 북한 승인 고려

Thieu, Nguyen Van 월남 대통령 방한, 1973.4.11.-12.

| 73-021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의전과/동남아2과
MF번호	C-68 / 1 / 1~329(329p)

월남 Nguyen Van Thieu 대통령이 1973.4.11.~12. 아래와 같이 한국을 방문함.

1. 방한 경위

❁ 유양수 주월남대사는 1973.3.7. Thieu 대통령 면담 시 동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희망했으며, 미국, 로마교황청, 영국, 독일 방문 후 한국 방문을 추진한다는 구상임을 3.11. 보고한바, 정부는 환영 입장을 통보하는 한편 아래 사항 파악을 지시함.

- 동 대통령의 희망 일정, 수행원 및 토의 의제
- 방한 형식 (State Visit 또는 Official Visit 등)

❁ 정부는 월남 대통령 방한 시 정상회담에서 협의할 문제 중 경제협력 분야와 관련하여 주월남대사 보고 및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대월남 3단계 경제협력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동 대통령 방한 계기 한-월남 외무장관 회담 개최를 결정함.

2. 방한 관련 자료 작성

❁ 방한 대비 영접 계획 자료

- 의전 행사 세부 설명서, 행사 일정

❁ 월남 정세 자료

- 1973.1.27. 파리 '베트남 전쟁 종결 및 평화 회복에 관한 협정' 체결 배경
- 현 정권의 월남전 종전 후 대비 태세 및 전후 복구 계획

❁ 만찬사, 환영 및 환송 연설문

3. 한국-월남 정상회담 결과

❁ 박정희 대통령 언급 요지

-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 경험을 토대로 월맹의 협정 준수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평가함.
- 평화협정문에 월남 내 월맹군 철군 및 월맹의 협정 위반 시 제재 조치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미국의 실책으로 평가함.

❁ Thieu 대통령 언급 요지

- 종전 협정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는 점에 동의함.
- 베트콩이 유리한 시점이 도래할 때까지 시간 벌기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월맹군의 침투 수준은 대규모 전쟁을 촉발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
- 닉슨 대통령의 개인적인 지원 의지를 신뢰하며, 전후 복구에 미국의 지원과 협력을 희망함.
- 전후 복구 2단계 계획을 설명하고, 미국과 국제기구들의 관련 동향을 설명함.

4. 김용식 외무부장관은 1973.4.12. Tram Van Lam 월남 외상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함.

김종필 국무총리 일본 방문

| 73-0219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C-64 / 12 / 1~256(256p)

김종필 국무총리는 1973년 중 아래와 같이 일본을 2회 방문함.

1. 제1차 방문(1.9.~11.)

- 김 총리는 1972.7.31.~8.5. 일본 방문을 추진하였으나 연기됨.
- 1973.1월 트루만 미국 전 대통령 장례식 조문 후 귀로에 일본을 비공식 방문하기로 결정함.
- 동 방문은 일본 다나카 내각 출범 후 최초의 방문으로 김 총리는 방일 중 다나카 수상, 오히라 외상 및 전 수상을 면담함.
- 국내 및 일본 언론은 김 총리 방일이 양국 간 협력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보도함.

2. 제2차 방문(6.10.~16.)

- 김 총리는 5.21.~6.9. 유럽 4개국을 순방하고 귀국 길에 일본을 비공식 방문함.
- 김 총리의 동 방문 결과임.
  -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민단을 방문하고 교민을 독려함.
  - 다나카 수상 및 오히라 외상과의 면담을 통해 아래 의제를 협의함.
    - 일본의 대북한 접촉에 대한 우려 전달
    - 유엔에서의 양국 간 협력, 한반도 문제 결의안 상정 보류 문제
    -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저지 관련 협력 문제
    - 양국 간 경제협력 및 무역수지 균형 문제
    - 약 23만 명의 교포가 인식 부족 또는 조총련계의 방해공작으로 영주권 미신청 상태임을 감안하여 협정영주권 신청 유자격자 중 미신청자에 대한 구제 문제
- 국내 및 일본 언론들은 김 총리의 방일 중 한 · 일 양국 간 광범위한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 및 협력관계가 논의된 것으로 보도하였으며, 요미우리 신문은 김 총리의 정치인으로서의 위상에 대한 평가와 함께 김 총리가 유럽과 일본을 방문한 것은 북한의 WHO(세계보건기구) 가입에 따른 한국의 우려 등에 따른 것으로 보도함.

김종필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73.5.21.-6.9. 전3권. V.1 사전교섭 I

| 73-022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64 / 13 / 1~298(298p)

김종필 국무총리는 1973.5.21.~6.9.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및 스페인 등 유럽 4개국을 순방함. (모나코 및 독일 경유)

1. 방문 목적

- 유럽에서의 동서 간 긴장 완화 추세, 구주통합의 꾸준한 진전 및 중국(구 중공)과 소련의 지원을 배후로 하는 북한의 유럽 국가들에 대한 접근 시도 계속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함.
- 유럽 우방 국가 방문을 통해 국제 정세 전반에 관한 의견 교환, 남북대화 진전 추이 및 정부 입장 설명, 정치·경제·문화 등 제 분야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함.

2. 방문 일정

- 5.20.~21. 독일 함부르크/프랑크푸르트 경유
- 5.21.~24. 벨기에 방문
  - 벨기에 수상,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위원장 면담
- 5.24.~26. 이탈리아 방문
  - 수상 면담 및 대통령 예방
- 5.26.~28. 제네바 경유
- 5.28.~31. 스페인 방문 (Private Visit)
- 5.31.~6.1. 독일 본 경유
  - 빌리 브란트 총리 면담
- 6.1.~4. 니스, 모나코 경유
  - 모나코 국왕 예방
- 6.4.~9. 프랑스 방문

김종필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73.5.21.-6.9. 전3권. V.2 사전교섭 II

| 73-022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64 / 14 / 1~244(244p)

김종필 국무총리의 1973년 스페인 및 프랑스 방문 교섭 경과 및 방문 준비 관련 사항임.

1. 스페인(5.28.~5.31.)

- ❁ 스페인은 국무총리의 방문을 환영하나 한국 측이 희망하는 기간 중 공식 방문 접수가 어려움을 설명하고, Private Visit 형식의 방문을 제의함.
- ❁ 정부는 동 스페인 측 제의를 수용하고, 국무총리 방문 중 스페인 총통, 부총통 및 황태자 예방 등의 일정을 추진함.
- ❁ 주스페인대사관은 동 방문 준비 자료 및 사진 등 방문 결과 관련 자료를 송부함.

2. 프랑스(6.4.~9.)

- ❁ 프랑스 정부는 김 총리의 프랑스 방문 제의에 환영 입장을 표명함.
- ❁ 주프랑스대사관은 프랑스 측과 아래 일정 추진을 협의함.
  - 대통령 예방
  - 수상, 외상, 상 · 하원 의장, 재무상 면담
  - 지방 산업 시찰
- ❁ 주프랑스대사관은 방문 일정 협의 경과 및 프랑스 재무상 면담 시 제기할 석유화학 단지 확대 문제 등 한 · 프랑스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검토 자료를 보고함.
- ❁ 니스 및 모나코(6.1.~4.)를 경유함.

김종필 국무총리 구주 순방, 1973.5.21.-6.9. 전3권. V.3 결과보고

| 73-022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64 / 15 / 1~240(240p)

김종필 국무총리의 1973.5.21.~6.9. 유럽 순방 결과임.

1. 벨기에(5.21.~24.)

- 주벨기에대사관은 방문 관련 언론 보도를 보고함.
- 국무총리는 언론 회견을 통해 한국의 EC(구주공동체)와의 교역관계 강화 희망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함.

2. 스페인(5.28.~31.)

- 총통 면담 시 동 총통은 남북대화 현황, 북한 주민의 불만 등 북한 사정, 남북한 간의 생활 수준 차이, 한-미 관계, 미국의 중국(구 중공) 승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심을 표하는 한편 스페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지지가 확고함을 다짐함.
- 부총통과의 면담 시 부총통은 한국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지지를 확인하였으며, 한국 입장 지원을 위한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스페인어권 국가에 대한 스페인의 영향력 행사를 다짐함.

3. 독일(5.31.~6.1.)

- 빌리 브란트 총리를 면담함.
- 현지 언론들은 동 방문을 사실 보도함.

4. 프랑스(6.4.~9.)

- 대통령 예방, 상 · 하원 의장, 외상 및 경제재무상 면담, 수상 주최 오찬 및 지방 시찰 일정을 가짐.
- 지스까르 데스탱 경제재무상 면담 시 김 총리는 경제관계 다변화 측면에서 한-프랑스 간 협력 강화 희망을 전달하는 한편 한국의 중화학공업 발전 계획에 대한 프랑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한바, 경제재무상은 상호 금융기관 설치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김 총리는 동 제안을 환영함.
- 한국의 중화학공업 발전 계획에 대해 프랑스 측은 한국 측 계획이 확정되면 검토할 것을 약속함.
- 주프랑스대사관은 대사관의 경제관계 업무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보고함.

5. 종합 평가

- 국무총리는 순방 중 아래 2개 사안을 중점적으로 제기함.
  - 서방 국가들의 성급한 대북한 접촉 및 승인은 남북한 간 균형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됨.

- 정부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 중화학공업 발전계획의 실행을 위한 투자 등 지원을 요청함.

❋ 국무총리는 서구 국가들의 대북한 개방정책과 동구권 국가들의 대한국 문호개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반도의 균형이 유지될 것임을 강조하고, 유럽 우방 국가들의 이해와 지원을 요청한바, 순방국 지도자들은 아래 반응을 표시함.

- 기본적으로 한국 입장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표명함.
- 한편으로 동 · 서 강대국 간 관계 변화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에 한국도 순응할 필요가 있음.
- UN에서 한반도 문제 불상정이라는 정책을 고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권고함.

6. 국무총리 주재 구주지역 공관장회의(6.3.) 시 공관장 건의 사항

❋ 주요 사안에 관한 본부의 상세한 자료 제공

❋ 유럽 주재 공관 간 횡적 소통 강화

❋ EC에 대한 경제 통상 활동 강화

7. 순방 후속 조치

❋ 외무부는 방문 국가별 필요 조치 및 유럽 주재 공관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

Ramgoolam, Seewoosagur 모리셔스 수상 방한, 1973.8.18.-22.

| 73-022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의전과/아프리카과
MF번호	C-68 / 2 / 1~372(372p)

모리셔스 Seewoosagur Ramgoolam 수상이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1973.8.18.~22. 한국을 방문함.

1. 방문 경위

- 주영국대사는 1973.6.21. 런던 주재 모리셔스대사(고등판무관)가 최경록 대사를 방문하여 Ramgoolam 수상의 한국 방문을 희망하였음을 보고함.
- 정부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6.30. 주영국대사에게 동 수상의 방한 수락을 통보함.
  - 유정회 회장인 백두진 특사의 4.24. 모리셔스 방문 시 동 수상의 방한을 제의함.
  - 모리셔스는 비동맹 회원국이며, 한국 원양어선들의 기항지인 점 등 경제적 측면을 고려함.

2. 방문 일정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예방
- 외무부,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방문
-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구로동 수출자유지역 시찰

3. 김용식 외무부장관 면담(8.20.)

- 김 장관은 아래 대북한 정책 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함.
  - 비동맹회의가 남북한에 대해 동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임.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안보적으로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안임.
  - 정부는 6·23 특별성명을 통해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문호개방 정책을 천명함.
- 모리셔스 수상은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4. 관련 자료 현황

- 양국 간 우호관계 강화에 관한 동 수상 연설문
-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 등에 관한 언론 보도
- 면담 자료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문제 등 정부 입장
  -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
- 참고 자료
  - 정부의 대북한 정책과 관련한 유엔 문제 등 의제별 입장 자료
  - 모리셔스 개황

김용식 외무장관 호주, 뉴질란드 방문, 1973.5.13.-18.

| 73-022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C-64 / 16 / 1~263(263p)

김용식 외무부장관은 1973.5.13.~18. 뉴질랜드 및 호주를 방문함.

1. 방문 배경 및 목적

- ❋ 호주 및 뉴질랜드에 1972.12월 노동당 정부가 수립되어 새로운 외교 정책을 추진 중으로 양국은 중국(구 중공)에 대한 승인 및 수교와 함께 월맹 및 동독을 승인함.
- ❋ 호주는 1973.2.15. 정부에 대한 각서를 통해 대한국 정책 수정 및 대북한 접촉 확대 가능성을 시사함.
- ❋ 북한은 월남전 종전 및 대외관계 급변 추이에 편승하여 뉴질랜드 및 호주 양국에 대한 접근을 추진함.
- ❋ 전통 우호국인 양국의 신정부 인사들에게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한국 입장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지지를 확보함.

2. 뉴질랜드 방문(5.13.-15.)

- ❋ Kirk 수상 겸 외상을 2차례 면담하고 아래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양국 간 통상관계 강화 방안에 관해 협의함.
  - 남북대화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 및 북한의 태도를 설명하고, 남북대화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남북한 간 세력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함.
  - 서방 국가들의 성급한 대북한 접근 확대는 동 세력 균형을 저해할 것임을 설명하고, 뉴질랜드의 대북한 접촉 자제를 요청함.
  -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상정 연기 입장을 설명함.
  -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기구의 존속 필요성을 전달함.
- ❋ Kirk 수상은 아래와 같이 언급함.
  - 한국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 및 대한반도 정책 불변 입장을 확인함.
  - 여사한 기본 입장과 별개로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고, 궁극적으로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임을 언급함.

3. 호주 방문(5.15.~17.)

- ❋ Whitman 수상 겸 외상, Bernard 부수상 겸 국방상 등을 면담하여 뉴질랜드 측에 전달한 바와 동일한 취지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 입장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요청함.
- ❋ Whitman 수상은 아래와 같이 언급함.
  - 한국 정부에 대한 각서는 23년 만에 이루어진 정권 교체에 따른 새로운 대외 정책 수립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

- 호주는 한반도 문제를 중국(구 중공), 월맹 및 동독 등의 분단국과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을 재차 당황케 하고 북한을 승인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약속함.
- 그러나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에 따라 제3국에서의 북한 외교관 접촉 허용 및 소규모, 일시적 통상대표단의 방문을 허용할 것임.
- 호주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기여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북한 통상대표단 방문이 북한 승인을 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함.

4. 연설문

❁ 김 장관은 뉴질랜드 도착성명을 통해 양국 간 우의 존중 및 뉴질랜드의 지속적인 한국에 대한 지지 희망을 표명함.

❁ 김 장관은 뉴질랜드에서의 오찬사를 통해 한국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대화를 추진하였으나, 북한의 비협조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동 대화가 1~2년 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방국들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 호주 Whitman 수상은 오찬 시 환영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 1948년 에바트 노동당 외상의 유엔 총회 의장 수임 당시 한국의 독립이 승인됨.
- 6·25 발발 시 노동당 정부가 참전을 결정하였음을 상기함.
- 호주 정부는 남북대화를 지지하며, 남북한은 공히 한반도의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5. 뉴질랜드 언론은 김 장관 방문 보도를 통해 한국 정부는 뉴질랜드의 대북한 관계 동결을 희망하였으며,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약속하였음을 보도함.

김용식 외무장관 멕시코 및 브라질 방문, 1973.8.1.-7. 전2권. V.1 멕시코

| 73-022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65 / 1 / 1~261(261p)

김용식 외무부장관은 1973.8.1.~4. 멕시코를 공식 방문함.

1. 방문 경위

- ❋ 주멕시코 이창희 대사의 1973.6.11. Emilio Rabasa 외상 면담 시 동 외상은 유엔 총회 이전 김용식 장관의 멕시코 방문을 초청함.
- ❋ 김 장관은 정부의 6·23 특별성명 신외교 정책 시행을 위한 각국의 지지 및 협조 확보 차원에서 비동맹의 지도국인 멕시코에 대한 방문 초청을 수락함.

2. 방문 일정

- ❋ 에체베리아 대통령 예방
- ❋ 외상 회담, 훈장 서훈 및 기자회견

3. 방문 결과

- ❋ 김 장관은 대통령 예방 및 외상 면담 시 6·23 성명 및 정부의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설명함.
- ❋ 멕시코 대통령 및 외상은 멕시코는 제3세계의 지도적 국가일 뿐만 아니라 중남미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서 한반도 긴장 완화 및 아시아 지역 평화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하고,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함.

4. 공동성명서 요지

- ❋ 최근 국제적인 긴장 완화 추세는 아시아에서의 평화 정착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
- ❋ 김 장관은 6·23 특별성명에 천명된 바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을 설명하였으며, 멕시코 외상은 동 정책이 아시아에서의 긴장 완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에도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고 멕시코 정부의 지지를 약속함.
- ❋ 양국은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계속적인 협력을 약속함.

5. 언론 보도

- ❋ 국내 및 멕시코 언론들은 멕시코의 한국 입장 지지 요지의 기사를 보도함.

6. 외무부장관 연설문 및 기자회견

- ❋ 멕시코의 자주독립을 위한 노력 및 유엔에서의 군축 추진 등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함.
- ❋ 정부의 6·23 성명에 따른 정책 실현을 위해 멕시코가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함.

김용식 외무장관 멕시코 및 브라질 방문, 1973.8.1.-7. 전2권. V.2 브라질

| 73-022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65 / 2 / 1~222(222p)

김용식 외무부장관은 멕시코 방문에 이어 1973.8.4.~7. 브라질을 공식 방문함.

1. 방문 목적 및 일정

- 브라질 정부 초청으로 정부의 6·23 성명에 대한 설명 및 지지 확보를 위해 방문함.
- Gibson Barboza 외상과의 2차례 회담, Medici 대통령 예방 및 훈장 서훈 등의 일정을 가짐.

2. Barboza 외상과의 회담 결과

- 동 외상은 6·23 성명을 지지하며, 유엔에서 한국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함.
- 한국 이민에 대한 문호개방을 약속함.

3. 공동발표문 요지

- 양국 외무장관은 현 국제 정세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양국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함.

4. 멕시코 및 브라질 방문 결과 관련 외무부 작성 종합 보고 요지

- 멕시코와 브라질 방문을 통해 양국의 북한에 대한 기본 입장을 확인함.
- 정부의 6·23 선언에 대한 지지를 확보함.
- 특히 멕시코는 한국의 대공산권 접촉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함.

5. 언론 보도

- 국내 및 브라질 언론은 브라질 정부가 한국의 유엔 동시가입을 지지하였음을 보도함.

6. 외무부장관의 브라질 외상 주최 오찬 시 답사 및 장관 주최 만찬사 요지

- 양국은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
-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계속 노력을 경주할 것임.

김용식 외무장관 독일 · 영국 및 미국 순방, 1973.2.12.-3.2. 전5권. V.1 독일 기본문서집

| 73-0227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구주과/북미1과
MF번호	C-65 / 3 / 1~238(238p)

김용식 외무부장관은 1973.2.14.~3.2. 독일, 영국 및 미국을 공식 순방한바, 2.14.~18. 독일 방문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방문 경위

- 주독일대사관은 Walter Scheel 독일 외상이 김 장관의 독일 공식 방문을 초청하는 1972.7.31.자 공한을 송부해 왔음을 보고한바, 정부는 동 초청을 수락함.
- Scheel 외상은 1970.5월 한국 방문에 대한 답례로 외무부장관의 독일 방문을 초청함.

2. 방문 목적

- 1972.12월 동 · 서독 기본조약 체결 및 동 · 서독의 1973년 유엔 동시가입 등 국제 정세 변화와 관련하여 독일의 협상 경험을 파악함.
- 정부의 남북대화 상황을 독일 측에 설명하는 한편 협조와 지지를 요청함.
- 1972년 7 · 4 공동성명 및 10월 유신에 대해 설명함.

3. 방문 일정

- Scheel 외상의 와병으로 인해 외상을 대리한 Paul Frank 외무차관과 회담함.
- 하이네만 대통령 예방, 경제성 장관 및 내독성 장관 면담, 서베를린 및 함부르크 방문 일정을 가짐.

4. 방문 성과

- 독일 측은 상당 기간 북한과 일체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 동-서독 관계 및 남북대화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한국에 대한 차관 공여 및 문화 교류 등에 관하여 협의함.

5. 동 방문에 앞서 외무부는 아래 요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함.

- 독일 방문을 통해 아시아 정세에 관해 협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임.

김용식 외무장관 독일 · 영국 및 미국 순방, 1973.2.12.-3.2. 전5권. V.2 독일 자료집

| 73-0228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구주과/북미1과
MF번호	C-65 / 4 / 1~259(259p)

김용식 외무부장관의 1973.2.14.~18. 독일 공식 방문과 관련한 면담 자료, 참고 자료, 연설문 및 언론 보도 내용임.

1. 면담 자료

- 의제별 발언 자료 (아시아 정세 설명, 한-독일 간 정무 및 경제 분야 협력 등)
- 외상 등 독일 인사들의 인적 사항 관련 자료
- 브란트 수상의 1973년도 정책연설문
- 주베를린총영사관이 작성한 베를린 관련 자료 (베를린 지위에 관한 전승국 협정 등)
- 주독일대사관 작성 현황 자료
- 외무부 작성 면담 자료
- 참고 자료 및 독일 개황

2. 연설문

- 김 장관은 독일 도착 성명을 발표하고, 독일 외상대리 주최 만찬 및 장관 주최 만찬 시 연설함.
- 김 장관은 상기 도착성명 및 만찬사를 통해 독일의 평화 구축 노력 및 경제 발전을 평가하는 한편 독일과 한국이 분단 극복 및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유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국의 한반도 평화통일 의지를 밝힘.

3. 양국 언론 보도 요지

- 김 장관의 독일 방문은 동 · 서독 간 및 남 · 북한 간 대화와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임.
- 김 장관은 독일 외무차관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간 관심사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관하여 협의할 예정임.

김용식 외무장관 독일 · 영국 및 미국 순방, 1973.2.12.-3.2. 전5권. V.3 영국 기본문서집

| 73-0229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구주과/북미1과
MF번호	C-65 / 5 / 1~147(147p), Re-26 / 11 / 1~6(6p)

김용식 외무부장관은 독일, 영국 및 미국 공식 순방의 일환으로 1973.2.18.~21. 영국을 공식 방문함.

1. 김 장관은 영국 정부 초청에 따라 Douglas-Home 영국 외상의 1972.2.15.~16. 한국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영국을 방문함.

2. 김 장관의 영국 측 인사 면담 시 주요 의제

- 남북회담 경과 설명
- 10월 유신에 대한 이해 제고
- 영국의 대북한 접촉 및 관계 발전 자제 요청
- 유엔에서의 협력
- 아시아 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
- 양국 간 통상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 협의

3. 방문 일정

- Edward Heath 수상 예방
- Alec Douglas-Home 외상, 외무차관, 소비성 장관, 개발청 장관 면담
- 원자력연구소 방문

4. 방문 결과

- 외상 및 외무차관 면담 시 영국 측은 북한에 대한 영국의 승인이 없을 것임을 확약함.
- 소비성 및 개발청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무역 확대 방안, 합작 사업 추진 및 기술 협력에 관해 협의함.

김용식 외무장관 독일 · 영국 및 미국 순방, 1973.2.12.-3.2. 전5권. V.4 영국 자료집

| 73-0230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구주과/북미1과
MF번호	C-65 / 6 / 1~267(267p)

김용식 외무부장관의 1973.2.18.~21. 영국 공식 방문 관련 면담 자료, 참고 자료, 연설 문 및 언론 보도 내용임.

1. 면담 자료

- 주영국대사관 작성 참고 자료 (일정, 수상 및 외상 등 면담 인사 인적 사항)
- 외무부 작성 정무, 경제 등 의제별 국 · 영문 발언 자료 및 면담 자료
- 영-중국(구 중공) 관계 등 참고 자료

2. 연설문

- 김 장관 공항 도착 성명
- 영국 외상대리 주최 만찬 시 만찬사, 장관 주최 오 · 만찬사
- 김 장관은 상기 제반 연설을 통해 영국의 지원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고, 정부의 남북대화 추진 노력 등을 설명함.

3. 양국 언론 보도 요지

- 김 장관은 영국 수상 및 외상 등 고위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남북대화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영국 측의 지지를 확인함.
- 양측은 극동아시아 정세 및 양국 관계 강화 방안에 관해 협의함.
- The Times지는 김 장관과의 단독 회견 기사를 통해 김 장관의 한반도 주변 4강에 대한 한국 입장 및 남북대화 추이 설명, 영국의 한국에 대한 기술 지원 등에 관하여 보도함.

김용식 외무장관 독일 · 영국 및 미국 순방, 1973.2.12.-3.2. 전5권. V.5 미국 및 종합보고서

| 73-0231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구주과/북미1과
MF번호	C-65 / 7 / 1~198(198p), Re-26 / 12 / 1~8(8p)

김용식 외무부장관은 독일, 영국 및 미국 공식 순방의 일환으로 1973.2.22.~27. 미국을 방문함.

1. 외무부장관은 2.22.~25. 워싱턴에서 애그뉴 부통령 예방, 로저스 국무장관, 국무부 차관 및 차관보와의 회담, 하원 의장 예방, 상 · 하원 외교위원장 방문 등의 일정을 가졌으며, 2.25.~27. 뉴욕 방문 시 미주 지역 수출 진흥 공관장회의를 주재함.

2. 주요 인사 면담 결과는 아래와 같음.

- ❋ 모건 하원외교위원장, 풀브라이트 상원외교위원장 면담 시 국군 현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미국의 군사지원을 요청함.
- ❋ 로저스 국무장관과의 회담 시 남북대화에 따른 긴장 완화를 이유로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및 군사원조 축소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하여 독일의 예를 들면서 힘의 우위 유지 필요성을 설명한바, 미국 측은 주한미군 철수 유보 및 국군 현대화계획 지원을 약속함.
- ❋ 미국 측과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유지 및 유엔 대책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 ❋ 키신저 안보보좌관을 면담 시 동 보좌관은 주한미군 철수 유보 및 현 병력 수준 유지를 약속하였으며,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 등 관심사에 관해 의견 교환을 함.

3. 김 장관은 상 · 하원 의원들과의 오 · 만찬 연설을 통해 세계적인 긴장 완화 추세에 따라 남북대화를 추진 중이나, 성과를 언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의 대화에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힘의 우위 유지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의 제반 지원을 요청함.

4. 국 · 내외 언론은 김 장관 방미와 관련하여 주한미군 철수 유보, 유엔 대책, 미-중국(구 중공) 간 대표부 설치 등 제하의 기사를 보도함.

5. 외무부는 국군 현대화계획 및 미국의 지원 등에 관한 장관 방미 준비 자료를 작성함.

6.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 대한 독일, 영국 및 미국 순방 결과 종합보고서 요지임.

- ❋ 주한미군 유지 및 미국의 군사지원에 관한 미국 행정부 및 의회의 동향 파악
- ❋ 10월 유신으로 인한 한 · 미 간 이견 해소 및 정부의 남북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 확인
- ❋ 영국과 독일에서는 양국 주요 인사들이 한국에 대하여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표명하였으며, 특이사항으로 북한을 국제 사회로 이끌어 내어야 북한의 모순을 더 드러낼 수 있음을 언급

김용식 외무장관 일본 방문, 1973.4.13.-18.

| 73-023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Re-26 / 13 / 1~41(41p)

김용식 외무부장관은 1973.4.11.~23.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총회 참석차 일본을 방문함.

1. 외무부장관은 방일 중 인도네시아 말리크 외상, 일본 오히라 외상 및 나카소네 통산상을 면담하고 오사카 소재 민단 시찰 및 교포와의 만찬 일정을 가짐.

2. 동 일본 방문과 관련하여 외무부는 10월 유신에 대한 설명 및 이해 제고, 7·4 공동성명 및 남북대화, 일-북한 간 접촉 문제 등에 관한 의제별 참고 자료 및 발언 자료를 작성함.

3. 방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오히라 외상과의 1973.4.16. 회담에서 대륙붕 공동개발 문제, 지역협력 문제 및 북한의 WHO(세계보건기구) 가입에 대한 대처 문제를 협의함.

- 대륙붕 공동개발 문제는 조세 및 조광료 문제에 관해 한국 측이 제시한 안에 대해 실무회담을 통해 검토하기로 합의함.
- 지역협력 문제에 관하여 외무장관이 가급적 기존 협력기구의 존속 및 육성 발전을 강조한 데 대하여 일본 측은 양국 간 긴밀히 협조할 것을 제의함.
- 북한의 WHO 가입 저지를 위한 일본 측의 적극적인 한국 입장 지지를 요청한바, 오히라 외상은 이해를 표명하고 지지를 약속함.

❁ 나카소네 통산상과의 4.17. 면담에서 대륙붕 공동개발 문제, 일-북한 경제 교류 문제 및 한-일 교역 확대 문제를 협의함.

- 대륙붕 문제는 원칙적인 문제가 타결되었음에 따라 단시일 내에 협정에 조인하기로 합의함.
- 일-북한 경제 교류 문제에 관하여 외무장관은 일본 수출입은행 자금 사용 및 민간무역사무소 설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바, 나카소네 장관은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함.

❁ 말리크 인도네시아 외상과의 4.13. 회담 결과임.

- 지역협력 문제에 관하여 양국 간 긴밀한 협력에 합의함.
- 외무부장관이 남·북 간 균형 유지의 필요성, 북한의 WHO 가입 저지 및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논의 연기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데 대해 인도네시아 외상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함.

김용식 외무장관 구주 및 튀니지 순방, 1973.8.8.-15.

| 73-023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65 / 9 / 1~130(130p)

김용식 외무부장관은 1973.8.8.~15. 벨기에, 프랑스, 튀니지 및 네덜란드를 방문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 외무부는 6·23 특별성명에 따른 신외교 정책에 대한 각국의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 1973년 중 동남아 2개 반 및 북유럽, 중남미 국가들에 특별사절단 파견을 결정함.
- ❋ 동 사절단 파견과 별도로 김 장관은 멕시코, 브라질 및 유엔 방문 후 벨기에, 프랑스, 튀니지 및 네덜란드 방문을 결정함.

2. 벨기에 방문(1973.8.9.)

- ❋ 벨기에 외상의 휴가로 인하여 외상대리 임무를 맡은 G. De Saeger 보건상, Kempinaire 국제통상상 및 외무성 다비뇽 총국장과 회담함.
- ❋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벨기에 측의 지지를 확보함.

3. 프랑스 방문(1973.8.9.~12.)

- ❋ 휴가 중인 Jobert 외무담당상과 남부 Le Poet-Laval에서 8.10. 회담함.
- ❋ 동 외무담당상은 정부의 6·23 선언 및 대중국(구 중공) 및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프랑스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는 한편 주한유엔군 계속 주둔 문제에 대한 이해를 표명함.

4. 튀니지 방문(1973.8.12.~14.)

- ❋ 부르기바 대통령을 예방하고, 모하메드 마스무디 외상과 회담함.
- ❋ 튀니지 측은 6·23 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비동맹정상회의에서 한국 입장을 대변하여 한국에게 불리한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도록 협조할 것을 약속함.
- ❋ 회담 후 양국 외무장관 간 아래 내용의 한-튀니지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 6·23 선언에 대한 튀니지의 지지
  - 중동 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
  - 한-아랍 국가들과의 우호관계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5. 네덜란드 방문(1973.8.14.~15.)

- ❋ Den Uyl 수상을 예방하고, Kooymans 외상서리(외상 휴가 중)와 회담함.
- ❋ 수상 예방 시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는 한편 아시아 정세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바, 수상은 한국 입장에 대한 이해를 표명함.

6. 국내 언론은 동 순방을 통해 유엔에서의 협력, 대아랍권 진출 및 대중립국 외교에 있어서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도함.

윤석헌 외무차관 중남미 순방, 1973.3.18.-4.3.

| 73-023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65 / 10 / 1~257(257p)

윤석헌 외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사절단이 1973.3.18.~4.3. 파나마,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및 트리니다드토바고를 순방함.

1. 방문 배경

- 중국(구 중공)이 유엔에서의 대표권 획득 이후 국제 사회 진출을 강화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북한은 각 지역 특히 중남미 지역에 대한 침투 활동을 시도함.
- 동 국가들과의 제반 우호관계 증진을 통하여 북한의 침투 시도를 저지하는 한편 유엔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대두됨.

2. 파나마 (3.20.~22. 주멕시코대사관이 겸임)

- 대통령 예방 및 외상, 상공상과 회담함.
- 아래 요지의 양국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 양국 간 친선관계 재확인, 문화협정 가조인 및 조속한 무역협정 체결
  - 양국 간 상호 대사관 설치에 합의

3. 베네수엘라 (3.22.~24. 주브라질대사관이 겸임)

- 대통령 예방 및 외상과 회담함.
- 문화협정 서명 시기 및 양국 간 상호 대사관 설치에 합의함.

4. 가이아나 (3.24.~27. 주브라질대사관이 겸임)

- 부수상, 광물임업상 및 경제상을 면담하고, 무역협정 및 경제기술협정에 서명함.
- 가이아나 경제사절단의 1972.11월 방한 이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것으로 관찰됨.
- 향후 협력 강화 추이에 따라 한국 공관을 설치키로 합의함.

5. 트리니다드토바고 (3.27.~29. 주브라질대사관이 겸임)

- 외무담당국무상, 농수산장관, 상공장관서리를 면담하여 한국의 대카리브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계획을 밝히고, 무역, 문화협정 등 협정 체결을 제의함.
- 외무성은 사절단의 제안에 신중한 자세를 보인 반면 농수산성 및 상공성은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

6. 관련 자료

- 외무부차관 중남미 방문 성과 보고서 국별 성과
- 사절단장의 관찰 사항
- 파나마와 가조인한 문화협정 및 무역협정 문안, 가이아나와 서명한 무역협정문 및 T&T(트리니다드토바고)에 제시한 문화, 통상 협정 문안

7. 국내외 언론은 동 사절단의 방문 사실 및 상주대사관 설치, 협정 체결 등 합의 사항을 보도함.

Potolot, Joseph 중앙아프리카 외무장관 방한, 1973.3.13.-22.

| 73-023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C-68 / 3 / 1~185(185p)

중앙아프리카공화국 Joseph Potolot 외상 부처가 1973.3.13.~22. 방한함.

1. 동 외상은 김용식 외무부장관의 공식 초청으로 방한하여 아래 일정을 가짐.

- 대통령 예방 및 훈장 서훈
- 국무총리 예방, 외무장관 면담
- 구로동 수출공업단지, 부산 금성사 및 동명목재, 울산 공업단지 방문

2. 외무부장관과의 1973.3.13. 회담 시 동 외상은 양국 간 우호관계를 강조하고, 한국이 아무런 조건 없이 최대한의 원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관련 첨부자료

- 일정 주선 및 의전 자료(국 · 불문)
- 면담록

Malik, Adam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방한, 1973.6.5.-9.

| 73-0236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의전과
MF번호	C-68 / 4 / 1~240(240p)

인도네시아 Adam Malik 외상이 1973.6.5.~9. 방한함.

1. 방한 경위

❋ 동 외상은 외무장관의 인도네시아 방문 당시 방한 초청을 수락한 바 있으며, 주자카르타총영사의 1972.4.10. Malik 외상 면담 시 동 외상이 방한 초청 수락 의사를 재확인함에 따라 외무부는 9월 유엔 총회 이전 방한 실현 입장을 결정하고, 방한 추진 교섭을 지시함.

❋ 주자카르타총영사는 Malik 외상의 북한 방문 초청 수락과 관련한 7.9. 동 외상 면담 결과를 아래 보고함.

- 동 외상의 북한 방문 수락 관련 진의를 타진한바, 동 외상은 북한 측의 방문 초청에 따라 수락하였으며 한국 방문 후 판문점을 거쳐 북한을 방문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동 외상은 만약 북한 측이 상기 계획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한국만 방문할 것임을 언급함.

❋ 외무부는 주자카르타총영사에게 동 외상의 북한 방문 유보를 교섭하도록 지시함.

❋ 주자카르타총영사는 1973.1.14. 동 외상 면담 시 동 외상이 6월 중 방한 예정임을 보고하였으며, 외무부장관의 뉴질랜드 방문 중 동 외상과의 통화 시 1973.6월 방한에 합의함.

2. 방한 일정

❋ 대통령 예방 및 오찬

❋ 국회의장 예방, 외무장관 회담

❋ 부산 및 울산 산업시설 시찰

3. 방한 결과

❋ 양국 간 6.5. 외무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수교 등 현안 및 지역협력 문제와 함께 한국의 적극적인 인도네시아 경제개발사업 참여 등 경제 협력 문제를 협의함.

❋ 동 외상은 방한 후 6.10. 자카르타 공항 귀국 성명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정식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였음을 발표함.

4. 공동성명서 및 연설문

❋ 6.8.자 공동성명서 요지

- 양국은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유대 강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함.
- 한국 측의 남북대화, 평화통일 정책 및 문호개방 정책에 관한 설명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측은 깊은 이해를 표명하고, 한국의 긴장 완화를 위한 기여를 높이 평가함.

- 양국 간 경제 협력 특히 인도네시아가 추진하는 제5차 경제개발계획에 대해 한국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함.

❁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시 말리크 외상은 답사를 통해 양국이 국민의 복리 향상 및 평화 추구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함.

5. 인도네시아 언론은 양국 간 외교관계 승격 및 경제 협력 관련 협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함.

Kissinger, Henry A.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73.11.16.

| 73-023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C-68 / 5 / 1~133(133p)

미국 Henry A. Kissinger 국무장관이 1973.11.16. 한국을 방문함.

1. 방한 경위

- 김용식 외무부장관은 1973.10.4. Kissinger 장관에 대한 서한을 통해 동 장관의 중국(구 중공) 방문 전후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함.
- 주미대사는 11.13. 국무성 차관으로부터 Kissinger 장관이 11.16. 방한할 것임을 통보해 왔음을 보고함.
- 동 국무장관은 방한 전후 일본 및 중국을 방문함.

2. 방한 결과

- 대통령과 2회 면담함.
- 미국 · 중국 및 일본 · 중국 간 관계 개선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 및 한국의 안보 유지를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함.

3. 국내외 언론은 동 국무장관이 한국 지도자들과의 회담을 통해 중국 방문 시 주한미군 철수 등 한국의 이익에 배치되는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음을 보도함.

Rogers, William P.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73.7.18.-20.

| 73-023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의전과
MF번호	C-68 / 6 / 1~200(200p)

미국 William P. Rogers 국무장관이 1973.7.18.~20. 한국을 방문함.

1. 방한 경위

- 주미대사는 1973.4.13. 동 국무장관의 6월 말 일본 개최 미 · 일 합동무역경제위원회 참석 계기에 방한 초청을 추진할 것을 건의함.
- 주미대사는 6.28. 동 국무장관 면담 시 7월 중순으로 확정된 동 장관의 일본 방문 기회에 한국도 방문할 것을 권유한바, 동 장관은 호의적인 반응을 표명하였으며 이에 따른 김용식 외무부장관의 공식 방한 초청을 수락함.
- Frederik Dent 상무부장관도 동행함.

2. 방한 일정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예방
- 외무부장관과의 회담
- 기자회견

3. 방한 결과

- 외무부장관 회담
  - 유엔 문제, 대동구권 문호개방 문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 및 국군 현대화 문제, 남북대화 및 한 · 미 간 통상 문제를 협의함.
  - 유엔 총회에서 주한유엔군 철수 결의 가능성 등과 관련한 유엔 대책 협의
- 대통령의 국무장관 접견
  - 대통령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주한유엔군 철수 저지, 서방 국가들의 성급한 대북한 관계 개선 반대 및 미국의 한국군 현대화 지원에 관한 입장을 전달함.
  - 동 국무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다짐함.

4. 동 국무장관은 출국 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문제 등에 관하여 질의 · 응답함.

Nguza Karl I Bond 자이르 외무장관 방한, 1973.11.13.-16.

| 73-023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의전과
MF번호	C-68 / 7 / 1~358(358p)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Nguza Karl I Bond 외상이 1973.11.13.~16. 방한함.

1. 방한 경위

- 주콩고대사는 1972.5.2. Nguza 외상 면담 시 동 외상의 방한 가능성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하였음을 보고하고, 동 외상에 대한 공식 방한 초청을 건의함.
- 외무부는 5.31. 대사 명의로 동 외상의 방한을 초청하도록 지시한바, 동 외상은 1973.9.18. 방한 초청 수락을 공식 확인함.
- 김용식 외무부장관의 10.5. 뉴욕에서의 Nguza 외상 면담 시 동 외상은 11.13.~16. 방한 계획임을 밝힘.
- 동 외상은 방한 전후 일본, 중국(구 중공) 및 북한을 동시 순방 예정임.

2. 방한 일정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예방
- 외무부장관대리와의 회담(장관 유엔 출장 중)
- 수출공단 방문 등

3. 방한 결과

- 박 대통령의 동 외상 접견 시 외상은 콩고는 비동맹국가의 일원으로 극단적인 입장에 치우치지 않으며, 한반도의 평화적 해결 방법을 지지함을 언급함.
- 외무부장관대리와의 회담에서 통상협정에 가서명하는 한편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아래 내용의 공동성명서 발표에 합의함.
  - 6·23 성명에 대한 콩고의 지지 확인
  - 양국 간 통상협정 가서명
  - 외무부장관의 콩고 방문 초청 수락

4. 주콩고대사는 Nguza 외상의 남·북한 방문 후 면담 내용을 아래 보고함.

- Nguza 외상은 1973.11.17.~20. 북한 방문 중 김일성과의 면담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의 '2개의 한국' 정책에 대하여 입장을 밝힌바, 김일성은 타당성을 수긍함.
- 동 외상은 콩고-북한 간 경제협정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함.

특별사절단 아프가니스탄 · 스리랑카 방문, 1973.11.1.-12.

| 73-024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C-65 / 11 / 1~65(65p)

노신영 주뉴델리총영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유엔 총회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에 대비한 교섭을 위해 1973.11.1.~12. 스리랑카 및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함.

1. 정부 훈령

❁ 공통 훈령

- 6·23 성명 설명
-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지지 교섭

❁ 국별 훈령

- 아프가니스탄에 대하여는 공산 측 결의안에 최소한 기권을 확보하도록 교섭함.
- 스리랑카에 대하여는 공산 측 결의안에 최소한 기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교섭하고, 외교관계 수립 및 기술협력 문제를 협의함.

2. 스리랑카 방문(11.1.~5.) 결과

❁ 노 총영사는 외무성 차관, 차관보 및 유엔국장을 면담하여 한국과 스리랑카 간 관계 증진 방안에 관해 협의하고, 무역성 등 경제부처의 차관들과 면담함.

❁ 양국 간 통상 증진, 경제기술 협력 등 전반적 관계 확대를 제안한바, 스리랑카 측은 우호적인 반응을 표시하였으며, 어업 협력, 합작 투자 등에 관해 협의함.

❁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와 관련하여 외무성 차관은 남북한에 대한 중립 입장 및 결의안에 대한 기권 방침을 밝힘.

3. 아프가니스탄 방문(11.8.~12.) 결과

❁ 노 총영사는 광공업장관, 외무장관 서리, 외무성 정무국장 등을 면담함.

❁ 아프가니스탄 측은 비동맹주의 고수 입장에 따라 금번 유엔 총회에서 소련과 알제리아가 제출한 한반도 관련 결의안에 기권할 것임을 약속함.

❁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함.

특별사절단 요르단 방문, 1973.11.11.-17.

| 73-024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C-65 / 12 / 1~43(43p)

박찬현 주터키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1973.11.11.~17. 요르단을 방문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요르단을 겸임 중인 주터키대사는 1973.9.7. 아래와 같이 요르단 출장을 건의함.
- 후임 대사에 대한 요르단 정부의 아그레망 동의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
- 중동지역 반미 성향 국가들의 압력 행사에 따른 요르단 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처

❋ 외무부는 주터키대사의 요르단 출장을 허가하는 한편 유엔 총회에 대비하여 1973.10월 중 아프리카, 중동 및 아시아 지역에 특별사절단을 파견할 것을 대통령에 건의하여 재가를 받음.

2. 제1차 방문(9.22.) 결과

❋ 외무담당 국무상 및 외무차관을 면담하고, 최근 카이로 주재 북한대사의 요르단 방문 관련 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 측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함.

❋ 요르단 측은 북한 대사의 중동 문제 관련 발언 및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반대 입장에 대해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을 설명함.

❋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요청에 대해 최대한 호의적으로 한국 측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약속함.

3. 제2차 방문(11.11.~17.) 결과

❋ 주터키대사는 정부 훈령에 따라 대통령 특사로 요르단 재방문을 계획했으나 제2차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공항 폐쇄 등의 사태로 방문이 지연된바, 유엔 총회 결의안 지지 확보를 위한 훈령 및 대통령 친서를 지참하고 11.11. 요르단을 2차로 방문함.

❋ 요르단 수상은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외무담당 국무상은 분명한 입장 표명을 유보함.

❋ 11.17. 요르단 국왕 예방 시 중동 사태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한바, 동 국왕은 한국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변함.

특별사절단 사우디아라비아 · 쿠웨이트 방문, 1973.12.11.-24.

| 73-024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C-65 / 13 / 1~53(53p)

최규하 대통령 외교담당 특별보좌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별사절단이 1973.12.11.~24.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를 방문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제2차 중동전쟁 이후 중동 원유 생산국들은 친이스라엘 서방 국가들에 대한 원유 공급을 삭감함에 따라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이 우려됨.
- 정부는 원유 공급 삭감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원활한 원유 공급 확보를 목적으로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 및 쿠웨이트에 대통령 특사 파견을 결정함.

2. 훈령 및 대통령 친서

- 훈령
  - 중동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 및 원유 공급 감량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설명
  - 북한의 침략 위협 설명 및 협력 사업 추진 강화 협의 희망
- 원활한 원유 공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대통령 친서 전달

3. 사우디아라비아(12.12.~17.) 방문 결과

- 파이살 국왕, 외상 및 석유상 서리 등 고위 인사를 면담하고, 훈령에 따른 정부 입장을 설명함.
- 추가 구두 설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영토 점령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 정부의 대이스라엘 관계 재고 용의를 표명함.
- 사우디 측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원유가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함.
- 사우디 국왕은 친서에 대한 답신을 통해 한국 정부가 대이스라엘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특사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원유 공급에 대해 최대한 관심을 갖고 검토할 것임을 약속함.

4. 쿠웨이트(12.18.~21.) 방문 결과

- 국왕, 외상, 상공상 및 재무석유상을 면담하고, 원유의 원활한 공급을 요청하는 한편 중동 문제에 관한 아랍 입장에 대한 지지를 설명함.
- 쿠웨이트 국왕은 한국 입장에 대한 검토 용의를 언급하였으나, 석유상은 쿠웨이트 석유 공급 삭감은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로 한국만을 특별 대우는 어려움을 언급함.

특별사절단 르완다 방문, 1973.3.27.-30.

| 73-024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C-66 / 1 / 1~77(77p)

최완복 주벨기에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아프리카 순방의 일환으로 1973.3.27.~30. 르완다를 방문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북한은 국제적인 긴장 완화 추세 및 남북대화의 추진을 기회로 6개 사절단을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 파견하여 수교 및 유엔에서의 지지 확보를 위한 외교적 활동을 강화함.
-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르완다, 모리셔스 및 마다가스카르 등 동부아프리카 3개국에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함.
- 모리셔스 및 마다가스카르는 파견을 취소함.

2. 훈령

- 북한의 침투 저지 및 북한 사절단의 방문 효과 극소화
- 북한 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 모색
-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교섭
- 르완다는 북한과의 수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엔에서 한국 입장을 지지하여 왔으므로 계속적인 지지를 확보토록 교섭

3. 방문 결과

- Kayibanda 대통령, 외상 등 고위 인사를 면담하고, 주르완다 미국대사도 면담함.
- 르완다 측은 남북한 간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불상정 입장을 지지함을 약속함.
- 르완다 측은 5만 달러 상당의 원조 제공에 사의를 표명하고, 외무부장관의 외상 방한 초청에 대해 원칙적인 수락 입장을 표명함.

특별사절단 아프리카지역 순방, 1973.4.15.-5.18.

| 73-024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C-66 / 2 / 1~204(204p)

백두진 유정회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1973.4.15.~5.18. 케냐, 모리셔스, 스와질란드, 레소토, 보츠와나, 말라위 및 우간다 등 동부아프리카 7개국을 순방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외무부는 1973.3.29.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북한 침투 저지, 순방 대상국과의 우호관계 증진, 북한 사절단의 아프리카 방문 효과 극소화 등을 위한 특사 파견에 관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득함.

2. 방문 결과

❁ 케냐(4.15.~21.)
- 대통령 및 부통령 겸 외상 대리는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약속함.

❁ 모리셔스(4.21.~24.)
- 수상은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를 약속하였으며, 사절단장은 북한의 WHO(세계보건기구) 가입에 대한 모리셔스의 지지 입장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함.

❁ 스와질란드(4.25.~28.)
- 수상 및 보건장관은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 및 WHO 북한 가입 관련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약속함.

❁ 레소토(4.30.~5.4.)
- 국왕, 수상 및 외상 면담 시 레소토 측은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를 약속하였으나, 북한의 WHO 가입 문제에 관하여는 현지 대표에게 일임한다고 언급함.

❁ 보츠와나(5.5.~8.)
- 외무담당 국무상은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를 확약함.

❁ 말라위(5.9.~13.)
- 말라위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대해 국외자로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입장 및 WHO 문제에 대한 기권 입장을 표명함.

3. 외무부는 순방 중 제기된 협력 요청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관련 실국의 조치 사항을 작성함.

특별사절단 아프리카지역 순방, 1973.7.24.-8.8.

| 73-024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C-66 / 3 / 1~86(86p)

문덕주 주이탈리아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1973.7.24.~8.8.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가봉, 토고, 나이지리아 및 니제르 등 5개국을 순방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외무부는 1973.3.29.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북한 침투 저지, 순방 대상국과의 우호관계 증진, 북한 사절단의 아프리카 방문 효과 극소화 등을 위한 특사 파견에 관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득함.

2. 훈령

❋ 6·23 선언을 통해 천명한 신외교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 통상, 경제, 기술 협력 강화 방안 모색
❋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확보
❋ 5개국별로 현지 사정에 따른 개별적인 훈령

3. 방문 결과

❋ 콩고민주공화국(7.24.~27.)
- 외무차관, 보건상 등 면담 시 콩고 측은 양국 간 우호 관계의 지속적인 유지를 약속하는 한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지지를 시사함.

❋ 가봉(7.27.~30.)
- 외무차관 및 보건상은 6·23 선언에 대한 이해 및 유엔에서 신뢰에 입각한 지지를 약속함.

❋ 토고(7.30.~8.2.)
- 외상서리인 대통령 보좌관 및 외무차관 등을 면담하여 6·23 선언에 대해 설명함.

❋ 나이지리아(8.2.~4.)
- 외무성 차관보를 면담하고 6·23 선언 및 신외교정책에 대해 설명함.

❋ 니제르(8.6.~8.)
- 대통령 및 외상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시에도 북한을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으며, IPU (국제의원연맹) 등 국제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지지를 약속함.

4. 후속 조치

❋ 외무부 관련 실국은 사절단이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후속 조치를 건의한 사항들에 대한 자료를 작성함.

특별사절단 아주 순방, 1973.8.18.-29.

| 73-024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C-66 / 4 / 1~65(65p)

신상철 체신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1973.8.18.~29.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미얀마(구 버마) 3개국을 순방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외무부는 6·23 선언에 따른 신외교정책 시행 추진을 위한 각국의 지지 및 협조 확보, 유엔 총회에서의 협조를 교섭하기 위하여 지역별 사절단을 파견하는 계획에 대해 1973.7.23. 대통령의 재가를 득함.

2. 훈령

- 외무부는 지역별 사절단 파견에 따른 훈령을 작성함.
- 동 훈령은 일반적인 지침 및 국가별 교섭 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됨.

3. 방문 결과

- 사절단은 8.27. 미얀마를 방문하여 부수상(국가원수 대행) 및 외상을 면담하고, 정부 입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함.
- 미얀마 측은 정부의 한반도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4. 언론 보도

- 미얀마 언론은 사절단 방문 및 부수상 면담 사실을 간략히 보도함.

친선사절단 동남아 순방, 1973.4.8.-29.

| 73-024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C-66 / 5 / 1~249(249p)

최규하 대통령 외교담당 특별보좌관을 단장으로 하는 친선사절단이 1973.4.8.~29.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6개 국가 및 일본(비공식)을 순방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외무부는 1973.3.28. 동남아 지역에 대한 북한의 외교 공세에 대한 대처, ASPAC(아시아태평양 이사회) 등 지역협력 문제 협의 및 방문 국가들과의 통상 및 제반 관계 증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특사 파견에 관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득함.

2. 훈령 및 친서

- 공통 훈령에는 10월 유신 및 남북대화에 대한 설명, ASPAC 문제 협의, 유엔에서의 협조 및 북한의 국제기구 침투 저지 교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별 훈령에는 외교 공관 설치 등 양자 관계 사항을 포함함.
- 대통령의 각국 국가원수에 대한 친서를 지참함.

3. 방문 결과

- 필리핀(4.9.~11.) 마르코스 대통령 및 외상은 한국에 대한 지지 불변을 약속함.
- 태국(4.11.~15.) 국왕을 알현하고 수상 겸 외상, 부수상 등을 면담한바, 태국 측은 한국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와 함께 ASPAC 존속 문제, 유엔 및 WHO(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약속함.
- 말레이시아(4.18.~22.) 수상 겸 외상, 공보상 및 외무차관 등을 면담한바, 말레이시아 측은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을 지지하나 북한에 대한 승인을 추진할 것임을 언급하고, 말레이시아의 중립주의를 설명함.
- 싱가포르(4.22.~24.) 대통령 및 외상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지지한다고 약속하였으며, 싱가포르 측과 지역협력 문제에 관해 협의함.
- 미얀마(4.24.~26.) 국가원수, 외상 및 공보장관 등을 면담한바, 미얀마 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립 입장 및 평화통일 지지 입장을 밝힘.
- 인도네시아(4.26.~29.) 대통령, 부통령, 외상 및 국방상은 정부의 대화를 통한 통일 노력에 대한 지지 및 남북한 관계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지역협력 문제와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함.

특별사절단 서남아 및 중동 순방, 1973.8.12.-29.

| 73-024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1과/중동과
MF번호	C-66 / 6 / 1~292(292p)

최규하 대통령 외교담당특별보좌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1973.8.12.~29. 네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인도, 파키스탄 및 이집트 등 서남아 및 중동 7개국을 방문함. (파키스탄 및 이집트는 접수국 사정으로 방문이 취소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외무부는 6·23 성명에 따른 신외교정책 추진을 위한 각국의 지지와 협력 및 유엔 총회에서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단 파견에 관하여 1973.7.23. 대통령의 재가를 득함.

2. 친서 및 훈령

- 공통 훈령은 6·23 선언 설명, 주한미군 철수 문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북한 선전의 허위성 등 9개 사항을 포함하며, 국별 훈령은 비동맹회의에서의 협조 및 대상국과의 외교관계 격상 및 원유의 장기 공급 문제 등에 관한 정부 입장을 포함함.
- 국가원수에 대한 대통령 친서를 통해 특사 파견을 통한 협의에 따라 양국 간 관계가 강화될 것을 희망함.

3. 방문 결과

- 네팔(8.12.~14.) 국왕을 알현하고 외무장관 등을 면담한바, 네팔 측은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현존 영사관계의 외교관계로의 격상에 찬성 입장을 표명함.
- 이란(8.15.~17.) 수상은 주한유엔군 유지 및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주한 상주공관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임을 약속하였으며, 양측은 정유공장 합작 건설 등 경제관계 강화 방안에 관해 협의함.
- 레바논(8.17.~20. 및 8.24.~25.) 대통령 및 수상을 예방하고 주요 인사들과 면담한바, 레바논 측 입장은 아래와 같음.
  - 한국 입장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고, 6·23 성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함.
  -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에 대해 기본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이나, 강대국들의 입장을 관망 후 처리할 것으로 관찰됨.
- 사우디아라비아(8.20.~23.) 파이살 국왕을 예방하고 외무차관을 면담한바, 사우디 측 입장은 아래와 같음.
  - 반공국가로서 한국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한편 주한 공관 설치를 추진할 것임을 밝힘.

- 경제, 무역관계 확대 제의를 환영하고, 한국의 대아랍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측면 지원 의사를 표명함.

❋ 인도(8.26.~29.) 간디 수상 및 부통령을 예방하고 외상 등 주요 인사들을 면담한바, 인도 측 입장은 아래와 같음.

- 6·23 선언을 지지하며,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겠다고 약속함.
-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북한에 대한 고려도 있음에 따라 시기 문제임을 언급함.

함병춘 특사(대통령 정치담당특별보좌관) 구주 순방, 1973.7.5.-22.

| 73-024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66 / 7 / 1~24(24p)

함병춘 대통령 정치담당특별보좌관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973.7.5.~22.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및 프랑스 등 유럽 4개국을 순방함.

1. 방문 목적

- 유럽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침투에 대처
- 한반도 문제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한 지지 확보

2. 방문 결과

- 오스트리아(7.5.~8.)
  - 외무차관을 면담함. (외상은 헬싱키 구주안보회의 참석 중)
  - 오스트리아 측은 6.23 선언에 대한 지지, 주한유엔군 철수 반대 및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대한 협조 의사를 표명함.
- 스위스(7.8.~11.)
  - 외무성 아시아지역담당 총국장을 면담함. (외상 및 외무차관은 헬싱키 구주안보회의 참석 중)
  - 동 총국장은 북한과의 외교관계 개선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스웨덴의 북한 승인 조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함.
- 네덜란드(7.11.~14.)
  - 외상을 면담함.
  - 사회당 출신인 동 외상은 6.23 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특사의 성급한 북한 승인 자제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겠다고만 언급하는 한편 주한 유엔군사령부 해체 문제에 관해서는 한반도 정전 체제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검토 가능성을 표명함.

3. 후속 조치

- 특사는 오스트리아 방문 결과 보고를 통해 오스트리아를 대동구권 무역 증진 추진을 위한 거점으로 지정하고, 공관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를 건의함.
- 외무부 관련 실국의 의견을 검토함.

친선사절단 중미 순방, 1973.8.21.-10.19.

| 73-025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66 / 8 / 1~159(159p)

김동조 주미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친선사절단이 1973.8.21.~10.19. 가이아나, 바하마,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및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영연방 5개국을 순방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외무부는 1973년 북한이 남북대화 및 국제적 화해 추세에 편승하여 중남미 지역 국가들에 대한 관계 강화를 시도하고 있음에 따라 동 국가들에 대해 정부의 남북대화 추진 및 6·23 선언에 대하여 설명하고, 유엔에서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친선사절단 파견을 결정함.

2. 훈령 및 친서

❋ 공통 훈령은 순방국과의 우호 증진, 남북대화 및 6·23 선언 설명,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요청 내용을 포함하며, 국별 훈령은 각 국가별 관계를 고려하여 경축사절 파견, 국교 수립, 경제 및 통상 진흥 등의 사항을 포함함.

❋ 국가원수에 대한 대통령 친서를 통해 특사와의 협의에 따른 양국 간 우의 및 협력 증진을 희망함.

3. 방문 결과

❋ 가이아나(8.22.~24.) 외상 및 외무차관을 면담하여 알제리 개최 제4차 비동맹회의에서 북한의 비동맹 가입 신청서 제출 가능성을 제기하고, 부당함을 지적하는 한편 북한 사절단의 가이아나 방문 시 활동 동향 및 상주공관 설치 문제를 협의한바, 가이아나 측 입장은 아래와 같음.

- 북한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나 한국에 상주공관을 개설할 경우에는 북한 승인 및 북한 주재공관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한국이 이해하도록 요청함.
-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조기 철수 반대 및 북한의 비동맹 가입 반대 입장을 표명함.

❋ 바하마(9.9.~11.) 수상, 외상 및 외무차관을 면담하여 외교관계 수립을 제의하는 한편 남북대화 추진 및 6·23 선언에 대하여 설명하고 경제, 기술 협력 및 통상 진흥에 관해 협의한바, 바하마 측은 외교관계 수립 문제를 각의에 상정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남북대화 및 6·23 선언에 대해 이해와 관심을 표명함.

❋ 자메이카(10.18.~19.) 수상 및 외무차관을 면담한바, 자메이카 측 입장은 아래와 같음.

- 수상은 현실적인 견지에서 한국에 협력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
- 외무차관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평가함.
- 사절단은 방문 결과 보고서를 통해 자메이카가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아직 입장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됨을 보고함.

친선사절단 중남미지역 순방, 1973.8.12.-28.

| 73-025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66 / 9 / 1~209(209p)

김영선 국토통일원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친선사절단이 1973.8.12.~28. 과테말라, 파나마, 에콰도르 및 칠레 등 중남미 4개국을 방문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외무부는 6·23 선언에 따른 신외교정책 추진을 위한 각국의 지지와 협조 및 유엔에서의 협조 확보를 교섭하기 위하여 지역별 사절단 파견에 관한 1973.7.23. 대통령 재가를 득함.

2. 훈령 및 친서

- 공통 훈령은 남북대화 및 6·23 선언 설명,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교섭을 포함하며, 국별 지침은 양자 관계 및 현안 문제 관련 사항을 포함함.
- 국가원수에 대한 대통령 친서를 통해 사절단의 방문 및 협의에 따른 양국 간 우의 및 협조 강화를 희망함.

3. 방문 결과

- 과테말라(8.13.~15.) 외상 및 경제통상상은 6·23 선언 및 유엔에서의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하였으며, 양국 간 무역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함.
- 파나마(8.15.~17.) 실권자인 토리조스 방위군사령관, 외상, 부통령 및 상공부장관을 면담한바, 파나마 측은 6·23 선언 및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를 약속하는 한편 양국 간 통상 및 문화 협정 체결 추진 및 한국의 기술조사단 파견 등 경제 협력을 요청함.
- 에콰도르(8.17.~21.) 대통령 및 외상은 6·23 선언 및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를 약속하고, 경제기술협정의 조기 체결을 희망하였으며, 북한 사절단이 에콰도르를 3차에 걸쳐 방문하는 등 접근을 시도 중임을 설명함.
- 칠레 측의 무성의 및 무관심에 따라 칠레 방문을 취소하고, 사절단 실무 수행원이 단독으로 칠레를 방문하여 정세를 파악함.

4. 사절단은 면담 내용, 향후 대책 및 건의 사항 등에 관한 순방보고서를 제출함.

특별사절단 동부아프리카지역 순방, 1973.7.21.-8.18.

| 73-025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C-66 / 10 / 1~236(236p)

장상문 외무부 정무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1973.7.21.~8.18.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르완다, 우간다, 에티오피아 및 탄자니아 등 동부아프리카 6개국을 방문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외무부는 6·23 선언 및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교섭을 위한 특별사절단 파견을 결정함.

2. 훈령

❋ 공통 훈령: 6·23 선언 및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이해 제고, 통상, 경제기술 협력 강화 방안 모색
❋ 국별 훈령: 양국 관계를 고려한 관계 증진 방안 협의

3. 방문 결과

❋ 마다가스카르(7.21.~23.) 외무차관 및 외무성 관계국장을 면담함.
- 외무차관은 북한 사절단 방문 시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해체 및 주한유엔군 철수를 지지한 바 있으며, 중국(구 중공)으로부터 8백만 달러 차관을 지원 받았음을 언급함.
- 사절단은 유엔에서의 주한유엔군 철수 문제 관련 기권 이상의 기대는 어려울 것임을 보고함.

❋ 말라위(7.25.~28.) 외무차관 면담을 통해 남북대화에 대한 찬성, 제3국의 남북대화 개입 반대 및 주한유엔군 철수안에 대한 기권 등 기존 입장을 확인함.

❋ 르완다(7.29.~8.1.) 대통령을 예방하고, 외상을 면담함.
- 르완다 측은 정부의 신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였으나, 주한유엔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함.
- 사절단은 2,200만 달러 차관을 제공한 중국의 영향력으로 인해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함.

❋ 우간다(8.1.~8.3.) 외무차관서리를 면담하고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바, 우간다 측은 언질을 회피하였으며, 사절단은 한국 홍보영화 상영회를 개최함.

❋ 에티오피아(8.9.~12.) 외상을 면담함.
- 동 외상은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언급하는 한편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검토 중임을 시사함.
- 사절단은 에티오피아가 불원간 북한 승인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함.

❋ 탄자니아(8.14.~17.)를 방문한 장 사절단은 동국 인사 면담을 실현치 못함.

4. 후속 조치

❋ 외무부는 각 실국에 아프리카 3개 반 특사 활동 결과 후속 조치 이행을 지시함.

특별사절단 동부아프리카지역 순방, 1973.10.28.-11.11.

| 73-025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C-66 / 11 / 1~77(77p)

백인한 주케냐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1973.10.28.~11.11. 말라위,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소토,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등 동부아프리카 5개국을 순방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외무부는 1973.10.10. 제28차 유엔 총회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사를 파견을 결정함.
- 특사 파견을 통해 유엔에서의 한국 측 결의안에 대한 공동제안국을 확보하고, 공산 측 결의안에 대한 반대를 교섭함.

2. 대통령 친서

- 신임장 형식의 각국 국가원수에 대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함.

3. 방문 결과

- 말라위(10.28.~31.) 외무차관을 면담한바, 말라위 측은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및 공산 측 안에 대한 반대를 약속함.
- 레소토(11.2.~5.) 수상 및 외상을 면담함.
  - 레소토 측은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공산 측 안에 대한 반대 및 한국 측 결의안에 대한 공동제안국 참여를 약속함.
  - 특사는 레소토 정부에 경제협력자금 5만 달러를 제공함.
- 보츠와나(11.6.~8.) 외무담당국무상을 면담한바, 동 국무상은 대통령에게 한국 측 입장을 잘 설명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성으로 인해 주저하는 입장을 보임.
- 스와질란드(11.9.~11.) 수상 및 외무담당국무상을 면담함.
  - 한국 측 결의안에 대한 공동제안국 참여 요청에 대해 수상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스와질란드 측이 태권도사범 및 군악대 훈련 요원 파견을 요청한 데 대해 특사는 지원을 약속함.
- 남아프리카공화국(11.1.) 외무차관을 면담하여 레소토, 보츠와나, 말라위가 유엔에서의 한국 측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외무차관은 지원을 약속함.

특별사절단 서부아프리카지역 순방, 1973.3.22.-4.16.

| 73-025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C-66 / 12 / 1~168(168p)

박동진 주제네바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1973.3.22.~4.16. 니제르, 가나, 가봉,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및 차드 등 서부아프리카 5개국을 순방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외무부는 1973.3.15. 북한이 한국과의 단독 수교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사절단 파견 등 침투를 시도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특사 파견을 결정함.

2. 훈령

❋ 공통 훈령: 북한 침투에 대한 대처, 북한 사절단의 방문 효과 약화, 북한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안 모색, 남북한 대치 상주공관에 대한 지원, 통상 및 우호관계 증진, 유엔 총회에 대비한 정부 입장 설명

❋ 국별 훈령: 각국과의 관계에 따른 개별 교섭 지침

3. 방문 결과

❋ 니제르(3.22.~26.) 대통령 및 외상 등을 면담함.
- 니제르 측은 한국 입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및 북한의 WHO(세계보건기구) 가입 반대를 약속함.
- 특사는 도자기공장 건설 착공 및 공관 개설을 약속하였으며, 북한 사절단의 방문 효과를 약화한 것으로 평가됨을 보고함.

❋ 가나(3.27.~30.) 외상 및 외무차관은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 연기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였으며, 양측은 한국 총영사관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함.

❋ 가봉(4.1.~5.) 대통령을 예방하고 외상대리 및 외무차관을 면담함.
- 양국 간 기존 우호관계 및 가봉의 한국 입장 지지를 재확인함.
- 가봉 대통령은 북한 사절단 접수 거부 입장을 언명함.

❋ 콩고(4.5.~13.) 대통령 예방, 외상 등 인사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를 재확인하였으며, 외상은 방한 초청을 수락함.

❋ 차드(4.13.~16.) 대통령 예방 및 보건상 면담 시 차드 측은 기존 우호관계 강화 및 경제기술 협력 증진을 희망하였으며, 상주공관 설치 제의를 환영함.

4. 언론 보도

❋ 니제르 언론은 정부 특사 및 북한 사절단의 활동을 보도함.

❋ 가나, 콩고 언론은 정부 특사 및 북한 사절단의 니제르 방문에 관해 보도함.

특별사절단 서부아프리카지역 순방, 1973.4.20.-5.16.

| 73-025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C-66 / 13 / 1~75(75p)

임병직 전 외무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사가 세네갈, 감비아,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베냉(구 다호메이) 및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6개 서부아프리카 국가를 순방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외무부는 1973.3.29. 북한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침투에 대처하기 위한 대통령 특사 동·서부 아프리카 국가 파견에 관한 대통령 재가를 득함.

2. 방문 결과

❁ 세네갈(4.20.~23.)을 방문한 특사는 외무차관을 면담함.
- 특사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상주공관 설치를 계기로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을 희망함.
- 외무차관은 한국 측 입장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언급함.

❁ 감비아(4.24.~26.)에서 특사는 대통령, 외상 등 인사들을 면담하고, 전통적 우호관계의 재확인 및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함.

❁ 시에라리온(4.27.~30.)에서 특사는 대통령 및 외상을 면담하고, 시에라리온 측의 남북대화 관련 정부 입장 이해 및 양국 간 우호관계 강화 입장을 재확인함.

❁ 라이베리아(5.1.~4.)에서 특사는 대통령, 외상 등을 면담하고, 라이베리아 측의 양국 간 우호관계 지속 및 정부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인함.

❁ 베냉(5.9.~11.)에서 특사는 대통령 및 외상을 면담하고 한국 입장을 설명한바, 베냉 측은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한국과의 기존 우호관계를 재확인함.

❁ 부르키나파소(5.13.~16.)를 방문한 임 특사는 대통령, 수상 및 외상 등 인사들을 면담한바, 부르키나파소 측은 한국과의 친선관계 유지 입장을 표명하고, WHO(세계보건기구) 북한 가입에 대해서는 기권을 약속함.

특별사절단 서부아프리카지역 순방, 1973.7.19.-8.16.

| 73-025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C-66 / 14 / 1~190(190p)

한표욱 주오스트리아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1973.7.19.~8.16. 세네갈, 감비아,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가나 및 베냉(구 다호메이) 등 6개 서부아프리카 국가를 순방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외무부는 6·23 선언 및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교섭을 위하여 1973.7.14. 서부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사절단 파견을 결정함.

2. 정부 훈령

- 공통 훈령: 6·23 선언 및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통상 증진 및 경제기술 협력 방안 모색
- 국별 훈령: 양국 관계 현황에 따른 개별적인 지시

3. 방문 결과

- 세네갈(7.22.~25.)에서 특사는 외무차관 등 주요 인사들을 면담한바, 세네갈 측은 6·23 선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요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함.
- 감비아(7.25.~28.)에서 특사는 대통령, 부통령 겸 외상 등 주요 인사들을 면담한바, 감비아 측은 한국의 한반도 평화 유지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국 입장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함.
- 시에라리온(7.28.~8.1.)에서 특사는 수상대리, 외상대리 등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정부 입장을 설명한바, 시에라리온 측은 양국 간 우호관계 지속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한국 입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지지 입장 표명을 유보함.
- 라이베리아(8.1.~3.)에서 특사는 대통령, 외무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면담한바, 라이베리아 측은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한반도의 통일 및 평화 유지에 도움 되는 한 최대한 협조할 것임을 약속함.
- 가나(8.3.~7.)에서 특사는 외상 및 외무차관 등 주요 인사들을 면담한바, 가나 측은 분단국에 대한 중립정책 고수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언질을 유보함.
- 베냉(8.8.~11.)에서 특사는 대통령 및 외상대리 등 주요 인사들을 면담한바, 베냉 측은 북한 승인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기존 우호관계 지속 입장임을 약속하는 한편 주한유엔군 계속 주둔 필요성을 인정함.

특별사절단 서부아프리카지역 순방, 1973.10.29.-11.17.

| 73-025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C-66 / 15 / 1~48(48p)

강영규 주코트디부아르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별사절단이 1973.10.29.~11.17. 라이베리아, 니제르, 가나 및 감비아를 순방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외무부는 1973년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유엔 총회 교섭을 위하여 제4차 특별사절단 파견을 결정함.

2. 방문 결과

❁ 라이베리아(10.29.~11.1.)
- 특사는 대통령, 외상 등을 면담하고, 라이베리아가 유엔 총회에서 한국 측 결의안에 대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대통령 친서를 전달함.
- 라이베리아 측은 동 요청에 동의함.

❁ 니제르(11.5.~7. 및 11.10.~12.)
- 특사는 대통령, 국방장관 등을 면담하여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유엔에서의 한국 측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니제르 대통령은 한국 측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함을 밝힘.

❁ 가나(11.7.~9.)
- 특사는 외상 및 외무차관을 면담하고,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함.
- 가나 측은 분단국에 대한 중립정책 유지 입장을 재확인함.

❁ 감비아(11.12.~17.)
- 특사는 대통령 및 외상을 면담함.
- 감비아 측은 한국 측 결의안에 대한 찬성 및 공산 측 결의안에 대한 반대를 약속함.

장상문 특사(외무차관보) 북구 순방, 1973.2.8.-28.

| 73-025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67 / 1 / 1~129(129p)

장상문 외무부차관보가 특사 자격으로 1973.2.8.~28.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및 아이슬란드를 방문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외무부는 1973.2.2. 전통적으로 중립적인 북구 4개국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 시도 가능성에 따라 특사 파견을 통한 대응을 결정함.

2. 정부 훈령: 북구 4개국의 대북한 수교 움직임에 대응한 교섭 시행

❋ 북한과의 수교는 한반도 통일 노력을 저해
❋ 독일의 예와 같이 제3국의 인내 필요성
❋ 중국(구 중공)의 2개의 한국 입장에 반대
❋ 유엔의 권능 존중 필요

3. 방문 결과

❋ 노르웨이(2.8.~13.) 외상 및 외무성차관보를 면담한바, 노르웨이 정부는 노르웨이가 북구 국가 중에 최초로 북한을 승인한 국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함.
❋ 스웨덴(2.13.~16.) 측 입장에 대한 특사 보고
- 북한 승인 문제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스웨덴은 남북대화 추이에 따라 중립국 감시위원회 중요성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함.
- 북한 승인이 남북대화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며, 국가 승인에 관한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머지않은 장래에 북한을 승인할 것으로 관찰됨.

❋ 핀란드(2.19.~22.) 외무차관 및 외무성 간부 면담 결과 보고
- 핀란드 측은 북한 승인에 대한 국내적 압력이 있음을 설명함.
- 칠레 등에서 이미 남북한에 대한 승인을 결정하였음에 따라 핀란드도 북한을 승인할 것으로 관측됨.

❋ 덴마크(2.22.~25.) 외상 및 외무성 정무차관보를 면담한바, 덴마크 측은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변경할 의사가 추호도 없지만 여타 북구 국가들과의 공동보조 입장에 따라 북한을 승인할 계획임을 확인함.
❋ 아이슬란드(2.25.~28.) 외상과 면담한바, 동 외상은 성급한 북한 승인 의사가 없으나 여타 국가들과 공동보조를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확인함.

함병춘 특사(대통령 정치담당 특별보좌관) 북구 순방

| 73-025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67 / 2 / 1~165(165p)

함병춘 대통령 정치담당특보가 특사 자격으로 1973.3.1.~27.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를 1차 방문하고, 8.13~31.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독일 및 핀란드를 2차 방문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제1차 순방을 통해 북구 국가들의 북한 승인 움직임에 대응한 교섭을 시행함.
- 외무부는 6·23 선언 및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973.7.23. 제2차 순방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득함.

2. 훈령 및 대통령 친서

- 6·23 선언 설명 및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요청,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입장 및 주한 유엔군 철수 반대 입장 설명
- 제2차 순방 시 특사를 소개하는 신임장 성격의 방문국 국가원수에 대한 대통령 친서를 지참함.

3. 제1차 순방 결과

- 덴마크(3.18.~21.) 외상, 외무성 정무차관보 등 정부 인사 및 야당 인사들을 면담한바, 덴마크 측은 북한에 대한 승인이 남북대화를 저해하거나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높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을 승인할 입장임을 확인함.
- 스웨덴(3.21.~23.) 수상 및 외상을 면담한바, 스웨덴 측은 북한에 대한 승인 원칙에 변함이 없으며, 동 시기와 절차에 관하여는 신축적인 고려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시함.
- 노르웨이(3.23.~25.) 외상 및 국회 외교관계 의원들과 면담한바, 노르웨이 측은 성급하게 북한을 승인할 의사는 없으나 여타 북구 국가들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언급함.
- 핀란드(3.25.~27.) 외상 및 외무차관과의 면담, 언론인들과의 오찬을 통해 정부 입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바, 핀란드 측은 북한 승인에 대한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동 사안이 북구외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임에 따라 한국 측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약속함.

4. 제2차 순방 결과

- 덴마크(8.15.) 외상 및 외무성 차관보 등을 면담한바, 덴마크 측은 6·23 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8.30. 개최 예정인 북구외상회의에서 한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것임을 약속함.
- 스웨덴(8.16.~17.) 수상 및 외무차관 등을 면담한바, 스웨덴 측 입장은 아래와 같음.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북한이 반대하는 것은 부당함.
-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자체적인 해체가 바람직함.
- 주한유엔군의 주둔이 한반도 평화에 긴요함을 이해함.
- 북구외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협의할 예정인바,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기를 요망함.

❋ 노르웨이(8.20.) 외상 면담 시 동 외상은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기를 희망하는 한편 UNCURK 해체 및 주한 유엔군사령부를 유엔 총회에서 안보리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언급함.

❋ 아이슬란드(8.22.) 수상 및 외무차관을 면담한바, 아이슬란드 측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보편성 원칙에 따라 지지하며, 주한 유엔군사령부는 필요한 기간만큼 존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힘.

❋ 핀란드(8.27.~28.) 외상 면담 시 핀란드 측은 전통적인 중립정책에 의거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유보함.

❋ 독일(8.25.) 방문 중 주독일대사 주최 교민 및 유학생 모임에 참석하여 격려함.

Sak Sutsakhan 캄보디아(구 크메르) 특사 방한

| 73-026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C-68 / 8 / 1~134(134p)

캄보디아(구 크메르) Sak Sutsakhan 특사가 1973년 중 아래와 같이 2차에 걸쳐 방한함.

1. 제1차 방한(8.10.~16.)

❁ 방한 경위

- 주캄보디아대사는 7.21. 캄보디아 외상과의 오찬 시 캄보디아 측이 한국군의 군사지원을 요청하였음을 보고함.
- Poc Thiem 주한 캄보디아대사는 7.21. 외무부 아주국장과의 면담 시 Sak Sutsakhan 장군이 론놀 원수의 특사 및 순회대사 자격으로 대통령에 대한 친서를 지참하고 8.10.~15. 방한 예정임을 통보함.
- 외무부는 주캄보디아대사에게 동인의 방한 목적 등 관련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토록 지시한바, 주캄보디아대사는 8.8. 주재국 외상 면담 시 동 외상은 한국의 군사지원(군사훈련 요원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였음을 보고함.

❁ 방한 결과

- 8.11. 외무부장관대리 면담 시 캄보디아 정부의 크메르에서의 평화 회복에 관한 6개 항 선언 요지를 수교함.
- 8.14. 아래와 같이 대통령을 예방함.
  · 론놀 원수의 서한을 수교하고, 한국이 정치적, 외교적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기술원조 형태로 군장비 조작이 가능한 요원을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대통령은 외교적 분야에서의 지원은 아끼지 않겠으나, 요원 파견 문제는 미국 정부와 협의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후속 조치

- 주한 캄보디아대사는 8.17. 외무부차관을 방문하여 특사의 대통령 앞 서한 사본을 수교하는 한편, 특사의 대통령 예방 시 제기된 한국의 기술요원 지원 요청에 대한 외무부의 호의적인 검토 및 캄보디아 휴전 성립 시 전후 복구문제에 대한 가능한 지원을 요청함.
- 외무부는 8.31. 및 9.5.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보고하는 한편 관련 입장을 건의함.
  · 군사훈련 요원 파견 문제에 관하여 미국 정부의 입장을 타진한바, 미국 측은 한국이 결정할 문제로 미국이 제공한 무기 또는 장비가 캄보디아 측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 국방부와의 관련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 불가 입장을 건의함.
- 외무부 아주국장은 9.14. 주한 캄보디아대사 및 주캄보디아대사에게 상기 지원 불가 입장을 통보함.

2. 제2차 방한(11.14.~20.)

❁ 주캄보디아대사는 11.1. 동 특사가 재차 방한 예정임을 보고함.

❁ 외무부장관대리 면담 후 대통령 및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론놀 원수의 친서를 전달함.

- 동 특사는 캄보디아 공산주의자, 월맹군 및 베트콩이 연대한 인도차이나 공산전선 결성에 대응하여 우방 제국들이 외교적, 정치적 지원 및 원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대통령은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특사 방한 후 12월 동일한 내용의 답신 친서를 캄보디아 국가원수에게 송부함.

국회의원 대만(구 중국) 방문

| 73-026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C-67 / 3 / 1~63(63p)

국회 관계 인사의 1973년 중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 현황임.

1. 국회의원단 방문(8.27.~9.2.)

- ❁ 국회사무처는 8.21. 외무부에 김유탁 국회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의원단 일행이 대만을 방문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관련 협조를 요청함.
- ❁ 방문 일정
  - 외교부장 주최 만찬 참석, 국민당 비서장, 감찰원장 등 대만 지도자 예방
  - 고웅 소재 산업단지 방문

2. 백두진 유정회 의장 방문(10.27.~11.4.)

- ❁ 대만 정부 초청으로 방문함,
- ❁ 방문 일정
  - 행정원장, 입법원장 및 외교부장 등 예방
- ❁ 대만 언론들은 백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긴밀해졌음을 보도함.

3. 유진산 신민당 총재 방문(12.13.~17.)

- ❁ 주대만대사관은 7.23. 주일대사관으로부터 미국 방문 후 귀로에 동경을 방문한 유진산 총재가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며, 장경국 행정원장 등 주요 인사 면담 주선을 요청해 왔음을 보고하고 훈령을 요청함.
- ❁ 주대만대사관은 7.24. 대만 정부가 동 총재의 대중국(구 중공) 선린정책 등을 고려하여 유 총재의 대만 방문을 환영하지 않음을 보고함에 따라 외무부는 주일대사관에 동 대만 측 입장을 유 총재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함.
- ❁ 유 총재 일행은 대만 한 · 중문화협회의 초청으로 12.13.~17. 대만을 방문하고 부총통, 행정원장 및 입법원장 등 인사들을 예방함.

정일권 국회의장 구주 및 이란, 이디오피아 순방, 1973.4.12.-29.

| 73-026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중동과
MF번호	C-67 / 4 / 1~54(54p)

정일권 국회의장은 1973.4.12.~29. 덴마크, 이란, 터키 및 에티오피아를 방문함.

1. 방문 경위

- 외무부는 방문 국가들과의 기존 우호관계 확보, 북한 침투에 대한 대처 및 유엔에서의 정부 입장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일권 국회의장의 4개국 순방 계획을 결정함.
- 관련 공관에 일정 주선 등 방문 준비를 교섭하도록 지시함.

2. 방문 일정 및 결과

- 덴마크(4.12.~13.)
  - 국회의장은 수상, 외상 및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덴마크의 북한 승인 유보를 요청함.
  - 덴마크 측은 이미 정부, 국회 및 북구 5개국이 결정한 사항임에 따라 변경할 수 없음을 설명함.
- 이란(4.16.~20.)
  - 국회의장은 팔레비 국왕을 예방하고, 이란의 북한 승인 발표 보류를 요청함.
  - 팔레비 국왕은 아래 입장을 언급함.
    - 이란은 동독과 중국(구 중공)을 승인하였으며, 북한을 승인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조인을 마침.
    - 북한에 대한 승인이 한국에 도움이 될지언정 결코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임.
    -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비합법성과 비합리성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 이란 외상은 4.19. 북한에 대한 승인을 발표 예정임을 밝힘.
- 터키(4.20.~24.)
- 에티오피아(4.25.~28.)
  - 국회의장은 국왕을 예방하고, 하원의장 및 외무장관을 면담함.
  - 국왕은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방문 결과 보고 요지
    - 실무자들이 북한 승인을 건의하였으나, 국왕은 동 건의를 묵살하였음을 언급함.
    - 북한이 중국(구 중공)에 편승하여 에티오피아와의 국교 수립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바, 북한이 에티오피아와 수교할 경우 아프리카 전체에 미칠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전망됨.

국회의원단 미국 방문, 1973.7.23.-24.

| 73-026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C-67 / 6 / 1~92(92p)

김진만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의원단이 1973.7.23.~24. 미국을 방문함.

1. 방문 경위

- 정일권 국회의장은 미국 하원의장 초청에 따라 중남미 방문 계기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에 따라 동 방문이 취소됨.
- 동 기간 중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진만 부의장이 대신 공식 행사에 참석함.

2. 방문 결과

- 주요 일정
  - 알버트 하원의장 등 의회지도자, 로저스 국무장관 및 슐레진저 국방장관 면담
  - 피츠버그 소재 US Steel 공장 및 Westing House 핵시설 시찰
- 미국 인사들에게 6·23 선언 및 북한의 남북대화에 임하는 태도를 설명하고, 미국 측의 이해를 구함.
- US Steel의 대한국 투자, 미국 수출입은행의 융자 제공 등 투자 유치 활동을 추진함.
- 방문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미 의회 의원들 간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긴요함을 건의함.

국회의원단 동남아 순방, 1973.7.25.-8.3.

| 73-026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C-67 / 7 / 1~99(99p)

차지철 국회 내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의원단이 1973.7.25.~8.3.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를 순방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국회사무처는 1973.7.13.자 외무부에 대한 공문을 통해 의원 간의 친선 도모 및 의원협회 구성을 위한 사전 협의를 위하여 동 3개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일정 주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방문 결과

❋ 인도네시아(7.25.~27.)
- 수하르토 대통령을 예방하여 6.23. 선언에 대해 설명하고, 한 · 인도네시아 외교관계 승격에 관해 협의함.
- 인도네시아 국회 의장 등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해 한 · 인도네시아 의원협회 결성에 합의함.

❋ 호주(7.28.~8.1.)
- 하원의장, 수상서리 등 인사들을 면담함.
- 양국 간 의원간담회 개최에 합의하였으며, 한 · 호주 간 우호 증진 방안을 협의함.

❋ 뉴질랜드(8.1.~3.)
- 부수상, 야당 지도자 및 국회의장을 면담함.
- 지방 유가공 업체를 시찰함.

국회의원단 미주지역 순방, 1973.7.6.-28.

| 73-026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C-67 / 8 / 1~294(294p)

국회의원단 3개 반이 1973.7.6.~28.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를 순방함.

1. 의원단 구성

- 제1반: 이효상 공화당 의장(반장)
- 제2반: 백두진 유정회 의장(반장)
- 제3반: 박준규 공화당 정책위 의장(반장)

2. 방문 경위 및 목적

- 김정렴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1973.6.15. 주미대사에 대한 서신을 통해 10월 유신 1주년과 관련하여 미주지역 조야 및 교민들에게 유신정책 및 6·23 선언에 따른 신외교정책 홍보를 위한 의원 방문단 파견 계획을 통보하고, 필요 조치를 요청함.
- 미국 및 캐나다 대도시 순회 설명회 개최
- 한·멕시코 의회 및 의원 간 교류 문제 협의를 위한 멕시코 방문 일정 추가

3. 방문 결과

- 제1반 및 제3반은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뉴욕, 워싱턴, 휴스턴 및 시카고에서 교민, 유학생들과의 토론, 언론인 면담, 정관계 인사 면담, 미국외교협회에서의 간담회 개최 등 일정을 통해 유신정책과 남북한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설명함.
- 제1반은 1973.7.16.~19. 멕시코를 방문하여 상·하 양원 전원위원장, 외상 등을 면담하고, 양국 의원협회 결성을 제의하는 한편 동 준비를 위한 멕시코 양원의원단의 한국 방문을 초청함.
- 제2반은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 세인트루이스, 시카고, 토론토, 몬트리올 및 오타와에서 교민 모임, 정관계 인사 면담, 언론인 인터뷰 등 일정을 통해 유신정책과 남북평화통일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함.

4. 후속 조치

- 외무부는 의원단의 활동 내용, 성과 및 건의 사항을 수록한 보고서를 부내에 배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5. 언론 보도 및 자료

- 일부 국내 언론은 의원외교의 허실을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함.

Marcilio, Flavio 브라질 하원의장 및 의원단 방한, 1973.7.6.-10.

| 73-0266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68 / 9 / 1~169(169p)

브라질 Flavio Marcilio 하원의장 및 의원단이 1973.7.6.~10. 한국을 방문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주브라질 한국대사는 1972.5.11. 대사 주최 관저 만찬 시 Flavio Marcilio 하원 외교 위원장이 1971년도 파리 IPU(국제의원연맹) 회의 시 한국 대표의 방한 초청에 따라 1972년 로마 회의 참석 후 방한 희망을 표명하였음을 보고하고, 동인에 대한 정식 방한 초청을 건의함.
- 국회 외무위원장은 동 의장에 대한 공식 초청을 결정하였으나 10월 유신 선포에 따른 국회 해산으로 잠정 중단되었으며, 신국회 개원으로 국회의장 초청 방한을 추진함.
- 동 의장은 IPU 브라질 지부장을 겸임 중으로 브라질 대통령이 1973.3.1. 동인을 하원의장에 임명함에 따라 하원의장 자격으로 방한함.

2. 방문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외무장관 및 서울시장 예방
- 한국과학기술원, 선경 합섬 공장 시찰 및 이화여대 방문

3. 대통령 예방 결과

- 대통령은 브라질의 6·23 선언에 대한 지지 및 브라질 거주 한국 교민들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명함.
- 동 의장은 양국 간 우의 강화 희망을 표명함.

Cacua Prada, Antonio 콜롬비아 상원의원 방한, 1973.10.15.-21.

| 73-026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68 / 10 / 1~39(39p)

콜롬비아 Antonio Cacua Prada 상원의원이 1973.10.15.~21. 한국을 방문함.

1. 방문 경위

- ❁ 주콜롬비아대사는 1973.9.21. 보수당 소속 유력 인사인 Prada 의원이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 후 한국 방문을 희망함을 보고하고, 친한 인사 확보의 일환으로 정부가 동인을 초청하여 줄 것을 건의함.
- ❁ 외무부는 국회 측과 협의하여 국회 외무위원장 명의의 방한 초청을 결정함.

2. 방문 결과

- ❁ 국무총리, 국회의장 예방 및 각종 오 · 만찬 참석 일정을 가짐.
- ❁ 동 의원은 한국에 상주공관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자신이 초대 대사로 부임을 희망함을 밝히고, 한 · 콜롬비아 의원협회 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3. 관련 자료

- ❁ 상원의원 이력서 및 콜롬비아 관련 자료 첨부

일본 민사당 의원단 방한

| 73-0268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C-69 / 1 / 1~68(68p)

일본 민사당 의원단이 1972.5.11.~14. 및 1973.8.20.~22. 한국을 방문함.

1. 민사당 가와무라가쓰 외교위원장 일행 방문

- 주일본대사관은 1972.5.2. 일본 민사당 실무 직원이 대사관에 대한 연락을 통해 동 외교위원장 일행이 신민당 송원영 의원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알려 왔음을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요청함.
- 외무부는 동 일행의 방한을 위한 지원을 지시함.
- 동 의원단에는 일 · 조의원회 회원으로 북한을 방문한 인사도 포함됨.

2. 민사당 가스가잇코 위원장 일행 방문

- 방문 경위
  - 국무총리는 1973.8.4. 동 위원장 일행이 동남아 연구를 위한 해외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한국을 먼저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민사당 측이 동 초청을 수락함.
- 방문 일정
  - 민사당 의원 방문단은 대통령, 국무총리 예방 등의 일정을 가짐.
- 대통령 예방 시 동 위원장 언급 요지
  - 정부의 6 · 23 선언에 포함된 평화, 발전 및 통일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함을 밝힘.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반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유인책 및 소련이 제시하고 있는 아시아안보 구상에 대해 질의함.
  - 김대중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망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임에 따라 일본 정부가 요청하는 바를 행해 줄 것을 요청함.
- 관련 자료
  - 방문단 인사 약력 사항, 민사당 정책에 관한 면담 자료, 국무총리 접견 시 언급 자료
  - 대통령 면담록

쿠웨이트 국회의원 방한

| 73-026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C-69 / 2 / 1~136(136p)

쿠웨이트 의회 Abbas Habib Munawer 문교・문화공보위원장의 1973년 한국 방문 및 Abdul Lateef Al-kazemi 외무위원회 부위원장의 방한 추진 관련 사항임.

1. Abbas Habib Munawer 위원장 방한(7.24.~29.)

❋ 방문 경위 및 목적

- 주쿠웨이트통상대표부는 1973.6.19. 쿠웨이트 주재 북한통상대표부가 쿠웨이트에 대한 침투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Munawer 위원장 및 Al-Ayyam지 편집장인 Franco Yousuf Shihabib을 방한 초청하여 줄 것을 건의함.
- 외무부는 쿠웨이트 유력 인사 방한초청사업의 일환으로 동 건의를 수락함.
- Munawer 위원장은 1972.3월 평양을 방문한 바 있음.

❋ 방문 결과

- Muawer 위원장 일행은 국무총리, 국회 문공위원장, 외무부차관 등 인사들을 예방하고, 구로동 공단, 문화시설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 동 위원장은 외무차관 예방 시 양국 간 통상 증대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쿠웨이트를 포함한 아랍 15개국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함.

2. Abdul Lateef Al-Kazemi 외무위원회 부위원장 방한 추진

❋ 주쿠웨이트통상대표부는 1973.3.26. 동 부위원장 및 쿠웨이트 유력 사업가를 포함하는 4명을 방한 초청하여 줄 것을 건의함.

❋ 외무부는 관계부처에 동 방한 초청 추진을 요청하였으나, 사정에 따라 동 초청이 성사되지 못함.

Sheikh Pierre Gemayel 레바논 사회민주당 당수 방한, 1973.6.7.-14.

| 73-027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동과/의전과
MF번호	C-69 / 3 / 1~146(146p)

레바논 Sheikh Pierre Gemayel 사회민주당 당수가 1973.6.7.~14. 한국을 방문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주레바논통상대표부는 1973년도 레바논 유력 인사 방한초청사업의 일환으로 1972.10.27. 레바논 여당인 사회민주당 Phalangist파 Gemayel 당수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 명의로 동 당수를 방한 초청함.
- 1973. 5월 중 방한이 계획되었으나, 레바논 소요사태 확산으로 인해 연기되어 6월에 방한함.

2. 방한 일정

- 대통령, 국회의장 및 외무부장관 예방
- 육군사관학교 및 부산공업단지 방문

3. 자료

- 훈장 서훈을 위한 공적 조사 자료, 인적 사항 및 방한 일정표
- 언론 보도 기사
- 대통령 및 외무부장관 예방 시 면담록

Youssef K. Hammoud 레바논 국회의원 방한, 1973.8.1.-3.

| 73-027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C-69 / 4 / 1~10(10p)

레바논 의회 Youssef K. Hammoud 의원이 1973.8.1.~3. 한국을 방문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주레바논통상대표부는 1973.7.30. 레바논 국회의원으로 사업가인 Youssef Hammoud 의원이 나이지리아 군용 물품 구매를 위해 8.1.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보고하고, 북한의 대레바논 활동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동인에 대한 방한 초청 및 방한 중 국무총리, 상공장관, 외무차관 예방을 건의함.
- 외무부는 동 건의를 수락함.

2. 방문 결과

- Hammoud 의원은 외무부 차관보를 면담하고, 대한무역진흥공사 방문 시 한국 기업의 나이지리아 진출을 적극 권유함.

Avci, Sabit O. 터키 하원의장 방한, 1973.5.28.-6.3.

| 73-0272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C-69 / 5 / 1~98(98p)

터키 Avci Sabit 하원의장이 1973.5.28.~6.3. 한국을 방문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주터키대사관은 1972.12.15.자 1973년도 주요인사 방한초청계획 보고를 통해 동 하원의장에 대한 방한 초청을 건의함.
- 외무부는 주터키대사에게 국회의장의 5월 터키 방문에 대한 터키 측의 협조 요청과 연계하여 동 하원의장의 방한을 추진하도록 지시함.
- 터키 측은 국회의장 방문에 대한 환영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동 하원의장은 1973.5월 중 방한을 수락함.

2. 방문 일정

- 대통령, 국회의장, 외무부장관 및 서울시장 예방
- 부산 유엔군 묘지 참배, 울산 산업단지 시찰

3. 관련 자료

- 훈장 서훈을 위한 공적 조사 자료, 인적 사항, 방문 일정, 면담 자료 및 외무부장관 주최 장관 만찬사
- 언론 보도 기사
- 동 하원의장의 방한 소감에 관한 대사관 보고서

미국 국회의원 방한

| 73-0273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C-69 / 6 / 1~185(185p)

미국 상·하원 의원의 1973년 중 한국 방문 현황임.

1. Guy Vander Jagt 하원 외무위원회 의원(1.14.~17.)

- ❋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2.1.4. 외무부에 동 하원의원이 USIS(미국공보원) 주최 강연 및 세미나 참석차 방한 예정임을 알려 오면서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예방 주선을 요청함.
- ❋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예방, 고려대 방문, 관훈클럽 만찬 연설 등 일정을 가짐.

2. Daniel K. Inouye 상원 세출위원회 대외활동분과 위원장 일행(1.24.~26.)

- ❋ 주미대사관은 1972.10.6. 동 의원 일행이 1973.1월 아시아 순방 중 미국의 대외원조 실태 파악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보고함.
- ❋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예방 및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일정을 가짐.

3. Lester L. Wolff 하원의원(1.27.~29.)

- ❋ 주미대사관은 1973.1.18. 동 하원의원이 아시아 순방 중 1.27. 한국을 사적으로 방문할 예정으로 대통령 예방을 희망하고 있음을 보고함.
- ❋ 국방부장관 예방 및 국무총리 주최 오찬 일정을 가짐.

4. Melvin Price 의원 일행(2.14.~16.)

- ❋ 주미대사관은 1973.2.11. 동 하원의원 일행이 아시아 순방 중 2.20.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보고함.
- ❋ 외무부장관대리를 예방함.

5. Otto Passman 하원의원 및 Edwin Edward 루이지애나 주지사(4.20.~22.)

- ❋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3.4.3. 동 의원 및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방한할 예정임을 통보함.
- ❋ 주미대사관은 동 일행이 방한 중 공식 일정을 원하지 않음을 보고함.

6. Wendell Wyatt 하원의원(7.5.~7.)

- ❋ 주미대사관은 1973.6.27. 동 의원이 일본 방문 기회에 7.5. 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대통령 예방을 희망하고 있음을 보고함.

❁ 외무부는 동 의원이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으로 의회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 삭감에 반대하는 발언과 함께 6·23 선언을 지지하는 논평을 하였으며, 오리건주와 한국 간의 유대 강화에 기여한 바가 많은 친한파 의원임을 감안하여 대통령 예방 등 일정을 주선함.

7. Robert L. Leggett 하원의원(8.12.~15.)

❁ 주미대사관은 1973.8.1. 동 의원을 포함한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2~3명의 의원이 군사원조 실태 조사를 위하여 8.12.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보고함.

8. Lester L. Wolff 하원 외교분과위원 겸 국제마약특별위원회 의장 일행(8.23.~26.)

❁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3.8.1. 외무부와 동 의원 일행 방한 관련 일정을 협의함.

❁ 동 일행은 대통령, 국방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예방 및 동두천 미2사단 방문 일정을 가짐.

Sanguinetti, Julio Maria 우루과이 하원의원 방한, 1973.4.19.-23.

| 73-027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69 / 7 / 1~60(60p)

우루과이 Julio Maria Sanguinetti 하원의원이 1973.4.19.~23. 한국을 방문함.

1. 방문 경위

- 주우루과이대사관은 1973.3.26. 상공 및 문교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동 하원의원이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 기회에 한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동 의원이 1968년 평양을 방문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방한 초청을 건의한바, 외무부는 동 의원에 대한 방한 초청을 결정함.

2. 방문 일정

- 국무총리, 국회부의장, 외무부장관, 외무부차관, 문공부장관 예방 및 지방 산업단지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 동 의원은 면담을 통해 자신의 평양 방문 시의 인상과 한국의 인상을 비교하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강조하는 한편 귀국 후 한국과 북한 간의 차이를 언론에 게재할 예정임을 언급함.

3. 관련 자료

- 면담 자료, 동 의원 인적 사항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외무부차관, 미주국장 및 중남미과장 면담록

한 · 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

| 73-0275 |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C-69 / 9 / 1~18(18p)

한 · 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의 1973년 설립 경과임.

1. 이호상 공화당 의장은 1970.3월 인도네시아 방문 시 양국 의회 간 의원친선협회 결성을 제의함.

2. 주자카르타총영사는 1971.11.4. 인도네시아 신임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J. Rano 의원을 면담하여 한 · 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 구성에 대하여 의견을 타진한바, 동 의원이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보고함.

3. 국정감사차 1971.11.7.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국회 국정감사반(정일권 의원 등)은 인도네시아 국회의장 방문 시 동 의원친선협회 구성을 제안하여 원칙적인 동의를 득함.

4. 1973.7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국회 친선사절단의 차지철 단장과 인도네시아 국회의장은 양국 국회 개원과 동시에 상호 의원협회를 결성하기로 공식 합의하고 현지에서 발표함.

5. 정일권 국회의장 주재로 동 의원친선협회 결성을 위한 창립총회가 1973.9.21. 개최되어 국회의원 전원이 회원으로 가입함.

6. 국회사무처는 1973.9.27. 외무부에 한국 측 동 의원친선협회 설립 및 협회 규약을 인도네시아 측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한 · 일본 의원간친회 총회, 제2차. 동경, 1973.6.12.-13.

| 73-027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C-69 / 10 / 1~92(92p)

한 · 일본 의원간친회 제2차 총회가 동경에서 1973.6.12.~13. 개최됨.

1. 관련 언론 보도

- 양국 총리의 개막식 축사
- 분과별 양국 간 협력 방안 논의 내용 보도

2. 회의 자료

- 양국 국회 간친회 참석자 명단
  - 한국 측 27명
  - 일본 측 90명
- 총회 일정, 분과별 의제, 총회 공동성명 및 간친회 참석 종합보고서

3. 양국 의원대표들의 분야별 토의 및 결정 사항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4. 총회 종합보고서

- 대표단 구성, 총리 축사, 분과 위원장 선출, 토의 의제
- 일본 정세 정보 보고 및 건의 사항

한 · 영국 의원친선협회

| 73-0277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69 / 12 / 1~31(31p)

한 · 영 의원친선협회의 1972~73년 중 활동 현황임.

1. 1972년 활동 사항

- 주영국대사가 11.15. 한 · 영 의원친선협회 영국 측 의원들을 위하여 개최한 오찬 행사와 관련된 사진 수록

2. 1973년 활동 사항

- 런던 소재 한인회관에서 1.31. 개최된 동 친선협회의 1973년도 정기총회 개최 관련 보고서
  - 임원단 구성
  - 1972년도 회계 보고
- 주영국대사는 한 · 영 의원친선협회 간부 내외 초대 가든파티를 9.13. 관저에서 개최하였음을 보고함.
- 기타 자료
  - 한 · 영 의원친선협회 임원 명단
  - 국회 의원친선협회 회원들의 1974년 영국 방문 추진 계획 관련 문서

김동휘 외무부 미주국장 아르헨티나 및 칠레 방문, 1973.8.8.-10.

| 73-027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67 / 9 / 1~57(57p)

김동휘 외무부 미주국장은 1973.8.8.~10. 아르헨티나 및 칠레를 방문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김용식 외무부장관의 브라질 방문 수행 후 별도로 아르헨티나 및 칠레를 방문함.
- 방문 목적
  - 정부의 6·23 선언에 따른 신외교정책 설명
  - 유엔 총회에 임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 설명 및 지지 요청
  - 양국의 한국에 대한 입장 및 정세 파악

2. 아르헨티나(8.8.~9.) 방문 결과

- 외무성 아주국장 대리(국장 공석), 정무총국장 면담 및 대사 주최 만찬 일정을 가짐.
- 아주국장 대리는 양국 간 우호관계 불변 및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찬성 입장을 표시하였으나, 정무총국장은 주한 유엔군사령부 존속 문제에 대해 한국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만 언급함.
- 출장보고서 요지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성 원칙에 입각하여 낙관적으로 전망되나, 여타 사안에 대하여는 비관적으로 판단함.
  - 아르헨티나 정세 불안으로 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관찰됨.

3. 칠레(8.9.~10.) 방문 결과

- 칠레는 1972.6.1. 북한과 수교하였으며, 1972년에는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및 주한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을 알제리와 공동으로 제출한 바 있음.
- 외무성 정무국장 면담 및 상원 부의장 초청 오찬 참석 일정을 가짐.
- 정무국장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대하여는 다소 호의적인 입장을 표시하였으나, 주한 유엔군사령부 존속 등 여타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함.
- 군부 쿠데타로 정국이 극히 혼미함을 보고함.

이병희 제1무임소장관 이란 및 쿠웨이트 방문, 1973.11.24.-30.

| 73-027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C-67 / 10 / 1~150(150p)

이병희 제1무임소장관이 1973.11.24.~30. 이란 및 쿠웨이트를 방문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외무부는 한국 여자농구팀이 친선경기차 이란 및 쿠웨이트를 방문하는 계기에 이란과의 친선 강화, 주쿠웨이트통상대표부의 총영사관 승격 문제 및 석유자원 확보 교섭을 위해 아시아농구연맹 회장인 이병희 무임소장관을 양국에 파견할 것을 1973.11.6.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재가를 득함.

2. 이란(11.24.~26.) 방문 결과

- 이란 체육회장인 부수상, 하원의장 및 재무장관 등을 면담함.
- 재무장관과 원유 수입 문제를 협의한바, 이란 측은 원유 공급 방식으로 직접 거래와 현물 교환 방식을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이 이란에 시멘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경우 한국이 원하는 원유와의 교환 거래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함.

3. 쿠웨이트(11.27.~30.) 방문 결과

- 외무차관, 석유 및 재무성 차관 등을 면담함.
- 쿠웨이트 측은 한국의 시멘트와 비료 수입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합작투자도 희망하는 한편 제반 협력 사항 협의를 위하여 한국의 장관급 고위 경제사절단 파견을 희망함.
- 이 장관은 한국이 쿠웨이트에 시멘트를 전량 공급하는 대신 석유 공급에 있어서의 특혜를 요청함.
- 주쿠웨이트통상대표부의 총영사관 승격 문제에 대하여 쿠웨이트 외무차관은 당분간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총영사관 이상의 대우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함.

4. 건의 사항

- 중동 산유지 국가 주재 공관들에 대한 인원 증강
- 본부의 공관에 대한 필요 정보 제공 및 명확한 지시 하달 등 개선 방안

특별교섭단 라오스 방문, 1973.4.25.-5.11.

| 73-028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C-67 / 11 / 1~23(23p)

임윤영 주태국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교섭단이 1973.4.25. 및 5.9~11. 라오스를 2회 방문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외무부는 1973.5월 제네바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의 북한의 동 기구 가입과 관련한 토의에 대비하여 중점적인 교섭이 필요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별교섭단 파견을 결정함.
- 아주지역에서는 라오스가 포함됨.

2. 방문 결과

- 제1차 방문
  - 외무성 비서실장, 내각 사무국장 겸 공보부장관, 보건성차관 및 수상을 면담함.
  - 수상은 한국의 심의 연기안 제출을 지지하나, 국내외 사정상 공동제안국으로는 참여하지 못함에 대해 양해를 구함.
  - 양국 간 관계 강화를 위하여 반관반민 성격의 대한무역진흥공사의 파견 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기로 함.
  - 비엔티안 휴전협정의 현 이행 상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함.
- 제2차 방문
  - 수상 면담 시 대통령 친서를 수교하였으며, 수상은 제네바 주재 라오스대표부에 발송한 한국 측 입장 지지 훈령 전문 사본을 임 대사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함.
  - 임 대사는 빠른 시일 내 무역대표부 설치 추진을 건의함.

지성구 외무부 아주국장 동남아 순방, 1973.3.18.-23.

| 73-028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C-67 / 12 / 1~29(29p)

지성구 외무부 아주국장이 1973.3.18.~23. 태국, 월남 및 필리핀을 순방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중국(구 중공)이 유엔에서 대만(구 자유중국) 대신 대표권을 확보함에 따라 대만을 포함하는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존속 문제가 아시아 지역 국가들 간에 제기됨.
- 정부는 지역협력 기구로서의 ASPAC 존속과 관련한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의를 위해 아주국장의 파견을 결정함.

2. 방문 일정 및 협의 사항

- 태국(3.18.~20.) 외무성 정무담당 차관보 및 경제국장 겸 아세안-ASPAC 사무국장 면담
- 월남(3.20.~21.) 외무성 아주국장 및 외무차관 면담
- 필리핀(3.22.) 외상서리 및 정무국장 면담
- ASPAC 존속 문제 및 아래 사항에 관해 협의
  - 대만의 회원국 자격 및 자진 탈퇴 방안
  - 비공식회의 개최 문제
  - 대만에 대한 불초청 방안

3. 방문 결과 보고 및 건의 사항

- 방문국들은 전반적으로 ASPAC의 장래와 관련하여 대만 문제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면서도 대만 문제의 해결로 ASPAC 존속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
- 방문국들은 ASPAC의 유용성은 인정하나,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는 한편 역내 주요국, 중국 및 소련이 참여하는 광역 지역협력체 태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입장임.
- 아시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질서 형성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나, 분단 상황 및 대공산권 관계 등이 한국의 주도적 노력에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평가함.
- ASPAC 존속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건의함.

특별사절단 중동 순방, 1973.4.21.-5.6.

| 73-028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C-67 / 13 / 1~31(31p)

김영주 주독일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1973.4.21.~5.6.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및 UAE(아랍에미리트)를 아래와 같이 방문함.

1. 방문 목적

- 외무부는 1973.3.20. 유엔 총회에 대비하여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확보를 위해 중동지역에 대한 특별사절단 파견을 결정함.

2. 쿠웨이트(4.21.~24.)

- 외무차관 및 보건차관을 면담하고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상정 연기, 북한의 WHO(세계보건기구) 가입 문제 등을 협의함.
- 쿠웨이트 측은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어느 일방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을 것이며,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가 의제로 상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안에 기권할 것임을 밝히고 북한의 WHO 가입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함.

3. 바레인(4.24.~27.)

- 국왕 및 외상을 예방하여 양국 간 수교를 제의한바,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함.
- 바레인 측은 유엔 및 WHO 문제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하는 한편 아랍연맹 특히 걸프국가들과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언급함.

4. 카타르(4.27.~29.)

- 외무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을 제의한바,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함.
- 동 장관은 유엔 총회 및 WHO 문제와 관련한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약속함.

5. 오만(4.29.~5.1. 및 5.4.~6.)

- 국왕을 예방하고, 외무장관, 외무차관, 보건차관 및 경제개발청장 등을 면담함.
- 오만 측은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제의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유엔 및 WHO 문제와 관련한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약속함.

6. UAE(5.1.~4.)

- 외무장관 및 외무차관 면담 시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을 제의한바, UAE 측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시함.
- 김 대사는 UAE가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며, WHO 북한 가입 문제에 대하여는 한국 측 안에 기권할 것으로 전망됨을 보고함.

7. 방문 결과 보고서 요지

- 의제별 각 방문국 반응, 기술협력 및 통상협력 문제에 관한 평가 보고
- 한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쿠웨이트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됨을 전망
- 중동지역에 대한 외교적 노력 강화 건의

특별사절단 중동 순방, 1973.7.21.-8.3.

| 73-028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C-67 / 14 / 1~25(25p)

김영주 주독일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1973.7.21.~8.3. 쿠웨이트, 오만, UAE(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및 바레인을 아래와 같이 방문함.

1. 방문 목적

❋ 외무부는 1973.7.11. 유엔 총회에서의 지지 확보 및 6·23 선언에 따른 신외교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동 사절단 파견 계획을 수립함.

2. 쿠웨이트(7.21.~24.)

❋ 외상 및 주유엔 쿠웨이트대사는 김 대사의 설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함.

3. 오만(7.25.~26.)

❋ 외무차관대리 및 국왕 고문을 면담함.

❋ 오만 측은 6·23 선언 및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문제에 대하여 긴밀히 협조할 것이며, 양국 간 수교 문제도 조속히 처리할 것임을 약속함.

4. UAE(7.27.~29.)

❋ 외상 및 외무차관을 면담함.

❋ 김 대사는 UAE 측이 한국 입장에 호의적인 반응을 표시하였으나, 대외적인 공식 발표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가까운 장래에 양국 간 국교 수립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망됨을 보고함.

5. 카타르(7.30.~31.)

❋ 관광장관 겸 공보부장관을 면담함.

6. 바레인(8.1.~3.)

❋ 외상 면담 시 동 외상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가입 후 북한을 승인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확언함.

❋ 동 외상은 양국 간 수교 문제에 대하여는 확답을 유보함.

특별사절단 중동 순방, 1973.10.24.-11.8.

| 73-028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연합과/중동과
MF번호	C-67 / 15 / 1~125(125p)

김종규 주이란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1973.10.24.~11.8. 오만, UAE(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및 쿠웨이트를 방문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외무부는 1973.9.8. 유엔에서의 지지 확보 및 외교관계 수립 추진을 위해 페르시아만 국가에 김영주 주독일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 파견을 검토한바, 김 대사가 파견의 부적절함을 지적함에 따라 취소함.
- 외무부는 주유엔대표부의 건의에 따라 10.16. 중동전쟁으로 인한 동 국가들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특사 파견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함.

2. 훈령 및 친서

- 일반 훈령: 중동전쟁과 관련한 방문국의 동향 파악
- 국별 교섭 사항: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주한유엔군 존속 문제, 외교관계 수립 등에 관한 국가별 교섭, 쿠웨이트에 대해서는 친이스라엘 국가들에 대한 석유 공급 제한조치가 한국에 영향이 없도록 특별 지시 사항 포함
- 신임장 형식의 방문국 국가원수에 대한 대통령 친서 지참

3. 방문 결과

- 오만(10.24.~27.)
  - 외무차관을 면담하여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오만은 원칙적으로 한국 측 안에 대한 지지 내지 중립, 북한 측 안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최종 입장은 상금 수립되지 않았음을 밝힘.
  - 오만 측은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무기화 입장을 확인함.
- UAE(10.27.~30.)
  - 외무차관을 면담하여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UAE 측은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기권할 것이나 아랍 진영의 행동 통일이 있을 경우 동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점을 확인함.
- 카타르(10.30.~11.3.)
  - 국왕 시종장에게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외무성 관방상을 면담함.
  - 카타르 측은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정부의 대이스라엘 관계에 다소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 단절 용의를 질문함.

❁ 바레인(11.3.~6.)

- 외상을 면담하여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동 외상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문제 등에 대하여 한국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여타 아랍 제국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쿠웨이트(11.6.~8.)

- 외무차관, 상업성차관 및 국회의장을 면담함.
- 친이스라엘 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가장 강경하게 주장하는 아랍 국가들 중의 하나인 쿠웨이트는 이스라엘 및 친이스라엘 국가들에 대한 비난과 함께 아시아 국가들의 대이스라엘 단교를 촉구함.
-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함.
- 김 대사는 중동사태 악화로 쿠웨이트가 한국 입장에 대해 종전보다 더 부정적인 태도를 표시할 가능성이 우려됨을 보고함.

김창훈 외무부 구아국장 서부아프리카 지역 순방, 1973.4.23.-5.10.

| 73-028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C-67 / 16 / 1~65(65p)

김창훈 외무부 구아국장은 1973.4.23.~5.10. 차드, 카메룬, 가봉, 토고, 베냉(구 다호메이), 세네갈 및 감비아를 순방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외무부는 1973.4.20. 5월 WHO(세계보건기구) 회의에서 북한 가입 문제 상정에 대비하여 북한의 가입 동향에 대처하기 위해 중점적인 교섭이 필요한 국가들에 대한 특별사절단 파견을 결정함.
- 외무부는 서부아프리카 지역 국가에 김창훈 국장 파견을 통해 의료 분야 관련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토록 함.

2. 방문 결과

- 차드(4.26.~27.) 외무차관, 보건성 관방장 및 의무국장을 면담한바, 외상 및 보건상의 출장을 이유로 지지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기존에 제공한 원조에 사의를 표함.
- 카메룬(4.27.~28.) 보건상을 면담한바, 한국이 제공한 의료 원조에 사의를 표하면서 의사 재파견을 요청함.
- 가봉(4.28.~30.) 외무성 의전장 및 협력국장, 보건성 보건국장을 면담한바, WHO 관련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외과의사 또는 약품, 의료기재 지원을 희망함.
- 토고(4.30.~5.2.) 외무성 기술협력국장, 보건성 보건총국장을 면담한바, 토고 측은 외상이 북한 사절단에게 북한의 WHO 가입에 대한 지지 의사를 이미 표명하였음을 밝힘.
- 베냉(5.2.) 외무차관 및 보건상을 면담한바, WHO 관련 한국 입장에 대한 원칙적인 찬성(만약의 경우에는 기권) 입장을 표명하면서 파견 의사 증원을 요청함.
- 세네갈(5.3.~5.) 외무성 국무상, 대외관계국장 및 보건성 관방장 등을 면담한바, WHO 북한 가입안에 대한 기권 입장을 외상 및 보건상에게 건의할 것임을 언질함.
- 감비아(5.5.) 외상 겸 부통령, 외무차관 및 보건차관을 면담한바, 각의에서 이미 북한의 WHO 가입을 지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밝힘.

3. 방문 보고서 요지

- 아프리카에서의 중국(구 중공)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
- 북한을 법률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상임.

주Montreal(카나다) 명예영사 방한

| 73-028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C-69 / 13 / 1~67(67p)

주몬트리올 한국 명예영사 및 명예총영사가 1973년 중 아래와 같이 방한함.

1. Max Pascal 주몬트리올 명예영사(6.11.~17.)

- ❁ 주캐나다대사관은 1973.5월 Pascal 명예영사가 한국을 방문할 계획임을 보고하고, 동인의 공로를 감안하여 표창 및 적절한 체류를 위한 지원을 건의함.
- ❁ 외무부는 동 명예영사에 대한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대한무역진흥공사 방문 및 제주도 체류 일정 등을 지원함.

2. Bernard M. Bloomfield 주몬트리올 명예총영사(7.23.~29.)

- ❁ 주캐나다대사관은 1973.6월 Bloomfield 주몬트리올 명예총영사가 한국을 방문할 계획임을 보고하고, 표창 등 적절한 예우를 건의함.
- ❁ 외무부는 동 명예총영사의 방한과 관련하여 아래 일정을 지원함.
  - 외무부장관 및 차관 예방, 상공부차관 예방 및 감사장 수여식
  - 대한무역진흥공사 방문, 새마을운동 현장, 부산 금성사 및 울산 현대조선 시찰, 경주 관광

Arana Espãna, Carlos V. 과테말라 대통령 군사담당비서관 및 Pellecer, Luis 전신전화 공사 부사장 방한, 1973.5.5.-12.

| 73-0287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69 / 14 / 1~54(54p)

과테말라 Carlos V. Arana Espãna 대통령 군사담당보좌관 및 Luis Pellecer 전신전화공사 부사장이 1973.5.5.~12. 한국을 방문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주멕시코대사관은 1972.9.9. 겸임국 과테말라 대통령의 큰아들인 대통령 군사담당보좌관, 정부 해외구매 및 조달 책임자인 둘째 아들 및 전신전화공사 부사장이 한국과의 정치, 경제 관계 유대 강화와 한국에서의 정부 구매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방한을 희망함을 보고하고, 양국 관계 강화 및 전신전화기계 대과테말라 수출 문제 협의를 위해 정부가 동인들을 초청하여 줄 것을 건의함.
- 외무부는 장관 명의 초청을 계획하였으나, 한국을 겸임하고 있는 주일본 과테말라대사관이 Espãna 보좌관의 개인 사정으로 방문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해 옴에 따라 방한이 연기된바, 주멕시코 대사의 1973.4월 과테말라 방문 시 동인들의 방한 재추진 협의에 따라 방한이 이루어짐.

2. 방한 중 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 및 외무부 미주국장, 상공부장관,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 중앙정보부 국장 면담
- 부산 금성사 및 동명목재, 울산공업단지 시찰
- KBS 회견

3. 면담 결과

- 외무부장관은 정부의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미주국장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공관 설치 문제, 상공부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수출 촉진 문제 및 중앙정보부 국장과의 면담에서는 남북한 군사력 관련 사항을 협의함.
- 금성사 방문 시 과테말라 전신전화 시설 공사, 교환대 설치 공사 및 전화기 구입 문제를 상담함.

Moertopo, Ali 인도네시아 대통령 정치담당 보좌관 방한, 1973.11.6.-9.

| 73-028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C-69 / 15 / 1~27(27p)

인도네시아 대통령 정치담당보좌관인 Ali Moertopo 장군이 1973.11.6.~9. 한국을 방문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Williamsburg 회의에 참석하는 Moertopo 보좌관이 회의 참석 후 한국을 사적으로 방문할 것임을 보고하였으며, 주일본대사관은 동인의 일정을 파악하여 보고함.
-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73.10.15.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주인도네시아총영사관이 9.18. 대사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11월 초에 수하르토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할 예정임을 보고하고, 인도네시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임장 제정식 계기에 대통령 친서를 전달할 것을 건의함.
- 외무부는 Moertopo 보좌관 장군 방한 시 대통령이 구두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결정함.

2. 방문 일정

-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동 보좌관이 대통령,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예방과 산업시설 시찰을 희망하고 있음을 보고함.
-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은 공한으로 대통령 예방 주선을 요청함.

3. 관련 자료

- Moertopo 보좌관 인적 사항
- 인도네시아 개황 자료

Aduko, Lous-Antoine 코트디부아르 외무부 정무국장 방한, 1973.7.22.-27.

| 73-028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2009-32 / 15 / 1~30(30p)

코트디부아르 Lous-Antoine Aduko 외무성 정무국장이 1973.7.22.~27. 한국을 방문함.

1. 방문 경위

-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은 1973.6.7. Aduko 정무국장이 1973.6월 일본 정부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임을 보고하고, 동 국장이 평소에 한국을 방문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외무성 내에서 국제기구 문제를 관장하는 영향력이 있는 인사임을 감안하여 동인에 대한 방한 초청을 건의함.
- 외무부는 동인에 대한 방한 초청을 결정함.

2. 방한 일정

- 외무부차관 및 외무부 간부 면담
- 울산공업단지 시찰

3. 외무부 통상국장 면담 결과

- 양국 간 현안인 무역협정 체결 및 합판 생산 합작 문제 등에 관해 협의함.

4. 관련 자료

- 코트디부아르 축산장관 초청 문제, 어업 및 합판 생산 합작 문제 관련 검토 자료
- 동 국장 인적 사항, 코트디부아르 개황 자료

Aduko, Lous-Antoine 코트디봐르 외무성 정무국장 방한, 1973.7.22.-27.

| 73-029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C-69 / 16 / 1~19(19p)

코트디부아르 Lous-Antoine Aduko 외무부 정무국장의 1973.7.22.~27. 한국 방문 관련 자료 현황임.

1. 양국 간 무역협정 체결 문제 등 통상 현안 관련 자료

2. 무역협정 문안(프랑스어 본)

3. 외무부 윤영교 통상국장 면담 요록

4.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 대한 무역협정 체결 추진 지시 문서

Castro Valle, Alfonso 주터키 멕시코대사 방한, 1973.9.7.-12.

| 73-029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69 / 17 / 1~17(17p)

Alfonso Castro Valle 주터키 멕시코대사가 1973.9.7.~12. 한국을 방문함.

1. 방문 경위

- 김용식 외무부장관이 1973.8.20. 주멕시코대사관에 장관의 멕시코 방문 당시 안내 임무를 수행한 Valle 대사(주터키대사로 임명) 부부가 귀임 시 한국 방문을 희망하는지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동인 방한이 추진됨.

2. 방한 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 및 미주국장 면담, 장관 주최 오찬
- 고궁 관람 등 자유 시간

3. 외무부장관 오찬사 요지

- 주한 남미국가 대사들이 참석한 오찬 시 오찬사를 통해 장관의 멕시코 방문 당시 멕시코 대통령 및 외상이 베풀어 준 호의에 사의를 표함.
- 멕시코의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기대함.

4. 관련 자료

- 외무부장관 오찬사
- 주한 태국대사관에 송부한 동인 부부에 대한 통과사증 발급 요청 공한

Burn, Bue 노르웨이 외무성 경제국장 방한, 1973.9.15.-19.

| 73-029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69 / 18 / 1~19(19p)

노르웨이 Bue Burn 외무성 경제국장이 1973.9.15.~19. 한국을 방문함.

1. 주노르웨이대사관은 1973.8.16. 노르웨이 정부가 유엔 총회에 대비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외무성 정무부국장을 서울과 평양에 파견할 예정임을 보고한바, 노르웨이 정부는 함병춘 특사 및 북한 측 인사의 노르웨이 방문으로 동 부국장 파견 필요성이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동 계획을 취소함.

2. 주노르웨이대사관은 1973.8.30. 외무성으로부터 외무성 Burn 경제국장을 동경에서 개최되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회의 참석 후 한국에 파견시키고자 한다는 제의를 받았음을 보고함.

3. 주노르웨이대사관은 동 국장의 방한에 대한 수락 입장을 외무성에 통보함.

4. 관련 자료

- 체한 일정 협의 내용
- 한국의 조선 및 선박기기 생산 현황 자료 요청 내용
- 동 국장 인적 사항

Djafalo, Albert Alidou 토고 보건장관 방한, 1973.11.26.-30.

| 73-0293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C-69 / 19 / 1~186(186p)

토고 Albert Alidou Djafalo 보건장관이 1973.11.26.~30. 정부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주토고대사대리는 1973.10.20. 토고 보건장관이 1973.4월 토고를 겸임 중인 주코트디부아르 남철 대사 명의의 한국 방문 초청을 수락하여 11월 중 방한을 희망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유엔 총회 이전 동 장관의 방한 실현을 건의함.
- 외무부는 Djafalo 장관이 반공주의자로 정계 2인자인 친한 인사임을 감안하여 1973.5월 WHO (세계보건기구) 총회를 앞두고 북한의 WHO 가입 저지 교섭을 위해 동 장관에 대한 방한 초청을 결정함.

2. 방문 일정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예방, 외무부장관대리, 보사부장관, 서울시장 면담
- 병원 및 제약회사, 구로공단 시찰

3. 방한 결과

- 대통령 예방 시 대통령은 토고에 남북한이 동시에 대사관을 개설하고 있음에 따라 북한이 양국 관계를 저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외무부장관 대행(외무부차관) 면담 시 동 장관은 의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기존에 파견된 2명의 의사 외에 2명의 외과의사 증파를 요청함.
- 외무부장관대행은 환영 만찬사를 통해 토고의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양국 수도에 대사관 개설 및 양국 간 우호 증진 필요성을 강조함.

4. 관련 자료

- 방한 기념사진, 동 장관과 윤석헌 외무부차관 간 감사서한
- 동 장관 인적 사항
- 양국 간 현안 문제
  - 유엔 총회에서의 토고 입장
  - 외과의사 증파 및 태권도 교관 파견 요청
- 토고 개황, 면담 요록, 만찬사
- 대통령의 동 장관 접견에 관한 언론 보도문

미국 국무부 인사 방한

| 73-029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C-69 / 20 / 1~140(140p)

미국 국무성 한국 관계 담당 실무 인사들의 1973년 중 한국 방문 결과임.

1. Donald L. Ranard 한국담당과장(1973.1.22.~31.)

외무부 아주국장, 구미국장 및 방교국장과의 2차례에 걸친 협의, 국방부차관보 면담 및 대구, 부산, 마산 방문 등 일정으로 체한함.

❁ 제1차 회의(1.23.) 협의 내용

- 유엔 문제: 미국 측은 한반도 문제 토의 연기, 남북한 동시 초청,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존속, 한 · 미 간 협조 및 득표 전망 등 사안에 관하여 아직 구체적 검토가 없었으나 계속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며, 양측은 각 개별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한 · 미 안보협의회: 미국 측 예산 사정상 7월 이후 개최를 희망함.
-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 한국 측은 1973년도 예산의 신속한 지원을 촉구한바, 미국 측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10월 유신에 따른 계엄령 선포에 대한 미 의회의 반발을 우려함.
- 한 · 미 정책협의회 개최: 양측은 협의회 구성 전망에 대하여 협의한바, 미국 측은 정책협의회 기구로는 부적절하며, 주미대사와의 현지 협의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임.
- 미국의 대북한 여행 제한조치: 미국 측은 월남전 귀추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는 어떠한 암시조차 할 수 없음을 언급함.
- 북한의 국제 사회 진출 강화에 대한 대처: 미국 측은 계속 협조할 것이나, 1차적 교섭은 한국이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언급함.
- 아주지역 협력 문제: 한국 측은 호주, 뉴질랜드의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존속에 대한 입장을 설명함.
- 한국의 대일본 정책: 한국 측은 대일본 정책의 목표는 일본과의 우호협력 관계 강화 및 일 · 북한 간 접촉 저지임을 언급하고 이에 대해 일본의 보장을 받고 있으며, 한 · 일 관계는 우호적임을 설명함.

❁ 제2차 회의(1.29.) 협의 내용

-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 문제: 미국 측은 한국 국방부에서 군사지원 증액 등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요청함.
- VOA(미국의 소리 방송): 한국 측이 방송 전파 방해 등 문제가 있음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미국 측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라고 언급함.
- 유엔 문제: 1차 회의에 이어 세부 사항에 대하여 재차 의견을 교환한바, 미국 측은 UNCURK 문제보다 주한 유엔군 존속 문제가 더 중요함에 따라 UNCURK 문제에 대한 선결 필요성을 강조함.
- 한 · 일 관계: 미국 측은 한 · 일 간 대륙붕 협의 내용 결정 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 아시아 지역 협력: 미국 측은 일본 주도로 방콕에서 아시아 10개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지역 기구가 거론되고 있는데 한국이 제외되었다는 설이 있음을 언급하고, 일본의 동 기구 추진 의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함.

- AKFIC(미국 · 조선정보센터): 미국 측은 북한이 미국 공산당과 제휴하여 뉴욕 소재 동 센터를 통해 신문 등을 발간하고 있지만 미국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설명하고, 큰 의미를 두지 않음을 강조함.
- 한 · 미 간 민간인 협의체: 미국 측은 현재 동 단체를 구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박동선이 주선하고 있을 경우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힘.

2. Leonard Weiss 국무부 정보조사국 부국장(1973.4.17.~19.)

- 아시아 순방 중 한국을 방문함.
- 외무부 미주국장과의 만찬, 외무부차관, 상공부차관 및 경제기획원차관 예방, 한국조선공업주식회사 및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방문 등 일정으로 체한함.

3. Pickering 국무부 정치군사국 부국장(1973.6.1.~2.)

- 외무부장관의 1973.2월 방미 시 미국 측은 국무성 Sneider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담당 부차관보, Pickering 부국장 및 Doolin 국방성 국제안보담당 부차관보가 국군 현대화계획 이행 문제 등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 전반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4월 중에 방한할 예정임을 알려 옴.
- 미 국무성 내부 사정으로 Sneider 부차관보 및 Doolin 부차관보의 방한은 연기되고, Pickering 부국장이 안보협의회에 앞서 전략적 문제들에 관한 사전 검토를 위한 현지 사정 시찰 및 의견 교환 목적으로 단독 방한함.
- 동 부국장은 경부고속도로 및 산업시설 시찰, 미주국장과의 의견 교환 등의 일정을 희망함.

미국 국무부 동부아시아 · 태평양담당 부차관보 방한

| 73-029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C-69 / 21 / 1~45(45p)

미국 국무성 동부아시아 ·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1973년 한국을 방문함.

1. Richard L. Sneider 부차관보(1973.1.25-28.)

- ❁ 주미대사관은 1973.1.17. 동 부차관보가 미 · 일 안보협의회 참석 계기에 한국을 방문 예정임을 보고함.
- ❁ Sneider 부차관보는 체한 중 외무부장관 및 대한적십자부총재를 예방하고, 국무총리 주최 만찬에 참석함.
- ❁ 외무부장관 면담 결과
  - 남북대화 진전을 통한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문제 토의 연기 가능성, 남북한 동시 초청 시 문제점 및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가 남북대화를 퇴색시킬 가능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 동 부차관보는 한반도 문제 토의 연기안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표명한바, 외무부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임을 밝힘.
  - 동 부차관보는 아시아 ·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의 미국,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함.

2. William H. Sullivan 부차관보(1973.2.18.~19.)

- ❁ Sullivan 부차관보는 1973.2월 월남 종전 타결 후 처음으로 하노이를 방문한 키신저 안보보좌관을 수행한 후 동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동남아 및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키신저 보좌관은 중국(구 중공) 방문 후 일본을 방문함.
- ❁ 동 부차관보는 2.19. 대통령을 예방하고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함.
  - 하노이 방문 시 토의 의제: 휴전협정 실천, 전후 경제 재건, 월맹과 미국 간의 국교 정상화 및 파리 국제회의 관련 문제
  - 닉슨 대통령이 고려하고 있는 향후 월맹의 충실한 휴전협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통제 수단 및 조치: 중국과 소련의 대립관계를 이용, 미국의 경제 원조를 무기로 사용, 월맹이 휴전협정을 충실히 이행할 때까지 태국에 미국 공군을 계속 유지한다는 3가지 방안을 고려 중
- ❁ 박 대통령은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한편 휴전협정 이행을 위한 조건으로 월남 정부군이 자체 방어가 가능할 정도로 강해져야 할 것임을 제시함.
  - 월맹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휴전협정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지 여부
  - 키신저 보좌관의 하노이 체재 중에도 월남에서 전투행위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전투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
  - 월맹 측이 휴전협정 위반 시 미국의 보복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및 보복 가능성을 위협으로 인식하는지 여부
  - 월맹의 월남 전역 지배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지지 정도

미국지역 명예영사 방한, 1973.9.30.-10.5.

| 73-029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C-69 / 22 / 1~139(139p)

미국 지역 명예영사들이 국군의 날 행사 참석차 1973.9.30.~10.5. 한국을 방문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외무부는 1973.3.15. 안보외교 수행을 위한 1973년도 활동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 지역 명예영사 방한 초청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주미대사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함.

- 방한 시기: 10.1. 국군의 날 행사 계기
- 초청 대상 명예영사
  - Nicolas P. Veeder 주 St.Louis 명예영사
  - Lee R. Seifert 주 Mobile 명예영사
  - William R. Weirich 주 Phoenix 명예영사
  - James W. Thomas 주 Dallas 명예영사

2. 방한 일정

-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
- 대통령, 외무부차관, 상공부장관, 대한무역진흥공사사장 및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 판문점, 울산 및 포항 산업시설 시찰, 경주 관광

3. 관련 자료

- 명예영사 명단 및 인적 사항, 면담 시 언급 요지
- 방한 일정, 주미 한국명예영사관 개설 현황
- 대통령 예방 관련 언론 보도문

유재흥 국방장관 터키 수립 50주년 기념식 참석, 1973.10.26.-11.8.

| 73-029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C-67 / 18 / 1~11(11p)

유재흥 국방부장관은 터키 정부 수립 50주년 기념식 참석 및 한국전 참전 기념탑 제막식 참석을 위해 1973.10.26.~11.8. 터키를 방문함.

1. 외무부는 1973.9.24. 대통령에게 터키 정부가 정부 수립 50주년 기념행사에 경축사절단 파견을 요청하여 왔음을 보고하고, 동 기념행사 참석 및 터키 수도 앙카라 소재 한국공원에 건립될 터키 한국전 참전 기념탑 제막식 참석을 위한 국방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 파견을 건의함.

2. 대통령은 유 장관이 한국을 대표하여 동 행사에 참석한다는 내용의 신임장을 수여함.

정일영 주프랑스대사 Gustaf VI, Adolf 스웨덴 국왕 장례식 참석, 1973.9.25.

| 73-029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C-67 / 19 / 1~44(44p)

정부는 정일영 주프랑스대사를 1973.9.25. 스웨덴 Adolf Gustav IV 국왕 장례식에 조문사절로 파견함.

1. 주스웨덴대사대리는 1973.9.17. 동 국왕의 서거를 보고하였으며, 한국을 겸임 중인 주일본 스웨덴대사관도 외무부에 동 서거 사실을 통보하여 옴.

2. 정부는 대통령 명의 조전을 주스웨덴대사관을 통하여 전달하는 한편 장례식 일정이 1973.9.25.로 결정됨에 따라 주요국 주재 대사관을 통하여 동 국가들의 조문사절 파견 계획을 파악함.

3. 정부는 1973.9.19. 대통령 재가를 통해 주프랑스대사를 조문사절로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주스웨덴대사관에 동 파견 계획을 스웨덴 정부에 통보하도록 지시함.

4. 외무부는 주스웨덴대사관에 1926년 동 국왕과 함께 서봉총을 발굴한 바 있는 최남주 자택에 국왕의 빈소를 마련하였다는 조선일보 기사 및 사진을 스웨덴 왕실에 전달하도록 지시함.

김종필 국무총리 Truman, Harry S. 미국 대통령 추도식 참석, 1973.1.3.-6.

| 73-0299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의전과/북미1과
MF번호	C-67 / 20 / 1~213(213p)

정부는 1973.1.5. 개최 예정인 Harry S. Truman 전 미국 대통령 추도식에 김종필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조문사절단을 1.3.~6. 미국에 파견함.

1. 정부는 1972.12.13. Truman 전 대통령 위독 사실에 대한 주미대사관 보고 및 외신 보도에 따라 한 · 미 간 우호관계 및 동 대통령의 한국전 파병 결정으로 북한의 침략을 격퇴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정중한 조문 방식을 검토하는 한편 주미대사관에 외국 조문사절 관련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 주미대사관은 동 대통령이 1972.12.2. 서거하였음을 보고한바,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 및 김용식 외무부장관 명의의 닉슨 대통령 및 트루먼 대통령 부인에 대한 조전을 발송함.
- 주미대사관은 동 대통령 장례식이 친지들만 참석하는 가족장으로 거행될 예정이며, 동 장례식과 별도로 추도식이 워싱턴에서 거행될 것임을 보고함.
- 미 국무성은 추도식이 1973.1.5. 워싱턴 성당에서 개최될 것임을 각 대사관에 통고하였으며, 주미대사관은 대만(구 자유중국) 등의 특별 조문사절 파견 계획을 보고함.

2. 정부는 양국 간 우호관계 및 동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지원과 기여를 감안하여 김종필 국무총리를 사절단장, 김용식 외무부장관을 사절로 하는 조문사절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함.

3. 김종필 국무총리는 1973.1.5. 추도식 참석 후 닉슨 대통령을 면담하고, 뉴욕에서 미국 언론인들과의 조찬회, 뉴욕, LA 및 하와이에서 교포 간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함.

4. 관련 자료

- 닉슨 대통령과의 면담 준비 자료
  - 한반도 정세, 10월 유신, 남북대화, 한 · 미 안보관계, 월남 문제, 한 · 미 간 경제 현안 문제 관련 입장
- Truman 대통령의 한국 관계 발언
- 주요국 조문사절단 파견 계획에 관한 각 대사관 보고

정일권 전 국무총리 Johnson, Lyndon B. 미국 대통령 장례식 참석, 1973.1.24.-26.

| 73-030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C-67 / 21 / 1~61(61p)

정부는 정일권 전 국무총리를 1973.1.25. 개최 예정인 Lyndon B. Johnson 전 미국 대통령 장례식에 조문사절로 파견함.

1. 주휴스턴총영사관은 1973.1.22. 동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명의의 조전을 발송하고 조문사절 파견을 추진함.

2. 주미대사관은 1973.1.25. 워싱턴 National City Christian Church에서 장례식이 거행될 계획임을 주요국의 조문사절단 파견 관련 사항과 함께 보고함.

3. 외무부는 1973.1.24. 주미대사관에 정일권 전 국무총리(공화당 의장서리) 및 최규하 외무담당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조문사절로 1.24.~26. 파견할 계획임을 통보함.

4. 주요국 주재 공관들은 주재국의 조문사절 파견 계획에 관해 보고함.

북한의 대외정책

| 73-030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국제연합과
MF번호	D-13 / 1 / 1~130(130p)

북한의 1973년 대외관계 동향 분석 및 대책에 관한 검토 자료 현황임.

1. 북한의 외교 공세 강화에 대한 중 · 장기 대처 방안

- ❁ 청와대 안보회의 자료로 1973.4.25. 외무부가 작성함.
- ❁ 북한의 외교적 승인 및 국교 수립을 위한 활동, 국제기구 진출 시도에 대처하기 위하여 1973~75년 중 외무부의 구체적인 조치 실시 계획을 수록함.
- ❁ 외교 목표, 남북한 공관 현황, 북한 승인 가능 국가 현황 등을 수록함.

2. 사절단 파견 및 접수 현황

- ❁ 북한의 1973.1.1.~3월 중 사절단 파견 및 접수 현황을 수록함.
  - 사절단 26회 파견
  - 스웨덴 외교부 대표단 등 사절단 14회 접수
- ❁ 1972년도와 대비한 분석 자료가 수록됨.

3. 남북한 대치 공관 현황

- ❁ 중국(구 중공)의 국제 사회 진출을 계기로 각국의 중국 및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현황을 수록함.
- ❁ 남북한 대치 공관의 인원, 차량, 공관 건물 및 관저 관련 비교분석표가 수록됨.

4. 1973년도 북한의 대외 동향인 북한의 대외공세 강화 배경, 현황 및 전망 등을 아래와 같이 수록함.

- ❁ 대내 · 외 정세가 북한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여사한 상황에 편승하여 외교관계 수립 확대 및 국제기구 진출을 도모함.
  - 상주공관 개설, 승격 및 통상관계 수립
  - IPU(국제의원연맹), WHO(세계보건기구), UNCTAD(유엔무역개발위원회) 가입
- ❁ 방문 및 초청 외교, 공산권 국가와의 유대 강화 및 예술단 파견 등 적극적인 선전 활동을 추진함.
- ❁ 대UN 외교 강화를 통해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및 주한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전면 철수를 목표로 함.

북한 · 아르헨티나 관계

| 73-030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D-13 / 2 / 1~157(157p)

강양욱 북한 부주석의 1973.5월 아르헨티나 방문 이후 북한-아르헨티나 간 외교관계 수립, 북한대사관 개설 및 무역협정 체결 관련 사항임.

1. 북한 · 아르헨티나 외교관계 수립

-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북한이 1972년 아르헨티나산 소맥 20만 톤을 수입하였으며, 1973.2월 주폴란드 북한대사관이 동국 주재 아르헨티나대사관에 대한 공한을 통해 국교 수립 및 3월 중 북한 통상대표단 파견을 제의하였음을 보고함.
- 3.11. 실시된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당(페론당)을 주축으로 한 연합전선당 Hector Campora 후보가 당선된바, 동인은 쿠바, 북한 및 월맹과의 수교를 공약한 바 있음.
- 외무부는 주스페인대사관에 스페인에 체류 중인 페론 전 대통령 설득을 위한 접촉을 지시하는 한편 관련 대책을 검토함.
  - 주스페인대사관 관계관은 페론의 개인 비서인 Jose Lores Rega를 접촉하여 정부 입장을 설명한바, 동인은 주아르헨티나대사가 Campora 당선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권유하는 한편 페론의 부인인 이사벨 페론을 수행하여 5.7. 중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언급함.
  - 주스페인대사관은 이사벨 페론이 북한 및 월맹도 방문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주칠레 대사관은 동 일행이 김일성 초청으로 5.17. 북한 방문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문을 보고함.
- 외무부는 주아르헨티나대사관에 신임 대통령 취임사에 북한 관련 언급이 포함되지 않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대통령 당선자 초청으로 강양욱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사절단이 5.25. 취임식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할 예정임을 보고하고, 아래와 같이 건의함.
  - 페론당 유력 인사들을 접촉하여 신임 대통령에 대한 방한 초청 가능성을 협의하였으며, 우선 부통령에 대한 방한 초청을 건의함.
  - 대통령 당선자가 북한과의 수교를 조속히 실현하겠다고 5.21. 언급한바, 교포 동요를 막기 위한 지침을 요청함.
- 외무부는 주아르헨티나대사관에 Campora 당선자가 의회 취임식을 통해 북한과의 수교를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동 수교를 최대한으로 저지하도록 지시함.
  -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5.28. Campora 대통령과 강양욱 간의 비밀 회담에서 수교 원칙을 재확인하였음을 보고함.
  - 외무부는 주아르헨티나대사에게 신임 대통령 및 외상을 시급히 면담하여 수교를 만류하고, 불가 시에는 승인 시기를 연기할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주영국대사관에 영국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함.

❁ 정부의 취임 경축 사절로 참석한 배의환 특사는 대통령, 부통령 및 외상을 면담하여 정부 입장을 설명한바, 아르헨티나 측은 북한과의 수교가 불가피함을 언급함.

❁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아르헨티나 신정부가 6.1.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양측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교환하기로 합의함.
- 외교관계 수립은 상원의 비준을 요함에 따라 최대한 지연을 위해 노력할 것임.

2. 북한대사관 개설

❁ 북한 공관 설치를 위한 선발대 6명이 1973.8.4. 아르헨티나에 도착함.

❁ 북한대사관은 9.10. 북한 정부 수립 기념행사를 개최한바, 이사벨 페론 및 외상 등이 참석함.

3. 북한-아르헨티나 무역협정 체결

❁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북한 계응태 무역상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1973.10.5. 아르헨티나 정부에 무역협정 초안을 제시하고, 동 협정 체결 등 협의를 위한 통상사절단 파견을 제의하였음을 보고함.

❁ 북한 통상사절단이 11.21.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무역협정 체결을 교섭함.

❁ 양측은 11.30.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서명 후 북한은 아르헨티나로부터 소맥 및 옥수수 수입에 관한 3개년 협정에 서명함.

북한 · 호주 관계

| 73-0303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D-13 / 3 / 1~318(318p)

호주의 북한 승인 문제, 북한 통상사절단 및 평화사절단의 호주 방문과 관련한 북한과 호주 간의 1972~73년 중 관계 동향임.

1. 호주 신정부의 북한 승인 검토

- 주호주대사관은 1972.12월 Gough Whitlam 수상 신정부의 출범에 따라 한반도 정책에 대한 검토 등 호주 신정부의 새로운 외교적 움직임이 파악됨을 보고함.
- 북한 김일성은 호주 수상 취임에 대한 축전을 발송하였으며, 뉴델리 및 자카르타 주재 북한 공관은 호주 측에 대한 접근을 시도함.
- 주한 호주대사는 1973.2.15. 외무부차관 면담 시 호주의 대북한 정책 변경에 관한 아래 7개 항의 각서(Aide-Memoire)를 수교함.
  - 북한을 합법적 정부로 승인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경
  - 호주 외교공관의 북한 공관과의 적극적인 접촉 허용
  - 언론인 및 통상사절단 상호 방문 등
- 외무부는 2.16. 호주의 대북한 신정책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5개 항의 답변 각서를 전달하는 한편 주한 미국, 영국 및 일본대사에게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함.
- 주한 호주대사는 2.22. 외무부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 측 각서 5개 항목 중 사전 협의 요청만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답변 각서를 수교한바, 외무부는 주호주대사관에 호주 측의 중국(구 중공), 소련 및 북한 측에 대한 동 입장 전달 유보 또는 연기를 요청하도록 지시함.
- 외무부차관은 2.24. 주한 호주대사에게 외무부장관이 대통령 친서를 휴대하고 호주를 방문하여 북한 문제를 직접 협의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동 시기 이전 북한, 중국 및 소련에 대한 통고를 보류하도록 요청함.
  - 주호주대사는 2.26. 호주 외무차관 및 국무상을 면담하여 정부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바, 호주 측은 관련국에 대한 통고를 유보할 것임을 약속하는 한편 외무부장관 방문 관련 사항은 수상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함.
  - 호주 정부는 2.26. 월맹 승인을 발표함.
  - 외무부차관은 2.28. 주한 호주대사를 초치하여 호주 정부가 소련 등에 대북한 승인 통지를 유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외무부장관의 호주 방문을 연기하고, 주호주대사를 통하여 대통령 친서를 전달할 것임을 통보하는 한편 양국 간 사전 협의 필요성을 강조함.
  - 주호주대사는 3.5. 외무성 국무상에게 남북대화의 성공은 남북한 간의 세력 균형에 기초하고 있음에 따라 남북한 간 회담의 성공을 위해 호주가 계속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요지의 대통령 친서를 전달함.
- 주한 호주대사는 3.8. 외무부차관 면담 시 대통령 친서에 대한 Whitlam 수상의 아래 요지의 회답 친서를 전달하는 한편 구두 추가 설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승인 및 외교관계 수립은 시기상조이며, 대표부 설치 또는 무역협정 체결을 유보하고 통상사절단을 교환할 것이라고 언급함.

- 호주는 한국 입장을 감안하여 관련국에 대해 북한 승인 입장을 통보치 않음.
- 대북한 접촉 정책은 추진 예정임.

❋ 김용식 외무부장관은 뉴질랜드 및 호주 정부 초청으로 아래와 같이 5.11.~19. 양국을 방문함.
- 대북한 접촉 확대, 지역 협력,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 북한의 WHO(세계보건기구) 가입, 양국간 경제 협력 및 통상 증진 문제를 협의함.
- 호주 수상은 대한민국 정부를 당황케 하면서 북한을 승인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확언하고, 다만 국제회의 등에서의 북한 외교관과의 대화 및 일시적, 소규모의 통상사절단의 방문만을 허용할 것임을 언급함.

❋ 호주 수상은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 토의 추이에 따른 북한 승인 조치를 검토하였으나, 10월 북한의 서해안 북방한계선 도발에 따라 호주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함.

❋ 주한 호주대사는 12.4. 외무부차관 면담 시 북한 승인이 불가피하며, 적절한 시기에 북한을 승인할 것임을 언급함.

2. 호주 대외무역상 북한 방문 및 북한 통상사절단 호주 방문

❋ 북한 측은 1973.5.20. 중국을 방문 중인 Cairns 대외무역상에게 수교, 통상사절단의 호주 방문 및 동 장관의 북한 방문을 요청하는 한편 뉴델리 및 자카르타 주재 공관을 통하여 호주 측에 6월 중 통상사절단 파견을 제의하였으며, 호주는 동 제안을 수락함.

❋ 북한 대외무역 국장급 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7.5.~14. 호주를 방문하여 대외무역상 예방 및 농 · 식품 가공시설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 주한 호주대사는 7.13. 외무부 차관보를 면담하고 9.16. 개최 무역회담 참석차 방한하는 Cairns 대외무역상이 방한 후 판문점을 통하여 북한을 방문하는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문의한바, 차관보는 정부의 반대 입장을 전달함.

❋ 동 장관은 중국 주은래와의 회담 시 중국의 한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호주의 대북한 입장 결정은 중국 등 공산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입장 변화 추이에 따를 것임을 언급함.

3. 북한 평화위원회 대표단 호주 방문

❋ 호주 정부는 Cairns 대외무역상 북한 방문 시 북한 측 제의에 따라 호주 국제 협력 및 군축위원회 초청에 의한 북한 평화위원회(Korean National Peace Committee) 인사 5명에 대한 1973.11.18. 이후 2주간 호주 방문 초청을 허가함.

❋ 북한 대표단은 호주 수상 및 외상과의 면담 기회에 조속한 외교관계 수립을 촉구한바, 호주 수상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대한 북한의 반대에 실망을 표명하였으며, 외상은 공산주의 국가들의 태도 완화 필요성을 강조함.

북한 · 오스트리아 관계

| 73-0304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D-13 / 4 / 1~119(119p)

오스트리아의 북한 승인 문제 및 주오스트리아 북한 통상대표부의 활동과 관련한 1972~73년 중 오스트리아-북한 관계 동향임.

1. 북한 승인 문제

-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1972.12.19. 외무성 관계자가 남북대화 추이를 보아 가며 남북한 간 교섭이 결정적인 단계에 도달할 시점에 북한 승인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 오스트리아 정부는 스웨덴으로부터 북한 승인 관련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받은 바 있으나, 이를 거절함.
  - 오스트리아 외상은 북한 승인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승인하지는 않으나 ,마지막으로 승인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힘.
  - 상공회의소 고위 인사들은 오스트리아-북한 간 교역량의 증가가 정치 면에서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함.
- 주오스트리아대사대리는 외무성 동구담당 공사 및 하원 외교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을 면담하고 북한의 IPU(국제의원연맹) 가입에 반대하도록 요청함.
- 북한–오스트리아협회 창립 회의가 1973.5.10. 비엔나에서 개최되어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 및 사회당 소속 의원 등 임원을 선출함.
- 오스트리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초청으로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5.18.~24. 비엔나를 방문함.
- 북한 고등교육상과 인민회의 대의원이 6.13.~20. 비엔나 인근을 시찰하고, 연방 상공회의소 직원을 면담함.

2. 북한 통상대표부 동향

- 북한은 오스트리아 SGP사로부터 약 6천만 달러 상당의 암모니아 및 질소비료 플랜트 수입 계약을 체결을 계기로 오스트리아에 대한 외교 공세의 일환으로 1973.3.13.~17. 대외무역성차관이 포함된 최고인민회의 의원단을 경제사절단 형식으로 오스트리아에 파견하려고 하였으나, 오스트리아 외무성 측의 외상 면담 거절 등 부정적 입장에 따라 방문을 취소함.
- 북한 통상대표부 직원들이 오스트리아 거주 한국 교민들에 대하여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오스트리아 좌익계 학생들을 동원하여 선전활동을 시행함.
- 국민당 중진의원인 연방 상공회의소 살링가 회장이 대북한 플랜트 수출업계의 요청 및 북한 대외무역촉진위원장의 초청으로 북경에서 개최되는 상품전시회 참석 귀로에 1974.3.29.~4.11.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며, 동독 주재 이장수 북한대사는 비엔나를 방문하여 살링가 회장을 면담하고, 북한 승인을 측면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북한 · 방글라데시 관계

| 73-030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D-13 / 5 / 1~17(17p)

방글라데시와 북한은 1973.12.15. 외교관계를 수립함.

1. 외무부는 1973.1.15. 주뉴델리총영사관에 방글라데시 외상이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제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와신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바, 주뉴델리총영사는 1.18. 다카 방문 시 고위 당국자들과 의견 교환을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방글라데시가 한국과의 수교 이전에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보고함.

2. 주뉴델리총영사관은 1973.7.18. 주뉴델리 이철진 북한총영사가 Chandigarh 지방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곧 방글라데시를 승인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는 인도 언론 보도를 보고한바, 외무부는 동일자로 주뉴델리 총영사관에 양측 접근 동향 파악을 지시함.

3. 주뉴델리 총영사관은 1973.12.15. 주뉴델리 방글라데시 대사관 차석이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한국과 방글라데시 간 관계를 총영사관 관계에서 대사관 관계로 승격한다는 내용의 공동발표를 양국이 합의하는 일자에 시행한다는 방글라데시 정부 입장을 전달하여 왔음을 보고함.

4. 주뉴델리총영사관은 1973.12.16. 현지 언론들이 방글라데시와 북한이 12.15.자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하였음을 보고함.

5. 주뉴델리 총영사관은 1973.12.20. 북한-방글라데시 간 국교 수립 발표 경위를 아래 보고함.

- 방글라데시 측 인사는 방글라데시 정부는 비동맹 중립노선 정책을 내외에 천명하기 위하여 남북한과의 수교를 동시에 발표하고자 하였으나, 뉴델리와의 통신 불능으로 북한과의 수교를 먼저 발표하게 되었음을 언급함.
- 북한은 인도 대륙 주변 국가들에 대한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반적인 대처 조치가 필요할 것임을 건의함.

북한 · 벨기에 관계

| 73-030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D-13 / 6 / 1~31(31p)

벨기에-북한 간의 1973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 노동당 대외문화위원회 및 평화수호위원회 일행 6명이 벨기에 사회당 소속 의원 초청으로 1973.6.10. 벨기에를 방문하여 외상 및 아주국장 면담 등 일정을 가진바, 주벨기에대사의 유감 표명에 대하여 벨기에 측은 유엔 한반도 문제 토의에 앞서서 북한 입장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2. 주벨기에대사관은 김송남 북한 노동당중앙위원회 대외문제담당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방문단이 1973.6.5~9. 벨기에를 방문하여 사회당 인사들을 면담한 사실을 언론을 통하여 파악한바, 대사관의 항의 및 경위 문의에 대하여 벨기에 외무성은 외무성과 경찰은 사전에 동 방문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Benelux 3개국 간에 체결된 사증 면제 협정에 따라 1개국 비자를 취득할 경우 여타 국도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에 따른 것임을 설명함.

- ❋ 주태국대사관은 주태국 벨기에대사관 직원이 북한 주민이 사증 발급 신청을 할 경우 사전에 본국의 허가를 득하도록 지시를 받았음을 대사관에 알려 왔음을 보고함.
- ❋ 주벨기에대사는 북한 방문단을 면담한 벨기에 사회당 당수를 면담한바, 동 당수는 벨기에 공산당의 요청으로 북한 방문단 면담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하면서 한국이 벨기에의 북한 승인 문제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언급함.

3. 벨기에 외무성은 1973.6.8. 주벨기에대사관에 북한 기자 일행이 입국 허가를 신청하였음을 알려 옴에 따라 대사관 측은 북한 기자들의 정치적 활동 가능성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할 것을 요청한바, 외무성은 입국 보류 조치를 약속함.

북한 · 바레인 관계

| 73-030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D-13 / 7 / 1~16(16p)

1. 주쿠웨이트총영사는 상품전시회 개최를 위한 1973.5.5.~6. 두바이 및 5.8~9. 바레인 출장 중 5.7. 바레인 상공회의소 고위 인사를 면담한바, 동 인사는 북한 외무성 차관이 인솔하는 대표단이 4월 중 바레인을 통과한 바 있다고 언급함.

2. 외무부는 1973.5.7. 주이란대사관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북한 인사의 바레인 통과 또는 방문 관련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바, 주이란대사는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주이란 바레인대사에게 동 사실을 문의하였으며, 동 대사는 본국 외무성 정무국장을 통해 관련 사실을 파악함.
- 북한 대표단이 바레인을 방문하여 경제 및 인사 교류 등 실질적인 친선관계 유지를 제의하였으나, 국교 수립 등 특기할 만한 제의는 없었음.

북한 · 불가리아 관계

| 73-030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특수지역과
MF번호	D-13 / 8 / 1~19(19p)

불가리아 지브코프 공산당 제1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당 · 정부 대표단의 1973.10.24.~29. 북한 방문 등 1973년 중 불가리아-북한 관계 동향임.

1. 대표단 방문 배경

- 한국의 6·23 외교선언에 따라 친중국 정책을 유지해 온 북한은 동구권 친소련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필요성을 인식함.
- 불가리아 등 동구 국가는 북한의 중국 편향을 억제하고, 가급적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제국의 결속 강화를 의도함.

2. 북한-불가리아 공동성명 발표

- 북한의 통일 5대 방침에 대한 지지를 재천명함.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반대 등 4개 조항으로 구성됨.

3. 불가리아 언론의 김일성 회견 요지

- 불가리아 Sofia Babotnichesko Delo지는 1973.8.5. 김일성의 Wifred Burchett 기자와의 회견 내용을 보도함.
- 김일성은 동 회견을 통해 1971.6월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의 선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 정부의 한반도 통일 정책 및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입장에 반대함.

북한 · 미얀마(구 버마) 관계

| 73-030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D-13 / 9 / 1~92(92p)

북한 친선사절단 미얀마(구 버마) 방문, 미얀마 언론인 북한 방문 등 1973년 중 미얀마-북한 간의 관계 동향임.

1. 주양곤총영사는 1973.2.26 미얀마가 2.23.자로 동독과의 영사관계를 외교관계로 승격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함에 따라 외무부는 동 결정이 한국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바, 주양곤총영사의 보고 요지임.

- ❋ 미얀마 정부의 사회주의 경향 및 공산주의자 요직 기용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은 대사관 승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 ❋ 외무성 정무국장은 총영사에게 남북한 공히 영사관계를 유지한다는 정책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함.

2. 북한 친선사절단 미얀마 방문

- ❋ 김관섭 대외문화관계위원회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친선사절단이 1973.3.22.~27. 미얀마를 방문하여 부수상, 외상 및 문화상을 예방하고 한반도 문제 관련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대사관 승격,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 및 북한의 WHO(세계보건기구) 가입에 대한 지지를 요청함.
- ❋ 김경련 재무상 일행이 항공기 연결을 위한 기착 목적으로 5.31.~6.4. 미얀마에 체류함.
- ❋ 강양욱 부주석 일행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 참석 귀로에 6.11. 미얀마에 기착하여 부수상 및 외상의 영접을 받음.

3. 미얀마 언론인 북한 방문

- ❋ 미얀마 언론인 사절단이 1973.9.5.~18. 북한을 방문하여 9·9절 행사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짐.

4.북한 총영사관 홍보 활동

- ❋ 총영사대리가 1973.7.13. 공관 내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일성의 5대 통일방안을 선전 홍보함.
- ❋ 총영사대리는 9.5.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대중 사건 및 남북대화 중단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를 비난함.
- ❋ 총영사관은 9·9절 계기 미얀마 언론에 대대적인 체제 우위 선전 홍보 활동을 시행함.
- ❋ 총영사관은 11.29.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대화가 재개되지 않는 책임이 한국 측에 있음을 주장함.

북한 · 보츠와나 관계

| 73-031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D-13 / 10 / 1~21(21p)

북한 정명수 부외무상이 1973.2.26.~3.6. 보츠와나를 방문함.

1. 주케냐대사관은 1973.3.7. 북한 부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친선사절단이 겸임국 보츠와나를 방문하여 남북한 통일 문제 관련 북한 입장을 지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보고함.

2. 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관은 외무성으로부터 입수한 보츠와나 주재 대만대사관의 정명수 일행 보츠와나 방문 관련 아래 보고 내용을 보고함.

- 보츠와나 외상은 대만대사에게 북한사절단이 김일성 친서를 수교하고, 외교관계 수립 및 유엔 총회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와 관련한 북한 입장을 지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언급함.
- 보츠와나 측은 아직까지는 여사한 요청을 수락할 수 없다고 답변함.

3. 주케냐대사는 1973.3.13. 보츠와나를 방문하고, 외상 및 대통령을 면담한 결과를 아래 보고함.

- 북한사절단 방문 시 채택된 북한-보츠와나 공동성명서는 남북한 평화통일 지지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보츠와나 대통령은 남북한의 대화를 통한 자주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지지한다고 언급함.
- 북한은 잠비아 소재 공관을 통하여 집요하게 보츠와나에 접근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수교 전망은 없으며, 남북회담이 계속되는 한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 연기안을 계속 지지할 것으로 판단함.

4. 보츠와나 방송공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사절단이 1973.7.31. 평양을 방문함.

북한 · 베넹(구 다호메이) 관계

| 73-031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D-13 / 11 / 1~62(62p)

북한과 베냉(구 다호메이) 간 1973년 외교관계 수립 및 대사관 개설 등 관계 동향임.

1. Michel Alladaye 외상 평양 방문 및 외교관계 수립

-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73.1.16.~17. 겸임국인 베냉에 출장하여 대통령 및 외상 등 인사들을 면담하고, 혁명정부에 대한 정부의 지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베냉 혁명정부의 대북한 정책에 관해 파악한바, 베냉 측은 비동맹 독립노선에 따라 모든 국가 특히 도움을 주는 국가와 우호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답변함.
- 외신은 1.30. 북한중앙통신 보도문을 인용하여 베냉 Alladaye 외상이 1.30.~2.6. 북한을 방문 중으로 북한과 베냉은 2.5. 경제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2.5. 평양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서는 양국이 외교관계 수립 및 대사급 교환에 합의하였음을 밝힘.
-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3.20.~21. 베냉을 방문하여 외무차관 및 정무국장 등 인사들을 면담하고, 북한이 실제적으로 약속한 원조를 제공할 때까지 베냉 측이 한반도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함.

2. 북한 대사관 개설

-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은 베냉 주재 미국대사관의 정보 제공을 통해 북한대사관 개설 요원들이 1973.5.30. 베냉에 도착하였음을 보고함.
- 베냉 정부는 10.29. 북한 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 외무부는 베냉에 대한 대책으로 토고에 개설 예정인 대사관을 통하여 베냉에 대한 교섭을 강화하는 한편 계속적인 의료원조 사업을 시행토록 결정함.

3. 관련 자료

- 북한 친선협회의 홍보활동, 북한 사절단 방문 및 북한 농업기술자 방문 등 후속 조치 관련 자료

북한 · 콩고 관계

| 73-031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D-13 / 12 / 1~10(10p)

콩고공화국과 북한 간의 1973년 중 기술 협력 및 인사 교류 관련 사항임.

1. 주중앙아프리카대사관은 1973.3.14. 겸임국인 콩고공화국에서 북한 기술자들이 공업연구소 건설 사업을 지휘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를 보고함.

2. 로이터통신은 1973.6.13. 북한 조선통신을 인용한 흥콩발 기사를 통해 외상 등으로 구성된 콩고공화국 고위 정부사절단이 6.12. 김일성과 회담하였다고 보도함.

3. 주가봉대사관은 주가봉 일본대사관 직원이 콩고공화국 출장 시 파악한 콩고 국경일 행사 계기 북한 대표 파견 등 북한 측 동향을 보고함.

북한 · 칠레 관계

| 73-031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정보1과
MF번호	D-13 / 13 / 1~49(49p)

칠레 Almeyda 외상의 1973년 북한 방문 및 북한-칠레 단교 관련 사항임.

1. Almeyda 외상의 북한 방문

- 주칠레대사관은 1973.1.17. Almeyda 외상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사절단이 북한 외상 초청으로 2.1.~4. 북한을 방문 예정임을 보고함. (실제로는 2.2.~3. 방문)
- 로이터, UPI 등 외신은 북한 통신을 인용하여 칠레 사절단이 김일성 등과 회담하였으며, 만찬사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및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해체 등을 주장한 것으로 보도함.
- 외무부는 이에 반박하는 외무부 대변인 담화문을 준비함.
- 외무부는 칠레 외상 방북 시 북한에 대해 1천만 달러 추가 차관을 요청하였으나 북한 측이 거절하였다는 정보를 대사관에 통보한바, 주칠레대사관은 북한이 칠레에 제공한 바 있는 500만 달러 차관 사용 문제에 관하여 양측이 협의하였으나 상환 결제 방법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추측됨을 보고함.
- 칠레 외상 북한 방문 시 발표된 공동성명서는 주한미군 철수, UNCURK 해체 주장 등을 포함함.

2. 칠레 군사 쿠데타 및 칠레-북한 관계 단절

- Pinochet 주도의 1973.9.11. 칠레 군사 쿠데타 발생에 따른 Allende 정권 붕괴와 관련하여 북한은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김관섭 위원장 명의로 칠레 군부에 의한 정변이 미국의 사주에 따른 것임을 비난하는 담화문을 발표함.
- 칠레 언론은 9.19. 칠레 군정은 북한이 칠레 내정에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발표하였음을 보도하였으며, 칠레 외상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동 단교를 확인함.

북한 · 콜롬비아 관계

| 73-031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D-13 / 14 / 1~12(12p)

북한-콜롬비아 간 1973년도 관계 동향임.

1. 주콜롬비아대사는 남미를 순방 중인 북한 사절단의 콜롬비아 입국 시도에 대응한 조치 결과를 아래 보고함.

- 북한은 베네수엘라, 파나마 등 지역에서 콜롬비아 입국 사증을 신청함.
- 콜롬비아 정부는 북한 사절단에 대한 사증 발급을 불허함.

2. 북한은 콜롬비아의 좌경 국회의원을 통하여 콜롬비아에서 개최되는 행사 참석을 시도하였으나, 콜롬비아 정부의 확고한 불허 방침에 따라 불허됨.

북한 · 카메룬 관계

| 73-031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D-13 / 15 / 1~37(37p)

북한-카메룬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북한 이자경 주카메룬 초대 대사 부임

- 북한과 카메룬 간의 1972.3.3.자 국교 수립 합의에 따라 이자경 북한 초대 대사가 1973.3.12. 카메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이에 따라 카메룬에는 남북한 대사관이 동시에 개설되었으며, 북한 대사는 3.29. 신임 리셉션을 개최함으로써 공식 활동을 개시함.
- 카메룬은 우간다에 이어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 대치 공관이 된바, 외무부는 북한 대사관 인원 구성, 대사관 규모 등 정보 입수를 통해 제반 대응 방안을 검토함.

2. 북한 친선사절단 카메룬 방문

- 김용택 부외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친선사절단이 1973.3.5.~12. 카메룬을 방문하였으며, 대통령 면담 시 김일성 친서를 수교함.

북한 · 카나다 관계

| 73-031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D-13 / 16 / 1~12(12p)

캐나다 언론의 1973년 중 북한 관련 보도 및 북한-캐나다 관계 동향임.

1. 캐나다 언론 보도

- 북한이 주한미군의 휴전협정 위반 사례를 맹렬히 비난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 위한 의도임.
- 북한이 평화조약 체결을 제안한 것은 한국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점차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보임.
- In Balance지는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요지의 사설을 게재하였으며, 주캐나다대사관은 동 사설의 활용을 건의함.
- 북한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안을 거부함.

2. 북한의 캐나다산 소맥 수입

- 북한은 캐나다로부터 8만 톤의 소맥을 상업 베이스로 수입함.

3. 북한의 WHO(세계보건기구) 가입

- 주캐나다대사는 캐나다 외무성에 캐나다가 북한의 WHO 가입 반대 입장을 지지하여 준 데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캐나다 측은 북한의 동 기구 가입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함.

북한 · 중국(구 중공) 관계

| 73-031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D-13 / 17 / 1~24(24p)

북한 허담 외상이 1973.2.9.~14. 중국(구 중공)을 방문함.

1. 방문 목적

- ❁ 주미대사는 허담 북한 외상이 키신저 미국 대통령 안보보좌관의 중국 방문에 앞서 북경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하여 1973.2.14. 미 국무성 관계자를 면담하여 동 방문 의도에 관해 협의함.
- ❁ 국무성 측은 아래와 같은 북한 측 의도를 상정하고, 허담이 키신저 보좌관과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은 없음을 언급함.
  - 남북한 군비 축소를 새로운 외교적 명분으로 하여 선전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
  -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해체 등 유엔 대책 논의
  - 중국이 월남전 종전 후 미국이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에 군사력을 잔류시키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과 관련하여 북한은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을 우려하여 중국의 관련 입장 확인 및 적극적인 지지 확보 의도

2. 주홍콩총영사관의 허담의 중국 방문에 관한 분석 보고

- ❁ 북한은 주은래-키신저 회담에 대비하여 아시아 공산동맹 간 협력 강화,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 및 UNCURK 해체 문제 등과 관련한 북한 측 입장 반영을 의도함.
- ❁ 중국이 미국과의 회담에서 북한 측 입장을 반영하여 의례적 이상의 강력한 주장을 할지는 의문시됨.

3. 허담 중국 방문 결과에 관한 공동성명문 요지

- ❁ 양국 간 친선협조관계 발전 방안 및 상호 관심사 논의
- ❁ 월남전 종전 및 평화협정 조인을 환영하며, 모든 협정 조항의 엄격한 이행으로 아시아에서의 긴장상태가 완화되기를 기대
- ❁ 김일성의 6개년 계획 및 3대 기술혁명사업 과업 단축 축원
- ❁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북한 입장 지지, 미군 미군 철수 및 UNCURK 해체 주장

4. 외무부는 1973.7.31. 주대만대사관과 주홍콩총영사관에 북한 주재 이운천 중국대사가 3개월 이상 대외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북한 · 덴마크 관계

| 73-031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D-13 / 18 / 1~271(271p)

북한과 덴마크 간의 1973년 중 외교관계 수립 및 교류 등 주요 관계 동향임.

1. 덴마크의 북한 승인 및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 덴마크 사회당 및 공산당 계열 언론은 1973.1월 이후 덴마크가 2개월 이내에 북한과 수교 예정임을 보도함에 따라 정부는 동 사실 여부 파악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2.22. 외무부 장상문 차관보를 덴마크에 파견하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덴마크 정부가 북한과의 수교를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덴마크 측은 어느 국가든 영토를 사실상 통치할 능력을 가진 정부와는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원칙을 설명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승인이 북한 정권을 도덕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해명함.
- 덴마크 정부는 3.7. 의회 외교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대북한 외교관계 수립 방침을 보고하였으며, 3.8. 동 입장을 미국 정부에 통보함.
- 정부는 미국 측에 대해 덴마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3.19. 함병춘 특사 및 4.12. 정일권 국회의장 파견을 통해 덴마크 측의 재고를 요청하였으나, 덴마크 수상 및 외상은 북한 승인 입장을 확인함.
- 북구 외상회의는 2.29.~30. 회의 결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승인 문제를 협의하였음을 발표함.
- 덴마크 앤더슨 외상은 4.27. 의회에서의 당면 외교정책 연설을 통해 북한 승인에 대한 입장을 밝힘.
- 덴마크 정부는 5.18. 주덴마크대사관에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5.21.자로 북한에 정식 제의할 것이라고 통보하였으며, 5.21. 외무성은 동 제의를 공식 발표함.
  - 소련 주재 덴마크대사관 및 북한대사관이 관련 절차를 협의함.
  - 정부는 김정국 주덴마크대사대리의 서한 형식으로 유감을 표명함.
- 덴마크 정부는 7.20. 북한과의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함.
  - 중국 주재 덴마크대사관이 북한을 겸임하고, 북한은 덴마크에 이미 개설된 공보관을 대사관으로 승격함.
  - 초대 북한 대사대리가 10.11. 부임함.

2. 덴마크-북한 간 교류

- 덴마크 내 친북한협회를 중심으로 한 좌익 단체들은 북한 홍보 선전활동을 시행함.
- 북한 공진태 대외무역상을 단장으로 하는 무역사절단이 1973.2.26. 덴마크를 방문하여 외상 등 인사들을 면담하고, 통상 증대 방안을 협의함.
- 덴마크 시멘트 회사인 F. L Smidth사는 1.5억 달러 상당의 플랜트 북한 수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
- 덴마크 국회의원 3명이 8월 친북단체의 주선으로 북한을 친선 방문함.
- 북한 이기선 대외경제성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11.22.~30. 덴마크를 방문함.

북한 · 에콰도르 관계

| 73-031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D-13 / 19 / 1~59(59p)

북한-에콰도르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주칠레대사관은 에콰도르 정부가 김운환 북한 외무성부상 일행의 1973.3.15. 에콰도르 방문을 접수한 데 대해 대사대리 명의의 항의 서한을 외무성으로 발송하였음을 보고함.

- ❋ 에콰도르 외상대리는 동 서한에 대한 반박 서한을 송부함.
- ❋ 외무부는 3.21. 주페루대사를 에콰도르에 파견하여 사태 파악을 지시함.

2. 주페루대사는 1973.3.22.~27. 에콰도르를 방문하여 외상 및 외무성 간부들을 면담하는 한편 동국 주재 주요 외교단 접촉을 통해 북한 사절단의 활동 사항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북한 사절단은 3.15.~26. 에콰도르를 방문하여 대통령에게 김일성 친서를 전달하고 북한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외상, 외무성 및 통상성 간부들과의 면담을 통해 통상관계 증진 등 관계 개선을 시도함.
- ❋ 북한 측은 외교관계 및 통상관계 수립을 제의함.
- ❋ 에콰도르 측은 북한 사절단 접수는 단순히 북한 입장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의 제의에 대하여 어떠한 응답을 하지 않았으며, 에콰도르의 한국에 대한 우호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함.

3. 주브라질대사는 브라질 주재 에콰도르대사 면담 결과를 아래 보고함.

- ❋ 동 대사는 1973.4.9. 북한 사절단 방문 중 북한과 에콰도르는 상호 통상대표부 설치에 합의하였음을 언급함.
- ❋ 동 대사는 7.5. 북한은 경제 사절단을 에콰도르에 파견하여 쌀 및 바나나 수입을 조건으로 통상대표부 설치에 합의하였음을 언급함.

4. 주칠레대사관은 에콰도르 주재 명예영사 및 한국 교민들을 통하여 북한 사절단 활동 동향을 파악한바, 북한 언론인단의 방문에 이어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사절단이 8월에 방문하였다는 현지 교민의 정보를 1973.8.20. 보고함.

5. 주페루대사는 1973.9.17.~19. 에콰도르를 방문하여 외무성 간부를 면담한바, 외무성 측은 북한 통상대표부 설치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하였음을 보고함.

북한 · 이집트 관계

| 73-032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D-13 / 20 / 1~106(106p)

이집트-북한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이집트 인사 북한 방문

- Saad El Shazli 이집트 참모총장이 1973.3월 북한 강양욱 부주석의 이집트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4.2.~15.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을 면담하고, 휴전선 등을 시찰한바, 이집트에 파견된 북한 태권도 교관들이 동 참모총장 휘하의 특수부대에서 태권도를 훈련 중임.
- 주일 및 주미대사관은 10~20명의 북한 공군 조종사들이 이집트에서 전투기를 조종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주카이로총영사관은 카이로 주재 미국, 영국 및 캐나다대사관 무관들을 통하여 북한 조종사 33명이 이집트에서 활동 중임을 보고함.
- El Nasr 외무성 아주국장 부부가 6월 중, DR. El Sayed Ali El Sayed 국회 부의장 일행이 8.15.~21. 북한을 각각 방문함.
- El Shafei 부통령은 9.16.~19. 아래와 같이 북한을 방문함.
  - 강양욱 부주석은 이집트 방문 시 김일성의 사다트 대통령에 대한 방북 초청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주이집트 북한대사는 8.7. 동 부통령 면담 시 9월 북한 정권 수립 25주년 기념식 참석을 초청함.
  - 동 부통령은 외상, 국방상 등 대표단을 인솔하여 북한을 방문하고, 지대공 미사일 등 소련제 무기 부품 원조를 요청함.

2. 북한 인사 이집트 방문

- 강양욱 북한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 사절단이 1973.3.1.~7. 이집트를 방문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 북한 고위 비밀 사절단이 7.29.~31. 이집트를 방문하여 사다트 대통령을 면담함.
- 주카이로총영사관은 김재홍 외무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사절단의 8.16.~23. 방문 결과를 아래 보고함.
  - 외상 및 외무차관을 면담하고, 6·23 선언에 대한 북한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한국의 대사관 승격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
  - 알제리에서 개최 예정인 비동맹회의에서의 지지를 요청함.

3. 카이로 주재 북한 대사 활동

- 김병호 북한 대사는 1964.12.16. 북한–이집트 수교 이후 양측 간 긴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북한 통일정책 설명,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 선전활동과 함께 한국의 대사관 승격 저지를 위한 반대 활동을 강화함.

북한 · 적도기네 관계

| 73-032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D-13 / 21 / 1~6(6p)

주카메룬대사는 1973.7월 적도기니 방문 중 북한 사절단의 동국 방문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1. 겸임국인 적도기니 출장 후 1973.7.23. 귀임 시 북한 사절단 3명이 도착함에 따라 공항 당국을 통하여 동인들의 명단을 확인한바, 동인들은 브라자빌에서 도착한 것으로 파악됨.

2. 적도기니 외무성에 동 사절단의 방문에 대해 문의한바, 외무성에서는 동인들이 부외상 일행으로 개인적 방문이라고 답변한바, 동 북한 사절단에 대하여 본부에서 파악하여 줄 것을 요청함.

북한 · 이디오피아 관계

| 73-032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D-13 / 22 / 1~27(27p)

북한-에티오피아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주에티오피아대사는 1973.3.13. 에티오피아 외무차관으로부터 북한 사절단이 3~4월 중 방문 예정임을 확인하고, 동 차관의 관련 설명 내용을 아래 보고함.

- 북한 사절단의 선의의 방문을 거절할 이유가 없음.
- 북한의 소말리아 게릴라 훈련 및 에리트레아 해방운동 지원 등 에티오피아에 대한 적대 활동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북한 사절단의 에티오피아 방문

- 북한 전명수 부외상 외 4명은 1973.3.27.~4.6.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였으나,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주수단 북한대사는 7.23. 에티오피아 황제 탄신 축하를 위한 입국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추후 8.22.~28. 에티오피아를 방문함.
-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은 16명으로 구성된 북한 사절단이 에티오피아를 방문할 예정임을 보고함.
- 주수단대사는 수단 주재 에티오피아대사를 통해 주수단 북한대사의 에티오피아 방문 승인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함.

3. 북한-에티오피아 수교 가능성 관련 주에티오피아대사 보고

- 빈번한 북한 사절단 방문이 외교관계 수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동 가능성에 대비한 활동들을 시행 중임.

북한 · 핀란드 관계

| 73-0323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D-13 / 23 / 1~174(174p)

핀란드의 1973.4.13.자 남북한 동시 승인 및 6.1.자 외교관계 수립 경과임.

1. 핀란드의 남북한 동시 승인 및 수교

- 핀란드 정부는 남북한 동시 승인 및 수교 입장을 수립하고 남북한에 관련 입장을 타진해 온바, 1973.3.29. 개최 북구외상회의에서 북한 승인 문제가 토의될 예정임에 따라 핀란드 국내에서는 좌파 단체들에 의한 북한 승인 촉구 대언론 공세 및 대정부 활동이 강화됨.
- 함병춘 특사는 3.24. 핀란드를 방문하여 외상 및 외무차관 등을 면담하고, 남북한 동시 승인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한편 만약 승인이 실현될 경우 대통령에게 핀란드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건의할 수밖에 없음을 언급함.
- 핀란드 정부는 4.6. 남북한 동시 승인 및 외교관계 수립 결정을 발표하고, 4.13. 승인을 공식화 한바, 정부는 동 통보 사항 접수 확인에 대한 유보를 표명함.
- 주핀란드통상대표부는 5.23. 외무성이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해 6.4. 전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과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음을 보고함.
- 핀란드 외무성은 6.2. 북한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6.1.자로 합의하였으며, 대사를 상호 교환할 것이라고 발표함.
- 주핀란드통상대표부가 대사관으로 승격되었으며, 북경 주재 핀란드대사가 북한을 겸임하고, 동경 주재 핀란드대사가 한국을 겸임케 됨.

2. 핀란드-북한 간 교류

- 1973.3.26.~4.2. 계응태 대외무역상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 핀란드 방문 및 북한의 핀란드 제지공장 설비 수입 문제 협의
- 6.12. 북한 평화사절단 일행의 친북한 단체 주관 회의 참석차 핀란드 방문
- 7.20. 주소련 북한대사 핀란드 방문 및 김일성의 연방통일방안 설명
- 8.14. 핀란드-북한협회 대표단 북한 방문
- 8.26.~9.5. 핀란드 재무상 북한 방문 시 김일성 면담 및 핀란드 제지공장 수출 문제 협의
- 11.6.~13. 핀란드 대외무역상 북한 방문 및 북한이 주문한 제지공장 인도 문제 등 협의
- 11.17.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북한 연대성 회의가 북구 5개국 및 북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핀란드에서 개최

북한 · 프랑스 관계

| 73-032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D-13 / 24 / 1~98(98p)

북한-프랑스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주프랑스대사는 주소련 북한대사의 1973.1.5.~8. 프랑스 방문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 프랑스 외무성 관계자는 권희경 소련 주재 북한대사가 개인 자격으로 파리를 방문하여 외무성 아주국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임을 통보해 오는 한편 동 면담 수락은 프랑스의 북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북한 측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임을 설명함.
- 북한대사는 1.8. 아주국장과의 면담 및 오찬 시 북한의 통일방식 설명과 함께 북한이 프랑스와 모든 분야에서 관계 증진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아주국장은 아직은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였음을 설명함.
- 북한대사는 아주국장 및 주중국 프랑스대사의 방북을 초청하였으며, 하원 외교위원장을 면담함.

2. 주프랑스대사는 1973.11.29. 외무성 아주국장 및 부국장을 면담하고, 프랑스가 북한 무역사무소의 공식 대표부로의 지위 승격 문제를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함에 따라 외무부는 외무부장관의 프랑스 방문을 포함하는 대프랑스 외교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함.

- 북한 통상부부장의 1972.10월 프랑스 방문 이래 북한 측의 강력한 승격 요청에 대하여 프랑스가 무역사무소의 명칭에 평양 대신 DPRK 사용 허용 등 일부 조건을 완화함에 따라 정부는 프랑스와 북한 간의 관계 개선 동향을 주시함.
- 북한은 1968.4.5. 동 무역사무소 설치 이후 통상, 기술 관련 인사의 프랑스 방문, 은행 설립 시도 및 석유화학공장 건설을 위한 프랑스의 차관 제공 요청 등 활동을 강화해 옴.

3. 프랑스의 북한 승인 문제 관련 공관 보고 및 언론 보도 내용임.

- 주노르웨이대사대리는 1973.5.14. 주재국 외무성 부국장이 프랑스가 북한을 승인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 동아일보는 1973.5.16.자 파리발 기사를 통해 프랑스 외무성 대변인이 한국 정부가 북한을 승인하기 전에는 프랑스가 먼저 북한을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언급하였다고 보도함.
- 주프랑스대사는 7.4. 외무성 아주국장 면담 시 동 국장은 1973년 말 이전까지 프랑스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북한 · 감비아 관계

| 73-032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D-13 / 26 / 1~27(27p)

북한-감비아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외교관계 수립

❋ 주중앙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은 1973.3.13. 현지에서 입수한 AFP 보도를 인용하여 김석기 북한 교육상이 인솔하는 북한 친선사절단이 2.27. 감비아 방문 시 양측 간 외교관계 수립 문제를 협의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하는 한편 3.19. 북한과 감비아가 3.2.자로 대사급 외교 수립을 결정하였다는 AFP 기사를 보고함.

❋ 외무부는 주영국대사관에 감비아–북한 외교관계 수립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바, 주영국대사는 3.15.~21. 감비아에 출장하여 대통령, 외상 등을 면담하고 동 결과를 아래 보고함.

- 대통령 및 외상을 면담하여 동 수교 사실을 확인하고,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수교 합의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요청함.
- 감비아 측은 반공정책에 변화가 없으나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의 압력이 있었으며, 여타 동구권 공산국가와도 수교하게 되었음을 설명함.

2. 감비아 부통령 겸 외상 북한 방문

❋ 주영국대사관은 1973.10.1. 주소련 북한대사관을 수신처로 하는 아래 내용의 감비아 외무성 각서가 주영국대사관에 잘못 전달되었음을 보고함.

- 감비아 카마라 부통령 겸 외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10.23.~30. 북한을 공식 방문함.
- 북한 방문 후 유엔 총회에 참석함.

❋ 카마라 부통령은 북한 방문 중 허담 외상 주최 환영연회에서 답사를 통해 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함.

❋ 주유엔 대표부 참사관은 동 부통령의 북한 방문을 수행한 감비아 대통령 비서실장 겸 외무차관을 면담하여 방문 관련 사항을 파악한바, 외무차관은 동 방문은 북한의 실상 파악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대표단은 북한 측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에 일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명함.

북한 · 독일 관계

| 73-032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D-13 / 25 / 1~38(38p)

독일(구 서독) 정부의 북한에 대한 수출 신용 보증 제공 등 1973년 중 북한-서독 간의 관계 동향임.

1. 독일 정부의 대북한 수출업자에 대한 신용 보증 허용

- 주독일대사관은 1973.4.11. 독일 정부가 기존 정책을 변경하여 북한에 비료 공장과 합섬 설비를 수출하는 독일 회사에 천만 마르크 상당의 공급자 신용을 허가하기로 최근 비밀리에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여사한 사례가 독일의 대북한 정책 변화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무부에서 주한 독일대사에게 동 사실 확인과 함께 항의를 제기할 것을 건의함.
- 외무부차관은 4.21. 주한 독일대사를 초치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 최고위층에 주의를 환기시켜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독일대사관에 외무성에 유사한 보증 제공이 고려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고려 시 저지하도록 지시한바, 주독일대사관은 외무성이 만약 독일 기업이 수출하지 않을 경우 여타 유럽 기업이 제공할 것이며, 동 시설 수출이 한국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음을 보고함.
- 주독일대사관은 북한이 대규모 석유화학중공업 건설을 추진 중으로 프랑스, 벨기에, 서독 기업들과 대부분 거래하고 있음을 보고함.

2. 북한 외교관 여권 소지자 독일 체류 허가

- 주서베를린총영사관은 1973.7.24. 북한인들이 독일 경찰당국으로부터 서베를린 및 서독 내 일시 체류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서베를린 시에 유감을 표명한바, 독일 외사당국은 7.1. 현재 14명의 북한인에 대해 체류허가를 발급하였음을 확인함.
- 외무부는 북한이 서독 내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서베를린 경로를 모색할 가능성을 상정하고 주독일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독일 당국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도록 지시한바, 독일 외무성은 연방정부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바가 없음을 답변하는 한편 실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약속함.

3. 독일 Die Welt지 보도

- 동지는 1973.10.20. 한국이 독일의 성급한 북한 승인을 반대한다는 서울발 독일 DPA 통신사 보도를 인용하여 보도함.
- 주독일대사관은 10.26. 외무성이 동 기사에 관한 답변 자료를 통해 독일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알려 왔다고 보고함.

북한 · 가이아나 관계

| 73-0327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D-13 / 28 / 1~18(18p)

북한과 가이아나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외무부는 1973.1.4. 주브라질대사에게 겸임국인 가이아나 출장을 통해 한국-가이아나 간 관계 강화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북한의 통상대표부 설치 동향 파악 및 관련 대응 대책을 보고하도록 지시한바, 주브라질대사는 1.16. 가이아나 방문 결과를 아래 보고함.

-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가이아나에 상주 대표부를 설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이 가이아나로부터 보크사이트를 대량 구매할 경우에는 사정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북한 통상사절단이 1973.5.6. 가이아나를 방문하고 통상 증대 방안을 협의함.

3. 주뉴델리총영사관은 1973.7.21. 북한이 뉴델리 주재 가이아나 고등판무관실을 통하여 북한사절단 가이아나 파견을 위한 교섭을 추진 중임을 보고함.

북한 · 아이슬란드 관계

| 73-032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D-13 / 29 / 1~33(33p)

아이슬란드의 1973.5.21.자 북한 승인 및 외교관계 수립 경과임.

1. 외무부는 아이슬란드의 북한 승인 동향에 대처하기 위해 1973.2월 문덕주 주이탈리아대사에게 겸임국 아이슬란드 출장을 지시한바, 주이탈리아대사는 동 출장 결과를 아래 보고함.

- 아이슬란드 외상을 2.27. 면담한바, 외상은 아이슬란드는 북한 승인을 서두를 생각이 없으나,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덴마크, 노르웨이가 승인할 경우에는 따를 수밖에 없음을 언급함.
- 동 외상은 3.29. 북구외상회의에서 북한 승인 문제가 중요하게 취급될 것임을 언급함.

2. 주스웨덴대사관은 북한 공진태 무역상을 단장으로 하는 무역사절단이 1973.3.5. 아이슬란드를 방문하여 외상과 면담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할 시기가 성숙하였다고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3. 주노르웨이대사관은 1973.4.9. 신문기자의 언급을 인용하여 3.30. 노르웨이 주재 인도대사 주최 리셉션에서 노르웨이 외상은 북한 승인 문제에 관하여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었음을 보고하는 한편 아이슬란드에 대한 설득 교섭을 시행할 것을 건의함.

4. 외무부는 1973.4.12. 주이탈리아대사에게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에 재차 출장하여 북한 승인 움직임에 대처하도록 지시한바, 주이탈리아대사는 동 출장 결과를 아래 보고함.

- 노르웨이를 4.27.~30. 방문하여 외무차관을 면담한바, 노르웨이가 단시일 내에 북한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 아이슬란드를 4.25.~27. 방문하여 수상 및 외상을 면담한바, 아이슬란드 측은 5월 초 의회 외교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며, 북구외상회의 합의와 정부 연정 내 압력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으나 당분간 보류할 것임을 언급함.
- 노르웨이, 미국 등 우방을 통한 영향력 행사가 필요함을 건의함.

5. 외무부는 상기 주이탈리아대사의 건의에 따라 주미대사에게 미국 정부에 관련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함.

6. 아이슬란드 정부는 1973.5.21. 덴마크와 동일한 일자에 북한 승인 및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함.

- 외무부는 주스웨덴대사대리에게 대사대리 명의의 유감 표명 서한을 스웨덴 주재 아이슬란드 대사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
- 아이슬란드와 북한은 5.27. 모스크바에서 외교관계 수립 결정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함.

북한 · 인도 관계

| 73-032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D-13 / 30 / 1~28(28p)

인도의 1973.12.10.자 한국 및 북한과의 외교관계 동시 수립 경과임.

1. 주뉴델리총영사는 김광섭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사절단이 1973.3월 인도를 방문하여 간디 수상에게 김일성 친서를 수교하고, 북한 통일방안 선전과 함께 유엔에서의 북한 입장 지지 요청을 하였다고 보고함.

2. 주뉴델리총영사는 1973.9.14. 인도 외무차관 면담 시 동 차관은 남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 ❋ 북한 총영사에게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할 용의가 있음을 통고함.
   - ❋ 북한 총영사는 평양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함.

3. 인도 외무차관은 1973.10.22. 주한 인도총영사와 한 · 인도 외교관계 수립 문제에 관해 협의한바, 인도 총영사는 한 · 인도 간 외교관계 수립 일자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동 차관은 북한 측 반응에 관계없이 한 · 인도 간 외교관계 수립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4. 주뉴델리 총영사는 1973.12.3. 인도 측과 국교 수립 일정 교섭 중 인도 측은 비동맹 국가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유엔 총회 종료 및 소련 브레즈네프 서기장의 인도 방문 후인 12.1. 이전에는 국교 수립을 발표 예정임을 언급하였으며, 외무성 차관이 북한 총영사를 3차례 초치하여 북한 측 회답을 촉구하였으나 아무런 회답이 없었음을 보고함.

5. 인도 외무성은 1973.12.4. 주뉴델리총영사를 초치하여 인도는 남북한과의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을 12.10.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통고한바, 총영사는 이에 반대하고 공동 발표를 주장하여 인도 측은 공동발표 형식에 합의함.

6. 북한 총영사는 1973.12.4. 인도 외무차관에게 남북한 동시 수교는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하는 것임을 이유로 북한과의 단독 수교를 주장하였으나 인도 측이 이에 반대함에 따라 북한과의 수교 일자를 먼저 발표할 것을 교섭한바, 재차 인도 측의 반대에 봉착하여 최종적으로 12.10.자 발표에 동의함.

북한 · 이란 관계

| 73-0330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D-13 / 31 / 1~171(171p)

북한-이란 간의 1973.4.19.자 외교관계 수립 등 관계 동향임.

1. 북한-이란 간 외교관계 수립 및 주이란 북한대사관 개설

❁ 관련 경과

- 이란 탁구대표팀은 1972.9.26.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팀과 시합을 가짐.
- 이란 Aboas Ali Khalatbary 외상은 1973.1.14. 기자회견에서 10년간 외교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남북한 간 대화에 성과가 있을 경우에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가능성 검토를 시사함.
- 주이란대사는 1.19. 외상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이란 측을 접촉하는 한편 이란 정부가 보편주의 및 현실적인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존함을 보고함.

❁ 주이란대사의 관련 후속 보고

- 7·4 공동성명 발표 후 이란 언론들은 빈번하게 외교관계가 없는 공산국가에 대해 언급 중인바, 이는 정부의 구상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평가되며 주이란 미국대사 면담 시 미국대사는 이란의 월맹과 북한 승인은 기정사실로 평가됨을 언급하면서 국왕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신임 주미 이란대사를 대상으로 교섭하는 것이 좋을 것임을 언급함.(1.31.)
-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이란 국왕 및 수상에 대한 친서 발송, 신임 주미 이란대사를 통한 교섭을 건의함.(2.26.)

❁ 정부는 4.6. 이란 국왕의 정치적 성과를 축하하고, 남북대화의 성공을 위하여서는 현상 유지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요지의 대통령 친서를 주이란대사관에 발송하는 한편 적절한 시기에 전달토록 지시함.

❁ 북한 김경연 재정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4.13. 이란을 방문하여 팔레비 국왕 예방, 외상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짐.

❁ 이란 외무성 정무차관보는 4.15. 이란 언론과의 비공개 회견을 통해 북한 측의 수교 요청이 있었으며, 이란은 동 요청을 원칙적으로 수락할 용의가 있음을 언급함.

❁ 이란의 북한 승인 결정 및 외교관계 수립 발표

- 주이란대사는 4.16. 외상에게 대통령 친서를 수교한 자리에서 동 외상으로부터 북한과의 수교 합의 사실 및 4.19.~20. 전후 발표 예정임을 통보 받음.
- 정일권 국회의장은 4.18. 특사 자격으로 이란을 방문하고 이란 국왕에게 재고를 요청하였으나, 이란 측은 재고가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함.
- 정부는 4.17.~19. 미국, 영국 및 일본 정부에 대해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함.
- 이란 정부 및 북한 대표단장은 4.19.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 정부는 4.20. 주이란대사의 명의로 유감 입장을 전달하고, 4.21. 동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함.

❁ 주이란 북한대사관이 6.30. 개설됨.

2. 이란-북한 간 교류

- 이란 외무성 아주국장 및 감사실장이 9·9절 행사 참석차 북한의 공식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함.
- 북한 통상부부장을 대표로 하는 통상사절단이 1973.8.28. 이란을 방문하여 이란-북한 간 통상지불 협정에 서명함.

북한 · 이탈리아 관계

| 73-033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D-13 / 32 / 1~65(65p)

북한-이탈리아 간의 1972~73년 중 관계 동향임.

1. 이탈리아 정부의 대북한 정책 동향

- 이탈리아 외상의 1973.1.6.~12. 중국(구 중공) 방문을 계기로 대북한 입장 변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이탈리아대사는 1.19. 외무차관을 면담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한바, 이탈리아 정부는 남북대화에 영향을 줄 의사는 없으나, 북한과의 통상 증진을 위하여 북한 상사대표의 주재는 검토할 수 있음을 언급함.
- 주이탈리아대사는 2.23. 이탈리아 정부의 대북한 정책이 현재까지는 변화가 없으나, 월남전 휴전 후 EEC(구주경제공동체) 국가들의 월맹 승인 문제에 관한 새로운 움직임이 북한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함.
- 아르헨티나 일간지는 4.22. 평양발 기사를 인용하여 이탈리아가 연내에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보도함.
- 외무부는 8.9. 주이탈리아대사에게 이탈리아 중도좌파 신내각의 Moro 외상이 취임 전 북한 측의 승인 요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회답하였다는 설에 대한 사실 확인을 지시함.
- 동독 주재 북한대사가 9월 말 이탈리아를 비공식 방문하여 외무성 정무부차관보를 면담하고, 유엔 총회에서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반대 및 주한 유엔사령부 해체 등 북한 측 주장을 설명함.

2. 북한 대표단의 이탈리아 방문 현황

- 파리 주재 북한 무역사무소 직원들이 1972.11.21.~12.10.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통상대표부 설치 문제를 교섭함.
- 북한 경제대표단이 1973.3.7. 밀라노를 방문하여 대북한 석유 수출 문제를 협의함.
- 북한 대외무역성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원단이 3.5.~13.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외무차관, 하원 의장을 면담하고 IPU(국제의원연맹)에서의 북한 입장에 대한 지지를 교섭하는 한편 통상성 차관 등을 면담하여 무역 및 경제 협력에 관하여 협의함.
- 북한 만수대 민속예술단이 3.23.~4.2. 이탈리아를 순회 공연함.
- 북한 통상사절단이 9.15.~10.4. 이탈리아를 방문함.

북한 · 일본 관계

| 73-033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D-14 / 1 / 1~116(116p)

일본-북한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조총련 간부들의 1972년 북한 방문 후 재입국 허가 발급이 증가하였으며, 1973.1.5. 북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정관순을 단장으로 하는 평양고등경공업학교 축구팀이 일본을 방문하여 친선경기를 개최하였으며, 일본 관방장관을 면담함.

2. 일본 상사대표단이 1973.1.24. 북한을 방문하여 수출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일본 국제전신전화국은 북한에 대해 동경-평양 간 직통 통신회선 설치를 신청함.

3. 일본 외무성 홍보지인 《세계의 움직임》은 일본이 남북대화 진전 추이에 따라 북한과 접촉 확대를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함을 주장함.

4. 일본 정부는 1973.3.2. 북한 주재 무역사무소 설치 및 일본 상품전시회 개최를 위한 경비를 1973년도 예산에 계상함.

5. 다나카 수상은 1973.3.4. 일본 참의원 한국 관계 질의응답에서 북한을 곧 승인할 수는 없지만 문화, 경제, 학술, 체육 교류 확대를 희망하며, 북한에 대한 수출입은행 자금 사용 문제도 사안별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6. 외무부 동북아1과장은 1973.3.19.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을 초치하여 북한과의 접촉 확대 및 대북한 시멘트 플랜트 수출에 수출입은행 자금의 사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함.

7. 주일대사는 1973.4.4. 일본 법무대신을 방문하여 북한과의 교류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전달함.

❁ 일본은 3.19. 북한 만수대 예술단 간부들의 일본 공연 준비를 위한 입국 허가를 발급함.

8. 오히라 외상은 1973.4.9. 참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응답 시 남북대화 추이를 참고하여 북한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함.

9. 사회당은 1973.4.17. 북한과의 교류 및 수교를 촉진하기 위한 '일 · 조 우호 국교정상화 국민회의' 결성 방침을 수립하고, 6.15. 자민당 인사도 포함된 발기인 회의를 개최하여 9.8. 정식 설립함.

10. 동경도의회는 1973.6.8. 북한의 통일정책 지지 및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등을 촉구하는 '조선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수상 등 각료에게 전달함.

11. 오히라 외상은 1973.7.4.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6·23 선언에 따라 북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임을 밝혔으며, 법무성은 북한 노조 관계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한편 자민당 간부들로 구성되는 북한 방문단 파견 계획을 추진함.

12. 일본 사회당은 1973.7.4. 일 · 조 국교 정상화에 관한 의회 결의안 제출을 추진함.

13. 산케이 신문은 1973.7.27. 북한의 유엔 옵서버 가입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주유엔대표부를 통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접촉을 개시할 방침이라고 보도함.

14. 일본 언론들은 1973.9.22. 일본-월맹 간 9.21.자 국교 수립을 계기로 정부 내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에 관한 내부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음을 보도함.

일본 · 북한 기자교류

| 73-033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D-14 / 2 / 1~57(57p)

일본-북한 간의 1972~73년 중 기자 상호 교류 동향임.

1. 일본 기자의 북한 방문

- 마이니치 및 요미우리 신문 기자 10명이 1972.9.1.~12.31. 기간 중 북한을 방문함.
- 일본 신문협회 대표단 기자 7명이 북한 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초청으로 1973.10.30.~11.6. 북한을 방문함.

2. 북한 기자의 일본 방문

- 북한 기자단 중앙위원회 위원장 겸 노동신문사 책임주필 정준기를 단장으로 하는 기자단 8명이 아사히 신문 주도에 따른 일본 신문협회의 초청으로 1973.5.10.~26. 일본을 순회 방문함.
- 동 기자단은 관방장관, 경단련 회장 및 동경도지사를 면담하고, 교육기관, 언론기관 및 산업시설을 시찰함.
- 정준기 단장은 대담 등 각종 기회에 북한의 경제 개발 및 통일 방안에 관한 입장을 선전함.

일본 · 북한 체육교류

| 73-033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D-14 / 3 / 1~14(14p)

일본-북한 간의 1973년 중 체육 교류 동향임.

1. 북한 체육 선수단 일본 방문

❁ 평양고등경공업학교 축구단 일본 방문(1.5.)

- 북한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인 정광순을 단장으로 하는 축구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친선 경기를 개최함.
- 정광순은 관방장관 면담, 동경신문과의 회견 등의 일정을 가진바, 관방장관과의 면담 시 일본과의 수교 희망을 전달하였으며, 동경신문과의 회견에서 일-북한 교류 확대, 자민당 의원 북한 방문, 통상대표부 설치 및 남북한 통일 문제 등에 관한 북한 입장을 설명함.

❁ 북한 탁구 대표단 일본 방문(4.2.)

- 일본 정부는 강희원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 선수단의 요코하마 개최 제2회 아시아탁구 선수권대회 참가를 허가함.

❁ 아시아 아이스하키연맹 창설 준비위원회 참석(8.10.)

- 일본은 아시아 아이스하키연맹 창설 준비위원회 설립 추진을 위해 한국, 중국(구 중공) 및 북한을 준비위원회 회원으로 특별 초청하여 8.10. 동경에서의 회의 개최를 제의함.

2. 일본 체육 선수단 북한 방문

❁ 북한 체육교류촉진연맹은 1973.9.4. 일본 유도 선수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9.24.~10.8. 친선 경기를 개최할 예정임을 발표함.

북한 · 자메이카 관계

| 73-033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D-14 / 4 / 1~18(18p)

북한-자메이카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주멕시코대사관은 1973.4.6. 겸임국인 자메이카 외무성 의전장으로부터 북한 대표단이 4.6. 자메이카에 도착한다는 통보를 접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의전장은 사전 사증 발급이 없었음을 설명함.
- ❋ 자메이카는 1972.3.6. 신정권 수립 후 3.20. 중국(구 중공)과의 외교관계 수립 및 12.8.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 등 좌경 외교 정책을 추진해 온바, 북한은 이에 편승하여 관계 개선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 대사관은 현지 주재 한국 의사를 통하여 관련 동태를 파악 중임.
- ❋ 주멕시코대사의 북한 대표단 방문 결과 추가 보고 요지
  - 현지 언론 보도 및 정보 소식통에 의하면 동 북한 대표단 방문은 자메이카 주재 쿠바영사관의 주선으로 실현됨.
  - 대표단은 4.6.~12. 체류 중 수상실 외무담당 국무장관을 면담하여 외교관계 수립, 경제, 외교적 협력 여지를 논의하였으며, 북한 측은 수교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짐.

2. 주멕시코대사관은 1973.8.3. 자메이카 공보성이 쿠바 주재 북한 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자메이카를 방문하여 외무차관을 면담하고,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북한 입장을 설명하였음을 발표하였다고 보고함.

3. 주멕시코대사관은 1973.8.9. 자메이카 주재 한국인 의사가 북한 기자단 4명이 파나마로부터 자메이카에 도착하여 수상실 외무담당 무임소장관을 면담하였다고 알려 왔음을 보고함.

북한 · 케냐 관계

| 73-033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D-14 / 5 / 1~32(32p)

북한 사절단이 1973.6.8.~16. 케냐를 방문함.

1. 북한은 우간다, 탄자니아 및 케냐 등 EAC(동아프리카연합) 국가 중 유일하게 수교 관계가 없는 케냐에 대하여 소련, 중국(구 중공), 이집트 및 탄자니아 등에 주재하는 케냐대사관을 통하여 북한 사절단 접수 요청 활동을 강화해 온바, 케냐 정부는 북한 측 요청을 거부해 옴.

- ❁ 주케냐대사관은 북한이 중국-케냐 관계의 급격한 개선 추세에 편승하여 케냐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고함.
- ❁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1973.1~3월 중 5개 사절단을 파견함에 따라 외무부는 주케냐대사관에 북한 사절단 방문 가능성에 대처하도록 지시함.

2. 전명수 외교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사절단이 1973.5.4.~10. 우간다 방문 중 우간다 외무성을 중개로 한 케냐 입국 교섭을 통해 6.8.~16. 동 사절단이 최초로 케냐를 방문함.

- ❁ 케냐 외상서리는 주케냐대사의 동 사절단 접수 수락 거부 요청에 대해 북한 입장을 청취하기 위하여 입국을 수락하였다고 설명함.
- ❁ 주케냐대사는 북한 사절단 방문 결과를 아래 보고함.
  - 케냐 정부는 동 사절단의 방문 의미를 축소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북한 사절단은 외무차관에게 케냐 대통령에 대한 김일성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외무차관 및 차관보 면담 시 수교를 제의하고 시멘트 공장 건설을 위한 협력을 제시함.
  - 사절단은 주케냐 중국, 소련, 파키스탄 대사관을 통해 대통령, 부통령 및 대통령실 국무장관 면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실현치 못함.
  - 케냐 정부는 북한의 소말리아에 대한 군사 원조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명함.

북한 · 쿠웨이트 관계

| 73-033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D-14 / 6 / 1~23(23p)

북한-쿠웨이트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쿠웨이트 국회의장은 1973.1.4. 담화를 통해 쿠웨이트 국회부의장 일행의 1972.7월 북한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북한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이 1973.4월 중 쿠웨이트를 방문할 예정임을 밝힘.

2. 주쿠웨이트통상대표부는 1973.1.14. 동 북한 대표단 방문에 대처한 조치들을 아래 건의함.

- 무역업에 종사 중인 쿠웨이트 국회의원단 한국 방문 추진
- 한국 친선사절단(정부, 예술, 체육, 경제, 국회) 파견
- 한국 국회의장 친서 전달
- 상품 전시회 조기 개최
- 한국 소개 영상물 배포 등 홍보 활동 강화

3. 1973.3월 쿠웨이트-이라크 국경 분쟁 발생에 따라 동 방문이 무기한 연기됨.

4. 주쿠웨이트통상대표부는 1973.12월 북한통상대표부의 전시회 개최 계획에 대한 대책으로 상기 건의사항 추진을 재차 건의함.

북한 · 룩셈부르크 관계

| 73-033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D-14 / 7 / 1~9(9p)

북한 통상대표단이 1973.3월 룩셈부르크를 방문함.

1. 주벨기에대사관은 1973.2.21. 북한 통상대표단이 겸임국 룩셈부르크를 방문할 예정임을 보고한바, 외무부는 동 방문을 저지하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할 경우 방문 효과를 극소화하도록 교섭하도록 지시함.

2. 주벨기에대사는 1973.2.17. 신임장 제정을 위한 룩셈부르크 출장 계기에 외무성 정무총국장을 면담하여 북한 사절단 방문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협의함.

- 북한 대표단 방문 수락 유보를 요청하고, 불가 시에는 공식 접촉을 자제할 것을 요청함.
- 정무총국장은 북한이 주소련 대사관을 통하여 방문을 신청하였으며, 과거 동독에 대한 전례와 같이 사적인 통상대표단 방문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을 설명하는 한편 북한 대표단에 대한 공식 활동 불허 요청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함.

3. 주소련 북한대사 권희경 일행이 1973.3.23. 룩셈부르크를 방문하여 소련대사관을 통해 정부 인사와의 면담을 추진하였으나, 룩셈부르크 정부는 일체 응하지 않고 외무성 극동담당 실무 직원이 동 일행을 면담함.

북한 · 리비아 관계

| 73-033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D-14 / 8 / 1~10(10p)

북한-리비아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외신은 1973.3.23. 북한 사절단이 리비아를 방문하여 북한-리비아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였음을 보도한바, 외무부는 주튀니지대사관에 관련 사실 및 정부의 리비아와의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영향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2. 주카이로총영사관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황장엽이 리비아를 방문하여 카다피와 면담 시 양측 간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였다고 보고함.

3. 주튀니지대사는 1973.4.9. 관련 사항 파악, 리비아와의 외교관계 수립 교섭,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의 정부 입장 지지 요청 및 통상사절단 리비아 파견 준비를 위하여 리비아를 방문함.

북한 · 말레이시아 관계

| 73-034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D-14 / 9 / 1~52(52p), Re-27 / 17 /1~20(20p)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의 1973.6.30.자 외교관계 수립 경과임.

1. 북한 탁구팀 및 축구팀은 1973.3.14. 및 3.17. 말레이시아를 각각 방문하여 지방 순회 친선 경기를 개최함.

2. 말레이시아 각 정당들은 1973.3.31. 말레이시아-월맹 간의 외교관계 수립을 환영하는 한편 북한 및 중국(구 중공) 등 여타 공산 국가와의 수교를 주장함.

3. 말레이시아 정부는 비동맹 중립정책을 표방하여 동독 및 월맹과 수교하였으며, 수상은 1973.4.18. 의회 연설을 통해 북한과의 국교 수립 의사를 발표한바, 정부는 4.18. 최규하 특사를 파견하여 강경한 반대 입장을 전달함.

4. AFP는 1973.5.30. 쿠알라룸푸르발 기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사절단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수교 교섭을 개시할 것이라고 보도함.

5. 말레이시아 남양상보는 1973.6.17. 자카르타에서 진행되어 온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의 수교 협상이 최종 단계에 돌입하였으며, 6월 말경 외교관계 수립이 발표될 예정임을 보도함.

6. 주일본대사관은 1973.6.30. 일본 언론들이 쿠알라룸푸르발 외신을 인용하여 말레이시아 외무성 당국자가 북한-말레이시아 간의 수교 협상이 6.22. 타결되어 곧 수교가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음을 보고함.

7. 인도네시아 주재 말레이시아대사 및 북한대사는 1973.6.30. 말레이시아-북한 간의 외교 수립에 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함.

북한 · 마다가스카르(구 말라가쉬) 관계

| 73-034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D-14 / 10 / 1~17(17p)

북한-마다가스카르(구 말라가시)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AFP는 1973.3.23. 전명수 외교부부장을 단장으로 북한 대표단이 3.21.~23.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하고,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고 보도함.

- ❋ 정치, 경제 등 분야에서 상호간 관계 확대
- ❋ 반제국주의 투쟁을 위한 지지 및 결속 표명

2. 현지 언론은 북한 대표단의 마다가스카르 최초 방문 동정을 보도함.

3.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은 1973.3.26. 외무부 국제연합과장에게 마다가스카르 주재 미국대사가 외무성 관리로부터 입수한 전명수의 마다가스카르 방문 동향을 설명한바, 북한 사절단은 마다가스카르 방문 시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해체 및 주한 외국군대 철수를 주장한 것으로 파악됨.

4. 평양방송은 북경 주재 마다가스카르대사가 1973.5.18. 북한에 신임장을 제출하였으며, 주탄자니아 북한대사가 5.15. 마다가스카르 정부에 겸임대사 신임장을 제출하였다고 보도한바, 외무부는 마다가스카르를 겸임 중인 주프랑스대사관에 관련 사항을 파악하도록 지시함.

북한 · 모로코 관계

| 73-034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D-14 / 11 / 1~30(30p)

모로코-북한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주모로코대사의 1973.5.30. 모로코 외무차관 면담 시 동 차관은 북한 사절단의 모로코 방문 계획을 통보한바, 외무부는 주모로코대사에게 북한 사절단 방문으로 모로코의 북한 승인 조치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처할 것을 지시함.

2. 주모로코대사는 1973.6.8. 외상 면담 결과를 아래 보고함.

- ❋ 외상 언급 요지
  - 북한 사절단에 대해 북한과 하등의 관계 설정 의사가 없음을 인식시킴.
  - 남북대화 결실이 있을 때까지 남북한에 대해 어떠한 정책 변화도 없을 것임을 약속함.
- ❋ 모로코 측의 확고한 공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경제, 문화 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할 경우 모로코 정부가 이에 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 모로코 주재 이집트대사는 소련대사 언급을 인용하여 북한 사절단이 통상, 문화 관계를 유지할 용의가 있다는 모로코 측의 반응에 만족을 표시하였음을 전해 옴.

3. 주모로코대사는 1973.6.26. 외상을 면담하고 6·23 선언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바, 동 외상은 북한의 유엔 가입 시 북한을 승인할 수밖에 없으며, 1973.9월 비동맹회의 이전 국제적인 북한 승인 움직임이 있을 경우 북한을 승인 예정임을 밝힘.

- ❋ 주모로코대사는 여사한 여건에 비추어 모로코의 북한 승인은 시간문제로 9.5. 알제리 비동맹회의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함.
- ❋ 외무부는 주모로코대사에게 정부의 알제리, 모리타니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모로코의 협력을 요청하도록 지시함.

4. 주모로코대사는 1973.7.13. 외상을 면담하고 주한유엔군 철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및 북한 승인 문제 등에 관하여 협의한바, 동 외상은 공산 측이 먼저 한국을 승인할 경우 모로코도 북한을 승인할 것이며, 북한 승인 문제와 관련하여 여타국들과 같은 보조를 취할 것임을 언급함.

5. 주모로코대사는 1973.7.17. 외상 비서실장을 면담하고 7.23.~24. 개최되는 모로코, 알제리, 모리타니 3개국 정상회담 기회에 모로코가 알제리 및 모리타니 측에 대해 한국을 승인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동 비서실장은 모로코의 북한 승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비동맹회의 개최 직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함.

6. 모로코 측은 추후 북한 승인 문제를 유엔 총회 종료 시까지 보류키로 결정하였으며, 주모로코대사는 1973.9.15. 외상 및 외무차관을 통해 동 보류 결정을 확인함.

북한 · 모리셔스 관계

| 73-034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D-14 / 12 / 1~8(8p)

북한은 1973.3.20. 모리셔스와 외교관계를 수립함.

1. 프랑스 AFP 통신은 1973.3.21. 전명수 북한 외교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모리셔스 독립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모리셔스를 방문하였으며, 3.20. 모리셔스 외상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하였다고 보도함.

2. 중국 신화사 통신은 1973.3.20. 평양발 기사를 인용하여 북한과 모리셔스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고 보도함.

북한 · 멕시코 관계

| 73-034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D-14 / 14 / 1~12(12p)

북한의 1973년 중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와의 관계 동향임.

1. 북한은 1973.5.20. 강양욱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 취임 축하 특별사절단을 파견하고, 6.1. 아르헨티나 외상과 강양욱 간의 공동성명을 통하여 아르헨티나와의 수교를 발표함.

2. 정부는 주칠레 북한대사의 중남미 국가 대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 교섭 활동 추진, 북한-아르헨티나 간의 수교 등을 계기로 북한이 멕시코를 포함한 남미지역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외교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남미 주변 국가 주재 대사관에 적절한 관련 대처를 지시함.

3. 주멕시코대사관은 1973.4.25. 칠레 주재 북한대사관 요원들이 멕시코 및 카리브 지역 국가들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고함.

4. 주멕시코대사관은 1973.6.7. 포르테 힐 전임 대통령이 멕시코 정부가 동독과의 수교를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 설정 문제를 검토 중일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 왔음을 아래 보고함.

- ❋ 멕시코 정부는 동독 승인을 계기로 분단국 정책을 수정하게 되었으며, 특히 북한의 WHO(세계보건기구) 가입 및 아르헨티나와의 수교를 계기로 한반도 문제가 검토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함.
- ❋ 멕시코의 여사한 움직임은 카리브 지역 내 우방국뿐 아니라 남미 국가들 전반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5. 한국일보는 1973.10.10. 멕시코 혁명단체가 영국 명예영사를 납치하고, 석방 대가로 평양에서 게릴라 훈련을 받고 멕시코에서 복역 중인 MAR 당원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기사와 함께 주멕시코대사관 대리대사와의 북한의 게릴라 훈련에 관한 통화 내용을 보도함.

북한 · 네팔 관계

| 73-034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D-14 / 15 / 1~81(81p)

북한-네팔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외무부는 최근 북한-네팔 간의 인사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1973.1.22. 주카트만두총영사관에 적절한 관련 대처를 지시함.

- ❁ 북한 청년사회근로연맹 대표 2명이 네팔 청년단체 초청으로 1972.12.26. 네팔을 방문함
- ❁ 네팔 추밀원 의장 등 4명의 추밀원 의원이 북한 초청으로 1973.1.12. 북한을 비공식 방문함.

2. 북한-네팔 간 1973.3월 이후 인사 교류 현황임.

- ❁ 김관섭 북한 대외문화관계위원회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친선사절단이 3.13.~17. 네팔을 방문하여 수상, 외무장관 등 고위 인사를 면담함.
  - 북한 측은 네팔 측에 친선 및 문화 교류 증진을 요청하는 한편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 시 북한 입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함.
  - 네팔 측은 관련 정책이 미정임을 답변함.
- ❁ 네팔 여성회 회장은 북한 초청으로 7.5. 북한을 방문함.
- ❁ 네팔 Gyanaendra B. Karki 외상이 9.16.~19.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을 예방하고, 외상을 면담함.

3. 북한은 네팔 무역공사의 시멘트 등 국제 입찰에 응찰하여 15,000톤의 시멘트와 1,500톤의 연철봉을 공급하기로 함.

4. 주카트만두총영사관은 북한이 네팔 일간지들의 영세성을 이용하여 동 일간지들을 매수하고 기사 보도, 특집 게재 및 간담회 개최 등의 방법을 통해 북한 선전활동에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함.

5. 주태국대사는 태국 주재 네팔총영사가 1973.7.4. 대사관 관계관에게 네팔 정부가 북한 공관원의 활동을 제약하여 카트만두 이외의 지역으로의 여행 시에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북한 총영사관의 과다한 인원 및 지나친 면세 물품 반입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북한 · 노르웨이 관계

| 73-0346 |

생산연도 | 1972-1973
생 산 과 | 구주과
MF번호 | D-14 / 16 / 1~134(134p)

북한-노르웨이 간의 1973.6.22. 외교관계 수립 및 8.15. 노르웨이 주재 북한대사관 개설 경과임.

1. 북한-노르웨이 외교관계 수립

- 북구 국가들의 북한 승인 동향에 따라 정부는 1973.2.9. 장상문 외무부차관보, 3.23. 함병춘 대통령 보좌관 및 4.27. 문덕주 주이탈리아대사를 특사로 노르웨이에 각각 파견하여 노르웨이의 북한 승인 유보를 위해 교섭함.
- 노르웨이 측은 국내 정치 상황 및 보편주의에 기초한 국가 승인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북한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노르웨이가 북구 국가 중에서 최초로 북한을 승인하는 국가가 되지는 않을 것임을 언급함.
- 노르웨이 언론은 노르웨이가 승인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국가인 북한에 대한 승인 문제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외무성 고위 인사는 의회 답변, 언론 회견 및 주노르웨이대사대리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북한 승인 시기를 계속 검토 중으로 1973년 여름 이전에는 결정될 것임을 시사함.
  - 외무성 정무차관보는 5.25.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승인 지연 사유와 관련하여 동구 제국의 한국 승인 가능성을 탐색 중으로 9.10. 총선 이전 결정 예정임을 언급함.
  - 노르웨이 다수당인 노동당은 5.30. 전당대회에서 북한 승인을 지지함.
  - 노르웨이 외상은 6.1. 의회 발언을 통하여 가까운 장래에 북한을 승인할 것이라고 언급함.
- 노르웨이 외무성은 6.15. 주노르웨이대사대리에게 북한 승인 결정 및 6.22.자 외교관계 수립 계획을 통보하였으며, 양측은 모스크바 주재 대사 간의 접촉을 통해 6.22.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였음을 공동 발표함.
  - 정부는 6.19. 김영주 주독일대사의 노르웨이 파견 및 외무부장관의 주일 노르웨이대사 면담을 통해 대통령의 6·23 선언이 발표될 예정임을 설명하고, 북한과의 수교 발표를 6월 말로 연기하여 주도록 교섭하였으나, 노르웨이 측은 수락이 어려움을 답변함.

2. 노르웨이 주재 북한대사관 개설

- 주소련 북한대사 권희경이 1973.8.1.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대사관 개설 문제를 협의함.
- 주노르웨이대사관은 북한이 8.15. 상주 대사관을 개설하였음을 보고함.

3. 기타 북한-노르웨이 교류

- 북한 국립평양곡예단이 1973.8.24. 노르웨이에서 외교관계 수립 축하 공연을 개최함.
- 북한 대표단이 공산당 창당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11.1. 노르웨이를 방문함.

북한 · 니제르 관계

| 73-034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D-14 / 17 / 1~35(35p)

북한-니제르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니제르를 겸임 중인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은 1973.2.20. 니제르 외무성으로부터 북한이 제의한 북한 사절단의 니제르 방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한을 접수한바, 동 공한은 아비장 주재 북한 대사관 수취로 되어 있으며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 잘못 전달된 것임.

2.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은 동 사실을 보고하는 한편 니제르에 파견된 정부파견의사에게 북한 사절단 관련 사항을 파악하도록 요청한바, 정부파견의사는 니제르 대통령과의 건강 상담 시 관련 사항을 문의한바, 동 대통령은 북한이 니제르에 전기 분야 기술협력 등 사업을 제의하여 동 사절단 접수를 결정하였으며, 이는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것은 아님을 언급하였다고 대사관에 알려 옴.

3. 외무부는 최근 아프리카 · 아랍국들의 입장 변화 움직임, 동구권에 대한 문호개방 및 인접국들의 대북한 입장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북한 사절단의 니제르 방문에 대처하기 위해 1973.2.26. 주코트디부아르대사를 니제르에 파견한바,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대통령, 외상 및 우방국 대사들 면담 등 출장 결과를 아래 보고함.

- 니제르 측과의 협의를 통해 니제르 도자기 공장 건설 사업에 대한 한국의 원조 제공, 상주공관 조속 설치 및 우호관계를 재확인함.
- 북한은 니제르에 대한 선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절단 방문을 제의하면서 전기 분야 등 협력과 통상대표부 설치를 제시함.
- 북한이나 중국(구 중공)이 거액의 원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니제르가 북한을 승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4. 북한 김석기 문교상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1973.3.26. 니제르를 방문함.

북한 · 뉴질란드 관계

| 73-034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D-14 / 18 / 1~16(16p)

북한-뉴질랜드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뉴질랜드 외무차관은 1973.7.14. 주뉴질랜드대사대리에게 뉴질랜드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힘.

- ❋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의 6·23 선언을 매우 현명한 조치로 평가함.
- ❋ 뉴질랜드는 한국의 대북한 정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도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며, 호주 및 인도네시아 주재 고등판무관실에 북한과의 일체의 접촉을 유보하라는 훈령을 시달함.

2. 주한 뉴질랜드대사대리는 1973.7.25. 외무부 아주국장에게 북한은 7.5. 통상사절단의 호주 파견 계기에 동 사절단의 뉴질랜드 방문 실현을 위해 20여 차례에 걸쳐 주호주 뉴질랜드 고등판무관실을 통하여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음에 따라 귀로에 자카르타에서 재차 교섭을 시도하였음을 설명함.

3. 주일본대사관은 1973.8.8. 일본 외무성 신임 아주국장의 호주 및 뉴질랜드 출장 결과를 청취하고, 동 국장의 언급 내용을 아래 보고함.

- ❋ 북한은 뉴질랜드의 북한 승인 및 국교 정상화를 시도하였으나, 뉴질랜드 측은 소련 등 동구 국가들의 한국 승인 및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전제 조건으로 강력히 제시함으로써 북한이 관련 정책을 재고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됨.
- ❋ 호주 및 뉴질랜드의 대북한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평가함.

북한 · 파키스탄 관계

| 73-034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D-14 / 19 / 1~75(75p)

북한-파키스탄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허담 외상 파키스탄 방문

- ❁ 허담은 1973.2.14.~20.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부토 수상에게 김일성 친서를 전달하고, 외상 및 국방 담당 국무상과의 회담, 원자력 발전소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진바, 파키스탄 측과의 협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사의 표명, 유엔 총회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조 요청 및 평양 주재 파키스탄 대사관의 조속한 설치 요청
  - 북한의 파키스탄 극좌 분자들과의 제휴 관계에 대한 오해 불식을 위한 설명 (2.10. 주파키스탄 이라크 대사관의 소련제 무기 밀수 적발로 외부 세력에 의한 파키스탄 정부 전복 기도 의혹 제기)
  - 무기 제작 관련 군사 공동협력, 문화 교류 및 무역협정 체결, 파키스탄 군사사절단의 북한 파견 합의
- ❁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관은 허담이 중국(구 중공) 방문 시 중국의 권유로 파키스탄을 방문하였으며, 중국은 북한, 캄보디아의 시아누크 정권, 월맹 및 파키스탄을 중국 진영으로 결집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평가됨을 보고함.

2. 북한-파키스탄 간 협력 협정 체결

- ❁ 양측은 1966년 이래 매년 무역협정을 체결해 온바, 1973.2.22. 평양에서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 서명
- ❁ 이슬라마바드에서 2.26. 전신전화협정 체결
- ❁ 이슬라마바드에서 6.14. 문화협정 체결

3. 북한-파키스탄 교류

- ❁ 북한 체육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축구단이 1973.3.21.~4.10. 지방 순회 시합 개최
- ❁ 북한 교육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사절단이 11.29. 파키스탄 방문

4. 주파키스탄 초대 북한대사 부임

- ❁ 북한과 파키스탄은 1972.11.9.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
- ❁ 엄경철 초대 북한대사가 1973.8.25. 파키스탄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5. 북한의 선전 활동

- ❁ 북한은 친북 매체를 이용하여 한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다는 허위 선전을 강화함.
- ❁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관은 북한 선전을 반박하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는 한편 파키스탄 정부에 항의한바, 파키스탄 정부는 정부 기관지에 북한 선전광고를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게재 시에는 사전 허가를 득하도록 규제함.

북한 · 파나마 관계

| 73-035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D-14 / 20 / 1~12(12p)

북한-파나마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파나마를 겸임 중인 주멕시코대사는 1973.5.6.~12. 파나마를 방문하여 외무성 의전장, 주파나마 미국 대사 및 대만(구 자유중국)대사 면담을 통해 외교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사절단의 1973.3.29.~31. 파나마 방문 결과 및 파나마의 좌경화 경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북한 사절단은 Torrijos 국가 지도자에게 김일성 친서를 전달하고, 외무차관 등 외무부 간부 및 상공부 간부 면담을 통해 통상 교류 추진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구체적 결실은 없었음.
- 북한 사절단은 Torrijos 국가 지도자에게 파나마 정부가 한국과 단교할 경우 각종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제의하였으나, 파나마 측은 거절함.
- 파나마 운하 운영과 관련한 미국과의 갈등으로 반미 여론이 고조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대부분 동구권 국가들과 수교하는 한편 소련 및 중국(구 중공)과의 수교도 추진 중임.
- 정부 사절단의 1973.4월 파나마 방문 및 본직의 외무장관 대리 면담 등을 통해 양국 간 유대관계를 확인하였음에 따라 북한 사절단의 파나마 방문 결과에 우려할 바는 없으나, 중미 교통의 중계지로서의 파나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북한이 쿠바 및 칠레 주재 대사관을 거점으로 파나마와의 교섭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전망됨.

2. 주파나마대사관이 1973.5.5. 개설됨에 따라 대사대리는 7.20. 및 7.24. 파나마 방위군 사령부 관계자 및 외무성 국장을 각각 면담하고, 동 결과를 아래 보고함.

- 상주공관 개설을 계기로 한 양국 간 유대 강화 방안에 관해 협의함.
- 정부의 6·23 선언에 대한 파나마 측의 지지 및 호의적 논평 발표를 요청한바, 파나마 측은 6·23 선언에 관한 논평은 Torrijos 장군과의 협의 후에 회보할 것이며, 북한 불승인 및 접촉 불확대를 약속함.

북한 · 페루 관계

| 73-035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D-14 / 21 / 1~67(67p)

북한-페루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북한 사절단 페루 방문

❁ 김운환 외교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사절단은 1973.3.8.~15. 칠레 방문 후 페루 공식 방문을 시도 하였으나, 3.16. 입국이 거부됨에 따라 에콰도르에 체류하면서 페루 정부에 사절단 접수를 재차 요청함.

❁ 페루 정부는 북한 측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3.27. 통상 문제만을 거론한다는 조건으로 접수를 결정함.

- 북한 사절단은 4.30.~5.8. 페루 방문 중 외상, 외무차관 등을 면담하고 김일성 친서를 수교함.
- 공동성명서 발표는 없었으며, 페루 정부는 사절단이 김일성 친서를 소지하고 있는 등을 감안하여 공식방문 형식으로 접수함.

❁ 주페루대사관은 북한은 1972.3월 이래 사절단을 파견해 왔으며, 김운환의 방문 목적은 1971.4월 합의에 따른 주페루 북한통상대표부 설치 교섭 타결 및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 입장에 대한 지지 요청을 위한 것임을 보고함.

❁ 페루 정부는 보편주의, 다원주의 및 실리외교를 표방한 대외정책을 추구하면서 동구권 및 공산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여 1971.11.1. 중국(구 중공)과 수교한바, 북한은 이에 편승하여 통상대표부 설치 선결을 목표로 페루에 대한 접근을 계속 시도 중임.

❁ 페루 외무성 정무차관보는 3.30. 주페루대사에게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통상대표부 설치 문제도 상당한 교역 실적이 있은 후 타당성을 검토할 것임을 언급함.

❁ 별도의 북한사절단이 7.16. 아래와 같이 페루를 방문함.

- 동 사절단은 입국 사증 없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함.
- 페루-북한 친선문화협회 및 노동자연맹의 조력으로 노동상을 면담하였으며, 외무성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실현치 못함.
- 좌익계 신문에 북한의 연방제통일정책 및 대외정책 관련 광고성 기사를 게재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함.

2. 주쿠바 북한대사 방문

❁ 쿠바 주재 북한대사가 1973.11.14.~16. 페루를 방문하여 좌익계 언론사 회견을 통해 페루의 정치 · 경제적 독립 및 한반도 분단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주장하고, 유엔 한반도 문제 토의 시 페루의 지원 요청과 함께 페루–북한 간 정치, 경제 등 제반 분야 교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 주페루대사관은 북한대사가 외무차관과 면담 시 국교 수립을 제의한 것으로 추정됨을 보고함.

북한 · 르완다 관계

| 73-035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D-14 / 22 / 1~30(30p)

북한-르완다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주부룬디 북한대사 동향

- ❁ 르완다를 겸임 중인 주부룬디 북한대사 강선일은 1973.1.5. 르완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 강선일은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지방 주간지인 JUA 편집장과의 회견을 통해 북한의 일반 외교정책, 북한의 대아프리카 정책 및 대르완다 협력 사업을 언급함.

2. 북한 사절단 르완다 방문

- ❁ 전명수 일행은 1973.5.14~17. 부룬디로부터 르완다에 도착하여 외상, 공공건설상 등과 면담함.
  - 김일성 친서를 수교하기 위하여 르완다 대통령 예방을 요청하였으나, 실현치 못함.
  - 르완다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할 경우 동 사업을 확정한다는 조건으로 르완다-우간다 간 도로, 공설 운동장 및 현대식 공설시장 건설 등 3개 협력 사업을 제시함.
  - 북한은 공동성명서 문안에 주한미군 철수 및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해체를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 주탄자니아 북한대사 일행이 8.26.~29. 르완다를 방문하여 대통령 예방 및 외상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실현치 못한바, 주부룬디 북한대사 공석에 따라 탄자니아 주재 대사가 방문함.

북한 · 스웨덴 관계

| 73-035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D-14 / 23 / 1~203(203p)

북한-스웨덴 간의 1973.4.6.자 외교관계 수립 등 북한-스웨덴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북한-스웨덴 외교관계 수립

- 정부는 1973.1.27. 스웨덴 여당인 사회민주당 기관지의 북한 승인 문제 관련 보도, 주스웨덴대사관의 외무성 접촉 및 주한 미대사관 관계관의 통보 등을 통한 스웨덴의 북한 승인 가능성에 따라 2.18. 장상문 외무부 차관보 및 3.22. 함병춘 대통령보좌관을 특사로 스웨덴에 파견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교섭을 시행함.
  - 스웨덴 측은 국가 승인에 관한 보편주의 원칙, 북한에 대한 승인이 중립국 감시위원회 활동 및 남북 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의 논리로 승인의 당위성을 설명함.
  - 스웨덴 외무성은 2.22. 외무성 고문 및 관계관이 2.27. 평양을 방문하여 스웨덴-북한 간 무역 문제에 관하여 협의할 것임을 발표함.
- 스웨덴 외무성은 4.4. 주스웨덴대사에게 북한 승인이 결정되었으며, 4.6. 전후 공식 발표하는 한편 북한 측에 외교관계 수립을 제의하게 될 것임을 통보함.
- 정부는 4.7. 스웨덴이 중립국 감시회원국으로 서방 국가로서는 최초로 동 조치를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주스웨덴대사 명의로 스웨덴 정부에 유감을 전달하도록 지시함.
- 정부는 4.12. 주스웨덴대사에게 주재국의 북한 승인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사 소환 및 상당 기간 대리대사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통보하고, 대사의 조기 귀국을 지시함.
- 외무부는 주요국 대사관에 관련 언론 보도 동향을 보고토록 지시하는 한편 주한 로이터통신 특파원에게 정부 입장 관련 자료를 제공함.

2. 북한대사관 개설

- 주중국 북한 겸임 스웨덴 초대대사는 1973.5.24. 평양을 방문하여 신임장을 제정함.
- 주소련 스웨덴 겸임 권희경 북한 초대대사는 6.29. 신임장을 제정함.

3. 북한 경제사절단 스웨덴 방문

- 이기선 대외경제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경제사절단이 1973.10.30. 스웨덴을 방문하여 11.20. 무역협정을 체결함.

4. 스웨덴 주재 북한 공보관 선전 활동

- 주스웨덴 북한공보관은 1973.5.17. 주스웨덴대사관에 대한 서한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관한 토의를 제의한바, 대사관은 동 서한을 반송함.
- 주스웨덴대사관은 북한공보관이 9.6. 스웨덴 한인회장을 비난하였으며, 동 한인회장이 교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요원들의 행동을 비난한 것에 대한 반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을 보고함.

북한 · 스리랑카 관계

| 73-035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D-14 / 24 / 1~18(18p)

스리랑카 언론의 1973년 중 북한 관련 보도 내용임.

1. 북한의 남북연방제 선전 관련 기사

❋ 홍콩 및 동경발 외신과 북한 노동신문을 인용한 기사로 김일성이 한반도 통일 방안으로 연방제를 제의하였으며, 이는 한국의 6·23 선언을 통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제안에 대한 대응임을 보도함.

2. 북한 대사관 외환 불법 거래 사건 기사

❋ 스리랑카 전역에서 발생한 1971.4.5.자 스리랑카 정부 전복 반란 사건 전후로 스리랑카 주재 외국 기관들의 외환 불법 거래가 적발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을 보도함.

❋ 북한 대사관에 의한 5천 영국 파운드 상당의 루피화 거래 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스리랑카 정부가 동 불법 거래 자금의 반환 사건 연루 여부를 조사 중임을 보도함.

3. 북한 대사관 재개 관련 기사

❋ SUN지는 스리랑카 기념관 유지 및 수선비로 중국(구 중공)이 1974년도 중반기에 무상원조를 제공할 예정임을 보도함.

❋ 주스리랑카통상대표부는 동 사유 파악 결과를 아래 보고함.

- 중국은 동 원조를 스리랑카 정부의 북한 대사관 재개 조치와 연계시키고 있음.
- 외환 불법 거래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하여 북한대사관 관련 심리 종결에 시기를 연계시킨 것으로 판단됨.

북한 · 세네갈 관계

| 73-035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D-14 / 25 / 1~19(19p)

북한-세네갈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주세네갈 북한 초대대사 신임장 제정

- 북한–세네갈 간 1972.9.12.자 수교 합의에 따라, 북한은 1973.2.14. 황철수 초대대사를 임명하였으며, 3.1. 셍고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세네갈을 겸임 중인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은 신임 북한대사의 신임장 제정 관련 현지 언론 보도, 북한 대사관 인력 현황과 함께 북한 대사가 8.9. 및 10.3. 셍고르 대통령을 예방하여 관개사업 및 매스게임 전문가 파견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유엔에서의 북한 입장 지지를 요청하였음을 보고함.
- 북한 대사는 8.15. 북한 정권 수립 25주년과 관련한 현지 신문과의 회견을 통해 고려연방제를 주장하고, 한국을 비난함.

2. 북한 사절단 세네갈 방문

-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은 북한 문교상 김석기를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1973.2.21. 세네갈을 방문하였음을 보고함.
- 주중앙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도 동 방문 사실을 보고함.

북한 · 소말리아 관계

| 73-035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D-14 / 26 / 1~5(5p)

북한-소말리아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에 대한 주에티오피아대사관 보고임.

1. 겸임국 소말리아 외무차관이 중국(구 중공) 방문 후 북한을 방문 중이라는 정보를 1973.2.20. 입수하였으며, 에티오피아 정부는 동 방문에 대해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2.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는 국경 분쟁 중으로 국경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됨에 따라 소말리아는 에티오피아 영토의 1/3에 해당하는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양측이 국경 지대에 군대를 집결하여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3. 북한은 1973.5.12. 강양욱의 소말리아 방문 시 소말리아의 영유권 주장을 지지하였으며, 에티오피아는 북한의 소말리아 게릴라 훈련 등 소말리아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우려함.

4. 소말리아는 소련으로부터 항공기 및 탱크 등 최신형 무기를 원조 받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는 소형 무기 공급 및 국경 지대에의 전략 도로 건설 지원을 받고 있는바, 에티오피아 황제는 1973.5월 미국을 방문하여 닉슨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

북한 · 스페인 관계

| 73-035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D-14 / 27 / 1~19(19p)

북한-스페인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에 대한 주스페인대사관 보고임.

1. 유 · 무선을 통한 북한 선전물의 스페인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스페인 공안당국 및 공보성을 통하여 사전 검열 등 차단 조치를 추진 중으로 북한의 스페인에 대한 접근이 현재로서는 선전물을 통한 간접적 시도이지만 향후 직접적인 접근 시도 가능성에 대비하여 예방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음.

2. 스페인은 반공 국가이나 1972.9.15. 소련과 통상관계를 수립하여 문화 사절단의 활발한 교류를 시행 중으로 프랑코 총독은 1972년 연말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모든 국가와의 실리 추구를 위한 관계 수립을 선언함으로써 앞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외교 활동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스페인과 외교 관계가 없는 국가는 소련, 중국(구 중공), 북한 및 월맹임.

3. 스페인은 1973.5월 북한의 WHO(세계보건기구) 가입과 관련하여 한국의 북한 가입 토의 연기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으나, 북한의 동 기구 가입 및 아래 사실 등에 따라 스페인 외무성이 향후 한국 입장 지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및 주스페인 중국대사 부임
- 북구 국가 및 이란의 북한 승인

4. 정부의 6·23 선언 내용을 외무차관 및 외무성 정무총국장에게 설명하고, 스페인 정부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함.

북한 · 스와질란드 관계

| 73-035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D-14 / 28 / 1~10(10p)

북한-스와질란드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주케냐대사관은 1973.7.29. 및 8.28. 스와질란드 정부가 북한 대사관에 발송한 공한이 2회에 걸쳐 대사관에 잘못 전달되었으며, 동 공한은 스와질란드 수상(외상 겸임)이 북한 측의 방문 초청을 수락하는 내용임을 보고함.

2. 주케냐대사관은 1973.11.30. 탄자니아 및 잠비아에 주재하는 북한 공관이 스와질란드에 발송한 아래 내용의 공한 사본을 입수하였음을 보고함.

- 북한 언론인 사절단이 6월 중 스와질란드 방문을 희망함.
- 주잠비아 북한대사 일행이 7~8월 중 스와질란드 방문을 희망함.

북한 · 스위스 관계

| 73-035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D-14 / 29 / 1~57(57p)

북한-스위스 간의 1973.8.21.자 상호 통상대표부 설치 합의 경과임.

1. 정부는 동 · 서독 간 기본협정 체결로 동독의 국제기구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시도가 강화될 것에 대비해 온바, 주스위스대사는 1973.3.9. 동독 주재 스위스대사로 부임하는 외무성 간부가 폴란드 주재 북한대사가 외무성에 3월 중 스위스를 방문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2. 스위스 언론은 스웨덴의 북한 승인이 임박하였음을 보도하였으며, 외무부는 이임하는 주스위스대사에게 스위스 고위 인사들에 대한 이임 예방 및 면담 계기에 스위스가 같은 중립국감시위원국으로서 스웨덴 측에 북한 승인을 유보하도록 요청할 것을 지시함.

3. 스위스 외무차관은 스위스는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한국이 먼저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나, 이미 거론된 북한과의 통상대표부 설치 문제는 반대할 수 없다고 언급함.

4. 북경 주재 스위스 대사가 1973.3.21. 평양을 방문한바, 스위스 외무성 대변인은 3.27. 동 대사의 평양 방문은 북한 승인과는 무관하며 폴란드와 체코가 한국을 승인할 경우 스위스도 북한을 승인할 것이라고 언급함.

5. 함병춘 대통령특별보좌관은 1973.7.11. 스위스를 방문하여 스위스의 북한 승인과 동구권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입장을 연계하여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스위스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함.

6. 폴란드 주재 북한대사 및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이 외교관계 수립 및 통상대표부 설치 문제 교섭을 위해 1973.7.9.~14. 스위스를 방문한바, 스위스 측은 통상대표부 설치 문제만을 거론하였으며, 외무부는 주스위스대사에게 동 통상대표부의 지위와 관련하여 일체의 외교 특권이 없는 민간무역사무소 수준으로 설치, 유지되도록 스위스 측에 요청할 것을 지시함.

7. 스위스 정부는 1973.8.21. 아래와 같이 북한과의 통상대표부 교환 설치를 발표함.
   - ❋ 취리히와 평양에 각각 설치함.
   - ❋ 통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증 발급 등 영사 업무 등을 수행하며, 직원들은 영사에 준하는 면세, 특권을 향유함.

북한 · 토고 관계

| 73-036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D-14 / 30 / 1~85(85p)

북한-토고 간의 1973.2.2.자 외교관계 수립 및 7.26.자 주토고 북한대사관 개설 경과임.

1. 북한-토고 외교관계 수립

- 토고를 겸임 중인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은 주말리 북한대사가 1973.1.24. 토고를 방문하여 외교관계 수립 문제를 협의하고, 양측은 2.2.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음을 보고함.
-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주토고 상주대사관 설치 및 외과 의사 1명 증파를 건의한바, 정부는 7월에 대사대리 1인이 주재하는 주토고대사관을 설치함.

2. 북한 상주대사관 개설

- 주토고대사관은 북한이 1973.7.26. 정식으로 대사관을 개설하였음을 보고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함.
- 북한 초대 상주대사는 11.15. 주재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3. 북한 사절단 토고 방문

-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김석기 문교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사절단이 1973.4.10.~16. 토고를 방문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음을 아래 보고함.
  - 성명서는 김일성의 통일노선 지지 등 정치적 선전 내용임.
  - 북한 주도로 작성된 성명서로 분석됨.
- 주기니 북한대사 임학철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9.12.~19. 토고를 방문하여 외상 및 공보장관서리를 면담함.

4. 주토고대사대리의 북한대사관 활동 보고

- 북한대사대리는 1973.9.14.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김대중 사건 및 정부의 북한 통일안 거부 등을 강하게 비난함.
- 대사대리는 9.20. 대응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북한의 비난을 반박함.

북한 · 튀니지 관계

| 73-036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D-14 / 31 / 1~36(36p)

북한-튀니지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주튀니지대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황장엽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1973.3.15.~21. 튀니지를 아래와 같이 방문하였음을 보고하고, 후속 대처 방안을 건의함.

- 대통령, 외상 및 국회의장을 면담하여 국교 수립을 요청하고, 주한미군 철수 입장 및 북한 통일 방안을 선전함.
- 북한 사절단은 튀니지가 외교관계 수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튀니지 측은 동 사절단에게 북한과의 국교 수립 제의에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음을 언질함.
- 튀니지의 대북한 수교 가능성 등에 대처하기 위해 외무장관의 조속한 튀니지 방문 실현 등 일련의 조치들을 건의함.
- 외무부는 6월 중 장관의 튀니지 방문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2. 주튀니지대사의 주요 인사 면담 결과 보고 내용임.

-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인사 면담을 통해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불신하고 있으나 외상은 모든 나라와 우호관계를 가지는 것이 국가 이익이라는 입장임을 확인함.
- 외무차관과의 면담을 통하여 데탕트 추세에 따라 튀니지도 외교 정책을 조절할 필요성을 검토 중임을 파악함.

3. 외무부는 주튀니지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함.

- 북한의 WHO(세계보건기구) 가입을 계기로 한 중립 국가들에 대한 외교 공세에 대비하는 한편 중동 · 아프리카 순방 북한 사절단의 튀니지 입국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함.
- 알제리 및 리비아가 한국을 승인하기 전에 튀니지가 먼저 북한을 승인하지 않도록 교섭함.

4. 북한 대표단이 1973.7.15.~22. 튀니지 개최 범아프리카청년대회에 참석을 위해 튀니지를 방문함.

5. 주튀니지대사는 주모리타니아 북한대사 일행의 1973.8.23. 튀니지 방문 결과를 아래 보고함.

- 외무성 정무국장 면담 시 김일성 통일정책 선전과 함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반대 등을 주장함.
- 유엔에서 북한 입장을 지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튀니지 측은 청취만 하였음.

북한 · 터키 관계

| 73-036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D-14 / 32 / 1~14(14p)

북한-터키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과 관련한 주터키대사 보고임.

1. 대사관 관계관은 터키 적십자사 간부로부터 북한인 2명이 앙카라 소재 적십자사를 방문하고 총재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973.3.3. 외무성을 통해 동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 경위 및 터키의 대북한 정책 변화 여부에 관해 아래와 같이 파악함.

- ❋ 외무성 관계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북한 측 인사들은 이스탄불 개최 아시아–아프리카 보험관계 국제회의 참석을 위하여 입국을 신청한바, 터키 정부는 입국 비자를 발급함.
- ❋ 터키 측은 과거 여타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외교관계가 없어도 통상 목적의 교류는 허용하였음을 설명함.
- ❋ 최근 터키가 동독을 승인한 바 있음에 따라 동 북한인들에 대한 터키 방문 허용이 터키의 대북한 정책 변화 가능성을 의미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터키 외무성은 아래 입장을 밝힘.
  -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터키의 동독 승인에도 불구하고 대한국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
  - 외무성 본부 및 재외공관원들에게도 북한인과의 접촉을 금지시키고 있음을 확인함.

2. 북한은 터키 주재 중국(구 중공) 및 소련 대사관을 통하여 터키와의 인사 교류 실현을 위한 활동을 강화 중이며, 터키와의 통상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북한 관계자의 입국 시도 가능성이 있음.

북한 · 탄자니아 관계

| 73-036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D-14 / 33 / 1~17(17p)

북한 강양욱 부주석의 1973.3.11.~18. 탄자니아 방문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임.

1. 로이터-합동통신은 1973.3.4. 북한 부주석 강양욱이 3.11.~18. 탄자니아를 공식 방문하여 줄리어스 니에레레 대통령 등 탄자니아 지도자들과 회담하였음을 보도함.

2. 동 통신은 북한과 탄자니아가 1973.3.20. 아래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음을 보도함.

- 한국인 스스로가 외세의 간섭 없이 한반도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엔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 이를 위해 금년도 유엔 총회가 한반도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함.

3. 탄자니아를 겸임 중인 주케냐대사관은 동 방문 관련 언론 보도를 아래 보고함.

- 강양욱은 양국 간 연대를 강조하는 한편 탄자니아의 성공이 해방운동을 고무하고 있음을 밝히고, 아프리카 청년들이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투쟁할 것을 촉구함.
- 북한은 탄자니아에 시멘트 3천 톤 및 철근 5천 톤을 제공함.

북한 · 우간다 관계

| 73-036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D-14 / 34 / 1~90(90p)

북한-우간다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북한 초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북한과 우간다 간의 1972.8.5. 상주대사관 설치 합의에 따라 초대 북한대사가 1973.3.1. 이디아민 우간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정부는 할슈타인원칙에 따라 남북한과 공히 상주대사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대사를 파견치 않는다는 정책에 의거하여 주칠레대사를 소환한 바 있으나, 중립국들의 북한 승인이 점증하는 한편 특히 아프리카에서 카메룬에 이어 우간다에서 남북한이 공히 상주대사관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관련 정책 재검토를 통해 카메룬 및 우간다 주재 대사 상주 체제를 유지함.
- 북한대사는 4.19. 우간다 영자 일간지 회견을 통해 북한의 평화통일안을 선전하였으며, 9·9절 기념 리셉션을 개최하는 한편 언론을 통한 선전 활동을 시행함.

2. 사절단 교류

- 이디아민 대통령은 1973.3.1. 북한대사의 신임장 제정 시 우간다 사절단의 북한 파견 및 8.28. 신임 국방장관 임명 시 북한 9·9절 행사 계기 군사사절단의 북한 파견 계획을 언급함.
- 전명수 북한 외교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5.4.~10. 우간다를 방문하여 이디아민 대통령에게 김일성 친서를 수교하고, 외무장관 서리 면담, 산업 및 지방 시찰 등 일정을 가진바, 로이터-합동통신은 우간다 대통령이 북한 방문 초청을 수락하였다고 보도함.
- 북한 체조 팀이 우간다 독립 11주년 기념식 매스게임 지도를 목적으로 6.1. 우간다를 방문함.
- 북한 김석진 상공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무역사절단이 10.5.~13. 우간다를 방문하여 독립기념식에 참석하고, 통상 증진 문제를 협의함.

3. 주우간다대사 건의

- 북한의 상주대사관 개설에 따른 선전 활동, 우간다 각종 기념식 계기 북한 매스게임 전문가의 행사 지도 등 북한의 우간다와의 관계 증진 활동이 강화되고 있음.
- 우간다가 희망하는 한국 의사 파견 등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바, 외무부의 적절한 조치를 건의함.

북한 · 영국 관계

| 73-036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D-14 / 35 / 1~75(75p)

북한-영국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북한의 문화, 홍보 활동

- 주영국대사관은 만수대무용단이 1973.3.15.~24. 영국에서 공연을 가졌으나, 영국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음을 보고함.
- 북한은 8만 달러를 충당하여 The Times지 4.11.자에 북한을 선전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북한 기자단이 6.28. 영국에 입국하여 동 광고 게재를 확인하였으며, 7.6. The Times지에 5개 항의 통일 정책 선전 광고를 재차 게재한바, 런던 주재 중국(구 중공) 대사관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2. 통상대표부 설치 요청 등 통상 활동

- 주영국대사관은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부회장 겸 무역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무역 대표단이 1973.9.26.~10.13. 영국을 방문하여 외무성 및 통산성 관계자를 면담하고, 지방 산업 시설을 시찰하였음을 관련 사항과 함께 아래 보고함.
  - 동 사절단 방문은 영국-조선무역협회가 주선하였으며, 통상대표부 설치 교섭이 주 목적인 것으로 파악됨.
  - 외무성 극동국장은 영국이 국제 무역 수지 적자로 인해 경제,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 따라 무역수지 개선과 관련하여 북한과의 교역 확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음을 한국 측이 양해해 줄 것을 요청함.
  - 외무성 극동국장은 10.1. 중국 국경일 리셉션에서 중국 대사가 북한 인사를 소개하였으며, 동 북한 인사의 북한 무역대표부 설치 제의에 대해 동 국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표시한 데 대해 북한 인사는 파리에도 이미 북한 통상대표부가 설치되었음을 언급함.
- 주영국대사관은 북한 제철 기술자 11명이 영국 제철회사 GKN에서 훈련을 받기 위하여 9.2. 도착한바, 동 일행의 입국은 GKN의 대북한 제철 플랜트 수출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외무성은 사기업의 거래에 대한 불개입 입장을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북한 · 소련 관계

| 73-036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특수지역과
MF번호	D-14 / 36 / 1~47(47p)

북한-소련 간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사절단 방문

-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1973.3.1. 모스크바 특파원발 보도를 통해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소련을 방문 중인 노동당 정치위원 김동규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사절단과 회담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보도함.
  - 소련 측은 북한의 통일 방안을 지지함.
  - 미-중국(구 중공) 간 화해 등 아시아 정세 변화로 소련은 북한에 대한 접근을 강화함.
- 이그나티 노비코프 공산당 중앙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소련 대표단이 북한 창립 25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9.7.~12.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의 평화통일 방안을 지지함.

2. 소련 정부 기관지 보도

- 이스베스차는 1973.3.25. 북한이 제2차 남북조절위원회에서 제시한 새로운 평화통일 방안을 지지하는 논평 게재
- 이스베스차는 4.11. '실질적인 문제' 제하 북한의 통일 방안을 지지하는 논평 게재
- 프라우다는 6.7. 김일성이 체코 대표단 환영 연설에서 발표한 5개 신평화통일방안을 인용 보도
- 이스베스차 6.7.자 및 프라우다 6.8.자는 6.25.개최 소련-북한 간 연대성을 위한 월간 행사에 관해 보도
- 프라우다는 7.13. '사조' 제하 북한의 남북한 연방제 제안을 논평 형식으로 보도
- 프라우다는 7.27. '연대성과 지지' 제하 소련-북한 간 연대성을 위한 월간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의 통일 방안을 보도
- 프라우다는 8.31. '서울 정권에 대한 비난' 제하 김영주 남북조절위원회 북한 측 공동위원장의 대남 비난 성명을 인용 보도
- 이스베스차는 10.12. '강화되고 있는 유대' 제하 소련-북한 간의 유대 강화를 강조하는 논평을 게재

미국의 북한지역 여행 제한조치 연장

| 73-036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D-14 / 37 / 1~34(34p)

미국 정부는 1972.3.15. 한시적으로 채택한 미국 시민의 북한지역 여행 제한 조치를 1973년 재차 연장함.

1. 외무부는 미국 정부가 행정 명령으로 1972.3.15. 한시적으로 채택한 공산권 국가에 대한 미국 시민의 여행 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북한에 대하여는 1973년에도 동 조치를 계속 연장시키기 위하여 미국 측에 동 연장 필요성을 전달함.

2. 미국 정부는 1969.3월까지 중국(구 중공), 월맹, 쿠바 및 북한에 대한 미국인의 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동 금지를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온바, 1971.3월 중국에 대한 제한을 전면 해제하였으며, 1972.3.15. 발표된 신규 연장 발표 시 동 금지 조치를 1년 단위로 환원한 바 있음.

3. 미국 정부는 연방 관보를 통하여 1973.3.16. 북한, 월맹, 쿠바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9.15.까지 6개월 연장, 9.15.에는 동 여행 제한 조치를 1974.9.15.까지 1년 연장함을 각각 발표함.

4. 미국 법무성은 1973.5월 행정명령 형태의 미국 시민의 공산권 여행 금지 조치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상원 외교위원장에게 연방 법전에 관련 조항을 추가로 삽입할 것을 요청함.

북한 · 미국 관계

| 73-036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D-14 / 38 / 1~60(60p)

북한-미국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미국 의회에 대한 서한

- 김일성은 1973.4월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보고를 통해 북한군 감축, 주한미군 철수 및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 연계를 제안을 하였으며,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동 김일성 제안과 유사한 내용의 서한을 미국 의회를 포함한 각국 의회에 송부함.
- 뉴욕타임스 및 워싱턴포스트는 교착 상태에 처한 남북대화 현황 및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서한 내용과 함께 한국 및 미국 측의 반응을 보도함.

2. 미국-북한 간 접촉

- Jerome A. Cohen 하버드대학 동아시아 법률연구소 소장은 미 학계 인사로서는 최초로 1972.7.22.~8.5. 북한 방문 후 1973.1월 한국을 방문하여 북한 방문 인상을 설명하였으며, Christian Science Monitor지에 방문기를 게재함.
- 뉴욕타임스 Harrison Salisbury 편집부국장은 1972년 중국 및 북한을 방문하고 1973년 출판한 저서 To Peking and Beyond: A report on the new Asia 중 북한 관련 부분 Inside the hermit kingdom, North Korea를 1973.2월 Reader's Digest에 발췌하여 게재함.
- 미국 국무성에서 1973.6.10.~14. 개최된 WHO(세계보건기구) 관련 회의에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직원들이 북한의 정식국명 하에 참석한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6.13. 미국 국무성이 북한 외교관에게 국무성 출입을 허용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미묘한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보도함.
- 미국 제분 회사의 방계 회사가 포함된 캐나다 제분협회와 북한 간에 6만 톤의 밀가루 구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미 국무성은 동 미국 회사들의 수출을 허가한바, 미국 정부는 한국 측에 동 허가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동 조치는 미국의 대북한 교역 금지 정책의 예외로 적용한 것으로 기존 정책의 변화는 아님을 해명함.
- 북한 외상 허담이 키신저 국무장관의 1973.2월 중국(구 중공) 방문에 앞서 중국을 방문한바, 워싱턴포스트지는 11.19. 서울발 기사로 관련 사항을 아래 보도함.
  - 키신저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한국 내에서 중국의 한국 승인의 대가로 미국이 북한을 승인할 것이라는 추측을 야기함.
  - 키신저 국무장관은 한국을 방문하여 김종필 총리에게 미국은 당분간 북한을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함.

북한 ·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관계

| 73-036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D-14 / 39 / 1~32(32p)

북한-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합의 이행 문제

- 주부르키나파소대사대리는 1973.3.9. 북한 측은 수교 합의 시 약속한 원조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상주대사관 설치 문제도 진전이 없이 주말리 북한대사관이 겸임하고 있는 상태임을 보고함.
- 부르키나파소 외상은 3.22. 주부르키나파소대사대리 면담 시 북한 승인은 상황에 의해 강요된 것이며, 북한은 승인 후 아무런 후속 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함.

2. 북한 사절단 부르키나파소 방문

- 김석기 문교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사절단이 1973.3.27.~31. 부르키나파소를 방문함.
  - 대통령에게 김일성 친서를 전달하고, 수상, 외상 등 각료들을 면담하여 우호협력관계 증진 문제를 협의함.
  - 북한 측은 북한의 통일정책을 설명함.
- 북한 외무성 국장급 인사가 인솔하는 경제사절단이 8.20.~31. 부르키나파소를 방문하여 외상을 예방하고, 농림부 실무진들과 기술적 사안에 관해 협의함.
- 주말리 북한대사 일행이 사전 연락 없이 9.16.~22. 부르키나파소를 방문하여 외무성 실무진을 접촉함.

북한 · 우루과이 관계

| 73-037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D-14 / 40 / 1~62(62p)

북한-우루과이 간의 1972~73년 중 관계 동향임.

1. 우루과이 공산당 제1서기 북한 방문

- ❁ 주우루과이대사관은 북한 대표단이 1972.12월 우루과이 공산당 전당대회 옵서버 참석을 위한 방문 계기에 통상 및 문화 분야 교류를 제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북한 측은 모스크바 주재 대사관을 통하여 동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북한 사절단의 우루과이 방문을 추진 중임.
  - 대사관은 군부 실력자 및 외무장관을 통해 북한 측이 통상대표부 설치를 의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 사절단의 방문이 성사되지 않도록 외상을 설득함.
  - 우루과이는 정경분리 원칙을 표방하여 중국(구 중공)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 중임.
- ❁ Rodey Ariamendi 우루과이 공산당 제1서기 일행이 공산 국가 순방 중 북한의 초청으로 1973.1.16. 북한을 방문함.
  - 김일성 면담 후 양국 공산당 간 우의 강화, 주한미군 철수 주장 및 북한의 통일정책 지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 공장 및 농장 시설을 시찰함.
- ❁ 우루과이 사회연합전선 소속 의원이 3.27. 하원에서 북한 의원단 초청을 제안한바, 주우루과이 대사관은 친한파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6.4. 의회 표결 시 동 제안을 부결시킴.

2. 공산당 기관지를 통한 정치 선전 활동

- ❁ 우루과이 공산당 기관지인 El Oriental 1973.4.28.자는 한국에 대한 비난 및 북한 정책 선전 기사를 게재함.
- ❁ El Oriental지 6.8.자는 북한 찬양 기사를 게재함.

북한 · 구주 관계

| 73-037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D-14 / 41 / 1~74(74p)

북구 국가들의 1973년 이후 북한 승인 추세 등 국제 정세 변화와 관련한 외무부의 검토 자료임.

1. 국제 사회에서의 1973년 중 북한 승인 추세 요인 분석

- 스웨덴의 1973.4.6. 북한 승인 이후 모든 북구 제국이 북한을 승인함.
- 여사한 추세가 그간 중립적이었거나 친한적인 국가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 북한 승인 추세의 요인
  - 국외적 요인: 동 · 서 간 해빙 분위기, 각국의 실리 추구
  - 남북한 관계에 따른 요인: 남북회담으로 정부가 북한을 대화 상대자로 인정한 상황에서 여타국의 북한 승인에 대한 반대 명분 약화

2. 정부의 대책

- 영향력이 큰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접근에 우선적으로 대처
- 한-미 안보체제 강화
- 장 · 단기적 대책 강구
- 남북대화 추진을 능동적으로 국제 사회에 전파
- 북한 단독 수교국에 대한 외교적 활동 강화

북한 · 잠비아 관계

| 73-037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D-14 / 42 / 1~5(5p)

북한-잠비아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은 북한 김기석 문교상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1973.2.27.~3.2. 잠비아를 방문하여 카운다 대통령과 면담하였으며, AFP통신은 북한-잠비아 간 수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됨을 보도하였다고 보고함.

2. 로이터-합동통신은 루사카발 기사를 통해 북한 강양욱 부주석이 1973.3.17.~2.4. 잠비아 초나 부통령의 평양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잠비아를 방문 중임을 보도함.

북한 · 자이르 관계

| 73-037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D-14 / 43 / 1~47(47p)

북한-콩고(구 자이르) 간의 1973년 중 관계 동향임.

1. 북한 사절단의 콩고 방문

- 김용택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사절단이 1973.2.23.~3.3. 콩고를 방문하여 수력발전소 및 동 광산을 시찰함.
  - 주콩고대사관은 브라자빌에서 북한 대사관과 콩고 대사관 간에 대사관 개설 교섭이 진행되었음을 보고함.
  - 모부투 대통령이 브뤼셀에서 요양 중임에 따라 북한 사절단은 벨기에를 방문하여 동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일성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모부투 대통령은 북한 측의 북한 방문 초청을 수락함.
- 콩고 외무성 관계관은 북한 사절단의 방문은 콩고가 1972.11.29. 남북한 쌍방에 대한 승인 정책을 채택한 데 대한 화답임을 설명함.
- 주콩고대사가 1972.11.30.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콩고 대통령의 남북한 쌍방 승인 정책을 비판한 것과 관련하여 콩고 정부는 주콩고대사를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추방한 바 있음.

2. 북한 대사관 개설 및 초대 대사 부임

- 북한 대사관 개설 요원들이 1973.5.23. 콩고에 도착하여 대사관을 개설함.
- 초대 북한대사는 11.19. 신임장을 제정함.

3. 북한-콩고 간 교류

- 주콩고대사관의 관련 보고
  - 북한은 주유엔 콩고대사 및 외상의 북한 방문을 초청하였으며, 콩고 정부는 수교 후 북한 실상 파악 명목으로 주유엔 콩고대사의 북한 방문을 허가함.
  - 북한은 모부투 대통령의 9.9절 참석을 위한 북한 방문을 초청하였으나, 콩고는 대통령 특사 파견 결정을 북한 측에 통보함.
- 콩고 외상은 1973.11.13.~16. 한국 방문 후 11.17.~20.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을 예방하고,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산업 시설을 시찰함.

북한 대표단 일본 방문

| 73-0374 |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D-14 / 44 / 1~88(88p)

북한 대표단의 1973년 중 일본 방문 현황임.

1. 북한 대표단의 동경도 방문 추진

❁ 북한은 강양욱 대외문화연락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의 1971~73년 중 동경도 방문을 추진함.

- 동경 미노베 지사는 1971.12.14. 의회에서 1970년 동 지사의 평양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북한 대표단의 방일 초청을 위하여 외무성과 협의 중임을 밝힌바, 외무부는 주일본대사관에 동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성사되지 않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 주일본대사관은 일본 정부는 북한 인사들의 일본 방문을 체육, 학술 및 문화 교류에 한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에 따라 동 북한 대표단의 정치적 성격을 고려하여 부정적 입장임을 보고함.
- 일본 언론은 1972.2.19. 동 지사가 조총련 부의장에게 초청장을 전달하였으며, 강양욱이 3.27. 조총련을 통하여 방일 초청 수락서를 동경 도지사에게 전달하였음을 보도함.

❁ 동경도 지사는 7.27. 법무상 및 외무상을 방문하여 북한 대표단 방일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법무상과 외무상은 현 단계에서는 정치적 교류를 시행할 시기가 아니며, 문화 등 분야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동 대표단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음을 밝힘으로써 추진이 무산됨.

2.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대표단

❁ 1973.7.5.~20. 이찬선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부위원장이 단장이 된 대표단이 일본 43회 일본 교직원조합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본을 방문함.

- 일본 교직원조합 위원장 일행의 1972.11월 평양 방문에 대한 답방
-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북한인 입국 허가 기준이 비정치에서 정치적 색채를 띠는 노동관계자 허가로 확대된 것에 대하여 우려를 가지고 주일 대사관에 일본 정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도록 지시
- 7.4. 일본 법무상은 전국 입관소장 회의 석상에서 미승인 제국과의 인적 교류는 국제 정세와 국익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보도

3. 직업총동맹 대표단

❁ 1973.9.21.~10.4. 문병록 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일본 노동계와의 교류를 위하여 일본 노동조합총평의회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함.

- 일본 총평 고문이자 일조문화교류협회 및 일조노동자교류연대 연락회의 대표위원 일행은 72.9월 북한 직업총동맹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일-북한 간 민간문화교류 협정을 체결

4. 대외과학기술교류협회 대표단

- 1973.10.6.~11.3. 신명천 과학원 함흥분원 분원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 10.31. 일-조 과학기술교류계획 합의서에 조인함.

북한 만수대예술단 일본 방문, 1973.7.30.-[9.30.]

| 73-037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D-14 / 45 / 1~68(68p)

북한 만수대예술단이 1973.7.30.~9.30. 일본에서 공연함.

1. 외무부는 주일본대사관에 일본 정부가 일련의 대북한 접촉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만수대예술단의 일본 공연 계획을 허가할 입장임에 따라 동 공연을 저지하도록 지시한바, 동 예술단 공연 준비를 위한 조사단이 1973.3.27. 일본에 도착하여 4.23. 일-조 문화교류협회 및 아사히 신문 3자 간에 일본 공연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일본 법무성은 7.12. 동 예술단의 입국을 허가함.

2. 220명으로 구성된 만수대예술단은 1973.7.30. 동경을 시작으로 43회에 걸쳐 주요 도시 순회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일본 언론들은 단장인 윤기복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요 인물임을 감안할 때 동인에 대한 입국 허가가 일본 정부 정책 변화의 검토 과정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는 한편 동인의 정치적 행보 여부에 대해 관심을 표시함.

3. 윤기복의 정치적 행보에 따른 파문 및 정부의 대응 조치임.

- 윤기복은 일본 도착 후 1973.8.3. 기자구락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를 괴뢰 정부라고 비난하는 한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반대 등 정치적 주장을 함에 따라 주일본대사관은 외무성에 동인의 정치적 발언은 예술단 방일 조건인 정치 활동 금지를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즉각 중지시킬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외무부차관은 8.6.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엄중하게 경고함.
- 윤기복은 8.4. 도쿄 신문 및 아사히신문과의 대담에서 남북대화는 한국 정부에 의한 분열 고정화 기도로서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고려연방공화국 제안이 현 정세에 적합한 것임을 주장함에 따라 주일본대사는 외무부의 지시에 따라 외무성 차관 및 법무상을 면담하고 동인에 대한 출국 조치를 요구한바, 마이니치 신문은 8.11. 법무성이 아사히 신문 사장에게 윤기복의 정치적 발언이 입국 목적을 이탈한 것임을 지적하는 한편 여사한 언행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퇴거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한 것으로 보도함.
- 윤기복은 법무성이 자신의 정치적 발언에 대하여 경고한 것과 관련하여 8.12. 오사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문제가 전 세계의 관심 사항인 만큼 당사자로서 질문을 받고 소견을 피력한 것이며, 일본 · 북한 양측 국민 간의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것임에 따라 약속 위반이 아님을 주장함.
- 요미우리 신문은 8.13. 일본 사회당 국제국장이 담화를 통해 윤기복이 한민족 자결과 관련한 통일 문제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은 당연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경고를 철회하고, 동인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음을 보도함.
- 외무부는 윤기복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 일본 정부가 향후 강양욱의 일본 방문 등 북한 인사의 일본 방문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입장으로 선회할 것으로 전망함.

북한사절단 아프리카지역 순방

| 73-037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D-15 / 1 / 1~32(32p)

북한 사절단의 1973년 중 아프리카 및 중동 순방 및 외무부가 작성한 관련 현황 자료임.

1. 북한이 김용택 북한 외교부부장, 강양욱 최고위원회 부의장 및 김기석 문교상을 단장으로 하는 각종 사절단을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 파견함에 따라 외무부는 1973.2.24. 아중동 지역 관련 공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적절히 대처하도록 지시함.

2. 외무부가 작성한 '북한 사절단 파견 및 접수 현황'(1973.3.6.) 및 '북한 친선사절단 파견 현황'(1973.1~3월) 요지임.

- 방문 국가별 활동 상황 및 1972년도 이후 추세를 분석함.
- 북한은 1972~73년 중 국제 정세가 북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함.
- 사절단 규모 및 방문 대상국 숫자가 1972년에 비교하여 1973년도에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단독 수교국에 대한 접근 활동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 방문 결과와 관련하여 방문 중에 수교가 결정된 경우는 1972년도에는 1개국이었으나 1973년도에는 3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또한 중국(구 중공) · 소련 간 경쟁을 이용하여 더 많은 지원을 얻기 위하여 중국 및 소련에 대한 사절단 파견을 확대하고 있음.

북한 인사 구주지역 순방

| 73-037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D-15 / 2 / 1~32(32p)

북한 경제사절단의 1973.2.17.~3.20. 북구 순방 및 권희경 주소련 북한대사의 1973.6.27.~8.2. 북구 순방 관련 사항임.

1. 대외무역상 공진태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경제사절단이 아래와 같이 북구 5개국을 순방함.

- 2.17.~21. 노르웨이: 외상 및 통산상 면담, 산업시설 방문, 경제성이 방문 일정을 주관
- 2.26.~3.1. 덴마크: 외상 면담, 대외경제장관과 회담, 산업시설 방문
- 3.5.~9. 아이슬란드: 외상 및 통산상 예방
- 3.9.~15. 스웨덴: 보수 언론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스웨덴의 북한 승인이 임박하며, 낙관적으로 전망함을 언급
- 3.15.~20. 핀란드: 대통령, 외상 및 대외무역상 예방, 제지공장 방문 설비 구입 관련 협의

2. 주소련 권희경 북한대사가 아래와 같이 북구 5개국을 순방함.

- 6.27.~7.7. 스웨덴: 겸임대사 신임장 제정
- 7.17.~20. 덴마크: 외교관계 수립 합의 발표
- 7.26. 핀란드: 비공식 방문
- 7.31.~8.1. 노르웨이: 외무차관 면담
- 8.2. 아이슬란드: 방문 결과 미상

북한사절단 중남미지역 순방

| 73-037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D-15 / 3 / 1~57(57p)

북한의 중남미 국가에 대한 사절단 파견 현황 관련 자료임.

1. 1973.1~5월 중 북한의 중남미 국가에 대한 사절단 파견 현황 자료

- 사절단 구성, 방문 일정, 방문국별 성과 등 분석 자료
- 남북대화 관련 사안별 설명 자료
- 김운환 외무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칠레, 에콰도르, 파나마,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가이아나, 페루, 아르헨티나 등 8개국에 파견

2.1973.6.1.~8.15. 중 북한의 중남미 국가에 대한 사절단 파견 현황 자료

- 사절단 구성, 방문국별 성과 분석
- 에콰도르, 페루, 자메이카, 아르헨티나, 파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8개국에 6개 사절단 파견 예정

일본 주요 대표단 북한 방문

| 73-037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D-15 / 4 / 1~71(71p)

일본 북해도 의회 및 일본 정당 대표단의 1973년 중 북한 방문 관련 사항임.

1. 북해도 의회 대표단(1973.6.19.~26.)

- ❋ 오카다 부의장을 대표로 하는 북해도 의회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강양욱 등 당 간부를 면담하고 인민학교 및 판문점 등을 시찰하였으며, 북해도 신문들은 동 대표단의 방문지별 여행 소감을 상세하게 보도함.
- ❋ 주일본대사 및 주삿포로총영사는 자민당 요로에 동 방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음.
- ❋ 동 대표단은 북한 측과 체육 교류, 상호 경제기술 시찰단 교환, 상호 물산전 개최 및 인적 교류에 합의함.

2. 자민당 대표단의 북한 방문 취소

- ❋ 외무부는 1973.5.25. 주일본대사관에 일본 언론이 자민당 아시아 · 아프리카연구회 조선문제소위원회가 5.24. 방일 중인 북한기자단 정준기 단장 초청 공개 강연회에서 자민당 대표단의 북한 방문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한 사실 여부 파악 및 동 대표단의 북한 방문 유보를 교섭하도록 지시함.
- ❋ 주일본대사는 7.4.~16. 자민당 정조회장, 인사국장, 오히라 외상 및 간사장을 면담하여 동 방문 계획 및 중의원 내 사회당 주도로 거론 중인 일본-북한 국교 정상화 결의안에 대한 철회를 요청함.
- ❋ 일본 언론들은 7.12. 자민당 의원 대표단이 수뇌부의 내락에 따라 8월 중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으나, 7.20. 주일본대사관은 자민당 수뇌부 및 총무회의에서 동 대표단의 북한 방문 시 참가 의원들에 대한 자민당 대표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결정하였음을 보고하고, 일본 언론도 동일한 내용을 보도함.
- ❋ 일본 및 한국 언론들은 동 방문단이 자민당 대표 자격으로 북한 방문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도하였으며, 북한 방문 추진자인 다무라 의원은 대표 자격이 없이는 북한 방문을 취소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됨.

3. 사회당 대표단(1973.10.6.~15.)

- ❋ 일본 언론은 1973.10.2. 사사키 고조 사회당 전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북한 대외 문화연락위원회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 예정임을 보도한바, 사회당 대표단은 1970.8월 이래 8회에 걸쳐 북한을 방문한 바 있음.
- ❋ 동 사회당 대표단은 북한 체류 중 북한 노동당과 북한-일본 간 국교 정상화 3원칙, 김대중 사건에 관한 공동견해 및 쌍방무역관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에 조인함.

미국 언론인 북한 방문

| 73-0380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D-12 / 15 / 1~230(230p)

미국 뉴욕타임스지 및 워싱턴포스트지 언론인들의 1972년 북한 방문 관련 사항임.

1. 뉴욕타임스지 Harrison E. Salisburg 편집부국장 및 John M. Lee 동경지국장(1972.5.12.~29.)

- 북한 기자협회 초청으로 6·25 전쟁 이후 미국 언론인으로는 최초의 북한 방문으로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변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관심을 야기함.
  -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언론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
  - 북한은 평화공세, 유연외교의 수단으로 미국 및 일본 언론에 접근
- 동 북한 방문 결과는 NYT에 9회에 걸쳐 여행기 및 사설 형태로 게재되었으며 동인들은 5.26. 김일성과 회견한바, 김일성은 주한미군 철수, 제3자 개입이 없는 한반도 문제의 자체 해결, 미국의 대북한 비우호적 정책 중단, 연방제 통일, 미-북한 관계 및 일-북한 관계 개선은 전적으로 북한에 대한 비우호 정책 중단 여부에 따라 가능할 것임을 주장함.
- 정부는 동 김일성 회견 보도에 대한 논평을 통해 북한이 기존의 주한미군 철수 입장 등을 고수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북한의 집요한 위장 평화 공세의 허구성 및 기만성을 비판하고, 북한이 무력통일 정책을 포기하고 정부의 단계적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에 성의를 갖고 임할 것을 촉구함.
- 미 국무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모든 국가와의 관계 개선은 미국의 일반적인 정책임을 전제하고, 김일성의 발언은 한국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왜곡으로 미-북한 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김일성이 제시한 조건은 한·미 양국이 수락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언급함.
- 미국 지역신문들은 동 NYT 북한 방문기를 게재하였으며, Reader's Digest 1973.2월호는 Salisbury 기자가 출간하는 'To Peking and beyond: A report on the new Asia' 중 북한 관계 부분을 'Hermit Kingdom, North Korea' 제목으로 게재함.

2. Salig S. Harrison 워싱턴포스트 동경 특파원(1972.5.23.)

- 조총련 한덕수 의장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한바, 워싱턴포스트는 Harrison 기자의 방북기를 4회에 걸쳐 게재함.
- 동 특파원은 1972.3월 조총련 김병직 제1부의장과의 회견을 통해 북한은 미국 정계 지도자, 실업인, 학자 및 언론인들이 점진적인 북한 방문을 희망하는 입장임을 보도한바, 외무부는 동 보도가 뉴욕타임스 기자들의 평양 방문의 단초가 된 것으로 평가함.

북한 · 일본 경제 관계

| 73-038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동북아1과
MF번호	D-15 / 5 / 1~205(205p)

일본-북한 간 무역사무소 설치 문제, 경제 사절단 방문 등 1973년 중 일본-북한 간 경제 관계 동향임.

1. 무역사무소 설치 문제

- ❋ 일본 및 국내 언론들은 1973.1월 일본 통산성이 북한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할 방침이며, 북한에서 무역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보도한바, 외무부는 주일본대사관에 관련 사실 확인 및 정부의 반대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할 것을 지시함.
- ❋ 일본 외무성 측은 대사관 관계자에게 동 무역사무소 설치 보도는 언론의 추측 기사임을 언급하는 한편 무역박람회 개최는 JETRO(일본무역진흥회) 1973년도 관련 예산에 책정되어 있음을 설명함.
- ❋ 도쿄 신문은 1973.1.26. 일 · 조 무역협회가 1972년 일 · 조 의원연맹 대표단의 평양 방문 시 상호 무역 대표부 설치에 관한 합의 이행을 위해 연내에 평양에 무역사무소 설치 준비를 개시하였음을 보도함.
- ❋ 무역사무소 설치 문제는 일본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계속 제기됨.
- ❋ 일 · 조 무역협회 전무는 3.26.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과 북한 간에 민간무역사무소 상호 설치가 합의되었으며, 북한이 민간무역사무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협회는 일본 정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 JETRO와 협의하여 준정부기관 성격의 사무소를 평양에 개설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 일본 외무성 관계관은 향후 남북대화가 진전 시 설치 승인이 가능함을 언급함.

2. 일-북한 간 통상 문제

- ❋ 일본과 북한 간 무역이 1972년도에 전년 대비 2배를 기록함에 따라 일본 기업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됨.
- ❋ 일본 50개 기업 대표들의 1973년 초 북한 방문 시 상담 성과에 따라 통산성 고위 당국자는 대북한 교역을 위한 수출입은행 자금 사용을 사안별로 허용하겠다고 언급함.
- ❋ 주일본대사관은 1973.2월 일본–북한 간 경제 교류에 대한 아래 내용의 분석, 평가 자료를 작성함.
  - 동 · 서 간 해빙에 따른 정경 분리 및 실리 추구의 시대 조류를 감안하여 일본으로서는 북한과의 교역 확대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의 대응 방식도 무조건 반대 입장에서 탈피하여 전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3. 경제 사절단 방문

❁ 일본 사절단의 북한 방문

- 일본 중부경제연합회는 여타 지역 연합회와 합동으로 경제 사절단 북한 파견을 추진함.
- 일 · 조 무역협회는 1973.12.11. 일본 무역사절단이 12월 중순 북한을 방문하여 일-북한 무역관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임을 발표함.

❁ 북한 사절단의 일본 방문

- 일본 언론은 5.24. 북한 무역촉진위원회가 수출입 상사 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일 · 조 무역협회에 전달하여 왔음을 보도한바, 외무부는 주일본대사관에 동 대표단 접수 반대 교섭 등 적절히 대처하도록 지시함.
- 일 · 조 무역협회는 10.21. 북한 무역상사 대표단이 10.27. 일본을 방문하여 일-북한 간 무역관계를 협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연기됨.
- 일 · 조 무역협회는 12.14. 북한 통상사절단이 1974.1월 일본을 방문할 예정임을 발표함.

일본 · 북한간 직통 전화 회선 설치 추진

| 73-038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D-15 / 6 / 1~22(22p)

일본-북한 간 1973년 직통 전화 회선 설치 추진 경과임.

1. 직통 전화 회선 개설 필요성 대두

- ❋ 일본–북한 간 1955년 전화 회선 개설 이후 상해, 북경, 홍콩 및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필요시 임시로 사용되어 온바, 1973.3월 이후 중국을 경유하여 상시 통화가 가능하게 됨.
- ❋ 1972년 이후 일본–북한 간 통화량 급증(1개월 전화 250회, 전보 6,000통)에 따라 제3국을 경유하지 않는 직통 전화 회선 설치 필요성이 제기됨.

2. 설치 추진 경위

- ❋ 일본 언론은 1973.3.17. 민간 회사인 일본국제전신전화국이 북한에 대해 동경–평양 간 직통 전화 통신회선 개설을 신청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우정상은 3.6. 중의원 질의응답에서 점진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함.
- ❋ 일본 언론은 3.24. 우정상이 참의원 예산위에서 북한과의 직통 전화 회선 설치 교섭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고 보도함.
- ❋ 일본 언론은 5.18. 우정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경분리 원칙에 의거하여 북한과의 조속한 관련 교섭 추진 희망을 표명하였으며, 국내 언론은 일본–북한 간 교섭이 곧 개시될 것이라고 보도함.
- ❋ 북한 기자동맹 방문단 정준기 단장은 일본 방문 중 기술적 사항 외에는 문제가 없음을 언급함.
- ❋ 정부는 동 사업이 우정성 양해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양측 정부 관계자 간 직접적인 공식 접촉 가능성 및 북한 대표단의 일본 방문 가능성 등에 따라 반대 입장을 표명함.
- ❋ 일본 언론은 10.20. 우정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양 당사자 간 구체적인 결론에 이를 경우 우정성은 동 사업을 인가할 방침이라고 언급하였음을 보도함.
- ❋ 우정상은 10.19. 북한을 방문 중인 사사키 일본 사회당 위원장이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동 문제를 거론하고 김일성도 원칙적 동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음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 시 인가할 방침임을 언급함.

일본의 대북한 플란트 수출 및 수은(수출입은행) 자금 사용승인 문제

| 73-038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경제협력과
MF번호	D-15 / 7 / 1~195(195p)

일본 기업의 1972~73년 중 대북한 플랜트 수출에 대한 일본 수출입은행 자금 지원 문제 관련 사항임.

1. 일본 수출입은행 자금 사용 지원 가능성 제기

- 1972년 이후 국제적인 해빙 조류에 따라 일본은 정경분리 원칙을 표방하여 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통상 경제 교류 확대를 추진해 온바, 북한과의 무역량이 1972년도에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함.
- 일본 기업들의 대북한 플랜트 수출 상담이 1973년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대상 분야도 섬유기계로부터 시멘트, 제강, 자동차 등 대형 플랜트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은행 대출에 의존하던 기존 결재 방식 외에 수출입은행의 자금 지원 방식을 모색함.
- 관방장관은 1972.2.29. 일본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일본 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 자금 지원을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힘.
- 정부는 일본 정부의 여사한 입장에 따라 북한의 전력 증강뿐 아니라 일본-북한 간 통상 경제 교류 확대 및 일본-중국(구 중공) 관계의 전례에 비추어 일반 정치 교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주한 일본대사관과 주일대사관을 통하여 반대 입장을 전달함.

2. 시멘트 플랜트 대북한 수출 문제

- 외무부는 1973.2.17. 주일본대사에게 일본 기업 3개사가 북한 평남에 2억 달러 상당의 시멘트 제조 플랜트 수출과 관련하여 경쟁 중으로 수출입은행 자금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일본 정부에 동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사업 추진 유보를 교섭토록 지시하는 한편 주한 일본대사에게 동 사업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의 대북한 접촉 증대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해당 기업들은 상담 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일본 통산성은 수출입은행 자금 신청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외무성은 수출입은행 자금 지원이 없는 개별 거래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음을 밝힘.
- 일본 언론은 7.20. 통산성이 연산 300만 톤 규모의 시멘트 생산 플랜트 북한 수출(미쓰이 은행 자금으로 지불)을 승인하였음을 보도한바, 통산성 및 외무성은 수출입은행 자금이 지원되지 않은 만큼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입장임을 해명함.

3. 북한 제철공장 시설 지원 문제

- 일본 언론은 1973.7.8. 북한이 대동강 유역에 100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공장 건설계획을 위하여 신일본제철 등 철강업계에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보도함에 따라 정부는 일본 측에 대해 동 사업 추진 유보를 적극적으로 교섭한바, 일본 정부 및 제철 회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함.
- 주영국대사관은 8.7. 런던 금융계에서 일본이 20억 달러 규모의 북한 제철공장 건설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음을 보고한바, 외무부는 9.8. 동 사업 추진을 저지하라는 대통령 특별 지시를 주일 대사관에 통보함.
- 주일본대사관은 북한 조선, 설비 수입상사 대표단이 1973.8월 신일본제철을 방문하여 기술 원조 가능성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신일본제철도 북한의 철광석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술 원조 추진할 의도가 있음을 보고함.

4. 타월 제조 플랜트 수출 문제

- 일본 통산성은 1973.10.27. 주일본대사관에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의 타월 제조 플랜트 대북한 수출에 2백만 달러 상당의 수출입은행 자금 지원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해옴.
- 동 지원은 북한에 대한 플랜트 수출과 관련한 최초의 수출입은행 자금 지원 사례임에 따라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주일본대사관을 통하여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동 자금 지원 중지를 촉구함.

북한의 '유로' 달러(구주통화) 기채 활동

| 73-038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D-15 / 8 / 1~30(30p)

북한의 1973년 유럽 구주통화 기채 추진 및 정부의 대응 관련 사항임.

1. 주영국대사관은 1973.4.6. 북한이 런던 금융계를 통하여 프랑스 및 독일 은행에서 5천만 달러 상당의 구주통화 현금 기채를 추진 중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바, 외무부는 주영국 및 프랑스 대사관에 동 시도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지시함.

2. 주영국대사관은 1973.6.25. 북한 측 기채에 대한 응모가 저조하나, 실현 여부는 일본계 은행들의 응모 여하에 따른 것으로 전망됨을 보고함.

- 외무부는 주일본대사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일본 은행의 응모를 유보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 주일본대사관은 대장성 등을 통하여 관련 사항을 파악한바, 유럽 주재 일본 은행들은 파격적인 조건에 따라 응모를 검토하였으나, 북한 측이 일본 은행을 제외토록 요청함에 따라 무산되었음을 보고함.

3. 북한은 1973.8.6. 영국 Financial Times지에 동 기채 관련 광고를 게재한바, 정부는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함.

- 재무부는 한국이 적극적인 유로시장 거래 확충을 통해 다수 거래선을 선점 확보함으로써 북한과의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함.
- 중앙정보부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북한과의 거래 위험을 방증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간접적인 견제책을 제시함.
- 외무부는 9.4. 관계부처 입장을 종합한 대책을 관련 공관에 통보함.

북한 일반

| 73-038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D-15 / 9 / 1~9(9p)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등 1973년 중 북한 관련 언론 보도임.

1. 일본 언론은 1973.4.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 회의에서 1972년도 결산안 및 1973년도 예산안이 보고되었으며, 1973년도 예산안에는 6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경제 분야 지출 및 국방 예산 증액이 포함되었음을 보도함.

2. 일본 언론은 1973.4.24. 북한의 경제 분야별 발전 상황에 관한 분석 기사를 보도하는 한편 자주적, 평화적 통일 촉진을 위한 외세의 내정 간섭 종식을 주장하는 김일성의 보고서가 포함된 최고인민회의 선전 전면 광고를 게재함.

3. 국내 언론들이 1973.12.1. 동경 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 내에서 권력 투쟁이 야기되어 김영주 및 박성철 등이 실각하고 강경파가 부상한 것으로 보도함에 따라 외무부는 주일본대사관에 동 사실 여부 확인을 지시한바, 주일본대사는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외무성 관계자는 동 정보는 북한을 방문한 조총련 간부가 밝힌 것이며, 김영주, 박성철 등이 좌천 또는 숙청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을 언급함.
- ❋ 남북대화를 주장하는 온건파가 실각하고, 강경파가 부상한 것으로 알려짐.

남북대화

| 73-038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D-15 / 13 / 1~130(130p)

1. 주미대사는 1973.2.12. 뉴욕타임스가 북한 측이 최근 한국전을 공식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조약 체결을 제의한 데 대해 한국 측이 주한 유엔군 철수 및 주한 유엔군사령부 폐지를 우려해 이를 거절하였다는 기사를 보도했다고 보고함.

2. 주미대사는 1973.3.16. 국무성 한국과장이 3.14.~16.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조절위 제2차 회의 결과에 관해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고 보고함.

- 북한 측의 고집 및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논쟁이 야기되었으며, 공동성명 발표 없이 종료됨.
- 동 북한 측 태도는 금년도 유엔 대책과 관련하여 남북대화 진전 방해, 선전상의 우위 선점 및 한국 측에 압력을 가해 회담 진전을 위한 양보를 받아 내려는 의도로 추측됨.

3. 주일대사는 1973.3.19.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남북조절위 박성철 공동위원장 대리가 3.16. 기자회견을 통해 제2차 회담에서 남북한 간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토의하였으며, 아래 내용을 제안했다고 보고함.

- 무력 증강 및 군비 경쟁의 중지, 남북한 군대의 동일한 감축
- 무기 수입, 핵전쟁 준비 및 군사 물자 반입 중지, 미군을 포함한 일체의 외국군 철수, 남북한 간 평화협정 체결

4. 외무부는 1973.4.21. 및 4.24. 북한의 남북대화 관련 선전 공세 및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한 대책에 관한 아래 내용의 자료를 작성함.

- 북한의 선전 공세, 정부 입장 및 대책, 건의안
- 북한의 주장 내용 및 배경, 남북한 접촉 관련 정부의 기본 입장, 북한 측 주장의 허구성, 대책 및 홍보활동 지침

5. 주일대사는 1973.6.15. 아사히 신문이 6.12.~14.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남북조절위가 대남 비난방송 등 위반 행위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 등 합의 사항에 관한 발표 없이 종료되었다고 보도했음을 보고함.

6. 주미대사는 1973.8.29. 국무성 대변인이 남북조절위 양측 공동위원장 성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논평했다고 보고함.

- 미국은 북한과 건설적 대화를 시작한 한국의 주도적인 입장을 지지함.
- 미국은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전체 한국 국민의 장래를 위한 남북한 간 접촉을 결렬시키지 않기를 희망함.

남북 적십자회담 본회담, 제5-7차

| 73-038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북미1과
MF번호	D-15 / 14 / 1~56(56p)

1. 동아일보는 1973.3.21.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었으며, 제3차 회담 시 제기된 남북 이산가족과 친척의 주소 및 생사 확인 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친척의 범위 문제에 관해 구체적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함.

2. 대한적십자사는 1973.4.16.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관련 아래 사항을 발표함.

❋ 정주년 대변인 입장 표명

- 양측은 '남북 이산가족과 친척의 주소 및 생사 확인' 문제에 관해 협의했으나, 북한적십자 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제6차 회담을 서울에서 열기로 결정한 이외에는 별다른 진전 없이 종료
- 북한 측의 한국의 반공 체제 및 반공법 비방, 친척의 범위에 재일교포 포함 주장 등 부당성 반박

❋ 이범석 수석대표 기자회견

- 북한 측은 정치, 법률 등 '환경여건 조성 문제'에 대한 주장을 고수, 대부분의 시간을 이에 대한 논의에 할애했음을 설명

3.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이 1973.5.8.~11. 서울에서 개최된바, 제7차 회담의 7.11. 평양 개최 일정에 합의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됨.

4. 국내 언론은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이 1973.7.11.~12. 평양에서 개최되었음을 아래 보도함.

❋ '남북 이산가족과 친척의 주소 및 생사 확인' 문제 협의 계속
❋ 한국 측은 '추석성묘방문단'을 구성, 상호 방문할 것을 제의
❋ 양측의 의견 차이로 공동발표문이나 합의 없이 7.12. 종료
❋ 정주년 대변인은 한국 측 제의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은 귀경 후 밝힐 예정임을 언급

5. 주일대사는 1973.11.15.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대한적십자사가 11.15.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금년 중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북한적십자사에 제안했다고 보고함.

6. 주일대사는 1973.11.29. 아사히 신문 보도를 아래 보고함.

❋ 남북적십자 연락책임자회의가 11.28. 판문점에서 개최되어 제8차 본회담 개최에 관해 협의했으나, 양측의 의견 차이로 1973년 중 회담 개최 여부가 불확실함.
❋ 북한 측은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탄압 중지 요구가 수용될 경우 본회담 개최에 응하겠다고 언급함.
❋ 한국 측은 적십자회담을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12.19. 회담 개최를 요구함.

외교단에서의 적성국 대사에 의한 차별대우 문제

| 73-038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E-11 / 1 / 1~26(26p)

1. 주이란대사는 1972.12.27. 신임 외교단장인 소련대사가 전임 외교단장인 아르헨티나대사 이임에 따른 외교단 주최 송별 리셉션에 주이란대사를 초청하지 않았음을 보고하는 한편 1973.1.3. 외무성을 방문하여 정치적 이유에 따른 신임 외교단장의 여사한 차별 대우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란 정부의 적절한 개입 및 조치를 요청함.

2. 외무부는 1973.1.16. 주미대사에게 국무성을 통해 주이란 미국대사에게 이임하는 동 미국대사 리셉션에 주이란대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토록 교섭할 것을 지시한바, 국무성 한국과장은 1.16. 동 부당한 처사의 시정 필요성에 동감하고, 국무성 이란담당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함.

3. 주이란대사의 후속 보고임.

- 주이란 미국대사대리는 국무성의 지시에 따라 소련대사관을 방문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할 예정임.(1.30.)
- 미국 측이 외교단장인 소련대사에 수차 종용하여 절충안으로 외교단 차석인 모로코대사가 외교단장을 대리하여 미국대사 송별 리셉션을 개최키로 결정하였으며, 모로코대사는 초청 범위와 관련하여 본국 정부의 지시에 따를 예정임.(2.12.)

4. 외무부는 1973.3.3. 주이란대사에게 외무성을 통해 소련대사가 외교단 행사 시 모든 주재대사에 대해 공평하게 처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5. 주노르웨이대사는 1973.10.16. 국경일 리셉션에 소련 등 공산권 대사를 초청했으나 전원 불참했으며, 초청장 접수 후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을 보고함.

- 소련: 소련(외교단장)이 승인하지 않은 국가의 초청장 수령 시 외교단장 대리에게 위임키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동 초청장을 아이슬란드 대사에게 이송
- 여타 공산국: 헝가리는 불참 통보, 체코는 국외 여행을 이유로 불참 통보

6. 외무부는 1973.11.1. 관련 37개국 주재 공관에 공산권 국가 외교단장의 한국대사에 대한 차별 대우 여부 및 차별 시 구체적인 실례를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바, 12.5. 현재 파악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공산권 국가 대사 외교단장: 8개국
- 이란을 제외하고는 외교단 행사에 한국 대사를 초청
- 한국 공관 행사에 공산권 사절을 초청하였을 경우 대부분 통보 없이 불참

한 · 동구권 인사교류 현황

| 73-038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특수지역과
MF번호	E-11 / 2 / 1~32(32p)

외무부에서 1973년 작성한 한국과 동구권 등 공산권 국가들과의 인사 교류 현황 자료임.

1. 동구권과의 인사 교류 현황(1960~69년)

2. 공산권 여행 및 여행 예정자 현황(1950년 후반~73년)

3. 공산권 여행자 수와 공산권 국민의 입국자 수 대비(1973.9.20. 현재)

- 여행 자수: 소련, 유고, 폴란드 등 8개국 212명
- 입국 자수: 소련, 유고, 불가리아, 헝가리 4개국 143명

4. 공산권 여행자 수와 공산권 국민의 입국자 수 현황(1968~73.8.30.)

- 개요
  - 공산권 여행자는 주로 운동선수, 경제사절단 및 기자 등 (유고, 소련, 체코 순)
  - 공산권 국민의 입국자는 주로 관광 및 상용 목적 (유고, 체코, 폴란드 순)
- 자료
  - 공산권 여행자 및 여행 예정자 명단
  - 공산권 국민의 입국 현황
  - 특수 지역 여행 명세

외교관 등 직무수행 특수지침의 개정

| 73-0390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정보과/특수지역과
MF번호	E-11 / 3 / 1~79(79p)

1. 외무부 정보문화국은 1972.11.6.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외교관 등 직무수행 기본지침' (1971.10.18 . 시행)에 대한 아래 개정안을 작성하고 부내 관련 실 · 국의 의견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각각 문의함.

❁ 개정 이유

- 국제 정세가 냉전에서 화해의 시대, 양극 체제에서 다변화 체제로 전환 중으로, 특히 최근 미국 · 중국(구 중공) 및 미국 · 소련 간의 화해와 일본 · 중국 국교 수립 등 본질적 변화에 따른 한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한 주체적, 적극적인 외교적 자세 필요
- 남북한 적십자회담, 7 · 4 남북공동성명, 10월 유신 등에 따라 남북한 간의 대립에서 점차 평화를 기초로 한 대결 내지 부분적 협력으로 발전되는 추세에서 이에 대비한 대북한 자세 설정 필요

❁ 기본 원칙

- 대북한 관계: 북한을 대등한 합법정부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의 정권으로 평화적 통일 실현을 위한 대화 상대역으로 간주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되 불필요한 언행은 자제하고 신중한 자세 견지
- 적대 집단: 북한 및 월맹에 대해 '적대 집단' 이란 표현을 사용치 않으며, 북한 및 공산 제국으로 구분하여 명시
- 대공산권 관계: 한국에 직접적인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모든 공산권 국가와 점진적인 관계 개선 추진

❁ 활동지침 신구 대비표 첨부

2. 주독일대사는 1973.2.23. 독일은 동서독 기본조약 서명일인 1973.12.21.자로 전 재외공관에 대해 동서독 외교관이 동일한 지역에 주재하거나 국제회의 등으로 조우할 경우 서독 외교관의 동독 외교관에 대한 새로운 대응 지침을 시달하였음을 동 내용과 함께 보고함.

3. 외무부는 1973.9.15. 외교관 등 직무수행 특수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

❁ 목적

- 외무부 및 타부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외 근무 공무원의 북한, 적대 국가 및 집단, 비적대 공산 국가에 대한 공적, 사적 활동의 준칙 수립

❁ 적용 범위

- 해외 주재 공무원과 그 가족, 국제회의 파견 대표와 그 가족에 준용

❁ 활동 지침

- 북한 관련 사항
  - · 북한을 국가나 정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 자제, 공적 및 사적 행사에서 북한의 국기 게양이나 국가 연주 시 일시 퇴장 또는 착석한 채로 무시
  - · 주재국 내에서 한국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 · 북한 기관원 및 인사와의 업무상 실질적인 접촉은 본부 지시에 의한 특수 임무 수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
  - · 국제회의 및 각종 행사에서 북한 기관원 및 인사와 조우 시 자연스럽게 대처하고, 한국의 발전상 및 평화통일 방안 등 설명
- 적대국 및 집단 관련 사항
  - · 외무부장관이 지정한 사안 또는 본부 지시에 의한 특수 임무 수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 접촉 금지
  - · 공적 및 사적 행사에서 적대 국가 및 집단의 국기 게양 및 국가 연주 시 일시 퇴장 또는 착석한 채로 무시
- 비적성 공산 국가 관련 사항
  - · 북한 및 적대 국가 및 집단을 제외한 공산 국가 외교관 및 인사와는 능동적인 접촉을 통해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경주
  - · 비적성 공산 국가 국기 게양 또는 국가 연주 시 현지 관례에 따라 적절히 예우
  - · 한국 공관 주최 모든 행사에 초청, 동 국가들의 행사에 참석

❁ 특수 임무 수행을 위한 활동

- 본부 지시에 의해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본 지침에 구애됨이 없이 활동 가능
- 현지 판단이 어려운 사안 발생 시 본부 지침 요청
-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공관장의 재량에 의해 조치

❁ 지침의 효력

- 1973.9.15.부터 효력 발생, 1971.10.18.자 구 지침은 동일자로 폐지

4. 외무부 통상국은 1973.12.7. 대공산권 교역 추진을 위한 직원 등의 통상 증진 목적의 동구권 여행 허가 문제에 관해 정보문화국 의견을 문의한바, 정보문화국은 12.17.자 제18차 유신기획위원회 결정 사항을 아래 회신함.

❁ 원칙적으로 여행을 허가하되 자격, 목적 및 경유지 관련 타당성을 단체 또는 개별적으로 유신기획위원회에서 검토, 결정함.

❁ 여행자에 대한 국가 대표로서의 품위 유지 관련 교육 및 예상되는 공작에 대비한 보안 교육을 실시함.

대소련 및 동구권 관계개선 방안

| 73-039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특수지역과
MF번호	E-11 / 4 / 1~110(110p)

1. 외무부는 1973년 대동구권 및 공산권 관계 개선 방안 관련 아래 자료를 작성함.

- 정세, 목표, 대상 국가, 현황, 문제점, 대처 방안, 세부 계획(1.15.)
- 소련, 중국(구 중공)과 한국 및 북한과의 관계, 중국의 대외정책, 북한의 대외정책 추진 현황, 소련의 대외정책 추진 과정, 대중국 관계개선 관련 제반 시도(3.2.)
- 최근 소련의 대한국관, 소련 및 동구 제국 비수교 국가와의 관계 개선 추진 방식(매스컴을 통한 상대국 공격 완화, 서신 · 인사 · 문화 · 경제 교류, 국교수립), 대소련 및 대동구권 관계개선을 위한 예비적 조치로서의 언론 활용, 민간인 및 민간단체 간의 교섭지원(4.10.)
- 11.29.자 작성 자료 요지
  - 대공산권 정책 목표, 공산권 동향 (소련의 대아시아 정책, 소련 및 중국의 한국에 대한 기본 입장, 공산권 비수교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일반적 접근 양상)
  - 관계 개선 추진 방안
    - 대공산권 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 민간외교 추진 지원, 친공산권 중립국에 대한 외교 강화
    - 우방국 및 공산권 사절의 활용, 유엔 주재 공산권 대표단과의 접촉, 제3국 주재 공산권 외교관과의 접촉, 국제회의에서의 공산권 대표단과의 접촉, 국제 적십자사를 통한 접촉
    - 홍보 간행물 배포, 박람회 · 전시회 참가, 각종 사절단 파견 및 접수, 동구 공산권 전시를 위한 이동 전시관 설치
- 공산권 인사와의 접촉 및 상호 왕래 현황에 관한 자료(12.31.)

2. 외무부는 1973.12.8. 주프랑스 등 11개 공관장에게 아래 내용의 적극적인 대공산권 관계 개선 활동 추진을 위한 지침을 훈령함.

-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접촉 및 기타 공산권 제국 공관원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접촉에 의하면 공산권은 1973년 가을 유엔 총회 결과에 따라 태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임.
- 정부의 남북대화 촉진 선언 및 남북대화 재개에 따라 공산권 공관원과 조속한 시일 내 접촉을 통해 금년도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문제의 표결 없는 처리 및 동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교섭하고, 반응을 보고함.

동구권과의 Contact Point 개설

| 73-039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특수지역과
MF번호	E-11 / 5 / 1~31(31p)

1. 외무부 특수지역과는 1973.5.3. 동구 제국과의 접촉선 개설 방안에 관해 아래와 같이 건의함.

❁ 목적
- 상호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
- 공식 관계가 수립될 때까지 '상설연락사무소'의 기능 발휘

❁ 선정 기준
- 접촉 대상국 및 우호적인 국가에 주재하는 상대국 공관원 중 접촉이 용이하고 적절한 대상을 선정하여 중점적인 접촉 지속
- 가급적 북한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구주지역 공관을 선정하여 접촉

❁ 개설 계획(대상국명 및 담당공관)
- 소련(주스웨덴, 주이탈리아대사관), 유고슬라비아(주오스트리아대사관), 폴란드(주벨기에대사관), 헝가리(주프랑스대사관), 루마니아(주네덜란드대사관), 불가리아(주터키대사관), 체코(주영국대사관)

❁ 운영 방법
- 해당국과의 통상, 문화 등 제반 문제를 교섭
- 실질적 접촉이 개시된 이후에는 필요한 지원 시행

2. 외무부는 1973.7.5. 주이탈리아대사 등 7개국 주재 대사에게 동구권 대상 공관과 접촉하여 아래 사항을 교섭하도록 지시함.

❁ 정부의 6·23 평화통일 외교 선언과 관련하여 동 성명 중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와도 호혜평등 원칙에서 관계 개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킴.

❁ 해당국도 한국에 대해 통상 및 문화 관계를 포함하여 문호를 개방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섭함.

3. 외무부는 1973.8.2. 주이탈리아대사 등 8개국 주재 대사에게 아래 내용의 대동구권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함.

❁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교섭 및 동 결과

❁ 해당국의 주요 정치·경제적 변동 사항, 북한과의 관계, 대한국 입장, 주요 인사 인적 사항 및 동정 등

4. 외무부는 1973.9.20. 대소련 및 대동구권 관계 개선 추진 활동 성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함.

❁ 소련과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한 기타 동구 제국은 현재까지는 소련의 대한국 정책을 관찰하면서 한국과의 적극적인 접촉을 유보 중임.

❁ 최근 소련 및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접촉선 개설 활동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5. 외무부는 1973.12월 대공산권 관계 개선 추진 현황을 아래 작성함.

❁ 주요 조치 사항

- 외교관 직무수행 기본지침 개정
- 접촉선 개설, 공산권과의 비정치적 교류 추진(한국인의 공산권 여행, 공산권으로부터의 한국 여행) 및 공산권 외교관과의 접촉 추진
- 소련 상공회의소 소장에 대한 교역 제의, 유니버시아드 대회 참가

❁ 진행 중인 사업 현황

- 리틀엔젤스 동구권 공연 추진 등 7개 사업

❁ 사업 계획

- 홍보활동 강화, 대공산권 민간외교 추진 지원, 친공산 중립국에 대한 외교 강화
- 유엔 주재 공산권 대표단과의 접촉 채널 개설, 접촉선의 기능 강화, 국제회의에서 공산권 대표단과의 능동적인 접촉 추진
-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 이동전시관 설치, 각종 사절단 파견 및 접수 추진, 종교인을 통한 대동구권 관계 개선

공산권여행 - 중국(구 중공)

| 73-039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E-11 / 6 / 1~11(11p)

주홍콩총영사는 1973.5.31.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인 나[redacted]의 중국(구 중공) 방문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1. 미국의 중국계 저명 회사 대륙 방문단이 중국 초청으로 1973.5.30. 열차편으로 홍콩에서 중국으로 향발한바, 방문단원 Dr. Yong 부인의 본명이 나[redacted]으로 미국 시민권 소지자이며, 방문단원 전원에 대한 이력서가 중국에 사전 제출된 점에 비추어 중국 당국은 상기 나[redacted]의 인적 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2. Dr. Yong 부부는 약 4주간의 중국 여행을 마치고 1973.6.19. 홍콩에 도착함.

❋ 6.21. 동 부부를 면담하여 파악한 내용임.

- 홍콩-광동-항주-상해-남경-북경-광동-홍콩 여정으로 여행함.
- 안내원이 동행하였으며, 대단히 자유스러운 관광이 진행됨.
- 공장 시설은 수동식으로 현대적 장비가 많지 않았으며, 건설 사업도 인력을 주로 사용함.
- 식량은 일인당 15kg 배급제이며, 일반적으로 사치품은 고가이나 생필품은 염가임.
- 중국 당국은 동 방문단을 세심하게 배려함.
- 북한계로 보이는 사람의 접근 시도가 있었으며, 북한 영화를 보여 주고 북한에서 살아 볼 것을 권유함.

❋ 상기 방문단의 사진 촬영 및 필름 반출 등이 자유로웠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 내 중국계 인사 초청을 통해 조국애를 고취하고, 중국에 대한 선전 등 파급 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판단됨.

3. 중앙일보 편집부국장은 1973.6.22. 홍콩에서 나[redacted]에 대해 취재하였으며, 동 신문은 6.26. '한국계 여성의 첫 중국 방문' 제하 시찰단의 여정과 함께 중국 당국이 한국계 여부에 관해 문제시하지 않았음을 보도함.

조광제 주네덜란드대사관 참사관의 체코슬로바키아 방문 문제

| 73-039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특수지역과
MF번호	E-11 / 7 / 1~12(12p)

1. 주네덜란드대리대사는 1973.6.22. 외교단 친목회(Club du Jeudi)에서 9.15.~18. 체코 방문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하는 한편 조광제 참사관의 동 여행 허가 여부에 대한 지침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6.29. 조 참사관의 외교단 친목회 주관 체코 방문을 허가함.

2. 외무부는 1973.7.2. 중앙정보부에 조 참사관의 상기 체코 방문에 관한 의견을 문의한바, 중앙정보부는 아래 의견을 회신함.

- 동 주재국 외교단 주관 체코 여행은 동구권 진출과 관련한 국가 시책에 부합함에 따라 허용함이 가함.
- 동 여행 기회를 이용하여 정부의 6·23 선언에 대한 동구 공산권의 반응 수집 및 향후 예상되는 동구권 진출을 위한 여건을 조성토록 요망함.

3. 주네덜란드대리대사는 1973.9.14. 상기 체코 방문 문제와 관련하여 조 참사관이 외교단 친목회의 일원으로 체코 방문을 신청하였으나, 체코 당국이 동 친목회 의장에게 한국과는 외교관계가 없음에 따라 한국 외교관의 입국을 허가할 수 없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음을 보고함.

공산권여행 허가 - 소련

| 73-039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E-11 / 8 / 1~136(136p)

한국인의 1973년 중 소련 방문 관련 외무부 및 관계부처의 조치 내용임.

1.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73.5.3. 외무부에 미국 스탠퍼드 연구소 주최 6.13.~15. 헬싱키 회의 참석 후 소련 레닌그라드 관광 방문 가능 여부를 문의한바, 외무부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5.28. 아래와 같이 허가함.

- ❋ 소련과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를 도모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순수 관광 목적의 방문을 허가
- ❋ 소련이 북한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참가자에 대한 신변 안전 및 보안 대책 강구 필요

2. 주일본대사는 1973.5.30. 산케이 신문을 인용하여 소련 정부가 모스크바 국제연극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음악가에게 파리 주재 소련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를 발급하였다고 보고함.

3. 외무부는 1973.6.8. 유[redacted] 극연출가의 유네스코 산하 ITI(국제연극협회) 제15차 총회 참석을 위한 5.26.~6.2. 소련 방문 결과 관련 자료를 작성함.

4. 조선일보는 1973.7.5. 외무부에 신[redacted]기자의 관광 취재차 7.11.~12. 소련 여행 허가를 신청함.

- ❋ 외무부는 7.9. 동 기자의 레닌그라드 방문을 허가
- ❋ 주핀란드공사는 7.13. 신 기자의 방문 경위 등을 보고

5. 주핀란드공사는 1973.7.20. 교포 유학생 고[redacted]가 핀란드 대표단의 일원으로 6.16.~21. 소련 따린 학술대회에 참석하였음을 보고하고, 동인이 향후 동구 학자와의 접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시 않는 것이 좋을 것임을 건의함.

6. 중앙정보부는 1973.7월 소련 여행 경제인 및 교수를 통한 아래 소련 관련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작성함.

- ❋ 과학연구소 실태, 과학 정책 및 신무기 개발 상태
- ❋ 사회보장제도 및 생활상, 대중교통 수단 및 실태, 교역 전망, 레닌그라드의 특징적 면모, 소련인의 대외 인식, 소련 여행 시 유의 사항

7. 외무부는 1973.8.2.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정부가 대공산권 교역을 위한 아래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을 통보함.

❁ 무역거래법 제2조에 의거하여 공산국에 대한 수출입은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 적용의 예외 허용

8. 대통령 비서실은 1973.8.12.~18. 모스크바 개최 국제산부인과학회 한국 대표단 참가 보고 자료를 작성함.

공산권여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73-039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E-11 / 9 / 1~49(49p)

1. 외무부는 1973년 아래 내용의 공산권 여행 실태 파악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자료를 작성함.

❋ 목적
- 한국과 미수교 공산권 국가 인사 왕래 실태 및 동향 파악으로 공산권 제국의 한국에 대한 입장 파악 및 한국의 대공산권 정책 수립 및 수행에 활용

❋ 내용
- 공산권 여행 신청자 및 공산권 국민의 한국 사증 신청자 파악, 공산권 여행자에 대한 지침
- 공산권 여행자 귀국보고서 제출, 정부기관 추진 공산권 여행 계획 협의

❋ 첨부: 공산권 여행자를 위한 지침
- 출국 및 귀국 보고, 대북한 관계 행동지침, 대(對)비적대적 공산권 관계 행동지침
- 귀국보고서 제출 의무

2. 외무부는 1973.7.4. 주일대사에게 6·23 선언의 문호개방 정책에 따라 공식 관계가 없는 일본 주재 동구 공산권 제국 및 좌경 중립 제국 외교관의 방한을 추진하도록 지시함.

3. 유신기획위원회는 1973.7.10. 아래 내용의 '구미 주재 특파원의 소련 및 동구권 입국 문제 검토' 자료를 작성함.

❋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여행자 및 단체의 자격, 목적, 경유지의 타당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여행자를 대상으로 예상되는 공작에 대비한 안보교육 실시
❋ 여행자의 귀국 보고를 통한 정보 및 자료를 분석, 활용하는 방안 강구
❋ 외무부, 문화공보부, 중앙정보부 등 관계부처는 세부지침 작성 및 기획위원회에 보고 후 시행

4. 외무부는 1973.7.20. 중앙정보부와 공산권 여행자에 대한 협의 창구 일원화, 여행 허가, 여행 지침 시달 및 여행 귀국보고서 처리 방안에 관해 협의함.

5. AFP 통신은 1973.9.14. 아래 서울발 기사를 통해 한국이 공산권 여행 금지를 해제했음을 보도함.

❋ 외무부는 9.14. 한국인의 공산국 여행 금지 조치가 북한을 제외하고 전면 해제되었음을 발표함.
❋ 외국을 여행 중인 한국인은 9.17. 이후 북한을 제외한 모든 공산 국가 여행이 허용됨.
❋ 동 조치에 따라 한국인이 여행 가능한 국가는 현재까지 한국에 적대적이었던 중국(구 중공), 쿠바, 동독, 베트남(구 월맹), 소련 등임.

공산권여행 허가 - 동구

| 73-039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특수지역과
MF번호	E-11 / 10 / 1~28(28p)

1. 외무부는 1973.5.14. 중앙정보부에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주최 플라스틱 기술훈련과정에 따른 한국 훈련생의 9.10.~11.9. 루마니아 공장 시찰 계획 일정 참가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 ❋ 중앙정보부는 5.21. 아래와 같이 동 시찰 계획 참가 허용 입장을 회신함.
  - UNIDO는 순수한 국제과학기술기구로 동 회의 참가는 정부의 개방외교 정책에 부합함.
  - 루마니아는 독자 노선을 표방하고 있으며, 정부의 비적성 공산 국가에 대한 관계 개선 정책에도 부합함.
- ❋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0.22. 동 한국 훈련생이 10.28. 루마니아 입국 후 11.2. 귀환할 예정임을 보고함.

2. 주프랑스대사는 1973.6.22. 동아일보 및 중앙일보 특파원의 취재차 소련, 헝가리 및 유고 여행을 위한 경유지 추가 신청에 대한 지침을 요청함.

3. 문교부는 1973.8.6. 외무부에 9.3.~16. 개최 예정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제15차 총회에 서울대 교수를 파견하여 유고, 루마니아, 소련 등 동구권 학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한국 방문을 권유하고 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8.10. 정부의 동구권 관계 개선 정책에 따라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회신함.

4. 문교부는 1973.10.5. 외무부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로 12.3.~7. 개최 예정인 지역개발을 위한 국제비교연구세미나 참석을 위한 폴란드 학자의 한국 입국에 관한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10.11. 정부의 대동구권 관계 개선 정책에 따라 동 폴란드 학자의 입국이 유익할 것이라는 의견을 회신함.

5. 유신기획위원회는 1973.8월 해외기술훈련생의 폴란드 파견에 관한 검토 자료를 아래 작성함.

- ❋ 폴란드 정부 주관, WHO(세계보건기구) 기술지원으로 9.4.~10.28. 모자보건 분야 국제기술훈련 실시
- ❋ 정부는 8.1. WHO의 참가 신청 요청서 접수
- ❋ 대공산권 외교의 적극적인 추진 방침에 따라 연세대 교수 파견 결정
- ❋ 폴란드 입국비자 취득 및 보안 교육은 외무부와 관계부처에서 협조

비동맹 정상회의, 제4차. Algiers(알제리) 1973.9.5.-9. 전3권. V.1 기본대책

| 73-039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F-4 / 1 / 1~231(231p)

1. 주뉴델리총영사는 1973.5.18. 아프가니스탄에서 5.13.~15. 개최된 제4차 비동맹국회의 준비위원회 결과를 아래 보고함.

- ❋ 아프가니스탄 등 17개국, 시아누크 정권 등 5개 옵서버, 페루 특별 참가
- ❋ 결의 사항
  - 알제리 비동맹회의 일정 확정(8.29.~31. 준비위 최종회의, 9.2.~4. 외상회의, 9.5.~8. 제4차 비동맹 정상회의)
  - 공동성명 채택

2. 외무부 중동과는 1973.6.25. 아래 내용의 제4차 비동맹 정상회담 대책 자료를 작성함.

- ❋ 비동맹 정상회담의 중요성, 북한의 동 회의 가입 또는 옵서버 참석 시도 가능성, 한국의 비동맹 중립국 정상회담 참석 문제 검토
- ❋ 향후 대책: 북한의 동 회의 가입 신청 및 한국과 북한의 비동맹중립국회의 참가에 대한 반응 파악, 북한의 동 회의 참가 시 효과 상쇄를 위한 한국의 참가 검토

3. 외무부는 1973.7.30. 아래 내용의 제4차 비동맹 중립국 정상회담 대책 연구서를 관련 공관에 배포함.

- ❋ 비동맹 중립국 정상회담의 연혁 및 성격, 비동맹중립국회의 관련 북한 동향 분석, 비동맹중립국회의 참가 자격 및 가입 신청 절차
- ❋ 제4차 비동맹 정상회의에 대한 정부 입장, 대책 및 건의

4. 외무부는 1973.8.1. 주모로코대사 등 7개 공관장에게 제4차 비동맹 정상회의 관련 북한의 가입 시도 가능성에 따른 사전 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함.

- ❋ 상기 3항 대책 연구서를 참고하여 주재국과 교섭함.
- ❋ 특히 동 회의에서 북한 가입 및 한국 문제가 거론되는 경우 주재국이 한국 입장을 대변하여 동 회의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편파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도록 교섭함.

5. 외무부는 1973.8.6.~11. 주사우디아라비아 등 18개 공관에 비동맹 중립국 정상회담 대책 보고서를 송부하고 정부 입장 지지 교섭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함.

6. 외무부 중남미과는 1973년 비동맹 중립국 정상회담 관련 아래 자료를 작성함.

- ❋ 중남미 제국 비동맹 국가들의 일반적 동향 및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입장
- ❋ 향후 전망

비동맹 정상회의, 제4차. Algiers(알제리) 1973.9.5.-9. 전3권. V.2 우리입장 지지교섭

| 73-039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F-4 / 2 / 1~367(367p)

1. 외무부는 1973.8월 주브라질대사 등 관련국 주재 공관장에게 9.5.~8. 알제리 개최 제4차 비동맹 중립국 정상회담 대책연구서를 송부하는 한편 주재국 및 겸임국에 대해 아래 정부 입장에 대한 지지 교섭을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함.

- ❁ 북한은 1961.7월 중국(구 중공) 및 소련과 각각 군사동맹을 체결하였음에 따라 비동맹회의 성격상 북한의 참가는 용납될 수 없음.
- ❁ 보편적 원칙에 따라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방안이며, 유엔의 평화 유지 기능 강화라는 비동맹중립국회의 목적에도 부합함.
- ❁ 주한 유엔군은 한반도에서 휴전협정의 당사자로서 전쟁 재발 방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 중임에 따라 어떠한 대안도 없이 주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은 6·25와 같은 전쟁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무책임한 처사임.

2. 관련국 주재 공관은 상기 비동맹 중립국 정상회담 관련 주재국과의 교섭 결과를 수시 보고한바, 외무부 구아국은 1973.8월 제4차 비동맹 중립국 정상회담 관련 각 공관별 조치 사항 및 교섭 결과 보고 내용을 종합 정리함.

3. 외무부는 1973.8.17. 주코트디부아르대사에게 북한의 소련 및 중국과의 군사원조조약 전문을 교섭에 참고하도록 송부함.

4. 외무부는 1973.8.23. 주튀니지대사에게 한국이 아래 이유로 동 비동맹 정상회의에 옵서버를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통보하는 한편 튀니지가 동 회의에서 한국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해 주도록 교섭할 것을 훈령함.

- ❁ 급진 좌경 국가들이 주한 유엔군을 이유로 한국의 옵서버 참가에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됨.
- ❁ 알제리 입국 사증 취득이 용이하지 않음.
- ❁ 북한의 비동맹 참가 동향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옵서버 참가 신청은 북한을 자극하여 북한의 동 회의 참가 시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5. 외무부는 1973.8.23. 주에티오피아대사 등 관련 공관장에게 북한의 8.29.~30. 비동맹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참가는 비동맹회의 본연의 성격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음에 따라 북한의 동 회의 참가에 반대해 줄 것을 교섭하도록 지시함.

6. 외무부 중동과장은 1973.8.24.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을 면담하고 북한의 비동맹회의 가입 신청 문제에 관해 협의한바, 미국 측은 북한이 가입 신청 및 신청 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함.

7. 외무부는 1973.8.25. 비동맹회의에 대비하여 현지에 파견되는 정규섭 주튀니지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한바, 주튀니지대사는 8.30. 알제리 입국 비자 취득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알제리 측의 무응답으로 입국 비자를 취득치 못하였음을 보고함.

- 동 회의 참가 우방국 및 중립국 대표단 접촉을 통해 정부 입장에 대한 지지를 교섭함.
- 북한이 소련 및 중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하였음에 따라 비동맹 국가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설명하여 북한의 가입 시도에 대처함.
- 정상회담의 토의 내용, 진행 상황을 관찰하고 향후 비동맹 세력의 발전 전망에 관한 현지 판단을 건의함.

8. 외무부는 1973.8.27. 주에티오피아대사 등 관련 공관장에게 북한이 한반도에서 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결의안 채택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동 회의가 외군 철수를 결의하는 경우에도 한국을 특정하여 지칭하지 않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9. 외무부는 1973.8.31. 주프랑스대사에게 프랑스 주재 알제리대사와 접촉하여 비동맹회의 관련 주프랑스대사의 알제리 입국을 위한 관광 목적의 입국 비자를 취득하도록 훈령한바, 주프랑스대사는 동일 알제리 대사대리가 숙소가 없다는 이유로 사증 발급을 거절했음을 보고함.

10. 외무부는 1973.9.1.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8.29.~31. 알제리 개최 제4차 비동맹회의 준비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회원국 가입 신청: 정회원 7개국, 옵서버 2개국, 피초청 참가 신청 3개국
- 북한의 가입 미신청 확인
- 관련 공관을 통한 동 회담 참가국에 대한 정부 입장 지지 교섭 결과 19개국으로부터 지지 약속 확보
- 동 회의 참석 우방국을 통해 한국에 불리한 결의가 채택되지 않도록 노력 경주

비동맹 정상회의, 제4차. Algiers(알제리) 1973.9.5.-9. 전3권. V.3 회의경과

| 73-040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F-4 / 3 / 1~247(247p)

1. 주브라질대사는 1973.9.6. 알제리 개최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아르헨티나, 멕시코 및 페루 3개 중남미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했음을 보고함.

2. 외무부는 1973.9.12. 주모로코대사 등 관련 공관장에게 동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한국 관련 결의안 채택 경위 및 주재국 대표의 관련 발언 내용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바, 주튀니지대사는 9.15. 아래 보고함.

- 동 결의안은 9.7. 알제리 제안에 따라 9.9. 무수정 통과됨.
- 주재국 외상은 한국 문제 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려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알제리 원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3. 외무부는 1973.9.17. 제4차 비동맹 정상회담 결과를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아래 보고함.

- 회의 경과
  - 정회원국 75개국 등 총 88개국 대표, 13개 해방전선단체, 4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 일정: 준비위원회(8.29.~31.), 외상회의(9.2.~4.), 정상회담(9.5.~9.)
- 특기 사항
  - 괄목할 성과 도출에 미흡, 비동맹 진영 내부 분열 노정
  - 회의 결렬 방지를 위한 미봉책 강구, 의장국인 알제리의 독주
- 주요 결정 사항
  - 신규 참가국 승인: 페루 등 7개국 정회원 가입, 파나마, 멕시코 등 옵서버 가입, 스웨덴 등 3개 피초청국 참가
  - 정치선언 및 경제선언문 채택, 14개 정치 관계 결의문 및 6개 경제 관계 결의문 승인
- 차기 회의 개최 문제
  - 제5차 회의 1976년 스리랑카 개최 및 제6차 회의 1979년 중남미 개최 양해
- 한반도 문제
  - 북한의 미가입
  - 알제리 제출 한국 관련 결의안 채택
- 한국 관련 결의안 요지
  - 주한 외군 철수 및 한반도에 대한 외세 간섭 중지 요구
  - 제28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문제 토의, 주한 유엔군 철수 및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해체 결의 촉구

- 남북한의 유엔 가입은 통일 또는 남북한 연방제 구성 후 단일 국가로 실현 가능

❋ 평가

- 동 한국 관련 결의안은 회의 결렬 방지를 위한 특수 상황하에서 부득이 일괄 승인된 것으로 각 회원국의 개별적인 한국에 대한 입장과는 무관하며, 동 채택이 금년도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문제 토의 시 비동맹국들의 개별적 입장 표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임.
- 외무부는 비동맹 정상회담에서의 한국 관련 결의안 채택이 금년도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에 영향이 없도록 우방 및 중립국에 대한 교섭을 시행 중임.

4. 외무부는 1973.9월 알제리 비동맹회의 관련 교섭 결과 및 유엔에서의 토의 전망 관련 아래 자료를 작성함.

❋ 외무부는 비동맹 정상회담 대비책으로 회원국 중 전통 중립국을 대상으로 한국 입장 지지 및 한국 입장 대변 교섭을 전개하여 19개국의 지지를 확보함.

❋ 북한의 비동맹 가입 저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및 주한 유엔군 계속 주둔의 필요성 설명에 역점을 두고 교섭한 결과 북한의 가입 시도를 사전에 차단함.

❋ 한국 관련 결의안은 회의 결렬 방지를 위한 미봉책으로 대다수 회원국의 소극적, 방관적 입장에 따라 의장국인 알제리의 일방적 회의 주재로 채택됨.

❋ 금년도 유엔 총회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와 관련하여 비동맹 회원국이 대부분 친공산 좌경 국가이며, 1972년 중 북한과의 수교 국가 증가 및 중국(구 중공)의 영향력 증대 등에 따라 한국 측 결의안에 대한 기권 내지 반대 표가 예년보다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5. 주프랑스대사는 1973.12.5. 동 제4차 비동맹 정상회담 시 채택한 아래 선언문 및 발표문을 송부함.

❋ 정치선언 및 경제선언문

❋ 경제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

6. 외무부는 1973.12.12. 주프랑스대사에게 유엔 주관 개최 예정인 국제해양법회의 참가 준비를 위해 동 비동맹회의 시 채택된 국제해양법 관계 결의문을 송부하도록 지시함.

국군현대화 촉진방안 (군원이관)

| 73-040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30 / 1 / 1~75(75p)

1. 외무부 김동휘 미주국장은 1973.2.24. 미 국무성 부차관보 및 정치군사국장을 아래와 같이 면담함.

- ❁ 한국 측은 대한 군원 확보 및 현대화계획 이행을 위한 미국 정부의 조치를 촉구함.
  - 무상군원을 점차 차관으로 전환하려는 미국 정부의 기본 방침과는 별개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시행 중인 현대화 계획의 이행 촉구
  - 정부의 강력한 차관 전환 반대 입장 전달
- ❁ 미국 측은 행정부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는 한편 현행 무상군원을 향후 일부 군사판매 차관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고려해 볼 것을 제의함.
- ❁ 양측은 한 · 미 외교 실무진 간 정책협의, 대북한 여행제한조치 연장 문제 및 브라운 각서 관련 현안 문제를 협의함.

2. 외무부 미주국은 1973.3.7.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원 문제에 관한 아래 자료를 작성함.

- ❁ 군원 추이: 일반적 추이, 의회 심의 동향 및 대한 군원액 추이
  - 최근 수년간 미 의회는 행정부 요청액의 약 30%를 삭감
  - 대한 군원 배정액은 전체 군원의 약 30% 상당
- ❁ 1974년도 전망
- ❁ 국군현대화 계획
- ❁ 기본 입장
  - 국군 현대화 계획의 시행
  - 미 행정부 당국자의 4월 중 방한 시 군원 문제 전반과 함께 국군현대화 계획 시행을 위한 미국 정부의 입장 재확인 및 정부의 입장 천명 필요

3. 국방부는 1973.3.7. 미국 군원 현황 및 전망 관련 아래 자료를 작성함.

- ❁ 1973년도 전도자금 집행 현황
- ❁ 투자비 및 운영비 배정 내역
- ❁ 국군현대화 5개년계획의 1971~73년 중 진전 상황
  - 투자비: 2억82백만 달러(계획 대비 40%)
  - 운영비: 3억44백만 달러(계획 대비 약 62%)
- ❁ 전망, 문제점 및 대책

2. 국방부는 1973.5.7. 외무부에 한 · 미 간에 1972.8.4. 합의된 1973년도 현대화 추진 계획 중 1972년 및 73년도 군원 소모성 물자의 원화 부담에 관한 국방부와 주한미합동군사원조단 간의 합의각서가 첨부된 일부 품목의 수정 및 조정에 관한 합의 내용을 통보함.

주월남 한국군 철수

| 73-040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북미2과
MF번호	G-30 / 2 / 1~131(131p)

1. 외무부 동남아2과는 주월남 한국군 철수 문제와 관련하여 1971.1.11.자 주월남 한국군의 단계적 감군을 고려 중임을 언급한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1973.3.15.자 철수 완료까지의 일지를 작성함.

2. 국방부는 1971.12월 주월남 한국군의 제2단계 철수 관련 아래 '개선문 계획'을 작성함.

- ❋ 제1단계: 1971.12.1.~72.6.30. 1만 명의 병력 철군
- ❋ 제2단계: 1972년 말까지 잔여 병력 약 3만8천 명을 철군, 시기는 4~12월 또는 7~12월 중 선택

3. 국내외 언론은 1973.1월 주월남 한국군의 철수 계획을 아래 보도함.

- ❋ 김종필 국무총리는 1.5. 백악관 회담에서 닉슨 대통령에게 휴전협정 성립 시까지 주월남 한국군의 철수 연기 및 휴전 성립 시 60일 내 철수를 통보함.
- ❋ 국무총리는 한국 기자들에게 정부가 1973년 말 이전 주월남 병력을 철수키로 결정했음을 발표함.

4. 외무부는 1973.1.25. 대통령에게 월남전 종전협정 서명에 따른 주월남 한국군 철수 조치에 관해 아래와 같이 건의함.

- ❋ 철수 근거 및 계획
  - 1973.1.27. 서명 예정인 월남 종전 및 평화회복에 관한 협정
  - 1972년 월남 정부에 통고한 정부의 기존 철수 계획
  - 주월남 한국군 전 병력을 1973.3.29. 이전 철수
- ❋ 조치 사항
  - 주월남대사를 통해 별첨 각서 문안에 따라 정부의 철수계획 통고
  - 주미대사를 통해 미국 정부에도 정부의 입장을 통고

5. 외무부는 1973.1.26. 주월남대사에게 아래 내용의 주월남 한국군 철수 통고 각서를 월남 정부에 수교하도록 지시한바, 주월남대사는 1.27. 동 각서를 월남 외무차관에게 수교함.

- ❋ 1.27.자 월남 종전 및 평화회복에 관한 협정 서명을 환영함.
- ❋ 한국 정부는 잔여 주월남 한국군 병력을 늦어도 3.29. 이전 철수 완료할 계획임.
- ❋ 순조로운 철수를 위한 신속하고 원만한 협조를 요청함.

6. 유재흥 국방부장관은 1973.1.29.~2.2. 월남을 방문하고 티우 대통령 등 주요 인사를 예방함.

7. 주월남대사는 1973.1.29. 티우 월남 대통령이 박 대통령 앞 아래 내용의 친서를 송부해 왔음을 보고함.

- 월남의 자유 수호를 위한 한국군의 용감한 기여에 심심한 사의를 표명함.
- 양국은 종전 후에도 조화롭고 번영하는 아시아 건설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를 희망함.

8. 주미대사는 1973.2.2. 미국 국방성이 한국의 KAL기에 의한 주월남 한국군의 철수 수송에 대해 국방성 규정 및 민간항공사와의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수락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음을 보고함.

9. 외무부는 1973.2.13. 티우 월남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아래 내용의 대통령 회신 친서를 작성함.

- 월남 휴전 성립을 축하하고 티우 대통령의 영도력을 평가함.
- 양국 간 긴밀한 유대와 우의를 한층 공고히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월남의 진정한 평화 회복을 위한 노력에 가능한 모든 협조를 약속함.

10. 주월남대사는 1973.3.14. 주월남 한국군사령부 지휘부가 월남군 총사령관이 주최하는 환송식 종료 후 귀국하였으며, 총사령관은 티우 대통령의 환송사를 대독했음을 보고함.

11. 주월남대사는 1973.3.23. 주월남 국군 잔여 병력이 현지 출발함에 따라 한국군의 월남 철수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함.

12. 국방부는 1973.5.19. 주월남 한국군 복귀 후 전상 환자에 대한 의무지원에 관한 한 · 미 간 아래 내용의 양해각서를 외무부에 송부함.

- 5.17.자로 1974~76년 지원액 약 295만 달러 수령
- 동 수령으로 브라운 각서에 따른 미국의 주월남 한국군 전상자 의무 지원 종결
- 한국 측 사용 기록 5년간 보존

일본 · 미국 안보협력

| 73-0403 |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북미1과/동북아1과
MF번호	G-30 / 3 / 1~88(88p)

1. 외무부 구미국은 1972.5.20. 주일본 유엔군 기지 사용 관련 미 · 일 안보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 의한 사전 협의 문제에 관한 아래 자료를 작성함.

- 기지 사용 관련 법적 근거: 요시다–해치슨 교환각서(1951.9.8.) 및 주일 유엔군 지위협정(1954.2.19.)
- 기지 현황: 본토 8개, 오키나와 3개
- 기지 사용 협정의 종료 요건
- 한반도 비상사태 발생 시 주일 유엔군의 한반도 군사전투작전 참여 관련 사전 협의 문제

2. 외무부는 1972.9.4. 미 · 일 공동성명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바, 한국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음.

- 양국 정상은 최근 한반도에서의 대화 개시를 환영함.
- 양국 정상은 상호 안보협력조약 유지를 위한 양국 입장을 재확인하고, 1969년 미 · 일 공동성명의 소위 대만(구 자유중국) 및 한국 조항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음.

3. 외무부는 1973.2.2. 주일대사에게 미 · 일 양국의 1.19. 안보조약 운용위원회 신설 합의와 관련하여 동 협의회의 목적, 기능 및 구성 등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한바, 주일대사는 아래 보고함.

- 운용위원회 신설 합의 관련 보고(2.6.)
  - 목적: 닉슨 대통령-다나카 수상 간의 1972.9.1.자 공동성명서에 명시된 미 · 일 안보조약의 원활한 운용, 특히 주일 미군의 효과적인 작전 수행 및 기지촌 주변 주민과의 관계 개선
  - 구성: 일본 측 외무성 외무심의관, 미주국장, 방위시설청장관, 방위국장, 통합막료의장, 미국 측 주일 대사관 공사 및 주일 미군사령관 참모장
  - 기능: 수시 회의를 통해 주로 주일 미군의 배치, 기지의 정리 및 통합 등을 협의 조정
- 운용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4.24.)
  - 주일 미군기지의 정리, 통합 추진을 위해 모든 기지의 목적, 역할, 사용 상황을 재검토
  - 향후 월남전 종전 이후 월남 정세를 포함한 미군의 아시아 전략 등을 협의
  - 일방의 요청 시 회의 수시 개최

4. 주미대사는 1973.5.7. 제14차 미 · 일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서 요지를 아래 보고함.

- 참석자
  - 일본 측 오히라 외상, 마스하라 방위청장관
  - 미국 측 잉거솔 대사, 게일러 태평양군 사령관
- 주요 협의 내용
  -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세 분석, 안보조약의 사전협의 조항 검토, 일본 내 기지의 정비 및 축소
  - 안보조약 및 군사지위협정 관련 제반 사항을 안보운용협의회 등을 통해 향후 계속 협의

미국 대외방위공약

| 73-0404 |

생산연도	1970-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30 / 4 / 1~54(54p)

1. 미국 군비통제군축처는 1973.1월 보고서를 통해 1972년도 세계 각국의 국방비 지출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 국민 1인당 국방비 부담액 상위국: 이스라엘, 미국, 소련, 스웨덴 순
- GNP 대비 국방비 비율 상위국: 월남, 이스라엘, 요르단, 월맹 순
- 강대국의 GNP 대비 국방비: 미국 7.5%, 소련 6~10%, 중국 8.3% 등

2. 주미대사는 1973.1.17. US News & World report지가 보도한 미국의 대외 방위조약 재검토에 관한 아래 요지의 기사를 보고함.

- 닉슨 대통령의 2기 임기 중 중대 과제는 미국의 방대한 방위 부담 경감임.
- 미국은 방위 책임을 견지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동맹국의 부담을 증대토록 함이 필요하며, 방위조약 재검토가 필요함.
- 미군 철수를 통한 대외공약의 감축을 추진하는 한편 동맹국의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한 무장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3. 외무부는 1973.4.10. 주미대사에게 국내 언론이 Sacramento발 DPA 통신을 인용하여 미국이 최근 닉슨-티우 회담 후 한국, 오키나와 및 태국을 연결하는 새로운 극동 방위선을 구축하고 무기한 지속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도하고 있음을 통보하고, 동 보도의 배경 및 미국 정부 관계당국의 반응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한바, 주미대사는 4.10. 미 국무성 정치군사국 관계관들의 반응을 아래 보고함.

- 동 보도 내용에 관해 아는 바 없으나,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가 미 국방장관, 국무성 차관보 등을 면담 후 동 신문에 3회에 걸쳐 연재한 기사 내용은 알고 있음.
- 다른 관계관은 국무성 또는 기타 연구기관의 정책기획연구서 내용이 잘못 인용되어 보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 주미대사는 4.23. 미 국무성 당국자가 아사히 신문의 연재 기사가 여사한 억측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동 기사 전문을 전해 왔음을 보고함.

미국 대통령의 전쟁수행권 법안 의회 심의

| 73-0405 |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30 / 5 / 1~206(206p)

1. 주미대사는 1971.12.6.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아래 내용의 'War Powers Act of 1971' 을 채택하였으며, 동 법안이 1972년 초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임을 보고함.

- ❋ 의회와 사전 협의할 여유가 없는 긴급 사태를 제외하고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전쟁 개시 불가
- ❋ 긴급 사태에 따른 전쟁 행위도 의회의 입법 조치가 없는 한 30일 이상 지속 불가
- ❋ 미국이 개입 중인 기존 전쟁에는 본 법안의 적용 제외

2. 외무부는 1972.4.4. 주미대사에게 3.29. 개시되는 상원의 전쟁수행권한 심의 과정에 대한 보고를 지시한 바, 주미대사는 5.2. 하원 외무위원회 국가안보정책분과위가 동 전쟁 수행권에 관한 아래 결의 채택 후 외교위원회에 회부했음을 보고함.

- ❋ 선전포고 없이 군대 투입 시 48시간 내에 의회에 보고
- ❋ 의회가 120일 내 승인하지 않을 경우 또는 동 기간 중 상하 양원의 결의가 있을 경우 군사작전 중지

3. 외무부 북미2과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1973.5.17. 만장일치로 가결한 대통령의 전쟁권한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의의, 영향 및 전망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동 법안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 ❋ 주한미군에 대한 적용 여부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한미군 철수 압력이 가중될 것임.
- ❋ 한 · 미 방위조약상 명시된 미국의 개입과 관련하여 유사시 즉각 개입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한편 개입 시에도 효과적인 전쟁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됨.
- ❋ 한국에 대한 군원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국군현대화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4. 주미대사의 관련 후속 보고임.

- ❋ 동 법안이 1973.7.18. 하원, 10.4.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닉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됨.
- ❋ 닉슨 대통령은 10.24. 동 법안 내용이 헌법 위반이며, 국제적으로 긴급한 시기에 미국 정부가 결정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할 능력을 훼손시키는 것임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함.

5. 외무부는 1973.11.8.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미국 대통령의 전쟁권한에 관한 의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미국 상하 양원은 11.7. 닉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반송된 상기 법안을 각각 2/3의 다수결 표결로 재차 채택함으로써 동일자로 법으로 확정됨.
-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한 닉슨 대통령의 위상 추락, 월남전의 부정적 여파, 중동전에 따른 대통령의 단독 전쟁 대처 능력에 대한 의구심 등이 작용하여 다수 의원이 동 법안에 찬성한 것으로 분석됨.
- 동 법안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대외적인 위기 시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60일(30일간 연장 가능) 이상 전쟁 행위를 수행할 수 없음.
  - 동 시한 경과 시 의회의 승인 조치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전쟁 행위를 중단해야 함.
- 동 법안이 주한미군 또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주재 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전쟁 발발 시 대통령의 군 총사령관으로서의 효과적인 대응 조치 및 장기전 수행에 큰 제약이 예상됨.

청와대 안보정세 보고회의 자료

| 73-040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북미2과
MF번호	G-30 / 10 / 1~73(73p)

외무부 관련 실 · 국 작성 1973년 중 청와대 안보정세 보고회의 자료 현황임.

1. 미주국 군원(軍援) 문제 관련 자료(3.27.)

- 군원 추이: 일반적 추이, 의회 심의 동향, 대한 군원액 추세
- 1974년도 전망, 국군현대화 계획 및 기본 입장

2. 구아국 2/4분기 회의 자료(6월)

- 주요 정상회담
  - 닉슨 미국 대통령-안도레오티 이탈리아 수상 회담(4.17.~18. 미국)
  - 닉슨 미국 대통령-브란트 서독 수상 회담(5.1.~2. 미국).
  - 히드 영국 수상-퐁피두 프랑스 대통령 회담(5.21.~22. 프랑스).
  - 닉슨 미국 대통령-퐁피두 프랑스 대통령 회담(5.31.~6.1. 아이슬란드)
  - 퐁피두 프랑스 대통령-브란트 서독 수상 회담(6.21.~22. 독일 본)
- 동 · 서독 관계 진전 동향
-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각료회의(6.14.~15. 코펜하겐)
-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수 서독 방문
- 서독–체코 조약 가조인
- 동 · 서유럽 관계 진전 동향

3. 구아국 3/4분기 회의 자료(9.26.)

- 뽕삐두 프랑스 대통령의 중국(구 중공) 방문(9.11.~17.)
- EC(구주공동체) 9개국 외상회의 (9.10.~11. 코펜하겐)
- 구주 안보협력회의(9.18. 제네바)

4. 미주국 회의 자료(12.20.)

- 한 · 미 상호방위조약(국영문, 1953.10.1. 워싱턴에서 서명, 1954.11.18. 발효)
- 미 · 일 안보조약(국영문, 1960.1.19. 워싱턴에서 서명, 1960.6.23. 발효)
- 소련 · 북한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국영문, 1961.7.11. 북경에서 서명)
- 중국(구 중공) · 북한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국영문, 1961.7.6. 모스크바에서 서명)

한국 안보관계 자료

| 73-040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30 / 11 / 1~149(149p)

1. 외무부 미주국은 1973년 1951~73년간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에 관한 아래 발언 내용 일람표를 작성함.

- 방위 공약
- 양측 간 협의
- 한국군 현대화
- 경제원조 및 군사원조

2. 외무부 안보문제담당관실은 1973.9.9. 주월남 한국군의 1964.7.15.~73.3.20. 기간 중 활동 관련 일지를 작성함.

3. 외무부 미주국은 1973년 중 아래 한 · 미 안보관계 영문 자료를 작성함.

- 한 · 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9.13., 서울)
- 김동조 주미대사의 조지타운대학 비교정치경제시스템연구소 주최 행사 중 '아시아의 변화 및 자유 한국' 제하의 연설문(8월, 워싱턴)
- 닉슨 대통령의 대의회 대외원조 메시지(5.1.)
- 미 상원 외교위원회용 보고서 중 '한국과 필리핀: 1972년 11월' 중 발췌문(2.18.)
- 전쟁수행 권한 결의안
  - 상 · 하 양원 1973년 전쟁수행권한 결의안 제542호(10.12.)
  - 닉슨 대통령의 전쟁수행권한에 관한 거부권 메시지(10.24.)
  - 전쟁수행권한에 관한 닉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Zablocki 의원의 반박문(11.1.)
- 미 · 일 관계
  - 제14차 미 · 일 안보협의회 공동성명문(1.23., 동경)
- 1974년도 국방예산 및 1974~78 회계연도 심의를 위한 상원 국방위원회에서의 Richardson 미 국방장관의 '새로운 정책 실천(The New Policy in Practice)' 제하 발언문 중 발췌문(3.28.)
- 1973년 미국의 대외원조법

미국의 대한 군사지원 및 잉여 방위물자 예치금 청구

| 73-040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G-31 / 1 / 1~10(10p)

1. 국방부는 1973.3.28. 외무부에 미국의 군사지원 및 잉여 방위물자 예치금 청구에 관한 2.5.자 주한 미국대사관 공한에 대해 미국대사관 예산 회계담당관 앞으로 회신한 아래 서한 내용을 통보함.

- 재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수한 군사원조 및 잉여 방위물자의 10% 적립에 관한 미국 측의 청구서에 관해 국방부에 협조를 의뢰함.
- 상기 채무 이행을 위해 지불 청산 확인을 위한 물자 적송 문서를 제공해 줄 것을 요망함.
- 국방부는 적송 문서 접수 시 인수자 확인 후 신속히 지불 예정임.

2. 외무부는 1973.3.31. 국방부에 미국 측이 청구한 군사지원 및 잉여 방위물자 예처금 청구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함.

- 미국 측이 청구한 금액
- 해당 기간
- 지불 절차

3. 국방부는 1973.4.6. 상기 외무부의 문의 사항에 대해 아래 회신함.

- 미국 측 청구 금액: 20만9,100달러
- 해당 기간
  - 1972.2.7.~6.30. 주로 교육훈련비 소요액
  - 1972.7.1.~9.30. 물자도입 소요액
- 지불 절차
  - 국방부 군수 분야 부서가 도입 물자의 수령 확인을 재정 분야 부서에 송부
  - 군사지원 및 잉여 방위물자 예치금 내규에 따라 처리

미국 FMS 차관에 의한 대여함정 기간연장 및 구매

| 73-040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Re-29 / 10 / 1~63(63p)

1. 국방부는 1973.7.7. 외무부에 미국 정부가 함정의 대여를 지양하고 판매 정책으로 변경하고 있음에 따라 대여협정에 따른 대여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구매하는 협정 체결이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해군 대여함정 현황
  - 총 38척
  - 경비함 14척, 상륙함 15척, 연안 소해함 MSCO 3척, 기타 지원함 6척
- 연차별 구입 함정 척수: 1974년 2척, 1975년 13척, 1976년 19척, 1977년 3척

2. 외무부 방교국은 1973.8.27. 미주국에 '한 · 미 간의 미국함정 대여연장 협정'이 1973.8.18.자로 아래와 같이 발효되었음을 통보함.

- 미국 측 각서 일자: 1973.4.27.
- 한국 측 회답각서 일자: 1973.8.18.
- 조약번호: 제485호

3. 외무부 북미2과장은 1973.10.16. 국방부 및 국립지질연구소 관계자와 양 기관이 계획 중인 대여함정의 구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실무 대책회의를 개최함.

- 외무부는 대여함정 현황, 구매 관련 제반 자료 및 구체적인 교섭 사항 등을 요청
- 국방부는 연차적 구매 계획 및 희망 가격 제시
- 국립지질연구소는 보조예인선 구매와 관련한 구입 희망 가격 등 제시

4. 외무부는 1973.11.17. 소상영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미국의 FMS(Foreign Military Sales) 절차에 따라 국방부가 미국으로부터 2척의 함정을 구매, 인수하는 행사 시 서명 당사자로 임명하는 한편 동 총영사에게 함정 인수식 참석 및 인수증 서명을 지시함.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는 12.4. 및 12.5. 미 구축함 2척을 정식 인수하여 인수증에 서명했음을 보고하고, 12.21. 동 인수증 및 관련 사진을 송부함.
- 외무부는 12.28. 상기 군함 2척 인수증 사본 및 관련 사진을 국방부에 송부함.

한 · 미국간의 주월남한국군 추가경비 청산문제

| 73-0410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Re-20 / 7 / 1~29(29p)

1. 외무부는 1972.12.11. 국방부에 한 · 미 간 1971년도 주월남 한국군 추가경비 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통보하고, 관련 의견 회신을 요청함.

❋ 주미대사를 통해 1971년도 순 추가경비 미정산액의 조속한 지불을 미국 정부당국에 재차 촉구함.
❋ 미국 국방성은 동 경비 상당의 미군 잉여 장비를 한국군에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함.

2. 국방부는 1973.2.7. 외무부에 추가경비 청산 문제에 관해 아래 의견을 회신함.

❋ 잉여 장비는 미 의회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현대화 계획 범위 내에서 제공됨에 따라 명목상 상환시에도 실질적으로는 청산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한 · 미 양국 군사실무자회의에서 동 대치상환 방식에 대한 협의를 유보함.
❋ 당초 방침대로 상환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요망함.

3. 국방부는 1973.3.24. 외무부에 1971년도 순 추가경비 미청산액 690만 달러를 아래와 같이 해결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음을 통보함.

❋ 주월남 한국군 보유 장비 중 미국 소유 장비로서 Non-LSE(비장기 공급 및 초과 장비: Non-Long Supply and Excess equipment) 해당 품목을 취득 가격의 56%로 계산(약 424만 달러 상당), 한국군에 이양함.
❋ K-ration 약 64만2천 달러 상쇄, 잔액 약 200만 달러 상당은 미8군 재고 탄약 중 한국군 훈련용으로 수령함.

4. 국방부는 1973.3.27. 외무부에 1971년도 주월남 한국군 추가경비 미국 측 부담분 중 미 청산액 처리에 관한 아래 한 · 미 간 양해각서 내용 및 동 양해각서에 명시된 장비 외에 200만 달러 상당의 훈련용 탄약 수령에 합의하였음을 통보함.

❋ 한국은 장비 인수로 미국의 1971년도 지불 채무를 상쇄함.
❋ 동 상쇄액은 한국군 현대화 5개년계획 자금에 계상치 않음.
❋ 미국은 장비의 모든 소유권을 이관하며, 1961년 대외원조법에 따른 10% 적립 요건을 적용치 않음.
❋ 제3국에의 양도를 금지하며, 관세 및 내국세를 면제함.

5. 외무부는 1973.3.30. 상기 한 · 미 간 양해각서 내용을 주미대사에게 통보함.

주한미군 철수(감축) 및 병력 문제

| 73-0411 |

생산연도	1970-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13-125 / 9 / 1~93(93p)

1. 미국 상원의원 및 언론의 1970년 중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관련 발언 및 보도 내용임.

- ❁ 라이딩스 상원의원, 닉슨독트린에 따라 주한미군 1개 사단 철수 주장(4.9.)
- ❁ 뉴욕타임스, 행정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1971년 이후 2~3년간 주한미군의 상당 부분 철군을 검토 중임을 보도(6.12.)
- ❁ 영 상원의원, 주한미군 전원 철수 주장(6.29.)
- ❁ CBS 방송, 포터 주한 미국대사의 주한미군 감축 희망 의사 표명 보도(7.8.)

2. 외무부는 1970.6.25. 주미대사에게 최근 북한이 주한미군 감축설에 편승하여 평화 공세 및 주한미군 철수 선전을 강화하고 있음을 통보하고, 주한미군 감축설이 국민에게 불안을 야기하고 있음에 따라 미국 정부에 대해 동 감축 문제가 재론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할 것을 지시함.

3. 외무부 구미국장은 1970.7.9. 주한 호주대사대리를 면담하여 호주 정부가 미국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연기하도록 가능한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망함.

4. 주미대사대리는 1970.7.21. 주미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의 언급 내용을 아래 보고함.

- ❁ 사토 총리는 7월 초 로저스 장관에게 주한미군 감축 문제 관련 우려를 표명함.
- ❁ 로저스 장관은 한국의 안보에 지장을 주는 규모와 정도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며,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언급함.

5. 외무부는 1970.7.27. 패커드 미 국방차관의 주한미군 철수 관련 기자회견 내용 보고를 지시한바, 주미대사는 7.31. 동 차관의 언급 내용을 아래 보고함.

- ❁ 주한미군 감축은 계획대로 시행함.
- ❁ 주한미군 철수에 따라 한국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한국 측 입장에 동의함.

6. 외무부 구미국장은 1972.11.9. 리처드슨 주한 미대사관 Attache를 면담하고, 주한미군 추가철수 가능성에 대한 미국 정부 및 의회의 입장을 문의한바, 동 직원은 구체적인 추가철군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나 1974년 또는 1975년 여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언급함.

7. 외무부 구미국장은 1973.4.27. 스미스 주한유엔군 및 미군 사령부 참모장을 면담하고, 주한미군 철수 계획 등을 문의한바, 동 참모장은 아래와 같이 언급함.

- 1975년까지 주한미군 철군계획은 없음.
- 현재 1978년도 철군 여부를 검토 중으로 동 시기까지 철군은 없을 것이며, 병력 수준상 약간의 기복이 예상됨.

주한미군 병력 현황

| 73-0412 |

생산연도	1967-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09-39 / 8 / 1~56(56p)

1. 주한미군 사령부가 외무부에 정기적으로 통보한 1967~73년간 주한미군 병력 현황임.

- 동 통계는 SOFA(주둔군지위협정) 제8조1항 및 1967.4.28.자 한·미 합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1967.5월부터 시행된 미군 출입국 현황 통보에 의거하여 외무부가 산출함.
- 주한미군 병력 현황
  - 85,946명(1967.5월), 73,135명(1967년 말), 74,641명(1968년 말), 63,288명(1969년 말), 46,467명(1970년 말), 40,325명(1971년 말), 40,900명(1972년 말), 42,809명(1973년 8월 말)
  - 1971년도 2만 명 철수 완료

2. 주미대사는 1973.3.9. 국무성 담당관이 주한미군 실제 병력 수준에 관해 언급한 사항을 아래 보고함.

- 1973년도 계획에 따른 주한미군 인가병력 수(authorized personnel)는 총 43,000명(육군 34,000, 공군 9,000)
- 1973.1.30. 현재 병력 수는 전출, 휴가 등으로 약 41,000명

3. 외무부는 1973.3.27. 국방부에 업무 참고를 위한 아래 자료를 요청함.

- 주한미군의 1967.1월~73.2월간 월별 병력 현황
- 미국 회계연도별 주한미군 인가병력(FY1966~FY1973)

4. 외무부는 1973년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은 월별 주한미군 병력 수준을 주미대사에게 통보함.

- 8.31. 42,809명
- 12.31. 38,841명

주한미군 철수(감축)

| 73-041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31 / 6 / 1~143(143p)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한 1973년 중 주미대사 보고 및 해외 언론 보도임.

1. 미국의 군사전략에 관한 미 국방성 고위층의 견해 및 전망 보도(3.23.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

- ❋ 주한미군 1개 사단의 2~3년 내 철수계획 등 언급
- ❋ 주미대사는 3.26. 동 보도는 가능성에 불과하며,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 변화가 아님을 보고

2. 주한미군 계속 주둔, 한국군 현대화 계획 수행 및 1973.7월 방한 예정인 리처드슨 국방장관의 기자회견 내용 관련 보도(3.31. 워싱턴포스트)

3. 로저스 국무장관, 1973.7월 방한 시 주한미군 계속 주둔 언급(7.23. 볼티모어 선)

4. 슐레진저 국방장관, 주한미군은 한반도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계속 주둔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남북한회담이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남북한 관계 진전 여부는 1년 또는 1년 반 내에 판명될 것임을 언급(8.26. UPI)

5. 미 육군참모차장, 주한 미지상군을 1974 회계연도 인가 수준까지 증강할 계획임을 언급(10.4. 합동통신)

6. 주미대사, 1973.10.5.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예산 심의 중 국방성 인사관리국장의 언급 내용 보고

- ❋ 주한미군 수의 증가는 1972~74년간 병력 인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 ❋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약과 주한미군의 인가병력 수준은 불변임.
- ❋ 미국은 닉슨독트린에 의하여 공약을 준수하고 맹방의 방어에 협력할 것이나, 맹방의 방어를 전담하지는 않을 것임.

7. 미 국방성관리,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미군의 추가 철수 잠정 중지 언급(10.5. 워싱턴포스트)

8. 월남 휴전 및 긴장 완화에도 불구하고 4만2천 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 중으로 키신저 국무장관은 향후 5~10년 내 아시아 주둔군을 상당수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바, 미 의회의 결의는 여사한 감군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10.11.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

9. 서울에서 1973.9.12.~13. 개최된 한 · 미 각료회의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1975년부터 철수 예정이며, 주한 미공군도 1970년대 후반에는 철수할 것을 검토 중(10.1. 동경신문)

10. 중국(구 중공)은 미군의 아시아 주둔을 희망(10.17. AFP)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각료이사회

| 73-041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31 / 7 / 1~31(31p)

1. 주미대사는 1973.6.26. 코펜하겐에서 6.14.~15. 개최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각료회의 공동성명서 요지를 아래 보고함.

❋ NATO 통합 방위계획 참가국 각료들은 상호균형감군 예비회담 개최에 만족 표명, 각국의 일방적인 감군은 협상 결과를 저해할 것임을 재확인

❋ 미 · 소 간 전략 공격무기 제한 협상 추진 평가

❋ 동 · 서독 간 관계 개선 희망

❋ 베를린의 지위 문제와 관련하여 1971.9.3.자 4개국협정의 엄격한 준수가 유럽의 지속적인 화해 및 안정의 조건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 일치

2. 외무부 구아국은 1973.12.10.~11. 브뤼셀에서 개최된 NATO 외상회의 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 15개 전 회원국 외상 참석

❋ 토의 의제

- 중동 문제: 석유 문제 대책
- 동맹 관계: 미국과 구주와의 관계,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및 MBFR(상호균형감군회의)

❋ 공동성명 요지

- '대서양관계 선언' 합의에 관한 실질적 진전 및 동맹국 간의 유대 재확인, 긴밀한 협력 계속 -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안보리 결의 사항 지지 재확인, 동 · 서독의 유엔 동시가입 환영, 비엔나 감군회의에서 NATO 측이 제안한 동일 수준으로의 감군 원칙 수락 촉구

❋ 평가

- 키신저 국무장관은 취임 후 최초로 구주와의 공식 회담에 참석하여 중동전 관련 이견을 노정한 미국과 구주 관계를 개선하고, 결속 강화의 계기를 마련
- 미국과 구주가 공동운명체로서 상호 협력 및 동맹 유지의 필요성 확인, 동맹 관계 악화 방지
- 구주 제국은 중동 문제 관련 안보리 결의 사항 준수를 재확인함으로써 미국의 중동정책에 대한 전폭적 지지에는 유보 입장 표명
- NATO군과 미군의 현상 유지, 미군 주둔 경비의 분담, 프랑스의 NATO 방위위원회 복귀 가능성 등 동맹체제 강화를 위한 성과 달성

❋ 전망

- 미국은 신대서양헌장 구상에 따른 NATO와의 계속적인 정치협력 강화 추진 전망
- NATO 창립 25주년 계기 닉슨 대통령의 1974년 구주 방문 실현 시 '미국-구주관계' 선언 발표 예상
- NATO 제국은 EC(구주공동체)를 중심으로 향후 대미 교섭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

❋ 참고 사항

- EC 정상회담(12.14.~15. 코펜하겐) 폐막성명 요지
- EC 9개국 외상회의의 중동 문제 결의안 요지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 73-041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북미2과
MF번호	G-31 / 8 / 1~88(88p)

1. 주핀란드통상대표부는 1973년 중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회담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 예비회담의 1.15. 재개에 따른 동 예비회담 진행 경과, 분과위원회 의제 및 각국의 제안 내용

❁ 예비회담 참석 각국 대표의 6.8.자 구주안보회의 개최에 관한 아래 내용의 최종 권고 채택

- 구주안보회의의 조직, 의제 및 토의 위임 사항
- 참가국 자격, 일자, 장소, 의사규칙 및 재정 문제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
- 구주안보회의 개최 일정
  - 제1단계 회의: 1973.7.3. 헬싱키 개최, 외상 참석
  - 제2단계 회의: 제1단계 회의에서 일정 결정, 제네바 개최, 실무자급 참석
  - 제3단계 회의: 제2단계 회의에서 결정, 헬싱키 개최, 참가 자격은 2단계 회의 종료 전 결정

2. 제1단계 회의 개최에 관한 언론 보도 내용임.

❁ 헬싱키에서 1973.7.3.~7. 외상회담(35개국 외상 참가) 개최, 7.7. 공동성명을 발표

❁ 주요 의제

-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
- 인권 존중, 기본적 자유 및 군대 이동에 관한 각국의 정보 교환
- 무역 및 기타 협력 문제

❁ 공동성명 요지

- 구주안보협력회의 진행 절차, 실무위원회 의제 및 지시사항, 최종 건의사항 채택
- 기 제출 또는 향후 제출 예정인 각국의 제안사항에 대한 검토 및 초안 작성을 위해 9.18. 제네바에서 제2단계 회의 개최
- 참가국 대표는 2단계 회의 준비를 위해 8.29. 제네바에서 1차 회합 개최

3. 외무부 특수지역과는 1973.8.2. 크리미아에서 7.30.~31. 개최된 동구 제국 정상회담 결과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 소련, 불가리아 등 8개국 정상 참석

❁ 의제

- 구주안보협력회의, 인도차이나 및 중동 문제
- 브레즈네프의 독일, 미국 및 프랑스 방문 설명

❁ 공동성명을 통해 1973년 중 동 · 서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함에 따라 구주 안보 문제 관련 조기 협상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시아 안보 문제도 본격 대두될 전망

소련의 아시아 집단안보 구상

| 73-0416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북미2과/특수지역과
MF번호	G-31 / 9 / 1~58(58p)

1. 외무부 정보문화국이 1972년 작성한 소련의 아시아 집단안보체제구상 분석 자료임.

- 제안 경위: 1969.6.7. 세계공산당대회에서 브레즈네프 서기장의 공식 제안 후 코시긴 수상 기자회견 등 각종 계기에 지속적으로 제안함.
- 제안 내용: 특정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체제가 아닌 지역 내 각국 간 불가침 및 평화협력을 목표로 아래 원칙을 지향함.
  - 국가 관계에서 무력 행사 포기, 주권 존중 및 국경 불가침
  -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에 입각한 광범위한 협력
- 제안 목표: '힘의 공백'에 편승한 소련의 진출 도모, 중국(구 중공) 포위를 통한 아시아 제국의 소련 영향권으로의 집결 및 기존 미국 · 영국 중심의 아시아 체제의 해체 내지 대항세력 형성을 목표로 함.
- 전망: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나, 아시아 제국이 급변하는 지역 정세에 적합한 안보체제의 출현을 희망할 경우 소련의 구상 수용 가능성이 있음.

2. 소련의 아시아 집단안보 구상 실현을 촉구하는 소련 Far East지 1972.10.3.자 논문 요지임.

- 소련은 아시아 제국의 평화와 안전보장 관련 해결책 모색을 위해 타국과 협력을 추진 중임.
- 소련의 안보체제 창설은 지역적 우호관계를 기초로 발전 가능함.
- 일본 · 소련 관계 발전 및 강화는 아시아 전체의 선린관계 강화와 집단안보체제 확립에 공헌할 것임.

3. 프라우다지는 1973.4월 유엔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총회에 관한 논평을 통해 소련은 동 위원회를 국제기구로 간주하며, 아시아 제국은 소련 입장을 지지함을 강조함.

4. 프라우다지의 1973.8월 아시아 집단안보에 관한 사설 내용임.

- 소련은 평화 공존 및 선린관계의 원칙이 아시아 제국 간 관계에 항구적 기초가 되도록 아시아 집단안보체제를 추진 중임.
- 무력 행사 포기, 국경 및 주권 불가침 존중, 국내 문제 불간섭 등 7개 원칙에 입각함.
- 아시아 집단안보체제 참가국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함.

5. 모스크바 방송은 1973.12.3. 아시아의 집단안보체제는 세계 평화의 관심사라는 요지의 해설을 보도하고, 집단안보체제의 당위성을 강조함.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일반

| 73-041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Re-7-1 / 2 / 1~41(41p)

1. 외무부는 1973.3.20. 내무부, 국방부 등 9개 관계부처에 SOFA(주둔군지위협정) 시행을 위한 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아래 공문을 송부함.

- SOFA 협정의 1967.2.9. 발효 이후 동 협정 시행을 위한 한 · 미 합동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월 1회 개최 중임.
- 동 회의는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한 · 미 양국 정부 및 군 · 민 간 제반 문제 협의를 통해 한국의 이익 보호, 한 · 미 양국 간 유대 강화 및 안보에 기여하고 있음.
- 동 회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2. 외무부 안보과는 SOFA 운영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작성함.

- 주한미군의 군납 계약
- 미군 당국의 한국인 고용
- 형사재판권: 검찰의 상소, 유신헌법 제53조와 SOFA 제22조와의 관계
- 군 · 민 관계 및 기지촌 정화
- 암거래 및 밀수 단속
- 미군에 의한 한국인 부상자 치료
- 미군의 출입국 사항 통보

3. 외무부 북미2과 담당관은 SOFA 운영 실태 조사차 1973.11.12.~26. 일본, 필리핀, 대만(구 자유중국)을 출장하여 아래 보고서를 제출함.

- 관찰 보고
  - 임시재판권의 실제적인 행사는 각국이 정치적 고려보다 법률적 측면에서 엄격히 적용함.
  - 미군의 구매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방임적인 입장임.
  - 군 · 민 관계는 일본을 제외하고 지방 당국에서 해결토록 조치함.
  - 일본만 유일하게 SOFA 협정 제반 규정에 만족하고 있음.
- 일본 외무성 안전보장과, 필리핀 외무성 조약과, 대만 외교부 북미국 담당관과의 아래 사항에 대한 면담 내용
  - 미군 군납계약, 미군 당국에 의한 현지인 고용, 형사재판권, 군 · 민 관계 및 암거래, 자국민 부상자 입원 문제, 미군 출입국 상황 보고
  - SOFA 협정 운영 및 주요 관련 현안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1차

| 73-041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12-38 / 6 / 1~195(195p)

1. 외무부는 1973.1.8. 법무부, 재무부, 국방부, 상공부, 교통부와 노동청에 1.18. 개최 예정인 제81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 · 미 합동위원회 회의 참석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73.1.18. 제81차 한 · 미 합동위원회 개최 후 채택된 아래 공동발표문을 발표함.

- 합동위원회는 1.18. 제81차 회의에서 주한미군의 구역 취득 및 해제에 관한 시설구역 분과위의 건의 3건을 승인하고, 시설구역 분과위에 신규 과제 9건, 형사재판 분과위에 신규 과제 1건을 회부함.
- 합동위원회는 공동 안보와 양 국민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발생 예방을 위해 오산 공군기지 새 진입로와 공사 보급로 교차 주변지역 반경 300미터 주변 상가업소를 미군 출입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데 합의함.
- 미국대표 스미스 중장이 본회의를 주재하였으며, 1명의 신규 미국 초청계약자를 지명하는 각서를 설명하고, 김동휘 한국대표가 동 초청계약자 지명이 합동위원회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확인함.
- SOFA 합동위원회 차기 회의는 한국대표 주재로 2.22. 개최 예정임.

3. 외무부는 1973.2.8. 동 SOFA 제81차 한 · 미 합동위원회 회의록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송부하고, 동 결의 사항 중 각 부처 소관 사항을 시행하여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2-83차

| 73-041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12-39 / 1 / 1~466(466p)

1. 제82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 · 미 합동위원회가 1973.3.22. 중앙청에서 개최됨.

- 대표단: 한국 측 김동휘 수석대표, 미국 측 스미스 수석대표
- 토의 의제
  - 설비 및 지역위에 과제 회부 및 제안, 주한미군의 보급품 전환 문제, 주한미군 부속건물, 제13차 군민관계 소위원회 보고서 검토, 미국 측 초청계약자 지명 및 취소 각서
  - SOFA 협정 이행 문제, 차기 회의 일정
- 제82차 한 · 미 합동위원회 공동발표문 요지
  - 한국 측 수석대표 주재로 개최되어 군민관계 임시 분과위 제13차 보고서를 접수하고, 승인함.
  - 임시분과위는 4개 주요 미군 기지 및 주변 주민 거주 지역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한 출장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 8개월간 한국 기지촌의 환경에 현저한 개선이 있었음을 확인함.
- 합동위원회는 시설구역 분과위의 건의 15건을 승인하고, 동 분과위에 22건의 신규 과제를 회부함.
- 미국 측 수석대표는 합동위원회 절차에 따라 1명의 미군 초청계약자를 지명하고, 2명의 계약자 지명을 취소함.
- 차기 회의는 4.26. 미군 SOFA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임.
- 외무부는 4.13. 관계부처에 제82차 합동위원회 회의록을 송부함.

2. 제83차 SOFA 한 · 미 합동위원회가 1973.4.26. 미군 SOFA 회의실에서 개최됨.

- 대표단: 한국 측 김동휘 수석대표, 미국 측 스미스 수석대표
- 제83차 합동위원회 공동발표문 요지
  - 시설구역 분과위에 14건의 신규 과제를 부여하고, 동 분과위가 제출한 19건의 건의를 승인하는 한편 재무 분과위에 1건의 신규 과제를 회부함.
  - 군민관계 임시 분과위의 도난 및 암거래 조사반이 작성한 3건의 새로운 건의를 포함하는 특별 보고서를 본회의 회의록에 포함하는 데 합의함.
  - 미국 측 수석대표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합동위원회 절차에 따라 2명의 신규 초청계약자 지명 각서 및 2명의 초청계약자 지명 취소 각서에 서명함.
  - 차기 회의는 5.24. 한국 측 수석대표 주재로 중앙청에서 개최 예정임.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4-85차

| 73-042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12-39 / 2 / 1~460(460p)

1. 제84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 · 미 합동위원회가 1973.5.24. 중앙청에서 개최됨.

- 대표단: 한국 측 김동휘 수석대표, 미국 측 스미스 수석대표
- 제84차 한 · 미 합동위원회 공동발표문 요지
  - 군민관계 임시 분과위의 제14차 보고서를 접수하여 승인함.
  - 임시 분과위는 2개 주요 미군 기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합동 현지답사 보고서를 통해 기지촌의 치안 및 환경 조건 개선에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함.
  - 시설구역 분과위의 건의 6건을 승인하고, 공급 분과위의 각서 5건을 접수하는 한편 시설구역 분과위에 신규 과제 15건, 재무 분과위에 신규 과제 1건을 회부함.
  - 미국 측 수석대표는 합동위원회 절차에 따라 2건의 계약을 위한 1명의 미국 초청계약자를 지명함.
  - 김동휘 한국 측 수석대표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차기 회의는 6.21. 미군 SOFA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임.

2. 제85차 SOFA 한 · 미 합동위원회가 1973.6.21. 미군 SOFA 회의실에서 개최됨.

- 대표단: 한국 측 김동휘 수석대표, 미국 측 스미스 수석대표
- 제85차 한 · 미 합동위원회 공동발표문 요지
  - 군민관계 임시 분과위의 제15차 보고서를 접수하여 승인함.
  - 미군 기지 및 주변 한국인 거주 지역에 대한 현지 합동 답사 후 작성된 보고서를 통해 동 지역 내 군민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 조치를 건의함.
  - 시설구역 분과위의 건의 11건을 승인하는 한편 동 분과위에 신규 과제 7건, 상무 분과위에 신규 과제 1건을 회부함.
  - 미국 측 수석대표는 합동위원회 절차에 따라 3명의 미국 초청계약자를 지명함.
  - 차기 회의는 7.26. 중앙청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 주재로 개최 예정임.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6차

| 73-042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12-39 / 3 / 1~219(219p)

제86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 · 미 합동위원회가 1973.7.26. 중앙청에서 개최됨.

1. 대표단: 한국 측 김종경 교체수석대표, 미국 측 샤프 교체수석대표

2. 토의 의제

- 시설구역 분과위에 12건의 과제 할당, 동 분과위에 14건을 신규 건의(미국 측 9건, 한국 측 5건)
- 교통 분과위에 4건 건의
- 소위원회 절차 변경
- 미국 측 초청계약자 지명 각서
- SOFA 이행을 위한 미국 측의 한국 정부에 대한 각서
- 차기 회의 개최 일자

3. 제86차 한 · 미 합동위원회 공동발표문 요지

- 주한미군, 군속 및 초청계약자의 사유 차량 등록 및 면허 절차에 관한 건의 2건을 포함한 교통 분과위의 건의 4건을 승인함.
- 주한미군의 구역 취득 및 해제에 관한 시설구역 분과위의 건의 14건을 승인하고, 동 분과위에 신규 과제 12건을 회부함.
- 김종경 한국 교체수석대표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차기 회의는 8.30. 미군 SOFA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임.

4. 외무부는 1973.8.31.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제86차 한 · 미 합동위원회 회의록을 송부하고, 각 부처 소관 사항 이행을 요청함.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7차

| 73-042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12-39 / 4 / 1~233(233p)

1. 외무부는 1973.8.22.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제87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 · 미 합동위원회 회의가 8.30. 개최될 예정으로 동 회의는 10.1.자 예편 예정인 미국 측 스미스 8군 참모장이 주재하는 최종 회의가 될 것임을 통보함.

2. 제87차 SOFA 합동위원회가 1973.8.30. 미8군 SOFA 회의실에서 개최됨.

- 대표단: 한국 측 김동휘 수석대표, 미국 측 스미스 수석대표
- 토의 의제
  - 시설구역 위원회에 12건의 과제 할당, 동 위원회에 13건 신규 건의(한국 측 1건, 미국 측 12건)
  - 한국 내 미군 계약 문제
  - 미국 측의 초청계약자 지정 각서
  - SOFA 이행을 위한 미국 측의 한국 정부에 대한 각서
  - 차기 회의 개최 일정 등
- 제87차 합동위원회 공동발표문 요지
  - 주한미군에 의한 구역의 취득 및 해제에 관한 시설구역 분과위의 13개 건의를 승인하고, 동 분과위에 12건의 신규 과제를 회부함.
  - 김동휘 한국 측 수석대표는 로버트 스미스 중장의 1969.5월 이후 합동위원회 미국 측 수석대표로서 SOFA 협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현저히 기여해 온 공헌을 평가함.
- 스미스 중장은 주한 유엔군사령부 및 주한 미군참모장으로 52개월간 재임 중 합동위원회 미국 측 수석대표로 50회의 회의에 참석함.
- 차기 회의는 9.27. 중앙청에서 개최 예정임.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8차

| 73-042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12-39 / 5 / 1~191(191p)

제88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 · 미 합동위원회가 1973.10.4. 중앙청 회의실에서 개최됨.

1. 대표단: 한국 측 김동휘 수석대표, 미국 측 존 알 머피 수석대표

2. 토의 의제

- 시설구역 위원회에 12건의 과제 할당(미국 측 제의 8건, 한국 측 제의 4건)
- 재무 위원회에 과제 할당
- 시설구역 위원회에 대한 16건 신규 건의(한국 측 3건, 미국 측 13건)
- 재무 위원회 및 상무 위원회에 대한 건의
- 미국 측의 초청계약자 지정 각서
- SOFA 이행을 위한 미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각서
- 차기 회의 개최 일정

3. 제88차 한미 합동위원회 공동발표문 요지

- 주한미군에 의한 구역 취득 및 해제에 관한 16건의 시설구역 분과위 건의를 승인함.
- 시설구역 분과위에 12건, 재무 분과위에 1건의 신규 과제를 부여함.
- 미군 당국의 비세출자금기관 품목에 관한 주한미군 당국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통보 및 면세 물품 처분 절차에 관한 2건의 재무 분과위 건의를 승인함.
- 김동휘 한국 측 수석대표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한국 측 수석대표는 신임 미국 측 머피 수석대표에 대한 환영을 표명함.
- 차기 1973.11.1. 미8군 SOFA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임.

4. 외무부는 1973.10.30.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제88차 한미 합동위원회 회의록을 송부하고, 각 부처 소관 사항에 대한 이행을 요청함.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9-90차

| 73-042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12-39 / 6 / 1~369(369p)

1. 제89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 · 미 합동위원회가 1973.11.1. 주한미군 SOFA 회의실에서 개최됨.

- 대표단: 한국 측 김동휘 수석대표, 미국 측 머피 수석대표
- 제89차 합동위원회 공동발표문 요지
  - 주한미군에 의한 구역 취득 및 해제에 관한 시설구역 분과위의 4건의 건의를 승인함.
  - 시설구역 분과위에 9건, 노무 분과위에 1건의 신규 과제를 회부함.
  - 군민관계 임시 분과위의 최근 오산 공군기지 및 송탄읍 지역 현지답사에 관한 제16차 보고서를 승인함.
- 미국 측 수석대표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차기 회의는 1973.12.13. 중앙청에서 개최 예정임.

2. 제90차 SOFA 한 · 미 합동위원회 회의가 1973.12.13. 중앙청에서 개최됨.

- 대표단: 한국 측 김동휘 수석대표, 미국 측 머피 수석대표
- 제90차 합동위원회 공동발표문 요지
  - 한국 측 수석대표 주재로 1973년도 최종 회의가 개최된바, 합동위원회가 1973년 중 한국 내 주한미군의 계약, 주한미군의 사유 차량 등록 개정 절차 및 다수 시설구역의 공여 및 반환 등 중요 조치를 포함하여 12개 분과위로부터의 약 150건의 건의를 승인한 바 있음을 확인함.
  - 주한미군에 의한 구역 취득 및 해제에 관한 시설구역 분과위의 15건의 건의를 승인하는 한편 동 분과위에 21건 및 재무 분과위에 2건의 신규 과제를 회부함.
  - 한국 내 주한미군의 계약에 관한 상무 분과위의 건의, 한국 헌법 및 SOFA 제22조에 관한 형사재판 분과위의 건의를 승인함.
  - 한국 내 주한미군의 내부 거래를 위해 미 군표를 달러로 대체키로 한 최근의 합동위원회 합의를 회의록에 포함함.
  - 차기 합동위원회는 1974.1.24. 미군 SOFA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임.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 73-0425 |

생산연도	1967-1973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2-35 / 6 / 1~308(308p)

1.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 · 미 합동위원회는 동 협정 제28조에 의거하여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합동위원회는 상설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 관계부처는 수시로 동 합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을 위촉 및 해촉함.

- 위촉 및 해촉 절차
  - 각 부처 공문으로 외무부에 통보
  - 외무부(북미2과)는 승인 여부를 각 부처에 통보하고, 동시에 한 · 미 합동위원회 미국 측 사무국에도 통보
- 위촉 및 해촉 시기: 수시

2. 한 · 미 양측은 1967.2.7. 합동위원회 운영 절차에 합의하고, 1968.1.5. 합동위원회 및 아래 산하분과위원회 설치를 발표함.

- 시설구역, 형사재판권, 민사재판권, 노무, 재무, 인사, 재정, 상무 및 교통 분과위원회
- 외무부는 1968.1.20. 공공용역 분과위를 신설하고, 위원을 위촉함.

3. 외무부는 1970.3.27.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합동위원회 산하 각 분과위원회 소속 부처별 분과위원 및 경질위원 명단 통보를 요청함.

4. 외무부는 1971.9.7. 군민관계 임시 분과위를 신설함.

- 동 분과위는 회의 및 현지 시찰을 통해 기지촌 정화 사업에 성과를 달성함.
- 외무부는 1973.5.10. 보건사회부에 기지촌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군의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의 남용과 불법 거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마약관계 담당관을 동 분과위원으로 임명토록 요청함.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 위원회 - 한 · 미국 친선협회

| 73-0426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2-41 / 10 / 1~163(163p)

1. 내무부는 1972.5.8. 외무부에 1.28. 제70차 SOFA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한 '한미 친선위원회 설치' 에 관한 아래 내무부 시안과 미국 측의 친선위원회 규정에 관한 조정 의견을 외무부로 송부하고, 군민관계 임시 분과위 의제로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목적, 설치 부서, 명칭, 기능, 구성, 위원의 사퇴
- 위원장 등의 직무, 절차, 위원회 해산, 참고인의 위원회 출석, 보고

2. 내무부 관리과장은 1973.6.5. 군민관계 분과위에서 한미 친선협의회 설치규정 제정 경과를 아래 보고함.

- 제정 경위
  - 현재 각 기지촌 지역에 설치된 지역 자문위원회가 한 · 미 간 친선을 저해하고 불화를 야기하는 다수 사례 발생
  - 군민관계 임시 분과위는 1971.11.19. 다수의 각 지역 문제 자문위원회를 단일 '한미 친선협의회' 로 통합할 것을 건의
  - 제70차 한미 합동위원회는 1972.1.28. '한미 친선협의회' 설치에 합의
  - 한국 측 의견을 9.1. 미국 측에 통보
  - 미국 측의 1973.3월 건의에 대해 한국 측은 4.11. 수정안 제의
  - 양측이 5.14. 최종 합의
- 미8군 예규 550-5호 검토, 한미친선협의회 설치규정(안), 동 협의회 계층별 구성도(안), 운영요강(안) 보고

3. 내무부는 1973.6.22. 외무부에 제70차 한 · 미 합동위원회에서 결의한 '한미 친선협의회' 설치 권고에 따라 협의회 설치조례 규칙 및 운영요강을 작성하는 한편 실시 대상 기관을 지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시하였음을 통보하는 한편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 분과위를 한미 친선협의회로 개정 또는 신 분과위를 설치하는 데 대한 협조를 요청함.

4. 내무부는 1973년 서울시 3개 등 9개 시도 총 68개 친선협의회 운영에 관한 한미 친선협의회 총괄표를 작성함.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 위원회 - 주한미군 도난 및 암거래 방지

| 73-0427 |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12-41 / 8 / 1~150(150p)

1. 재무부는 1970.12.11. 외무부에 주한미군 PX 등에서 양담배 부정 유출이 심각함을 통보하고, 국가 재정 확보 및 전매 권익 옹호를 위해 SOFA(주둔군지위협정)를 통해 미국 측에 시정토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2. 법무부는 1971.2.3. 외무부에 주한미군 및 군속에 의한 밀수 행위와 PX 물품 유출 행위가 빈번함을 설명하고, 한 · 미 합동위원회에서 동 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함.

3. 관세청은 1971.3.5. 외무부에 주한미군에 의한 밀수사범 검거 실적을 통보하는 한편 재무부는 3.11. 외무부에 밀수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요청함.

4. SOFA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분과위 거래조사반회의가 1972.11.30. 외무부에서 개최되어 한 · 미 양측은 1973.1.15. 이전 양국 법 집행 당국자 간 회담 개최 및 이후 매월 밀수 방지 개선 조치 협의에 합의함.

5. 외무부는 1973.1.27. 내무부 등 관계부처에 SOFA 합동위원회 스미스 미국 측 수석대표가 1.16.자 공한을 통해 주한미군 면세 용품이 지속적으로 도난, 처분됨을 지적하고 도난품 및 부정거래 혐의자 수사 등 3개 항을 제안해 왔음을 통보하는 한편 동 미국 측 제의에 따른 필요 조치 이행 결과 통보를 요청함.

- 국방부는 2.2. 5개 부처 합동으로 군수품 암시장 거래를 강력히 단속 중임을 회신함.
- 법무부는 2.3. 검찰총장에게 미 군수물자 관련 사범에 대한 엄단을 지시함.
- 내무부는 2.7. 미 정부 재산 도난 사건은 전국 경찰에서 수사 중임을 회신하는 한편 개인 용품 불법 유출은 미국 측과 협조하여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6. 내무부는 1973.6.12. 외무부에 미국인 개인 재산의 도난 및 암거래 관련 미국 측 3개 제안 내용에 대한 대안을 통보하고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6.22. 아래 의견을 회신함.

- 민간인 및 부양가족의 도난 문제를 일반 도난 사건에 준해 처리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SOFA 제25조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 · 미 합동대책반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함.
- 도난 사건에 한해 즉각 조치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나, 미군 당국에 의한 식별 확인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7. 한 · 미 양측은 1973.8.28. 도난 및 암거래 방지 실무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협의함.

- 한국 측은 3개 미국 측 제의에 대해 한국 경찰 당국의 독자적 조치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수락을 유보함.
- 한국 측은 미국 측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경우 현 합동수사반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대안을 제시함.

SOFA 주한미군의 군표 사용금지

| 73-0428 |

생산연도	1968-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12-41 / 13 / 1~331(331p)

1. 외무부는 SOFA(주둔군지위협정) 제19조 합의의 양해사항으로 사용되던 군표(Military Payment Certificate)의 폐지 문제에 관해 미국 측과 1968~71년 중 아래와 같이 교섭함.

- ❋ 외무부는 1968.5.3. 미군이 주둔하는 각국의 군표 제도에 관해 조사
- ❋ 재무부 주관으로 1968.7.3. 군표 사용 폐지에 관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 ❋ 외무부는 1968.10.14. 주한 미국대사관에 아래 각서 전달
  - 한국의 안정된 현 정세를 고려하여 군표 사용 제도 폐지를 제의
  - 미국 측이 동의할 경우 SOFA 합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절차 문제 협의
- ❋ 미국 측은 1969.5.6.~7.8. 군표 대신 달러 사용 시 달러화의 불법 거래 조장 및 달러화 유출로 인한 수지 불균형을 이유로 반대하는 한편 양국 관계당국의 군표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집행 조치 강화를 제의
- ❋ 1969.7월 이후 교섭 교착
- ❋ 외무부는 1971.10.28. 주한 미국대사관과 군표 폐지를 위한 교섭을 재개

2. 외무부는 1973.5월 미군 군표 사용 폐지 문제에 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 ❋ 폐지 불가능 시 대안 검토: 특정 지역에 군표 교환소 설치 · 운영, 한국이 압수 보관 중인 군표의 보상 인정, 군표 부정유출에 대한 단속 및 계몽 강화
- ❋ 폐지 절차 및 방법: 실무 절차는 SOFA 합동위원회에서 협의, 폐지 방법은 SOFA 관계조문 삭제 또는 미국 측이 군표 사용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등 다양한 방법 검토

3. 한국은행은 1973.5.1. 외무부에 동 은행이 보관 중인 약 4만5천 달러 상당의 군표 처분을 위한 미국과의 협의 결과 및 전망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7.5. 압수 군표는 불법 취득 또는 암달러상으로부터 압수된 것으로서 동 군표의 불법 소지자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다는 미국 측의 입장을 전달함.

4. 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대표는 1973.10.29. 외무부에 대한 서한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 재정 및 금융 안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군표 사용 폐지를 통보해 온바, 외무부는 11.5. SOFA 합동위원회 한국 측 대표 명의로 동의 회신을 발송함.

5. 외무부는 1973.11.19. 주한미군 군표 폐지에 관한 아래 보도자료를 발표함.

- ❋ SOFA 합동위원회 양측 대표는 주한미군의 미합중국 본토 화폐 사용 승인에 합의하였으며, 동 조치는 즉시 발효함.
- ❋ 현재 사용 중인 군표를 미합중국 화폐로 교환하며, 미국 화폐가 주한 미군 시설 내 모든 거래의 공적 지불 수단으로 사용될 것임.

SOFA 주한미군 군납계약 문제

| 73-0429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12-42 / 2 / 1~316(316p)

1. 주한미군사령부 스미스 참모장은 1972.8.2. 상공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10.1.자로 일부 군납계약 시 원화 표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방침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한바, 상공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19. 동 조치에 대해 아래 이유로 반대함을 회신함.

- 원화 표시 계약 시 미래의 물가 변동 예측이 곤란하며, 군납계약의 이원화는 입찰 절차상 혼란을 초래하는 한편 원화 표시 계약은 특혜 미부여로 계약 가격 인상의 문제점이 발생함.
- 외무부는 9.6. 주미대사에게 동 구매방식 변경 경위 파악과 함께 한국에 불리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2. 상공부는 1973.1.31. 외무부에 계란 및 청정채소 군납 관련 대미 교섭단 파견 계획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관련 협조를 요청함.

- 정민길 국제협력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2.5.~3.7. 호놀룰루 및 워싱턴을 방문함.
- 상공부는 3.16. 외무부에 동 군납교섭단의 미국 측과의 군납 증진 협의 내용을 통보하고,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요청함.

3. 상공부는 1973.5.10. 외무부에 SOFA(주둔군지위협정) 상무 분과위 미국 측 대표가 주한미군에 대한 영선업(Facilities Engineering Services) 입찰 자격을 변경 통보해 왔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 옴.

- 5.1. 이후 기존 한미 합작업체에 의한 입찰에서 미국 초청계약자 단독으로도 입찰 참가가 가능토록 변경됨.
- 상공부는 5.9. 동 조치가 SOFA 규정에 따라 양국 정부 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조치임에 따라 미국 측에 이의를 제기함.

4. 외무부는 아래 상공부 대안을 토대로 5월 이후 수차에 걸쳐 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간사와 동 건 해결을 위해 협의한바, 1973.6.4. SOFA 양측 대표는 상무 분과위에 동 건을 정식 의제로 상정키로 합의함.

- 제1안: 현행 합작업체만 허용
- 제2안: 한국 업체 단독 참가도 허용
- 제3안: 동 방침 변경 문제를 SOFA 회의에서 합의 처리

5. SOFA 상무 분과위는 1973.6.12. 영선업을 포함한 군납업 전반에 관한 계약 절차 및 원화 계약 문제 등을 협의한바, 양측 간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미국 측은 7.2. 주한미군의 구매 시 문제점에 관한 서한을 발송함.
- 상공부는 8.6. 동 서한 내용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반박하는 회신을 발송함.

6. 상공부와 미국 측은 1973.9.26. 주한미군의 군납 계약 문제와 관련 아래 협의함.

- 한국 측은 SOFA에 규정된 미국 측의 자유계약권 보장을 위해 선 계약, 후 등록 안을 제시함.
- 미국 측은 계약 후 등록이 계약의 전제 조건일 경우 수락할 수 없음을 밝히고, 아울러 군납촉진법의 폐기를 주장함.

7. 외무부 북미2과장은 1973.10.1. SOFA 상무 분과위 미국 측 간사 면담을 통해 동 분과위에서 양측 대표가 합의한 사실을 지적하는 한편 미군 당국의 자유경쟁 입찰 보장을 위한 상공부의 제반 조치를 설명하고, 양측의 합의문서 작성을 촉구함.

8. 외무부는 1973.11.30. 상공부 및 재무부에 주한미군의 군납계약 절차에 관한 11.23.자 상무 분과위의 건의안이 SOFA 합동위원회 양측 대표에 의해 서명, 승인되었음을 통보함.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임시분과위원회-주한미군내에서의 인종차별 및 분규

| 73-0430 |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12-41 / 17 / 1~117(117p)

주한미군과 한국인 간 1971~73년 중 각종 사건,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 · 미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 분과위의 관련 활동 및 외무부의 조치 사항임.

1. 한국관광휴양업협회는 1971.10.11. 외무부에 대한 공문을 통해 10.2. 동두천 지역에서 발생한 흑인 미군의 불법적인 행위를 통보함.

2. 주미대사는 1971.11.30. 하원 Chisholm 의원실에서 작성한 미국 해외주둔군에 대한 인종차별에 관한 보고서를 송부함.

3. 주호놀룰루총영사는 1971.12.1. 뉴욕에 본부를 둔 '인종평등위원회' Tatum 하와이 사무장에게 한국 주둔 흑인 병사에 대한 차별대우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였음을 보고하고, 12.9. Tatum 사무장의 SOFA 군민관계 임시분과위 참석 희망에 대한 동의 여부를 청훈함.

- ❋ 외무부는 12.4. 동인의 분과위 참석에 동의함을 회신함.
- ❋ 주호놀룰루총영사는 1972.1.24. 동인이 주한미군 측이 동 회의 참석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동 분과위 회의 참석을 포기하였음을 보고함.

4. 외무부는 1972.7.11. 내무부에 미국 측 제공 정보에 따라 기지촌, 이태원 등에서의 한국인과 미8군 병사 간의 7.5. 충돌 사건 관련 자료를 송부함.

5. 외무부는 1972.9.8. 내무부에 미국 측 제공 정보에 따라 부산 텍사스거리에서 발생한 미군 병사 및 한국인 간의 8.29. 충돌 사건 관련 자료를 송부함.

6. 외무부는 1972.12.19. 내무부, 국방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지역 분과위원장으로 Nix 의원이 내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고, 한국인과 미군 간의 충돌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함.

- ❋ 동 의원은 흑인으로 7.9. 평택에서 발생한 미 흑인 병사와 한국인 간의 충돌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측이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한국에 반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
- ❋ 유사한 사건 재발 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7. 외무부는 1973.10.17. 내무부, 법무부, 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경기도 송탄읍 미군 난동 사건과 관련한 SOFA 군민관계 분과위의 사실 조사 및 대책 강구를 위한 동 지역 현장 답사에 소속 위원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며, 외무부 북미2과장이 동 답사에 참가함.

SOFA 주한미군 · 관계자의 사유차량 등록 및 공용차량의 번호판 발급문제

| 73-043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12-42 / 3 / 1~112(112p)

1. 외무부는 1973.1.16. 관세청에 SOFA(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사유차량 등록 문제와 관련한 수입면허에 대해 미군 측이 1971년 말 이전 한국에 반입한 차량 중 세관의 수입연장을 받지 않은 차량은 1972.12.31.까지 수입신고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2천여 대의 차량에 대한 단기간 내 수입신고 시일이 촉박함에 따라 신고 시한을 1973.1월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통보한바, 관세청은 1.18. 동 요청을 감안하여 1973.1.31.까지 수입신고를 연장하도록 조치했음을 회신함.

2. SOFA 한 · 미 합동위원회 제7차 회의는 1973.2.9. 주한미군 및 관계자의 사유차량 허가 및 등록과 관련된 아래 세부 절차에 합의함.

- 번호판 발급 및 재등록
- 군속 사유차량의 등록절차, 수입허가, 안전검사, 보험, 임시번호판 발급, 등록취소, 소유권 이전, 봉인

3. 교통부는 1973.3.19. 외무부에 자동차 등록번호표 및 봉인 제식에 관한 교통부 고시에 의한 차량 등록번호 일제 갱신 조치에 따라 SOFA 차량도 동 조치를 따르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여 동 기간 내 갱신이 가능토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 SOFA 합동위원회 김동휘 한국 측 수석대표는 미국 측 스미스 수석대표에게 3.30. 서한을 통해 교통부 고시에 따른 미군 및 군속 소유 사유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 일제 갱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3.31. 교통부에 SOFA 사유차량의 등록번호 갱신 조치와 관련한 시행상 혼란 방지 및 신속한 갱신 완료를 위해 상세 영문 안내서를 작성하여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바, 교통부는 4.10. 등록번호 일제 갱신에 따른 영문 안내서를 외무부에 송부함.

4. SOFA 합동위원회 Kinney 미국 측 간사는 1973.9.5. 국무총리실에 미국 정부가 소유한 미군 수사당국 차량에 대해 수사 편의상 SOFA 협정에 의거한 미군인, 군속의 사유차량 번호판을 발급해 달라는 교통부 담당과장 앞 서한을 송부해 온바, 상기 서한에 대한 외무부의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음.

- 미국 측 제의는 SOFA 규정상 적용 근거가 없음.
- SOFA 협정과 무관한 한 · 미 관계기관 간 행정 절차를 통해 처리할 문제임.
- 행정 처리상 사유차량 번호판 발급 고려 시 해당 차량 숫자에 관한 사전 협의가 바람직함.

SOFA 주한미군의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사용 단속문제

| 73-043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Re-7-11 / 5 / 1~112(112p)

1. 외무부는 1973.2.14. 주미대사에게 주한미군 일부의 마약 사용 문제에 관한 하원 외교위원회 보고서가 2.13. 제출되었다는 합동통신 보도와 관련하여 동 보고서를 입수하도록 지시한바, 주미대사는 아래 내용의 동 보고서(The U. S. Heroin Problem and Southeast Asia, 1973.1.11. 제출)를 송부함.

- 미국의 국제 마약통제 조직: 국제마약통제위원회, 국무성, 마약 및 의약품국, 관세국, 중앙정보부, 마약정보소
- 아시아 마약 관련 지역 및 국가 현황: 골든트라이앵글, 미얀마(구 버마), 라오스, 태국, 월남, 홍콩, 중국, 일본, 한국
- 미국의 동남아 마약통제 원조계획, 유엔의 약품남용 방지기금, 결론

2. 외무부는 1973.3.8. 내무부 및 보건사회부에 상기 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 주한미군의 마약 취득이 용이하며, 한국 경찰 당국의 마약 거래에 대한 단속이 미미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통보하고 관련 검토 의견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함.

- 내무부의 3.22.자 회신 요지임.
  - 경찰이 기지촌 주변의 범죄 정화를 위해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마약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중임.
  - 기지촌 주변 범죄 정화 3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단속 인원·장비·예산을 매년 보강하는 한편 강력한 단속 활동을 추진 중임.
- 보건사회부의 3.26.자 회신 요지임.
  - 동 보고서는 한국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사실과 상이한바, 피상적이며 객관성이 결여됨.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보건범죄단속반을 통해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의 불법 거래를 강력히 단속 중으로 특히 기지촌 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 중임.
  - 현재 시중에서 미군 및 한국인의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구입은 불가한 실정임.
  - 한국 수사권이 미치지 못하는 미군 영내에서 약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미군 수사기관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수사 협조가 요망됨.
  - 정부는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사법단속 강화와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범죄에 대해 사형의 중형을 가할 수 있도록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마약법 및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을 1973.3.13. 개정 공포함.

주대만(구 중국) 미군 철수문제

| 73-043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G-33 / 11 / 1~9(9p)

1. 주대만(구 자유중국) 대사대리의 1973.2.12. 대만 정세 보고임.

❋ 미국의 대만 주둔군 철수 문제

- 중국시보가 2.12. 뉴욕타임스 기사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장차 대만 주둔 미군 5~6천 명의 병력을 철수하는 대신 F-5 전투기 생산을 지원하는 한편 키신저의 중국 방문 시 동 문제에 관해 중국(구 중공)과 논의 예정임.
- 중국도 미국의 대만과의 공동 방위조약 이행 의지를 이해하고 있음에 따라 동 지원 문제가 순조로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주재 대만 대사의 로저스 미 국무장관 회담 내용

- 중앙통신에 의하면 심경홍 대사는 2.10. 로저스 국무장관을 예방하고 현안 문제를 협의함.
- 심 대사는 키신저의 중국 방문 목적 및 미국의 북경 무역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를 문의한바, 로저스 장관은 언급하지 않음.

2. 미 · 중국 간의 1973.2.28. 상해공동성명서 중 대만 관계 조항 관련 외무부 작성 자료 내용임.

❋ 양국 간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온 분쟁에 관해 검토하고, 중국 측은 관련 입장을 다음과 같이 확인함.

- 대만 문제는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 정상화를 저해하는 결정적 문제임.
- 중국 정부는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
- 대만은 오래전에 모국에 귀속된 중국의 일부 지방임.
- 대만 해방은 어떤 외국도 간섭할 권리가 없는 중국의 국내 문제임.
- 모든 미군 및 군사시설의 대만으로부터의 철수를 요구함.

❋ 미국 입장은 아래와 같음.

- 미국은 하나의 중국 및 대만이 동 일부라는 주장을 인정하고, 동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미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인 자신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 미국은 궁극적으로 대만으로부터 모든 미군과 군사시설을 철수할 예정임.
- 미국은 동 지역의 긴장이 완화 추세에 따라 대만 주둔 미군 및 군사시설을 점차적으로 감축함.

❋ 분석

- 공동성명서에서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을 확인하는 한편 향후 대만 문제에 대한 불간섭 및 대만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잔류 미군 철수를 약속함으로써 미국의 대만에 대한 방위조약이 사실상 무력화됨.
- 동 철수 전제로 긴장 완화를 조건으로 함으로써 가까운 장래 대만이 무력으로 탈환되는 가능성을 저지함.
- 대만 측으로서는 장래 문제에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대만의 국제적 고립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주태국 미군 철수

| 73-0434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33 / 12 / 1~14(14p)

1. 외무부 구미국이 1972.9월 작성한 태국 주둔 미군 병력 및 공군기지에 관한 자료임.

❁ 병력 수

- 32,000명(1971.9월), 48,000명(1972.1월, 최고 수준), 45,000명(1972.9월)

❁ 공군 기지

- Ubon, Udorn, Nakorn Phanom 등 8개 기지

❁ 분석

- 주월남 미군의 감축과 반비례로 태국 주둔 미군 병력 수는 증가 추세를 보임.
- 주월남 미군의 철수는 실제 철수가 아니라 은닉 성격임.

2. 외무부 북미2과가 1973.9.18. 작성한 태국 및 대만(구 자유중국) 주둔 미군의 재배치 현황임.

❁ 미국의 8.15. 캄보디아 폭격 종결에 따라 미국은 동남아 주둔군 일부를 재배치 중임.

❁ 주태국 미군의 재배치

- 해병 항공사단 병력 약 2,100명 및 전폭기 36대를 8.30.~9.2. 일본 이와구니 기지로 원대복귀 조치함.
- 주태국 미 공군 소속 병력 1,510명 및 각종 공군기 70대를 철수함.
- 상기 2차에 걸친 철수에도 불구하고 미군 약 4만 명 및 500대의 군용기가 태국에 계속 주둔함.

❁ 대만 주둔 미군은 9,000명이었으나, 제374 전술 공수부대 약 3,000명의 수개월 내 미 본토 철수 계획에 따라 대만에는 약 6,000명의 병력이 잔류 예정임.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시위원회 관계

| 73-0435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08-34 / 19 / 1~30(30p)

1. 군사정전위원회 1972.1.29.자 통역장교회의 시 북한의 미-북한 특사 간 회담 개최 제의와 관련하여 외무부차관은 주한 미국대사관 Underhill 공사를 아래와 같이 3차례 면담함.

❋ 제1차 면담(2.4.)

- 미국 측은 북한이 주한유엔군 철수 협상을 위해 미-북한 특사회담 개최 및 동 회담 개최 주선을 위한 군사정전위 수석대표 간 비공식 회담을 제의했다고 언급함.

❋ 제2차 면담(2.7.)

- 외무차관은 북한의 제의에 따라 미국이 북한과 비밀대화를 개최함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것임을 언급함.

❋ 제3차 면담(2.11.)

- 미국 측은 2.9. 유엔군 당직 장교를 통해 북한 당직 장교에게 동 북한 측 제안을 거절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북한 측은 2.10. 북한 측이 여사한 제안을 한 바 없음을 이유로 동 메시지를 반송하였음을 언급함.
- 미국 측은 북한이 동 문제를 표면화하여 공표할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으로 예상함.

2. 외무부 방교국장은 1972.10.16.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Ozbudun 사무국장을 면담하고 한국전쟁 당시 북한 포로 사망자 2명의 유골 및 유물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함.

❋ 방교국장은 10.14. 부산 유엔군 묘지 관리인은 한국군이 유엔군 묘지 부근에서 작업 중 북한 포로 사망자 유골 1구 및 다른 1명의 군번 표식을 발견하여 통보해 왔음을 설명함.

❋ UNCURK 사무국장은 동 건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 3가지 방안을 제시함.

- 한국 측이 남북적십자 본회의 시 이산가족찾기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측에 인도
- 유엔군사령부를 경유하여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인도
- 중립국 휴전감시위원회 주선으로 동 사무국장이 북한 측에 인도

❋ 외무부 구미국은 11.1. 방교국에 상기 방안 중 현 단계에서 용이하고, 유엔군사령부의 존속 필요성 제고 및 기능 강화 등 부수적 효과를 감안하여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인도 방안을 채택하고 국방부 및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하여 조치키로 결정했음을 통보함.

3. 외무부 미주국장은 1973.3.9. 중립국 감시위원회 피터스 참사관을 아래와 같이 면담함.

❋ 미주국장은 최근 북구 제국의 북한 승인 동향에 우려를 표명하고, 주한 유엔군사령관인 미국 측이 스웨덴 측에 유보를 요청하는 방안을 제의함.

❋ 미국 측은 스웨덴 측과 다방면으로 접촉했으나 효과가 없었음을 설명하고, 한국 측이 스웨덴 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도록 권고함.

4. 외무부 동남아1과장은 1973.12.18. 주호주대사관 Goggin 서기관을 아래와 같이 면담함.

❁ 호주 측 언급 요지

- 주한 호주대사관은 12.14. 중립국 감시위원회 폴란드 및 체코 대표 4명의 서울 방문을 초청한바, 동인들은 한국의 유류 파동, 학원 문제 등 국내 사태에 관한 정보 수집을 위해 노력함.
- 최근의 서해안 사태와 관련한 북한의 반응에 대한 동 대표들의 평가를 전달함.

❁ 한국 측 언급 요지

- 최근 호주의 북한 승인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함.
- 호주가 북한을 승인하는 경우 공산권의 문호 개방을 위한 6·23 선언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함.

❁ 호주 측 추가 언급

- 호주 정부는 한국과 마찰 없이 북한 관련 사안을 처리하기를 희망함.
- 호주 수상이 1974.1.25.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할 계획인바, 동 순방 이전 한국 측이 수상을 접촉하여 대책을 수립하기를 희망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334-340차

| 73-043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33 / 13 / 1~386(386p)

군사정전위원회 한국군 대표단은 아래 1973.1~6월 기간 중 군사정전위 본회의 회의록을 외무부에 송부함.

1. 제334차 회의록(1.18.)

- 북한 측은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외세의 간섭 없는 자주적 통일 성취를 위해 주한 유엔군사령부 및 주한미군의 철수, 군사 장비 반입 및 군사적 도발 책동 중지 등 5개 요구 조건을 제기

2. 제335차 회의록(1.26.)

- 북한 측은 미국 및 한국 측의 총 2,837건의 정전협정 위반 지적 및 5개 요구 조건 이행 요구
- 유엔군 측은 북한 측의 5개 요구 항목은 회의 목적과 무관함을 지적하고 쌍방 경비병들의 무장 해제 시행을 촉구

3. 제336차 회의록(2.5.)

- 북한 측은 서해안에서의 군사훈련은 새로운 전쟁도발 행위임을 주장하고 동 훈련 중단을 촉구
- 유엔군 측은 동 군사훈련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동 회의에서 토의할 문제가 아님을 언급

4. 제337차 회의록(3.12.)

- 유엔군 측은 3.7. 비무장지대 정비 작업 중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인한 유엔 측 민정 경찰 요원의 사망 사건을 강력히 규탄
- 북한 측은 유엔군 측의 무장 도발 행위임을 주장하고 사죄 및 가담자 처벌을 요구

5. 제338차 회의록(4.10.)

- 북한 측은 4월 초 한미합동 1973 기동훈련 및 3.28.~5월 남해안 해상훈련의 정전협정 위반 및 평화적 통일에 대한 방해 책동임을 주장하고 중지를 요구
- 유엔군 측은 북한 측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동 사안이 회담 토의 안건이 아님을 지적

6. 제339차 회의록(4.23.)

- 유엔군 측은 4.17. DMZ 내 북한 무장간첩 침투사건과 관련한 공동조사 제의에 대한 북한의 거부를 비난하고 DMZ의 평화적 이용을 재촉구
- 북한 측은 북한 무장간첩 침투사건은 한국의 날조임을 주장하고, 남북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를 위한 5개 항목 및 조국통일 3대원칙에 대한 선전 발언을 반복

7. 제340차 회의록(6.28.)

- 북한 측은 미국의 수차례의 정탐 행위 및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지적하고 유엔 측이 남북대화를 방해하고 있음을 주장
- 유엔 측은 동 회의가 정치 문제를 토의하는 국제기구 회의가 아님을 지적하고, 선전 발언 중지를 촉구하는 한편 북한 측 주장을 반박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341-345차

| 73-043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33 / 14 / 1~330(330p)

군사정전위원회 한국군 대표단은 아래 1973.7~11월 기간 중 군사정전위 본회의 회의록을 외무부에 송부함.

1. 제341차 회의록(7.25.)

- ❋ 북한 측은 미국이 남북공동성명 이후에도 남북대화 과정에서 한국 측에 유리하도록 일방적인 군사원조 및 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있음을 비난
- ❋ 유엔 측은 북한의 비난을 반박하고, 군사훈련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양측의 공통된 관례라고 반박

2. 제342차 회의록(8.23.)

- ❋ 북한 측은 미국의 거듭된 군사훈련을 비난하고 남북통일 방해 및 침략전쟁 중지, 한국에 설치된 전쟁무기 철수를 요구
- ❋ 유엔 측은 회의 관련 실질적인 문제 토의를 거듭 요구하고, 북한 측의 정전회담의 정치 선전장화 이용을 반박

3. 제343차 회의록(9.6.)

- ❋ 북한 측은 미국의 공중 기동훈련 및 9.12. 이후 '한 · 미 안보협의' 군사훈련을 비난
- ❋ 유엔 측은 1973.1월 이후 북한 측에 의한 3,866건의 정전협정 위반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결과 보고를 촉구하는 한편 왜곡된 선전 발언을 통해 본 회의 기능을 악용함을 비난

4. 제344차 회의록(10.2.)

- ❋ 북한 측은 미국의 비무장지대 부근에서의 전쟁 연습을 주장하고, 동 군사훈련의 중지를 요구
- ❋ 유엔 측은 한국의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 측의 위선적, 수사학적인 주장이 시간만 낭비하는 처사임을 비난

5. 제345차 회의록(11.6.)

- ❋ 북한 측은 비무장지대 등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전쟁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주장하고 각종 군사 행위 중지를 요구
- ❋ 유엔 측은 군사훈련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님을 지적하고, 북한 측이 도발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후 통보할 것임을 언급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346-347차

| 73-043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33 / 15 / 1~152(152p)

군사정전위원회 한국군 대표단은 아래 1973.12월 중 군사정전위 본회의 회의록을 외무부에 송부함.

1. 제346차 회의록(12.1.)

- 북한 측은 휴전협정상 쌍방 군사분계선 및 육지 접속수역을 상호 존중하고 어떠한 봉쇄도 행하지 않는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엔 측이 적대 행위를 위해 군함을 연해에 침투시키고 있음을 주장
- 북한 측은 유엔 측이 5개 도서군으로 항해 시 북한 측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한편 북한 측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주장
- 유엔 측은 유엔 측 선박은 공해 및 접속수역에서만 운항하고 있으며, 오히려 북한 측이 협정을 위반 중으로 휴전협정 조인 후 20년간 자유롭게 5개 도서군을 항해하여 왔음을 지적

2. 제347차 회의록(12.24.)

- 북한 측은 유엔 측이 서해 연해에 군함을 투입하는 적대 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한편 고공 정찰기에 의한 정탐 행위도 빈발함을 주장
- 유엔 측은 항공기의 북한 영공 침범 사례가 없음을 지적하고, 북한 측이 정전협정을 위반 중임에 따라 정전협정 제반 조항 이행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회의록, 제409-420차

| 73-043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34 / 1 / 1~413(413p)

군사정전위원회 한국군 대표단은 1973년 중 군사정전위 비서장회의 회의록을 외무부에 송부함.

1. 제409차 회의록(1.3.), 제410차 회의록(2.21.), 제411차 회의록(3.30.), 제412차 회의록(4.19.) 및 제413차 회의록(5.15.)

- 북한 측은 판문점 본부 구역에 유엔 측이 자동무기 및 전투인원 투입을 통해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한편 유엔 측의 불법 무기 철수 및 범죄 행위 중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
- 유엔 측은 본부 구역 내 무기 반입 및 전투인원 투입 주장은 조사 결과 허위임을 지적하고, 북한 측이 과거와 유사한 주장을 반복 중임을 반박하는 한편 북한 측 주장에 따른 위반 내용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에게 일단 보고할 것임을 언급

2. 제414차 회의록(6.19.)

- 북한 측은 유엔 측의 무기 및 전투인원 투입 중지를 요구하고, 중지하지 않을 경우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미국 측이 책임져야 할 것임을 주장
- 유엔 측은 비서장회의에서는 정전협정 위반 사건을 협의할 수 없음을 지적

3. 제415차 회의록(7.14.), 제416차 회의록(8.30.), 제417차 회의록(9.25.) 및 제418차 회의록(10.25.)

- 북한 측은 미국 측의 위반 행위를 주장하고, 무기 및 전투인원 철수를 요구
- 유엔 측은 북한 측이 주장한 사건은 오랜 시일이 경과한 사안으로 사건 조사 활동이 어렵고 여타 주장도 허위 선전에 불과한 것임을 지적하고,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서 토의해야 할 문제를 비서장회의에서 선전을 위한 목적으로 제기하고 있음을 반박

4. 제419차 회의록(11.16.) 및 제420차 회의록(12.13.)

- 북한 측은 유엔 측의 비무장지대 요새화를 비난하고 동 지대에서의 군사 연습 및 진지 불법 구축 중지를 요구
- 유엔 측은 북한 측 주장을 수석위원에게 전달할 것이며, 정전협정 위반 행위 협의는 비서장회의 기능이 아님을 환기

중립국 감시위원단 동향

| 73-044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34 / 2 / 1~65(65p)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1973년 중 동향임.

1. 주스웨덴대사는 중립국 감시위원단 스웨덴 측 동향을 보고함.

- 스웨덴 육군사령관의 스웨덴 대표단 현지 상황 시찰차 1973.2.28.~3.3. 방한 계획 보고(1.12.)
- 스웨덴 중립국 감시위원 신임 수석대표 내정 보고(2.8.)
- 스웨덴 정부의 북한 승인 동향 보고(2.27. 및 3.3.)

2. 외무부는 1973.4.12. 국방부에 아래 중립국 감시위원단 동향을 통보함.

- 주한 호주대사는 4.27. 공산 측 체코 및 폴란드 대표를 오찬에 초청하였으며, 외무부 미주국장도 참석함.
- 동 대표들의 입국과 관련한 필요 조치를 요청함.

3. 외무부 김동휘 미주국장은 1973.4.27. 상기 주한 호주대사 오찬 시 체코 및 폴란드 대표와 아래와 같이 면담함.

- 폴란드 대표 언급 요지
  - 폴란드도 과거 외부의 침략을 경험하였음에 따라 한국의 현 입장에 공감하며, 한국에서의 활동 목적은 남북한 간의 문제 해결 방해 또는 다른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님.
  - 한국 정부 관계자를 만난 것은 처음으로 정부의 훈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임.
- 미주국장 언급 요지
  - 한반도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결과에 따른 인위적인 국토 분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속한 통일을 희망함.
  - 양국 간 인적 교류 접촉을 통한 상호 이해가 필요한바, 민간업계를 통한 교역도 가능한 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가능한 출발점으로 무역 왕래 등을 상정할 수 있음.

4. 국방부 합참정보국은 1973.5.22. 외무부에 체코 중립국감시위원회 대표 Smoldas 장군과의 오찬 시 대화 내용을 아래 통보함.

- 국방부 측은 체코가 공산 국가로서는 최초로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국가가 되기를 희망함.
- 체코 측은 북한의 호전성 및 기만적 선전 활동을 시인하는 한편 한국의 평화적인 일상, 경제 발전상 및 상품의 우수성을 실감함을 언급함.

5. 외무부는 1973.12.12. 국방부에 중립국 감시위원단 체코 및 폴란드 대표가 주한 호주대사관 무관 주최 오찬 참석 및 관광을 위해 12.14. 입국이 예정되어 있음을 통보하고, 동 입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6. 외무부는 1973.12.20.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주한 호주대사관 측이 중립국 감시위원회 체코 및 폴란드 대표와 접촉하여 파악한 아래 사항을 보고함.

- 주한 호주대사관은 12.14. 중립국 감시위원회 체코 및 폴란드 대표를 초청하여 서울 및 주변 지역 관광 안내를 하였음.
- 동 대표들은 유류파동, 학원문제 등 국내사태, 한국의 산업 및 무역관계 등에 관한 정보 수집을 위해 노력함.
- 최근 서해안 사태와 관련한 호주 측 질문에 아래 입장을 언급함.
  - 체코: 해주항에 대한 항해 보장 및 북한 내부 정세 특히 경제 실정에 대한 관심 전환을 위한 조치로 해석함.
  - 폴란드: 체코 측 의견에 동의하는 한편 조만간 북한 내 권력구조 변화 및 각료 개편 등을 예상함.
- 호주는 향후 중립국 감시위원단 수석대표를 초청 예정임.

중립국 감시위원단 스위스대표의 DMZ(비무장지대) 비무장화 제의

| 73-044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34 / 3 / 1~18(18p)

1. 외무부는 1973.6.21. 휴전감시위원단 스위스 대표의 DMZ 비무장화 제안에 대한 아래 보고서를 작성함.

❁ 제안 일시: 6.12. 휴전감시위원단 제1183차 회의 석상

❁ 제안 요지

- 휴전감시위원단의 기능이 극히 제한되어 있음에 따라 효율적인 휴전감시 및 평화에 기여하지 못함을 지적
- DMZ의 사실상 무장화는 긴장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휴전 당사국들은 여사한 현실의 시정을 희망
- 양측 당사자들이 DMZ의 효율적 비무장화 조치에 합의할 경우 휴전감시위원단은 DMZ의 비무장화 작업을 감시할 용의가 있음을 정전위원회에 통고할 것을 제안
- 동 제안에 대해 6.26. 차기 회의 시 본격적인 검토 희망

❁ 전망

- 공산 측 및 스웨덴 대표는 동 제안에 대해 본국 정부에 청훈하여 검토 예정
- 스웨덴 대표는 중립 표방 입장에 따라 동 제안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
- 공산 측은 북한 입장을 대변할 것임에 따라 북한에 의한 비무장지대 무장화 및 동 지역을 통한 무력도발의 빈도 등에 비추어 부정적인 반응 예측

2. 국방부 합참정보국은 1973.6.27. 중립국 감시위원회 동향 관련 중립국 감시위원회 스위스 대표의 DMZ 비무장화를 위한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개입 제의에 관한 아래 자료를 작성함.

❁ 내용

- 중립국 감시위원회 6.12. 회의에서 스위스 대표는 상존하는 긴장상태 완화를 위해 군사정전위 양측이 동의하고, 중립국 감시위에 임무를 부여한다는 전제하에 DMZ의 비무장화를 감시할 의향이 있음을 군사정전위에 통보할 것을 제안

❁ 각국의 반응

- 스웨덴은 찬성, 체코와 폴란드는 관심 표명 및 계속적인 연구 검토 희망

❁ 평가

- 한국으로서는 방위상의 이점, DMZ 내 북한의 요새화 공개를 통한 평화 공세의 허구성 노정 및 정부의 단계적 통일 방안에의 부합 등을 고려할 때 동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 북한은 외세 배격, 민족 내부의 해결 명분 및 유엔에 대한 무시 등 기본 입장의 변화가 없는 한 반대할 것으로 예상

❁ 향후 대책

- 정전협정에 대한 전면 무시 및 비무장지대 요새화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 준수를 거듭 주장해 온 북한 입장에 대한 대응책 수립
- 정부의 대유엔 정책에 반영
- 대내외 관련 입장 수립

귀화 일본인 사와모또([redacted]) 간첩사건

| 73-044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G-34 / 4 / 1~22(22p)

1. 외무부는 1973.3.28. 주일대사에게 간첩 사와모토 사건 관련 사항을 일본 외무성에 통보하고, 일본 언론이 동 사건에 대해 왜곡 보도하는 사례가 없도록 요청할 것을 아래와 같이 지시함.

- ❋ 동북아과장이 지참하는 사건 관련 자료를 3.29. 일본어로 번역하여 외무성에 전달함.
- ❋ 일본 언론계에서 본 사건에 관한 설명 요청 시 본부에 청훈함.

2. 주일대사는 1973.3.28. 외무성 북동아과장에게 사와모토 사건 관련 자료를 3.29. 전달 예정임을 통보하는 한편 일본 언론계가 동 건 관련 왜곡 보도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음을 보고함.

3. 주일대사는 1973.3.29. 외무성 북동아과장이 동 건 관련 대사관 담당관에게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으며, 대사관 담당관은 한국 측이 제공한 자료에 의해서만 보도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을 보고함.

- ❋ 일본 정부는 동 건 관련 보도 관제를 조치하고 있으나, 조만간 보도될 것으로 생각함.
- ❋ 기자들이 파악한 사항 중 한국에 불리한 점은 사와모토 애인에 대한 강제 연행 및 권총 위협에 따른 자백서 서명임.

4. 동경발 AFP 통신은 1973.3.30. 한국 중앙정보부가 귀화한 일본인 사와모토 및 김[redacted]을 3.6. 간첩 혐의로 체포했음을 보도한바, 일본 외무성은 일본인이 한국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체포된 첫 사례이나 한국의 국내 문제임에 따라 관여할 입장이 아님을 밝힘.

5. 중앙정보부는 1973.7월 외무부에 '귀화 일본인 간첩 검거' 제목의 아래 내용의 문서를 통보함.

- ❋ 인적 사항: 사와모토 [redacted]
- ❋ 경력: 1961년 이래 홍콩, 태국, 자카르타 등지에서 판매업 또는 가공업
- ❋ 범죄 사항
  - 1969.2월 싱가포르 주재 북한 공작원에 의해 포섭
  - 1971.4월 평양에서 간첩 교육
  - 1971.8.22. 서울에 잠입, 동생 및 조카 포섭 가능성 탐색
  - 1972.11.20. 평양에서 반복 교육, 7·4 공동성명 이후 한국 내 진행사항 보고
  - 1973.7.7. 오사카에서 검거

북한의 도발사건

| 73-044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2과/동북아1과
MF번호	G-34 / 5 / 1~23(23p)

1. 주미대사는 1973.3.6.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지가 1973년 이후 남북한 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며, 3.5. 북한 간첩이 한국에서 민간인을 사살하고 도주했다는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도하였음을 보고함.

2. 주일대사는 1973.3.7. 통일조선신문 편집인 겸 발행인이 북한 무장간첩선과 관련하여 대사관 담당관에게 밝힌 내용을 아래 보고함.

-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972.11월 이래 한국에 대한 비방 기사를 다시 게재하기 시작한바, 이는 평양 지시에 의한 대리 비난으로 간주됨.
- 북한이 한국에 대한 비방과 무력 도발을 재개하게 된 동기는 일 · 중(구 중공) 국교 수립, 일 · 월맹 관계 진전, 미 · 중 관계 진전 등에 따른 아시아에서의 고립감 및 초조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관측됨.

3. 외무부는 1973.3.7. DMZ에서의 북한군 도발에 관해 아래 보고서를 작성함.

- 일시: 3.7. 13:21
- 장소: 3사단 전방 중앙분계선 지역
- 내용
  - 3사단 수색중대가 DMZ 표식 작업 중 북한 측 총격으로 한국군 2명 부상
  - 유엔군사령부는 3.7.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개최를 3.9.로 요청
  - 북한 조선통신은 3.7. 무장 한국군 4~5명이 비무장지대에 침입하여 포 수천 발 발사 등의 도발을 행했음을 주장

4. 주미대사는 1973.3.8. 미 국무성 당국자들이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 한국 측이 직통 전화를 통해 북한 측과 연락을 취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심을 표명하는 한편 주한 미국대사관에 대해서도 관련 사항 파악을 지시함.
- 북한 측의 총격이 고의적인 행위인지 또는 우발적인 고립된 사고인지 분간이 어려움에 따라 향후 동 사태 추이를 관찰해야 할 것임.

5. 주미대사는 1973.4.18. 동 사건 관련 국무성 한국과장의 언급 내용을 아래 보고함.

- 국방성 첩보 및 평가에 의하면 동 사건이 비무장지대 남방에서 발생하였으나, 북한 측에 의한 대남 침투 기도보다는 군사적 정찰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임.
- 3.7. 발생한 사건과 같이 금년도 유엔 총회를 앞둔 북한의 외교적 공세와 유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 총회가 개최되는 9월까지 유사 사건의 재발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임.

북한의 서해안 5개 도서 접속 수역 침범 사건, 1973.11.19.-12.19. 전2권. V.1 기본문서

| 73-0444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34 / 6 / 1~285(285p)

1. 국방부 합참 전략기획국장은 1973.11.28. 북한 경비정의 서해 경비한계선 침범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사 참모장과 아래와 같이 협의함.

❋ 한국 측은 최근 서해 상황은 휴전 상태를 포함한 한반도의 정세 안정을 위협하고 있음에 따라 유엔사가 북한에 대한 경고 또는 정전위원회를 통한 적절한 필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

❋ 유엔사 측은 동 건이 한국 정부가 관련된 일로서 정부 대 정부 간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언급

2. 군사정전위는 1973.12.1. 제346차 본회의에서 한국 측은 북한의 경비한계선 침범 등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윤석헌 외무부차관은 12.2. Underhill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면담하여 북한함정의 서해 5도 수역 침범 사태 관련하여 미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 행위 중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바, 미국 측은 7 · 4 공동성명에 따라 한국정부가 북한 당국에 동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임을 언급함.

3. 외무부는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 북한 함정의 수역 침범 사태 분석 및 대책(12.4.)

- 사태 분석, 미국 측과의 협의 결과, 대응책
- 5개 도서의 자유 통행 확보를 위해 휴전협정 범주 내에서 처리, 한 · 미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대응책 수립

❋ 서해안 사태에 관한 법적 고찰(12월)

- 서해 5도에 대한 자유 통항은 휴전협정 이후 20년간 확립된 권리
- 북한의 영해 12해리 주장은 일반 국제법에 기초한 협의와 절충 필요

4. 주미대사는 1973.12.3. 국무성 정례 기자 브리핑 시 국무성 대변인은 5개 도서는 휴전협정에 명백히 인정된 것으로 협정 서명 이후 도전을 받지 않았음을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5. 외무부는 1973.12.10. 및 12.20. 서해안 사태에 관한 정부 입장 관련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전 재외공관에 송부하는 한편 동 사태에 관한 미국 정부의 의견을 조회한바, 미국 측은 12.23. 아래 입장을 회신함.

❋ 북한의 NLL(북방한계선) 월선을 침범으로 규정하는 것을 유보함.

❋ NLL이 휴전체제의 일부임을 인정치 않음.

6. 외무부는 1973.12.24.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필요성에 따라 미국 측 의견을 참고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한 영문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12.28. 전 재외공관, 국방부 및 문공부에 송부함.

북한의 서해안 5개 도서 접속 수역 침범 사건, 1973.11.19.-12.19. 전2권. V.2 자료집

| 73-0445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34 / 7 / 1~197(197p)

북한의 1973.10~12월 중 서해안 5개 도서 접속 수역 침범 사건과 관련한 외무부 작성 자료 및 조치 내용임.

1. 북한 경비정의 침범 활동 지도

2. 한국 공수계획 및 함선 호송계획 지도

3. 외무부는 1973.12.3. 전 재외공관장에게 서해안 사태에 관한 아래 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주재국의 반응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 북한 해군 함정이 10.23.~12.1. 총 49회 NLL(북방한계선) 침범, 서해안 5개 도서 접속 수역 6회 침범
- 북한의 휴전협정 및 관행에 대한 위반 행위를 긴장 완화 노력에 역행하는 도발 행위로 규탄
- 북한의 계속된 도발 행위에 따른 사태 악화는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

4. 외무부는 1974.2.1. 전 재외공관장에게 서해안 사태 등 북한의 도발 행위 관련 사항 및 휴전협정문을 송부함.

5. 주미대사 등 각 공관장은 서해안 사태 및 북한의 서해안 5개 도서 연안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관한 현지 언론 보도 내용을 수시 보고함.

Stilwell, Richard G. 주한유엔군사령관 임명, 1973.8.1.

| 73-044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34 / 8 / 1~28(28p)

1. 주한유엔군사령관 Bennett 대장은 이임을 앞두고 1973.6.9. 김종필 총리에 대한 서한을 통해 재임 중 한국 정부 각 부처의 협조에 사의를 표명함.

2.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3.6.18. 외무부에 대한 공한을 통해 미국 대통령이 신임 주한유엔군사령관으로 아래 Richard. G. Stilwell 중장의 임명을 승인하였음을 통보함.

- ❁ 현직은 미6군 사령관으로 8.1. 취임 예정임.
- ❁ 한국 도착 전에 대장계급으로 승진할 예정임.

3. 외무부는 1973.6.18. 주미대사에게 Stilwell 신임 주한유엔군사령관의 이력 사항 보고를 지시한바, 주미대사는 6.19. 동 사령관의 이력 사항을 아래 보고함.

- ❁ [redacted]
- ❁ [redacted]
- ❁ [redacted]
- ❁ [redacted]
- ❁ 한국 근무 경력
  - 1952.11~53.3월 제3보병사단 제15연대장
  - 1953.3~11월 한국군 제1군단 수석고문

4. 외무부는 1973.6.19. 국방부에 신임 주한유엔군사령관 임명에 관한 주한 미국대사관 공한 내용을 통보함.

한신 합참의장 남미 순방, 1973.4.2.-17.

| 73-044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G-34 / 9 / 1~201(201p)

한신 합참의장은 1973.4.2.~17. 아래 남미 5개국을 순방함.

1. 브라질 방문(4.2.~10.)

- 주한 브라질대사관, Fonseca 육군참모총장의 한신 합참의장 공식 초청 공한을 외무부에 송부(2.21.)
- 외무부, 합참의장에게 동 공한 사본 전달(2.26.)
- 주브라질대사, 합참의장 방문 중 브라질 육 · 해 · 공군 장관에 대한 서훈 동의 의견 보고(3.16.)
- 외무부, 국방부에 외상에 대한 서훈은 별도 기회에 시행함이 바람직함을 통보(3.20.)
- 주브라질대사, 한신 합참의장의 브라질 방문 결과 보고(4.4. 및 4.10.)
  - 대통령, 공군장관 및 합참의장 예방, 동 장관들에 대한 일등 수교훈장 수교
  - 군부 지도자들은 박 대통령의 영도력 및 10월 유신의 당위성 평가
  - 육군참모총장 및 브라질 3군 참모총장 중 1인 방한 초청 합의

2. 우루과이 방문(4.10.~12.)

- 주우루과이대사, 한신 합참의장의 주재국 공식방문 수락 보고(3.15. 및 3.17.)
- 주우루과이대사, 한신 합참의장의 주재국 방문 결과 보고(4.13.)
  - Bordaberry 대통령, 국방장관 등 예방
  - 대통령 예방 시 동 대통령은 강경한 반공주의를 천명

3. 아르헨티나 방문(4.12.~13.)

- 주아르헨티나대사, 한신 합참의장의 주재국 공식방문 보도 보고(3.31.)
- 국방부, 외무부에 아르헨티나 방문 시 공식 연설문 준비를 요청(4.2.)

4. 페루 방문(4.13.~15.)

- 외무부, 국방부에 페루 정세 관련 특별 고려 사항 통보(3.20.)
- 주페루대사, Cavero 합참의장과의 합참의장 방문 일정, 숙소 등 협의 내용 보고(3.21.)
- 주페루대사, 한신 합참의장의 주재국 방문 결과 보고(4.16.)
  - 합참의장, 3군 참모총장, 대통령 실장 예방
  - 동 방문으로 한 · 페루 군부 간의 친선 강화 및 양국 간 우호 증진 관계 심화

5. 콜롬비아 방문(4.15.~17.)

- 주콜롬비아대사대리, 한신 합참의장 방문 중 3군 총사령관에 대한 방한 초청 보고(4.17.)

Currea Cubides, Hernando 콜롬비아 국방장관 방한, 1973.10.14.-17.

| 73-0448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G-34 / 11 / 1~84(84p)

1. 주콜롬비아대사는 1972.5.23. 국군의 날 행사에 주재국 국방장관, 전 육군사령관 등 주요 군 관계 인사를 초청해 줄 것을 건의함.

- ❋ 외무부는 8.22. 주콜롬비아대사대리에게 국방부와 교섭을 통해 주재국 국방장관 내외, 육군 참모총장 내외 등 5명을 초청키로 결정했음을 통보함.
- ❋ 주콜롬비아대사는 9.13. 주재국 대통령의 의회 출석 지시로 국방장관의 방한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보고함.

2. 대통령 비서실은 1972.5.29. 외무부에 콜롬비아 재향군인회장의 박 대통령에 대한 서한과 관련하여 적의 조치할 것을 요청함.

- ❋ 외무부는 6.2. 아래 조치 내용을 대통령 비서실에 회신함.
  - 동 서한 사본을 주콜롬비아대사에게 송부
  - 10.1. 국군의 날 행사에 우방국 군 지도자 초청 계획의 일환으로 콜롬비아 재향군인회 참전용사 간부 방한 초청 예정
- ❋ 외무부는 6.3. 국방부에 국군의 날 행사에 중남미 유일한 참전국인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용사 회장 등 6명을 초청해 줄 것을 요청함.

3. 외무부는 1973.6.23. 주콜롬비아대사대리에게 국방부가 국군의 날 행사에 아래와 같이 주재국 인사 초청을 요청해 왔음을 통보하고, 초청을 교섭하도록 지시함.

- ❋ 주재국 국방장관, 최고사령관 및 수행원의 9.29.~10.3. 기간 중 방한
- ❋ 체재비는 국방부 부담

4. 주콜롬비아대사는 1973.8.28. 동 국방장관을 예방하여 동 초청 의사를 전달한바, 동 장관은 방한 희망을 표명했음을 보고함.

- ❋ 외무부는 9.15. 주콜롬비아대사에게 국방부장관의 주재국 국방장관에 대한 10.13.~17. 공식 방한 초청을 통보하고, 초청을 교섭하도록 지시함.
- ❋ 주콜롬비아대사는 9.24. 주재국 국방장관이 한국 공식방문 초청을 수락했음을 보고함.
- ❋ 외무부는 10.6. 국방부에 콜롬비아 국방장관의 초청 수락 공한 및 수행원 약력 등을 송부함.

5. 국방부는 외무부에 콜롬비아 H. C. Cubides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을 아래 통보함.

- ❋ 10.14. 도착, 10.15. 대통령, 국무총리 및 국방장부관 예방, 판문점 시찰
- ❋ 10.16. UN 묘지 참배, 10.17. 이한

Almgren, Carl E. 스웨덴 육군참모총장 방한, 1973.2.28.-3.4.

| 73-044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G-34 / 12 / 1~15(15p)

1. 주스웨덴대사는 1973.1.12. Almgren 육군사령관이 현지 상황 시찰차 2.28.~3.3. 방한 예정임을 아래 보고함.

- 동 사령관은 방한 중 한국 정부에 친선 우호의 뜻을 표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함.
- 중립국 감시위원단 일원으로 스웨덴의 역할을 감안하여 동 사령관 방한 시 국방부장관 예방 및 적절한 일정 주선을 건의함.

2. 주스웨덴대사는 1973.1.31. 동 사령관 면담 시 동인의 언급 요지를 아래 보고함.

- 차기 스웨덴 중립국 감시위원회 단장은 대사급 외교관 출신으로 임시 군 계급을 부여하여 임명 예정임.
- 차기 단장의 부임 지연에 따라 현 단장의 임기가 5월까지 연장됨.
- 방한 중 국방부장관 예방을 희망함.

3. 외무부는 1973.3.9. 주스웨덴대사에게 동 사령관의 2.28.~3.4. 방한 결과 및 외무부차관 면담 내용을 아래 통보함.

- 체한 일정
  - 2.28. 주한유엔군사령부 방문, 국방부장관 · 차관 · 합참의장 · 육군참모총장 예방, 판문점 방문
  - 3.1. 주한미군사령부 방문, DMZ 시찰, 회담장 방문
  - 3.2. 외무부차관 예방, 유엔군사령부 방문, 국방부장관 주최 만찬
  - 3.4. 이한
- 외무부차관 면담 시 차관 언급 요지
  - 스웨덴은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일원으로 한국의 안보와 관련하여 중대한 역할을 수행 중임.
  - 동 위원단 일원인 스웨덴이 북한을 승인할 경우 동 위원단의 현 2:2 균형이 파괴되어 한국의 안보 및 남북대화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임.

Guweddeko, Smurts 우간다 공군 사령관 방한, 1973.9.28.-10.3.

| 73-045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G-34 / 13 / 1~85(85p)

1. 외무부는 1973.7.18. 국방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우간다 군사사절단 방한 초청을 요청함.

- ❋ 동부아프리카 지역 백두진 특사의 5.15. 우간다 방문 시 아민 대통령은 군사사절단 한국 파견을 희망함.
- ❋ 주우간다대사의 7.12. 군사사절단 파견 권유에 대해 아민 대통령은 10.1. 국군의 날 행사 계기 군사사절단 파견 입장을 재차 표명함.
- ❋ 장기 집권이 예견되는 아민 군사정부의 군사사절단 방한은 우간다에서의 북한에 대한 한국의 우위 확보에 기여할 것임.

2. 주우간다대사는 1973.7.19. 아민 대통령이 국군의 날 행사에 Guweddeko 공군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3인의 군사사절단을 파견키로 결정했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한바, 외무부는 8.8. 주우간다대사에게 공군 참모총장 명의의 우간다 공군사령관 방한 초청장 전달을 지시함.

3. 주우간다대사는 1973.9.21. 동 사령관이 아민 대통령의 박 대통령 앞 친서를 휴대할 것이라고 보고한바, 외무부는 9.25. 국방부에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동 사절단 방한 시 방한 효과 제고를 위해 적절한 대우를 요청함.

- ❋ 우간다에서 남북한 대사관이 대치 중임.
- ❋ 우간다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사절단이 북한 9 · 9절 행사에 참석 한바 있음.

4. 동 사령관 일행의 1973.9.28.~10.3. 방한 결과임.

- ❋ 9.29. 국방부장관 및 합참의장 예방, 대한무역진흥공사 방문
- ❋ 10.1. 대통령 및 국무총리 예방, 국군의 날 행사 참석, 국방부장관 주최 만찬
- ❋ 10.2. 대구 기지 및 울산 산업 시찰, 외무부차관 면담

5. 외무부차관은 1973.10.2. 동 사령관 면담 시 한반도 문제를 설명한바, 동 사령관의 언급 요지임.

- ❋ 한반도 문제는 동 · 서독의 예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아민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우간다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지지함.
- ❋ UNC(주한유엔군사령부) 존속을 위한 한국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귀국 즉시 대통령에게 동 타당성에 대해 보고할 것임.
- ❋ 사절단 일원으로 방한 중인 동 대통령의 동생이 한국에서의 공병 훈련을 희망함.

6. 외무부는 1973.10.2. 국방부에 우간다와의 우호관계 발전을 위해 아민 대통령 동생의 한국에서의 공병 훈련 수락을 요청함.

미국 안보관계 인사 방한

| 73-045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34 / 14 / 1~16(16p)

1.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3.10.18. 외무부 공한을 통해 H. H. Callaway 육군장관의 10.22.~25. 방한 계획을 통보하고, 동 장관의 대통령 예방 실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 ❁ 외무부는 10.19. 주미대사에게 동 장관의 방한 목적 등 관련 사항 파악을 지시함.
- ❁ 주미대사는 10.19. 동 장관 취임 후 미국 군사시설 시찰을 주 목적으로 방한 예정임을 보고함.

2.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3.10.18. 외무부 공한을 통해 C. W. Abrams 육군참모총장의 11.5. 방한 계획을 통보하고 동 참모총장의 대통령 예방 실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바, 주미대사는 10.19. 동 참모총장의 11.4.~6. 방한 목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알래스카, 일본, 한국, 하와이 등 지역 정세 파악
- ❁ 동 지역 미 육군부대 시찰

3. 주한 미국대사관 도노휴 참사관은 1973.11.24. 외무부 북미1과장을 면담하여 무기통제 및 군비축소처(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J. O. Zuhellen 부처장이 12.6.~9. 방한 예정임을 통보하고, 아래 사항을 언급함.

- ❁ 동 부처장 방한 중 외무부차관 면담을 요청함.
- ❁ 동 부처장은 최광수 국방부차관 방문, 판문점 시찰 등을 계획 중임.

4. 외무부는 1973.12.8. 주미대사에게 미국 무기통제 및 군비축소처 부처장의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 시 아래 언급 내용을 통보하고, 대사관이 동 부처와 접촉하여 SALT(전략무기제한회담), MBFR(동서상호균형 감군협상) 등 군축 문제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입수하여 송부하는 한편 관련 사항을 수시 보고하도록 지시함.

- ❁ 동 부처는 소수 우방국들에 한해 요청에 따라 SALT, MBFR 문제 등에 관한 브리핑 및 자료를 제공 중임.
- ❁ 한국이 희망할 경우 동 정보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

주한미군 지진연구시설 부분 기밀해제 및 공개 문제

| 73-045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34 / 15 / 1~14(14p)

1. 외무부는 1973.5.1. 국방부, 과학기술처 및 중앙정보부에 주한미군의 지진연구시설 중 일부에 대한 기밀 해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하고, 각 부처의 의견을 5.15. 이전 회보해 줄 것을 요청함.

-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 · 미 합동위원회 스미스 미국 측 수석대표는 5.1. 한국 측 김동휘 수석대표에 대한 서한을 통해 주한미군 당국은 원주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미 원자력 탐지체제에 관한 기밀 시설 중 지진연구시설 부분을 7.1.자로 기밀 해제 조치 예정임을 통보함.
- 한국 내 일부 과학자들에 대한 동 연구 자료 공개 및 국내 과학자들이 동 시설 시찰을 제의함.

2. 관계부처는 각 부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함.

- 과학기술처는 5.14. 동 제의에 이의가 없음을 회신함.
- 국방부는 5.15. 동 제의를 환영하며, 아래 요원들이 동 시설을 시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함.
  - 국방과학연구소 박사 3명
  - 합참 및 각 군 연구개발 실무자 4명
- 중앙정보부는 5.23. 현재로서는 참여치 못함을 회신함.

3. 외무부는 1973.5.28.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상기 시설 공개에 대한 수락 입장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 미국 측 제의에 대해 관계부처는 동 지진연구시설의 공개 및 국내 과학자들의 시찰 허용에 이의가 없다는 의견이며, 외무부로서도 여사한 같은 조치가 안보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국내 과학 진흥에 유익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미국 측 제의에 동의함.

4. SOFA 합동위원회 김동휘 한국 측 수석대표는 1973.6.2. 스미스 미국 측 수석대표에게 미국 측의 제의를 수락한다는 서한을 발송함.

MBFR(동서상호균형감군) 회의. Vienna

| 73-045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G-34 / 16 / 1~86(86p)

1.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73.1.29. 킬슈레거 외무장관이 1.27. 기자회견을 통해 MBFR(동서상호균형감군협상) 개최와 관련하여 최근 WARSAW(바르샤바조약기구)가 MBFR 준비회의의 비엔나 개최를 주장한 바 있으며, 동 제의가 실현될 경우 비엔나는 회의의 단순한 준비뿐 아니라 실질 문제의 토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다고 보고함.

2.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73.2.15. MBFR 예비회의가 WARSAW(바르샤바조약기구) 및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의 합의에 따라 1.31. 비엔나에서 개최되어 회의 조직 문제, 회의명칭 등을 논의하고 양측이 막후교섭을 지속했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어 각 대표단이 일단 귀임할 예정임을 보고함.

3. 주한 영국대사는 1973.3.16. 외무부 구아과장에게 1973.2월 작성 '공산주의 정책과 전략' 제하 구주안보회의, MBFR 및 핀란드-소련 기본 관계 내용이 포함된 비밀 자료를 참고로 송부함.

4. 외무부 구주과는 1973.11월 MBFR 본회담 개최 관련 아래 분석 자료를 작성함.

❁ 회담 개최 동향

- 중유럽 동서 군사력의 상호감군을 위한 회담이 10.30. 비엔나에서 개최됨.
- NATO 12개국 및 WARSAW 7개국 대표가 참가함.

❁ 분석

- MBFR 문제는 서방측의 소련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개최 제의에 대한 대항 조치로서 1968.5월 NATO 이사회에서 제의한바, 소련이 1972.1월 CSCE 개최 전제 조건으로 개최에 동의함으로써 성사됨.
- 준비회담 과정에서 NATO 측은 중유럽의 전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균형감군을 주장한바, WARSAW 측은 열세인 해군력과 핵전력 만회를 위해 중유럽의 비핵화를 기본 방침으로 통상전력의 계속적 우위 확보를 위해 균형감군에 반대함.
- 여사한 상황에서 본회담은 쌍방의 군사적 개념 차이 및 군사적 균형 유지의 측면에서 해결이 용이치 않음에 따라 회담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

5. 외무부는 1973.11월 MBFR 회의의 배경 및 문제점에 관한 아래 내용의 자료 초안을 작성함.

❁ 성격, 개최 배경, 회담의 목적, 회의 명칭, 대상 지역 및 참가국, 감축 대상(병력 및 군사력), 감축 방법

❁ 미 · 소 양국의 합의 사항, 미 · 소 양국에 의한 해결 전망, 프랑스와 중국(구 중공)의 불참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대책

| 73-0454 |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H-21 / 1 / 1~130(130p)

중국(구 중공)의 유엔 가입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북한의 1971~73년 중 국제기구 가입 추진 동향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아래 대책을 수립함.

1. 국제기구에서의 대북한 우위성 확보 방안(1972.11.23.)

- ❋ 긴장 완화를 위한 동서 화해 분위기, 1972.11월 동 · 서독 간의 기본조약 체결에 따른 동독의 UNESC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가입에 대한 서독의 지지 및 동서독의 유엔 동시가입 실현 가능성 등으로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추진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됨.
- ❋ 남 · 북한의 유엔전문기구 등 국제기구 동시가입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초래할 것임에 따라 적절한 대처가 필요함.
  - '두 개의 한국' 인정에 따른 한반도 분단의 영속화를 야기함으로써 남북대화를 저해함.
  - 한국의 이해 및 의사에 반하는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은 국제적 협력체제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북한의 가입은 정치적 문제를 유발하여 국제기구의 발전을 저해할 것임.
- ❋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저지 및 동시가입 중인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우위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 접촉 강화 및 방한 초청, 우방 회원국과의 협력 강화, 한국 인사의 국제기구 사무국 진출 확대, 국제기구 회의 유치, 국제기구 회의 파견 정부대표단의 보강 및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의 조치를 시행함.

2. 재외공관에 대한 시행 지침(1973.2.26.)

- ❋ 중국, 동독의 유엔 가입과 달리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은 현재 남 · 북한 간에 진행 중인 한반도 통일 노력을 저해하고 분단을 영속화하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주재국 측에 인식시킴.
- ❋ 북한의 관련 동향, 관계국의 움직임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파악 및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함.
- ❋ 주재국 소재 국제기구 사무국과의 수시 접촉을 강화하고, 필요시 협조 확보를 위한 유대관계를 구축함.
- ❋ 국제회의에서의 한국 대표권 문제 등에 관한 북한 및 동조 국가들의 제기 가능성에 대처함.

한국의 유엔 가입문제

| 73-0455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1 / 2 / 1~81(81p)

남·북한의 유엔 가입 문제에 대한 북한의 1973년 중 주요 동향임.

1. 북한의 동향 및 전망

- 정부가 6 ·23 선언을 통해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한 데 대해 김일성은 고려연방공화국의 국호하에 단일 가입을 주장함.
- 북한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은 한반도의 영구 분단을 초래할 것임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으며, 유엔 가입 문제와는 별개로 유엔 주재 옵서버 대표부 설치를 희망하는 한편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및 UNC(주한유엔군사령부) 지위와 관련한 유엔의 토의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북한은 유엔 가입 문제와 유엔 활동에의 참여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간주하고 향후 유엔 주재 옵서버 대표부를 설치하는 한편 WHO(세계보건기구) 등 유엔전문기구 가입을 추진할 것임에 따라 유엔전문기구 등에서 사실상의 남북한 동시가입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됨.

2. 북한의 1949.2.9. 및 1952.1.2. 유엔 가입 신청 및 옵서버 대표부 설치 신청에 대한 유엔의 입장

- 주유엔대표부 관계관의 관련 질의에 대해 유엔 사무국 Scott 법률고문은 1973.6.26. 북한의 가입 신청은 기술적으로 현안 사안이라고 답변하고 아래 입장을 개진함.
  - 가입 신청은 안보리의 거부권 행사 등에 따른 심의 종료 이후에도 기술적 현안 사안으로 존속함.
  - 따라서 새로운 가입 신청이 없어도 회원국이 제기할 경우 남북한의 가입 신청에 대한 토의가 가능함.
- 유엔 사무국 Powell 대변인은 6.2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아래와 같이 답변함.
  - 북한의 상기 가입 신청은 유효한 현안 사안임.
  - 북한이 1950년 유엔 결의에 따라 침략자로 규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최근 유엔주재 옵서버 대표부 설치 요청에 대해 6.29. 유엔 사무총장이 회신한 것은 사무총장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결정임.

동 · 서독 유엔가입

| 73-045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1 / 3 / 1~54(54p)

동 · 서독의 1973.9.18. 유엔 가입 관련 사항임.

1. 동독은 1973.6.12. 유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함.

2. 서독은 1973.6.15. 유엔 가입신청서 및 2개의 별도 문서를 아래와 같이 유엔에 제출함.

- 외상의 가입 신청 서한
- 대통령 명의 유엔 헌장에 규정된 의무 이행 선언문
- 외상 명의 서독의 유엔에서의 서베를린 이익 대표 선언문

3. 유엔 안보리는 동 · 서독의 1973.6월 중 가입 신청서 제출에 따른 동 · 서독의 유엔 가입을 권고하는 가입 위원회 보고서를 심의하고 6.22. 동 가입을 총회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한바, 동 결의안 채택 후 15개 이사국 대표들은 동 · 서독의 유엔 가입을 환영하는 한편 동 가입으로 유엔의 보편성이 실현되고 세계의 긴장 완화 및 유엔의 역할 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함.

4. 유엔 총회는 1973.9.18. 동 · 서독의 유엔 가입을 가결한바, 동 가결에 대한 주요국 대표의 발언 요지임.

- 미국: 유엔의 보편성 원칙의 구현임.
- 소련: 거스를 수 없는 현 국제 정세 추세를 반영하는 사례임.
- 이스라엘: 서독의 경우 2차 대전 당시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바 있으나, 동독은 동 책임을 회피할 뿐 아니라 아랍 테러단체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계속하고 있음에 따라 동독의 가입에 반대한다는 기록을 남기고자 함.
- 기니: 서독 무기가 기니비사우, 앙골라 및 모잠비크를 탄압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서독의 가입에 강한 유보를 표명함.
- 사우디아라비아: 가까운 장래에 동 · 서독의 통일을 희망함.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1 기본대책 I : 1972.10-73.2

| 73-0457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1 / 4 / 1~290(290p)

정부의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에 대비한 1차 기본 대책 및 조치 사항임.

1. 기본 대책 및 세부 시행계획 수립(1972.12.16.)

❋ 기본 방침

- 유엔에서 한국의 북한에 대한 우위를 계속 유지함.
- 한반도 문제의 상정을 예상하고 소위 알제리 결의안을 부결시키는 한편 한국 측 결의안 내지 수정안을 최대한 다수 회원국의 지지로 가결함.
- 북한의 유엔 진출 견제를 일차적인 목표로 총회 분위기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함.

❋ 대책

- 한반도 문제 상정 및 토의를 전제로 한국에 대한 지지 세력의 확보 및 확대를 위한 외교 활동을 강화함.
- 알제리 결의안 부결을 위해 한국 측 결의안을 조기에 제출하되 그 내용은 종전 결의안에 준하는 방식 또는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위임 사항의 재검토 및 동 위원회의 지위 변경을 포함하는 내용 중 총회 분위기에 따라 결정함.
- 남·북한 초청 문제와 관련하여 일차적으로는 북한의 유엔 참석을 견제하기 위해 본회의 또는 제1위원회 불상정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 측이 동시 초청 제안 결의안을 상정함.

❋ 세부 시행계획

- 미국, 일본 및 주요 우방국들에 대한 사전 협의를 조기에 시행함.
- 지역별 취약 국가들에 대한 특별 교섭 사절단을 조기에 파견하여 지지 교섭을 시행함.
- 총회 정부대표단을 보강하여 파견하며 준비 실무진을 8월 중 조기 파견함.
- 주유엔대표부에 대한 인원 보강 등 효율적인 지원을 시행함.

2. 제28차 총회 운영위원회 대책 수립(1973.2.5.)

❋ 운영위원회 입후보가 예상되는 지지 교섭 대상 28개국에 대해 의장단 입후보 의사를 타진하고 적극적인 조기 입후보를 권고함.

❋ 동 28개국을 4개 지역권으로 분류하여 유엔 및 현지에서의 교섭 세부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함.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2 기본대책 II : 1973.3-6

| 73-0458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1 / 5 / 1~209(209p)

정부의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에 대비한 대책 및 조치 사항임.

1. 주요 공관에 대한 유엔 총회 대비 외교활동 강화 지시(3.20.)

❁ 훈령

- 제28차 유엔 총회에 대비하여 한국에 대한 지지 세력 확보를 위한 외교활동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및 서독 주재 5개 공관을 대상으로 함.
- 정부 및 의회 지도자와 동 5개국 주재 각 유엔 회원국 대사관에 대한 외교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각국 정부의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

❁ 교섭 대상 및 내용

- 총 48개국을 5개 지역권으로 분류하여 각국별로 중점 접촉 활동을 시행함.
- 1972.12월 수립한 1차 기본 대책에 따라 시행함.
- 면담, 리셉션 및 오·만찬 등을 통해 지지 교섭을 시행함.

2. 지역별, 국가별 대책 및 시행계획 수립(6.7.)

❁ 제27차 총회 이후 북한의 외교 동향 분석

- 북한에 대한 승인 및 수교국이 15개국 증가하여 총 51개 회원국이 북한과 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66개국의 지지로 WHO(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함.
- 1973년 중 ILO(국제노동기구) 등 유엔전문기구 및 여타 국제기구 가입 신청이 예상됨.
- 제네바 주재 옵서버 대표부를 5.31. 설치하였으며, 총회 개최 이전 유엔 주재 옵서버 대표부 설치 가능성이 있음.

❁ 추진 계획

- 5개 지역권으로 분류함.
- 교섭 사절단 파견, 공관 설치, 주요 인사 방한 초청, 정책적인 수입, 주요 인사 방문, 원조 및 경제협력 지원, 문화 교류 추진 등을 시행함.

3. 김종필 국무총리 구주 순방 시 관련 교섭 시행(5.21.~6.9.)

❁ 총리는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서독, 모나코 및 프랑스 순방 시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을 설명하고,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를 요청함.

❁ 특히 프랑스는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와 관련하여 그간 한국 입장에 대한 명시적인 지지를 유보해 온바, 국무총리 방문 시 한국 입장 지지 가능성을 시사함.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3 기본대책Ⅲ : 1973.7

| 73-0459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1 / 6 / 1~235(235p)

정부의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에 대비한 대책 및 조치 사항임.

1. 주요 46개 공관에 대한 주한 유엔군사령부 및 유엔 가입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 훈령(7.5.)

- 남 · 북한 간 대치 상황이 계속 중인 현 상황에서 UNC(주한유엔군사령부) 철수에 반대함.
- 남 · 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안전 보장에 기여할 것임.
-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의 장래 문제는 회원국 다수의 결정에 따를 것임.

2. 주일대사의 오히라 외상 면담 시 외상의 반응(7.11.)

- 한국 입장에 지지를 표명하고, UNC 관련 한국 입장 관철 여부에 우려를 표시함.
- 한 · 미 · 일 주유엔대사 간의 8월 중 뉴욕에서의 사전 협의 개최를 제안함.

3. 주유엔대사의 유엔 사무총장 면담 시 사무총장의 반응(7.12.)

- 유엔의 보편성 원칙에 따라 'Korea'의 유엔 가입을 환영할 것임.
- 남 · 북한의 개별 가입 또는 동시 가입 여부는 양 당사자의 결정에 의한 것이나, 현재의 국제적인 긴장 완화 추세를 감안할 때 북한의 동시가입 반대 입장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함.

4. 김용식 외무부장관의 Rogers 미 국무장관 면담 및 양국 간 기본 전략 합의(7.18.)

- 양국은 남북한 동시가입 문제에 최대 역점을 두고 외교적 협력을 추진함.
- UNC 존속을 위해 미국은 공산 측과 막후교섭을 진행할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 주장 부결을 위해 공동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함.

5. 사안별 기본 대책 및 시행 방안 수립(7.31.)

- 기본 대책
  - 6 · 23 선언 제5항에 따라 남북한 동시 초청에 반대하지 않음.
  - UNCURK 해체에 반대하지 않으며, 위원국들의 결정에 따라 장래 문제를 결정함.
  - UNC 철수에 반대하며 존속을 관철함.
  - 남 · 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시행 방안
  - 한 · 미 간 협력, UNCURK 위원국과의 협의 및 주요 우방국 전략협의회 개최를 추진함.
  - 외무부장관의 유엔 및 주요국 순방, 교섭 사절단의 지역별 파견을 추진함.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4 기본대책Ⅳ : 1973.8

| 73-0460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1 / 7 / 1~394(394p)

정부의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에 대비한 대책 및 조치 사항임.

1. 외무부차관의 Habib 주한 미국대사 면담 시 동 대사 설명(8.7.)

- ❁ 미 · 일 외상회의에서 미국 측이 6 · 23 선언 지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해체 방침, UNC(주한유엔군사령부) 존속 관련 입장을 설명한 데 대해 일본 측은 지지를 표명함.
- ❁ 동 대사는 8.8. 예정된 뉴욕 우방국 전략회의에서 남 · 북한 동시가입 문제를 중점적으로 협의하여 최대한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함.

2. 외무부장관의 뉴욕 우방 5개국 전략회의 참석(8.8.)

-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및 호주 간의 동 회의에서 기본 전략으로 UNCURK 해체, 동시가입 권고안 제출, UNC 존속에 합의함.
- ❁ 동 전략회의 월 1회 개최 및 실무급회의 수시 후속 개최에 합의함.

3. Popper 미 국무성 차관보 방한 및 외무부장관 면담(8.28.)

- ❁ 한국 측 결의안 초안에 합의하고, 예비교섭 결과 및 후속 조치를 협의함.
- ❁ 동 차관보는 미국 측은 40개국, 일본 측은 96개국을 대상으로 교섭 중임을 설명함.
- ❁ 외무장관은 미국의 중국(구 중공) 및 소련과의 막후협상 시행, 특히 아프리카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외교적 지원 노력 강화를 요청함.

4. 우방 5개국 대사급회의 개최(8.30.)

- ❁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 측 결의안 초안에 합의함.
- ❁ 공동제안국 확보를 위한 국별 역할 분담 방안을 협의함.
- ❁ 결의안에 대한 대표 상정국 선정, 배포 시기 및 한반도 문제 토의 시점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함.
- ❁ 공동제안국 회의 이전 UNCURK 해체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관련 사항을 기정사실화하는 방안에 의견이 일치함.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5 기본대책 Ⅴ : 1973.9

| 73-0461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1 / 8 / 1~180(180p)

정부의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에 대비한 대책 및 조치 사항임.

1. EC(구주공동체) 9개국 아주담당국장 회의의 한반도 문제 관련 협의(8.27.)

-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해체 결의안에 찬성함.
- 기권 가능성을 시사한 아일랜드를 제외한 전 회원국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제안에 찬성하는 한편 북한의 단일연방 가입 제안은 비현실적임을 이유로 반대함.
- 대다수 회원국은 UNC(주한유엔군사령부) 존속에 찬성함.

2. 한국 측 결의안에 대한 공동제안국회의(9.5.)

- 주유엔대사는 26개국 대표가 참석한 동 회의에서 한국 입장을 설명하고 참가국 전원의 지지 및 공동제안국 참여를 요청함.
- 차기 제2차 회의에서 결의안 문안 및 공동제안국을 확정하기로 합의함.

3. 한국 측 결의안 제출(9.10.)

- 미국 등 13개국이 공동 제안함.
- 결의안 요지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유엔의 책임을 강조함.
  - 정부의 남·북한대화 추진 노력을 설명함.
  - UNCURK의 자진 해체를 승인함.
  -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희망을 표명함.
  - 휴전협정의 불가결성을 확인하는 한편 UNC 문제는 안보리 소관 사항임을 적시함.

4. 공산권 측 결의안 제출(9.10.)

- 러시아 등 21개국이 공동 제안함.
- 결의안 요지
  - 외국의 간섭 종식 및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통일 달성을 희망함.
  - 한반도 긴장의 원인이 주한미군 등 외세에 의해 조성되고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및 UNC, UNCURK의 해체를 주장함.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반대함.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6 대표단 구성 및 본교섭 훈령

| 73-0462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1 / 9 / 1~304(304p)

정부는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에 김용식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대표단

- 김세련 국회 외무위원장 등 36명의 단원으로 구성함.
- 김용식 외무부장관은 9.12.~10.7. 및 11.4.~12.4. 미국에 체류함.

2. 정부 훈령

- 한반도 문제 상정 및 토의에 반대하지 않으며, 제28차 총회가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전의 확보, 남 ·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도록 교섭함.
- 남 · 북한 대표의 동시 초청에 반대하지 않으며, 북한 대표의 건설적인 참여를 기대함.
- 다수 회원국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의 장래에 관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임.
- 북한이 한국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여 유엔 헌장상의 원칙을 수락하고 회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남 · 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추진함.
- UNC(주한유엔군사령부)는 안보리 결의에 의하여 설립되어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의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한 역할을 수행 중으로 휴전협정을 유효하게 보장하는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존속이 보장되어야 함.
- 우방과의 협의하에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결의안을 조기에 상정하여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채택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함.
- 주유엔대표부 및 전 재외공관을 통해 108개 유엔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지 교섭을 시행하며, 각 지역별로 중점 교섭 대상국에 사절단, 겸임대사 및 특별 교섭단을 파견함.
- 총회 전 개최 예정인 알제리 비동맹정상회의, 북구외상회의, EC(구주공동체) 9개국협의회 등에 대비하여 관계 공관을 통한 사전 교섭을 시행함.
- 교섭 대상국에 대한 북한 및 동조 국가들의 접촉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교섭에 적극적으로 활용함.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7 한국문제 토의 I : 1973.9-10

| 73-0463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1 / 10 / 1~173(173p)

제28차 유엔 총회의 1973.9~10월 중 한반도 문제 토의 동향 및 관련 조치 사항임.

1. 운영위원회는 1973.9.20. 한반도 문제 안건을 총회 의제로 포함하는 결정을 채택한바, 공산 측은 동 과정에서 한국 측 제출 안건 채택에 반대를 제기하지 않고 중국(구 중공)이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이 불법이라는 유보를 표명하였으나, 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으며 총회는 9.21. 동 안건 상정을 채택함.

2. 미국 등 18개 공동제안국은 1973.9.21. 한국 측 결의안을 상정한바, 총회는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제1위원회에 동 건을 배정하였으며 소련 및 알바니아 대표는 총회 심의 과정에서 UNCURK가 불법 기구라는 유보를 표명함.

3. 외무부차관은 1973.9.28. Habib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하여 Kissinger 국무장관이 9.26.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공개적인 대결보다는 조용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사실과 관련하여 특히 UNC(주한유엔군사령부) 존속 문제와 관련하여 동 국무장관의 북경 방문 시 막후교섭 가능성에 대해 문의한바, 동 대사는 한국 측 제출 결의안이 표결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산 측이 타협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함.

4. 각국 대표는 1973.9.24.부터 기조연설을 행한바, 한반도 문제 관련 주요 언급 요지는 아래와 같음.
   - Kissinger 미국 국무장관은 남 · 북한에 정당한 유엔 의석이 부여되어야 함을 강조함.
   - Gromiko 소련 외상은 한반도에 대한 외세의 간섭에 반대하고, 북한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일본 오히라 외상은 7 · 4 성명에 입각한 남 · 북한대화를 환영하고 유엔이 한국 휴전협정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간과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알바니아 대표는 남 · 북한의 동시가입에 반대하고 북한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 대표임을 주장함.

5. 김용식 외무부장관은 중국(구 중공) 대표의 UNC 해체 및 남 · 북한 동시가입 반대를 주장하는 기조연설에 대해 1973.10.3.자 반박문 발표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역사적 배경 및 남북한 관계의 본질을 설명하는 한편 동 주장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한국 측 입장의 정당성을 천명함.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8 한국문제 토의 II : 1973.10

| 73-0464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1 / 11 / 1~232(232p)

제28차 유엔 총회의 1973.10월 중 한반도 문제 토의 동향 및 관련 조치 사항임.

1. 김용식 외무부장관 현지 활동

- 김 장관은 1973.9.17.~10.6. 뉴욕에서 30개국 외상을 비롯한 각국 대표 면담을 통해 한국 입장 관철을 위한 설득 및 지지 교섭을 시행함.
- 공동제안국 대표 초청 만찬 및 리셉션 주최, 각종 외교 행사 참석을 통한 득표 교섭을 시행함.

2. 김 장관의 러쉬 미국 국무장관 서리 면담

- 김 장관은 1973.9.17. 면담 시 중국(구 중공)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 중인 미국이 UNC(주한유엔군 사령부) 해체의 부당함을 중국 측에 강력히 전달하는 등의 영향력 행사와 함께 특히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해외 공관을 통한 한국 입장 지지 활동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함.
- 러쉬 국무장관 서리는 Kissinger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이후인 11월에 한반도 문제 토의가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와 함께 국무장관이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언급함.

3. 교섭대표 뉴욕 파견, 지역별 사절단 파견, 관련 문서 배포 및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

- 중점 교섭 대상국과의 교섭 지원을 위해 6개국 주재 대사를 뉴욕에 파견하여 대상국 외상 및 대표들에 대한 교섭 및 득표 활동을 추진함.
-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지역 17개국에 특별 사절단을 파견하고, 동 대상국 중 14개국에 대해서는 대통령 친서를 전달함.
- 한국 입장 설득 및 지지를 요청하는 1973.10.1.자 비망록(AIDE-MEMOIRE)을 배포함.
-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서독 등 우방국들과 효과적인 활동 분담 및 교섭 시행을 위해 우방국 전략회의와 병행하여 뉴욕 및 각국 수도에서의 득표 활동을 시행함.

4. 한국 측 및 공산 측 결의안에 대한 타협안 모색 검토

- 현재 비동맹 및 중립 진영 약 30개국이 양측의 결의안 제출에 따른 대결을 회피하고 타협안을 모색함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주유엔대사는 1973.10.31. 미국대사를 면담하고 동 사안을 협의함.
- 양측은 동 타협안을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본국 청훈 후 추가 협의하기로 함.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9 한국문제 토의Ⅲ : 1973.11-12

| 73-0465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2 / 1 / 1~186(186p)

제28차 유엔 총회의 1973.11~12월 중 한반도문제 토의 동향 및 관련 조치 사항임.

1. 한국 측 및 공산 측 결의안에 대한 타협안 합의

- 외무부장관은 미국 측에 대해 동 타협안에 대한 중국(구 중공)의 진의 타진과 함께 한반도 문제 토의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교섭할 것을 요청함.
- Scali 주유엔 미국대사는 11.7. 중국대사와 비밀 회동을 갖고 양측은 한국이 요청한 바에 따라 제28차 총회에서 주한 외국군 철수 및 UNC(주한유엔군사령부) 해체 등을 포함하는 한반도 문제를 표결하지 않기로 합의함.
- 동 합의는 남·북대화의 계속적인 추진 및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해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은 현 국제 정세하에서 미국과의 대립을 회피하기 위해 동 타협안에 합의한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은 동 합의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우려하여 북한에 대해 동 타협안을 수락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함.

2. 남·북한 대표 동시 초청 합의 및 불상정 합의 성명문 채택

- 제1위원회는 남·북한 대표 동시 초청안을 표결 없이 가결함에 따라 10.5. 김용식 외무부장관 및 북한 허담 외교부장의 참석이 결정됨.
- 타협안 수락 여부에 대한 공산권 내부의 이견 및 러시아의 태도 등을 감안하여 정부는 네덜란드 측에 비동맹 대표국인 알제리와의 교섭을 요청한바, 알제리는 러시아의 동의를 확보하고 11.20. 합의를 통보해 옴.
- 상기 합의에 따라 제1위원회 의장은 합의 성명문을 발표하고, 총회는 11.28. 동 합의 성명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제28차 총회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가 종결됨.

3. 합의 성명문 요지

-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 평화적인 한반도의 통일 실현 및 민족 대단결 등 3개 원칙을 마련한 7·4 남북공동성명을 환영함.
- 남·북한 간의 대화 지속, 제반 교류 및 협력 추진을 기원함.
- UNCURK의 즉각적인 해체를 결정함.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10 북한, 공산측 동향

| 73-0466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2 / 2 / 1~326(326p)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의 한반도 문제 토의와 관련한 북한 및 공산권의 동향임.

1. 북한은 1973.9.15. 총회 개회와 관련하여 9.16. 아래 요지의 비망록을 발표하고 동 내용을 영국, 일본 등 각국 주요 언론에 광고로 게재함.

- 미국은 유엔의 권위를 훼손하고, 유엔을 한국전쟁의 일방 교전 상대로 전락시킴.
- 유엔은 정권의 합법성 여부 심사 또는 승인 기구가 아님.
- UNC(주한유엔군사령부)는 유엔 헌장과 원칙에 위배되는 기관임.
- 유엔을 침략의 방패로 이용하는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함.
- 한국의 평화통일 구상은 한국의 현 정치체제하에서는 실현이 어려움.
- 북한은 남침 의사가 없으며 한반도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할 의도가 없음을 누차 천명한 바 있음.
-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주한미군의 철수,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군비 감축 및 민주적 자유 총선거 실시를 요구함.
- 통일 후 사회제도는 인민의 총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2. 북한은 1973.9.26. 아래 요지의 각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함.

- 미국의 남한 강점 및 비합법적인 군정 실시로 한반도의 분단이 초래되었으며,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을 도발함.
- 유엔군 주둔은 부당하며 미국은 계속적으로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있음.
- 미국의 한국에 대한 내정 간섭, 남북대화 방해 등이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지속시키고 통일을 저해하고 있음.
- 한국은 외국의 식민지 군사기지로 유엔 가입 자격이 없으며 남북한 동시가입안은 한반도 분할을 위한 제국주의적 발상임.
- 주한미군 등 모든 외국군의 철수, UNCURK 해체 및 한국에 대한 모든 외세 간섭의 종식을 요구함.

3. 중국(구 중공) 및 소련 동향 관련 1973.10.23. 주미대사 보고

- 중국은 UNCURK 해체를 강력히 주장하나,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지는 않음.
- 소련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11 연설문

| 73-0467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2 / 3 / 1~308(308p)

김용식 외무부장관의 1973.11.15. 제28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의 연설문 요지임.

1. 서언

- 북한의 동참을 환영하며, 상호 상이한 견해를 피력해야 함을 유감으로 생각함.
- 한국 국민은 평화통일을 열망하며,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 한반도의 당면 과제임.

2. 한반도 문제와 유엔

- 한반도 분단은 2차 대전 후 연합국의 군사적 편의에 따른 산물이며, 유엔의 노력으로 유일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이 수립됨.
- 유엔군은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였으며 1954년 제네바회담 실패 이후 매년 한반도 문제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나,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로 이행되지 못함.

3. 한반도 정세 및 남북한 관계

- 남북한 간 상호 불신과 적대 의식의 심화 및 북한의 군사적 위협 강화가 지속되고 있음.
- 한국은 평화통일 노력을 통해 남북대화를 주도하여 대내외적인 기대에 부응함.

4.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

- 북한의 한국에 대한 외세 간섭 주장은 유엔군 철수를 목적으로 한 것임.
-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유엔군 철수 및 한국의 안보체제 약화를 의도한 것임.
-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의 기여에 사의를 표하며, 위원국들의 자진 해체 권고를 수락함.
- UNC(주한유엔군사령부)는 휴전협정의 당사자로서 동 철수는 휴전협정의 소멸 및 군사정전위원회의 해체를 초래할 것임에 따라 지속적인 평화 유지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동 철수에 반대함.
- 외국군 주둔 문제는 주권 행사에 관련된 사안으로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유엔의 보편성 원칙에 따라 통일이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남북한 동시가입에 반대하지 않으며, 동시가입이 분단을 영구화한다는 북한의 주장은 비합리적임.

5. 결언

- 한반도 문제는 5천만 한국 국민의 장래, 전쟁과 평화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 북한이 협력하여 평화의 기초를 마련하기를 촉구함.
-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으로 성취되어야 하며, 유엔이 한국 국민의 열망을 대변하여 주기를 희망함.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12 Memorandum

| 73-0468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2 / 4 / 1~67(67p)

정부는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의 한반도 문제 토의와 관련한 아래 요지의 각서(Memorandum)를 1973.10.26. 총회 의장에게 제출함.

1. 서언

- ❋ 한반도 통일 문제는 5천만 한국 국민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관련된 국제 사회의 중대한 관심사임.
- ❋ 제26차 및 27차 유엔 총회는 남북대화를 저해할 수 있는 논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한반도 문제 토의를 연기하기로 결의하였으나, 북한은 동 결의 이행에 응하지 않고 있음.

2.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및 남북대화 추진

- ❋ 한국은 1971년 적십자회담, 1972년 7 · 4 공동성명, 1973년 남북조절위 회담 및 6 · 23 선언을 통해 교류 및 개방 확대를 제의함.
- ❋ 북한은 동 제안을 거부하고 정치, 군사적 문제의 해결을 고집함으로써 긴장이 계속됨.

3. 한국의 유엔 가입 문제

- ❋ 북한은 남북한 동시가입이 분단을 고정화할 것임을 주장하나, 남북한의 국제기구 동시 참여 및 접촉은 상호 이해와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임.
- ❋ 세계 대의 정치조직으로서 유엔이 추구하는 보편성 원칙에 따라 한국의 가입은 실현되어야 함.

4. 한국의 휴전협정 이행 및 유엔의 역할

- ❋ 안보리 결의에 의거하여 1950.7월 설치된 UNC(주한유엔군사령부)는 휴전협정 체결 이후 협정의 일방 당사자로서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방지하는 중대한 억제력을 수행 중임.
- ❋ 북한 측 주장에 따른 대안 없는 UNC의 해체는 현존 휴전체제의 와해를 야기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에 따라 동 사령부의 해체에 반대함.

5. 결어

- ❋ 유엔 회원국들이 한반도 통일 이전 잠정적 조치로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지지해 줄 것을 희망함.
- ❋ 안보리를 통한 휴전협정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수립된 이후 UNC의 장래 문제에 대한 정상적인 토의가 가능함.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13 결과보고 · 막후교섭일지 및 각국 반응 · 언론보도

| 73-0469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2 / 5 / 1~270(270p)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 한반도 문제 토의 결과 보고서, 주요 막후교섭, 각국 반응 및 언론 보도 내용임.

1. 결과 보고서 요지

-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을 한국 측 결의안에 적절히 반영함.
- 핵심 우방국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우호 세력을 확대하는 한편 아시아, 아프리카 중립 진영 국가들에 대한 막후협상을 시행함.
- 합리적,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하여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지지를 확보함.
- 미국-중국(구 중공) 및 미국-소련 간의 화해 분위기를 적절히 활용하는 한편 특히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향후 북한의 비동맹권 특히 아프리카, 중동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2. 주요 막후교섭

- 주유엔대사가 1973.10.31. 미국대사에게 중국에 대한 타협안 채택 교섭을 요청한 이후 한 · 미 양국 및 핵심 우방국들은 결의안에 대한 표결 대신 합의성명서 채택을 위한 교섭을 시행함.
- 한국, 미국 및 네덜란드 관계관들은 11.16. 협의 시 네덜란드가 공산 측 결의안 주요 공동제안국으로 비동맹권의 대표인 알제리에 대해 동 합의성명서 수락 동의를 위한 접촉을 시행하기로 함.
- 상기 중국 및 알제리에 대한 교섭의 결과 11.21. 제1위원회는 동 합의성명서 총회 상정을 가결하였으며, 협상 과정에서 소련은 불만을 표시하였으나 대세를 수용함.

3. 각국 반응 및 언론 보도

- 전통적인 한국 지지 국가들 및 서구, 중동, 아시아 다수 국가들은 한반도 문제 토의 결과를 한국 정부의 외교적 승리로 평가함.
- 미국 및 일본의 다수 언론은 한반도 문제의 토의가 보류되었으나, 북한의 UNC(주한유엔군사령부) 해체 주장 등 관련 문제의 재상정이 언제든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북한은 1973.11.23.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총회 참석,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해체 결정 및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저지는 북한의 외교적 승리임을 주장함.
- 중국은 11.24. 인민일보 사설 등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은 7 · 4 공동성명 원칙에 위배됨을 보도하고, UNC 해체 및 모든 주한 외국군의 철수를 주장함.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14 국가별교섭 Ⅰ : 아주지역

| 73-0470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2 / 6 / 1~241(241p)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에 대비한 아주지역 국가들에 대한 교섭 결과임.

1. 네팔 외무성 차관보는 1973.9.26.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및 UNC 존속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북한 측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2. 말레이시아 외무차관은 1973.7.12. 전년도와 같이 한반도문제 토의 연기 제안이 상정될 경우 지지할 것임을 밝힘.

3. 미얀마(구 버마) 외상은 1973.8.22. 한국 입장에 대한 이해를 표시하는 한편 엄정중립정책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함.

4. 스리랑카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1973.9.6. 비동맹 엄정중립정책을 표명함.

5. 인도 외무차관은 1973.8.20.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UNC(주한유엔군사령부) 존속을 지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

6. 인도네시아 외상은 1973.8.21.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제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협의할 것을 희망함.

7. 일본은 1973.10.25. 핵심우방국회의에서 16개국에 대한 한국 입장 지지 교섭을 담당하기로 함.

8. 파키스탄 외무차관은 1973.8.7.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의 장래 문제를 다수 회원국 결정에 따르겠다는 한국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여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할 것을 희망함.

9. 호주는 1973.10.25. 핵심우방국회의에서 6개국에 대한 한국 입장 지지 교섭을 담당하기로 함.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15 국가별교섭 II : 미주지역1

| 73-0471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2 / 7 / 1~229(229p)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에 대비한 중남미지역 국가들에 대한 교섭 결과임.

1. 가이아나 외상은 1973.10.30. 중국(구 중공) 측이 공산 측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줄 것을 집요하게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음을 밝히고, 기권 입장을 표명함.

2. 과테말라 외상은 1973.10.26. 한국 측 결의안 지지 및 공산 측 결의안 반대 입장을 언명하고, 과테말라는 11.7.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추가로 참여함.

3. 니카라과 대통령 및 외상은 주멕시코대사의 동국 출장 시(1973.8.19.~23.) 한국 입장 지지를 표명함.

4. 주유엔 도미니카대표부는 1973.9.21. 한국 입장 지지를 확인하고, 도미니카는 9.28.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함.

5. 멕시코 외무성 차관보는 1973.9.21. 공산 측의 주한 외국군 철수 주장에 반대하며 UNC(주한유엔군사령부) 존속에 찬성하는 입장에 따라 한국 측 결의안을 지지할 것임을 확인하고,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요청에 대해서는 유보 입장을 표명함.

6. 주미 바베이도스대사는 1973.10.17. UNC 해체에 반대하지만 적극적, 명시적인 한국 입장 지지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표명함.

7. 바하마 수상 및 외상은 1973.9.10. 중남미친선사절단 면담 시 한국 정부의 수교 제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요청에 대해 이해와 관심을 표명함.

8. 유엔 주재 베네수엘라대표부는 1973.10.11. 공한을 통해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통보해 옴.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16 국가별교섭Ⅲ : 미주지역2

| 73-0472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2 / 8 / 1~233(233p)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에 대비한 중남미지역 국가들에 대한 교섭 결과임.

1. 볼리비아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1973.8.3.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북한의 승인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볼리비아는 9월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한편 남북한 동시가입 및 UNC(주한유엔군사령부) 존속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2. 브라질 Gibson 외상은 1973.10.15.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언명하고,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요청에 대해서는 브라질 대표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동 사안은 유엔의 상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언급함.

3. 아르헨티나 외무성 정무총국장은 1973.10.22. 남북한 동시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반대 입장을 고려하여 기권 입장이며, UNC 존속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철수를 희망한다는 조건을 단서로 찬성 입장임을 언급하고 현재의 전체적인 한국 측 결의안에 대해서는 기권 입장임을 밝힘.

4. 에콰도르 외무차관은 1973.9.17. 남북한이 유엔 동시가입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한국 입장을 지지할 것임을 언명함.

5. 엘살바도르 대통령 및 외상은 1973.9.10. 주멕시코대사의 동국 방문 시 한국 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함.

6. 온두라스 외상은 멕시코 방문 중 1973.9.15. 주멕시코대사 면담 시 한국 입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함.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17 국가별교섭Ⅳ : 미주지역3

| 73-0473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2 / 9 / 1~327(327p)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에 대비한 미주지역 국가들에 대한 교섭 결과임.

1. 우루과이 외상은 1973.9.13.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및 한국 측 결의안에 대한 공동제안국 참여를 확약함.

2. 주유엔 자메이카 공사는 1973.10.1. 유보 입장을 표명함.

3. 칠레 외무성 정무국장은 1973.10.9.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언명함.

4. 캐나다는 1973.9.21.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함.

5. 코스타리카 대통령 및 외상은 1973.9.10. 주멕시코대사 면담 시 한국 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함.

6. 콜롬비아는 1973.9.21.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함.

7. 주유엔 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는 1973.10.18. 한국에 대한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며, 한국 측 요청을 호의적으로 본국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언급함.

8. 파나마는 비동맹 국가들과의 관계, 파나마 운하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투명한 입장 등을 이유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권 입장을 고려해 온바, 1973.11.8. 주멕시코대사의 외상 면담 및 설명에 따라 한국 입장 지지를 결정함.

9. 파라과이 외상은 1973.9.7. 한국 입장 지지를 확인함.

10. 페루는 1973년 비동맹회의 부의장국으로 비동맹 일부 국가들의 공산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압력과 관련하여 호응하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문제 표결 시 기권 입장을 검토 중인바, 11.23. 외무성 차관보는 입장 표명을 유보함.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18 국가별교섭 Ⅴ : 구주지역1

| 73-0474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3 / 1 / 1~323(323p)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에 대비한 구주지역 국가들에 대한 교섭 결과임.

1. 그리스는 1973.9.10.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함.

2. 네덜란드는 1973.9.10.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한편 10.25. 핵심우방국 전략회의에서 덴마크,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부르키나파소 및 네팔 7개국에 대한 지지 교섭을 담당하기로 함.

3. 노르웨이는 1973.11.6. 뉴욕의 북구제국대사회의에서 한국 측 결의안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11.14. 주노르웨이대사의 외상 면담 시 한국 측 설명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함.

4. 덴마크 외무성 유엔국장은 1973.11.9. 한국 측 입장에 공감을 표시하고, 제1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상세한 검토 후 입장을 결정할 것임을 언급함.

5. 서독은 1973.9.20.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함.

6. 룩셈부르크는 1973.9.10.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함.

7. 몰타는 공산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한바, 주유엔 몰타 차석대사는 1973.9.12. 중국(구 중공)과의 관계가 동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반영된 것으로 추측됨을 언급함.

8. 벨기에는 1973.9.10.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한편 구 식민지인 콩고(구자이르) 및 르완다에 대한 지지 교섭 분담 요청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언명함.

9. 사이프러스 대통령 및 외상은 1973.9.26. 주이탈리아대사 면담 시 한국 입장에 공감을 표하고 주요 국가들의 입장 및 유엔 내의 동향을 검토하여 결정할 것임을 언급하였으며, 그리스는 사이프러스에 대한 지지 교섭 분담 요청에 대해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언명함.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19 국가별교섭Ⅵ : 구주지역2

| 73-0475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3 / 2 / 1~426(426p)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에 대비한 구주지역 국가들에 대한 교섭 결과임.

1. 스웨덴 외무성 유엔담당 부장은 1973.11.14. 유엔 총회 토의 상황을 감안하여 추후에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며, 그 이전에는 입장 표명을 유보함을 언급함.

2. 스페인 외무성 극동국장은 1973.11.12.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인함.

3. 아이슬란드 외무차관은 1973.10.1. 한국 측 입장이 합리적인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북구 국가들과 동일한 보조를 취할 예정임을 언급함.

4. 유엔 주재 영국대사는 영국이 핵심우방국협의회 일원으로서 1973.8.27. 개최 예정인 EC(구주공동체) 9개국 회의에서 한국 입장 지지를 적극 요청할 것임을 언명함.

5. 유엔 주재 이탈리아대사는 1973.10.11.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전년과 같이 한국 입장을 계속 지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언급함.

6. 터키 외무성 유엔국장은 1973.9.17. 한국 입장 지지 방침과 함께 공동제안국 참여 및 지지 발언 요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임을 언급함.

7. 유엔 주재 포르투갈대사는 1973.10.19. 한국 입장 지지 결정을 통보해 옴.

8. 프랑스 Jobert 외상은 김용식 외무부장관의 프랑스 방문 중 1973.8.10. 면담 시 9월 중 프랑스 대통령의 중국 (구 중공) 방문 기회에 한반도 문제 관련 중국의 입장을 타진한 이후 재협의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유엔에서의 가능한 협력을 희망한바, 외무성 아주국장은 11.15. 양측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불가피할 경우 기권 가능성을 언급함.

9. 핀란드 외무성 정무국장은 1973.11.7. 한반도문제가 강대국 간의 분쟁의 대상이 될 경우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입장 표명을 유보함.

10. 북구 외상회의는 1973.8.30. 공동성명을 통해 유엔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 추세를 반영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20 국가별교섭Ⅶ : 중동지역

| 73-0476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3 / 3 / 1~281(281p)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에 대비한 중동지역 국가들에 대한 교섭 결과임.

1. 주유엔 레바논대사는 1973.10.23. 본국으로부터 기권 지시를 접수하였음을 밝힘.

2. 모로코 외상은 1973.9.24. 한국 측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언명하고, 공산 측 결의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반대 입장 표명을 유보함.

3. 외무부는 1973.9.18. 주이란대사에게 바레인과의 교섭을 시행하도록 지시함.

4.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차관은 1973.7.25. 한국 입장을 지지하나, 반공 정책에 따라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5. 주유엔 아랍에미리트대사는 1973.9.19. 남북한 양측 결의안에 공히 기권 예정임을 밝힘.

6. 영국 외무성은 1973.11.7. 오만이 남북한 양측 결의안에 공히 기권 예정임을 통보해 옴.

7. 요르단 외무담당국무상은 1973.11.13. 입장 표명을 유보함.

8. 이란 외무성 정무총국장은 1973.7.10.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한국 측의 전반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것임을 언급함.

9. 주유엔 카타르대표부는 1973.10.24. 공산 측 결의안에 동조하지 않으며, 아랍국 중 1, 2개국이라도 한국 측 결의안을 지지한다면 과거와 같이 한국을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임.

10. 외무부는 주쿠웨이트총영사에게 쿠웨이트가 알제리 등 강경 아랍국들의 압력으로 종전의 기권 태도를 변경하여 공산 측 결의안 지지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양측 결의안에 공히 기권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한바, 1973.11.9. 주쿠웨이트총영사는 주재국이 최종 결정을 계속 유보 중임을 보고함.

11. 튀니지 외무성 유엔국장은 1973.11.20. 한국 입장에 찬성, 공산 측 결의안에 대한 기권 입장을 결정하였음을 알려 옴.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21 국가별교섭Ⅷ : 아프리카지역1

| 73-0477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3 / 4 / 1~308(308p)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에 대비한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에 대한 교섭 결과임.

1. 가나 외무성 정무차관보는 1973.10.30. 남북한 양측 결의안에 대해 공히 기권 입장임을 밝힘.

2. 가봉 외상은 1973.10.25. 한국 측 결의안에 대한 공동제안국 참여는 어려우나, 한국 입장을 지지할 것임을 언명함.

3. 감비아 대통령은 1973.11.15. 한국 측 결의안 지지 및 공산 측 결의안 반대 입장을 언명함.

4. 주유엔 나이지리아공사는 1973.11.5.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을 언급함.

5. 주유엔 남아공대사는 1973.10.17. 공동제안국 참여 및 스와질란드, 레소토, 보츠와나에 대한 지지 교섭 측면 지원 요청에 대해 최대한의 협력을 약속함.

6. 니제르 대통령은 1973.11.5.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고, 공동제안국 참여 요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함.

7. 베냉(구 다호메이) 외상은 1973.10.10. 기존의 북한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고할 것임을 언급함.

8. 라이베리아 대통령은 1973.11.2. 친서를 통해 한국 입장 지지 및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을 통보해 옴.

9. 레소토 수상 및 외상은 1973.11.4. 한국 입장 지지를 언명하고, 공동제안국 참여 요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함.

10. 주유엔 르완다대사는 1973.10.4. 한국 측 결의안 지지 및 공산 측 결의안에 반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함.

11. 프랑스 주재 마다가스카르대사관 참사관은 1973.9.24. 한국 입장 지지 요청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본국 정부에 보고 후 회신할 것임을 답함.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22 국가별교섭Ⅸ : 아프리카지역2

| 73-0478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3 / 5 / 1~343(343p)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에 대비한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에 대한 교섭 결과임.

1. 주유엔 말라위대표부는 1973.11.7. 한국 측 결의안 찬성, 공산 측 결의안 반대 입장을 알려 옴.

2. 말리 주재 미국대사관은 1973.2.15.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 말리 외무성이 남북한 관계 정상화 이전 한국 대사의 동국 방문을 수락치 않을 것임을 통보해 옴.

3. 김용식 외무부장관의 1973.10.5. 모리셔스 수상 면담 시 동 수상은 한국 입장 지지를 언명함.

4. 백인한 특사의 1973.11.7. 보츠와나 외상 면담 시 동 외상은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대통령에게 호의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언급함.

5. 주프랑스대사의 1973.11.8. 세네갈 방문 시 외상은 알제리 측 결의안 지지 입장을 언급함으로써 수상과 상이한 입장을 보인바, 외무성은 추후 기권 입장을 표명함.

6. 스와질란드 외무성은 1973.11.6. 한국 측 결의안 지지 입장을 통보해 옴.

7. 주코트디부아르대사의 1973.3.29. 시에라리온 방문 시 Stevens 대통령은 검토 후 추후 통보해 줄 것임을 언급함.

8.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외상은 1973.11.3. 북한이 원하지 않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남북한 어느 일방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9. 우간다 외무담당국무상은 1973.10.20. 남북한 양측 결의안에 대한 기권 입장을 확인함.

10. 벨기에 외무성은 1973.11.3. 에티오피아가 한국 측 결의안에 대한 찬성, 알제리 측 결의안에 대한 기권 입장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해 옴.

11. 남북한을 동시 방한 중인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외상은 1973.11.15. 주유엔 동국 대사에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 어느 일방도 지지하지 않도록 지시함.

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V.23 국가별교섭 X : 아프리카지역3

| 73-0479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3 / 6 / 1~381(381p)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에 대비한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에 대한 교섭 결과임.

1. 적도기니 Macias 대통령은 1973.7월 주카메룬대사의 동국 출장 면담 시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문제점이 없음을 언급하고, 유엔 총회 관련 지지 요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추후 검토할 것임을 밝힘.

2.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외상은 1973.10.30.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및 한국 측 결의안에 대한 공동제안국 참여를 언명함.

3. 차드 Doralto 외상은 1973.10.29.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언명함.

4. 카메룬 대통령비서실차장은 1973.11.7.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태도를 언급하면서 한반도 문제 상정 시 기권 가능성을 언급함.

5. 주유엔 케냐대사는 1973.10.31. 양측 결의안에 대한 절충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양측 안에 공히 기권할 것임을 확인함.

6. 코트디부아르 Boigny 대통령은 1973.11.21. 예년과 같이 한국 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언명함.

7. 토고는 알제리 측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함.

- 주유엔 토고대사는 1973.11.16. 김용식 외무부장관을 예방하고 본국에 동 공동제안국 탈퇴를 건의하였으나 정부로부터 알제리 측 결의안에 대한 지지, 한국 측 결의안에 대한 기권 훈령을 접수하였음을 설명함.
- 외무부는 주토고대사대리에게 주재국이 양측 안에 공히 기권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8. 정부는 1973.9.22. 서독 측에 아프리카 14개국의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위한 교섭을 요청하는 한편 10.25. 핵심우방 8개국 협의 시 미국, 영국 및 일본에 대해 아프리카 11개국에 대한 지지 교섭을 요청함.

주유엔 북한대표부 설치

| 73-048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3 / 7 / 1~165(165p)

북한은 1973.9월 및 11월 유엔 본부 및 제네바에 옵서버대표부(Observer Office)를 각각 개설함.

1. 주유엔 옵서버대표부

- ❋ 유엔 사무총장의 1973.7.29. 승인에 따라 9.5. 개설
- ❋ 권민준 대사(전 외교부 부부장) 등 15명 부임

2. 주제네바 옵서버대표부

- ❋ 유엔 구주 사무국장의 1973.5.31. 승인에 따라 11.8. 개설
- ❋ 진충국 대사(전 외교부 부부장) 등 9명 부임

3. 상기 북한의 대표부 개설 동향과 관련하여 주유엔대사는 1973.6.5. Waldheim 사무총장을 아래와 같이 면담함.

- ❋ 주유엔대사는 북한의 대표부 설치는 유엔에서 두 개의 한국을 고착화하여 남북대화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이 남북대화를 저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희망함을 전달함.
- ❋ 사무총장은 북한 측의 주유엔 대표부 설치 신청을 접수치 않은 현 시점에서 어떤 조치를 예단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 자격을 구비할 경우 허용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임을 설명함.

4. 미국 국무성은 북한대표부 개설 시 특권 면제 등 지위에 관해 아래 입장을 밝힘.

- ❋ 회원국이 아닌 옵서버 대표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권리가 아닌 예우로서 일정한 특권을 부여하고, 면제도 공무 수행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해 옴.
- ❋ 동독 대표부의 경우 수석대표 공용 차량 1대에 한하여 외교관 차량 번호판을 발급한바, 북한 대표부 개설 시에도 동독에 대한 제반 처우를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임.
- ❋ 모든 공산국 대표에 대해서는 뉴욕시 Times Square 기점 반경 25마일 이내의 여행 제한 조치가 적용되며, 직원 수 등 규모에 있어서는 비엔나협약에 따른 적절한 선이 유지되어야 할 것임.

Waldron-Ramsey, Waldo E. 주유엔 바베이도스 대사 방한, 1973.5.26.-30.

| 73-048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3 / 8 / 1~81(81p)

Waldron-Ramsey 주유엔 바베이도스 대사 부처는 정부의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 대책의 일환에 따른 초청으로 5.26.~30. 방한함.

1. 주요 체한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예방
- 외무부장관 면담 및 장관 주최 만찬 참석
- 부산, 울산 방문 및 산업시설 시찰
- 판문점 방문 및 유엔기념공원 참배
- 대한무역공사, 구로공업단지, 국립박물관, KBS 방문 및 회견
- 부인 별도 일정으로 대통령 영부인 예방 및 어린이회관 방문

2. 특기 사항

- 동 대사는 방한 후 1973.6.13. 주유엔대사 면담 시 방한 중 한국 정부의 제반 후의에 대한 사의 표명과 함께 한국의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상을 평가하고 양국 간 우의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언급함.
- 동 대사는 6.29. 외무부장관에 대한 감사 서한을 전달해 옴.
- 대사 부인은 방한 후 어린이회관에 6점의 바베이도스 특산물을 기증함.

3. 한-바베이도스 관계

- 바베이도스는 제26차 유엔 총회 이래 한반도 문제 토의 시 한국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으며, 정부는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 중임.
- 북한의 WHO(세계보건기구) 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동 대사는 1973.4월 한국 입장 지지 및 공동 제안국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함.

Molina, Jose Luis 주유엔 코스타리카 대사 방한, 1973.5.14.-18.

| 73-048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4 / 1 / 1~79(79p)

Luis Molina 주유엔 코스타리카대사 부처는 정부의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 대책의 일환에 따른 초청으로 5.14.~18. 방한함.

1. 주요 체한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예방
- 외무부장관대리 면담 및 장관대리 주최 만찬 참석
- 경주, 울산, 부산 방문 및 산업 시찰
- 유엔기념공원 참배, 대한무역진흥공사, KBS 방문 및 회견
- 대사 부인 별도 일정으로 대통령 영부인 예방 및 이화여대 방문

2. 외무장관대리 면담 시 장관대리 언급 요지

- 그간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및 특히 제26차 총회에서 코스타리카가 운영위원국으로 한반도 문제 토의 연기안을 채택하는 데 적극적으로 공헌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함.
- 1973년 WHO(세계보건기구) 북한 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동 가입 유보를 위한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및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사의를 표명함.
- 제28차 총회에서도 한국 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함.

3. 동 대사 약력 사항

- 1945년 사회민주당 창당 위원, 변호사 개업 및 법과대학 교수 역임
- 1951년 이후 3선 의원으로 의정 활동
- 1967년 국회의장 피선
- 1970년 주유엔대사, 제26차 총회 부의장 역임

Galindo Pohl, Reynaldo 주유엔 엘살바도르대사 방한, 1973.5.22.-26.

| 73-048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국제연합과
MF번호	H-24 / 2 / 1~59(59p)

Galindo Pohl 주유엔 엘살바도르대사 부처는 정부의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 대책의 일환에 따른 초청으로 5.22.~26. 방한함.

1. 주요 체한 일정

- 대통령 예방
- 외무부장관 면담 및 장관 주최 만찬 참석
- 판문점, 경주, 울산, 부산 방문 및 산업 시찰, 유엔기념공원 참배
- KBS 방문 및 회견
- 대사 부인 별도 일정으로 대통령 영부인 예방

2. 대통령 예방 시 대통령 언급 요지

- 동 대사 방한으로 양국 간 우호 유대관계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확신함.
- 매년 유엔 총회 및 국제기구에서 엘살바도르의 한국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에 사의를 표함.
- 제27차 유엔 총회에서 동 대사의 협조로 한반도 문제 토의 연기안이 압도적 다수로 채택된 데 대해서도 사의를 표함.
- 제28차 총회에서 한국 입장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당부하며, 귀국 대통령에 대한 안부를 전함.

3. 한-엘살바도르 관계

- 1962년 양국 간 수교 이후 유엔에서 한국 입장을 계속 지지함.
- 한국전쟁 이후 유엔 임시위원단의 일원으로 대표를 파견함.
- 1972.8월 주한 대사관을 개설함.

4. 동 대사는 방한 후 1973.6.9. 김용식 외무부장관에게 감사 서한을 전달해 옴.

Martinez Ordonez, Ingeniero R. 주유엔 온두라스 대사 방한, 1973.4.23.-27.

| 73-048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4 / 3 / 1~76(76p)

Martinez Ordonez 주유엔 온두라스대사는 정부의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 대책의 일환에 따른 초청으로 4.23.~27. 방한함.

1. 주요 체한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예방
- 외무부장관 면담 및 장관 주최 만찬 참석,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면담
- 대한무역진흥공사, 판문점, 육군사관학교 방문, 유엔기념공원 참배
- 대구, 경주, 울산, 부산 방문 및 산업 시찰

2. 대통령 예방 시 대통령 언급 요지

- 동 대사의 방한으로 양국 간 전통적인 우의와 유대관계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확신함.
- 동 대사의 제28차 총회 부의장 입후보 계획과 관련하여 선출될 것으로 확신함.
- 유엔에서의 온두라스의 전폭적인 지지에 사의를 표하며, 금년 총회에서도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함.

3. 동 대사 약력 사항

- 체신 · 건설장관, 주엘살바도르대사, 하원의원 및 올림픽위원장을 역임함.
- 1971년 주유엔대사에 임명됨.

4. 특기 사항

- 동 대사는 방한 후 1973.5.7. 주유엔대사를 만찬에 초대하고, 한국 정부의 환대에 사의를 표명함.
- 동 대사는 방한 중 목도한 한국의 정치 안정과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상을 높이 평가함.

요시다 나가오(吉田長雄) 주유엔 일본공사 방한, 1973.1.16.-19.

| 73-048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4 / 4 / 1~12(12p)

요시다 나가오 주유엔 일본공사는 1973.1.16.~19. 사적인 방한 기회에 외무부 방교국장 등을 면담함.

1. 주요 체한 일정

- 외무부 방교국장, 외교연구원장 면담
- 정부 주선에 따른 판문점, 국립박물관 및 비원 방문
- 외교부 방교국장 주최 만찬 참석

2. 동 공사의 방한 후 2.12. 주유엔대사 면담 요지

- 동 공사는 최초의 한국 방문으로 매우 유익하였음을 언급하고, 한국 정부의 환대에 사의를 표함.
- 주유엔대사는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우방국 인사의 방한은 한국 문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금년도 제28차 유엔 총회에서도 일본 측이 예년과 같이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동 공사는 향후 호주, 영국 등 우방국들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엔 내부 동향에 대응하여 상호 밀접하게 협의할 것임을 다짐함.
- 주유엔대사는 제28차 총회에서의 한반도 문제 처리 방안에 대하여 정부 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신축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고, 현 시점에서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는 남북대화 진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에 따라 금년에도 토의 연기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일본의 협조를 당부함.

Molapo, Mooki V. 주유엔 레소토대사 방한, 1973.4.9.-13.

| 73-048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4 / 5 / 1~93(93p)

Mooki Molapo 주유엔 레소토대사는 정부의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 대책의 일환에 따른 초청으로 4.9.~13. 방한함.

1. 주요 체한 일정

- 국무총리 예방, 외무부장관, 방교국장 면담
- 외무부 정무차관보 주최 만찬 참석
- 대구, 경주, 울산, 부산 방문 및 산업 시찰, 유엔기념공원 참배

2. 주요 협의 사항

- 외무부장관은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WHO(세계보건기구) 북한 가입 문제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한 지지 및 한국 측 결의안에 대한 공동제안국 참여를 요청함.
- 레소토 내 모직공장 및 가발공장 설치 가능성, 어업협력의 일환으로 기술훈련생 한국 초청, 소형 농기구 수출 및 레소토 경제장관 방한, 기술조사단의 레소토 방문 문제를 협의함.

3. 특기 사항

- 동 대사는 방한 이후 주유엔공사 면담 시 방한 중 한국 정부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발전상에 감명을 받았다고 언급함.
- 동 대사는 1973.5.7. 외무부장관에 대한 감사 서한을 통해 동 방한을 통해 양국 간 기존 우호 및 상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협력 강화 가능성을 확인하였음을 언급하고, 양국 간 제반 관계 증진을 위해 레소토 측이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본국 정부에 건의하였음을 밝힘.

Shailendra Kumar Upadhyay 주유엔 네팔대사 방한, 1973.6.11.-16.

| 73-048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4 / 6 / 1~118(118p)

Kumar Upadhyay 주유엔 네팔대사 부처는 정부의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 대책의 일환에 따라 6.11.~16. 방한함.

1. 주요 체한 일정

- 대통령 예방
- 외무부장관 면담 및 장관 주최 만찬 참석
- 판문점, 대구, 경주, 울산, 부산 방문 및 산업 시찰, 유엔기념공원 참배
- 조계종 총무원 및 동국대학교 방문
- 대사 부인 별도 일정으로 대통령 영부인 예방

2. 외무부장관 면담 시 장관 언급 사항

- 한국의 1972.6월 주카트만두총영사관 개설 이후 무용단 네팔 방문, 양잠 기술자 파견을 통한 기술 협력, 네팔 의원단 및 룸비니 사무국장의 방한 등 양국 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함.
- 향후 양국 간 경제, 문화 협력 증진을 위해 현재와 같이 태국 주재 네팔대사대리가 주한 총영사를 겸임하는 것보다 한국에 상주 총영사를 파견함이 바람직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일본 주재 네팔대사관이 겸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네팔 정부가 추진 중인 룸비니 성지 개발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기를 바라며, 한국 정부는 불교계가 추진하고 있는 동 성지 개발 지원 모금운동을 지원할 것임.
- 알제리에서 1973.9월 개최 예정인 비동맹 외상회의 및 정상회의에서 네팔이 한국에 호의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함.

3. 동 대사는 방한 후 1973.7.6. 주유엔대사 면담 시 한국 정부의 환대에 사의를 표함.

Diallo, Abdoulaye 주유엔 니제르대사 방한, 1973.6.29.-7.4.

| 73-048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4 / 7 / 1~137(137p)

Abdoulaye Diallo 주유엔 니제르대사 부처는 정부의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 대책의 일환에 따라 6.29.~7.4. 방한함.

1. 주요 체한 일정

- 국무총리 예방
- 외무부장관, 과기처장관 면담 및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참석
- 판문점, 경주, 울산, 대구, 부산 방문 및 산업 시찰, 유엔기념공원 참배
- 한국요업개발공사 및 도자기 공장 방문
- 부인 별도 일정으로 대통령 영부인 예방

2. 외무부장관 면담 요지

- 외무부장관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반대하지 않는 정부 입장, 6 · 23 선언을 통한 소련, 중국(구 중공) 등 공산 국가들에 대한 문호개방 정책 및 외교관계 수립 촉구 사실을 설명하고, 니제르가 한국의 우방으로서 공산권 국가들이 한국을 승인하기 이전에 북한을 승인하거나 외교관계 수립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함.
- 동 대사는 북한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반대 입장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를 언명하는 한편 니제르가 계속하여 한국 입장을 지지해 온 사실을 강조하고 북한을 승인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
- 동 대사는 주니제르 한국 상주대사관 설치,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니제르 내 도자기 공장 건설의 조속한 시행, 의료단 증파 및 극심한 한발 극복을 위한 특별 지원을 요청한바, 외무부장관은 동 대사의 제반 요청에 대해 호의적인 검토 및 결과 회신을 약속함.

3. 과기처장관 예방 시 면담 요지

- 동 대사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도자기 공장 건설 시 위생도기 생산 추가, 개도국 기술원조 사업 및 기술훈련생 초청 사업에 니제르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함.
- 과기처장관은 위생도기 관련 요청 사항에 대한 검토와 함께 니제르 정부가 분야별 기술훈련생 후보 명단을 제출하면 호의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약속함.

Malinga, Norman M. 주유엔 스와질란드대사 방한, 1973.5.21.-25.

| 73-048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4 / 8 / 1~79(79p)

Norman Malinga 주유엔 스와질란드대사 부처는 정부의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 대책의 일환에 따라 5.21.~25. 방한함.

1. 주요 체한 일정

- 대통령 예방 및 부인 별도 일정으로 대통령 영부인 예방
- 외무부장관대리 면담 및 장관대리 주최 만찬 참석
- 대구, 경주, 울산, 부산 방문 및 산업 시찰
- 대한무역진흥공사 방문 및 유엔기념공원 참배

2. 대통령 예방 시 대통령 언급 요지

- 스와질란드가 매년 유엔 총회 및 국제기구에서 한국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사실 및 특히 제27차 유엔 총회에서 동 대사의 공헌으로 한반도 문제 토의 연기안이 채택된 데 대해 사의를 표함.
- 금년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북한 가입 저지를 위한 한국 입장 지지 및 결의안에 대한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서도 사의를 전하며, 제28차 유엔 총회에서도 변함없는 한국 입장 지지를 당부함.

3. 특기 사항

- 스와질란드는 WHO 총회에서 한국 측 결의안에 대한 공동제안국 참여와 함께 한국 입장을 지지하는 연설을 행함.
- 동 대사는 방한 후 1973.6.4. 주유엔대사 면담 시 한국 정부의 환대에 대한 사의 표명과 함께 한국의 경제 발전상에 감명을 받았다고 언급하고, 방한 중 논의된 바 있는 양국 간 통상 진흥 방안 추진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힘.

Yaguibou, Telesphore A. 주유엔 부르키나파소 (구 오트볼타)대사 방한, 1973.8.17.-21.

| 73-0490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국제연합과 /아프리카과
MF번호	H-24 / 9 / 1~111(111p)

Telesphore Yaguibou 주유엔(미국 및 캐나다 겸임)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대사 부처는 정부의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 대책의 일환에 따라 8.17.~21. 방한함.

1. 주요 체한 일정

- 외무부장관, 경제기획원차관 면담
- 판문점, 울산, 부산 방문 및 산업 시찰, 유엔기념공원 참배
- 구로공업단지, 경희의료원 및 한국방송공사 방문

2. 외무부장관 면담 요지

- 외무부장관은 정부가 제28차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동 결의안 및 UNC(주한유엔군사령부) 존속 문제 토의 시 부르키나파소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함.
- 동 대사는 한국 정부의 방한 초청에 대한 사의 표명과 함께 방한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본질 및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음을 언급하고,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를 본국 정부에 이미 건의하여 동의를 얻었음을 밝힘.
- 동 대사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유엔 회원국의 1/3 규모인 41개국에 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아프리카에 대한 교섭 사절단 파견 및 한국 입장에 대한 설명은 아프리카 그룹의 일치된 지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동 대사가 귀임 후 유엔 총회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 정부에 재차 충실히 전달할 것임을 언명한 데 대해 외무부장관은 사의를 표함.

3. 특기 사항

- 부르키나파소는 그간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 시 중립 입장을 취해 옴.
- 부르키나파소는 1972.10월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고, 북한은 농기구, 차량 등 무상원조를 약속한 바 있음.

Ipoto 주유엔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대사 방한 초청계획

| 73-049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연합과/아프리카과
MF번호	H-24 / 10 / 1~17(17p)

정부는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 대책의 일환으로 Ipoto 주유엔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대사의 방한을 추진함.

1. 주유엔대사는 1973.3.13. 동 대사를 오찬에 초청하여 1973년 중 방한을 권고한바, 동 대사는 방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동 승인을 위한 한국 측의 측면 지원을 희망함에 따라 주유엔대사는 주콩고대사대리를 통한 외무성 접촉 등 측면 지원을 건의함.

2. 동 대사는 1973.4월 공관장회의 참석을 위한 본국 귀임 중 주콩고대사대리 면담 시 방한 문제 관련 아래와 같이 언급함.

- 방한 실현을 위한 외상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동 외상이 1973년 하반기 중 방한 계획임에 따라 승인을 얻지 못함.
- 동 외상의 방한 이전에 방한할 수 있기를 희망함.

3. 주콩고 북한대사는 1973.4.18. 공한을 통해 동 대사의 북한 방문을 제의하고 콩고 정부는 동 북한 측 초청을 수락한바, 정부는 주유엔대사 및 주콩고대사대리에게 유엔 총회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에 있어 동 대사의 의견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동 대사의 북한 방문을 전후한 방한이 실현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유엔 한국협회

| 73-0492 |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4 / 13 / 1~75(75p)

정부는 1973.8.13.~18. 제네바 개최 제24차 WFUNA(유엔협회세계연맹) 총회에 유엔협회 총무인 이강혁 외대 교수를 민간 대표로 파견할 것을 위촉함.

1. 파견 목적

- 6 · 23 선언의 의의 및 정부의 신외교정책 홍보
- 제28차 유엔 총회에 대비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및 UNC(주한유엔군사령부) 관련 정부 입장 설명
- 북한의 동 세계연맹 가입 동향 파악

2. 주요 의제

- 유엔의 새로운 국제 환경에 대한 대처 및 유효성 보장
- 경제, 사회적 발전 및 환경 문제 관련 대책
- 평화 증진 및 긴장 완화 방안
- 인종 분규와 관련한 편견 해소

3. 유엔협회세계연맹과 유엔한국협회의 관계

- WFUNA는 유엔의 이념과 목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민간 외교단체로 74개국 협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1947년 창설된 유엔한국협회는 1951년 최초로 동 연맹 총회에 대표를 파견함.
- 한국협회는 1962년 동 연맹의 준회원으로 가입하여 1966년 제20차 총회에서 정회원으로 승격되었으며, 제22차 총회에서는 김규택 한국협회 사무국장이 부회장에 피선되어 동 연맹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함.
- 북한의 WHO(세계보건기구) 등 유엔전문기구에 대한 가입 동향에 비추어 북한은 동 제24차 총회에서 동 연맹에 대한 가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제28차 유엔의 날 기념메세지

| 73-049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4 / 15 / 1~38(38p)

정부는 1973.10.24. 유엔 창설 28주년과 관련하여 김용식 외무부장관의 기념 메시지를 Waldheim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기념식을 통해 메시지를 발표함.

1. 외무부장관 메시지

- 국제 평화와 안전, 인류 사회 발전을 위한 유엔의 공헌을 치하함.
- 사무총장의 유엔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를 높이 평가함.
- 유엔의 제 원칙과 목적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신념을 재확인하며,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유엔의 지속적인 노력에 사의를 표함.
- 금차 제28차 총회가 결실을 맺는 총회가 될 것을 희망함.

2. 대통령 메시지 (국무총리 대독)

-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억지를 위한 유엔의 공헌을 높이 치하하며, 평화통일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유엔의 정당한 역할과 노력이 요청됨.
- 국제 정세가 냉전체제로부터 평화공존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긴장 완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유엔의 실질적인 노력과 역할이 요구됨.
-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적십자회담, 7 · 4 공동성명 및 6 · 23 선언에 따른 제반 조치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들에 대한 문호개방 조치와 함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위해 노력 중임.
- 평화통일과 번영을 희구하는 한국 국민의 열망이 유엔의 노력에 의해 결실을 맺기를 기원함.

3. 외무부장관 메시지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답신

- 동 장관의 메시지 및 유엔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함.
- 사무총장에 대한 동 장관의 격려와 성원에도 사의를 표함.

유엔공채 원리금 상환액 수령

| 73-049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24 / 16 / 1~9(9p)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한국은행을 통해 구입한 유엔 공채에 대한 아래 내역의 상환액 20,472달러를 1973.1.12.자로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전달해 옴.

1. 3.8%의 이율이 적용된 11차 연도 말 원금 상환액 15,200달러

2. 2%의 이율이 적용된 1972.1.15.~73.1.15. 기간의 이자 5,272달러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아시아 미곡 무역기금 한국가입 검토

| 73-0495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I-43 / 1 / 1~92(92p)

정부는 1972.8.9. ECAFE(유엔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산하 ARTF(아시아미곡무역기금) 가입 유보를 결정함.

1. ECAFE 사무국은 1972.4.12. 정부 간 계약 시 5년 이내의 연불 베이스로 미곡 판매 재융자를 목적으로 하는 아시아미곡무역기금 설치를 제안하고 한국의 동 기금 참여 여부를 타진해 옴.

2. 정부는 아래 검토에 따라 동 기금 가입 결정을 유보함.

- 한국 국민의 특수한 기호에 따라 아시아지역 미곡 수출국들이 생산하고 있는 장립종 쌀 수입에는 난점이 있음.
- 미국과의 특수 경제협력 관계에 따른 협정상 미국산 현미의 장기 저리 차관 도입이 불가피함.
- 한국의 경제개발 자원 기금 조달 측면에서도 5년 이하의 단기 연불 조건은 바람직한 조건이 되지 못함.
- 동 기금 가입 시 국내 미곡 자급 시기까지 장기 저리 차관 도입에 제약을 받게 됨.
-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의 일원으로 동 기금 관련 회의에 옵서버로 참여하여 동 기금의 운영 및 발전을 지원함이 바람직함.

3. ECAFE 사무국은 1973.4월 개최된 동 기구의 제29차 총회 결정에 따라 역내 회원국들의 동 기금 참여 서명 시한을 6.30.로 정하고 한국의 가입을 문의하여 온바, 정부는 상기 검토 결과에 따라 가입 의사가 없음을 6.20. 사무국에 통보함.

ECAFE 총회, 제29차. 동경, 1973.4.11.-23.

| 73-049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I-43 / 2 / 1~193(193p)

정부는 1973.4.11.~23. 동경에서 개최되는 제29차 ECAFE(유엔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에 김용식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회의에는 36개 회원국 50여 명의 각료급 대표가 참석 예정으로 아시아 지역의 긴장완화 추세에 따른 역내 경제협력 증진 강화를 도모함.
- 국제 통화 위기,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최근의 국제 경제 불안정이 개도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협의함.
- 한국의 경제개발 현황 및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역내 무역 증진, 농촌 개발 및 인구 문제 등 주요 의제와 관련한 지역협력 강화 방안을 강구함.

2. 주요 의제

- 역내 경제, 사회 발전 현황 및 경제 개발 계획
- 역내 무역 증진, 공업 및 자원 개발
- 인구 문제, 공공 행정

3. 수석대표 기조연설 요지

- 아시아극동지역에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지역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
- 한국은 이념이나 정치, 경제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국가와의 관계 개선 및 통상 확대를 추구함.
- 새로운 대표단('구 중공'을 의미)의 참여로 지역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함.
-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협상 및 국제 통화개혁에 개도국의 권익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역내 협력이 긴요함.

4. 특기 사항

- 중국(구 중공)은 1971년 유엔 가입 이후 최초로 동 회의에 참가하였으나, 실질적인 토의 참여보다는 정치적인 사안들을 제기하여 논쟁을 야기함.
- 중국은 북한을 제외한 한국의 일방적인 동 회의 참석에 유감을 표명하고, 소련의 아시아집단안보구상을 지적하여 러시아와 논쟁을 유발함.

북한의 ECAFE 가입 문제

| 73-049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I-43 / 3 / 1~17(17p)

정부는 1973년 중 북한의 ECAFE(유엔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가입 추진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1973.2월 아래 사항들을 검토하는 한편 주유엔대표부 등 관련 공관에 북한 및 중국(구 중공)의 관련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함.

1. 북한의 ECAFE 가입을 위한 중국 등의 ECOSOC(유엔경제사회위원회)에서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북한 가입을 위한 결의안 제출 시에는 ECOSOC 회원국들과의 교섭을 통해 저지함.

2. 동독의 1972.12월 ECE(유럽경제위원회) 가입 당시 헝가리, 폴란드, 소련 등이 공동제안국으로 동독의 ECOSOC에 가입 결의안을 제출하여 가결된 바 있으며, 동 가입으로 동독은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이전에 ECE에 가입함.

3. 중국의 1973.4월 제29차 ECAFE 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 북한과 베트남의 가입 시도 및 4월 ECOSOC 회의에서의 관련 결의안 제출 가능성이 있음.

4. ECOSOC 잠정 의제에 지역협력 의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회원국 또는 유엔 사무총장의 제의로 북한 가입 의제가 추가 의제로 포함될 경우 동 제의를 사전에 봉쇄할 수 없음.

5. ECAFE 가입 요건과 관련하여 아시아극동지역 국가인 유엔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준회원국의 가입안은 동 위원회 총회의 승인을 거쳐 ECOSOC에 상정됨.

6. 북한은 유엔 비회원국으로 ECAFE 가입을 희망할 경우 동독의 예와 같이 ECOSOC에서 가입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시행될 것인바, 동독의 경우 만장일치로 가입안이 채택된 바 있음.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회의, 제13차. Geneva, 1973.8.21.-9.11.

| 73-049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I-43 / 4 / 1~42(42p)

정부는 1973.8.21.~9.11. 제네바 개최 제13차 UNCTAD/TDB(유엔무역개발회의/무역개발이사회)에 주제네바대사를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정부 훈령

- 한국의 장기 자원대책과 관련하여 1차산품위원회에 회원국으로의 참여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고 피선을 위해 노력함.
- 공산품의 지속적인 수출 신장을 위해 GSP(일반특혜관세) 제도의 개선 및 적용 확대, 미실시국의 조기 시행, 원산지 규정 개선의 조기 이행을 촉구함.
- 국가의 경제적 권리의무헌장 초안 작성 회의에서 멕시코 등 개도국의 기본 입장을 지지함.
- 북한의 옵서버대표 파견 시 6·23 선언의 취지에 따라 한국의 우위 확보를 위해 적절히 대처하며, 77그룹 활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함.

2. 동구권과의 교역 문제와 관련한 별도 훈령

- 정부는 1972.8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모든 공산 국가 특히 동구권 제국과의 교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교역을 위한 개방정책을 시행 중임을 밝힘.
- 상기 기본 방침에 따라 무역거래법 개정, 외국 선박의 한국 입항 및 한국 선박의 외국 기항 자유화 규정을 제정하였음을 설명함.
- 6·23 선언의 기본 취지에 따라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과의 교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천명하고, 한국과의 교역을 제한, 금지해 온 모든 국가들이 정책을 변경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교역 증대에 기여할 것을 촉구함.

3. 회의 결과

- 경제, 사회제도가 상이한 국가 간 무역 문제 토의 시 사무총장은 동 사안이 이사회에서 최초로 토의됨을 강조하고, 보편성 원칙에 따른 동독, 북한의 가입은 교역 증진을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한국은 중국(구 중공),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의 이의 제기 없이 상품위원회 회원국으로 선출됨.

UNCTAD/국가의 경제적 권리의무헌장 제정에 관한 작업단회의, 제1-2차. Geneva

| 73-049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I-43 / 5 / 1~93(93p)

정부는 1973.2.12.~23. 제네바 개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국가의 경제적 권리 및 의무헌장 제정에 관한 제1차 실무회의에 주제네바대표부 정우영 참사관을 옵서버대표로 파견함.

1. 개최 배경

- 1972년 제3차 UNCTAD 총회에서 멕시코 대통령이 동 헌장의 제정 필요성을 제안함.
- 동 총회는 헌장 작성을 위한 실무그룹을 31개국으로 구성할 것에 합의하고, 유엔 총회는 41개국으로의 확대를 결의함.

2. 회의 결과

- 개도국들은 동 헌장 제정이 유엔 헌장에 비교할 만큼의 의의와 중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헌장 제정을 통한 국제적 협력의 증대 및 개도국의 경제적 권익 보호를 요구함.
- 선진국들은 헌장 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현실적, 실용적인 헌장으로 모든 국가들이 수락할 수 있는 보편성에 기초해야 함을 주장하고, 특히 미국대표는 개도국들이 주장하는 권리만을 규정함은 부당하며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함.
- 선진국들은 동 헌장이 선언 또는 결의안의 형식으로 제정되어야 함을 희망하였으나, 개도국들은 법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향후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됨.
- 회의 진행 방식과 관련하여 각 지역그룹별로 헌장에 포함될 내용을 우선 작성하여 제출한 이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동 지역별 초안 심의를 위한 18개국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작성한 시안에 대해 제2차 실무회의 개최 이전에 각국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 제2차 실무회의를 1973.7.16.~27. 개최하기로 합의함.

3. 소위원회 시안에 대한 정부 입장 검토

- 전문에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추가함.
- 사회주의 국가들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경제, 사회제도에 기초한 차별 철폐를 통한 교역 증진 등 문구를 삭제함.
- 개도국에 대한 지나친 의무 부과 문구를 삭제함.

UNCTAD/국제일관수송 정부간 준비그룹 회의, 제1차. Geneva, 1973.10.29.-11.2.

| 73-050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I-43 / 6 / 1~31(31p)

정부는 1973.10.29.~11.2. 제네바 개최 제1차 UNCTAD/IIT(유엔무역개발회의/국제통합수송) 정부 간 실무회의에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파견 목적

- 한국은 1973.8월 제13차 UNCTAD 이사회 결정에 따라 IIT 회원국으로 가입함.
- 금차 회의는 IIT 협약 초안 작성을 위한 실무회의로 동 초안 준비 작업에 참여하는 한편 회원국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정부의 관련 정책 입안에 기여함.

2. 회의 개최 배경

- 컨테이너에 의한 국제적인 수송 방식의 발전에 따라 운송 당사자 간의 구비서류, 책임 및 보험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필요성이 대두됨.
- 국제적인 규제와 관련하여 선진국이 선주, 보험회사 및 운송 수단의 우위를 점하는 현실에서 개도국들의 관련 권익 보호 요구가 점증함.
-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1972년 UNCTAD 이사회에 관련 협정 초안 작성을 권고함.

3. 회의 결과

- 선진국들은 수송과 관련한 서류, 보험 등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 반면 77그룹 등 개도국들은 동 협정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함.
- 책임 및 보험과 관련하여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독점 현실을 탈피하여 공평한 대우를 요구함.
- 개도국들은 협정 시행상 발생되는 관세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개도국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함.
- 개도국들은 보험사, 지역 선박, 내륙 교통수단의 선진국 소유 현실 등 정책적인 문제의 선결 필요성을 주장함.

4. 특기 사항

- 공산권은 신임장위원회에서 한국대표의 신임장을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함.
- 정부대표는 UNCTAD 이사회의 결정을 근거로 동 공산권 주장을 반박함.

UNCTAD/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회의, 제6차. Geneva, 1973.7.3.-13.

| 73-050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I-43 / 7 / 1~174(174p)

정부는 1973.7.3.~13.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UNCTAD/CIFRT(유엔무역개발회의/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제6차 회의에 정우영 주제네바 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위원회는 개도국의 무역금융에 관한 선후진국 간의 협조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제2차 유엔개발 10개년계획에 따른 개도국의 개발전략에 필요한 선진국으로부터의 외자 도입, 공공개발 원조, 개도국의 외채 부담 및 내자 동원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토의될 것임.
- 한국의 중화학공업, 새마을사업 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외자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개도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도국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무역금융상의 제반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책 모색을 촉구함.
- 자본 도입 조건의 완화, 개도국의 대외채무 누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과 개발금융의 연계 및 SDR의 재분배 문제에 대한 선진국들의 성의 있는 협조를 촉구함.

2. 국제통화 문제에 대한 정부대표 발언 요지

- IMF(국제통화기금) 체제에 입각한 환율 제도를 유지하되 국제수지 조정을 고려한 다소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함.
- 대외거래와 관련한 개도국의 이익 보호 방안 도출 및 개도국에 대해 현행 IMF 할당량보다 더 많은 SDR의 배분을 촉구함.

3. 회의 결과

- 개도국의 대외부채와 관련하여 다수 국가가 개도국 정부 간 기구의 설립을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측은 사안별 해결을 주장하고 특히 미국, 서독은 정부 간 기구 설립에 반대함.
- 정부대표는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공공원조 및 차관 규모가 목표에 미달할 뿐 아니라 수혜 조건도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선진국의 개선 노력을 촉구함.
- 정부대표는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성과 및 1980년까지의 장기계획 목표를 설명하고, 개발계획의 성공을 위한 양질의 외자도입 필요성을 역설함.
- 신임장위원회에서 소련대표가 정부대표단이 한반도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정부대표는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 발언임을 지적하고 반박함.

UNCTAD/원산지 규정에 관한 작업단회의, 제4차. Geneva, 1973.11.5.-9.

| 73-0502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I-43 / 8 / 1~73(73p)

정부는 1973.11.5.~9. 제네바 개최 제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실무회의에 정우영 주제네바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회의에서는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실시에 따른 원산지 규정 시행의 문제점 검토, 관련 정보 교환 및 개선 사항이 토의될 예정임.
- 정부대표단은 회의 참가를 통해 특혜 공여국이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상의 제한적 요소 제거, 가공도 기준의 충족 조건 완화, 개도국 전체를 단일화한 부가가치 산출 및 원산지 규정 시행상의 각국별 차이점 개선을 촉구함.

2. 정부 훈령

-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증명 발급상 유권적 판단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음에 따라 각국 규정의 개선을 촉구하고 관련 구체적 정보를 수집함.
- 누진 적용 및 선진국 관여분에 대해서는 여타 개도국과 공동 입장을 유지하며, 가공도 기준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의 현 실정에 유리하도록 완화를 촉구함.
- 공산권 측의 대표권 문제 제기 시 한국이 UNCTAD 창설 회원국으로 기여해 왔음을 지적하고, 정치적인 논쟁 야기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반박함.
- 원산지 규정의 변동 사항 통보체제 확립 필요성이 제기됨.
- 공여국들은 질문 사항에 대해 유권적인 회신이 가능한 기관을 설치하여 공표할 것을 촉구함.

3. 회의 결과

- 개도국들은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 가공도 목록의 제한성, 직접운송의 난점 및 누적취급의 필요성을 제기함.
- 선진국들은 수혜국의 원산지 규정상의 의무 불이행, 규정에 위배되는 서식 사용 등을 지적하는 한편 원산지 규정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함.
- 정부대표는 한국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조기에 마련하고 상호 협조를 통한 운영을 추진 중이나, 공여국 측의 원산지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증명서 발급 및 기 발급된 증명서에 대한 빈번한 자의적인 사후검사 요구 등을 지적하고 여사한 사례의 시정을 촉구함.

UNCTAD/제품위원회 회의, 제6차. Geneva, 1973.8.7.-17.

| 73-050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I-43 / 9 / 1~82(82p)

정부는 1973.8.7.~17. 제네바 개최 제6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제품위원회에 황호을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회의에서는 개도국의 무역 확대 및 다양화를 위한 선후진국 간의 협력 방안이 토의될 예정으로 개도국의 수출 증진에 장애가 되는 비관세장벽의 완화, 개도국의 다자간 무역협상 참여, 직물류 교역 및 긴급수입제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임.
- 정부대표단은 동 회의를 통해 1973.9월 개시 예정인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협상에서 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수량 제한 등 비관세장벽의 완화, 여타 개도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개도국에 대한 특혜대우 부여 등을 촉구할 것임.

2. 정부 훈령

- 개도국 생산 제품 및 반제품에 대한 수량 제한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촉구함.
- GATT 협상에서 선발개도국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을 극소화함.
- 직물류 규제에 관한 다자간협정 체결이 불가피할 경우 개도국 직물 산업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토록 함.
- 긴급수입제한 발동 조건의 엄격한 규제화 및 현상유지 원칙의 준수를 촉구함.
- 수제품을 BTN(관세품목분류표)에서 별도로 재분류함으로써 관세 우대 조치를 공여하도록 함.

3. 회의 결과

- 77그룹은 면직물, 산업조정 지원조치, 제한적 영업 관행, 긴급수입제한 조치, 수출지원 정책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관한 6개 결의안 초안을 제출함.
- 선진국 측은 동 결의안의 대부분에 대해 수락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절충을 거쳐 비관세장벽 완화 결의안만 채택되었으며, 미합의 사항은 1974년 속개 회의에서 재차 논의하기로 합의함.
- 선진국 측은 GATT 협상을 앞두고 동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전 약속도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개도국 측은 선진국 측의 여사한 입장 및 개도국 측 제안 5개 결의안이 거부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함.

UNCTAD/특혜특별위원회 회의, 제5차. Geneva, 1973.4.3.-13.

| 73-050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I-43 / 10 / 1~122(122p)

정부는 1973.4.3.~13. 제네바 개최 제5차 UNCTAD/SCP(유엔무역개발회의/특혜특별위원회)에 윤영교 외무부 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 77그룹 중 아시아그룹과 공동보조를 통해 미국 및 캐나다의 조속한 GSP(특혜관세제도)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기존 GSP 제도의 개선에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함.
- 국별 수혜 한도 등 한국의 이해에 중요한 사안으로 여타 개도국과 경합 관계에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과 유사한 입장에 처한 선발개도국들과 협력함.
- 주요 특혜 공여국인 EEC(구주경제공동체) 및 일본의 GSP 이행 효과를 분석한 UNCTAD 자료에는 한국이 주요 수혜국으로 자주 인용되어 최후진국들의 반발 가능성이 있는바, 한국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개도국들과의 협조를 통해 적절히 대처하는 한편 한국의 최근 수출 신장은 GSP 수혜보다는 수출 산업의 발전에 기인한 것임을 설명함.

2. 정부대표 기조연설

- 특정 공여국을 거론하지 않고 GSP 시행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함.
- 일본의 GSP 이행의 시기별 관리, 사전 할당, 한도 책정 및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 등 제한 요소를 중심으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함.

3. 주요 협의 사항(차기 회의에서 계속 협의 예정)

- GSP의 내용 및 운영 개선, 미국 및 캐나다의 GSP 실시 지연 중지
- 호주 등 특혜 공여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등 GSP 시행 개선 요청
- 다자무역협상이 GSP의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필요 조치 및 보상책 강구

4. 대표단 활동

- 스위스, 핀란드, EEC, 영국, 미국 등 대표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한국 상품의 수입 및 GSP 수혜 확대 방안을 협의함.
- 동구권 공산국가들의 신임장 보고서 문서를 통한 한국의 대표권 부인에 대해 정부대표는 본회의에서 동 주장을 반박함.

북한의 UNCTAD 가입, 1973.7.24.

| 73-050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I-6-63 / 9 / 1~7(7p)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은 1973.7.24. 북한의 동 기구 가입을 발표함.

1. 가입 경위

- 북한은 1973.5.19. WHO(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한바, UNCTAD 규약은 유엔전문기구 회원국에 대한 동 기구 자동가입 자격 부여를 규정함.
- 북한 외교부장 허담의 7.21. 가입 희망 서한에 대해 UNCTAD 사무국장은 7.24. 회신을 통해 북한의 동 기구 가입을 확인함.
- 상기 가입으로 북한은 UNCTAD의 144번째 회원국이 됨.

2. 정부 입장

- 상기 북한의 가입과 관련하여 정부는 1973.8.21.~9.11. 개최 제13차 UNCTAD 이사회 정부대표단에 대해 아래와 같이 훈령함.
- 한국은 1972.8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모든 국가와의 교역을 적극 추진한다는 기본 정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6·23 선언 기본정신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 아래 모든 국가와 교역을 희망함에 따라 동·서 간 교역 증대에 기여할 것임을 천명함.
- 북한이 동 이사회에 참석할 경우 6·23 선언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며, 한국의 우위 확보를 위해 토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77그룹의 활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함.

3. 특기 사항

- UNCTAD 이사회의 북한의 지역그룹 배속 문제 협의 시 중국(구 중공), 쿠바 등은 북한의 가입을 환영하며, 북한의 가입은 동 기구의 보편성 원칙 구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발언함.
- 특히 중국은 북한이 김일성 지도하에 경제사회개발을 실현하고 있으며, 북한이 국제기구에서 모든 협조를 다할 것임을 강조함.

UNCTAD/호주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73-050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I-43 / 11 / 1~23(23p)

호주는 1973.7.3. 현행 LDC(최후진국)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 철폐 및 신제도 시행을 발표함.

1. 주요 내용

- 기존의 대LDC 특혜관세제도에서 시행되어 온 일부 선별 수입품에 대한 할당량을 철폐하고 가공된 일차산품을 포함하는 모든 수입 완제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선진국 제품보다 10% 인하된 관세 혜택을 부여함.
- 동 조치에 따라 후진국이 선진국보다 저렴하게 생산하고 있는 섬유 및 의류 제품 등은 동 특혜 대상에서 제외됨.
- 호주는 국내 산업의 선진국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후진국이 생산하는 선진국형 공업제품 수입 증대를 통한 무역불균형 시정을 의도함.
- 동 조치에 따른 10%의 관세인하 혜택 조치는 시행 2년 후 재검토하며, 계속하여 선진국 제품과 경쟁력을 갖지 못할 경우 추가로 10%의 혜택을 가산할 예정임.
- 호주 정부는 검토를 거쳐 1974.1.1. 동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2. 한국에 대한 영향(주호주대사 보고)

- 기존의 LDC 특혜관세제도는 대상 품목 선정의 지나친 제한으로 한국에 대해 큰 실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였으나 신제도는 대상 품목 및 할당량의 철폐에 따라 대부분의 한국 상품에 대한 혜택이 예상됨.
- 신제도는 선진국에서 독점적으로 수출해 온 중화학, 기계, 조선, 철강, 제철 및 전자제품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향후 한국의 동 품목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UNCTAD/오스트리아의 GSP

| 73-050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I-43 / 12 / 1~94(94p)

오스트리아는 1973.10.25.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장에게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시행 법안을 통보함.

1. 수혜국의 증명서 발급 기관

- 세관, 정부기관뿐 아니라 수혜국과의 합의에 따라 상공회의소, 산업연맹 등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를 인정함.
-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스페인, 불가리아 및 그리스와 1972년 중 상기 증명서 발급 인정에 합의함.

2. 시행 법안의 주요 내용

- 첨부된 목록에 규정된 특정 품목에 대해 30%의 관세를 감면함.
- 수혜 대상국으로 한국 등 111개국 및 홍콩 등 49개 특수지위영토를 규정함.
- 수혜국을 원산지로 하는 생산품으로 생산국으로부터 오스트리아 세관에 직접 운송된 품목을 대상으로 함.
- 특혜관세 및 최혜국대우와의 상관관계를 별도로 규정함.
- 수혜 대상 품목 및 특정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중단 사유를 규정함.
- 동 규정은 1972.4.1.자로 발효됨.

3. 원산지 규정

- 수혜국 수출 품목의 원산지 요건을 규정함.
- 광물, 식물, 동물 및 어류 등 원산지 재료 요건을 규정함.
- 품목의 포장, 부가가치 및 단위 요건을 규정함.
- 직접운송, 전시용 품목 요건을 규정함.
- 원산지 증명 발급기관을 규정함.

UNCTAD/덴마크의 GSP

| 73-050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I-43 / 13 / 1~33(33p)

1. 덴마크는 1973.9.24.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장에게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관련 아래 사항을 통보함.

- 1973.1.1.자 EEC(구주경제공동체) 가입에 따라 기존의 개도국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제도) 법안을 1973.12.31.자로 폐지함.
- 1974.1.1. 이후 EEC의 GSP 법안이 시행될 예정임.

2. 덴마크의 기존 GSP 법안은 수혜 대상국으로 한국 등 98개국 및 홍콩 등 35개 특수지위 영토를 규정함.

UNCTAD/핀란드의 GSP

| 73-050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I-43 / 14 / 1~19(19p)

핀란드는 1973.11.1.자로 한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국 포함을 결정함.

1. 주핀란드통상대표부공사의 1973.7.20. 외무성 통상부국장 면담 시 핀란드 측은 한국에 대한 GSP 수혜대상국 포함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루마니아 및 이스라엘의 포함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 때문임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한국의 수혜대상국 포함에는 문제가 없음을 언명함.

- ❁ 루마니아는 핀란드의 COMECON(공산권경제상호원조협의회)과의 경제협력 기본 협정에 따른 양국 간 무역자유화 문제에 대한 이견,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이유로 각각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
- ❁ 정부로서는 일괄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으로 하반기 중 해결될 것으로 전망함.

2. 핀란드 외무성은 1973.10.31. 공한으로 한국의 GSP 수혜대상국 포함을 통보하여 왔으며, 동일자로 북한, 루마니아 및 몽골도 신규 수혜대상국에 포함됨.

UNCTAD/일본의 GSP

| 73-051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동북아1과
MF번호	I-43 / 15 / 1~69(69p)

일본의 1973년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시행 내용임.

1. 관세율 개정(4.1.)

-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 등을 포함하는 71개 품목에 대한 일반관세를 인하함.
- 천연흑연은 기존의 관세할당제도를 폐지하고, 무관세 품목으로 규정함.
- 농수산물에 대한 특혜관세를 개정하여 기존의 58개 품목에 11개 품목을 추가하고 기존의 58개 품목 중 14개 품목의 특혜관세율을 인하함.
- 광산, 공산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개정하여 기존 57개 품목 중 6개 품목을 무관세 품목으로 규정함.
- 수입한도 초과 시에도 일본 국내 산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수혜국으로부터의 수입 촉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특혜 정지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수입한도 제한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함.

2. 특혜관세 확대조치(6.1.)

- 생활 관련 품목의 수입 촉진을 통한 국내 물가 안정 및 개도국에 대한 대외경제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특혜관세 대상 162개 품목 중 95개 품목에 대한 수입한도를 50% 확대함.
- 섬유제품, 잡화, 전지, 전구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함.
- 홍콩산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하여 적용 제한 품목을 기존의 96개 품목으로부터 12개 품목으로 축소함.

3. 제10차 한 · 일 무역회담에 대비한 정부 입장

- 일본의 개도국 공산품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1.7%에 불과한 사실은 일본 GSP 제도의 제한적인 효과를 반영하는 사례로 국별 수혜 한도의 제한 폐지 등 개선이 필요함.
-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의복, 신발류 등 개도국 주요 수출품 10개 품목이 예외 품목으로 규정된바, EC(구주공동체)의 예와 같이 예외품목 전면 폐지 및 특혜 공여가 요구됨.
- 특혜 대상 품목 중 개도국의 수출 실적이 많은 56개 품목에 대한 선별적인 관세인하 규정은 특혜 효과를 반감하고 있음에 따라 동 특정 품목 규정을 철폐해야 함.

UNCTAD/노르웨이의 GSP

| 73-051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I-43 / 16 / 1~11(11p)

노르웨이는 1973.9.18.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장에 대한 공한을 통해 6.20.자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확대 조치 결정 내용을 통보함.

1. 수혜 대상

- 1971년 GSP 최초 시행 시 수혜국을 77그룹 회원국으로 한정하였으나, 77그룹의 확대에 따라 바레인, 방글라데시, 부탄, 쿠바, 피지, 오만, 카타르, 서사모아 및 아랍에미리트를 수혜 대상국으로 포함함.
- UNCTAD 비회원국인 나우루, 통가를 수혜 대상국으로 포함함.
- Gibraltar 등 특수지위 영토를 수혜대상지역으로 포함함.

2. 수혜대상 품목

- 추가 수혜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한도 및 여타 제한 조치를 적용치 않음.

3. 원산지증명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 기존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

UNCTAD/스웨덴의 GSP

| 73-051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I-43 / 17 / 1~25(25p)

스웨덴은 1972.1.1. GSP(일반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함.

1. 동 특혜관세 대상품목에 한국의 관심품목인 가공생선, 맥주, 에틸알코올, 담배 등의 품목을 1973.1.1.자로 추가함.

2. 동 특혜관세 대상품목에 1973.7.1.자로 동식물성 유지, 마가린, 포도주 등의 품목을 추가함.

3. 스웨덴의 일반특혜관세 수혜품목의 관세율은 5~10%이며, 1972년 스웨덴의 특혜관세 공여대상 품목의 총 수입액은 2,370.5만 달러로 한국으로부터의 동 품목 수입액은 56.3만 달러임.

UNCTAD/영국의 GSP

| 73-051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I-43 / 18 / 1~9(9p)

영국 관세청이 1973.6.28. 통보해 온 1972년 한국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공여 내용임.

1. 영국의 개도국에 대한 1972년 GSP 시행에 따른 특혜 대상 품목의 총 수입액은 34,617,304파운드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286,371파운드임.

2. 1972.1~2월 중 특혜 대상 품목의 총 수입액은 11,752,554파운드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636,922 파운드임.

UNCTAD/미국의 GSP

| 73-051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I-43 / 19 / 1~16(16p)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시행 준비와 관련한 1973년 중 주요 동향임.

1. 국무성 국제무역담당 부국장의 1973.3.20. 주미대사관 관계관 면담 시 언급 요지

- ❋ 의회에 제출 예정인 무역법안 초안에 GSP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 프랑스 세력권 하에 있는 서부아프리카 제국 등 미국에 대해 차별대우를 적용 중인 일부 국가 및 직물류 등 이미 미국이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일부 품목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
- ❋ 의회는 GSP 시행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며, 4.3.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인 UNCTAD (유엔무역개발회의) 특혜특별위원회에서는 미국이 GSP 미실시국임에 따라 여타 국가들의 입장을 파악하는 선에서 대처할 예정임.

2. Mills 하원 세입위원장 및 관계 참석자의 1973.5.16. 관련 세미나 중 발언

- ❋ 무역법안 초안에 대한 공청회 및 위원회 표결을 6월 중 종료하고 8월 휴회 이전 하원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임.
- ❋ 상원은 동 무역법안의 무역수지 균형 조항,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GSP 시행에 전반적으로 찬성 입장이나, 공산권에 대한 최혜국대우 부여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임.

3. 주미대사에 대한 1973.5.20. 관련 지시

- ❋ 무역법안 초안상 특정 개도국의 특정 수출품의 대미 수출이 동 품목의 총 미국 수입액의 1/2을 점하는 경우 또는 연간 2,500만 달러 초과 시 특혜관세 수혜 제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의 주종 수출품목인 섬유류, 신발 및 일부 철강제품이 특혜관세 예외품목에 포함되어 있는바, 동 시행 시 한국의 수혜액은 미미할 것이며 여타 개도국들과의 경쟁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임.
- ❋ 따라서 관련 교섭을 통해 여사한 제한 조항들이 비차별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 의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동 제한 조건들의 완화 가능성을 타진 바람.

한표욱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상주대표 임명, 1973.6.20.

| 73-051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I-43 / 20 / 1~14(14p)

정부는 1973.6.20. 한표욱 신임 주오스트리아대사를 비엔나 소재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상주대표로 교체 임명함.

1. 한표욱 신임 대사의 1973.6월 오스트리아 부임에 따라 정부는 6.20. UNIDO 사무총장에게 상주대표 교체 임명을 통보하고 신임장을 송부함.

2. UNIDO 사무국은 1973.7.13. 공한으로 상기 신임장 접수를 회신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DB(공업개발이사회) 상설위원회 회의, 제3차. Vienna, 1973.12.3.-11.

| 73-0516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I-43 / 21 / 1~73(73p)

정부는 1973.12.3.~11. 비엔나 개최 제3차 UNIDO/IDB(유엔공업개발기구/공업개발이사회) 상설위원회에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강승구 참사관을 옵서버대표로 파견함.

1. 의제

- 1975.3월 페루 리마 개최 제2차 UNIDO 총회 준비
- 공업 개발과 관련한 유엔의 역할 및 활동 조정
- UNIDO의 세계식량회의 참가
- 개도국의 공업화 및 공업개발 조사
- 개도국 간 개발을 위한 협력
- 개도국의 자연자원 개발 및 공업화 문제

2. 회의 결과

- 동 위원회에는 41개 회원국 및 22개 옵서버대표단이 참석함.
- 제2차 총회 준비와 관련하여 11개국으로 구성되는 준비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함.
- UNIDO 주도의 공업개발을 위한 유엔의 역할 재조정 필요성을 확인함.
- 일부 공산권 국가들은 공업화 과정에 사회, 경제적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구 중공), 베트남, 북한, 몽골 등에 관한 자료가 보고서에 포함되기를 희망함.
- 개도국 간의 협력 지원을 위해 UNDP(유엔개발계획)와의 협력을 통한 관련 계획 수립에 합의함.

3. 대표단 관찰 및 건의 사항

- 북한은 동 기구 가입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바, 금차 위원회에 불참하였으며 1973.10월 진충국 주제네바대사가 UNIDO 상주대표 겸임을 통보한 데 대해 동 기구 사무국은 대표 임명 이전 외교부장 명의의 UNIDO 활동에 대한 참여 의사 표명이 선행되어야 함을 회신한 바 있음.
- 북한의 가입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함이 바람직함.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 회의, 제15차. New York, 1973.1.22.-29.

| 73-051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I-43 / 22 / 1~24(24p)

UNDP(유엔개발계획) 제15차 집행이사회는 1973.2.1. 한국에 대한 지원계획(Country Programme)을 채택함.

1. 지원계획 개요

- 한국의 1972~76년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따른 자원, 산업, 무역, 상업, 관광, 사회간접 자본 및 인적 자원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총 소요액은 15,393백만 달러임.

2. 토의 경과

- 동 이사회는 1973.1.23. 이사국 전원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에서 동 지원계획을 1차 심의한바, 미국 및 인도는 찬성하고 소련은 한국의 베트남 파병을 지적하고 반대하였으나 동 계획의 본회의 상정이 가결됨.
- 중국(구 중공)은 1.24. 비공개 회의에서 UNDP의 한국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고 2.1. 본회의에서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쿠바도 동 지원에 반대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채택됨.

3. 특기 사항

- 중국은 1973.1.24. 비공개 회의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계획에도 반대를 표명함.

UNEP(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회 회의, 제1차. Geneva, 1973.6.12.-22.

| 73-051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I-43 / 23 / 1~34(34p)

정부는 1973.6.12.~22. 제네바 개최 제1차 UNEP(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회에 주제네바대표부 조상훈 참사관을 옵서버대표로 파견함.

1. 주요 의제

- 인간 환경 보호를 위한 행동계획 개발 및 우선순위 결정
- 환경기금 운영
- 유엔 인류정착 관련 회의 및 전시회 개최
- 유엔 총회 제출을 위한 보고서 채택 및 차기 회의 일정

2. 회의 결과

- 인간환경보호를 위한 행동계획의 우선순위로 인류의 정착, 토지 및 수자원 보호, 교육훈련 지원, 정보 교환, 무역 및 기술 이전, 해양, 자연야생 및 유전자원의 보존 등을 결정하고 기상오염 원인과 오염 요인의 탐사체제 개발을 촉구함.
- 오염 및 동 요인의 탐사를 위해 1974년 정부 간 기술회의 개최를 추진함.
- 생물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지식 보급, 환경사업 발전을 위한 계획의 통합관리, 환경 문제 처리를 위한 각국의 지원 등 유엔 환경계획 3대 목표를 재확인함.
- UNEP의 주요 사업으로 주요 환경 문제의 제기 및 평가, 환경 관리 활동 강화, 기술원조 훈련 정보 교환 및 원조 제공 등을 설정함.
- 환경기금의 목적, 재원, 담보, 관리 및 운영, 위탁기금, 사용 등을 규정한 기금운영 규정을 승인하고 제2차 집행이사회 이전 조달 계획인 550만 달러에 대해 인류의 정착, 토지, 수자원 및 사막, 교육훈련 지원, 무역, 경제 및 기술 이전, 해양, 야생자연 및 유전자원 보호 및 동력 등 7개 분야 배분계획을 승인함.
- 유엔 총회 결정에 따른 인류정착 관련 회의 및 전시회 캐나다 개최 준비와 관련하여 58개국으로 구성되는 준비위원회 구성 및 전담 사무국장의 임명을 유엔 총회에 건의하기로 함.
- 인류 정착의 불안 요인 중의 하나로 19세기적 개념에 근거한 공공정책의 부실을 지적하고 동 유엔 회의 및 전시회의 목적이 인류정착의 진보 촉진, 경험의 교환 및 새로운 사상과 기술의 광범위한 보급에 있음을 확인함.

UNICEF(유엔아동기금)

| 73-051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I-43 / 24 / 1~42(42p)

정부는 1973년 UNICEF(유엔아동기금) 측의 요청에 따라 동 기금에 대한 분담금 증액을 검토함.

1. UNICEF 측의 증액 요청

- Darwish UNICEF 동아시아지역 사무국장은 1973.3월 방한 중 외무부 방교국장 면담 시 한국 정부가 1974년 동 기구에 대한 분담금을 10% 이상 인상하여 책정해 줄 것을 요청함.
- 동 사무국장은 UNICEF의 한국에 대한 지원이 매년 증액되고 있으며 태국, 홍콩, 필리핀, 라오스 등 역내 회원국들의 분담금도 증액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1971년 이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설명함.
- 동 기구 Kondapi 한국지부장은 1973.8월 한국 정부가 1974년에는 오히려 전년도 대비 6천 달러가 삭감된 5만 달러를 책정할 계획임을 지적하고 그간 동 기구의 한국농촌근대화사업 지원 실적, 후진국들도 분담금을 증액 중인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달성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분담금 삭감 계획은 여타 회원국 및 동 기구의 한국에 대한 반감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유감을 표명함.
- 상기 UNICEF 측 요청에 대해 정부는 가능한 한 호의적 검토를 약속함.

2. 한국의 대UNICEF 관계

- UNICEF는 매년 50~70만 달러의 한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해 온바, 정부는 1973년 분담금으로 5.6만 달러를 납부함.
- 유엔 ECOSOC(경제사회이사회)는 1970.7월 결의를 통해 1971~75년간 5개년 UNICEF 사업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연 1억 달러의 기금 확보를 위해 각 회원국의 분담금 증액을 요청함.

3. 관련 부처 입장

- 총리실은 동 기구의 사업 확장계획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호응하여 분담금을 증액 중임을 감안하여 한국의 증액 조치가 없을 경우 여타 회원국들의 불만 및 동 기구의 한국에 대한 지원 지속 여부가 제기될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동 분담금 책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문교부는 1968년 이래 시행 중인 과학교육진흥사업 계획에 UNICEF로부터 90만 달러 지원을 요청 중임을 감안하여 동 기구에 대한 정부의 분담금 증액 조치를 요청함.
- 외무부는 1974년 분담금으로 10만 달러로의 인상 책정 계획을 검토함.

UNFPA(유엔인구활동기금) 자금 지원에 의한 가족계획사업

| 73-0520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3 / 25 / 1~155(155p)

정부는 1973년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UNFPA(유엔인구활동기금) 지원에 의한 가족계획 사업을 추진함.

1. WHO는 1972.6.26. 각국 의과대학에서의 가족계획교육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UNFPA 자금 1,219,661 달러를 활용한 한국에 대한 1974년 이후 1년 기간의 아래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관 및 교육 자재 지원을 제의함.

- 전국 14개 저소득 지역에 가족계획센터 설립
- 도별 센터에 40명의 가족계획 지원 요원 배치
- 전국 102개 병원에 대한 가족계획사업 지원
- 중앙 및 지방 차원의 관리체계 강화
- 대학에서의 관련 교육, 의사 및 지원 인력 훈련

2. 과학기술처 및 보건사회부는 1973.11.30. WHO와 상기 사업 추진 합의서에 서명하고 정부는 동 사업 전담 부서로 과학기술처를 지정함.

한 · UNV(유엔봉사단) 관계

| 73-052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I-43 / 26 / 1~33(33p)

사단법인 KPUNV(한국유엔봉사단)은 1973년 UNDP(유엔개발계획) 지원에 따른 한국 봉사단원의 해외 파견을 검토함.

1. 한국유엔봉사단 현황

- 유엔 총회는 1970.12.7. 총회 결의 2659호를 통해 UNV(유엔봉사단)를 창설하였으며 1971.12월 한국유엔봉사단(단장: 안호상 재건국민운동 중앙회장)이 창립됨.
- 한국유엔봉사단은 한국 청년들의 개발도상국 파견, 자발적 봉사 활동 및 봉사단원 교환을 통한 국제적 이해 증진을 설립 목적으로 함.

2. UNDP의 관련 사업 지원

- UNDP 제15차 집행이사회는 1973.2월 1972~76년 기간 중 인적자원개발 분야 지원을 위한 1.508백만 달러를 포함한 총 15.593백만 달러 규모의 UNV 사업 지원을 결정함.
- 동 집행이사회는 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등 55개 개발도상국의 인적 훈련을 위한 539,300달러의 지원계획을 채택함.

3. 한국유엔봉사단원 해외 파견에 대한 UNDP의 지원 가능성 검토

- 한국유엔봉사단은 1973.2월 이란 등 개발도상국들로부터 약 250명의 한국봉사단 파견 요청을 접수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알려 오면서 동 파견을 위한 SVF(유엔특별기금) 또는 UNDP 자금에 따른 국내 선발 및 훈련 경비, 여비, 체재비 및 사업지원비 등 경비 지원 가능성을 문의해 옴.
- 주유엔대표부의 상기 관련 요청에 대해 UNDP 사무국은 한국유엔봉사단의 UNV 활동 참여 희망에 우호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SVF 기금 모금 실적은 현재 약 33만 달러이며, 조만간 제네바 소재 UNV 사무국에서 개발도상국의 자원봉사단 모집 가능성이 있음을 회신해 옴.

WFP/IGC(세계식량계획 정부간위원회) 회의, 제23-24차. Rome

| 73-052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3 / 27 / 1~63(63p)

정부는 1973년 로마 개최 WFP/IGC(세계식량계획/정부간위원회)에 옵서버대표를 파견함.

1. 제23차 회의(1973.4.25.~5.4.)

- 주이탈리아대사관 강인희 농무관 참석
- 정부 훈령
  - 경사지 개발 및 유역 개발 사업 착수 계획에 따른 소맥분 9,235톤 지원에 대한 WFP의 추가 승인 지연으로 인해 동 사업 추진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음에 따라 동 승인을 촉구함.
  - 홍수 조절을 위한 제방 축조 사업계획서에 따른 44,733톤의 소맥분 지원을 확보함.
  - 정부와 CARE(미국원조물자지원협회)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혼합분유 4,410톤 지원을 요청함.
- 회의 결과
  - 상기 요청 소맥분 중 8,389톤 및 44,733톤, 혼합분유 4,410톤 지원이 의결됨.
  - 미국 및 캐나다 대표는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WFP의 과도한 지원 및 25개 최빈국에 대한 미약한 지원을 지적하고 명확한 우선순위 정립 필요성을 주장함.
  - 정부대표는 한국의 1인당 GNP가 285달러에 불과한 저소득 현실, 농업 최우선 개발 및 농공 격차 해소 정책, 지원 요청 사업의 재해 예방적 성격 등을 설명하여 지원을 관철함.

2. 제24차 회의(1973.10.3.~9.)

- 주이탈리아대사관 민수홍 서기관 참석
- 정부 훈령
  - 농어촌 급수시설 개량사업과 관련한 소맥분 83,185톤 지원협정 서명을 촉구함.
  - 학교급식사업 지원에 대한 WFP의 식량 56,581톤 삭감 조정에 대한 조속한 승인을 요청함.
- 회의 결과
  - WFP 사무국은 동 기구의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하여 학교급식사업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임.
  - 사무국 측은 소맥분 지원협정 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사업 우선순위를 감안할 때 낙관할 수 없는 현실임을 언급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총회, 제19차. New York, 1973.2.27.-3.2.

| 73-0523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3 / 28 / 1~174(174p)

정부는 1973.2.27.~3.2. 뉴욕 개최 제19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총회에 구충회 주유엔 대표부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기구 이사국을 27석에서 30석으로 확대하는 헌장 제50조 개정안이 1973.1.6. 발효됨에 따라 금차 회의에서 추가 이사국 3국이 선출될 예정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 및 민간 항공분야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금차 회의에서의 동향을 파악하여 추후 이사국 입후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함.
- 미국이 제안 예정인 특정국(미국)의 분담금 최고 비율을 현 28.75%에서 25%로 인하하는 안 및 개도국의 분담금 비율 조정안이 토의될 예정으로 미국 및 개도국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함.

2. 정부 훈령

- 한국과의 우호관계 및 향후 교섭 대상국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리핀 및 네덜란드의 이사국 선출을 지지하고 장래 한국의 이사국 선출 가능성을 검토함.
- 미국의 분담금 인하 제의를 지지함.
- 개도국의 분담금 조정안에 찬성함.

3. 회의 결과

- 필리핀, 네덜란드 및 파키스탄이 이사국으로 추가 선출됨.
- 미국이 주도한 특정국의 분담금 25%로의 인하 제안이 통과됨.
- 이집트 등 64개국이 공동 제안한 1973.1월 이스라엘 전투기의 리비아 민간항공기 격추 문제 토의 제안이 채택되었으며, 수석대표의 이집트 및 리비아 대표 별도 접촉을 통한 애도 표시에 대해 양국 대표는 사의를 표명함.
-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차드 등이 공동 제안한 분담금 최저 비율의 0.06%로의 조정 안이 채택됨.
- 아르헨티나, 칠레 등이 공동 제안한 개인당 GNP 1천 달러 미만 저소득 개도국에 대한 분담금 50% 삭감 가능성에 대한 이사회 검토 제안이 채택됨.

ICAO 특별총회, 제20차 및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 Rome, 1973.8.28.-9.21.

| 73-0524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조약과/국제기구과
MF번호	I-43 / 29 / 1~396(396p)

정부는 1973.8.28.~9.21. 로마 개최 제20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회의 및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에 문덕주 주이탈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회의는 항공기의 불법납치 및 기타 민간 항공기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국제적 규제 및 동 규제 강화를 위한 시카고협약 개정을 목적으로 개최되며,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는 시카고협약 범주 외의 신협정 채택을 목표로 함.
- 한국은 항공범죄에 관한 도쿄, 헤이그 및 몬트리올 협약 체약국으로 민간 항공기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인명, 재산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동 회의 참석을 통해 관련 국제협력에 참여하는 한편 필요한 국내 입법에 대처함.

2. 정부 훈령

- 민간 항공기에 대한 불법행위 방지 및 규제를 통한 인명, 재산의 안전 도모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기여함.
- 시카고협약 및 기타 3개 관련 협약의 정신에 따른 신협정 채택 및 시카고협약 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함.
- 다수국의 찬성으로 신협정이 채택될 경우 비준 조건하에 서명함.

3. 회의 결과

-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위한 불법행위의 규제에 대한 원칙적인 국제적인 공감에도 불구하고 선 · 후진국 간, 직접적인 위협에 처한 국가와 여타 국가 간의 규제 방법 등에 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협약 위반 국가에 대한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다수 국가들이 주권원칙을 원용하여 반대함.
- 회의 개최 직전 발생한 이스라엘 공군기의 레바논 민항기 강제착륙 사건은 법률적 사안을 다루는 회의에 정치적인 논쟁 및 대립을 야기하여 합의를 더욱 어렵게 함.
- 항공 안전을 위해 협정상의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는 선진국의 입장과 대립되는 상당수 국가들의 반대 입장에 따라 3개 관련 협약에 대한 추가의정서 채택은 표결 결과 모두 부결됨.

ICAO 법률위원회 특별회의, 제20차. Montreal, 1973.1.9.-30.

| 73-0525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4 / 1 / 1~338(338p)

정부는 1973.1.9.~30. 몬트리올 개최 제20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위원회 특별회의에 주캐나다대사관 이화균 참사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회의는 국제민간항공에 대한 불법행위 방지 및 공동규제조치 수립을 위한 항공안전에 관한 협약 초안을 심의할 예정임.
- 정부는 항공안전 조치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몬트리올협약 가입을 검토 중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이 공동제안한 동 협약안 채택을 지지하는 한편 항공안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기여함.

2. 정부 훈령

- 상기 서방측 제안 협약안 채택을 지지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미국 측과 협의함.
- 항공기에 대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기존의 도쿄, 헤이그 및 몬트리올 협약이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강화된 규제조치 강구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에 동참함.
-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민간항공기 불법납치 행위 등을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제민간항공의 원활한 수행 및 국제항공법 체계의 법전화에 기여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힘.
- 새로운 국제항공 분야 입법 동향을 파악함.

3. 회의 결과

- 새로운 협약 채택을 위한 미국 등 서방측과 동 제안에 반대하는 공산권, 아랍,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이견으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루지 못함.
- 특히 제3자에 대한 제재 및 공동조치 조항에 대해 아랍, 아프리카 국가들은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
- 미국 등 8개국은 추후 협의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기존의 시카고협약 수정 방안을 별도로 제안하여 채택되었으며 향후 새로운 협약 문제와 병행하여 토의하기로 함.
- 북구 제국은 상기 미국 등 8개국 공동제안 내용에 비하여 제재조치가 약화된 별도의 초안을 제시하여 채택됨.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총회, 제8차. London, 1973.11.13.-23.

| 73-0526 |

생산연도	1973-7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4 / 2 / 1~184(184p)

정부는 1973.11.13.~23. 런던 개최 제8차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총회에 최종익 주영국 대사관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해상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및 해사안전에 관한 결의안 채택
- 제4차 총회 이후 IMCO 회의 협의사항 및 결정 검토
-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설립
- 해사안전위원회 위원국 선출

2. 정부 훈령

- 한국은 해양국으로 1962년 IMCO 가입 이후 동 기구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바, 이사국 및 해사안전위원회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북한의 참가 동향을 파악함.
- 주요 우방국과의 협력 및 77그룹 회원국으로서 비동맹 중립국과의 우호 증진을 도모함.
- 공산권 국가에 의한 한국의 대표권 등 정치적 사안 제기 시 적극적으로 반박함.
- 해상인명안전에 관한 결의안 및 IMCO 결정 사항에 관한 검토 시 다수국의 동향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며 다수국이 협약 개정을 찬성할 경우 영국의 수정안에 찬성함.
-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설립에 찬성함.

3. 회의 결과

- 중국(구 중공) 및 헝가리가 한국의 대표권 문제를 제기한바, 정부대표는 북한이 사무국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불참한 사실을 지적하고, 정치화 논쟁 야기를 반박함.
- 해상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안을 채택함.
- 표결을 통해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설립 제안을 채택함.
- 신임 사무총장 및 해사안전위원회 위원국을 선임하는 한편 네덜란드 제안에 따른 해사안전위원회 확대에 합의함.

해양오염에 관한 국제회의. London, 1973.10.8.-11.2.

| 73-0527 |

생산연도	1973-74
생 산 과	조약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4 / 3 / 1~403(403p)

정부는 1973.10.8.~11.2. 런던 개최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산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회의에 최경록 주영국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회의에서는 한국이 가입한 유류에 의한 해수오염방지협약, 폐기물 및 기타 물질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을 발전시켜 해양오염의 구체적인 규제조치를 확보하고, 유류오염에 의한 재난시 공해 개입에 관한 국제협약을 유류 외의 물질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토의될 예정으로 관련 국제조약 채택을 통한 유류 및 기타 유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규제 노력에 기여함.
- 한국이 해양국으로 해상수송의 안전 및 해양환경보호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관련 국내 입법 발전을 도모함.

2. 정부 훈령

- 적극적인 토의 참여를 통해 한국 해양기술의 향상 방안 강구, 해양국으로서의 발전 촉진 및 국제협력을 통한 해양 분야의 국제적 진출에 기여함.
- 주요 우방국들을 포함한 대다수국의 찬성에 따른 신협정안의 채택이 예상될 경우 비준 조건하에 동 협정안에 서명함.

3. 회의 결과

- 토의 과정에서 선진 해양국과 연안 국가 간의 이견 조정을 통해 71개 참가국 중 한국을 포함한 62개국의 서명으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협약안 및 유류 이외의 물질에 의한 해양오염 시 공해 개입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함.
- 선박형태 및 유해물질의 상태에 관계없이 동 협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1975년 이후 건조될 7만 톤 이상의 선박에 대한 분리된 평형탱크 설비 의무화 등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
- 분쟁 해결 방법에 있어 현 단계의 국제법 체계 하에서 ICJ(국제사법재판소) 관할 안은 비현실적이며 비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중재재판소 관할 안이 채택됨.
- 지중해, 흑해, 발트해, 홍해 및 페르시아만을 특별 해역으로 지정하고 일체의 유류 오염을 금지함.

IMCO 법률위원회 파선제거에 관한 작업반회의, 제1차. London, 1973.12.3.-7.

| 73-0528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4 / 4 / 1~69(69p)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사무국은 1974.2.18. 동 기구 법률위원회의 1973.12.3.~7. 제1차 난파선 제거에 관한 실무 작업반회의 결과를 통보해 오는 한편 정부의 관련 자료를 요청함.

1. 회의 결과

- 난파선 제거에 관한 국제협약안 초안 작성 문제를 협의하고 후속 회의 속개에 합의함.
- 아르헨티나, 프랑스, 인도, 이베리아, 노르웨이, 소련, 영국 및 미국 정부대표가 참석함. (한국은 대표를 파견치 않음.)
- 브라질, 핀란드, 서독, 일본, 네덜란드, 파나마, 폴란드, 스웨덴 및 태국 옵서버대표가 참석함.

2. 동 국제협약안 초안 작성을 위한 IMCO 사무국의 정부에 대한 관련 자료 요청 내용

- 항로 해역 내 선박 항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난파선, 시추시설에 관한 정보 및 자료
- 동 위험물들의 위치 및 해안으로부터의 거리
- 동 위험물들의 위치 표시, 제거 및 기타 관련 작업에 소요되는 경비 내역
- 실무 작업반의 관련 업무와 연관된 기타 정보 및 자료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17차. Vienna, 1973.9.18.-26.

| 73-052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4 / 5 / 1~239(239p)

정부는 1973.9.18.~26. 비엔나 개최 제17차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 한표욱 주오스트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한국의 극동지역 이사국 진출을 통해 동 기구 내에서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
- 한국은 IAEA의 기술훈련생 초청, 연구계약 및 전문가 파견 등 기술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1974년 36,587달러 규모의 기술원조를 신청 중으로 한국 관련 협력 사업 규모를 확대함.

2. 정부 훈령

- 극동지역 이사국 당선을 위해 각 회원국 대표들과의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다수국의 지지를 확보함.
- 원자력 분야에서의 한국의 기여 및 활동을 소개하고 관련 국제적 협력에 기여하는 한편 각 기술적 의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국내 관련 부문 발전에 기여함.
- 북한의 옵서버대표 파견 가능성에 따라 북한의 동 기구 가입 신청 가능성을 상정하고 현지에서 적절히 대처하는 한편 정부의 신외교정책에 따라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설명함.
- 한국의 대표권 문제가 제기될 경우 적극적으로 반박함.
- 정규기술원조 신청은 향후 원자력 발전을 위한 핵연료 분야에 중점을 두었음을 설명하고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전액 확보가 가능하도록 교섭함.

3. 회의 결과

- 한국은 찬성 56, 반대 13, 무효 2의 표결 결과로 신규 이사국으로 당선됨.
- 북한 가입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으며 소련, 폴란드, 알바니아, 루마니아, 알제리 등이 한국의 대표권 문제를 제기한바, 정부대표는 비정치적 기구에서 정치적 논쟁 야기에 유감을 표명하고 반박함.
- 동 기구 사무국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 전문가 채용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과 함께 1974년도 한국에 대한 전문가 파견, 기기 원조 등 77,000달러 규모의 4건의 지원을 확보함.

방글라데시의 WMO(세계기상기구) 가입 지지 요청

| 73-0530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4 / 6 / 1~14(14p)

정부는 1972.12월 방글라데시의 WMO(세계기상기구) 및 ITU(국제통신연맹) 가입 지지 요청을 검토함.

1. 주일 방글라데시 대사관은 1972.12월 공한을 통해 그간 동국의 제반 유엔전문기구 가입 신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WMO 및 ITU 가입을 위한 한국의 지지를 요청함.

2. 정부는 상기 방글라데시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함.

- 과거에는 파키스탄의 입장을 고려하여 방글라데시의 국제기구 가입에 대해 명시적인 지지 표명을 유보하였으나, 파키스탄이 북한을 승인한 현 시점에 방글라데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함이 바람직함.
- 정부는 방글라데시의 WHO(세계보건기구),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PU(만국우편연합)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바 있음.
- 현재 주뉴델리총영사를 통해 방글라데시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 중에 있음에 따라 동 요청에 대한 지지 입장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 양국 간 정식 외교관계 수립 희망 입장을 동시에 전달하도록 함.

3. 정부는 1972.12월 상기 지지 입장을 방글라데시 측에 통보하는 한편 1973.2월 동 기구 사무국에 정부 입장을 전달함.

WMO/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아시아 및 남서부태평양지역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기상 업무의 역할에 관한 지역회의. Bangkok (태국) 1973.8.14.-21.

| 73-053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4 / 7 / 1~85(85p)

정부는 1973.8.14.~21. 방콕 개최 WMO/ECAFE(세계기상기구/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아시아 및 남서부태평양지역 경제 발전에 있어서의 기상 업무의 역할에 관한 지역회의에 서상문 중앙관상대 물리기감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역내 경제 발전과 사회 개발에 대한 기상 업무의 기여를 제고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함.
- 관련 분야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을 통해 국내에서 기상학을 응용한 경제발전사업 추진에 활용함.
- 한국의 기상 업무 및 경제 발전 현황을 소개하여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 및 관련 부문의 국제 협력에 기여함.

2. 주요 의제

- 수자원 개발, 토지 이용과 용수, 홍수 피해의 경감 및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기상학의 응용
- 국가 경제 발전과 기상학의 연계 방안
- 기상학 응용을 위한 인적 훈련
- 기상 업무의 비용대비 효용

3. 정부 훈령

- 기상 업무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와 관련한 국제적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을 통해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함.
- 선발 개도국으로서의 한국의 경제 발전상 및 기상 업무 현황을 소개하고 WMO의 활동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함.

4. 대표단 활동

- 정부의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추진에 있어서의 기상의 역할, 풍수해 대책 및 한국의 기상 조건에 관해 발언함.
- 한국의 기상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현황 및 기상 전문 부서의 역할을 소개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특별총회, 제3차. Paris, 1973.10.23.-26.

| 73-053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4 / 8 / 1~115(115p)

정부는 1973.10.23.~26. 파리 개최 제3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특별 총회에 정일영 주프랑스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특별총회는 물가 상승 및 달러화 하락에 따른 동 기구의 재정 관리 문제 검토를 위해 집행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개최되는바, 동 기구의 예산 재편성 및 사업계획 조정에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함.
- 중국(구 중공) 등 공산권의 참여 및 정치적 성격의 토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의 발전상 소개와 함께 신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제고함.

2. 정부 훈령

- 1973~74 회계연도 예산 결손액 총액이 12,652,100달러로 예상됨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각 회원국 분담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한국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함.
- 정치적인 사안을 의제로 추가하는 제안이 상정될 경우 동 특별총회의 개최 목적을 감안하여 여사한 제안에 반대함.
- 향후 북한의 동 기구 가입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중국 등 공산 국가에 의한 한국의 대표권 문제 제기 시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신외교정책을 천명하여 대표권 문제 제기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반박함.

3. 회의 결과

- 결손 예상액 중 9,000,000달러는 각 회원국이 분담하며, 여타 부족 예상액 3,652,100달러는 1974년 예산 운용 사정에 따른 사무총장의 지불 통고에 의해 각 회원국이 분담함.
- 신임장위원회에서 소련 등이 한국, 캄보디아(구 크메르), 베트남(구 월남) 및 칠레의 대표권에 이의를 제기한바, 미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동 신임장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수석대표는 반박 발언권 행사를 통해 공산권의 정치적 문제 제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정부의 신외교정책을 재차 천명함.
- 알제리 제안에 따라 한국 등 4개국의 대표권에 대한 표결이 시행된바, 한국에 대해서는 찬성 56, 반대 20, 기권 17로 대표권 인정이 가결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국 선출제도에 대한 각국의견

| 73-053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4 / 9 / 1~39(39p)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1973년 동 기구 이사국 의석 증설 결정 관련 사항임.

1. 제59차 FAO 이사회는 1972.11월 동 기구의 규모 확대에 따른 이사국 의석수 증설을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증설 의석수, 지역별 배분 및 상임이사국제도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함.

- 현 34개 이사국을 39개국으로 증설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및 구주 5개 지역에 각 1석을 배분함.
- 현 34개 이사국을 40개국으로 증설하여 아시아지역에 2석, 기타 4개 지역에 각 1석을 배분함.
- 현 34개 이사국 체제를 유지하며 전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는 상품, 수산, 산림 및 농업 등 4개 위원회를 적극 활용함.
- 현 34개 이사국을 42~45개국으로 증설하여 11~12개국을 상임이사국으로 선출함.

2. 정부 입장

- 동 기구 회원국의 증가 및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이사국 증설 등을 고려할 때 아시아 지역 2석 증설을 전제로 39~40개국으로의 이사국 증설이 바람직함.
- 현행 지역별 선거그룹 제도하에서 아시아지역 내 윤번제 호선 시행을 위한 소지역제도에 따른 의석 배분을 지지함.
- 여타 유엔전문기구의 전례가 없는 상임이사국제도 신설은 불요함.
- 정부는 1973.2.17. FAO에 대한 공한을 통해 6개 이사국 증설 및 아시아지역에 대한 2개 이사국 배분 지지 입장을 통보함.

3. 동남아 제국 입장

- 이사국 증설 및 아시아지역에 대한 2석 배분을 희망하며 중국(구 중공), 방글라데시의 가입 가능성, 인도 및 파키스탄의 동 기구에 대한 기존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 내 공정한 윤번제 호선을 지지함.
- 필리핀은 FAO에 대한 회신을 통해 증설 필요성으로 중국, 베트남(구 월남) 및 북한의 가입 가능성을 언급한바, 주이탈리아대사는 필리핀 측에 대해 기존 양국 간 우호관계를 감안할 때 북한 가입을 거론함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전달함.

4. 동 기구 제17차 총회는 1973.11.16. 이사국 의석의 42석으로의 증설을 의결함.

FAO 총회, 제17차. Rome, 1973.11.10.-29. 전2권. V.1 기본문서

| 73-0534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4 / 10 / 1~377(377p)

정부는 1973.1.10.~29. 로마 개최 제17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에 장덕진 농수산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한국의 1949년 동 기구 가입 이후 FAO는 한국에 대해 농수산물 증산, 수산 개발, 간척사업 및 산림보호 등의 분야에서 약 6,000만 달러의 재정 및 기술 원조를 시행 중임.
- 농업, 식량 및 수산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관련 입장을 반영하는 한편 기술 및 정보 입수를 통해 식량 증산, 농어민 소득 증대 등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수행에 기여함.

2. 주요 의제

- 농업 및 식량의 세계적 현황, 전망 및 관련 정책 검토
-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UNDP(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기구와의 연계 문제 협의
- 이사국 증설 및 헌장 개정 문제

3. 정부 훈령

-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따른 중농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FAO를 통한 국제 협력을 강화함.
- 북한의 동 기구 가입 문제가 제기될 경우 6·23 선언을 통해 천명한 신외교정책에 따라 가입에 반대하지 않으며, 한국의 대표권 문제 제기 시 부당성을 지적하고 반박함.
- 이사국 증설 및 헌장, 일반규칙의 문안 수정에 찬성하며 이사국 호선제 선출제도 확립을 위해 아시아지역 대표들을 중심으로 교섭함.

4. 회의 결과

- 수석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새마을운동, 농업 생산성 증대 및 농수산 개발정책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선진국 및 국제금융기관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함.
- 이사국의 42개국으로의 증설, 헌장, 일반규칙의 수정 및 1974년 WFC(세계식량총회) 개최를 의결함.
- 중국(구 중공)이 북한대표 불참이 불공평함을 주장한 데 대해 정부대표는 6·23 선언을 통해 천명한 바와 같이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에 반대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반박함.

FAO 총회, 제17차. Rome, 1973.11.10.-29. 전2권. V.2 이사국 입후보 지지요청

| 73-0535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4 / 11 / 1~155(155p)

정부는 1973.8.3. 로마에서 11.10.~29. 개최 예정인 제17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에 대비한 동 기구 이사국 입후보 문제를 검토함.

1. FAO 이사국 입후보 검토

- 동 기구 제60차 이사회는 1973.6월 아시아지역 의석 증설 2석 중 1석은 중국(구 중공)에 배분한다는 묵시적 양해하에 기존의 6석에서 8석으로의 증설을 의결함에 따라 제17차 총회는 아시아지역 현 6개 이사국 중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4개국의 임기 만료로 증설된 2개 의석과 함께 6개 이사국을 선임할 예정임.
- 동 선거에서 중국의 선출은 기정사실이며 기여도 면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재선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입후보 시 경합이 예상되는바, 유엔 총회 한반도 문제 상정과 관련한 정부의 교섭 및 현재 진행 중인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국 입후보를 위한 예비교섭과 시기적으로 중복되어 집중적인 교섭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기회균등의 기준에 의해 입후보가 가능하나, 지역 내에서 호선제 선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제17차 총회 중에는 입후보를 유보하고 지역 내 호선제 선출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향후 역내 회원국들과의 교섭을 추진토록 함.

2. 각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 요청에 대한 조치 현황

- 콜롬비아의 이사회 독립의장 입후보를 지지함.
- 우루과이의 차기 사무총장 입후보를 지지하고 레바논의 동 입후보에 대해서는 검토 예정임을 회신함.
- 멕시코, 베트남, 이란, 가나, 터키, 아르헨티나, 태국, 우간다, 인도네시아, 일본, 서독, 이탈리아, 브라질, 네덜란드, 스페인 등의 이사국 입후보를 지지함.

FAO 국제식물보호협정에 관한 특별협의회. Rome, 1973.7.9.-13.

| 73-053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4 / 12 / 1~85(85p)

정부는 1973.7.9.~13. 로마 개최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국제식물보호협정에 관한 특별협의회에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파견 목적

- 1951년 체결된 국제식물보호협정 및 위생확인증 양식을 현 시점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에 기여함.
- 식물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여 정부의 관련 정책 시행에 반영함.
- 회의 진행 동향을 종합 관찰하고 한국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소개함.

2. 주요 의제

- 국제식물보호협정의 이행 경과, 현 상황 및 개정 목적 검토
- 동 협정의 국별 이행 현황 검토
- 동 협정 및 위생확인증 양식 일부 개정

3. 사무국 발간 회의결과보고서 첨부

FAO 수산 관리 및 발전에 관한 기술회의, 제2차. Vancouver(카나다) 1973.2.13.-23.

| 73-0537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 - 44 / 13 / 1~58(58p)

정부는 1973.2.13.~23. Vancouver 개최 제2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수산관리 및 발전에 관한 기술회의에 안명남 수산청 어업진흥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파견 목적

- 수산 분야의 급속한 과학적 관리기술의 진보 및 규모 확대에 따른 최신 어업기술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의 어업 발전에 기여함.
- 수산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국제적 협력 노력에 동참함.
- 한국의 관련 정책 및 사례를 소개함.

2. 주요 의제

- 수산 관리 및 개발을 위한 과학적 연구 방안
- 수산 관리 및 개발을 위한 경제적 방법론
- 전통적 개발의 한계성 검토 및 신규 자원 개발의 필요성
- 지역적, 사례별 관리 및 개발 현황 소개 및 향후 발전 방안

3. 정부 훈령

- 국제적인 수산 동향 파악 및 각국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의 수산 관리, 발전에 반영함.
- 한국의 이해에 직결되는 한편 현재 제반 국제 수산 관련 기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수산자원 관리 및 규제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 및 한국의 이해를 반영함.

4. 대표단은 한국의 원양어업 및 어업인력 훈련을 통한 수산 개발에 관한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함.

FAO/CCP(상품문제위원회) 담배에 관한 특별 정부협의회 회의. Izmir(터키) 1973.11.5.-10.

| 73-053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4 / 14 / 1~176(176p)

정부는 1973.11.5.~10. 터키 Izmir 개최 FAO/CCP(유엔식량농업기구/상품문제위원회) 담배에 관한 정부 간 특별협의회에 전매청 업무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담배 생산 현황, 소비 및 교역에 관한 장기적 전망, 잎담배 가공의 신기술 개발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교환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함.
- 세계 최대의 연초 단일 수입시장인 EEC(구주경제공동체)를 비롯한 각국의 담배정책과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한국의 담배 수출 산업에 기여함.

2. 주요 의제

- 담배사업 현황 및 단기 전망
- 잎담배 생산, 소비 및 무역의 장기 전망
- 잎담배 가공 및 시장과 관련한 신기술 개발
- 농업 살충제 잔류량에 대한 규정 검토
- 국가별, 지역별 담배정책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

3. 정부 훈령

- 각국의 담배사업 현황과 전망을 파악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함.
- 다수 개도국이 상품위원회에서 주장한 바 있는 IGT(담배에 관한 정부 간 협의기구) 설립에 원칙적으로 동의함.
- EEC의 공동담배정책이 국산 잎담배의 국제 경쟁력 약화를 야기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미국 등 관심국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대EEC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함.

4. 회의 결과

- EEC 대표는 새로운 국제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관계 규정을 계속 검토할 것이나 공동농업정책에 따른 현 제도는 1980년대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함.
- IGT 등 새로운 기구의 설립보다는 필요시 본 회의와 같은 특별협의회를 개최함이 바람직하다는 다수 선진국의 입장에 따라 동 방안의 유지 필요성을 FAO에 보고하기로 함.

FAO/CCP 정부간 곡물연구단 회의, 제16차. Rome, 1973.10.1.-5.

| 73-053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5 / 1 / 1~81(81p)

정부는 1973.10.1.~5. 로마 개최 제16차 FAO/CCP(유엔식량농업기구/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곡물연구단회의에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파견 목적

- 곡물의 교역 전망 분석 및 식량 사정 악화에 따른 식량 수급 대책 수립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기여함.
- 국제적인 식량 수급의 장기적, 단기적 대책과 관련한 자료 수집을 통해 정부의 관련 대책 수립에 반영함.

2. 주요 의제

- 세계 곡물 현황 및 단기 전망
- 현 곡물 비축량의 적정 여부
- FAO 사무총장의 세계 식량 안보 관련 제안 검토
- 축산 부문 발전이 곡물 생산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

3. 정부 훈령

-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종료되는 1976년까지 미곡 자급자족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식량수급계획 및 혼·분식 추진 정책을 소개함.
- 세계 식량 안보를 위한 FAO 사무총장 제안의 이행과 관련하여 만성적인 식량 부족 사정에 직면하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장기 차관에 의한 식량 수입이 가능하도록 미국을 비롯한 식량 잉여국들의 특별 배려를 촉구함.
- 축산 부문과 관련하여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의 사료 수입 전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함.
- 각국의 양곡 생산, 수출입 전망 및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정책 동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함.

FAO/CCP 정부간 미곡연구단 회의, 제17차. New Delhi(인도) 1973.4.23.-27.

| 73-054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5 / 2 / 1~64(64p)

정부는 1973.4.23.~27. 뉴델리 개최 제17차 FAO/CCP(유엔식량농업기구/상품문제위원회) 정부 간 미곡연구단회의에 주성규 농수산부 식량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국제적인 미곡의 생산, 소비 및 무역에 관한 국제 협력에 기여함.
- 미곡에 관한 국제 정보를 수집하여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함.

2. 주요 의제

- 국제 미곡 현황 및 국가별, 지역별 미곡정책
- 미곡의 교역 확대 방안 및 미곡의 장기 수급 전망
- 국가별 미곡 등급 및 규격 제도

3. 정부 훈령

- 미곡의 생산, 소비 및 무역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여 정부의 식량 자급자족 및 미곡의 대외교역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함.
- 정부대표의 대표권에 대한 이의 제기, 북한의 불참에 대한 유감 표시 등 정치적인 발언이 있을 경우 비정치적 성격의 회의에서 여사한 사안이 제기될 수 없음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반박함.
  - 한국은 1949년 FAO에 정식으로 가입한 반면 북한은 비회원국으로 여타 유엔전문기구에도 가입하지 못함.
  - 남북대화 추진에 따라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문제 토의가 연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술적인 회의에서 정치적인 사안을 거론함은 부당함.
- 1973.5월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의 북한 가입 문제가 언급될 경우 현재 남북한 간의 대화 진행 추이에 비추어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은 남북한 간의 대화를 저해할 수 있음에 따라 토의 연기가 바람직함을 설명함.

4. 수석대표 기조연설 요지

- 한국의 미곡 사정 현황, 중기 전망 및 1976년 이전 자급자족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을 소개함.
- 한국 국민의 특수한 기호에 따른 특정 미곡 선호, 미국, 일본 등 특정국으로부터의 미곡 수입의 불가피성 및 정부의 점진적인 수입다변화 추진 계획을 설명함.

FAO/CCP 정부간 유실유지 연구단 회의, 제7차 및 통계분과위원회 회의, 제4차. Rome, 1973.2.6.-16.

| 73-0541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5 / 3 / 1~47(47p)

정부는 1973.2.6.~16. 로마 개최 FAO/CCP(유엔식량농업기구/상품문제위원회) 제7차 유실, 유지에 관한 정부 간 연구단회의 및 제4차 통계 소위원회에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을 정부 대표로 파견함.

1. 파견 목적

- 각국의 유실, 유지 생산 현황 및 소비와 무역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에 기여함.
- 동 회의에서는 국제적인 중 · 단기 정책에 대한 검토 및 UNDP(유엔개발계획)의 특별 보고가 있을 예정으로 관련 현황 및 정보를 입수하여 국내 유실, 유지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함.

2. 주요 의제

- 중 · 단기 국제 시장 평가, 문제점 및 전망
- 무역자유화에 따른 장기 실천계획
- 개도국 간의 교역 촉진 방안
- 생산성 향상 방안

3. 정부 훈령

- 한국의 유실, 유지 국내 생산 및 소비량이 국제 수준에 비해 미미한 상태이나 경제 발전과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국내 수요 및 생산의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국제 동향을 파악함.
- 주요 생산 국가별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자료 입수를 통해 관련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정부의 정책 수립에 반영함.

4. 회의 결과

- 악천후에 따른 일부 국가들의 흉작으로 인해 1973년에는 생산 및 수출 감소가 전망되나 EEC(구주경제공동체), 일본 등 전통적 수입국가 및 개도국 공히 수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개도수출국들은 특히 미국의 양여판매 정책 시행에 따른 후진국의 통상 거래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한편 선진국들의 수출보조정책 제한 및 가공업 촉진을 위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청함.

FAO/CCP 회의 참가계획

| 73-0542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5 / 4 / 1~44(44p)

FAO/CCP(유엔식량농업기구/상품문제위원회) 산하 경질섬유 관련 1973년 중 개최 회의 현황인바, 정부는 대표단을 파견치 않음.

1. 제5차 정부 간 연구단회의(1973.1.8.~15. 멕시코 메리다)

- 사이잘삼, 야자피 섬유, 용설란 섬유, 마닐라삼 등 경질섬유 생산 및 유통 전망에 관한 협의를 목적으로 개최됨.
- 주요 의제
  - 품질 등급, 통계, 운송료 관련 개선 방안
  - UNDP(유엔개발계획)와의 협의를 통한 국제경질섬유연구소 설립 방안 검토
  - 합성섬유 개발이 경질섬유 생산 및 유통에 미치는 영향
  - 경질섬유 품목별 생산, 유통 현황 및 전망

2. 제6차 정부 간 연구단회의(1973.9.17.~21. 로마)

- 제5차 연구단회의 후속 협의와 함께 1973.1~7월간 경질섬유에 관한 연구진행보고서를 검토함.
- 동 회의와 병행하여 야자피 섬유의 품질 개선, 소비 촉진 및 관련 지역연구소 설립 문제를 별도 협의함.

3. 제4차 자문작업단회의(1973.9.17.~18. 로마)

- 경질섬유의 품질 향상 방안 협의를 주요 목적으로 개최됨.
- 주요 의제
  - 제3차 회의 결과에 따라 시행된 소비자 및 전문가 간의 협의 결과 보고서 검토
  - 소비자 선호와 관련한 영국 시장조사 결과 검토
  - 염색, 합성섬유와의 혼합 제품 생산 연구
  - 품질 향상을 위한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기술이전 문제
  - 방화 야자피 섬유 개발 연구

FAO/COFI(수산위원회) 회의, 제8차 및 수산 교육 · 훈련에 관한 소위원회 회의, 제3차. Rome, 1973.4.10.-17.

| 73-054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5 / 5 / 1~37(37p)

정부는 1973.4.10.~17. 로마 개최 제8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수산위원회 및 제3차 수산 교육 · 훈련에 관한 소위원회에 강용순 수산청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수산자원 규제 및 어로 제한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 원양어업의 진로 모색에 기여함.
- 수산자원 보호 및 어로와 관련한 국제협력에 동참함.

2. 주요 의제

- 국제적인 수산 관리 및 어로 규제 동향
- 지역 수산 기구 지원 및 중서부대서양 수산 기구 설치 검토
-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1972.6월 유엔 인간환경회의, 정부 간 해양위원회 개최와 연계된 문제점 검토 및 기타 유엔 기구와의 협력 방안
- FAO 수산 업무 추진 현황 검토
- 수산 인력 교육 및 훈련 강화 방안

3. 정부 훈령

- 국제 수산 동향 파악 및 관련 정보 수집을 통해 정부의 수산 관리 정책에 반영하고 원양어업 발전에 기여함.
- 세부 훈령에 따라 수산자원 관리 및 규제와 관련한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함.
- 정부가 신청한 UNDP(유엔개발계획)의 인도양 조사 및 개발사업 지원비 확보를 교섭함.
- 한국의 중서부대서양 해역 어업 진출 확대를 위해 관련 국제 수산 기구 설치 문제가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되도록 교섭함.
- 한국 참치어선의 증가 등 한국 원양어업의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과도한 자원 관리, 어로 규제 및 별도의 국제 수산 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함.
- 유엔해양법회의의 수산 분야에 대한 영향과 관련한 각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함.

FAO 비료에 관한 특별정부협의회. Rome, 1973.10.22.-24.

| 73-054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52 / 10 / 1~53(53p)

정부는 1973.10.22~24. 로마 개최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비료에 관한 특별정부협의회에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개최 경위

- 1973.6월 개최된 FAO 제61차 이사회에서 비료 수입국들이 직면한 비료 공급의 문제점 및 가격 상승 문제를 논의한바, 여사한 문제점들이 개발도상국의 식량 생산 계획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함.
- FAO 사무총장은 동 문제점에 대한 후속 협의를 위해 금차 특별회의를 소집함.

2. 파견 목적

- 비료의 공급에 대한 시장 상황, 가격, 향후 추세 및 전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의 비료 생산 및 수출계획 수립에 반영함.
- 비료의 가격 동향이 개발도상국의 농업에 미치는 영향, 향후 비료의 수급 전망에 관한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함.

3. 주요 의제

- 세계 비료 시장 상황 검토
- 비료의 수급 추이, 전망 및 공급 방법
- 비료 판매 가격 및 소비 추세
- 향후 추가 협의 사항
- FAO 총회 제출 보고서 채택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26차. Geneva (스위스) 1973.5.7.-26. 전6권. V.1 기본문서

| 73-0545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5 / 6 / 1~412(412p)

정부는 1973.5.7.~26. 제네바 개최 제26차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에 이경호 보건사회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금차 회의에서는 관례적인 WHO의 기능 및 전문적인 사안 외에 북한 가입 문제가 토의될 예정으로 WHO는 보편성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의 국제적 보건 협력 참여를 위한 문호개방을 표방함에 따라 북한의 가입 저지는 낙관할 수 없는바, 동 가입 문제에 대처함.
- 동 · 서독 간의 관계 정상화에 따른 동독의 동 기구 가입 및 중국(구 중공)의 가입 이후 최초 참석에 따른 정치적인 사안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처함.

2. 정부 훈령

- 북한의 WHO 가입신청 심의를 연기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관철함.
- 공산권 측에서 한국의 대표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정부의 기존 방침에 따라 대처함.
- 세부 훈령에 따라 의제별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 보건 행정의 향상과 보건정책 관련 국제 협력에 기여함.
- 8개 집행이사국 선출과 관련하여 지지를 회신한 미국, 독일 등 8개국에 대해 찬성 투표함.

3. 북한의 가입 신청에 대한 정부 입장

- 13개 유엔전문기구 중 한국은 ILO(국제노동기구)를 제외한 12개 기구에 가입하고 있으나 북한은 WHO 가입을 통해 최초의 유엔전문기구 가입 실현을 의도하고 있음.
- 북한의 WHO 가입 시 국제회의 참가 및 조약 체결 대상국을 유엔 또는 동 전문기구 가입국으로 제한하고 있는 Vienna Formula의 적용을 무용화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 따라서 북한의 WHO 가입이 초래할 제반 국제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북한의 가입 제안 심의를 연기함.

4. 북한의 가입 결의안 통과(1973.5.17.)

- 공산권 측 36개국 공동제안에 따른 북한 가입 결의안이 찬성 66, 반대 41, 기권 22로 가결됨.
- 한국 등 우방 28개국 공동제안에 의한 북한 가입 연기 결의안이 찬성 52, 반대 59, 기권 18로 부결됨.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26차. Geneva (스위스) 1973.5.7.-26. 전6권. V.2 북한 가입 저지 교섭 I : A-I

| 73-0546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5 / 7 / 1~472(472p)

정부의 1973.5.7.~26. 제네바 개최 제26차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의 북한의 동 기구 가입 연기를 위한 교섭 및 심의 연기 결의안 제출과 관련한 각 회원국 반응임.

1. 북한의 가입 신청 경과

- 북한은 1973.2.1. WHO에 정식 가입을 신청함.
- WHO 사무국은 3.20. 북한의 가입 신청서를 각국에 송부함.
- 정부는 3.28. 북한의 가입 심의 연기 필요성에 관한 비망록을 작성하여 주요 회원국에 전달함.
- 공산권 측 36개국은 5.10. 북한의 가입 지지 공동 결의안을 제출함.
- 한국 및 우방 28개국은 5.11. 북한의 가입 심의 연기 결의안을 제출함.

2. 정부의 기본 입장

- 북한의 가입 또는 가입 결의안에 대한 반대가 아님.
- 북한의 가입 신청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차기 회의 시까지 1년간 연기함.

3. 한국 입장에 대한 국가별 반응(1973.4월 말 현재)

- 지지 입장: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아일랜드, 월남, 멕시코, 이탈리아, 코트디부아르, 엘살바도르, 그리스, 아이티, 과테말라
- 공동제안국 참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가봉, 영국, 벨기에, 서독, 캐나다
- 기권 입장: 인도, 베냉(구 다호메이), 가나, 에콰도르, 페루, 에티오피아, 피지, 인도네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호주, 오스트리아, 미얀마(구 버마)
- 입장 표명 유보: 프랑스, 칠레, 차드
- 북한 가입에 대한 명시적인 지지: 핀란드, 덴마크, 감비아, 아이슬란드, 이란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26차. Geneva (스위스) 1973.5.7.-26. 전6권. V.3 북한 가입 저지 교섭 II : J-S

| 73-0547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5 / 8 / 1~425(425p)

정부의 1973.5.7.~26. 제네바 개최 제26차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의 북한의 동 기구 가입 연기를 위한 교섭 및 심의 연기 결의안 제출과 관련한 각 회원국 반응임.

1. 정부는 1973.3~5월 중 아래 9개 교섭사절단을 파견함.

- 중남미, 서부아프리카 및 동부아프리카 각 2회, 중동지역, 아시아지역, 주호주대사 주변국 순방
- 국회의장 중동, 아프리카 순방

2. 일본은 한국 측 결의안에 대한 공동제안국에 참여를 결정하고 1973.5.8.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재외 공관을 통해 입수한 50여 개국의 관련 반응을 알려 오는 한편 계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약속함.

3. 한국 입장에 대한 국가별 반응(1973.5.13. 현재)

- 지지 입장: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가봉, 코트디부아르,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니제르, 르완다, 스와질란드, 바레인, 요르단, 모로코,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서독,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미국, 일본, 라오스, 필리핀, 태국, 월남, 서사모아
- 기권 입장: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가나, 말라위,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쿠웨이트, 레바논, 오스트리아,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아프가니스탄, 피지, 인도네시아, 우간다
- 반대가 예상되는 국가: 칠레, 쿠바, 페루, 부룬디, 카메룬, 자이르(구 콩고), 베냉(구 다호메이), 감비아, 기니,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탄자니아, 토고, 잠비아, 알제리, 이집트, 이라크, 리비아, 남예멘, 수단, 시리아, 아이슬란드, 예멘, 덴마크, 핀란드, 몰타, 스웨덴, 미얀마(구 버마), 네팔, 중국(구 중공), 인도, 이란, 몽골, 파키스탄, 싱가포르, 동구 9개국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26차. Geneva (스위스) 1973.5.7.-26. 전6권. V.4 북한 가입 저지 교섭 III : T-Z

| 73-0548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5 / 9 / 1~330(330p)

정부의 1973.5.7.~26. 제네바 개최 제26차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의 북한의 동 기구 가입 연기를 위한 교섭 지침 및 주요 우방국과의 협의 내용임.

1. 관계 공관에 대한 1973.3.24.자 지시

- 동독의 가입, 중국(구 중공)의 최초의 동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할 때 금차 총회에서 북한의 가입에 대한 심의 연기 관철은 낙관을 불허함.
- 정부 입장 교섭에 있어 아래 입장을 설명함.
  - 제27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문제 토의 연기 결의안이 절대 다수로 통과된 사실을 상기함.
  - 북한의 유엔전문기구 가입 신청은 지극히 정치적인 사항임에 따라 유엔 총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대한민국만이 유엔전문기구에 가입하고 있고 북한은 가입한 사실이 없음.

2. 영국과의 협의

- 영국 외무성은 1973.3.30. 주제네바대표부 보고를 인용하여 북한의 가입 심의 연기 또는 가입 저지 공히 매우 어려운 전망임을 알려 오면서 영국의 꾸준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구 제국이 조만간 북한을 승인할 가능성을 우려함.
- 외무성 Wilford 부차관보는 4.3.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알려 오는 한편 표결 전망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Royle 차관은 4.5. 영국의 측면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국들에 대한 교섭 등 지원을 약속함.

3. 서독과의 협의

- 동독과의 관계 전례를 바탕으로 교섭 전략, 토의 시기, 공동제안국 구성, 공산권의 회의 전략 등에 관해 협의함.

4. 미국과의 협의

- 국무성 Depalma 차관보의 1973.4.2. 재외공관을 통한 교섭 지원 약속에 따라 미국 측은 60여 개국에 대한 교섭을 측면 지원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제공함.
- 국무성은 관련 공관에 대해 현 시점에 북한의 WHO 가입은 남북대화의 진전을 저해하는 한편 동 · 서독의 경우에도 기본협정 체결 이후 유엔 동시가입이 실현되었으며, 북한 가입 문제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문제를 WHO가 논의함은 합당하지 않다는 교섭 지침을 하달함.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26차. Geneva (스위스) 1973.5.7.-26. 전6권. V.5 북한 가입 저지 교섭 IV : 제네바 및 UN(유엔)대표부

| 73-0549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6 / 1 / 1~482(482p)

정부의 1973.5.7.~26. 제네바 개최 제26차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의 북한의 동 기구 가입 심의 연기를 위한 교섭사절단, 주제네바 및 주유엔대표부 등 관련 재외공관에 대한 지침 및 지시 사항임.

1. 교섭사절단에 대한 교섭지침 지시(3.23.)

- 북한의 WHO 가입은 북한의 주유엔 옵서버대표부 설치 등 중대한 외교적 영향을 가져올 것임에 따라 이에 대처하여 동 가입 신청에 대한 심의 연기를 관철함.
- 정부 입장에 대한 순방 대상국의 지지 확보를 위해 아래 지침을 설명하고 교섭함.
  - 한국은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현재 유엔전문기구 및 주요 정부 간 국제기구에 한국만 가입하고 있으며, 동 기구들은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남북대화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분단의 영속화, 고정화를 의미하는 어떠한 조치도 수락할 수 없으며, 북한의 주요 국제기구 가입은 한반도의 균형을 저해함.
  - Waldheim 유엔 사무총장이 1973.1월 지적한 바와 같이 한반도 문제는 쌍방의 기본 합의에 따라 분단을 인정한 동·서독 문제와는 상이함.

2. 주유엔대사에 대한 WHO 회원국 대표와의 교섭 지시(3.26.)

- 제27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문제 토의 연기 결의안이 절대다수로 통과된 사실을 상기시키고 북한의 유엔전문기구 가입은 정치적인 사안으로 총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을 설명함.
- 본국 정부가 한국 입장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동 대표들의 가능한 측면 지원을 요청함.

3. 재외공관을 통한 중점 교섭 대상국 선정 및 해당 공관에 대한 통보(4.4.)

- 한국이 제출 예정인 심의 연기 결의안에 대한 공동제안국 참여 요청 대상 58개국
- 주유엔대표부를 통한 중점 교섭 대상 9개국
- WHO 집행이사국 중 개별 교섭 대상국가 12개국
- WHO 6개 지역이사국 중 사무국장 소재 5개국
- 주일본대사관 겸임공관 중 중점 교섭 대상 9개국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26차. Geneva (스위스) 1973.5.7.-26. 전6권. V.6 북한 가입후 각국 반응 및 언론보도

| 73-0550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6 / 2 / 1~149(149p)

북한의 1973.5.17.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의 동 기구 가입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 주요국 반응 및 언론 보도임.

1. 주요 공관에 대한 지시(5.23.)

- ❋ 한국 측의 심의 연기 결의안이 최소 7~8표 우세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Candau 사무총장의 공산권에 대한 동조적 태도, 의장인 인도네시아 대표의 의사 진행 능력 미숙 및 WHO 사상 전례가 없는 비밀투표에 의한 처리 등이 불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북한 가입안이 가결된 것으로 분석됨.
- ❋ 주재국의 분석 결과 및 향후 대남북한 관계에 대한 동향을 파악함.
- ❋ 북한은 동 가입에 따라 ILO(국제노동기구), IAEA(국제원자력기구), ITU(국제전기통신연합), FAO(유엔식량농업기구), IMCO(정부간해사협의기구), UPU(만국우편연합) 및 WMO(세계기상기구) 등 유엔전문기구에 대한 가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북한의 여사한 가입 지연을 위한 정부 입장에 유의하여 주재국의 계속적인 협조를 교섭함.

2. 주요국 반응

- ❋ 일본 오히라 외상은 1973.5.18. 대북한 정책의 전환 또는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에 임하는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확인함.
- ❋ 미국 국무성 담당관은 5.29. WHO의 비정치적인 회의 성격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실상을 잘 알지 못하는 다수 대표들의 북한의 국제 사회에의 동참이라는 막연한 희망에 따른 투표 및 기술적인 사항으로 소련의 전격적인 제안에 따른 비밀투표 시행을 지적함.
- ❋ 프랑스 외무성 부국장은 5.25. 한국 측에 사전 통보한 바와 같이 기권하였지만 한국 측 결의안 부결에 유감을 표하고, 향후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저지에 대한 명분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함.

3. 언론 반응

- ❋ UPI 통신은 1973.5.17. 북한의 동 가입에 따른 한반도의 현상 유지에 대한 저해 가능성 및 9월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됨을 보도함.
- ❋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6.2. 북한이 WHO 가입에 따라 제네바 주재 상주 옵서버대표부 설치를 신청하고 유엔의 승인을 득하였음을 보도함.

4. 주제네바대표부는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27개국 대표에 대한 감사 공한을 전달함.

WHO 서태평양지역회의, 제24차. Wellington (뉴질란드) 1973.8.28.-9.5.

| 73-055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6 / 3 / 1~134(134p)

정부는 1973.8.28.~9.5. 뉴질랜드 웰링턴 개최 제24차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회의에 보건사회부 보건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역내 국가 간의 보건사업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지역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북한의 1973.5월 WHO 가입과 관련하여 동 기구 내 한국의 활동을 강화함.
- 동 기구의 한국에 대한 지원사업 강화를 도모하고 정부의 보건 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함.

2. 정부 훈령

- 타 지역 그룹에 속하는 북한은 동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나 북한의 동 기구 가입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산하 지역회의임에 따라 한국의 동 기구 내 활동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토의에 참여함.
- 한국 측이 제안 예정인 국가 인구정책담당부서 및 가족계획사업 간의 상호관계 관련 추가 의제 설명 등에 충실히 대비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함.
- 각국 대표단과의 접촉 시 6·23 선언의 기본 취지를 적절히 설명하여 정부의 평화통일을 위한 신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과 이해를 제고함.
- 중국(구 중공) 등이 한국의 대표권 문제 등 정치적 사안을 제기할 경우 부당성을 지적하고 반박함.
- 뉴질랜드 등이 제안한 핵무기 실험 중지에 관한 긴급동의 의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모든 핵무기의 실험 중지를 희망하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되 프랑스 등 우방국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 등 명시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함.
- 보건 관련 교육 훈련 계획과 관련하여 한국에도 훈련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함.

3. 회의 결과

- 대표단이 제안을 계획한 추가 의제는 WHO 사무국과의 세부 협의 필요성에 따라 제안을 철회함.
- 한국의 대표권 문제는 제기되지 않음.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제58차. Geneva, 1973.6.6.-27.

| 73-055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6 / 4 / 1~46(46p)

제58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가 1973.6.6.~27. 제네바에서 개최됨. (한국 미가입)

1. 주요 의제

- 사업 계획, 예산 및 기타 재정 문제 심의
- 관련 협정 및 제안 이행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 심의
- 최소 고용 연령에 관한 2차 협의
- 항만 하역작업 방식의 사회적 파장에 관한 2차 협의
- 교육을 위한 유급 휴가 시행 방안
- 직업으로 인한 암 발생 방지 및 통제 방안

2. 특기 사항

- 주한 스페인대사관은 1973.6.4. 공한을 통해 스페인이 동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자유 및 집단 협상에 관한 전문가 보고서 심의에 대한 반대 보고서를 제출 예정임을 알려 오면서 동 입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해 온바, 정부는 동 입장을 지지하나 한국이 ILO 회원국이 아님에 따라 직접적인 지지를 표명할 수 없는 입장임을 회신함.
- 루마니아 대표는 6.13. 본회의 연설을 통해 주권 및 자결주의 존중, 식민주의 및 신식민주의 폐기 등 정치적 주장을 제기하는 한편 ILO의 보편성 원칙에 따라 북한, 동독, 월맹 등의 동 기구 가입 필요성을 언급함.

3. ILO의 관련 보도자료

- ILO 총회의 새로운 노동규범 수립 및 세계 경제정책 협의
- 국제 사회의 고용 확대 노력
- ILO 사무총장,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소득 분배의 불균형 해소 촉구
-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와 최빈국을 위한 공공사업 계획 합의
-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파급 효과에 관한 연구계획

북한의 ILO(국제노동기구) 가입문제

| 73-0553 |

생산연도	1963-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Re-32 / 4 / 1~121(121p)

정부는 1973.6월 제58차 ILO(세계보건기구) 총회 개최와 관련한 북한의 동 기구 가입 가능성을 검토함.

1. 북한의 가입 신청 가능성 및 관련 동향

- 북한은 1973.5월 WHO(세계보건기구) 가입을 계기로 6월 ILO 총회에서 동 기구 가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 측은 5.30. 사무총장에게 가입 신청 절차 및 옵서버 자격 취득에 관해 문의한 것으로 확인됨.
- ILO는 한국이 가입하지 않은 유일한 유엔전문기구임에 비추어 북한은 외교적 파급 효과를 상정하고 가입을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동 기구의 특수성에 따른 가입 절차의 복잡성, 중국(구 중공) 및 동독의 미가입, 가입에 수반되는 국제적인 개방 의무, WHO 가입으로 유엔전문기구에의 최초 가입 실현 등을 감안할 때 금차 총회에서의 가입 신청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2. 미국 및 일본의 전망

- 미국 측은 동 기구 가입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중국 및 동독이 가입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북한의 가입 실현 가능성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전망함.
- 일본 측은 회원국 2/3의 찬성을 요하는 가입 요건에 비추어 북한의 가입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가입 부결 시 예상되는 외교적인 위상 실추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가입을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3. 대책 검토

- 북한의 가입 시도 시 동시가입 신청 또는 한국의 가입 신청을 유보하고 북한의 가입을 저지하는 방안을 검토함.
- 동시가입 신청 시 국제기구에서 두 개의 한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에 대한 파급 효과를 검토함.
- ILO 사무국 및 미국, 일본, 월남, 서독, 필리핀, 캐나다, 영국 등 우방국과의 관련 협조관계를 강화함.

각국의 ITU(국제전기통신연합) 가입

| 73-0554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6 / 6 / 1~50(50p)

각국의 1972~73년 ITU(국제전기통신연합) 가입 신청에 대한 정부의 입장임.

1. 방글라데시(1972.12월)

- ❋ 지지 입장을 통보함.
- ❋ 정부는 방글라데시의 WMO(세계기상기구), WHO(세계보건기구),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PU(만국통신연합) 가입 신청에 대해 지지한 바 있음.
- ❋ 과거에는 파키스탄의 입장을 고려하여 방글라데시의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명시적인 지지를 유보하였으나 파키스탄이 북한을 승인하였음을 고려하여 지지 입장을 공식 통보함.
- ❋ 주일본대사에게 주일 방글라데시대사에 대한 지지 통보 시 주뉴델리총영사를 통해 방글라데시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 중이며, 조속한 수교를 희망하는 입장임을 함께 전달하도록 지시함.

2. 동독(1973.1월)

- ❋ 의견 회신을 유보하여 사실상 기권함.
- ❋ 동독의 WMO 가입 신청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취함.

3. 파푸아뉴기니(1973.4월)

- ❋ 호주의 파푸아뉴기니의 준회원국 자격 가입 지지 요청에 대해 지지 입장을 통보함.

ITU 전권위원회. Malaga-Torremolinos(스페인) 1973.9.14.-10.26. 전2권. V.1 기본문서

| 73-0555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6 / 7 / 1~186(186p)

정부는 1973.9.14.~10.26. 스페인 말라가-토레몰리노스 개최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에 황호을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ITU 헌장 일반규칙 초안 심의 및 채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관련 국제 협력에 동참함.
- 전기통신 사업의 개선 및 합리적 이용과 관련한 국제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의 관련 행정 개선에 기여함.

2. 주요 의제

- 신헌장 채택 및 일반규칙 개정
- 여타 국제기구와 체결한 협정 검토
- 전권회의 명칭을 총회로 변경
- 집행이사국 의석 확대 및 준회원국제도 폐지

3. 정부 훈령

- 1971년 ITU 가입 신청이 부결된 바 있는 북한의 금차 회의 중 가입 시도 동향을 파악하고 대처함.
- 일부 국가에 의한 한국의 대표권 문제 제기 등 정치적인 발언이 있을 경우 정부의 신외교정책을 천명하고 문제 제기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반박함.
- 인종차별정책과 관련한 남아공 및 포르투갈 축출 결의안 표결 시 불참 또는 기권함.
- 신헌장 채택 시 비준 조건하에 서명함.
- 추후 한국의 집행이사국 입후보 및 선출 가능성을 파악함.

4. 회의 결과

- 신임장위원회에서 소련, 중국(구 중공) 등의 한국 대표권 문제 제기에 대해 반박함.
- 신헌장 채택, 29개 집행이사국 의석의 36석으로의 확대 및 준회원국제도 폐지에 합의함.
- 남아공 및 포르투갈 축출 결의안이 가결됨.

ITU 전권위원회. Malaga-Torremolinos(스페인) 1973.9.14.-10.26. 전2권. V.2 각국의 입후보 지지 요청

| 73-0556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6 / 8 / 1~200(200p)

1973.9~10월 스페인 말라가-토레몰리노스 개최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참가국들의 의장단 및 집행이사국 입후보 지지 요청에 대한 정부 입장임.

1. 의장단 선출

- 튀니지의 Mili 현 사무총장 재선을 지지함.
- 호주 Butler 현 사무차장 재선을 지지함.

2. 집행이사국 36개국 선출

- 아시아, 오세아니아지역
  - 태국,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를 지지함.
  - 쿠웨이트, 사우디의 입후보에 대해서는 추가 입후보에 따른 경합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지에서 수석대표의 재량으로 지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서구지역
  -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를 지지함.
- 미주지역
  - 브라질, 파라과이, 캐나다, 미국, 페루, 멕시코, 트리니다드토바고를 지지함.
- 아프리카지역
  - 세네갈, 레소토를 지지함.
  - 자이르, 나이지리아의 입후보에 대해서는 추가 입후보에 따른 경합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지에서 수석대표의 재량으로 지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동구지역
  - 지지 요청국 없음.

UN(유엔) 인권관계 제 결의에 대한 한국 입장 및 조치사항

| 73-055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I-46 / 9 / 1~25(25p)

유엔 사무총장은 1973.5.18. ECOSOC(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반 유엔 인권 관련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입장, 평가 및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함.

1.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이행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Ganji 인권보고서)

- 정부의 평가 내용을 특별보고관의 추가 제안과 함께 제3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 예정임.
- 정부의 보완 및 수정 요청 사항
  -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지님을 선언하고 있음.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유함.
  - 헌법에서 국가는 근로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고 있음.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한 교육은 무상이며 의무적으로 시행함.

2. 인권 연감

- 동 연감 발간을 위한 아래 자료 제공 및 국별 연락관 지정을 요청함.
  -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인권 창달과 관련한 국별 발전 상황
  - 관련 국제 협정, 법령, 법원 판례 및 정보 자료
- 정부는 주유엔대표부 직원을 연락관으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등 협조 예정임을 회신함.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타) 총회, 제7차. Rome, 1973.4.9.-12.

| 73-055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6 / 10 / 1~195(195p)

정부는 1973.4.9.~12. 로마 개최 제7차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총회에 주이탈리아 대사관 안영철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센터는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인 세계 각지의 문화재를 발굴, 보존 및 복구하기 위한 정부 간 기구로 한국은 1968년 가입 이후 동 기구로부터 석굴암 보수 공사 등 문화재 보존, 복원 공사에 대한 조언과 기술 지도를 받은 바 있음.
- 한국의 문화재 발굴, 보존 및 복구 상황을 소개하고 동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 강화 및 한국의 문화재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함.

2. 주요 의제

- 동 센터 규약 개정
- 향후 사업계획 승인
- 신임 사무국장 및 9명의 이사국 위원 선출

3. 정부 훈령

- 한국의 대표권에 대한 이의 등 정치적 문제 제기 시 적절히 반박함.
- 의장 및 이사국 위원 선출 시 우방국 입후보자를 지지함.
- 사무국 제출 1973~7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채택에 찬성함.
- 한국은 중국(구 중공), 일본과 함께 극동지역의 3대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다수 한국 전문가의 동 센터 훈련계획 참여를 교섭함.
- 불법 반출 문화재 반환 및 타국 소재 문화재 현황 조사에 대한 관련 당사국의 협조가 중요함을 촉구함.
- 한국의 향후 이사국 진출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규약 개정안에 찬성함.

4. 정부대표 발언 요지

- 한국의 문화재보호법 등 역사적 문화유산에 대한 정부의 보존 정책 및 노력을 소개함.
-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기술 연구, 정보 교환 등 회원국 간의 국제적 협력을 촉구함.
- 문화재 전문가 훈련 강화 등을 위한 사무국의 능동적인 노력을 요청함.

IOE(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제41차. Paris, 1973.5.21.-26.

| 73-055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6 / 11 / 1~125(125p)

정부는 1973.5.21.~26. 파리 개최 제41차 IOE(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 농수산부 가축위생과장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파견 목적

- 각국의 가축 전염병 예방 대책 및 축산물 교역상의 가축 질병 현황을 파악하고 부르세라병 등의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함.
- 한국의 가축 위생 및 예방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국제 협력에 기여함.

2. 주요 의제

- 가축 전염병 발생 현황 검토
- 가축 위생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 기관의 역할
- 예방 의약품 생산
- 가축 전염병 예방 대책

3. 정부 훈령

- 한국의 가축 위생 현황, 방역 조치 및 수출입 검역 실시 현황을 소개함.
- 한국과의 축산 교역이 많은 국가들의 전염병 발생 및 방역 조치 등을 파악하는 한편 정보 수집을 통해 한국 육류의 수출 증대를 위한 검역체계 수립에 기여함.
- 선진 제국의 위생 체제, 전염병 예방 대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함.
- 형식상 통보만으로 가입이 가능한 기구임에 유의하여 북한의 동 기구 가입 동향을 파악함.

4. 회의 결과

- 부르세라병 근절을 위한 진단 방법 및 표준화된 항원 사용에 합의함.
- 사무국장 접촉을 통해 북한의 가입 가능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협의함.
-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일본, 대만(구 자유중국) 등 한국과의 축산 교역 대상국가 대표들과의 접촉을 통해 가축 위생, 전염병 방지 등에 관한 정보 자료를 수집함.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 제8차. Paris, 1973.11.15.-17.

| 73-056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6 / 12 / 1~386(386p)

정부는 1973.11.15.~17. 파리 개최 제8차 IOC(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 총회에 주프랑스대사관 과학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해양 탐사 및 개발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의 해양 개발 정책에 반영함.
- 한국의 해양 정책과 KORDI(해양개발연구소) 설립 계획 등을 소개하여 한국의 동 분야에서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 협력에 기여함.

2. 주요 의제

- 국제적 해양 합동조사
- 해양과학 분야의 교육, 훈련 및 상호 협조 방안
- 장기 해양탐사계획에 따른 활동 및 사업 평가

3. 정부 훈령

- IOC 창설 이후 최초로 중국(구 중공)의 참가 가능성이 예상되는바, 중국이 한국, 중국, 북한 연안 서해 및 남지나해의 해양 조사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한국의 수산 정책 및 원양어업 진출을 고려하여 수자원 조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을 촉구함.
- 한국의 대표권 문제가 제기될 경우 부당성을 지적하고 반박함.
- 1973.11월 발족 예정인 KORDI를 통해 해양 자료 교환제도의 적극적인 수행, 국제적 해양 공동연구 및 개도국 전문가 훈련계획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설명함.

4. 회의 결과

- 국제해양탐사 10개년계획, 해양 환경 오염 조사, 해양 자료 교환 및 범세계적인 해양 관측소 제도 수행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함.
- 한국의 KORDI 출범 계획 및 각종 훈련, 교육 과정에의 기여 계획을 소개함.
- 해양의 과학적 탐사 증진을 위해 유엔해양법회의가 IOC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함.
- 중국은 불참하였으며, 북한의 가입 신청은 없었음.

ICO 해양과학훈련, 교육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실무단회의, 제1차. Paris, 1973.3.7.-13.

| 73-0561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6 / 13 / 1~97(97p)

정부는 1973.3.7.~13. 파리 개최 IOC(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 산하 제1차 해양과학훈련, 교육 및 상호원조에 관한 실무단회의에 김완수 서울대 해양학과 조교수를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파견 목적

- 해양과학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을 통해 한국의 해양과학, 특히 교육 분야 발전을 도모함.
- 선진국의 대학 및 연구소의 실태 파악과 함께 학생, 전문가 교류 가능성을 모색하고 관련 국제 협력을 강화함.

2. 주요 의제

- 해양과학 분야 교육, 훈련 및 장학 증진 검토
- 훈련계획 개발
- 회원국 간의 상호 협력, 지원 강화
- 해양과학 및 해양 업무에 관한 일반적 이해 증진

3. 정부 훈령

- 한국의 관련 정책 및 활동을 소개하고 국제적인 동향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함.
- 대학의 관련 교과과정 심의 시 개도국에 적합한 과정을 포함하도록 노력함.
- 훈련 및 전문가 교환 확대, 장학금의 2배 증액 및 개도국에 대한 최우선적인 배려를 촉구함.
- 원칙적으로 무상공여제도를 통한 회원국 간의 상호 원조 및 지원 방식 채택을 지지함.

4. 정부대표 활동

-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국별, 지역별 해양개발계획 특성에 적합한 교과과정 작성 필요성을 강조함.
- 개도국의 해양 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국들의 지원 확대를 촉구함.
- 1974.6월 이전 해양 관계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새로운 목록 작성 및 배포를 요청함.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CCOP (아시아 천해저광물자원공동탐사 조정위원회) 회의. Bangkok, 1973.9.10.-29.

| 73-056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I-47 / 1 / 1~146(146p)

정부는 1973.9.10.~29. 방콕 개최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산하 제10차 CCOP(아시아 천해저광물자원 공동탐사조정위원회) 회의에 국립지질연구소 김종수 해양개발부장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파견 목적

- CCOP의 해저 탐사 기술 개발, 장기 계획 및 회원국의 해저 석유 탐사 결과 평가에 참여하여 한국의 관련 자원탐사 및 개발사업 발전에 기여함.
- IDOE(국제해양개발10개년계획)의 한국 관련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차기 회의 유치를 제의함.

2. 주요 의제

- 동아시아 천해저 탄화수소자원 조사 결과 검토
- CCOP의 주요 국제회의 참여 방안
- 천해저 수심 탐사 및 지질도 작성
- 천해저 탐사 기술 및 전문가 훈련

3. 정부 훈령

- 각국의 탐사 실적, 계획 및 기술에 관한 자료 수집을 통해 한국의 해저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사업에 활용함.
- IDOE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한국 인접 해안에 대한 조속한 탐사가 시행되도록 촉구함.
- 한국의 해저 광물자원 탐사 현황 및 대륙붕 해저 탐사 결과를 설명하고, 장기 계획 수행을 위한 국제적 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함.

4. 회의 결과

- 차기 제11차 회의의 1974년 서울 개최에 합의함.
- IDOE 5개 연구계획 대상 지역에 한국 동해안으로부터 일본 서남 지역에 이르는 해역을 포함함.
- UNDP(유엔개발계획) 지원사업의 1979년까지 연장 및 장기적인 지원계획 수립에 합의함.

SEAMEO(동남아문교장관기구) 가입검토

| 73-0563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동남아과/국제기구과
MF번호	I-47 / 2 / 1~35(35p)

정부는 1973.2월 SEAMEO(동남아문교장관기구) 가입 문제를 검토함.

1. SEAMEO 현황

❁ 설립 목적(1965년 창설)
- 고급 교육지도층의 양성 및 역내 교육 분야의 공동 문제 해결
- 인적 교류를 통한 연구사업 확대
- 교육 시설 및 교육 정보의 상호 교환

❁ 회원국 및 옵서버
- 회원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구 크메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구 월남) 등 8개국
- 옵서버: 한국, 호주,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등 9개국

❁ 사무국 예산
- 8개 회원국이 ADB(아시아개발은행) 지수에 따라 분담함.
- 재정난 해소를 위해 한국 등 역외 국가들의 준회원국 가입을 희망함.

2. 정부의 검토 결과

❁ 가입 시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이점은 크지 않으며 장학생 교류, 세미나 개최 및 인적 자원 교육 등을 통한 국제 협력 증진 효과가 예상되나 동 기구는 역외 국가들에 대한 정회원국 가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역외 국가들에 대한 준회원국 가입 종용은 실질적인 협력관계 증진 필요성보다는 재정난 타개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다수 역외 국가들은 소극적인 입장을 표시함.

❁ 따라서 동 기구 가입 문제는 정회원국 자격 가입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시일을 두고 검토하며 동남아 국가들과의 교육, 과학, 문화 협력관계 강화의 측면에서 장학생 초청, 전문가 파견 등의 적절한 지원 제공을 통한 동 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함.

SEAMEO 회의

| 73-0564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7 / 3 / 1~115(115p)

정부는 1973년 아래 SEAMEO(동남아문교장관기구) 관련 회의에 옵서버대표를 파견함.

1. 제8차 이사회(1973.1.22.~26. 프놈펜)

- ❋ 주캄보디아(구 크메르)대사관 안윤기 1등서기관 파견
- ❋ 회의 결과
  - ARCAFA(캄보디아 문화재 복구를 위한 기구) 설립 결의 재확인
  - 준회원국제도에 합의
  - 베트남 휴전에 따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교육재건사업 원조 추진
  - RCSCS(지역사회 · 문화연구소) 설립을 위한 회의 개최
- ❋ 옵서버대표 보고
  - 동 기구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나 연 소요예산 약 100만 달러 중 52% 상당의 예산 부족 등에 따른 재정난을 겪고 있음.
  - 재정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준회원국제도 도입을 결정하였으나, 호주 및 네덜란드를 제외한 다수 옵서버 국가들은 준회원국 자격 가입에 소극적인 입장임.
  - 현 시점에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은 유보함이 바람직함.

2. 특별 총회(1973.7.25.~27. 방콕)

- ❋ 주태국대사관 장세돈 3등서기관 파견
- ❋ 회의 결과
  - 프랑스의 준회원국 가입
  - 동 기구의 재정 자립을 위한 교육개발 공채 발행 결정
- ❋ 옵서버대표 보고
  - 한국과의 장학생 또는 전문가 교류 문제와 관련하여 동 기구는 재정난에 따라 한국의 지원을 희망함.
  - 공채 발행 결정에 대해 태국 및 캄보디아만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바, 회원국들은 공채 참여 또는 직접 기여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합의함.
  - 프랑스는 향후 베트남 전쟁 종결 이후 역사적 연고를 가진 동 지역과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준회원국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되며, 가까운 장래에 호주 및 뉴질랜드가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ASCA(아시아과학협력협회) 회의, 제2차. 동경, 1973.3.8.-15.

| 73-0565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I-47 / 4 / 1~27(27p)

정부는 1973.3.8.~15. 동경 개최 제2차 ASCA(아시아과학협력협회) 회의에 이호 주일본대사를 수석대표로 파견함.

1. 회의 개요 및 주요 의제

- 한국 등 역내 14개국 대표 참석
- 주요 의제
  - 회원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 증대
  - 농업 생산성, 공업기술 혁신, 과학기술 인력 개발 및 환경 문제 대처 방안
  - 국별 과학정책보고서 발표

2. 회의 결과 공동성명서 요지

- 과학 자료 및 정보 관련 아시아지역 훈련소 개설을 위한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와의 협의 추진
- 회원국 간의 과학 연구 협력 증진을 위한 협조체제 수립
- 약용 식물 자연 추출 생산품 연구 추진
- 과학기술 협력계획 추진을 위한 제도 평가
- 아시아지역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행동계획 이행
- 동남아지역 해양 기상 연구 추진
- 국별 과학정책보고서 검토
- 차기 1974년 제3차 회의 인도 개최 합의

각국의 AOPU(아시아대양주우편연합) 가입

| 73-056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7 / 5 / 1~25(25p)

정부는 1973년 아래 역내 2개국의 AOPU(아시아・대양주우편연합) 가입에 동의함.

1. 인도의 가입 지지 요청에 대해 1973.6.27. 동의를 통보함.

2. 영국령 솔로몬제도의 가입 지지 요청에 대해 1973.7.5. 동의를 통보함.

3. 정부의 관련 검토 내용

- AOPU는 UPU(만국우편연합)의 지역 연합 기구로 역내 국가 간 우편 업무의 확대, 개선 및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한국, 대만(구 자유중국), 필리핀, 태국, 라오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 9개 회원국으로 구성됨.
- 동 기구 가입을 위해서는 역내 주권국가 또는 특수영토로서 UPU 회원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바, 인도 및 솔로몬제도는 동 요건을 충족함.
- 가입을 위해서는 회원국 2/3의 동의를 요하는바, 인도 및 영국과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동 가입에 동의함이 바람직함.
- 가입 시 우정당국 간의 공적 우편물에 대한 요금 면제, 우편물 중개 운송 비용의 면제 및 선편 통상우편물 요금 인하 등의 우편 협력 혜택이 부여됨.

AOPU(아시아 · 대양주우편연합) 집행위원회 개최계획

| 73-0567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54 / 2 / 1~13(13p)

AOPU(아시아 · 대양주우편연합) 1974년 집행위원회 대만(구 자유중국)의 참가 및 개최국 결정 문제 관련 사항임.

1. UPU(만국우편연합) 사무국의 AOPU에 대한 공한(1972.12.11.)

- UPU의 과거 전례에 따라 1974.5.22.~7.5.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 예정인 제17차 UPU 총회 개회 직전인 5.20.~21. 동지에서 AOPU 집행위원회 개최를 계획 중임.
- 회의장 시설 등 동 집행위원회 개최 준비 상황을 통보함.

2. UPU 총회 준비위원장의 AOPU에 대한 공한(1973.3.21.)

- 스위스 정부당국과의 협의 결과 대만은 UPU의 비회원국이며 스위스와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음에 따라 대만대표의 입국은 불가함.
- AOPU 집행위원회를 아시아지역에서 개최할 것을 권고함.

3. 집행이사회 의장국인 대만 우정당국의 AOPU 사무국에 대한 공한(1973.4.16.)

- UPU 및 스위스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동 집행위원회를 방콕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함.

4. AOPU 사무국의 체신부에 대한 공한(1973.5.2.)

- 동 집행위원회의 방콕 개최에 대한 입장을 문의함.

5. 정부 입장

- 체신부는 상기 방콕 개최에 동의함.
- 외무부 국제기구과장은 1973.7.19.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과 관련 사항을 아래 협의함.
  - 일본 측은 외교적으로 대만의 제안을 수락하기 어려움을 설명하고, 동 대만 측 제안 및 대만의 AOPU 회원국 지위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문의함.
  - 국제기구과장은 체신부 입장을 재검토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로 본 사안과 관련하여 대만의 AOPU 회원국 지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없음에 따라 대만의 회원국 지위와는 무관한 문제이며 따라서 대만의 동 지위에 관한 정부 입장도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답변함.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운영협정 서명자 회의, 제1차. Washington, D.C., 1973.11.12.-16.

| 73-056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7 / 6 / 1~110(110p)

정부는 1973.11.12.~16. 워싱턴 개최 제1차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운영협정서명자 회의에 백오현 체신부 기획관리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기구 설립협정 개정안 검토 및 제반 사업계획 추진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함.
- 분담금 비율이 낮은 한국은 분담금 부담 상위 12개국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참여치 못하고 있음에 따라 금차 회의 중 공동이사국 형성 등 참여 방안을 모색함.

2. 주요 의제

- 이사회 연례 보고서, 재정 상황 검토 및 최저 투자율 결정
- 운영협정 개정안 심의
- INTELSAT 운영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 규칙 검토
- 각 회원국의 동 기구 규정 이행 상황 검토

3. 정부 훈령

- 타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및 한국 전문가의 사무국 진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타진함.
- 최저 투자율 결정은 한국의 이사회 참여 문제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토의에 적극 참여하되 각국의 동향을 참작하여 수석대표 재량으로 결정함.
- 이사회 보고서 검토 시 향후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상정하여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파악함.

4. 회의 결과 및 대표단 활동

- 공동이사국 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룹에의 참여 또는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터키 그룹에의 참여 방안을 협의하고 추후 공식 제안하기로 합의함.
- 이사회 참가 최저 투자율을 1.14%로 결정함.
- INTELSAT 우주 부문의 이용 요금 조정, 용량 배정 및 지구국 사용 승인에 관한 일반 규칙에 합의함.

각국의 WTO(세계관광기구) 규정 승인

| 73-056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I-47 / 7 / 1~104(104p)

정부는 1973.1.13. WTO(세계관광기구) 규약 승인서를 기탁하고 동 기구에 가입함.

1. 동 기구 전신인 IUOTO(국제관설관광기구연맹) 특별 총회는 1970.9월 멕시코 회의에서 WTO 규약을 채택하고 WTO로의 개칭에 합의함.

2. IUOTO 개관

- 1925년 헤이그에서 ICOAP(국제관광협회)로 설립되어 1947년 IUOTO로 개칭되었으며 한국은 1957.11.8. 동 기구에 가입함.
- 설립 목적
  - 관광객에 대한 지원, 협조 제공 및 국제 여행에 관한 공동정책 채택
  - 국제 여행을 저해하는 요인 경감 및 관광산업 개발
  - 여행 규칙의 간소화 및 표준화
  - 여행자 편의를 위한 숙박시설 등 연관 산업 진흥
  - 관광 진흥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관계 강화
- 한국을 포함한 103개국이 가입함.

3. WTO 규약은 51개국의 승인서 기탁으로 발효되며, 1973.2월 현재 38개국이 동 승인서를 기탁함.

IUOTO(국제관설관광기구연맹) 총회, 제23차. Caracas(베네수엘라) 1973.10.1.-10.

| 73-057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7 / 8 / 1~139(139p)

정부는 1973.10.1.~10.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개최 제23차 IUOTO(국제관설관광기구연맹) 총회에 주베네수엘라대사관 김형수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기구의 WTO(세계관광기구)로의 개편에 따른 체제 전환 및 유엔전문기구로의 승격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에 기여함.
- 관광 진흥을 위한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해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함.

2. 주요 의제

- WTO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 남아공 및 대만(구 자유중국) 축출 결의안 심의
- 국제적인 관광 진흥 방안 토의

3. 정부 훈령

- 북한 및 중국(구 중공)의 옵서버 파견 또는 가입 동향을 파악함.
- WTO 체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개도국의 이익 증진을 위한 정책 시행을 촉구함.

4. 회의 결과 및 대표단 활동

- 남아공, 대만 축출 결의안 및 시리아 제안 이스라엘에 대한 침략 중지 결의안이 가결됨.
- WTO 체제의 출범을 위해 동 기구 규약 승인서를 기탁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조속한 승인서 기탁을 권고함.
- 정부대표는 태평양 및 동아시아지역 관광위원회 제1부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4명의 포스터 공모 심사위원의 일원으로 활동함.

박동묘 AARRO(아프리카 · 아시아농촌재건기구) 극동지역 서울사무소 명예대표 임명, 1973.9.7.

| 73-0571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7 / 9 / 1~41(41p)

정부는 1973.9.7. 박동묘 AARRO(아프리카 · 아시아농촌재건기구) 극동지역 서울사무소 소장을 임명함.

1. 인적 사항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교수, 한국농업경제연구소 소장, 성균관대학교 총장, 대한교육연합회 회장 역임
- 현 FAO(유엔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 회장

2. 임명 경위 및 사무소 개설

- 1968년 서울 개최 제3차 AARRO 총회 결의에 따라 정부는 동 기구 극동지역사무소 서울 설치를 위해 1973.3월 동 기구와 설립협정을 체결함.
- 정부는 동 서울사무소 설치 관련 AARRO와의 협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하여 5,507,000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AARRO 측의 임명 동의를 득함.
- 1974.1.7. 동 서울사무소를 개설함.

3. 서울사무소 활동 계획

- 농업기술과 관련한 AARRO와의 협력 강화
- 동 기구 활동에 관한 홍보사업 추진 및 자료 수집
- 농촌 개발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관련 방한 인사와의 업무 협조

APO(아시아생산성기구) 생산성 측정에 관한 Workshop. Singapore, 1973.6.25.-29.

| 73-057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7 / 10 / 1~24(24p)

싱가포르에서 1973.6.25.~29. 개최된 APO(아시아생산성기구) 생산성 측정에 관한 Workshop 참가 관련 사항임.

1. 한국 측 참가자

- 최광정 상공부 경영지도과장 및 전문준 한국생산성본부 연구원
- 김대영 한국개발원 수석연구원은 강사로 참석

2. 개최 목적

-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상이한 아시아 각국에 적합한 생산성 측정 방법을 검토하여 공통방법론을 도출함.
- 각 회원국 간의 객관적인 생산성 측정 비교가 가능한 방식 채택을 논의함.

3. 회의 주제

- 경제 전반 및 산업 부문별 생산성 측정
- 농업 성장과 생산성에 관한 국제회의 결과 보고
- 각국의 생산성 측정 방법
- 생산성 측정 방법론, 범위에 관한 종합 토론

4. 회의 결과

- 현 시점에서는 노동생산성 등 부문별 생산성 측정이 불가피하지만 궁극적으로 총 생산성 측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함.
- 유엔의 분류와 같은 표준산업분류방식 수립 등 개선이 필요함.
- APO는 각국의 자료 수집을 통해 체계적 지침 및 공통방법론을 발간하도록 함.
- 각국 관련 부서는 기업의 생산성 측정 및 기업 간 생산성 비교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함.
- 김대영 수석연구원은 노동생산성지수 측정을 중심으로 한국의 사례를 소개함.

APO 이사회, 제15차. Saigon, 1973.5.8.-10.

| 73-057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7 / 11 / 1~64(64p)

정부는 1973.5.8.~10. 사이공 개최 제15차 APO(아시아생산성기구) 이사회에 심의환 상공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역내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개발을 위한 지역적 국제 협력에 동참함.
- 동 기구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심의 기관인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국가 생산성 증대에 기여함.

2. 주요 의제

- 결산 승인 및 1974년도 예산안 심의
- 동 기구의 1974~78년 5개년 사업계획 수립

3. 정부 훈령

- 의장단 구성과 관련하여 인도 대표의 의장, 파키스탄 대표의 제1부장 선출에 찬성하고 제2부의장 선출 시에는 한국에 우호적인 국가의 대표 선출을 위해 노력함.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시 한국에 필요한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교섭함.
- 사무총장 연차보고서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 정부의 생산성 향상 정책 수립에 기여함.

4. 회의 결과

- 사무총장은 1972년 중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생산성 측정 등 장기적, 기술적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음을 보고하고, 동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필요성을 강조함.
- 생산성 향상을 위한 Workshop, 세미나 등 전문가 회의 개최에 합의함.

5. 수석대표는 베트남(구 월남) 경제장관을 별도로 면담하고 양국 간 경제장관회담 개최, 경제 협력, 베트남에 대한 물자 및 기술 지원 등 현안 문제를 협의함.

APO 한국 대표이사 교체

| 73-057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I-47 / 12 / 1~6(6p)

정부는 1973.2.20.자로 일본 소재 APO(아시아생산성본부) 한국 대표이사 김우근 전 상공부차관을 심의환 신임 상공부차관으로 교체함.

ICMMP(국제군진의학 및 약학위원회) 총회, 제21차. Bucarest(루마니아), 1973.5.21.

| 73-0575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I-47 / 14 / 1~88(88p)

루마니아 Bucharest에서 1973.5.21. 개최되는 제21차 ICMMP(국제군사의학 및 약학위원회)에 주최국인 루마니아의 입국 사증 불허로 한국 국방부 대표단은 불참함.

1. 불참 결정 경위

- 국방부는 동 회의 참석을 결정하고 주최국인 루마니아가 미수교국이며 공산권 국가임에 따라 대표단의 입국 및 신변 보장 문제와 관련하여 벨기에 브뤼셀 소재 동 기구 사무총장과 회의 참석 문제를 협의함.
- 동 기구 사무총장 및 주벨기에대사관의 수차에 걸친 협의 요청에 대해 루마니아 회의 주최 측이 회신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는 동 회의 불참을 결정함.
- 루마니아의 여사한 입장에 따라 한국 외에 베트남(구 월남), 대만(구 자유중국) 및 포르투갈 대표단이 동 회의에 불참함.

2. ICMMP 현황

- 1921.7.21. 창립되어 86개국이 회원국으로 사무국은 벨기에 Liege에 소재함.
- 창립 목적
  - 제네바협정에 입각한 군사 의료 임무 수행
  - 전시 및 평시 군 환자 구호사업 시행
  - 군 장병의 건강관리 연구사업
- 한국은 1954.10.4.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북한은 가입하지 않음.

APU(아시아의원연맹) 제9차 총회 및 제14-15차 이사회

| 73-057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7 / 16 / 1~278(278p)

APU(아시아의원연맹)의 1973년 주요 회의 결과임.

1. 제14차 이사회(1973.6.21.~22. 동경)

❁ 참가국

- 한국 외에 대만(구 자유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구 크메르), 라오스, 필리핀, 태국, 베트남(구 월남) 및 일본
- 국회 대표로 민병권 단장 등 4명의 의원 참석

❁ 회의 결과

- ADC(아시아경제개발공사)의 존속 유지 결정
- ADC 운영 자금의 감축 및 동 공사 사업의 합리적, 현실적인 추진에 합의

2. 제9차 총회 및 제15차 이사회(1973.10.2.~6. 서울)

❁ 참가국

-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및 한국
- 옵서버 및 참관단: 호주, 인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및 이란

❁ 공동성명서 요지

-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평화적 통일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지지함.
- 베트남 휴전협정의 위반의 종식 및 외국군의 베트남 철수를 촉구함.
- 월맹군 및 베트콩의 캄보디아 철수를 촉구함.
- 베트남, 캄보디아 및 라오스의 전후 복구, 재건 및 난민 구호를 위한 국제적 지원을 촉구함.
- 기술, 무역, 공업화, 에너지자원 개발 및 공해 방지를 위한 회원국 간의 협력 증진을 결의함.

❁ 기타

- '한반도의 평화 유지 및 통일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노력을 지지하는 결의문' 등 19개의 결의문을 채택함.
- '유엔에 대한 월맹군 및 베트콩의 캄보디아 철수 요청 호소문'을 채택함.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제112차, Abidjan (코트디봐르) 1973.4.23.-28. 전4권. V.1 사전 준비 및 북한 가입 저지 대책 수립

| 73-0577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7 / 17 / 1~207(207p)

정부는 1973.4.23.~28. 코트디부아르 Abidjan 개최 제112차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에서 북한의 동 기구 가입 동향과 관련한 대책을 수립함.

1. 기본 대책 수립(1972.11.2.)

- 북한의 IPU 가입 문제 논의는 남북대화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남북관계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때까지 북한의 가입 신청에 대한 토의가 연기되어야 함.

2. 국회 대표단 구성

- 박준규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의원 8명
- 남철 주코트디부아르대사, 정일영 주프랑스대사, 최완복 주벨기에대사(고문) 등 7명

3. 주요 조치 사항

- 기본 교섭지침 수립(1973.2.1.자) 및 재외공관의 1차 교섭 결과 국회에 통보
- 국회 대표단과 외무부 간의 연석 대책협의회 개최(3.22.)
- 회의 기간 중 리셉션 개최 등 현지 활동 세부 계획 수립
- 북한 대표단의 코트디부아르 입국에 대비한 주최국 및 IPU 사무국과의 교섭
- 국회 대표단 활동지침 및 외무부 의견 국회 통보(4.3.)

4. 주미대사 건의 및 관련 조치

- 미 하원 Derwinsky 의원은 1973.1.3. 주미대사 면담 시 북한의 IPU 가입 시도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국회와 사전 협의를 희망하나 한국 국회가 해산되어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함에 따라 주미대사는 동 의원 등에 대한 국회의 서한 발송 등 국회 차원의 협의를 건의함.
- 국회는 1.22. 동 의원 등 50여 개 우방국 IPU 회장들에 대한 협조 요청 공한을 발송함.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제112차, Abidjan (코트디봐르) 1973.4.23.-28. 전4권. V.2 북한 가입 저지교섭 대표단 파견

| 73-0578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7 / 18 / 1~110(110p)

정부는 1973.4.23.~28. 코트디부아르 Abidjan 개최 제112차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에서 북한의 동 기구 가입 동향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 대표단을 4월 중 주요 회원국에 파견함.

1. 미주 및 구주 순방 대표단

- 대표단: 박준규, 김형일, 김명회 의원
- 순방 대상국: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2. 북유럽 순방 대표단

- 대표단: 문태준, 강문봉, 이충환 의원
- 순방 대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3. 아시아 및 이탈리아 순방 대표단

- 대표단: 민병기, 정일형 의원
- 순방 대상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이집트, 이탈리아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제112차, Abidjan (코트디봐르) 1973.4.23.-28. 전4권. V.3 북한 가입 저지 국별교섭

| 73-0579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7 / 19 / 1~457(457p)

정부는 1973.4.23.~28. 코트디부아르 Abidjan 개최 제112차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에서 북한의 동 기구 동향과 관련하여 동 기구 회원국들에 대한 교섭을 시행함.

1. 기본 교섭지침 수립 및 재외공관 지시(1973.2.1.)

- 1972.9월 로마에서 개최된 동 기구 제111차 이사회 집행위원회는 전례 없이 북한의 가입 조건 충족을 인정하고 북한 가입 권고 결의안을 찬성 5, 반대 4, 기권 1의 표결로 가결함.
- 이사회는 찬성 50, 반대 41, 기권 6의 표결로 집행위원회의 북한 가입 권고 결의안에 대한 토의 보류를 결정하고 동 건을 제112차 이사회에 재차 상정하도록 함.
- 제111차 이사회에서 동독의 가입, 유엔 및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등 유엔전문기구에의 중국(구 중공) 및 동독의 가입 등 국제 정세 변화 추세에 비추어 금차 제112차 이사회에서 북한 및 공산권의 북한 가입을 위한 시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아래 정부 기본 입장에 따라 북한의 가입 동향에 대처하기 위한 교섭을 시행함.
  -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하지 않는 기본 입장에 따라 IPU 등 주요 국제기구에 대한 북한의 가입을 저지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우위를 확보함.
  - IPU는 형식상 비정부간기구이나 북한의 동 기구 가입은 북한의 대표성 인정 및 주권 승인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제111차 이사회 표결 격차가 근소하였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국회 측의 교섭 노력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외교적인 협조가 긴요함.

2. 주요 조치 사항

- 기본 교섭지침에 따라 62개 회원국 주재 45개 재외공관을 통한 교섭 시행
- 3개 국회 교섭대표단의 4월 중 15개 주요 회원국 순방
- 18개 공관에 대한 주재국 및 겸임국의 참석 권장 및 지지 교섭 지시(1973.3.28.)
- 한국 입장 지지가 예상되는 국가 중 불참 가능성이 있는 14개국에 대한 참석 권장 및 지지 재교섭 지시(3.30.)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제112차, Abidjan (코트디봐르) 1973.4.23.-28. 전4권. V.4 회의 결과보고

| 73-0580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7 / 20 / 1~111(111p)

코트디부아르 Abidjan에서 1973.4.23.~28. 개최된 제112차 IPU(국제의원연맹)는 표결을 통해 동 기구의 차기 이사회 중 북한의 가입을 유효한 것으로 결정한다고 가결함.

1. 표결 결과

- 북한 가입 심의를 차기 제113차 이사회까지 연기하자는 한국 측 제안은 찬성 35, 반대 43, 기권 28로 부결됨.
- 북한의 즉시 가입을 제안하는 불가리아 제안은 찬성 43, 반대 44, 기권 19로 부결됨.
- 차기 이사회 중 북한의 가입이 유효한 것으로 한다는 베네수엘라 제안에 따른 이탈리아 수정 결의안이 찬성 57, 반대 28, 기권 20으로 가결됨.

2. 표결 결과 분석

- 북한은 1959년 이래 동 기구 가입을 신청해 왔으나 북한의 비정상적인 대유엔 관계, 남북한 관계 등의 이유로 14년간 16회의 표결을 통해 가입이 보류되어 왔으며, 제111차 이사회에서 동독의 가입 등으로 다수 회원국의 대북한 입장이 완화됨.
- 미국-중국(구 중공), 일본-중국, 미국-소련, 동독-서독 간의 관계 개선 등에 따른 냉전 분위기의 변화 및 화해 여건 조성 등 국제 정세의 변화가 반영됨.
- 북한의 가입이 중국 가입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동 기구 사무국 및 일부 서방 국가들의 입장 변화가 작용함.
- 각 대표의 표결 시 정부의 지시보다는 소속 정당 또는 개인적인 소신에 따른 투표 경향이 강하게 반영되는 동 기구의 특수성이 작용함.

3. 향후 파급 효과 전망

- 비정부간 국제기구 및 의원들 간의 친선단체로서의 동 기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북한의 가입이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승인을 의미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국제적인 화해 분위기 등 국제 정세의 변화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북한의 WHO(세계보건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에 대한 가입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의 가입과 관련한 동구권 제국의 입장에 비추어 과거 동 기구의 Moscow 개최 회의 시 한국 대표단에 대한 사증 발급 거부에 따른 국회대표단의 불참 사례 등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동구권 개최 동 기구 회의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함이 필요함.

IPU 이사회, 제113차. Geneva(스위스) 1973.10.22.-26.

| 73-058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7 / 21 / 1~140(140p)

국회는 1973.10.22.~26. 제네바 개최 IPU(국제의원연맹) 제113차 이사회에 박준규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동남아 평화 정착
- 사회체제가 상이한 국가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원칙 수립
- 주요 국제 정세 평가
- 집행위원 선출

2. 회의 결과 결의문 요지

- 각국의 독립, 주권 평등, 민족자결, 긴장 완화, 평화 공존 원칙, 협력 증진 및 군비 축소 필요성을 확인함.
- 인도차이나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희망하며 1973.1월 파리평화협정 체결을 환영함.
- 중동의 항구적인 평화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군의 1967.6월 이래 점령한 아랍 영토로부터의 완전한 철수를 촉구함.
- 칠레의 합헌정부가 군부에 의해 전복되고 민주적 제도가 폐지되었음을 규탄하며 구금된 칠레 국회의원들의 실상 파악을 위한 IPU 조사단 파견을 결정함.
- 각국의 세계인권선언 발표 25주년 기념식 준수 및 국제인권규약 비준을 촉구함.
- 식민 지배 또는 외국 지배하의 모든 주민들의 정당한 대표자 및 해방운동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유엔헌장과 국제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구함.

3. 특기 사항

- 제112차 이사회 결정에 따라 북한 대표단이 최초로 참석함.
- 동 이사회는 칠레 Santiago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동국 군부의 정권 전복 및 국회 해산 사태로 인해 개최지를 제네바로 변경함.

IPU 구주협력 및 안보회의. Helsinki(핀란드) 1973.1.26.-31.

| 73-0582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8 / 1 / 1~149(149p)

IPU(국제의원연맹) 구주협력 및 안보회의가 1973.1.26.~31. 헬싱키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헬싱키에서 1.15. 개최되는 유럽 34개국의 CSCE(구주안보협의회) 준비회의와 병행하여 개최됨.
- CSCE 회의 참가국 정부에 대한 각국 의회대표단의 권고 채택을 목적으로 함.

2. 참가국

- 유럽 30개국
- 일본, 인도, 이스라엘 및 이집트 옵서버 대표단

3. 주요 의제

-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유럽의 기여 확대
- 역내 협력, 평화 및 안보를 위한 대책 권고
- 인적 교류, 정보 교환을 포함한 과학, 기술, 교육, 문화 협력 방안 제의

4. 회의 결과 최종 선언문 요지

- 주권, 영토 보전, 국가 간의 평등, 국민에 의한 정부 선택의 자유 및 무력행사 포기에 관한 제반 원칙을 지지하며 정부 간 구주안보회의 개최 필요성에 합의함.
- 분쟁의 평화적 해결, 긴장 완화, 군비 감축 및 테러 방지를 위한 노력을 촉구함.
- 공업 및 관광 진흥, 후진국 원조, Baltic해 오염 방지 및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권고함.
- 과학, 기술, 교육 분야의 정보 교환 증진, 여행의 자유 보장, 국가 간의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문화 교류 및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함.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 제42차. Vienna, 1973.10.2.-9.

| 73-058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8 / 2 / 1~19(19p)

정부는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기구 창설 50주년을 계기로 1973.10.2.~9.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42차 동 기구 총회에 장일훈 경무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아시아 승공대회, 제3회. 동경, 1973.12.26.

| 73-058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I-48 / 3 / 1~11(11p)

일본 승공연합 주최로 1973.12.26. 동경에서 개최되는 제3차 아시아승공대회에 김임식 의원 등 17명의 한국 국회대표단이 참석함.

1. 개최 경위 및 참석 국가

- 일본 승공연합은 아시아 역내 국제적 친선 도모를 목적으로 한국, 일본 및 대만(구 자유중국) 3개국 국회의원을 동 대회에 초청함.
- 일본 측은 30명의 한국 국회의원의 동 대회 참가, 동 대회 중 박정희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 전달 및 주일한국대사관의 후원 명의 사용을 요청함.
- 다나카 일본 수상 및 장개석 대만 총통의 축하 메시지 전달이 결정되었으며, 27명의 대만 대표단 참석이 예정됨.

2. 정부 조치 사항

- 김임식 의원 등 17명의 한국 국회의원단의 동 대회 참석을 결정함.
- 명의 사용 허가는 적절치 않다는 주일대사관의 건의에 따라 대사관 후원 명의는 허용하지 않도록 함.
- 대통령 축하 메시지도 전달하지 않도록 함.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제7차 총회 및 제18-19차 이사회. 동경, 1973.10.23.-31.

| 73-058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8 / 4 / 1~125(125p)

정부는 1973.10.23.~31. 동경 개최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제7차 총회 및 제18~19차 이사회에 서재원 총무처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기구는 아시아지역 11개 회원국의 행정제도 발전 도모 및 역내 경제적, 사회적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은 1964년 제3차 총회를 주최하고 1969년 제2차 외교관 훈련과정을 주최하는 등 동 기구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옴.
- 금차 회의는 행정의 장래 발전을 위한 정책, 사업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을 협의 예정으로 한국이 동 회의 참석을 통해 역내 중진국가로서 동 기구의 발전 및 국내 행정정책 개발에 기여함.

2. 정부 훈령

- 한국의 공공행정 현황 및 발전상을 소개하고 관련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행정정책 수립에 반영함.
- 중립국 대표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 6·23 선언의 기본 취지 및 정부의 평화통일을 위한 신외교정책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제고함.
- 대만(구 자유중국) 축출 문제가 제기될 경우 적극적인 입장 표시를 유보하고, 표결 시에는 불참 또는 기권 등 적절히 대처함.
- 국내에 설치된 산하 조직관리센터의 활동 강화를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확보함.

3. 회의 결과

- 한국의 조직관리센터 및 일본의 지방행정센터의 활동 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됨.
- 이석재 감사원장 등 3명의 한국 인사 및 독일의 개발도상국지원재단에 대해 유공자 표창을 시행함.
- 역내 5개 지부 조직 개편 방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함.
- 한국의 가족계획수행보고서 등 12개 연구보고서를 채택함.
- 외교관 훈련사업 등 주요 사업들의 계속적인 시행 및 보고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신규 사업계획 수립에 합의함.

국제에너지회의. 동경, 1973.10.29.-31.

| 73-058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8 / 5 / 1~41(41p)

정부는 1973.10.29.~31. 동경 개최 WEC(국제에너지회의)에 한국석유산업개발센터 나은 제3연구실장 및 주일대사관 관계관을 옵서버 대표로 파견함.

1. 주요 의제

- 에너지 문제와 관련한 국가 간 경쟁 및 협력
- 석유 위기의 도래에 대한 대응
- 에너지 비용 및 장래 문제

2. 중점 토의 사항

- 일본, 북미, 서유럽, 호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및 EC(구주공동체) 에너지 전문가 45명이 참석한 동 회의는 에너지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협력 및 해결책을 중점 협의함.
- 에너지 문제의 현황, 석유 위기,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전망, 에너지 문제가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에너지 자원 개발 문제, 에너지 개발에 따른 자연 및 환경 보호 문제 등을 토의하고 공동성명서를 채택함.

3. 공동성명서 요지

- 각국 정부는 에너지 위기 도래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한편 위기 해소책을 강구해야 함.
- 에너지 가격 증대 및 비경제적 분배에 대처하기 위하여 에너지 보존 개선 및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긴요함.
- 석탄 추출물의 액화, 가스화, 원자력 발전의 확대, 태양열 등 대체 에너지 자원 개발 추진을 위한 대규모 투자 및 유가 인상에 대비한 대처 방안 수립이 필요함.
- 에너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전반적 대책 시행이 필요함에 따라 각국 정부는 타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산유국과의 대립 및 소비국 상호 간의 무익한 대립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방안 도출이 필요함.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제38차. München(독일) 1973.6.18.-30.

| 73-058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8 / 6 / 1~8(8p)

정부는 1973.6.18.~30. 독일 뮌헨 개최 제38차 IEC(국제전기표준회의) 총회에 김찬동 공업진흥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WEC/IEC(세계에너지회의 국제집행이사회) Buenos Aires(아르헨티나) 1973.10.1.-3.

| 73-0588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8 / 7 / 1~85(85p)

세계에너지회의 한국위원회는 1973.10.1.~3. 아르헨티나 Buenos Aires 개최 WEC/IEC(세계에너지회의/집행이사회)에 원용대 상공부 동력개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결과

- 차기 회의 일정, 개최지 및 예산안 등 행정 사항 토의
- 1974년 회의 개최지를 미국 Detroit로 결정
- 장래의 에너지 수요 및 개발 문제를 차기 회의 주제로 채택
- 주최국 내 화력발전소 방문

2. 특기 사항

- 북한은 1969년 이래 동 기구 가입을 신청해 왔으나, 금차 회의 중 가입 신청이 없었음.
- 대만(구 자유중국)대표단의 입국에 대해 현지 중국(구 중공)대사관은 외무성에 항의를 제기함.

3. 세계에너지회의 개황

- 1924년 런던에서 설립된 비정부간 민간기구로 에너지 개발 및 평화적 이용을 통한 세계 평화와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됨.
- 주요 활동
  - 잠재적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연구
  - 관련 자료 수집 및 국제적 홍보
  - 에너지 개발을 위한 매 3년 총회 개최
- 한국은 1967년 국내위원회를 설립하고 1969.10.8. 동 기구에 가입함.

ITTF(세계탁구연맹) 이사회 및 제32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Sarajevo(유고슬라비아) 1973.4.5.-15.

| 73-058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공보문화과
MF번호	I-48 / 8 / 1~41(41p)

유고슬라비아 Sarajevo에서 1973.4.4.~15. 개최된 ITTF(세계탁구연맹) 이사회 및 제32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관련 사항임.

1. 동 이사회는 1973.4.4. 회의에서 한국 등이 가입 중인 ATTF(아시아탁구연맹)와 일본, 중국(구 중공), 북한 등이 결성한 ATTU(아시아탁구연합) 간의 아시아 대륙 대표성에 대한 승인 문제를 토의한바, ATTU에 대한 승인을 부결하고 양 기구가 상호 균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계속하도록 의결함.

2. 정부는 동 이사회에 대비하여 김창원 대한탁구협회 회장에게 아래 대책 시행을 지시함.

- ITTF 회장 면담 등을 통해 금차 이사회에서도 전년도 결정과 같이 토의가 연기되도록 교섭함.
- 수적으로 우세한 ATTU의 영향으로 불리한 결정이 예상될 경우 세계탁구연맹 규약 정신에 입각하여 양 단체가 통합하는 방안을 지역위원회에 위임하도록 함.

3. ATTF 및 ITTF 연혁

- ATTF
  - 결성: 인도에서 1952년 12개 회원국으로 결성
  - 현 회원국: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구 월남), 캄보디아(구 크메르), 이스라엘, 필리핀, 태국 및 인도 등 8개국
- ITTF
  - 결성: 중국(구 중공)에서 1972년 16개 회원국으로 결성
  - 현 회원국: 중국, 북한, 일본, 월맹, 캄보디아, 스리랑카, 이란, 쿠웨이트, 레바논,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싱가포르, 시리아, 요르단 및 팔레스타인
- 한국 등 19개국이 참가한 1972년 이사회는 ATTU의 아시아대륙연맹 승인 신청을 부결함.

ABU(아시아방송연맹) 총회, 제10차. Jakarta (인도네시아) 1973.12.3.-6.

| 73-059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2과
MF번호	I-48 / 9 / 1~13(13p)

정부는 1973.12.3.~6. 인도네시아 Jakarta 개최 제10차 ABU(아시아방송연맹) 총회에 홍경모 KBS 사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예상 의제

- 신임 회장 선출
- 방글라데시 등 신규 회원국 가입
- 중국(구 중공)의 이사국 선출 및 북한의 회원 가입

2. 정부 입장

- 중국이 이사국에 입후보하여 터키, 파키스탄, 싱가포르 등 우방국들과 경합할 경우 우방국을 우선적으로 지지하고, 우방국들과의 경합이 없을 경우 기권함.
- 북한의 회원국 가입 신청 시 6·23 선언의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의 제반 국제기구 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기권함.
- 방글라데시와의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회원국 가입을 지지함.

3. 회의 결과

- KBS는 라디오상 및 TV 특별상을 수상함.
- 중국의 북경방송이 동 기구에 가입함.

대한적십자사의 공산국가 관계 사람찾기문제

| 73-0591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2 / 11 / 1~15(15p)

대한적십자사는 1972.12.14. 공산국가 소재 이산가족 찾기 사업 추진에 대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함.

1. 대한적십자사 문의 내용

- 국제적십자사 및 각국 적십자사는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사람 찾기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는 1965년 이래 공산국가 거주 한국인 연고자들의 의뢰에 따라 국제적십자사가 요청해 온 8명의 명단 및 국내에서 요청해 온 화태지역 거주 2명의 명단 통보를 검토 중임.
- 국내외 정세 변화 및 적십자사를 통한 남·북한 이산가족 재회 사업 추진 등을 고려하여 동 요청에 대한 적절한 조치 시행 및 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 외무부의 1973.1.5.자 회신

- 정부는 비적성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 중으로 적십자사가 추진 중인 동 사업은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의 측면에서 유익한 사업으로 판단됨에 따라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동 사업 추진에 이의가 없음.
- 화태지역 거주자와 관련하여 동 지역 교포들의 집단적 송환을 위한 정부의 교섭이 진행 중임에 따라 동 교섭과 병행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적인 사람 찾기 업무를 추진할 것을 권고함.

ICRC(국제적십자위원회)총회, 제22차. 테헤란(이란) 1973.11.8.-15.

| 73-0592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8 / 10 / 1~247(247p)

정부는 1973.11.8.~15. 이란 Teheran 개최 제22차 ICRC(국제적십자사) 총회에 김종규 주이란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 및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한국은 제네바협약 당사국으로 1974년 외교관회의에서 논의 예정인 제네바 4개 협약에 대한 추가의정서 채택을 위한 금차 협의에 참여하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함.
- 금차 회의에는 북한대표도 참가 예정으로 북한 측이 남·북한 적십자회담 등에 관한 정치적 발언을 행할 경우 인도주의 정신의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정당한 입장을 천명함.
- 화태(사할린) 교포의 송환 문제에 대한 국제적십자사 및 우방국의 협력을 요청함.

2. 주요 의제

- 무력 분쟁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
- 제네바협약의 이행 및 확산
- 국가 계획 사업과 관련한 적십자 활동의 기여 확대

3. 정부 훈령

- 일부 국가들에 의해 한국의 대표권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한국은 제네바협약 당사국으로 1966년 이래 관련 국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음을 천명하고, 문제 제기의 부당성을 반박함.
- 국제인도법의 보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입장을 천명하고, 동 협약 의정서의 조속한 채택 및 발효에 기여함.
- 화태 교포의 귀환을 위한 일본 및 소련 측과의 접촉을 시행하는 한편 우방국, 국제적십자사에 대해 영향력 행사를 요청함.

4. 정부대표단 활동 사항

- 국제인도법 관련 회의 시 협약 추가의정서 채택을 위한 정부 입장을 설명함.
- 북한 주창준 수석대표가 남·북적십자회담 교착 책임이 한국 측에 있음을 주장한 데 대해 이범석 적십자사 부총재는 정치적 발언임을 반박하여 회의록에서 삭제토록 함.
- 화태 교포 귀환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대표를 접촉하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바, 일본 측은 가능한 협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함.

PATA(태평양지역관광협회) 총회, 제22차. 동경, 1973.2.26.-3.1.

| 73-059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48 / 11 / 1~89(89p)

정부는 1973.2.26.~3.1. 동경 개최 제22차 PATA(태평양지역관광협회) 총회에 이재철 교통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한국 관광 진흥을 위한 홍보
- 1977년 제26차 총회의 서울 개최 유치

2. PATA 한국 지부의 정부에 대한 지원 요청

- 1965년 제14차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한국 방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1977년도 100만 명의 관광객 유치 계획의 일환으로 차기 총회의 서울 개최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회원국 소재지 17개 공관의 사전 유치 교섭 지원을 요청함.

3. 정부의 관련 조치

- 관련 공관에 대해 1973.2.8. 사전 지지 교섭 지원을 지시함.
- PATA 한국 지부는 2.2. 이한림 지부장 명의 지지 요청 공한을 각 회원국에 발송함.

4. 회의 결과

- 제26차 총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표결이 시행됨.
- 투표 결과 한국 26, 홍콩 38, 인도 23, 대만(구 자유중국) 2의 표결로 홍콩 개최가 결정됨.

조약의 해석 및 공포문제

| 73-0594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76 / 2 / 1~29(29p)

1. 서울특별시는 1972.3.9. 대한민국과 IDA(국제개발협회) 간의 교육 사업을 위한 개발융자협정의 조약으로서의 효력에 관해 문의해 온바, 외무부는 3.20. 아래와 같이 회신함.

- 동 협정은 조약 체결 능력을 가진 주체 간의 협정으로 헌법 제5조 1항에 따른 조약임.
- 경제기획원과 Dunwoodie 공과대학 간에 체결된 교육자문단 용역 계약은 일방이 국제법상 조약 체결 능력을 가진 주체가 아니며 내용상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함에 따라 조약으로 간주할 수 없음.
-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사항에 관하여 정부가 국제법 주체와 하자 없이 문서로 체결한 협정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조약에 해당함.
- 국제법상 조약 체결 능력을 가진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 정부 및 국제기구에 한정됨에 따라 국제법상의 주체가 아닌 단체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음.

2. 외무부는 1972.12월 경제기획원에 AID(국제개발처) 차관협정 공포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함.

- 국가 및 국제기관과의 합의는 국제법상의 조약으로 취급되는바, 차관협정 등 경제기획원과 국제경제기구 간에 체결되는 경제관계 협정은 관례적으로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처리하고 공포만을 외무부에 의뢰함으로써 아래 문제점이 제기됨.
  - 헌법 제50조는 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 등을 외무부장관 소관으로 규정함.
  - 특명전권위원 및 정부대표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조약 서명권자를 외무부장관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함.
- 과거 경제기획원이 답습해 온 선례는 상기 법률 제5조의 절차를 적용치 않음으로써 사실상 차관협정 등을 조약으로 취급치 않은바, 이 경우 외무부는 동 협정 등을 공포할 권한이 없음.
- 따라서 아래 2개의 대안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하며, 공포 의뢰한 AID 차관협정은 경제기획원에서 직접 공포 절차를 취하기 바람.
  - 과거의 선례에 따라 차관협정 등을 국가에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취급하되 경제기획원에서 직접 공포함.
  - 체결 교섭 등 실질적인 내용은 경제기획원에서 처리하되 전권위원 임명 시 법률 제5조의 절차 규정을 적용하며 외무부에서 공포함.

한국군 간호군속의 독일 파견을 위한 한 · 독일 국방부간의 행정합의서, 1973.10.4.

| 73-059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3 / 1 / 1~95(95p)

한국 및 독일(구 서독) 양국 국방차관은 1973.10.4. 서울에서 한국군 간호군속의 독일 파견을 위한 14개 조항의 아래 행정합의서를 체결함.

1. 동 합의서는 1972.9.15. 발효된 행정협정을 근거로 양국 군 간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매년 최소한 35명의 한국 육군 간호사들을 2년간의 기한으로 독일에 파견함.

2. 동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독일연방군 병원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독일 근무자와 동일한 관련 법규가 적용됨.

3. 한국대사관 무관은 간호사 1명을 연락관으로 임명하고 동 연락관은 여타 간호사들에 대한 군기권을 행사하며 독일 국방부 산하 기관들에 대한 한국 간호사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함.

4. 연락관이 군기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받을 경우 대사관 무관이 군기권을 행사함.

5. 파견 예정 간호사들에 대해 3개월간의 독일어 교육을 실시하며 동 소요 경비는 간호사들의 독일 도착 이후 독일 측에서 한국 정부에 상환함.

6. 동 간호사들에게는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독일 간호사에 대한 보수 및 수당 지급 규정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함.

7. 양국은 동 간호사들의 독일 근무 중에 발생하는 아래 사항을 근거로 한 상대 당사국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데 합의함.

- 독일 군인 또는 한국 간호사의 사상
- 독일 또는 한국에 속한 재산의 손상 또는 파손

8. 동 간호사들에 의해 제3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 국방부장관은 독일 당국이 관련 독일 법규에 따라 독일군에 의한 손해 발생 시와 동일하게 해결하도록 허용하며, 손해배상이 필요할 경우 한국 국방부장관은 소요 비용을 사후에 독일 측에 보상함.

한 · 미국간의 기술자료 교환협정의 부록 서명

| 73-059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3 / 2 / 1~34(34p)

한 · 미 양국은 1963.5.15. 체결된 기술자료 교환 기본협정에 의거하여 연구개발 목적의 자료 교환을 위한 동 협정의 부록 확대를 추진해 온바, 동 계획에 따라 1973년 중 양국 간에 서명된 부록 목록임.

1. 해군 관련 4개 부록(1973.5.2. 최광수 국방부 군수차관보와 Wallace 미 해군 소장 간에 서명)

- 해상 함정
- 함포사격 통제 기재 및 관련 탄약
- 해상 및 해안용 레이더
- 해군 통신체계

2. 공군 관련 2개 부록(1973.5.29. 최광수 국방부 군수차관보와 Evans 미 공군 소장 간에 서명)

- 공군 전자통신 기술
- 공군 재래식 폭발물

3. 군 장비 관련 2개 부록(1973.9.6. 유재흥 국방부장관과 Stilwell 주한미군사령관 간에 서명)

- 감시, 표적화보, 야간 관측 및 관련 전자광학 장비
- 화생방 장비

한국내에서 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한 · 유엔간의 협정 해석

| 73-059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3 / 3 / 1~9(9p)

1. 주한 UNDP(유엔개발기구계획) 사무소는 1973.2.13. 외무부에 한국 내에서 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제6항 규정을 근거로 동 기구 소속 16명의 한국인 직원에 대한 향토예비군 훈련 면제를 요청함.

2. 상기 UNDP 측 요청에 대해 외무부는 아래 입장을 회신함.

- ❁ 한국 내에서 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1951.9.21. 발효)은 현재 유효하며 동 협정 제6항의 현지 채용 직원의 병역 면제 조항도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다만 현지 채용 직원에 대한 병역의무 면제를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해당 직원의 특별자격(Special Qualification)에 따라 유엔 사업에 긴요하다고 간주되어야 함.
  - 동 해당 직원의 명단이 한국 정부에 정기적으로 제출되어야 함.
- ❁ 특별자격은 유엔 사업 수행에 있어 해당 직원의 담당 업무가 타인이 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됨에 따라 단순한 운전 요원이나 사무 보조원 등은 동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 정기적인 명단 제출은 한국 정부–유엔 간에 동 제출 기간을 상호 합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동 합의에 따라 정해진 기간을 의무 면제 적용에 참고함.
- ❁ 명단에는 해당 직원의 유엔 기관 내에서의 지위, 자격 및 동 자격에 따라 유엔 사업에 긴요함을 설명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 동 협정에 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는 협정 제5조의 분쟁해결 조항을 적용함.

한 · 대만(구 중국)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각서교환의 개정, 1973.7.13.

| 73-059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3 / 4 / 1~52(52p)

정부는 1973.7.13.자로 1966.8.31.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 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협정' 개정 발효를 공표함.

1. 개정 이유 및 내용

- 1972.12.30.자 외국환 관리 규정 개정에 따라 화교 학생을 포함하는 국내 비거주자를 위한 수학금 취급 및 원화 계정 개설 은행이 1973.4.1.자로 기존의 한국은행으로부터 한국 내 외국환 은행으로 변경 지정됨.
- 본 개정 협정은 대만(구 중화민국) 측 회답 일자인 7.13.자로 발효됨.

2. 특기 사항

- 기존 협정에 대한 경미한 개정임에 따라 양측은 협의 과정에서 양해 서한 교환으로 합의하기로 사전에 동의함.
- 동 협정 개정은 헌법 제95조 1항에 규정된 조약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국회 동의 절차를 요하지 않음.

한 · 독일간의 재정원조협정

| 73-059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3 / 5 / 1~90(90p)

정부는 1973.11.20. 윤석헌 외무부장관 대리와 주한 독일대사 간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발효를 공표함.

1. 협정 주요 내용

- 독일 정부는 1972년 재정차관 3,600만 DM에 추가하여 600만 DM의 조선수리사업 차관을 연 2% 10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제공함.
- 차관 공여 기관인 독일재건은행에 대한 모든 공과금을 면제하며 차관과 관련된 인원 및 물자 수송 편의에 대한 자유 선택을 보장함.
- 차관 자금으로 공급되는 물자와 용역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국제 공개입찰 절차에 따름.

2. 교섭 경위

- 한국 정부는 조선수리사업을 위해 1971년 독일 정부에 2,980만 DM의 차관 제공을 요청함.
- 600만 DM의 추가 차관 제공이 가능하다는 독일 정부의 입장에 따라 1972년 동 액수에 해당하는 상업차관을 재정차관으로 전환 신청함.
- 1973년 독일 정부의 동 차관 제공 원칙 결정 및 차관 조건 제시에 따라 1973.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 경제회담에서 동 협정 문안에 합의함.

3. 협정 체결의 의의

-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중요한 분야인 조선수리사업 부문의 육성을 위한 외자 도입을 실현함.
- 한 · 독일 양국 간의 기존 우호협력관계 강화에 기여함.

오키나와현(일본) 한국인 계절적 노무자의 소득세에 관한 조회

| 73-060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2-58 / 24 / 1~13(13p)

주일대사는 1973.11.22. 오키나와현에서 취업 중인 한국인 계절적 노무자들의 소득세 납부 여부와 관련한 정부의 지침 회신을 요청함.

1. 주일대사 보고 요지

- ❁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현 파인애플 통조림 공장에서 계절적 노무자로 취업 중인 한국 근로자들에 대해 일본 소득세법과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한 · 일 양국 간의 조약에 근거하여 면세 적용을 불허한다는 입장임.
- ❁ 상기 일본 정부 입장에 대해 파인애플 통조림 공업조합은 관련 대책을 문의해 온바, 아래 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 회신을 요청함.
  - 동 근로자들은 일본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됨에 따라 한 · 일 간의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를 위한 조약의 조세 면제 적용 대상으로 사료됨.
  - 일본 세무당국은 동 근로자들이 상기 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을 주장함에 따라 일본 측과의 조속한 협의가 필요함.

2. 정부의 1973.12.4.자 회신 요지

- ❁ 한 · 일 간의 관련 조약 제12조 3항은 개인이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타방 체약국 내에서 얻는 소득에 대하여 1년 중 183일 기간 미만을 타방 체약국에 체류하면서 체류 중 소득이 상대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의 보수일 경우 소득세 면제를 규정함.
- ❁ 따라서 해당 한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기간이 183일 미만이기는 하지만 동 소득이 한국 거주자 또는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의 보수가 아님에 따라 조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

한 · ADB간의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협정

| 73-0601 |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조약과/경제기획원
MF번호	J-77 / 6 / 1~290(290p)

정부는 1972.12.15. ADB(아시아개발은행)와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협정을 체결함.

1. 협정 주요 내용

- 차관 목적
  - 한국산업은행이 사업주로 1973년 중 민간기업 육성에 소요되는 2,000만 달러의 시설자금을 전대함.
- 차관 조건
  - 연리 10%, 3년 거치, 연 2회 원리금 균등할부 방식의 15년 상환으로 합의함.

2. 특기 사항

- 협상 과정에서 ADB는 한국산업은행의 재정상태 개선을 위한 출자금 증액, 장기 저리 재정자금 지원 및 역마진 대출의 지양 등을 요청함.
- 상기 요청에 따라 정부는 300억 원의 산업합리화자금 지원 등 한국산업은행의 재정상태 개선 계획을 수립함.

3. 국 · 영문 협정서 첨부

한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철도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협정

| 73-0602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경제기획원
MF번호	J-77 / 9 / 1~272(272p)

정부는 1972.11.22.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와 철도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협정을 체결함.

1. 협정 주요 내용

❋ 차관 목적

- 철도청을 사업주로 객차 271량, 철로 567km 건설, 교량 보강자재 및 장비 등 구입 자금 4,000만 달러를 전대함.
- 사업 기간은 1972~76년으로 계획함.

❋ 차관 조건

- 연리 7.25%, 4년 거치 25년 상환 조건임.

2. 한국 측 서약 사항

❋ 철도청은 1975년 말까지 550량의 화차를 수용할 수 있는 조차장을 서울 지역에 건설함.

❋ 철도청은 용역단과의 협조하에 서울 공작창의 개선 및 재조직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함.

❋ 정부는 IBRD의 동의 없이 철도투자계획의 주요 사항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음.

❋ 정부는 철도청이 수도권 전철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전하도록 지원함.

❋ 정부는 철도청의 투자보수율이 1978년에 5%를 달성하도록 아래 필요한 조치를 취함.

- 1974년 중 화물 요율 20% 인상
- 1975년 중 여객 운임 20% 인상 효과와 동일한 수준의 화물 또는 여객 운임 인상

3. 국·영문 협정서 첨부

한 · IDA간의 농업육성사업을 위한 차관협정. 전2권. V.1 1968-72.5

| 73-0603 |

생산연도	1968-1973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1과/경제기획원
MF번호	J-78 / 1 / 1~279(279p)

정부는 1972.9.29. IDA(국제개발협회)와 농업 육성 사업을 위한 차관협정을 체결함.

1. 협정 주요 내용

❁ 차관 목적

- 농협중앙회를 사업주로 경제작물과 축산물 분야 등 농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융자금 1,050만 달러를 전대함.
- 대농민 중장기 융자를 확대함.
- 융자제도, 회계제도, 조직 등 농협 제도를 개선함.

❁ 차관 부대사업

- 농업 경영 전문가 양성 등 기술 용역 사업 추진
- 전문가 훈련을 위한 기숙사, 도서관 시설 등 훈련시설 확충
- 농협중앙회의 경영 진단을 통한 조직 개선책 수립

❁ 차관 조건

- 정부-IDA 간: 수수료 연 0.75%, 10년 거치 40년 상환 조건임.
- 정부-농협중앙회 간: 연리 7%, 5년 거치 10년 이상 상환 조건임.

2. 자금 사용 계획

❁ 대농민 대여자금 1,000만 달러

❁ 훈련시설 자금 215,000달러

❁ 농업 경영 전문가 고용 75,000달러

❁ 조사 사업 용역비 21만 달러

한 · IDA간의 농업육성사업을 위한 차관협정. 전2권. V.2 1972.6월-1973

| 73-0604 |

생산연도	1968-1973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1과/경제기획원
MF번호	J-78 / 2 / 1~368(368p)

정부는 1972.9.29. IDA(국제개발협회)와 농업 육성 사업을 위한 차관협정을 체결한바, 동 체결 관련 문서임.

1. 동 협정(안)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한 법제처의 경제기획원에 대한 의견 회신(6.10.)

❋ 헌법 제56조 1항의 재정적 부담 및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규정에 의거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함.

2. 동 협정(안) 심의 결과 관련 국무회의 제567호 의결 및 대통령 재가 문서(6.20.)

3. 주미대사의 동 협정 서명 보고(1972.9.29.) 및 동 협정 공표 관보(12.29.)

4. 국·영문 협정서 첨부

한 · ADB(아시아개발은행)간의 차관협정

| 73-0605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3 / 6 / 1~143(143p)

정부와 ADB(아시아개발은행) 간 1973년 체결된 차관협정임.

1. 상수도 취수장 이설을 위한 차관협정(1972.12.28. 서명)

❁ 협정 주요 내용

- 정부를 사업주로 2,650만 달러를 연리 7.5%,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전대함.

❁ 사업 내용

- 한강 하류 오염지역에 위치한 5개 정수처리장의 원수 공급시설의 이설, 팔당댐 내 취수시설 신설 등의 사업을 1977.12.31. 준공 시한으로 시행함.

❁ 국·영문 협정서 첨부

2. 수산개발사업을 위한 차관협정(1972.10.10. 서명)

❁ 협정 주요 내용

- 수협중앙회를 사업주로 1,330만 달러를 연리 7.5%, 3년 거치 12년 상환 조건으로 전대함.

❁ 사업 내용

- 수산물 수출 증대 계획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가다랑어 어선을 확보함.
- 트롤어선 대체를 위한 자재 도입 및 무동력선의 동력화를 추진함.

❁ 국·영문 협정서 첨부

한 · IFC(국제금융공사)간의 투자원본 회수에 관한 일반협정

| 73-0606 |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3 / 7 / 1~285(285p)

정부는 1973.1.19. IFC(국제금융공사)와 투자 원본 회수에 관한 일반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주미대사의 1971.4.12.자 관련 건의

- IFC는 한국에 대한 투자 시 정부와 투자자본 회수에 관한 개별협정을 체결해 온바, 동 협정 체결 시마다 국회 동의 등 복잡한 국내 절차 과정으로 인하여 순조로운 투자 시행에 지장이 초래됨.
- 한국의 외자도입법은 투자된 자본이 2년 후부터 매년 20%까지 회수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원본 회수에 관한 일반협정 체결 시 제한 없는 투자자본 회수가 가능함.
- IFC는 한국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동 일반협정 체결을 공식 제안함.

❋ 정부는 경제개발계획 수행을 위해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상당한 투자유치를 필요로 함을 감안하여 동 공사로부터의 투자유치에 있어서의 절차상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동 협정 체결을 결정함.

2. 협정 주요 내용

❋ IFC의 투자, 투자의 결과로 인수된 주식, 차관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함.

❋ 외자도입법 및 본 협정에 의한 권리 및 특권에 따른 IFC의 투자는 외자도입법에 따른 투자자 및 양수인의 권리 및 이익에 추가되는 사항으로 동 권리 및 이익에 배치되지 않음.

❋ 투자 원금, 배당금, 차관 원금과 이자 등의 송금 및 매각은 외자도입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음.

3. 한국과 IFC와의 관계

❋ 한국은 1964.3.16. 동 공사에 가입한 이후 139,000달러를 출자함.

❋ IFC의 한국에 대한 투자, 차관 현황

- 1968.1월 한국금융개발주식회사와 713,000달러에 대한 투자원본 회수 협정을 체결함.
- 1970.4월 호남잠사산업주식회사와 140만 달러의 차관 및 307,000달러에 대한 투자원본 회수 협정을 체결함.

공공직업 훈련시설을 위한 한 · ADB(아시아 개발은행) 간의 차관협정에 대한 해석

| 73-060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07-41 / 1 / 1~15(15p)

노동청은 1973.7.31. 외무부에 공공직업훈련소 설치를 위해 정부가 ADB(아시아개발은행)와 체결한 차관 협정서상에 명시된 사업 수행을 위해 동 차관 자금에서 지불되는 일체의 비용에 대해 국내법상의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이 부여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1. 외무부 회신(8.2.)

- 동 협정은 국회 동의에 따라 발효된 제439호 조약으로 헌법 제93조에 따른 예산 외에 국가에 부담이 되는 계약이 아닌 제95조의 조약에 해당함에 따라 소득세법, 관세법, 법인세법 등 조세 규정에 관한 국내법에 대한 특별법임.
- 동 협정 409조에 규정된 "any taxes...in connection with the execution" 조항은 별도의 특정 조세를 지적하지 않는 한 모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자문관 보수에 대한 소득세 부과 문제는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면세함이 가할 것임.

2. 재무부의 외무부에 대한 재질의(8.24.)

- 동 협정상 execution은 문서의 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 조항은 문서의 작성에 부과되는 조세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경우에는 문서 작성에 대한 조세가 없으나 ADB 회원국 중 문서 작성에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이 있음에 따라 ADB는 여타 국가들과의 차관협정 체결 시 일반적으로 동 규정을 포함함.

3. 외무부의 재회신(8.28.)

- 외무부의 해석은 조약 일반에 대한 거시적 해석 방법을 택한 것으로 재무부의 축소 해석도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됨.
- 국제경제기구 특히 ADB와의 차관협정 체결 시 일반적으로 동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재무부의 해석이 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1차 회신의 해석을 유보함.
- 노동청에도 상기 취지를 통보할 것임.

통신시설 확장을 위한 한 · 일본간의 차관협정

| 73-0608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3 / 9 / 1~63(63p)

정부는 1973.1.24. 일본 정부와 통신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정부는 통신시설 근대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1972.4.1. 주일대사에게 일본 정부와 2,000만 달러(62억 엔) 차관 도입 교섭을 지시함.
- 9.6. 제6차 한 · 일 정기 각료회의에서 동 차관도입 원칙에 합의하고 교섭을 시행하기로 함.

2. 협정 내용

-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에서 연리 4.25%,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1977.12.31. 시한으로 대여함.
- 통신시설 확장을 위한 제품 및 용역 구입을 목적으로 함.
- 한국 정부는 해상 운송 및 보험의 자유, 선의의 경쟁을 보장하며 용역을 제공하는 일본인들에 대한 입국 및 체류와 관련한 편의를 보장함.
- 한국 정부는 아래 사항을 면제함.
  - 원금, 이자에 대한 공과금 및 조세
  - 제품, 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에 대한 공과금 및 조세
  - 물자, 장비의 수입 및 재수출에 대한 관세 및 과징금

3. 서명 및 공표

- 김용식 외무부장관과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 간에 1973.1.24. 서울에서 서명됨.
- 1973.1.29. 공표됨.

한 · 일본간의 농수산개발을 위한 2천만불 “엔” 차관협정의 개정

| 73-060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3 / 10 / 1~54(54p)

정부는 1973.1.18. 일본 정부와 체결된 농수산 개발을 위한 2,000만 달러(72억 엔) 차관협정 개정에 합의함.

1. 개정 경위

- 양국 정부는 1971.2.18. 농수산 개발을 위한 동 차관협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함.
  - 연리 6.25%, 3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 시한을 1973.2.18.로 함.
  - 동 차관에 의한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함.
  - 해상운송 및 보험에 대한 양국 회사 간의 자유경쟁을 보장함.
- 농수산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내자 조달을 위한 원자재 도입액 1,500만 달러 차관 계약서는 주일대사와 일본 수출입은행 총재 간에 동시에 서명됨.
- 농수산 개발 사업용 기자재 도입을 위한 잔여 500만 달러에 대한 계약서 서명을 위해 협정상 대출 시한을 1974.2.17.로 1년 연장하는 개정안에 양측이 합의함.

2. 합의공문 교환

- 윤석헌 외무부장관 대리와 주한 일본대사 간에 1973.2.16. 서울에서 동 개정 합의 공문을 교환함.
- 동일자로 공표됨.

한 · 일본간의 216억엔 제2차 상품차관 및 수출산업 육성 차관협정

| 73-061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J-83 / 11 / 1~224(224p)

정부는 1973.12.24. 일본 정부와 216억 엔의 제2차 상품차관 및 수출산업 육성 차관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 정부는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1972.9.6. 제6차 한 · 일 정기 각료회의에서 동 차관협정 체결을 제의함.
- ❋ 일본 측은 1973.3.28. 교환공문 형식의 동 차관협정 체결을 제안함.
- ❋ 양국 정부는 6.29. 동 차관협정 안에 합의함.

2. 협정 내용

- ❋ 일본 정부는 일본 수출입은행과 해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과 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원자재, 기계 및 장비 구입을 위한 상품차관 154억 엔과 수출산업 육성자금 62억 엔을 한국에 제공함.
- ❋ 상품차관 154억 엔
  - 연리 5%,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일본 수출입은행은 77억 엔을 전대함.
  - 연리 3.5%, 7년 거치 13년 상환 조건으로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 77억 엔을 전대함.
- ❋ 수출산업 육성 자금 62억 엔
  - 연리 5.25%, 7년 거치 13년 상환 조건으로 일본 수출입은행은 62억 엔을 전대함.

3. 합의각서 교환

- ❋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 간에 1973.12.24. 서울에서 동 합의 각서를 교환함.
- ❋ 동일자로 공표됨.

한 · 노르웨이간의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교환

| 73-0611 |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J-83 / 12 / 1~210(210p)

정부는 1973.2.2. 노르웨이와 해상 및 항공 국제 운수 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동경 상주 주한 노르웨이대사는 1971.9.20. 상호주의 적용을 전제로 동국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국제 운수 소득 면세를 제의함.
- 정부는 1972.2.25. 양국의 국내법 규정에 의한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노르웨이 측에 대해 협정 체결에 앞서 한국의 면세조치 적용을 통보함.
- 노르웨이 측은 4.18. 교환문서 형식의 협정 초안을 제시하고 한국 측 대안에 대해 12.21.자로 동의를 통보함.

2. 정부의 검토 사항

- 국제 운수사업 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는 국제 운수업의 증진을 도모하고 과세에 따른 국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국제관례임.
- 한국은 국내법상 상호주의에 의거한 면세규정을 채택하고 있음에 따라 노르웨이에 대해서도 동 원칙을 적용함이 바람직함.
- 한국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외화 획득에 기여할 것임.
- 한국은 일본, 대만(구 자유중국)과 여사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3. 협정 내용

- 양국 정부는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양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 운수사업으로 취득하는 수입 및 소득에 대해 조세 면제조치를 적용함.
- 동 면세규정은 거주자 또는 법인이 국제 운수 업무에 공동출자, 합작사업 또는 국제적 영업에 참여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4. 합의각서 교환

- 김용식 외무부장관과 동경 상주 주한 노르웨이대사 간에 1973.2.2. 서울에서 동 합의 각서를 교환함.
- 동일자로 공표됨.

한 · 네델란드의 국제운수 소득 상호면제협정 체결교섭

| 73-061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J-83 / 13 / 1~19(19p)

정부는 1973.7.24. 주네덜란드대사에게 양국 간 국제 운수 소득 상호 면제협정 체결을 위한 한국 측 초안을 통보하고 네덜란드 측의 입장을 타진하도록 지시함.

1. 정부의 검토 사항

- 양국은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국내법상 법인세, 소득세 등 국제 운수 소득에 대한 상호 면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관계 법규 변경 시 과세상의 불안과 분규 방지를 위해 동 면제협정 체결이 바람직함.
- 현재 네덜란드와의 직접 운송에 종사하는 한국의 민간 항공 및 선박은 없으나, 3국 간 수송이 증가 추세이며 수출시장의 다변화 및 국적기의 유럽 항로 개설에 대비하여 국제관례에 따라 동 면제협정 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한국 측 초안 요지

- 운항주의에 의거하여 소득세, 법인세 및 기타 공과금을 면제함.
- 공동운영, 합작투자 및 국제 경영에 참여를 보장함.
- 교환공문 형식으로 체결하며 1974.1.1. 발효를 목표로 함.

한 · 말레이시아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 73-0613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3 / 14 / 1~214(214p)

정부는 1973.4.24. 말레이시아와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에 서명함.

1. 정부의 검토 사항

- 양국 간 1967.3.2. 체결된 항공협정은 서울–쿠알라룸푸르 간의 항공 운수권만 행사하도록 규정한바, 한국 민간 항공의 급진적 발전으로 말레이시아 이원에 대한 항공 운수권 행사 필요성이 대두됨.
- 동 이원 지점으로 자카르타, 시드니를 확보할 필요성과 함께 중간 지점인 동경, 오사카, 타이베이, 홍콩, 마닐라, 사이공 및 싱가포르에서의 제5 자유운수권 행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 동 협정 개정 시 한국 민간 항공의 인도네시아, 호주까지의 동남아 노선을 확장할 수 있는 협정상의 권리 확보가 가능하며 수익금의 원활한 송금이 보장됨.

2. 체결 경위

- 정부는 말레이시아 측에 동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제의함.
- 양국 간 항공협상을 1972.10.10. 개최하여 동 개정에 합의함.

3. 개정안 내용

- 이원 지점으로 한국은 싱가포르, 자카르타, 시드니를 추가하고 말레이시아는 동경, 호놀룰루, 미국 서해안의 1지점을 추가함.
- 양국 공히 싱가포르, 동경을 이원 지점 및 중간 지점으로 하여 운수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송금 절차 구체화를 위해 현행 환율 태환 방식으로 외환관리법에 따라 송금할 수 있음을 규정함.

4. 합의각서 교환

- 김성용 주말레이시아대사 및 동국 외무성 정무차보 간에 1973.4.24. 합의 각서를 교환함.
- 동일자로 공표됨.

한 · 미국 항공협정 개정에 관한 실무자회의. Washington, D.C., 1973.12.10.-13.

| 73-0614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3 / 15 / 1~118(118p)

정부는 1973.12.10.~13. 워싱턴 개최 한 · 미 항공협정 개정에 관한 실무자회의에 이계철 주미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한국 민간 항공의 현행 미주 동부 노선 연장을 위한 미국 측과의 협의 필요성이 대두됨.
- 1972.6월 양국 간 항공협정 개정 회담에서 동 건이 타결되지 못함에 따라 동 회담 속개를 통해 동부 노선권을 확보함.

2. 정부 훈령

- 현행 한 · 미 항공협정은 노선권, 공급력 및 운항 횟수 등에서 한국 측에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동 문제점들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 금차 회담에서는 일차적으로 한국 민간 항공의 미국 동부 노선권 확보를 위해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교섭함.
  - 제1안으로 서울-뉴욕 간 여객 및 화물의 운송권 확보
  - 제2안으로 서울-뉴욕 간 화물의 운송권 확보
- 노선권 외에 1972년 항공회담 시 제기된 아래 사항들은 협정상 한국에 불리한 요소임을 지적하되 노선권 확보를 우선적으로 교섭함.
  - 호놀룰루 의무 착륙 규정 철폐, 지정 항공사 수의 제한, 기종 및 운항 횟수의 규제 및 일본 내 중간지점의 명문화

3. 회담 결과

- 미국 측은 현 협정이 한 · 미 양측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에 따라 개정이 불필요함을 주장함.
- 정부대표는 장기적, 역사적인 균형의 관점에서 공공성 등 경제 외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양국 간 무역 증가 추세 및 뉴욕으로의 집중 현상을 자료로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뉴욕까지의 화물 노선 확보 필요성을 강조함.
- 미국 측은 현행 노선 및 전세 항공을 통해 시장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음을 주장함.
- 양측의 상이한 입장 차이에 따라 1974년 회담을 속개하기로 합의함.

한 · 미국간의 한 · 미국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제19조 제4항에 관한 해석문제

| 73-061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3 / 16 / 1~16(16p)

교통부는 1973.3월 외무부에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적용 범위를 규정한 한 · 미 우호, 통상 및 항해조약 제19조 4항의 해석에 관한 의견을 문의함.

1. 교통부의 문의

-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3.3.15.자 담당관의 서한을 통해 캐나다에서 펄프를 적재한 미국 AML사 소속 선박의 한국 입항에 대해 한국 선주협회가 waiver(권리 포기)를 요구한 것은 동 조약 19조 4항에 대한 위반임을 주장하고 시정을 요구함.
- 동 조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해석을 요청함.

2. 외무부의 회신(1973.3.21.)

- 생산품의 운송에 대한 내국민대우는 아래 관점에서 한 · 미 양 체약국 영토로부터의 직접운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됨.
  - 동 조항은 타방 체약국으로 또는 타방 체약국으로부터의 운송권임을 적시하고 있으며, 특별히 제3국으로 또는 제3국으로부터라는 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양국 간의 직접 운송권만을 의미함.
  - 동 조항은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 운송권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우회 운송권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적용하는 것으로 유추 해석할 수 있음.
- 주한 외국대사관의 대정부 창구는 외무부이므로 여사한 담당관의 서신에 대하여 교통부에서 외교적 책임을 직접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본건 처리를 위해서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정식 공문을 통해 외무부에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임을 참고로 통보함.

3. 주한 미국대사관 상무관의 외무부 입장 요청(1973.9.21.)

- Nelson 상무관은 조약과장을 방문하고 미국 해운업계의 관련 고충을 설명하는 한편 국무성의 문의를 전제로 조속한 정부 입장 회신을 요청함.
- 조약과장은 아래 입장을 전달함.
  - 동 조항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미국 측의 지나친 내국민대우 조항 적용 요구는 제3국과의 문제로 확대되어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문제가 된 미국 선박에 대해서는 양측이 법적 논쟁을 회피하면서 선례를 만들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함.
- 상기 입장에 대해 동 상무관은 법률적 논쟁이 야기됨이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힘.

한 · 미국간의 국제우편환 교환협정 체결교섭

| 73-061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J-83 / 17 / 1~30(30p)

체신부는 1973.9.20. 외무부에 한 · 미 우편환 개설 협정 추진을 위한 주미대사관의 교섭 추진을 요청함.

1. 체신부 요청 내용

- ❋ 체신부는 미국에 거주 또는 체류 중인 한국 교민들의 본국 송금과 관련한 편의 제공, 외환 수입 증대를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의 기여를 위해 1970년 이래 미국과의 국제 우편환 개설을 추진해 옴.
- ❋ 미국 측의 1971.5월 동 협정 초안 제시에 대해 체신부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수차에 걸쳐 미국 측의 회신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미국 측의 회신이 없음.
- ❋ 동 개설의 필요성에 비추어 주미대사관을 통한 직접 교섭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가능한 한 12.1. 이전에 동 업무 개설이 실현되도록 관련 외교적 교섭 추진을 요청함.
- ❋ 우편환 개설 협정 추진 경위
  - 미국 우정청 보좌관의 1970.11월 방한 시 협의 결과 미국은 UPU(만국우편연합)의 우편환 및 여행자 우편소액환 협정 미가입국으로 한 · 미 간에 특별 양자협정 체결이 필요함을 확인함.
  - 미국 측의 협정 초안 제시에 대해 한국 측은 1971.6월 수정안을 전달함.
  - 미국의 1972.1월 UPU 관련 협정 가입을 계기로 한국 측 수정안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 회신을 대기 중임.
- ❋ 양측의 주요 쟁점
  - 환 및 계산서의 표시 화폐
  - 환 요금 할당 문제

2. 외무부는 1973.10.8. 양측 협정 초안 및 관련 체신부 입장을 주미대사에게 통보하는 한편 미국 측 입장을 타진하도록 지시함.

한 · 코트디브와르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교섭

| 73-0617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아중동국
MF번호	J-79 / 7 / 1~15(15p)

정부는 1973년 코트디부아르와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추진함.

1. 주코트디부아르대사의 1973.6.23.자 관련 건의

- 주재국과의 관계 개선 및 유대 강화를 위해 외무장관, 축산장관 및 대통령 비서실장의 방한을 추진 중으로 특히 외무장관 방한 시 양국 간 사증면제협정 체결 가능성을 타진함.
- 1973.5.19. 외무장관 면담 및 방한 초청 서한 전달 시 현재 40여 척의 한국 원양어선이 수도 Abidjan에 기지를 두고 참치 어로에 종사 중이며 향후 양국 간 인사 교류가 확대될 것임을 설명하고 동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설명한바, 외무장관은 반대할 이유가 없음을 언급하고 실무진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권고함.
- 외무성 정무국장, 영사국장과 후속 협의를 가진바,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다는 반응을 표시함.
- 한국 국민의 주재국 입국을 위해서는 동경, 파리 등 극히 제한적인 지역에서만 입국 사증 발급이 가능한바, 동 발급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불편한 실정을 감안할 때 동 협정 체결이 긴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진 시 한 · 프랑스 간 체결된 협정의 예를 따를 것을 건의함.

2. 정부의 1973.7.2.자 교섭 추진 지시에 따른 교섭 경과

- 외무성 영사국장은 1973.9.5. 외교관 및 관용 여권에 대한 사증 면제에는 이의가 없으나 일반 여권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위해 내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시함.
- 외무성 정무국장은 9.25. 국내 치안 및 신변 안전보장 문제를 이유로 외국과의 일반 여권에 대한 동 면제협정 체결은 어려움을 설명하고 11월로 예정된 외무장관 방한 시 우선적으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에 대한 동 면제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함.
- 정부는 10.18. 한국의 어업 인력 진출 현황 등을 감안할 때 외교관 및 관용 여권에 국한된 동 협정 체결은 실익이 없음에 따라 일반 여권도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교섭을 추진하도록 재차 지시함.

한 · 파라과이간의 이민협정 체결교섭

| 73-0618 |

생산연도	1961-1973
생 산 과	미주과
MF번호	J-9 / 4 / 1~210(210p)

한 · 파라과이 이민협정 체결을 위한 1961~70년간 정부의 교섭 추진 내용임.

1. 정부는 미주지역 친선사절단을 1961.7.28. 파라과이에 파견하여 한국 이민의 진출 가능성을 타진한 이후 12월 각의에서 동국에 대한 해외 이주정책을 의결하고 이민계획서 및 이민 협정안을 작성하여 1962.2월 주미대사에게 동 협정 체결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지시함.

2. 양국은 한국 측 협정 초안을 토대로 1964.4월 동국 개최 양국 간 혼성위원회에서 관련 1차 협의를 시행한 이후 1966.12월 동 협정의 내용 및 조속한 체결 원칙에 합의하고 파라과이 정부는 1967.7.23. 아래 협정안에 동의함.

- ❋ 한국인 이주자의 수는 본 협정 발효 이후 10년간 매년 500세대로 할당하여 총 5,000세대로 정함.
- ❋ 본 협정의 이행을 위해 파라과이 수도에 양국 간 이주혼성위원회를 설치함.
- ❋ 파라과이 정부의 의무
  - 한국 이주자의 정착을 위한 입국, 거주, 영업, 과세 등에 최혜국 대우를 보장함.
  - 토지 경작에 필요한 기술 원조를 제공함.
  - 이주지 내에서 한국인들은 이주자들을 위한 치과, 약제, 조산 및 간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인정함.
- ❋ 한국 정부의 의무
  - 파라과이까지의 수송 및 정착 초기 정주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

3. 정부는 1968.4.16. 동 협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협정 서명을 위해 김동성 주아르헨티나 대사를 특명전권위원으로 임명하고 서명을 위한 후속 교섭을 추진한바, 파라과이 측은 국내 정세에 따른 국내 조치 문제 등을 이유로 동 서명을 지연함.

4.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70.4.3. 파라과이 정부가 이민 입국 중단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사실상 교섭이 중지된 상태임을 보고함.

한 · 영국간의 영사협정 체결검토

| 73-0619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J-79 / 12 / 1~123(123p)

정부는 1972년 영국과의 영사협정 체결을 검토함.

1. 주홍콩총영사의 1972.4.18.자 건의

- 홍콩 정청은 1972.2.4. 공표된 영사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영사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한국에 대해서는 공관장을 제외한 전 공관원에 대해 임대주택 월세의 17% 면세 특혜를 부여할 수 없음을 통보함.
- 홍콩은 영국의 직할 식민지임에 따라 영국과의 교섭을 통해 영사관원의 주택 면세 특혜 조항을 삽입하여 협정의 적용 범위를 홍콩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영사협정 체결을 건의함.

2. 정부의 주영국대사관에 대한 1972.6.2.자 지시

- 현재 홍콩에 공관을 설치 중인 국가들 중 일부 국가들은 영국과의 영사협정 체결 또는 각서 교환 형식으로 공관원에 대한 면세 특혜를 향유하고 있음.
- 영국 측에 대해 정식 영사협정 체결 없이 각서 교환 형식으로 동 특혜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 바람.

3. 주영국대사의 보고에 따른 정부의 주홍콩총영사에 대한 1972.12.12.자 회신

- 영국 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 주택세에 대한 면세 특혜를 위한 협정 체결이 어렵다는 입장임.
  - 공관장이 아닌 영사관원의 주택에 대한 면세 특혜 등 특정한 사안을 규정하는 교환 각서 형식의 조치는 고려하지 않음.
  - 동 면세 특혜를 위해서는 양국 간 일반 영사협정 체결이 필요하며 영국은 상당한 정도의 영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 한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영사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바,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과만 유일하게 동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주한 영국대사관은 본국 정부 지시에 따라 영사협정 체결에 관한 영국 정부의 상기 원칙을 별도로 알려 옴.

한 · 캄보디아(구 크메르)간의 문화협정

| 73-0620 |

생산연도	1964-1973
생 산 과	조약과/공보문화과
MF번호	J-84 / 1 / 1~283(283p)

정부는 1973.1.29. 캄보디아(구 크메르)와 문화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주프놈펜총영사는 1964.6.10. 북한의 4.27. 캄보디아와의 문화과학협정 체결을 감안하여 중립국인 캄보디아와의 문화협정 체결이 필요함을 건의함.
- 동 건의에 따라 6.30. 한국 측 초안을 제시하고 교섭을 개시하였으나, 1967.1월 총영사관 철수로 교섭이 중단됨.
- 1971.7월 캄보디아 외상 방한 시 양국 간 문화협정 체결 원칙에 합의함.
- 캄보디아 측은 1972.9월 한국 측 협정안을 수락하고 프놈펜에서의 동 협정 서명을 제의함.

2. 협정 내용

- 양국 간 체결된 최초의 조약으로 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및 우호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서적 및 정기간행물 교환, 교수 및 학생 교환, 예술인 상호 교환 방문 및 공연, 친선 체육 경기 등을 통한 양국 간 교류를 증진함.
- 학위 및 기타 학력증명서의 상호 인정 방안을 검토함.
- 교류에 수반되는 물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등 편의를 제공함.

3. 서명 및 발효

- 프놈펜에서 김세원 주캄보디아대사와 Boret 외상 간 1973.1.29. 서명함.
- 동일자로 공표, 발효됨.

한 · 필리핀간의 문화협정

| 73-0621 |

생산연도	1961-1973
생 산 과	조약과/공보문화과
MF번호	J-84 / 2 / 1~220(220p)

정부는 1970.8.8. 필리핀과 문화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정부는 1949.3.3. 필리핀과 외교관계 수립 이후 양국 간의 문화 교류 증진 및 친선 유대 강화를 위하여 동 협정 체결을 교섭함.
- 주필리핀대사는 1968.1.12.자 보고를 통해 필리핀이 ASPAC(아시아태평양협의체) 주요 회원국으로 최근 양국 간 학생, 교육 및 문화계 인사, 농업 관계 연구자, 보건 관계자 등의 교류가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조속한 동 협정 체결을 건의함.
- 양국 정부는 1970.3월 동 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8월 서명하였으나 필리핀 상원의 비준 지연 등 동국 국내 사정으로 1973년까지 발효가 지연됨.

2. 협정 내용

- 문화, 예술 및 과학 분야의 상호 관계를 증진함.
- 상대국 대학 등에 타방국의 언어, 문화, 예술 및 역사 강좌 및 과정을 개설함.
- 체약국 상호 간의 학위 및 자격의 인정을 장려함.
- 상대국 내에 타방국의 문화, 연구기관 설치를 위한 편의를 제공함.

3. 서명 및 발효

- 서울에서 윤석헌 외무부차관과 Ingles 외상 간 1970.8.8. 서명됨.
- 마닐라에서 1973.3.28. 김세련 주필리핀대사와 Collantes 외상 간 동 협정 발효를 위한 각서를 교환함.
- 4.27.자로 공표, 발효됨.

주한 미국평화봉사단 운영에 관한 한(과학기술처) · 미국(주한평화봉사단)간의 양해각서, 1973.6.30.

| 73-0622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4 / 3 / 1~41(41p)

과학기술처는 1972.6.30. 주한 미국평화봉사단과 동 봉사단의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1. 체결 경위

- 과학기술처는 1972.3.15. 한 · 미 간에 1966.9.14. 체결된 평화봉사단 협정에 의거한 주한 미국평화봉사단의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과학기술처는 동 양해각서 체결 목적이 봉사 사업의 수행, 평가 검토 및 사후 관리의 유기적인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동 봉사단이 한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는 데 있음을 설명함.

2. 외무부 검토 의견(1972.3.27. 및 6.9.)

- 1966년 체결된 한 · 미 간의 평화봉사단 협정은 양국 정부의 관계 대표가 동 협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과학기술처는 동 봉사단 사업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협정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양해각서는 한 · 미 간 관련 협정의 이행 사항임에 따라 일반적인 조약 체결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과학기술처와 주한 미국평화봉사단 관계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봉사단이 미국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미국 정부기관임에 따라 동 양해각서는 헌법 제5조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재정적 지원 등 예산 외의 국가 부담을 초래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없음.

3. 양해각서 내용

- 과학기술처는 주한 미국평화봉사단의 모든 활동에 관한 한국 정부와의 협의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봉사단 활동의 기획, 평가에 참여하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함.
- 과학기술처는 평화봉사단과 한국 관련 정부기관, 민간인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함.
- 주한 미국평화봉사단은 활동 수행에 있어 과학기술처의 의견 및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며 상반되는 결정에 대해서는 이를 통보할 책임이 있음.

한 · 튀니지간의 의료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 73-0623 |

생산연도	1968-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J-84 / 5 / 1~153(153p)

정부는 1973.7.10. 튀니지와 의료 협력에 관한 합의각서를 교환함.

1. 합의각서 체결 경위

- 주튀니지대사는 1968.10월 주재국 정부가 의사 부족 사정에 따라 산부인과, 소아과 또는 일반내과 분야의 한국 의사 파견을 위한 협약 체결을 희망함을 보고하고, 동 파견 검토를 건의함.
- 정부는 1971.1월 주튀니지대사에 대해 아래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문 분야, 의약품 및 의료 기기
  - 한국 의료단 파견 시 대우 등 상세 조건
- 주튀니지대사의 1972.5월 보건장관 면담 시 튀니지 측은 산부인과, 외과 등 가족계획 전문 의사 2명의 파견을 요청함.
  - 튀니지 측은 주택 제공 등 타국 파견 의사에 준하는 대우를 보장함.
  - 양측은 1973.1월 동 합의각서 문안에 합의함.

2. 합의각서 내용

- 한국 측 입장을 반영하여 전공 분야 명기 없이 2년 임기의 의료단 2명을 파견하는 데 합의함.
- 한국 정부는 동 의료단에 대한 파견 여비 및 급여를 부담함.
- 튀니지 정부는 의료단에 대한 주택, 가구를 제공하며 아래 사항에 대한 세금, 관세 및 일체의 재정 부담을 면제함.
  - 현 합의각서의 이행을 위하여 공급되는 물자 및 장비
  - 의료단의 급여 및 수입
  - 가재도구 및 개인 용품 수입
  - 1인당 자동차 1대의 수입

3. 합의각서 교환

- 정규섭 주튀니지대사와 외무성 국제협력국장 간에 튀니스에서 1973.7.10. 교환함.
- 튀니지 측은 가족계획 지도 경험이 있는 2명의 산부인과 의사 파견을 요청하였으며, 한국 측은 동 요청을 반영하도록 양해함.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전2권. V.1 교섭철

| 73-0624 |

생산연도	1970-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4 / 6 / 1~306(306p)

정부는 1968~72년 미국과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 · 미 간 협력협정 체결을 교섭함.

1.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 연구용 원자로에 필요한 U-235 핵연료의 대여 등을 규정한 기존 협정은 1956.2.3. 체결된 이후 2차의 수정을 거쳐 1976.2.3.까지 유효한바, 핵연료 공급량의 증대 및 안전보장 조치를 위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참여 필요성 등에 따라 한 · 미 양국은 1968년부터 동 협정을 신협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협의함.

2. 양국은 1970.10월 아래 협정 초안을 기초로 핵연료 공급량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 세부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체결 절차를 취하도록 합의하고 미국 측은 동 협정의 체결 방식으로 기존 협정을 수정하는 방안 또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 중 한국 측이 선택하도록 제의함.

- 본 협정은 1956년 체결된 협정을 대체함.
-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핵연료는 12,900kg을 초과할 수 없음.
- AEC(미국원자력청)가 원자력 물질을 한국 측에 인도한 이후 한국 정부는 동 물질의 안전 취급과 사용에 관한 책임을 수임함.
- 본 협정에 따라 구매, 양도된 기기나 장치를 이용해서 생산된 어떠한 핵물질도 원자병기, 동 연구개발 또는 군사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본 협정에 의거하여 양도될 물질, 기재 및 시설에 대해서는 IAEA의 안전보장 조치가 적용됨.
- 본 협정은 발효일로부터 30년간 유효함.

3. 양국은 1972.6월 핵연료 총 공급량을 12,900kg으로 규정한 상기 문안의 신협정 체결에 동의하고 서명 및 국내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합의함.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전2권. V.2 체결철

| 73-0625 |

생산연도	1970-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4 / 7 / 1~271(271p)

정부는 1972.11.24.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 · 미 간 협력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핵연료의 증량 공급 등의 필요성에 따라 1956.2.3. 양국 간에 체결된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협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정 체결을 위해 1968.6월 AEC(미국원자력청) 고위 인사 방한 시 동 협정 개정을 제의함.
- 양측은 핵연료의 공급 한도량을 중심으로 교섭을 시행하여 1972.6월 12,900kg의 우라늄 U-235 공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1972.8.1. 동 협정에 가서명함.

2. 협정 체결의 의의

- 기존 협정은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기술협력 지원만을 포함하나, 신협정은 현재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건설, 가동 및 기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정보 교환, 기술협력 확대를 포함함.
- 기존 협정은 연구용 원자로에 필요한 핵연료 6kg 공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협정은 연구용 원자로 및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 제1호기에 필요한 12,900kg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양도 물질, 장비 및 기기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을 위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참여와 관련하여 한 · 미 · IAEA 간의 3자 협정을 개정하여 체결하도록 함.
- 1975년 착공 예정인 원자력 발전소 제2호기에 필요한 핵연료의 공급을 목적으로 추가 농축 우라늄의 필요성에 대한 양해각서를 교환함.

3. 서명 및 발효

- 김동조 주미대사와 Rogers 미국 국무장관 간에 워싱턴에서 1972.11.24. 서명됨.
- 1973.3.19. 공표되어 동일자로 발효됨.

1968.1.5자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 한 · 미국간의 협정에 대한 수정협정

| 73-0626 |

생산연도	1970-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4 / 8 / 1~171(171p)

정부는 1972.11.30. 한 · 미 · 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안전조치 적용에 대한 수정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정부는 1972.11.24.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 · 미 간의 신협력협정 체결에 따라 1968.1.5. 체결된 한 · 미 · IAEA 3자 간의 안전조치 적용에 대한 협정 수정 협정 체결을 교섭함.
- IAEA의 상기 한 · 미 간 협정에 대한 동의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 및 보장을 목적으로 기존의 안전조치를 수정한 동 3자 협정에 대한 수정협정이 체결됨.

2. 협정 내용

- 1968년 체결된 기존의 3자 간 협정이 한 · 미 간의 신협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체제를 수정함.
- 본 협정은 한 · 미 양국 간의 신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발효함.

3. 서명 및 발효

- 이성가 주오스트리아대사, IAEA 사무총장 Dr. Ekrund 및 IAEA 주재 Porter 미국 상주대표 간에 비엔나에서 1972.11.30. 서명됨.
- 1973.3.19. 공표되어 동일자로 발효됨.

한 · 일본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 73-0627 |

생산연도	1961-1973
생 산 과	조약과/통상1과
MF번호	J-84 / 10 / 1~306(306p)

정부는 1973.1.25. 한 · 일 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보호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정부는 1965년 한 · 일 국교 정상화에 따라 양국 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한 법적 분쟁을 지양하고 동 분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협정 체결을 검토함.
- 제6차 한 · 일 정기 각료회의에서 1972년 중 동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함.
- 1972.10월 동경에서 개최된 양측 실무회의에서 동 협정 초안에 최종 합의함.

2. 협정 내용

- 양국은 각국 영토 내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타방 국민 또는 법인에 대해 자국민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향유를 보장함.
- 본 협정은 합의각서 교환을 통해 체결하며 1974.1.1.부터 적용함.

3. 서명 및 공표

- 이호 주일대사와 오히라 일본 외상 간에 동경에서 1973.1.25. 서명됨.
- 동일자로 공표됨.

AARRO(아프리카 · 아시아농촌재건기구) 극동사무소를 한국 서울에 설치하기 위한 한 · AARRO간의 협정. 전2권. V.1 1968-70

| 73-0628 |

생산연도	1968-1973
생 산 과	조약과/국제기구과
MF번호	J-85 / 1 / 1~282(282p)

정부는 1968년 AARRO(아프리카 · 아시아 농촌재건기구) 극동사무소 서울 설치를 추진함.

1. 주뉴델리총영사의 1968.12.30. 및 1969.1.22. 동 서울사무소 설치를 위한 구상 보고

- 1966.1월 나이로비 개최 동 기구 제2차 총회 및 1967.3월 뉴델리 개최 제7차 집행위원회는 4개 지역사무소 설치 방침을 정하고 극동지역 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하기로 결정함.
- 서울사무소의 기능
  - 한국 및 인접 국가인 대만(구 자유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의 사업 추진
  - 역내 현안 문제의 해결 및 기구 본부에 대한 사업계획 달성을 위한 건의
  - 역내 미가입국에 대한 가입 권고, 관련 회의 주최 및 지원
- 동 서울사무소 설치를 위한 협의를 목적으로 Krishan Chand 사무국장이 1969.6월 중 방한하여 정식 협정 체결을 희망함.
- 동 기구는 말레이시아-필리핀 관계, 대만의 지위와 관련한 문제 등을 고려하여 극동지역 사무소장으로 인도네시아 출신 인사 임명을 희망함.

2. Chand 사무국장의 1969.6월 방한 시 협의 사항

- Chand 사무국장이 제시한 AARRO 측 설치 협정 초안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하고 서울사무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함.
- 농림부 대표는 국회 비준 등의 국내 절차로 인해 서명에 시일이 소요될 것임을 설명함.

3. 정부의 1970.8월 동 서울사무소 설치 결정 및 후속 조치

- 정부는 동 기구가 역내 농촌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다수의 회원국이 중립 또는 좌경 중립 성향의 국가들임을 고려하여 한국 농촌 개발 및 외교적 실리 측면에서 동 서울사무소 설치를 결정함.
- 동 기구는 1970.10월 AARRO 측 협정 초안에 대한 정부의 수정안 수락을 회신함.
- 농림부는 동 사무소 설치에 수반되는 5,052,520원을 1971년 정부 예산안에 계상함.

AARRO(아프리카 · 아시아농촌재건기구) 극동사무소를 한국 서울에 설치하기 위한 한 · AARRO간의 협정. 전2권. V.2 1971-73

| 73-0629 |

생산연도	1968-1973
생 산 과	조약과/국제기구과
MF번호	J-85 / 2 / 1~191(191p)

정부는 1973.3.5. AARRO(아프리카 · 아시아 농촌재건기구) 극동사무소 서울사무소 설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1. 협정 내용

- AARRO 극동지역 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하며 서울 사무소는 아래 기능을 수행함.
  - 극동지역 회원국 및 장래 가입할 국가들의 농촌 개발과 관련한 이익을 증대함.
  - 역내 미 가입 국가들의 가입을 위해 노력하며 관련 회의 주최 등 사업계획의 집행을 지원함.
  - 역내 국가들에 대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구 본부에 필요 사항을 건의함.
- 서울사무소는 뉴델리 소재 사무총장의 통제와 지도하에 기능을 수행함.
- 사무소장은 한국 농림부장관 또는 장관의 지명을 받은 인사의 책임 하에 서울사무소의 일상 업무를 수행함.
- 사무소장은 명예직으로 한국인을 임명함.
- 한국 정부는 사무소 직원을 선발하며 자격, 급여 및 기타 조건 등은 지역대표가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결정함.
- AARRO의 의무
  - 사무소장의 선발, 수당, 국외여비 등의 제비용
  - 사무소에 제공되는 차량 1대, 사무용품, 비품 관련 비용
- 한국 정부의 의무
  - 사무실 및 비품 제공, 비품 및 물품에 대한 면세 수입 보장
  - 사무소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소송 절차로부터의 면제 보장
  - 사무소의 건물, 대지, 재산, 자산 및 문서에 대한 불가침권 및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정부 당국으로부터 적절한 보호
  - 지역대표 및 직원들의 국내 여비 등 현지 비용, 사무소 직원의 급여 및 수당, 전기, 수도, 관리비 등 사무소 유지 비용, 회의 주최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

2. 서명 및 발효

- 노신영 주뉴델리총영사와 Chand AARRO 사무총장 간에 뉴델리에서 1973.3.5. 서명됨.
- 동일자로 발효됨.

[평화식량법에 의한] 한 · 미국간의 농산물 구매협정

| 73-0630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J-8 / 11 / 1~74(74p)

정부는 PL(미 공법) 480에 따라 1972.2.14. 한 · 미 간에 체결된 농산물 구매협정을 미국 측과의 협의를 거쳐 6차에 걸쳐 개정함.

1. 협정 내용

- 7,500만 달러의 미곡, 소맥, 옥수수 및 면화를 연리 3%, 10년 거치 30년 상환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차관 구매함.
- 본 협정 및 6차 개정 각서 교환 공히 서울에서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과 Habib 주한 미국대사 간에 서명됨.

2. 제1차 개정 각서 교환(1972.5.19.)

- 2,500만 달러의 소맥 및 옥수수의 1972.6.30. 이전 조기 도입에 합의함.

3. 제2차 개정 각서 교환(1972.10.20.)

- 2,500만 달러의 소맥 및 옥수수 추가 도입에 합의함.

4. 제3차 개정 각서 교환(1972.11.17.)

- 미곡 도입 시한을 1973.2.28.까지 연장함.

5. 제4차 개정 각서 교환(1972.11.24.)

- 원면 도입 시한을 1973.3.31.까지 연장함.

6. 제5차 개정 각서 교환(1972.12.7.)

- 소맥 도입 자금 1,670만 달러를 1,820만 달러로 150만 달러 증액함.

7. 제6차 개정 각서 교환(1973.2.16.)

- 기존 미곡 도입분의 잉여에 따라 미곡 도입 시한을 1973.6.30.까지 연장함.

PL480호 제1관에 의한 한 · 미국간의 농산물 도입협정

| 73-063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J-85 / 3 / 1~28(28p)

정부는 PL(미 공법) 480에 따라 1973.4.12. 미국과 1973년도 농산물 구매협정을 체결함.

1. 협정 내용

- 94,800,000만 달러 상당의 소맥, 옥수수 및 면화를 연리 3%, 10년 거치 30년 상환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차관 구매함.
- 본 협정은 서울에서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과 Habib 주한 미국대사 간에 서명됨.

2. 개정 각서 교환

- 1973.5.29. 현미 3,200만 달러 상당의 구매 조항을 추가하여 차관 구매 총액을 126.8백만 달러로 수정하는 동 협정 개정에 관한 합의 각서를 교환함.
- 동 합의각서는 워싱턴에서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과 USAID(미국제개발청) Hannah 처장 간에 체결됨.

한 · 월남간의 농업기술협력약정

| 73-063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5 / 4 / 1~16(16p)

정부는 1973.3.24. 베트남(구 월남) 정부와 농업기술사절단 월남 파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

1. 협정 내용

- 양국 간 1970.6.4. 체결된 경제기술협력협정 제2조 4항에 의거하여 농업기술 협력 증진을 위한 한국 농업사절단의 베트남 파견 및 기술원조 제공을 목적으로 함.
- 동 기술사절단은 미곡 생산, 관개 및 농기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됨.
- 한국 정부는 동 기술사절단의 활동 경비를 부담하며 베트남 정부는 동 기술사절단의 활동 사업 계획 수립에 수반되는 경비를 부담함.
- 동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쌍방의 합의각서 교환으로 연장할 수 있음.
- 유양수 주베트남한국대사와 Van Lam 베트남 외상 간에 사이공에서 서명됨.

2. 협정 개정

- 정부는 1973.4.11. 협정상 규정된 한국 측 사업 주관 부서를 농림수산부로부터 농림수산부 또는 농업 진흥청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함.
- 베트남 측은 5.7. 동 개정에 동의함.

한 · 방글라데시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 73-0633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조약과/통상1과
MF번호	J-85 / 6 / 1~317(317p)

정부는 1973.7.21. 방글라데시와 무역 및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주뉴델리총영사는 1972.3.9. 방글라데시와의 외교관계 수립 가능성 타진을 위해 동국을 방문하고 외상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한바, 방글라데시 측은 비동맹 정책에 따라 한국의 유엔 가입 이전에는 양국 간 정식 관계 수립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하는 한편 한국 측이 희망할 경우 무역협정을 체결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
- 정부는 양국 간 관계 개선, 동남아 지역과의 무역 증진 및 수출 확대 측면을 고려하여 5.12. 방글라데시를 승인하고 7.18. 인도 주재 동국 고등판무관을 통해 한국 측 무역협정 초안을 제시함.
- 정부 통상사절단의 1973.4.26. 동국 방문 시 동 협정에 가서명함.
- 노신영 주뉴델리총영사와 통상성장관 간에 7.21. 방글라데시에서 서명되고 동일자로 공표, 발효됨.

2. 협정 내용

- 상호 최혜국민 대우 등 교역 증진을 위한 적절한 대우를 보장함.
- 양국의 현행 외환관리법에 따라 미 달러, 파운드 등 자유태환 화폐에 의해 지불 결제함.
- 신용 공여, 합작투자 등을 통한 경제 협력을 증진함.
- 과학 · 기술 훈련생 및 전문가 교환을 촉진함.
- 상품의 경제적 운송을 위한 최적의 방법과 수단을 모색함.
- 입국, 체류 허가, 상업, 산업, 금융 및 기타 사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고려함.
- 상선의 입 · 출항 및 정박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함.
- 본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3개월 사전 서면 통고에 의하지 않는 한 매년 자동 연장됨.

한 · 중앙아프리카간의 장기무역협정

| 73-063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조약과/통상2과
MF번호	J-85 / 7 / 1~179(179p)

정부는 1973.5.10.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경제기술협력협정 및 장기무역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주중앙아프리카대사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1973.3.13. 방한 예정인 Potolot 외상의 방한 중 양국 간 동 협정 체결을 건의함.

- 중앙아프리카는 EEC(구주경제공동체) 준회원국이며 UDEAC(중앙아프리카관세경제동맹) 회원국으로 역외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제한이 있음.
- 동국과의 정치적 유대관계 강화 및 중앙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한국의 수출, 경제, 기술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동 협정 체결이 긴요함.

❋ Potolot 외상의 방한 시 한국 측 협정 초안을 토대로 동 협정 체결 원칙에 합의하여 양국 외무장관은 동 협정에 가서명함.

❋ 동 외상 방한 이후 중앙아프리카 측이 송부해 온 동국 외상의 서명본에 대한 김용식 외무부장관의 5.10. 서명에 따라 동일자로 공표, 발효됨.

2. 협정 내용

❋ 경제기술협력협정

- 경제협력사업 특히 중앙아프리카 측이 요청한 사업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함.
- 한국 국민 또는 법인의 중앙아프리카에 대한 투자 및 사업과 관련한 중앙아프리카 정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함.

❋ 장기무역협정

- 교역에 대한 상호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함.
- 협정 부록 품목에 규정된 품목에 대한 무역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규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교역을 촉진함.
- 자유태환 화폐로 지불 결제함.

3. 특기 사항

❋ 상기 2개 협정 시행을 위한 양국 간 합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 상기 2개 협정의 유효 기간은 5년으로 서면 통고에 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함.

한 · 가이아나간의 무역협정

| 73-0635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5 / 8 / 1~83(83p)

정부는 1973.3.26. 가이아나와 무역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정부는 중남미지역에 대한 경제적 진출 및 양국 간 정치,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 측면을 고려하여 동 협정 체결을 추진함.
- 가이아나 King 경제장관의 방한 시 김용식 외무장관과 동 장관이 1972.11.23. 가서명함.
- 윤석헌 외무차관의 동국 방문 시 1973.3.26. 정식 체결되어 동일자로 공표, 발효됨.

2. 협정 내용

- 양측은 무역 증진을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함.
- 원산품의 수출입, 수입 원산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관세, 과징금 및 절차에 대해 상호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함.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및 관련 국내법에 따라 자유태환 화폐로 지불 결제함.
- 본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별도의 합의 또는 서면에 의한 종결 통고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함.

3. 동 협정은 경제기술협력협정과 동시에 체결됨.

한 · 요르단간의 무역협정

| 73-0636 |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조약과/통상1과
MF번호	J-85 / 9 / 1~383(383p)

정부는 1972.11.19. 요르단과 무역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주터키 박찬현 대사의 1971.5.18. 요르단 Hassan 왕세자에 대한 겸임 신임장 제정 시 요르단 측은 한국에 대한 인광석 수출에 관심을 표하고, 양국 간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을 타진함.
- 정부는 동 협정이 양국 간에 체결되는 최초의 협정이라는 점 및 정치,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 측면을 고려하여 1972.3월 동 협정 초안을 요르단 측에 전달함.
- 요르단 정부의 동 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 개최 제의에 따라 주터키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Amman에 파견하여 박찬현 주터키대사와 Dabas 동국 경제차관 간에 11.19. 동 협정이 체결됨.
- 국내 절차 완료 통고일에 발효토록 하는 단서 조항에 따라 1973.3.12. 공표, 발효됨.

2. 협정 내용

- 양국 간 교역 증진을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함.
- 물품의 수출입을 위한 허가서 발급, 세관 절차, 관세, 보관료 및 과징금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함.
- 양국의 국내 법규 및 수출입 업자 간의 계약에 따른 무역과 관련한 분쟁은 중재에 의해 해결함.
- 일방 체약국의 국기를 게양한 상선은 제3국 국기 게양 선박에게 부여하는 최혜국민 대우를 향유함.
- 양국이 합의하는 태환통화로 지불 결제함.
- 양국 간의 무역 증진을 위한 경제적, 기술적 협력을 장려함.
- 본 협정은 국내 절차 완료일을 시점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일방 당사국이 90일 이전 서면으로 종료 통고를 하지 않는 한 매 2년 자동 연장함.

한 · 마다가스카르(구 말라가시)간의 무역협정 체결 교섭

| 73-0637 |

생산연도	1966-1973
생 산 과	통상2과/조약과
MF번호	J-85 / 10 / 1~255(255p)

정부는 1966~73년 마다가스카르(구 말라가시)와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함.

1. 추진 경위

- Silla 동국 외상의 1966.7월 방한 시 양국 간 무역협정 초안 제시에 따라 정부는 한국 측 대안을 전달하고 주미대사를 통해 교섭을 시행함.
- 마다가스카르 측은 1967.9월 한국 측 초안을 기초로 한 협정안에 가서명에 동의하였으나, 동국 국내 정세에 따라 각의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체결이 지연됨.
- 박준규 특사의 1970.3월 동국 방문 시 마다가스카르 측은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 협의를 위한 한국 경제사절단 파견을 요청함.
- 동부아프리카 친선사절단의 1970.11월 동국 방문 중 동 협정 체결 추진 합의에 따라 주프랑스 대사를 통해 체결을 위한 교섭을 재차 추진함.
- 주프랑스대사관 참사관의 1971.5월 동국 방문 시 마다가스카르 측과 협정 문안 및 체결 원칙에 합의함.
- 1972.5월 동국 쿠데타 발발 이후 정세 불안정으로 인해 협정 서명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는 조속한 서명 교섭을 위해 1973.3월 동부아프리카지역 특별사절단의 동국 파견을 결정함.

2. 합의 문안 내용

- 한국은 자동차 타이어 등 21개 품목의 2차 산품을 마다가스카르에 수출하고 마다가스카르는 바닐라 등 17개 품목의 농산물 및 운모 등 10개 품목의 광산물을 한국에 수출함.
- 수출입에 따른 관세, 과징금, 조세 및 제반 규정과 절차와 관련하여 최혜국 대우를 부여함.
- 양국이 합의하는 태환통화로 지불 결제함.
-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혼성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정 이행에 따른 규제 및 상품 목록의 수정을 심의함.
- 3개월 전 서면으로 종료 통고를 하지 않는 한 매년 자동 갱신됨.

한 · 미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의 해석

| 73-0638 |

생산연도	1965-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5 / 11 / 1~76(76p)

한 · 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의 해석과 관련한 1965~73년 정부 입장임.

1. 동 조약과 신문,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주한 미국대사관은 1965.1.1. 상기 등록에 관한 법률이 양국 간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제8조에 저촉됨을 지적하고, 동 법률의 개정 및 적절한 행정조치 등 정부의 시정 조치를 요청함.

❋ 법제처는 4.2. 외무부에 아래 입장을 회신함.

- 헌법 제5조 1항은 조약과 국내법의 동위설을 채택하고 있으나 상호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자 간의 효력을 결정해야 함.
- 동 조약은 인적 규율 대상이 체약국 국민에 국한되어 있으나 동 법률은 모든 외국인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음에 비추어 동 조약은 동 법률에 대한 특별법 관계를 구성함.
- 따라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하여 체약국 국민에 대하여서는 동 조약이 동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함.

2. 외국인 투자비율 제한 조치와의 관계

❋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2.12.19. 공한을 통해 10월 경제기획원이 발간한 책자 내용 중 외국인 투자 제한 관련 부분이 동 조약에 위배됨을 제기하고 제조 및 창고업 분야에서 미국 업체의 제외 여부를 문의함.

❋ 외무부는 1973.11.6. 아래 입장을 회신함.

- 동 조약의 내국민대우 조항은 동일한 상황하에서 체약국 국민 또는 회사에 대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규정한 것으로 미국 국민 또는 회사가 한국 국민 또는 회사와 상이한 여건에 처해 있다면 동일한 대우를 향유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
- 현행 외자도입법은 외국 투자가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배당금의 대외송금 보장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혜택은 내국민에게는 부여되지 않는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특혜임.
- 따라서 정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는 국가 정책상의 절대적인 필요성의 관점에서 동 조약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며 동 조약 부속 의정서는 외화보유의 보호를 위해 필요에 따라 외국 자본의 도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한 · 프랑스간의 한 · 프랑스 기술초급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

| 73-0639 |

생산연도	1970-1973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J-81 / 7 / 1~465(465p), 2010-88 / 5 / 1~2(2p)

정부는 1971.12.23. 프랑스와 한 · 프랑스 기술초급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양국은 1965.12.18. 체결된 한 · 프랑스 간의 문화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한국 내에 기술초급대학 설립을 추진함.
- 양국은 1970.1월 수원에 동 대학을 설립할 것에 합의하고 1971.11월 제2차 한 · 프랑스 혼성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협의함.
-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Landy 주한 프랑스대사는 1971.12.23. 서울에서 동 설립 협정에 서명함.
- 동 협정은 1972.12.29. 공표, 발효됨.

2. 체결의 의의

- 양국 간 문화 및 기술협력협정을 구체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 간의 문화 및 기술협력 분야 협력을 강화함.
- 프랑스의 공업 기술교육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의 경제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중견 기술 인력을 양성함.

3. 협정 내용

- 한국법에 따른 2년제 초급대학으로 설립 및 운영은 한국 정부 책임하에 사립학교 법인이 전담하며 한국 정부는 학교 건물 건축 비용을 부담함.
- 프랑스어 강의 이해가 가능하도록 프랑스어 교육을 병행하며 프랑스 정부는 주택을 제외한 경비 부담 및 교육 자재 제공 조건으로 6명의 교수를 파견함.
- 한국 정부는 교육 기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며 운반비 등 소요 경비를 부담함.
- 프랑스 정부는 매년 2~3명의 한국 장학생을 초청하여 9~10개월간 프랑스에서 교육하며 본 대학 졸업생 일부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함.
- 본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묵시적인 갱신으로 연장함.

한 · 독일간의 부산 직업훈련소 설치에 관한 협정 수정 약정 체결

| 73-0640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J-98 / 4 / 1~84(84p)

정부는 1973.3.27. 독일(구 서독)과 1970.5.16. 체결된 한 · 독 부산직업훈련소 설치에 관한 협정 개정 약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양국은 1966.9.28. 체결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동 직업훈련소 설치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해 온바, 동 협정 주요 사항의 상당 부분이 이행 완료됨에 따라 독일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 확보를 위한 동 협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됨.
- 독일 정부의 1972.11.10. 동 협정 수정안 제시에 대해 한국 측은 12.8. 대안을 제안하고 독일 측은 1973.1.15. 한국 측 대안을 수락함.
- 외무부장관과 주한 독일대사 간에 서울에서 1973.3.27. 동 개정 약정에 관한 합의각서가 교환됨.

2. 개정 내용

- 독일 측 사업 책임자 1명 및 전문가 7명의 1인당 용역을 기존의 1.5년에서 4.5년으로 확대함.
- 한국 훈련생 10명을 증원함.
- 독일의 기자재 원조액을 455,400마르크 증액하여 총 4,200,400마르크로 개정함.
- 독일 측 사업 책임자뿐 아니라 전문가의 한국 파견 시에도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함.

3. 특기 사항

- 동 부산직업훈련소는 1970.10.11. 대통령령에 따른 직제개정으로 부산직업훈련원으로 개칭됨.
- 동 개칭에 따른 약정 개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외무부는 과학기술처에 개정 필요성이 없으며 추후 약정 개정 시 반영함이 적절할 것임을 통보함.

한 · 가이아나간의 경제기술협력협정

| 73-0641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5 / 12 / 1~90(90p)

정부는 1973.3.26. 가이아나와 경제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정부는 중남미지역에 대한 경제적 진출 및 양국 간 정치,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 측면을 고려하여 동 협정 체결을 추진함.
- 가이아나 King 경제장관의 방한 시 김용식 외무부장관과 동 장관이 1972.11.23. 가서명함.
- 윤석헌 외무부차관의 동국 방문 시 1973.3.26. 정식 체결되어 동일자로 공표, 발효됨.

2. 협정 내용

- 양국 간 경제협력, 투자 증진 및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
- 투자 촉진 및 투자와 관련한 공평한 대우 보장을 위해 투자촉진 및 상호보호협정을 체결함.
- 양국 접속수역에서의 조업 지원, 어업 관련 기업 설립 권장 및 입항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함.
-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6개월 전 서면 통고에 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함.

3. 특기 사항

- 동 협정은 무역협정과 동시에 체결됨.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 이행에 대한 한국의 관행

| 73-064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6 / 1 / 1~28(28p)

유엔 사무국은 1973.6.19. 회람 공한을 통해 1961년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 조세의 면제 규정 이행과 관련한 각 체약국들의 관행 제출을 요청해 온바, 정부의 이행 사항임.

1. 관련세법 및 조세

- ❋ 소득세법 및 등록세법에 의한 부동산 소득세 및 등록세는 국가가 부과함.
- ❋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세, 재산세 및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지방 정부가 부과함.

2. 세법상 규정 및 관행

- ❋ 지방세법 및 등록세법은 외국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관, 관저, 공관 직원 거주지 또는 외교 업무와 무관한 용도 등에 의한 구별은 없음.
- ❋ 동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과세함.
- ❋ 공관장 또는 공관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부동산세를 과세함.
- ❋ 한국 정부 소유의 해외 재산에 대한 소재국 정부의 과세 여부와 관련한 예외 및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상호주의를 채택함.
- ❋ 부동산 임차의 경우 임차인의 명의 및 용도와 관계없이 임대인의 부동산 소득세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경우 외교관 및 외교기관에 대한 비과세로 인한 세수 결손을 정부에서 보전하지 않음.
- ❋ 재산세 및 부동산 소득세는 소유주인 임대인이 부담하며 임차인은 동 조세를 부담하지 않음.

주유엔 상임 옵서버대표부 및 동독 옵서버의 지위

| 73-064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J-86 / 2 / 1~17(17p)

동독의 1972.11.24. 주유엔 옵서버 대표부 설치와 관련하여 주유엔대표부는 1973.2월 주유엔 옵서버 대표부의 지위 등에 관한 아래 검토 보고서를 작성함.

1. 설치 현황

- 스위스가 1946년 최초로 설치한 이후 현재 한국(1949년 설치), 스위스, 서독, 베트남(구 월남), 모나코, 교황청, 방글라데시 및 동독 8개국임.
- 상기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네바에도 상주 옵서버 대표부를 설치함.

2. 설치 자격 및 지위

- 유엔 헌장 등에 의거한 법적인 자격 요건 및 지위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통상 1개 이상의 유엔 전문기구 정식 회원국 또는 다수 유엔 회원국에 의해 승인된 국가의 경우 설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됨.
- 유엔 사무총장은 1966년 제21차 총회 연차보고서를 통해 옵서버 대표부 설치는 유엔과 파견국에 공히 이익이 될 것임을 언급하고 총회가 정책적 지침을 마련하기를 요청함.

3. 옵서버에 제공되는 편의

- 유엔 본부 협정이나 유엔 특권, 면제 협약에 따른 외교 특권, 면제가 부여되지 않음.
- 공인된 지위가 없음에 따라 공개회의 참석만 허용되며 일반석에 좌석이 배정됨.
- 미국 입국사증 발급 또는 사무실 설치와 관련한 특별 조치, 의전상 지원 또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음.
- 상임옵서버는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접촉, 시설 출입 및 이용, 세미나 참석 및 교육훈련 참석 등에 제한이 없음.
- 옵서버국은 총회 의제로 채택된 안건과 관련된 자국 문서를 유엔 문서로 배포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4. 동독 옵서버대표부의 지위

- 미국과의 외교관계 부재에 따라 대표부 직원들에 대하여 여행 제한 조치가 적용됨.
- 유엔 사무총장은 대표부 설치 승인 이전에 미국 측에 대해 동독 대표부 직원들의 입국 허가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짐.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1973.5.9.

| 73-0644 |

생산연도	1968-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6 / 3 / 1~359(359p)

정부는 1973.5.9.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

1. 가입 경위

- 동 협약은 국제 무역의 확대에 따른 관련 국제적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1958.5월 45개국 간에 체결된바, 수출 증진 및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는 해외 공신력 제고,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동 협약 가입을 검토함.
- 선진국들은 중재 대상 분쟁 및 판정의 범위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은 산업구조의 낙후에 따라 동 범위의 축소를 위해 노력 중으로 정부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가급적 중재 판정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도록 협약 제1조 3항의 관련 규정에 따른 유보를 조건으로 동 협약에 가입함.
- 정부의 1973.2.8. 동 협약 가입서 기탁에 따라 5.9. 공표, 발효됨.

2. 협약 내용

- 체약국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 및 분쟁의 범위에 관한 유보를 선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 각 체약국은 중재 판정의 구속력을 승인하고 동 판정이 원용될 국가의 절차 및 규칙에 따라 동 판정을 집행함.
- 특수한 경우 판정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음.

3. 정부의 유보 선언 내용

- 협약 제1조 3항에 따라 한국은 타 체약국의 영토 내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한하여 본 협약을 적용함.
- 또한 한국은 계약적 성격의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법상 상업적인 법률관계로부터 파생하는 분쟁에 한하여 본 협약을 적용함.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한국 가입, 1973.2.11. 전4권. V.1 양자간 교섭, 1966-70

| 73-0645 |

생산연도	1966-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조약과
MF번호	J-86 / 5 / 1~292(292p)

정부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가입을 위한 1966~70년간 조치 사항임.

1. 주제네바대사는 1966.12.18. 개도국 간 무역 증대를 위한 비공식회의에 참석 결과 보고를 통해 아래 사항을 건의함.

- 동 회의에서 1967.1월 중 개도국들의 관심품목 제출 문제 및 1.16. 우루과이에서 개최될 예정인 GATT 무역개발위원회 대비 문제가 논의된바, 한국으로서는 엄격한 호혜주의가 요구되는 개발도상국 간 무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소극적인 입장을 취함이 바람직함.
- 상기 우루과이 회의에 옵서버 대표단을 파견하여 회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1973.1월 제네바 개최 케네디라운드의 개발도상국 참여 문제 협의에 대비함이 필요함.

2. 정부는 1968.3.22.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GATT 제출을 위한 개도국에 대한 수출 관심품목 목록 작성, 수출 전망 및 개발도상국들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현황 파악 등 아래 무역협상 대책을 협의함.

- 개도국 12개국에 관심품목 목록을 제출하고 3개국으로부터 동 목록을 접수함.
- 요청받은 목록과 관련한 정부의 관세장벽 현황 및 해당 품목의 주요 공급국 조사 등을 통해 한국의 양허 요청 목록을 준비함.
- 협상위원회가 작성한 양허의 대상 및 적용 국가 범위 등 협상 방침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정부 입장을 수립함.
- 양허 예정 50개 품목을 1970.11.17. 국무회의에 보고함.

3. 제네바에서 1970.10.9.~12.10. 개최된 개도국 간 무역협상회의에 외무부 통상진흥관 등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정부 훈령
  - 대개도국 수출 증진 방안 및 GATT 내 개도국이 당면한 공동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함.
  - 양허 적용에 있어 개도국 간의 호혜원칙을 지지하고 우선특혜원칙 확보를 위해 노력함.
  - 비관세장벽에 관한 양허는 개도국 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과의 조기 타결을 희망하는 개도국들과 우선적으로 교섭을 시행함.
- 회의 결과
  - 대표단은 12개국과의 교섭을 시행하고 사무국에 대해 12월 중 한국 측 양허 목록을 제출 예정임을 통보함.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한국 가입, 1973.2.11. 전4권. V.2 양자간 교섭, 1971

| 73-0646 |

생산연도	1966-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조약과
MF번호	J-86 / 6 / 1~340(340p)

정부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가입을 위하여 1971.3.29.~7.31. 제네바 개최 개발도상국간무역협상회의에 정규섭 외무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1970.10월 이래 개도국 간의 관세 양허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개도국 간의 무역 증진을 위하여 진행되어 온 동 협상은 금차 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단계에 진입함.
- 동 회의에는 30여 개 개도국이 참가 예정으로 한국은 20개국을 대상으로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가능성이 있는 66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 양허를 확보하고, 한국의 관세 양허는 최소화하기 위한 교섭을 시행토록 함.

2. 정부 훈령

- 상기 파견 목적에 따른 협상을 통해 한국의 수출 진흥 가능성을 확대함.
-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장벽 양허를 대상에 포함하여 실질적인 특혜관세가 가능하도록 노력하며 일괄 타결이 용이치 않은 만큼 비관세장벽 문제는 개별 품목에 대하여 향후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협상 적용의 기준이 되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함.
- 한국의 양허 대상 50개 품목 중 1단계 33개 품목을 GATT에 제출한바, 협상 과정에서 여타 17개 품목을 적절히 활용함.

3. 회의 결과

- 금차 회의 결과를 1971.11.15. 개최 예정인 GATT 총회에 보고한다는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종료 시한인 7.31.을 경과한 10월까지 협의를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상이한 이해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함.
- 일부 개도국들은 정부대표단과의 양자 협의 시행 과정에서 한국이 제시한 양허 대상 품목 및 양허의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사무국 측도 한국 측이 일부 국가들의 여사한 의견을 감안할 것을 권고함.
- 정부대표단의 협상 결과 및 관련 건의에 따라 정부는 양허품목 추가 등의 조치를 통해 필리핀, 터키 등과의 협상을 타결하고 여타 국가들과의 협상을 계속 추진하기로 함.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한국 가입, 1973.2.11. 전4권. V.3 원산지 규정, 1971-73

| 73-0647 |

생산연도	1966-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조약과
MF번호	J-86 / 7 / 1~282(282p)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개발도상국 간 무역협상이 1972.2.25. 타결됨에 따라 1973.2.5. 개최된 동 협상 서명 16개국 회의는 의정서 원산지 규정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고, 한국 등 각 체약국의 원산지증명 발급기관 및 발급권자의 서명을 GATT 사무국에 제출할 것을 의결함.

1. 서명 16개국

- 한국, 브라질, 칠레, UAR(아랍공화국연합), 그리스,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스페인, 튀니지, 터키, 우루과이, 유고슬라비아
- 동 16개국은 1970.10월 개시된 동 무역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개도국들임.

2. 원산지 규정 관련 정부 입장

- GATT 제안 양식 사용에 동의함.
- 다수 국가의 입장과 달리 부가가치 기준 사용 채택에 동의하지 않음.
- 송품장의 원산지 증명 겸용에 반대함.

3. 서명 16개국 회의 결정 사항

- GATT 제안 양식을 채택함.
- 16개 서명국 중 대다수 국가가 부가가치 기준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를 대체적으로 표시하는 방식임에 따라 동 사용 방안을 채택함.
- 원산지 증명 겸용을 인정하지 않음.
- 각국별 원산지증명 발급의 최종 책임 기관을 선정함.
- GATT 사무국은 동 결정 사항을 1973.2월 중 각국에 통고함.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한국 가입, 1973.2.11. 전4권. V.4 가입, 1971-73

| 73-0648 |

생산연도	1966-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조약과
MF번호	J-86 / 8 / 1~352(352p)

정부는 1973.2.11.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정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함.

1. 가입 경위

- 한국은 1967.4.1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 이후 동 협정 제4부에 따른 개도국의 무역 확대와 개발 촉진을 위한 무역협정 체결 교섭에 참여함.
- 한국을 포함한 16개 개도국들은 1970.10월 개시된 실제 협상 단계에서 상호 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관세 및 무역상의 양허 교섭을 추진함.
- 한국은 1971년 제네바 회의에서 터키 및 필리핀과 6개 품목 양허에 합의하는 협상을 타결함.
- GATT 제27차 총회는 1971.11.26.자로 16개국에 대한 선별적 특혜에 따른 최혜국대우를 규정한 GATT 제1조에 대한 의무면제를 의결함에 따라 과반수 8개국이 동 의정서를 수락하여 발효됨.
- 정부는 1972.2.25. 동 의정서에 서명하고 1973.1.9. 비준서를 기탁함.
- 동 의정서는 2.11.자로 공표 발효됨.

2. 의정서 내용

- 개도국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경제 개발 및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유리한 조건하의 타국 시장 진출 및 관세,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조치를 강구함.
- 양허는 협상에 참여한 모든 개도국에 적용되며 의정서 발효 이전 시행되어 온 통상 제한 조치에 따른 양허의 축소 또는 무효화를 금지함.
- 양허표의 추가 또는 확대를 위하여 체약국은 매 3년마다 3개월 이전 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체약국의 개발, 재정 또는 교역 사정과 관련한 특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재협상이 가능함.
- 부가가치 및 가공 기준을 원산지 확인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동 기준을 적용하며 여타 국가들은 의정서 발효 이전 규칙을 제정하여 관계국에 통보함.
- 예측하지 못한 양허 효과로 인하여 국내 생산품에 위협이 되는 수준으로 수입이 확대될 경우 수입국은 동 위협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양허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체약국의 과반수를 포함한 참가국위원회 위원국 2/3의 결정으로 특정국에 대하여 본 의정서의 권리 및 의무를 정지할 수 있음.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Montreal 협약) 한국가입, 1973.9.1.

| 73-0649 |

생산연도	1970-1973
생 산 과	조약과/국제기구과
MF번호	J-86 / 9 / 1~430(430p)

정부는 1973.9.1. 민간 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Montreal 협약에 가입함.

1. 가입 경위

- 정부는 1952년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 이후 민간 항공의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함.
- 동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1969.12월 항공기 내에서의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Tokyo 협약 및 1971.10월 항공기의 불법납치 방지를 위한 Hague 협약에 각각 가입함.
- 정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항공기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기 위해 1971.9월 ICAO 주최로 Montreal에서 개최된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여 동 협약 최종의정서에 서명함.
- 동 회의에는 60여 개국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한국, 미국, 소련 등 54개국이 본 협약에 서명함.
- 정부는 1973.8.2. 가입서를 기탁하고 1973.9.1.자로 공표 발효됨.

2. 협약 내용

- 항공기 탑승자에 대한 폭행, 항공기 및 항공시설 손괴, 항공기 내 위험물 설치, 허위 정보 교신 등과 관련한 행위 및 공범 행위를 엄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함.
- 본 협약은 항공기의 이착륙지가 항공기 등록국 영토 외에 위치한 경우, 범죄가 항공기 등록국외의 타국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및 범죄인 또는 혐의자가 등록국이 아닌 타국의 영토 내에서 발견된 경우 공히 적용함.
-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타방 체약국으로부터 인도 요청을 받은 경우 본 협약을 근거로 인도할 수 있음.
- 범죄 혐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체약국은 동인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소추하여야 함.

3. 국내 입법 관련 사항

- 현행 법령상 범죄인 인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며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새로운 법령 제정 검토가 필요함.
- 범죄인 처벌에 관한 중벌 조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령 제정 또는 정비 검토가 필요함.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The Hague협약) 한국가입, 1973.2.17. 전2권. V.1 항공기 납치에 대한 협약 심의를 위한 전권대표자회의. Hague, 1970.12.1.-16.

| 73-0650 |

생산연도	1970-1973
생 산 과	조약과/국제기구과
MF번호	J-87 / 1 / 1~341(341p)

정부는 1970.11.27.~12.19. Hague 개최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The Hague 협약 심의를 위한 전권대표자회의에 진필식 주캐나다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회의는 1970.6월 Montreal 개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17차 특별총회 결의에 따른 항공기 납치행위 규제협약 서명을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한국도 동 결의를 지지한 바 있음.
- 북한에 의한 1958년 KNA 및 1969년 KAL 항공기 불법 납북 사건을 제기하여 여사한 행위에 대한 규제를 협약문에 포함하도록 함.
- 항공기 불법 납치에 관한 국가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제하는 국제적 다자협약의 서명에 참여하여 한국의 입장을 반영함.

2. 정부 훈령

- 항공기의 불법 납치는 범죄 행위임에 따라 범행의 동기나 이유가 면책의 근거로 원용될 수 없음.
- 항공기의 납치는 항공기뿐 아니라 승객 및 승무원의 억류를 포함하는 광의로 해석되어야 함.
- 범죄인 인도 원칙에는 찬성하나 납치범이 자국민일 경우에는 인도를 유보함.

3. 회의 결과

- 정부대표단의 승객 및 승무원의 억류를 포함하는 항공기 납치에 대한 해석 입장에 반론이 제기되지 않음.
- 항공기 납치범에 대한 범죄인 인도 원칙 및 범인이 자국민일 경우에는 인도를 유보한다는 예외 규정에 합의함.
- 동 협약 가입문서 기탁국으로 미국, 영국 및 소련 3국을 지정함.
- 정부대표단은 국내 현행법상 항공기 납치범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없는 만큼 향후 관련 법률의 제정, 범죄인인도조약의 원용 여부 등에 관한 검토 필요성을 건의함.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The Hague협약) 한국가입, 1973.2.17. 전2권. V.2 국내조치, 1971-73

| 73-0651 |

생산연도	1970-1973
생 산 과	조약과/국제기구과
MF번호	J-87 / 2 / 1~206(206p)

정부는 1973.2.17.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The Hague 협약에 가입함.

1. 가입 경위

- 정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항공기의 불법납치 방지를 목적으로 1970.12월 Hague에서 개최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여 동 협약 심의에 참여하고 1973.1.18. 가입서를 미국 정부에 기탁함.
- 동 협약은 2.17. 공표 발효됨.

2. 협약 내용

- 체약국은 항공기 납치범 및 공범자를 엄중한 형벌로 처벌할 의무가 있으며 본 협약은 군사, 세관 또는 경찰 업무 관련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본 협약은 항공기의 이륙 장소 또는 실제의 착륙 장소가 항공기 등록 국가의 영토 외에 위치한 경우에만 적용됨.
- 납치는 체약국들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상의 범죄에 포함되며, 동 인도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체약국들은 피요청국의 법률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인도조약상의 범죄로 인정하여야 함.
- 체약국은 피랍 항공기, 승객 및 승무원의 조속한 여행의 계속 및 항공기 및 화물의 지체 없는 반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3. 정부의 가입서 기탁 시 유보 단서

- 정부는 북한의 동 협약 가입 가능성을 상정하고 정부의 본 다자협약 가입에 따른 북한에 대한 묵시적인 승인 효과 여부와 함께 아래 관련 유보선언 시행 여부를 검토함.
  - 한국 정부의 동 협약 가입이 한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어떠한 영토나 체제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동 유보선언 시행 시 항공기 납북의 경우 북한에 대한 본 협약상의 의무 이행 요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상실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유보선언 없이 1973.2.18. 주미대사의 Rogers 미 국무장관에 대한 동 가입서 기탁 서한에 상기 유보 단서를 명기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 개정의정서[50조 가항] 한국가입, 1973.1.16.

| 73-0652 |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조약과/국제기구과
MF번호	J-87 / 3 / 1~141(141p)

정부는 1973.1.16.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 제50조(a)항 개정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함.

1. 가입 경위

- 정부는 ICAO 이사국 수를 규정한 동 기구 헌장 제50조(a)항에 대한 개정 심의를 위해 1971.3월 뉴욕에서 개최되는 동 기구 특별총회에 한표욱 주유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정부대표단은 동 특별총회에서 27개국으로 구성되는 이사회 현 이사국 수를 30개국으로 확대하는 개정 의정서 채택에 찬성함.
- 정부는 동 의정서 비준서를 1971.6.18. 기탁하고 동 의정서는 1973.1.16. 공표 발효됨.

2. 정부 훈령

- 금차 회의는 현 이사국 수를 33개국 또는 30개국으로 확대하는 제안을 토의 예정인바, 정부는 향후 한국의 이사국 진출 가능성을 상정하는 한편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가급적 33개국으로의 확대를 찬성하나, 30개국으로의 확대도 무방함.
- 비엔나에서 1971.6월 개최 예정인 제18차 총회에서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가능성을 타진함.

3. 정부의 고려 사항

- 한국은 1952년 ICAO 가입 이후 이사국으로 피선되지 않은바, 금차 회의에서의 이사국 확대 결정을 계기로 향후 이사국 진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함.
- ICAO는 여타 국제기구와 달리 매 3년 총회가 개최되어 비이사국들의 동 기구 활동 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왔음에 따라 이사국 수의 확대는 다수 회원국의 활동 강화에 기여할 것임.

특수상용 여객선박협정

| 73-0653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조약과/국제기구과
MF번호	J-87 / 4 / 1~60(60p)

IMCO(정부간해사협의기구) 관련 1971~73년 국제 협약 체결 현황임.

1. 특수상용여객선협정(1971.10.6. 런던)

- 동 협정 체결회의에 한국은 참석하지 않음.
- 1972.2.22. 현재 카메룬, 대만(구 자유중국), 프랑스, 그리스, 인도,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필리핀, 영국 등 10개국이 서명함.
- 1974.1.2. 발효됨.

2. 특수상용여객선의 면적에 관한 의정서(1973.7.13. 런던)

- 동 의정서 체결회의에 한국은 참석하지 않음.
- 참가국
  - 호주, 이집트, 프랑스, 그리스, 인도, 인도네시아,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웨덴, 영국, 미국
  - 서독 및 홍콩은 옵서버 대표단 파견
- 탑승 인원, 선박 내부 면적, 화물 및 보건 관련 세부 요건 및 안전 사항을 규정함.
- 동 의정서 이행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함.
- 동 의정서, 이행결의문 및 WHO(세계보건기구)에 대한 권고문 첨부

1960년도 해상에 있어서 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 1973.11.20.

| 73-065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조약과/국제기구과
MF번호	J-87 / 5 / 1~56(56p)

IMCO(정부간해사협의기구) 사무총장은 1974.4월 외무부에 대한 공한을 통해 1960년 체결된 해상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약과 관련하여 1973.11.20. 동 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아래 2개 세부 기준 개정안에 관한 정부의 수락을 요청함.

1. 결의안 A.263에 따른 개정안

- 발화물질
- 구명정
- 무선통신
- 항해 보조기구

2. 결의안 A.264에 따른 개정안

- 곡물 적재
- 평형 유지
- 적재 허가
- 안전 조치

3. 동 개정안 영어 · 프랑스어본 첨부

여행 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가입 검토

| 73-065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93 / 3 / 1~43(43p)

정부는 1973.11.13. 여행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에 대한 유보를 통보함.

1. 주한 벨기에대사관은 1973.10.3. 공한을 통해 1970.4월 브뤼셀에서 개최 여행계약에 관한 외교회의에서 체결된 동 협약에 대한 한국의 가입 여부를 문의함.

2. 정부는 상기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동 협약 채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 있으나, 대표단의 건의에 따라 협약 가입은 보류해 옴.

3. 동 협약은 5개국의 비준으로 발효하며 1973.10월 현재 2개국이 비준을 통보한바, 외무부는 상기 벨기에 측 요청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후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가입 유보를 결정함.

- ❁ 현 시점에서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국외 여행 알선 업무나 관광 진흥에 특별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음.
- ❁ 또한 동 협약에 대한 가입 시한이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에 따라 임의 가입이 가능함.
- ❁ 따라서 여타 체약국들의 가입 추이 및 가입 후 동 협약의 적용 과정에서 초래되는 이해득실을 면밀히 검토 후 가입 필요성이 인정될 때까지 가입을 보류함이 타당함.

4. 정부는 1973.11.13. 주한 벨기에대사관에 대한 공한으로 동 협정의 발효 시까지 한국의 가입 유보를 회신함.

IAEA(국제원자력기구) 규약 제6조의 개정 수락, 1973.6.1.

| 73-0656 |

생산연도	1969-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7 / 6 / 1~171(171p)

정부는 1973.6.1.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국 수 확대 등에 관한 동 기구 규약 제6조 개정을 수락함.

1. 수락 경위

- 동 기구 제14차 총회는 1970년 이사국 구성과 관련한 협약 제6조 개정안을 채택한바, 정부대표단도 동 개정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찬성 투표함.
- 동 개정안은 회원국 수의 증가, 기구 기능의 확대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이사국 수의 지역적 균형 배정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한국의 동 기구 내 활동 강화에도 유리한 것으로 판단함.
- 정부는 1971.8.11. 동 개정 수락서를 미국 정부에 기탁함.
- 기탁국인 미국 정부의 발효 통보 지연으로 1973.6.1. 공표 발효됨.

2. 개정 내용

- 25개국의 이사국을 34개국으로 확대하고 12개국은 이사회의 지명으로, 22개국은 총회의 선출로 이사회를 구성함.
- 극동지역을 포함한 지역별 균형 배정 원칙을 적용함.

3. 개정에 따른 이사국 현황

- 기존의 이사회 지명 이사국인 미국, 캐나다,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영국, 소련, 인도 및 일본 등 9개국 외에 브라질, 남아공 및 호주 3개국이 추가됨.
- 기존의 총회 선출 7개 지역권 20개국 외에 중동 및 남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 및 태평양, 극동 등 4개 지역권에서 2개국이 추가됨.

국제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INTELSAT 본협정) 및 동 운영협정(INSTELSAT 운영협정) 한국가입, 1973.2.12. 전4권. V.1 1차 전권회의. Washington, D.C., 1969.2.24.-3.2.

| 73-0657 |

생산연도	1968-1973
생 산 과	조약과/국제기구과
MF번호	J-87 / 7 / 1~245(245p)

정부는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협정 및 동 운영협정 체결을 목적으로 1969.2.24.~3.2.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동 기구 국제통신위성조직의 영구적 제도 설립을 위한 전권대표회의에 박동진 주미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기구는 1969.1월 국제 상업통신위성 조직에 관한 현재의 잠정적 제도를 보완하여 확정적인 영구적 제도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전권대표회의에 한국 등 63개 회원국을 초청함.
- 위성통신의 상용화의 성공적 실현 단계에서 영구적인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기본 협정 체결 과정에 참여하여 국제 통신위성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한편 정부의 관련 입장을 반영함.
- 한국의 전자 및 통신위성 관련 기술 진흥, 1979.2월 완성될 예정인 한국의 통신위성지구국의 안전도와 신뢰도 제고 및 효율적인 국제 통신 업무 수행을 도모함.

2. 주요 의제

- 영구적인 제도 확립을 위한 기본 운영협정 체결
- 협정상 INTELSAT 활동 범위, 회원국 자격, 기구의 국제성 보장, 재정 운영, 구매 정책, 기술자료 교환 등 세부 규정에 대한 협의

3. 정부 훈령

- 영구적 제도의 목적, 원칙 및 지침에 대해서는 1969.1월 통신위성 잠정위원회에서 채택된 안을 지지함.
- 회원국 자격은 ITU(국제통신기구) 회원국에 대해서만 부여되어야 하며 북한의 가입 시도에 대비하여 All state formula(모든 국가에 대한 개방 원칙) 채택에 반대함.
- 의결기관 구성에 지역별 균형배정 원칙이 적용되도록 노력함.

4. 회의 결과

- 본 협정 및 운영협정 체결 원칙에 합의하고 관련 후속 회의를 속개하기로 함.
- 회원국 자격 문제와 관련하여 루마니아 및 폴란드 측의 All state formula 주장에 대해 우방국 간의 사전 협의하에 정부대표, 프랑스 및 영국대표는 동 방안에 강력히 반대함.

국제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INTELSAT 본협정) 및 동 운영협정(INSTELSAT 운영협정) 한국가입, 1973.2.12. 전4권. V.2 준비위원회 회의. Washington, D.C., 1969

| 73-0658 |

생산연도	1968-1973
생 산 과	조약과/국제기구과
MF번호	J-87 / 8 / 1~395(395p)

1. 정부는 1969년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협정 및 동 운영협정 체결을 위한 전권대표회의 후속 워싱턴 준비회의에 체신부 및 주미대사관 관계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2. 동 준비회의는 INTELSAT의 확정적 제도 수립 및 협정 체결을 목적으로 1969.3월 개최된 전권대표회의에서 각국의 의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동 협정의 초안 작성 및 의견 조정 등을 목적으로 개최됨.

3. 회의 결과

❁ 제1차 준비회의(1969.6.23.~7.11.)

- 동 기구 조직을 총회, 의사결정기관 및 관리기구의 3원적 구조로 구성하는 데 합의함.
- 동 기구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원칙적으로 합의함.
- 본 협정 및 운영협정의 2개 협정 체결 원칙에 합의함.
- 동 회의 결과를 토대로 9월 제2차 준비회의 속개에 합의함.
- 정부대표는 동 협정이 국제적 통신수단으로서의 INTELSAT의 기능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힘.

❁ 제2차 준비회의(1969.9.2.~19.)

- 기구의 활동 범위, 회원국 자격, 완전한 국제성 보장을 위한 독자적 법인격 부여, 각국의 투자 할당율 등 재정 사항, 자료 및 기술정보 교류, 특권 및 면제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함.
- 한국 등 12개국 간 협의를 통한 공동 제안에 따른 협정 1차 초안을 작성하고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권역 그룹 대표로 구성되는 초안 작성위원회 설치에 합의함.
- 재정 문제에 관한 실무 작업반 보고서를 채택함.

❁ 제3차 준비회의(1969.11.18.~12.15.)

- 상기 1차 초안을 토대로 협정문 작성을 협의함.

국제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INTELSAT 본협정) 및 동 운영협정(INSTELSAT 운영협정) 한국가입, 1973.2.12. 전4권. V.3 2차 전권회의 및 실무자회의, Washington, D.C., 1970

| 73-0659 |

생산연도	1968-1973
생 산 과	조약과/국제기구과
MF번호	J-87 / 9 / 1~275(275p)

정부는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협정 및 동 운영협정 체결을 위해 1970년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2차 전권회의 및 3차에 걸친 실무자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제2차 전권회의(1970.2.16.~3.20.)

- 김동조 주미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정부 훈령
  - 동 협정 체결을 위한 1969년 제1차 전권회의 및 준비회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 등 14개국이 작성한 협정 최종안이 채택되도록 노력을 경주함.
  - 체약국을 ITU(국제통신기구) 회원국으로 제한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반영함.
- 회의 결과
  - 한국 등 14개국의 기존 제안 및 협정 체결 후 당분간 현 체제에 의한 관리제도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인도 등 16개국 제안을 절충한 문안에 대한 조정을 거쳐 일괄 타결안을 작성함.
  - 1970년 중 실무자급 후속 준비회의 개최에 합의함.

2. 준비회의(3차에 걸쳐 개최)

- 체신부 및 주미대사관 관계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 회의 결과
  - 제1차 준비회의(1970.5.18.~6.22.)는 협정 문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자구 수정 작업을 개시함.
  - 제2차 준비회의(1970.9.8.~10.2.)는 1차 준비회의 결과 협의된 협정문안을 각 회원국에 배포하는 것에 합의함.
  - 제3차 준비회의(1970.11.23.~12.18.)는 구매정책, 특권면제, 관리 이행 절차 및 특허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1971년 전권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에 합의하는 한편 여타 사항에 관한 단일 협정문안을 채택하고 1971년 상반기 중 전권회의 개최를 결정함.

국제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INTELSAT 본협정) 및 동 운영협정(INSTELSAT 운영협정) 한국가입, 1973.2.12. 전4권. V.4 3차 전권회의 및 협정 가입

| 73-0660 |

생산연도	1968-1973
생 산 과	조약과/국제기구과
MF번호	J-87 / 10 / 1~327(327p)

정부는 1973.2.12.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협정 및 동 운영협정에 가입함.

1. 가입 경위

- 세계상업통신 위성조직에 관한 잠정적 제도 설립을 위한 INTELSAT 잠정협정이 1964.8.20. 체결된 이후 동 확정적 제도 설립 관련 협정 체결을 위한 전권대표회의 및 실무준비회의 개최 등 국제적 노력이 계속됨.
- 1971.4.14.~5.21. 개최된 제3차 전권대표회의는 1970.12월 준비회의에서 채택된 협정안을 토대로 한 본협정 및 운영협정으로 구성된 최종의정서를 채택함.
- 김동조 주미대사는 1971.8.24. 동 2개 협정에 55번째로 서명하고 12.12. 비준서를 기탁함.
- 동 2개 협정은 1973.2.12. 공표 발효됨.

2. 협정 내용

- 본 협정은 INTELSAT 설치, 활동 범위, 법인격, 재정 원칙, 구성 및 기능,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및 특권면제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함.
- 운영협정은 체약국의 권리와 의무, 재정 부담, 총 자본액, 투자율, 수익금의 이용, 영역 할당, 구매 등 동 기구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적,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규정함.

3. 가입 관련 정부의 고려 사항

- 단일 국제위성통신망 형성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관련 준칙 이행을 통해 한국의 통신 발전에 기여함.
- 국제 통신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여 국민들에게 개선된 국제통신 편의를 제공함.
- 재래식 통신 수단으로는 불가능한 분야의 통신과 관련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함.
- 1979년 설립 예정인 한국 통신위성 기지국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

아시아 채소연구 · 개발센터 헌장 및 동 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한국가입, 1973.1.29.

| 73-0661 |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8 / 1 / 1~191(191p)

정부는 1973.1.29. 아시아 채소연구개발센터 헌장 및 동 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에 가입함.

1. 가입 경위

- USAID(미국국제개발처)는 1963.4월 아시아인의 식생활 개선책의 일환으로 채소 및 단백질 식품 증산을 위한 동 센터 설립을 타진하고 1966.5월 한국, 필리핀, 베트남(구 월남), 태국, 일본, 미국 및 대만(구 자유중국)은 동 센터를 타이베이에 설립한다는 원칙에 합의함.
- 상기 관련국 및 ADB(아시아개발은행)는 1968.3월 소요 예산 및 분담금 비율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5년간 소요예산을 750만 달러로 결정하는 한편 한국은 양해각서를 통해 5%를 부담하기로 합의함.
- 한국 등 7개국 및 ADB는 동 센터 사무국의 대만 설치 및 한국 내 지소 설치에 합의하는 한편 1971.5.22. 동 헌장에 서명함에 따라 1973.1.29. 공표 발효됨.

2. 헌장 내용

- 아시아지역 주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채소 생산, 판매 및 유통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생산 및 판매 계획에 대한 연구 및 훈련, 각 회원국의 자체 연구를 위한 정보 자료를 지원함.
- 3년 임기의 사무국장을 의장으로 하는 기술고문단을 설치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사무국장을 지원함.

3. 양해각서 내용

- 대만은 사무국 설치를 위한 부지를 제공함.
- 동 센터 최초 5년간 예산을 750만 달러로 추산하여 한국 5% 등 각국의 분담률을 규정함.
- 미국은 동 예산의 40% 또는 3백만 달러 기여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함.
- ADB는 최초 2년간 30만 달러를 제공함.
- 일본은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전문가 파견 및 자재 지원 용의와 함께 1차 연도에 4만 달러 기여 계획을 표명함.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테두리내에서 국제포플러위원회를 설치하는 협약 한국가입, 1973.1.16.

| 73-0662 |

생산연도	1968-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8 / 2 / 1~164(164p)

정부는 1973.1.16.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내 국제포플러위원회 설치 협약에 가입함.

1. 가입 경위

- FAO 제10차 총회는 1959.11월 동 기구 조직 내에 국제포플러위원회를 설치하는 협약을 채택하고 1972.10월 현재 총 28개국이 동 협약에 가입함.
- 정부는 1949년 FAO 가입 이후 동 기구로부터 농수산 개발 관련 제반 지원을 수혜한바, 동 협약 가입을 통해 선진 임업국들의 포플러 수종 연구 실적에 관한 정보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국제적인 품종 교류 등을 통해 국내 동 수종 재배 기술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동 협약에 가입함.
- 동 협약은 1973.1.16. 공표 발효됨.

2. 협약 내용

- FAO 내에 동 위원회를 설치하고 포플러 및 버드나무 재배의 연구, 관련 자료 교환 및 공동 연구 계획을 수립함.
- FAO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본 협약을 수락함으로써 본 위원회의 회원국 자격을 취득함.
- 각 체약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 포플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사항을 FAO에 통보함.

3. 한국포플러위원회가 1971.8.2. 산림청 산하 사단법인으로 설립됨.

각국의 영해범위 및 접속수역 등에 관한 자료

| 73-066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조약과/국제연합과
MF번호	J-88 / 3 / 1~112(112p)

각국의 1973년 현재 영해, 전관 수역 및 접속 수역 등에 관한 법령 내용임.

1. 모로코

- 영해: 법률이 정한 기점으로부터 12해리 수역
- 어로전관수역: 법률이 정한 기점으로부터 70해리 수역

2. 월남

- 어로전관수역: 영해 이원 50해리 수역
- 월남, 태국 및 캄보디아(구 크메르) 간의 접속 수역은 중간 기점에서 분계

3. 아르헨티나

- 영해: 1967.2월 200해리 주권 선언

4. 우루과이

- 어로전관수역: Plata강 이원 7해리 및 인접 영해 이원 12해리

5. 이란

- 어로전관수역: 페르시아만은 대륙붕이 끝나는 수역, 오만 해역은 영해 이원 50해리

6. 캐나다

- 어로전관수역: 200해리 선포를 위한 입법 추진 중
- 1973.12.17. 덴마크와 캐나다 북극 도서와 그린란드 기점 등거리 선에 의한 대륙붕 한계협정 체결

7. 터키

- 터키해협 항행에 관한 1936년 Montreux 협약

8. 필리핀

- 1974년 개최 예정인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영토의 특수성에 따른 군도이론에 의한 영해 선포 관철을 위해 노력 중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1회기. New York, 1973.12.3.-15. 전3권. V.1 사전준비, 1971-72

| 73-0664 |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8 / 4 / 1~247(247p)

뉴욕에서 1973.12.3.~15. 개최 예정인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1회기에 대비한 1972년 중 정부의 준비 및 유엔의 관련 토의 동향임.

1. 기본 대책 수립(1972.1월 및 8월)

- 각국의 영해 선포 등 관련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부의 입장을 수립함.
- 외무부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을 포함하는 특별대책반을 설치하는 한편 관계부처 간의 협조체제 구축 및 국내 학자들의 자문을 추진함.
- 아시아 · 아프리카 법률자문회의, 심해저위원회 등 관계 국제회의 참석,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사전 협의 시행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함.
- 아래 주요 의제에 대한 사전 준비 및 대책을 수립함.
  - 국가 관할권 범위 이원의 해저에 관한 국제적 제도 및 해저 개발의 경제적 문제
  - 영해의 법적 성격, 역사적 수역, 범위, 경계 획정, 무해 통항권, 항행 및 상부 비행의 자유
  - 접속 수역, 해협, 대륙붕
  - 영해 이원의 배타적 경제 수역, 공해, 무해안국의 권리, 이익 및 의무
  - 해양 환경의 보호, 과학적 조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지식 및 기술의 균분
  - 군도 및 도서 문제
  - 관련 분쟁의 해결

2. 제1위원회의 관련 토의(1972.12월)

- 개최 장소와 관련하여 일부 개도국들은 칠레의 Santiago 개최를 제의함.
- 개최 시기와 관련하여 다수 국가들은 1973년 말 제1회기를 거쳐 1974년 실질 문제를 토의하는 방안을 선호함.

3. 제1위원회의 결의안 L.632 및 634 채택

- 제1회기를 1973.11월 또는 12월 뉴욕에서 개최하고 제2회기는 Santiago에서 1974.4월 또는 5월 각각 개최함.
- 회의 참가국 범위는 1973년 제28차 총회에서 결정함.
- 해상(seabed and ocean floor) 자원의 평화적 개발 및 경제적 의의에 대한 연구를 추진함.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1회기. New York, 1973.12.3.-15. 전3권. V.2 사전준비, 1973

| 73-0665 |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8 / 5 / 1~238(238p)

뉴욕에서 1973.12.3.~15. 개최 예정인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1회기에 대비한 1973년 중 정부의 준비 및 관련 국제 동향임.

1. OAU(아프리카단결기구) 각료이사회는 1973.5.24. 아래 공동 입장 선언문을 채택함.

- 영해, 해협, 도서, 어업권을 포함한 배타적 경제수역,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필요성, 공해상의 조업, 연구 및 기술 이전, 과학적 탐사, 해양자원 보존 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동 입장을 천명함.
- 국제적인 체제 또는 관련 국제기구 설립 시까지 해상(seabed and ocean floor)의 상업적 이용 금지를 촉구함.

2. 유엔 총회는 1973.11.16. 아래 결의안(A/3067)을 채택함.

- 국제해양법협약 채택을 위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1회기를 1973.12월 뉴욕에서 개최함.
- 동 제2회기 회의를 1974.6.20.~8.29. 베네수엘라 Caracas에서 개최함.
- 유엔 사무총장이 동 해양법회의 사무총장직을 수임함.
- 해양법회의 개최와 동시에 기존의 해상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를 해체함.

3. 정부는 1973.11월 아래 주요 의제에 대한 입장을 검토함.

- 영해의 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및 영해 내 외국 선박의 통항 규제
-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 대륙붕의 획정
- 공해상 어업에 대한 규제
- 해양 환경의 보존, 오염 및 과학적 조사
- 심해저 자원 개발 방안
-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방안 및 새로운 해양법협약의 발효 이전 부분적, 잠정적 적용 여부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1회기. New York, 1973.12.3.-15. 전3권. V.3 대표임명 및 회의결과

| 73-0666 |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8 / 6 / 1~121(121p)

정부는 1973.12.3.~15. 뉴욕 개최 유엔해양법회의 제1회기에 박동진 주유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한바, 동 회의 결과임.

1. 다수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연안국들의 주권 행사 범위 확장 요구에 대한 미국, 영국, 일본, 소련 등 해양국 및 내륙국들의 반대 입장이 대립하는 한편 과거 1958년 및 1960년 2차에 걸친 해양법회의와 달리 토의의 기초가 되는 협약 초안이 없는 상태에서 개최됨에 따라 회의의 원만한 진행에 어려움이 야기되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함.

2. 국제 해협의 통항권 문제 등에 있어서도 연안국과 해양국 간의 이해가 대립되고 연안국의 주권적 관할권과 연계된 대륙붕의 획정, 인접국 간 경계 획정, 공해상의 조업, 해양 오염 방지, 과학적 조사와 규제, 심해저 자원 개발 및 분쟁의 해결 방안 등 주요 의제에 대해서도 각국의 입장 차이가 노정됨으로써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함.

3. 의제 등 실질 문제 외에 회의 의사규칙 등 절차 문제 채택에 있어서도 회의 시한을 1973.12.15.로 1일 연장하여 토의하였으나 선후진국 간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974.2월 뉴욕에서의 비공식 협의 속개 및 6월 Caracas 제2회기로의 토의 이관을 결정하는 한편 제2회기에서도 6.27. 시한 내 채택이 불가할 경우 유엔 총회 의사규칙을 준용하기로 합의하고 폐회함.

유엔 해저위원회. New York, 1973.3.5.-4.6.

| 73-066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8 / 8 / 1~54(54p)

정부는 1973.3.5.~4.6. 뉴욕 개최 유엔해저위원회에 주이탈리아대사관 어업담당관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1973.12월 뉴욕 개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의제에 대한 사전 준비 협의
-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접속수역 획정
- 국제 해협의 항행
- 영해 이원 수역 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우선적 권리 및 기타 관할권 행사
- 대륙붕, 열도, 도서 및 내해의 지위
- 인공 도서 및 시설물
- 공해상의 통신

2. 회의 결과

- 미국은 해양법 협상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해에 관한 잠정적인 임시 법적 규율, 기구 정비를 통한 자원 개발 및 원칙적인 자유통항권 보장을 촉구함.
-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미국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표명한 반면 다수 개도국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 중국(구 중공)은 해저 탐사에 관한 아래 5원칙을 제시함.
  -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포괄적 주권 행사
  - 배타적 경제수역, 어로 전관수역 및 고유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배타적 관할권 행사
  - 연안국의 사전 승인을 전제로 한 과학적 탐사에의 연안국의 참여 권리 보장
  - 국가 관할권 이원 해역 및 해저에 대한 인류의 공동자산으로의 성격 인정 및 국제기구 관리하의 탐사
  - 상호 주권 존중,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해양과학 탐사 및 협력
- 소련은 1958년 제네바협정이 명확한 영해 획정을 규정하지 못한 결함을 지적하고 아래 입장을 표명함.
  - 영해 12해리 획정이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부합함.
  -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획정은 혼란만을 야기하며 내륙국 및 어업조업국의 권리 보장이 필요함.
- 차기 위원회를 1973.7월 중 제네바에서 속개하기로 결정함.

유엔 해저위원회. Geneva, 1973.7.2.-8.24.

| 73-066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8 / 7 / 1~97(97p)

정부는 1973.7.2.~8.24. 제네바 개최 유엔해저위원회에 주이탈리아대사관 어업담당관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1973.12월 뉴욕 개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의제에 대한 사전 준비 협의
- 1972년도 해저위원회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보고서 검토
- 중남미 3개국 제안 고유수역 및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제안 선언문에 대한 토의
- 국제 사회와 연안국 간의 관계 설정

2. 회의 결과

- 칠레, 인도 및 다수 개도국들은 영해 이원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을 주장하고 동 해역 내 항해의 자유, 케이블 설치 등은 인정하나 오염 방지, 과학적 연구 등의 분야에서 연안국의 배타적 주권 행사를 요구함.
- 인도네시아 등 일부 도서국들은 1958년 제네바협정상의 전통적인 대륙붕 개념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이원 해저 200m 수역까지 연안국의 해저개발권 인정을 주장함.
- 일본 등 전통적인 해양국 및 일부 내륙국들은 최소한의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필요성을 주장함.
- 소련은 대륙붕이 없는 연안국에 대해서는 100해리 내에서 대륙붕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해저 자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제안함.
- 중국(구 중공)은 200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및 동 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배타적 주권 행사를 주장하고 아래 입장을 표명함.
  - 강대국들의 해양 패권 장악 의도를 배격함.
  - 탐사 및 어업 기술이 발전되지 못한 후진국에 대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보장이 필요함에 따라 아프리카 제국의 관련 입장을 지지함.
- 미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항해, 비행의 자유 및 해저자원 탐사, 개발에 대한 연안국의 허가권 보장을 주장함.
- 세네갈은 아프리카 국가 단일 제안으로 12해리 영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을 제안함.
- 각 참가국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내의 무해통항권 및 대륙붕에 대한 국가별 제안을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에 합의함.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에 관한 일본의 입장

| 73-066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8 / 9 / 1~58(58p)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1973.12월 개최와 관련한 일본 동북대학교 법학부 오타 시게루 교수의 "경제와 외교"지 1973.3월호 '격동의 해양법제도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 제하 기고 내용임.

1. 유엔해양법회의 준비회의 성격인 유엔해저위원회가 1973.7월 중 개최 예정으로 동 회의에서는 영해 및 공해의 획정 문제 외에도 국제 어업, 대륙붕, 수산자원 개발, 통항권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예정임.

2. 해저 개발 기술의 급속한 진보에 따라 각 연안국은 해저 및 대륙붕에 대한 독점적 개발을 요구하는 한편 대륙붕 이원 해저에 대한 개발 문제 또한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영해 확장을 시도하고 있음.

3. 일본 등 전통적인 해양국들은 여사한 개도국의 입장에 대해 12해리 영해 원칙, 무해통항권, 해협의 자유 항해 및 비행권을 요구함에 따라 양측 간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산업 및 원양어업의 발전을 고려하여 영해의 축소 및 공해의 확장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 입장임.

4. 중남미 제국을 중심으로 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등 해양 주권 강화 움직임이 개도국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일본 등 해양국들은 국제법의 전통과 기본 원칙에 의거한 해양의 자유 확보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5. 여사한 상황하에서 개최되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는 개도국의 이해와 해양국의 입장을 절충해야 하는 난제에 봉착하여 타결이 용이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일본은 어업 및 해운 대국으로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원칙으로 동 회의에 임해야 할 것임.

- 개도국들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국제 통항의 자유, 해협의 무해통항권 보장 방안을 강구함.
- 전통적인 해양의 자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염 방지 조치 등 연안국의 일정한 권리를 인정함.
- 인류의 공동 자산이라는 인식하에서 심해저자원 보호, 개발 및 동 개발 이익의 국제사회 환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 12해리 영해 원칙을 대전제로 이원의 경제수역, 오염방지수역, 연안수역 설정 및 해저자원 개발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인 고려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 관련 미국의 입장 및 해양법 자료

| 73-067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8 / 10 / 1~249(249p)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1973년 개최와 관련한 1973.7월 유엔해저위원회에서의 미국의 입장임.

1. 해상(seabeds)에 대한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아래 요지의 협약 초안 제안

- 연안국의 연안해상경제수역 내에서의 독점적인 석유 및 천연가스 등 해상자원 개발 및 이용 권리를 보장함.
- 연안국의 경제적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동 수역 내 항만, 공항 등 시설의 시추, 건설, 가동 및 이용에 대한 독점적인 허가 및 규제 권리를 보장함.
- 상기 권리 보장과 동시에 연안국은 아래 의무 사항을 준수함.
  -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모든 조치들에 대한 공해 방지 및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규범 준수
  - 동 수역 내 외국 투자에 대한 투자 계약 조건의 준수 및 투자 자산 수용 시 정당한 보상 보장

2. Stevens 미국 수석대표의 기조연설 요지

- 국제 사회 전체의 이해를 고려하여 연안국의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감안한 상기 협약 초안을 제안함.
- 영해의 12해리 획정 문제와 관련하여 해협의 자유 통항 원칙에 대한 국제적인 보장이 마련될 경우 동 입장을 수용할 수 있음.
- 일부 국가들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이원 해역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및 보상 문제 제기는 특히 내륙국 등의 이해를 감안할 때 재고가 필요함.

3. Stevens 미국 수석대표의 유엔해양법회의 관련 1973.11.7. 기자회견 요지

- 해협의 자유통항권 보장을 전제로 12해리 영해 획정에 동의함.
- 영해 이원 해역에 대한 연안국의 경제적 관할권은 일정 수역 내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 연안국의 경제적 관할권 이원의 국제 수역에 대한 권리 및 관리 문제에 대한 토의가 필요함.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 체결을 위한 전권대표회의. Washington, D.C., 1973.2.12-.3.2.

| 73-0671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88 / 11 / 1~193(193p)

정부는 1973.2.12.~3.2. 워싱턴 개최 ICTCSW(멸종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전권대표회의)에 주미대사관 황호을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개최 배경

- 자연 및 천연자원 보존을 위한 국제연맹은 1963년 멸종 상태에 있는 일부 야생 생물의 보존을 위한 국제 협약 초안 작성에 착수함.
- 유엔인간환경회의는 1972.6월 행동강령 채택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동 협약 체결을 위한 국제회의 소집을 권고하고 미국 정부는 금차 회의 개최를 제안함.
- 동 협약은 기존의 국제 협약과 달리 과도한 교역으로 인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생물의 보존을 위하여 특히 교역 통제 수단 강구를 목적으로 함.

2. 정부 훈령

- 협정 초안을 기초로 한 동 협약 채택을 위해 노력함.
- 한국산 야생 생물 및 보호 대상 조수가 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함.
- 정부의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시행 현황을 설명함.

3. 회의 결과

- 정부대표단은 한국산 인삼은 야생인삼과는 별개의 품목임을 설명하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 정부대표단이 제출한 목록 중 여타 지역에도 서식하는 종을 제외한 보호 대상 야생 동물 및 조수 목록이 부록에 포함됨.
- 한국 등 81개국이 1973.3.2. 동 협약 최종의정서에 서명함.

4. 정부대표단 건의 사항

- 동 회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향후 여사한 국제회의에는 전문가를 대표단에 포함하도록 함.
- 동 협약 발효 시 관계 규정에 따른 통관, 감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의 공항 및 항구 배치 등 국내 조치 이행 방안을 수립함.

아이슬란드 · 영국 어업분쟁

| 73-067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K-11 / 2 / 1~73(73p)

아이슬란드 근해 어획선 획정에 관한 1972~73년 아이슬란드-영국 간의 어업 분쟁 관련 사항임.

1. 분쟁 경위

- ❋ 아이슬란드는 1972.9.1.자로 아래와 같이 어로전관수역 50마일 확장을 선포함.
  - 아이슬란드 수역의 어족 자원을 멸종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연안 어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아이슬란드의 존립을 위한 조치임을 설명함.
  - 동 근거로 전통 국제법이나 국제 관습법은 어로선의 폭을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연안국에 동 관할권을 확대할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주장함.
  - 대구의 남획으로 인하여 아이슬란드 어획고의 반을 차지하는 동 어종의 급격한 감소를 우려함.
- ❋ 영국과 독일은 동 조치에 즉각 반발하는 한편 영국은 군함을 동 해역에 파견하여 해상 충돌 위기가 야기되었으며, 아이슬란드는 영국 주재 대사 소환 등 양국이 대립함.
- ❋ 아이슬란드는 9.28. 영국에 대해 군함 및 어선을 10.3. 시한 자국 수역에서 철수하지 않을 경우 단교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통고한바, 영국의 히드 수상은 10.3. 모든 영국 선박의 철수를 명령하는 한편 아이슬란드 수상에게 런던에서의 협상을 제의함.
- ❋ 양국은 협상을 통해 11.13. 2년간 유효한 과도적 성격으로 동 기간 중 영국 어선 규모 및 척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잠정적으로 타결함.
- ❋ 아이슬란드는 노르웨이 등 인근 조업 국가들과 개별적인 출어협상을 통하여 해결점을 모색함.

2. 국제적 반응

- ❋ 영국 및 일본 등 전통적인 해양 국가들에 의한 연안국의 12마일 최소 영해론 입장과 아이슬란드 및 제3세계 국가들의 대륙붕 이론에 근거한 진보적 주권 확대론이 대립해 온바, 점차적으로 제3세계 측 주장이 국제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추세임.
- ❋ 북구 외상회의는 1973.3.30.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아이슬란드 입장에 대한 이해 및 동 분쟁이 유엔 회의에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 ❋ 아이슬란드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개입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동 기구 탈퇴를 시사함.

3.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행사

- ❋ 국제사법재판소는 1973.2.2. 아이슬란드 어업 수역 문제에 관하여 재판 관할권을 보유한다는 판결을 발표한바, 아이슬란드는 7.24. 동 재판소의 관할권을 부인함.
- ❋ 동 사태를 계기로 1972년 개시된 국제해양법회의에서 미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14차. New Delhi(인도) 1973.1.10.-18.

| 73-0673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Re-34 / 2 / 1~190(190p)

정부는 1973.1.10.~18. 인도 뉴델리 개최 AALCC(아시아 · 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제14차 총회에 노신영 주뉴델리총영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한바, 한국은 준회원국으로 1969년부터 동 회의에 참가해 옴.

1. 정부 훈령

- 북한의 옵서버 자격 참가를 저지함.
- 외교관의 보호를 위한 국제 입법 필요성을 촉구함.
- 해저에 관한 문제를 포함한 해양법 문제에 관하여는 여타 회원국의 입장과 태도를 관망함.

2. 회의 결과

- 북한의 옵서버 참가 문제
  - 사전 비공식 회의에서 이집트가 동 · 서독의 옵서버 참가 승인을 제의하여 채택됨.
  - 북한 문제는 정부대표단의 사전 활동에 따라 비공식 회의에서 논의 자체가 유보됨으로써 회기 중 공식 제기되지 않았으나, 회의장에 북한 명패가 비치되어 정부대표단의 항의로 철거됨.
- 총회 의장 선출
- 의제 토의
  - 해양법 회의를 앞두고 관련 사안들이 각 위원회별로 토의됨.
    · 해양법 분과위원회에서는 인도가 연안국의 배타적 어로전관수역 문제에 관한 제안을 상정하여 찬반 토론이 진행된바, 일본은 반대하고 대다수 국가들은 찬성하였으며 정부대표는 인도 측 제안이 전관수역 범위를 제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유보 입장을 표명함.
    · 무연안국의 해양 자유접근 권리 및 이익에 관한 토의가 진행됨.
  - 상품의 국제 매매에 관한 소위원회 보고서를 심의함.
  - 국제 하천에 관한 소위원회 보고서를 심의함.
  - 외교관 및 국제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인사의 보호 및 불가침 문제가 논의됨.

중공 및 중국의 호칭문제

| 73-067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09-69 / 11 / 1~33(33p)

1. 문화공보부는 1973.4.3. 외무부에 대한 공문을 통해 정부 시책의 대외 홍보 수행, 각종 국제회의에서의 호칭 사용 및 정부의 공식 성명에서의 호칭 사용 등과 관련하여 중국(구 중공)의 대외적 호칭에 관한 방침 및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미국 등 5개 국가 주재 대사관에 각국의 관련 관행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2. 조사 대상국의 관행은 아래와 같음.

- 브라질: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자유중국(Republic of China)이라는 입장에 따라 구 중공은 중국대륙(Mainland China)으로 호칭
- 미국: 정부는 1970.10.26. 이후 모든 경우에 구 중공을 정식 국명인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호칭, 언론기관은 Mainland China 혹은 China로 호칭, 대만(구 자유중국)을 Taiwan으로 호칭
- 말레이시아: 정식 명칭인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중국으로 호칭, 대만에 대하여는 Taiwan 사용
- 코트디부아르 및 서부아프리카 국가: 구 중공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대만을 Republic of China로 각각 호칭
- 태국: 구 중공을 중화인민공화국, 대만을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으로 각각 호칭
- 필리핀: 국교 수립과 관계없이 구 중공 및 대만에 대해 각각 정식 명칭 사용

3. 정부는 관련 입장을 아래와 같이 검토함.

- 원칙적으로 정식 명칭을 사용하며 구 중공은 중화인민공화국, 대만은 중화민국으로 호칭
- 공식 성명, 대외 발표문 및 대외 공식 문서에는 구 중공과 대만에 대한 부정적 호칭 사용을 금지(예: 북경 정부, 중공 정부, 모택동 정부, Red China, 대만, 대만 정부 등)
- 정부기관의 구 중공 및 대만 정부기관 및 민간인 접촉 시에는 상대방에 따라 정식 명칭 또는 지리적 명칭도 사용 가능
- 정부기관의 제3국 기관 또는 민간인 접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정부 간행물 및 국정 교과서에는 원칙적으로 정식 명칭을 사용하되 지리적 개념으로 중국 또는 중국대륙, 자유중국 또는 대만 사용 가능
- 향후 정부의 대외정책 변경 또는 국제 정세의 변화 등 필요에 따라 호칭을 융통성 있게 사용

4. 외무부는 문화공보부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구 중공에 대하여 적절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중화인민공화국 당국'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을 회신함.

국가 또는 정부 승인(승계) 등에 관한 관행

| 73-067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K-11 / 9 / 1~43(43p)

외무부는 1973.7.19. 국가 또는 정부의 승인 문제와 관련한 각의 심의의 헌법상 규정 및 관행을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하여 검토하는 한편 정부의 행위가 국가나 정부의 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예에 관한 자료를 작성함.

1. 국가 또는 정부 승인에 관한 각의 심의 문제

❋ 헌법 규정

- 한국: 헌법 제5장 제2절에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66조에 국무회의 심의 사항을 열거함.
  ·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일본: 각의가 대외 업무를 조정함을 규정함.
- 미국: 행정수반(대통령)의 주요 고위 관리 임명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외교 정책 분야에 속하는 사항을 헌법상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관행

- 한국: 국가 승인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축하 공한 등을 통하여 승인을 통고하며, 정부 승인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외무장관이 통고함.
- 미국: 국가 승인의 경우 국무장관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 공한으로 통고하며, 정부 승인의 경우 국무장관이 결정한 후 대부분 현지 대사의 승인 각서(note of recognition)로 전달함.

❋ 검토 의견

-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닌 자문적 심의기관으로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국가 및 정부의 승인을 포함한 대외 정책상 모든 사안을 심의할 필요가 없음.
- 국가 승인의 경우에는 기존 관행에 따라 중요한 대외정책으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행함이 타당함.

2. 국가 또는 정부 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의 예

❋ 제한적 목적의 조약 체결, 다자조약 서명, 국제기구와 미승인국 간의 조약 체결, 조약 내용에 불승인 의사를 규정하는 경우, 국제기구 가입, 국제회의 참석, 상호 접촉 및 회담, 영사 관계, 비자 발급, 무역대표부 등 정부 기관의 주재, 계약 체결, 서한의 교환, 비공식 예방

❋ 국제회의 시 국기 게양, 종교 또는 사교 행사 참석, 공동성명 발표, 공식 조사단의 파견, 상선의 입항 허가, 신임장 접수, 비정부 단체의 미승인 정부 관리와의 접촉 또는 방문, 군사교육 이수, 미승인 정부의 공식 문서에 대한 인정, 우편 송금환 확인 요청 등

대동구권 방송사 및 언론사 취재 · 교류 계획

| 73-067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L-11 / 1 / 1~15(15p)

1. 한국문화방송주식회사(MBC)는 1973.7.9. 외무부에 대한 공문을 통해 소련 등 동구권 제국 방송사와의 점진적인 취재, 교류를 위한 허가 및 지원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6·23 선언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으며 동구 제국들의 대한국 정책 추이를 고려하여 파견 시기를 추후에 협의토록 회신함.

2. 문화공보부는 1973.12.28. 외무부에 동아일보사가 신청한 불가리아 국영통신사 BTA와의 외신 계약 체결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 온바, 외무부는 공산권 언론기관과의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허가함이 좋을 것임을 회신함.

주한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설치교섭

| 73-0677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서구과/홍보문화과
MF번호	L-11 / 2 / 1~9(9p)

1.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H. Ellis 해외담당 책임자가 1972.8월 방한하여 8.19. 외무부 이수우 정보문화국장을 면담하고 한국에 지부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문의함.

- 정보문화국장은 양국 간 문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음에 따라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정식 공한으로 요청하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각서 교환 형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의함.
- 문화원이 대사관 소속이 아님에 따라 직원들의 특권면제 관련 사항은 차후에 외무부와 협의키로 함.

2. 주한 영국대사관 관계자는 외무부 정보문화국장에 대한 개인 서한을 통해 동 문화원이 1973.4월 개설될 것으로 예상됨을 알려 온바, 외무부는 1973.1.19. 주한 영국대사에 대한 공한을 통해 문화원이 설립될 경우 문화원장을 1등서기관 직급의 대사관 정식 직원임을 통고하면 외교관 지위를 부여할 것임을 통보함.

거제도 · Guam(미국)간의 자매결연

| 73-0678 |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L-11 / 3 / 1~159(159p)

거제도와 미국 Guam 간의 1971~73년 중 자매결연 체결 경과임.

1. 자매결연 추진 경위

- ❋ 주호놀룰루총영사는 1971.6.14.~17. 관할 지역 Guam 출장 보고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건의함.
  - Guam 주지사는 한국 도시 또는 도서와의 자매결연을 희망하고 있는바, 동 사업 추진을 건의함.
  - Guam에는 현대건설 등 한국 건설, 군납업 기업들이 진출하여 건설 사업 등에 활발하게 참여 중으로 주정부는 수산업 개발을 위하여 한국과의 어업 분야 협력도 희망함.
- ❋ 외무부는 내무부에 한국 도시 또는 도서 중 적절한 대상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내무부가 거제도를 추천하여 옴에 따라 10.21. 주호놀룰루총영사관에 주정부 측 의사를 타진하도록 지시함.
- ❋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은 1972.4.4. 주정부에서는 동 자매결연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Kurt S. Moylan 부지사가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답사를 희망함을 보고하고 동 부지사를 방한 초청할 것을 건의한바, 거제 군수 명의 방한 초청장을 추후 발송키로 함.
- ❋ Guam 주정부는 4.5. 주호놀룰루총영사에게 Moylan 부지사 명의로 거제도와의 자매결연 제안을 수락한다는 서한을 발송한바,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은 7.31. 주지사가 자매결연에 관한 지방의회의 결의안에 서명하였음을 보고하고 자매결연 협정서 및 선언서를 준비토록 건의함.

2. Moylan 부지사 방한 및 자매결연 선언서, 협정문 서명

- ❋ Guam 출장소장의 부지사 면담 시 부지사는 1973.4월 중 방한을 희망함에 따라 4.25.~29. 방한에 합의함.
- ❋ 외무부는 동 부지사의 건설부, 보사부 및 농수산부 장관 예방, 거제도 방문 및 협정서 서명 등 일정을 추진함.
- ❋ 선언서는 양 도서 간 자매결연 관계를 선언하는 내용이며, 협정서는 지방행정, 농업, 어업, 농림수산 가공기술 협력, 사회, 보건 및 교육제도의 상호 교환 및 전통 문화의 상호 존중과 관광자원 진흥을 위한 상호 협력 6개 항을 규정함.
- ❋ Guam 주지사가 서명한 협정서에 거제 군수가 4.28. 서명함.

대동구권 문화교류

| 73-0679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특수지역과
MF번호	L-11 / 5 / 1~25(25p)

동구권 비적성 공산 국가와의 1972~73년 중 문화, 학술 교류 관련 사항임.

1. 한국어린이회관은 1972.3.30. 외무부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 예정인 제15회 세계아동미술전람회와 관련하여 비적성 공산 국가 단체들의 작품 출품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바, 외무부는 비적성 공산 국가는 북한과 월맹을 제외한 모든 공산 국가임을 감안하여 동 국가들과의 비정치 분야 관계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동 출품 요청이 가능함을 회신함.

2. 서울 거주 의료인 강[redacted]는 1973.7.25. 외무부에 대한 진정서를 통해 헝가리 과학아카데미 생화학 연구소로부터 자신이 대학 논문집에 발표한 학술 논문의 사본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접수하였음을 통보하고 동 송부 가능 여부를 문의한바, 외무부는 동구권 국가들과의 학술 교류 차원에서 승인함.

3. 과학기술처는 1973.8.22. 외무부에 폴란드가 영국의 출판 회사를 통하여 한국의 원자력 학회지를 1년간 구독하기를 희망함을 알려 왔음을 통보하고 승인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동구권과의 관계 개선 취지에 따라 동 학회지에 수록된 내용에 기밀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조건하에 승인함.

4. 국내 언론들은 1973.12.22.~23. 폴란드의 바르샤바 대학 동양연구소의 최[redacted]가 일본 소재 한국 연구원에 한국에 관한 학술 연구 서적을 요청하였으며, 한국 연구원이 소련 과학아카데미 관계자들의 일본 방문을 초청하였음을 보도한바, 외무부는 주일대사관에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측면 지원하도록 지시함.

Moscow(모스크바) 영화제 참가 검토

| 73-068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특수지역과
MF번호	L-11 / 6 / 1~11(11p)

모스크바에서 1973.7.10.~23. 개최 예정인 제8차 국제 영화제에 한국 작품 출품을 위한 주이탈리아 대사관의 소련대사관 문정관 접촉 내용임.

1. 소련 이스베스차지는 모스크바 개최 동 제8차 국제 영화제에 모든 국가가 작품을 출품할 수 있음을 보도한바, 외무부는 주이탈리아대사관에 그간 접촉을 시행해 온 바 있는 소련대사관 문정관을 통해 동 영화제의 성격, 자유 진영 국가들의 참가 여부, 한국의 참가 가능 여부 및 절차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2. 주이탈리아대사대리는 소련대사관 문정관을 접촉한바, 동인은 아래와 같이 언급함.

- ❋ 영화제 관련 상세 사항은 알지 못하나 한국이 동 영화제에 출품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 ❋ 동 영화제 출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자신의 7월 휴가차 모스크바 방문 시 한국 필름을 직접 휴대할 수도 있음.

3. 외무부는 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동 영화제 참가 추진을 결정하였으나 시일이 촉박하여 실현되지 못한바, 주이탈리아대사관에 소련대사관 문정관에게 향후 소련에서 개최되는 여사한 국제 문화예술 행사에의 참석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연락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함.

Little Angels(리틀엔젤스) 대 동구권 공연 추진

| 73-068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특수지역과
MF번호	L-11 / 7 / 1~68(68p)

정부는 1973년 동구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동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공연단 파견을 검토함.

1. 외무부는 1973.5.22. 외교 취약 지역 특히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외교 기반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리틀엔젤스 공연단, 민속무용단 및 여자탁구선수단 파견을 검토하는 한편 5.30. 박보희 한국문화재단 총재와 리틀엔젤스 동구권 공연 추진 방안을 아래 협의함.

- 8.15. 영국, 10.25. 터키 공연이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동 기간 중 미국 프로모터를 통하여 동구권 공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함.
- 박보희 총재는 1972.4월 백악관 키신저 보좌관이 자신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경 공연을 제안하였음을 언급함.
- 리틀엔젤스는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통일교 관련 비영리단체인 한국 문화 및 자유 재단(Korean Cultural and Freedom Foundation) 문화 사업으로 공연을 시행해 옴.
- 박보희 총재는 미국 주재 소련대사 및 문정관을 접촉하는 한편 1973.7.28. 외무부 정보문화국장에게 아래 요지의 서한을 송부함.
  - 유고슬라비아에서의 공연이 가장 유망하며, 미국 하원 Hanna 의원도 소련 공연을 지원하고 있음.
  - 백악관 도움도 가능할 수 있음.

2. 박보희 총재는 외무부에 유고슬라비아 공연이 1973.12.5.~8.로 확정되었으며, 9만 달러 상당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통보해 온바, 외무부는 6·23 선언 취지에 따라 동 공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공연 추진 기획사가 유고슬라비아 공연 실현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 옴에 따라 실현치 못함.

Munir, Mustafa 이집트 문화성 차관보 방한, 1973.9.24.-10.5.

| 73-068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L-11 / 8 / 1~26(26p)

이집트 Mustafa Munir 문화성 차관보가 1973.9.24.~10.5. 한국을 방문함.

1. 주카이로총영사관은 1973.9.19.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아시아 예술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Mustafa Munir 문화성 차관보가 심포지엄 종료 후 한국의 경제 발전상을 직접 경험하는 한편 대학 및 문화 관계 시설 시찰, 외무부와 문공부 고위 인사 및 문화계 인사와 접촉을 통해 양국 간 문화 교류 문제를 협의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아래와 같이 동인에 대한 방한 초청을 건의함.

- 동인은 이집트 인사 중 한국을 방문한 최고위 인사가 될 것이며, 동인의 방한이 양국 간 국교 수립 교섭에도 지대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심포지엄 참석 이후 추가 한국 체류를 위한 방한 초청을 건의함.

2. 외무부는 Munir 차관보의 체한 기간 중에 외무부 차관보 등 간부 면담, 문화계 인사와의 대담, 문화 강연회 개최, 공주, 부여, 법주사, 현충사, 울산, 포항 공업단지 방문 등 일정을 마련하였으며, 동 차관보의 외무부 차관보 면담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외무부 차관보는 이집트 측의 양국 간 문화협정 비준을 촉구함.
- 양국 간 문화 교류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함.
- 양측은 주한 이집트 공관 설치 필요성에 동감함.

Westphal, Poul 덴마크 'Berlingske Tidende' 지 기자의 한국 기행문

| 73-068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서구2과/홍보문화과
MF번호	L-11 / 9 / 1~11(11p)

주덴마크대사관은 1973.6.9. 덴마크 보수계 일간지 Berlingske Tidende지 Poul Westphal 기자의 한국 기행에 관한 5.30.자 보도 내용을 아래 보고함.

1. 관광 여행 전문 기자인 동인은 '전 세계인이 한국의 격전지에 순례하다'라는 제목으로 한국 기행 기사를 전면에 게재함.

2.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1973년도에는 백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됨을 소개하면서 통행금지 제도, 미8군 안내에 따른 휴전선 방문, 6·25 개전과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주도하의 유엔군 개입 및 1953년 휴전, 양측의 희생자 수, 정전 후 중립국 휴전감시단 설치, 휴전선 풍경 등을 보도함.

튀니지 언론인 방한, 1973.10.5.-12.

| 73-068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동과/홍보문화과
MF번호	L-11 / 10 / 1~21(21p)

튀니지 언론인 협회장 겸 국영 통신사 사장 일행이 1973.10.5.~12. 한국을 방문함.

1. 정부는 외국 언론인 초청 사업의 일환으로 아래 튀니지 언론인 일행 2명을 방한 초청한바, 방한 중 외무부장관 및 외무부 정무차관보를 면담함.

- S. Ben Hamida 튀니지 언론인 협회장 겸 국영 통신사(TAP) 사장
- Nourredine Tobka 튀니지 기자협회장 겸 La Presse지 편집국장

2. 김용식 외무부장관과의 면담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동인들은 한국의 친구로서 한국의 발전상을 충실하게 튀니지 국민들에게 전달하겠다고 언급하고, 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 동 장관은 지역 국가 상호 간의 신뢰 결여를 지적하고 한국 정부는 신뢰 구축을 위하여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상호 문호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상호 교류 및 유엔 동시가입 등을 제안하였으나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함.
- 동 장관은 또한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상존하나 현재로서는 한반도에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억제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한국에 대한 지지 여론도 전쟁을 방지하는 요인의 하나임을 설명함.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 서울지국 설치허가 취소, 1973.8.24.

| 73-068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L-11 / 11 / 1~15(15p)

정부의 1973.8.24. 일본 요미우리 신문 서울 지국 설치 허가 취소 경과임.

1. 문화공보부 해외공보관 부관장은 1973.8.23. 외무부 동북아1과장에게 문화공보부 장관이 동일 주한 일본 특파원 전원을 초치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음을 통보함.

- ❋ 김대중 납치 사건 관련 일본 언론들의 보도 논조에 우려를 표함.
- ❋ 특히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 소식통이 한국 기관원이 연루되었음을 인정하였다고 근거 없는 조작 기사를 게재한바, 즉각 동 기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요미우리 특파원의 퇴거를 요구하는 한편 서울 지국을 폐쇄할 것임. (요미우리 신문 서울 지국은 1966.6.7. 설치 허가됨.)

2. 문화공보부는 1973.8.24. 외무부에 요미우리 신문 측이 8.24. 시한 기사 취소를 하지 않았음에 따라 서울 지사 설치 허가를 취소하였으며 법무부에 동 신문 특파원의 퇴거를 요청하였음을 알려 온바, 외무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및 주일본대사관에 동 사실을 통보함.

3. 일본 외무성은 1973.8.24. 주일대사관에 동 폐쇄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요미우리 신문 지국의 재개설을 희망하는 한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여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하였음을 발표할 예정임을 통보함.

4.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는 1973.8.25. 외무부 아주국장을 면담하고 요미우리 신문 보도의 정확성은 추후에 판명될 것이나 일본 정부는 지국 폐쇄는 부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고 조속한 지국 재개설을 희망함.

5. 일본 사회당 소속 의원은 1973.8.24.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주일대사관 영사의 사진을 제시하고 동인이 김대중 사건과 관련이 있는 만큼 대사관 소속 직원 여부를 조사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일본 언론들이 동 발언을 보도함.

- ❋ 주일대사관은 동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에 항의함.
- ❋ 일본 외무성은 주일대사관에 동 영사의 신원 확인을 요청함.

미국 Hawaii대학교 부설 한국학 연구센터 건립 기금 모금

| 73-068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공보문화과
MF번호	L-11 / 12 / 1~59(59p)

하와이 대학 내 한국학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1973년 중 기금 모금 및 동 연구센터 교수의 북한 접촉 관련 사항임.

1. 하와이 대학 부설 한국학연구센터(Center for Korea Study) 건물 기공식이 1973.1월 문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 ❋ 동 센터 건립은 하와이 이민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주호놀룰루총영사관 주도로 건축에 필요한 기금 모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되었으며, 정부는 20만 달러를 기증함.
- ❋ 모금 위원회는 모금 목표를 25만 달러로 책정함.

2. 하와이 신문은 1973.8.27. 동 센터 건립 모금 설명회 개최와 관련하여 서대숙 교수가 북한에 건립 기금 및 인원 제공을 요청하였으며, 하와이 대학 총장은 동 센터가 남북한 학자 및 정치인의 교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하였음을 보도함.

- ❋ 주호놀룰루총영사는 동 총장을 면담하고, 동 발언에 대해 항의함.
- ❋ 동 총장은 서대숙 교수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며, 보도 내용을 수정 예정임을 언급함.

3. 민관식 문교부 장관은 모금 위원회 주최 모금을 위한 만찬 행사 참석차 1973.10.18. 호놀룰루를 방문함.

4. 주미대사관은 파리에서 개최된 동양학 회의에서 하와이 대학 한국학연구센터 소속 교수가 북한 학자에게 하와이 방문을 초청하였다는 정보에 따라 미국 국무성에 동인들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여부를 문의한바, 국무성 관계자는 조만간 비정치 분야 인사 교류가 가능시되나 유엔 총회 종료 이전에는 비자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언급함.

외국도서 및 교과서 등에 나타난 한국관련 왜곡사실 시정

| 73-0687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공보문화과
MF번호	L-11 / 13 / 1~97(97p)

해외 출판물의 한국 관련 왜곡 내용 시정을 위한 정부의 1973년 중 조치 사항임.

1. 재미교포 권[redacted]은 1973.4.10. 국무총리실에 대한 서한을 통해 영국 Oxford 대학 출판부에서 발간한 서적 등에 한국 지명이 일본식으로 표기되었음을 지적하는 한편 정정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한 바, 외무부는 주영국대사관에 정정 조치를 지시함.

2. 문교부는 외무부에 외국에서 발간되는 각종 한국 관계 도서 및 교과서에 한국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 왜곡 여부 및 동 내용 파악을 요청함.

- 외무부는 1973.6.18. 전 재외공관에 관련 실태 파악을 지시함.
-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덴마크, 레바논 주재 대사관은 오류 사실 여부 및 관련 시정 조치 사항을 보고함.

3. 영국에서 발간되는 International Year Book사는 1973.7월 주영국대사관에 1972년도 출판 내용 중 한국 부분에 대한 검토 및 수정 보완을 요청해 온바, 정부는 수정 보완 사항을 통보함.

프랑스의 프랑스어 교수 한국 파견

| 73-068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공보문화과
MF번호	L-11/ 14 / 1~12(12p)

프랑스 정부의 1973년 부산대학교에 대한 강사 파견 관련 사항임.

1. 문교부는 1973.1.12. 외무부에 대한 공문을 통해 프랑스 정부가 사전 통보 없이 부산대학교에 프랑스어 강사를 1인 파견하였음을 통보하고, 프랑스 측이 한국의 행정 절차를 준수하도록 환기시켜 줄 것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문교부에 부산대학교가 사전 협의 없이 동 강사를 접수하게 된 경위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함.

2.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972.12.14. 외무부에 공한을 통해 프랑스 정부가 한-프랑스 문화기술협정에 의거하여 프랑스 강사를 파견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하는 한편 관용 여권 소지자인 동인에게 면세 특권을 인정하여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973.1.16. 외무부에 대한 공한을 통해 동 강사 파견 사실을 문교부와 부산대학교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한 · 소련 학술교류

| 73-068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L-11 / 15 / 1~8(8p)

소련 과학아카데미 산하 동양연구소와 일본 소재 한국연구원 간의 1973~74년 중 교류 추진 관련 사항임.

1. 서울신문은 1973.12.6. 일본을 방문 중인 소련 과학아카데미 산하 동양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동경 소재 한국연구원의 최서면 원장을 방문하여 소련이 한국과 학술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는 요지로 발언하였음을 보도한바, 외무부는 주일대사관에 동 연구원을 접촉하여 소련 과학아카데미와 한국의 관련 학술기관 간의 학술 및 문화 교류를 추진하도록 지시함.

2. 주일대사관 공사는 1973.12.13. 동인을 면담하여 한국연구원 초청으로 동양연구소 부장 및 수석 연구원이 1974.2월 초 일본을 방문 예정임을 설명하고, 동 기회에 동인들이 한국도 방문하여 줄 것을 희망한다는 정부의 초청 의사를 전달함.

Ramsey, Michael 영국 Canterbury 대주교 방한, 1973.3.24.-27.

| 73-069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L-11 / 16 / 1~47(47p)

1. 영국 Arthur Michael Ramsey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Archbishop of Canterbury)가 동남아 및 극동 아시아 소재 영국 성공회 교회 순방 중 한국 성공회 교회 시찰을 위해 1973.3.24.~27. 한국을 방문함

2. 동 대주교 부부는 방한 중 대통령 및 외무부장관 예방, 연세대학교 및 동국대학교 방문 및 강연 등의 일정을 가짐.

3. 관련 자료

- 방한 일정, 성공회 역사 및 대주교 인적 사항
- 대통령 및 외무부장관 예방 자료
- 외무부장관 만찬사 및 보도 자료

제8회 Moscow(소련) 하계 유니버시아드 한국 참가, 1973.8.15.-25.

| 73-0691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특수지역과
MF번호	L-11 / 17 / 1~13(13p)

대한올림픽위원회는 1973.5.15. 소련 측으로부터 8.15.~25. 모스크바 개최 제8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참가 초청장을 접수함.

1. 외무부는 대한올림픽위원장에게 모스크바 개최 동 대회에 한국 선수단을 파견하여도 좋다는 입장을 통보하는 한편, 소련 당국이 과거에 각종 구실로 한국 국민의 소련 입국을 사실상 거부했던 사례에 비추어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주요 회원국들과 사전에 긴밀히 협조하여 사전에 입국을 보장받도록 권유함.

2.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동 유니버시아드 대회 참가를 위한 교섭을 시행한바, 소련 측으로부터 대회 참가 초청장을 접수하지 못함에 따라 외무부는 동 대회 조직위원회 소속 회원국 소재 재외공관을 통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1973.5.15. 정식 초청장을 접수함.

한 · 오스트리아 협회

| 73-069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L-11 / 18 / 1~63(63p)

한-오스트리아 친선협회가 1972.10.24. 창설됨.

1. 오스트리아인 300명 및 한국인 239명으로 구성된 한-오스트리아 친선협회가 1972.10.24. 창설되어 11월 Gunter Winkler 비엔나대학 총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함.

-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동 회장을 통하여 한국과 오스트리아 간 문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 동 협회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함.
- 정부는 1973.7.12. Winkler 회장에게 협회 창설을 위한 공헌 등 양국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에 따른 수교훈장을 서훈함.

2. 오스트리아 친북한 단체인 조선평화통일 촉진 오스트리아 위원회는 1973.4.15. 기관지인 "천리마" 창간호를 발간하여 선전 활동을 강화한바,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여사한 친북한 활동에 대한 대처의 일환으로 한-오스트리아 친선협회지 발간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형편상 실현되지 못함.

미얀마 · 한 협회

| 73-0693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공보문화과
MF번호	L-10 / 19 / 1~25(25p)

외무부는 미얀마(구 버마) 등 동남아 중립국에서 강화되는 북한의 외교 공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친한 단체를 조직하여 한국과 주재국 간의 제반 관계, 특히 정치적 관계 긴밀화에 활용하기 위해 1972.4.24. 주미얀마 공관에 동 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1. 미얀마 주재 총영사관은 주재국 정부가 공관의 정치적 활동을 상당히 제약하는 한편 순수한 친목단체 활동에 대하여도 극히 사적인 활동 이외에는 활동을 금지하며, 일반 국민들이 외국인과의 접촉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친한 단체 활동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함을 보고하고, 실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건의함.

- 1965년 창설된 한-미얀마 협회의 회원 71명 중 정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계 요인 또는 관계 인사는 없으며, 대부분이 사업가, 변호사 및 의사 등임.
- 빈곤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공관 내 각종 소개 책자와 오락 시설을 구비한 공간을 개설하여 친한 인사를 장기적으로 육성함.

2. 외무부는 상기 공관 보고에 대해 주재국의 특수한 사정은 이해하나 비정치적 인사인 언론인, 문화인 및 체육계 인사 등을 중심으로 조직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장학금 지원안에는 동의함을 회신한바, 총영사관은 1972.11.30. 미얀마 정부가 비정치 분야 인사들의 외국 공관 관련 단체 가입을 금지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협회의 활동 강화 및 비정치 분야 인사들과의 비공식적 접촉을 통하여 친한 활동을 시행할 것임을 보고함.

한 · 대만(구 중국) 문화친선협회

| 73-069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2과/공보문화과
MF번호	L-11 / 19 / 1~11(11p)

1. 한-대만(구 자유중국) 문화친선협회는 1973.4.24. 대만 내무부로부터 사무소 개설 인가증을 접수함.

2. 동 인가증에는 대표 박승학을 포함한 대만 사무소 임원 명단이 첨부됨.

칠레 · 한 문화협회 창설계획

| 73-069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문화교류과
MF번호	L-11 / 20 / 1~7(7p)

주칠레대사는 1973.12.26. 한-칠레 양국 간 이해 증진 및 우호관계 강화를 위한 한국문화협회 설치 계획을 아래 보고함.

1. 첫 단계로 유관 인사들을 초청하여 의견 교환의 기회를 제공하여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협회 설립 취지, 구성 및 사업 계획에 관해 토의함.

2. 차기 모임을 통해 협회 설립 정관을 제정하고, 집행부 조직 방안을 협의함.

3. 1974년 초 협회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회합을 계획 중으로 한국과 외국 간에 이미 설립된 친선협회 정관 사본을 참고 자료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함.

독일 · 한 협회

| 73-069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L-11 / 21 / 1~40(40p)

한 · 독 협회 간부가 1973.10.31.~11.25. 한국을 방문함.

1. 주독일대사는 1973.6.14. 한 · 독 협회가 서한을 통해 동 협회 Ingeborg Richeils 총무 및 협회 기관지인 Koreana의 Willi Michels 편집 책임자의 독일과 한국 간 우호 증진에 대한 기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동인들을 방한 초청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보고하고, 동 방한 초청 추진을 건의함.

- ❁ 외무부는 동 건의를 승인한바, Richeils 총무만 방한함.
- ❁ 서울 소재 한 · 독 협회 초청으로 방한하였으며, 체재비는 정부가 부담함.

2. Richeils 총무의 방한 일정임.

- ❁ 한 · 독 의원협회 회장, 외무부 구주국장 및 정보문화국장, 문공부 해외공보관장 예방
- ❁ 독일 문화원, 성균관대, 이화여대 및 영남대학 방문
- ❁ 경복궁 등 고궁, 경주 방문, 판문점 및 포항제철 시찰

인도 · 한 협회 창설, 1973.3.31.

| 73-069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공보문화과
MF번호	L-11 / 22 / 1~5(5p)

주뉴델리총영사는 1973.4.6. 인도-한국 협회의 3.31.자 결성에 관한 Indian Express지 및 Times of India 보도 내용을 아래 보고함.

1. G. S. Diillon 국회의장이 동 협회 발족을 선언하였으며, A. K. Sen 협회 회장과 노신영 총영사가 축사를 행함.

2. Diillon 국회의장은 양국 간 오랜 우호관계 및 상호 존중을 강조하면서 관계 강화를 위한 상호 교류 필요성을 언급함.

3. Sen 협회 회장은 한국이 성취한 경제성장에 찬사를 표함.

4. 주뉴델리총영사는 한국과 인도는 국제 관계에서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을 설명함.

한 · 이탈리아 친선협회 창설, 1973.12.7.

| 73-069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L-11 / 23 / 1~8(8p)

외무부는 1973.8.13. 주이탈리아대사관에 친한 단체 결성 여부 및 결성되지 않았을 경우 결성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1. 주이탈리아대사는 아래와 같이 보도함.

- 친한 단체가 1960년 초에 결성된 바 있으나 활동이 부진하여 정계, 재계 및 언론계 등 주요 인사로 구성된 새로운 이탈리아-한국 친선협회 조직을 구상하고 1973년도 초에 추진한바, 이탈리아 국내 정치 불안으로 성사되지 못함.
- 금년 9~10월 중에 재차 결성을 추진할 계획임.

2. 한국-이탈리아 친선협회(The Italian Association of Friends of Korea)가 1973.12.7. 아래와 같이 결성됨.

- Giovanni Boano 상원의원을 회장으로 선임함.
- 12.19. 개최된 창립 기념식 및 리셉션에서 동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 저서인 "민족의 저력" 이탈리아어판을 배포함.

한 · 일본, 일본 · 한 친선협회

| 73-069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L-11 / 24 / 1~87(87p)

주한 일본대사관의 1970년 일본 홍보문화센터 설치 요청 및 1973년 현재 일본 내 친한 단체 및 친북한 단체 현황 관련 사항임.

1. 주한 일본대사관은 1970.9.21. 외무부에 한국에 일본 홍보문화센터를 대사관의 일부로 설치할 의사를 밝히고, 동 센터에 외교적 보호 및 특권면제를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외무부는 주일대사관에 일본 정부가 일본 소재 한국공보관에 부여하는 지위를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회함.

2. 주일대사는 1973.5월 주일대사관 및 각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의 친한 단체 및 친북한 단체 현황, 활동 상황, 지역별 친선협회 신규 설립 동향 및 이치현과 미에현 친선협회 회원들의 한국 방문 추진 내용을 보고함.

한 · 룩셈부르크 친선협회 창설, 1973.10.24.

| 73-070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L-11 / 25 / 1~27(27p)

1. 주벨기에대사는 한국-룩셈부르크 친선협회 결성을 추진해 온바, 동 첫 단계로 한국전 참전 용사회를 결성하고 1973.6.23. 동 결성 리셉션을 개최함.

2. 한국-룩셈부르크 간의 우호 친선 도모를 위한 친선협회가 1973.10.24. UN Day를 기하여 결성됨.

- 동 친선협회는 주로 한국전 참전 용사 중심의 70명을 회원으로 구성되어 내무장관을 회장으로 선임함.
- 룩셈부르크 일간지 La Republicaine Lorainne는 동 친선협회 구성 및 무명용사탑 헌화에 관하여 보도함.
- 외무부는 11.7. 동 친선협회 발족에 관한 보도 자료를 배포함.

3. 주벨기에대사관은 1973.10.27. 동 친선협회 측이 룩셈부르크 항공사인 CARGOLUX 항공기가 한국 기업이 오스트리아로 수출하는 옷감을 운송하기 위하여 부산공항에 착륙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계 당국이 거부함에 따라 정부가 특별 배려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음을 보고한바, 외무부는 교통부에 협조를 요청하여 동 항공기의 특별 착륙을 허가함.

네팔 · 한 친선협회

| 73-070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공보문화과
MF번호	L-11 / 26 / 1~8(8p)

주네팔총영사관은 1973.1.10. 네팔-한국 친선협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아래와 같이 건의함.

1. 네팔-한국 친선협회는 1969.5.26. 결성되어 6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회원 중에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내각 장관에 임명된 인사 3명이 포함되어 한국에 대한 홍보 및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1972.6월에 창설된 총영사관의 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

2. 총영사관은 자체 경비로 동 친선협회 행사 개최 비용 등을 지원하여 왔으나, 공관 예산으로는 충당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향후 친한 단체 보조금 배정 시 네팔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을 건의함.

3. 북한은 친선협회 및 문화협회를 결성하여 운영 중으로 동 단체들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제공 중임.

한 · 노르웨이 협회

| 73-0702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구주과/공보문화과
MF번호	L-11 / 27 / 1~14(14p)

한국-노르웨이 협회의 1972~73년 중 활동 사항임.

1. 노르웨이를 겸임 중인 주스웨덴대사관은 1972.11.16. 한-노르웨이 협회 창립 20주년 계기에 동 협회 간부에 대한 훈장 서훈을 건의함.

- 1953.1.10. 창립된 동 협회는 약 4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서울 마포 및 목포)에서 아동결핵병원을 운영하는 한편 고아 입양사업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주노르웨이대사관은 1972.12.22. 개설됨.

2. 동 협회는 1973.2.1. 창립 20주년 기념 만찬을 개최함.

- 훈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창립 이후 20년간의 활동에 대해 토의함.
- 동 협회의 결핵병원 운영을 한국에 이관하게 됨에 따라 향후 활동 방향 및 문화 등 기타 분야 교류 확대를 통한 양국 간 유대 강화 방안을 협의함.

3. 동 협회는 1973.6.25. 보건사회부에 아래 내용의 서한을 전달함.

- 한국전 참전 노르웨이 군의관에 의해 1953년에 설치되어 동 협회가 운영하여 온 목포 아동결핵병원의 운영을 1973.2월 한국 당국에 이관함에 따라 한국에서의 의료 활동이 종료된바, 협회는 향후 여타 분야 사업 추진을 고려 중임.
- 동 계획 작성에 참고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 측의 의견을 요청함.

4. 주노르웨이대사관은 1973.11.6. 동 협회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추후 동 지원을 검토 예정임을 회신함.

한 · 파키스탄 경제문화협회 창설, 1973.2.8.

| 73-0703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Re-34 / 10 / 1~74(74p)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관은 파키스탄에서의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해 친선단체 설립을 추진해 온바, 1973.2.8. 한국-파키스탄 경제문화협회(The Pakistan-Korea Economic and Cultural Association) 창립총회를 개최함.

1. 동 총회에는 정계, 경제계, 문화계 및 언론계 인사 1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바, Chaudhry Iqbal 여당 국회의원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김용식 외무장관의 축사 대독, 영화 감상 및 만찬 행사가 진행됨.

- 외무부장관은 총영사대리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동 협회 창설로 양국 간 우애와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함.

2. Iqbal 회장은 축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 동 협회 설립 목적은 양 국민 간 이해 및 우의 증진, 양국 간 경제 문화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음.
- 동 협회 설립은 Zulkifar Ali Bhutto 대통령의 아프리카–아시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강화 정책과 일치함.

3. 파키스탄 언론들은 동 협회 창립총회와 기사를 통해 협회 구성원을 소개하는 한편 한국 외무부장관의 친선우호 메시지 내용 및 한국이 파키스탄과의 교역 증대를 희망함을 보도함.

한 · 폴란드 친선협회

| 73-070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공보문화과
MF번호	L-11 / 29 / 1~13(13p)

1. 폴란드 포즈난 거주 불교 문학자이며 문화 및 관광 활동가인 Edmund [redacted]는 1972.10.13. 주프랑스대사관에 대한 서한을 통해 한국-폴란드 친선협회의 한국 소개 전시회 개최를 위한 전시 자료 송부를 요청한바, 대사관은 문공부의 관련 자료를 동인에게 제공함.

2. 동인은 1973.2.24. 주프랑스대사관에 대한 2차 서한을 통해 동 친선협회가 2.20. 포즈난에서 약 500명이 참석한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3.1.에는 브르크라브에서 한국 소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 온바, 대사관 공보관은 동인에게 사의를 표하고 전시회 관련 사진 송부를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됨.

3. 외무부는 1973.7.6. 주프랑스대사관에 미수교국인 폴란드에서의 친한 단체 활동 실태 파악을 지시한바, 대사관은 동인과의 일자별 접촉 경과를 보고함.

한 · 영국 협회

| 73-070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서구과/공보문화과
MF번호	L-11 / 30 / 1~10(10p)

한 · 영국 협회의 1973년 중 활동 사항임.

1. 1956년에 창설된 영국 내 친한 단체인 한 · 영국협회(Anglo-Korean Society)의 1973년도 정기 총회가 한인회관에서 개최되어 1972년도 사업 보고서 및 재정 보고서를 채택하고, 1973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함.

2. 동 총회에 대사관 관계관이 참석하여 독려하였으며, 협회 사업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함.

한 · 아랍 친선협회

| 73-070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L-11 / 31 / 1~46(46p)

한국 내 한국-아랍 친선협회의 1973.12.11. 학술대회 개최 및 아랍 관계 결의문 채택 관련 사항임.

1. 한국과 아랍 제국 간의 친선 도모 및 문화, 종교, 사회 전반에 걸친 상호 교류 및 이해 증진을 위해 1971.7월 서울에서 설립된 한국-아랍 친선협회는 강연회 및 간담회 개최, 정부의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 및 건의, 정부가 요청하는 사업 등을 수행해 옴.

2. 정일권 국회의장을 고문으로 하여 경제계, 학계 및 언론계 각계 인사들을 포함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동 협회는 회원 약 120명 참석하에 1973.12.11. 서울에서 '한국과 아랍 관계의 오늘과 내일' 제하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아래 요지의 아랍 관계 결의문을 채택함.

- ❋ 이스라엘의 1967년 전쟁 당시 점령지로부터의 철수를 촉구함.
- ❋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 회복이 중동 문제 해결의 관건임.
- ❋ 정부에 대해 아랍 제국들에 대한 민간 친선사절단의 파견을 촉구함.
- ❋ 동 결의문을 아랍 우방국가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로 채택함.

재향군인회 브라질지부 창립총회 개최, 1973.6.30.

| 73-070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공보문화과
MF번호	L-11 / 32 / 1~6(6p)

1. 브라질 거주 교민 중 예비역 장병들은 주브라질대사관 및 주상파울루영사관의 지원으로 1973.6.30. 상파울루 한인 천주교회에서 재향군인회 브라질 지부 창립총회를 개최함.

2. 동 총회에는 주상파울루총영사 및 한인회장이 참석하였으며, 브라질 거주 예비역 장병 출신 500여 명 중 242명이 참석하여 등록함.

한 · 중앙아프리카 경제협력

| 73-070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24 / 2 / 1~21(21p)

정부의 1973년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경제협력 관련 협의 내용임.

1. 박정희 대통령의 Potoro 외상 접견(3.19.)

❋ 박 대통령 언급 요지

-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 및 유엔 총회에서의 한반도 문제 불상정 입장을 설명하고 중앙아 정부의 한국 입장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명함.
- 중앙아 대사의 겸임 신임장 제정 시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방한 중 양국 간 경제, 문화 교류 방안에 관해 협의하기를 권고함.
- 양국 간 경제협력 문제에 관해 외무장관과 협의 후 Bokasa 대통령에게 보고 바람.

❋ Potoro 외상 언급 요지

- 주한 상주 대사 파견을 위해 노력 중임을 언급하고 정부의 대북한 정책 및 유엔에서의 입장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확인함.
- Bokasa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전달하는 한편 방한 중 새마을운동사업에 관해 중앙아가 배울 점을 파악할 예정임.
- 한국의 경제협력사업 관련 지원을 요청함.

2. Naguemon 주한 겸임대사의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면담(5.14.)

❋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언급 요지

- 양국 간 체결된 경제협력협정에 따른 협력 실현을 위해 조사단 또는 경제사절단 파견 및 기술 훈련생 방한 초청, 한국 전문가 파견 등을 검토할 수 있는 만큼 중앙아 측의 희망 사항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함.
- 또한 주중앙아대사관을 통해 현지 실정을 파악 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설명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 Naguemon 대사 언급 요지

- 프랑스, 서독 등 구주공동체 국가 및 미국의 현지 진출 현황을 설명하고 한국의 조사단 및 경제사절단의 방문을 희망함.
- 원목 및 지하자원 개발, 다이아몬드 생산 및 수출 등 협력이 가능한 사업 분야를 설명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요청할 것임을 언급함.

한 · 아이티 경제협력

| 73-070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M-24 / 3 / 1~16(16p)

Coradin 주유엔 아이티대사는 1972.8월 방한 중 외무부, 상공부와의 경제협력 문제 협의 결과를 토대로 아래 내용의 1973.1.23.자 동국 정부의 각서(Aide-memoire)를 통해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함.

1. 경작지 확장 및 미곡 생산을 위한 농업 협력

- 아이티 측은 토지, 노동력을 제공하고 한국 측은 영농 기술, 자금, 개량 품종 볍씨, 살충제, 관개 사업에 필요한 소요 장비를 지원함.
- 아이티 국내 수요량 이외의 잔여 수확물에 대해서는 양국 간 협정 체결을 통해 배분함.

2. 어획고 증대, 어업자원 보존을 위한 어업 협력

- 한국 측은 어업 전문가 파견과 함께 어획고 증대와 아이티 어업 인력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함.
- 아이티 측은 소요 경비를 부담하며, 한국 측이 제공하는 물자와 용역에 대한 상환은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윤에서 지불함.
- 한국 어선의 아이티 기항 조건은 한국이 여타 중남미 제국과 체결한 유사한 계약 내용에 준하며 한국 측의 동 계약 제안서 제시를 희망함.

3. 도로 건설 분야 협력

- 한국 측은 교량 1개를 포함하는 8km 구간의 도로 건설에 필요한 기술 및 물자를 지원함.
- 동 공사비는 40만 달러로 추산됨.

한 · 네덜란드 경제협력

| 73-071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24 / 5 / 1~18(18p)

외무부차관은 1973.9.27. Bergsma 동경 상주 주한 겸임 네덜란드대사의 방한 시 동 대사와 양국 간 경제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 협의함.

1. Bergsma 대사 언급 요지

- 금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문제가 한국 및 우방국들이 추진하는 바에 따라 해결되기를 희망함.
- 방한 목적은 주일 한국대사관과 협의한 바와 같이 여수 · 광양 중화학공업단지 조성에 네덜란드 HAM 건설회사의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것으로 동사는 한국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조사단을 파견하고 답사 보고서를 건설부에 제출함.
- 방한 중 건설부장관 면담 시 한국 측은 상기 답사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약 1억 달러의 사업 예산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장기저리차관 제공을 제안한바, 본국 정부에 동 차관 제안을 건의할 것임.
- 장기 차관 제공이 어려울 경우에도 양국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향후 경제협력 증진 측면 및 HAM사의 공사비, 기술력, 경험에 있어서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동사의 참여를 위한 한국 정부의 최대한의 협조를 기대함.

2. 외무부차관 언급 요지

- 한국 정부는 네덜란드와의 기존 역사적, 정치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경제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 중임.
- 한국은 외국과의 경제협력 다변화 및 유럽 제국과의 합작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으로 네덜란드 정부가 자본 협력 대상국 확대의 일환으로 동 사업과 관련한 한국에 대한 장기저리차관을 제공해 줄 것을 희망함.
- 또한 네덜란드 기업들이 한국과의 합작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여 줄 것을 희망하며 양국 간의 기존 유대관계를 감안할 때 경제적으로 유망한 한국과의 경제협력 추진은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HAM사의 동 사업 참여 문제를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며 향후 양국 간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화되기를 희망함.

월남 전후 복구사업 참여

| 73-071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통상1과/경제협력과
MF번호	M-24 / 6 / 1~144(144p)

외무부는 1973.3.29. 월남 전후복구사업 참여 문제와 관련한 경제외교위원회 토의를 위하여 아래 기본 계획을 수립함.

1. 정부의 기본 방침

- 제1단계 지원 방안으로 피난민 정착 지원 및 긴급 구호를 제공함.
- 후속 지원 방안으로 전후 경제 재건과 자조노력 지원을 위해 월남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차관 공여와 함께 합작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함.
- 월남 전후 복구를 위한 지역협력기구 및 향후 창설 예정인 국제차관단에 적극 참여함.

2. 대월남 원조 공여

- 정부 간 긴급원조의 일환으로 월남 정부가 필요로 하는 10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 식품 및 구호품과 함께 피난민 정착을 위한 500만 달러 상당의 주택사업 자금 등 긴급 원조를 시행함.
- 민생 안정을 위한 장기저리 공공차관을 제공하고 월남 경제 개발 및 농수산 분야 연수생 50명을 방한 초청하는 한편 전후 월남 농촌 개발 지원 및 친선 관계 강화를 위한 100명 규모의 봉사단을 2년간 파견함.

3. 대월남 협조 요청 사항

- 월남의 복구사업 지원 및 양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월남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
- 대월남 원조 및 복구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양국 간 각료회담을 조기에 개최함.
- 복구사업 소요 예산 및 경제협력 사업 파악을 위한 조사단을 조기에 파견함.
- 월남 진출 한국 업체에 대한 호의적인 대우를 요청함.
- 미국, 일본 등 주요 원조 공여국의 복구사업 지원 사업에 한국의 기술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섭함.

한 · 월남 경제각료회담, 제5차. 서울, 1973.10.1.-8.

| 73-071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24 / 7 / 1~453(453p)

한 · 월남 경제각료회담 및 실무회의가 1973.10.1.~8. 서울에서 개최됨.

1. 실무회의 결과

- 전후복구사업 분과위원회 및 통상 및 투자 분과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동 결과를 각료회담에 건의함.
- 전후복구사업 분과위원회는 지방 전철화, 관개, 난민 정착지 급수시설, 수출자유지역 건설, 직업훈련소 설립, 한국 농업기술단 파견, 기술훈련사업 및 수리 및 수자원개발사업을 협의함.
- 통상 및 투자 분과위원회는 상호 무역 증진, 합작투자 추진 및 월남 진출 한국 인력의 보험 가입 문제를 협의함.

2. 각료회담 결과

-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 및 Kim Ngoc 경제부장관이 양국 수석대표로 임명됨.
- 관개사업(20만 달러 소요 예상)에 대한 월남 정부의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농업진흥공사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함.
- 난민 정착지 급수시설(10만 달러 소요 예상) 설치 지역 등에 관한 월남 측의 계획서를 기초로 한국 전문가를 파견하여 세부 사항을 검토하기로 함.
- 직업훈련소(40만 달러 소요 예상) 설립을 위한 월남 정부 및 주월남대사관의 사업 계획서를 검토 후 추진하기로 함.
- 현재 16명의 한국 농업기술단을 20명으로 증원해 줄 것을 희망하는 월남 측 요청에 대해 가급적 임업 및 수산 분야의 인력 추가 파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 수리·수자원개발 기술용역 지원 및 기술훈련생 방한 초청(10만 달러 소요 예상) 사업을 긍정적으로 추진함.
- 월남 연안에서의 수산자원 공동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1974년 중 300톤급 한국 조사선의 월남 파견에 합의함.
- 월남에 진출 중인 기존 47개 한국 기업의 월남 전후복구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로 함.

한 · 독일 경제실무자회담

| 73-071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24 / 8 / 1~222(222p)

정부는 1973년 2회에 걸쳐 한 · 독일(구 서독) 경제실무자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함.

1. 제1차 회담(1973.7.31.~8.2.)

- 최호중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및 Thieme 경제협력성 지역담당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임명됨.
- 합의 사항
  - 독일에 대한 한국의 면직물 수출 할당량의 20% 증대
  - 독일 투자조사단의 1973년 중 방한
  -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 독일 측 요청에 따른 거주 및 상업 활동에 관한 조약 체결 검토
  - 한국 측 요청에 따른 한 · 독 상공회의소 설립 검토
- 기타 협의 사항
  - 동국제강의 독일에 대한 철강 수출 계약 관련 한국 정부의 수출금지조치 시정 문제
  - 현재 외국인 총투자의 1.7%에 불과한 독일의 한국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 방안
  - 정부의 개정 외자도입법 내용 설명
  - 정부의 신 관세율 조정 내용, 수입 정책 기본 방향 및 수입자유화 현황 설명

2. 제2차 회담(1973.10.24.~30.)

- 황병태 경제기획원 운영차관보 및 Boernstein 경제협력성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임명됨.
- 협의 사항
  - 독일의 1973년 중 약 4,000만 DM 상당의 통신시설 및 생사가공시설 차관 및 1974년도 3,500~4,000만 DM 재정차관 공여 문제
  - 독일 정부 지원에 따른 정밀기계설계센터, 주물센터, 기술이전센터 및 고려대학교 농대 확충사업 등 총 8,363,300 DM 상당의 기술협력사업 추진 방안
  - 중화학공업 교육시설 확충 등 9개 신규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독일 정부의 지원 요청
  - 과학 협력 추진, 중화학 분야 독일 전문가 초빙 및 한국 기술훈련생 독일 파견 등 일반 과학기술 협력 추진 방안

한 · 스페인 경제협력위원회 창립총회. 서울, 1973.10.30.

| 73-071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24 / 10 / 1~29(29p)

한 · 스페인 경제협력위원회 창립총회가 1973.10.30. 서울에서 개최됨.

1. 창립 경위

- 대한상공회의소 및 스페인 상공회의소 간의 양국 간 통상 확대 및 경제·기술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실천 방안 협의에 따라 주스페인대사는 1971.3월 동 협력위원회 설치를 건의함.
- 스페인 상공회의소는 1971.7월 동 위원회 설치 수락을 통보함.
- 양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1973.2.12. 마드리드에서 동 위원회 설립 합의의정서에 서명함.
- 대한상공회의소는 동 위원회 창립총회에서 이학수 고려원양어업 회장을 한국 측 위원장으로 선출함.

2. 한 · 스페인 경제협력위원회 설립 의정서 내용

- 양국 상공회의소 내에 국가위원회를 설치함.
- 동 위원회는 아래 사업을 추진함.
  - 양국 간 통상 및 투자 증진
  - 양국 정부에 대한 경제·기술협력 강화 목적의 사업 추진 건의
  - 통상 및 기술협력 사절단의 교환
  - 제반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시행

3. 한 · 스페인 간 추진 중인 경제협력 사업 현황

- 현대건설은 약 800만 달러의 상업차관 도입을 교섭 중임.
- 한국 어업훈련 장학생에 대한 스페인 내 교육을 추진 중임.
- 양국 간 어업협력협정의 1973년 중 체결을 추진 중으로 라스팔마스 어업기지를 중심으로 냉동고 합작사업, 한국 간이 진료소 설치, 선수품 보급창고 설치 및 수산 합작 사업을 추진 중임.
- 양국 간 통상 및 경제협력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스페인 측이 제안한 협정안을 검토 중임.

한 · 미국 협력위원회 설립 추진

| 73-0715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M-24 / 11 / 1~74(74p)

정부는 1972년 한 · 미국 협력위원회 설립 문제를 검토함.

1. 검토 경위

- 미국 하원 Hanna 의원은 1972.8.28.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서한을 통해 동 협력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11월 방한 및 대통령 예방 시 동 건을 재차 제기함.
- Hanna 의원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정세 변화 및 이에 따른 미국의 정책 추이를 고려할 때 양국 간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교류 촉진 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 한국의 안보, 국군 현대화 등에 대한 미국 각계의 입장을 반영함.
  - 한 · 일 협력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며 전직 각료 또는 저명 인사를 미국 측 위원장으로 지정하며 한국 측 위원장으로는 정일권 당의장 등의 인사를 지명함이 바람직함.
  - 양국 정부, 실업계, 언론계 및 학계 대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함.

2. 외무부의 검토 결과 보고(1972.12.1.)

- 양국 간의 비외교적인 민간 협력기구 설치는 바람직하나 순수한 민간단체의 성격으로 정부 인사를 포함하지 않는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동 기구가 정부 고위층을 포함하고 안보 문제 등 정치적인 구상을 상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 행정부가 동 설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할 가능성이 희박함.
- 안보 문제 등에 관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에 직접적인 로비 활동 등을 추진할 경우 양국 간 비정치적인 협력관계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활동 목적이 한 · 미 의원협의회, 한 · 미 상공회의소 등 기존의 협력기구들과 중복됨.
- 상기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동 의원이 제안하는 협력기구는 민간단체로서 우호 및 이해 증진, 문화 및 학술 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치적 단체로 한정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따라 설치함이 바람직함.

3. Hanna 의원에 대한 정부 입장 통보(1973.3.9.)

- 주미 공사의 정부 입장 설명에 대해 동 의원은 이해를 표시하고 민간 협력기구 설립 시 운영 경비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 경제계의 기부금 및 한국 정의 간접적인 보조금 지원 등의 방안을 언급함.
- 동 의원은 향후 동 건에 관해 계속 협의하기를 희망함.

아시아 노동장관회의, 제4차. 동경, 1973.10.1.-3.

| 73-071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M-24 / 12 / 1~156(156p)

정부는 1973.10.1.~3. 동경 개최 제4차 아시아 노동장관회의에 이경호 보건사회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아시아지역 내 제반 노동 문제에 관한 역내 협력에 기여함.
- 노동 문제에 관한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국내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함.

2. 회의 의제

- 역내 고용 증대 방안
- 노동 행정의 기능 및 역할

3. 정부 훈령

- 한국 정부가 1966년 동 회의 창립회의 이래 제3차 회의 주최 등을 통해 관련 국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음을 설명함.
- 차기 회의 주최국 결정과 관련하여 호주 개최를 지지함.
- 역내 유대 강화 및 노동 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상설 기구 창설에 찬성함.
- 참가국 대표단과의 접촉을 통해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한 신외교정책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제고함.

4. 회의 결과

- 역내 18개국 대표단이 참석한바, 중국(구 중공)은 불참하고 대만(구 자유중국)은 초청에서 제외됨.
- 수석대표는 정부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노동 행정 수행과 관련하여 인력 개발 및 공급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임을 설명함.
- 역내 상설 노동기구 설치에 합의함.
-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및 선 · 후진국 간의 관련 협력 방안 모색에 합의함.
- 차기 제5차 회의를 호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

동남아 경제개발 각료회의, 제8차. 동경, 1973.10.11.-13.

| 73-071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M-24 / 13 / 1~71(71p)

제8차 동남아 경제개발 각료회의가 1973.10.11.~13. 동경에서 개최됨.

1. 회원국

- 일본, 월남, 라오스,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구 크메르), 미얀마(구 버마)
- 호주 및 뉴질랜드는 제8차 회의 시 신규 가입

2. 회의 결과

- 일본은 대외원조의 확대, 원조 조건 개선 및 기 약속한 원조의 이행 계획을 확인함.
-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원조 증액, 조건 완화 및 무역 정책상의 특별 혜택 고려를 촉구함.
- 전후복구사업이 필요한 국가의 경제, 사회 재건을 위한 지원 및 원조 시행에 합의함.
- 무역자유화 방안을 협의함.
- 일본은 월남 전후복구사업을 위한 5,000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함.
- 호주 및 뉴질랜드는 역내 경제 결속 및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GNP의 0.7%를 대외원조 사업에 할애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공약함.

3. 일본 언론 반응

- 호주 및 뉴질랜드의 신규 가입은 1973.1월 영국의 EC(구주공동체) 단독 가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양국은 일본과의 무역을 중심으로 동남아 제국과의 경제관계 강화를 모색함.
- 금차 회의 시 호주 및 뉴질랜드 양국의 가입으로 아시아지역 협력체제가 확대,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나카 수상이 제창한 아시아 · 태평양제국회의 구상 실현의 계기가 마련됨.
- 일본은 동 각료회의를 대아시아 외교의 중요한 축으로 간주함.

Granser, Günther IER(동서경제기구) 사무국장 방한, 1973.9.22.-28.

| 73-071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M-24 / 14 / 1~107(107p)

정부는 비엔나 소재 IER(동서경제기구) Günther Granser 사무총장을 1973.9.22.~28. 방한 초청함.

1. 초청 경위 및 목적

- 동 기구는 동·서 간의 경제제도에 관한 이해 및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West-East Journal 발간, 경제 세미나 개최, 동구 시장 현황 소개 및 동·서 간의 협력 문제 연구 등의 활동을 시행 중임.
- 정부는 주오스트리아대사의 건의에 따라 동구 제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 현황 소개, 동 기구 발간 Journal 및 여타 간행물을 통한 한국 경제 발전 및 수출 현황 홍보와 함께 대동구 교역 추진 및 접촉 알선을 위해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 명의로 동 사무총장을 방한 초청함.

2. 방한 중 주요 일정

- 판문점 방문, KOTRA 사장, 한국무역협회회장, 상공회의소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해외공보관장 면담 및 포항종합제철 등 산업 시찰
- 상공부장관, 외무부장관대리 예방 및 외무부차관보 초청 만찬

3. 방한 후속 조치

- 동 사무총장은 방한 귀로에 소련을 방문하고 동 방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설명함.
  - 소련 연방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국의 경제 발전상을 설명하는 한편 한국의 대소련 교역 희망 의사를 전달함.
  - 소련 측은 북한과의 관계로 인해 현 단계에서 한국과의 공식적인 접촉은 가능치 않으나 한국 측 입장을 정부 당국에 보고하고 협의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할 것임을 언급함.
- 주오스트리아대사는 동 사무총장이 향후 동구 제국 방문 또는 동구 인사 접촉 시 한국 경제 현황에 대한 설명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확인하였음을 보고함.

중화학공업계획 설명 대표단 일본 · 미국 및 필리핀 순방

| 73-071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24 / 15 / 1~77(77p)

정부는 1973.7~8월 김용환 대통령특별보좌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학공업계획 설명 대표단을 일본, 미국 및 필리핀에 파견함.

1. 파견 목적

- 정부의 중화학공업계획 및 장기 전망 설명
- 중화학공업 건설을 위한 순방 대상국 정부의 경제협력 지원 요청
- 유리한 자본, 기술 도입 및 도입선의 다변화
- 중화학공업 입지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 정부, IBRD(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및 주요 기업 고위 인사 면담

2. 미국 방문 결과

- 국무성, 상무성 등 정부 및 IBRD 인사들을 면담하고 한국 경제의 장기 전망 및 중화학공업계획을 설명한바,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1980년대를 지향한 적절한 정책임을 언급함.
- 미국 측은 자금 조달 방법, 판매 시장 확보 및 수출에 따른 이익 문제 등에 관해 한국 정부의 추가적인 검토를 권고함.
- IBRD는 9월 중 경제조사단 및 중화학공업 부문 전문가를 한국에 파견하여 동 장기 전망 및 전체 계획을 검토하고 1973년 중 세부 검토를 위한 조사단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임을 확인함.
-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자본계수, 생산성 추정 등에 관한 기술적 문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

3. 대표단은 미국 측 조사단의 방한에 대비하여 아래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한 사전 준비를 건의함.

- 품목별 수출 계획 및 시장성
- 특히 신개발 중화학공업 제품 등에 대한 환율 변동과 관련한 수출 수익성
- 중화학공업계획의 자본 집약적 특성과 관련한 고용 문제

경제사절단 미국 방문, 1973.5.21.-6.2.

| 73-072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24 / 16 / 1~128(128p)

정부는 태완선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을 1973.5.21.~6.2. 미국에 파견함.

1. 파견 목적

- 양국 간 경제협력 문제 협의 및 미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 유치
- 미국 민간기업 및 각 지역별 주요 대기업 인사와의 면담 및 회의를 통한 한국 경제 사정 및 여건 설명
- 주요 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경제 · 투자사절단 방한 유치
- 한 · 미 간의 기술 교류 협력 방안 협의

2. 방문 결과

- Shultz 재무장관 면담
  - 중화학공업 분야 투자 유치를 위한 미국 정부의 지원 요청에 대해 동 장관은 양국 간 기본적인 경제협력 관계는 새로운 환경에서 발전되어야 할 것임을 언급하고 미국의 이익에 기초한 대외경제협력 입장을 강조함.
- USAID(국제개발원조처) Hannah 처장 면담
  - 한국의 기술연구단지 건설을 위한 2,000만 달러 기술협력자금 추가 공여 요청에 대해 동 처장은 현재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지만 검토 예정임을 언급함.
- Dent 상무장관 면담
  - 동 장관은 Kennedy 전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투자사절단의 방한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서울 미국무역센터 설립 및 양국 상공장관회의 개최 시기를 최종적으로 검토 중임을 언급함.
- McNamara 세계은행 총재 면담
  - 종합제철 확장 사업을 위한 5,000만 달러의 IBRD 차관의 조속한 타결 요청에 대해 동 총재는 10월 중 방한 예정인 타당성 조사단의 방한 보고서 작성 이전이라도 IBRD의 입장을 조속히 결정하여 한국 정부에 통보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답변함.
- U.S. Steel사 Rollins 부회장 면담
  - 한국 정부가 구상 중인 제2제철사업 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동 부회장은 소요 경비 약 50만 달러 한국 측 부담 조건하의 타당성 조사 이전에는 의견 제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시함.

경제협력조사단 중남미지역 순방, 1973.6.15.-7.10.

| 73-072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중남미과
MF번호	M-24 / 17 / 1~133(133p)

정부는 이문용 외무부 연구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남미 경제협력조사단을 1973.6.15.~7.10. 동 지역 5개국에 파견함.

1. 순방 대상국 및 분야

- 가이아나: 농업, 수산, 산림 및 건설
- 트리니다드토바고: 농업, 수산
- 에콰도르: 수산
- 온두라스: 산림
-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 산림 및 건설

2. 파견 목적

- 농업, 어업, 임업 및 국토개발 등 각 분야에 걸친 경제협력 및 기술 진출을 위한 현지답사 및 기본 조사 시행
- 순방 각국 정부 고위 인사 면담 및 전문가 회의 개최

3. 순방 결과

- 각국은 호의적인 태도로 제반 협조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경제개발계획 수행을 위한 외국의 자본과 기술 원조 지원을 희망함.
- 각국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평가하고 경제 및 기술 협력 제공을 요청하는 한편 호혜적인 경제협력 증진을 통한 한국과의 유대 강화 및 조사단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 제시를 기대함.
-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에콰도르는 천혜의 자연자원 개발 및 인력자원 훈련을 위한 한국의 기술 협력 지원 및 농수산 분야 협력을 요청함.
- 각국은 특히 자연자원 개발 및 제조업 분야에 대한 한국 민간업체의 진출을 기대함.

4. 건의 사항

- 정부 차원의 지원과 병행하여 특히 수산, 제조업 분야의 민간기업 진출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
- 정부의 기술원조 제공을 토대로 한 진출 여건 및 기반 조성 방안 수립이 바람직함.

라오스 경제기술사절단 방한, 1973.4.24.-28.

| 73-0722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M-24 / 18 / 1~16(16p)

라오스 경제성 Houmphan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기술사절단이 1973.4.24.~28. 방한함.

1. 방한 경위

- 윤석헌 외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친선사절단의 1972.7월 라오스 방문 시 라오스 정부 고위 실무자들로 구성된 경제기술사절단의 방한을 초청함.
- 라오스 정부는 경제, 기술, 문화 등 제 분야에서의 양국 간 구체적 협력 방안 협의를 위한 동 사절단의 방한을 수락함.

2. 방한 결과 관련 라오스 언론 보도

- 1973.5.11.자 관련 기사를 통해 한국이 경제 발전의 모범적인 사례임을 보도함.
- 동 기사는 라오스 사절단의 방한이 양국 간 협력관계의 개시를 의미하는 이정표가 될 것임을 평가함.

3. 특기 사항

- 주태국대사는 1972.9월 라오스 각의가 금차 유엔 총회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 시 한국 입장을 지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함.

독일 경제관계 주요인사 방한

| 73-0723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24 / 19 / 1~77(77p)

정부는 Sohn 독일(구 서독) 경제협력성 차관을 1973.4.19.~26. 방한 초청함.

1. 초청 경위

- 정부는 한국-독일 경제협력 강화 방안 협의를 위해 경제기획원장관 명의로 Eppler 경제협력성 장관의 1973년 중 방한을 추진함.
- 동 장관의 일정 사정에 따른 방한 지연에 따라 외무부차관 명의로 Sohn 차관을 방한 초청함.

2. 초청 목적

- 독일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 촉진
- 한국 경제 현황 및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우선순위 사업 설명
- 새마을운동 사업에 대한 지원 확보
- 독일의 1973년도 재정차관 지원 협의
- 기술협력 및 한 · 독 상공회의소 설립 추진
- 산업 시찰

3. 방한 결과

- 외무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장 등에 대한 예방 및 면담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 및 기술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서독의 1973년 약 4,000만 DM의 재정차관 지원을 확인함.
- Sohn 차관은 한국의 투자 조건이 유리함을 고려하여 독일 사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1973년 하반기 중 독일 투자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할 것임을 약속함.
- 양측은 새마을운동, 수출 및 외자 유치 부문 등에 대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되는 대로 기술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함.
- 동 차관은 한국의 중화학공업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할 것임을 약속함.

일본 경제관계 주요인사 방한

| 73-072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동북아1과
MF번호	M-24 / 20 / 1~17(17p)

일본 경제관계 주요 인사들의 1973년 중 방한 현황임.

1. 사토 분세이 운수성 정무차관(1973.5.3.~5.)

❁ 방한 경위

- 주일대사는 3월 동 차관이 한 · 일 간의 제반 현안 문제 해결에 협조적이었으며 특히 양국 간 해운 협정 체결 교섭에 있어 한국 입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동 차관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 주일대사는 향후 양국 간 해운협정 체결 교섭 및 관련 분야 관계 증진을 위해 교통부장관 또는 차관 명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에 따라 교통부장관 명의로 방한 초청함.

❁ 방한 중 희망 일정

- 동 차관은 동 방한 초청을 수락하고 방한 중 해운 문제 등 양국 간 현안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를 희망함.
- 동 차관은 또한 한국의 지하철 공사, 지하철 및 철도 운행 현황과 관련한 시찰을 희망함.

2. 한 · 일 생산성회의 일본 대표단 방한(1973.5.15.~19.)

❁ 방한 경위

- 나고야에 소재한 중부생산성본부는 1968년 부산생산성본부와의 자매결연 결성 이후 매년 상호 방문을 통한 회의를 개최함.
- 동 본부 27명의 일본 측 대표단이 부산에서 1973년 개최되는 제6차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함.

❁ 방한 결과

- 국제 분업의 구체화 및 기업 합병 추진 문제 등 양국 간 경제 교류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경제 교류 강화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함.
- 양측은 별도 세미나를 통해 일본의 중소기업 경영 및 중견 관리자 양성 현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함.

스페인 경제관계 주요인사 방한

| 73-0725 |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24 / 21 / 1~79(79p)

스페인 경제관계 주요 인사들의 1973년 중 방한 내용임.

1. Ayuso 외무성 대외경제총국장 및 Guazo 상무성 수산총국장(1973.5.27.~31.)

❁ 방한 목적

- 정부 초청으로 어업협정 체결 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함.
- 회담 참석과 함께 수산 및 경제관계 협력 방안을 협의함.

❁ 방한 결과

- 외무부장관 및 농수산부장관 등 고위 인사를 예방하고 수산 시설 등을 방문함.
- 양국은 어업협정 체결 회담을 통해 협정 문안을 협의하고 1973년 중 동 협정 서명을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함.
- 정부는 동인들에 대해 수교훈장 흥인장을 서훈함.

2. La Cierva 산업종합공사(INI)부총재(1973.10.29.~11.2.)

❁ 방한 경위

- 국무총리의 5월 스페인 방문 및 동 부총재 접견 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스페인 경제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 부총재를 방한 초청함.
- 국영 자동차회사 사장 등을 대동하고 방한함.

❁ 방한 결과

- 국무총리, 상공부장관 및 산업은행총재 등 고위 인사를 예방하고 산업 시찰 일정을 가짐.
- 유사한 산업 성장 과정을 거쳐 발전 중인 양국 간의 경제, 기술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함.
- 동 부총재는 자동차 산업, 조선, 화학, 전자 및 관광 분야 투자에 관심을 표명함.

❁ 정부의 후속 조치

- INI 홍보를 통해 한국 민간기업과의 자본 및 기술협력을 추진함.
- 자본 및 기술협력이 가능한 업종 선정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단 파견을 검토함.
- INI와의 협력을 통한 중남미 진출 및 협력 추진 방안을 검토함.

한국의 대차드 무상원조

| 73-0726 |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M-24 / 22 / 1~80(80p)

정부의 1973년 차드에 대한 무상 원조 내용임.

1. 한발구호금 지원

- 정부는 한발 피해국인 차드에 대해 한발 구호, 북한의 진출 대처 및 국제 무대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확보를 위해 1만 달러의 구호금 지원을 결정함.
- 주프랑스공사의 1973.7월 동국 출장 및 대통령 면담 시 동 구호금 전달에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함.

2. 차량 5대 기증

- 서부아프리카 특별사절단장 박동진 특사는 1973.7월 동국 방문 시 협의 결과를 토대로 아프리카 제국에 대한 연차적인 원조 계획의 일환으로 33,000달러 상당의 차량 지원을 건의함.
- 박동진 특사는 차드가 한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해 온 단독 수교국으로 향후 우방국으로서 동국의 지속적인 지지 확보를 위해 차량 기증이 효과적일 것임을 보고함.
- 주프랑스공사는 10월 동국을 방문하고 랜드로버 5대에 대한 기증식을 가진바, 차드 측은 제28차 유엔 총회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 시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약속함.

3. 한발구호금 추가 지원 검토

- 정부는 차드의 제28차 유엔 총회 한반도 문제 토의와 관련한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시 10만 달러의 한발구호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함.
- 주프랑스공사의 1973.10월 동국 방문 시 차드 측과 관련 교섭을 시행하도록 지시함.

한국의 대중앙아프리카 무상원조

| 73-0727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M-24 / 23 / 1~15(15p)

중앙아프리카공화국 Bokassa 대통령은 1972.11.24. 주중앙아 대사에 대한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의 경제지원을 요청함.

1. 서한 내용

- 한국 정부의 최근 무상지원에 사의를 표명하며 중앙아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Bokassa 계획에 따른 농업 발전 사업에 한국의 기술원조 및 참여를 요청함.
- 특히 중앙아 청년 1,000여 명이 국립청년지도소에서 1,000ha의 농지를 개간 중임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동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함.

2. 주중앙아대사의 관련 건의

- 동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1차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함.
- 1973년 중 계획된 동국 외상의 방한 중 동 원조를 시행함.
- 아래 세부 추진계획을 건의함.
  - 연간 추산 약 5만 달러의 소요 경비 정부 부담 조건으로 농업 지도원 2명, 대통령실 및 사관학교 태권도 사범 각 1명을 파견함.
  - 파견 기간은 2년으로 함.

3. 정부의 검토 결과 회신

- 태권도 사범 파견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며 농업 지원 파견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가능성을 검토 예정임.
- 동 원조 지원 사업 결정 시 1973년 중앙아 외상의 방한 중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임.

한국의 대휘지 무상원조

| 73-072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M-24 / 24 / 1~10(10p)

정부는 1973년 피지에 대한 무상 원조를 검토함.

1. 피지 정부의 태풍 재해 복구를 위한 지원 요청

- 호주 주재 피지 고등판무관은 1973.12.17.자 주호주대사에 대한 공한을 통해 12.19. 태풍으로 516채의 주택 전파, 선박 침몰 및 84명의 실종자 발생에 따른 재해 복구를 위해 국제사회의 구호금 지원을 요청 중임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관련 지원을 요청함.
- 주호주대사는 한국 어선의 동국 기항 문제 및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난 구조 문제 등을 고려하여 1만 달러 상당의 긴급 구호금 지원을 건의함.

2. 정부의 조치 사항

- 피지 수상에 대한 국무총리 명의 위문 전문을 1973.12.24. 발송함.
- 주호주대사에게 1973년도 예산 사정에 따라 동 구호금 지원을 1974년 사업으로 검토 예정임을 회신함.

한국의 대레바논 무상원조

| 73-072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M-24 / 25 / 1~22(22p)

정부는 1973년 레바논에 난민 구호금을 지원함.

1. 주베이루트통상대표의 관련 건의(1973.5.30. 및 10.25.)

- 동 지원은 1970년 이래 계속 사업으로 정부는 3년간 16,000달러 상당의 구호금을 지원해 왔으며 레바논 국민들에게 한국의 인도적 지원 입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해 온 바 있음.
- 특히 1972.9월 이스라엘군의 남부 레바논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격으로 인해 상당한 인명 및 시설의 피해가 초래됨에 따라 각국으로부터의 구호금 지원이 계속되고 있음.
- 북한은 1972년 10,000달러의 구호금을 지원하는 한편 연 평균 30만 달러 상당의 활동비를 사용하여 선전 활동을 강화 중임.
- 전년도 정부의 UNRWA(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금)를 통한 구호금 지원은 레바논의 친한국 입장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 규모 및 복구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1973년 중 20,000달러의 구호금 지원을 건의함.

2. 정부의 조치 사항

- 특별구호금 7,000달러를 1973.11.5. 레바논 주재 UNRWA 본부에 전달함.
- 상기 전달과 관련하여 주베이루트통상대표는 언론 기고를 통해 레바논 국민 및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을 위한 정부의 구호사업을 설명함.

한국의 대멕시코 콜레라 왁진 지원

| 73-073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M-24 / 26 / 1~36(36p)

정부는 1973년 멕시코에 콜레라 백신을 무상 지원함.

1. 주멕시코대사의 관련 건의(1973.9.6.)

- Puebla 및 Veracruz 주에서 1973.8.8. 발생한 지진으로 924명의 사망 및 45,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보건성은 구호식량, 의류 등 긴급구호 물자는 정부의 자력으로 충당이 가능하나 미국 텍사스 주의 콜레라 발생 정보에 따라 일일 50만 명의 미국으로부터의 방문객이 있음을 감안하여 콜레라의 전염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동 예방 백신 지원을 요청함.
- 상기 멕시코 측의 요청을 감안하여 3만 명분의 동 백신 무상 지원을 건의함.

2. 정부의 조치 사항

- 외무부장관 명의 멕시코 외상에 대한 위문 전문을 1973.8.29. 발송함.
- 멕시코가 우방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다짐하는 등 양국 관계가 발전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 외무장관의 9월 동국 공식 방문 시 동 백신 3만 명분(30만cc)을 전달함.

3. 멕시코 정부의 반응

- Cantu 보건상은 1973.9.11. 주멕시코대사를 초치하여 한국 정부의 신속한 적기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동 지원이 양국 간의 기존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9.13. 여사한 요지의 감사 서한을 전달해 옴.
- Echeverria 대통령 및 외상은 9.15. 국경일 경축 행사에서 주멕시코대사에게 한국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사의를 표명함.

한국의 대니제르 무상원조

| 73-073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아중동과
MF번호	M-24 / 27 / 1~17(17p)

정부는 1973년 니제르에 한발(가뭄) 구호금 지원을 결정함.

1. 주코트디부아르대사의 관련 건의(1973.5.22.)

- 주재국을 포함한 서부아프리카 북부지역의 극심한 한발에 따라 프랑스, 미국, 서독, 소련 등은 적극적인 구호 및 지원을 시행 중이며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 사회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요청함.
- 한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우방 국가인 니제르에 대해 1만 달러의 한발 구호금 지원을 건의함.

2. 정부의 조치 사항

- 국제 사회에서 니제르의 계속적인 한국에 대한 지지 확보 및 북한의 니제르 진출 강화에 대한 대처 등을 고려하여 1만 달러 지원을 결정함.

한국의 대튀니지 무상원조

| 73-073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M-24 / 28 / 1~25(25p)

정부는 1973년 튀니지에 수재 의연금을 지원함.

1. 주튀니지대사의 관련 건의

- 1973년 초 해안 일대에 발생한 홍수로 82명이 사망하고 막대한 시설 피해와 함께 4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함에 따라 튀니지 정부는 국제 사회의 지원을 요청 중으로 미국, 이탈리아 등 서방 제국이 구호 작업에 참여 중임.
- 양국 간 기존 우호관계를 감안하여 1만 달러의 수재의연금 지원을 건의함.

2. 정부의 조치 사항

- 외무부장관 명의 Masmoudi 외상에 대한 위로 전문을 1973.4.2. 전달함.
- 아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1만 달러의 수재의연금을 4.13. 전달함.
  - 외상의 1972.2월 방한은 양국 간 우호관계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1973.3월 황장엽 북한 최고인민회의위원장의 튀니지 방문 이후 한국에 대한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제기됨.
  - 북한의 튀니지에 대한 활동 강화에 대처할 필요성과 함께 튀니지는 마그레브 지역의 주요국으로 튀니지를 기반으로 한 리비아와의 관계 개선의 측면에서도 튀니지와의 관계 긴밀화가 긴요함.

3. 튀니지 측 반응

- Masmoudi 외상은 1973.4.10. 외무부장관의 위로 전문에 대한 감사 전문을 회신함.
- 대통령 비서실장은 상기 의연금 전달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고 튀니지 언론은 동 의연금 전달 내용을 보도함.

한 · 카나다 동제련소 합작건설 추진

| 73-073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24 / 29 / 1~29(29p)

정부는 1973년 캐나다 측 제의에 따른 양국의 동제련소 합작 건설 추진 계획을 검토함.

1. 캐나다 측 제의 내용

- Gillespie 상공장관은 1973.7.12.자 이낙선 상공부장관에 대한 서한을 통해 캐나다 Noranda사와 풍산금속공업사가 추진 중인 연 10만t 규모의 한국 내 동제련소 합작건설사업 실현은 양국에 호혜적인 사업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동 사업 실현을 위한 한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함.
- 주캐나다대사는 Noranda사의 독자적인 전문 기술 등을 고려하여 시설비, 생산비 및 생산성 등 기타 조건이 경합사와 동등할 경우 경제협력 분야의 국제적인 다양화 필요성 측면에서 동 캐나다 회사와의 합작 제의를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을 건의함.
- Campbell 동경 상주 주한 겸임 캐나다대사는 8.5. 윤석헌 외무부차관을 면담하고 동 합작건설 실현 시 캐나다 측의 동광석 공급 보장을 약속함.

2. 정부의 조치 사항

- 외무부는 1973.8.21. 캐나다 정부의 제안 및 주캐나다대사의 관련 건의를 대통령에게 보고함.
- 외무부는 8.25. 상공부에 캐나다 측의 관련 제안을 통보하고 자본 도입의 다변화 및 광물자원의 장기적 확보 등의 측면에서 동 합작사업 인가와 관련한 호의적인 고려를 요청함.

3. 합작건설 추진 내용

- 투자 규모는 4,600만 달러임.
- 양측의 투자 비율은 50:50으로 추진함.

카나다 마이크로웨이브 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 도입

| 73-073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24 / 30 / 1~93(93p)

정부는 1973년 캐나다로부터 마이크로웨이브 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캐나다 상공장관의 1972.1월 방한 시 양국은 한국의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사업 중 통신망 확장을 위한 2천만 캐나다 달러의 마이크로웨이브 시설 확장 차관 도입에 합의함.

❁ 양국은 1973.1.11. 아래 내용의 동 차관협정을 체결함.

- 1차로 1,164회선 확장을 위한 585만 캐나다 달러의 차관을 도입함.
- 차관 조건은 연리 6%,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임.

2. 추가 차관 도입

❁ 정부는 1973.6.19. 주캐나다대사에게 1975년부터 3년간 3,336회선 확장을 목표로 1차 차관 도입과 동일한 조건으로 1,500만 캐나다 달러의 추가 차관 도입을 교섭하도록 지시함.

❁ 양측은 11.22. 한국 측 제안 조건에 따른 동 추가 차관협정을 체결함.

영국의 공공차관 도입

| 73-0735 |

생산연도	1967-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24 / 31 / 1~22(22p)

정부는 1967년 및 1973년 영국으로부터 차관 도입 교섭을 추진함.

1. 인천항 제2독 건설을 위한 공공차관(1967년)

❁ 주한 영국대사의 건설부 방문 시 동 인천항 독(dock) 건설 사업에 대한 관심 표명과 관련하여 국내 언론은 7.28. 아래 요지의 관련 기사를 보도함.
- 영국 정부는 동 사업을 위한 441만 달러의 차관 공여를 제의함.
- 영국 정부는 국방 예산 잉여 재정 중 일부를 동 사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음.

❁ 주영국대사는 상기 보도와 관련한 영국 외무성 접촉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영국은 1963년 이래 국제수지 적자로 인해 해외 국방비 삭감, 재외공관 경비 절감 등 긴축 조치를 시행 중으로 해외투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 Maby 외무성 극동담당차관보는 서한을 통해 재정 협력 제공이 어려운 사정임을 설명함.

2. 현대건설의 울산 제1대단위 조선소 확장 사업을 위한 차관(1973년)

❁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는 5.29. 조선공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울산 조선소 확장을 위해 영국 등 3개국과 1,800만 달러 규모의 차관 도입을 추진함.

❁ 현대건설은 영국 ECGD/Barclays 은행과 600만 파운드의 주 차관 계약을 체결하고 350만 파운드의 추가 차관도입 계약 체결을 추진함.

❁ 외자도입심의위원회는 9.10. 아래 조건으로 현대건설과 영국 측 간의 350만 파운드의 추가 차관계약을 인가함에 따라 주영국대사관은 영국 측과 동 차관 조건을 협의함.
- 차관 상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함.
- 해상보험은 한국 보험회사가 1차적으로 수임함.

❁ 상기 추가차관 도입 조건에 대해 영국 측은 아래 입장을 회신함.
- 추가차관 상환 기한은 주 차관 상환 조건에 따라 1982.5월이 되어야 하며 수정이 어려움.
- CIF 조건에 따라 해상보험의 한국 보험회사 수임 조건은 수락하기 어려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 도입 교섭

| 73-073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24 / 32 / 1~9(9p)

정부는 1973.4.9.~16.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인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 도입 추진 교섭과 관련하여 아래 계획을 수립함.

1. 제2차 교육 차관 4,300만 달러

- ❋ 기술, 농업 등 30개 직업고등학교 시설 확충
- ❋ 기술, 농업, 수산, 간호 등 10개 직업전문학교 및 초급대학 시설 확충
- ❋ 공과, 이과, 해양, 농업 등 21개 종합대학 시설 확충
- ❋ 초급대학 10개 및 단과대학 12개 등 교사 훈련 시설 확충

2. 항만 개발 차관 72,854,000달러

- ❋ 부산항 항만 건설 및 하역 장비 도입
  - 1973~79년간 준설 공사 시행과 함께 제1, 제2, 제7부두, 연안여객부두 및 양곡 저장소 48기를 건설
  - 컨테이너, 석탄, 광석, 양곡 등 화물별로 필요한 하역 장비 도입
- ❋ 묵호항 항만 건설
  - 항만 시설 건설 및 29,000m^3의 준설 공사 시행

3. 개발금융자금 3,500만 달러

구주지역 Bank Loan 도입

| 73-073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25 / 2 / 1~42(42p)

정부는 외화자금 조달사업의 일환으로 1973년 구주지역으로부터 4,000만 달러의 은행차관을 도입함.

1. 한국외환은행을 차주로 3년 거치 10년 상환 및 이자율은 최초 5년은 Euro Rate +1%, 잔여 5년은 Euro Rate +1.25%의 조건으로 협상을 추진함.

2. 구주지역 10개국 24개 은행은 1973.7.31. 차관단을 구성하고 총 응모액 4,400만 달러를 감액 조정하여 4,000만 달러 차관 계약에 동의하고 9.14. 런던에서 동 차관계약에 서명함.

3. 동 차관계약 교섭 과정에서 미쓰이, 미쓰비시 신탁 등 일본계 은행들이 당초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던 입장으로부터 태도를 변경하여 참여를 철회함.

- 동 철회 이유와 관련하여 대장성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 당국이 한국에 대한 차관 공여가 일본 정부의 중국(구 중공) 및 북한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불참을 권유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동 건 확인을 위한 주일본대사관 관계관의 1973.7.31. 대장성 국제금융국 심의관 면담 시 일본 측은 민간 상업은행의 차관 공여는 대장성의 허가 또는 권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고 대장성의 불참 권유 사실이 없었음을 설명함.
- 일본 대장성은 9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회의에 참석한 재무부장관에게도 여사한 입장을 설명함.
- 상기 2개 일본계 은행을 대체하여 Chase Manhattan 은행 및 프랑스의 CCF 은행이 각 100만 달러를 출자함.

한 · 프랑스 기술초급대학(아주공업초급대학) 설립, 1973.4.12.

| 73-0738 |

생산연도	1969-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25 / 3 / 1~277(277p)

1. 과학기술처는 1969.8.22. 외무부에 대한 공문을 통해 한 · 프랑스 기술초급대학(아주공업초급대학) 설립을 위한 사전 조사를 위해 프랑스 전문가의 방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969.12.9. 공한으로 프랑스 전문가가 1970.1.20. 방한 예정임을 통보함.
- ❋ 주한 프랑스대사는 1969.12.22. 외무부 정보문화국장을 면담하고 전문가 방한 일정 등을 협의함.

2. 문교부는 1970.2.17. 외무부에 동 기술초급대학 설립에 관한 추진 상황을 아래 통보함.

- ❋ 1968.5.8. 발효된 양국 간 문화기술협력 협정에 의해 구성된 한 · 프랑스 혼성위원회 제1차 회의(1969.6.16.~18, 파리)에서 동 설립에 합의함.
- ❋ 프랑스 대표단의 1970.1.28.~2.6. 방한 시 동 대학 설립 추진에 합의함.

3. 외무부는 1971.12.23. 동 기술초급대학 설립 협정에 관한 프랑스대사관의 아래 각서에 대해 동의함으로써 동일자로 협정이 체결됨.

- ❋ 개교: 1973.3.1. 예정
- ❋ 프랑스 정부 파견 인원: 교수, 조교 등 총 6명, 임무 및 신분 규정
- ❋ 프랑스 측의 교육기술기재 원조 규모: 3차에 걸쳐 총 25만 프랑 상당

4. 주한 프랑스대사는 1972.3.23. 외무부에 대한 공한을 통해 동 대학 설립 협정에 따른 한국 측 부담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요청하고 9.8. 외무부에 프랑스 기술교육 총감이 동 대학 설립 협의차 9.13. 방한 예정임을 통보함.

5. 외무부는 동 기술초급대학 설립 협정 관련 국내 절차로서 1972.11.28. 비상 국무회의의 동의에 따라 동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법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프랑스 측에 통고함으로써 12.29.자로 동 협정이 발효됨.

6. 문교부는 1973.1.31. 외무부에 건축 공사 계획, 교원 수급 계획, 채용 예정 교수 명단 등 동 기술초급대학 설립 추진 상황을 통보함.

7. 동 기술초급대학 개교식이 1973.4.12. 개최됨.

- ❋ 학교명: 아주공업초급대학
- ❋ 1972.12.21.자 인가에 따라 1973.3.15. 개강, 공업경영 등 4개 학과 280명 정원
- ❋ 개교식에 주한 프랑스대사 등이 참석

의료단 아프리카 파견

| 73-0739 |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M-25 / 4 / 1~14(14p)

1. 외무부 구미국은 1971.4.3. 부내 관련 실 · 국에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정부의 아래 의료기술 협력 현황을 송부함.

- 의료단 파견 현황(1968~70년)
  - 니제르, 감비아 등 총 14개국, 30명 파견
- 의료 기재 원조 현황(1968~70년)
  - 총 10개국, 앰뷸런스 22대, 기타 의료 기재 등

2. 주라이베리아대사는 1973.10.1. 의사 증파 및 의사 훈련 관련 아래와 같이 건의함.

- 주재국 보건성 차관보는 9.20. 한국 외과의사 증파 및 한국 의료기관에서의 라이베리아 의사 훈련을 요청함.
- 양국 간 유대 강화 방안으로 의사 증파가 가장 효과적이나 재정 형편상 어려울 경우 라이베리아 의사의 한국 내 기관에서의 훈련 방안 검토를 건의함.

3. 주라이베리아대사는 1973.10.10. 주재국 보건부장관이 의료 인력 및 시설 부족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설명하고 외과의사 또는 열대병 방역관계 전문의 파견을 요청해 왔음을 아래 보고함.

- 라이베리아는 아프리카의 긴밀한 우방국으로 유엔에서의 계속적인 한국 입장 지지 확보 및 정치적, 경제적 유대 강화가 긴요함.
- 특히 주재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호의적인 고려를 기대하고 의료 원조를 요청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전문의 2명의 파견을 건의함.

4. 외무부는 1973.10.18. 주라이베리아대사에게 10월 하순 주재국을 방문 예정인 강영규 특사와 의사 증파 관련 사항을 협의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동일 주유엔대사에게 주라이베리아대사의 전문의 파견 건의 내용을 참고로 통보함.

Mohammed Joukhdar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 석유담당대사 방한, 1973.9.10.-13.

| 73-074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중동과
MF번호	M-25 / 5 / 1~83(83p)

1.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1973.8.4. 주재국 외무성 석유 고문인 조크다르 대사가 외무성 석유 관련 대외관계를 관장하는 인사로 8월 일본 방문 기회에 한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외무부 경제차관보 명의로 동 대사에 대한 공식 방한 초청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73.8.11.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에게 외무부차관 명의로 조크다르 대사를 방한 초청 예정임을 통보한바,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9.6. 동 대사가 9.10.~13. 방한 예정임을 보고하는 한편 동 대사의 국무총리 예방을 건의함.

3. 윤석헌 외무부차관은 1973.9.10. 조크다르 대사를 면담한바, 동 대사의 언급 내용임.

- ❋ 사우디는 경제개발을 위해 수출 지향 산업 및 에너지 집중 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 ❋ 한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으로 정유공업 및 석유화학 계열 공업의 합작사업 추진을 희망함.
- ❋ 경제, 사회개발 추진 관련 숙련노동자 부족이 가장 큰 난점으로 한국의 기술인력 및 숙련노동자 진출을 희망함.
- ❋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의 경제협력 실무조사단 파견을 희망함.

4. 상공부는 외무부에 상공부장관의 1973.9.12. 조크다르 대사 면담 시 협의 사항을 아래 통보함.

- ❋ 경제 및 기술협력, 교역 증대, 건설업체 진출 방안을 협의함.
- ❋ 사우디 상공장관의 조속한 방한 실현을 희망함.

5. 외무부는 1973.9.18. 대통령에게 조크다르 대사의 방한 결과를 아래 보고함.

- ❋ 협의 내용
  - 정유 및 석유화학 합작투자, 원유 장기 공급 계약 문제
  - 한국의 기술인력, 숙련노동자 및 건설업 진출, 건자재 수출, 유조선 건설 수출
- ❋ 평가 및 전망
  - 동 대사의 방한은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함.
  - 석유의 장기적 확보, 정유 합작, 유조선 건설 수출, 건설업 진출 등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함.
  - 종합적인 경제협력 실무조사단을 조속히 파견하여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파악할 예정임.

6. 외무부는 1973.10.6.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에게 조크다르 대사의 방한 결과를 통보하고 후속 조치 추진을 지시함.

한 · 카나다 원자력협력

| 73-074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25 / 6 / 1~52(52p)

1. 외무부는 1973.8.3. 주캐나다대사에게 한 · 캐나다 경제협력 관련 과학기술처에서 작성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기술협력, 기술협력 훈련비용 산정 등 사업계획서를 송부하고 주재국 측과 협의하도록 지시한바, 주캐나다대사는 9.6. 캐나다 AECL(원자력공사) 총재의 관련 언급 내용을 아래 보고함.

- 한국 측과 협의 중인 사업이 정식 결정될 경우 기술훈련이 필요하며, 동사에서 훈련시설 제공 등 가능한 모든 협조를 제공할 것임.
- 단 동사는 훈련에 필요한 자금이 없음을 명백히 함.

2. 주캐나다대사는 1973.10.2. 한국에 마이크로웨이브 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을 공여하고 있는 주재국 수출입은행 총재가 한국의 통신망 확장 및 원자력에 관한 한국과의 협력 사항에 관한 의견 교환을 위해 10.25.~26.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보고함.

3. 과학기술처는 1973.11.1. 외무부에 캐나다와의 원자력 협력 관련 추진 경과를 아래 통보함.

- 과학기술처의 사업신청서 제출 후 구체적 진전이 없음.
- 현재 협의 중인 양국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이 체결된 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캐나다 원자력공사 기술진의 8.8.~23. 방한 시 협의 사항은 아래와 같음.
  - 핵연료 가공 및 재처리 문제
  - 과학기술처와 협의 중인 후보지 검토 상황
  - 핵연료 가공 및 재처리 사업의 연차별 내자 소요 계획 검토
  - 핵연료 가공 및 재처리 사업에 관한 한 · 프랑스 간 협력 추진 현황 설명
  - 핵연료 가공 및 재처리 사업에 관한 한 · 영국 간 협력 추진 현황 설명

한 · 미국 핵연료 수급협력

| 73-074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경제협력과
MF번호	Re-34 / 20 / 1~42(42p)

1. 주미대사는 1973.3.8. 웨스팅하우스 전력회사가 한전에 수출 예정인 원자력 기재의 수출 인가를 미국 원자력위원회에 신청하였음을 보고하고 아래 사항을 문의함.

- ❋ 동 기재가 신규로 발효되는 한 · 미 원자력협정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 한전이 동 기재를 수령, 소유할 수 있는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

2. 외무부는 1973.3.19.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 상공부 및 한전에 상기 문의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함.

- ❋ 상공부, 과기처는 3.23. 및 3.24. 원자력협정 적용 대상이며 한전이 인가를 받았음을 회신함.
- ❋ 외무부는 4.4. 주미대사에게 동 내용을 미국 원자력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지시함.

3. 외무부는 1973.4.28. 상공부 등 관계부처에 미국 원자력위원회는 3.30.자 고시에 따라 미국 대내 · 외 고객에 대한 특수 핵자재 임대정책을 6.30. 개정 예정임을 통보하고 동 내용을 검토하여 미국과의 교섭 시 반영할 사항을 회보해 줄 것을 요청함.

- ❋ 과기처는 5.26. 한국원자력연구소 사용 특수 핵물질 확보를 위해 동 핵물질 임대 기간을 1974.12.31. 까지 연장할 것을 희망함.
- ❋ 외무부는 6.5. 주미대사에게 상기 임대 기간 연장 교섭 및 연장 시 서명하도록 지시함.

4. 외무부는 1973.8.2. 주미대사에게 1973.3.19. 발효된 한 · 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과기처 산하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사용할 핵연료 구입을 위한 특수 핵물질을 조속 인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함.

5. 외무부는 1973.10.16. 주미대사에게 한전에서 추진 중인 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핵연료의 사용에 대한 정부 승인서를 송부하고 서명 후 미국 원자력위원회에 송부하도록 지시함.

6. 외무부는 1973.12.6. 주미대사에게 과기처가 한 · 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1979년 준공 예정인 원전 제2호기의 핵연료 공급과 관련한 한전과 미국 원자력위원회와의 우라늄 농축계약 체결을 승인하였음을 통보하고, 동 내용을 미국 원자력위원회에 통고하도록 지시함.

한 · 엘살바도르 어업협력

| 73-074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25/ 8 / 1~9(9p)

1. 수산청은 1973.3.27. 외무부에 엘살바도르와의 원양어업 합작투자 사업이 양국 대통령 간의 공동성명에 기초한 사업임에 따라 동 사업 추진에 관한 엘살바도르 측의 의사를 조속 타진해 줄 것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4.6. 엘살바도르를 겸임 중인 주멕시코대사에게 동 사업 추진에 관한 엘살바도르 측 입장을 타진하도록 지시함.

2. 외무부는 1973년 한 · 엘살바도르 원양어업 합작 사업에 관한 아래 자료를 작성함.

❁ 개요

- 한 · 엘살바도르 양국 대통령이 1970.10.2. 합의한 공동성명에 따라 참치어업에 관한 합작투자 사업을 추진함.
- 엘살바도르 정세 변화와 수익성 등 제반 여건 변동으로 사업이 중단됨.

❁ 사업 규모

- 1단계: 참치선망 어선 2척 건조, 건조자금 500만 달러는 차관, 운영비 등 약 133만 달러는 한국수산개발공사 부담
- 2단계: 참치선망 어선 2척 건조, 사업 성과에 따라 육상 냉동시설 건조
- 자본금: 총 400만 달러, 한국수산개발공사와 엘살바도르 산업진흥청이 각 200만 달러 투자

❁ 추진 현황

- 한국수산개발공사는 엘살바도르의 국내 정세 불안정 및 여건 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수익성 전망에 따라 사업 중단을 희망함.
- 수산청은 한국수산개발공사에 대해 계속적인 추진을 종용함.
- 주멕시코대사는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산업진흥청 총재에게 한국수산개발공사와의 합작투자 추진 검토를 지시한 점을 감안하여 수산개발공사의 민영화 여부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계속 추진을 건의함.
- 외무부는 수산청, 수산개발공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하기로 방침을 수립함.

한 · 휘지 어업협력

| 73-074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25 / 9 / 1~81(81p)

1. 외무부는 1973.1.12. 수산청에 피지와의 어업협력을 위한 1972.7.31.~9.30. 수산자원조사단 파견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 계획 회보를 요청한바, 수산청은 2.2. 어업조사단 파견, 연안어업자원 공장 설립 및 기술협력 추진 계획 등을 회신함.

2. 주호주대사는 1973.2.6. 피지에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단의 철수가 피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음을 보고하는 한편 아래 이유로 한국 정부 및 수산개발공사 등 민간 회사가 동 철수 문제를 신중히 고려할 것을 건의함.

- ❋ 피지 기지 포기 여부는 남태평양 어장 관리라는 장기적 안목에서 재검토가 필요함.
- ❋ 일방적 기지 철수는 피지와의 우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 수산조사단 파견 등 정부의 노력에 배치됨.

3. 외무부는 1973.2.8. 수산청에 상기 한국 어선단 철수와 관련한 대책 방안 회보를 요청함.

- ❋ 수산청은 2.8. 한국 어선 철수에 관해 아래 사항을 회신하는 한편 양국 간 우호관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망함.
  - 기존 선박의 일부 철수는 일시적 현상임.
  - 향후 진출을 배가하여 피지와의 우호관계 지속 및 어업협력을 추진 예정임.
- ❋ 수산청은 3.9. 외무부에 어선 철수 경위, 향후 합작사업 추진 계획 및 노후 어선 교체 시 피지 기지를 이용토록 권고 예정임을 통보함.

4. 외무부는 1973.2.13. 수산청에 한국 어선의 해외 어로활동과 관련한 지도 및 조정, 재외공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해외 어로활동이 국제 어업협력 강화 및 한국의 외교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바, 수산청은 2.21. 외무부 요청 사항을 원양어업협회에 지시했음을 회신함.

5. 주호주대사는 1973.4.20. 피지 정부가 연안에 Skip Jack 이외는 어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동 근해 어장 조사 계획은 불필요함을 보고함.

6. 외무부는 1973.5.17. 주호주대사에게 피지와의 경제협력에 관한 정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고 피지와의 관련 교섭에 참고하도록 지시함.

- 어업협력을 위한 기지 이용 시 어가, 선수출 가격, 선박 수리 시설 등의 개선 필요
- 정부의 대외기술공여 계획에 의거하여 정보통신 분야 연수생 3명 훈련, 1974년 3명 추가 연수 예정
- 피지의 지역 산림 개발 지원을 위한 정부 산림기술조사단 파견 계획

7. 외무부는 1973.11.26. 주호주대사에게 피지와의 외교관계 강화 및 국제어업 규제 강화 추세에 대비한 기존 해외기지 활용 방안으로 수산청이 수립한 원양어선의 피지 기지 조업 촉진에 관한 아래 한국어선 재투입 계획을 송부함.

- 철수 이전 조업선 9척, 신규 투입 조업선 12척
- 1973.12월 말 20척 투입, 1974년 9척 투입 계획 등 총 30척

8. 수산청은 1973.12.5. 외무부에 원양어선의 피지 재투입 방침에 따라 동 기지를 이용하는 한국 어선의 유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피지 측과 교섭해 줄 것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12.7. 주호주대사에게 동 유류 공급 부족으로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피지 측과 교섭하도록 지시함.

특정해역에서의 일본선박의 조업 및 항해문제

| 73-074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M-25 / 10 / 1~20(20p)

1. 대간첩대책본부는 1973.9.5. 외무부에 외국 선박의 특정 해역인 휴전선 근해 항해를 제한하도록 아래와 같이 요청함.

- ❋ 일본 선박 '아오미쓰마루'의 8.28. 한국 영해 통과와 관련하여 대간첩 작전상 어떤 선박도 특정 해역에서의 야간 운항 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
- ❋ 일본 정부에 향후 휴전선 인근 영해 항해 및 긴급 피난 시 사전 통보토록 요청함.

2. 외무부 동북아1과 담당관은 1973.9.14. 주한 일본대사관 담당관을 면담하고 아래 내용을 통보함.

- ❋ 서해안 휴전선 북방에서 남하한 일본 어선에 대한 8.28. 한국 해군의 수색 작전 경위를 설명함.
- ❋ 동 해역은 간첩선 남파에 대비하여 설정된 특정 해역으로 야간 운항이 일체 금지되어 있으며, 동 해역으로 남하하는 선박이 간첩선으로 오인됨에 따른 불의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우려함.
- ❋ 일본 선박이 야간에 동 특정해역을 항해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협조를 요망함.

3. 주한 일본대사관 담당관은 1973.10.16. 외무부 동북아1과 담당관을 면담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아래 통보함.

- ❋ 한국의 국방상 특수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일본 선박에 대한 특정 해역 야간 항행 중지 요청은 공해자유와 관련된 문제이며, 특히 다수 일본 어선이 특정 해역의 북방에 출어 중임에 따라 한국 측 요청에 응할 수 없음.
- ❋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처하기 위해 특정 해역에서의 선박 항행을 규제하고 있음을 이해함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본 선박 관련사에 통지해 줄 용의는 있음.
- ❋ 다만 동 조치가 일본 어선이 야간에 특정 해역에 입역하는 것을 규제하겠다는 취지는 아님.

4. 외무부는 1973.10.16. 대간첩대책본부에 상기 일본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아래 의견을 통보함.

- ❋ 일본 측에 대해 특정 지역의 야간 항행에는 현실적으로 불의의 사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자발적 협조를 요청한바,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원칙에 의거하여 한국 측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회답함.
- ❋ 정부가 한국 선박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규제 내용을 일본 정부가 일본 선박 관계자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간접적인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본 선박의 향후 동태를 관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한 · 페루 어업협력

| 73-074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25 / 11 / 1~22(22p)

1. 수산청은 1973.2.9. 외무부에 페루와의 원양어업 합작사업 추진 관련 아래 사항을 요청함.

- ❁ 한 · 페루 간 어업협력 추진 및 한국 원양 참치 연승어업의 페루 진출을 위한 합작사업 가능성 교섭
  - 대상 업종
  - 합작 규모, 투자비율 · 차관 등 합작 조건
- ❁ 참고 자료 파악
  - 페루의 참치어업 현황, 외국 어선의 페루 진출 현황, 외국인 어업 합작투자에 대한 규제 사항
  - 과실송금 보장 문제, 합작 가능 대상 업종

2. 외무부는 1973.3.8. 주페루대사에게 동 수산청 요청 사항을 주재국과 교섭하고 참고 자료를 송부하도록 지시한바, 주페루대사는 아래 페루 수산업 관련 자료를 송부함.

- ❁ 생산 동향: 엔초비 어분 및 어유 190만 톤(1972년), 식용어 예상고 약 37만 톤(1974년)
- ❁ 수출 동향: 어분, 어유, 냉동어, 통조림 총 266백만 달러(1972년), 수출량 총 180만 톤
- ❁ 정부 시책
  - 200마일 해양주권 주장과 함께 연안어업 자원개발 추진
  - 외국 자본 및 기술 도입 장려, 어항 및 어업 전진기지 건설 추진, 어업 장려를 위한 세제 실시
- ❁ 전망
  - 어업 전문가는 페루 연안 수산자원의 고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시, 어업성은 다소 낙관적
  - 주재국이 식용어업 자원개발을 위한 서구 자본과의 기술협력 추진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한국 어업 기술진의 참여 검토 요망

3. 수산청은 1973.9.19. 외무부에 세계 연안국의 영해 확장 및 자원 보존을 위한 어획 규제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페루와의 원양어업 합작투자 교섭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

4. 수산청은 1973.11.29. 외무부에 한국원양어업협회를 통해 페루와의 어업협력 희망 회사를 조사했으나, 희망 회사가 없음을 통보함.

한 · 세네갈 어업협력

| 73-074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25 / 12 / 1~7(7p)

1. 외무부는 1973.9.19. 주세네갈대사에게 한국 어업의 세네갈 연안 진출 검토를 위해 아래 사항을 파악하도록 지시함.

- 세네갈 영해 내에서의 국적선 및 외국 어선에 대한 조업규제 법규
- 연안에서의 연간 시기별, 어종별 어획량
- 어업기지로서의 적격 항구, 선박 대리점, 외국 어선 조업 사정
- 어업기지의 운반선, 항만 육상시설, 냉동고 및 하역시설 현황
- 한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전망
- 한국 트롤어선의 세네갈 연안 진출 방안

2. 주세네갈대사는 1973.9.26. 상기 관련 파악 내용을 아래 보고함.

- 세네갈 정부는 1972.4.19. 어로전관수역을 110마일로 선언한 후 모든 외국 선박의 어업을 불허
  - 다만 외국 선박의 조업 신청 시에는 건별로 조업 허가
  - 프랑스, 소련, 폴란드, 이탈리아 등이 허가 확보
- 1972년 어획량: 248,000톤(참치 17,000톤, 새우 6,000톤, 상어 2,000톤 포함)
- 어업기지 시설은 완비되었으나, 선박 수리는 현재 불완전하며 1975년 초 완전한 수리시설이 구비될 예정
- 조업을 위한 어업협정은 모로코의 경우 어업협력협정을 통해 정보 교환, 시설 협력 및 선원 훈련 등을 규정
- 한국 트롤어선의 진출을 위해서는 세네갈 정부의 허가가 필요
  - 허가 조건으로 각국 사정에 따라 상이한 조건의 일정한 대가 요청
  - 한국 남성수산이 10여 척의 조업을 신청, 1974년 초 허가 획득 예정
- 남성수산은 세네갈 업자와 합작으로 어망공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동 투자는 한국 어업의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3. 외무부는 1973.10.8. 수산청에 상기 주세네갈대사의 보고 내용을 통보함.

한 · 미국 어업협력

| 73-074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M-25 / 13 / 1~54(54p)

1. 수산청은 1973.1.11. 외무부에 한 · 미 어업협정에 따른 연안어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미국과의 교섭을 아래와 같이 요청함.

- 1972.4월 협정 교섭 시 미국 측과 협정 체결 후 논의키로 협의
- 대미 차관 공여 요청 사항
  - 내수면 개발, 양식 진흥 등 총 3천만 달러 규모
  - 이자 3%, 10년 거치 30년 상환 조건

2. 수산청은 1973.1.29. 외무부에 상기 차관도입 교섭을 위해 수산청 어업진흥관이 2.24.~3.2. 방미 예정임을 통보하고 원만한 교섭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바, 주미대사는 2.21. 어업진흥 장기저리 재정차관 요청에 대해 미국 측은 의회의 동향을 감안할 때 전망이 밝지 않음을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3. 농수산부는 1973.3.15. 외무부에 한 · 미 어업협정 이행을 위한 수산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미교섭단의 4.20.~24. 파견 계획을 아래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함.

- 한 · 미 어업협정의 1972.12.12.자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 협의 목적
- 동 미국 방문 중 한 · 미 간 어업협정 이행 관련 제반 문제점을 일괄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설치 및 운용을 제안 예정

4. 농수산부는 1973.4.12. 외무부에 한 · 미 어업협정 이행을 위한 대미 교섭 추진계획을 아래 통보함.

- 교섭단: 김동수 수산청장, 어업진흥관 등
- 파견 일정: 4.23.~5.2.
- 협의 사항: 한 · 미 어업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용, 연안어업 육성을 위한 차관도입 등

5. 주미대사는 1973.4.26.~27. 한국 수산청장과 미 국무성 담당대사와의 한 · 미 어업협력에 관한 협의 내용을 아래 보고함.

- 한 · 미 어업협력 연차회의 시 기술정보 교환을 위한 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
- 미국 측은 장기저리 재정차관 공여 문제는 가능성이 희박하나, 한국 연안어업 진흥을 위한 자금 지원 필요성을 관계 정부기관 또는 의회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임을 언급
- 북태평양 tanner crab 출어 문제는 허용 불가능
- 미국 측은 한국 측의 미국 조선소에서의 skipjack fishing vessels 건조 가능성에 대한 제안을 환영
- 어패류 균 문제 해결을 위해 7월 중 미국 과학자 파견 합의

한 · 서사모아 어업협력

| 73-074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25 / 14 / 1~86(86p)

1. 수산청은 1973.3.8. 외무부에 서사모아 측의 간이 선박수리소 철거 통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함.

- 서사모아 측은 한국 원양어업협회에 간이 선박수리소 시설을 4.20.까지 철거하도록 통보함.
- 동 수리소는 1967년 건설 이후 한국 어선의 전담 간이수리소로 기여해 온바, 동 통고가 철회될 수 있도록 서사모아 측과 교섭을 요망함.

2. 외무부는 동 철회 교섭을 위해 이규성 주호놀룰루총영사를 1973.3.19.~21. 서사모아에 출장토록 조치함.

- 주호놀룰루총영사는 3.23. 서사모아 지사와 1973년 말까지 동 철거를 연기하도록 교섭함.
- 수산청은 4.10. 외무부에 서사모아 지사가 4.20. 시한 철거를 통고했음을 알려 오는 한편 철거 시한 연기를 교섭해 주도록 요청함.
- 주호놀룰루총영사는 4.16. 서사모아 지사가 한국 측 연기 요청을 수락할 수 없다는 공한을 발송했음을 보고함.

3. 주호주대사는 1973.3.24.~4.7. 겸임국 서사모아 출장을 통한 서사모아 측과의 어업협력 관련 협의 시 서사모아 농림부장관은 한국과의 어업협력 관계 유지를 희망하면서 Pago Pago 한국 어선단의 서사모아 Apia 항구 사용을 제의하였음을 보고함.

- 외무부는 5.16. 주호주대사에게 Apia 항구 사용을 검토 중이며, 동 항구 접안 문제, 선박수리소 수리 능력, 어획물 냉장시설 등 상세 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 주호주대사는 7.6. 농림부장관이 Apia 항구를 사용할 한국 어선 규모 등을 문의해 왔음을 보고함.

4. 수산청은 1973.5.26. 외무부에 상기 서사모아 선박수리소 철거 방침에 따라 동 수리 기기 판매를 위한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성사를 위해 서사모아 측과 교섭해 줄 것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6.2. 주호놀룰루총영사에게 동 교섭을 지시함.

5. 수산청은 1973.10.18. 외무부에 서사모아 농림부장관의 Apia 항구 사용 요청에 대해 아래 회신함.

- 동 요청을 Pago Pago 기지를 이용 중인 한국 원양업계에 통보함.
- 서사모아와의 어업협력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한국 어선의 진출이 증가할 경우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항만 및 육상시설의 미비로 시기상조로 판단됨.

한 · 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8차. 동경, 1973.7.25.-28. 전2권. V.1 기본문서

| 73-075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M-25 / 15 / 1~245(245p)

1. 제8차 한 · 일 어업공동위원회의 1973.7.25.~28. 동경 개최를 위한 한 · 일 간 협의 경과임.

- 주한 일본대사관은 4.27. 동 연차회의의 7월 중 개최를 제안
- 한국 측은 7.15.~19.간 개최를 제의
- 일본 측은 9월 중순 개최를 수정 제의했으나, 한국 측은 국회 사정에 따라 자원전문가회의는 7.18.~23., 본회의는 7.25.~30. 개최를 재차 제의
- 한 · 일 양측은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7.25.~28. 동경에서 개최키로 합의

2. 외무부는 1973.7.5. 제8차 한 · 일 어업공동위원회 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하고, 훈령함.

- 대표단: 수산청 강용순 차장, 외무부 지성구 아주국장 외 수산청, 외무부 관계관, 이봉래 수산진흥심의위원
- 훈령
  - 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 및 동 조사 결과에 따른 규제 조치 심의
  - 공동 자원조사 수역 범위 심의
  - 잠정적 어업규제 조치사항 검토 및 동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심의
  - 양국 어선 간의 해상사고 및 처리상황 보고
  - 양국 어선 간의 사고에 대한 일반적 취급 방침에 관한 심의
  - 협정 위반에 대한 동등한 형의 세목 제정에 관한 심의
  -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 협정 체결 교섭 추진을 위한 심의

3. 동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주요 토의 사항
  - 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 및 동 결과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
  - 양국 어선 간 해상사고
  - 양국 어선 간 해상사고에 관한 일반적 취급 방침
- 양국 정부에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체결 교섭 개시를 권고키로 합의

한 · 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8차. 동경, 1973.7.25.-28. 전2권. V.2 자료

| 73-075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M-25 / 16 / 1~313(313p)

1973.7.25.~28. 동경에서 개최된 제8차 한 · 일 어업공동위원회 관련 자료 현황임.

1. 일본 측의 동 위원회 제출 자료(1973.5.4.)

- ❋ 부어류 및 저어류 관련 자료
- ❋ 해양관측표

2. 한국 측 대책회의 자료(1973년 수산청 작성)

- ❋ 제7차 회의 시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상황
- ❋ 각 의제별 분석 및 참고 자료

3. 제8차 위원회 자료(1973.7.25. 수산청 작성)

- ❋ 의사일정, 대표단 구성, 개최 시나리오, 사무국장 인계인수서, 제7차공동위 합의 사항 이행 상황
- ❋ 의제별 토의 자료
  - 양국 어선 간 해상사고 및 처리상황, 양국 어선 간 사고에 관한 일반적인 취급 방침, 협정 위반에 대한 동등한 형의 세목 제정,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 약정 체결 교섭 촉진
  - 기타 협정에 관련되는 기술적인 제반 문제 검토
- ❋ 참고 자료

4. 본회의 회의록(1973.7.28. 일본 외무성 회의실, 수산청 작성)

5. 제8차 위원회 자료(1973.7월 수산청 국립수산진흥원 작성)

- ❋ 어업자원 전문가회의
  - 회의 일정, 전문가회의 일정(안), 회의 진행 순서, 의제별 대책, 어업자원 전문가회의 가의제(안), 어업자원 전문가회의 전문가 명단
- ❋ 자원 소위원회
  - 회의 진행 순서,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의제별 심의

6. 동 위원회 공통문서집(1973.8.21. 수산청에서 외무부로 송부)

- ❋ 회의 일정 및 지방 시찰, 의사일정, 동 위원회 사무국장 업무 인계인수서, 양측 대표단 명단
- ❋ 양측 개회사, 이호 주일대사 축사, 사무국장의 보고
- ❋ 각종 회의 회의록

한 · 호주 면양 시범목장 운영

| 73-075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경제조사과
MF번호	M-25 / 17 / 1~47(47p)

1. 외무부는 1973.2.13. 주한 호주대사관의 운봉목장 가경지 60ha 조기 추가 확보를 요청하는 공한 내용을 농수산부로 통보함.

2. 외무부는 1973.2.26. 호주 양모 삭모 전문가 수락 여부를 문의하는 주한 호주대사관의 공한을 과기처 및 농수산부로 통보함.

3. 농수산부는 1973.3.10. 면양 시범목장 건설 관련 아래 부지 확보 현황을 외무부로 통보함.

- 1973년도 32ha 구입 추진 중, 1974년도 추가 34ha는 예산 반영을 추진 중임.
- 외무부는 동 내용을 3.20. 주한 호주대사관에 공한으로 통보함.

4. 외무부는 1973.5.7. 농수산부에 4.30.자 주한 호주대사관의 춘계 면양 삭모 계절 이후 매각될 양육 및 양모 등 생산물 판매협의권의 명확화를 요청하는 공한 내용을 통보함.

5. 농수산부는 1973.7.11. 외무부에 시범목장 운영 약정서상 호주 측 관리인의 별도 사택 사용 경비에 대한 부담 주체 등 해석상 상이점에 대한 질의서를 송부한바, 외무부는 7.14. 아래와 같이 회신함.

- 호주 전문가의 주택 사용 경비는 한국 측 부담임.
- 동 약정서 10항에 규정된 한국 측 부담사항은 예시 조항으로 동 전문가 주택 유지 비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해도 한국 측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6. 과학기술처는 1973.9.8. 외무부에 1973년도 호주 면양 사육과정 후보자 추천 통보를 의뢰한바, 외무부는 9.14. 주한 호주대사관에 동 후보자를 공한으로 통보함.

7. 외무부는 1973.9.29. 농수산부 및 과기처에 시범목장 설치용 호주산 면양 360두가 10.6. 한국에 도착 예정임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10.1. 동 호주산 면양에 대한 방역 조치를 취하도록 추가 요청함.

8. 주한 호주대사관은 1973.11.26. 외무부에 면양 시범목장 호주 전문가 내한 사실을 공한으로 통보함.

한 · 뉴질란드 육우 시범목장 설치

| 73-075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경제조사과
MF번호	M-25 / 18 / 1~59(59p)

1. 농수산부는 1973.1.12. 외무부에 아래 한 · 뉴질랜드 육우 시범목장 사업 추진이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을 통보하는 한편 뉴질랜드 측 입장을 타진해 줄 것을 요청함.

- 1971.12월 한 · 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 시 뉴질랜드 측이 제의
- 1972.2월 한국 측은 목장 설치 계획서를 뉴질랜드 정부에 송부
  - 육우 510두 사육
  - 총 경비 785,000달러 중 한국 측 485,000달러, 뉴질랜드 측 300,000달러 각각 부담
- 1972.8~9월 뉴질랜드 농림성 직원 내한 및 현지 조사 실시

2. 외무부는 1973.3.12. 농수산부에 주뉴질랜드대사가 파악한 뉴질랜드 정부의 입장을 아래 통보함.

- 조사단 방한 후 뉴질랜드 측은 육우 목장이 기술적인 면에서 부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1973.3월 뉴질랜드 측 전문가를 재차 파견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할 계획임.
- 육우 목장 계획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목장 설치 시 육우 공급 능력의 문제를 제기함.

3. 농수산부는 1973.5.1. 외무부에 최근 개최된 한 · 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 시 뉴질랜드 측이 육우사업 지원을 고려키로 했으며, 한국에 치즈 합작투자 공장 설치 가능성을 협의하기 위해 한국 전문가를 뉴질랜드 측에 파견키로 합의했음을 통보하는 한편 뉴질랜드 측의 육우 시범목장 설치 지원 여부 파악을 요청함.

- 주뉴질랜드대사는 1973.6월 뉴질랜드 측이 한국 전문가 파견 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우 목장 설치 계획을 지원 예정임을 보고함.
- 외무부는 7.21. 농수산부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협의 선결을 요청함.

4. 주뉴질랜드대사는 1973.8.11. 뉴질랜드 정부의 관련 입장을 아래 보고함.

- 뉴질랜드 정부는 육우 목장 설치를 위해 협조 예정임.
- 사전 준비 조치로 농수산부 축산국장의 뉴질랜드 방문 및 뉴질랜드 전문가의 8~9월경 방한을 제의함.

5.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은 1973.8.28. 외무부에 뉴질랜드 전문가의 9.3. 이후 2~3주간 방한 계획을 통보함.

6. 주뉴질랜드대사는 1973.10.31. 뉴질랜드 외무성 담당관의 비공식 의견을 아래 보고함.

- 외무성은 1973.9월 방한한 낙농 전문가의 보고에 따라 육우 목장 설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향후 2~3주 내 각의에 동 계획을 제출할 예정임.
- 동 사업의 지원 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원조액도 50만 뉴질랜드 달러로 증액함.

7. 뉴질랜드 정부는 1973.12.10. 원조액을 52만5천 뉴질랜드 달러로 증액 결정함.

IMF/IBRD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

| 73-075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M-26 / 7 / 1~41(41p)

중국(구 중공)은 1973년 IMF/IBRD(국제통화기금/국제부흥개발은행) 연차 총회를 앞두고 1973.9.24. 외상 명의의 IBRD총재에 대한 서한을 통해 중국 대표권에 관한 제26차 유엔 총회 결의 2758호에 따라 대만(구 자유중국)을 동 기구에서 축출하고 중국이 대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임을 요청함.

1. IMF/IBRD 및 회원국들의 입장

- IBRD는 1973.10.30. 개최되는 20개국 이사회에서 동 사안을 1차적으로 협의하기로 결정하고 McNamara 총재에게 중국의 구체적인 의사를 타진하도록 위임함.
- 회원국들의 입장
  - 미국: 기본적으로 대만의 잔류를 지지하나 다수 국가들이 중국을 외교적으로 승인하고 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국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입장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영국, 일본, 서독 등: 중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하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프랑스 및 북구 5개국: 중국의 가입 여부를 막론하고 대만의 축출에 찬성함.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구 버마), 라오스, 네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함.

2. 정부의 관련 입장 수립(1973.10.29.)

- 결격 사유가 없는 대만의 IBRD 잔류를 지지하며 국제 협력을 목표로 하는 동 기구의 정신에 따라 중국의 가입에 반대하지 않음.
- 대만의 축출 및 중국의 대표권 인정에 관한 단일 결의안이 상정될 경우 반대 투표함.
- 구체적인 입장은 미국 등 우방국들의 태도를 참작하여 결정하며 공개적인 기본 입장 표명을 유보함.

3. 대만 측 입장

- 주한 대만대사는 1973.10.15. 공한을 통해 대만의 회원국 자격 유지를 위한 정부의 협조 및 지지를 요청함.
- 정부는 11.9.자 회신을 통해 대만의 입장에 대한 협조와 지지 입장을 전달함.

IMF(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제도 개혁

| 73-075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M-26 / 5 / 1~78(78p)

미국의 1973.2.13. 달러화 10% 평가절하조치 발표 및 이에 따른 엔화, 마르크화 등 주요국 화폐의 절상 전망 등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에 따라 IMF(국제통화기금)는 20개국 재무장관회의를 3.28. 개최하고 동 대책을 협의함.

1. 주요 협의 사항

- 기축 통화로서 SDR(IMF 특별인출권)의 역할
- 객관적 지표에 의거한 통화가치의 자동 조정 문제
- 국제수지의 불균형 조정 및 각국의 경제 조치
- 달러화의 태환성 회복 문제

2. 회의 결과

- 아래 공동성명을 발표함.
  - 장래의 국제통화제도는 조정 가능한 평가를 기초로 한 고정환율제 및 변동환율제를 병행 실시함.
  - SDR을 기본적인 준비 통화로 함.
  - 흑자 국가 및 적자 국가 간의 협의를 통해 적시에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사용함.
- 동 회의는 SDR을 주축으로 하는 국제통화제도 추진 방향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금의 역할, 달러화의 태환성 회복 문제 및 국제수지의 불균형 조정 등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한 각국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실효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
- 동 결과에 비추어 1973.9월 나이로비 IMF 총회 이전 까지 국제통화 개혁의 기초 수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3. 달러화 평가절하조치의 한국에 대한 영향 분석(1973.2.15. 외무부 보고서)

- 미국, 일본에 편중된 무역구조에 따라 수출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나 일본, EEC(구주경제공동체) 등 화폐 절상국에 대한 수출 신장이 기대됨.
- 화폐 절상국으로부터의 수입 억제 효과가 예상됨.
- 미국 및 EEC 시장에서 일본 상품의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가 전망됨.
- 수출 원자재의 대부분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현실에 비추어 수출상품 생산 단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

IMF/IBRD(국제통화기금/국제부흥개발은행) 동남아그룹 Adviser 한국인 선출교섭

| 73-075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M-26 / 6 / 1~45(45p)

정부는 1973년 IMF/IBRD(국제통화기금/국제부흥개발은행) 기구 IBRD 동남아그룹 한국인 자문관 선출을 위한 교섭을 시행함.

1. 자문관 선출 추진 경위

- IMF/IBRD는 1973년 지역그룹이 10개국 이상의 회원국으로 구성될 경우 1명의 자문관을 선출하는 규정을 의결함.
- 정부는 경제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국제통화 담당기구인 IMF보다는 개발 차관을 담당하는 IBRD에의 한국인 대표 진출이 긴요함을 고려하여 동 자문관 진출을 추진함.
- 나이로비에서 9.23. 개최 예정인 동 기구 총회 시 동남아그룹 지역회의에서 동 자문관을 선출 예정임에 따라 정부는 한국인의 진출을 위한 교섭을 시행함.

2. 교섭 경과

- 재무부 외환국장은 1973.6월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고 재무부장관의 지지 요청 서한을 동국 재무장관에게 전달한바, 말레이시아 재무장관은 7.13. 회신을 통해 1974~76년 기간 중 말레이시아인의 IMF 자문관 수임 및 한국대표의 IBRD 자문관 수임을 위한 상호 지지를 제의함.
-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7월 각 회원국 재무장관에 대한 서한을 통해 1976~78년 기간 중 인도네시아인의 IBRD 자문관 수임, 1974~76년 기간 중 한국인의 IMF 자문관 수임 등을 포함하는 제안을 전달함.
- 정부는 상기 말레이시아 측 제안 수락 방침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한 1976~78년 IBRD 자문관직의 양보를 전제로 동국 대표의 IMF 자문관 전담 수임에 대한 지지 방침을 수립함.

3. 교섭 결과

- 나이로비에서 1973.9월 개최된 IMF/IBRD 총회에 참석한 재무부장관은 말레이시아 재무장관과 협의를 통해 상기 양국의 자문관 선출에 대한 상호 지지에 합의함.

IMF/IBRD 총회, 제28차. Nairobi(케냐) 1973.9.24.-28.

| 73-0757 |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M-26 / 8 / 1~342(342p)

정부는 1973.9.24.~28. 케냐 나이로비 개최 제28차 IMF/IBRD(국제통화기금/세계부흥개발은행) 총회에 남덕우 재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양 기구는 1944년 Bretton Woods 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 IMF는 외환의 안정을 통한 세계무역의 균형 확대와 고용 증대에 기여해 왔으며 IBRD는 전후 경제부흥 및 개도국의 경제개발 자금 공여 지원 등을 통해 한국의 경제개발에 기여해 온바, 한국은 1955년 양 기구에 가입한 이후 경제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함.
- 금차 총회에서는 국제통화제도 개혁을 위한 20개국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검토하고 개혁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한국의 이해와 직결된 국제통화제도 수립에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반영함.

2. 정부 훈령

- 개도국 및 동남아그룹의 이해를 반영한 국제통화제도 정책 방향을 제시함.
- 국제금융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제 발전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부 입장을 반영함.
- 원칙적으로 IMF 판정에 의거한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 방안을 지지하며 SDR(IMF 특별인출권)의 역할 증대 및 가치 안정 방안을 지지함.
- IBRD 융자 및 개도국의 대외부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출지원 융자 공여의 지속적인 확대를 촉구함.
- 대만(구 자유중국)의 대표권 문제가 논의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제기될 경우 미국 및 대만 대표와 협의하여 적절히 대처함.

3. 회의 결과

- 국제통화제도 개혁은 장기적인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인 만큼 동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우선적으로 절대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금융기구 및 선진국들의 지원 확대를 촉구함.
- 수석대표는 Shultz 미국 재무장관, 아이치 일본 대장상, 이노우에 ADB(아시아개발은행) 총재 및 IBRD의 Garcill 부총재 별도 면담 등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전달함.
- 대만 대표권 문제는 McMamara 총재의 중재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함.

IMF/IBRD 동남아그룹 국제통화 전문가회의, 제1-2차

| 73-075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M-26 / 9 / 1~9(9p)

정부는 1973년 IMF/IBRD(국제통화기금/세계부흥개발은행) 동남아그룹 국제통화전문가회의에 정부대표를 파견함.

1. 제1차 회의(1973.3.2.~3. 자카르타)

- 곽상수 한국은행 조사역을 파견함.
- 회의 결과
  - SDR(IMF 특별인출권)과 개발금융의 연계를 강화하여 개도국에 직접 할당해야 한다는 개도국의 입장에 대해 EEC(구주경제공동체) 등 선진국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 선후진국 공히 자본시장 및 개발금융 지원에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합의 외에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못함.
  - 국제통화제도 확립을 위해 새로운 국제무역제도 수립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개도국을 위한 무역 자유화 및 관세, 비관세장벽의 제거 방안을 논의함.

2. 제2차 회의(1973.6.28.~30. 자카르타)

- 김창희 재무부 외환국장을 파견함.
- 파견 목적
  - 국제통화제도 개혁을 위해 7월 중 개최 예정인 IBRD 20개국 위원회에 대비한 개도국의 공동 관심사안에 대한 그룹 내 의견을 사전 조정함.
  - 한국인의 IBRD 동남아그룹 자문관 선출 추진을 위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등 각 회원국 정부 당국자와의 사전 협의를 시행함.
- 정부 훈령
  - 국제통화제도 개혁 관련 개도국 입장 및 정부의 경제개발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함.
  - IBRD 동남아그룹에 신설되는 자문관직을 한국인이 수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섭을 시행함.

한국의 IDA(국제개발협회) 자금 수혜국으로부터의 제외

| 73-075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M-26 / 10 / 1~208(208p)

IBRD(세계부흥개발은행)는 1973.2.23. 한국을 1974년부터 동 기구 산하 IDA(국제개발협회)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함.

1. IBRD 측 입장

- IDA는 최후진국 및 외채 상환 능력 부족 국가에 대해 차관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한국의 경제 사정 호전 등의 추세를 고려할 때 IDA 자금 지원보다는 IBRD 융자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함.
- IDA의 1974년도 자금지원사업 수요는 2억 달러로 예상되나 보유액은 1억 달러에 불과하며 방글라데시, 인도차이나 복구 지원 등의 우선 지원 사업 수요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현실임.

2. IDA의 한국에 대한 지원 현황

- 한국은 1961.5월 IDA에 가입한 이후 131만 달러를 출자함.
- IDA의 한국에 대한 차관액은 1972년 말 현재 86.7백만 달러임.

3. 정부의 조치

- 아래 교섭 지침을 수립하고 IBRD 및 미국, 일본, 유럽 제국 등 동 기구 이사국에 대하여 동 결정 번복을 위한 교섭을 시행함.
  -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IDA 자금 지원이 긴요함.
  - 한국의 국민소득 수준은 252달러에 불과하며 총 26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에 대한 상환 부담액이 4억 달러를 상회함.
  - 특히 농업, 교육개발 부문에 대한 IDA의 장기저리 차관 지원이 필요함.
- McNamara 총재에 대해 1973.3.5. 동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상기 요지의 서한을 전달함.
- IBRD 측은 한국의 경제 사정이 악화될 경우 IDA 지원 재개를 고려할 것이며 IBRD의 한국에 대한 차관액을 1억2,500만 달러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IDA 지원 중단 조치를 상쇄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정부의 동 결정 수락을 요청함.
- 정부는 교육개발 차관에 한하여 IDA의 계속적인 자금 지원 확보를 교섭한다는 향후 방침을 결정함.

ADB(아시아개발은행)에서의 중국 대표권 문제

| 73-076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M-26 / 11 / 1~29(29p)

주한 대만(구 자유중국)대사관은 1972.11.9. 외무부에 대한 공한을 통해 ADB(아시아개발은행) 이사회에서 대만의 회원국 지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한국이 대만의 회원국 지위 유지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함.

1. 정부의 검토 사항

- 한국은 1965년 12월 ADB 창설 당시부터 대만 및 베트남(구 월남)과 함께 3국 그룹을 결성하여 한국이 동 그룹의 대표상임이사직을 수행해 왔으며 동 그룹의 출자액은 9.46%로 대만이 이탈하는 경우 그룹 결성 조건인 8%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동 3국 그룹이 와해될 것임.
- 또한 중국(구 중공)이 ADB에 가입하여 대규모로 출자할 경우 한국을 중심으로 한 그룹 결성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까지 중국의 ADB 가입 의사 표명이 없으나 1973.4월 개최 예정인 ADB 총회에서 파키스탄에 의한 중국 옵서버 초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ADB 측은 당사국의 사전 신청에 따라 옵서버 초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관례에 따라 관계국과 협의를 진행 중임.
- 정부는 1972.9월 제27차 IMF/IBRD(국제통화기금/세계부흥개발은행) 총회 시 대만의 회원국 지위가 제기되는 경우 미국, 일본, 필리핀 및 호주 등의 태도를 참작하여 대만의 축출에 반대한다는 정부 입장을 결정한 바 있음.
- 관계 주무부처인 재무부도 대만의 ADB 회원국 지위 유지를 지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정부의 결정

- 미국 등 주요 회원국들의 관련 입장을 감안하여 대만의 회원국 지위 유지를 지지함.
- 중국에 대한 옵서버 자격 초청 문제에 대해서는 ADB 측의 협의 결과를 고려하여 입장을 결정함.
- 정부는 1973.1.11. 공한을 통해 대만의 회원국 지위 유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회신함.

ADB 총회, 제6차. Manila, 1973.4.26.-28.

| 73-076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M-26 / 12 / 1~164(164p)

정부는 1973.4.26.~28. 마닐라 개최 제6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에 남덕우 재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 개도국의 경제개발 촉진 및 대외부채 해결을 위한 공공원조 증대, ADB 특별기금 재원 보충 및 체제 개편 계획에 대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함.
- ❋ 인도차이나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금융 협조 및 ADB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함.
- ❋ 국제통화 위기 과정에서 차관 수혜국에 전가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협의함.
- ❋ 한국, 대만(구 자유중국) 및 베트남(구 월남) 3국 그룹 체제의 유지 및 한국 계봉혁 대표의 동 그룹 대표이사직 계속 수임을 위해 교섭함.

2. 정부 훈령

- ❋ ADB의 현안 및 향후 정책과 관련하여 개도국의 입장에서 방향을 제시함.
- ❋ 한국에 대한 국제 투자가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도록 한국의 경제 발전상을 설명하고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소요되는 유리한 조건의 외화 조달을 위해 활동함.
- ❋ 한국, 대만 및 베트남 3국 그룹의 유지 및 한국의 대표이사직 계속 수임을 관철함.
- ❋ 정부가 ADB 및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에 신청 중인 차관 공여를 조속히 타결함.
- ❋ 대만의 대표권 문제가 제기될 경우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안을 지지하고 토의 시 미국, 일본 등의 입장을 참작하여 본국에 청훈함.

3. 회의 결과

- ❋ ADB 총재 면담을 통해 한국에 대한 계속적인 금융 지원을 확보하고 1973년도 사업에 8,500만 달러의 차관 도입에 합의함.
- ❋ 수석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ADB의 개도국에 대한 효과적, 장기적 사업지원 계획 수립 및 교육, 농촌 및 도시개발 등 금융 지원의 다양화 필요성을 촉구함.
- ❋ 아시아개발기금 설치에 합의함.
- ❋ 수석대표는 일본 대장상, 미국 재무차관 등 주요국 수석대표와 별도 회담을 개최하는 한편 베트남 재무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월남전 전후복구사업 참여 방안을 협의함.
- ❋ 대만의 대표권 문제는 제기되지 않음.

ADB 이사회 보고서

| 73-076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M-26 / 13 / 1~86(86p)

한국 계봉혁 대표가 월남 및 대만(구 자유중국)과의 3국 그룹 대표이사로 참석하는 ADB (아시아개발은행)의 1973년 중 이사회 주요 결과 보고서임.

1. 1973.1.16. 이사회

- 한국의 출연금을 4천만 달러로 증자하는 계획을 승인함.
- 한국은 최후진국을 위한 전략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파키스탄 및 아프가니스탄의 차관 증액 요청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

2. 1973.2.15. 이사회

- 최근 국제통화 조정 정책이 역내 차관 수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시행에 합의함.
- 한국은 인도네시아 전력사업 차관 공여를 지지함.
- 월남전 전후복구사업 문제 협의를 위한 한국대표 등을 포함하는 ADB 사절단의 2월 중 월남 방문을 승인함.
- 이노우에 총재는 인도, 말레이시아 방문 결과 보고를 통해 양국이 월남전 전후복구사업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였음을 밝힘.
- 일본 측 이사는 이노우에 총재가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참석을 앞두고 아래 사항들을 검토 중임을 언급함.
  - 소련, 중국(구 중공)이 참여하는 ECAFE의 인도차이나 전후복구사업 추진
  - 북한 및 월맹의 ECAFE 가입 문제
- 상기 언급에 대해 계봉혁 이사는 미국 ADB 이사의 동 회의 불참석을 언급하고 이노우에 총재의 동 회의 불참석을 권고함.

3. 1973.3.15. 이사회

- 일본은 120억 엔의 추가 특별 출자금을 제의함에 따라 5차에 걸친 총 출자액은 1,340억 엔을 기록함.
- ADB의 여신정책에 관한 협의는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
- 캐나다의 특별 공여금이 후진국의 재화와 용역의 구매, 외국 선박 이용 운임 및 보험료 지불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약 조건을 수정함.
- 2천만 달러 상당의 연리 6.75% 채권 발행을 승인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 무역협상) 관계자료

| 73-0763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M-26 / 14 / 1~31(31p)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과 관련한 1972~73년 공관 보고 자료임.

1. 구주지역 수출지원센터 회의(1972.10.12.~13.) 관련 주제네바대표부 보고

- GATT 이사회의 1971.2월 결정에 따라 각종 비관세장벽의 제거 또는 완화를 위한 다자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임.
- 개도국의 수출 증대 및 개도국 간 관세 및 무역상의 특혜 대우를 위해 한국 등 16개국은 1972.2월 개도국 간 무역협상 최종의정서에 서명함.
- 여사한 추세를 고려하여 한국의 수출증대를 위해 아래 사항을 건의함.
  - 시장 다변화를 위해 개도국 간 무역협상 결과에 따른 특혜제도 활용 방안 수립
  - 총 수출 중 직물류 수출의 비중을 감안하여 비면직물에 대한 국제적 규제 움직임에 대비한 대책 강구
  - 수출 대상국들과의 양자협상 강화 및 동 협상 결과를 토대로 한 GATT 다자협상에서 한국 입장의 반영
  - 호혜주의 원칙에 따른 한국의 관세 양허 및 비관세장벽 철폐 또는 완화 조치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

2. 제29차 GATT 총회에 대비한 독일 정부의 기본 입장에 대한 주독일대사관 보고(1973.1.19.)

- GATT의 무역정책 협상 및 국제통화 안정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하며 EEC(구주경제공동체) 내의 공동 입장을 토대로 GATT 회의에 임함.
- 주요 의제에 대한 입장은 아래와 같음.
  - 국제 분업 및 무역 확대 지지
  - 무역을 통한 범세계적인 경제 성장 및 안정 달성
  - 국제무역의 지역화 추세 방지
  - 개도국의 세계 경제 질서 참여 확대 지지
  - 유럽 및 아시아 국가 간의 분업화 모색
  - GATT를 기초로 한 세계 무역체제 수립
- 개도국에 대한 관세 특혜제도는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나 공업화를 달성한 일부 개도국의 반대급부 조치가 시행되어야 함.

GATT/MTN : 수입제한조치

| 73-076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M-26 / 15 / 1~71(71p)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과 관련하여 1973.3월 정부가 시행 중인 수입 제한 조치 현황임.

1. 수입 제한의 법적, 행정적 근거

- 무역거래법 제9조에 의거하여 상공부장관은 아래 사항을 책정하고 시행 30일 전에 이를 공고함.
  - 수출 또는 수입 승인 품목, 허가 품목 및 금지 품목
  - 물품의 종류별 수량, 금액 한도, 규격 및 지역 등의 제한 사항
- 수입 제한 공고를 변경할 경우 이미 신용장이 개설된 거래, 허가 및 승인된 수출입에 관해서는 변경 이전의 조건을 적용함.

2. 수입 제한의 방법 및 내용

- 국방상의 이유, 국민 보건 및 미풍양속 보호, 사치성 불요불급 품목에 대한 제한, 유치산업 보호 등의 목적에 따라 수입금지 품목 지정이 가능함.
  - 1973년 상반기 기준 73개 품목
-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수입 한도액 제한 등을 조건으로 수입을 승인함.
  - 국산품의 품질이 조악하거나 국내 수급분이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수입한도액을 책정 공고 (현재 25개 품목에 대해 2,375,000달러 할당)
  - 수출 실적, 수출 촉진 및 결손 보전을 위한 특정 품목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입 허가 (현재 17개 품목 지정)
  - 국산품의 성능, 품질상 문제점 또는 공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수입 추천 품목 또는 특정 예외 품목

3. 수입 제한 완화 조치

- 수입 제한 수단으로서의 국영무역 또는 정부 전매 제도를 시행하지 않음.
-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에 대한 최종 소비지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에 대한 면제 조치를 시행 중임.
- 1967년 이래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진 중으로 수입 품목 확대 조치와 병행하여 국내 공급 부족 물품 및 국제 경쟁력이 있는 품목 등에 대한 수입제한 완화 조치를 확대하고 있음.

GATT/MTN 준비위원회 회의. Geneva

| 73-0765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M-27 / 1 / 1~239(239p)

정부는 1973.7.2.~25. 제네바 개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준비위원회 회의에 정우영 주제네바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1973.9월 동경에서 개최되는 GATT 각료회의를 계기로 개시될 예정인 다자간 무역협상은 향후 세계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편 한국의 수출 증대 정책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동 준비회의 토의 동향을 파악함.
- 금차 회의에서 동 무역협상의 범위, 방법 및 내용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동경 각료회의 선언 초안 작성 문제가 논의될 예정으로 한국 및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함.

2. 정부 훈령

- 개도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협상 지침 작성에 한국 및 개도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함.
- 다자간 무역협상과 관련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및 유엔의 관련 결의에서 천명한 개도국에 대한 특혜대우, 상호주의 적용 배제 및 비차별 원칙이 채택되도록 노력함.
- 개도국의 수출에 장애가 되는 비관세장벽 철폐 문제 및 미국의 1973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등의 사례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다자간 무역제도 수립이 바람직함을 강조함.

3. 회의 결과

- 농산품 및 공산품 분야에 있어 미국이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의 제거 또는 완화를 제시한 데 대해 EC(구주공동체)는 농업의 특수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특히 EC의 공동농업정책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
- 국제통화 개혁과 다자간 무역협상의 연계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동경 각료회의에서 재협의하기로 함.
- 개도국의 특혜대우 등 3대 원칙 채택 요구에 대해 선진 제국은 선별적인 혜택 외의 원칙에 대한 채택에 반대를 표명함.
- 개도국 간의 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선발 개도국과 후진국 간의 이견이 상충함.
- 다자간무역협상의 목적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의 동경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을 채택함.
  - 무역 장벽의 제거와 무역 구조 개선을 통한 세계 무역의 확대 및 자유화 지향
  - 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부가적 이익의 보장 및 경제 발전에 상응하는 기여 기대
  - 관세, 비관세장벽 및 기타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들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

GATT/NTB(비관세장벽)문제

| 73-076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M-27 / 2 / 1~150(150p)

상공부 작성 1973.4.6. 주요 수출 대상국의 NTB(비관세장벽) 및 정부의 대응 조치 내용임.

1. 미국

- 면직물에 대한 수입할당제에 대해 1975년에 있을 양국 간 섬유류 재협상에 대비하여 사전에 교섭함.
- 금속제 양식기에 대한 개별 관세 할당제에 대해 품목 및 등급에 따라 저급품에 대한 관세 할당제 철폐를 교섭함.
- 안전 및 공업 표준에 관한 규정 중 아동 완구류에 대한 안전 보호 규정 완화를 교섭함.

2. 일본

- 인삼 등에 대한 2중 수입심사 조치와 관련하여 식료품, 의약품 중 택일하여 단일 통관절차 시행을 교섭함.
- 수입할당, 관세할당 및 특혜관세 시행과 관련하여 국내 사정을 이유로 한 일부 개도국 공산품에 대한 자유화 유예 조치 시행은 UNCTAD(유엔무역개발기구)의 수입 자유화 조치에 배치됨에 따라 철폐를 요구함.

3. 캐나다

- 면직물에 대한 수입할당제 시행과 관련하여 할당량 증가 또는 철폐를 교섭함.
- 전 품목에 대한 1만 달러 이상의 상품 수입 통관 시 특별 신고제도의 철폐를 교섭함.

4. 호주

- 자율 규제를 시행하지 않는 일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합성섬유 제품에 대한 임시 수입부과세 조치를 한국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함은 부당함을 지적함.
- 한국 섬유제품에 대한 예외 조치 적용을 교섭함.

5. EEC(구주경제공동체)

- 농산품에 대한 가변적 과징금 및 수입부가세 조치에 대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협상을 통한 일괄 인하를 교섭함.
- 개도국에 대한 특혜대우 요구 및 EC(구주공동체)와의 별도 무역협정 체결 추진을 통한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함.

GATT 총회, 제29차. Geneva, 1973.11.13.-15.

| 73-076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M-27 / 4 / 1~103(103p)

정부는 1973.11.13.~15. 제네바 개최 제29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에 황호을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 금차 총회는 1975년 중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MTN(다자간무역협상) 및 1973년 중 체결 예정인 직물류에 관한 다자간 규제협정에 관련한 제반 사안을 토의할 예정으로 한국의 향후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 ❋ 상기 토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한국과 이해를 함께하는 개도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함.

2. 주요 의제

- ❋ MTN 타결을 통한 국제무역 확대 계획
- ❋ 직물류 교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 체결
- ❋ 국제수지 상황과 수입제한

3. 정부 훈령

- ❋ MTN 협상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혜 및 추가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한국이 GATT 체제에 부응하여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 중임을 설명함.
- ❋ 개도국 경제발전에 있어서 직물류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물류 규제의 완화 및 보상책 강구를 촉구함.
- ❋ 국제무역 확대를 위해 개도국에 대한 관세, 비관세장벽 완화 및 철폐와 함께 특혜 축소에 대비한 보상조치 마련을 촉구함.
- ❋ 개도국 교역 확대를 위한 무역개발위원회 및 3인 그룹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역할 및 기능의 확대를 촉구함.

4. 회의 결과

- ❋ 한국 및 개도국들은 개도국 교역의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무역개발위원회 및 3인 그룹의 역할 강화 및 확대를 촉구함.
- ❋ 농산품 교역과 관련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과 EC(구주공동체) 간의 이견이 노정됨.
- ❋ 호주는 중국(구 중공)의 MTN 협상 참여 및 세계 무역 증진을 위한 기여 필요성을 강조함.

GATT/MTN 각료회의. 동경, 1973.9.12.-14.

| 73-076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M-27 / 5 / 1~214(214p)

정부는 1973.9.12.~14. 동경 개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각료회의에 남덕우 재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GATT 다자간 무역협상 결과는 향후 세계무역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1980년대 초 100억 달러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에 따라 동 협상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함.
- 한국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개도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최소의 양허로 최대의 혜택을 확보하도록 교섭함.

2. 주요 의제

- 각료회의 선언문 채택
- 공산품 및 1차 산품 관세 인하, 비관세장벽의 완화, 다자간 긴급 수입제도 검토 및 국제 통상 규범 제정 등 협상의 내용 결정
- 무역협상위원회 구성

3. 정부 훈령

- 개도국들과의 협력하에 협상 모든 분야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혜 확대를 위한 선진국들의 노력을 촉구함.
- 선진국들의 일반특혜관세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개도국에 대한 특혜 축소의 경우 상쇄할 수 있는 보상 조치의 보장을 촉구함.
- 개도국 전체의 이해를 감안한 후발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의 필요성을 강조함.

4. 회의 결과

- 수석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구체적인 특혜 부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 의지를 표명함.
- 아래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함.
  - 무역장벽의 제거와 무역구조 개선을 통한 세계무역의 확대 및 자유화 지향
  -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부가적 이익의 보장 및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기여 기대
  - 관세, 비관세장벽 및 기타 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들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

GATT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 의정서 참가국 위원회 회의. Geneva

| 73-076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통상3과
MF번호	M-27 / 6 / 1~65(65p)

정부는 1972.1.2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함.

1. 체결 경위

- ❋ 한국은 1967.4월 GATT 가입 이후 개도국 무역협상위원회에 참여하여 개도국 간의 무역 증진을 위한 동 의정서 체결 교섭을 시행해 온바, 한국 등 16개국은 1970.10월 상호 교역 확대를 목적으로 한 관세 및 무역상의 양허에 합의함.
- ❋ 개도국에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특혜를 규정하는 동 의정서는 50개 이상의 양자 간 양허 약정을 부속 문서로 종합하여 1971.11월 GATT 총회에서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8월 터키 및 필리핀과 12개 품목에 대한 상호 양허에 합의한 바 있음.
- ❋ 동 의정서 참가국 위원회는 1973.9.28. 대다수 최후진국 등 의정서 미가입국들의 향후 참가국 위원회 참석을 권고하고 가입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한 노력에 합의함.

2. 의정서 내용

- ❋ 개도국 간의 무역 확대 및 상호 협력을 통한 경제개발 및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함.
- ❋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 조치를 강구함.
- ❋ 체약국의 개발, 재정 또는 교역 상황에 특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양허 재협상이 가능함.
- ❋ 국제수지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적 제한 또는 기타 조치가 필요한 체약국은 현행 국제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예측하지 못한 양허 효과로 국내 생산품에 위협이 될 경우 수입국은 동 위협 방지에 필요한 수준의 양허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체결에 따른 효과

- ❋ 체결 16개국 간 연간 교역액은 5천만 달러로 전망되며 300개 이상의 BTN(관세분류항목)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효과가 예상됨.
- ❋ 후진국 및 개도국 간의 무역 확대 및 수출 분업을 통한 선진국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 ❋ 미국, 일본에 편중된 한국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통한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1974년 ICAC(국제면화자문위원회) 총회 한국 개최 가능성 타진

| 73-077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M-27 / 7 / 1~30(30p)

정부는 1974년 개최 예정인 제33차 ICAC(국제면화자문위원회) 총회의 한국 주최 가능성을 검토함.

1. Santley 동 위원회 사무국장은 1973.8월 주미대사를 통해 카이로에서 개최 예정인 차기 동 총회에 이집트 측이 이스라엘 대표단을 초청하지 않을 가능성에 따라 여타 주최국을 물색 중임을 언급하고 아래와 같이 한국 정부의 동 회의 주최 가능성을 타진함.

- 한국 및 스페인을 가장 적절한 주최 후보국으로 상정하고 에비적인 의사를 타진하고자 함.
- 총 소요 경비는 3만 달러로 예상하며 사무국 지원 체재비 등은 동 위원회에서 부담함.
- 1974년 주최가 여의치 않을 경우 1976년 회의 주최를 희망함.
- 회의 주최 시 소련, 헝가리, 체코 등 공산권 국가 대표단에 대한 초청이 필요함.

2. 정부는 아래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동 1974년 총회 주최에 대한 유보 입장을 ICAC 측에 통보하고 1976년 총회 주최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결정하기로 함.

- 동 총회 주최는 한국 면방공업의 발전상을 국제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나 동 위원회는 세계 최대 면화 생산국인 미국이 주도하는 기구로 생산, 무역 및 가격 결정 측면에서 구속력 있는 결정권이 없으며 한국의 원면 확보 등 실리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회의 주최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으며 약 300여 명의 대표단 참석 등에 따른 약 1,380만 원으로 예상되는 회의 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음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음.

한 · 불가리아 교역 추진

| 73-077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N-13 / 1 / 1~23(23p)

불가리아와의 1973년 중 교역 추진 내용임.

1. 주일본 한국 언론 특파원은 1973.6.20. JETRO(일본무역진흥회) 주최 불가리아 상품 전시회에서 Chernev 동국 대사 및 Razlogov 상공회의소 소장과 양국 간 교역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 특파원은 한국이 불가리아 등 동구 제국과의 교역을 희망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불가리아 측의 입장을 문의함.
- 불가리아 상공회의소 소장은 양국 간 교역을 위한 교섭이 가능하며 한국 상공회의소 소장이 초청 공한을 송부할 경우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임을 답변함.

2. 주싱가포르총영사는 1973.7월 Kolev 불가리아 통상대표부 부책임자 접촉 결과를 아래 보고함.

- 불가리아 측은 싱가포르에서 엽연초, 면 및 모직 등을 수입 중임을 언급하고 직접 수입 외에 중개무역도 가능함을 언급하고 한국산 시멘트 공급 시 중동지역 국가에 판매할 것임을 언급함.
- 또한 새로운 디자인의 합섬 스웨터 견본 제공을 희망함에 따라 동 견본 제공을 건의함.

3. 주베이루트공사는 1973.7.21. 및 7.30. 불가리아와의 교역 관련 아래 사항을 보고함.

- 1973년 중 약 2만 달러 상당의 한국산 가발을 불가리아에 수출한 바 있는 Strand 상사는 최근 동국으로부터 약 130만 달러의 상품 발주를 접수하고 한국의 공급 가능성을 문의한바, 1973년 중 동 상품의 불가리아 항구로의 직접 선적이 가능하도록 건의함.
- 불가리아 구매단이 8.4. 베이루트 Strand 상사를 방문하여 한국산 가발 및 상기 품목 구매 문제와 함께 9월 중 소피아 개최 박람회에서의 한국 상품 전시 가능성을 협의 예정임에 따라 동 구매단 초청 만찬 개최 등을 통해 교역 증대 추진을 위한 접촉을 시행할 예정임.

한 · 쿠바 교역 추진

| 73-077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N-13 / 2 / 1~16(16p)

쿠바와의 1973년 중 교역 추진 내용임.

1. 주핀란드통상대표부 공사는 1973.4.16. 리셉션에서 쿠바 대사대리와 양국 간 교역 추진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교환함.

- 주핀란드 공사는 정부가 쿠바와 북한 간의 기존 관계를 부인하지 않으며 정치관계를 떠나 쿠바와의 순수한 무역관계 추진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함.
- 쿠바 대사대리는 동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설탕의 많은 양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일본으로부터 다수 품목을 수입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일본과의 교역은 자유무역 형식으로 대부분의 여타 국가들과는 현물교환 형식을 택하고 있다고 언급함.
- 주핀란드 공사는 한국이 쿠바로부터 설탕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며 여타 품목을 현물교환 형식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한바, 동 대사대리는 5월 중 일시 귀국 기회에 한국과의 교역 가능성에 대한 본국 정부의 입장을 타진해 보겠다고 언급함.

2. 상기 보고에 따라 정부는 쿠바와의 교역 문제를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1973.7.16. 주핀란드 공사에 대해 한국이 설탕 구매 교섭 등을 위해 통상사절단을 쿠바에 파견할 경우 쿠바 측의 접수 여부를 타진하도록 지시함.

- 1972.12월 개정된 무역거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쿠바를 교역 금지 국가로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쿠바와의 교역은 가능함.
- 또한 대공산권 교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쿠바를 교역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임.
-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ISA(국제설탕협정)에 규정된 가격 조건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쿠바로부터의 설탕 수입이 가능함.

3. 주핀란드 공사는 1973.8.16. 쿠바 대사대리를 오찬에 초청하고 상기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쿠바 측의 입장을 타진함.

- 쿠바 대사대리는 한국 측 입장을 토대로 동 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본국 정부와의 협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임을 언급하고 시기상조이나 본 교섭이 구체화되는 경우 런던에 대규모 쿠바통상대표부가 주재하는 만큼 런던에서의 교섭 추진 가능성을 언급함.
- 주핀란드 공사는 정부의 대공산권 문호개방 정책을 설명하고 양국이 호혜, 평등 및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교역관계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함.

한 · 헝가리 교역 추진

| 73-077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N-13 / 3 / 1~14(14p)

헝가리와의 1973년 중 교역 추진 내용임.

1. 주오스트리아 강승구 참사관은 1973.10.30. IER(동서경제기구) Granser 사무국장의 주선으로 오스트리아를 방문 중인 Horchler 헝가리 국제경제위원회 무역국장을 면담함.

- ❋ 헝가리 측은 남 · 북한 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곤란하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교역을 포함한 경제관계는 단계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상호 경제 · 무역 현황 자료 교환 등이 첫 단계라는 입장을 밝힘.
- ❋ 강 참사관은 아래 입장을 전달함.
  - 중공업 국가인 헝가리와 경공업 국가인 한국의 경제 교류는 바람직한 경제 파트너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생각함.
  - 양국 간에는 이미 중간 상인을 통해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직접 교역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함.
  - 헝가리 경제인의 방한 및 한국에 대한 상품 수출을 환영하며 한국 경제 인사의 헝가리 방문 및 박람회 참가 등의 경제 교류를 추진할 용의가 있음.
- ❋ 헝가리 측은 직접교역 추진 제안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표시하는 한편 본국의 입장을 추후 회신해 줄 것임을 언급하고 한국의 수입 가능 상품 및 여타 동구 제국과의 교역 현황에 대해 문의함.
- ❋ 강 참사관은 한국이 유고슬라비아와 상당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타 동구 제국과도 비공식 접촉을 추진 중임을 설명함.

2. 상기 면담과 관련하여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Horchler 무역국장은 자유세계와의 경제관계 촉진을 모색 중인 헝가리 정부의 관리로서 동 면담 목적을 사전에 파악하고 자발적으로 한국 측과 접촉한 것으로 분석됨.
- ❋ 동인과의 계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면서 경제관계 자료 상호교환 등을 추진함으로써 한국의 경제 발전상을 소개함이 바람직할 것임.

한 · 미국간 무역균형문제

| 73-0774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N-11 / 2 / 1~13(13p)

정부는 한 · 미 양국 간 무역 균형 문제와 관련하여 1973.10월 아래 대응 입장을 수립함.

1. Habib 주한미국대사는 1972.12.8.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협의회 총회에서 1972년 중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2억5천만 달러에 달할 것임을 언급한 바 있으며 국무성을 포함한 미 정부 당국은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희망한 바 있음.

2. 정부는 미국 측의 희망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Barke-Hartke 법안 등으로 대표되는 미 의회 내에 팽배한 보호무역주의 동향을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으며 Nixon 행정부가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무역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믿고 있음.

3. 미국 상무성 발표 통계에 의하면 1972년 말 양국 간 교역 현황은 한국의 44.2백만 달러 수입 초과 등 1969년 이래 한국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대외무역 통계 개념에 포함되는 원조계획에 따른 수출액을 한 · 미 간 교역 통계에서 제외함은 불공정하며 부적절한 처사로 판단됨.

4. 미국은 일본에 이어 한국의 제2의 수입 대상국으로 정부는 미국산 제품의 수입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한 바가 없으며 한국의 전반적인 수출 신장에 따라 미국 상품의 한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가 기대되고 있음.

5.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미국 투자가 및 수출업체에 대한 한국 시장에 관한 보다 상세한 자료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미 제안된 바 있는 미국 무역 및 투자 센터의 조속한 서울 설치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미국의 전시용 비축전략물자 판매계획

| 73-077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N-13 / 5 / 1~50(50p)

미국 정부의 1973.4월 전시비축 전략물자 비축 및 판매 계획 변경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처 내용임.

1. 미국 정부는 1973.4.16. 전시비축 전략물자 비축 및 판매 계획 변경 계획에 관한 법안을 아래와 같이 의회에 제출함.

- ❋ 재정 적자 해소 및 인플레 억제를 목적으로 현재 67억 달러에 달하는 동 물자 비축량을 7억 달러 수준으로 감축하며 동 60억 달러 상당의 감축분을 해외에 판매함.
- ❋ 대상 품목은 중석, 알루미늄, 동, 연, 은, 아연 등 91개 전략품목임.

2. 미국 정부는 동 법안의 의회 통과 후 상기 계획이 제3국의 수출 및 수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해 협의할 계획으로 연 1,400만 lbs 상당의 중석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내, 해외 배분에 따른 판매 방식을 변경하여 자유로운 판매 허용 방침을 발표하고 한국이 중석 수출국임에 따라 동 계획 변경에 대한 정부의 의견이 있을 경우 4월 말 이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3. 상기 미국 측 조치에 대해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는 1973.4.26. 정부에 아래 건의 사항을 제출함.

- ❋ 동 방출 계획이 실현되는 경우 1971년 이래 악화되어 온 세계 중석 시장의 교란 및 시장 질서의 붕괴가 우려되며 한국 중석의 수출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됨.
- ❋ 또한 중석의 원가에 미달하는 수준의 국제 시세 하락에 따라 중석 중심의 생산자들의 도산 위기가 우려됨.

4. 정부는 1973.5.9. 주미대사에 대해 아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함.

- ❋ 미국이 자유세계의 안전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략물자 비축 계획을 변경함은 이해하나 중석의 경우 기존의 관례를 일탈한 일시적 대량 방출 계획은 수긍할 수 없음.
- ❋ 미국이 중석의 주요 공급국이며 수요국으로서 방출 방식에 있어 과거의 고정가격제도를 벗어난 대량 방출은 국제가격의 폭락, 세계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 따라서 현행 고정가격제도에 의한 장기간에 걸친 적정량을 미국 및 해외시장에 분배 방출하는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을 요청함.

한 · 미국간 무역균형 문제

| 73-077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N-13 / 6 / 1~20(20p)

한 · 미 양국 간 무역 균형 문제와 관련한 1972~73년 양국의 입장임.

1. 주미대사관 관계관의 미 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국 Burger 경제담당 차관보 면담 내용(1973.1.31.)

- 미국 측은 양국 간의 무역수지가 미국 측에 불리함을 언급하고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자들이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요구함으로써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주미대사관 관계관은 통계상 1972년 최초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미미한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한국은 미국의 상품 원조 대상국으로 대외무역 전체에 있어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미국 측이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함.

2. 미국 측 입장

- Habib 주한 미국대사는 1972.12.8.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2억5,000만 달러에 달할 것임을 언급하고 경제 및 군사원조, 주한미군 주둔 경비 등의 추가로 미국의 국제수지상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함.
- Dent 상무장관은 1973.7.20. 제5차 한 · 미 상공장관회의에서 양국 간의 균형적인 무역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대미수입제한 완화 희망을 피력함.
- Porter 국무성 아시아태평양지역 차관보는 1973.10.3. 한 · 미 경제협의회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상을 언급하고 한국의 IMF(국제통화기금)의 수입제한 완화 권고 수용 및 외국 상품에 대한 문호개방 필요성을 강조함.

3. 정부 입장(1973.10.29. 외무부 대응 자료)

- 미국 측의 대한국 무역적자 언급은 미국의 원조계획과 관련한 수출액을 제외한 것으로 동 부문 포함 시 과거 수년간 한국은 대미 무역 적자를 기록함.
- 한국 수입 시장에서 미국은 일본에 이어 2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일반적인 수출 증대 추이에 따라 미국 상품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대미 일변도 수출을 지양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해 1973.9월 한국의 수입상을 주축으로 하는 관민 구매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하는 등 미국 상품의 수입을 장려하고 있음.
- 또한 1974년 한국에 개설 예정인 미국 무역센터는 미국 투자가 및 수출업체에 대해 한국 시장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1971.10.1자] 한 · 미국간의 인조섬유 및 모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의 시행

| 73-0777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N-13 / 7 / 1~283(283p)

정부는 1971.10.1. 체결된 한 · 미 간의 인조섬유 및 모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시행을 위해 1973년 2회에 걸쳐 개최된 실무자회담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제1차 회담(1973.2.15.~3.2. 워싱턴)

- ❋ 정민길 상공부 국제협력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파견함.
- ❋ 주요 의제
  - 일부 품목 분류상의 중복 및 통계 기준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 시정
  - 특정 품목에 대한 제2차 연도 협의 수준 확정 문제
- ❋ 회의 결과
  - 제2차 및 제3차 연도 협의 수준 증량에 합의함.
  - 분류 및 통계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협정 일부 조항의 통합에 합의함.
  - 월별 통계 교환에 합의하고 합의 문서에 서명함.

2. 제2차 회담(1973.8.16.~18. 서울)

- ❋ 김정태 외무부 경제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파견함.
- ❋ 주요 의제
  - 비특정 품목에 대한 제3차 연도 협의 수준 결정
  - 일정 품목의 통합
  - 특정 품목에 대한 할당제 적용 제외
  - 특정 면직물에 대한 한도량 수준 결정
- ❋ 회의 결과
  - 제3차 연도 중 7개 품목에 대한 협의 수준 증량 및 한국 측 요청에 따른 14개 비특정 품목에 대한 감량에 합의함.
  - 제4차 연도 협의 수준의 5% 증량에 합의함.
  - 미국 측은 미국 내 섬유산업에 대한 영향 및 시장 교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일부 품목에 대한 비할당제 적용 제외를 요청하였으나 동물 완구 및 안대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계속하기로 함.
  - 합의문서 및 양해각서에 서명함.

AID차관에 의한 미국 현미 구매

| 73-077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N-13 / 8 / 1~25(25p)

정부의 73년도 USAID(미국국제개발청) 차관에 의한 미국산 현미 구매 관련 교섭 내용임.

1. 주미대사는 1973.1.9. Butz 미국 농무장관을 면담하고 정부의 1972년도 현미 도입 계획량 80만t 중 미도입량 28만t의 도입과 관련하여 아래 입장을 설명함.

- 가격 상승 및 미국 정부의 현미 보조금 철폐 조치로 인하여 당초 책정된 자금으로는 16만t만 구매가 가능함에 따라 부족량이 10만t 이상에 달하여 정부의 미곡 수급 계획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 측의 철폐된 보조금제도 부활 조치 및 동 부족분 구매 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PL(미 원조공법)480 자금 지원 증액을 요청함.

2. Butz 장관은 한국 측 입장에 대한 공감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답변함.

- 보조금제도는 미국산 현미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로서 세계적인 현미 가격의 상승에 따라 정당성이 상실됨에 따라 철폐된 조치로 부활 가능성이 없음.
- 부족분 구매를 위한 PL480 또는 USAID 차관 증액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으나 서울 USAID 사무소를 통해 공식 제기할 것을 권고함.

3. 외무부 통상국장은 1973.1.15. USAID 서울 사무소 Adler 소장을 면담하고 미국 정부의 80만t 지원 공약 이행을 위해 USAID 측의 지원 증액을 요청한바, 동 소장은 가격 상승에 따른 부족분 보전을 위한 차관 증액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 측의 요청을 본국에 재차 전달하겠다고 언급함.

4. USAID 측은 1973.1.18. 동 부족분 충당 방안과 관련하여 부족분 10만t 중 5.5만t 구매를 위한 추가 지원 방침 결정을 통보해 옴.

대 동구권 교역 추진

| 73-077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N-13 / 9 / 1~56(56p)

대동구권 교역 추진과 관련한 1973년 정부의 입장임.

1. 제13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이사회 동서교역협상회의에 대비한 정부 입장(1973.8.14.)

❋ 기본 입장

- 정부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모든 공산 국가, 특히 동구 제국과의 교역을 희망함.
- 이에 따라 1972.8월 동구 국가와의 교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모든 공산 국가에 대한 교역 문호를 개방하고 우선적으로 가능한 동구 국가와의 교역을 추진 중임.
-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민간 상사 간의 교역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호혜 및 동·서 간 교역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 관계법령 정비

- 공산 지역에 대한 교역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무역거래법 제2조를 개정하여 1972.12.30.자로 모든 공산 국가, 특히 동구권과의 교역을 완전히 개방함.
- 동구 제국과의 교역에 수반되는 운송 수단의 자유화를 위하여 동구 제국 선박의 한국 입항 및 한국 선박의 동구 제국 기항을 허가하는 규정을 제정함.

❋ 평화통일에 관한 6·23 선언을 통한 적극적인 대공산권 교역 추진

- 동 선언 제6항은 공산권 및 이념과 사회제도를 달리하는 모든 국가와의 우호관계 유지를 천명함.
- 동 선언에 따라 공산권, 특히 소련을 비롯한 동구 제국과의 적극적인 교역 및 한국의 모든 상사들의 대 공산권 무역 추진을 장려함.

2. 대동구권 교역 확대를 위한 대책 검토(1973.8.21.)

❋ 무역거래법 제2조 개정에 따른 세부 시행령 제정 등 제도적, 법적 재정비 및 적극적인 대공산권 교역 추진을 위한 민간 상사에 대한 홍보 활동이 필요함.

❋ 재외공관 및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의 관련 정보를 민간 업계에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체제 정비 및 동 정보 수집을 위한 인원, 예산의 확보가 긴요함.

❋ 대부분의 공산권 국가들이 외환 부족 사정으로 수입 억제 정책을 시행 중임에 따라 초기 단계에 정책적인 수입 추진 등의 조치 검토가 필요함.

❋ 공산권 개최 박람회에 민간 업계 인사의 참석 장려 및 한국의 경제발전상 소개를 위한 공산권 경제계 인사들의 방한 초청 등을 추진함이 바람직함.

오스트리아를 통한 대동구권 교역 추진

| 73-078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N-13 / 10 / 1~31(31p)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73.6.29. 오스트리아를 통한 대동구권 교역 추진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1. 주요 활동 내용

- 1971년 531,152달러, 1972년 1,086,122달러의 대동구권 교역을 기록하였으며 1973년 중 체코, 헝가리 및 유고슬라비아와 232,150달러의 교역을 실현함.
- 한국 민간 경제인단의 1971년 유고슬라비아 방문 및 민간 차원의 상사별 자그레브 국제 박람회 참가를 교섭함.
- 1972년까지 Winex사 사장 등 6명의 유고슬라비아 경제인들이 방한함.
- 부다페스트에서 1973.5월 개최된 국제 박람회에 대사관 대리인을 통해 한국 상품 견본을 출품함.
- 유고슬라비아 대사관 경제담당관 및 오스트리아 소재 동국 업체와 접촉을 유지하여 한국 상사와의 면담 알선 등을 추진 중이며 동국 상공회의소 및 유력 50개 상사에 한국 경제 관련 자료를 송부함.
- 한국 경제인단의 1973.6월 비엔나 방문 시 동서경제기구 방문 및 동 기구를 통한 동서교역에 관한 현황 파악을 주선하는 한편 동 기구 발간 West-Ost Journal에 대사관 경제참사관의 한국 경제 발전상 및 수출 현황 소개 기고문을 게재함.

2. 향후 추진 방안 및 건의 사항

- 대사관 대리인을 활용한 동구권 접촉 강화 및 동인의 동구권 파견 등을 통한 거래 추진 가능성을 모색함.
-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와 협의하에 유고슬라비아 자그레브에서 1973.9월 개최 예정인 국제 박람회 등 동구권 개최 박람회에의 직, 간접 참가를 추진함.
- 동서경제기구 주최로 1973.11월 폴란드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회의에 한국 경제인 참가를 위한 교섭을 시행하는 한편 동 기구 발간 출판물에 한국 수출 관련 홍보 자료를 게재함.
- 한국 민간 경제인들의 유고슬라비아 방문을 추진함.
- 동구권 국가 대사관 및 무역대표부 요원들과의 적극적인 접촉 활동을 시행함.

핀란드를 통한 대동구권 교역 추진

| 73-078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N-13 / 11 / 1~14(14p)

주핀란드통상대표부는 1973.6.28. 핀란드를 통한 대동구권 교역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함.

1. 건의 내용

- ❋ 핀란드는 통상 및 경제협력 면에서 동구 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동구 제국 대사관 경제담당관 및 동구 무역 전문 민간 상사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유지하고 있음.
- ❋ 또한 핀란드는 공산권과의 특수 관계에 따라 COMECON(공산권경제상호원조협의체)과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외무성의 주선을 통한 공산권 대사관 경제관계관의 접촉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 동구권과의 교역 확대를 위한 초기 단계 조치로 동구권으로부터의 정책적인 수입 검토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가 약 5천만 달러 수준의 대동구권 정책수입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직접 수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건의함.

2. 정부 입장

- ❋ 예산상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동 특별기금 조성에 어려움이 있음.
- ❋ 필요한 정책적인 지원은 개별 사안에 따라 대책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임.

네덜란드를 통한 대동구권 교역 추진

| 73-078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N-13 / 12 / 1~11(11p)

주네덜란드대사는 1973.7.3. 네덜란드를 통한 대동구권 교역 추진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1. 암스테르담 주재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사무소는 1972년 동구권 전문 대리상인 FLEMTEX사를 중개로 동독과의 무역을 시도하였으나 보증금 예치 등 과도한 조건 제시로 성사되지 못한바, 동사의 중개로 협진 등 5개 한국 섬유업체는 317,234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한 바 있음.

2. 1973년 동사를 중개로 한 동독과의 거래를 추진하였으나 한국 측의 기계류 수입상의 문제로 실현되지 않았으며 한국 섬유업체들은 1973.3월 라이프치히 춘계박람회 참석을 계기로 2,022,473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1,620,000달러 상당의 추가 신용장 개설이 예정되어 있음.

3. 한국 업체들은 동사를 중개로 하여 1973.9월 라이프치히 추계박람회 및 폴란드 포즈난 소비재전시회에 참가할 계획임.

4. 정부의 6·23 선언으로 향후 대동구권 교역 추진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었으나 국교가 수립되지 않음으로 인한 장애가 상존함에 따라 대규모 교역 실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의 방식과 같이 제3국 무역 중개상을 통한 전시회 참가 등의 방식으로 실적을 쌓으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한 · 유고슬라비아 교역

| 73-078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N-13 / 13 / 1~77(77p)

유고슬라비아와의 1973년 중 교역 추진 내용임.

1. 무역협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11명의 기업인단 파견(1973.7.24.~8.3.)

- 직접교역 모색, 박람회 참가 가능성 타진, 유력 인사 방한 초청, 대리점 설치 및 주재원 파견 가능성 협의 등을 목적으로 파견한바, 정부 인사 접촉은 북한 측의 개입으로 일정이 취소됨.
- 유고의 2개 상사를 방문하고 1971년도 통상사절단 방문 후속 조치로 직접교역 추진,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사무소 설치 및 자그레브 박람회 참가 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유고슬라비아의 경제사정 및 교역 정책을 파악함.

2. 유고슬라비아 실업인 2명 방한(1973.8.28.~31.)

- KOTRA 및 국내 기업인들과 상담함.
- 동 방문 결과로 ASTRA사는 9.17. 대우실업과 5만6천 달러 상당의 PVC 테이프 100만 roll 수입 계약을 체결함.

3.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경제참사관의 유고슬라비아 상공회의소 대표 면담(1973.9.13.)

- 동 대표는 한국 기업인단의 8월 방문 시 북한 측의 개입과 관련하여 업계, 상공회의소 및 정부 당국이 북한 측에 항의하였으며 정부 당국이 한국과의 민간 업계 차원의 무역 및 교류를 계속 허가할 방침임을 북한 대사관에 통보하였음을 언급함.
- 동 대표는 한국 상사와의 대리점 계약, 합작투자 및 주재원 파견 등에 관해 본국과 협의할 것임을 언급함.
- 동 면담 결과와 관련하여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유고슬라비아 측은 교역 목적의 한국 업계 인사들의 방문 및 접촉은 허용할 것으로 관찰되며 한국의 20~30만 달러 수준의 정책적 수입을 전제로 민간 기업 주재원 파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소규모 사절단의 지속적인 파견, 유력 경제 인사들의 방한 초청 및 상사 연락관의 현지 상주 교섭 등 점진적인 접촉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4. 주오스트리아 KOTRA 사무소장의 유고슬라비아 방문(1973.10.15.~16.)

- 한국 상사의 동국 내 대리점 개설 및 주재원 파견 문제 등을 협의함.
- 섬유류, 기계류 등 유고슬라비아 측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희망 품목에 관해 협의함.

한 · 호주 통상장관회담, 제5차. 서울, 1973.9.17.-18.

| 73-078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N-13 / 14 / 1~87(87p)

제5차 한 · 호주 통상장관회담이 1973.9.17.~18. 서울에서 이낙선 상공부장관과 Cairns 대외무역성 장관 간에 개최됨.

1. 회의 결과 합의 사항

- 호주 측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철광석 등 광물자원 및 농산물을 적정 가격으로 장기적, 안정적으로 공급함.
- 호주 측은 신특혜관세제도 시행에 있어 섬유류, 의류 등 16개 한국산 품목을 예외 품목에서 제외하도록 고려할 것임.
- 호주 측은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최우선순위 부문에 대한 합작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 추진할 것임.
- 양측은 1965년 체결된 양국 간 무역협정 투자 증진, 자원의 장기 공급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임.
- 양측은 한국 내에 한 · 호주 시범목장을 운영할 것임.

2. 공동성명서 요지

- 양측은 1971년 이래 양국 간 무역이 계속 증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호혜적인 교역 증대 전망에 대해 의견을 함께함.
- 호주 측은 신특혜관세 적용에 있어 한국산 품목에 대한 배려를 약속하였으며 한국 측은 정부의 관세 개정 및 관세율 인하 정책이 호주의 한국에 대한 수출 관심 품목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함.
- 양측은 호주의 한국에 대한 투자 및 합작투자의 확대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함.

3. 후속 조치

- 주호주대사관 공사는 1973.10.4. 대외무역성 차관보 면담 결과를 아래 보고함.
  - 호주 측은 한국에 대한 자원 공급 문제 검토를 위한 조사단을 1974.3월 이전에 파견 예정임.
  - 한국 어선의 호주 기항 문제를 협의함.
- 동 면담 시 호주 측은 Cairns 장관의 북한 방문 중 북한 측이 호주와의 교역과 관련하여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를 요청한 데 대해 동 장관은 남 · 북한 당사자 간의 해결을 희망한다는 기본 입장을 분명히 하였음을 언급함.

한 · 카나다 통상장관회담, [제2차]. Ottawa, 1973.11.5.-7.

| 73-078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N-13 / 15 / 1~197(197p)

제2차 한 · 캐나다 통상장관회담이 1973.11.5.~7. Ottawa에서 이낙선 상공부장관과 Gillespie 통상장관 간에 개최된바, 동 회담 결과 발표된 공동성명 내용임.

1. 금차 회담은 1973.1월 캐나다 통상장관의 방한 시 토의된 사항을 기초로 양국 간 통상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 협의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이낙선 장관은 방문 중 Trudeau 수상을 예방하고 외무장관, 재무장관 및 자원장관을 면담함.

2. 양측은 양국 간의 교역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1973.8월 현재 양국 간 교역이 전년도 동기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함.

3. 양측은 금차 회담을 통해 통상 증대 방안, 원자재 공급, 기계 및 부품의 한국에 대한 수출 증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협력, 투자 및 차관 지원 등에 관해 협의함.

4. 양측은 주한 캐나다 상주대사관 설치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고 양국 간의 기업인 교환 방문 등의 교류 확대 및 적절한 시기에 통상 및 경제사절단 교환 방문에 합의함.

5. 한국 측이 캐나다의 투자 확대를 요청한 데 대해 캐나다 측은 원자력발전소 및 실험용 원자로 건설, 통신 기기, 교육 자재 및 제철소 건설 지원에 관심을 표명하고 캐나다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한국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함.

6. 한국 측이 특히 발전소 건설, 송배전 시설 확장 사업에 대한 캐나다의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캐나다 측은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할 것임을 확인하고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캐나다의 지원 가능성을 표명함.

7. 양측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원 및 공업용 주요 원자재의 한국에 대한 공급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캐나다 측은 동 공급을 위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권장할 것임을 약속함.

한 · 뉴질란드 통상장관회담, 제5차. 서울, 1973.4.9.-10.

| 73-0786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N-13 / 16 / 1~278(278p)

제5차 한 · 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이 이낙선 상공부장관과 Walding 대외무역장관 간에 1973.4.9.~10. 서울에서 개최됨.

1. 회담 의제

- 양국 간 무역 현황 검토 및 수출 증진
  - 뉴질랜드의 수입자유화제도
  - 뉴질랜드의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개선
  - 뉴질랜드의 특별 수입허가 확대
-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 육우 · 낙농 시범목장, 낙농 · 축산 분야 기술인력 훈련 및 협력
  - 뉴질랜드 근해 어획 및 가공 판매 합작사업, 한국 어선의 뉴질랜드 기항 및 보급 허가 등 어업 협력
- 뉴질랜드의 한국에 대한 원목 및 펄프의 안정적 공급

2. 회담 결과

- 뉴질랜드는 연간 10만 m^3의 원목 공급에 합의함.
- 한국 어선의 뉴질랜드 기항을 허가하고 어업자원 공동 개발 검토에 합의함.
- 평택 낙농 시범목장 지원 연장 및 한국 내 치즈 제조 합작사업 가능성 검토에 합의함.
- 한국 내 육우 시범목장 합작투자 가능성 검토에 합의함.
- 한국 측 요청에 따른 추가 수입자유화 23개 품목에 대한 뉴질랜드 수입제한 완화에 합의함.
- 한국 측 요청에 따른 20만 달러의 수출 관심 품목에 대한 특별 수입 허가 요청에 대한 호의적 고려를 약속함.
- 한국 측 요청에 따른 20개 수출 관심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에 대한 호의적 고려를 약속함.
- 양측은 동 회담 결과와 관련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한 · 미국 상공장관회담, 제5차. 서울, 1973.7.19.-20.

| 73-0787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통상2과/북미1과
MF번호	N-13 / 17 / 1~195(195p)

제5차 한 · 미국 간 상공장관회담이 이낙선 상공부장관과 Dent 상무장관 간에 1973.7.19.~20. 서울에서 개최됨.

1. 회담 의제

- 한국의 대미 수출 증진 및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 통상개혁법안 및 한국의 수입자유화 등 양국 간 교역 증대 방안
- 한국 중화학공업개발계획에 미국의 참여, 미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투자 지원 및 한국의 투자 환경 문제 등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
- 미국 영화 수입, 한국 내 영어훈련센터 설립 및 미국 저작권 보호 문제

2. 회담 결과

- 미국 측은 한국과의 균형적인 무역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입제한 조치의 완화를 요청한바, 한국 측은 대미 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설명함.
- 미국 측은 미국 상품의 판촉을 위한 미국무역센터의 1974년 중 설치 계획을 확인하고 미국 상품의 한국 시장 진입을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사의를 표명함.
- 한국 측이 고철, 우지, 화학펄프, 원면 및 양곡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안정적인 장기 공급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미국 측의 고철 및 우지에 대한 금수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데 대해 미국 측은 재검토를 약속함.
- 한국 측은 미국의 통상개혁법안 통과 시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상품 대부분이 특혜관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따른 우려를 표명한바, 미국 측은 동 법안이 한국 등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를 포함하고 있음을 설명함.
- 미국 측은 미국 민간 투자기관의 한국에 대한 투자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투자 환경 개선 조치를 희망함.
- 미국 측이 저작권 보호, 미국 보험사들의 한국 내 영업 및 미국 영화 수입제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한국 측은 미국 측 요청을 유의하여 검토 예정임을 설명함.
- 양측은 동 회담 결과와 관련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한 · 일본 무역회담, 제10차. 동경, 1973.6.14.-15.

| 73-0788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N-13 / 18 / 1~356(356p)

제10차 한 · 일본 무역회담이 외무부 윤영교 통상국장과 일본 외무성 요시다 아시아국장 간에 1973.6.14.~15. 동경에서 개최됨.

1. 정부 훈령

❁ 양국 간 무역은 1968년 이래 매년 6억 달러 상당의 대일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1972년 한국의 대일본 수입의존도는 40.9%로 한국의 대외무역 전반 및 경제개발계획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양국 간 무역 불균형 시정 및 무역의 균형 확대를 위한 일본 측의 조치를 촉구함.

❁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특혜관세 확대, 보세가공 원자재 등 관세 경감 대상 품목 확대, 가공해태 수입 자유화, 양국 기업유치협의회 및 무역연수센터 설립기금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1973.7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회의 시 섬유류 규제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 채택을 교섭함.

❁ 일본 측이 제안한 의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대처함.

- 일본 영화 수입 문제는 충분한 사전 이해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해결함이 필요함.
- 상공부의 수입제한 조치는 일본 등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조치가 아님.
- 한국 진출 일본 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 및 원자재 도입 등과 관련한 애로 사항 개선 요청에 대한 정부의 해결 노력을 전달함.

2. 회담 결과

❁ 일본 측 입장

-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및 특혜관세제도 개선 문제에 관한 호의적인 검토 및 14개 보세가공 원자재 등 관세 경감 품목 확대에 합의함.
-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 할당량의 2천만 달러로의 증대 요청을 호의적으로 검토할 것임.
- 양국 기업유치협의회 설립을 위한 협력 및 소요 경비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약속함.

❁ 한국 측 입장

- 일본 영화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영화예술 교류 및 합작영화 제작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축적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설명함.
- 일본 상품에 대한 수입제한은 전반적인 조치의 일환에 따른 것으로 동 조치의 경감,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임.
- 한국 진출 일본 기업의 애로 사항 개선을 위한 호의적인 배려를 위해 노력할 것임.

한 · 노르웨이 섬유쿼타회담. Oslo, 1973.3.28.-30.

| 73-0789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N-13 / 19 / 1~71(71p)

한 · 노르웨이 섬유쿼터회담이 외무부 윤영교 통상국장과 Vigmostad 외무성 경제부장 간에 1973.3.28.~30. Oslo에서 개최됨.

1. 정부 훈령

- 한국이 노르웨이에 상주 대사관을 신설하는 등 양국 관계 발전 추이를 감안하여 한국을 수입규제 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함.
- 전체 수입할당량에 미달하는 품목에 대한 수입 자유화를 요청함.
- 섬유류 수입 할당량을 50만 달러 이상으로 증액 요청함.
- 제3국을 경유하여 노르웨이에 수출되는 재수출 부분을 할당량 산정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함.

2. 회담 결과

- 섬유류 총수입 할당액을 1972년도 대비 84% 증액한 53.5만 달러로 합의함.
  - LTA(장기섬유류협정) 품목 25.5만 달러
  - 비 LTA 품목 28만 달러
- 품목별 한도액을 1972년도 5만~5.5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증액함.
- 3개 품목에 대한 추가 수입자유화에 합의함.

3. 회담 결과 관련 주노르웨이대사대리 보고

- 금차 회담에서는 노르웨이 측이 한국 측의 요청을 최대한으로 반영함에 따라 수입 할당액 증액 등의 성과를 도출함.
- 노르웨이는 한국의 수출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로는 수출 실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품목의 수입자유화를 관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 전면 철폐 시까지 실적을 기초로 한 수입할당액 교섭을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임.

한 · 필리핀 무역회담, 제5차. 서울, 1973.6.1.-8.

| 73-0790 |

생산연도	1968-197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N-13 / 20 / 1~353(353p)

서울에서 1973.6.1.~8. 개최 예정인 제5차 한 · 필리핀 무역회담에 대비한 정부의 검토 입장임.

1. 주요 예상 의제 검토

- ❁ 양국 간 교역 현황 및 추이
- ❁ 제4차 회담 합의사항 이행 현황
- ❁ 관세인하 문제
- ❁ 통상 및 경제협력 증진 방안

2. 정부 입장

- ❁ 양국 간 교역 현황 검토
  - 양국 간 교역이 1972년 말 현재 6:1로 한국의 역조를 기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필리핀 측이 한국 상품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함.
  - 다만 주요 수입 품목이 목재, 동광 등 경제개발을 위한 원자재인 점을 고려하여 양국 간의 전반적인 무역 증진을 목표로 협의함.
- ❁ 제4차 회담 이행 상황 검토
  - 한국 측 수출 관심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이행을 촉구함.
  - 양국 간 합의에 따른 연례 무역회담 개최가 1968년 이래 연기되어 온 사실을 제기하고 양국 간 무역 확대를 위해 연례 무역회담의 속개를 요청함.
- ❁ 양국 간 교역 증진 방안 및 관세 인하
  - 한국의 주요 수출 관심 품목에 대한 필리핀 측의 수입 확대 및 다량 수출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등 호의적 조치를 요청함.
  - 필리핀은 1973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을 추진 중임에 따라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양허품목 포함을 요청함.
- ❁ 통상 및 경제협력 증진 방안
  - 한국의 원목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설명하고 장기 수입 계약 체결을 제의함.
  - 합작투자 촉진을 위한 정보 교환, 전문가 상호 교류 및 기술협력 가능성을 협의함.
  - 항만, 도로 및 주택 분야 한국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 현황을 설명하고 필리핀 내 건설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위한 호의적인 배려를 요청함.

1973년도 경제외교위원회 회의, 제5차. 1973.7.27.

| 73-079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N-14 / 2 / 1~128(128p)

1973.7.27. 개최된 제5차 경제외교위원회 회의 보고 내용임.

1. 경제외교위원회 규정 개정

- 위원 수를 6~12인에서 6~15인으로 증원하고 학계 및 실업계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조순 서울대 교수 등 4명을 신임 위원으로 위촉함.

2. 중남미지역 경제협력조사단 활동 결과 보고

- 외무부 이문용 연구관을 단장으로 하는 동 조사단이 1973.6.17.~7.8. 중남미 6개국을 방문함.
- 순방 대상국에 대한 농업, 어업, 임업, 및 국토개발 분야에서의 경제 및 기술협력 진출을 위한 종합 조사 결과를 보고함.

3. 산림청장 인도네시아 방문 결과 보고

- 산림청장은 인도네시아 정부 초청으로 1973.7.8.~19. 동국을 방문함.
- 원목 수입, 임지 확보, 합작투자 문제 등에 관한 협의 결과를 보고함.

4. 대중동아프리카 건설업 진출 방안 검토

-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한국 건설업 진출 방안을 협의함.
- 케냐-나이지리아 간의 아프리카대륙 횡단 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한국 업체의 참여 문제를 협의함.
- 업계 차원의 장기적인 진출 방안 및 계획 수립 필요성과 함께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협의함.

5. 향후 사업 계획

- 외무부가 수립한 자원 확보를 위한 외교 기본 방향 지침에 따라 향후 재외공관을 통한 자원외교활동을 강화함.
- 자원 확보 사업으로 1973년 하반기 중 동남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 경제협력조사단 파견을 추진함.

수출진흥 확대회의. 전2권. V.1 제1-5차

| 73-079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N-14 / 3 / 1~390(390p)

외무부의 1973년도 제1~5차 수출진흥확대회의 보고 자료임.

1. 제1차 회의(1973.1.30.)

-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대응책 및 동구권 등 신규 개척시장으로부터의 수입 증대 방안
- 중장기 수출시장 기반 확보를 위한 수출 품목의 정책적 배정
- 무역사절단 파견, 홍보활동 시행 및 국제 박람회, 전시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 프랑스, 독일 등과의 항공협정 체결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1973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및 UNCTAD(유엔무역개발기구) 회의에의 적극적인 참여, 일반특혜관세제도의 확대 및 개선 방안

2. 제3차 회의(1973.3.30.)

- 한국 상품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대외 여론조사 실시
- 미국 Nixon 대통령이 3.22. 미 의회에 제출한 국제경제보고서 관련 대외무역, 특혜관세제도, 국제통화제도, 대개도국원조 및 해외투자 관련 사항 검토 및 대책 수립
- 캐나다의 관세제도, 대만(구 자유중국)의 수입 완화 조치, 미국의 수입규제 동향,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의 무역 및 기술협력 추진 현황 보고

3. 제4차 회의(1973.4.25.)

- 미국의 통상개혁법안에 대한 대처 방안
- 중남미 제국과의 교역 증진 및 경제협력 방안
- 일본의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조치
- 한국 전자제품의 유럽 수출 전망

4. 제5차 회의(1973.5.30.)

- 대EC(구주공동체) 수출 증대 및 한국 상품의 경쟁력 강화 방안
- 튀니지, 모로코,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 지역과의 통상 및 경제협력 추진
-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과의 통상 및 경제협력 추진
- 캐나다와의 특정 섬유제품 수입할당량 회담 결과 보고

수출진흥 확대회의. 전2권. V.2 제6-10차

| 73-079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N-14 / 4 / 1~424(424p)

외무부의 1973년도 제6~10차 수출진흥확대회의 보고 자료임.

1. 제6차 회의(1973.6.28.)

- 서독에 대한 수출 확대 및 투자 유치 방안
- 일본 중소기업 현황 및 한국 상품의 대일본 수출 조건 호전 전망
-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등 동부아프리카지역 국가들에 대한 한국 상품 수출 전망

2. 제7차 회의(1973.8.29.)

- 프랑스에 대한 수출 확대 방안
- 호주의 대개도국 특혜관세율 인하 조치에 따른 수출 증대 방안
- LTA(장기섬유류협정) 잠정 연장 조치에 따른 국제적 규제에 대한 대처 방안 및 GATT(관세및무역에 관한일반협정) 다자협정 교섭 동향

3. 제8차 회의(1973.9.30.)

- 동경에서 9월 개최된 GATT 다자간 무역협상 각료회의 결과 보고
- 이란 등 중동지역 11개국의 수출 시장 분석 및 수출 증대 방안

4. 제9차 회의(1973.10.31.)

- 캐나다 시장 현황 분석 및 교역 증진 방안
- 국제적 수입규제조치 현황 및 대응 방안
-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수출화물 수송 방안 검토

5. 제10차 회의(1973.12.29.)

- 1973년도 통상 증진 활동 성과 보고
  - 주요 수출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 확보
  - 무역 환경 개선을 위한 외교 교섭, 무역협정 체결 및 자원 확보
- 1974년도 통상 증진 및 경제외교 시책
  - 100억 달러 수출, 자원 확보 및 통상 · 경제협력을 통한 우호관계 증진 등 3대 목표 수립
  - 수출 시장 확대, 자원 확보를 위한 외교 강화, 실리를 기반으로 한 경제 유대관계 강화 및 공산권과의 교역 증진

통상사절단 방글라데시 방문, 1973.4.23.-27.

| 73-079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N-14 / 5 / 1~36(36p)

노신영 주인도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통상사절단의 1973.4.23.~27. 방글라데시 방문 결과 보고임.

1. Rahman 수상 면담

- 한국 정부가 파키스탄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여파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승인하고 양국 간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 총영사관 설치를 제의한 데 대해 동 수상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함.
- 동 수상은 전후 복구와 국가 건설을 위해 한국과의 관계 증진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을 언급함.

2. 공식관계 수립 문제 협의

- 외무차관 면담 시 외교관계 수립 가능성을 타진한바, 방글라데시의 유엔 가입을 위한 중립주의 노선 등 기본 외교정책에 비추어 가능성이 희박할 것임을 확인함.
- 동 차관은 양국 간 무역협정이 곧 체결될 것이며 방글라데시 사절단의 방한도 고려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일련의 단계적 조치를 통해 양국 간 공식관계 설정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의함.
- 상무차관 등 정부 인사 면담을 통해 양국 관계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해 최소한 총영사관 개설 수준의 관계 설정이 필요함을 설명한바, 방글라데시 측은 무역대표부 수준의 관계 설정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무역협정 체결 교섭 및 사절단 방한 요청

- 상무차관과 1973.4.25. 협정안에 가서명한바, 방글라데시 측은 동 협정이 자유무역체제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무역협정임을 강조함.
- 방글라데시 측은 동 사절단의 5월 중 방한 및 무역협정 서명에 원칙적으로 동의함.

4. 북한의 WHO(세계보건기구) 및 IPU(국제의원연맹) 가입 문제

- 방글라데시 측은 북한의 WHO 가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바, 기권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 IPU와 관련하여서도 기권 또는 불참할 것으로 전망됨.

통상사절단(비지니스맨단) 유고슬라비아 및 핀란드 방문, 1973.7.24.-8.10.

| 73-079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N-14 / 6 / 1~282(282p)

정부는 김진하 무역협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간통상사절단을 1974.7.24.~8.2. 핀란드 및 유고슬라비아에 파견함.

1. 파견 목적

- 정부는 1970년 이래 동구권과의 간접교역을 통해 2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수출 실적을 기록한바, 소련 및 알바니아를 제외한 동구권 7개국의 1971년 총 수입액이 213억 9,3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구권과의 직접교역을 위한 시장 개척 활동을 강화함.
- 동구권과의 직접교역 실현을 통해 수출시장의 다변화 및 외교적인 관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특히 연 46억 달러에 상당하는 동구 7개국의 섬유제품 수입시장 규모를 고려하여 한국 수출상품의 주종을 이루는 섬유류 수출시장 확보 가능성을 타진함.
- 동구권의 관문인 핀란드를 통한 교역 가능성을 모색함.

2. 방문 결과

- 섬유류, 타이어, 선박 및 신발류 수입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견본 등을 제공하고 후속 상담에 합의함.
- 자그레브에서 1974.9월 개최 예정인 국제 박람회 주최 측과의 면담 시 유고슬라비아 측은 한국 경제인 및 업체의 동 박람회 참가를 위한 협조를 약속함.
- 사절단의 유고슬라비아 체류 전 일정 기간 중 북한 대사관 요원들의 개입으로 상공회의소 및 일부 업체 면담이 취소되었으며 이에 대한 일부 유고슬라비아 업체들의 당국에 대한 항의 및 시정 요청에 따라 자그레브 방문 시 북한 측은 동 개입 활동을 중단함.
- 핀란드 경공업 종합상사의 소련 무역 담당자와의 면담 시 한국 상품 견본을 전달하고 향후 동 품목의 대소련 수출 문제에 대한 후속 협의에 합의함.

3. 건의 사항

- 외환 사정 악화 및 제반 규제 등 동구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초기 단계에서는 일정 규모의 정책적인 수입을 통해 점진적, 장기적인 수출을 추진함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동구권 최대 규모인 자그레브 국제박람회에의 계속적인 참가를 통한 한국 상품의 소개가 바람직함.
- 동구권 경제 관계 및 업계 인사들에 대한 방한 초청을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상을 직접 목도하도록 함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구매사절단 미국 방문, 1973.9.19.-10.16.

| 73-079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N-14 / 7 / 1~179(179p)

정부는 심의환 상공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구매사절단을 1973.9.19.~10.16. 미국에 파견함.

1. 파견 목적

- 미국 행정부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통상정책 재검토를 위한 신경제정책을 발표하고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된 신통상법안을 1973.4월 의회에 제출함.
- 미국은 한국의 주요한 수출시장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47%로 1971년 이후 무역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바, 미국의 한국 상품 수입에 대한 규제 조치에 대한 대비 및 균형적인 무역 확대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대미 수입 촉진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임.
-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 및 우방으로서 미국의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한 협력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1973.7월 제5차 한 · 미 상공장관회담에서 정부의 대미 구매사절단 파견에 합의한 바 있음.

2. 방문 결과

- 백악관, 상무성, 국무성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면담하는 한편 뉴욕, 휴스턴 등 미국 전역을 방문하여 시장, 경제계 및 금융계 인사 면담을 통해 사절단의 방문 취지 및 양국 간 통상 현안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함.
- Dent 상무장관 면담 시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필수적인 고철, 원면 등 원자재의 안정적인 구매 및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다자간 섬유류 규제 동향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미국 측의 협조를 요청함.
- Eberle 백악관 통상협상특별대표 면담 시 미 행정부의 통상개혁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하고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동 법안 시행에 있어 특별 고려를 요청함.
- Armstrong 국무성 경제담당차관보 면담 시 중화학공업 개발을 위한 미국의 자본, 설비 및 기술 참여를 요청하고 정부의 수출 다변화 정책을 설명함.
- 미국 주요 금융기관들은 한국의 유수기업에 대한 경제개발 차관 및 금융 지원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함.
- 사절단 참여 업체들은 상공회의소 및 은행 등의 주선에 따른 구매 상담을 통해 3.9억 달러 상당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3억 달러 상당의 구매계약 추진에 합의함.

통상사절단 중동 순방, 1973.4.29.-5.20.

| 73-0797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N-14 / 8 / 1~138(138p)

정부는 박충훈 대통령특사(한국무역협회회장)를 단장으로 하는 중동통상사절단을 1973.4.29.~5.20. 튀니지, 모로코 및 이집트에 파견함.

1. 파견 목적

- 기존 우호관계 증진 및 경제, 통상, 기술협력 강화
- 향후 통상 증진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 수립
- 북한의 중동지역에서의 활동에 대처
- 북한의 WHO(세계보건기구) 가입 동향, 유엔 총회에 대비한 한국 입장 설명 및 각종 국제기구에서의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확보

2. 방문 결과

- 튀니지
  - Bourguiba 대통령, 수상, 외상 등을 면담함.
  - Bourguiba 대통령은 동국이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요충지임을 강조하고 수출용 공장 건설 및 건설 부문의 협력을 기대함.
  - 튀니지 측은 남북대화에 진전이 있는 시점까지 북한에 대한 승인이나 외교관계 수립 등의 조치를 유보할 입장임을 언명함.
  - 제1차 양국 간 무역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통상, 경제협력 및 합작투자 강화에 합의함.
- 모로코
  - Benhima 외상, 상공상, 종교문화상 등을 면담함.
  - 대통령 친서에 대해 외상은 한국 입장 지지를 약속하는 회신을 전달해 옴.
  - 수산청장 면담 시 한국 어선의 모로코 어로전관수역 내에서의 어로 및 수산 합작회사 설립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함.
- 이집트
  - Hegazy 부수상, 외무차관, 경제차관 등을 면담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주한 이집트 총영사관 개설을 제의함.
  - 이집트 측은 중동 분쟁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아랍 입장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총영사관 개설에 대한 입장 표명은 유보하고 양국 간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았지만 경제 및 문화 관계가 계속 증진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언급함.

인도 통상사절단 방한, 1973.4.24.-28.

| 73-079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N-14 / 9 / 1~19(19p)

인도 통상성 Raghupathi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인도 통상사절단이 1973.4.24.~28. 방한함.

1. 윤영교 외무부 통상국장과의 양국 간 통상회담 개최

❁ 연례 무역회담 개최 문제

- 한국 측은 양국 간 교역량 증대 추세를 고려하여 교역 및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1964년 체결된 무역협정을 토대로 연례 무역회담 개최를 제의함.
- 인도 측은 상기 제의에 동의하고 양국 간 개발 분야에서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제안함.

❁ 경제기술 협력 문제

- 한국 측은 양국 간 체결된 무역협정 보강을 위하여 경제기술 협력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인도 측은 한국 측 제의에 동의하고 어업 분야에 관해서는 양국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협력 내용 검토 후 구체화함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어업협력 문제

- 한국 측은 인도양에서의 참치, 바닷가재 등 어업자원 공동개발 및 합작사업 가능성을 제시하고 양국 간 공동조사, 민간 합작사업 추진, 한국 어선의 기항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인도 어업 인력에 대한 방한 훈련 제공을 제안함.
- 인도 측은 한국 측 제안에 대해 어업 관련 당국과 협의할 것임을 언급함.

❁ 기타 사항

- 인도 측은 한국으로부터의 저인망 어선 수입, 인도산 광석 및 석탄 수출을 희망함.

2. 수산청 방문 시 협의 사항

❁ 양측은 새우 어획 관련 합작투자 가능성을 협의함.

❁ 한국 측은 인도양 공동 조사를 위한 조사선 파견 및 인도 어업인력 방한 연수를 제의함.

3. 상공부 방문 시 협의 사항

❁ 인도 측은 철광석, 원면 수출을 희망하고 저인망 어선 수입 가능성을 타진함.

❁ 한국 측은 정부의 수입 다변화 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철도화차 부품의 장기 수출 계약 희망을 전달하고 인도 시장조사단 파견을 위한 인도 측의 협조를 요청함.

미국 Oregon주 민간 통상사절단 방한, 1973.10.7.-13.

| 73-079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N-14 / 10 / 1~18(18p)

미국 Kell 주Portland 명예총영사를 단장으로 하는 Oregon주 민간 통상사절단이 1973.10.7.~13. 방한함.

1. 체한 중 희망 일정

- 외무부, 경제기획원 등 정부 당국자 면담 및 한국의 경제, 정치, 금융 분야에 대한 설명 청취
- 한국의 농수산, 산림 현황 파악 및 Oregon주 생산 목재 및 가구 수출 가능성 협의
- 한국산 자동차 수입 가능성 타진
- Oregon–한국 협력 프로그램 가능성 타진
- 부산, 마산 자유무역지역 등 지방 방문

2. 주요 방한 일정

- 경제기획원, 농수산부차관 예방
- 외무부, 상공부차관보 면담
- 산림청, 한국은행, 외환은행, 상업은행 방문
- 경제기획원차관 및 외무부차관보 주최 오 · 만찬 참석

Kempinaire, Andre 벨기에 대외통상장관 방한, 1973.9.17.-19.

| 73-080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N-14 / 11 / 1~125(125p)

벨기에 Kempinaire 대외통상성장관이 외무부장관 초청으로 1973.9.17.~19. 방한함.

1. 방한 경위

- 정부는 한국의 경제 발전상 소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관련 협의, 남북대화 관련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확보 및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 협의를 위해 동 장관의 방한을 추진함.
- 동 장관은 1973.9월 동경 개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회의 참석 후 방한을 수락함.

2. 체한 일정

- 국무총리 예방, 외무부장관대리(외무부차관) 면담 및 장관 주최 만찬 참석
- 경제기획원장관, 상공부장관, 중화학공업위원장 면담 및 구로공단 방문

3. 외무부장관대리 면담 요지

- 외무부차관은 양국 간 정치적인 유대관계를 토대로 경제협력 및 통상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를 희망한바, Kempinaire 장관은 EC(구주공동체) 차원의 협력과 함께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임을 언급함.
- 동 차관의 한반도 정세, 남북대화 추이와 관련한 설명 및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요청에 대해 동 장관은 벨기에가 전통우방으로서 한국 입장을 지지할 것임을 확인함.

4. 방한 성과

- 벨기에는 6·25 전쟁 참전 우방국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입장을 지지해 왔으며 대외통상성장관은 방한 중 양국 간 기존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 우호협력관계 강화 의지를 확인함.
- 벨기에는 금차 유엔 총회 한반도 문제 토의에 대비하여 1973.9월에 개최된 공동제안국회의 일원으로 한국 측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으며 동 장관은 향후 유엔 대책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함.
- 동 장관은 방한 중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교역 증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히고 정부의 벨기에 투자교역사절단 방한 및 연례 실무급 경제통상회의 개최 제의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함.

미국 군수물자 수입

| 73-0801 |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북미2과/통상2과
MF번호	Re-36 / 7 / 1~10(10p)

풍산금속의 1973년 미국 군수물자 수입 추진 관련 사항임.

1. 국방부장관 및 풍산금속 사장은 1973.5.25. 외무부장관에게 아래 사항을 서한으로 요청함.

- ❋ 풍산금속은 방위산업업체로 소구경, 대구경 탄약 공장 및 군수용 원자재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Philipp Brothers사로부터 미국 정부에서 폐기 처분 예정인 36,000t의 탄약을 염가로 수입하여 탄약 제조 원료 등으로 활용을 희망함.
- ❋ 동 폐탄약의 수입은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것인바, 양국 정부 간의 상담 추진을 위한 주미대사관의 관련 교섭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73.5.30. 주미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관련 교섭을 지시함.

- ❋ 정부의 군용 탄약 생산 지정 방위산업업체인 풍산금속은 미국의 상기 폐탄약 수입을 추진 중임.
- ❋ 동 수입을 위해 미국 국방성 및 Philipp Brothers사와 교섭을 시행함.

폴란드 선박도입 추진

| 73-080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N-14 / 13 / 1~37(37p)

정부는 1973년 폴란드 선박 도입 추진 문제를 검토함.

1. 추진 경위

❁ 정부의 대동구권 교역 추진, 동구권으로부터의 정책적인 수입을 통한 통상사절단 파견 및 폴란드 내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사무소 설치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1973.8.2. 주이탈리아대사관 관계관이 폴란드 대사관 상무관을 접촉하고 동 선박 도입 문제를 타진함.

❁ 폴란드 측은 한국 측 입장에 적극적인 반응을 표시하고 후속 협의 과정에서 폴란드 정부가 서방 제국과 활발한 교역을 시행 중임에 따라 한국과의 무역 증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한편 아래 가능성을 제시함.

- 국제관례에 따른 장기 연불 방식
- 한국 상품과의 현물 교역 방식
- 동 선박 구입을 위한 기술조사단의 폴란드 방문

2. 정부의 후속 검토 사항

❁ 교통부 및 상공부는 아래 조건을 전제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 1만t급 이상 10년 이상 선령의 Bulk 선박
- 총 선가의 15% 이내의 계약금 지불 및 10년 이상 분할 상환을 통한 잔액 지불 결재 방식
- 일본 선박 도입 조건과 비교하여 거리상의 문제로 인한 부대비용 및 부속품 조달 등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 도입에 따른 아래 효과를 고려하여 12월 제10차 경제외교위원회에서 재차 협의하기로 함.

- 현물 교역 방식을 통한 도입 시 공산권 국가와의 최초의 직접교역 실현
- 기술조사단 파견 시 폴란드 내 한국 상사 사무소 설치 교섭 가능성
- 양국 간 정치적인 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

유고슬라비아 선박도입 추진

| 73-0803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N-14 / 14 / 1~49(49p)

정부는 1972~73년 유고슬라비아 선박 도입 추진 문제를 검토함.

1. 추진 경위

- ❋ 정부의 동구권 수출시장 개척 및 동구권 상품의 정책적 수입 방안의 일환으로 유고슬라비아 선박 구입 문제를 검토함.
- ❋ 대한농산 사장이 1971.9월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고 3MAJ사와 선박 도입 문제를 상담한 이후 1972.6월 및 10월 비엔나 주재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소장 및 대한농산 관계자가 동국을 방문하고 3MAJ사와 2척의 화물선 도입을 위한 아래 조건의 가계약을 체결함.
  - 1척당 600만 달러, 총 1,200만 달러
  - 1974.10월 및 1975.2월 1척씩 인도, 현금 지불 조건
  - 한국 정부의 외화대부 승인 조건
- ❋ 상공부, 재무부 등 관계부처의 승인과 관련하여 1972.10.17. 비상조치로 승인이 유보됨.
- ❋ 유고슬라비아 3MAJ사 대표 3명이 1972.11월 방한하여 대한농산 측과 계약 체결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아래 이유로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함.
  - 기본 계약 세부 사항, 선가 및 선박 사양에 관한 이견
  - 지불 조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승인 유보

2. 유고슬라비아 측 입장

- ❋ 비엔나 주재 유고슬라비아 상공회의소 및 3MAJ사는 1973.2월 주오스트리아대사에 대한 서한을 통해 상기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데 유감을 표하고 동 건 상담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주오스트리아 대사관의 협조를 요청함.
- ❋ 유고슬라비아 MASINO-IMPEX사는 1973.4월 주오스트리아대사를 통해 선박용 엔진의 수출 가능성을 타진함.

3. 정부의 조치 사항

- ❋ 대한조선공사, 대한조선 및 현대건설 등에 대해 선박용 엔진 구입 시 가급적 상기 유고 측 요청을 반영하도록 통보함.

일본 비정기여객선 유메지마루 부산 입항 문제

| 73-080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N-15 / 1 / 1-104(104p)

일본 선적 부정기 여객선 유메지마루호의 1973.3.24. 부산 입항 시 선상 선전 활동에 대한 정부의 조치 사항임.

1. 사안의 개요

- ❋ 동 선박은 부산지방해운국에 관광객 및 재일교포 수송 목적으로 입항을 신청하고 1973.3.24. 공선으로 입항 후 3.28. 출항함.
- ❋ 동 선박은 부정기 여객선임에도 불구하고 기항 중인 3.26. 부산 해운 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선상 리셉션 개최를 통해 향후 부산–오사카 간 정기 운항 계획 유인물 배포 등의 영업 광고 활동을 행함.

2. 정부의 조치 사항

- ❋ 외무부는 1973.3.30.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을 초치하고 동 선박이 상업적 활동 등을 통해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본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은 4.17. 외무부 담당관을 면담하고 동 선박은 관광객을 모집하여 한국에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항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공한을 통해 아래 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 회신을 요청함.
  - 여객선 항로 개설을 위한 정부 간 외교적 협의 필요성 및 필요시 법적 근거
  - 입, 출항 선박에 대한 한국의 항만질서법 적용 내용 및 일본 선박회사의 한국 내 대리점 설립 인가 절차
- ❋ 교통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측의 문의에 대해 5.22. 아래와 같이 회신함.
  - 여객선 항로 개설에 대한 정부 간 외교적 협의가 필수적인 요건은 아님.
  - 정기 취항 시 부산항만의 터미널 이용 및 출입국 관리상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사전 협의를 통한 원활한 조정이 바람직함.
  - 대리점 개설은 교통부장관의 사전 허가 및 승인 사항임.

3. 정부의 향후 대책

- ❋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객선의 전세 운항 및 부정기 입항을 허용함.
- ❋ 정기 여객선 취항 및 항로 개설은 한 · 일 양국 간 외교적인 절충 없이는 불허함.
-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관련 규제 및 해운 정책 현황을 파악함.

한 · 일본간 구해저전선 문제

| 73-080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N-15 / 2 / 1~204(204p)

한 · 일본 간 구해저전선 문제에 관한 제1차 실무자회의가 주일본대사관 강영규 공사와 외무성 겐조 아주국장 간에 1973.2.15.~16. 동경에서 개최됨.

1. 정부 훈령

- 대마도를 경유하는 해저전선의 분할 기점은 대마도 기점이 아닌 양국 본토의 단말 시설의 중간 지점으로 정함.
- 일본이 상기 입장에 반대하는 경우 해저전선의 분할 시점 문제 및 미군 사용료의 분할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수락 조건으로 일본 측 입장을 수용함.
- 해저전선의 분할 시점과 관련하여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일인 1945.8.15. 또는 San Francisco 대일강화조약 발효일인 1952.4.28. 등이 상정되고 있는바, 미군 사용료 분할 문제에 관한 한국 입장을 일본 측이 수용할 경우 협정에 명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함.
- 미군 사용료 분할 문제는 분할 지점 문제와 연계하여 처리하며 미국의 개입 없이 한 · 일 간에 직접 청산하도록 함.

2. 회의 결과

- 해저전선의 분할 기점에 대해 일본 측은 대마도 경유 전선의 경우 부산–대마도 중간 기점을 주장하고 한국 측은 양국 본토 단말시설의 중간 기점을 제시함.
- 분할 시점에 대해 일본 측은 대일강화조약 발효 일자를 주장하고 한국 측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일을 제시함.
- 미군 사용료 분할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은 6 · 25 전쟁 당시 미군의 사용료 청산에 관한 미 · 일 간 협약에 따라 미군으로부터 수취한 약 13억 엔 중 8,300만 엔이 한국의 수취분임을 주장한 데 대해 한국 측은 국제통신요금 분할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 수립 이후 미군 사용료 전액이 분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 양국의 기존 입장에 따른 이견으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1973.8월 중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속개하기로 함.

한 · 일본 항공협력

| 73-0806 |

생산연도	1970-1973
생 산 과	조약과/동북아1과
MF번호	N-15 / 3 / 1~13(13p)

한국-일본 간의 1970~73년 항공협력 내용임.

1. 재단법인 일본 국제의료단의 소록도 환자 치료봉사 신청

- ❁ 동 재단 대표는 1970.7.1. 주일대사를 방문하고 의료단 30명의 7월 중 일본 ANA 전세항공편 광주 또는 부산 기착 및 소록도 방문을 위한 항공기 착륙 허가 및 사증 발급을 요청함.
- ❁ 주일대사는 아래 보고를 통해 관계 당국의 동 일본 전세기의 기착 허가 여부 검토를 요청함.
  - 동경 주재 KAL 지사는 동 의료단에 대한 수송 능력이 있음에 따라 KAL 항공기 이용 유치를 희망함.
  - KAL 측은 일본 국내선 취항에만 제한되어 있던 ANA 항공사가 최근 국제선 취항을 희망하고 있으며 KAL 측으로서는 기존의 JAL 항공사와의 경합을 고려할 때 ANA 항공사의 한국 추가 진출을 견제해야 할 입장임을 설명함.
  - 동 의료단 측에 대해 정부의 허가 여부를 청훈 중이며 허가 지연에 대비하여 의료단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KAL 항공기 이용 방안 등도 고려하도록 설명할 예정임.

2. 일본 항공기의 대구 FIR(비행정보구역) 통과 요청

- ❁ 정부는 일본 외무성의 1973.6.16. 자민당 의원 등이 탑승한 일본 B-707 민항기의 하네다-상하이 간 왕복 시 대구 FIR 통과 요청을 허가함.
- ❁ 주한 일본대사관은 9월 교통부에 일본 항공기의 중국(구 중공)행 비행이 증가 추세에 있음에 따라 향후 동 항공기들의 대구 FIR 통과를 위한 정부의 허가 조치 간소화를 요청함.
  - 관계부처 회의 시 교통부는 외교 경로를 생략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를 원용하여 운항 계획 사전 통보에 따라 허가하는 방안을 제시함.
  - 외무부와 국방부는 교통부 측의 동 제안을 토대로 추후 검토하기로 함.

한국 항구(인천항 등) 차별선임 철폐 노력

| 73-0807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N-15 / 5 / 1~67(67p)

미국 주요 선주협회의 1974.1.1.자 인천항의 차별선임 인상 결정에 대한 정부의 조치임.

1. 미국 선주협회 FEC 및 PWC의 결정 내용

❋ 동 양대 선주협회는 아래 인상 요인을 이유로 1974.1.1.자로 인천항 하역 차별선임을 t당 현행 4~6달러에서 10~12달러로 인상할 계획임을 발표함.

- 한국 내륙 컨테이너 운임 등 수송비의 상승
- 부산항과 비교하여 인천항 화물 하역의 상대적인 소규모 성격
- 인천항 항만 시설의 미비 및 하역 작업의 지연

❋ 미국 선주협회 측은 동 인상 결정이 한국 측의 내륙 수송비 인하 및 인천항 확장공사 완료 시까지 한시적인 임시 조치로서 추후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2. 정부의 입장 및 조치 사항

❋ 정부는 1973.11.14. 주미대사에게 아래 입장에 따라 동 인상 결정은 합리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조치임에 따라 미국 FMC(연방해운위원회) 및 해당 선주협회에 대해 동 인상 철폐를 교섭하도록 지시함.

- 인천항 항만시설 공사로 인해 1973.5월 이후 내항이 폐쇄됨에 따라 하역 조건에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으나 잠정적인 현상임.
- 동 공사가 완료되어 하역 조건이 개선될 시점인 1974.1월부터 인상된 선임을 적용함은 부당함.
- 내륙 운송료가 1973.7월 인상된 것은 사실이나 외국에 비해 저렴한 실정으로 운송료 인상폭에 비하여 선임 인상폭이 과다하며 여타 선주협회들은 이의가 없음에도 FEC 및 PWC 2개 협회만이 인상을 결정함은 부당함.

3. 미국 측 입장

❋ 연방 FMC 측은 한국 정부 입장에 이해를 표명하고 FEC 및 PWC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 전달을 약속하는 한편 인천항 시설 개선 현황, 물동량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함.

❋ FEC 측은 1974.3.31.까지 선임 인상 시기를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인천항 시설 공사 완료 등의 추이를 보아 1974.2~3월경 재검토하기로 함.

❋ PWC 측은 경제성을 이유로 인상 결정을 재확인하고 인천항 시설 공사가 완료되고 하역이 정상화 되는 시점에 재고한다는 입장임.

한 · 동구권 국제통신 중계선로 개설

| 73-0808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특수지역과
MF번호	N-15 / 6 / 1~15(15p)

정부는 동구권과의 관계 개선 및 교역 증진 추진의 일환으로 1972.11월 동구권 비적성 공산권 국가들과의 국제 통신 개설 추진을 검토함.

1. 검토 사항

- 적성 공산국과 비적성 공산국의 구분
- 한국 선박의 입, 출항이 허용된 공산국
- 동구권 국가별 교역 현황

2. 검토 결과

- 외무부 예규(외교관 등 직무수행 기본지침)상 북한 및 월맹만이 적성 집단으로 지정되어 있음.
- 법령상 한국 선박의 공산권 입항은 금지되지 않으며 선주의 허가 요청이 있는 경우 교통부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안별로 처리함.
- 향후 교역 및 문화 교류 등이 예상되는 비적성 공산국과의 통신 수요에 대비하여 국제 통신 및 중계선로 개설 추진이 바람직함.
- 소련과의 국제통신 중계선로 개설은 전반적인 비적성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 및 양국 간의 인사, 문화 교류 및 교역 추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유익할 것으로 특히 소련에서 개최 예정인 유니버시아드대회에 한국 선수단의 참가로 국제통신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소련과의 통신 중계선로 개설이 필요함.
- 불가리아에서 1973.9월 개최 예정인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등 공산권 개최 국제회의를 감안하여 동구권과의 전반적인 국제통신 중계선로 개설이 바람직함.

3. 추진 결과

- 체신부는 1973.6월 서독 우정성 중개로 한-소련 간의 국제통신 중계선로 개설 문제를 협의한바, 소련 측은 동 개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회신함.
- 체신부는 9.20. 서독을 중개로 하는 불가리아와의 전화 및 텔렉스 통신 선로를 개설함.

한 · 일본 항공회담

| 73-0809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07-58 / 1 / 1~161(161p)

정부는 1972.12월 및 1973.3월 일본과의 항공회담을 개최함.

1. 서울 회담(1972.12.7.~9.)

- ❋ 민영환 교통부 항공국장과 시게야 일본 운수성 항공국 심의관 간에 개최됨.
- ❋ 주요 의제
  - 한국 항공사의 미국 및 동남아 운항 횟수 증편
  - 한국 항공사의 노선 확장 및 이원지점 추가
- ❋ 회의 결과
  - 금차 회의는 한국 측 제안 의제만을 토의한바, 일본 측은 한국 측 제안 사항에 대한 검토 후 차기 회담에서의 재협의를 제의함.
  - 일본 측은 한국 민간 항공사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노선 확장 및 이원지점 추가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함.

2. 동경 회담(1973.3.29.~31.)

- ❋ 김덕운 교통부 항공국장과 시게야 일본 운수성 항공국 심의관 간에 개최됨.
- ❋ 회의 결과
  - KAL의 동경 이원 운항 횟수를 1973.5.1.자로 현행 주 6회에서 8회로 증편하며 일본 노선도 현행 12회에서 14회로 증편함.
  - KAL의 B-747 점보기 도입에 따라 동 기종의 동경 이원 운항 횟수를 기존의 8회에서 10회로 증편함.
  - KAL의 동남아 노선 횟수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증편함.
  - 제주 노선의 운항 횟수는 나리타 공항 개항 공고 이후 1개월 내 양측의 협의로 결정함.
  - 일본 항공사의 점보기 운항에 대하여 한국은 조건 없이 허용함.
  - 금차 회의 결과에 대한 합의의사록을 발표함.

Vienna(오스트리아) 국제박람회 참가, 1973.9.5.-9.

| 73-081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N-15 / 7 / 1~22(22p)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73.9.5.~9.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박람회에 한국관을 개설하여 참가함.

1. 주오스트리아대사의 동 무역박람회 참가 후속 조치 및 정부의 대동구권 교역 추진과 관련한 동 박람회 전시 한국 상품에 대한 활용 방안 건의에 따라 동 전시 상품 일부를 대사관 수출 진흥 현지 대리업체인 Losch사에 전시하고 동구권 국가 구매사절단, 수입업체에 대한 한국 상품 소개 및 상담에 활용함.

2. 비엔나 주재 북한무역대표부는 1973.1월 동 박람회 주최 당국을 접촉하여 1,000m^2 규모의 전시 공간 확보를 교섭하였으나 기술적인 이유로 최종 불참을 통보함.

3. 중국(구 중공)은 1965년 동 박람회 참가 이후 최초로 대규모 중국관을 개설하여 섬유, 문구류, 전자제품 등의 상품을 출품함.

Plovdiv(불가리아) 국제박람회 참가, 1973.9.3-10.

| 73-081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정책과/동구과
MF번호	N-15 / 8 / 1~74(74p)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73.9.3.~10. 불가리아 Plovdiv 국제박람회에 참가함.

1. 참가 경위

- ❁ 주베이루트통상대표부는 1973.7월 대동구권 및 불가리아 교역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레바논 SEEC사를 통해 동 박람회 국제관에 한국 상품 출품 및 전시를 아래와 같이 건의함.
  - 서울통상(주)은 1972년 SEEC사를 통해 19,962달러 상당의 가발 1만 개를 불가리아에 수출한 바 있음.
  - SEEC사는 불가리아와의 교역을 전문으로 하는 수출업체로 매년 500만 달러 규모의 대불가리아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동 수출 품목의 상당 부분은 한국에서 공급이 가능한 품목임.
  - 동사를 통해 국제관에 한국 상품을 대리 전시하는 방안을 건의함.
- ❁ 상기 건의에 따라 KOTRA는 전자제품, 섬유류, 기계류, 신발 및 잡화제품 등 204개 품목을 출품함.

2. 참가 결과 및 후속 조치

- ❁ 총 36개국이 참가하였으며 북한은 불참함.
- ❁ 총 240,155달러의 국산 의류 및 신발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불가리아 측 수입 관심 품목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짐.
- ❁ 정부는 1974년 동 박람회 직접 참가를 위해 양국 상공회의소 등 경제 관련 단체들 간의 교류, 민간협정 체결 가능성 등을 검토함.
- ❁ 베이루트 주재 KOTRA 소장은 동 박람회 폐막 직후 불가리아를 방문하여 박람회 주최 당국,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차기 박람회 참석 문제, 거래 알선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함.

Leipzig(동독)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 73-081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N-15 / 9 / 1~17(17p)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의 1973년 동독 Leipzig 박람회 등 동구권 개최 국제박람회 참가 현황임.

1. Leipzig 춘계박람회(1973.3.11.~18.)

- 합성수지, 의류, 신발류, 공예품 등 17개 품목의 200여 개 상품을 출품함.
- 한국 상품 출품과 함께 동독이 서방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중 한국이 수출 가능한 주요 품목 현황을 파악함.
- 동 박람회 참가 중 316,515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1,705,958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체결함.

2. Leipzig 추계박람회(1973.9.2.~9.)

- 암스테르담 무역관 현지 직원을 파견함.
- 참가국 및 출품 품목 현황을 파악하여 차기 동 박람회 참가에 대비함.

3. 불가리아 Plovdiv 국제박람회(1973.9.3.~10.)

- 레바논 SEEC사를 통해 185개 한국 상품을 대리 출품함.
- 의류, 신발류 등 240,155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체결함.

4. 유고슬라비아 Zaghrev 추계박람회(1973.9.6.~16.)

- 유고슬라비아 현지 Winex 및 Universal 상사를 통해 의류 등 119개 상품을 대리 출품함.
- 한국 상품 관리 및 향후 동 박람회 직접 참가 가능성 타진을 위해 비엔나 무역관장을 파견함.

Budapest(헝가리) 국제박람회 참가, 1973.5.18.-28.

| 73-081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정책과/동구과
MF번호	N-15 / 10 / 1~50(50p)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73.5.18.~28. 헝가리 Budapest 개최 국제박람회에 오스트리아 상사를 통해 한국 상품을 출품함.

1. 간접 참가 경위

- ❋ 오스트리아 동구 전문 무역상사인 Montedor사는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을 통해 동 박람회에 한국 섬유제품 대리 출품을 제의하고 한국 상품의 수출 상담 주선 희망을 표명함.
- ❋ KOTRA는 한국 상품의 대동구권 소개 및 수출 증진의 견지에서 동 박람회 간접 참가를 추진함.

2. 참가 결과 및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의 평가

- ❋ 한국 섬유제품의 동구권에서의 경쟁력 및 향후 수출 가능성을 확인함.
- ❋ 출품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상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제품 표시를 부착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 상품 소개 성과를 이루지 못함.
- ❋ 동구권 개최 국제박람회 중 직접 참가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대리 또는 간접 참가의 효과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직접 거래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Poznan(폴란드) 국제박람회 참가, 1973.9.23.-30.

| 73-081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N-15 / 11 / 1~7(7p)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73.9.23.~30. 폴란드 Poznan 개최 국제박람회 간접 참가를 위해 아래와 같은 계획을 수립함.

1. 한국 상사의 직접 참가가 불가능함에 따라 네덜란드 Vlemtex사를 통해 120여 종의 섬유제품을 한국 상표를 부착하지 않고 동사 명의로 출품함.

2. 암스테르담 무역관 현지 직원을 파견함.

Zagreb(유고슬라비아) 국제박람회 참가

| 73-0815 |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N-15 / 12 / 1~100(100p)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73.9.6.~16. 유고슬라비아 Zagreb 추계 국제박람회에 간접 참가함.

1. 참가 경위

- KOTRA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간경제사절단의 1971.9월 유고슬라비아 방문 시 동 국제박람회 참가를 제안하고 세부 교섭을 진행한바, 유고슬라비아 측은 12월 전시 장소 부족 등의 이유로 한국 측에 전시 장소를 할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회신함.
- 주오스트리아대사의 비엔나 소재 유고슬라비아 상공회의소와의 교섭 결과로 KOTRA는 동국 Winex사를 통해 1972.4월 춘계박람회에 간접 참가하여 최초로 태극기 및 국명을 게시한 전시를 실현하는 한편 94,000달러 상당의 수출을 체결함.
- 한국 사업인단의 1973.8월 유고슬라비아 방문 시 KOTRA의 동국 Winex 및 Universal사를 통한 9월 개최 동 추계박람회 간접 참가에 합의함.
- 한국의 직접 참가 제안에 대해 유고슬라비아 측은 북한의 반발에 따른 마찰 가능성 등 정치적인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함.

2. 참가 결과

- 섬유제품 등 119개 품목을 출품함.
- Winex사는 65,000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함.
- Universal사는 양식기, 섬유원단 수출 상담을 시행함.

KOTRA 해외사무소 신설 및 사무소장 파견

| 73-081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N-15 / 13 / 1~22(22p)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80년대 초 100억 달러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해외전진기지 구축을 위하여 1973.6.29.자로 23개 해외 사무소 신설 및 9.1. 이전 동 신설 사무소 무역관장 파견을 결정함.

1. 사무소장 인선 완료 19개 신설사무소

- 아시아지역: 쿠알라룸푸르, 다카, 카불, 카라치, 수라바야
- 대양주지역: 오클랜드
- 북미지역: 애틀랜타, 덴버, 시애틀, 마이애미
- 중남미지역: 멕시코시티
- 구주지역: 오슬로, 헬싱키, 코펜하겐, 서베를린, 아테네
- 아프리카지역: 아비장, 킨샤사
- 중동지역: 카이로

2. 기타 4개 개설 예정 사무소

- 더블린, 트리폴리, 라스팔마스, 앙카라

3. 동 신설 업무 지원을 위한 1973.7.13.자 정부의 관련 재외공관에 대한 지시 사항

- 주재국 당국에 대해 KOTRA 사무소가 비영리 정부기관임을 설명하고 동 설치가 허용되도록 교섭함.
- 주재국 정부가 동 신설사무소 및 소속 직원에 대해 주재국 내 제3국의 동일한 기관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교섭함.
- 상기 교섭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동 신설사무소가 주재국 내에서 시장조사 및 거래알선 등 수출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예상되는 제반 제약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보고함.
- 다카, 카불 등 상주공관 미설치 지역 내 신설 예정인 사무소 및 소속 직원의 활동 등에 예상되는 제반 애로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시행함.

KOTRA 해외조직의 지위 향상 및 무역관장의 외교관여권 발급문제

| 73-081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N-15 / 14 / 1~35(35p)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해외 사무소의 지위 문제 등과 관련하여 1973.3월 동남아지역 무역관장회의 시 제기된 대정부 건의 사항에 대한 정부 입장임.

1. 해외사무소의 Trade Commissioner 또는 Trade Office 등 정부기관으로의 등록 건의

- KOTRA는 정부기관이 아님에 따라 동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여사한 입장은 1971.7.5. 외무부에서 KOTRA 측에 기 통보한 바 있음.
- KOTRA 해외주재원의 임무는 민간업체 접촉이 주 목적인 만큼 정부대표 자격보다는 현재의 준민간기관 소속 직원으로서 활동함이 타당함.
- 전시품 직송 문제는 현재 현지 공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음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임.

2. 재외공관에 대한 무역 관련 문의 내용을 KOTRA에 통보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수출 진흥 추진

- 재외공관으로부터의 모든 거래 알선 요청은 우선적으로 KOTRA에 전달 중임.
- 동 건에 관해서는 외무부의 재외공관으로부터의 문서 및 전문 처리 지침을 통해 이미 KOTRA에 통보한 바 있음.

3. 무역관장에 대한 외교관여권 발급

- 상기 1항 입장과 같이 KOTRA는 정부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음.
- 관용여권 발급에 따른 KOTRA 직원들의 임무 수행상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Copenhagen(덴마크) KOTRA 사무소

| 73-081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N-15 / 16 / 1~14(14p)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73.11.27. 덴마크 Copenhagen에 사무소를 개설함.

1. 주덴마크대사관의 1973.11.7.자 외무성에 대한 상기 개설 통보 공한 요지

- 양국 간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준정부기관인 KOTRA가 11.27.자로 개설될 예정임.
- 동 사무소는 아래 임무를 수행 예정임.
  - 시장조사 및 수출입 업무 관련 편의 제공
  - 국제 무역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 한국 경제 및 무역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 대사관의 무역 진흥 업무 지원
- 동 사무소 소속 직원들에 대해 주재국 내 제3국의 유사한 기관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편의 제공을 요청함.
- 덴마크 관계당국 및 관련 민간기관들에 대해 동 사무소에 대한 편의 및 협조 제공을 통해 원활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동 개설 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2. 덴마크 외무성의 1973.12.12.자 회신 요지

- 정부 관계당국 및 관련 민간기관들에 대해 동 개설을 통보함.
- 동 사무소 소속 직원들에 대한 편의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검토 중임.

Cairo(이집트) KOTRA 사무소

| 73-081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N-15 / 17 / 1~22(22p)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의 1973년 이집트 Cairo 사무소 개설 추진 관련 사항임.

1. 주카이로총영사의 1973.9.6.자 관련 보고

- 무역관장의 8.29. 부임과 관련하여 국영무역제도를 시행 중인 이집트의 체제상 KOTRA의 활동 대상이 주로 정부기관이 될 것임에 따라 사무소 설치 인가 및 체류 문제 등의 해결이 용이하도록 사무소장을 대사관 상무관(Attache) 직명으로 준외교관 형식으로 외무성에 등재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무역관장의 지위와 관련하여 이민 당국 및 노동성과의 그간 협의 결과에 비추어 상기 방안 외 의 절차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됨.

2. 정부의 1973.9.19.자 회신

- KOTRA는 법인으로 동 공사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해외공무원 주재 법령을 준용할 수 없음에 따라 Attache 직명을 부여할 수 없음.
- 주재국 측에 대해 KOTRA가 전액 정부 출자에 따른 비영리기관으로 관할 공관장의 지휘 감독하에 아래 목적으로 임무를 수행함을 설명하여 무역관장에 대한 체류 허가 및 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도록 교섭을 시행함.
  - 무역 거래 알선
  - 한국 상품 및 경제에 관한 정보 자료 제공
  - 한국상품전시회 현지 개최 및 국제박람회 참가

Helsinki(핀란드) KOTRA 사무소

| 73-082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N-15 / 18 / 1~12(12p)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73.8월 핀란드 헬싱키에 사무소를 개설함.

1. 주핀란드통상대표부 공사의 1973.8.9.자 관련 보고

- 핀란드 관계당국에 KOTRA가 비영리 정부 관리 기관으로 동 소속 직원은 관용여권을 소지하며 공관장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함을 설명함.
- 핀란드 측은 동 소속 직원들에 대해 대표부 행정 요원으로서의 지위를 제공할 것에 합의함.
- 따라서 동 사무소 및 소속 직원들은 모든 조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 관세상의 특전을 향유함.

2. 사무실 설치 관련 사항

- KOTRA 측은 사무소를 대표부 내 설치하거나 별도의 사무소 설치도 가능하다는 입장임.
- 주핀란드통상대표부는 대표부 사무실 사정으로 동 사무소의 대표부 내 설치가 어려움에 따라 시내 중심부에 별도의 사무소 설치를 건의함.

Athens(그리스) KOTRA 사무소

| 73-082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N-15 / 19 / 1~16(16p)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의 1973년 그리스 아테네 사무소 개설 추진 관련 사항임.

1. 주그리스대사관 관계관은 1973.8.24. 외무성 경제국 담당관을 면담하여 동 사무소 개설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요청한바, 그리스 측은 동 개설 계획을 환영하며 가능한 협조 제공을 약속함.

2. 정부는 1973.8.20. 주그리스대사에게 그리스 측에 아래 사항을 설명하고 관련 협조를 요청하도록 지시함.

- 동 사무소는 비영리 정부 관리 기관으로 소속 직원들은 정부의 공무원 해외 주재 규정에 따라 관용여권을 소지하며 공관장의 지휘감독하에 임무를 수행함.
- 요청 사항
  - 본국에서 송부되는 전시 목적의 견본 상품, 홍보 간행물 및 전도예산 등에 대한 조세 면제
  - 동 사무소와 유사한 제3국의 기관에 부여되는 동일한 지위 부여
  - 별도 사무실 설치를 위한 편의 제공

3. 주그리스대사는 1973.11.16.자 외무성에 대한 공한을 통해 관련 협조를 요청하고 아래 보고함.

- 대사관 소재 건물 내에 전시 공간을 포함하는 사무실을 임차함.
- 효과적인 대외 통상 진흥 활동을 위해 동 사무소 내 전시할 상품 견본 송부를 건의함.

Abidjan(코트디봐르) KOTRA 사무소

| 73-082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N-15 / 20 / 1~12(12p)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의 코트디부아르 Abidjan 사무소 개설과 관련한 주코트디부아르 대사의 1973.10.25.자 보고 내용임.

1. 코트디부아르 외무성은 1973.10.25. 아래 동의 공한을 전달해 옴.

- ❁ 동 Abidjan 사무소 개설에 동의함.
- ❁ 동 사무소의 상업 활동 및 상업적 대리 활동은 허용하지 않음.

2. 주재국 당국은 동 사무소 및 소속 직원들에 대해 Abidjan 주재 이탈리아 무역사무소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준외교관 지위를 부여하는 데 동의함.

Kuwait(쿠웨이트) KOTRA 사무소

| 73-0823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통상3과/중동과
MF번호	N-15 / 21 / 1~18(18p)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쿠웨이트 사무소의 1973년 무역관 승격 추진 관련 사항임.

1. 주쿠웨이트통상대표부 공사의 1973.1.10. 및 2.7.자 관련 보고

- 1972년 통상대표부 설치 이후 한국의 대쿠웨이트 수출 신장 추세 및 1973년 800만 달러 수출 목표 달성 활동 강화를 위해 KOTRA 사무소의 무역관 승격이 바람직함.
- 사무소장 교체와 관련하여 체류 문제, 동 사무소의 법적 지위 문제 및 활동상의 제한 완화를 위해 신임 사무소장에 대한 대표부 행정요원으로의 대외직명 부여 검토를 건의함.
- 동 승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사무소 직원 1명 증원을 요청함.
- 한국 상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KOTRA 상설전시장 설치를 건의함.

2. KOTRA 사무소의 본부에 대한 1973.3.5.자 요청

- 신임 사무소장의 부임에 따른 체류 허가 문제 해결을 위해 동 신임 사무소장을 대표부의 일원으로 등록하여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쿠웨이트 통상성과 양해함.
- 동 방안에 대한 정부의 허가를 건의함.

3. KOTRA 본부의 1973.4.18.자 관련 결정

- 동 사무소의 무역관 승격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쿠웨이트 수출시장 규모와 예산 및 인원 사정을 고려하여 당분간 기존의 사무소 체제를 유지함.
- 향후 쿠웨이트에 대한 수출 규모 확대 추이에 따라 무역관으로의 승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Oslo(노르웨이) KOTRA 사무소

| 73-082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N-15 / 22 / 1~11(11p)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의 1973.10월 노르웨이 Oslo 사무소 개설과 관련한 주노르웨이대사 보고임.

1. 노르웨이 외무성은 KOTRA 사무소 개설을 위한 협조 요청에 대해 1973.8.16.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식 공한으로 제의하면 법적 문제 등 세부 사항을 검토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답변함에 따라 공한을 통해 관련 협조를 요청하기로 함.

2. 외무성과 협의 결과 동 사무소를 대사관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기로 1973.10.23. 합의하였으며 사무소장은 9.7. 부임 후 임시로 대사관 내에서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추후에 별도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임.

Auckland(뉴질란드) KOTRA 사무소

| 73-082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N-15 / 23 / 1~16(16p)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의 1973.9.1. 뉴질랜드 Auckland 사무소 개설과 관련한 주뉴질랜드 대사 보고임.

1. 외무성에 대한 1973.7.25.자 공한을 통해 동 개설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상공성과 관련 사항을 협의한바, 뉴질랜드 측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

- ❋ 뉴질랜드 정부의 사전 승인은 필요하지 않음.
- ❋ 동 사무소에 전시할 상품 견본 및 각종 홍보 책자에 대한 면세 통관 편의를 제공함.
- ❋ 한국과 뉴질랜드 간에 2중과세 면제협정이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소속 직원의 급여는 과세 대상이며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는 외교 특권이 부여되지 않음.

2. 뉴질랜드 외무성은 1973.9.6. 동 사무소 개설에 동의하는 아래 회신 공한을 전달해 옴.

- ❋ 동 사무소의 9.1.자 개설에 동의함.
- ❋ 뉴질랜드 관계당국이 이미 동 사무소의 개설과 관련한 협조를 제공하고 있음.

Jeddah(사우디아라비아) KOTRA 사무소

| 73-082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N-15 / 24 / 1~18(18p)

KOTRA(대한무역공사)의 1973년 사우디아라비아 Jeddah 사무소 개설 추진 관련 사항임.

1. 추진 경위

- 정부는 1973년 중 사우디아라비아의 행정수도인 Jeddah에 대사관 개설을 추진 중이며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수출이 매년 증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수출 증진을 위한 KOTRA 사무소 설치를 검토함.
- 특히 Suez 운하 재개통 이전에 동 지역에 대한 한국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해 민간 상사의 진출, 한국 상품 종합전시장 개설 및 체계적인 무역 거래 알선을 위한 KOTRA 사무소 개설을 추진함.

2.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대한 개설 인가 교섭을 위한 정부의 1973.4.6.자 교섭 방안 수립

- 동 사무소는 정부기관으로 대사관 산하에 설치하며 독립된 기능을 수행함.
- 사무소 소속 직원의 신분은 정규 외교관과 구별될 것임.
- 경우에 따라 대사관 내에 동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
- 그간 주터키대사를 통해 시행해 온 관련 교섭을 신설 예정인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 시행함.

3.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기존 입장

- 주터키대사를 통한 그간의 교섭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측은 1972.12.4. 아래 내용을 회신함.
  - KOTRA가 민간 기관일 경우 상사 설치법에 따라 지사를 설치함.
  - 정부 기관일 경우 Jeddah 주재 한국 명예영사관 소속으로 설치함.
- 주터키대사는 형식상 Jeddah 주재 명예영사관 소속으로 설치할 것을 건의함.

4. 정부의 신임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에 대한 1973.6.15.자 지시

- 상기 2항 지침에 따라 교섭을 계속 추진함.
- KOTRA는 독립 기관임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요청한 공관 소속으로의 설치가 어려움을 설명함.

Kinshasa(자이르) KOTRA 사무소

| 73-082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N-15 / 25 / 1~12(12p)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73.11.1. 자이르 Kinshasa에 사무소를 개설함.

1. 주자이르대사관 관계관은 1973.10.25. 외무성 담당관을 면담하여 아래 내용의 공한을 전달하는 한편 KOTRA가 비영리적인 정부기관임을 설명하고 양국 간 무역 증진을 위해 사무소를 설치 예정임을 설명함.

- ❋ 양국 간 무역 증진을 위한 KOTRA 사무소를 11.1.자로 대사관 내에 개설 예정임.
- ❋ KOTRA는 한국 상공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전 세계 50개국에 65개의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음.

2. 외무성 측은 KOTRA 사무소 개설에 동의하며 정부기관인 만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며 관계부처와 협의 후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이라고 답함.

3. 주자이르대사대리의 현지 일본 JETRO(일본대외무역진흥회) 사무소장 면담 시 동 소장은 3년 전 JETRO 개설 당시에도 별도 절차 없이 대사관 명의 설치 공한 통보를 통해 업무를 수행 중임을 확인함.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제23차. Wellington (뉴질란드) 1973.11.27.-12.6.

| 73-082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조사과
MF번호	N-15 / 27 / 1~335(335p)

1.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은 1973.6.20. 외무부에 제23차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개최 관련 아래 내용을 공한으로 통보함.

- 회의 일자 및 장소: 11.27.~12.6. 뉴질랜드 웰링턴
- 한국대표단 명단은 9월 중순, 한국의 보고서는 7.31.까지 제출 요망

2. 외무부는 1973.11.16. 상기 국제회의 참가 정부대표단을 아래 임명하고 훈령함.

- 대표단: 최형섭 과기처장관(수석대표) 외 박영 주뉴질랜드대사대리, 과기처 및 한국은행 관계자
- 일반 훈령
  - 콜롬보플랜을 통한 향후 지속적인 원조 규모 확대 필요성 강조, 한국과 동남아지역 간의 과학기술 협력체제 수립 및 한국의 기술용역 진출 가능성 모색, 수원국의 필요에 의한 원조가 가능한 방안을 검토, 교섭
- 세부 훈령
  - 선진국과 개도국 간 합작투자를 통한 기술이전 필요성 강조, 차기 총회 주최국의 특별과제 제의 시 가급적 지지, 기술공업교육대학 설립 지지, 1975년 이후 한국 전문가 파견 교섭, 파푸아뉴기니의 신규 회원국 가입 지지

3. 주호주대사는 1973.12.18. 최형섭 과기처장관의 12.12.~20. 호주 방문 결과를 아래 보고함.

- 과학상 및 광물 · 에너지상 면담, 호주 과학계 고위 관계자와 양국 간 기술협력 방안 협의
- 영연방 CSIRO(과학 · 산업연구기구)와 한국 KIST 간 과학자 상호 교류에 관한 기술협력 제의

4. 과학기술처는 1974.1.22. 외무부에 제23차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참가보고서를 송부함.

- 주요 합의 사항
  - 파푸아뉴기니를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 승인 (총 회원국은 27개국)
  - 기술교육대학의 싱가포르 설립 계획 확정, 한국 측은 기술교수 1명을 동 대학에 6개월간 파견
  - 차기 특별과제 선정: '국제기술협력의 신국면'
  - 1975년도 회의 주최국은 콜롬보, 1976년 주최국은 미국으로 결정
- 정부대표단 활동
  - 수석대표는 각료회의 개회 시 Kirk 뉴질랜드수상 개최사에 대한 답사 시행
  - 김형기 대표가 행정관회의 의장으로 피선

CEAO(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 회의. Abidjan (코트디봐르)

| 73-082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N-15 / 29 / 1~13(13p)

1.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73.4.6. CEAO(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 회의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 ❋ 개최 일자: 각료회의는 4.9.~15., 정상회의는 4.16.~18.
- ❋ 장소: 아비장
- ❋ 참가국: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등
- ❋ 주요 의제
  - 1972.6월 말리 회의 시 합의한 공동체조약 서명 문제
  - 나이지리아 등 영어 사용권 국가의 동 기구 가입 문제

2. 외무부는 1973.4.16. 주코트디부아르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함.

- ❋ CEAO 회의 참석 예정인 말리, 모리타니 양국 대표단에 정부의 양국과의 관계 개선 희망을 전달함.
- ❋ 첫 단계로 무역 · 경제 분야에서 양국 간 실리 증진을 위한 협력관계 수립 및 동 협력관계 추진을 위해 무역 · 경제협력사절단 파견 및 초청 용의가 있음을 설명함.

3.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73.4.19. CEAO 정상회의 개최 결과를 아래 보고함.

- ❋ 의장에 디오리 니제르 대통령을 선출하고 상설 사무기구를 와가두구에 설치하기로 결정함.
- ❋ 당초 8개국이 참가 예정이었으나 베냉(구 다호메이) 및 토고가 불참하고 모리타니, 말리,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세네갈 6개국만 참석함.
- ❋ 말리, 모리타니 재무경제상(외상 불참) 면담을 추진한바, 동 대표단의 일정상 실현되지 못함.
  - 당지 모리타니대사관은 동국 재무경제상의 출발 시간 촉박에 따른 사정으로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 양해를 구함.
  - 지시 사항 이행을 위해 모리타니 대사 및 말리 총영사를 추후 면담 예정임.

4.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73.4.19. CEAO 정상회담 개최 결과를 아래 추가 보고함.

- ❋ 6개국 정상은 1972.6월 말리에서 서명된 동 공동체조약 각 의정서에 서명함.
- ❋ 베냉 및 토고의 불참은 나이지리아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관측되는바, 양국은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등 부유한 국가 주도하의 동 경제공동체에 나이지리아가 참석하지 않는 한 불참할 의향임을 밝힌 바 있음.
- ❋ CEAO가 토고, 베냉 등의 이탈에 따라 정치, 외교 중심의 공동체로부터 새로운 다목적 협력체제로 변화할 가능성도 전망됨.

아르헨티나 정세

| 73-083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O-36 / 1 / 1~276(276p)

1.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73.3.11. 주재국 대통령 선거 결과 Peron파의 Campora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동 후보의 선거 공약 정강에 북한, 월맹 및 쿠바와의 국교 수립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함.

2.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73.5.1. 주재국 군사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했음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향후 대책의 일환으로 특별활동비 지원, 유력 인사 방한 초청, 특사 파견 및 공관원 증원 등을 건의함.

- ❁ 동 선거 이후 납치 사건, 군 고위 간부 살해 등 치안 불안이 지속되어 온바, 4.30. 전 합참의장 피살 사건을 계기로 국내 치안 악화에 대비한 긴급조치의 성격임.
- ❁ 마드리드에 체류 중인 Peron을 방문 중인 Campora 당선자가 5.2. 귀국함.

3. 외무부는 1973.6.7. 대통령에게 아르헨티나 사태에 관해 아래 보고함.

- ❁ Campora 신임 대통령이 5.25. 취임하였으며, 선거 공약에 따라 6.1. 북한과의 수교를 발표함.
- ❁ 북한과의 수교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대한국 정책 변화가 예상되며, 유엔 및 국제기구에서 한국 입장에 반대 또는 기권할 가능성이 예상됨.
- ❁ 동 수교는 중남미에서 아르헨티나의 위상에 비추어 여타 역내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4.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73.6.15. 신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명의의 축전 전달 및 이에 대한 회신 접수를 보고함.

5. 주아르헨티나대사는 Campora 대통령이 1973.6.14. 스페인을 방문하여 18년간 스페인에서 망명 중인 Peron과 동행하여 6.20. 귀국했음을 보고함.

6.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73.7.13. Campora 대통령이 Juan Peron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사퇴하는 한편 30~4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며 임시 조치로 신임 과도정부 대통령 권한대행 및 외상이 각각 취임하였음을 보고함.

7.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73.8.9. 주재국 정세를 아래 보고함.

- ❁ Peron당은 8.4. 대통령 후보로 Juan Peron, 부통령 후보로 Isabelle Peron을 지명함.
- ❁ 동 지명은 당내 분열을 무마하는 한편 현 사태하에서 다른 인사의 지명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됨.

8.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73.9.23. Peron 부처가 61%의 득표로 대통령과 부통령에 당선되었음을 보고함.

9. 외무부 중남미과는 1973.9.26. 아래 'Peron 재집권 문제' 자료를 작성함.

❋ 재집권 경위, 정치 이념 및 약력
❋ 한국 및 북한과의 관계
❋ 향후 대책
- 아르헨티나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10.12.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를 파견함.
- 신정부 유력 인사에 대한 방한 초청을 통해 친한 세력을 구축하는 한편 아르헨티나 신정부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 동향에 대처함.
- 북한의 활동 강화에 따라 교민이 포섭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처함.

10.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73.10.14. Peron 대통령 당선에 대한 대통령 명의 축전 전달 및 이에 대한 회신 접수를 보고함.

방글라데시 정세

| 73-083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O-36 / 2 / 1~25(25p)

1, 주뉴델리총영사는 1973.3.7. 실시된 방글라데시 총선거 최종 결과를 3.15.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총 315석 중 간접선거 대상 의석 15석 및 보궐선거 대상 1석을 제외한 299명 중 현 집권당(Awami League)이 291명, 기타 야당 3당이 각 1명, 무소속 5명이 당선됨.
- Rahman 수상은 3.8. 기자 간담회를 통해 여당의 압도적 승리는 방글라데시 국민 전체의 승리이며, 동당의 4대 원칙인 민족, 민주, 사회, 세속주의를 국민이 승인한 것이라고 언급함.
- 인도 간디 수상 및 Sharma 국민의회당 당수는 Rahman 수상에게 축전을 발송함.
- 인도 측에서는 반인도적인 야당이 동 선거에서 완패한 데 대해 안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 여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3.12. 전체회의에서 Rahman을 당수로, Islam 전 공업상을 부당수로 각각 선출함.
- 신내각은 2~3일 내 구성될 예정으로 현 각료 대부분이 유임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무상 및 외상은 경질될 가능성이 있음.

2. 주뉴델리총영사는 1973.3.17. 방글라데시 신임 외상에 Kamal Hossain 전 법무상이 임명되었음을 보고함.

3. 주뉴델리총영사는 1973.4.8. 방글라데시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A. S. Chowdhry 신임 대통령이 여당 추천 단일후보로 무투표로 5년 임기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을 보고함.

4. 주뉴델리총영사는 1973.9.5. 다카발 외신이 중국(구 중공)이 방글라데시를 승인할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음을 보고함.

- 중국은 랑군 주재 중국대사관을 통해 방글라데시와 무역 및 문화 교류를 제의함.
- 방글라데시가 동 제안을 수락할 경우 중국은 파키스탄에 앞서 수주일 내에 방글라데시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됨.

미얀마(구 버마) 정세

| 73-083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O-36 / 3 / 1~48(48p)

1. 주랑군총영사는 1973.6.6. 네윈 수상이 지역협력 문제 및 연안 유류 개발 등 문제 협의를 위해 인도네시아(6.11.~14.) 및 말레이시아(6.14.~17.)를 방문할 예정임을 보고함.

2. 주자카르타총영사는 1973.6.14. 미얀마(구 버마) 네윈 수상의 6.12.~14. 인도네시아 방문 결과를 아래 보고함.

- ❋ 네윈 수상은 대통령 등 주요 인사와의 회담을 통해 지역협력 및 공동 관심사에 관해 협의하고, 국영석유공사 사장으로부터 석유공업 개발 경험 및 석유 분야 외국 투자업체와의 협력에 관한 설명을 청취함.
- ❋ 동 방문을 통해 전통적인 양국 간 우호관계(인도네시아의 대네덜란드 독립투쟁 시 미얀마의 지원, 1972년 쌀 파동 시 미얀마의 쌀 공급 등)를 돈독히 한 것으로 평가됨.

3. 주랑군총영사는 1973.6.19. 네윈 수상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방문 결과를 아래 보고함.

- ❋ 인도네시아 측과 미얀마의 대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계, ASEAN 주도의 동남아 중립화 문제에 관해 협의함.
- ❋ 말레이시아 방문 시 동남아 중립화 방안, 네윈 수상이 제의한 동남아평화회의 문제, ASEAN 확대 문제, 인도차이나 문제 등을 협의하는 한편 말레이시아와 중국(구 중공)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4. 주랑군총영사는 1973.10.12. 및 11.2. 미얀마 사회주의계획당 제2차 전당대회 결과를 아래 보고함.

- ❋ 네윈 수상은 10.8.~21. 개최된 동 전당대회에서 아래 요지로 미얀마 경제개발에 관해 연설함.
  - 경제개발 20년계획(4개년계획의 연속)의 목표는 생활수준의 향상, 경제구조의 공업화, 생산의 사회주의화 실현에 있음.
  - 동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 동 대회 토의 사항은 일체 발표된 바 없으나 당 핵심조직 개편, 신헌법안 인준, 경제개발 20년 계획 인준 및 당 조직 강화 등이 토의된 것으로 관측됨.

5. 주랑군총영사는 1973.12.7. 미얀마 제2차 전당대회에서 채택되어 공포된 신헌법 제3안 개요를 아래 보고함.

- ❋ 미얀마 사회주의계획당 중심의 단일 정당 제도를 기반으로 인민의회 주도의 입법부 절대 우위 체제 채택
- ❋ 인민의회가 국가 최고 권력기관으로 모든 행정, 사법권은 동 의회의 위임에 따라 시행
- ❋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등 6개 원칙 채택
- ❋ 국제 평화와 우호관계를 목표로 독자적 외교정책 및 평화 공존 추구

브라질 정세

| 73-083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O-36 / 4 / 1~16(16p)

1. 주브라질대사는 1973.6.14. 및 6.19. 주재국 정세에 관해 아래 보고함.

❁ 메디시 브라질 대통령은 1964년 혁명 이후 4번째로 취임할 대통령 후보로 E. Geisel 석유공사 총재(퇴역 육군대장으로 현 육군장관의 동생)를 공식 지명함.

❁ 대통령 선출 절차는 군부가 추천한 4성장군 중 대통령이 지명하여 국회에 통고하면 국회는 502명의 선거인단이 1974.1.15.까지 선출하는 방식으로 1974.4.1. 신임 대통령이 취임 예정임.

❁ 야당은 당내 분열로 인해 후보 공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당이 군부 출신 인사를 지명한 데 대해 조속한 민주정체로의 이행을 촉구함.

2. 주브라질대사는 1973.6.25. 메디시 대통령이 차기 부통령 후보로 현 최고군사재판소장인 A. P. Dos Santos 육군대장을 공식 지명하여 발표했음을 보고함.

❁ 동 장군은 현 대통령과 육군사관학교 동창으로 동향인 Rio Grande Do Sul 출신임.

❁ 동 지명은 부통령은 민간인 출신이어야 한다는 예상에 반하는 조치로 군사정권의 차기 정권까지 연장 지속이 확실해짐에 따라 조속한 민정 이양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3. 주브라질대사는 1973.9.5. 야당의 대통령 후보자 지명 등 주재국 정세에 관해 아래 보고함.

❁ 야당인 브라질 민주운동(MDB)은 9.4. 대선에 출마할 대통령, 부통령 후보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
- 대통령 후보는 Guimaraes 현 야당 총재(상파울루 출신 하원의원)
- 부통령 후보는 B. L. Sobrinho 야당 정치인

❁ MDB는 9.21.~22. 전당대회에서 동 후보들을 공천 예정이며, 여당인 ARENA당은 9.14.~15. 후보 공천 전당대회를 개최 예정임.

❁ 야당은 동 후보 결정을 통해 선명성 및 이미지 제고를 의도함.

4. 주브라질대사는 1973.9.17. 여당 대통령 후보 지명 등 주재국 정세에 관해 아래 보고함.

❁ 여당 ARENA당은 9.14.~15. 전당대회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Geisel 장군, 부통령 후보로 Santos 장군을 추대 공천함.

❁ Geisel 대통령 후보는 동 전당대회에서 아래 요지로 연설함.
- 1964년 군사혁명 이념 구현을 위한 전 정권의 성공적 업적을 계속 추진,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만 수정
- 남미 제국 간 단결 모색, 국제 협약의 성실한 이행 및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국력 증강

❁ 대내 · 외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베넹(구 다호메이) 정세

| 73-083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O-36 / 5 / 1~12(12p)

1.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73.1.16. 베냉(구 다호메이)과 중국(구 중공) 간의 관계에 관해 아래 보고함.

❋ 베냉 각의는 1.11. 중국과의 외교관계 재개를 결정하는 한편 동 외상이 중국에서 서명한 경제, 재정 및 기술에 관한 제 협정을 비준함.

❋ 베냉 외상은 중국 방문 후 1.14.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베냉에 4,500만 달러의 장기 차관을 제공키로 했음을 발표함.

2.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73.3.1. 및 3.5. 베냉 쿠데타 발생 관련 아래 보고함.

❋ 3.1.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냉 현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음모자들이 체포됨.

- 동 주동자는 Alley 대령 등 일부 군부 인사이며, 민간인도 포함됨.
- Alley 대령은 1967년 쿠데타로 집권 이후 1968.1~7월간 국가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베냉 국립석유회사 관리인으로 재직 중임.

❋ 향후 현 Kerekou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고 좌경 노선으로 선회할 것으로 관측됨.

❋ 동 대통령은 3.1. 쿠데타 음모 사건에 프랑스가 관여하지 않았음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 2.28. 반프랑스 소요 및 난동 사건은 일부 좌익계 학생 및 시민들이 주도함.
- 프랑스 정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

3.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73.3.16. 베냉 대통령이 3.13. 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외정책을 아래와 같이 밝혔음을 보고함.

❋ 비동맹, 무력을 통한 국제 분쟁의 해결 반대 및 영토 존중 등에 입각하여 중국(1972.12.29.), 북한(1973.2.5.), 시아누크 정부(1973.3.2.)와 각각 외교관계를 수립함.

❋ 반식민 · 반제국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모든 외국 군대의 주둔을 반대함.

❋ 투사케 개최 비동맹회의 결의안을 지지함.

4.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73.9.10. 및 10.24. 베냉 정세에 관해 아래 보고함.

❋ AFP 통신은 9.8. 베냉 군부가 Kerekou 대통령의 알제리 비동맹회의 참석 중 동 대통령을 축출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음을 보도함.

❋ 동 대통령은 9.9. 귀국 후 동 소문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없음을 밝히는 한편 신변 보호 및 안전조치를 강화함.

❋ 동 대통령은 국민 일반의 지지를 배경으로 국가권력 최고결정기구를 구성하는 한편 10.17. 국민혁명회의 대의원 67명을 임명한바, 장기 집권 토대 구축 및 권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됨.

캄보디아(구 크메르) 사태

| 73-0835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O-36 / 6 / 1~369(369p)

1. 주캄보디아(구 크메르)대사는 1973.1.8. 론놀 대통령의 취임 후 최초 기자회견 요지를 아래 보고함.

- ❁ 휴전 문제는 미국 측과 같은 견해로 정당한 평화 회복을 위해서는 국제감시위원회의 부활이 절대적임.
- ❁ 시아누크는 국민으로부터 배척되었기 때문에 협상의 상대자가 될 수 없음.
- ❁ 월맹군의 완전한 철수 이후 크메르 국민 간의 단합이 가능할 것임.

2. 주캄보디아대사는 1973.3.19. 주재국 공군기의 대통령 관저 폭격 사건에 관해 아래 보고함.

- ❁ 공군 전투기가 3.17. 대통령 관저에 2발의 폭탄을 투하한 사건이 발생함.
- ❁ 크메르 정부는 3.17. 비상사태 및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일부 조항의 중지를 발표함.
- ❁ 동 비상사태 선포 및 보도 통제 조치는 최근 물가고 등에 따른 사회적 불안과 국민들의 불만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3. 외무부 동남아2과는 1973.4월 크메르 정세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공군기의 3.17. 대통령 관저 폭격 사건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 및 계엄령 선포에 이어 4.4. 국가 위기사태가 선포됨.
- ❁ 국내 정정 불안에 따라 공산군은 수도 프놈펜에 이르는 주요 도로를 차단하고 프놈펜에 대한 공세를 개시한바, 현 정세 불안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4. 주캄보디아대사는 1973.6.26. 크메르 정세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보고함.

- ❁ 군사 정세 개황, 비상대책상 문제점, 정치 · 경제 · 사회 정세
- ❁ 평화협상 전망
  - 미국과 월맹은 원칙적으로 캄보디아 휴전을 희망함.
  - 월맹 측은 미국의 폭격 중지를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월맹 측의 캄보디아로부터의 철수를 선결 조건으로 요구 중임.
- ❁ 양측 간 입장 차이로 휴전협상이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임.

5. 주캄보디아대사는 1973.7.10. 캄보디아 정부의 공산 측에 대한 평화협상 제의 선언 관련 아래 보고함.

- ❁ Boret 외상은 7.6. 기자회견 시 공산 측에 대해 평화협상을 제의하는 정부선언을 발표함.
- ❁ 동 선언에 대해 당지 미국대사는 공산 측의 반응이 없을 것임을 언급했으며, 당지 주재 외교관들도 낙관적인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을 표시함.

6. 외무부는 1973.7월 아래 캄보디아 최근 정세 관련 자료를 작성함.

❋ 최근 국내 · 외 정세 개요, 정치 · 군사 정세

❋ 휴전협상 전망 등 정세 전망

- 캄보디아 사태에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 중국(구 중공), 월맹, 소련의 태도에 달려 있는바, 휴전 합의에 도달할 경우 8.15. 이전 휴전이 가능
- 휴전 후 공산군은 절대적인 우위에서 정치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

7. 주캄보디아대사는 1973.8.29. 론놀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아래 보고함.

❋ 군사적 승리를 통한 무력통일정책 추진을 밝힘.

❋ 시아누크가 인도차이나 공산주의자들의 추종자로서 침략 은폐를 위한 장막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비난함.

❋ 동 대통령의 출국 가능성을 부인하는 한편 계속 프놈펜에 체재할 것임을 확인함.

8. 주캄보디아대사는 1973.8월말 이후 공산군들이 프놈펜에 대규모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군이 완강하게 방어 중으로 공산 측과의 정치 협상은 현 단계에서 기대하기 어려움을 보고함.

9. 론놀 대통령은 1973.10.17. 한국 등 우방 각국 국가원수에게 유엔에서의 캄보디아 대표권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 요지의 메시지를 발송함.

❋ 불법적인 반란 인사가 외국의 도움으로 수립한 망명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 대한 우방 각국의 지지를 요청함.

칠레 정세

| 73-083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O-36 / 7 / 1~106(106p)

1. 주칠레대사대리는 칠레 쿠데타 관련 1973.9.13. 및 9.17.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칠레 해군의 9.11. 제1항구 점령 및 동일 오후 3군 합동 쿠데타로 혁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Allende 대통령은 항복 직후 자살함.
- 칠레 국경이 폐쇄되고 통금과 계엄령이 선포된바, 칠레 언론 및 국회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으로 Allende 대통령을 혹평함.
- 군사정부는 쿠데타의 정당성 설명을 위해 노력 중임.
- 동 사태에 따라 유엔 총회 참석 대표단 구성 및 회의 참석이 지연됨.
- Allende 대통령 가족 등 67명이 멕시코 특별기편으로 9.15. 출국함.
- 군사정부 의장인 Pinochet 장군은 9.15. 기자회견을 통해 평온 및 정상 회복 시 전통적인 민주제도로 복귀할 것임을 언급함.

2. 외무부는 1973.9.17. 대통령에게 칠레 쿠데타 사태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 Allende 집권 이전 및 이후의 정정, 쿠데타 발발 배경
- 한국과의 관계 및 향후 대책
  - 군사정부에 대한 조기 승인 검토
  - 현지 사태 추이에 따라 북한과의 수교에 대한 불만 표시로 소환 중인 주칠레대사의 복귀

3. 주칠레대사대리는 1973.9.27. '칠레 군사혁명 발발 및 Allende 정권의 몰락' 제하 보고서를 송부함.

- 배경, 군사혁명의 성격, 당면 문제, 정세 전망
- 대외적 영향
  - 서구 공산당, 사회당에 큰 충격과 경계심 야기
  - 소련의 위신 실추, 국제 공산주의 퇴보에 지대한 영향

4. 주칠레대사대리는 1973.10.4. 칠레 전 정부의 '대량 살해 계획(Z Plan)'에 관해 아래 보고함.

- 전임 Allende 정권 당시 대통령, 내무상 및 수사국장 등이 구상함.
- 칠레의 완전한 공산독재화를 위해 9.17. 지휘관급 군인, 야당 지도급 정치인, 반대당 언론인 및 기타 지도급 인사를 살해한다는 계획임.
- 성공할 경우 국호를 칠레 인민사회공화국으로 개칭하고 국기도 교체함.
- 신군부가 동 계획을 사전 탐지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중국(구 중공) 국내 정세

| 73-083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O-36 / 8 / 1~314(314p)

1. 중국(구 중공) 3대 기관지인 인민일보, 홍기 및 해방군보 3사의 1973.1.1. 공동 사설 요지임.

- ❋ 신년도 대외정책 목표로 사회제도를 달리하는 국가와 5개 원칙에 기초한 평화 공존 모색을 제시함.
- ❋ 주로 국내 문제에 치중하는 한편 소련을 의식한 전쟁 대비 강조 등 미국보다 소련을 비판함.

2. 외무부 아주국은 1973.2월 "중국의 권력구조와 대외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아래 조치를 통한 민간외교 선행을 건의함.

- ❋ 매스컴을 통한 대중국 비우호적 표현 및 국제회의 등 행사에서의 대중국 비우호적 태도의 점진적 지양
- ❋ 정경분리 원칙에 의거한 체육 · 학술 등 비정치적 분야의 관계 개선

3. 북경에서 1973.8.24.~28. 개최된 중국 제10차 전당대회(10전 대회) 관련 외무부 보고서 요지임.

- ❋ 주요 결정 사항
  - 당 요직 선출: 모택동 주석(유임), 주은래 등 부주석 5명, 당 중앙위원회 구성
  - 임표 사건 공식적 처리
- ❋ 분석
  - 임표 사건 이후 계속된 숙청 및 권력체제 정비 완료로 지도체제의 안정화 도모
  - 등소평 실각 후 공석 중인 당 총서기직 충원, 군부 세력의 후퇴 등 당 우위 체제로의 복귀
  - 당 중앙위 주석단의 복수화 등 집단 지도체제 지향을 위한 기반 확립
  - 중국의 현 노선 및 대외정책의 지속 등 현실적 정책 추진 승인

4.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은 1973.8월 중국 제10차 전당대회 결과를 아래 작성함.

- ❋ 지도체제 및 정책의 안정 추구
- ❋ 새로운 지도체제로서 집단 지도체제 출현
- ❋ 모택동 충성파, 관료파 및 직업군인파 간의 균형, 급진 과격파와 온건파 간의 균형을 단계적으로 추진

5. 박 대통령의 1973.10.26. 대만(구 자유중국) 송장지 해군총사령관 면담 요지임.

- ❋ 대통령 언급 요지
  - 장개석 총통에 대한 안부, 양국 해군 간 협력 방안 제의, 중동전 및 중국 내부 정세, 중 · 소 관계 및 세계 정세에 관한 의견
- ❋ 대만 해군총사령관 언급 요지
  - 한국 해군의 훈련 참관 소감, 양국 해군 간 협력 방안 증진에 동의, 훈장 서훈에 대한 사의 표명

중국(구 중공) 정세

| 73-083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O-36 / 9 / 1~51(51p)

1. 외무부 아주국은 1973.2월 '중국(구 중공)의 대외정책' 에 관한 아래 보고서를 작성함.

❁ 외교정책 기조
- 사회주의 제국과 우호관계 및 원조 협력관계 발전
- 피압박 인민과 민족의 혁명투쟁 지원
- 평화5원칙(영토보전 및 주권 상호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에 의거하여 사회제도를 달리하는 국가와도 평화 공존 추진
- 반제국주의 및 반수정주의 투쟁 전개

❁ 기본 목표
- 일본의 재무장 견제, 소련의 아시아 진출 저지,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철수 추진
- 주변 국가에 대한 영향력 강화
- 공산 혁명의 종주권 탈환

❁ 기본 전략
- 인민 간의 친선 강화
- 국가 간의 관계 개선
- 공산당 간의 유대 강화

❁ 평가
- 탄력적 전술, 실리 우선주의 및 대화 추진 등을 통한 유연한 외교정책 추구
- 한 · 중국 관계에 있어 중국 · 북한, 소련 · 북한 관계가 장애 요인이나, 중 · 소 간 대결, 미 · 중 접근 및 중국의 실리외교 추진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할 때 관계 개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

2.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은 1973.6월 중 중국의 외교정책 관련 국제세미나 참석 주요 인사의 발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작성함.

❁ 조지워싱턴대 Hinton 교수(6.4.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주최 세미나)
- 중국, 소련 및 미국의 삼각관계에 비추어 아시아에서의 평화 유지 가능성이 증대

❁ 예일대 Rostow 교수(6.4.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주최 세미나)
- 1970년대 국제 정치 체제는 미 · 소를 주축으로 하는 양대 세력 간의 균형 지속 전망
- 닉슨독트린은 맹방에 대한 방위의무의 재확인
- 유엔에서 주한 유엔군사령부 해체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도 미국의 안보리 거부권 행사로 결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조지워싱턴대 Hinton 교수(6.5.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 주최)
- 중국은 동남아지역 내 군사정부에 대해 비우호적으로 동남아지역 '민족해방전선' 을 계속 지원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동남아에서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회피할 것으로 전망

3. 주멕시코대사는 1973.6.21. 주재국 라바사 외상과의 중국 정세 관련 면담 시 동 외상 언급 요지를 아래 보고함.

❋ 중국과의 중남미 핵금지조약 서명에 관한 협상 평가임.
- 2차례 외상과의 협상 시 중국은 미·소 세력 투쟁에 대한 불개입을 이유로 동 조약 서명 거부
- 주은래 수상이 동 조약 서명을 결정한 이유는 소련이 조약 서명을 전면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평화애호국으로서의 중국의 지위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판단

❋ 중국의 군부조직과 관련하여 중국 지도자들은 현상 유지의 보수적 경향이 강하며, 군의 사기는 낮은 것으로 평가함.

4. 주카트만두총영사는 1973.9.28. 네팔 외상의 북한 및 중국 방문 결과를 아래 보고함.

❋ 카키 외상은 9.16.~18. 북한을 방문하고 9.18.~20. 중국을 방문함.

❋ 김일성은 카키 외상을 접견하고 약소국 간 단합 및 협조를 강조함.

❋ 카키 외상의 9.19. 중국 희봉비 외상과의 만찬 시 협의 내용임.
- 네팔 외상은 비동맹 및 엄정중립을 추구하는 네팔의 대외정책을 설명
- 희봉비 외상은 네팔은 국가독립과 주권을 성공리에 유지하여 왔음을 언급하고 외세의 간섭에 대항하여 국가독립 및 주권을 보호하려는 투쟁에 있어서 중국은 네팔이 신뢰할 수 있는 영원한 우방이 될 것임을 강조

5. 주벨기에대사는 1973.10.4. 중국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 벨기에 정부는 중국과의 통상 측면을 고려하여 관계 긴밀화를 도모 중으로 4월 대외통상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통상사절단을 중국에 파견함.

❋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외교관은 중국은 남북한이 단일 연합체로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나, 소련은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함.

중앙아프리카 정세

| 73-083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O-36 / 10 / 1~26(26p)

1. 주중앙아프리카공화국대사는 1973.5.9. 주재국의 1973년도 제2차 개각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 보카사 대통령은 1973.4월 쿠데타 음모사건 이후 견제 세력으로 민간인 심복을 국방차관에 임명함.

❋ 동 국방차관은 대통령 및 서열 2위인 보건사회장관 출국 중 대통령을 대행함.

2. 주중앙아프리카공화국대사는 1973.10.16. 주재국 개각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보카사 대통령은 10.16. 국고 결손 및 경제 위기를 이유로 경제 각료 등에 대한 대폭 개각을 단행함.

❋ Potolot 현 외무장관은 유임되었으며, 대외정책 특히 대한국 정책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3. 주중앙아프리카공화국대사는 1973.10.20. 동 개각 관련 분석 및 전망을 아래 보고함.

❋ 배경

- 보카사 대통령은 1973.3~5월 반(反) 보카사 동향에 대처하기 위해 부분 개각 및 군부 주요 지휘관 교체를 단행함.
- 8월 대규모 수해 발생 관련 국고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국고의 현저한 결손으로 10월 공무원 및 군인 급료 미지급 등 국가재정 위기 사태가 발생함.
- 긴박한 재정난의 주요 원인이 대통령의 빈번한 외유에 기인한 것이라는 비난에 대해 보카사 대통령은 각료의 무능 및 낭비가 원인임을 지적하고 대폭 개각을 단행함.

❋ 전망

- 10.16. 개각은 대외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동 개각 및 재정 조치로 어느 정도 경제 호전이 가능할 것이나, 근본적인 경제난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한국과의 관계

- 방한한 바 있는 친한 성향의 Potolot 외상은 유임된바, 보카사 대통령이 동 외상의 업무 능력 및 충성심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보카사 대통령은 한국의 대중앙아프리카 원조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한국과의 보다 적극적인 관계 설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됨.
- 향후 대한국 정책에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계속적인 원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

체코슬로바키아 정세

| 73-084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특수지역과
MF번호	O-36 / 11 / 1~11(11p)

1. 주미대사는 1973.7.9. 로저스 미 국무장관의 체코 방문 계획과 관련하여 아래 보고함.

- ❋ 로저스 장관은 헬싱키 개최 구주안보회의 참석 후 체코를 공식 방문하여 미국과 체코 간 영사 협정에 서명하는 한편 Husak 체코 공산당서기장과 회담 예정임.
- ❋ 양국은 동서 화해의 일환으로 체코 공산 정권 수립 후 몰수된 약 72백만 달러 규모의 미국 자산 보상 문제, 양국 간 교역 관련 미국의 체코에 대한 최혜국대우 문제 등을 협의하고 과학기술, 문화 교류에 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됨.

2. 중앙정보부는 1973.9월 외무부에 츠노우 체코 외상의 9.19.~24. 멕시코 방문 관련 아래 내용의 분석 자료를 송부함.

- ❋ 멕시코의 이념을 초월한 실리 추구 외교정책의 일환임.
- ❋ 멕시코는 3.19. 루마니아와의 수교, 6.5. 동독과의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합의 등 중남미 제국 중 가장 적극적인 대동구권 외교 및 통상관계를 추진 중임.
- ❋ 멕시코는 경제 면에서 대미 의존 탈피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구주공동시장 및 일본과의 통상 증대를 추진하는 한편 소련, 중국(구 중공) 및 동구 국가에 통상사절단을 파견 중임.
- ❋ 체코 외상 방문 중 양국 간 무역협정 체결 논의가 예상되며, 향후 폴란드, 헝가리 등의 대중남미 진출 강화 및 코스타리카 등 중미 제국의 대공산권 농산물 수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3. 주필리핀대사는 1973.10.6. 필리핀과 체코의 수교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 ❋ 필리핀은 10.5. 체코와 외교관계를 수립함.
- ❋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필리핀 외상과 체코 외상이 뉴욕에서 수교 합의문서에 서명함.

4. 주뉴델리총영사는 1973.12.4. 체코 공산당 서기장의 인도 방문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 ❋ Husak 체코 공산당 서기장은 1주일간의 인도 공식 방문차 12.3. 뉴델리에 도착함.
- ❋ 동 서기장은 간디 수상과 2차례 회담하고 국제 정세 및 인도 · 체코 간 경제통상 협력 문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임.
- ❋ 동 방문 중 양국 간 경제원조협정 및 1974년도 무역약정이 체결될 예정임.

이집트 정세

| 73-084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O-36 / 12 / 1~39(39p)

1. 주카이로총영사는 1973.1.4. 및 2.12. 카이로 대학생의 반정부 시위 사건 관련 아래 보고함.

- 대학생들에 의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 사건이 1.3. 발생한바, 동 사태의 원인은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 정부의 언론 · 집회의 자유 억압에 대한 반대 및 1972.12월말 교내 집회 시 연행된 약 50명의 학생 석방을 위한 것으로 분석됨.
- 당지에서는 동 학생 소요가 현 정권의 중동 분쟁 해결 실패, 강경한 언론 탄압 및 현 정권 비판 인사에 대한 탄압에 대한 불만 표출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적지 않은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함.

2. 주카이로총영사는 1973.3.28. 주재국의 신내각 발표 관련 아래 보고함.

- 사다트 대통령은 3.27. 자신의 수상직 겸직을 포함한 신내각을 발표함.
- 신내각은 4명의 부수상과 32명의 장관으로 구성됨.

3. 주카이로총영사는 1973년도 상반기 이집트 정세를 9.12. 아래 보고함.

- 북한과 이집트 간 관계 긴밀화에 따라 한국과 이집트 간 무역협정 체결 교섭이 난관에 봉착함.
- 한국 국회대표단의 4.16.~18. 방문 시 북한의 IPU(국제의원연맹) 가입 문제와 관련한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의회 간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함.
- 한국 무역사절단의 5.13.~16. 방문 시 양국 간 통상 증대, 무역협정 체결 문제를 교섭함.
- 이집트 외무차관은 한국의 6 · 23 특별선언을 건설적이라고 평가함.

4. 주카이로총영사는 1973년도 3/4분기 정세 보고서 제출을 통해 이집트-북한 관계 특기 사항을 아래 보고함.

- 북한은 이집트 델타 지역에 공군 조종사 33명을 파견하여 이집트 조종사를 훈련 중임.
- 이집트 Shafei 부통령은 9.14.~16. 북한 방문 시 김일성의 평화5원칙, 주한미군 철수 및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존속 반대 입장을 지지함.
- 북한은 주재국 내 한국 입장에 불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El Sayed 국회부의장에 대한 8.14.~20. 북한 방문 초청 등 이집트 각계 요인에 대한 초청 공세를 강화하고 있음.

5. 외무부는 이집트에 대해 대사관 승격 및 중동전 관련 정부의 대아랍 입장 제고를 위한 교섭을 강화해 온바, 1973.10.31.자 신임 Fahmy 이집트 외상 임명과 관련하여 11.1. 주카이로총영사를 통해 동 외상에 대한 축전을 전달함.

기네비소 정세

| 73-084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O-36 / 14 / 1~38(38p)

1.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73.9.28. 및 9.29. 기니비사우 독립 선포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 포르투갈령인 기니비사우는 9.26. 의회에서 PAIGC(카보베르데 아프리카독립당)과의 협력하에 독립을 선포한바, 과거 12년간 약 1만 명의 반군이 약 3만 명의 포르투갈 군대에 대항하여 독립 쟁취를 위해 투쟁해 옴.

❋ PAIGC의 상임위원인 Mendes 행정수반은 6명의 각료를 임명하였으며, 9.24. 아래 내용의 헌법을 선포함.

- 공화, 민주, 반식민, 반제국주의 및 비동맹 표방
- 기니비사우와 카보베르데의 통합 추진
- 최고인민회의 결성
- OAU(아프리카단결합기구) 및 유엔 헌장 준수

❋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니비사우 독립 선포에 대해 지지를 표명함.

❋ 소련 및 체코 무기로 무장한 반군 게릴라 투쟁이 신생 기니비사우의 독립에 기여하였음을 감안할 때 향후 친공 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됨.

2. 주프랑스대사는 1973.10.2. 기니비사우 독립 이후 정세를 아래 보고함.

❋ 포르투갈 정부는 기니비사우의 협상 제의를 거부하고 신임 총독을 임명함으로써 독립 선포를 묵살함.

❋ PAIGC의 독립 선포는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들의 지지를 배경으로 유엔에서의 여론을 독립 성취에 이용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관측됨.

3. 북한을 포함한 45개국이 1973.10.4. 현재 기니비사우를 승인함.

4.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73.10.31. 기니비사우 외상이 10.30. 코트디부아르 외상을 방문하여 독립 선포 후 제반 정세를 설명하는 한편 코트디부아르의 기니비사우 승인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고함.

5.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73.11.6. 주재국 언론이 유엔발 외신을 인용하여 유엔 총회가 11.1. 기니비사우의 독립 및 동국이 주권국임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찬성 93, 반대 7(미국 및 영국 포함), 기권 30(프랑스 및 독일 포함)으로 가결했다고 보도했음을 보고함.

이스라엘 정세

| 73-084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O-36 / 15 / 1~12(12p)

1. 주미대사는 1973.3.2. 이스라엘 수상의 미국 방문 결과를 아래 보고함.

- ❁ 골다 메이어 이스라엘 수상은 3.1. 닉슨 대통령과 회담한바, 백악관 대변인은 닉슨 대통령이 대 이스라엘 군사 및 경제 원조를 계속 제공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언급함.
- ❁ 메이어 수상의 방미 주요 목적은 미국으로부터의 원조 확보에 있으며 소련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이스라엘 영주귀국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도 협의함.

2. 외무부는 1973.4.10. 이스라엘 신임 Katchalski 대통령 당선에 대한 대통령 축전을 발송함.

3. 주브라질대사는 1973.8.15. 에반 이스라엘 외상의 8.8.~13. 브라질 방문 결과를 아래 보고함.

- ❁ 양국 외상은 국제 테러리즘의 방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농업 분야에 대한 기술 협조에 합의하였다는 언론발표문을 발표함.
- ❁ 에반 외상은 주재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과 중국(구 중공) 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동·서독 및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추진 등 국제적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스라엘과 아랍만이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함.

4. 주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대사는 1973.10.31. 주재국 정부가 대이스라엘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였음을 보고함.

일본의 북방영토 문제

| 73-0844 |

생산연도	1969-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O-36 / 16 / 1~53(53p)

1. 소련은 1946.2월 헌법 및 국내법 개정을 통해 일본 북방 4개 도서를 소련 영토로 편입하고 일본인 주민 전원을 추방하는 조치를 결정함.

2. 주일대사는 1969.12.4. 북방영토에 관한 언론 보도 내용을 아래 보고함.

❋ 아이치 외상의 9월 소련 방문 시 코시킨 수상은 제2차 세계대전 결과 획정된 국경선의 변경 불가를 언급함.

❋ 일본 외무성은 아래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동 소련 측 주장에 강하게 반발함.

- 일본의 북방영토는 외국의 영토가 된 사례가 없음.
- 양국 간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현 시점에 양국 간 국경은 미확정 상태로 북방영토는 소련 측이 주장하는 여타 영토와 상이하며 소련 측 주장은 근거가 없음.

3. 일본 외무성은 1969년 '세계의 움직임' 제하 북방영토 문제에 관한 아래 내용의 특집을 발간함.

❋ 제2차 대전 발발까지의 시기
❋ 제2차 대전 종결까지의 시기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일 · 소 공동선언
❋ 국교 회복 후의 경과
❋ 기타 북방영토 지도, 관계조약 및 각종 문서 첨부

4. 주일대사는 1973.9.4. 아사히 및 산케이 신문의 북방영토 관련 보도 내용을 아래 보고함.

❋ 소련 정부 기관지 이스베스차는 9.1. 다나카 수상의 10월 중 소련 방문에 큰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도하는 한편 일본 내외에 북방영토 반환을 요구하는 세력이 있음을 지적하고 강하게 비난함.

❋ 제2차 세계대전 종결 28주년을 기념하는 소련 루차스키 육군대장의 논문 요지임.

- 소련 · 일본 간의 협력관계 수립은 큰 의의가 있으며 1973.10월 다나카 수상의 소련 방문은 양국 관계 발전 및 긴장 완화 확대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일본이 양국의 평화조약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소련 영토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일본의 민족적 이익에 합치하지 않음.

5. 주일대사는 1973.9.20. 일본 중의원 본회의 및 참의원 오키나와 및 북방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북방영토 반환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보고함.

일본 정세

| 73-084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O-36 / 17 / 1~204(204p)

주일대사의 일본 정세 관련 1973년 중 보고 내용임.

1. 김종필 국무총리 및 김용식 외무부장관 방일(1.9.~11.)

- ❁ 다나카 수상, 오히라 외상, 나카소네 통산상 등 면담
- ❁ 한 · 일 경제협력,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문제 협의

2. 안보조약 운용협의회 신설 및 일 · 미 안보협의위원회 개최

- ❁ 일본 외상과 주일 미대사 간 1973.1.19. 회담 시 일 · 미 안보조약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안보조약 운용협의회 신설 합의

3. 다나카 수상의 외교 방위 문제 관련 특별 의회 연설(1.27.)

- ❁ 방위 문제 관련 미 · 일 안보체제 유지 및 향후 필요한 시설 계속 제공 방침 시사

4. 키신저 미국 대통령 보좌관 방일(2.19.)

- ❁ 일본 수상 및 외상과 회담, 중국 방문 결과 등 설명
- ❁ 월남전 종전 후 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 정착 문제 등 협의

5. 미국 · 중국(구 중공) 간 공동성명에 대한 일본 측 반응(2.23.)

- ❁ 미 · 중 관계 진전을 계기로 세계와 아시아지역의 긴장 완화가 촉진될 것으로 환영
- ❁ 일 · 중 양국 간의 우호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 표명

6. 일본 · 소련 관계 진전(3.6.)

- ❁ 다나카 수상은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서기장에게 친서를 전달
- ❁ 평화조약 체결 교섭 및 시베리아 개발계획 등 경제협력 문제 관련 일본의 기본 입장 설명

7. 일 · 중 우호의원연맹 준비회 결성(3.19.)

- ❁ 자민, 사회, 공명 등 4당 의원들이 동 연맹 준비회를 결성
- ❁ 1973.4월중 정식 발족 예정

8. 주재국 정세 및 업무 현황(3월, 1973년도 수감자료)

- ❁ 일본의 정치구조, 1973년도 일본 국내 정치 정세 전망, 일본의 대외정책, 한 · 일 간 현안 문제
- ❁ 북한의 동향 및 대책

9. 일왕 방미 및 다나카 수상 외국 방문(4.6.)

- ❁ 일왕의 1973.10월 방미 추진
- ❁ 다나카 수상의 1973.8월 미국 및 9월 소련 방문 추진

10. 동경도 의회의원 선거 결과(7.9.)

- ❁ 자민당 제1당 의석 확보 확실시, 제2당은 공명, 사회, 공산당이 경합 중

11. 1973년도 3/4분기 정세 보고서 제출(10.23.)

- ❁ 일본 국내 정치 정세, 일 · 북한 교류, 일본의 대외관계
- ❁ 1973년도 주재국 외교청서 등

12. 일본 공산당 제12차 전당대회(11.14.)

- ❁ 미국과의 우호관계, 일 · 미 경제관계의 발전 등 민중연합정부 강령 발표
- ❁ 타 정당과의 조화 가능성 검토를 통한 정책의 유연화 모색
- ❁ 종래의 보수 지지층까지 흡수하기 위해 현실적 노선으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

13. 다나카 수상의 내각 및 자민당 개편(11.27. 국외일일정보)

- ❁ 다나카 수상은 11.25. 아래와 같이 내각 개편 시행
  - 오히라 외상(유임). 후쿠다 대장상, 나카소네 통산상 등 임명
  - 하시모토 간사장(유임), 미스다 정조회장(신임) 등 임명
- ❁ 각료 11명 신임, 7명 유임, 1명 전임
  - 자민당 내 5개 파벌 안배를 통한 균형 체제 유지
  - 대외정책 관련 다나카-오히라 기축 유지에 따라 개각으로 인한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레바논 정세

| 73-084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O-36 / 18 / 1~80(80p)

1. 주베이루트통상대표부는 1973.4.11. 및 4.14. 이스라엘 특공대의 베이루트 공격 사태 관련 아래 보고함.

- ❁ 이스라엘 특공대는 4.10. 베이루트에 상륙하여 팔레스타인 간부 사살 및 시설 파괴 후 철수한바, Salam 수상은 동 사태의 책임을 지고 4.10. 사표를 제출함.
- ❁ 내각 사퇴에 따른 신내각 구성 및 국내 치안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임.
- ❁ 동 공격은 팔레스타인 세력에 큰 타격을 야기하였으며, 팔레스타인 단체의 무력 행사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 주재국 대통령이 4.13. Salam 수상의 사표를 수리했으며, 후임 내각 임명 시까지 현 내각이 계속 집무 예정임.

2. 주베이루트공사는 1973.4.25. Hafez 신임 수상이 신내각을 발표했음을 보고하는 한편 국무총리의 신임 Hafez 수상, 외무부장관의 신임 외상 앞 축전 발송을 건의함.

3. 주베이루트공사는 레바논 군과 PLO(팔레스타인해방전선) 간 1973.5.2. 대규모 총격전이 발생했음을 아래 보고함.

- ❁ Hafez 수상과 PLO Arafat 의장 간 5.2. 전투 중지에 합의했으나, 총격전이 지속되고 있으며 레바논 정부는 5.2. 무기한 통행금지 및 5.7. 비상사태를 선포함.
- ❁ 동 사태 배경, 경과 개요, 정부의 조치, 양측의 입장, 정부 및 정계의 동향, 관측 및 전망에 관해 5.15. 추가 보고함.

4. 주베이루트공사는 1973.6.14. Hafez 수상의 사표 제출 및 7.8. Sohl 수상 주도의 신내각 구성을 아래 보고함.

- ❁ 신내각은 우익과 좌익 간의 균형된 구성에 따라 8.1.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신임이 가결됨.
- ❁ Naffa 현 재무장관이 외상에 임명됨.

라오스 정세

| 73-084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O-36 / 19 / 1~167(167p)

1. 라오스 펭 퐁사반 내무상과 공산 측 푸마 봉비시트 파테트라오 서기장이 1973.2.21. 라오스 수상 관저에서 휴전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정 제2조에 따라 2.22. GMT 05:00 시를 기해 라오스 전역에서 휴전이 발효됨.

2. 주자카르타총영사는 1973.2.26.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이 신임 라오스대사의 신임장 제정 시 라오스의 휴전을 환영하고, 동 휴전협정이 라오스의 통일과 재건을 위해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3. 주태국대사는 1973.5.22. 및 7.30. 라오스 정세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 ❋ 라오스 의회는 푸마 정권에 대한 사퇴 권고 결의안을 5.22. 표결에 회부키로 한바, 동 결의안은 헌정수호 그룹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정부의 재정정책 실책을 비난하는 의원들이 지지함.
- ❋ 라오스 국가연합 임시정부 수립협정이 7월 말 푸마 수상과 파테트라오 서기장 간에 공식 서명될 예정으로 임시정부 수반은 2명의 부수상에 파테트라오 측과 라오스 정부 측 각 1명을 임명하는 한편 각료는 적절히 배분할 예정임.

4. 외무부는 1973.8월 아래 라오스 연정 및 정세 관련 자료를 작성함.

- ❋ 제1차 연정(1957.11월): 파테트라오 입각으로 연정 수립
- ❋ 제2차 연정(1962.2.23.): 미국, 소련의 양해하에 푸마 수상의 중립 연정 수립
- ❋ 제3차 연정 수립 합의(1973.7.29.)
- ❋ 주요 사건 일지, 휴전협정 주요 내용, 쌍방 병력 현황, 연정 수립 협상에서의 주요 문제점, 연정 수립 원칙 합의, 분석 및 한국과의 관계

5. 주태국대사는 라오스 정부와 파테트라오 간에 1973.9.14. 체결된 평화협정문(연립정부수립 의정서) 전문 주요 내용을 아래 보고함.

- ❋ 임시 연립정부 구성, 민족정치자문회의 구성, 수도와 왕도의 중립화, 휴전 감시기구 및 기능, 외군의 철수 규정
- ❋ 라오스 국회는 11.6. 동 평화협정을 최종 승인함.

6. 주라오스통상대표부는 1973.12.18. 라오스 정세 전망을 아래 보고함.

- ❋ 1957년 및 1962년 연정이 성공하지 못한 전례에 비추어 금번 협상을 통해 제3차 연정이 수립될 경우에도 원만한 기능 수행 가능 여부가 의문시됨.
- ❋ 향후 월맹 측의 라오스 연정에 대한 태도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됨.

말레이시아 정세

| 73-084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O-36 / 20 / 1~41(41p)

1.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73.4.4. 말레이시아와 동독 간 수교 후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으며, 동독은 1973년 중 말레이시아에 공관을 설치하고 동독 통상대표단도 파견할 계획임을 보고함.

2. 주말레이시아대사대리는 1973.5.23. 말레이시아 · 태국 양국 수상 간 회담 결과를 아래 보고함.

- ❁ 국제 정세 및 양국 간 현안 문제에 관해 2차에 걸쳐 회담함.
- ❁ 말레이시아 측은 양국 간 국경 안보 상황, 남부 태국의 무슬림 분파운동 및 중국(구 중공)과의 정식관계 수립에 관한 입장을 설명함.
- ❁ 태국 측은 무슬림 분파운동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말레이시아 측의 입장에 만족을 표명함.

3. 주말레이시아대사는 아래 내용의 1973년도 2/4분기 정세 보고를 7.13. 제출함.

- ❁ 말레이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 라작 수상의 집권 시 선언한 바와 같이 중립주의 외교정책 추진
- ❁ 북한 승인 문제
  - 한국 정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6.30. 북한을 승인하는 공동성명 발표
- ❁ 6 · 23 선언에 대한 입장
  - 공식 입장 표명 유보
  - 북한과의 수교 직전 시점임에 따라 공식 논평을 보류하는 것으로 분석

4. 주말레이시아대사는 아래 내용의 1973년도 3/4분기 정세 보고를 10.17. 제출함.

- ❁ 주재국 정세 개요 및 대외정책
  - 대중국 정책, 비동맹회의 관련 입장 변화, 대아시아 정책
  - 국내 경제 동향
- ❁ 대한반도 정책 주요 내용
  - 외무성은 북한과의 수교는 중립주의에 입각한 부득이한 조치로 한국과의 우의에 하등의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
  -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관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대사관 설치 촉구
  - 북한 측 특사 방문 시 공관 설치, 유엔 문제, 비동맹중립국 문제, 통상 문제 등을 협의
  - 유엔 총회 한반도 문제 토의 관련 입장
    - · 토의 연기안 상정 지지, 서방측 결의안 중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지지, 주한유엔군 및 외군 철수 문제는 미정
    - · 기타 중립국의 동향 및 유엔 총회 대표단의 건의를 종합한 후 결정한다는 방침
  - 비동맹회의에서는 다수 회원국의 의사 추종 입장

모로코 정세

| 73-084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O-36 / 21 /1~31(31p)

1. 주모로코대사는 1972.12.30. 모로코와 동독 간 수교에 관해 아래 보고함.

- ❁ 주재국은 12.29. 동독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결정을 발표함.
- ❁ 야당 계열 언론은 비동맹정책에 입각하여 월맹 및 북한도 승인해야 한다고 논평함.

2. 주모로코대사는 1973.5.30. 캄보디아 망명정권 시아누크 주석의 5.26.~29. 주재국 방문에 관해 아래 보고함.

- ❁ 핫산 2세 국왕과의 회담 등 일정을 가짐.
- ❁ 시아누크는 5.29. 기자회견을 통해 모로코 정부가 시아누크 정권을 캄보디아의 합법정권으로 인정함을 확인했다고 언급함.

3. 주모로코대사는 1973.7.13. 주재국 외무성이 방글라데시를 승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음을 보고함.

4. 주모로코대사는 1973.7.13. 주재국 국왕이 7.8. 청년의 날 행사 연설을 통해 아래와 같이 모로코 사회주의 실현을 제창하는 한편 사회주의에 대해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 ❁ 외국에서 유입되거나 교과서적 사회주의가 아닌 모로코식 사회주의 실현이 긴요함.
- ❁ 국가 소유 2개 제당업체 주식 중 2/3를 동 업체 소속 지역 농민에게 분배함.
- ❁ 근로자들은 국가가 마련하는 특별기금을 통해 상기 업체에 참가함.
- ❁ 각 단위 지역 또는 지방의 국가 소유 농장을 동 지역 농민들로 조직된 협동체가 민주적으로 운영, 경작함.

5. 주모로코대사는 1973.9.28. 주재국 외무성이 기니비사우 공화국을 승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음을 보고함.

6. 주모로코대사는 1973.10.15. 뉴욕 아랍국가 외상회의에서 모로코의 제안에 따라 모리타니가 아랍연맹에 1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음을 보고함.

7. 주모로코대사는 1973.12.10. 주재국 국왕이 12.8. 국정 연설 시 발표한 정부 시책에 관해 아래 보고함.

- ❁ 모로코의 정책은 아프리카, 아랍 및 회교국의 입장에 따라 고려되고 결정되어야 함.
- ❁ 알제리에서 11월 개최된 아랍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아랍권이 탄생함.
- ❁ 모로코의 중동전 전비 지출은 현재까지 8억 디르함(약 2억 달러)에 달함.

니제르 정세

| 73-085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O-36 / 23 / 1~22(22p)

1.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73.3.7. 니제르- 중국(구 중공) 관계 관련 아래 보고함.

- ❁ 니제르 Sidiku 전 외상은 유엔에서 황화 중국대사와 경제 원조 및 외교관계 수립을 교섭 중임.
- ❁ 중국대사는 니제르의 중국 승인 이후 경제 문제를 토의하자고 언급했으며, Sidiku 외상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임.

2.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73.3.17. 및 4.19. 니제르의 대외관계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 ❁ 니제르 정부는 3.15. 불가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함.
- ❁ 당지 신문은 4.19. 니제르가 시아누크 망명정권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도함.

3.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73.5.2. 니제르 디오티 대통령이 대외정책에 관해 4.5. 아래 내용으로 연설하였음을 보고함.

- ❁ 경제적 상호 의존의 국제 관계 필요성
- ❁ 각 국민 간의 유대 의식 강화 강조
- ❁ 남북 간 격차 증대 우려
- ❁ 니제르의 외교정책 방향
  - 제3세계와의 유대 강화
  - 선진 제국 및 동구권과의 협력 추진

4.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73.8.21. 니제르가 체코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함에 따라 니제르는 동구권의 소련, 루마니아, 유고, 헝가리, 폴란드, 체코와 외교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음을 보고함.

5. 주모로코대사는 1973.11.7. 디오티 니제르 대통령이 친선 방문차 모로코에 도착 예정이며 동 대통령은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 방문 후 11.10. 귀국 예정임을 보고함.

오만 정세

| 73-085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O-36 / 24 / 1~29(29p)

1. 주이란대사는 1973.4.30. 오만 정세 관련 아래 보고함.

❋ 국내 공산 게릴라 활동에 대한 대처를 위한 오만의 요청에 의해 이란은 전투부대 등 군사기술 원조를 공여함.

❋ 이란 수상은 동 지원이 오만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반정부 세력의 활동을 봉쇄하고 페르시아만과 세계 각 지역을 연결하는 수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이란 정부의 기본 정책에 부합하는 것임을 언급함.

2. 주이란대사는 1973.6.2. 오만의 대PFLOAG(Popular Front for the Liberation of Oman and the occupied Arab Gulf) 대처 관련 아래 보고함.

❋ 오만 정부는 중국(구 중공) 및 남예멘 마르크스주의 정권의 지원을 받고 있는 PFLOAG 게릴라 수천 명의 내란 기도에 대한 대응을 위해 노력 중임.

❋ 오만 정부군 측은 5.27. 남부 Dhofar 지역 주민을 공격한 게릴라들 간에 내분이 야기되고 있다고 발표함.

3. 주이란대사관 참사관은 1973.6.22. 주재국 오만대사관 Said 서기관과 오만의 대공산 게릴라전에 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교환함.

❋ 주이란 참사관은 6 · 25 전쟁, 무장간첩의 남침 등을 경험한 한국 정부는 대공산 게릴라전을 수행중인 오만 정부의 노력에 이해와 공감을 표시함을 설명하고 전투로 인한 난민 구호 등에 한국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타진한바, 오만 측은 본국에 보고 후 통보할 것을 약속함.

❋ 오만 측은 아래와 같이 관련 정세를 설명함.

- 남예멘 국경 근처 공산 게릴라들의 이동 전술로 인해 2년 반 동안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 정부 집권 후 전국에 걸친 주택 및 병원 건설 등 대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중임.
- 오만도 우호국을 필요로 하고 있는바, Gulf 우방국인 쿠웨이트가 남예멘에 원조를 제공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

폴란드 정세

| 73-085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특수지역과
MF번호	O-36 / 25 / 1~13(13p)

1. 주벨기에대사는 1973.11.19. 폴란드 공산당 Gierek 제1서기의 주재국 방문에 관해 아래 보고함.

❋ 벨기에 Leburton 수상 초청으로 동 제1서기가 4일간의 공식 방문차 11.19. 도착한바, 벨기에 측과 10년간 유효한 통상기술 및 과학협정을 체결할 예정임.

❋ 당지 언론은 동인이 제2차 대전 종전 시까지 수년간 벨기에에 체재하면서 광부로 일한 적도 있어 동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 및 동 · 서 유럽 간 긴장 완화에 공헌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함.

2. 주벨기에대사는 1973.11.29. Gierek 폴란드 공산당 제1서기의 주재국 방문 계기 폴란드 공산당 중앙서기국 Frelek 대외문제 담당국원이 11.20. 벨기에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행한 폴란드 대외정책에 관한 강연 내용을 아래 보고함.

❋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서방의 동방 진출 통로로서 동 · 서 국경에서 항상 군사적인 위협을 받아 왔으며 동 해결책으로 1944년 사회주의 체제를 택한바, 동 선택은 폴란드의 안보 및 경제 부흥을 가져왔으며 폴란드는 동방의 소련과의 동맹을 통해 연 9%의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폴란드의 대외정책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정치적 측면
  · 냉전시대의 산물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Warsaw 동맹 양측이 무력 대치에 의한 공포의 균형으로 안보를 유지해 왔으나, 향후로는 동서 긴장 완화의 추진에 의한 안보의 균형으로 대치하여야 함.
  · 현재 진행 중인 구주 집단안보체제의 확립이 긴요함.
- 경제적 측면
  · 동 · 서 간에 장기적 경제협력 및 교류가 이루어져야 함.
  · 현재 동 · 서 간의 교역은 EEC(구주경제공동체) 전체 교역량의 5%에 불과함.
- 이념적 측면
  · 이념적 공세는 전쟁을 야기함에 따라 지양해야 하며, 전쟁은 정치, 경제 면에서 상호 백해무익함.
  · 내정간섭을 금지하고 이념을 초월한 선린 관계를 수립해야 함.

❋ 폴란드는 동 · 서 간의 상호 문화 교류를 희망함.

- 문화 교류는 사회적 측면에서 가치 교환 및 취사선택의 기회를 부여함.
- 폴란드 측으로서는 소비생활이 억제되어 있는 반면 서방측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사회 문제는 없으나 서방측은 소비생활이 높은 반면 제반 사회 문제에 직면함.

파나마 정세

| 73-085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특수정책과
MF번호	O-36 / 26 / 1~15(15p)

1. 주파나마대사는 1973.10.4. Torrijos 방위군 사령관의 구주 순방 결과를 아래 보고함.

❋ 스페인 방문(9.13.~21.)
- 9.19. 프랑코 총통 예방, 스페인의 대라틴아메리카 지원정책 등 양국 간 현안 협의

❋ 유고슬라비아 방문(9.22.~25.)
- 9.22. Bijedic 수상 예방, 양국 간 유대관계 강화 방안 및 라틴아메리카 정세 전반 협의
- 9.24. Tito 대통령 예방, 라틴아메리카의 대외정책에 관해 협의

❋ 이탈리아 방문(9.25.~27.)
- 교황 Paul 6세 알현

2. 주파나마대사는 1973.10.18. 파나마 국회의장 선출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 505명 대의원으로 구성된 파나마 국회는 10.11. 개회식에서 Carlos Espino 신임 국회의장을 선출함.

❋ 정일권 국회의장의 파나마 공식 방문 초청에 협조한 바 있는 Castillo 전 의장은 1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함.

3. 주파나마대사는 1973.10.18. 파나마 운하에서의 쿠바 및 소련 선박 억류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 쿠바 선박 억류
- 파나마 운하에서 미국 관헌이 10.2. 쿠바 선박 Imias를 억류한 데 대해 파나마 외무성은 10.4. 외국 소유 선박은 지방관할권에서 제외된다는 일반 국제법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

❋ 소련 선박 억류
- 파나마 외무성은 10.16. 소련 선박 William Foster호가 파나마 운하에서 미국 관헌에 의해 억류된 데 대한 항의 성명을 통해 파나마 운하 운영은 어느 특정 국가의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함을 지적함.

❋ 억류 사건 발생 원인
- 칠레 정부는 미국 측에 쿠바 선박이 칠레 정부가 발주한 설탕을 인도하지 않았으며, 소련 선박은 3만 달러 상당의 물자를 레닌그라드에서 칠레로 수송토록 되어 있으나 최근 항로를 변경하여 동 화물을 칠레에 인도하지 않고 레닌그라드로 귀항하려는 데 대해 각각 억류를 요청함.

루안다 정세

| 73-085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O-37 / 1 / 1~122(122p)

1. 주르완다대사는 1973.3.2. 르완다-부룬디 간의 분쟁 사태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 ❁ 르완다-부룬디 간의 관계 악화는 양국 Hutu족과 Tutsi족 간의 분쟁에 기인함.
- ❁ 르완다 측은 부룬디 측이 1972년 상반기 Hutu족에 대한 대규모 학살을 자행했음을 주장함.
- ❁ 현재 르완다는 Tutsi족을 직장으로부터 축출 중임.
- ❁ 향후 르완다-부룬디 간의 관계 악화 및 유혈사태 발발 위험성을 내포함.

2. 주르완다대사는 1973.3.29. Kayibanda 대통령이 양 부족 간의 분쟁 관련 3.22. 아래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음을 보고함.

- ❁ 2월 중순 이래 발발한 양 부족 간 분쟁이 안정 국면을 보이고 있음.
- ❁ 외국 기술자로서 르완다를 떠나고자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출국이 가능함.
- ❁ 지역 간 차별은 전무하며, 쿠데타 관련설은 낭설임.

3. 주르완다대사는 1973.5.7. 현 대통령의 장기 집권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주재국 헌법 개정 및 관련 정세를 아래 보고함.

- ❁ 의회는 5.3. 아래 요지로 헌법(1962.11.24. 공포)을 개정함.
  - 대통령 4선 중임 허용 및 입후보자 60세 연령 제한 삭제
  -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 ❁ 동 헌법 개정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 자본주의 제도를 배격하고 민주적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함.

4. 주르완다대사는 1973.6.21. 르완다의 좌경화 동향 관련 아래 보고함.

- ❁ 헌법 개정 이후 민주적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첫 단계로 6.8. 국책회사(ONACO)를 설립하여 일체의 수출입, 운수 등 경제활동을 총괄 통제하기로 결정함.
- ❁ 1973.9월 초 예상되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11년간 계속된 제1공화국 체제를 종식하고 제2공화국으로 전환할 것을 고려 중임.
- ❁ 국호를 현재 르완다공화국에서 르완다 민주사회주의공화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5. 주르완다대사대리는 1973.7.5. 군사쿠데타 발발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 ❁ Habyarimana 소장 주도의 쿠데타 발발로 통금이 선포됨.
- ❁ 쿠데타 배경
  -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군부 권력 확대, 남부 출신 등용 및 각료들의 부패
  -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권력 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 쿠데타 주도 세력은 평화 및 통일 국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내각 총사직, 정당 및 국회 해산 등 8개 조치를 발표함.

❁ Habyarimana 소장은 1937년생으로 북부 출신이며, 1963년 군 총사령관, 1965년 국방 · 경찰장관을 역임함.

❁ 사태 전망

- 사태가 역전될 가능성은 없으며, 군부 독재체제가 전망됨.
- 국내 정치 및 대외관계 노선은 미정임.

6. 주르완다대사대리는 1973.8.3. 제2공화국 선포 관련 정세를 아래 보고함.

❁ Habyarimana 장군은 8.1. 자신의 대통령 취임 및 제2공화국 출범을 발표하고 군인, 민간인, 출신 지역, 부족, 종교 등을 고려한 신내각을 구성함.

❁ 대통령의 8.1. 연설 요지임.

- 외교 정책: 인접국과의 선린 관계,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회원국과의 유대 및 대르완다 원조국과의 관계 강화, 문호개방 정책
- 국내 정책: 국방 및 국내 치안 확보, 경제 발전, 국민 단합, 외국 투자 유치, 농업 부문 지원, 관광 유치

7. 주르완다대사는 1973.9.13. 대내 · 외 정세 전망 관련 아래 보고함.

❁ 국수주의를 표방한 적극적인 Rwandization이 예상됨.

❁ 국내 정치에서 자이르 모부투 대통령의 영향이 급격히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 자이르, 부룬디, 르완다 3국 간의 경제, 통상 유대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 사회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됨.

8. 주르완다대사는 1973.10.11. 르완다 정부가 10.8. 이스라엘과 단교를 발표하였으며, 동 단교의 배경으로는 모부투 대통령의 영향, OAU 중심의 집단 외교체제 분위기 및 이스라엘의 노출외교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을 보고함.

스웨덴 정세

| 73-085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O-37 / 2 / 1~7(7p)

외무부는 1973.9.16. 시행된 스웨덴 총선거 결과 분석 자료를 아래 작성함.

1. 개요

- 입헌군주국인 스웨덴은 1971.1월 헌법 개정으로 단원제를 채택함.
- 의회는 350석으로 매 3년마다 시행 중인 총선거는 사회주의 계열과 비사회주의 계열 양 진영 간 대결의 양상을 보이는바, 양 진영은 대외정책의 차이보다 사회 문제에 있어서 차이를 보임.
- 현 Palme 수상(사민당)은 1969.10월 취임한바, 사민당은 1932년 이래 41년간 계속 집권 중임.

2. 총선거 결과에 따른 의석수

- 여당 사민당 156석, 공산당 19석, 득표율 48.90%
- 야당 보수당 51석, 중앙당 90석, 자유당 34석, 득표율 48.79%

3. 선거 분석

- 사회주의 계열
  - 집권 사민당은 실업자 증가, 경기 후퇴, 물가고, 조세 문제, 범죄 증가 등 사회 문제와 국민들의 과거 41년간 집권에 대한 권태감으로 인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함.
- 비사회주의 계열
  - 여론조사에서 50% 이상 지지율로 선거에서 우세가 예상되었으나, 보수당과 중앙당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의석의 절반 이상 상실로 사민당 집권 종식을 달성치 못함.

4. 전망

- 사민당 등 사회주의 계열은 의회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으나, 야당과 동일 의석수 확보를 통해 향후 3년간 재집권하게 됨.
- 여야 간 동일 의석수에 따라 집권당 결정 문제 및 총선거 재실시 여부가 제기된바, 사민당은 야당의 퇴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산당과의 제휴로 계속 집권 의지를 밝힘.
- 사민당 정부는 1973년 말 현 국회 해산 시까지 집권을 계속하는 한편 신년도 새 국회 소집 후 일부 보수계와의 연립 등 해결 방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시기에 재선거를 거론할 것으로 전망됨.
- 선거의 승패 원인이 국내 사회적 문제에 국한되고 각 정당 간 좌우 대립 또는 이념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으며 스웨덴 정부의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외교정책에 비추어 향후 대한반도 정책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수단 정세

| 73-085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O-37 / 4 / 1~48(48p)

1. 주카이로총영사는 1973.1.31. 수단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관련 아래 보고함.

- ❋ 카르툼발 1.27. 외신 보도에 의하면 수단 니메리 대통령 암살 기도가 적발되어 관련 군인들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함.
- ❋ 암살 기도 주동 인물은 Shannan 퇴역 육군준장이며, 니메리 대통령은 동 사건 배후에 공산주의자와 모스멜 형제가 개입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음모 기도 세력은 물자 부족, 물가 상승 등 국내 문제를 이유로 암살을 시도했다고 언급함.

2. 주카이로총영사는 1973.3.2.~9. 주재국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수단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저 점거 사건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 ❋ 검은구월단 게릴라가 3.1. 사우디 관저 리셉션에 참석 중이던 수단 주재 미국 대사, 폴란드 대사 대리, 벨기에 대사대리 등을 인질로 억류한 사건이 발생함.
- ❋ 동 게릴라는 체포된 팔레스타인 게릴라 및 요르단에 구금 중인 대원들 석방을 요구한바, 요구 조건이 수락되지 않음을 이유로 인질 중 미국 대사 및 참사관, 벨기에 대사대리를 살해함.
- ❋ 수단 정부와 게릴라 간 전화 협상에 따라 3.4. 게릴라들이 투항함.
- ❋ 수단 정부는 3.7. 동 6명의 수단인을 반국가 행위 음모죄로 군사재판에 회부함.

3. 조선일보는 1973.9.6. 수단 정부가 9.5. 수일간 계속되어 온 학생들의 폭동과 노조의 파업 위협에 대응하여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음을 보도함.

4. 주카이로총영사는 1973.9.15. 수단 정세 관련 아래 보고함.

- ❋ 일반 개황, 근대 수단의 정치적 역사, 현 수단 정권의 안정도, 대내외 정책 동향, 외국 차관 및 원조 도입 현황, 경제 현황, 한-수단 간 무역현황
- ❋ 대내외 정책 동향
  - 1971.7월 공산 쿠데타 이후의 좌경적 이념 노선에서 탈피, 실리정책 추구
  - 니메리 정부는 1972.2월 남부지역 반란과 관련하여 에티오피아 황제의 중재로 남부지역에 대한 자치 인정, 구호 및 복구 시행
  -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일부 수정, 경제 분야에서의 민간 역할 강화
  - 아랍권과의 단결 표방, 1967년 중동전쟁 시 대이스라엘 선전포고 및 미국과 국교 단절
  - 수단 외교정책은 1971년 이후 다소 변경되어 중동분쟁 개입으로부터 이탈, 아프리카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치중

토고 정세

| 73-085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O-37 / 5 / 1~14(14p)

1. 주토고대사대리는 1973.8.21. 주재국을 방문 중인 월남 사절단 Tran Van Don 장군(하원 국방위원장) 면담 결과를 아래 보고함.

❁ 토고의 베트콩 승인 저지를 위해 방문함.

❁ 에야데마 대통령 면담 결과

- 대통령은 호의적이었으며 토고는 문호개방 정책에 의거하여 모든 국가를 승인하고 있으나 국가가 아닌 집단은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
- 베트콩은 타국의 국내 문제로 간여할 생각이 없음을 언급함.

❁ 월남 정부는 제3국이 월맹을 승인하는 것을 굳이 반대치 않음.

❁ 최근 토고의 시아누크 승인은 아마도 셍고르 세네갈 대통령의 부탁에 의한 것으로 생각함.

2. 주토고대사대리는 3/4분기 정세 보고서를 1973.10.27. 아래 제출함.

❁ 8.21. 일부 개각 시행

- 상공, 내무, 재무경제, 농업장관을 경질함.

❁ 토고의 대이스라엘 단교

- 토고 국민회의는 9.21. 대통령 주재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스라엘과의 단교를 결정함.
- 단교의 배경
  - · 비동맹회의에서 리비아 카다피 수반의 대이스라엘 투쟁 관련 아랍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경제원조 선언 및 토고 대통령의 비동맹회의 참석 후 리비아 방문 계획
  - · 알제리에서 에야데마 대통령이 리비아 카다피와 회담을 통해 상당한 액수의 원조를 약속 받고 이스라엘과 단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

❁ 토고 언론 통제 강화

- 신임 공보담당국무상은 9.24. 언론 관계자 회의를 소집하여 모든 보도 활동은 에야데마 대통령 및 토고 국민회의의 모든 정책을 위해 봉사해야 함을 강조함.
- 신문 및 방송 종사자들이 대부분 좌경 인사들로 동인들의 중국(구 중공), 북한 여행 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 우상화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태국 정세

| 73-085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O-37 / 6 / 1~31(31p)

1. 주태국대사는 1973.7.2. 차차이 부외상의 6.30.자 태국 외교 기본 정책에 관한 연설 내용을 아래 보고함.

❋ 외교 기본 정책
- 유엔 헌장, 국제 정의 및 평화공존 정신에 기초함.
- 정치이념에 구애됨이 없이 동남아 인접국과 친선 관계를 유지함.

❋ 중립 문제
- 역내 중립은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추진이 어려운 문제로서 장기 정책으로 인식해야 함.
- 주태국 미군 문제와 관련하여 태국은 동 주둔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보유함.

2. 외무부 아주국은 태국의 최근 소요 사태 분석 자료를 1973.10.17. 아래 작성함.

❋ 사태 배경
- 군부의 장기 집권 및 1973년 이후 물가 앙등, 민생고에 따른 일반 국민의 불만 점증 특히 지식층, 학생들의 불만 표출
- 국제 정세 추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군부 정권에 대한 지식층과 학생들의 정부 비판이 시위사태로 발전

❋ 경위
- 10.6. 영구헌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인 위원회 소속 학생 체포
- 10.13. 사태 악화 및 구속학생 석방 요구 대규모 시위 발생
- 10.14. 타놈 내각 총사퇴

❋ 분석 및 전망
- 학생 시위, 내각 총사퇴 및 타놈 수상의 해외 망명 등으로 정국 혼란 악화
- 상당 기간 정치적 공백기 초래 불가피 전망
- 신임 산야 수상은 6개월 내 헌법 공포를 약속하고 있으나 동 기간 내 국회 동의 및 공포 가능성 난망시
- 동 사태로 야기된 정세 혼란상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금명간 발표될 신내각 구성 및 이에 대한 군부 동향이 중요

3. 주태국대사는 1973.10.17. 신내각 구성 및 반응을 아래 보고함.

❋ 산야 수상은 10.16. 신내각 구성을 발표함.

❋ 대다수 국민은 민간정부 수립을 환영하나 일각에서는 신정부의 생활고 등 민생 문제 해결 능력 및 구정권의 권력 장악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함.

4. 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는 1973.10.17. 태국 프로파스 전 부수상 일행이 대만에 도피했으며, 조만간 미국으로 망명할 것이라고 보고함.

튀니지 정세

| 73-085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O-37 / 7 / 1~60(60p)

1. 주튀니지대사는 주재국 부르기바 대통령의 헌법 개정 관련 1973.3.13.자 의회 특별연설 요지를 아래 보고함.

❁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 1970.6월 헌법 개정 계획을 발표하고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음.

❁ 헌법 개정 관련 아래 의견을 표명함.

- 의회는 대통령에게 정책 건의 가능, 의회에 대한 2회 견책 시 대통령은 의회 해산 가능
- 대통령 궐석 시 수상이 대행, 45일 이내 국민투표로 대통령 선출

❁ 대통령 후계자 문제에 대해 수상의 권한 대행을 제의함으로써 종전의 억측에 대해 해명함.

2. 주튀니지대사는 1973.9.12. 주재국 및 관할국 1973년도 상반기 정세 보고를 아래 제출함.

❁ 국내 정세

- 부르기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은 절대적임.
- 개헌안이 곧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동 대통령의 재선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외교 정책

- 외상이 1972.12월 의회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주재국은 이스라엘 및 아프리카 인종 차별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와 우호관계를 유지한다는 중립 개방정책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됨.

3. 주튀니지대사는 1973.10.16. 주재국의 1973년도 3/4분기 정세 보고를 아래 송부함.

❁ 국내 정세

- 부르기바 대통령의 건강 회복에 따라 국내정세는 안정을 유지함.
- 동 대통령의 1974.11.1. 현 임기 종료 시까지 국내 정세에 별다른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재선도 무난할 것으로 관측됨.

❁ 외교정책

- 중립 개방정책을 계속 유지함.
- 대이스라엘 관계에 있어 전쟁을 피하고 평화적인 방법을 강구한다는 종래 입장을 견지함.
- 중국(구 중공)의 유엔 가입 및 영향력 증대, 일본의 강대국화 등에 따라 아시아에 큰 관심을 표명함.

❁ 한국과의 관계

- 외무부장관의 8.12.~14. 주재국 방문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우호관계 긴밀화의 계기를 마련함.
- 한국의 10월 유신을 이해하는 입장을 보이고 특히 한국의 주도적인 남북대화 추진을 환영함.
- 대유엔 및 국제기구 정책으로 중립정책 원칙을 표방하여 한반도 문제에 기권 입장을 취해 왔으나, 한국의 6·23 선언을 환영하는 한편 한국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입장을 원칙적으로 지지함.

소련 정세

| 73-086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특수지역과
MF번호	O-37 / 8 / 1~48(48p)

1. 외무부 특수지역과는 1973.2월 아래 소련 정부 각료회의 구성 및 인물 관련 아래 자료를 작성함.

- ❋ 수상, 부수상 10명, 각료급 연방상 22명
- ❋ 25개 연방공화국성, 20개 각료회의 부속기관, 각 공화국 각료회의 의장 15명

2. 주스웨덴대사는 1973.4.7. 소련 코시긴 수상의 4.2.~6. 스웨덴 방문 결과를 아래 보고함.

- ❋ 대소련 주요 수출 공장 시찰, 해운 분야 등 협의, 문화교류협정 서명
- ❋ 코시긴 수상은 연설을 통해 스웨덴의 중립 노선에 만족 표명
- ❋ 양국 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 협의
- ❋ 소련은 양국 간 경제적 유대 강화 및 중립정책 경향이 강한 스웨덴 등 모든 북구 지역의 중립화 지대 모색

3. 주스웨덴대사는 1973.4.7. 소련 포드고르니 최고회의간부회의 의장의 4.3.~7. 핀란드 방문 결과를 아래 보고함.

- ❋ 소련 · 핀란드 우호조약 체결 25주년 기념식 참석, 양국 간 우호관계 강조 연설
- ❋ 소련은 핀란드의 중립 노선을 더욱 확고히 하고 친소적인 핀란드의 적극적인 구주안보회의 참여 유도 모색

4. 외무부 특수지역과는 1973.4.30. 소련 정치국원 개편 관련 아래 자료를 작성함.

- ❋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4.27. 전원회의에서 정치국원을 15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하는 등 일부 정치국원 개편을 단행
- ❋ 브레즈네프는 경제성장 둔화 타개책으로 대서방 관계 강화 및 서구 자본 도입을 위해 미국 및 서방과의 관계 강화 정책을 반대하는 정치국 내 일부 보수적인 당료들을 경질

5. 외무부 특수지역과는 소련 코시긴 수상의 1973.9.24.~30. 유고슬라비아 방문 및 소련 · 유고 정상회담 개최 관련 아래와 같이 분석함.

- ❋ 소련의 대발칸 정책 강화를 위해 유고슬라비아와의 관계 긴밀화, 양국 간 경제협력 문제 협의
- ❋ 티토 이후의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 강화 및 소련과의 재결속 등 대유고슬라비아 정책 대책 수립
- ❋ 중국의 대발칸 진출 억제

6. 외무부 특수지역과는 1973.10.25.~31. 모스크바 개최 세계평화군대회 관련 아래 자료를 작성함.

- 143개국, 1,220개 단체 약 3,200명 참가
- 대회 목적
  - 대량 살상무기 금지 및 군비 경쟁 중단, 외국 군사기지 철폐 및 전반적 군비 축소
  - 식민주의와 인종차별 철폐, 평화 공존 및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의제
  - 평화 공존 및 군비 축소
  - 민족해방운동 및 인도차이나, 중동 등 지역 문제
- 한반도 관련 사항
  - 10.31. 공동성명서에 남북대화가 북한의 주도로 성사되었으나 한국이 동 대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문구 포함

7. 외무부 특수지역과는 1973.12.10.~11. 개최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 관련 아래 자료를 작성함.

- 브레즈네프 서기장의 연설, 국가계획위원회 의장의 경제계획 발표, 1974년도 예산안 설명
- 12.11. 소련 경제력의 성장 및 국민의 물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의 결의안 채택
- 분석
  - 브레즈네프의 연설은 대서방 평화공존 외교 등 동서 화해의 기본 정책 확인, 최근 국제 문제, 1974년도 대외정책 방향에 관한 내용일 것으로 추정
  - 브레즈네프 등 현 지도층의 권력구조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소련의 대한국 정책도 현실적인 방향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평가

미국 정세

| 73-086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O-37 / 9 / 1~34(34p)

주미대사는 1973년도 4/4분기 및 1974년도 연차 정세 보고서를 아래 제출함.

1. 국내 정세

- ❋ 워터게이트 및 연관 사건과 관련하여 하원 법사위는 닉슨 대통령의 탄핵 소추 심의에 착수할 예정임.
- ❋ 1974년은 중간선거의 해로 동 선거 결과는 공화당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 및 차기 대통령 선거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양당 정책의 중심 사안이 될 전망임.
- ❋ 대통령의 전쟁수행권한 법안에 닉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으나, 1973.11.7. 상하 양원이 각각 2/3 찬성으로 동 법안을 재가결하여 법률로 확정됨.
- ❋ 주요 대외정책 동향
  - 화해 및 협상 정책의 계속적인 추진
  - 서구 및 일본과의 협력관계 재조정
  - 강력한 국방력을 배경으로 한 대외정책 수행
  - 에너지 및 경제 문제 해결에 역점
  - 아시아 지역에서의 계속적인 닉슨독트린 수행

2. 대소련 관계

- ❋ 대소련 화해 및 협조 정책을 계속 추진 중이나 안보 측면의 SALT(전략무기제한교섭) 및 구주 MBFR(상호균형 감군교섭) 등에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로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음.
- ❋ 미소 무역협정 교섭과 관련하여 하원이 소련 정부의 유대인과 지식인 박해를 이유로 대공산국 최혜국대우 금지를 가결함에 따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임.

3. 대한반도 정책

- ❋ 미국의 기본 정책에 변함이 없으며 남북대화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계속 지지함.
- ❋ 군원 문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 1973.1.8. 긴급조치에 관해 미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논평을 유보함.
- ❋ 대북한 관계 관련 종래 입장에 변경이 없으며 북한의 WHO(세계보건기구) 가입 이후 주유엔 상주대표부 설치에 따라 북한대표단이 뉴욕에 상주하나 이는 유엔과 미국 간의 협정에 따른 것으로 미국의 대북한 정책 변화 여부와 무관함.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정세

| 73-086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O-37 / 10 / 1~57(57p)

1. 주부르키나파소대사대리는 1973.2.12. 주재국 라미자나 대통령이 2.12. 세네갈을 공식 방문 예정임을 아래 보고함.

- 양국 간 경협 문제를 협의할 예정임.
- 주재국은 외교적으로 코트디부아르 영향권으로부터 세네갈 영향권으로의 전환을 모색 중으로 동 움직임은 한국에 불리한 것으로 분석됨.

2. 주부르키나파소대사대리는 1973.7.12. 캄보디아 특별사절단 방문 관련 아래 보고함.

- 시아누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7.10. 주재국을 방문하여 대통령 및 외상을 면담함.
-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7.12. 시아누크 정권을 캄보디아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한바, 세네갈 대통령의 개인적인 영향력이 작용하는 한편 미국에 대한 반감에 따른 것으로 관측됨.

3. 주부르키나파소대사대리는 1973.9.15. 주재국의 중국(구 중공)과의 수교 관련 아래 보고함.

- 주재국 정부는 9.15. 중국 승인 및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합의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바, Colombo 외상이 비동맹회의 참석 중 비밀리에 북경을 방문하여 중국 외상과 공동성명 및 경협 협정 서명 후 동시 발표한 것으로 보임.
- 대만(구 자유중국)대사에 대해서는 10일 내 출국을 요청한바, 중국은 추가 원조사업을 약속한 것으로 보임.

4. 주부르키나파소대사대리는 1973.10.10. 주재국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했음을 보고함.

5. 주부르키나파소대사대리는 주재국 정부가 1973.12.3. 중국의 대부르키나파소 5천만 달러 차관 제공에 관한 협정 서명을 발표하였으며, 동 차관은 무이자 장기 차관으로 중국이 부르키나파소와 수교 후 처음으로 체결한 원조협정임을 보고함.

6. 주부르키나파소대사대리는 1973.12.28. 주재국 정세를 아래 보고함.

- 12.19. Bonde 헌병대위가 신임 내무장관에 임명된바, 전임 Some 내무장관은 정치적 야심이 없는 온건파 군인으로서 현 수상의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고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명해 왔음.
- Some 내무장관의 사임 관련 군 간부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군부에서 정식으로 현 수상의 퇴임을 요구하는 각서를 제출하였다는 설이 있음.

우루과이 정세

| 73-086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중남미과/특수지역과
MF번호	O-37 / 11 / 1~126(126p)

1. 주우루과이대사는 1973.3.2. 주재국 특별정세보고서를 아래 제출함.

❋ 정부와 군부의 대결 및 협상 성립
- 군부는 2.9. 경제 개혁, 부패 일소를 위한 개혁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의 수락을 요구하는 등 정부와 대립함.
- 대통령과 군부 간 2.11. 협상을 통해 대통령이 군부 개혁안을 수락함에 따라 정책 결정에 군부가 참여할 수 있는 국가안보회의 설치 및 내무 · 국방장관은 군부가 희망하는 인사 임명 등에 합의함.

❋ 전망
- 현 정부에 대한 군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됨.
- 외무성 개편으로 경제외교 강화 및 재외공관 대폭 축소가 예상됨.

2. 주우루과이대사는 1973.6.27. 주재국 비상사태 선포 관련 아래 보고함.

❋ Bordaberry 대통령은 6.27. 상하원을 해산하고 국가비상의회 구성 포고문을 발표함.
- 모든 집회의 사전 승인, 군경의 질서 유지 조치 강화, 휴교 조치, 방송통신망 검열 조치 등
- 국가비상의회가 현행 헌법을 개정할 예정

❋ 동 의회 해산은 좌익계 의원에 대한 자격 박탈이 의회에서 부결되자 군부가 강경책을 주도한 것으로 대규모 정치 개혁을 의미함.

3. 주우루과이대사는 1973.7.10. 이후 주재국 반정부 시위 및 후속 사태 관련 아래 보고함.

❋ 공산당 및 좌익연합전선 주도의 반정부 시위가 7.9. 발생하여 유혈사태로 확산됨.

❋ 군은 좌익연합 Seregni 총수 및 전직 국회의원 등 시위 주동 인물들을 체포하고 좌익계 신문에 대한 정간 조치를 결정함.

❋ 7.22. 이후 정상을 회복 중으로 대통령은 의회 해산에 반대하여 사임한 문공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을 임명함.

❋ 국가비상의회를 비정치인 1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Sapelli 부통령을 추천할 것임을 발표함.

4. 주우루과이대사는 1973.9.29. 주재국 정부의 소련대사에 대한 경고 조치 관련 아래 보고함.

❋ 정부는 9.29. Demidov 소련대사에게 동 대사관에서 칠레 군사정부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에 대해 엄중 경고함.

❋ 소련대사관은 '칠레 군사혁명에 대한 소련 공산당 선언' 제하 칠레 내정에 대한 간섭, 칠레 국민 및 노동자의 궐기 및 단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발간하여 배포한 바 있음.

5. 주우루과이대사는 1973.12.4. 주재국의 공산당 불법화 조치 관련 아래 보고함.

❁ 주재국 정부는 11.28. 공산당을 불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12.1. 우루과이 공산당, 사회당 및 마르크스주의 단체의 해산을 명령함.

❁ 배경 및 전망

- 대통령은 6.27. 친위 쿠데타 이후 질서 회복을 시도했으나, 좌익계 정치인, 노동자, 학생 등의 대정부 투쟁으로 국내 정정 혼란이 지속됨.
- 동 공산당 불법화 조치는 국내 질서 회복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칠레, 브라질, 페루 등 주변국이 군사독재를 통한 장기 집권에 성공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격적인 보수 우익 군사체제 확립을 위한 첫 단계 조치로 평가됨.
- 정부가 엄격한 보도 통제, 반정부 세력 진압 및 5개년경제계획의 강력한 추진에 주력함에 따라 국내 정정은 일단 소강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6. 주한 우루과이대사관은 1973.12.4. 외무부에 대한 공한을 통해 공산당 불법화 조치 내용과 함께 동 조치가 우루과이의 대외관계에는 영향이 없을 것임을 통보하였으며, Pedemonte 주한 우루과이대사 대리는 12.6. 외무부 김동휘 미주국장을 면담하고 동 조치 배경 및 향후 전망 등을 설명함.

월남전. 전3권. V.1 1-2월

| 73-086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O-37 / 12 / 1~601(601p)

1973.1~2월 중 월남전 동향임.

1. 주월남대사는 1973.1.19. 월남 평화협정 관련 티우 대통령의 언급 요지 및 휴전 전망을 아래 보고함.

❋ 티우 대통령 언급 요지

- 협상 타결을 위한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는바, 미국이 군사 및 경제 원조를 보장할 경우 동의할 것이며 휴전은 1973.1월말 이전이라도 타결 가능함.
- 월남 정부는 동 휴전협정이 평화와는 별개의 단순한 군사상의 휴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휴전 후 많은 문제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 키신저-레둑토 간 회담이 1.23. 재개될 경우 3~4일 내 타결될 것으로 전망함.

2. 주미대사는 1973.1.23. 월남 평화협정 관련 닉슨 대통령의 연설 요지를 아래 보고함.

❋ 파리 시간 1.23. 12:00시 월남 평화협정 가서명 후 1.27. 정식 서명 예정임.
❋ 1.27. 24:00시 휴전이 발효하며, 국제감시위원단이 기능을 개시함.
❋ 동 협정 발효 후 60일 이내에 포로 석방 및 주월미군의 완전 철수가 이루어짐.
❋ 동 협정상 월남은 유일 합법정부이며, 미국은 계속적인 지원을 확인함.

3. 주미대사는 1973.1.24. 닉슨 대통령의 연설문, 월남 평화협정문 및 4개 의정서, 3개 설명서를 송부함.

❋ 평화협정문 9장 23개조
❋ 4개 의정서: 지뢰, 종전, ICCS(국제휴전감시위원단), 민간인 및 군인 포로 송환
❋ 3개 설명서: 협정, ICCS, 군사위원회
❋ 캐나다, 헝가리, 인도네시아, 폴란드 4개국의 국제휴전감시위원단을 1.27. 구성

4. 외무부는 1973.1.26. 대통령에게 월남 종전 및 평화 회복에 관한 협정 내용 및 분석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 협정문 특징

- 월맹의 월남 침공 사실 및 월맹군 철수 등에 관한 규정 전무
- 군사 문제 관련 현 위치 휴전 및 외국군의 협정 발효 후 60일 이내 철군 규정
- 휴전 감시기구는 월남·베트콩 2자 군사위, 협정 당사국 4자 합동군사위, 국제휴전감시위원회와 국제회의 등 3중 감시기구로 구성
- 미국은 월맹과의 화해를 기대하고 월맹에 대한 전후 복구 및 재건 기여 약속

❁ 협정 분석
- 동 협정은 국민화합위원회 기능 명시 등 일부 월남 정부의 주장을 반영하였으나 월맹군 관련 규정이 전무하고 미국과 월맹의 대등한 관계 등 미국, 월남 등 연합국에 불리한 규정을 포함
- 미국은 휴전 후 월남의 평화 유지 실현을 의도
- 동 협정은 상호 타협에 의한 합의로 협정 해석 및 시행 과정에서 혼란과 충돌이 예상되며 협정 자체보다는 관계 당사국 및 주변국들의 정치적, 외교적 각축 및 타협에 의해 향후 월남 정세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

5. 주미대사는 1973.1.27. 월남 종전 및 평화회복에 관한 4자 협정이 미국 로저스 국무장관, Tran Van Lam 월맹 외상, Nguyen Duy Trinh 월남 외상, Nguyen Thi Binh 월남 임시혁명정부 외상 간에 파리에서 서명 되었음을 보고함.

6. 외무부는 1973.2월 이후 월남 평화협정 이행 상황을 아래 작성함.

❁ 공산 측 협정 위반 사례
❁ 포로 석방 현황
❁ 4자 JMC(합동군사위원회) 활동 현황
❁ ICCS(국제휴전감시위원단) 활동 현황
❁ 월남-베트콩 간 회담 진행 상황
❁ 미국은 협정 제19조 규정에 따라 월남 평화보장을 위한 12개국 국제회의의 2.26. 이후 파리 개최를 제안

월남전. 전3권. V.2 3-6월

| 73-086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O-37 / 13 / 1~376(376p)

1. 주미대사 및 주프랑스대사는 키신저 보좌관의 1973.2.10.~13. 하노이 방문 후 공동성명을 통해 전후 복구 및 경제 재건 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3~4월 파리 개최 미국-월맹 간 합동경제위원회에서 미국이 월맹에 제공할 물자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 중임을 보고함.

2. 주미대사는 1973.3.30. 닉슨 대통령의 월남 정세 관련 3.29.자 연설 내용을 아래 보고함.

- ❋ 미국의 포로 송환 및 완전 철군 등 월남전 목표 달성 언급 및 국민의 지지에 감사
- ❋ 월남의 휴전협정 준수 강조 및 월맹의 협정 위반 경고

3. 주미대사는 미국을 방문 중인 티우 월남 대통령과 닉슨 대통령 간의 1973.4.2. 정상회담 및 4.3. 공동성명 발표 관련 아래 보고함.

- ❋ 양국 간 강력한 우호관계 재확인, 미국은 월남 복구를 위한 전후 경제원조 제공을 약속
- ❋ 지글러 대변인은 월맹의 휴전협정 위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유보

4. 외무부는 1973.4.9. 대통령에게 티우 월남 대통령의 방미 결과 관련 아래 보고함.

- ❋ 월남 국내 정세 평가, 종전협정 이행 상황, 전후 복구, 향후 월남 안보 전망
- ❋ 분석
  - 미국은 티우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 입장을 지양하고 종전협정 당사자 및 기타 관계 제국의 입장에 대한 고려를 구체화
  - 닉슨 독트린의 범주 내에서 안보 및 경제지원을 통한 영향력 유지라는 대아시아 정책의 일환으로 월남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정책을 확인

5. 외무부는 1973.6.14. 대통령에게 6.13.자 월남 종전협정 보완 공동성명 발표에 관해 아래 보고함.

- ❋ 경위
  - 1.28. 월남 종전협정 발효 이후 계속된 협정 위반 및 불이행 상태 종식을 위해 5.17.~6.13. 파리에서 미국-월맹 간 비밀협상 개최
  - 동 협상 타결에 따라 6.13. 협정 4당사자인 미국, 월남, 월맹 및 베트콩 간에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
- ❋ 공동성명 요지
  - 미군기의 정찰 비행 중지, 기뢰 작업 종결, 월남 및 월맹군의 휴전 발효 당시 지점으로 복귀, 포로 석방
  - 민족화합위원회 설치, 미국 · 월맹 간 경제원조 회담 재개

❁ 분석

- 종전협정 관계 규정 보완 및 준수 재천명
- 월남 측이 제시해 온 월남 내 월맹군 철수, 비무장지대 재설정, 캄보디아(구 크메르) · 라오스에서의 외군 철수 주장 미반영
- 미군기의 월맹 정찰비행 중지, 미국 · 월맹 간 경제원조 회담 재개 등 월맹의 실리 확보
- 주요 현안 문제 특히 월남의 정치적 장래 문제 등 근본적인 사안과 관련한 월남 · 베트콩 간의 이견에 따라 동 공동성명 관계 규정의 원만한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월남전. 전3권. V.3 7-12월

| 73-086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O-37 / 14 / 1~141(141p)

1. 주월남대사는 1973.3월 이후 파리 개최 월남의 정치적 장래에 관한 월남 · 베트콩 간 정치회담 내용을 아래 보고함.

- 향후 정치 일정, 분과위 설치 등 협의
- 7월 합의서 초안 서명, 8월 월남 내 월맹군 철수, 9월 상호 군대 감축 및 민족화합위원회 구성, 12월 총선 실시 목표로 개최 중

2. 주월남대사는 1973.7월 이후 월남 정부가 발표한 각종 항의 각서, 규탄 성명서를 아래 보고함.

- 포로 부당대우 관련 외무성 성명(7.5.)
- 월남의 정치적 장래 문제 해결 관련 공산 측의 무성의 규탄 성명(7.28.)
- 월남 내 공산 측이 건설한 군용 비행장 철거를 요구하는 월남 및 미국 정부의 항의각서(9.10.)
- 군수물자 적재 중국(구 중공) 선박의 입항 및 Le Minh 기지에 대한 월맹군의 침공을 규탄하는 항의각서(10.1. 및 10.5.)
- Bach Ma 기지에 대한 월맹군의 공격에 대한 항의각서(10.12.)
- 공산 측의 휴전 위반을 규탄하는 성명서(10.26.)
- 공산 측의 공세를 규탄하는 외무성 성명서 및 항의각서(11.6. 및 11.7.)

3. 주월남대사는 1973.8.16. ICCS(국제휴전감시위원단) 위원국 중 7.31. 캐나다의 철수 및 8.14. 이란의 참여를 보고함.

4. 주월남대사는 1973.11.29. ICCS 관련 동향을 아래 보고함.

- 이란 대표단은 아래 ICCS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본국 정부에 동 기구로부터 철수를 건의
  - 월남과 베트콩 측이 ICCS의 역할을 외면하고 휴전협정을 계속적으로 위반
  - ICCS 대표단 상호 간의 이견
  - 월남 및 베트콩 측의 ICCS 활동 분담금 미납
- 월남 정부 대변인은 11.26. 이란이 철수할 경우 공산 측이 동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을 논평

5. 주월남대사는 1973.12.3. Vuong Van Bac 외상이 월남의 국제적 지위 제고 및 베트콩 대표단에 대한 국제적 승인 저지를 목적으로 12.1.부터 약 3주간 유럽 및 아프리카를 순방 예정임을 보고함.

월남전 종식에 관한 대책

| 73-086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북미2과
MF번호	Re-20 / 12 / 1~52(52p)

1. 외무부는 1973.1.18. 월남 평화협상이 가까운 장래에 타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아래 요지의 대통령 명의 성명서 발표를 건의함.

- 월남전 종전 및 평화회복 환영, 휴전에 따른 동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 지속 염원
- 한국 정부는 1965년 월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 월남의 자유와 독립 수호를 위해 한국군 파견
- 한국군의 파견 목적 성취에 따라 한국 정부는 병력의 명예로운 철수 개시 결정
- 한국 정부는 향후 월남과의 계속적인 우호관계 유지 및 평화 재건을 위한 협조 희망

2. 박정희 대통령은 1973.1월 상기 외무부 건의안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는 월남전 종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함.

- 평화를 위한 한국군의 공훈 치하
- 전 장병의 노고 및 명예로운 회군이 가능하도록 노력한 장병들의 지원과 성원 치하

3. 외무부는 1973.1.22. 대통령에게 아래 요지의 월남 종전 대비책을 보고함.

- 주월남 한국군 철수 대비 철군 준비 완료
- 휴전협정 서명 관련 대통령 명의 성명서 발표 문안 작성 등 정부 조치
- 대동남아 평화외교 추진
- 월남 전후복구 참여 대비
- 경비 및 병력 조정 문제 등 미국에 대한 미결 사항 교섭 시행
- 주월남 민간인 및 상사 보호
- 주월남 한국군 철수에 따른 공보 활동 추진

4.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실은 1973.1.31. 월남 티우 대통령의 1.28.자 박 대통령에 대한 아래 요지의 친서 사본을 외무부에 송부함.

- 1.27. 월남전 휴전에 즈음하여 월남에서의 한국군의 용맹스러운 공헌에 심심한 사의 표명
- 한국의 참전은 월남의 평화 회복에 지대한 공헌
- 휴전협정을 통해 침략자들은 침략 중단 및 외부의 간섭 없는 월남 국민의 자결권 존중을 확약
- 양국 용사들의 노력과 숭고한 희생으로 양 국민의 목적 성취
- 양국이 평화와 번영, 조화로운 아시아 건설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를 희망

월남전 한국군 포로 및 한국 민간인 실종자 송환문제

| 73-086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O-37 / 16 / 1~101(101p)

1. 외무부는 1973.2월 월남전 한국군 포로 및 민간인 실종자 송환을 위해 국방부 및 주월남대사관과 아래 사항에 대해 협의함.

- ❋ 인적 사항 파악, 송환 방법
- ❋ 주월남 미국대사관과의 협조 등

2. 국방부는 1973.3.24. 주월남 무관에게 실종자 인수 및 송환 계획을 아래 지시함.

- ❋ 인수계획 관련 인적 사항 신속 보고, JMC(합동군사사령부) 미군대표로부터 송환자 인수, 건강 진단, 신변보호 대책 강구
- ❋ 송환계획 관련 KAL 항공기 이용, 호송관이 본국까지 호송, 지정 부서에 인계

3. 외무부는 1973.3.26. 주월남대사에게 월남전 종전협정상 포로 교환 및 민간인 석방 기한이 3.26. 만료됨에 따라 아래 사항에 관한 현지 정세를 보고하도록 지시함.

- ❋ 공산 측 억류 미군 포로 및 외국 민간인 수, 미국 · 월남 측이 억류 중인 공산군 포로 수, 주월 미군 잔여 병력
- ❋ 공산 측이 억류 중인 포로 및 외국 민간인 중 한국군 및 민간인 포함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4. 국방부는 1973.3.27. 파월 국군 실종자에 관해 아래와 같이 발표함.

- ❋ 1965~73년 파월 연 병력 31만5천 명 중 행방불명자는 6명
- ❋ 국방부는 관계부처 협조하에 동인들의 생사 여부 및 소재지를 확인 중

5. 외무부는 1973.3.27. 주월남대사에게 상기 국방부 발표문을 통보하고 소재 확인 및 송환 문제에 관해 주재국 및 미군 당국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현재 파악 중인 민간인 실종자 명단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6. 주미대사는 1973.4.9. 파월 국군 실종자 소재 확인 관련 아래 보고함.

- ❋ 미 국무성에 미군 실종자 소재 확인 시 한국군 실종자에 관해서도 확인을 요청
- ❋ 미국 측은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해 소재 확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

7. 주월남대사는 1973.5.24. 한국인 실종자 파악을 위한 대사관의 5.9.자 공한에 대해 주월남 미국대사관은 5.28.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회신하였음을 보고함.

월남 정세. 전2권. V.1 1972.12-73.7

| 73-0869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O-38 / 1 / 1~371(371p)

1. 주월남대사는 1973.2월 공관장회의 자료 '월남공화국 정세 및 전망'을 보고함.

❁ 국내 정세
- 군사: 공산군의 춘계 공세, 전망
- 정치: 대통령의 비상대권, 대통령의 지위 강화, 정계 개편, 전망

❁ 대외관계
- 외교정책, 휴전에 대한 월남의 입장
- 대한국 관계: 주월 한국군 철수 문제, 전후 경제협력

❁ 주요 사업계획
- 각종 협정 체결, 주요 인사 방한 초청, 한 · 월남 친선협회, 의원연맹 교류, 교민 보호, 경제 활동

2. 재외공관은 1973.1~7월 중 주재국의 월맹 승인 동향을 아래 보고함.

❁ 캐나다(2.7.), 벨기에(3.23.), 프랑스(4.13.), 영국(7.17.), 싱가포르(8.1.), 이란(8.4.)

3. 주월남대사는 1973.5.30. 티우 대통령의 5.29. 연설 내용을 아래 보고함.

❁ 평화는 개발의 전제 조건이며, 공산주의 음모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총선 실시임.
❁ 월남은 미국에 연간 7억 달러의 원조를 요청한바, 1980년경 연간 1억 달러 감소가 예상됨.

4. 주월남대사는 1973.7.21. 티우 대통령의 월남 민주당 세미나에서의 연설 요지를 아래 보고함.

❁ PRG(월남임시혁명정부) 승인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 공산권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 수립 용의가 있음.
❁ 공산 측 통제지역 내로의 생활필수품 유입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5. 주월남대사는 1973.7.23. 아래 상반기 주재국 정세 보고서를 제출함.

❁ 국내 정세, 대외관계 및 휴전협정
❁ 전망
- 월남 정부는 정당, 의회, 경제,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적극적인 정책 수행 및 범국민적 사회정화운동을 추진할 예정임.
- 1.27. 휴전협정을 기초로 월남에 대한 국제적 이해 및 지지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전후 복구 및 경제 개발을 위한 원조 획득 및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교 역량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됨.
- 한 · 월남 관계는 국군 파병 등 혈맹관계를 토대로 제 분야에서 친선우호 및 협력관계 증진이 기대됨.
- 국제 사회의 휴전 이행, 감시 및 통제체제에도 불구하고 협정의 순조로운 이행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월남 정세. 전2권. V.2 1973.8-12

| 73-0870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O-38 / 2 / 1~170(170p)

1. 주월남대사는 1973.7월 이후 각국의 월맹과의 외교관계 수립 및 단교 동향을 아래 보고함.

- ❋ 수교: 캐나다(7.31.), 싱가포르(8.1.)
- ❋ 단교: 세네갈(8.15.)

2.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1973.8~12월 중 월맹과의 국교 수립 동향을 아래 보고함.

- ❋ 싱가포르(8.1.), 이란(8.4.), 일본(9.21.), 뉴질랜드(9.29.)

3. 주월남대사는 1973.8.24. 대만(구 자유중국) 타이베이 개최 제19차 APACL(아시아반공연맹)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공산주의 위협을 지적하고 월남의 평화 정착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8.21. 발송하였음을 보고함.

4. 주월남대사는 비동맹회의기구의 PRG(월남임시혁명정부) 참석과 관련하여 티우 대통령이 1973.9.1. 아래 요지의 비동맹 사무총장 앞 전문을 발송했다고 보고함.

- ❋ PRG 참석의 부당성 및 NLF(베트남민족해방전선)은 월맹의 괴뢰단체임을 지적
- ❋ 월남의 평화 및 독립 추구 외교정책 강조
- ❋ NLF를 정부로 인정하는 국가와 외교관계 단절 입장 표명

5. 주월남대사는 1973.9.17. 월남 정부가 9.14. 라오스 평화협정 서명에 대해 동 평화협정을 환영하나 라오스내의 월맹군 주둔으로 인해 라오스 평화가 의문시된다고 논평했음을 보고함.

6. 주월남대사관은 1973.10.10. 인도차이나 아래 정세보고서를 제출함.

- ❋ 월남, 라오스 및 캄보디아(구 크메르) 정세
- ❋ 전망
  - 월남의 현상유지 지속 예상, 향후 2년 내 공산 측의 전면 공세 가능성 희박
  - 미국의 인도차이나에서의 군사적 개입 종식 및 월남화(Vietnamization) 계획의 성공
  - 인도차이나 각국 및 각 교전 당사자의 목표가 이념으로부터 탈피 국가 위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

7. 주월남대사는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과 월맹 레둑토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월남 정부 대변인의 1973.10.17. 언급 요지를 아래 보고함.

- ❋ 미국은 월남에 대한 원조와 파리협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에 반해 월맹은 침략자로서 평화에 대한 기여가 전무
- ❋ 레둑토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의 부당성 지적

8. 주월남대사는 1974.1.18. 아래 주재국 1973년도 4/4분기 정세 보고서를 제출함.

- 국내 정세, 대외관계, 월남의 평화 회복 및 전쟁 종식을 위한 협정 이행
- 전망
  - 티우 행정부는 개각 등을 통해 민생 안정과 국가개발계획을 추진, 대공산 정치투쟁 기반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 대외관계는 PRG에 대한 국제적 승인 저지에 역점, PRG 승인 문제와 연계하여 당분간 공산권과의 관계 정상화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우방 강대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는 한 공산 측은 지역, 주민에 대한 작전을 통해 현상을 고착화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할 것이며 월남 정부는 이에 대항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베네수엘라 정세

| 73-087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남미담당관
MF번호	O-38 / 3 / 1~23(23p)

주베네수엘라대사대리의 1973년 중 주요 정세 보고임.

1. 1973.12.9. 시행 대통령 선거 결과(12.13.)

- ❁ 중앙선거위원회 중간 개표 결과 C. A. Perez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적임.
- ❁ 동 후보의 당선에 대한 축전을 건의함.

2. 대통령 선거 결과 추가 보고(12.14.)

- ❁ Perez 후보 당선이 확정된바, 1973.3.2.~12. 기간 중 취임 예정임.
- ❁ Perez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민주행동당은 중도보수 정당으로서 대내외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한국을 지지하는 기본 정책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 주재국 관례에 비추어 현 Calvani 외상의 유임 가능성은 희박함.

3. Perez 대통령 당선인의 대내외 정책(12.17.)

- ❁ 개관
  - 민주행동당은 국회 내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현 정권보다 더 강력하게 제반 시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
  - 신정부 수립 후 주재국의 기본 대내외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 ❁ 대외정책
  - 유엔헌장에 따른 국제협력 준수, 기존 외교관계 존중
  - 인종차별 및 식민주의 배척
  - 효과적인 국제문제 대처를 위해 외무성 개편 및 외교 자문위원회 구성
- ❁ 대내정책
  - 정부기구 개편 및 경제개발 기구 강화
  - 교육 분야 기회평등, 기술교육 및 고용증대 정책 강화,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 도모
  - 문화 증진을 위한 국가문화자문위원회 구성
- ❁ 석유정책
  - Perez 대통령 당선인은 석유를 선진국의 무역 장벽 제거를 위한 무기로 사용할 용의가 있음을 발표
  - 동 정책은 현 정권도 과거 누차 시도해 온 것으로서 새로운 정책은 아니며, 동인의 선거 공약 및 민주행동당의 기본 노선에 비추어 아랍 제국의 단유조치와 같은 과격한 조치는 없을 것으로 전망

남로데시아 문제

| 73-087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O-38 / 4 / 1~37(37p)

유엔의 1973년 대남로디지아 경제제재 조치 및 관련 국내 조치임.

1. 외무부는 1973.6.1. 경제기획원, 상공부 등 관계부처에 유엔특별위 결의 사항을 아래 통보함.

- ❁ 유엔 사무총장은 5.4. 유엔 식민지독립특별위원회에서 4.27. 채택된 남로디지아 결의문을 송부함.
- ❁ 특히 남로디지아로부터의 크롬, 니켈 수입에 대해 경고하고 있음에 유의함.

2. 유엔 안보리의 1973.5.22. 제1716차 회의 시 채택된 결의문과 관련하여 외무부는 7.10. 법무부, 교통부 및 상공부에 동 결의문을 송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업체에 주지시켜 줄 것을 요청함.

3. 외무부는 1973.8.31. 관계부처에 유엔 사무총장이 8.3. 남로디지아 안보리 결의문 이행에 관해 안보리 남로디지아 특별위원회에 재차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통보하고 아래 사항에 대한 회신을 요청함.

- ❁ 동 결의안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모잠비크, 앙골라로부터 수입하는 국가의 수입량과 3국의 수출량의 차이가 있을 경우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바, 한국은 1971년부터 모잠비크로부터 약 160만 톤의 석면(asbestos)을 수입 중으로 관련 사실 확인
- ❁ 상기 3개국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관련한 남로디지아 생산 물품의 위장 수출 여부 확인 조치 내용

4. 관세청은 1973.10.22. 외무부에 관련 사항을 아래 회신함.

- ❁ 석면 수입실적 원산지 확인 결과 남로데시아에서 수입된 사실이 없음.
- ❁ 1971년 관세청 발행 무역통계상 모잠비크로부터의 석면 수입실적은 모잠비크의 Lourenco-Marques항에서 선적된 것으로 기록된바, 사실상의 원산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임.

5. 외무부는 1973.10.23. 주유엔대사에게 상기 관세청 회신을 송부하고 적절히 조치하도록 지시함.

잠비아 정세

| 73-0873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O-38 / 5 / 1~11(11p)

잠비아의 1973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주케냐대사는 1973.10.10. 잠비아 각료 명단을 아래 보고함.

❁ 잠비아는 8.25. 일당 정치체제로 개헌함.

❁ 주요 각료 임명

- 국무총리: M. Mainza Chona 전 부통령
- 국방장관: A. M. Milner 전 지방 · 문화장관
- 관방장관: P. Chisangq
- 기타 각료들은 1973년 말 국회 총선거까지 유임

2. AP통신은 1973.10.26. 잠비아의 대이스라엘 및 칠레 단교 조치 관련 사항을 아래 보도함.

❁ 잠비아 외무성은 10.26. 이스라엘 및 칠레와의 외교관계 단절을 발표함.

❁ 잠비아가 외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한 것은 1964년 독립 이래 최초로 잠비아 외무성 대변인은 아랍국들이 중동 문제에 대해 평화적이고도 정당한 해결책을 꾸준히 모색해 왔음을 강조함.

❁ 동 대변인은 칠레에 대해서도 1973.9월 칠레의 군사 쿠데타 이후 칠레 정세를 주시해 왔음을 언급함.

3. 합동통신은 1973.11.7. 잠비아 대통령의 사임 경고 발표 관련 아래 보도함.

❁ Kaunda 대통령은 잠비아 국민들이 과음 습관을 자제하지 않을 경우 5년 후에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경고함.

❁ 동 대통령은 잠비아 국민들의 과음 습관은 9년 전 독립 이래 계속 악화되어 왔음을 지적함.

4. 주케냐대사는 1974.1.10. 잠비아 신각료 명단을 아래 보고함.

❁ 잠비아는 1973.12.5. 총선거를 실시함.

❁ 신각료 명단

- 국무총리: M. M. Chone
- 외무장관: V. J. Mwaanga
- 기획재무장관: A. B. Chikwanda
- 노동사회서비스장관: H. D. Banda

FY73 미국의 대외원조법. 전2권. V.1 기본문서철

| 73-0874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O-35 / 6 / 1~335(335p)

1. 주미대사는 1972~73년 중 미국의 대외안보원조 법안 처리 관련 동향을 아래 보고함.

- ❁ 로저스 국무장관의 FY73 대외안보원조법안 의회 제출(1972.3.14.)
  - 총 21억 51백만 달러의 군사원조
  - 10% 현지화 예치 삭제
- ❁ 국무성의 대외 무상군원 국가별 요청액 공표(4.26.)
  - 한국 2억 3,498만2천 달러 등
- ❁ 상원 외교위원회의 FY73 군원 수권법안 통과(5.24.)
  - 16억 5천만 달러, 현지화 예치 비율을 25%로 상향 조정
- ❁ 상원 본회의의 수권법안 심의 개시(6.13.)
- ❁ 하원 외무위 액수 조정 착수(6.14.)
- ❁ 상원 본회의의 FY73 의원수권법안 부결(7.24.)
- ❁ 하원 운영위의 FY73 의원수권법안 통과(7.25.)
  - 총 21억 2,600만 달러
  - 10% 현지화 예치 조항 삭제, 대한 추가군원 5천만 달러 부결
- ❁ 하원 본회의의 수정법안 승인 및 상원 회부(8.11.)
  - 총 21억 3,100만 달러, 월남종전 수정안 폐기
- ❁ 상원 외교위원회의 FY73 신수권법안 채택 본회의 회부(9.19.)
  - 15억 5천만 달러
- ❁ 상원 본회의 승인 및 양원협의회 회부(9.26.)
- ❁ 양원협의회 결렬 및 회기 종료로 FY73 수권법안 자동 폐기(10.11.)
- ❁ 닉슨대통령의 신수권법안 제출(1973.1.5.)
- ❁ 상원 외교위원회의 FY73 대외군원 수권법안 통과(2.26.)
  - 15억 5천만 달러

2. 주미대사는 미 의회의 지출법 및 계속지출 결의안 관련 동향을 아래 보고함.

- ❁ 지출법 상원 세출위 통과(1972.9.28.)
  - 총 28억 2,300만 달러
- ❁ 계속지출 결의안 상 · 하 양원 승인(1973.2.28.)

3. 외무부는 주한 미국대사관과 대한 군사원조 관련 사항을 아래 협의함.

- 외무부장관은 1972.3.27. Underhill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면담하고 1972년도 대한 무상군원 삭감분 회복 방안을 협의함.
- 김동휘 구미국장은 8.31. O'Donohue 주한 미국대사관 서기관과 FY73 군원 배정 등을 협의함.

4. 외무부는 대통령에게 FY73 미 의원수권법안 동향을 아래 보고함.

- 상원 본회의의 법안 부결 동향 및 향후 전망(1972.7.28.)
  - FY72 군원 삭감(9천만 달러) 회복을 위한 노력 경과 포함
- 미국의 신의회 동향 및 의원 법안 처리 전망(1973.1.5.)

5. 국방부는 외무부에 아래 군원 관련 자료를 송부함.

- FY73 군원 전도자금(CRA) 배정 현황 및 군원 전망(1972.8.28.)
- FY73 미군원 현황 및 전망(1973.2.21.)

6. 외무부 구미국은 1972.10.10. 아래 'FY73 외국원조 현황 및 전망' 관련 자료를 작성함.

- 수권법안, 지출법안, 계속결의, FY73 대한군원(2억4천만 달러 규모) 현황 등
- 향후 조기 통과 전망은 난망시
- 상당 기간 계속 결의로 전년도 수준의 집행 전망

FY73 미국의 대외원조법. 전2권. V.2 자료철

| 73-0875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O-35 / 7 / 1~401(401p)

1. 주미대사는 1972~73년 중 FY73 미국의 대외원조법 관련 각종 증언 내용을 아래 보고함.

- ❁ 레어드 국방장관 및 무어터 합참의장 증언록(1972.3.21. 및 6.6.)
- ❁ 그린 국무성 차관보 및 윌리엄스 AID(대외원조청) 부처장의 증언록(3.28.)
- ❁ 로저스 국무장관의 증언록(4.18.)
- ❁ 로저스 국무장관 및 한나 AID 처장의 증언록(5.16.)
- ❁ Hummel 국무성 동아태 부차관보 및 국무성 간부 증언록(5.23.)
- ❁ Tarr 안보원조 조정담당 국무차관 증언록(5.23. 및 1973.2.27.)

2. 주미대사는 FY73 미국의 대외원조법 관련 의회 자료를 아래 송부함.

- ❁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록 및 본회의 보고서(1972.6.13.)
- ❁ 맥거번 국방정책 대안에 대한 레어드 국방장관의 반박 자료(7.18.)

3. 외무부는 1972.7.29. 대통령에게 McGovern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강령 중 국방정책에 대한 국방성의 비판 내용 요지를 아래 보고함.

- ❁ 동 정책안이 실현될 경우 군사, 국제정치, 경제 및 고용 측면의 제반 부작용을 지적
  - 군사적 측면에서 전략적 억지력에 대한 신뢰 감소, 군축회담에 관한 소련의 태도 경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WARSAW 동맹 간의 상호감군 교섭 전망 저하
  - 국제정치 면에서 우방으로 하여금 미국을 포기하고 타국과의 협력 추진 야기 및 가상 적국의 태도 경화에 따른 대가 요청 가능성, 분쟁과 대결의 우려가 심화되는 불안정한 사태 초래, NATO의 무력화 등
  - 경제 및 고용 측면에서 군수산업 위축, 기술 발전 둔화, 약 120~140만 명의 실업 초래 등
- ❁ 평가
  - 미국 및 우방, 가상 적국의 능력에 대한 분석 결여, 위협에 관해 가상 적국의 선의에 입각한 낙관적이고 순진한 견해는 미국의 안보에 대한 도박의 위험성 내재
  - 최소 억지력(minimum deterrence) 개념이 우방 및 가상 적국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부족
  - 우방에 대한 안보원조의 유효성 간과
  - 전반적인 국가 안보 전략 및 구체적인 안보 목적, 재정, 정치 및 인력 등 제반 현실 도외시
  - 전반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고 자가당착적인 내용
  - 물가 및 급료 인상을 고려할 경우 548억 달러의 예산 규모로는 작전 비용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

공관 활동보고 - 핀란드

| 73-087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정보1과
MF번호	O-38 / 7 / 1~93(93p)

1. 주핀란드통상대표부의 1973.6.15.~28. 주간 공관 활동보고서 요지임.

❋ 정무 관계
- 6·23 선언 및 해설문 주재국 정부에 전달, 앙골라 및 모잠비크 이민 관련 포르투갈대사 면담
- 윤호근 공사의 6.26. 주재국 외무차관 면담, 6.21. 세네갈 대통령 면담

❋ 경제·통상 관계
- 대동구권 교역 추진을 위한 관계 인사 명단 작성 및 접촉 방안 보고
- 박동순 서기관의 6.27. 외무성 통상국 관계관 면담

❋ 공보·문화 관계
- 6·23 선언 홍보 관련 언론 회견을 통한 성명의 내용 및 의미 설명
- 윤호근 공사의 6.21.~27. 신문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

2. 주핀란드통상대표부의 1973.6.29.~7.12. 주간 공관 활동보고서 요지임.

❋ 정무 관계
- 유엔 총회에서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정책 타진을 위해 7.10. 윤호근 공사의 외무성 정무국장 및 국제기구 부국장보 면담 결과 보고
- 윤호근 공사의 7.3. 주재국 외상, 외무차관, 인도네시아대사 면담, 7.6. 소련 외무성 참사관 접촉

❋ 경제·통상 관계
- 대동구 교역 추진 관련 경제사절단 파견을 위한 주재국 무역협회 접촉
- Korea Trade 배포, 1973.5월말 현재 대핀란드 수출 실적 보고, 주재국 화폐의 대미 달러 환율 변경 보고

❋ 공보·문화 관계
- 각종 홍보자료 배포

3. 주핀란드통상대표부의 1973.7.13.~26. 주간 공관 활동보고서 요지임.

❋ 정무 관계
- 외무성 정무국장, 부국장, IPU(국제의원연맹) 사무국장 등 면담을 통해 북구 외상회의 및 유엔 총회 한반도 문제 토의 시 한국 입장 지지 및 동구권 문호개방을 위한 협력 요청

❋ 경제·통상 관계
- 핀란드·소련 상공회의소 방문, 대동구권 교역 추진을 위한 경제사절단 파견 문제 협의
- 외무성 통상국 부국장 면담, 한국의 대후진국 특혜관세 문제 협의, 코트라 사무소 활동 협조 요청

❋ 공보·문화 관계
- 프랑스·노르웨이·멕시코·터키대사, 외무성 부국장보·정무국장 서리, IPU 사무국장 등 면담, 6·23 선언 및 북한 주장 연방제의 비현실성 설명

공관 활동보고 - Karachi(파키스탄) 출장소

| 73-087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O-38 / 8 / 1~58(58p)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가 제출한 1973.1~8월 중 주카라치출장소장의 활동보고서 요지임.

1. 한국 상사 대표와 어망사 입찰 협의(1.16.)

2. '스크린 앤드 소사이어티' 월간 잡지사와 회견(1.17.)

3. 쌍용시멘트 관계자와 대파키스탄 수출 방안 협의 및 시장 상황 설명(1.19.)

4. 미국 총영사 방문, 주재국 동향에 관해 의견 교환(2.9.)

5. 페샤와 지구 한 · 파키스탄협회 간사와 협회 운영 및 한국의 수출시장 개척 문제 협의(2.20.)

6. 이슬라마바드에서 1973년도 수출 계획 및 공관장회의 결과 관련 업무 협의(2.28.~3.1.)

7. 한국 상품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결과 보고(3.14.)

8. 김영곤 영사, 주카라치 일본총영사 예방 및 신임 인사(5.3.)

9. 카라치 상공회의소 주최 실업인대회 개회식 참석(5.14.)

10. 카라치 주재 외무성 연락관 방문 및 향후 긴밀한 협조 요청(5.19.)

11. 주재 각국 Trade Commissioners 오찬회 참석(5.25.)

12. 주카라치 이탈리아총영사에게 한국의 경제 발전상 등 설명(6.8.)

13. 카라치 농업상공회의소 회장과 한국의 농산물 수출 등에 관한 의견 교환(6.14.)

14. 파키스탄 Press International사에 한국 동양통신사와의 뉴스 교환계약 체결 의사 타진(6.23.)

15. 평화통일외교정책 대통령 특별성명 카라치 조간신문에 게재(6.28.)

16. 부토 대통령의 미국 공식 방문을 위한 출발 전송(7.12.)

17. 주카라치 미국총영사와 환담 시 동 총영사는 닉슨 대통령의 입원에 따라 부토 대통령과의 면담 성사가 어려울 것임을 설명(7.13.)

18. 카라치 상공회의소 의장 예방, 양국 간 교역 증대 희망 전달(7.26.)

19. 8.15. 리셉션 개최, 주재국 정부기관, 영사단, 지방 유지, 실업인 등 참석(8.15.)

20. 주카라치 이란총영사 주최 이란 건국 2500주년 기념행사 영사회 참석(8.17.)

21. 1973.7월 방한한 카라치 소재 상사 대표에게 한국 측과의 거래 상황 문의(8.23.)

22. 주카라치 미국공보관 방문, 한국 정세 소개 책자 전달(8.28.)

23. 주카라치 스위스총영사로부터 북한의 주취리히 무역대표부 설치 동향 청취(8.29.)

24. 주카라치 북한무역대표부의 9·9절 기념 리셉션 개최 관련 사항 정보 입수(8.31.)

공관 활동보고 - Agana(미국) 총영사관

| 73-087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O-38 / 9 / 1~21(21p)

미국 주아가나총영사관 김광운 영사의 1973.9~12월 중 공관 주간활동보고서 요지임.

1. 진흥기업 괌 지사 업무 현황 청취 및 한국 상품 수출 촉진 방안 협의(9.18.)

2. 제이앤지 상사 면담, 기부금 갹출 문제 협의(9.21.)

3. 한국인회 구성을 위한 제2차 준비위원회 소집, 초안 작성 협의(9.25.)

4. 괌 미 제8공군사령관 이 · 취임식 참석(10.1.)

5. 이우상 부영사, 미 해군장교 클럽 방문, 한국 해군 군함 기항 장소 등 협의(10.2.)

6. 한국인회 발기인 총회 소집, 정관 토의 완료(10.4.)

7. 한국인회 창립총회 참석, 상호 친선 및 편의 도모, 조국과의 유대 강화, 국위 선양 당부(10.7.)

8. 한국인회 제1차 이사회 참석, 영사관과의 협조 방안 협의(10.12.)

9. 트럭드 지방의회 의장 면담, 한국 수산업계 방문 협조 문제 협의(10.15.)

10. 괌 미 해군기지 사령관 교체식 참석(10.19.)

11. 괌 지사 방문, 한국 수산업의 어업기지 설치 협조 요청(10.19.)

12. 한일개발 건설사업 현장 방문, 한국 근로자 격려(11.13.)

13. 한국 방문 괌 정부 경제사절단 오찬 초청(11.19.)

14. 교포 건설업체의 노동 분규 현황 청취, 원만한 해결 촉구(11.20.)

15. 현대건설 괌 지점장 면담, 당지 한국인 교민회 운영 문제 협의(11.27.)

16. 동양고속 괌 지점 개소식 참석, 동 신축시설 시찰 및 직원 격려(12.2.)

17. 건설부 정재석 차관과의 조찬 시 괌 진출 한국 건설업체 현안 문제 토의(12.3.)

18. 영사단 12월 정기 오찬회 참석(12.5.)

19. 한인회 이사회 참석, 한인회 운영 문제 협의(12.7.)

20. 대한재보험공사 이사 면담, 동사의 괌 진출 문제 협의(12.10.)

21. 한국 해군 군함의 괌 입항 영접(12.11.)

22. 미국계 건설회사 건축 최고층 건물 축하식 참석, 한국 근로자 격려(12.15.)

23. 괌 주재 한국 건설회사의 한국인 근로자 비자 발급 교섭(12.26.)

24. 중앙산업 사장 면담, 건설사업 현황 청취(12.28.)

25. 필리핀 자선단체 연례 파티 계기 괌 의회 의장과 한국 · 괌 간 제반 협력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12.29.)

26. 한국인회 주최 송년파티 참석, 교민과의 친선 도모(12.30.)

27. 현대건설 송년회 참석(12.31.)

공관 경제활동보고 - 스페인

| 73-087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O-38 / 10 / 1~12(12p)

1. 주스페인대사의 1973.3.3.~16.간 경제활동보고서 요지임.

❁ 심흥선 대사 및 이복형 참사관,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사무국장 면담(3.9.)
- 한국의 1973년도 기여금 전달 및 한국 입장에 대한 사무국의 협조 요청
- 일본의 대서양 참치어획 규제 관련 동향 파악 및 향후 파리위원회 전망 타진
- 한국대표단과 사무국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한 협조 요청

❁ 심 대사 및 이 참사관, INI(국영산업공사) 인사 접촉, 한국에 대한 투자 사업 권유(3.12.)
- 국영산업공사 전시회 시찰, 투자 유치 교섭
- 주재국의 조선 기술 현황 등 청취

2. 주스페인대사의 1973.3.30.~4.13.간 경제활동보고서 요지임.

❁ 심 대사 및 이 참사관, 한국 가발회사 사장 면담, 대주재국 수출 진흥 방안 협의(4.2.)
- 주재국 가발 시장 동향, 향후 수출 증대 시 우려되는 문제점 등 협의
- 외무부에 바르셀로나에서 6.2.~12. 개최 예정인 상품견본전시회에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건의

❁ 심 대사 및 이 참사관, 한진상사 부사장 면담(4.3.)
- 세비야 선박회사 중고선 도입계약 관련 주재국 상사들의 최신 문의 목록 전달
- 바르셀로나 상품견본전시회에 다량의 출품 권유

❁ 이 참사관, 주재국 상사 접촉 활동(4.5.)
- 한국-모로코-스페인 3국 합작회사 설립 방안 협의

❁ 심 대사, 대서양 참치보존위원회 관계관 면담(4.6.)
- 국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사무국과의 유대관계 강화
- 한국이 동 기구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평소 유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국 입장 반영 및 관련 정보 파악에 활용 목적

❁ 심 대사 및 이 참사관, 외무성 경제협력국장 및 상공성 수산국장 면담(4.10.)
- 경제협력국장 및 수산국장의 방한 시기 협의
- 방한 중 양국 간 경제협력사업 추진 방안 검토, 한 · 스페인 수산협력협정 체결 문제 협의
- 건의 사항
  · 외무성 경제협력국장은 주재국의 대공산권 문호개방 정책에 영향력이 있는 인사임.
  · 동 국장의 상호 경제협력 문제에 대한 영향력 및 정치적 발언권 등을 감안하여 방한 시 적절한 영접 및 일정 준비를 건의함.

재외국민 특별선도 대책

| 73-088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구주과/재외국민과
MF번호	P-12 / 1 / 1~59(59p)

1. 외무부는 1973.7.13. 전 재외공관장에 6·23 선언 이후 북한의 교민사회에 대한 선전, 포섭 및 접근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을 통보하고 이에 대비한 재외국민 특별보호 및 선도 지침을 아래 지시함.

- ❋ 기본 지침에 따라 월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결과를 매월 보고
- ❋ 관할지역 내 정확한 교포 실태 파악, 교민단체 조직 강화 및 육성, 홍보·계도 활동, 교민사회에 대한 북한의 접촉 시도 파악 및 보고, 교민사회와 모국 간의 유대 강화

2. 외무부 영사국은 1973.7.24. 공관장 건의 등을 반영하여 아래 교민특별보호 대책을 수립함.

- ❋ 북한의 교민사회 접근 및 일부 반정부 교민의 활동에 대처하는 한편 본국 시책에 적극 호응하도록 계도
- ❋ 대교민 홍보활동, 재일 거류민단 및 각 지역 교민회 조직, 해외 유학생 조직 강화 및 유학생회 활동 지원, 교포학자 및 특수 기술요원의 본국 관련기관과의 연결, 각 지역 교민회와 새마을운동 지자체 간 자매결연 사업 추진, 각 지방 교민 특히 재일동포의 모국 방문 추진
- ❋ 교포2세 본국 교육을 위한 특별 교육기관 및 기숙사 건립 추진, 재일교포의 모국 투자를 위한 투자금융회사 설립 추진, 교민사회의 일원화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교민청 신설 등

3. 외무부 영사국은 1973년 행정연구서 '재외국민 종합 선도 방안' 작성을 통해 교민국(재외국민국) 설치, 재외공관 인원 증원, 관련 예산(약 226만 달러) 책정 등을 건의함.

4. 외무부 정보문화국은 1973.9.27. 제3차 국가심리전위원회에서 영사국에 최근 북한의 대남 및 해외 선전활동에 대한 대책으로 교민 선도 강화책 세부계획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바, 영사국은 10.5. 아래 요지의 '재외국민 보호 선도의 문제점 및 기본지침'을 정보문화국에 송부함.

- ❋ 재외국민 특별보호, 선도에 관한 훈령(1973.7.14.시행)
- ❋ 기본 지침 및 주요 선도대책
  - 지역별 교민단체 육성 강화, 교민사회와 모국 간의 유대 강화, 유학생회 조직 및 특별지도, 홍보·계도활동 강화, 북한 진출 지역 주재공관의 교민 특별보호 대책 수립
  - 공관원 책임 지역 할당 및 교민 접촉 활동 강화, 공관원의 대교민 봉사 자세 확립
- ❋ 재외국민 보호 선도의 문제점
  - 북한의 교민사회 거점 확보 시도 및 접근 활동 강화, 일부 교민의 지속적인 반정부 활동
  - 북한의 교민사회 내 북한 동조 또는 반정부 인사에 대한 북한 방문 초청, 반정부 교민 세력 규합 및 북한 지지 교민단체 조직 기도
- ❋ 건의 사항
  - 영사 업무 담당 인력 증원
  - 재외국민 단체 육성 보조금 증액 등 필요 예산 지원

재일본유학생 선도관련 진정서

| 73-088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재외국민과
MF번호	P-12 / 2 / 1~26(26p)

1. 대통령비서실은 1973.5.2. 일본 거주 교포의 대통령에 대한 4.6.자 아래 진정서를 외무부에 이첩하는 한편 적절히 조치하도록 요청함.

- 최근 일본 내 한국 유학생들이 조총련 계열 지급 장학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일단 동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조총련 측의 조종을 벗어나지 못함.
- 여사한 사례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유학생들의 출국 전 철저한 지도를 건의함.

2. 외무부 아주국은 1973.5.7. 영사국, 문교부 및 중앙정보부에 상기 진정서를 송부하고 유학생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 시행을 요청하는 한편 5.9. 상기 진정인에게 아래 내용으로 회신함.

- 적절한 지적에 사의를 표하며, 건의한 사항은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 향후 필요시 관련 사항에 대해 주일대사관 또는 영사관과 연락을 취해 주기를 요망함.

3. 외무부 영사국은 1973.5.10. 아래 내용을 아주국에 회신함.

- 동 사안을 문교부에 협조 의뢰함.
- 주일대사에게 유학생에 대한 관련 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함.

일본의 출입국 관리법 개정 추진자료

| 73-088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교민1과
MF번호	P-12 / 3 / 1~42(42p)

일본의 1973년 출입국관리법 개정 관련 사항임.

1. 출입국관리법 개정 목적

-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1951년 포츠담 정령(政令)으로서 제정된바, 최근 국제 교류의 증대에 따른 출입국자의 비약적인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수속 간소화 및 체류 자격 합리화 등 필요성이 대두
- 현행 출입국관리법 폐지 및 국가의 지위에 상응하는 출입국제도 확립

2. 개정 출입국관리법 특징

- 단기체류자 입국수속 간소화, 일시상륙허가 대상자 확대 등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 제공
- 체류 자격 합리화 등으로 체류 외국인의 편의 도모
- 강제퇴거자의 일정한 수용 및 퇴거 시 편의 제공
- 영주권자,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강제퇴거 사유 일부 완화

3. 개정 출입국관리법 내용

- 총칙: 법률의 목적, 외국인의 체류자격, 외국인의 체류기간
- 외국인의 입국
- 외국인의 상륙: 상륙허가, 상륙허가 수속, 일시 상륙 및 직행통과 구역
- 외국인의 체류: 체류의 원칙, 체류자격의 변경 등
- 외국인의 출국: 출국의 확인, 출국확인의 유보
- 재입국: 재입국의 허가, 재입국허가에 의한 특례
- 강제퇴거: 강제퇴거 대상자, 위반조사, 심사 · 구두심리 및 이의신청, 강제퇴거명령서 집행, 수용
- 선장 등 운송업자의 책임 및 의무: 사전 통보, 보고, 상륙방지, 송환 및 지시에 따른 의무
- 일본인의 출국 및 귀국: 출국의 확인, 귀국의 확인, 승무원의 특례
- 관리기관: 임국심사관 · 입국경비관, 입국심사관의 권한, 입국경비관의 권한, 휴대무기 · 제복, 구두심리 사무요령, 사실조사
- 보칙: 형사수속과의 관계, 수용장소, 피수용자의 자유, 수수료, 권한의 위임
- 벌칙: 형벌, 과태료
- 부칙: 시행일, 출입국관리법 폐지, 전쟁 전부터 체류 중인 한국인의 지위, 특정인의 재입국허가 등 특례, 경과규칙 등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복지향상 문제

| 73-0883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교민1과
MF번호	P-12 / 4 / 1~76(76p)

1. 주일대사는 1972.1~73.1월 중 아래 기준에 따른 매월 말 영주권 신청 및 허가 사항 현황을 보고함.

- 협정영주권 1조1항 해당자, 협정영주권 1조2항 해당자
- 일반영주권, 국적조회

2. 외무부는 1973.1.30. 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아래 교섭을 목적으로 재외국민과장의 2.20.~24. 일본 출장을 결정함.

- 목적: 협정영주권 미신청자 구제 문제에 관한 일본 법무성과의 협의 및 한국 입장 설득, 협정영주권 불허자 수 증가 방지를 위한 교섭
- 주요 일정: 법무성, 외무성, 민단, 주일대사관 담당관 등과의 면담

3. 외무부 영사국은 1973.4.6. 외무부장관의 일본 오히라 외상 면담에 대비하여 '재일한국인의 협정영주권 신청 유자격 미신청자 구제 문제'에 관한 아래 자료를 아주국에 송부함.

- 한 · 일 간 '법적 지위' 협정에 의해 1971.1.16. 신청이 마감된 재일한국인의 협정영주권과 관련하여 약 23만 명의 신청 유자격자의 미신청에 따른 구제 방안 해결이 필요한바, 일본 측은 의회 승인 문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협정영주권 신청 기간 재설정을 거부 중임.
- 양국 간 법적지위협정의 기본 정신에 비추어 영주권 신청 기회 재부여가 인도적인 처사임에 따라 일본 정부의 호의적인 고려를 촉구함.

4. 주일대사는 1973.6.21. 영사담당관실에서 작성한 아래 동경 및 관동지방 민단단장 연석회의 자료를 송부함.

- 재외국민 등록 촉진 및 재외국민 등록에 관한 업무지침
- 호적 정비
  - 재외국민 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임시 특례법
- 협정영주권(협정 1조2항 해당자) 신청 촉진
- 교민의 새마을운동 참여
  - 새마을운동 참여에 관한 업무지침
- 영사 업무 간소화
- 교민 재산반입 등 장려
- 참고자료: 동경도 및 관동지방(9개 현) 교민 현황
  - 교민 수(1972.12월말 현재): 108,075명
  - 영주권 신청 수 및 허가 수(1973.1월말 현재): 신청자 52,555명 중 허가자 50,125명
  - 국민등록필자 수(1973.5월말 현재): 49,363명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관련 일본 유력인사 방한초청

| 73-088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P-12 / 5 / 1~67(67p)

1. 외무부는 1973.3.8. 일본 주재 공관장에게 1973년도 재일본 한국인 지위 향상을 위한 일본인 유공자 방한 초청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아래에 따라 초청 대상자를 건의하도록 지시한바, 주일대사, 주오사카, 삿포로,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요코하마, 나고야총영사는 초청 대상자 및 공적 사항을 보고함.

- ❁ 재일본 한국인의 복리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공적이 있거나 향후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인사
- ❁ 직위는 가급적 중앙관서의 경우 국장급 이상, 지방의 경우 현 지사, 시장, 기타 유력 사회단체의 장

2. 외무부는 1973.5.10. 재일본 한국인 지위 향상 관련 일본인 유공자 초청 사업계획을 아래 수립함.

- ❁ 주일대사 및 각 영사관장은 일본 법무성 관리, 현 지사, 부지사, 시장, 현 의회 의원 등 총 8명을 추천함.
- ❁ 사업 예산상 상기 전원에 대한 초청이 어려움에 따라 교포 사회에 대한 영향력 및 과거 본 사업 실시 관련 공관별 기록 등을 감안하여 우선 법무성 관리 등 5명을 초청함.

3. 외무부는 1973.6.12. 주일대사 등 상기 초청 대상자 건의 공관장에게 아래 사항을 지시함.

- ❁ 4박5일 초청, 1인의 왕복 항공료 및 숙식비 부담 조건 초청
- ❁ 방한 시기, 초청 명의에 대한 의견 및 희망 일정 등 보고

4. 주일 각 공관장은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 ❁ 주일대사(1973.6.21.): 8월 중순~9월 중 방한 건의
- ❁ 주오사카총영사(7.7.): 지사의 10월 하순~11월 중 북한 방문 예정 계획에 따라 부지사의 방한 보류 건의
- ❁ 주후쿠오카총영사(7.18.): 지사의 9.3.~6. 방한 희망 건의

5. 외무부는 1973.8.10. 후쿠오카현 지사 일행의 방한 초청 계획을 아래 수립함.

- ❁ 방한 목적에 비추어 현 지사 및 현 의회의장의 여비 및 체재비 정부 부담
- ❁ 방한 기간: 9.3.~6.
- ❁ 체한 일정
  - 국무총리, 외무부장 · 차관, 상공부장관 예방
  - 국립묘지 참배, 판문점, 모범 새마을 및 공업단지 시찰

재일본 한국인 북한 송환

| 73-088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P-12 / 8 / 1~13(13p)

외무부는 1973.10.31. 주일대사에게 재일교포의 북송 통계 자료 송부를 지시함.

1. 주일대사는 1973.11.13. 동 북송 통계 자료를 아래 보고함.

- 기간: 1959.12.14.~1973.10.19.
- 총 북송 차 수: 169차
- 북송 세대: 27,463세대
- 북송자: 91,636명

2. 상세 북송 분류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차 수별
- 대표자 성명
- 선명(船名)
- 입 · 출항 연월일
- 승선 인원(세대, 인원)
  - 1959.12월~1961.6월간은 1차당 약 200~300세대 1,000명 내외
  - 1961.7월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961.10월 200세대 내외 500~600명 수준
  - 1961.11월 이후 100세대 내외에 송환 인원 수도 200~300명 이하 기록

재일본 한국교육재단 설립

| 73-088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재외국민과
MF번호	P-12 / 9 / 1~111(111p)

1. 주일대사는 1973.2.3. 일본 문부성이 2.1.자로 재단법인 한국교육재단 설립을 허가하였으며 2.3. 허가장을 수령하였음을 보고하는 한편 2.8. 동 재단 창립총회에 문교부장관의 참석을 건의함.

2. 동 재단 이사회는 1973.2.5. 법인 창립총회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3.20. 창립총회 개최 및 민관식 문교부장관 초청을 결의함.

3. 주일대사는 1973.2.10. 동경도 교육위원회가 4~6월 중 문교부장관 및 서울시 교육감을 교육장 명의로 초청코자 희망함을 보고함.

4. 주일대사는 1973.3.22. 한국교육재단 창립총회 관련 아래 건의함.

- ❋ 재단 기금 납부자 22명에 대한 문교부장관 명의 감사패 증정
- ❋ 기금 조성액 달성자 12명에 대한 문교부장관 명의 표창장 수여

5. 주일대사는 1973.4.13. 한국교육재단 창립총회 관련 아래 보고함.

- ❋ 동경 상은 신용조합회관에서 4.12. 창립총회 개최
- ❋ 민관식 문교부장관, 일본 오쿠노 문부대신, 민단 간부 및 유지 등 300명 참석
- ❋ 재단 설립 경과보고, 향후 사업계획 발표, 유공자 감사패 수여 등 진행
- ❋ 문교부장관은 동 재단 보조비로 4만 달러를 재단 이사장에게 전달
- ❋ 참고 자료
  - 문교부장관 축사, 허필석 이사장 축사, 재단 기부 인사 명단, 재단 임원 명단, 경과보고, 사업계획서

6. 주일대사는 1973.4.14. 일본을 방문 중인 민관식 문교부장관의 활동 사항을 아래 보고함.

- ❋ 4.11. 서울대 시설 확충 조사단으로 4.25. 방한 예정인 동경대 공학부장 면담, 협조 요청
- ❋ 동일 오쿠노 문부대신 및 역대 문부대신, 자민당 간부위원 등과 만찬, 환담
- ❋ 4.12. 경단련 회장, 전 중의원의장 등과 조찬, 한국 공고 시설 확충 협조 요청
- ❋ 동일 동경대 등 6개 대학 총장과 양국 대학교육 문제 등 협의
  - 동경대 총장은 10월유신을 적극 지지한바, 동 조치에 회의적인 성향의 일본 지식층에 끼친 영향 등을 감안, 방한 초청
- ❋ 4.13. 재일본 교육공무원과의 간담회, 재외국민 교육 진흥 지시 및 격려
- ❋ 동일 외무대신 면담, 실업고교 확충 협력 요청
- ❋ 4.14.~16. 관서지방 현지 교육 현황 파악
- ❋ 4.18. 참의원 의장 면담 예정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 73-088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Re-37 / 3 / 1~42(42p)

1. 주일대사는 1973.1.31. 재일한국인 유골봉환 활동 단체로 부산영원과 태평양전쟁 한국인 전몰자 유골봉환회 2개가 있으며, 1971.11월 246주의 인수 사실 및 활동 실적을 감안할 때 부산영원 측이 보다 활발한 활동 단체인 것으로 파악됨을 보고함.

2. 외무부는 1973.5.11. 국무총리실에 재일한국인 유골의 조속한 봉환을 위한 관할 조정을 아래 요청함.

- ❁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인, 군속으로 징용되어 전몰한 한국인 유골 2,083주를 일본 정부가 보관 중이나 한국의 인수 태세 미비로 상금 인수치 못함.
- ❁ 동 문제를 처리할 주관 관할부서를 명확히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함.

3. 외무부 동북아1과 담당관은 1973.11.23. 일본인 마에하타를 면담함.

- ❁ 동인은 일본에 징용되어 종전 후 귀국 도중 익사한 한국인의 가매장지를 발견하였음을 밝히고 한국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 외무부는 11.27. 주일대사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고 일본 정부에 사실 조사를 요청하도록 지시함.

4. 국무총리실은 1973.12.11. 외무부에 제2차 세계대전 전몰 한국인의 유골봉환 관련 아래 통보함.

- ❁ 상기 유골봉환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함.
- ❁ 보건사회부 주관하에 외무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12.29.까지 아래 사항에 관한 대책을 수립 바람.
  - 1972.10.27.자 외무부 유골봉환 인수 방침의 재검토 및 대일 교섭 방안
  - 인수한 유골을 연고 유가족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안
  - 유골봉환 주관을 희망해 온 유족 및 사회단체에 대한 지도 방안

5. 보건사회부는 1973.12.24. 일본 후생성에 보관 중인 태평양전쟁 전몰 한국인 유골봉환 문제 협의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바, 외무부 동북아1과 담당관은 동 회의에서 아래 입장을 밝힘.

- ❁ 일본과의 외교 교섭 문제에 관해 재검토 예정임.
- ❁ 유족 보상 문제는 일본과 외교적 문제가 종결되었음에 따라 한국 정부의 적절한 방안 강구가 필요함.
- ❁ 미봉환 유골의 유가족 명단 작성, 봉환 시 일본 측 책임자 명단에 관한 의견을 개진함.

6. 외무부는 1973.12.28. 보건사회부에 12.11.자 국무총리의 전몰 한국인 유골봉환 방침 수립 지시 중 1972.10.27.자 기존 인수방침의 재검토 및 대일본 교섭을 위한 구체 방안 등 외무부 소관 사항을 아래 통보함.

- 인수 범위: 남한 출신자 유골 전부 및 북한 출신자 유골 중 유족이 남한에 거주하는 사례부터 우선 인수, 잔여 북한 출신자 유골은 상기 유골봉환 후 재차 일본 정부와 교섭 시행
- 봉환 책임: 한국 정부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일본 정부 책임하에 봉환, 봉환 시 일본 정부에서 적절한 예우를 다하도록 교섭
-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교섭
- 대일본 교섭 시기: 구체적 교섭은 국내 인수 준비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개시

미국 하원의원의 재미국한국인에 대한 발언

| 73-088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P-12 / 11 / 1~16(16p)

1. 주미대사는 1973.3.6. 미국 하원 Waldie 의원 및 Anderson 의원의 재미교포에 관한 발언이 수록된 2.21. 및 2.22.자 의회의사록을 보고함.

❁ 양 의원은 미국 내 아시아계 소수민족 보호를 위해 각료급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함.

❁ 제안 이유

- 미국의 아시아계 소수민족은 인종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고 성공적으로 미국에 동화한다는 것이 정설인바, 현재 고용 측면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음.
- 각료급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등을 통한 구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동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함.

❁ 동 제안 설명 중 재미교포 실태에 관한 아래 요지의 신문기사를 인용함.

- 재미 일본인이 조용한 미국인이었다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잘 나타나지 않은 미국인임.
- 한국인은 수적으로 적고 조직되어 있지 않음.
- 일본의 한국 합방 후 망명해 온 한국의 지식인 및 애국지사들은 국민회 등을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함.
- 새로 이민해 온 한국인은 대학 교육을 받고도 식료품 상점에 종사하는 등 미국 생활 적응에 난관을 겪고 있음.

2. 주미대사는 1973.3.27. 미국 의회 의사록 3.7.자에 수록된 하와이 Matsunaga 하원의원의 재미 한국 교포에 관한 발언 내용을 보고함.

❁ '한국계 미국인: 하와이에서 70년 내 노동자에서 지도자로' 제목으로 언급함.

- 이민자 그룹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인들로 70년 전 농장 노동자로 하와이에 이주한 이래 지역 지도자로 부상함.
- 한국인들은 미국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체성과 고유한 문화를 유지함.

❁ 하와이 이주 70주년을 기념하는 Honolulu Advertiser의 Anderson 기고문을 인용하여 하와이 거주 한국인들의 생활상, 미국 사회에 진출한 유명 인사 등 다양한 측면을 소개함.

재사할린동포 귀환관련 진정서

| 73-088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P-12 / 12 / 1~83(83p)

1. 사할린 억류귀환 한국인회 [redacted] 회장은 1972.9.20. 일본 외무대신 앞으로 사할린 억류 한국인의 조속한 송환을 요망하는 진정서를 제출함.

❁ 동 회장은 1972.12.29. 김용식 외무장관 앞으로도 사할린 억류 동포의 조속한 송환을 요망하는 진정서를 별도 송부

2. 주미대사는 1973.3.27. 미국 교포가 사할린 교포 귀환에 관한 서한을 송부해 왔다고 보고함.

❁ 뜻 있는 동지를 규합, 사할린 억류 교포의 송환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표명

❁ 억류 교포 수, 강제징용 경위 등 자료 제공을 요청

❁ 외무부는 4.11. 주미대사에게 상기 교포의 아래 요청 자료를 송부, 전달토록 훈령

- 사할린 억류교포 현황, 재외국민 현황 각 1부

3. 사할린 억류교포 귀환촉진회 [redacted] 회장은 1973.6.25. 외무부에 동 동포의 조속한 귀환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함.

❁ 외무부는 7.4. 상기 진정서에 대해 아래 회신

- 동 문제에 관해 정부도 그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일본 정부, 국제적십자사 등 경로를 통해 교섭을 전개 중
- 이들 교포들이 하루속히 귀국하여 고국과 가족의 품 안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양지

4. 외무부 동북아1과 담당서기관은 1973.10.22. 일본 사할린문제연구소 와카사 소장을 면담, 아래 면담 요록을 작성함.

❁ 일 측 언급 요지

- 1973.8월 일 · 소 친선 사할린방문단의 일원으로 사할린 방문, 약 30명의 한국인과의 면담 내용을 주일대사관에 전달
- 이들 중 약 3할이 한국으로의 귀환을 희망, 본인의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문의

❁ 한국 측 언급 요지

- 사할린 문제는 한국 정부로서도 대단히 중요시, 동 문제는 한, 일, 소 3국 정부가 관련된 만큼 신중 대처 필요
- 문제의 성격상 한국 정부가 일본 민간단체를 지원하여 추진키는 어려움. 동인의 인도적 입장에서의 문제 해결과 일본의 여론 환기 활동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

5. 사할린 억류귀환 한국인회 [redacted] 회장은 1973.11.5. 김용식 외무부장관에게 외곽단체 승인요망서를 발송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재사할린동포 귀환문제

| 73-0890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P-12 / 13 / 1~150(150p)

1. 주일대사는 1973.6.13. 일 · 소 적십자사 총재회담(5.15. 모스크바) 시 재사할린 한국교포 귀환문제에 관한 소련 측의 태도에 관해 일 외무성 담당자의 설명 내용을 아래 보고함.

- 재사할린 한국인의 귀국 탄원 시 이들의 일본 통과 허가가 있으면 소련의 출국허가 사실 존재
- 소련 적십자사도 인도적 견지에서 이들의 귀환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 용의 표명

2. 외무부는 1973.6.16. 및 6.19. 주일대사에게 최근 아래 국내 언론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보고하라고 훈령함.

- 소련 적십자사에서 사할린 교포의 일본 경유, 일본이나 한국으로 송환하는 데 동의
- 일본 외무성도 송환을 위한 법적 절차 검토를 개시
- 주일대사는 상기 관련 6.19. 일 외무성에 확인한 결과를 아래 보고
  - 동 내용이 와전된 것으로서 소련의 태도가 완화되었거나 하는 인상은 전혀 없음.
  - 일본 정부로서도 전력 경주 차원에서 한국 측이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 피력

3. 외무부는 1973.7.2. 주일대사에게 주소 일본대사관에 귀환 탄원을 한 교포(약 100명)의 송환을 위해 일본 정부와 교섭하고 결과 보고하라고 훈령함.

- 일 정부에서 소련이 요구하는 사전 입국허가 발급을 조건으로 소련 측과 송환 교섭토록 촉구
- 일본으로 일단 송환 후 자유의사에 따라 최종 정착지 결정
- 송환 경비 일본 부담
- 주일대사는 7.10. 일 측이 상기 한국 측 제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추후 회시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보고

4. 외무부는 1973.9.19. 주일대사에게 재사할린 교포 귀환 교섭 경위를 아래 통보함.

- 1960년까지 미, 일 등 주요 공관을 통해 관계 정부, 기관에 귀환교섭 의뢰
- 1961년 한 · 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 정부, 일적, 국제적십자사 등을 통해 교섭 전개

5. 주일대사는 1973.9.29. 사할린 한국인 귀환문제에 관한 언론 보도 내용을 아래 보고함.

- 다나카수상이 일 · 소 정상회담 시 사할린 한국인의 귀국허가를 소련이 인정하도록 강력 요구할 방침
- 한국은 김대중 사건과 관련, 최근 사할린 한국인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일 정부 책임이라고 비난

6. 주일대사는 1973.10.13. 및 10.16. 일소 정상회담 시 한국인 귀환문제에 관한 일 외무성 북동아과장의 언급 내용을 아래 보고함.

❋ 동 회담에서 재사할린 한국인 귀환문제 논의

- 일 측의 특별한 배려 요청에 대해 소련 측은 출국 희망자가 없다는 종전 입장을 반복
- 일 측이 출국 희망자가 있다면 금후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자는 제의에 소련 측은 반대 안 함.

7.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은 1973.10.25.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주최의 '사할린 억류 한국인의 실태' 에 관한 세미나 요지를 아주국에 송부함.

❋ 사할린억류한국인문제연구소 와카사 소장이 1973.8월 사할린 방문 시 생활수준 기타 현지 상태 등 실태 조사 내용 발표

8. 외무부는 1973.11월 사할린 교포 송환 교섭을 위한 대표단 파견을 아래 건의함.

❋ 국회 대표단을 일본 및 제네바에 파견

- 일본 정부, ICRC(적십자사 국제위원회), 일본 적십자사 등과 적극적인 교섭 추진

❋ 파견 시기는 11.10부터 약 18일간

❋ 국무총리는 동 대표단 방문 성과가 기대할 수 없다고 하면서 파견 재가를 보류

9. 국회는 1973.12.5. 외무부에 사할린 교포 송환 촉구에 관한 아래 건의 의결 내용을 이송함.

❋ 태평양전쟁에 강제 징용되어 소련 치하에 억류된 동포 중 귀환을 희망하는 사할린교포가 인도적 견지에서 조속히 송환되고, 송환자에 대한 대우와 보상에 관해 응분의 대책이 강구되기를 강력 촉구

재월남 민간인 철수

| 73-0891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재외국민과
MF번호	Re-20 / 13 / 1~73(73p)

1. 외무부는 1973.1.26. 및 1.31. 주월대사에게 월남전 휴전협정 체결과 관련, 현지 체류 한국 민간인 특별보호대책을 아래 훈령함.

- 특별계몽 및 선도, 불상사 미연 방지, 실업자 및 불법체류자 특별선도, 보호감독 철저
- 현지 교민 보호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 및 세부 대책을 작성, 건의

2. 주월대사는 1973.2.5. 월남전 휴전 후 재월 민간인 보호대책을 아래 보고함.

- 계속 체류자 및 귀국 희망자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 주월군 철수 후 잔류 교민에 대한 장기보호대책
- 교민 보호 문제 등

3. 주월대사는 1973.2.17. 재월 민간인 기술자 귀국 관련 아래 보고함.

- 민간인 기술자(130명)들은 귀국을 희망하나, 여비 관계로 귀국할 수 없는 실정
  - 귀국을 위한 항공편 제공을 요청
  - 상기 신고자는 국가 이익에 해로운 부적격자가 다수 포함
- 상기 귀국 희망자에 대한 항공편 제공을 위한 조치 건의
- 주월대사는 2.14. 재월 민간인 보호대책 경비(약 5만 달러) 지원을 건의

4. 외무부는 1973.2.22. 주월대사에게 상기 민간인 기술자 귀국 관련 아래 훈령함.

- 국방부와 협조, 3.2.~13. C-54 군용기를 이용토록 결정
- 주월대사와 협조, 세부 후송계획 수립 실시
  - 출국수속 협조, 세부 운항 일정 확정 및 후송자 명단 보고, 여권 정리 등 조치
- 외무부는 2.23. 내무,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상기 민간인 기술자 입국 절차에 관한 협조 요청

5. 외무부는 1973.2.24. 노동청장에게 주월군 철수 후 파월 근로자 보호대책 관련 아래 통보함.

- 잔류 민간인 취업자 중 체류 부적격으로 강제조치 대상이 될 극빈실업자 및 범법 비행자(약 90명)에 대한 강제송환 조치를 위해 소요예산(약 4만 달러) 지원대책 강구 요망
  - 기타 잔류 민간 취업자에 대한 장기보호 대책 경비(약 1만 달러)도 검토 요망

6. 주월대사는 1973.2.23. 재월 민간인 귀국 희망 신고자(총 6진, 136명) 명단을 보고함.

- 외무부는 3.6. 관세청장에게 상기 귀국자의 입국 절차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

7. 주월대사는 1973.3.26. 한국인 실종자 수색 관련 아래 보고함.

❋ 당지 미 대사관에 의하면 포로 교환 완료 후 군민 실종자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구 설치 양해와 탐색반 설치 논의가 상당히 진척

- 미 대사관 당국자는 차후 수색 업무에 도움이 될 한국인 실종자 명단 등 모든 첩보와 자료 제공을 희망

❋ 상기 관련 군인 및 민간인 실종자의 사진, 실종 당시 상황 등 모든 첩보 수집 송부 건의

일본 · 조선 우호촉진 의원연맹

| 73-0892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P-12 / 16 / 1~38(38p)

1. 주고베영사는 1973.5.4. 일 · 한 친선 효고현의회 자민당 의원연맹 관련 아래 보고함.

- 2.26. 한일 양국 간 친선 도모를 목적으로 결성
- 동 연맹을 모체로 일한 친선협의체 결성 추진, 6월중 방한 추진, 한국인 신용조합 육성 협조

2. 주일대사는 1973.7.18. 주재국 보도를 인용, 일 · 조 우호촉진 의원연맹 간부회의(7.16.)에서 북한과의 관계 강화 활동 방침을 결정했다고 보고함.

- 조선 대외문화연락협회 대표단 정식 초청, 동 대표단의 일본 입국을 정부가 인정토록 함.
- 수은자금 사용허가의 실현, 무역대표부의 상호 설치
- 유엔 총회 시 미군 철수, 언커크 해체, 한국의 자주평화통일 지지 결의 정부에 건의 등

3. 주시모노세키영사는 1973.8.16. 일 · 조 우호촉진 시모노세키시 의회의원연맹의 발족이 확실시된다고 보고함.

- 동 영사는 9.13. 상기 시의회의원연맹 설립 총회가 개최(9.8.)되었다고 추가 보고

4. 주나고야영사는 1973.10.4. 일 · 한 우호촉진 이시카와현 의회의원연맹이 결성(10.1.)되었다고 보고함.

- 동 결성 총회에서 간부 선출과 규약 작성, 사업계획을 확정

5. 주시모노세키영사는 1973.10.11. 일 · 한 우호 시마네현 의회의원연맹 결성(10.9.) 관련 아래 보고함.

- 담당 영사는 상기 결성식 전 현지 출장, 동 연맹 회장과 간사장 의원을 접촉하여 인원의 보충과 규약 내용의 보완 등 협의하고 조속한 결성식을 촉진, 상기 결성식에도 참석
- 동 의회에는 일 · 조 우호촉진 의원연맹이 결성되어 있으나 유명무실
- 각 지방의 일 · 조 우호촉진 의원연맹 결성에 대처하여 친한 인사의 확보 및 결속책으로 일 · 한 우호촉진 의원연맹 결성을 추진한바 상기 결실을 맺음.
- 야마구치현 의회에도 한국과의 우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원연맹 결성도 추진 중

6. 주시모노세키영사는 1973.10.25. 일 · 한 우호증진 자민당 야마구치현 의회의원연맹이 결성(10.13.)되었다고 보고함.

7. 주요코하마영사는 1973.12.21. 일 · 조 우호촉진 요코하마 시의회의원 간담회가 아래 목적으로 결성되었다고 보고함.

- 일본과 북한의 국교 정상화를 목적으로 경제, 문화 등 우호 증진

재일본 한국인 [redacted] 형제 간첩사건

| 73-0893 |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P-12 / 17 / 1~93(93p)

1. 외무부는 간첩 용의로 체포(1971.3.7.)된 [redacted] 형제에 대한 각종 탄원서, 청원서와 관련된 조치를 시행함.

- ❋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동경교육대 동창회의 대통령 앞 탄원서 송부(1971.9.3.)
- ❋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동경교육대 교수들의 서[redacted] 구명을 요청하는 대통령 앞 탄원서 송부(11.29.)
  - 서[redacted](10.22. 사형 판결) 및 서[redacted](징역 15년)에 대한 감형과 수감 중 화상 치료 요망
- ❋ 법무부에 국제사면회 일본 지부장의 진정서 송부(12.8.)
- ❋ 법무부는 대한적십자사에 수용자 의료 제공 관련 아래 회신(12.13.)
  - 현재 피고인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이 있을 경우 한적의 의료 봉사 기회가 가능
- ❋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서군형제 구명 교토동창생회' 및 '서군형제 구명 학우회' 의 대통령 앞 탄원서 송부(1972.11.13.)
- ❋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일본 릿교대 교원 등의 탄원서 및 요망서 송부(11.23.)
- ❋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일본 '문학 창조자 및 독자회의' 요망서 송부(12.6.)

2. 주일대사는 1972년 서[redacted] 형제의 구원 관련 동향을 아래 보고함.

- ❋ 일본 국회의원 129명이 2.10. 서[redacted] 형제의 구원호소 성명문과 서명문을 한국 대통령에게 송부하기로 결정(2.12.)
- ❋ 서[redacted] 형제에 관한 언론 보도 내용 보고(3.6.)
  - 서[redacted] 및 서[redacted]의 혐의 내용, 재판 결과, 일본에서의 구명운동 설명
  - 서[redacted] 형제의 영주권이 1972.3월 각각 실효 등

3. 주오사카총영사는 1973.3.12. 서[redacted]의 상고심 심리(1973.3.13.)에 대해 '서군 형제를 지키는 교토회' 의 진정서를 아래 보고함.

- ❋ 서군 형제는 일본에서 출생 · 성장하여 모국 유학생으로 건너간 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1971.4월 체포
  - 서[redacted]은 징역 7년 확정(1972.5.23. 대법원 판결), 서[redacted]은 큰 화상으로 분리 심리 중
  - 동 판결은 인도적 견지에서 일본 국민의 큰 관심사
- ❋ 서[redacted]에 대한 신중하고 공정한 심리에 근거, 관대한 판결을 요망

재일본 반한단체

| 73-0894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교민1과/동북아1과
MF번호	P-12 / 18 / 1~29(29p)

1. 주삿포로총영사는 1973.4.26. 북해도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에 관해 아래 보고함.

- ❁ 조총련 중앙본부와 북해도 지부 후원으로 동 조사단이 4.16.~24, 북해도 각지를 순방하며 조선인 강제연행에 관한 진상 조사, 동 조사 결과를 4.24. 보고하는 집회 개최
- ❁ 총영사관은 동 조사가 조총련의 사주로 일-조 국교 정상화 무드 조성이라는 정치적 선전에 있음을 민단 각 지부에 주지, 동 조사단에 협조하지 않도록 지도

2. 주오사카총영사는 1973.7.10. 당지 한청(韓青) 동향 및 집회 결과를 아래 보고함.

- ❁ 한청 오사카 본부는 6.24. '입국관리법 반대집회' 를 개최
  - 동 집회의 목적과는 달리 박 대통령의 6·23 특별성명과 김일성의 고려연방제 안을 비교, 고려연방제안을 지지하는 노선을 취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요지의 내용에 통일

3. 외무부는 1973.12.9. 주일대사에게 재일한국인의 반정부 시위 동향 보도(12.8.~9.)에 대해 보고하라고 훈령함.

- ❁ 주일대사는 12.10. 아래 내용 보고
  - 한국 민주회복 통일촉진 국민회의 일본 본부와 김대중 구출대책위원회는 12.9. 동경에서 본국의 구국투쟁 열렬 지지, 한일 각료회담 분쇄, 김대중의 재래일 요구 등 운운하는 집회 개최
- ❁ 주일대사는 12.12. '재일한국학생동맹' 소속 학생들이 한일 각료회담 중지를 주장하는 항의문을 전달했다고 보고

4. 주일대사는 1973.12.22. 불온 재일학생 시위 동향 관련 아래 보고함.

- ❁ 베트콩파 전위부대인 불온 재일청년 학생들이 동경에서 한일 각료회담 연기를 위한 단식농성 중
- ❁ 일본의 극좌파 그룹계 일본 전학련 중핵파 학생들이 12.23. 동경에서 한일 각료회담 중지를 위한 집회를 갖고 가두데모 예정

5. 주일대사는 1973.12.23. 반한 동향 관련 아래 보고함.

- ❁ '한국 민주회복, 통일촉진 국민회의' 일본 본부는 12.22. 한일 각료회의 개최 결정에 항의하는 성명문 발표
- ❁ 조총련 한덕수 의장은 12.22. 기자회견에서 아래성명 발표
  - 각료회의는 경제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일본 군국주의자의 남한 침략에 길을 여는 것
  - 일본 정부는 '2개의 한국' 날조 책동에 가담해서는 안 되며, 북한에 대한 적시정책을 고쳐 한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됨.

미국내의 반한활동

| 73-089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P-12 / 19 / 1~45(45p)

1. 주뉴욕총영사는 1973년 현지 반정부 집회 관련 동향을 수시 보고함.

❋ 조국통일 시위 데모 거행(9.18.)
- 미군 철수, 2개의 한국 반대, 파쇼 정권 반대, 중정 규탄 등 구호

❋ 반정부 데모(10.12.)
- 주동자는 재미 육해공군 동지회 간부들로서 독재정권 타도, 중앙정보부 해체를 주장

❋ 반정부 데모(10.27.)
- 반정부 성토 및 구속학생 석방 요구

❋ 반정부 데모(11.16.)
- 일부 군출신 반정부 인사 참가, 박 대통령 및 중앙정보부 규탄과 김대중 관련 자유 요구

2. 외무부는 1973.10.16. '재미교포 동태 및 그의 선도책' 제하의 아래 자료를 작성함.

❋ 북한의 교민사회 침투 기도 및 재미교포 동태

❋ 재미교포 선도 기본 목표
- 북한의 교민사회 침투 사전 분쇄, 북한의 허위선전활동 봉쇄, 일부 불순교민의 반정부활동 저지 및 선도, 일부 불순 · 과격 · 좌경 교민의 북한 측과의 접촉 방지 및 전향 선도, 재외국민의 복리 증진 및 지위 향상과 모국과의 유대 강화

❋ 주요 선도 대책
- 지역별 교민단체 육성 강화, 교민사회와 모국 간의 유대 강화, 유학생회 조직 강화 및 특별지도, 주말 한국학교 설치 운영, 홍보 · 계몽활동 강화, 북한진출지 교민 특별보호 대책, 공관원의 선도지역 책임제 및 교민 접촉 의무화, 전 공관원의 대교민 봉사 자세 확립

❋ 교민 선도와 관련된 조치 사항
- 재외국민 특별선도보호에 관한 훈령(1973.7.14. 시행), 교민선도예산 일부지원, 주미 각급공관장회의 개최 등

3. 주캐나다대사는 1973.11.22. 불순 유인물의 캐나다 전파 관련 아래 보고함.

❋ 최근 재캐나다 한인사회에 이상한 유인물 배포
- 미국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자유한국" 주간지로서 내용이 고의적인 반정부 구호로 충만

❋ 동 유인물의 논조가 매우 선동적이어서 현지 한인사회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우려가 다대
- 상당 인원이 정기구독 신청 중인 것으로 인지

4. 주미대사는 1973.11.23. 워싱턴 반정부 집회 관련 아래 보고함.

❋ 일부 대학교수 등 인사 집회
- 중앙정보부, 박정희 정권 규탄, 구속학생 석방과 학원의 자유 보장 등 요구

재일본 조총련계 한국인 북한 방문

| 73-0896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P-12 / 21 / 1~65(65p)

본건은 1972~73년 일본 조총련계 한국인의 북한 방문과 이에 따른 일본 정부의 재입국 허가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특이 사항을 아래 요약함.

1. 주일대사는 1972.12.6. 조총련 한덕수 의장의 기자회견(12.5.) 내용을 아래 보고함.

- ❋ 북한 제5차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후보자 5명의 북한 방문 후 재입국허가 법무성에 신청
- ❋ 외무부는 12.14. 주일대사에게 상기 정치적 목적의 북한 방문에 대해 재입국허가 불허를 일본 정부에 강력 요청하고 결과 보고하라고 훈령
  - 주일대사는 12.19. 일 법무성에 확인 결과, 재입국 허가신청이 불허되었다고 보고

2. 주일대사는 1973.1.13. 아시아 교직원단체토론회(1.23.~25., 인도 캘커타)에 참가하는 조총련계 교직원 동맹 소속 일행의 재입국을 허가했다고 보고함.

3. 주일대사는 1973.2.12. 일 외무성 북동아과 직원이 대사관 담당자에게 언급한 내용을 아래 보고함.

- ❋ 조총련계 일행(45명)이 북한 체류(1972.9.27.~11.22.)
- ❋ 북한 출발 전 김일성과 면담, 김일성은 아래 요지로 발언
  - 전 국토의 요새화, 전 인민의 무장화 완료로 언제든지 미제의 침략 격퇴 가능
  - 북한은 총포부터 미사일까지 생산, 남한에 언제든지 팔 용의가 있음
  - 중공업 발전, 경공업은 3년 후 세계 수준 도달
  - 조직에는 오직 하나의 지도자만 필요, 일본에서의 한덕수의 말은 곧 자신의 말 등

4. 주일대사는 1973.3.13. 조총련계 인원의 상용(商用)을 위한 북한 방문 후 재입국허가 최초 사례를 보고함.

- ❋ 외무부는 3.17. 주일대사에게 상용 목적은 종래의 인도적 목적이라는 제한된 범위 내 재입국허가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일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라고 훈령

5. 외무부는 1973.3.31. 주일대사에게 동경도 부지사가 경제우호시찰단을 인솔,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일 · 북한 접촉 관계의 새로운 진전 사태로서 외무성에 유감을 표명하라고 훈령함.

6. 주일대사는 조총련계 주요 인사 및 단체의 북한 방문 후 재입국허가 관련 아래 보고함.

- ❋ 조총련 본부 경제국 부장 등 4명의 무역문제 협의를 위한 북한 방문 허가(1973.6.20.)

❋ 조총련계 예술단 및 재일조선교육자 대표단의 북한과 동독 방문 허가(7.19.)
❋ 재일조선인과학자협회의 불가리아 경유 북한 방문 허가(8.23.)

7. 외무부는 1973.8.23. 주일대사에게 조총련 부의장 일행의 북한 방문 후 재입국허가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훈령함.

❋ 조총련 부의장 일행이 북한 창건 25주년 재일조선인 축하단으로 3개월(8.25.~11.25.)간 북한 방문 예정
- 동 방문은 정치적 목적이므로 일 정부는 불허가 방침 견지
- 동 재입국이 허가될 경우 이는 일 측의 정책 전환을 의미, 일 · 북한의 교류 확대 계기

❋ 주일대사는 1973.8.30. 일 정부가 20일간의 기한부로 재입국을 허가했다고 보고
- 일 정부는 8.31. 본 북한 방문단이 정치적 목적으로는 보지 않으며, 종전 방침의 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

조총련 동향

| 73-0897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P-12 / 22 / 1~121(121p)

1. 외무부는 1973.1.5. 주일대사에게 국내 언론에서 "내분을 거듭해 온 조총련이 1972.12.28. 김병식 계열을 제거하기 위한 대폭적 인사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보도한 내용을 알리면서 동 상세 내용을 조사 보고하라고 훈령함.

- ❁ 주일대사는 1.9. 주재국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사항을 아래 보고
  - 조총련 중앙위에서 김병식 계열 제거를 목적으로 1972.12.28. 발령
  - 전 조직국장 김영환 등 해임
  - 부의장, 선전국장 등 경력으로 보아 조총련은 금후 언론, 문화, 교육에 역점을 두어 활동할 공산이 클 것이라는 의견
- ❁ 주일대사는 2.2. 북한을 방문 중인 도쿄신문 편집국장이 1.31. 전 조총련 제1부의장인 김명식과 회담하고 동인의 건재한 모습을 보았다고 보고

2. 주일대사는 1973.1.18. 조총련 한덕수 의장의 기자회견(1.17.) 내용을 아래 보고함.

- ❁ 남북통일 문제 관련, 북한이 한국 측에 자원 공동개발, 북한 해역에서 남한 어민의 조업 허가, 북한 기술과 자재로 남한의 농업용 관개시설 건설 등 경제 교류 제안을 최초로 공표
- ❁ 일 · 북한 교류 관련, 북한이 자민당, 재계 사절단 수용 용의 표명 등 적극적 태도 표명
- ❁ 다나카 내각에 대해 남한 일변도 정책을 지양하고 남북한 균등 정책을 요구

3. 재일 거류민단 중앙본부는 1973.1월 '총련대책' 자료를 작성함.

- ❁ 대상
  - 총련대책의 필요성과 긴급성, 총련의 민단 파괴공작을 위한 구실과 그 현황, 총련의 민단 파괴 공작의 역사적 경과, 최근의 동향(1972.12~73.1월)
- ❁ 대책: 조직적 조치, 교육적 조치, 선전적 조치

4. 주일대사는 1973.2.16. 조총련 제9기 제24차 중앙상임위 결정서(1972.12.20. 채택)를 송부함.

- ❁ 동 결정서는 1972년도 업적분석과 1973년도 활동방침을 결정한 내용

5. 주후쿠오카총영사는 1973.2.22. 조총련 동향을 아래 보고함.

- ❁ 총련 오키나와현 본부는 2.7. 북한 영화 '꽃파는 처녀' 시사회를 개최
- ❁ 총련 측은 '일 · 조 우호협회 오키나와현 본부' 설립을 기도
- ❁ 외무부는 3.6. 주후쿠오카총영사에게 재오키나와 교민들이 조총련의 허위선전에 현혹되지 않도록 민단조직을 중심으로 특별대책을 수립 실시하라고 훈령

6. 주일대사는 1973.5.22. 조총련 한덕수 의장이 기자회견(5.21.)에서 남북공동성명 1주년을 기해 민단에 대해 7.8.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합동대회 개최 제의를 언급했다고 보고함.

조총련계 인사 미국 방문계획

| 73-089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P-12 / 23 / 1~17(17p)

1. 주일대사는 1973.10.25. 조총련 부의장의 미국 방문 계획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아래 보고함.

❋ 한덕수 조총련 의장은 기자회견(10.24.)에서 미국 방문단 파견 계획을 발표
- 이계백 조총련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재입국허가 신청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안에 반대하는 재일한국인 25만 명의 서명 제출 목적

2. 외무부는 1973.10.26. 아래 입장을 일 정부에 설명하여 상기 조총련의 책동이 실현되지 않도록 극력 저지하라고 훈령함.

❋ 일본은 한국문제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유엔에서 한국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
❋ 조총련계 간부의 유엔 방문 후 재입국 허가는 그 정치적 목적으로 보아 한·일 기본조약 정신에 배치

3. 외무부는 1973.10.26. 주미대사에게 상기 조총련 간부의 미국 방문 계획을 알리고 아래 입장을 설명하여 미국이 이들에 대해 비자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라고 훈령함.

❋ 이들은 유엔의 정식 대표나 옵서버가 아니며, 목적이 한국을 중상하기 위한 정치적 방문
❋ 미국은 한국문제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유엔에서 한국 입장을 적극 지지할 입장

4. 주일대사 및 주미대사는 1973.10.26. 상기 관련 각각 아래 보고함.

❋ 미 국무성 당국자는 비자 신청 시 한국 측 견해를 고려하여 처리하겠다고 언급
❋ 일 외무성 다카시마 국장은 한국 측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이며 출국허가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확언

5. 외무부는 1973.10.27. 상기 조총련 대표의 유엔 파견 책동에 대한 조치 내용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함.

❋ 재일교포 자녀의 강제북송(10.19.) 사태에 대해 일 정부에 항의한 내용도 포함
- 일 외무성 아시아국장은 한국 모친의 합법적 의사가 묵살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책 강구 의사 언급

6. 주일대사는 1973.11.2. 일 법무성이 조총련 부의장 미국 방문 후 재입국허가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보고함.

❋ 일 법무성은 이번 신청이 정치적 목적으로서 미국의 입국허가 여부에 불구하고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강한 방침을 관철한 것이라고 논평

조총련 간부명단

| 73-089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Re-37 / 15 / 1~293(293p)

주일대사는 1973.2.2. 조총련 간부급 명단을 아래 송부함.

1. 본적지별 구분

- 서울, 경기, 충남, 충북, 강원, 부산, 경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이북 및 기타

2. 각 개인별 수록 내용

- 사진
- 성명: 한국명(일본명)
- 생년월일
- 직명
  - 협회장, 위원장, 부위원장, 각 지부 부장, 상공회 회장 · 부회장 등 구분
- 현주소
- 본적지
- 경력
  - 입국 연월일, 학력, 훈장 수상력 등
- 조총련 단체 내의 주요 경력

브라질 잠업(양잠) 이민 추진

| 73-0900 |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재외국민과
MF번호	2008-83 / 11 / 1~103(103p)

1. 외무부는 1972.10.20. 농림부와 보건사회부에 브라질 잠업이민 추진 관련 아래 통보함.

- ❋ 주상파울루총영사가 당지 저명한 양잠업자와 상파울루 농업식민공사가 제휴하여 한국의 양잠농업이민 추진을 제의해 왔다고 보고
- ❋ 한국의 양잠농업이민 송출 가능성, 브라질 정부의 한국이민 수용 시 한국 정부의 자금지원 가능성, 동 양잠이민 추진 시 구체 방안 및 의견을 회시해 줄 것을 요청

2. 중앙정보부는 1972.9.4. 브라질 잠업에 관한 조사 자료를 작성함.

- ❋ 잠업 현황, 한국 대비 브라질 잠업의 조건, 브라질 잠업의 전망, 한국 양잠이민의 가능성

3. 외무부는 1972.11.2. 농림부와 보건사회부에 한국 잠업이민에 관한 브라질 측 입장을 아래 통보하고, 한국의 양잠이민 계획 및 요망 사항에 대한 의견을 회보해 달라고 요청함.

- ❋ 주상파울루총영사가 당지 농업식민공사와 이민접수 합의절차, 주정부 승인 및 입국비자 관련 긍정적 협의 진행

4. 농림부는 1972.11.15. 외무부에 양잠이민 추진 관련 아래 회보함.

- ❋ 브라질은 토질만 좋으면 양잠지로서 적지, 양잠은 전망이 좋고 장래성이 있어 수익성 보장, 양잠이민 조건만 합당하면 추진 가능

5. 농림부는 1972.11.23. 외무부에 브라질 양잠이민 대책 관련 아래 통보함.

- ❋ 양잠이민 추진을 위한 관계관회의 개최(11.16.) 결과 통보
- ❋ 양잠이민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망
  - 브라질 연방정부의 확약, 연내 기초조사 실시를 위한 기술관 파견 등
- ❋ 외무부는 11.23. 농림부에 기술조사단 파견을 위한 파견자 명단 통보를 요청
- ❋ 외무부는 12.19. 농림부에 주상파울루총영사의 의견을 감안, 현 단계에서는 조사단 파견이 시기상조이므로 추후 구체계획 확정 시까지 조사단 파견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

6. 보건사회부는 1972.12.23. 외무부에 브라질 잠업이민 추진 관련 아래 회보함.

- ❋ 동 보류계획에 전적으로 동의, 관계부처 및 기관과 이민 송출에 관계되는 제반 문제 추진 예정

7. 주상파울루총영사는 1973.3.30. 브라질 양잠이민 관련 아래 보고함.

❁ 3.22~23. 양잠이민 예정지 주지사를 면담

- 한국양잠이민 원칙적 합의, 1차 200세대 정착 동의, 한국 측이 이민자 선발, 훈련, 기술지도 등 책임, 브라질 측이 농지, 주택, 양잠시설 융자 제공 등

❁ 건의

- 한국조사단 조속 파견, 수송문제 정부 지원 검토, 현지 융자에 대한 한국 정부 지불보증 가능성 검토, 현지 양잠기술 및 생활지도 기구 연구, 한국 제사공장 진출 검토

8. 주상파울루총영사는 1973.5.18. 양잠이민 관련 아래 보고함.

❁ 브라질 측의 양잠이민 접수계획 청취

- 브라질 중앙은행과 농업융자문제 합의 완료
- 아라과리시에서 한국 200세대 양잠이민 접수계획: 1973.6월말 계획 확정, 9월 이민 접수
- 한국 관계관을 6월 하순경 파견 희망

❁ 기타 브라질리아 인근 Unai 지역에 대한 한국의 여타 농업이민 가능성도 문의

9. 중앙정보부는 1973.7.11. 외무부에 아래 업무 협조를 요청함.

❁ 주한 브라질대사가 본국 정부 지시에 의거 한국 정부 측이 대브라질 양잠이민 송출계획 추진 상황에 대한 브리핑 요망

❁ 동 대사에게 추진 상황 설명과 향후 동인과의 협조 요망

칠레 꽃 재배 기술 이민. 전2권. V.1 1968-69

| 73-0901 |

생산연도	1968-1973
생 산 과	재외국민과
MF번호	2008-84 / 3 / 1~274(274p)

1. 외무부는 1968.3.22. 보건사회부에 남미 칠레에 대한 이민 송출 관련, 아래 요청함.

- ❋ 주칠레대사가 주재국 당국과 한국 이민 송출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칠레 측은 생화 재배 기술자 10가구의 이민 접수 의사를 시사
- ❋ 일정한 꽃 재배 경험 등 자격 구비자로서 이민 의사가 있는지 여부 회보

2. 보건사회부는 1968.4.15. 외무부에 상기 검토를 위해 아래 자료를 요청함.

- ❋ 칠레 개황, 정부의 이민제도 및 법규, 이민 현황 및 영주권 획득 등 관련 제반 정보
  - 외무부는 5.22. 보건사회부에 주칠레대사가 보고한 이민 송출 자료를 송부, 6.8. 이민관계 법규도 송부
- ❋ 보건사회부는 5.14. 외무부에 칠레에 대한 꽃재배 이민 송출이 원칙적으로 가하다고 회신

3. 보건사회부는 1968.6.17. 외무부에 칠레 꽃재배 이민 실시와 관련 시행계획(시안)을 송부하면서 이주 대상자 유무 확인을 위한 아래 자료를 추가 요청함.

- ❋ 기상 조건, 입지 조건, 노동력 고용 가능 여부와 인건비, 현지 종자 구입 가능 여부, 생산 후 판매 방법, 현지 재배농가의 경영규모, 현지 재배농가 수 및 대외교역 현황 등
  - 외무부는 7.29. 보사부에 현지 사정 조사 내용을 송부

4. 보건사회부는 1968.11.12. 외무부에 칠레 기술이민 선발 내용(3세대)을 통보하면서 이들의 입국허가를 위해 칠레 정부와 교섭해 줄 것을 요청함.

- ❋ 외무부는 12.18. 보건사회부에 칠레 정부와의 교섭 내용을 아래 통보
  - 주칠레대사의 보고(12.7.)에 의하면 추천 후보 전원이 자격 미달로서 시정해 줄 것을 요청

5. 보건사회부는 1969.2.7. 외무부에 칠레 꽃재배 이주사업 관련 조사단 파견을 협조 요청함.

- ❋ 기술이민 10세대 송출을 위한 현지 합동조사단을 3월경 파견 예정
  - 조사단은 외무부, 보사부, 농촌진흥청, 기업주 등으로 구성
- ❋ 외무부는 2.17. 보사부에 상기 조사단 파견에 칠레 측과 원칙적 합의를 보았다고 통보

6. 보건사회부는 1969.3.21. 외무부에 칠레 꽃재배 기술이민 조사단 파견계획을 아래 통보함.

- ❋ 목적: 칠레 현지 조사 및 남미 제국의 신규 이주 교섭
- ❋ 조사 기간 및 방문국: 1969.4.1.~5.18. 일본, 캐나다, 미국,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 ❋ 조사단: 보사부 이민과장(단장) 외 외무부, 농촌진흥청, 해외개발공사 담당관
- ❋ 주칠레대사는 5.10. 상기 조사단 활동 상황을 보고
  - 사전 조사 착수, 농장 답사 및 자료 수집, 칠레 직업청 및 진흥청 방문 예정

7. 외무부는 1969.10.22. 주칠레대사에게 꽃재배 이민 입국 및 정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통보하라고 훈령함.

❁ 보건사회부가 1969.10.20. 외무부에 아래 협조 요청
- 현지조사단의 보고를 기초로 세부계획 및 대상자 선발계획 성안(8.26.)
- 농촌진흥청에서 공개모집 선발시험을 통해 대상자 9세대 엄선(9.26.)
- 대상자 명단과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필요 서류 송부

8. 외무부는 1969.11.26. 보건사회부에 칠레 꽃재배 이민 입국사증 신청 관련 아래 통보함.

❁ 주칠레대사가 이민 명단을 칠레 직업청을 통해 외무성에 제출
- 외무성은 원칙적으로 수용 결정, 이들의 입국사증 신청을 요청
- 칠레 정부는 꽃재배 이외에 다른 사업에 종사할 경우 향후 칠레에 대한 한국 이민이 완전 폐쇄될 것임을 강조

❁ 소정 서식에 따라 입국사증 신청 요망

9. 보건사회부는 1969.11.27. 칠레 꽃재배 이민에 관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함.

❁ 일시 귀국한 윤주영 주칠레대사의 주재국 현황 설명과 이민자 입국수속 등 협의

칠레 꽃 재배 기술 이민. 전2권. V.2 1970-73

| 73-0902 |

생산연도	1968-1973
생 산 과	재외국민과
MF번호	2008-84 / 4 / 1~257(257p)

1. 외무부는 1970.2.13. 보건사회부에 칠레 꽃재배 이민의 조속한 송출을 위한 조치를 요청함.

- ❋ 윤주영 주칠레대사는 공관장회의(2.10.)에서 동 이민의 도착 지연으로 대칠레 관계에 곤란한 점이 많음을 지적
- ❋ 보건사회부는 2.13. 이주자 중 신원조회 미필자와 자진 사퇴자 교체로 지연되고 있다고 회신
  - 1970.2월 중 입국 사증 신청, 3월 중 현지 송출 계획

2. 보건사회부는 1970.3.4. 장관 주재로 칠레 꽃재배 기술이민 관련 외무부, 재무부, 중앙정보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바, 주요 결과는 아래임.

- ❋ 이주 예정자 전원 조속 사증 발급 신청, 해외이주 자격심사 회의도 개최
- ❋ 운영자금 등 재정지원 방안과 이주절차 협조도 결정

3. 외무부와 주칠레대사는 1970.3~9월 보건사회부와 협조하여 칠레 꽃재배 기술이민 관련 각종 필요 조치를 시행함.

- ❋ 입국사증 획득 조치(주한 칠레대사관과의 교섭 포함), 이주자 재산 반출, 재배 이주지 선정, 출입국 협조, 이민자금 송금, 영농종자 송부, 토지 구입, 사업자금 집행
- ❋ 이주 예정자 총 7세대 중 4세대 출국(1970.5~7월), 잔여 3세대는 1970.10월경 출국 예정

4. 주칠레대사는 1970.10.22. 및 10.31. 칠레 꽃재배 기술이민 관련 아래 건의함.

- ❋ 주재국 정치 사정으로 정착에 애로가 많아 미출발 이주세대의 출발을 보류
  - 좌익 정권 수립과 모든 체제가 공산화되어 가고 북한의 진출이 확실시
- ❋ 주재국에 도착한 이주자도 사태의 진전에 따라 인접국으로 철수하는 방안 검토
  - 이민자의 정착지 매입도 보류

5. 중앙정보부는 1970.11.9. 외무부에 칠레 화훼이민 정착문제 관련 아래 의견을 회신함.

- ❋ 기 이주자는 현지 정세를 관망하면서 현상 유지, 출국 예정자는 당분간 출국 보류
- ❋ 현지 실정 보고
  - 꽃재배 이민은 단시일 내 성공 전망이 현재로서는 전무
  - 계속 정착 시 자체 보안책 강구 필요, 특히 정부의 충분한 보상책 수립 필요

6. 보건사회부는 1970.12.4. 외무부에 칠레 꽃재배 이민정책 관련 아래 통보함.

- 주재국 정세 변동 긴밀 회보 요망
- 기 이주자의 제3국 이전에 대비, 주아르헨티나대사 및 주칠레대사와의 협조로 기 이주자의 최대한 안전 도모 요청

7. 보건사회부는 1971.3.10. 외무부에 칠레 꽃재배 이주자의 이전계획을 아래 통보함.

- 칠레 정세 변동하에서 한국 이주자들이 대규모 꽃재배 사업 수행이 어려우며 이들의 재산권 소유, 법적 지위 확립 전망도 불투명
- 최악의 사태에 대비, 후보지인 아르헨티나로 이전키로 결정
  -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 협조 요망
- 보건사회부는 6.23. 외무부에 칠레 꽃재배 이주자들에 대한 이주 목적지를 아르헨티나로 변경키로 결정했다고 통보

8.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71.3~5월 꽃재배 이민단 관련 조치 결과를 보고함.

- 토지 매입 협조, 이민 자금 수령, 성공 여부에 관한 전망 보고 등

9. 주칠레대사는 1971.11.23. 칠레 꽃재배 이민자(김[redacted])가 현재 칠레에서 계속 꽃재배로 수익을 올리고 있어 현지 잔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고함.

- 보사부는 12.28. 동인이 잔류할 경우 이는 당초 꽃재배사업조합의 일원이 아닌 개인 사업 수행자라는 의견 회신

대남미 이민

| 73-0903 |

생산연도	1970-1973
생 산 과	재외국민과
MF번호	2008-85 / 2 / 1~113(113p)

1. 외무부는 1970.8.6. 보건사회부에 중남미지역 이민 가능성에 대한 조사보고를 아래 통보함.

❋ 엘살바도르는 이민 가능성 전무, 온두라스는 현 단계에서 고려 불가능

❋ 파라과이 및 볼리비아는 통상 기술이민은 바람직하지 못하나, 한국 자본의 진출에 수반하는 기술이전 또는 기 이주자들의 사업체를 근거로 하는 기술이전은 충분히 성공

2. 주일대사는 1970.10.12. 중남미의 주재국 소재 겸임공관과의 접촉에 참고하고자 한국의 대중남미 이민현황과 현안 교섭 사항을 요청함.

❋ 외무부는 10.23. 남미 이민조사단 보고서 및 이민 현안을 회신

3. 외무부는 1971.6.28. 주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대사에게 해외이주계획 수립에 따른 아래 사항을 조사 보고하라고 훈령함.

❋ 한국 이주자들의 정착 현황, 정착자의 법적 지위 및 사회활동, 정착자 경제활동, 기업 진출 문제, 이주자들의 현지 정착과 관련된 문제점과 건의 사항 등

4. 보건사회부는 1972.2.12. 외무부에 해외인력진출 사업에 관해 아래 협조요청함.

❋ 관계부처 실무자회의(1.28) 시 협의 내용 협조

- 기업이민 권장 방안, 영주권 · 시민권 소지자의 국내 활동 제한, 부정 알선업자 규제 방안 등

5. 외무부 재외국민과는 1972.7월 '계획이민의 정책방향' 에 관한 내부 자료를 작성함.

❋ 이민 현황, 이민정책의 방향, 이민 송출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 결론

- 이민의 효과적인 통제는 어려움, 이민의 성공적 송출을 위한 이주사업 전담기구 설립 필요

6. 보건사회부는 1973.8.13. 가장이민 방지대책에 관한 외무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함.

❋ 해외이주 후 재입국 국내장기체류자 대책, 재산 해외도피 목적의 가장이민 방지책, 병역면제 목적의 해외이주 방지책, 수시 출입국하며 상행위하는 해외이주자 방지책 등 협의

- 각 부처는 동 방안을 검토, 추후 재협의키로 합의

7. 보건사회부는 1973.8.25. 외무부에 남미 이주관계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 대우루과이 이주, 대아르헨티나 이주허가 보류, 대파라과이 관광비자 소지자 처리문제 등

8. 외무부는 1973년 중 '대남미 5개국 이민관계 현황' 내부 자료를 작성함.

❋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칠레

- 연도별 이주자 수, 이주자 경영농장 현황, 각국별 주요 현안, 외무부 조치 사항 등

한국 어선의 중국(구 중공) 어선 및 선원 구조

| 73-0904 |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P-6-2 / 17 / 1~61(61p)

1. 1971.5.9. 우리나라 서해 소흑산도 서남방 60마일 해상에서 표류 중이었던 중국(구 중공) 어선 1척을 우리 어선이 발견하여 소흑산도에 예인하였다가 기상 여건이 좋아지자 5.11. 어부 6명을 귀환시킨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한국 정부는 중국 어부들에게 식량 및 의료품 제공 등 호의를 표시함.

❁ 중국 어민들은 귀환 전에 한국의 후대에 감사하는 감사문에 서명함.

2. 1973.5.1. 우리나라 서해 대흑산도 남방 120해리 지점에서 우리 어선이 표류 중 침몰한 중국 어선 1척에 타고 있던 중국 어부 8명을 구조하여 보호하다, 다른 중국 어선에 어부들을 인도하였으며, 우리 해군 함정이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함.

❁ 외무부는 5.1. 동 구조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5.2.에는 서해 풍랑이 가라앉음에 따라 동 어부들을 중국 어선에 인도하였다고 발표함. 그리고 외무부는 주한 영국대사를 통하여 중국 당국에 동 사실을 통보케 하는 동시에 영국, 미국 등 우리 공관에도 이 사실을 알리면서 주재국에서의 반응이 있을 경우 보고토록 지시함.

3. 1973.5.2. 우리 국내 신문들은 공해상에서 조난당한 중국 어선을 우리 어선이 구조하고 중국 측에 인도하였음을 보도함.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 73-0905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영사과/동북아1과
MF번호	P-12 / 25 / 1~82(82p)

일본 정부의 범법자 교민 및 불법 입국자 강제 퇴거 집행 대상자에 관한 우리 정부와 협의한 내용임.

1. 일본 정부는 일본 거주 한국인 중에 불법 입국자 및 범죄 행위를 하여 7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영주권자를 단속하여 수용소에 수감하고, 한국 송환을 실시하여 왔음. 1973년도에도 오무라 수용소에 수감된 221명에 대한 송환 심사가 진행되어, 주일대사관, 일본 외무성 및 법무성이 협의를 하여 대상자를 결정함.

- 대상자 명단을 한국 법무부에 보내, 송환에서 제외할 대상자(영주권자 가족, 장기 거주자 등)를 선정하여 우리 대사관에 다시 송부하면, 대사관이 일본 외무성과 법무성과 협의하여 대상자를 결정

2. 1973년도 제76차 송환에는 대상자 중에 19명을 제외한 전원이 1973.11.28. 한국으로 송환됨. 한편, 쟁점 사항으로 남은 케이스는 강도 행위로 8년 형을 선고받은 교민의 송환이었는바, 일본 정부는 한-일 기본조약(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동인을 퇴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우리 정부는 인도적 고려를 하여 송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 동인은 일본 법원에 강제퇴거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의하여 퇴거가 일시 정지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차기에는 송환한다는 방침을 고집함.

선원 기항 여행결과보고서

| 73-0906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구과/동북아2과
MF번호	P-12 / 26 / 1~20(20p)

우리나라 선원들의 중국(구 중공)과 구 유고슬라비아 기항과 관련된 내용임.

1. 그리스 선적의 화물선 Lokris가 1973.5.10. 소맥을 싣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중국(구 중공)으로 출항하는데 동 선박에 우리 선원 5명이 탑승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한 밴쿠버 주재 우리 총영사관은 동 선박 선장과 우리 선원을 면담하고, 중국 기항 시 하선하지 않는다는 서약과, 선장의 우리 선원 신변 안전 보장 등 조건으로 우리 선원들의 출항을 허가하였다고 5.1. 본부에 보고함에 따라, 본부는 선원들에 대한 사전 보안교육 실시 및 중국 기항 시 중국 관헌들의 아국 선원에 대한 처우에 관하여 여타국 선원과 비교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함.

2. 유럽에 취항 중인 우리나라 화물선 EURAYLUS가 구 유고의 Kope r항에 1973.7.20. 및 9.8. 두 차례 기항하였는바, 동 선박의 아국인 선장 및 기간요원이 작성, 제출한 관찰 보고서는 항구와 주변 풍경, 입항 수속, 하역 인부들의 표정, 시가지 모습 및 일반적 느낌을 포함하고 있음.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 중앙회관 건립 추진

| 73-0907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교민1과/기획예산담당관/동북아1과
MF번호	P-12 / 27 / 1~111(111p)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 중앙본부의 중앙회관을 동경에 건립하기 위한 모금 및 우리 정부 소유 대지와의 환지와 관련된 내용임.

1.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 중앙본부는 민단 중앙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1973.3.17. '중앙 종합회관 건립 위원회' 발족을 위한 회합을 개최하고 기구 및 인사 구성을 결정함.

❋ 위원회 위원 위촉은 약 1,500명이며 전국적인 모금 활동을 통하여 모금

❋ 건평 1,800평(200평x9층) 외 지하 주차장

2. 동 회관 건립은 우리 국가 소유 대지(공관용)를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신 정부는 민단 보유 대지를 받는 '환지'를 통하기로 합의됨. 주일본 우리 대사관은 민단의 건의를 바탕으로 반환 대지의 크기와 위치를 감안할 때 국가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아 타당하다고 본부에 보고함.

❋ 본부는 1973.12.21.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승인함.
- 환지 계약서 및 공인 감정기관의 토지 및 평가 조사서가 포함

3. 한편, 외무부는 1973.12.29. 환지에 따른 교환 차액 수익금 3억 엔은 거류민단 회관 건립 신축비(2억 엔)과 거류민단 부채 청산(1억 엔)에 사용하겠다고 재무부에 신청함.

주월남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계획

| 73-0908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P-12 / 28 / 1~39(39p)

1. 1973.10.11. 주월남 한국대사관은 대사관 부지를 이용하여 대사관 및 대사관저를 신축하겠다고 본부에 승인을 요청함.

- ❋ 총 경비 미불 50만불을 추산하였는바, 본부는 예산 사정상 1974년도에 10만 불 배정 가능하고 나머지는 주사이공 외환은행에서 장기 연부 상환 조건으로 차입 충당하는 조건으로 승인
- ❋ 대사관은 11.19. 본부에 보낸 보고에서 관저는 대사관 부지 내가 아닌 외교단지 지역에 신축 내지 기존 건물을 구입하겠다고 계획을 변경
  - 사무실 28만 불과 관저 약 38만 불 총 66만 불 소요되며 차입 금융기관은 사이공이 아닌 홍콩 지점으로 교체
  - 12.28. 대사관은 관저용으로 사이공 시내 토지를 18만 불에 매입

2. 1973.11.28. 대사관은 한국 건축설계 사무실에 설계를 의뢰하였으며, 공관 건물은 실용성 위주로 콘크리트 건물을 건축하되, 관저는 지붕을 한옥 형태로 설계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본부에 보고하였으며, 본부는 12.24. 변경된 계획(증액 포함)을 승인함.

주미국대사관 별관건물 매입

| 73-090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기획예산과
MF번호	P-12 / 29 / 1~63(63p)

1. 주미국 한국대사관은 1973.6.7. 직원 증원으로 인한 사무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관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대책으로 무관부 및 영사부를 위한 별도 사무실을 마련하되 임차하는 것보다는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부에 건의함.

❁ 공관에서 100미터 거리에 지상 4층 건물 22만 불 매입 및 수리 비용 10만 불 소요

2. 1973.8.20. 본부는 예산 당국과 동 예산을 1974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협의하고 있으므로, 계약은 그해에 체결하되 구입대금 지급은 1974.2월초에 가능하도록 교섭하라고 지시함. 대사관은 8.22. 매입 계약 체결하였음을 본부에 보고하면서, 대금 지불 기일이 10.20.로 되어 있으므로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함.

❁ 본부는 예산 사정상 1973년도 지급이 불가하므로 금융기관 차입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지시하여, 대사관은 외환은행 뉴욕 지점에서 32만 불을 10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차입함(10만 불은 1974년도에 상환).

3. 1973.10.16. 대사관은 본부에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 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건물 구입을 정식 승인하여줄 것을 본부에 신청하였으며, 10.19.에는 건물을 정식 인수받았음을 본부에 보고함.

부록

주요 외교일지

| 1973년 |

1.1. 주 Berlin(독일) 총영사관 개설

1.3.–6. 김종필 국무총리 Truman, Harry S. 전 미국 대통령 장례식 참석

1.9.–11. 김종필 국무총리 일본 비공식 방문(미국 방문 후)
– 太平(오히라) 일본 외상과 회담(1.10.)

1.9.–30.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특별법률위원회(Montreal)
– 수석대표: 이화균 주캐나다대사관 참사관

1.10.–17. 제14차 아 · 아 법률자문위원회(AALCC) 총회(New Delhi)
– 수석대표: 노신영 주New Delhi 총영사

1.11. 유고슬라비아 주재 북한대사관 개설

1.11.–12. 제16차 주둔군지위협정(SOFA)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개최

1.14.–17. Jagt, Guy V. 미국 하원의원 방한

1.16. 국제포플러위원회(IPC)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테두리내에서 설치하는 협약,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459호)

1.16.–18.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 식품가공센터 설립 전문가회의(Manila)

1.16.–23. Arismendi, R. 우루과이 공산당 제1서기 북한 방문

1.19. 한 · 국제금융공사(IFC) 간의 투자 원본회수에 관한 일반협정 서명, 발효 (조약 461호)

1.20. 제16차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 무역분과위원회(Bangkok)
– 수석대표: 임명진 주태국 참사관

1.20. Haig, Alexander 미국 특사 방한

1.22.–31. Ranard, Donald L. 미국 국무성 한국담당과장 방한

1.24. 한 · 일본 간의 통신시설 확장사업을 위한 62억 엔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73.1.29. 발효, 조약 468호)

1.24.–26. 미국 상원의원단 방한

1.24.–26. 정일권 전 국무총리 Johnson, Lyndon B. 전 미국 대통령 장례식 참석

1.25. 한 · 일본 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서명, 발효 (조약 463호)

1.25. 한 · 그리스 간의 발명특허권 및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 (조약 458호)

1.25.–28. Sneider, Richard L. 미국 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담당부차관보 방한

1.25.–30. 미주 및 구주지역 공관장회의(서울)
– 김용식 외무부장관 주재

1.27. 한 · 아시아개발은행(ADB) 간의 상수도 취수장 이설을 위한 차관협정 발효(조약 465호)

1.27. 한 · 아시아개발은행(ADB) 간의 수산개발사업을 위한 차관협정 발효(조약 466호)

1.27.–29. Wolff, Lester L. 미국 하원의원 방한

1.29. 한 · 일본 간의 통신시설 확장사업을 위한 62억 엔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조약 468호)

1.29. 한 · 크메르 간의 문화협정 서명, 발효(조약 469호)

1.30.–2.6. 베냉(구다호베이) 외상 북한 방문

1.31. 북한 · 토고 외교관계 수립

2.1. 제4차 한 · 일본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실무자회의(동경)

2.1.–3. Almeyda, Uodomiro 칠레 외상 북한 방문

2.2. 한 · 노르웨이 간의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조약 470호)

2.5. 북한 · 베냉 외교관계 수립

2.6.–16. 제7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정부간 유실유지연구단회의(Rome)

2.7.–10. 아주 및 아프리카, 중동지역 공관장회의(서울)
– 김용식 외무부장관 주재

2.8.–28. 장상문 특사(외무차관보) 북구 순방(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 노르웨이(2.8.~13.), 스웨덴(2.13.~16.), 핀란드(2.19.~22.), 덴마크(2.22.~25.), 아이슬란드(2.25.~28.)

2.9.–16. 탄자니아 국방상 북한 방문

2.9.–21. 허담 북한 외교부장 중공 및 파키스탄 방문
– 중공(2.9.~14.), 파키스탄(2.14.~21.)

2.11.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462호)

2.12. 국제통신위성기구(INTELSAT)에 관한 협정 및 동 운영협정,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456호, 457호)

2.12. 함병춘 특사(대통령정치담당특별보좌관) 네팔 방문

2.12.–3.2. 김용식 외무부장관 독일, 영국 및 미국 순방
– 독일(2.14.~18.), 영국(2.16.~21.), 미국(2.22.~27.)

2.13.–23. 제2차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수산관리 발전에 관한 기술회의(Vancouver)

2.14.–16. Melvin, Price 미국 하원의원 방한

2.16. 한 · 일본 간의 농수산개발을 위한 차관계약에 관한 협정 개정(조약 472호)

2.17.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460호)

2.17.–3.17. 강양욱 북한 부주석 중동(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소말리아) 및 탄자니아 순방
– 이라크(2.17.~24.), 시리아(2.24.~28.), 이집트(3.1.~5.), 소말리아(3.7.~10.), 탄자니아(3.11.~17.)

2.17.–3.20. 북한 경제사절단 구주 순방(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 단장: 공진태 대외경제위원회 위원장
– 노르웨이(2.17.~26.), 덴마크(2.26.~3.5.), 아이슬란드(3.5.~9.), 스웨덴(3.9.~15.), 핀란드(3.15.~20.)

2.18.–19. Sullivan, William H. 미국 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담당부차관보 방한

2.22. 미국 · 중공, 연락사무소 상호설치 합의

2.23. Urbina Ortiz, Francisco 주한 에콰도르대사 신임장 제정

2.23. Campbell, Ross 주한 캐나다대사 신임장 제정

2.25.–3.9. Wagner, Leo 독일(기민당) 하원 원내총무 한 · 독일 의원협회 의장 방한

2.26. 한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간의 철도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협정 발효 (조약 464호)

2.26. 제17차 SOFA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개최

2.26.–3.1. 제22차 태평양지역관광협회(PATA) 총회(동경)

2.27.–3.2. 허담 북한 외교부장 체코슬로바키아 방문

2.27.–3.2. 제19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특별총회(New York)
– 수석대표: 구충회 주유엔대표부 공사

2.28. 최완복 주룩셈부르크대사 신임장 제정

2.28.–3.4. Almgren, C. E. 스웨덴 육군참모총장 방한

3.1.–20. 제11차 Tripoli 국제박람회 참가

3.1.–5.8. 북한사절단 중남미 순방(쿠바, 칠레, 에콰도르, 파나마,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가이아나, 페루)
– 단장: 김윤환 부외무상

– 쿠바(3.1.~8.), 칠레(3.8.~15.), 에콰도르(3.18.~26.), 파나마(3.29.~4.3.), 자메이카(4.6.~12.), 트리니다드토바고(4.14.~18.), 가이아나(4.22.~27.), 페루(4.30.~5.8.)

3.2. 북한 · 감비아 외교관계 수립

3.2.–4. 황장엽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파키스탄 방문

3.2.–7. 허담 북한 외교부장 알제리 방문

3.5. 한 · 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AARRO) 간의 아 · 아농촌재건기구 극동지역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하기 위한 협정 서명, 발효(조약 473호)

3.5. 최완복 주구주공동체(EC)대사 신임장 제정

3.5.–7. 한 · 일본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제1차 실무자 소위원회(서울)

3.6. Kombot–Naguemon, Nestor 초대 주한 중앙아프리카대사 신임장 제정

3.10.–15. 허담 북한 외교부장 모리타니 및 소련 방문
– 모리타니(3.10.~11.), 소련(3.11.~15.)

3.12. 한 · 요르단 간의 무역협정 발효(조약 477호)

3.13.–22. Potolot, Joseph 중앙아프리카 외상 방한

3.14.–16. 제2차 남북조절위원회(평양)

3.15. 주월남 한국군 철수 완료

3.15. 주나하(일본) 영사관 개설

3.15.–21. 황장엽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튀니지 방문

3.17.–24. Mwanga 잠비아 외상 북한 방문

3.17.–27. 함병춘 특사(대통령정치담당특별보좌관) 북구 순방(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 덴마크(3.18.~21.), 스웨덴(3.21.~23.), 노르웨이(3.23.~25.), 핀란드(3.25.~27.)

3.18.–4.3. 윤석헌 외무부차관 중남미 순방(파나마,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 파나마(3.19.~22.), 베네수엘라(3.22.~24.), 가이아나(3.24.~26.), 트리니다드토바고(3.27.~29.)

3.19.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 · 미국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발효(조약 474호)

3.19. 주월남 한국군 사령부 잔류요원 완전철수

3.19. 1968.1.5. 자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 · 미국 간의 협정의 개정협정 발효(조약 475호)

3.19.–20. 1973년도 제1차 국제연합통일부흥위원단(UNCURK) 전체회의(동경)

3.20. 북한 · 모리셔스 외교관계 수립

3.20.–23. 제5차 남북적십자 본회담(평양)

3.22.–4.16. 특별사절단 서부아프리카 순방(니제르, 가나, 가봉, 자이르, 차드)
- 단장: 박동진 주제네바대사
- 니제르(3.22.~26.), 가나(3.27.~30.), 가봉(4.1.~5.), 자이르(4.5.~13.), 차드(4.13.~16.)

3.24. 북한 · 리비아 통상관계 재개

3.24.–27. Ramsey, Michael 영국 성공회 대주교 방한

3.26. 한 · 가이아나 간의 무역협정 서명, 발효(조약 478호)

3.26. 한 · 가이아나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1973.7.31. 발효, 조약 483호)

3.27.–31. 특별사절단 동부아프리카 순방 일환 루안다 방문
- 단장: 최완복 주벨기에대사
-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 방문 취소

3.28. 민충식 초대 주서사모아대사 신임장 제정

3.29.–30. 북구 5개국 외상회의(Oslo)
-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 승인 원칙합의

3.29.–31. 한 · 일본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제2차 실무자 소위원회(동경)

4.2.–17. 한신 합참의장 남미 순방(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 브라질(4.2.~10.), 우루과이(4.10.~12.), 아르헨티나(4.12.~13.), 페루(4.13.~15.), 콜롬비아(4.15.~17.)

4.3.–13. 제5차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특혜특별위원회(Geneva)
- 수석대표: 윤영교 외무부 통상국장

4.4.–15. 제3차 미주기구(OAS) 총회(Washington, D.C.)

4.6. 북한 · 스웨덴 외교관계 수립

4.8.–29. 친선사절단 동남아 순방(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버마, 인도네시아)
- 단장: 최규하 대통령외교담당특별보좌관
- 필리핀(4.9.~11.), 태국(4.11.~15.), 말레이시아(4.18.~22.), 싱가포르(4.22.~24.), 버마(4.24.~26.), 인도네시아(4.26.~29.)

4.9.–10. 제5차 한 · 뉴질랜드 통상부장관회담(서울)
- 수석대표: 이낙선 상공부장관/Walding, J. A. 무역장관

4.9.–12. 제7차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총회(Rome)
- 수석대표: 안영철 주이탈리아 참사관

4.9.–13. Molapo, M. V. 주유엔 레소토대사 방한

4.11. 정일영 주세네갈대사 신임장 제정

4.11.–12. Thieu, Nguyen Van 월남 대통령 방한

4.11.–12. Lam, Tran Van 월남 외무장관 방한

4.11.–23. 제29차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 총회(동경)
- 수석대표: 김용식 외무부장관

4.12. 1973년도 한 · 미국 간의 농산물 구매협정 서명, 발효
- 1973.5.29., 1974.12.7., 1975.2.26., 3.13. 각각 개정

4.12.–29. 정일권 국회의장 중동 및 구주 순방(덴마크, 이란, 터키, 에티오피아)
- 덴마크(4.12.~13.), 이란(4.16.~20.), 터키(4.20.~24.), 에티오피아(4.25.~28.)

4.13. 핀란드, 남 · 북한 동시 승인

4.13.–17. 북한 친선사절단 이란 방문
- 단장: 김경련 재무상

4.15.–5.18. 특별사절단 아프리카 순방(케냐, 모리셔스, 스와질란드, 레소토, 보츠와나, 말라위, 우간다)
- 단장: 백두진 특사
- 케냐(4.15.~21.), 모리셔스(4.21.~24.), 스와질란드(4.25.~28.), 레소토(4.30.~5.4.), 보츠와나(5.5.~8.), 말라위(5.9.~12.), 우간다(5.14.~18.)

4.16.–5.20. 특별사절단 서부아프리카 순방(세네갈, 감비아,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오트볼타, 베냉)
- 단장: 임병직 특사
- 세네갈(4.19.~24.), 감비아(4.24.~26.), 시에라리온(4.26.~5.1.), 라이베리아(5.1.~4.), 오트볼타(5.6.~9.), 베냉(5.12.~16.)

4.17. 채명신 주스웨덴대사 소환
- 1973.4.6. 스웨덴의 북한 승인 항의

4.17.–18. 제9차 한 · 일본 협력위원회 합동상임위원회(동경)

4.17.–19. Weiss, Leonard 미국 국무성 정보조사국 부국장 방한

4.18. 일본, 북한 시멘트 최초 수입

4.19. 북한 · 이란 외교관계 수립

4.19.–23. Sanguinetti, Julio 우루과이 하원의원 방한

4.19.–26. Heing Sohn, Karl 독일 경제협력성 차관 방한

4.20.–22. Passman, Otto 미국 하원의원 방한

4.21.–29. 제17차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정부간 미곡연구단회의(New Delhi)
– 수석대표: 주성규 농수산부 식량차관보

4.21.–5.6. 특별사절단 중동 순방(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국)
– 단장: 김영주 주독일대사
– 바레인/쿠웨이트(4.21.~27.), 카타르(4.27.~29.), 오만(4.29.~5.1./5.4.~6.), 아랍에미리트연합국(5.1.~4.)

4.23. Matinez Ordonez, Roberto 주유엔 온두라스대사 방한

4.23.–27. 통상사절단 방글라데시 방문
– 단장: 노신영 주인도대사

4.23.–28. 한 · 일본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제3차 실무자 소위원회(서울)

4.23.–28. 제112차 국제의원연맹(IPU) 이사회(Abidjan, 코트디부아르)
– 수석대표: 박준규 의원

4.23.–5.10. 김창훈 외무부 구아국장 서부아프리카 순방(차드, 카메룬, 가봉, 토고, 베냉, 세네갈, 감비아)
– 차드(4.26.~27.), 카메룬(4.27.~28.), 가봉(4.28.~30.), 토고(4.30.~5.2.), 베냉(5.2.), 세네갈(5.3.~5.), 감비아(5.5.)

4.24. 한 · 말레이시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발효(조약 479호)

4.24.–28. 라오스 경제사절단 방한
– 단장: Houmphan 경제성 차관

4.24.–28. 인도 통상사절단 방한
– 단장: Raghupathi, K. S. 통상성차관보

4.25.–30. 특별사절단 아이슬란드 및 노르웨이 방문
– 단장: 문덕주 주이탈리아대사
– 아이슬란드(4.25.~30.), 노르웨이(4.27.~30.)

4.25.–5.4. 제23차 세계식량계획(WFP) 정부간 위원회(Rome)
– 수석대표: 강인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4.26.–28. 제83차 SOFA 한 · 미 합동위원회 개최

4.26.–28. 제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Manila)
– 수석대표: 남덕우 재무부장관

4.27. 한 · 필리핀 간의 문화협정 발효(조약 476호)

4.28. 거제, Guam도(미국) 자매결연

4.29.–5.20. 통상사절단 중동 순방(튀니지,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 단장: 박충훈 한국무역협회장

– 튀니지(5.1.~5.), 리비아(5.5.~9.), 모로코(5.9.~13.), 이집트(5.13.~17.)

5.2.–5. 제1차 한 · 튀니지 공동위원회(Tunis)
– 수석대표: 정민길 상공부 국제협력차관보/Moncef Ghariani 외무성 국제협력국장

5.3.–5. 사토 분세이 일본 운수성 정무차관 방한

5.4. 주세네갈대사관 개설

5.5. 주파나마 대사대리 부임
– 8.15. 대사관 개설 공식 발표

5.5.–12. Arana Osorio, Carlos V. 과테말라 대통령군사담당보좌관 방한

5.7.–10. Janner, Antonio 스위스 외무성 총무국장 방한

5.7.–26. 제26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Geneva)
– 수석대표: 이경호 보건사회부장관
– 5.17. 북한 회원국으로 가입

5.8. Beneke Medina, W. 주한 엘살바도르대사 신임장 제정

5.8. Yoshida Vaca, Armando 초대 주한 볼리비아대사 신임장 제정

5.8. Gonzalez Barros, Luis 주한 콜롬비아대사 신임장 제정

5.8.–11. 제15차 아시아생산성기구(APO) 이사회(Saigon)
– 수석대표: 심의환 상공부차관

5.8.–11. 제6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서울)

5.9.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471호)

5.10. 주가봉대사관 개설

5.10. 한 · 중앙아프리카 간의 장기무역협정 서명, 발효(조약 480호)

5.10. 한 · 중앙아프리카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1974.2.13. 발효, 조약 492호)

5.13.–18. 김용식 외무부장관 호주 · 뉴질랜드 방문

5.14.–18. Molina, Jose Luis 주유엔 코스타리카대사 방한

5.15.–24. 제41/42차 관세협력이사회(CCC) 총회(교토)
– 수석대표: 이택규 관세청장

5.17.–19. De Peron, Maria L.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 북한 방문

5.17.–20. Paranjpe, V. V. 인도 외무성 동아담당차관보 방한

5.17.–22. 배의환 특사 콜롬비아 방문(한국전쟁 참전기념비 제막식 참석차)

5.17.–6.12.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공업소유권에 관한 외교관 회의(Vienna)
– 수석대표: 강승구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참사관

5.21. 아이슬란드, 북한 승인

5.21. 덴마크, 북한 승인

5.21.–25. Malinga, Norman M. 주유엔 스와질란드대사 방한

5.21.–26. 제41차 국제수역국(IOE) 총회(Paris)
– 수석대표: 이중희 농수산부 가축위생과장

5.21.–6.9. 김종필 국무총리 구주 순방(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 벨기에(5.21.~24.), 이탈리아(5.24.~26.), 스페인(5.28.~31.), 프랑스(6.4.~9.)

5.22.–26. Reynaldo Galindo Pohl 주유엔 엘살바도르대사 방한

5.22.–6.1. 배의환 특사 Campora, Hector J.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 참석

5.22.–6.4. 강양욱 북한 부주석 Campora, Hector J.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 참석
– 북한 · 아르헨티나 외교관계 수립 공동성명서 서명(1973.6.1.)

5.23. 자이르 주재 북한대사관 개설

5.25.–27. Green, Marshall 주호주 미국대사 방한

5.26. 박동진 제6대 주유엔대사 부임

5.26.–30. Waldron–Ramsey, Waldo E. 주유엔 바베이도스대사 방한

5.28.–30. 제10차 아프리카단결기구(OAU) 정상회담(Addis Ababa)

5.28.–6.3. Gemayel, S. P. 레바논 Phalangist당 당수 방한

5.28.–6.3. Avci, Sabit O. 터키 하원의장 방한

5.30.–6.4. 한 · 일본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제4차 실무자 소위원회(동경)

5.31.–6.6. 경제사절단 미국 방문
– 단장: 태완선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6.1. 핀란드 주재 북한대사관 개설(통상대표부에서 승격)

6.1. 북한 · 핀란드 외교관계 수립

6.1. 북한 · 아르헨티나 외교관계 수립

6.1. 베냉 주재 북한대사관 개설

6.1. 1970.9.28. 자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의 제6조 개정,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486호)

6.1.–2. Pickering 미국 국무성 정치군사국 부국장 방한

6.1.–8. 제5차 한 · 필리핀 무역회담(서울)
– 수석대표: 윤영교 외무부 통상국장/Tirona, Benjamin T. 주한 필리핀대사

6.4. 박민수 제3대 주Islamabad(파키스탄) 총영사 부임

6.5.–9. Malik, Adam 인도네시아 외상 방한

6.6.–27. 제58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Geneva)

6.7.–14. Sheikh Pierre Gemayel 레바논 사회민주당 당수 방한

6.11.–15. 제2차 한 · 일본 의원간친회 총회(동경)

6.11.–16. Upadhyay, S. K. 주유엔 네팔대사 방한

6.11.–22. 제60차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Rome)
- 수석대표: 강인희 주이탈리아 농무관

6.12.–13. 콩고(구자이르) 외상 북한 방문

6.12.–14. 제3차 남북조절위원회(서울)

6.13.–14. 1973년도 제2차 국제연합통일부흥위원단(UNCURK) 전체회의(서울)

6.13.–20. 손성필 북한 교육상 오스트리아 방문

6.14. Gandara Garcia, Felipe A. 초대 주한 과테말라대사 신임장 제정

6.14. Dossena, Luigi 제3대 주한 로마교황청대사 신임장 제정

6.14. Melanio Enciso, Desiderio 주한 파라과이대사 신임장 제정

6.14.–15. 제10차 한 · 일본 무역회담(동경)
- 수석대표: 윤영교 외무부 통상국장/요시다 겐조 외무성 아시아국장

6.15. 스웨덴 주재 북한대사관 개설

6.15.–7.10. 경제협력실무조사단 중남미 순방(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브라질, 에콰도르, 온두라스)
- 단장: 이문용 외교안보연구원 연구관
- 가이아나(6.17.), 트리니다드토바고(6.25.~26.), 브라질(6.26.~28.), 에콰도르(7.2.~5.), 온두라스(7.4.~5.)

6.17. 칠레, 북한의 위조미화 반입사건 발표

6.18.–30. 제38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München)
- 수석대표: 김찬동 공업진흥청 차장

6.19.–23. Husak, G. 체코슬로바키아 당총비서 북한 방문

6.20. 장지량 제8대 주필리핀대사 신임장 제정

6.21.–26. 제32차 국제면화자문위원회(ICAC) 총회(Manila)
- 수석대표: 신동원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6.22. 주토고대사관 개설(1974.9.17. 대사관 폐쇄)

6.22. 이란 주재 북한대사관 개설

6.22. 북한 · 노르웨이 외교관계 수립

6.23. 박정희 대통령, '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6 · 23 선언)
- 남북한 상호 불가침 · 불간섭
- 유엔 동시가입 불반대

6.23. 김일성 북한 주석, '평화통일 5대 강령' 발표

6.25.-29. 제2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직물교역작업단회의(Geneva)
- 수석대표: 문덕주 주이탈리아대사

6.25.-7.3. 제21차 국제지방행정기관연합(IULA) 총회(Lausanne)
- 수석대표: 고건 내무부 새마을담당관

6.27. Pham Van Dong 월맹 수상 북한 방문

6.27. 정일영 주포르투갈대사 신임장 제정(프랑스 상주)

6.27.-7.4. 한 · 일본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제5차 실무자 소위원회(서울)

6.28. 한 · 파라과이 간의 문화협정 서명(1975.7.31. 발효, 조약 541호)

6.28. 한표욱 제3대 주오스트리아대사 신임장 제정

6.29.-7.4. Diallo, A. 주유엔 니제르대사 방한

6.30. 북한 · 말레이시아 외교관계 수립

7.3.-4. 김신 교통부장관 네덜란드 방문

7.3.-13. 제6차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Geneva)
- 수석대표: 정우영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7.4. 울산, 사야마 시(일본) 자매결연

7.5.-7. Wendell Whatt 미국 하원의원 방한

7.5.-22. 함병춘 특사(대통령정치담당특별보좌관) 구주 순방(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
- 오스트리아(7.5.~8.), 스위스(7.8.~11.), 네덜란드(7.11.~14.), 프랑스(7.14.~22.)

7.6. 주그리스대사관 개설

7.6.-10. Portela Marcilio, Flavio 브라질 하원의장 방한

7.6.-15. 이효상 공화당 의장 미국 방문

7.7. 주베네수엘라대사관 개설

7.10. 정부, 루안다 군사정권 승인

7.10. 한 · 튀니지 의료협력협정 서명

7.10. 정부, 바하마 승인

7.12.–13. 제7차 남북적십자 본회담(평양)
– 한국적십자사, 추석성묘단 교환방문 제의

7.12.–25.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다자간 무역협상회의(Geneva)
– 수석대표: 정우영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7.13. 한 · 중국 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각서교환의 개정(조약 481호)

7.16.–19. 이효상 공화당 의장 멕시코 방문

7.17. 주라이베리아대사관 개설

7.17. 윤경도 초대 주사우디아라비아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7.18.–20. Rogers, William P. 미국 국무장관 방한

7.19.–20. 제5차 한 · 미국 상공부장관회담(서울)
– 수석대표: 이낙선 상공부장관/Dent, Frederick B. 상무장관

7.19.–23. 문철순 주카메룬대사 겸임국 기니 출장

7.19.–8.16. 특별사절단 서부아프리카 순방(세네갈, 감비아,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가나, 베냉)
– 단장: 한표욱 주오스트리아대사
– 세네갈(7.22.~25.), 감비아(7.25.~28.), 시에라리온(7.28.~31.), 라이베리아(8.1.~3.), 가나(8.3.~7.), 베냉(8.8.~11.)

7.20. 임명진 초대 주Singapore 총영사 부임

7.20. 북한 · 덴마크 외교관계 수립

7.21. 한 · 방글라데시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서명, 발효(조약 482호)

7.21.–8.3. 특별사절단 중동 순방(쿠웨이트, 오만,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 단장: 김영주 주독일대사
– 쿠웨이트(7.21.~24.), 오만(7.25.~26.), 아랍에미리트(7.27.~29.), 카타르(7.30.~31.), 바레인(8.1.~3.)

7.21.–8.18. 특별사절단 동부아프리카 순방(말라가시, 말라위, 루안다,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 단장: 장상문 외무부 정무차관보
– 말라가시(7.21.~23.), 말라위(7.25.~28.), 루안다(7.29.~8.1.), 우간다(8.1.~3.), 케냐(8.4.~8.), 에티오피아(8.9.~12.), 탄자니아(8.14.~17.)

7.22.–27. Aduko, Lous-Antoine 코트디부아르 외무성 정무국장 방한

7.23.–24. 정일권 국회의장 및 김진만 국회부의장 미국 방문

7.23.–29. 정일영 주불대사 겸임국 차드 출장(6 · 23 특별선언 지지 교섭차)

7.24. 제34차 한 · 일본 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7.24. 북한,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가입

7.24.–25. 1973년도 제3차 국제연합통일부흥위원단(UNCURK) 전체회의(서울)

7.24.–28. 제8차 한 · 일본 어업공동위원회(동경)

7.24.–29. Munawer, Abbas Habib 쿠웨이트 국회 문공위원장 방한

7.24.–8.8. 특별사절단 아프리카 순방(자이르, 가봉, 토고, 나이지리아, 니제르)
- 단장: 문덕주 주이탈리아대사
- 자이르(7.24.~27.), 가봉(7.27.~30.), 토고(7.30.~8.2.), 나이지리아(8.2.~4.), 니제르(8.6.~8.)

7.25. 황호을 제4대 주제네바대사 부임

7.27. 정일영 주차드대사 신임장 제정

7.28. 북한, 아이슬란드 외교관계 수립

7.28.–8.3. 국회의원단 호주 · 뉴질랜드 방문
- 단장: 차지철 의원
- 호주(7.28.~8.1.), 뉴질랜드(8.1.~3.)

7.31. 한 · 가이아나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483호)

7.31.–8.2. 제4차 한 · 독일 경제실무자회담(서울)
- 수석대표: 최호중 외무부 국제경제국장/Thieme, Rolf 경제성 지역담당국장

8.1. 이낙선 대한배구협회장, 서울 개최 '아시아배구코치강습회'에 북한을 초청
- 8.2. 북한, 초청 거부

8.1.–7. 김용식 외무부장관 멕시코 · 브라질 방문
- 멕시코(8.1.~4.), 브라질(8.5.~7.)

8.2. 이동원 제4대 주스위스대사 신임장 제정

8.3. 전상진 주볼리비아대사 신임장 제정

8.4. 아르헨티나 주재 북한대사관 개설

8.7. 남철 초대 주노르웨이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8.8.–10. 김동휘 외무부 미주국장 아르헨티나 및 칠레 방문
- 아르헨티나(8.8.~9.), 칠레(8.9.~10.)

8.8.–15. 김용식 외무부장관 구주(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및 튀니지 순방
- 벨기에(8.8.~9.), 프랑스(8.9.~12.), 튀니지(8.12.~14.), 네덜란드(8.14.~15.)

8.8.–11.1. 김대중 전 신민당 대통령후보 피랍사건
- 8.8. 동경에서 애국청년구국대원에 의하여 납치
- 8.13. 한국 자택으로 귀환
- 8.18. 김종필 국무총리, 다나카 일본 수상 및 오히라 외상 앞 친서 전달
- 8.23. 요미우리신문, 한국 정보기관의 관련 사실 인정 보도

- 8.24. 서울 주재 요미우리 신문 지국 폐쇄 및 특파원 강제 퇴거
- 8. 일본, 한 · 일 정기각료회담 무기 연기
- 8.31. 우시로쿠 주한일본대사 귀국
- 10.29. Habib 주한미국대사, 김종필 국무총리 방문
- 11.1. 김용식 외무부장관, 우시로쿠 주한일본대사, 사건의 종결 합의 및 조치 발표
- 11.2.~3. 김종필 국무총리 일본 방문(대통령 친서 전달 및 유감 표명)

8.10.–16. Sutsakhan, Sak(슈타칸) 크메르 특사 방한

8.12.–15. Leggett, Robert L. 미국 하원의원 방한

8.12.–28. 친선사절단 중남미 순방(과테말라, 파나마, 에콰도르, 페루, 아르헨티나)
- 단장: 김영선 국토통일원장관
- 과테말라(8.13.~15.), 파나마(8.15.~17.), 에콰도르(8.17.~21.), 페루(8.21.~22.), 아르헨티나(8.22.~23.)

8.12.–29. 특별사절단 서남아 및 중동 순방(네팔, 이란,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 단장: 최규하 대통령외교담당특별보좌관
- 네팔(8.12.~14.), 이란(8.15.~17.), 레바논(8.17.~20./8.23.~25.), 사우디아라비아(8.20.~23.), 인도(8.26.~29.)

8.13.–16. 김동성 주아르헨티나대사 Stroessner, Alfredo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

8.13.–31. 함병춘 특사(대통령정치담당특별보좌관) 북구 순방(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
- 덴마크(8.15.), 스웨덴(8.16.~17.), 노르웨이(8.20.), 아이슬란드(8.22.), 핀란드(8.27.~28.)

8.14. 한 · 미국 E-Systems 회사 간의 전술용 무전기 KIT 구매협정 서명, 발효
- 1974.10.14. 개정

8.15. 노르웨이 주재 북한대사관 개설

8.15. 주파나마대사관 개설

8.17. 강영규 제4대 주코트디부아르대사 신임장 제정

8.17.–21. Yaguibou 주유엔 오트볼타대사 방한

8.18. 한 · 미국 간의 미국 함정 대여기간 연장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조약 485호)

8.18.–22. Ramgoolam, Seewoosagur 모리셔스 수상 방한

8.18.–29. 특별사절단 아주 순방(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버마)
- 단장: 신상철 체신부장관
- 말레이시아(8.18.~22.), 싱가포르(8.23.), 버마(8.26.~29.)

8.21. 안진생 초대 주콜롬비아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8.21. 북한 · 스위스 상호 통상대표부 설치 합의

8.21. 채명신 초대 주그리스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8.21.–24. 친선사절단 가이아나 방문
– 단장: 김동조 주미국대사

8.23.–26. 미국 하원의원단 방한
– 단장: Lester Wolff 의원

8.23.–9.5. 제24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회의(Wellington)
– 수석대표: 이성희 보건사회부 보건국장

8.24. 주핀란드대사관 개설(통상대표부에서 승격)

8.24. 한 · 핀란드 외교관계 수립(1971.12.14. 통상관계 수립)

8.26. 북한 주재 유고슬라비아대사관 개설

8.26.–29. Bennett, William T. 미국 주유엔차석대사 및 Popper, David H. 국무성 국제담당차관보 방한

8.26.–9.1. Virolainen, J. 핀란드 재무상 북한 방문

8.27.–9.2. 김유탁 국회의원 중국 방문

8.28. 김영주 남북조절위원회 평양 측 공동위원장, 남북대화 일방적 중단 선언

8.28.–9.21. 제20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특별총회(Rome)
– 수석대표: 문덕주 주이탈리아대사

8.29. 장재용 제3대 주에티오피아대사 신임장 제정

8.29.–30. 1973년도 제4차 국제연합통일부흥위원단(UNCURK) 전체회의(서울)

9.1.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484호)

9.5.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개설

9.5.–9. 제4차 비동맹 정상회의(알제리)

9.7.–12. Novikov, I. 소련 부수상 북한 방문

9.9.–11. 김동조 특사(주미국대사) 바하마 독립기념식 참석

9.10. 제8차 한 · 중국 경제각료회담(Taipei)
– 수석대표: 태완선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손운선 경제부장

9.10.–12. Castrovalle, Alfonso 주터키 멕시코대사 방한

9.10.–13. Joukhdar, Mohammed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성 석유담당대사 방한

9.10.–14. 제9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Washington, D. C.)

9.12.–13. 제6차 한 · 미국 연례안보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유재흥 국방부장관/Laird, Melvin R. 국방장관

9.12.–14.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각료회의(동경)
– 수석대표: 남덕우 재무부장관

9.13. 한 · 방글라데시 영사관계 수립

9.14. Yohanan, Ammon Ben 주한 이스라엘대사 신임장 제정

9.15. 강영규 주니제르대사 신임장 제정

9.15.–19. Brun, Bue 노르웨이 외무성 경제국장 방한

9.16.–18. Karki, G. B. 네팔 외상 북한 방문

9.17.–18. 제5차 한 · 호주 통상장관회담(서울)
– 수석대표: 이낙선 상공부장관/Cairns, J. F. 대외무역장관

9.17.–19. Kempinaire, Andre 벨기에 대외통상장관 방한

9.18. 한 · 인도네시아 외교관계 수립

9.18.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개설(총영사관에서 승격)

9.18. Jenebelly, Gaston 제2대 주한벨기에대사 신임장 제정

9.18.–26. 제17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Vienna)
– 수석대표: 한표욱 주오스트리아대사
– 극동지역 이사국(1974–75년도) 피선

9.18.–10.26. 제11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위원회의(Torremolinos, 스페인)
– 수석대표: 심흥선 주스페인대사

9.18.–12.19. 제28차 유엔 총회
– 수석대표: 김용식 외무부장관

9.19. 북한 · 칠레 외교관계 단절(9.25. 북한대사관 철수)
– 6.17. 북한의 위조미화 칠레 반입사건 계기

9.19.–27. 제34차 국제교육국(IBE) 국제교육회의(Geneva)
– 수석대표: 설인수 전라북도 교육감

9.22.–25. 정규섭 주튀니지대사 리비아 방문(국교 수립, 영사, 통상관계 수립 제의)

9.22.–25. 켄즈 호주 무역상 북한 방문

9.24. 정부, 칠레 신정부 승인(1973.9.11. 군사 혁명)

9.24.–29. 제28차 국제통화기금/국제부흥개발은행(IMF/IBRD) 총회(Nairobi, 케냐)
– 수석대표: 남덕우 재무부장관

9.24.–10.5. Mustafa Munir 이집트 문화공보부 차관보 방한

9.25. 칠레 주재 북한대사관 철수

9.25. 정일영 주불대사 Gustav 6세 스웨덴 국왕 장례식 참석

9.28.–29. 제10차 한 · 일본 협력위원회 합동상임위원회(서울)

9.29. 강영규 주베냉대사 신임장 제정

10.1.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미국 측 대표 교체
- 전임 대표: Smith, Robert N. 공군 중장
- 신임 대표: Murphy, John R. 공군 중장

10.1. 제28차 유엔 총회 제1(정치)위원회, 한국문제 토의 시 북한대표 초청 결정

10.1.–3. 제4차 아시아 노동장관회의(동경)
- 수석대표: 이경호 보건사회부장관

10.1.–8. Kim, Ngoc Pham 월남 경제성장관 방한

10.1.–10. 제23차 국제관설관광기구(IUOTO) 총회(Caracas, 베네수엘라)
- 수석대표: 김형수 주베네수엘라 참사관

10.2. 덴마크 주재 북한대사관 개설(공보관에서 승격)

10.2.–6. 제9차 아시아의원연맹(APU) 총회(서울)

10.2.–6. Buzari, Mohmmad Ali 이란 상원의원 방한(제9차 APU 총회 참석차)

10.2.–9. 제42차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총회(Vienna)

10.3.–9. 제24차 세계식량계획(WFP) 정부간 위원회(Rome)

10.5. 주한 캐나다대사관 개설

10.5.–6. 제5차 한 · 월남 경제각료회담(서울)
- 수석대표: 태완선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Kim, Ngoc Pham 경제장관

10.6.–15. 일본 사회당대표단 북한 방문
- 단장: 사사키 전 위원장

10.8.–11.2. 해양 오염에 관한 국제회의(London)
- 수석대표: 최경록 주영국대사

10.10.–12. 제1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직물협정교섭회의(Geneva)
- 수석대표: 황호을 주제네바대사

10.11.–13. 제8차 동남아 경제개발각료회의(동경)

10.11.–25. 최규하 대통령외교담당특별보좌관 Peron, Juan D.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 참석

10.12. 강양욱 북한 부주석 Peron, Juan D.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 참석

10.12. 이규성 초대 주덴마크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0.13.–18. Currea Cubides, Hernando 콜롬비아 국방장관 방한

10.15.–21. Cacua Prada, Antonio 콜롬비아 상원의원 방한

10.16.–17. Hensley 뉴질랜드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10.17.–27. 제11차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극동지역 총회(New Delhi)
- 수석대표: 노신영 주New Delhi 총영사

10.18.–19. 친선사절단 자메이카 방문
- 단장: 김동조 주미국대사

10.20.–25. 특별사절단 요르단 방문
- 단장: 박찬현 주터키대사

10.21.–24. Callaway, Howard H. 미국 육군장관 방한

10.22. Aguado Saralegui, Jose M. 초대 주한 스페인 상주대사 부임

10.22. 주한 스페인대사관 개설

10.22. 서울, Honolulu 시(미국) 자매결연

10.22.–26. 제113차 국제의원연맹(IPU) 이사회(Geneva)

10.23.–26. 제3차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특별총회(Paris)
- 수석대표: 정일영 주불대사

10.23.–30. Camara 감비아 외상 북한 방문

10.24. 한 · 룩셈부르크 친선협회 창립

10.24.–29. Zhivkov, T. 불가리아 공산당 제1서기 북한 방문

10.24.–30. 제4차 한 · 독일 경제실무자회담(서울)
- 수석대표: 황병태 경제기획원 운영차관보/Boernstein, U. 경제협력성 대외협력국장

10.24.–31. 제7차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 총회(동경)
- 수석대표: 서재원 총무처 중앙공무원교육원장

10.24.–11.10. 친선사절단 중동 순방(오만,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 단장: 김종규 주이란대사
- 오만(10.24.~27.), 아랍에미리트연합국(10.27.~30.), 카타르(10.30.~11.3.), 바레인(11.3.~6.), 쿠웨이트(11.6.~10.)

10.26.–11.8. 유재흥 국방부장관 터키 방문 (터키 수립 50주년 기념식 참석차)

10.28.–11.11. 특별사절단 동부아프리카 순방(말라위, 남아프리카, 레소토,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 단장: 백인한 주케냐대사
- 말라위(10.28.~31.), 남아프리카(11.1.~2.), 레소토(11.2.~5.), 보츠와나(11.6.~8.), 스와질란드(11.9.~11.)

10.29.–11.17. 특별사절단 서부아프리카 순방(라이베리아, 니제르, 가나, 감비아)
- 단장: 강영규 주코트디부아르대사
- 라이베리아(10.29.~11.1.), 니제르(11.5.~7./11.10.~12.), 가나(11.7.~9.), 감비아(11.12.~17.)

10.30. 강영규 주라이베리아대사 신임장 제정

10.30. 한 · 스페인 경제협력위원회 창립총회(서울)

11.1. 한 · 라오스 통상관계 수립
- 1974.6.22. 외교관계 수립
- 1975.7.24. 단교

11.1. 주 Vientiane(라오스) 통상대표부 개설(1974.8.14. 대사관으로 승격)

11.1.–12. 특별사절단 스리랑카 · 아프가니스탄 방문
- 단장: 노신영 주New Delhi 총영사
- 스리랑카(11.1.~5.), 아프가니스탄(11.8.~12.)

11.2.–3. 김종필 국무총리 일본 방문

11.4.–6. Abrams, C. W. 미국 육군참모총장 방한

11.5.–6. 제2차 한 · 캐나다 통상장관회담(Ottawa)
- 수석대표: 이낙선 상공부장관

11.5.–9. 제61차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Rome)
- 수석대표: 강인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11.5.–17. 제8차 정부간 해양학위원회(IOC) 총회(Paris)
- 수석대표: 차민원 주불 과학관

11.6.–9. Moertopo, Ali 인도네시아 대통령정치담당보좌관 방한

11.6.–13. Laine, Jermu 핀란드 대외무역상 북한 방문

11.8. Serra, J. A. 제3대 주한브라질대사 신임장 제정

11.8. Geneva 주재 북한대표부 개설

11.8.–15. 제22차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회(Teheran)
- 수석대표: 김종규 주이란대사

11.10.–29. 제17차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총회(Rome)
- 수석대표: 장덕진 농수산차관

11.12.–16. 제1차 국제통신위성기구(INTELSAT) 서명자 회의(Washington, D. C.)
- 수석대표: 백오현 체신부 기획관리실장

11.13.–15. 제29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총회(Geneva)
- 수석대표: 황호을 주제네바대사

11.13.–16. Nguza Karl I Bond 자이르 외무장관 방한

11.13.–23. 제8차 정부간 해사자문기구(IMCO) 총회(London)
- 수석대표: 최종익 주영국 공사

11.14.–20. Sutsakhan, Sak(슈타칸) 크메르 특사 방한

11.16. Kissinger, Henry A. 미국 국무장관 방한

11.16. 윤호근 초대 주핀란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1.17. 김좌겸 초대 주인도네시아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1.18. 북한사절단 호주 방문

11.18.–23. Nguza Karl I Bond 자이르 외무장관 북한 방문

11.19.–29. 제2차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총회(Geneva)
– 수석대표: 차수영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 옵서버로 참석

11.20. 한 · 독일 간의 재정원조협정 600만 마르크 서명, 발효(조약 487호)

11.21. 제28차 유엔 총회 제1(정치)위원회, 한국문제에 관한 합의성명 채택

11.22. 장상문 제5대 주스웨덴대사 신임장 제정

11.22. 김정태 외무부 경제차관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11.24.–30. 이병희 제1무임소장관 이란 및 쿠웨이트 방문
– 이란(11.24.~26.), 쿠웨이트(11.27.~30.)

11.26.–30. Djafalo Alidou, A. 토고 보건상 방한

11.26.–12.4. 제23차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Wellington)
– 수석대표: 최형섭 과학기술처장관

11.27. 강영규 주오트볼타대사 신임장 제정

11.28. 제1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회의(판문점)

11.28.–12.25. 제3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회의(Paris)
– 수석대표: 김동수 수산청장

11.29. 국제연합통일부흥위원단(UNCURK) 활동 종료
– 11.28. UNCURK 해체안 유엔 총회 가결

12.3. 김동조 제16대 외무부장관 취임(1973.12.3.~75.12.19.)

12.3.–14. 제3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직물협정교섭회의(Geneva)
– 수석대표: 황호을 주제네바대사

12.3.–16.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 제1회기(New York)

12.4. 강영규 주시에라리온대사 신임장 제정

12.5.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부위원장 회의(판문점)

12.10.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개설(총영사관에서 승격)

12.10. 주Bombay(인도) 총영사관 개설(1982.3.19. 폐쇄)

12.10. 한 · 인도 외교관계 수립(1962.3.1. 영사관계 수립)

12.10.–13. 한 · 미국 항공협정 개정회담(Washington, D. C.)

12.11. Lares, Osmo 초대 주한 핀란드대사 신임장 제정

12.11.–24. 특별사절단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방문
- 단장: 최규하 대통령외교담당특별보좌관
- 사우디아라비아(12.14.~18.), 쿠웨이트(12.18.~21.)

12.13.–17. 유진산 신민당 총재 중국 방문

12.14. 주Las Palmas(스페인) 영사관 개설 (1976.6.17. 총영사관으로 승격)

12.18. 한 · 방글라데시 외교관계 수립

12.18. 북한 · 방글라데시 외교관계 수립

12.18. 스위스, 북한 승인

12.20.–25. 정일권 국회의장 인도 방문

12.24. 한 · 일본 간의 제2차 상품차관 및 수출산업육성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 (조약 488호)

12.26. 북한 · 아프가니스탄 외교관계 수립

12.26.–27. 김동조 외무부장관 일본 방문

12.26.–27. 제7차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동경)
- 수석대표: 태완선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오히라 마사요시 외상

12.31. 한 · 아프가니스탄 외교관계 수립(1978.9.17. 단교)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 1973년 |

인 쇄 2018년 10월 1일
발 행 2018년 10월 15일

발 행 처 외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기 획 외교부 기획조정실 외교사료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편찬위원 박상훈, 박재현, 송봉헌, 이휘진, 최석인, 한재영
감수위원 이광재
디자인/인쇄 스페이스프린팅
Tel. 02)2268-8205